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568-01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아카이브 구축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자료집 14
조선왕조실록 기사자료집 (4)

2012. 9.

- 목 차 -

1. 문종실록 기사자료집	1
2. 단종실록 기사자료집	25
3. 세조실록 기사자료집	85
4. 예종실록 기사자료집	233
5. 성종실록 <1> 기사자료집 : 성종 즉위년 ~ 성종 10년 5월	249

1. 문종실록 기사자료집

문종실록 기사자료집

출처	내용	원문
<p>문종 1권, 즉위년 (1450 경오 / 명 경태 (景泰) 1년) 2월 19일 (계사) 3번째기사 영의정 하연 등이 왕에게 죽 드시기를 청하다</p>	<p>영의정 하연(河演) 등이 아뢰기를, “대행왕(大行王)11) 께서 유교(遺敎)가 계신데, ‘3일 안에는 죽을 조금 먹고, 3일 후에는 밥을 조금 먹어야 병이 나지 않고 생명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 유교(遺敎)가 명백하였습니다. 지금 저하(邸下)께서 종기[瘡腫]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으니, 진실로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큰 일 [喪事]을 당하셨으니, 더욱 자애(自愛)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죽을 조금 드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명하기를, “내가 이 유교(遺敎)를 알고 있으니 마땅히 살펴서 처리하겠다.” 하였다.</p>	<p>원문 領議政河演等申曰： “大行王有遺敎： ‘三日之內， 小食粥， 三日之後， 小食食， 庶免疾病， 保全性命。’ 遺敎昭昭。 今邸下瘡瘡， 未盡平復， 固不可不慎， 今當大事， 尤不可不自愛也。 請今日小進粥。” 令曰： “吾知此敎， 當審處之。”</p>
<p>文宗 1卷, 卽位年 (1450 庚午 / 명 경태 (景泰) 1年) 3月 1日 (乙巳) 6번째기사 나이 70세 이상의 대신들에게 고기 먹는</p>	<p>임금이 나이 70세 이상의 대신(大臣)들에게는 고기[肉]를 먹도록 명하였다.</p>	<p>上命年七十以上臣食肉。</p>

<p>것을 허락하다</p> <p>문종 1권, 즉위년 (1450 경오 / 명 경태 (景泰) 1년) 3월 20일 (갑자) 2번째기사</p> <p>예조 판서 허후가 술을 드시도록 청하다</p>	<p>예조 판서(禮曹判書) 허후(許詡)가 아뢰기를, “대행 대왕(大行大王)께서 명령하시기를, ‘초상난 지 3일 만에 밥을 먹고, 한 달이 넘으면 술을 마시며, 졸곡(卒哭) 후에는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미 한 달이 넘었으니 조금 술을 드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判書許詡啓曰： “大行大王命曰： ‘三日而食， 食踰月而飲酒， 卒哭後食肉。’ 今既踰月矣， 請少進酒。” 從之。</p>
<p>문종 1권, 즉위년 (1450 경오 / 명 경태 (景泰) 1년) 5월 24일 (정묘) 2번째기사</p> <p>예조에서 중국 사신을 영접하는 예절 절차를 계문하다</p>	<p>예조(禮曹)에서 중국 사신(使臣)을 영접하는 예절을 계문(啓聞)하였다.</p> <p>“1. 사신(使臣)이 경내(境內)에 들어오면 졸곡(卒哭) 전에는 원접사(遠接使)384) 가 길복(吉服) 차림으로 고명(誥命)을 맞이하고, 최복(衰服) 차림으로 상회례(相會禮)를 행하며, 졸곡(卒哭) 후에는 고명을 맞이할 때에 또한 길복을 사용하고, 상회(相會)할 때에는 소복(素服)을 사용할 것.</p> <p>1. 외방(外方)의 사신(使臣)과 수령(守令)들은 졸곡(卒哭) 전에는 조복(朝服) 차림으로 고명(誥命)을 맞이하고, 최복(衰服) 차림으로 상회례(相會禮)를 행하며, 졸곡(卒哭) 후에는 고명을 맞이할 때에 또한 조복을 사용하고, 상회(相會)할 때에는 소복(素服)을 사용할 것.</p> <p>1. 외방(外方)의 연향(宴享)에는 졸곡(卒哭) 전후를 논할 것 없이 연회(宴會)의 탁자(卓子)·기명(器皿)·화초(花草)·육찬(肉饌)을 모두 평상시와 같이 하고, 원접사(遠接使)와 선위사(宣慰使)385) 가 손님[客]을 대접할 때에 졸곡(卒哭) 전에는 소찬(素饌)을 사용하고 졸곡(卒哭) 후에는 육찬(肉饌)을 사용할 것.</p> <p>1. 중국 사신(使臣)이 서울에 들어오는 날에는 산대 나레(山臺儺禮)는 없애고, 다만 결채(結綵)386) 만 하고 향탁(香卓)을 설치하며, 외방(外方)에서도 또한 이 예(例)에 의거하게 할 것.</p> <p>1. 사신(使臣)이 서울에 들어오면, 졸곡(卒哭) 전에는 전하(殿下)께서 최복(衰服)차림으로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서 고명(誥命)을 맞이할 때에 익선관(翼善冠)을 쓰고, 무늬도 없고 흉배(胸背)도 없는 아청색(鴉青色)의 단령(團領)을</p>	<p>禮曹啓使臣迎接禮： “一， 使臣入境， 在卒哭前， 遠接使以吉服迎命， 以衰服行相會禮， 在卒哭後， 則迎命亦用吉服， 相會用素服。 一， 外方使臣及守令， 卒哭前， 以朝服迎命， 衰服行相會禮， 卒哭後， 迎命亦用朝服， 相會用素服。 一， 外方宴享， 勿論卒哭前後， 宴卓、器皿、花草、肉饌， 竝如常， 遠接使、宣慰使對客， 卒哭前用素饌， 卒哭後用肉饌。 一， 使臣入京日， 除山臺儺禮， 只結綵， 設香卓， 外方亦依此例。 一， 使臣入京， 在卒哭前， 殿下以衰服， 詣慕華館迎命， 用翼善冠， 無文無胸背鴉青團領， 無畫金鴉青鞞不綴玉帶， 黑靴， 相會， 則於廳上行禮。 使臣入京， 若在卒哭後， 殿下以素服， 詣慕華館， 迎命時冠服如右， 相接宴享， 竝用素服。 一， 群臣卒哭前， 以衰服詣慕華館， 朝服迎命， 素服行私</p>

	<p>입고, 금(金)을 그리지 않은 아청색(鴉青色)의 혁대(革帶)와 금은을 아로새기지 않은 옥대(玉帶)를 띠고, 흑화(黑靴)를 신으며, 상회(相會)할 때엔 대청(大廳) 위에서 행례(行禮)하며, 사신(使臣)이 서울에 들어오는 것이 만약 졸곡(卒哭) 후면 전하(殿下)께서 소복(素服) 차림으로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서 고명(誥命)을 맞이할 때 관복(冠服) 차림은 위와 같이 하고, 서로 만나 연향(宴享)할 때에는 모두 소복(素服)을 사용하게 할 것.</p> <p>1. 여러 신하들은 졸곡(卒哭) 전에는 최복(衰服) 차림으로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서 조복(朝服) 차림으로 고명(誥命)을 맞이하고, 소복(素服) 차림으로 사례(私禮)를 행하게 할 것.</p> <p>1. 졸곡(卒哭) 전후를 논할 것 없이 연향(宴享)에는 음악 사용하는 것을 없애게 할 것.</p> <p>1. 사신(使臣)의 공찬(供饌)387) 은 졸곡 전후를 논할 것 없이 어육(魚肉)을 사용하게 할 것.</p> <p>1. 졸곡 후의 연향(宴享)에는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육찬(肉饌)을 사용하도록 할 것.”</p>	<p>禮。 一， 勿論卒哭前後， 宴享除用樂。 一， 使臣供饌， 勿論卒哭前後， 用魚肉。 一， 卒哭後宴享， 依前例， 用肉饌。”</p>
<p>문종 2권, 즉위년 (1450 경오 / 명 경태 (景泰) 1년) 6월 27일 (기해) 1번째기사 성균 사예 민원에게 사신에게 물을 예의 사목을 정하도록 하다</p>	<p>성균 사예(成均司藝) 민원(閔瑗)에게 명하여 다음 사목(事目)을 가지고, 사신에게 예(禮)를 묻게 하였다.</p> <p>“1. 전하의 영명(迎命)할 때의 길복에 대하여 만일 사신이 묻기를, ‘전하가 왜 면복(冕服)을 입지 않았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고명(誥命)을 받지 않았으므로 감히 임의로 입지 못한다.’고 할 것.</p> <p>1. 하사한 시호와 제문과 부물(賻物)을 맞아 태평관(太平館)에 이르러 관에 들어가 봉안하고, 전하께 주는 고명과 면복은 경복궁(景福宮)에 이르러 전하가 절하고 받은 다음 면복을 입고 준 것에 절하고, 사신이 태평관에 이르면 전하가 태평관에 나아가 면복을 입고 하사한 시호와 제문·부물에 절하고, 예</p>	<p>己亥/命成均司藝閔瑗， 齋事目， 問禮於使臣：“一， 殿下迎命時服， 吉服若使臣問：‘殿下何不服冕服?’ 答云：‘未受誥命， 不敢擅著。’ 一， 賜諡祭文賻物， 迎至大平館， 入安於館， 其賜殿下， 誥命、冕服， 至景福宮， 殿下拜受訖， 著冕服拜賜後， 使臣到大平館， 殿下詣大平館服冕服， 拜賜諡祭文、賻物， 禮訖， 出服白袍， 行相會禮。 一， 翼日</p>

	<p>가 끝난 다음 나와서 백포(白袍)를 입고 상회례(相會禮)464) 를 행할 것.</p> <p>1. 이튿날 사신이 부물을 받들고 경복궁에 나오면, 전하는 최복(衰服)을 입고 맞아들여 질하고 받을 것.</p> <p>1. 날을 택하여 사신이 제문(祭文)과 너찬(牢饌)을 받들고 혼전(魂殿)에 나오면, 전하는 최복으로 맞아들이고, 사신이 영좌(靈座) 앞에 나아가서 향(香)을 올리고 술을 드릴 것.</p> <p>1. 길일(吉日)을 택하여, 사신이 시호의 고명을 받들고 혼전에 나오면, 전하는 최복을 입고 맞아들이고, 사신이 영좌 앞에 나아가 시호·고명을 전하에게 주면 전하가 대신 받을 것.”</p>	<p>使臣，奉賻物詣景福宮，殿下服衰服，迎入拜受。一，擇日，使臣奉祭文牢饌，詣魂殿，殿下服衰服迎入，使臣詣靈座前立，上香奠酒。一，擇吉，使臣奉諡誥，詣魂殿，殿下服衰服迎入，使臣詣靈座前，以諡誥，授殿下，殿下代授。”</p>
<p>文宗 2卷, 卽位年 (1450 庚午 / 명 경태 (景泰) 1年) 7月 11日 (癸丑) 1번째기사 임금이 휘덕전에 나아가 상식하다</p>	<p>임금이 휘덕전(輝德殿)에 나아가 상식하였다. 임금의 효성이 천생으로 지극하여, 매양 초하루·보름에 연고가 있지 않으면 반드시 친히 제사를 지내고, 또 자주 친히 나아가 상식하고, 만일 맛있는 물건을 얻으면 또 반드시 친히 상식하고, 또 능(陵)에 참배하는 것은 추운 때나 더운 때나 폐하지 않았다.</p>	<p>癸丑/上詣輝德殿上食。上孝性天至，每於朔望，非有故則必親祭。且數親詣上食，若得鮮味，則又必親行上食。且謁陵，雖寒暑不廢。</p>
<p>문종 2권, 즉위년 (1450 경오 / 명 경태 (景泰) 1년) 7월 22일 (갑자) 5번째기사 예조에서 문소전과 휘덕전에 친제할 때의 예를 아뢰다</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이제부터 문소전(文昭殿)과 휘덕전(輝德殿)에 친제(親祭)할 때에는, 예전 예에 의하여, 찬(饌)을 올린 뒤에 참신례(參神禮)573) 를 행하고, 만일 섭행(攝行)하면, 참신한 뒤에 찬을 올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自：“今親祭文昭殿、輝德殿，則當依舊例，進饌後行參神禮，若攝行則宜參神後，進饌。”從之。</p>
<p>문종 3권, 즉위년 (1450 경오 / 명 경태 (景泰) 1년) 8월 4일</p>	<p>임금이 태평관(太平館)에 거동하여 익일연(翼日宴)607) 을 베푸니, 윤봉(尹鳳) 등이 말하기를, “우리 무리들이 하직하고 떠나오는 날에 황제께서 면대하시고 타이르기를,</p>	<p>幸太平館，設翼日宴。尹鳳等言：“吾輩辭日，皇帝面諭：‘求海青及海物以獻。’”前此，上聞之，已令諸道，捕海</p>

<p>(을해) 4번째기사 임금이 태평관에 거둥하여 사신에게 익일연을 베풀다</p>	<p>‘해동청(海東靑)608) 과 해물(海物)을 구해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는 이미 여러 도(道)에 명령하여 해동청(海東靑)을 잡게 하고 해물(海物)을 준비하게 하였는데,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황제의 내린 조서(詔書)의 1관(款)에, ‘매와 개를 바치지 말라.’고 했으며, 지금 칙서(勅書)도 없으니 황제의 의사가 아닌데도 윤봉(尹鳳) 등이 황제의 명령이라고 사칭(詐稱)한 것이 아닌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바치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p>	<p>靑辦海物， 政府啓： “皇帝頒詔一款， 勿進鷹犬， 今無勅書， 安知非皇帝之意， 而鳳等矯旨耶？ 請勿進上。” 不允。</p>
<p>문종 4권, 즉위년 (1450 경오 / 명 경태(景泰) 1년) 10월 23일(계사) 4번째기사 중국에 진헌할 물고기와 젓·지차(紙筍)를 사신(使臣)에게 보내다</p>	<p>중국에 진헌(進獻)할 물고기와 젓[醃]·지차(紙筍)를 사신(使臣)에게 보내었다.</p>	<p>以進獻魚及醃、紙筍， 送使臣。</p>
<p>문종 4권, 즉위년 (1450 경오 / 명 경태(景泰) 1년) 11월 6일(병오) 3번째기사 영릉에 상식할 때 내직 별감(內職別監)이 봉향하도록 승정원에 전지하다</p>	<p>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여 영릉(英陵)에 상식(上食)할 때와 주다례(晝茶禮)1256) 할 때 내직 별감(內職別監)으로 하여금 봉향(奉香)하게 하였다</p>	<p>傳旨承政院， 英陵上食及晝茶禮時， 令內直別監， 捧香。</p>
<p>文宗 5卷, 卽位年 (1450 庚午 / 명 경태</p>	<p>경기 안산군(安山郡)의 어호(漁戶)1347) 등이 상언(上言)하기를, “얼음이 얼 때에 고기를 잡는 것은 어렵고, 고생스러움이 너무 심합니다. 청</p>	<p>京畿安山郡漁戶等上言曰： “氷凍時捕魚， 艱苦莫甚。 請番休捕進。” 上曰：</p>

<p>(景泰) 1年) 12月 2日 (壬申) 6번째기사 안산군의 어호가 얼음이 얼 때 고기를 잡아 바치지 않도록 상언하다</p>	<p>컨대 번(番)을 쉬게 하여 잡아 바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부터 얼음이 얼 때에는 객인(客人)1348) 에게 궤향(饋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기를 쓰지 말라.” 하였다.</p>	<p>“自今冰凍時， 除客人饋餉外， 毋用魚。”</p>
<p>文宗 5卷, 1年(1451 辛未 / 명 경태(景泰) 2年) 1月 10日(庚戌) 3번째기사 하삼도에서 공납하는 사슴고기의 양을 줄이도록 하다</p>	<p>호조에서 아뢰기를, “하삼도(下三道)1584) 의 인구가 날로 번창하여, 백성들이 조밀하게 거주하니, 산마루의 땅을 더하여 아울러 모두 경작하고 개간하였으므로, 금수(禽獸)가 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봉상시(奉常寺)·사재감(司宰監)에서 공납하는 바의 생록(生鹿)1585) ·건록(乾鹿)1586) ·건장(乾獐)1587) ·녹포(鹿脯)1588)의 수는 옛날과 같으므로 각도의 각 고을에서는 능히 준비하기가 쉽지 않아서 민간의 재화와 곡식을 거두어 들여 멀리 다른 도에서 사니, 그 폐단이 심히 큼니다. 빌건대 지금부터 사재감(司宰監)에 바치는 것은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도내 주(州)·군(郡)의 노루와 사슴의 번식하는지의 여부를 살펴서 상량하여 양(量)을 줄이고 건저(乾猪)로써 대신하도록 공안(貢案)을 고쳐 만드소서. 만약 부득이하여 사재감(司宰監)에서 건장(乾獐)·건록(乾鹿)을 쓸 것이 있다면 모름지기 성상의 뜻을 품신(稟申)할 것이며, 만약 봉상시에서 제향(祭享)에 쓸 것이라면 건감(蠲減)할 수가 없으니 사복시(司僕寺)와 훈련하는 군사들로 하여금 사냥하여 잡는 것으로 대신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啓: “下三道， 生齒日繁， 民居稠密， 加以山嶺之地， 竝皆耕墾， 禽獸不得繁息。 而奉(當) [常] 寺、 司宰監所貢生鹿、 乾鹿、 乾獐、 鹿脯之數如舊， 故各道各官， 未易能辦， 收斂民間貨、 穀， 遠販他道， 其弊甚巨。 乞自今司宰監所納， 令各道監司， 察道內州、 郡獐鹿孳息與否， 商榷量減， 代以乾猪， 改成貢案。 如有不獲已， 用司宰監乾獐、 鹿處， 須稟上旨， 若奉常寺祭享所用， 不可蠲減， 令司僕寺及鍊軍士， 所獵獲者， 代之。” 從之。</p>
<p>문종 5권, 1년(1451 신미 / 명 경태(景泰) 2년) 1월 13일(계축) 3번째기사</p>	<p>평안도 관찰사가 아뢰기를, “김어랑(金於郎)이라는 자가 있어 말하기를, ‘고독(蠱毒)을 치료하는 법은 은비녀[銀釵]를 삶은 달걀에 꽂아 두었다가 병인(病人)의 입에 물리고 한 끼니를 지을 시간쯤 기다렸다가 도로 이를 내어서, 비녀의 빛깔이 검푸른 색으로</p>	<p>平安道觀察使啓: “有金於郎者言: ‘治蠱毒之法， 銀釵插於熟雞子， 銜之於病人口， 待一炊飯頃， 還出之， 釵色變爲靑黑， 則卽爲蠱毒。 將巴豆去穀細末</p>

평안도 관찰사가 고독을 치료하는 법을 자세히 아뢰니 중외에 유시하게 하다

변하면 바로 고독(蠱毒)입니다. 파두(巴豆)의 껍질을 벗긴 가는 가루 1푼(分)과 오동초(梧桐草) 뿌리의 가루 반 푼과 수견초(水見草)·태하초(泰河草)·마두령(馬兜鈴)1598)·대극초(大戟草) 등의 뿌리로 만든 가루 2푼과 반금초(班金草)·앵황초(鸚黃草)·성랑초(成郎草)·수장초(水長草)·설양초(雪陽草)·음성초(陰城草) 등의 뿌리로 만든 가루 각각 1푼과 곡우초(穀右草) 뿌리 가루·불로초(不老草) 뿌리 가루·인진(茵蔯)1599) 이삭 가루·대추 나무 뿌리 껍질의 가루 각각 3푼과 견골초(見骨草) 뿌리 가루 4푼과 구엽초(九葉草) 뿌리 가루 1푼 반과 초오두(草烏頭)의 뿌리를 태운 것과 아직 성질이 남아 있는 가루 반 푼과, 설매초(雪梅草) 뿌리 가루 반 푼과 적맥(狄麥) 열매 가루 3홉[合]을 가지고 물에 타서 환(丸)을 팔 크기와 같이 만드는데, 병이 중하고 기력(氣力)이 약한 사람은 50환(丸) 복용하고 병이 가볍고 기력이 왕성한 사람은 70환(丸)을 복용합니다. 공복(空腹)에 미음(米飲)을 마시고 약을 복용하기 전에 먼저 피쌀의 죽을 한 잔 들고 복용한 뒤에 한참 있다가 그 병의 증상을 헤아려 소금을 태워서 혹은 한 손갈 혹은 두 손갈 정도 맑은 죽물에 타서 마신 뒤에 승냥물[熟冷水] 한두 사발을 마시면 위로 토하고 아래로는 설사하여 독기(毒氣)가 다 빠지는데, 토해 낸 담(痰)이 푸르면 병이 차도가 있습니다. 위의 약초(藥草)를 채취(採取)하여 말리는 법은 초오두(草烏頭) 뿌리는 정월에, 설양초(雪陽草)·설매초(雪梅草) 뿌리는 2월에, 오동초(梧桐草) 뿌리는 3월에, 수견초(水見草)·반금초(班金草) 뿌리·적맥(狄麥) 열매는 6월에, 음성초(陰城草) 뿌리는 7월에, 태하초(泰河草)·앵황초(鸚黃草)·곡우초(穀右草)·성랑초(成郎草)·견골초(見骨草)·수장초(水長草)·대극초(大戟草)·불로초(不老草) 등의 뿌리·마두령(馬兜鈴) 뿌리·인진(茵蔯) 이삭은 8월에, 대추나무 뿌리 껍질은 9월에, 구엽초(九葉草) 뿌리는 10월에 달[月]에 따라 채취(採取)하여 물에 씻어서 온돌(溫?) 위에 두고 종이로 이를 덮어서 하룻밤을 지낸 뒤에 이를 찌리 광주리[杓篋]에 담아서 부엌 안의 연기가 있는 곳에 걸어 두어 마르기를 기다려 가루를 만들어

一分, 梧桐草根末半分, 水見草、泰河草、馬兜零、大戟草等根作末各二分, 班金草、鸚黃草、成郎草、水長草、雪陽草、陰城草等根作末各一分, 穀右草根末、不老草根末、茵(陳) [蔯] 穗末、棗根皮末各三分, 見骨草根末四分、九葉草根末一分半, 草烏頭根燒、存性細末半半分, 雪梅草根末半分, 狄麥實末三合, 水和作丸, 如小豆大。病重氣弱人, 服五十丸, 病輕氣壯人, 七十丸。空心米飲吞下, 服藥前, 先進稷米粥一盞, 後服之。良久量其病狀, 燒鹽, 或一匙, 或二匙, 淡粥水和飲後, 熟冷水一、二鉢連飲, 則上吐下瀉, 毒氣盡泄, 吐痰清則病差。右藥草採乾之法, 草烏頭根, 正月; 雪陽草、雪梅草根, 二月; 梧桐草根, 三月; 水見草、班金草根、狄麥實, 六月; 陰城草根, 七月; 泰河草·鸚黃草·穀右草·成郎草·見骨草·水長草·大戟草·不老草等根、馬兜零根、茵(陳) [蔯] 穗, 八月; 棗根皮, 九月; 九葉草根, 十月。隨月, 採取灑水, 置於溫堞上, 以紙覆之, 經一宿後, 盛之杓篋, 掛於竈內有烟氣之處, 待乾作末,

	<p>습니다. 외증조(外曾祖) 노단지(盧端知)가 왜인에게 사로잡힌 바가 되어 왜국(倭國)에 15여 년 살다가 그 기술을 전습(傳習)하여 돌아왔고 아버지 김천(金千)도 또한 이를 전습하였으며, 나도 또한 전습하여 치료하였는데 효과를 본 자가 심히 많습니다.’고 하였습니다.”</p> <p>하니, 임금이 예조로 하여금 중앙(中央)과 외방(外方)에 유시(諭示)하여 두루 알지 못함이 없게 하도록 하였다.</p>	<p>用之。 外曾祖盧端知， 爲倭人所虜， 居倭國十五餘年， 傳其術， 還來； 父金千亦傳之； 我亦傳習療治。 得効者， 甚衆。” 上令禮曹， 曉諭中外， 無不周知。</p>
<p>문종 5권, 1년(1451 신미 / 명 경태(景泰) 2년) 1월 26일(병인) 7번째기사</p> <p>예조에서 경희전에 고명을 내려 준 것을 아뢰는 의주와 분황제의 의주를 아뢰다</p>	<p>예조에서 경희전(景禧殿)에 고명(誥命)을 내려 준 것을 아뢰는 의주(儀注)와 분황제(焚黃祭)의 의주를 아뢰었다.</p> <p>“기일 전 1일에 전사(殿司)에서 그 소속을 거느리고 혼전(魂殿)의 안팎을 소제한다. 충후위(忠扈衛)에서 임시로 고명(誥命)을 안치(安置)한 악차(幄次)1664) 를 혼전의 대문(大門) 밖 동쪽에 서향하여 설치한다. 사자(使者)의 좌차(座次)를 고명(誥命) 악차(握次)의 남쪽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한다. 그날 집례(執禮)가 고명안(誥命案)을 신좌(神座)의 동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사자(使者)의 자리를 고명안(誥命案)의 동쪽에 서향하여 설치한다. 고명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의 자리를 고명안(誥命案)의 앞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또 서는 자리를 서계(西階) 아래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집례(執禮)·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궁위령(宮闈令)의 자리를 동계(東階) 아래에 서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위로 한다. 집례(執禮) 이하 여러 집사(執事)가 길복(吉服) 차림으로 먼저 전정(殿庭)으로 들어가서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해서 네 번 절하고 나서 각각 자리로 나아가고, 알자(謁者)가 고명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 【길복(吉服)차림이다.】 을 인도하여 들어와 서는 자리로 나아간다. 집례(執禮)가 ‘사배(四拜)하라.’ 하여, 찬자(贊者)가 창(唱)하기를, ‘국궁(鞠躬)·사배(四拜)·흥(興)·평신(平身)하라.’고 하면, 고명(誥命)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이 몸을 굽히고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사자(使</p>	<p>禮曹啓: “景禧殿告賜誥命及焚黃祭儀注。 前一日， 殿司帥其屬， 掃除殿之內外。 忠扈衛設幄置誥命幄於殿大門外之東， 西向； 設使者次於誥命幄之南， 近東西向。 其日執禮設誥命案於神座之東北， 南向； 設使者位於誥命案之東， 西向。 設代受誥命官位於誥命案之前， 北向； 又設立位於西階下， 北向。 設執禮、謁者、贊者、贊引、宮闈令位於東階下近西， 西向北上。 執禮以下諸執事， 以吉服， 先入殿庭， 重行北向， 西上四拜， 訖， 各就位。 謁者引代受誥命官， 【吉服。】 入， 就立位。 執禮曰： ‘四拜’， 贊者唱： ‘鞠躬， 四拜， 興， 平身’， 代受誥命官， 鞠躬， 四拜， 興， 平身。 使者詣闕， 受誥命， 置龍亭中。 黃儀仗前導， 次鼓樂， 次香亭， 次誥命龍亭， 【擔陪人著吉</p>

者)가 예궐(詣闕)하면, 고명(誥命)을 받아서 용정(龍亭) 가운데 둔다. 황의장(黃儀仗)이 앞에서 인도하고, 다음에 고악(鼓樂)이고, 다음에 향정(香亭)이고, 다음에 고명 용정(誥命龍亭)이고, 【메고 가는 자는 길복(吉服)을 입는다.】 다음에 사자(使者)가 길복(吉服) 차림으로 말을 타고 간다. 혼전(魂殿)의 대문(大門) 밖에 이르면, 【고악(鼓樂)은 문에 이르면 연주하지 않는다.】 용정(龍亭)을 악차(握次) 안에 설치한다. 봉례랑(奉禮郎)이 사자(使者)를 인도하여 좌차(座次)에 들어가고 【봉례랑(奉禮郎)도 또한 길복(吉服)을 입는다.】 궁위령(宮衛令)이 궤(匱)를 열고 신주(神主)를 받들어 내어 자리[座]에 설치하고 청저건(靑苧巾)으로 덮고 궤(几)를 뒤에 설치한다. 봉례랑(奉禮郎)이 사자(使者)를 인도하여 좌차(座次)를 나와 서향하여 서고, 용정(龍亭)이 정문(正門)으로 들어오면 사자가 뒤따라 들어온다. 알자(謁者)가 찬(贊)하기를, ‘국궁(鞠躬)하라.’ 하면, 고명(誥命)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이 동향하여 몸을 굽히며, 지나면 찬(贊)하기를, ‘평신(平身)하라.’ 하면, 고명(誥命)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이 몸을 바로 하고 북향하여 선다. 용정(龍亭)이 혼전(魂殿)에 오르면 사자(使者)가 고명(誥命)을 받들어 안(案)에 둔다. ‘집례(執禮)가 사배(四拜)하라.’ 하여, 찬자(贊者)가 창(唱)하기를, ‘국궁(鞠躬)·사배(四拜)·흥(興)·평신(平身)하라.’ 하면, 고명(誥命)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알자(謁者)가 고명(誥命)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을 거느리고 서계(西階) 아래로 올라가서 대수위(代受位)로 나아간다. 【알자(謁者)는 계단 아래에서 그친다.】 사자가 칭하기를, ‘제서(制書)가 있다.’ 하면, 알자(謁者)가 찬(贊)하기를, ‘궤(跪)하라.’ 하여, 고명(誥命)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이 꿇어앉는다.

사자(使者)가 고명(誥命)을 받들어 서향하여 고명(誥命)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에게 주면 고명(誥命)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이 고명(誥命)을 받아서 도로 신좌(神座)의 앞에 놓고 【안(案)이 있다.】 부복(俯伏)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服。】次使者吉服乘馬行。至殿大門外, 【鼓樂, 至門不作。】龍亭安於幄內。奉禮郎引使者, 入次; 【奉禮郎亦著吉服。】宮闈令開匱, 奉出神主, 設於座, 覆以靑苧巾, 設几於後。奉禮郎引使者出次, 西向立。龍亭由正門入, 使者從入。謁者贊: ‘鞠躬’, 代受誥命官, 東向鞠躬。過, 則贊: ‘平身’, 代受誥命官平身, 北向立。龍亭升殿, 使者奉誥命, 置于案。執禮曰: ‘四拜’, 贊者唱: ‘鞠躬, 四拜, 興, 平身’, 代受誥命官, 鞠躬, 四拜, 興, 平身。謁者引代受誥命官, 由西階下降, 詣代受位。【謁者止於階下。】使者稱: ‘有制’, 謁者贊: ‘跪’, 代受誥命官跪使者, 奉誥命, 西向, 授代受誥命官, 代受誥命官受誥命, 還置於神座前。【有案。】俯伏, 興, 平身, 降, 復位。執禮曰: ‘四拜’, 贊者唱: ‘鞠躬, 四拜, 興, 平身’, 代受誥命官, 鞠躬, 四拜, 興, 平身。奉禮郎引使者, 由東門出; 謁者引代受誥命官出, 就次。初使者出門, 宮闈令納神主如常。執禮以下, 俱復拜位, 四拜而出。焚黃儀【齊戒同祈告儀。】俟賜誥命禮畢, 承文院

하고 내려와 <자리에> 다시 선다. 집례(執禮)가 ‘사배(四拜)하라.’ 하여, 찬자(贊者)가 창(唱)하기를, ‘국궁(鞠躬)·사배(四拜)·흥(興)·평신(平身)하라.’ 하면, 고명(誥命)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봉례랑(奉禮郎)이 사자(使者)를 인도하여 동문(東門)으로 나가고, 알자(謁者)가 고명(誥命)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을 인도하여 나가 좌차(座次)에 나아간다. 처음에 사자(使者)가 문을 나가면 궁위령(宮闈令)이 신주(神主)를 들어 넣기를 상시(常時)와 같이 한다. 집례(執禮) 이하가 배위(拜位)로 돌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간다. 분황의(焚黃儀)는 【재계(齋戒)는 기고의(祈告儀)와 같다.】 고명(誥命)을 내려 주는 예(禮)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승문원(承文院)의 관원이 황지(黃紙)에다 고명(誥命)을 전사(傳寫)하여 고명함(誥命函)의 뒤에 놓는다. 집례(執禮)가 고명(誥命)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이 자리를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감찰(監察)·전사관(典祀官)의 자리를 전문(殿門)의 서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감찰(監察)이 서쪽에 있고 서리(書吏)가 그 뒤에 배종(陪從)한다.】 집례(執禮)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서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은 남쪽에 조금 뒤로 물러 있게 하는데, 북쪽을 위로 한다. 행사(行事)하기 전에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가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가 축판(祝版)을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올려 놓고, 【점(拈)이 있다.】 향로(香爐)와 향합(香合)과 초[燭]를 신위(神位)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祭器)를 설치하여 찬구(饌具)를 담는다. 【찬품(饌品)은 기고제(祈告祭)와 같다.】 준(尊)을 지계문[戶] 밖의 왼쪽에 설치하는데 잔(盞) 3개를 준소(尊所)에 두고 요소(燎所)를 서계(西階) 위에 서쪽으로 가까이 설치한다. 【탁자(卓子)를 설치하고 동로(銅爐)를 둔다.】 설치하기를 끝내면 찬인(贊引)이 감찰(監察)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진설(陳設)한 것을 점검하여 살핀다.

전(前) 1각(刻)에 고명(誥命)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과 여러 집사(執事)가 백의

官, 以黃紙, 傳寫誥命, 置於誥命函之後。執禮設代受誥命官位於東階東南, 西向; [設] 監察、典祀官位於殿門之西, 北向; 【監察在西, 書吏陪其後。】設執禮位於東階之西, 西向; 謁者、贊者、贊引在南, 差退, 北上。未行事前, 典祀官、殿司, 各帥其屬入, 奠祝版於神位之右; 【有拈。】設香爐、香合竝燭於神位前。次設祭器, 實饌具。【饌品與祈告同。】設尊於戶外之左, 置盞三於尊所, 設燎所於西階上近西。【設卓置銅爐。】畢, 贊引引監察, 升自東階, 點視陳設。前一刻, 代受誥命官及諸執事, 具白衣、烏紗帽、黑角帶, 盥洗訖, 皆就殿門外。執禮帥謁者、贊者、贊引, 先入殿庭拜位, 北向西上, 四拜, 訖, 就位。贊引引監察、典祀官、大祝、宮闈令、祝史、(齊) [齋] 郎入, 就殿庭拜位, 重行西上。立定, 執禮曰: ‘四拜’, 贊者唱: ‘鞠躬, 四拜, 興, 平身’, 監察以下, 鞠躬, 四拜, 興, 平身。贊引引監察以下, 各就位。宮闈令開匱, 奉出神主, 設於座, 覆以青苧巾, 設几於後。謁者引代受誥命官入, 就位。執

(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갖추고 관세(盥洗)하기를 끝마치면 모두 전문(殿門) 밖으로 나아간다. 집례(執禮)가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 들어가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고 네 번 절하고, 끝나면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贊引)이 감찰(監察)·전사관(典祀官)·대축(大祝)·궁위령(宮闈令)·축사(祝史)·재랑(齋郎)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겹줄로 서쪽을 위로 하여 선다. 서기를 정(定)하면 집례(執禮)가, ‘사배(四拜)하라.’ 하여, 찬자(贊者)가 창(唱)하기를, ‘국궁(鞠躬)·사배(四拜)·흥(興)·평신(平身)하라.’ 하면, 감찰(監察) 이하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인(贊引)이 감찰(監察) 이하를 인도하여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궁위령(宮闈令)이 궤(匱)를 열고 신주(神主)를 받들어 내어 자리[座]에 설치하고 청저건(靑苧巾)으로 덮고 궤(几)를 뒤에 설치한다. 알자(謁者)가 고명(誥命)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집례(執禮)가, ‘사배(四拜)하라.’ 하여, 찬자(贊者)가 창(唱)하기를, ‘국궁(鞠躬)·사배(四拜)·흥(興)·평신(平身)하라.’ 하면, 고명(誥命)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먼저 절한자는 절하지 않는다.】 알자(謁者)가 고명(誥命)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서 신좌(神座)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선다. 찬(贊)하기를, ‘궤(跪)하라.’ 하면, 고명(誥命)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이 꿇어앉는다. 집사자(執事者) 1인이 향합(香合)을 받들고 1인이 향로(香爐)를 받들어 꿇어앉아 바친다. 알자가 찬(贊)하기를, ‘삼상향(三上香)하라.’ 하면, 집사자(執事者)가 향로를 안(案)에 올려놓는다. 【향(香)을 받드는 자는 동쪽에 있어 서향하고, 향로를 올리는 자는 서쪽에 있어 동향한다. 잔(盞)을 주고 잔을 올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대축(大祝)이 고명(誥命)을 취(取)하여 동향하여 꿇어앉아 읽기를 마치면 알자(謁者)가 찬(贊)하기를, ‘부복(俯伏)·흥(興)·평신(平身)하라.’ 하면, 고명(誥命)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이 부복하였다가

禮曰：‘四拜’，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代受誥命官，鞠躬，四拜，興，平身。【先拜者不拜。】謁者引代受誥命官，升自東階，詣神座前，北向立。贊：‘跪’，代受誥命官跪。執事者一人奉香合，一人奉香爐，跪進。謁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奉香在東，西向；奠爐在西，東向。授盞、奠盞準此。】大祝取誥命，東向，跪，讀訖，謁者贊：‘俯伏，興，平身’，代受誥命官，俯伏，興，平身。謁者引代受誥命官，出戶，詣尊所，西向立。執禮曰：‘行初獻禮’，執尊者酌酒，執事者以盞受酒。謁者引代受誥命官入，詣神座前，北向立。〔謁者〕跪，代受誥命官跪。執事者以盞授代受誥命官，代受誥命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俯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俯伏，興，平身’，引降復位。小頃執禮曰：‘行亞獻禮’，謁者引代受誥命官，入詣神位前，北向立。贊：‘跪’，代受誥命官跪。執事者以盞授代受誥命官，代受誥命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알자(謁者)가 고명(誥命)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을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가 준소(尊所)1665)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선다.

집례가 ‘초헌례(初獻禮)를 행하라.’ 하면, 집준자(執尊者)가 술을 떠내고, 집사자(執事者)가 잔(盞)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謁者)가 고명(誥命)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을 인도하여 신좌(神座)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선다. <알자가> 꿇어앉으면 고명(誥命)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이 꿇어앉는다. 집사자(執事者)가 잔(盞)을 잡아서 잔(盞)을 드리고, 잔(盞)을 집사자(執事者)에게 주어서 신위(神位) 앞에 올리게 한다. 알자(謁者)가 찬(贊)하기를, ‘부복(俯伏)·흥(興)·소퇴(小退)1666)·북향궐(北向跪)1667) 하라.’ 하면, 대축(大祝)이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祝文)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謁者)가 찬(贊)하기를 ‘부복(俯伏)·흥(興)·평신(平身)하라.’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례(執禮)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라.’ 하면, 알자(謁者)가 고명(誥命)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신위(神位)의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선다. 찬(贊)하기를, ‘궐(跪)하라.’ 하면, 고명(誥命)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이 꿇어앉는다. 집사자(執事者)가 잔(盞)을 고명(誥命)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에게 주면, 고명(誥命)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이 잔(盞)을 잡아서 잔(盞)을 드리고, 잔(盞)을 집사자(執事者)에게 주어서 신위(神位) 앞에 올리게 한다. 알자(謁者)가 찬(贊)하기를, ‘부복(俯伏)·흥(興)·평신(平身)하라.’ 하면, 고명(誥命)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이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알자(謁者)가 인도하여 내려와서 자리에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례(執禮)가, 종헌례(終獻禮)를 행하라.’ 하면, 알자(謁者)가 고명(誥命)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亞獻)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자리로 돌아간다. 집례(執禮)가 ‘분황(焚黃)하라.’ 하면, 대축(大祝)이 고명(誥命)의 사본(寫本)을 받들어 요소(燎所)1668)에 나아가서 불사른다. 이를 마치면, 집례(執禮)가, ‘사배(四

奠于神位前。謁者贊：‘俯伏，興，平身’，代受誥命官，俯伏，興，平身。謁者引降復位。小頃執禮曰：‘行終獻禮’，謁者引代受誥命官，行禮如亞獻儀。訖，引降復位。執禮曰：‘焚黃’，大祝奉誥命寫本，就燎所，焚。訖，執禮曰：‘四拜’，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代受誥命官，鞠躬，四拜，興，平身。謁者引代受誥命官出。贊引引監察、典祀官以下，俱復拜位。執禮曰：‘四拜’，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贊引以次引出。宮闈令納神主如儀。執禮帥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大祝捧祝版，瘞於坎。殿司以誥命納于函，藏之。典祀官、殿司，各帥其屬，徹禮饌，闔戶以降，乃退。行事執事官，使者一，【左議政。】代受誥命官一，【一、二品。】執禮一，【文官三品。】典祀官一，【奉常寺官。】大祝一，【文官三品。】謁者一，【奉禮郎。】贊者一，【通贊】贊引一，【參外】祝史二，齋郎二，【竝參外。】宮闈令一，【內侍府。】監察一。”

	<p>拜)하라.’ 하면, 찬자(贊者)가 창(唱)하기를, ‘국궁(鞠躬)·사배(四拜)·흥(興)·평신(平身)하라.’ 하면, 고명(誥命)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이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p> <p>알자(謁者)가 고명(誥命)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을 인도하여 나간다. 찬인(贊人)이 감찰(監察)·전사관(典祀官) 이하를 인도하여 함께 배위(拜位)로 돌아간다. 집례(執禮)가 ‘사배(四拜)하라.’ 하면, 찬자(贊者)가 창(唱)하기를, ‘국궁(鞠躬)·사배(四拜)·흥(興)·평신(平身)하라.’ 한다. 찬인(贊引)이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간다. 궁위령(宮闈令)이 신주(神主)를 들여 넣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집례(執禮)가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을 거느리고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간다. 대축(大祝)이 축판(祝版)을 받들어 구덩이에 파묻는다. 전사(殿司)가 고명(誥命)을 함(函)에 들여 넣어서 이를 갈무리한다.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가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지계문을 닫고서 내려와 곧 물러간다. 행사 집사관(行事執事官)은 사자(使者)가 1인, 【좌의정(左議政).】 고명(誥命)을 대신하여 받는 관원이 1인, 【1, 2품(品).】 집례(執禮)가 1인 【문관 3품.】 전사관(典祀官)이 1인, 【봉상시(奉常寺)의 관원.】 대축(大祝)이 1인, 【문관 3품(品).】 알자(謁者)가 1인, 【봉례랑(奉禮郎).】 찬자(贊者)가 1인, 【통찬(通贊).】 통인(通引)이 1인, 【참외(參外).】 축사(祝史)가 2인, 재랑(齋郎)이 2인, 【아울러 참외(參外)이다.】 궁위령(宮闈令)이 1인, 【내시부(內侍府).】 감찰(監察) 1인이다.”</p>	
<p>文宗 6卷, 1年(1451 辛未 / 명 경태(景泰) 2年) 2月 1日(庚午) 3 번째기사 세종 대왕의 기월이기</p>	<p>세종 대왕의 기월(忌月)1669) 이기 때문에 달을 마치도록 육선(肉膳)을 올리 지 말도록 명하였다. 나라의 풍속에 부모가 죽은 달을 기월이라고 하여 고기를 먹지 아니하는 것이 있었는데, 임금이 풍속을 따라 차마 고기를 먹지 못하였다. 비록 예(禮)에 근거한 바는 없으나 이른바 후(厚)한 데에 그르치었다고 할 것이다.</p>	<p>以世宗忌月, 命終月勿進肉膳。 國俗以父母死月, 謂之忌月, 有不食肉者, 上從俗, 不忍御肉。 雖禮無所據, 然所謂失於厚也。</p>

<p>때문에 달을 마치도록 육선을 올리지 말도록 하다</p>		
<p>文宗 6卷, 1年(1451 辛未 / 명 경태(景泰) 2年) 2月 2日(辛未) 3 번째기사 의정부에서 이 달에 소찬을 드는 것을 폐하도록 청하였으나 듣지 않다</p>	<p>의정부에서 계하기를, “이제 들으니, 이달에 소찬(素饌)1677) 을 올린다고 하는데, 신 등은 생각건대 이런 일은 전고에 없는 바이며 본조(本朝)의 열성(列聖)1678) 께서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청컨대 소찬을 없애소서.” 하니, 임금의 이르기를, “삼년상(三年喪)을 이미 행하지 못하였는데 소상(小祥) 기월(忌月)에 또 어찌 차마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느냐?” 하였다.</p>	<p>議政府啓: “今聞, 上於今月進素膳, 臣等以爲, 此事前古未有, 且本朝列聖, 亦不行之。 請除素膳。” 上曰: “三年之喪, 既不能行, 小祥忌月, 又何忍食肉?”</p>
<p>文宗 6卷, 1年(1451 辛未 / 명 경태(景泰) 2年) 2月 3日(壬申) 3 번째기사 기월에 각사에서 고기를 쓰는 것을 금지하다</p>	<p>장령(掌令) 나홍서(羅洪緒)가 계문하기를, “요즈음 듣건대 이달에 소찬(素饌)을 올리기 때문에 본부(本府)1695) 에서는 이미 고기를 쓰지 아니한다고 하나 각사(各司)에서는 모두 고기를 쓰니 안과 밖이 다름이 있음은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또 소상(小祥)의 기월(忌月)1696) 은 다른 국기일(國忌日)의 예(例)와 다르니, 청컨대 각사에서 고기 쓰는 것을 금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掌令羅洪緒啓: “近聞, 今月進素膳, 故本府既不用肉。 然各司皆用肉, 內外有異, 實爲不可。 且小祥忌月, 非他國忌之例。 請於各司禁用肉。” 從之。</p>
<p>文宗 6卷, 1年(1451 辛未 / 명 경태(景泰) 2年) 2月 8日(丁丑) 3 번째기사 예조에 길제 때는 향을 받은 뒤에 고기를</p>	<p>예조에 전지하기를, “길제(吉祭) 때 여러 집사(執事)는 향을 받은 뒤에 고기를 먹고 제사를 지낸 뒤에 번육(膳肉)을 먹게 하라.” 하였다. 근래에 소상(小祥)의 달이기 때문에, 공처(公處)에서 고기를 쓰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명이 있었다.</p>	<p>傳旨禮曹曰: “吉祭, 諸執事受香後食肉, 祭後食膳肉。” 近因祥月, 公處不用肉, 故有是命。</p>

<p>먹고 제사를 지낸 후에 번육을 먹도록 전지하다</p>		
<p>文宗 6卷, 1年(1451辛未 / 명 경태(景泰) 2年) 2月 13日(壬午) 8번째기사 예조에서 영릉의 연상과 담제에 섭사하는 의식을 아뢰다</p>	<p>예조에서 영릉(英陵)의 연상(練祥)1731) 과 담제(禫祭)에 섭사(攝事)하는 의식을 아뢰었다. “그날 행사하기 전에 헌관(獻官) 이하 여러 집사(執事) 및 수릉관(守陵官)은 각각 그 예복을 갖추고 【연제(練祭) 때는 최복(衰服), 상제(祥祭) 때는 연복(練服), 담제 때는 진한 회색옷을 입는다.】 바깥 자리로 나아간다. 알자(謁者)와 찬자(贊者)는 먼저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각각 제자리에 나아간다. 알자는 감찰(監察)·전사관(典祀官) 및 집사(執事)를 인도하여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알자가 헌관 및 수릉관을 인도하여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정해 서게 한다. 찬자(贊者)가 ‘궤(跪)·부복(俯伏)·곡(哭)하라.’ 하면, 헌관 이하가 꿇어앉아 구부러 엎드려서 곡한다. 찬자가, ‘지곡(止哭)·흥(興)·사배(四拜)·흥(興)·평신(平身)하라.’ 하면, 헌관 이하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편다. 알자가 헌관 이하를 인도하여 차례로 나온다. 알자가 옷을 바꾸어 입기를 청하면 헌관 및 수릉관·감찰 이하 여러 집사가 함께 옷을 바꾸어 입는다. 【연제(練祭) 때는 수릉관은 연포(練布)로 관(冠)을 하고 수질(首絰)·부판(負版)·벽최(辟袞)를 떼어 버린다. 헌관 이하는 연포로 사모(紗帽)를 쓰고 그대로 띠를 드리운다. 상제(祥祭) 때는 짙은 회색 원령(圓領), 검은 각대(角帶), 흰 가죽신을 갖추고, 담제(禫祭) 때에는 검은 빛 원령을 입는다.】 수를 마치고 바깥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찬자 및 여러 집사들이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감찰과 전사관(典祀官)을 인도해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알자가 또 헌관과 수릉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찬자가, ‘궤(跪)·부복(俯伏)·곡(哭)하라.’ 하면, 헌관 및 수릉관 이하가 꿇어앉아 구부러 엎드려서 곡한다. 찬자가 ‘지곡(止哭)·흥(興)·평신(平身)하라.’</p>	<p>禮曹啓: “英陵練祥、禫祭、攝事儀。其日未行事前, 獻官以下諸執事及守陵官, 各具其服, 【練時衰服, 祥時練服, 禫時深漆灰色衣。】就外位。謁者、贊者, 先就拜位, 四拜, 訖, 各就位。謁者, 引監察、典祀官及諸執事, 入就拜位, 謁者引獻官及守陵官, 入就拜位, 立定。贊者曰: ‘跪, 俯伏, 哭’, 獻官以下, 跪, 俯伏, 哭。贊者曰: ‘止哭, 興, 四拜, 興, 平身’, 獻官以下, 止哭, 興, 四拜, 興, 平身。謁者引獻官以下, 以次出。謁者贊請易服, 獻官及守陵官、監察以下諸執事, 俱易服。【練時, 守陵官則以練布爲冠, 去首絰、負版、辟袞。獻官以下, 以練布裹紗帽, 仍垂帶。祥時, 深漆灰色圓領, 烏紗帽, 黑角帶, 白皮靴。禫時, 黑色圓領衣。】盥洗訖, 就外位。謁者、贊者及諸執事, 入就位。謁者引監察、典祀官, 入就位。謁者引獻官及守陵官, 入就位。贊者曰: ‘跪, 俯伏, 哭’, 獻官及守陵官以下, 跪, 俯</p>

하면, 헌관 및 수릉관 이하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선다. 집사자(執事者) 두 사람이 술잔에 술을 따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영좌(靈座) 앞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해 서게 하고, ‘궤(跪)·삼상향(三上香)하라.’ 찬한다. 집사자가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술잔을 잡아서 술잔을 올린다.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또 집사자가 다음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술잔을 잡아서 술잔을 올린다.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王后)의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구부러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뒤로 물러나서 북쪽을 향해 꿇어앉는다. 대축(大祝)1732) 이 축문을 읽기를 마치면 헌관이 구부러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몸을 편다. 알자가 인도하여 내려와서 본 자리로 돌아온다.

조금 뒤에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쪽 계단을 올라가서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게 한다. 집사자 두 사람의 술잔에 술을 따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해 서게 한 뒤에 꿇어앉게 한다. 집사자가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서 올린다.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또 집사자가 다음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잡아서 올린다.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구부러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몸을 편다. 알자가 인도해 내려와서 본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 조금 뒤에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예를 행하기를, 아헌(亞獻)의 의식과 같이 하여 예를 마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본 자리로 돌아온다. 찬자가, ‘궤(跪)·부복(俯伏)·곡(哭)하라.’ 하면, 헌관 이하가 꿇어앉아 구부러 엎드려서 곡한다. 찬자가, ‘지곡(止哭)·흥(興)·사배(四拜)·흥(興)·평신(平身)하라.’ 하면, 헌관 이하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편다. 알자가 헌관 및 수릉관을 인도해 나아간다. 알자가 감찰과 전사관 및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함께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찬자가 ‘사배(四拜)하라.’ 하면, 감

伏, 哭。贊者曰: ‘止哭, 興, 平身’, 獻官及守陵官以下, 止哭, 興, 平身。謁者引獻官, 升自東階, 詣尊所, 西向立。執事者二人酌酒, 謁者引獻官, 詣靈座前, 北向立。贊: 跪、三上香’, 執事者, 以爵授獻官, 獻官執爵, 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靈座前。又執事者, 以副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 奠于王后神位前。俯伏, 興, 少退, 北向, 跪。大祝讀祝文訖, 獻官俯伏, 興, 平身。謁者引降復位。少頃謁者引獻官, 升自東階, 詣尊所, 西向立。執事者二人酌酒。謁者引獻官, 詣靈座前, 北向立, 贊跪。執事者, 以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 奠于靈座前, 又執事者, 以副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 奠于王后神位前, 俯伏, 興, 平身。謁者引降復位, 少頃謁者引獻官, 行禮如亞獻儀, 訖, 引降復位。贊者曰: ‘跪, 俯伏, 哭’, 獻官以下跪, 俯伏, 哭。贊者曰: ‘止哭, 興, 四拜, 興, 平身’, 獻官以下止哭, 興, 四拜, 興, 平身。謁者引獻官及守陵官出。謁者引監察、典祀官及諸

	<p>찰 이하가 네 번 절하기를 마치고, 알자의 인도로 감찰 이하가 나온다. 알자와 찬자가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기를 마치고, 알자의 인도로 감찰 이하가 나온다. 알자가 찬자가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온다. 능직(陵直)이 집사가 되지 아니하면, 자리의 차례가 전사관(典祀官) 뒤, 감찰 앞에 있다.”</p>	<p>執事，俱復拜位。贊者曰：‘四拜’，監察以下，四拜，訖。謁者引監察以下出。謁者、贊者，就拜位，四拜而出。陵直若非執事，則位在典祀官之後、監察之前。”</p>
<p>문종 8권, 1년(1451 신미 / 명 경태(景泰) 2년) 7월 28일(갑자) 7번째기사 5부 학당의 생도 한 사람의 공미를 1되로 하다</p>	<p>겸 성균 대사성(兼成均大司成) 정인지(鄭麟趾)가 아뢰기를, “구례(舊例)로는 5부(部) 학당(學堂)의 생도(生徒) 한 사람의 공미(供米)가 1되[升]이었으므로, 집에서 먹지 않고서도 유숙(留宿)하면서 독서(讀書)하는 자가 자못 많았으나, 근래에는 그 1되의 쌀을 줄여서 주므로, 먼 곳에서 와서 배우는 사람 중에는 혹 계옥(桂玉)2482)의 고통으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더러 있는데, 가령 5부에서 상시(常時)로 공양하는 수량을 헤아려 보면, 하루의 한 되씩을 도합하여도 한 해에 겨우 1천여 석(石)일 뿐입니다. 청컨대 구례대로 공양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하루 공급(供給)이 한 사람에 1되가 어찌 많겠는가? 예전대로 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p>	<p>兼成均大司成鄭麟趾啓：“舊例五部學堂生徒，每一人供米一升，故不家食而留宿讀書者頗多，近來減一升之米，遠方來學者，或有桂玉之憂，遂還鄉里。試以五部常養之數算之，積一日一升，終歲僅千餘石耳。請依舊例養之。” 上曰：“日供一人一升豈其多乎仍舊爲可。”</p>
<p>문종 8권, 1년(1451 신미 / 명 경태(景泰) 2년) 7월 29일(을축) 2번째기사 배의 흉작으로 말미암 아 억지로 민간에서 구하지 말 것을 유시</p>	<p>함길도 도관찰사(咸吉道都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상림원(上林園)에서 아뢰기를, ‘금년에는 본원의 배나무가 전혀 열매를 맺지 않아서 천신 진상(薦新進上) 및 대소 제향(大小祭享)에 이바지하기 어렵습니다.’ 하니, 도내(道內)의 관가에 열매가 맺은 곳이 있거든 적당히 갖추어서 바치되, 억지로 민간에서 구하지 말라. 대저 이렇게 구하는 물건은 다 상공(常供) 외의 것이므로, 만약에 기어이 얻으려고 하면, 혹 민간에 분정(分定)하고</p>	<p>諭咸吉道都觀察使曰：“上林園啓：‘今歲本園梨樹，專不結實，難以供薦新進上及大小祭享。’道內官家有結實處，隨宜備進，勿強索民間。大抵如此需索之物，皆是常供之外，若必欲得之，則或分定民間，奔走誅求，物價騰踊，一顆之直，幾至數斗，奸吏夤緣，侵虐</p>

<p>하다</p>	<p>서 분주(奔走)히 주구(誅求)하여 물가가 뛰어 올라서 배 한 개의 값이 거의 두어 말[斗]에 이르고, 간사한 관리가 연줄을 따라 백성을 침학(侵虐)하므로, 공용(公用)은 매우 적고 민폐(民弊)는 적지 않으니, 쉽게 얻을 수 없으면 바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p>	<p>百姓，公用甚少，而民弊不貲，如不易得，則可勿進。”</p>
<p>文宗 12卷, 2年(1452 壬申 / 명 경태(景泰) 3年) 2月 1日(乙丑) 1 번째기사 세종의 기월이므로 소찬을 들다</p>	<p>임금이 휘덕전(輝德殿)에 나아가서 삭제(朔祭)를 행하였는데, 세종(世宗)의 기월(忌月)3179) 이기 때문에 소선(素膳)3180) 을 들고 궁내(宮內)와 궁외(宮外)에서도 모두 소찬(素饌)을 사용하였다.</p>	<p>乙丑朔/上詣輝德殿，行朔祭，以世宗忌月，御素膳，內外皆用素。</p>
<p>文宗 12卷, 2年(1452 壬申 / 명 경태(景泰) 3年) 2月 18日(壬午) 1 번째기사 상제를 마친 일을 하례하고는 육선을 드시기를 청했으나 윤희치 않다</p>	<p>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의 2품 이상의 관원들이 예궐하여 상제(喪制)를 마친 일을 하례(賀禮)하고는 육선(肉膳)을 드시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때 불사(佛事)가 끝나지 않았으니 육선(肉膳)을 먹을 수가 없다.” 하였다. 다시 청하기를, “전하께서 즉위(卽位)하신 초기에 마땅히 옛날의 명철한 군주를 본받아야만 할 것인데, 어찌 불사(佛事) 때문에 육선(肉膳)을 폐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임금이 윤희하지 아니하였다.</p>	<p>壬午/議政府、六曹二品以上，詣闕賀終制，請進肉膳。上曰：“當時佛事未罷，不可食肉。”更請曰：“殿下卽位之初，當法古先哲王，豈可以佛事，輟肉膳?”上不允。</p>
<p>문종 12권, 2년(1452 임진 / 명 경태(景泰) 3년) 2월 28일(임진) 3 번째기사 강맹경이 공주나 옹주가 과부가 되었을 때</p>	<p>강맹경(姜孟卿)이 아뢰기를, “옛날에 세종(世宗)께서 구언(求言)3398) 하시므로, 신(臣)이 조목별로 몇 가지 일을 진술했습니다. 그 하나는, ‘부마(駙馬)가 처음에는 종1품·종2품에 임명되니, 공주(公主)와 옹주(翁主)에게 장가가서 아내와 더불어 관직을 갈게 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히 일찍이 과부[孀]가 된다면 그 남편이 사망한 이유 때문에 녹봉(祿俸)을 지급하지 않으니, 친족(親族)을 친애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p>	<p>姜孟卿啓曰：“昔世宗求言，臣條陳數事。其一曰：‘駙馬初拜從一品、從二品，所以尚公主、翁主，而與妻齊職也。不幸早孀，則以其夫亡不給祿俸，有違親親之義。請準夫職給月俸，以厚其生’。世宗嘉納，令禮曹議之，議</p>

수훈하도록 건의하다

습니다. 청컨대 남편의 관직에 준해서 월봉(月俸)3399) 을 지급하여 그 생계(生計)를 넉넉하게 하소서.’ 하니, 세종(世宗)께서 옳게 여겨 받아들여서 예조(禮曹)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였으나, 반박하는 의견이 있어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신이 지금에 와서 다시 이를 생각해 보니, 공주와 옹주는 왕녀(王女)인데, 어찌 왕녀로서 불행히 일찍이 과부[孀]가 되었는데도 수훈(收恤)하는 조목이 없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의논이 옳으니 그것을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겠다.”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삼가 옛날 제도를 상고해 보건대 당(唐)나라 옥진 공주(玉眞公主)3400) 가 도사(道士)가 되어, 천보(天寶) 3년(744)에 상언(上言)하기를, ‘선제(先帝)께서 첩(妾)에게 집을 버리고 도사(道士)가 되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지금 공주의 제택(弟宅)을 외람되게 차지하고 조부(租賦)3401) 를 먹게 되었으니, 원컨대 공주의 칭호를 버리고 읍사(邑司)를 폐지하여 왕부(王府)에 귀속(歸屬)되게 하소서.’ 하였으나, 현종(玄宗)이 허가하지 아니했으며, 송(宋)나라 진국장 공주(秦國長公主)는 좌위 장군(左衛將軍) 왕승연(王承衍)에게 시집가서 개보(開寶) 3년(970)에 소경 공주(昭慶公主)로 봉해졌고, 지도(至道) 3년(977)에는 장공주(長公主)로 추봉(追封)되었는데, 함평(咸平) 4년(1001)에 공주가 상주(上奏)하기를, ‘왕승연이 죽은 후에는 집대가 조금 빠졌습니다.’ 하니, 황제가 월급(月給)을 증가시켜 소금 5석(石), 주료(廚料)·쌀·보리를 각각 30곡(斛)을 주었으니, 이로써 살펴보더라도 예로부터 제왕의 딸은 부마(駙馬)가 죽은 후에 쌀·보리를 사급(賜給)한 것이 이미 성규(成規)가 있었습니다. 본조(本朝)의 공주(公主)·옹주(翁主)는 부마(駙馬)가 죽으면 집대가 빠짐이 있다는 것은 실로 미편(未便)합니다. 지금부터는 공주의 녹봉(祿俸)은 종1품에 준(準)하고, 옹주의 녹봉은 종2품에 준해서 1년 사맹삭(四孟朔)에 쌀·콩과 보리를 반사(頒賜)

駁不行。 臣今反覆思之， 公主、翁主王女也， 安有以王女， 不幸早孀， 而無收恤之條乎？” 上曰：“此議是， 其令政府議之。” 政府啓曰：“謹稽古制， 唐玉眞公主爲道士， 天寶三載， 上言曰：‘先帝許妾捨家， 今乃叨主第， 食租賦誠， 願去公主號罷邑司， 歸之王府’。 玄宗不許， 宋秦國長公主， 降左衛將軍王承衍， 開寶三年， 封昭慶公主， 至道三年， 追封長公主， 咸平四年， 公主上奏：‘自王承衍卒後， 供億稍闕’。 帝持增月給， 鹽五石、廚料、米麥各三十斛。 以此看詳， 自古帝王之女， 駙馬卒後， 賜給米麥， 已有成規。 本朝公主、翁主， 駙馬卒則供億有闕， 實爲未便。 自今公主祿俸， 准從一品， 翁主祿俸， 准從二品， 以一年四孟朔， 頒賜米豆及麥之數， 分半於春秋兩等賜給。” 從之。

	<p>하는 수량으로써 봄·가을 두 철에 절반씩 나누어 사급(賜給)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문종 13권, 2년(1452) 임신 / 명 경태(景泰) 3년) 5월 5일(정유) 2 번째기사 내의 전순의가 임금의 병이 차도가 있다고 말하다</p>	<p>내의(內醫) 전순의(全循義)가 내전(內殿)에서 나오면서 말하기를, “임금의 종기(腫氣)가 난 곳이 매우 아프셨으나, 저녁에 이르러 조금 덜하고 농즙(濃汁)이 흘러 나왔으므로, 두탕(豆湯)3847) 을 드렸더니 임금이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음식의 맛을 조금 알겠다.’ 하셨다.” 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기뻐하였다.</p>	<p>內醫全循義自內出曰：“上腫處痛苦，至夕稍歇，濃汁流出，進豆湯，上曰：‘稍知飲食之味。’” 群臣皆喜。</p>
<p>文宗 13卷, 2年(1452) 壬申 / 명 경태(景泰) 3年) 5月 12日(甲辰) 2번째기사 허후가 임금에게 문안하고 찬 음식을 피할 것을 아뢰다</p>	<p>허후(許詡)가 아뢰기를, “큰 종기(腫氣)를 앓고 난 후에는 3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전 회복이 되니,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종기 난 곳은 날로 차도(差度)가 있으니 신(臣) 등은 모두 기뻐함이 한이 없습니다. 다시 날로 조심을 더하시고 움직이거나 노고하지 마시어서 임금의 몸을 보전(保全)하소서. 또 듣건대, 전하(殿下)께서 조금 갈증(渴症)이 나면 냉수(冷水)를 좋아하신다 하니, 무릇 종기(腫氣)가 갈증(渴症)을 당기는 것은 이것이 그 보통의 증상(症狀)입니다. 갈증(渴症)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약을 먹어서 속을 덥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중국 사람이 일찍이 말하기를, ‘조선(朝鮮) 사람은 음식의 날 것과 찬 것을 먹기 좋아하는 까닭으로 창종(瘡腫)이 많다.’고 하니, 이 말이 깊이 이치가 있습니다. 무릇 혈기(血氣)가 운행(運行)할 적에, 몸이 더우면 운행하고 몸이 차[冷]면 중지되어 종기(腫氣)가 발생하게 되니, 평상시에도 음식의 날 것과 찬 것은 마땅히 기(忌)해야 하는 것인데, 하물며 종기(腫氣)를 앓고 있는 때에는 더욱 마땅히 아주 기(忌)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듣건대, 십선산(十宣散)3851) 을 조제(調劑)하여 올렸다고 하는데, 이 약은 모름지기 술로써 타서 먹어야 하고 많이 먹어서는 안됩니다.”</p>	<p>許詡曰：“大腫之後，至於三年，始可完復，不可不慎。今此腫處，日向差愈，臣等咸喜罔極。更加日慎，毋使動勞，以保聖躬。又聞殿下，稍渴喜冷，凡腫引渴，是其常證也。止渴之方，莫如溫。中朝人嘗曰：‘朝鮮人好食生冷，故多瘡腫。’此言深有理也。凡血氣運行，溫則行，冷則止而生腫，平常之時，生冷所當忌也，況慎腫之時，尤當切忌。又聞調進十宣散，此藥須調以酒，不可多服也。” 上曰：“已知之。”</p>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알고 있다.” 하였다.	
--	--------------------------------------	--

2. 단종실록 기사자료집

단종실록 기사자료집

출처	내용	원문
<p>단종 1권, 즉위년 (1452 임신 / 명 경태 (景泰) 3년) 5월 27일 (기미) 1번째기사</p> <p>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빈전에 향을 올리다</p>	<p>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빈전에 향을 올리었다. 그 의주(儀注)는, 유사가 예찬(禮饌)152) 을 올리면 봉례랑(奉禮郎)이 문무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위(位)에 나와 꿇어앉아 부복하여 곡하고 일어나 사배(四拜)하고 일어나 평신한다. 【무릇 곡하고 절하는 것은 모두 통찬이 창한다.】 반수(班首)가 대야에 손을 씻고 【무릇 반수가 행례함에는 봉례랑이 찬인(贊引)한다.】 동편 뜰로부터 올라와서 영좌(靈座) 앞에 나와 북향하고 꿇어앉아 세 번 향을 올린다. 백관도 또한 꿇는다. 집사자(執事者)가 잔에 술을 따라서 반수에게 주면 잔을 잡아 잔을 드리고 잔을 대축(大祝)에게 주어서 영좌 앞에 놓는다. 【연하여 석 잔을 올린다.】 반수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고 꿇는다. 대축이 영좌 좌편에 나가 서향하여 꿇어서 제문을 읽는데 끝나는 대로 반수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평신한다. 백관도 같다. 반수가 본위(本位)로 돌아와 부복하여 곡하고 일어나 사배하고 평신한다. 백관도 같다. 봉례랑이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 【종친·부마·관찰사가 향을 올리는 것도 같다.】 (후략)</p>	<p>己未/議政府率百官，進香于殯殿。 其儀注。 攸司進禮饌，奉禮郎分引文武百官，入就位跪，俯伏哭，與四拜與平身， 【凡哭拜，皆通贊唱。】班首盥洗， 【凡班首行禮，奉禮郎贊引。】升自東偏階，詣靈座前，北向跪，三上香，百官亦跪。 執事者以盞酌酒，授班首，執盞獻盞，以盞授大祝，奠于靈座前。 【連奠三盞。】班首俯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祭文訖，班首俯伏興平身，百官同。 班首還本位，俯伏哭與四拜平身，百官同。 奉禮郎，分引百官出， 【宗親、駙馬、觀察使進香同。】 (후략)</p>
<p>端宗 1卷, 卽位年 (1452 壬申 / 명 경태</p>	<p>삭전(朔奠)을 올렸는데, 그 의주(儀注) 【이름이 있는 날의 별전(別奠)도 같다.】 는 그날 새벽에 유사가 예찬(禮饌)을 내면, 내시(內侍)가 전하여 받들어</p>	<p>壬戌朔/進朔奠。 其儀注。 【有名日別奠同。】 其日清晨，攸司進禮饌，內</p>

<p>(景泰) 3年) 6月 1日 (壬戌) 1번째기사 삭전(朔奠)을 올리는 의주(儀注)</p>	<p>서 들어와 영좌(靈座) 앞에 진설하고 향로(香爐)·향합(香盒)·촉(燭)을 그 앞에 베풀고 준(尊)157) 을 호외(戶外)의 왼편에 베풀고 잔 세 개를 준이 있는 곳 에 놓는다. 일각(一刻)158) 전에 감찰(監察)·전의(典儀)·통찬(通贊)·봉례랑(奉 禮郎)이 먼저 들어와 위(位)에 나온다. 봉례랑이 종친 및 백관을 나누어 이끌 고 들어와 위에 나온다. 내시가 전하를 인도하여 상장(喪杖)을 짚고 들어와 위(位)에 나와 꿇어 부복한다. 내시가 혼백함(魂帛函)을 받들고 영좌(靈座)에 나온다. 전하가 곡하면 종친과 백관이 꿇어 부복하여 곡한다. 【무릇 행례에 통찬이 찬하여 창(唱)한다.】 전하가 곡을 그치면 종친과 백관이 곡을 그치고 일어나 사배(四拜)하고 일어나 평신(平身)하고 꿇는다. 대전관(大奠官)이 【종 친 2품 이상.】 손을 씻고 동편 뜰로부터 올라와서 향안(香案)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서 세 번 향을 올리고, 술을 따라 영좌 앞에 올리고, 【연하여 석 잔을 올린다.】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물러난다. 전하가 곡하여 애통을 다하면 종친과 백관도 부복해서 곡하여 애통을 다한다. 전하가 곡을 그치면 종친과 백관이 곡을 그치고, 일어나 사배하고 일어나 평신한다. 내시가 전하 를 인도하여 여차(廬次)로 돌아가면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백관을 이끌고 동 편 가까이 반(班)을 옮기어 모두 꿇는다. 반수(班首)가 이름을 내어[進名] 받 들어 위로하기를 마치면 봉례랑이 나누어 이끌고 나간다.</p>	<p>侍傳奉， 入設於靈座前， 設香爐·香 (合) [盒] 竝燭於其前， 設尊於戶外之 左， 置盞三於尊所。 前一刻， 監察、 典儀、通贊、奉禮郎先入就位， 奉禮郎 分引宗親及百官入就位， 內侍導殿下杖 入就位， 跪俯伏。 內侍奉魂帛函出就 靈座， 殿下哭， 宗親及百官跪俯伏哭。 【凡行禮， 通贊贊唱】 殿下止哭， 宗親 百官止哭。 興四拜興平身跪。 代奠 官【宗親二品以上。】 盥手升自東偏 階， 詣香案前北向跪。 三上香酌酒， 奠于靈座前， 【連奠三盞】 俯伏興 退。 殿下哭盡哀， 宗親及百官俯伏哭 盡哀。 殿下止哭， 宗親及百官止哭， 興四拜興平身。 內侍導殿下還廬次， 奉禮郎引宗親及文武百官移班近東， 皆 跪， 班首進名， 奉慰訖， 奉禮郎分引以 出。</p>
<p>단종 1권, 즉위년 (1452 임신 / 명 경태 (景泰) 3년) 6월 1일 (임술) 2번째기사 황보인·남지·김종서·정 분 등이 조계청에 나</p>	<p>황보인·남지(南智)·김종서·정분·이양(李穰)·허후·강맹경 등이 조계청(朝啓廳)에 나와 문안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무릇 사람이 비록 장성한 나이로 있더라도 거상을 하면 반드시 마음이 허하 고 기운이 약하게 되는데, 지금 주상께서 나이 어리시고 혈기가 정하지 못하 시니, 청컨대 타락(醜酪)159) 을 드소서. 또 바야흐로 여름 달이어서 천기가 찌고 무더우니, 또한 청컨대 소주(燒酒)를 조금 드소서.”</p>	<p>皇甫仁、南智、金宗瑞、鄭棻、李 穰、許詡、姜孟卿等詣朝， 啓廳問安， 仍啓曰：“凡人雖在壯盛之年， 居憂則 必至心虛氣弱， 今上幼沖， 血氣未定， 請進酪。 且方夏月， 天氣蒸溽， 亦請 少進燒酒。” 從之。</p>

와 문안하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p>端宗 1卷, 卽位年 (1452 壬申 / 명 경태 (景泰) 3年) 6月 7日 (戊辰) 1번째기사</p> <p>70 이상 늙은 신하에게는 고기를 권하고 여러 대군과 하연·남지 등에게는 술을 주라고 하다</p>	<p>세조가 승정원에 나와 말하기를, “때가 바야흐로 습하고 더워서 늙은 대신이 새벽이나 밤이나 공청에 있음으로 인하여 혹 병이 날까 염려되니, 고기를 권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강맹경 등이 말하기를, “대신이 나이 70이 못된 자가 누가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물며 선왕께서 밝게 이루어 놓은 법이 있으니 어기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70 이상 늙은 신하라면 세종께서도 또한 일찍이 고기를 권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조가 말하기를, “그러면 마땅히 이 예에 의거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강맹경이 아뢰기를, “판돈녕으로 치사(致仕)한 최사의(崔士儀)·중추원 사(中樞院使) 전흥(田興)은 나이 80이 지났고, 영의정으로 치사(致仕)한 하연(河演)·공조 판서(工曹判書) 최부(崔府)는 나이 80에 이르렀고, 우의정 김종서(金宗瑞)는 나이 이미 70이고, 좌의정 남지(南智)는 본래 풍병이 있으니 모두 고기를 권하여야 합니다.” 하고, 또 승정원의 의논으로 아뢰기를,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는 어려서부터 병이 있어 아위고 약하며,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는 종실의 어른인데 나이 60에 가까우니, 아울러 고기를 권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또 선왕조(先王朝)에서 장마 때에는 반드시 종실과 늙은 신하에게 술을 주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술은 주는 것은 가하나 고기를 권하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은가? 양녕 대군과 효령 대군은 세종 때에 있어서는 어찌 하였는가?” 하였다. 강맹경이 아뢰기를,</p>	<p>戊辰/世祖詣承政院曰：“時方溽暑，慮老大臣因早夜在公，或生疾病，勸肉，何如？”姜孟卿等曰：“大臣年未七十者，誰肯食？況先王明有成憲，不可違也。若七十以上老臣，則世宗亦嘗勸肉。”世祖曰：“然則當據此例以啓。”孟卿啓曰：“判敦寧致仕崔士儀、中樞院使田興年過八十，領議政致仕河演、工曹判書崔府年至八十，右議政金宗瑞年已七十，左議政南智素有風疾，皆當勸肉。”又以承政院之議啓曰：“孝寧大君補，自少有疾羸弱，讓寧大君禔，宗室之長，年近六十，竝勸肉，何如？且先王朝，霖霖之時，則必賜酒于宗室及老臣。”傳曰：“賜酒則可矣，勸肉無乃太速乎？讓寧、孝寧，在世宗時如何？”孟卿啓曰：“世宗之喪，十四五日後，七十以上者，皆勸肉，今非太速也。況禮曰：‘七十惟衰麻在身。’是以老而不成喪也。”傳曰：“七十以上及南智等可勸肉，仍賜酒于諸大君及演、智、仁、宗瑞。”又啓曰：“讓寧、孝寧，則昭憲王后之喪，過一月勸</p>

	<p>“세종의 상사에는 14, 5일 뒤에 70 이상인 자에게 모두 고기를 권하였으니, 지금은 너무 빠른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예(禮)에 말하기를, ‘70에는 오직 쇠마(衰麻)171) 가 몸에 있을 뿐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늙었기 때문에 상(喪)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p> <p>하였다. 전교하기를,</p> <p>“70 이상과 남지 등에게는 고기를 권하고, 인하여 여러 대군과 하연·남지·황보인·김종서에게 술을 주라.”</p> <p>하였다. 또 아뢰기를,</p> <p>“양녕 대군·효령 대군은 소헌 왕후(昭憲王后) 상사에 한 달을 지나서 고기를 권하였고, 세종 대왕의 상사에는 졸곡 뒤에 고기를 권하였습니다.”</p> <p>하였다.</p>	<p>肉, 世宗大王之喪, 卒哭後勸肉。”</p>
<p>端宗 2卷, 卽位年 (1452 壬申 / 명 경태 (景泰) 3年) 7月 12日 (癸卯) 1번째기사</p> <p>세조와 여러 대신들이 육즙을 진어할 것을 여러 번 청하니 마지 못해 운허하다</p>	<p>세조가 효령 대군 이보(李補)·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금성 대군(錦城大君) 이유(李瑜)·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과 황보인·남지·김종서·정분·이양·윤형·강맹경과 더불어 경회루 남문에 나아가서 세조가 아뢰기를,</p> <p>“전자에 정부 대신 등이 육즙을 진어(進御)하도록 여러 번 청하였으나 유윤(兪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종실 대신이 모두 정부 대신들과 함께 진어하시도록 권하니, 청컨대 유음을 내려 주소서. 대저 몸이 노쇠하는 것과 나이 어린 것은 그 기운이 한가지인데, 《예기(禮記)》에, ‘70이 된 자는 오직 쇠마(衰麻)만을 몸에 걸릴 뿐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몸이 노쇠하면 상(喪)을 이루지 아니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제 유충(幼沖)하시어 기운이 노쇠한 것과 같으시고, 또 몸이 편치 아니한 증후(證候)가 있지 않습니까? 또 조종(祖宗)께서 분명히 유훈(遺訓)이 계셨으니, 청컨대 모름지기 육즙을 조금이라도 드소서.”</p> <p>하니, 전지하기를,</p>	<p>癸卯/世祖與孝寧大君補、臨瀛大君璆、錦城大君瑜、永膺大君琰、皇甫仁、南智、金宗瑞、鄭棓、李穰、尹炯、姜孟卿詣慶會樓南門。世祖啓曰：“前者政府大臣等，累請進肉汁，未蒙兪允，今宗室大臣，偕政府大臣，勸進，請賜兪音。大抵衰老、幼稚，其氣一也，《禮》：七十者，唯衰麻在身而已。”是以衰老，而不成喪也。況今幼沖，氣同衰老，又有未寧之證，且祖宗明有遺訓，請須小進肉汁。”傳曰：“予無病，飲食如常，安可食肉乎？”世祖更啓曰：“古人云：‘行父母之遺體，</p>

<p>“내가 병이 없고 음식도 평상시와 같이 하니, 어찌 고기를 먹겠는가?” 하였다. 세조가 다시 아뢰기를, “옛 사람이 이르기를, ‘부모의 유체(遺體)를 움직일 적에 감히 공경하지 않겠는가?’ 하였는데, 더구나 인주(人主)의 한 몸은 위로 종사(宗社)에 관계되고 아래로 생령(生靈)에 관계되니, 전하께서도 또한 사사로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종친·대신이 합사(合辭)하여서 상청(上請)하는데, 비록 의에는 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진실로 마땅히 힘써 따라야 하는데, 하물며 사리가 지당한 일이겠습니까? 받드시 윤택하시기를 기다린 뒤에 물러가겠습니다.”</p> <p>하고, 황보인 등이 또 아뢰기를, “비록 상인(常人)의 장성(壯盛)한 기운으로서도 만일 쇠질(衰絰)을 만나면 날로 파리하고 수척함에 이르는데, 하물며 주상께서 유충(幼沖)하시어 혈기가 강장하시지 못하여 한 나라의 신민의 주인이 되셨으니, 맡은 책임이 지극히 중합니다. 만일 병이 없다고 하여 삼가지 아니하면 병이 나서 후회가 막심할 것입니다. 소사(疏食)259) 로 상제를 지키는 효자의 조그마한 행실이요, 몸을 편안히 하고 나라를 보전함은 효자의 큰 절개입니다. 이제 주상께서 원대한 생각을 돌아보지 않으시니, 신 등은 애통하고 민망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의 종친들은 모두 전하의 숙부(叔父)이니, 《예기(禮記)》에, ‘존장(尊長)이 강권하면 조금 먹는 것도 괜찮다.’ 하였으니, 청컨대 모름지기 윤택하소서.”</p> <p>하니, 또한 듣지 않았다. 세조가 말하기를, “마땅히 친히 들어가서 청하겠다.”</p> <p>하니, 모두 이르기를, “좋습니다.”</p> <p>하였다. 세조가 강맹경으로 하여금 육즙과 말린 고기[乾肉]를 갖추게 하고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슬프게 흐느끼면서 애통하여 하니, 좌우에서 세조에게 이</p>	<p>敢不敬乎?’ 汎人主一身， 上係宗社， 下關生靈， 殿下亦不得而私之， 今宗親大臣， 合辭上請， 雖不合義， 固當勉從， 況事理至當， 必待允許而後退。” 仁等又啓曰：“雖以常人盛壯之氣， 若遇衰絰， 則日至羸瘦。 況主上幼沖， 血氣未壯， 爲一國(神) [臣] 民之主， 所托至重。 若以爲無病， 而不謹， 則不豫之， 後悔無及矣。 疏食守喪， 孝子之細行， 安身保國， 孝子之大節。 今主上， 不顧遠慮， 臣等不勝痛悶。 且今來宗親， 皆殿下叔父， 《禮》：‘尊長強之， 則稍食可也。’ 請須允許。” 亦不聽。 世祖曰：“當親入請焉。” 皆曰：“可。” 世祖使孟卿， 備肉汁、乾肉， 以扇掩面， 悲咽哀動。 左右 [謂] 世祖曰：“若不得請， 則理無退去。” 乃再請曰：“臣等願入見， 有所啓焉。” 傳曰：“子實無病， 故不允， 然迫群請， 當進矣。” 璆、瑜及大臣等， 猶俟進肉乃退。 世祖起曰：“其速退焉， 王者無戲言。” 既出， 仁、宗瑞致謝於世祖曰：“大君之功也。”</p>
--	--

	<p>르기를, “만일 청을 얻지 못하면 도리가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곧 다시 청하여 말하기를, “신 등이 들어가 뵈기를 원합니다. 아될 것이 있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나는 사실 병이 없다. 그러므로 윤희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청하는데 쫓겨서 마땅히 들겠다.” 하였다. 이구(李璆)·260) 이유(李瑜)261) 와 대신들도 오히려 육선(肉膳)들기를 기다렸다가 물러가니, 세조가 일어나 말하기를, “속히 물러가자. 왕은 희언(戲言)이 없는 것이다.” 하고 나가니, 황보인과 김종서가 세조에게 치사하여 말하기를, “대군(大君)의 공(功)이오.” 하였다.</p>	
<p>단종 2권, 즉위년 (1452 임신 / 명 경태 (景泰) 3년) 7월 26일 (정사) 1번째기사 황보인·남지·김종서 등이 사신을 영접하는 예를 의논하여 아뢰다</p>	<p>황보인·남지·김종서·정분·이양·좌참찬 윤희·우참찬 허후·예조 판서 이승손·참판 정척·도승지 강맹경 등이 사신(使臣)을 영접하는 예를 의논하여 아뢰기를, “1. 이제 사신의 오는 것이 졸곡(卒哭) 전에 있으면 원접사(遠接使)305) 는 길복(吉服) 차림으로 영명(迎命)하고 숙배(肅拜)하며, 상회례(相會禮)와 연향(宴享)·접대에는 모두 소복(素服)을 착용하고, 상시(常時)와 길을 다닐 때에는 최복(衰服)을 착용할 것. 1. 외방(外方)의 사신과 수령은 조복(朝服) 차림으로 영명(迎命)하고, 그 나머지 접대할 때의 복색(服色)은 위와 같이 할 것. 1. 외방에서 연향할 때에 사신(使臣)인 경우에는 상(床)에 기명(器皿)과 화초(花草)와 어육을 배설(排設)하기를 아울러 전례에 의하고, 원접사·선위사(宣慰使)306) 인 경우에는 소찬(素饌)을 쓸 것.</p>	<p>丁巳/皇甫仁、南智、金宗瑞、鄭棨、李穰、左參贊尹炯、右參贊許詡、禮曹判書李承孫、參判鄭陟、都承旨姜孟卿等議迎接使臣之禮以啓: “一, 今使臣之來, 在卒哭之前, 則遠接使, 以吉服, 迎命肅拜。 如相會禮及宴享接待時, 皆着素服, 常時及行路時, 着衰服。 一, 外方使臣及守令, 以朝服迎命, 其餘接待時, 服色同上。 一, 外方宴享時, 使臣則床排器皿、花草、魚肉, 竝依前例, 遠接使、宣慰使, 則用</p>

	(후략)	素饌。(후략)
<p>단중 2권, 즉위년 (1452 임신 / 명 경태 (景泰) 3년) 7월 26일 (정사) 3번째기사 예조에서 영조례를 의논하여 아뢰다</p>	<p>예조에서 영조례(迎詔禮)309) 를 의논하여서 아뢰기를, “1. 영명(迎命)이 졸곡 전에 있으면 전하는 최복(衰服) 차림으로 모화관에 나아가되, 익선관(翼善冠)·무늬[紋]가 없고 흉배(胸背)가 없는 아청 단령(鴉靑團領)·검은 정(靛)310) ·흰 옥대·검은 화(靴)를 착용하고, 졸곡 뒤에 있으면 소복(素服)과 흰 의장(儀仗)으로 모화관에 나아가되, 아청라(鴉靑羅) 흉배 단령·붉은 정(靛)·옥대(玉帶)·길의장(吉儀杖)을 착용하고, 상회례와 연향 같은 것은 졸곡 전후에 모두 소복을 착용한다. 1. 졸곡 전에는 군신(群臣)들이 최복 차림으로 모화관에 나아가되, 조복(朝服) 차림으로 영명(迎命)하고, 소복(素服) 차림으로 사례(私禮)를 행하고, 태평관에 시위할 때에는 오직 근시와 차비원(差備員)311) 만이 소복을 착용하고, 졸곡 뒤에 있으면 소복 차림으로 모화관에 나아가되, 그 영명(迎命)하여 예를 행할 때에는 복장이 위와 같다. 1. 졸곡(卒哭) 전 연향에는 전하는 소선(素膳)312) 을 쓰고, 졸곡 뒤에는 육선(肉膳)313) 을 쓰고, 사신은 졸곡 전후에 아울러 고기[肉]를 쓰고, 종친과 의정부와 육조(六曹)의 연회(宴會)도 이와 같다. 1. 연향(宴享)에는 졸곡 전후에 아울러 음악을 사용한다.” 하였다.</p>	<p>禮曹議迎詔禮以啓：“一， 迎命在卒哭前， 則殿下以衰服， 詣慕華館， 用翼善冠、無(文) [紋] 無胸背鴉靑團領、黑靛、素玉帶、黑靴； 在卒哭後， 則以素服素儀仗， 詣慕華館， 用鴉靑羅胸背團領、紅靛、玉帶、吉儀仗， 如相會禮及宴， 享卒哭前後， 竝用素服。 一， 卒哭前， 則群臣以衰服， 詣慕華館， 朝服迎命， 素服行私禮； 太平館侍衛時， 唯近侍及差備員着素服； 在卒哭後， 則以素服， 詣慕華館， 其迎命行禮時， 服同上。 一， 卒哭前宴享， 則殿下用素膳， 卒哭後， 用肉膳， 使臣則卒哭前後竝用肉， 宗親、議政府、六曹宴同。 一， 宴享， 卒哭前後， 竝用樂。”</p>
<p>단중 3권, 즉위년 (1452 임신 / 명 경태 (景泰) 3년) 9월 1일 (경인) 2번째기사 문종의 재궁을 현궁에 안치하다</p>	<p>축시(丑時)에 유사(攸司)에서 천전(遷奠)489) 을 올리니, 백관들이 들어와서 제자리에 나아가 부복(俯伏)하고 곡하고 네 번 절하고 몸을 폈다가 꿇어앉았다. 대전관(代奠官)이 향안(香案) 앞에 나아가서 삼상향(三上香)하고 술을 따라서 영좌(靈座) 앞에 드렸다. 대축(大祝)이 축문(祝文) 읽기를 마치니 백관들이 부복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하고,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폈다. 유사에서 찬(饌)을 거두고 내시가 고명(誥命)과 시책보(諡冊寶)를 받들어 집사자(執事者)에게 주어 각각 요여(腰輦)에 안치하고 향로(香爐)와 향합(香合)을 받</p>	<p>丑時， 攸司進遷奠， 百官入就位， 俯伏、哭、四拜、平身、跪。 代奠官詣香案前， 三上香酌酒， 奠于靈座前。 大祝讀祝文訖， 百官俯伏、哭、盡哀、四拜、興、平身， 攸司撤饌， 內侍奉誥命及諡冊寶， 授執事者， 各安於腰輦， 奉香爐、香合， 授內直別監， 置於香</p>

들어 내직 별감(內直別監)에게 주어 향정(香亭)에 놓았다. 대축이 혼백함(魂帛函)을 받들어 요여(腰輦)에 안치하고 우주궐(虞主匱)를 그 뒤에 안치하고, 받들어 길유궁(吉帷宮)에 나아가서 영좌(靈座)에 모셨다. 【길유궁은 영장전(靈帳殿) 서쪽에 있다.】 내시가 애책(哀冊)을 받들어 요여에 안치하고, 우의정은 수건을 받들고 나아가 재궁(梓宮)을 닦고 아울러 관의(棺衣)를 털었다. 충의위에서 명정을 받들어 앞을 인도하고 좌의정은 여재궁관(昇梓宮官)을 거느리고 재궁을 받들어 순(輶)490)에 올려 놓고, 충의위에서 삼(髮)491)으로 재궁을 가리웠다. 여사(昇士)가 순(輶)을 받들어 장차 현궁(玄宮)492)에 나아가려 하자, 궁인이 모두 곡하고 종친과 백관이 모두 곡하면서 따라 봉사위(奉辭位)에 이르렀다. 순(輶)이 현궁 문 밖에 이르러서 재궁을 받들어 대관(大棺)에 안치하고 뚜껑을 덮고 임(衽)493)을 설치하고 관의를 덮고 명정을 취하고 깃대[杠]를 버리고 그 위에 놓았다. 윤여(輪輦)494)로 재궁을 받들어 연도(羨道)495)로 들어가서 현궁의 탑(榻)496)위에 북쪽을 머리로 하여 안치했다. 영의정이 애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재궁 서쪽에 드리고, 다음으로 증옥(贈玉)497)과 증백함(贈帛函)498)을 가지고 남쪽에 드렸다. 국장 도감 제조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삼(髮)을 재궁 양쪽에 세우고, 명기(明器)·복완(服玩)499)등을 받들어 각각 차례로 편리한 대로 진열하여 향(行)과 열(列)을 이루게 하되 다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문비석(門扉石)500)밖에 편방(便房)501)을 지어 간직하였다. 처음 재궁이 현궁에 들어가자 백관이 부복하여 곡하고 네 번 절하고 몸을 폈다가 또 부복하여 곡하여 슬픔을 다하고, 네 번 절하고 몸을 펴서 봉사(奉辭)502)를 마치고 나왔다. 산릉 도감 제조가 그 소속을 인솔하여 현궁을 닫아 잠그고, 영의정과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가 그 닫아 잠그는 것을 감독했다. 우의정이 흙 아홉 삽을 덮고, 산릉 도감이 그 작공(作工)503)들을 거느리고 삽질을 계속하여 일을 마치고 지식(誌石)을 내렸다. 서운관(書雲觀) 관원이 현궁의 왼쪽에서 후토제(后土祭)504)를 지내고 대여(大輦) 및

亭。大祝奉魂帛函，安於輦，虞主匱置其後，奉詣吉帷宮，安於靈座。【吉帷宮在靈帳殿之西。】內侍奉哀冊，安於腰輦。右議政奉巾，進拭梓宮并拂棺衣，忠義衛奉銘旌，前導，左議政率昇梓宮官，奉梓宮升輶，忠義衛以髮障梓宮，昇士奉輶將即玄宮，宮人皆哭，宗親及百官皆哭。從至奉辭位，輶至玄宮門外，奉梓宮安於大棺，加蓋、設衽，覆以棺衣，取銘旌去杠，置於其上，以輪輦奉梓宮，入自羨道，安於玄宮榻上，北首。領議政以哀冊入，奠於梓宮之西，次以贈玉及贈帛函奠於南。國葬都監提調率其屬，以髮樹於梓宮，兩傍奉明器、服玩，各以次逐便陳之，使有行列，其不盡入者，門扉石外作便房藏之。初，梓宮入玄宮，百官俯伏、哭、四拜、平身，又俯伏、哭、盡哀、四拜、平身，奉辭訖出。山陵都監提調率其屬，鎖閉玄宮，領議政及司憲府執義監鎖閉。右議政覆土九鍤，山陵都監率其作工，續以終事，下誌石。書雲觀官祠后土於玄宮之左，大輦及輶之屬，焚於柏城內庚地。明器：笱八、【容三升，黍一、稷一、麥

순(輻)에 딸린 것들은 백성(栢城)505) 안의 경지(庚地)에서 불태왔다.
 명기(明器)506) 는 소(筍)507) 8개, 【3되[升]가 드는데, 서(黍) 1개, 직(稷) 1개, 맥(麥) 1개, 양(梁) 1개, 도(稻) 1개 마(麻) 1개 숙(菽) 1개, 소두(小豆) 1개이다.】 와옹(瓦甕) 3개, 【3되가 드는데 혜(醢) 1개, 해(醢) 1개, 가루[屑] 1개이고, 강계(薑桂)의 가루이다.】 와무(瓦甗) 2개, 【3되가 드는데, 예(醴) 1개, 청주(淸酒) 1개이다.】 와조(瓦竈) 2개, 와부(瓦釜) 2개, 와증(瓦甑) 1개, 와정(瓦鼎) 12개, 와준(瓦尊) 4개, 와병(瓦瓶) 1개, 포작(匏勺) 3개, 와작(瓦爵) 1개, 와잔(瓦盞) 3개, 변(邊) 12개, 두(豆) 12개, 와보(瓦篋) 2개, 와궤(瓦篋) 2개, 와특종(瓦特鍾) 1개, 와종(瓦鍾) 16개, 와특경(瓦特磬) 1개, 와경(瓦磬) 16개, 와훈(瓦壎) 1개, 지(箎) 1개, 금(琴) 1개, 슬(瑟) 1개, 생(笙) 1개, 우(竽) 1개, 관(管) 1개, 축(祝) 1개, 어(敌) 1개, 절고(節鼓) 1개, 우(羽) 1개, 약(籥) 1개, 간(干) 1개, 척(戚) 1개, 와방향(瓦方響) 16개, 적(笛) 1개, 통소(洞簫) 1개, 필률(篳篥) 1개, 아쟁(牙箏) 1개, 대쟁(大箏) 1개, 비파(琵琶) 1개, 교방고(敎坊鼓) 1개, 박(拍) 1개, 장고(杖鼓) 1개, 향필률(鄉篳篥) 1개, 대금(大琴) 1개, 향비파(鄉琵琶) 1개, 현금(玄琴) 1개, 가야금(伽倻琴) 1개, 목공인(木工人) 33명, 목가인(木歌人) 8명, 동궁(彤弓) 1개, 동시(彤矢) 8개, 착(箘) 1개, 갑옷[甲] 1개, 투구[冑] 1개, 간(干) 1개, 곽(戈) 1개, 향로 1개, 향합(香合) 1개, 식안(食案) 1개, 와반鉢(瓦飯鉢) 1개, 와시접(瓦匙楪) 1개, 와羹접(瓦羹楪) 1개, 와찬접(瓦饌楪) 9개, 와적접(瓦炙楪) 1개, 와소채포해접(瓦蔬菜脯醢楪) 12개, 식탁 1개, 숟가락[匙] 1개, 젓가락[筯] 1개, 개(蓋) 1개, 궤(几) 1개, 장(杖) 1개, 관반(盥槃) 1개, 세수대야[盥匱] 1개, 타우(唾盂) 1개, 혼병(溷瓶) 1개, 수기(漉器) 1개, 목노비(木奴婢) 각 50개, 목안마(木鞍馬) 2개, 목산마(木散馬) 2개이었다. (후략)

一、梁一、稻一、麻一、菽一、小豆一。】瓦甕[甕]三、【容三升，醢一、醢一、屑一、薑桂之屑。】瓦甗二、【容三升，醴一、淸酒一。】瓦竈二、瓦釜二、瓦甑一、瓦鼎十二、瓦尊四、瓦瓶一、匏勺三、瓦爵一、瓦盞三、邊十二、豆十二、瓦篋二、瓦篋二、瓦特鍾一、瓦鍾十六、瓦特磬一、瓦磬十六、瓦壎一、箎一、琴一、瑟二、笙一、竽一、管一、祝一、敌一、節鼓一、羽一、籥一、干一、戚一、瓦方響十六、笛一、洞簫一、篳篥一、牙箏一、大箏一、琵琶一、敎坊鼓一、拍一、杖鼓一、鄉篳篥一、大琴一、鄉琵琶一、玄琴一、伽倻琴一、木工人三十三、木歌人八、彤弓一、彤矢一、箘一、甲一、冑一、干一、戈一、香爐一、香合一、食案一、瓦飯鉢一、瓦匙楪一、瓦羹楪一、瓦饌楪九、瓦炙楪一、瓦蔬菜脯醢楪十二、食卓一、匙一、筯一、蓋一、几一、杖一、盥槃一、盥匱一、垂盂一、溷瓶一、漉器一、木奴婢各五十、木鞍馬二、木散馬二。
 (후략)

<p>단종 4권, 즉위년 (1452 임신 / 명 경태 (景泰) 3년) 12월 25 일(계축) 1번째기사 의원의 시취 약재 등 에 관한 경창부 윤 이 선제의 상서문</p>	<p>(전략) 이선제(李先齊)가 또 상소(上疏)하기를, “신이 금년 봄에 천식(喘息)이 심하여 춘추관(春秋館)과 서연 빈객(書筵賓客)의 직임을 벗고, 여름을 편안히 지내면서 《신농본초(神農本草)》를 고열(考閱)하였더니, 약에는 상품(上品)·중품(中品)·하품(下品)의 삼품(三品)이 있는데, 상약(上藥) 1백 20종은 군주격(君主格)으로 양명(養命)857) 을 맡아 보며 하늘에 부응하여 독성이 없으며, 많이 또 오래 복용하여도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며, 몸을 가볍게 하고 기운을 더하게 하여 늙지 않고 오래 살게끔 하고자 합니다. 중약(中藥) 1백 20종은 신하격(臣下格)으로 양성(養性)858) 을 맡아 보며 사람에 부응하여 각기 마땅한 것을 짐작하여 병을 막고, 허약(虛弱)함을 보충하게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약(下藥) 1백 25종은 좌사격(佐使格)으로 치병(治病)을 맡아 보며 땅에 부응하여 독이 많아서 오래 복용할 수 없으며, 한열(寒熱)과 사기(邪氣)를 제거하고, 병의 쌓임을 깨뜨려서 질병(疾病)을 고치게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초(本草)》의 서설(序說)입니다. 대저 천문동(天門冬)859) 은 상약 중의 으뜸입니다. 《본초(本草)》에 이르기를, ‘맛이 달고 평탄하며 한기(寒氣)가 많고 독이 없으며 심한 풍기(風氣)·습기(濕氣)와 국소 마비(局所痲痺)를 막고 골수(骨髓)를 강하게 하고 삼충(三蟲)860) 을 죽여서 그 복시(伏尸)861) 를 제거하며, 폐(肺)의 기운을 보호 안정시키고, 한열(寒熱)을 제거하고, 거친 피부를 보양하며, 기력(氣力)을 더하게 하고, 소변을 편하게 하며 냉하면서도 능히 보신(補身)을 하여 오래 복용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기력을 더하여 수명(壽命)을 연장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손진인기(孫真人記)》에 이르기를, ‘천문동으로 술을 담가 먹으면 징가(癥瘕)862) 가 모이는 것과 풍담(風痰)863) 으로 발광하는 것과 삼충(三蟲)·복시(伏尸)를 없이하고, 습기와 마비를 제거하며 몸을 가볍게 하고 기력(氣力)을 더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백일(百日)을 먹지 않아도 견디게 하며, 나이를</p>	<p>(전략) 先齊又上疏曰：“臣今春，以喘滿病，得解春秋館、書筵賓客之任，涉夏安坐，考閱《神農本草》，藥有上中下三品，而上藥一百二十種，爲君主，養命，以應天無毒，多服久服，不傷人欲，輕身益氣，不老延年也；中藥一百二十種，爲臣主，養性，以應人斟酌，其宜欲遏病，補虛羸也；下藥一百二十五種，爲佐使，主治病，以應地多毒，不可久服，欲除寒熱、邪氣，破積聚癥疾，此《本草》序說也。夫天門冬，上藥之上也，《本草》云：‘味甘平，有大寒無毒，有諸暴風濕、偏痺，強骨髓，殺三蟲，去伏尸，保定肺氣，去寒熱，養飢膚，益氣力，利小便，冷而能補，久服輕身，益氣延年。’《孫真人記》云：‘天門冬釀酒服之，去癥瘕、積聚風痰、顛狂、三蟲、伏尸，除隲痺，輕身益氣，令人不飢百日，還年却老。’臣曾觀世宗內出秘方于春秋館，有餌天門冬方，略曰：‘天門冬令人長生不死，氣力百倍，長服生肌填、骨髓，輕體聰明，延年無極，可以升仙，男女皆可服，八十以上服之，便有子，</p>
--	---	--

돌려 늙음을 물리친다.’ 하였습니다. 신이 일찍이 세종(世宗)께서 춘추관에 내린 비방(秘方)을 보건대, 천문동은 사람으로 하여금 장생 불사(長生不死)하게 하고, 기력을 백배하게 하며, 오래 복용하면 살이 살아나며 골수(骨髓)를 채워 주고, 몸이 가벼워지며 총명해지고 수명을 크게 연장하여 끝이 없으니 신선(神仙)으로 올라갈 만하다. 남녀(男女)가 모두 복용할 수 있으며, 80세 이상이 복용하면 문득 아들을 낳게 되고, 방실(房室)이 쇠퇴할 줄 모르며, 1백 명의 여인을 거느릴 수 있고, 방실을 끊은 사람은 선인(仙人)이 될 수 있다. 7,8월에 그 뿌리를 캐는데 정월·2월·3월에 캐는 것이 좋다. 이때를 지나면 효과가 없다. 그 흙을 씻어내고, 껍질을 벗겨서 가운데 있는 심만을 떼어 내어도 되고, 또한 껍질을 붙이고 썰어서 썰도 되는데, 이를 벌에 말려 빵아서 식후(食後)에 술에 타서 2방촌(方寸)의 손갈로 하루에 세 번씩 복용하는데, 많이 먹으면 더욱 좋다. 그 뿌리를 빵아서 즙(汁)을 짜내어 술을 담가서 이 가루약과 먹으면 더욱 좋다. 오래 복용하면 사람이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천지와 더불어 서로 마치게 되며, 더 오래 먹으면 신명(神明)에 통하고, 늙은 사람은 다시 젊어지고 흰 머리가 다시 검어지며 빠진 치아(齒牙)가 다시 난다. <약을 먹은 지> 20일 만에 <그 효과를> 알 수 있고, 30년만 먹으면 승천(昇天)을 하며, 피부가 팽팽해지고 얼굴빛에 광택이 나고 귀와 눈이 총명해져 아들을 많이 낳게 된다.’ 하였고, 또 하나의 약방문에는, ‘천문동 1백 20근을 다듬어서 벌에 말리면 30근을 얻을 수 있는데, 곱게 빵아서 체로 쳐서 식후에 2방촌(方寸)의 손가락으로 복용하는데, 매양 식사가 끝나면 곧 복용을 하고 하루에 열 번 복용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하였고, 《충화자(沖和子)》에 말하기를, ‘천문동은 방문이 많으나 모두 좋고 <약효는> 대략 비슷하다. 뿌리로 참 즙(汁)을 내어 술을 담가서 이 가루약과 먹으면 더욱 좋고, 또한 벌꿀을 섞어 환약으로 만들어 <하루에> 열 다섯 알을 먹어도 좋다.’ 하였고, 또 하나의 약방문에는 ‘천문동 30근을 잘 씹어서 비단 주머니에 담고, 또 천

房室不知衰極，可御百女，絕房室者，可以度世。以七八月採其根，若正二三月亦佳，過此無味，洗去其土，亦可剝皮去中心，亦可合皮切蒸暴，乾搗之，以食後酒，服二方寸匙日三，能多愈善，搗其根，筭取汁以釀酒，以服此散，益好。久服之，令人入水不濡，與天地相畢，久久通神明，老者更少，白髮更黑，落齒更生，二十日始知之，三十年而昇天，令人皮膚盈，顏色光澤，耳目聰明，多生子。’ 又一方云：‘天門冬百二十斤爲劑，暴乾之，得三十斤，熟搗下篩，食訖服二方寸匕，每食訖輒服之，一日能十服，益善。’ 沖和子曰：‘天門冬多方竝好，大略相似，延根取眞，汁以釀酒，服散尤佳，亦可密和作丸，服十五。’ 凡又一方云：‘天門冬三十斤咬咀，絹囊盛之，又以天門冬汁一斗復釀之，此釀一石法耳。內麴如常法，內釀於器底，乃下飯封之，三十日絞去滓，飲之勿大醉，病瘥，身體玉潤，又以此酒服散，大佳。’ 天門冬生高地，根短而味恬，氣香者善，其生水鹵下地者，葉細似蘊而微黃，根長而味多，苦氣臭者下，亦可服耳。 蓋

문동 즙 1두(斗)로써 다시 술을 담그는데, 이것이 쌀 1섬을 담그는 법이다. 보통 술 담글 때와 같은 양의 누룩을 그릇 밑바닥에 넣고 밥을 넣은 후 30일 동안 봉해 두었다가 찌꺼기를 짜내고 마시되, 크게 취하지만 않으면 병이 낫고 몸에 윤기가 생긴다. 또 이 술로써 <천문동> 가루약을 먹으면 대단히 좋다.' 하였습니다. 천문동은 높은 지대에서 나고 뿌리가 짧고 맛이 달고 향기가 나는 것이 좋으며, 물이 짜고 낮은 땅에서 나는 것은 잎이 가늘고 수초(水草)같이 약간 누런 빛깔이 나며, 뿌리가 길고 맛이 쓰고 냄새가 나는 것은 하품(下品)이나 먹을 수는 있습니다. 대개 이 비방(秘方)은 춘추관에 보관되어 있어서 지금 또한 상고할 수 있으며, 신이 지금 《본초여방(本草與方)》을 보니, 병 없이 오래 살 수 있고 또 아들을 많이 낳는다는 말이 있기에, 이 처방을 전하게 진달(進達)하고자 한 것이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 듣건대, 전의감에서 부자리중탕(附子理中湯)을 조제(調劑)하여 올린다 합니다. 부자(附子)864) 는 맛이 쓰고, 따뜻하며 열을 많이 내고 큰 독이 있으며, 건강(乾薑)865) 도 맛이 쓰고, 따뜻하며 열을 많이 냅니다. 대개 이 두 약은 모두 《본초(本草)》에 있어서 중·하품이며, 약이 마르고 열이 나면 독이 있는 것입니다. 50세 이후의 기력이 쇠한 사람은 오히려 복용할 만하지만, 전하는 춘추가 장성해 가고 혈기도 성해져 가는데 만약 이 약을 복용하면 오장 육부(五臟六腑)가 조갈(燥渴)해져서 12맥(脈)이 혹 흐르지 않아서 3백 60마디에 혹 통하지 않음이 있을까 두려우니, 삼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천문동 같은 것은 전라도(全羅道) 여러 고을의 도처에 있습니다. 춘추로 파서 채취하여 별에 말리지 말고 생약(生藥)으로 찌서 바치게 하여 즙(汁)을 짜내어 술을 담가서 매일 아침 올려서 술과 가루를 함께 복용하고, 또 몇 년 뒤에는 계속 벌꿀로 환약을 만들어 올리면 냉(冷)하되 보신이 되고, 몸이 가볍고 기력이 더해지며, 맥이 고르고 병이 없어 수명이 길어지고, 마침내 아들을 많이 낳는 경사가 있을 것이니,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는 신의 작은 정성

此秘方，藏在春秋館，今亦可考。臣今觀《本草與方》，有無疾，延年長生，且有多子之語，欲以此方陳達于殿下，有日矣。今聞，典醫監劑進附子理中。《本草》云，附子味辛，溫大熱大有毒，乾薑味辛，溫大熱，蓋此二藥，皆在《本草》中下之品，藥之燥熱，有毒者也。五十以後，氣衰之人，猶可服也，殿下春秋向壯，血氣向盛，若服此藥，則五臟、六腑爲之燥渴，十二脈恐或不流注，而三百六十節，或有不通矣，可不慎哉？若天門冬，全羅諸州，處處皆有之，春秋掘而採之，勿得暴乾，以生藥齋進，笮而取汁釀酒，每朝進酒服散。又於數年之後，繼進蜜丸，則冷而能補，輕身益氣，脈和而無疾，延年而益壽，終有多男之慶，豈不善哉？伏望，殿下諒臣微誠，下都堂，擬議施行。”留中不下。

	<p>을 양찰(諒察)하여 도당(都堂)에 내리어 의의(擬議)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궁중에 내버려두고 내려 주지 않았다.</p>	
<p>단종 4권, 즉위년 (1452 임신 / 명 경태(景泰) 3년) 12월 26일(갑인) 4번째기사 외인이 사사로이 음식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궁인의 출입은 승정원이 알게 하도록 하다</p>	<p>허후(許詡)가 아뢰기를, “수랏간[御廚]은 모름지기 엄해야 합니다. 금방(禁放)하는 율문(律文)에 외인(外人)이 어주에 함부로 들어가면 그 죄가 사형(死刑)에 해당합니다. 하물며 외인이 몰래 익힌 음식을 사사로이 올리는 것이겠습니까? 바라건대 지금부터는 외인이 익힌 음식을 갖추어 사사로이 올릴 수 없게 하소서. 세종조(世宗朝)에 가끔 종친들 가운데 사사로이 음식물을 올리는 자가 있었으나, 그러나 세종께서는 재위(在位)한 지가 오래고 또 <사리에> 밝았으니, 마땅히 조량(照量)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주상께서는 어리시니, 청컨대 외인이 사사로이 올리는 것을 금하소서. 만약 주상께서 다른날 고금(古今)의 사변(事變)을 널리 알게 되면, 신 등이 오늘 계청한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옛부터 궁궐에의 출입은 모름지기 엄하였습니다. 세종조에는 만약 시녀(侍女)가 장차 그의 사제(私第)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의식(儀式)을 갖추어 나가게 하였고, 자고 들어오는 일이 없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궁궐 안의 일이 새어나가는 것을 염려하여서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고, 드디어 진선문(進膳門)869) 에 방(榜)을 붙이기를, “모든 사람은 사사로이 물선(物膳)을 올리지 못하며, 또 궁인(宮人)의 출입은 반드시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 하였다.</p>	<p>許詡啓曰：“御廚必嚴，禁防律文，外人擅入御廚，則其罪抵死。況外人陰備熟食，私進乎？乞自今外人，毋得私進熟食，在世宗朝，往往宗親有私進食物者，然世宗在位久，且明無不照，量宜命進。今上幼沖，請禁外人私進，若上他日，博觀古今事變，則知臣等今日所啓之意矣。” 又啓：“自古宮禁，必嚴出入，世宗朝，若侍女將出私第，則必命有司備儀乃行，未嘗經宿而還。此無他慮，洩宮禁事也。” 從之。遂榜于進膳門曰：“大小人毋得私進物膳，又宮人出入，必使承政院知之。”</p>
<p>端宗 6卷, 1年(1453 癸酉 / 명 경태(景泰) 4年) 4月 27日(甲寅)</p>	<p>승정원(承政院)에서 정부에 의논하기를, “문종조(文宗朝)에 3년 안의 기월(忌月)1174) 에는 육선(肉膳)1175) 을 드시지 않았던 것은 예문(禮文)이 아닙니다. 지금 기월(忌月)이 이미 가까와 왔으</p>	<p>承政院議于政府曰：“文宗朝，三年內忌月，不進肉膳，非禮文也。今忌月已逼，上若欲進素膳，則何以處之?”</p>

<p>3번째기사 승정원에서 정부에 나물 반찬 수라를 드시는 일로 의논하다</p>	<p>니, 성상께서 만약 소선(素膳)1176) 을 드시려고 하신다면, 어떻게 이를 처리 하여야겠습니까?” 하니, 사인(舍人) 나홍서(羅洪緒)가 당상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기월(忌月)에 소선(素膳)하는 것은 본래 예문이 아닙니다. 문종께서 불사로 인하여 이를 시행하였으나, 지금 불사(佛事)를 일으키지 아니하며 예문에 없는 일을 하는 것은 불가한데 더구나 성상은 혈기가 왕성하지 아니하여 오랫동안 소선을 올리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오는 5월 초10일에 비로소 소선을 드소서.” 하였다. 임금이 전지하기를, “지금은 질병이 없으니, 반드시 어거할 것이 없다.” 하였다.</p>	<p>舍人羅洪緒將堂上議啓曰：“忌月素膳，本非禮文，文宗因佛事而爲之也。今不作佛事，而爲禮文所無之事，不可也。況上血氣未壯，不宜久御素膳，請來五月初十日始進素膳。” 傳曰：“今無疾病，不必御也。”</p>
<p>단종 6권, 1년(1453) 계유 / 명 경태(景泰) 4년) 5월 1일(정사) 2번째기사 정부 대신의 일반 관사의 직무 겸직과 도청의 혁파·내의 전순의 치죄에 관한 기전 등의 상소문</p>	<p>(전략)1. 질병(疾病)은 마땅히 치료(治療)하는 데 삼가야 하고, 약이(藥餌)1206) 는 반드시 금기하는 바가 있는데 치료를 잘못하고 금기를 범하면 그 병이 심해져서 마침내 구료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문종 대왕(文宗大王)께서 편찮았던 초기에 내의(內醫) 전순의(全循義)가 자기의 편견(偏見)을 믿고 여러 의서(醫書)를 널리 찾아 보지 아니하고, 마침내 ‘해롭지 않다.’고 아뢰어 <임금에게> 사신을 문밖까지 전송하도록 하여, 종기(腫氣)의 증세를 더욱 심하게 하였는데, 또한 이를 살펴 보고 놀랐을 터인데도 오히려 ‘해롭지 않다.’고 하여 수라상에 식료(食療)1207) 를 또한 꺼리지 아니하고 바쳐서 종기가 매우 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순의(全循義)와 최읍(崔浥)·변한산(邊漢山)이 들어가 내진(內診)을 보고 침으로 종기의 입구를 따고서, 외부에 드러내어 말하기를, ‘상체가 마땅히 며칠 안되어 좋게 회복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대소 신료(大小臣僚)들이 모두 기쁘게 생각하였는데, 갑자기 안가(晏駕)1208)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전순의 등을 목을 베어서 통</p>	<p>(전략)一, 疾病當謹於治療, 藥餌必有所禁忌, 治療誤而禁忌犯, 則祇益其病而終至於不救矣。當文宗大王不豫之初, 內醫全循義自信偏見, 不廣詢諸醫, 遽啓以罔害, 至餞使臣于門外, 使腫勢益發, 亦可省而驚駭也。然猶曰: “罔害。” 御膳食療, 又不拘忌而進, 及腫痛甚。循義與崔浥、邊漢山入內診視, 針開腫口, 揚言於外曰: “上體當不日平善。” 以故大小臣僚, 皆以爲喜, 俄而晏駕。人皆欲斬循義等頭, 以伸痛憤; 只令削職、配隸, 尋又釋之, 得齒朝列: 臣等不勝痛憤。夫毒</p>

분(痛憤)을 풀려고 하였는데, 단지 관직만을 삭탈하여 천례(賤隸)로 유배시켰다가 곧 또 이를 석방하고 조정의 반열(班列)에 끼이게 하니, 신 등은 통분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저 독(毒)이 있는 종기(腫氣)는 처음에 그 미미(微微)하게 나타나며 등에 있는 것은 더욱 독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터인데도 이에 말하기를, ‘해가 없다.’고 하였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의 첫째입니다. 몸의 기운을 피로하게 움직이는 것은 등창[癰疽]에서 크게 금하는 것인데도 이를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의 둘째입니다. 식물의 성질이 반드시 병과 서로 반대되면 해로움이 있는 것인데 꿩고기 같은 것이라면 등창에서 크게 금하는 바인데도 날마다 꿩고기 구이[雉灸]를 드렸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의 셋째입니다. 등창에서는 농(濃)하여 터지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것이 농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침으로 찔러서 그 독을 더하게 하였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의 네째입니다. 무릇 이들은 모두 방서(方書)1209)의 경계를 감히 어기고 군상의 병을 경솔하게 다루었으니, 비록 백번 유사(宥赦)를 만나더라도 반드시 복주(伏誅)하여야 할 죄입니다 만약에 ‘전순의 등의 의술이 본래 용졸(庸拙)하니, 무슨 정상이 있겠는가?’ 하고 그 죄를 용서한다면, 신 등이 진실로 생각하건대, ‘재주가 만약 용졸(庸拙)한다면 방서(方書)를 삼가 지켜야 할 따름인데, 이에 처방을 어기고 금기를 범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털끝만한 정상이 있다면 마땅히 일족의 주멸(誅滅)을 가(加)하는 것이 마땅하지, 어찌 당자에게 그칠 뿐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때에 고금(古今)이 없고, 몸이 죽고 산 것에 관계가 없이 왕법에서 주멸하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비록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고 조정의 의논이 이미 정하여졌다고 하지만 격분(激憤)을 능히 스스로 그만둘 수가 없어서 성충(聖聰)을 번독(煩瀆)하니, 앞드려 생각하건대, 재량(裁量)하고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腫，初發其微，而在背者尤毒，凡人所知，而乃曰：“罔害。”其罪不赦者一也；勞動身氣，癰疽之大禁，而不之啓，其罪不赦者二也；食物之性，必有與病相反，而有害者，至如雉，則癰疽之所大忌，而日進雉灸，其罪不赦者三也；癰疽貴於濃潰，當其未濃而針之，增益其毒，其罪不赦者四也。凡此，皆敢違方書之戒，輕忽君上之病，雖經百赦，必誅之罪也。倘曰：“循義等術本庸拙，情何有焉？其罪可恕。”則臣等固以爲才若庸拙，謹守方書而已。乃違方、犯禁至此，若少有毫髮之情，則當加赤族之誅，奚止於身而已也？此正時無古今，身無存歿，王法所當誅。雖歲月既久、朝議已定，而憤激不能自己，煩瀆聖聰。伏惟，裁度施行。下議政府議之。

<p>단중 6권, 1년(1453 계유 / 명 경태(景泰) 4년) 5월 14일(경오) 2번째기사 친히 경희전에서 연제 를 행하다</p>	<p>친히 연제(練祭)를 경희전(景禧殿)에서 행하였다. 의식은 이러하였다. “기일(期日) 전 1일에 봉상시(奉常寺)의 관원이 평상[床]과 욱석(褥席)을 장막[幄] 안에 【장막은 서계(西階) 위에 있다.】 설치하고, 먼저 밤나무 신주[栗主]와 궤(匱)를 만들어서 【체제는 뽕나무 신주[桑木主]와 같다.】 상자에 담고 수건[帕]으로 덮어 요여(腰輦)에 안치하고 장막 앞에 나아간다. 대축(大祝)이 안(案)을 받들어 욱위(褥位)에 놓고, 탁자 3개를 영좌(靈座)의 동남쪽에 서향(西向)하여 설치하고 【제주탁(題主卓) 북쪽에 있고, 다음은 필연탁(筆硯卓), 다음은 관반탁(盥槃卓)이다.】 붓[筆]·벼루[硯]·먹[墨]·광칠(光柒)·관반(盥槃)·관이(盥匱)·향탕(香湯)·수건[巾]을 【백세 저포(白細苧布)를 사용한다.】 갖춘다. 그날 축시(丑時) 전 5각(五刻)에 【축시(丑時) 전 5각(五刻)은 곧 3경(三更) 3점(三點)이다. 행사(行使)는 축시 전 1각에 한다.】 종친(宗親)과 백관(百官)들이 최복(衰服)을 갖추어 입고 모두 외문(外門) 밖에 모이면, 집례(執禮)·제주관(提主官)·대축(大祝)·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이 먼저 전정(殿庭)에 들어가서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해서 네 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집례(執禮)·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이 동계(東階)의 아래 자리에 나아가고, 찬인이 제주관(提主官)·대축(大祝)을 인도하여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봉례랑(奉禮郎)이 종친(宗親)과 백관(百官)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가서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 나아간다. 판통례(判通禮)가 재전(齋殿) 앞으로 나아가서 외관(外辦)을 아뢰면 노산군(魯山君)이 최복(衰服)을 갖추고 장(杖)을 짚고 나오는데, 찬례(贊禮)가 인도하여 들어가서 동계(東階) 위의 배위(拜位)로 간다. 【근시(近侍)가 따라서 들어 가고 산선(緘扇)과 호위관(護衛官)은 문밖에서 멈춘다.】 집례(執禮)가 ‘곡(哭)하라.’ 하면, 노산군(魯山君)이 꿇어앉아 부복(俯伏)하고 곡한다. 【무릇 절하고 곡하는 것은 모두 찬례(贊禮)가 계청(啓請)</p>	<p>親行練祭于景禧殿。 前一日， 奉常寺官， 設床及褥席於幄內。 【幄在西階上。】 先造栗主并匱， 【體制并如桑木主。】 盛以箱、覆以帕， 安於腰輦， 詣幄前。 大祝奉安於褥位， 設卓三於靈座東南， 西向， 【題主卓在北， 次筆硯卓， 次盥槃卓。】 具筆、硯、墨、光柒、盥槃·匱、香湯、巾。 【用白細苧布。】 其日丑前五刻， 【丑前五刻， 卽三更三點。 行事用丑時一刻。】 宗親、百官具衰服， 皆聚外門外， 執禮、題主官、大祝、謁者、贊者、贊引先入殿庭， 重行， 北向西上四拜。 訖， 執禮、謁者、贊者、贊引就東階下位； 贊引引題主官、大祝， 各就位； 奉禮郎分引宗親及百官， 入就殿庭拜位。 判通禮進當齋殿前， 啓外辦， 魯山具衰服， 杖出， 贊禮導入東階上拜位。 【近侍從入， 緘扇及扈衛官， 停於門外。】 執禮曰：“哭。” 魯山跪， 俯伏， 哭。 【凡拜哭， 皆贊禮啓請。 跪拜時， 內侍捧杖。 後倣此。】 宗親及百官同。 【凡執禮有辭， 贊者皆傳唱。】 執禮曰：“止哭， 四拜。” 魯山</p>
--	---	--

한다. 꿰어앉아 절할 때에는 내시(內侍)가 장(杖)을 받든다. 뒤에도 이와 같다.】 종친(宗親)과 백관(百官)도 이와 같다.【무릇 집례(執禮)의 말이 있으면, 찬자(贊者)가 모두 전창(傳唱)한다.】 집례(執禮)가 ‘곡(哭)을 그치고 사배(四拜)하라.’ 하면 노산군(魯山君)이 곡을 그치고 네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례(贊禮)가 노산군(魯山君)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탁자(卓子)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대축(大祝)이 동계(東階)로 부터 올라가서 장막[幄]으로 나아가서 밤나무 신주궤[栗主匱]를 받들어 탁자에 놓고 궤[匱]를 열어서 밤나무 신주를 받들어 향탕(香湯)에 목욕시키고 수건으로 닦고 탁자에 눕혀 놓는다. 제주관(題主官)이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탁자 앞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선다. 먹으로 쓰기를, ‘유명 증시(有明贈諡) 공순 문종 흙명 인숙 광문 성효 대왕(恭順文宗欽明仁肅光文聖孝大王)’이라 검은 글씨[墨書]로 쓰기를 기다려, 이를 끝마치면 광칠(光漆)로써 거듭이를 칠하고 꿰어앉아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내려와서 자리로 돌아간다. 대축(大祝)이 밤나무 신주궤[栗主匱]를 받들어 자리 뒤에 옮겨 안치(安置)하고, 밤나무 신주[栗主]를 받들어 궤(匱)에 넣어 영좌(靈座)에 안치한다. 찬례(贊禮)가 노산군(魯山君)을 인도하여 내려와서 자리로 돌아와서 임시로 재전(齋殿)으로 나아가게 한다. 봉례랑(奉禮郎)이 종친(宗親)과 백관(百官)들을 인도하여 나간다. 상의원(尙衣院) 관원이 연복(練服)을 바치면,【연포(練布)로 관(冠)을 만든다.】 노산군(魯山君)이 옷을 바꾸어 입는다.【연관(練冠)으로 고쳐 쓰고 수질(首經)·부판(負版)·벽령(辟領)의 최복(衰服)을 벗는다.】 종친(宗親)과 백관(百官)들이 모두 옷을 바꾸어 입는다.【연포(練布)로 사모(紗帽)를 싸고 그대로 띠[帶]를 드리운다.】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가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가서 축판(祝版)을 영좌(靈座)의 오른쪽에 전(奠)드리고【점(坫)이 있다.】 폐비(幣篚) 2개를 준소(尊所)에 진설(陳設)하고 향로(香爐) 향합(香盃)과 초[燭]를 영좌(靈座)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예찬(禮饌)을 신좌(神座) 앞에 설치한다.【찬품

止哭，四拜，興，平身。贊禮導魯山，陞自東階，詣卓前，北向立。大祝陞自東階，詣幄捧栗主匱，置于卓，開匱，捧栗主，浴香湯，拭以巾，臥置于卓。題主官陞自東階，詣卓前，西向立，墨書‘有明贈諡恭順文宗欽明仁肅光文聖孝大王’，待墨書乾，以光漆重摸之，跪，俯伏，興，降，復位。大祝捧桑主匱，移安於座後，捧栗主，納于匱，安於靈座。贊禮導魯山，降，復位，權就齋殿。奉禮郎引宗親及百官出。尙衣院官，進練服，【以練布爲冠。】魯山易服；【改着練冠，去首經、負版、辟領衰。】宗親及百官俱易服。【以練布裹紗帽，仍垂帶。】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奠祝版於靈座右。【有坫。】陳幣篚二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次設禮饌神座前；【饌品與四時大享同。】設尊彝於戶外之左，皆加勻冪，北向，西上，【凡尊，實水爲上。】設瓚槃一於尊所。前一刻，執禮帥謁者、贊者、贊引，先入就位；贊引引典祀官、大祝、祝史、齋郎、宮闈令，入就殿庭，重行，北向，西上。執禮曰：“四拜。”

(饌品)은 사시 대향(四時大享)과 같다.】 준이(尊彝)를 지계문 밖[戶外]의 왼쪽에 설치하고 모두 작[勺]과 먹(冪)을 더하여 북향하게 하되, 서쪽을 위로 한다. 【무릇 준(尊)에는 명수(明水)를 채운 것을 위로 한다.】 찬반(瓚槃) 1개를 준소(尊所)에 설치한다. 1각(一刻) 전(前)에 집례(執禮)가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을 거느리고 먼저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고, 찬인이 전사관(典祀官)·대축(大祝)·축사(祝史)·제랑(齋郎)·궁위령(宮闈令)을 거느리고 들어가 전정(殿庭)에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되, 서쪽을 위로 한다. 집례(執禮)가 ‘사배(四拜)하라.’ 하면, 전사관(典祀官) 이하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인(贊引)이 전사관(典祀官)을 거느리고 자리로 나아가고 여러 집사(執事)가 각각 자리로 나아간다. 봉례랑(奉禮郎)이 종친(宗親)과 백관(百官)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가서 자리로 나아가고, 알자(謁者)가 아헌관(亞獻官)·종헌관(終獻官)을 인도하여 들어가 자리에 나아간다. 대축(大祝)이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궤(匱)를 열고 밤나무 신주를 받들어 신좌(神座)에 설치하고 백저건(白苧巾)으로 덮고 궁위령이 궤(匱)를 열고 왕후 신주(王后神主)를 받들어 내어 신좌에 설치하고 청저건(靑苧巾)으로 덮어 아울러 궤를 오른쪽에 아울러 설치한다. 【영좌(靈座)가 서쪽에 있고, 신좌(神座)가 동쪽에 있다.】 판통례(判通禮)가 재전(齋殿) 앞으로 나아가서 ‘행례(行禮)하라.’고 계청(啓請)하면 노산군(魯山君)이 장(杖)을 짚고 나오는데, 찬례(贊禮)가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근시(近侍)는 따라 들어 간다.】 집례(執禮)가 ‘곡(哭)하라.’ 하면 노산군(魯山君)이 꿇어앉아 부복(俯伏)하고 곡한다. 집례(執禮)가 ‘곡(哭)을 그치라.’ 하면, 노산군(魯山君)이 곡을 그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아헌관(亞獻官) 이하 자리에 있는 자들도 이와 같이 한다. 집례(執禮)가 말하기를, ‘전폐례(奠幣禮)를 행하라.’ 하면, 찬례(贊禮)가 노산군(魯山君)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근시(近侍)가 따라 오른다.】 준소(尊所)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집준자(執尊者)가 먹(冪)을 들고 근시(近侍) 1인이 울창(鬱鬯)

典祀官以下四拜，興，平身。贊引引典祀官，就位；諸執事各就位；奉禮郎分引宗親及百官，入就位；謁者引亞獻官、終獻官，入就位。大祝陞自東階，開匱，捧栗主，設於座，覆以白苧巾；宮闈令開匱，捧出王后神主，設於座，覆以靑苧巾，竝設几於右。【靈座在西，神座在東。】判通禮進當齋殿前，啓請行禮，魯山杖出，贊禮導入就位。【近侍從入。】執禮曰：“哭。”魯山跪，俯伏，哭。執禮曰：“止哭。”魯山止哭，興，平身；亞獻官以下在位者，同。執禮曰：“行奠幣禮。”贊禮導魯山，陞自東階，【近侍從陞。】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冪，近侍一人酌鬱鬯，一人以瓚受鬱鬯。贊禮導入靈座前，北向跪；亞獻官以下在位者，同。近侍一人捧香合、一人捧香爐，跪進三上香。近侍以瓚跪進，執瓚，灌地。訖，近侍以幣筐跪進，執幣，獻幣，授近侍，奠于靈座前，又奠于王后神座前。【凡進香、進瓚、進幣，皆在東，西向；奠爐、受瓚、奠幣，皆在東，西向。進爵、奠爵，准此。】魯山俯伏，興，平身；亞獻官以下在位者，

을 따르면 1인이 찬(瓚)으로 올창을 받는다. 찬례(贊禮)가 인도하여 들어가서 영좌(靈座) 앞에서 북향하여 꿇어앉게 한다. 아헌관(亞獻官) 이하 자리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한다. 근시(近侍) 1인이 향합(香合)을 받들고 1인이 향로(香爐)를 받들고 꿇어앉아 세 번 향(香)을 올린다. 근시(近侍)가 꿇어앉아 찬(瓚)을 올리면 찬(瓚)을 잡고 <술을> 땅에 붓는다. 이를 마치면 근시(近侍)가 폐비(幣篋)를 꿇어앉아 올리면 집폐 헌폐(執幣獻幣)하는데, <폐백을> 근시(近侍)에게 주어서 영좌(靈座) 앞에 전(奠)드리게 하고, 또 왕후 신좌(王后神座) 앞에 전(奠)드리게 한다. 【무릇 향(香)을 올리고 찬(瓚)을 올리고 폐백(幣帛)을 올릴 때는 모두 동쪽에서 서향하고 향로(香爐)를 전(奠)드리고, 찬(瓚)을 받고 폐백(幣帛)을 전(奠)드리는 것은 모두 동쪽에서 서향하고, 작(爵)을 올리고, 작(爵)을 전(奠) 드릴 때도 이에 준한다.】 노산군(魯山君)이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아헌관(亞獻官) 이하 자리에 있는 자들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贊者)도 또한 창(唱)한다.】 찬례(贊禮)가 노산군(魯山君)을 인도하여 내려와 자리로 돌아간다. 집례(執禮)가 ‘초헌례(初獻禮)를 행하라.’ 하면, 찬례(贊禮)가 노산군(魯山君)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존소(尊所)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집준자(執尊者)가 떡(冪)을 들고 근시(近侍) 1인이 예제(醴齊)1276) 를 따르면 2인이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찬례(贊禮)가 <노산군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영좌(靈座)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게 한다. 아헌관(亞獻官) 이하 자리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贊者)도 역시 창(唱)한다.】 근시(近侍)가 작(爵)을 꿇어앉아 올리면 집작 헌작(執爵獻爵)하는데, <작을> 근시(近侍)에게 주어서 영좌(靈座) 앞에 전(奠)드리게 하고, 또 왕후 신좌(王后神座) 앞에 전(奠)드리게 한다. 대축(大祝)이 영좌(靈座)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祝文)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노산군(魯山君)이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아헌관(亞獻官) 이하 자리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贊者)도

同。【贊者亦唱。】 贊禮導魯山，降，復位。執禮曰：“行初獻禮。” 贊禮導魯山，陞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冪，近侍一人酌醴齊，二人以爵受酒。贊禮導入靈座前，北向，跪；亞獻官以下在位者，同。【贊者亦唱。】 近侍以爵跪進，執爵，獻爵，授近侍，奠于靈座前，又奠于王后神座前。大祝進靈座之右，東向，跪，讀祝文。訖，魯山俯伏，興，平身；亞獻官以下在位者，同。【贊者亦唱。】 贊禮導魯山，降，復位。執禮曰：“行亞獻禮。” 謁者引亞獻官，陞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冪，酌盎齊，執事二人，以爵受酒。謁者引亞獻官，入詣靈座前，北向，跪。執事者二人，以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授執事，奠于靈座前，又奠于王后神座前。亞獻官俯伏，興，平身，降，復位。終獻如亞獻儀。訖，執禮曰：“哭。” 魯山跪，俯伏，哭，盡哀。執禮曰：“止哭，四拜。” 魯山止哭，四拜，興，平身。亞獻官以下在位者，同。贊禮導魯山還齋殿。【還宮，緞扇、仗衛導從如來儀。】謁者引亞獻

역시 창(唱)한다.】 찬례(贊禮)가 노산군(魯山君)을 인도하여 내려와서 자리로 돌아간다. 집례(執禮)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아헌관(亞獻官)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존소(尊所)의 서쪽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집존자(執尊者)가 떡(稔)을 받들어 양제(盎齊)1277) 를 따르면 집사(執事) 2인이 작(爵)으로써 술을 받는다. 알자(謁者)가 아헌관(亞獻官)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영좌(靈座)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게 한다. 집사자(執事者) 2인이 작(爵)을 아헌관(亞獻官)에 주면 아헌관이 집작 헌작(執爵獻爵)하는데, 〈작을〉 집사(執事)에게 주어서 영좌(靈座) 앞에 전(奠)드리게 하고, 또 왕후 신좌(王后神座) 앞에 전(奠)드리게 한다. 아헌관(亞獻官)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내려가서 자리로 돌아온다. 종헌(終獻)도 아헌(亞獻)의 의식(儀式)과 같이하여 끝마치고, 집례(執禮)가 ‘곡(哭)하라.’ 하면, 노산군(魯山君)이 꿇어앉아 부복(俯伏)하여 곡하여 슬피 한다. 집례(執禮)가 ‘곡(哭)을 그치고 사배(四拜)하라.’ 하면, 노산군(魯山君)이 곡을 그치고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아헌관(亞獻官) 이하 자리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한다. 찬례(贊禮)가 노산군(魯山君)을 인도하여 재전(齋殿)으로 돌아간다. 【환궁(還宮)할 때 산선(緞扇)과 장위(仗衛)가 인도하여 따르는 것은 올때의 의식과 같다.】 알자(謁者)가 아헌관(亞獻官)·종헌관(終獻官)을 인도하고, 봉례랑(奉禮郎)이 종친(宗親)과 문무 백관(文武百官)들을 인도하여 나간다. 찬인(贊引)이 전사관(典祀官) 이하를 인도하여 함께 배위(拜位)로 돌아가면 집례(執禮)가 ‘사배(四拜)하라.’ 하여, 전사관(典祀官) 이하가 네 번 절하고 몸을 바로 한다. 찬인(贊引)이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가고, 대축(大祝)이 연주(練主)를 들여놓고 궁위령(宮闈令)이 신주(神主)를 들여넣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본전(本殿)의 관원이 요여(腰擧)로 뽕나무 신주궤[桑主匱]를 받들어 종묘(宗廟)에 나아가서 북쪽 섬돌 사이[階間]에 묻는다.”

官、終獻官，奉禮郎引宗親及文武百官出。贊引引典祀官以下，俱復拜位，執禮曰：“四拜。”典祀官以下四拜，興，平身。贊引以次引出，大祝納練主，宮闈令納神主如儀。本殿官以腰擧捧桑主匱，詣宗廟，埋於北階間。

<p>단종 7권, 1년(1453) 계유 / 명 경태(景泰) 4년) 7월 6일(신유) 3 번째기사 가뭇의 재앙이 드니 진상을 문소전과 경희전에만 하도록 예조에 전지하다</p>	<p>예조에 전지(傳旨)하기를, “올해 곡식이 장차 익으려 하는데 가뭇의 재앙이 드니 내가 심히 염려한다. 경중의 제사(諸司)에서 날마다 공진(供進)하는 술과 제도(諸道)에서 망전(望前)·망후(望後)의 예대로 진상(進上)1483) 하는 물선(物膳)은 다만 문소전(文昭殿)·경희전(景禧殿)에만 진상하고, 그 나머지 각 궁전에는 전교(傳敎)를 기다려서 진상하라. 문소전·경희전의 천신(薦新)1484) 과 대전(大殿)에 진상(進上)하는 절물(節物)1485) 은 옛과 같이 하라.” 하였다.</p>	<p>傳旨禮曹曰： 今年穀將登，旱暵爲災，予甚慮焉。京中諸司逐日供進酒，及(請) [諸] 道望前後例進物膳，只進文昭、景禧殿，其餘各宮殿則待傳敎更進。其文昭、景禧殿薦新及大殿進上節物則依舊。</p>
<p>端宗 7卷, 1年(1453) 癸酉 / 명 경태(景泰) 4年) 8月 6日(庚寅) 2 번째기사 의정부에서 문소전 조석 상식에 헌관이 술잔을 올리는 예를 바꾸기를 청하다</p>	<p>의정부에서 예조(禮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예전 제도에 문소전(文昭殿) 조석 상식(朝夕上食)에 헌관(獻官)이 술잔을 잡아 친히 올리는 것은 미편하니, 금후로는 헌관이 준소(尊所)1580) 에 나아가서 서쪽을 향해 서면, 사준 별감(司尊別監)이 술을 따르고, 전사(殿司)와 내직 별감(內直別監)이 술잔에 술을 받으며 헌관이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해 꿇어앉으면, 전사가 술잔을 헌관에게 주어, 헌관이 술잔을 받아서 올리되, 술잔을 내시(內侍)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議政府據禮曹呈啓：“舊制，文昭殿朝夕上食，獻官執盞親奠，未便。今後獻官詣尊所，西向立，司尊別監酌酒，殿司及內直別監，以盞受酒。獻官入詣神位前，北向跪，殿司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內侍，奠于神位前。”從之。</p>
<p>단종 7권, 1년(1453) 계유 / 명 경태(景泰) 4년) 9월 1일(갑인) 1 번째기사 수라상을 이유로 사냥을 하지 말라 이르다</p>	<p>도승지(都承旨) 박중손(朴仲孫), 좌승지(左承旨) 노숙동(盧叔仝)이 김종서(金宗瑞)의 말로써 아뢰기를, “세종조(世宗朝)에 제향(祭享)에 쓸 고기는 모두 강원도(江原道)에서 진상(進上)하게 하고, 여름철에는 사복시(司僕寺)로 하여금 사냥하여 올리게 하였습니니다. 이제 어선(御膳)1616) 이 없을 것 같으면, 역시 사복시로 하여금 사냥해 올리게 할 것이나, 군인으로 하여금 각자 양식을 싸가지고 가게 할 수 없으니, 청컨대 양식을 주게 하소서.” 하니, 전지(傳旨)하기를,</p>	<p>甲寅朔/都承旨朴仲孫、左承旨盧叔仝，以金宗瑞之言啓曰：“世宗朝，祭享所需之肉，皆令江原道進上，夏節則令司僕寺獵進。今御膳若乏，則亦令司僕寺獵進。然不可使軍人各自贏糧，請給糧。”傳曰：“自今勿爲廚膳打獵。”</p>

	<p>“이제부터는 주선(廚膳)1617) 을 위하여 사냥을 하지 말라.” 하였다.</p>	
<p>단종 9권, 1년(1453 계유 / 명 경태(景泰) 4년) 11월 20일(임신) 2번째기사 회맹의</p>	<p>회맹의(會盟儀)는 이리하였다. “기일(期日) 전 7일에 여러 공신(功臣)과 집사관(執事官)·근시관(近侍官)으로 마땅히 쫓아 올라야 할 사람들은 모두 산재(散齋)1991) 4일, 치재(致齋)1992) 3일 동안을 행하고, 기일 전 2일에 충扈위(忠扈衛)에서 악차(幄次)를 선(壇)1993) 밖의 남쪽에 설치하되,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西向)하게 하고, 또 공신의 막차(幕次)를 그 남쪽에 북향(北向)하여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히 하고, 찬만(饌幔)을 선(壇) 동쪽에 설치한다. 기일 전 1일에 액정서(掖庭署)에서 전하(殿下)의 판위(版位)를 단(壇) 아래에 설치하되, 한가운데에 북향하게 하고, 전의(典義)가 공신의 자리[位]를 단의 남쪽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여 서쪽이 위[上]가 되게 하고, 또 전의(典儀)·알자(謁者)·찬인(贊引)의 자리[位]를 동계(東階)의 서쪽에 북쪽으로 가까이 설치하되, 서향(西向)하게 하여 북쪽이 위[上]가 되게 하고, 장생령(掌牲令)이 대뢰(大牢)1994) 와 맹생(盟牲)1995) 을 끌고 맹세할 장소[誓所]로 나아가고, 전사관(典祀官)이 재인(宰人)1996) 을 거느리고 대뢰(大牢)를 베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그리고, 맹생(盟牲)을 묻을 구덩이[坎]을 단(壇)의 북쪽 임지(壬地)에 파되, 넓이와 깊이는 맹생이 들어갈 만하게 하고, 혈반안(血盤案)1997) 을 단 아래의 서쪽에 설치한다. <회맹하는 날인> 그 날 아직 행사(行事)하기 전에 봉상시(奉常寺) 관원이 <단상에> 올라가 단 위에 신위(神位)를 설치하되, 남향하게 하고, 자리는 왕골자리를 깔고 서문(誓文)을 신위의 오른쪽에 올려 놓는다. 그리고, 향로(香爐)와 향합(香盥)과 초[燭]를 신위 앞에 진설하고, 다음에 생갑(牲匣)1998) 을 서쪽이 위[上]가 되게 진설하여 놓고, 작(爵)1999) 하나를 생갑의 앞에 놓아 둔다. 그리고, 또 준(尊)2000) 을 단상(壇上)의 동남</p>	<p>會盟儀： 前期七日，諸功臣及執事官、近侍官、應從升者，竝散齋四日，致齋三日。前二日，忠扈衛設幄次於壇外之南近東，西向。又設功臣幕次於其南，北向，隨地之宜；設饌幔於壇東。前一日，掖庭署設殿下版位於壇下當中，北向；典儀設功臣位於壇南，北向西上。又設典儀、謁者、贊引位於東階西近北，西向北上。掌牲令牽大牢及盟牲詣誓所，典祀官帥宰人，割大牢如常儀。設盟牲坎於壇北壬地方，深取足容物，設血盤案於壇下之西。其日未行事前，奉常寺官升設神位於壇上，南向，席以莞，奠誓文於神位之右；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次設牲匣，以西爲上，爵一在牲匣前；設尊於壇上東南隅，北向，加勺罍；設洗於東階東南，北向，壘在洗東，加勺，籠在洗西南肆，實以巾；又設執事盥洗於東南，北向。誓前五刻，殿下出宮如常儀，入幄次，繖扇侍衛如常。前三刻，典祀官帥宰</p>

쪽 모퉁이에 설치하되, 작(勺)2001) 과 먹(罍)2002) 을 얹어 놓고, 세(洗)2003) 를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뇌(壘)2004) 를 세(洗) 동쪽에 놓아 두되, 작(勺)을 얹어 놓고, 비(篚)2005) 를 세(洗)의 서남쪽에 놓아 두되, 수건[巾]을 담아 놓고, 또 집사(執事)의 관세(盥洗)2006) 를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맹세(盟誓)하기 전 5각(刻)에 전하가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궁궐을 나와 악차(輦次)로 들어가고 산(繖)·선(扇)의 시위(侍衛)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맹세하기> 전 2각(刻)에 전사관(典祀官)이 재인(宰人)을 거느리고 맹생(盟牲)을 베고, 집사관(執事官)이 반(盤)으로 피를 받아서 안(案)위에 놓는다. <맹세하기> 전 2각(刻)에 여러 공신과 근시·집사관이 각각 제복(祭服)을 갖는다. <맹세하기> 전 1각(刻)에 전의(典儀)가 알자와 찬인을 거느리고 들어가 선(壇)의 남쪽 배위(拜位)2007) 로 나아가, 겹줄[重行]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上]로 해서 사배(四拜)하고, 이를 마치면 제 자리로 나아가간다. 찬인이 서문(誓文)을 읽을 관원과 집사관을 거느리고 들어가 자리[位]에 나아가면, 전의가 ‘사배하라’하고, 통찬(通贊)이 ‘국궁(鞠躬),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이라 창(唱)하여, 서문을 읽을 관원 이하가 모두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이들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2008) 로 나아가 손을 씻게 하고, 각기 제 자리로 나아가간다. 찬인이 여러 공신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로 나아가고, 집사관이 관세위에 나아가서 작(爵)을 씻고 작을 닦아서 비(篚)에 담아, 이를 받들고 중계(中階)로 나아가 준소(尊所)2009) 에 놓아 둔다. 찬례(贊禮)가 악차(輦次) 앞에 나아가서 부복(俯伏)하고 꿇어앉아 <전하에게> 행사(行事)하기를 계청(啓請)한다. 그러면, 전하가 면복(冕服)을 갖추고 나오는데, 산(繖)·선(扇)의 시위(侍衛)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찬례(贊禮)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위(版位)에 이르면, 전의가 ‘사배(四拜)’ 하고, 찬례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계청하기를, ‘국궁, 사배, 흥,

人割盟牲，執事官以盤取血，置於案。前二刻，諸功臣及近侍執事之官，各具祭服。前一刻，典儀帥謁者、贊引入就壇南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訖，就位；贊引引讀誓文官及執事官入就位。典儀曰：“四拜。”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讀誓文官以下，鞠躬、四拜、興、平身。訖，贊引引詣盥洗位，盥洗訖，各就位。贊引引諸功臣入就位，執事官詣盥洗位，洗爵拭爵，置於篚，奉詣中階，置於尊所。贊禮詣輦次前，俯伏跪，啓請行事，殿下具冕服以出，繖扇侍衛如常儀。贊禮導殿下，至版位。典儀曰：“四拜。”贊禮俯伏跪，啓請鞠躬、四拜、興、平身，殿下鞠躬、四拜、興、平身。【諸功臣同。】近侍詣盥洗位，盥洗訖，各就位。贊禮導殿下詣盥洗位，北向立，啓請搯圭。近侍一人跪取匱，興，沃水；一人跪取盤，承水。殿下盥手，近侍跪取巾於篚以進；殿下帨水訖，近侍受巾置於篚。贊禮啓執圭，導殿下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近侍一人酌酒，一人受酒。贊禮導殿下詣神

평신' 하여, 전하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여러 공신들도 같이 한다.】 근시(近侍)가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나서, 각기 제 자리로 나아가고,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위로 나아가 북향하게 서게 하고, 홀을 <대대(大帶)에> 꽂기[搯圭]를 계청한다. 근시 한 사람이 대야[匱]를 가지고 일어나 물을 떠 담고, <근시> 한 사람이 꿇어앉아 반(盤)을 취(取)하여 물을 받들면, 전하가 손을 씻는다. 근시가 꿇어앉아 비(篋)에서 수건을 집어 올리면 전하가 손을 닦고 이를 마치면, 근시가 수건을 받아 비에 놓는다. 찬례가 <전하에게 대대에서> 홀을 뽑아 손에 들기[執圭]를 계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 준소(尊巢)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준을 잡은 자[執尊者]가 멍(鞶)을 들고 근시 한 사람이 술을 뜨면, <근시> 한 사람이 술을 받는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전하에게> 꿇어앉아 【여러 공신들도 같이 한다.】 홀을 <대대에> 꽂기를 계청한다. 근시 한 사람이 향합(香盥)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고, <근시> 한 사람이 향로(香爐)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찬례가 꿇어앉아 청하기를, 세 번 향(香)을 올리라고 한다. 근시가 향로를 드리고, 근시가 작(爵)을 꿇어앉아 올리면, 찬례가 작을 잡아 작을 드리기[執爵獻爵]를 계청하여, <전하가> 작을 근시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찬례가 <전하에게 대대에서> 홀을 뽑아 들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기를 【여러 공신들도 같이 한다.】 계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 자리로 돌아간다. 그리고, <전하에게> 꿇어앉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꿇어앉으면, 【여러 공신들도 같이 한다.】 혈반(血槃)을 받드는 자가 꿇어앉아서 반(槃)을 근신에게 주어, 근시가 받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린다. 찬례가 <전하에게> 피를 마시기[敵血]를 계청하여, <전하가> 이를 마치면, 서문(誓文)을 읽는 관원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서문을 집어 북향하고 꿇어앉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찬례가 <전하에게>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

位前，北向立，啓請跪、【諸功臣同。】搯圭。近侍一人奉香合跪進，一人奉香爐跪進，贊禮跪請三上香，近侍奠爐。近侍以爵跪進，贊禮啓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神位前。贊禮啓請執圭、俯伏、興、平身，【諸功臣同。】導殿下降復位。啓請跪，殿下跪，【諸功臣同。】奉血槃者，以槃跪授近侍，近侍奉槃跪進，贊禮啓請敵血。訖，讀誓文官進神位之右，取誓文，北向跪讀。訖，贊禮啓請俯伏、興、平身。【諸功臣同。】典儀曰：“四拜。”贊禮啓請鞠躬、四拜、興、平身，殿下鞠躬、四拜、興、平身。【諸功臣同。】贊禮啓禮畢，導殿下還幄次；贊引引諸功臣，以次出。讀誓文官取誓文，加於牲上，瘞於坎，填土。

	<p>로 하기를 계청한다. 【여러 공신들도 같이 한다.】 〈전하와 공신 들이 이를 마치면.〉 전의가 ‘사배하라’ 하고, 찬례가 〈전하에게〉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여러 공신들도 같이 한다.】 찬례가 ‘예(禮)가 끝났다’고 〈전하에게〉 아뢰고,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幄次)로 돌아간다. 찬인이 여러 공신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고 서문을 읽은 관원이 서문을 가져다 희생 위에 얹어 구덩이에 묻고, 흙으로 메운다.”</p>	
<p>단종 10권, 2년(1454) 갑술 / 명 경태(景泰) 5년) 1월 24일(병자) 2번째기사 효령 대군 이보·조혜 를 보내어 왕비 송씨 를 효령 대군의 집에 서 봉영하다</p>	<p>(전략)동뢰(同牢)의 의식(儀式)은 이러하였다. “내시(內侍)의 소속이 왕비의 대차(大次)를 전하가 납시는 궁전 합문(閣門) 밖의 서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욕석(褥席)을 펴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저녁 무렵에 상침(尙寢)이 그 소속 여관(女官)을 거느리고 어악(御幄)을 납시는 궁전의 실내(室內)에 설치하고, 땅에 자리를 펴되, 겹 자리를 펴고, 또 욕석(褥席) 2개를 펴되 모두 이불과 베개가 있고 북쪽 벽에는 병장(屏障)을 친다. 초저녁에 상식(尙食)이 주정(酒亭)을 실내(室內)에 설치하되, 조금 남쪽으로 있게 하고 잔근(盞罇)2232) 2개를 그 위에 둔다. 왕비의 연(輦)이 광화문(光化門)에 들어와서 사정전(思政殿)의 문 밖에 이르면, 【의장(儀仗)은 문안에 멈춘다.】 상침(尙寢)은 산(繖)·선(扇)을 받든 사람을 거느리고, 전등(典燈)은 촛불[燭]을 잡은 사람을 거느리고서, 모두 앞 뒤에 죽 늘어선다. 대차(大次) 앞에 이르면 상의(尙儀)가 연에서 내리기를 계청(啓請)하여, 왕비가 연에서 내린다. 상궁(尙宮)이 왕비를 인도하여 대차(大次)에 들어와서 엄숙히 정제(整齊)한다. 이를 마치면 상궁이 왕비를 인도하여 합문(閣門) 밖의 서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게 한다. 전하가 어좌(御座)에서 내려온다. 상궁(尙宮)이 앞에서 인도하여 합문(閣門)의 동쪽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왕비에게 읍(揖)하고 들어가게 한다. 상침(尙寢)이 욕석(褥席)을 실내(室內)에 설치하는데,</p>	<p>(전략)同牢儀： 內侍之屬設王妃大次於殿下所御殿閣外之西，南向，鋪褥席如常。將夕，尙寢帥其屬，設御幄於所御殿室內，鋪地席重茵，又鋪褥席二，皆有衾枕，北趾施屏障。初昏，尙食設酒亭於室內稍南，置兩罇於其上。王妃輦入光化門，至思政殿門外，【儀仗停於門外。】尙寢帥捧繖扇者，典燭帥執燭者，俱布列前後至次前。尙儀啓請降輦，王妃降輦；尙宮導王妃入次，嚴整訖；尙宮導王妃詣閣外之西，東向立。殿下降座，尙宮前導，詣閣門之東，西向，揖妃以入。尙寢設褥席於室內，殿下褥席在東西向，王妃褥席在西東向。殿下導妃由中階陞，尙宮導王妃從陞，執燭者陳於東西階間。殿下揖</p>

	<p>전하의 욱석(褥席)은 동쪽에 있어 서향하게 하고 왕비의 욱석(褥席)은 서쪽에 있어 동향하게 한다. 전하가 왕비를 인도하여 중계(中階)로부터 올라가는데, 상궁(尙宮)이 왕비를 인도하여 따라서 올라가고 촛불[燭]을 켜 사람들이 동계(東階)와 서계(西階)의 사이에 진열한다.</p> <p>전하가 왕비에게 읍(揖)하고 실(室)에 들어가서 좌석에 나아가 서향하고, 왕비는 좌석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모두 앉는다. 상식(尙食)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찬안(饌案)을 들고 들어와서 전하와 왕비의 좌석 앞에 설치하고, 상식(尙食) 2인이 주정(酒亭)에 나아가서 잔(盞)을 취하여 술을 따라, 1인은 꿇어앉아 전하에게 드리고, 1인은 꿇어앉아 왕비에게 드린다. 전하와 왕비가 모두 잔(盞)을 받아 술로 땅에 제사지내고 마신다. 이를 마치면 상의(尙儀) 2인이 앞으로 나아가서 빈 잔을 받아 주정(酒亭)에 도로 둔다.</p> <p>상식(尙食)이 모두 탕식(湯食)을 드리고, 이를 마치면 세 번째 잔을 드리는데, 잔근(盞罇)을 사용하기를 두 번째 잔을 드리는 예와 같이 한다. 상의(尙儀)가 예를 마쳤다고 아뢰고, 상식(尙食)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찬안(饌案)을 걷어 치운다.</p> <p>상의(尙儀)가 일어나기를 계청(啓請)하면, 전하와 왕비가 모두 일어난다. 상궁(尙宮)이 전하를 인도하여 동방(東房)에 들어가서 면복(冕服)을 벗고 평상복을 입게 하고, 또 상궁(尙宮)이 왕비를 인도하여 악차(幄次)에 들어가서 적의(翟衣)를 벗게 한다, 상궁(尙宮)이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幄次)에 들어간다. 왕비의 종자(從者)는 전하의 찬(饌)에 남은 것을 싸고, 전하의 종자(從者)는 왕비의 찬(饌)에 남은 것을 싣는다.”</p>	<p>妃入室，卽席西向，王妃卽席東向，皆坐。尙食帥其屬舉饌案入，設於殿下及王妃座前；尙食二人詣酒亭，取盞酌酒，一人跪進于殿下，一人跪進于王妃。殿下及王妃俱受盞，祭酒飲訖。尙儀二人進受虛盞，復於亭。尙食具進湯，食訖，三醕用盞如再醕禮。尙儀啓禮畢，尙食帥其屬撤饌案。尙儀啓請興，殿下及王妃俱興。尙宮導殿下入東房，釋冕服御常服；又尙宮導王妃入幄，釋翟衣。尙宮導殿下入幄，王妃從者餽殿下之饌，殿下從者餽王妃之饌。</p>
<p>端宗 11卷, 2年(1454 甲戌 / 명 경태(景泰) 5年) 4月 9日(庚寅) 2</p>	<p>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흉년을 당하여, 잔치로 술을 마시어서 곡식을 없애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니, 청컨대 금주(禁酒)하게 하소서.”</p>	<p>司憲府啓曰：“今當歲飢，不宜宴飲糜穀，請禁酒。”命議于政府。</p>

<p>번제기사 사헌부에서 흉년을 당하여 금주할 것을 아뢰다</p>	<p>하니, 명하여 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p>	
<p>단종 11권, 2년(1454) 갑술 / 명 경태(景泰) 5년) 4월 22일(계묘) 3번째기사 사헌부에서 기근이 심하니 금주하기를 청하다</p>	<p>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전일에 여러 번 금주(禁酒)하기를 청하였으나, 아직 윤택(允許)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중외의 민간에 기근이 매우 심하고, 또 농삿달을 당하여 우택(雨澤)2374) 이 시기를 어기니, 청컨대 술을 금하소서.” 하니, 명하여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였다.</p>	<p>司憲府啓曰：“前日屢請禁酒，猶未蒙允。今中外民間，飢饉莫甚，且當農月，雨澤愆期，請禁酒。”命議于大臣。</p>
<p>단종 11권, 2년(1454) 갑술 / 명 경태(景泰) 5년) 4월 25일(병오) 2번째기사 문소전의 제향 및 대소 연향의 악에 새 악보를 쓰기로 하다</p>	<p>의정부(議政府)에서 예조(禮曹)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문소전(文昭殿)의 제향(祭享) 및 대소 연향(大小宴享)의 악(樂)에는 새 악보(樂譜)를 쓰기로 하고, 이제 그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문소전(文昭殿)을 출입(出入)하고 오르내릴 때의 악(樂)은 여민락만(與民樂慢)과 여민락(與民樂)2379) 을 사용하고, 조참(朝參)하고 배례(拜禮)할 때에는 천수만(天壽慢)을 드립니다. 내연(內宴) 및 사신연(使臣宴)에는 새 악[新樂]을 연주하되, 과작(菓爵)2380) 을 행할 때에는 여민락(與民樂)을 사용하고, 안(案)을 바칠 때에는 여민락만을 사용하고, 꽃[花]을 바치고 꽃을 꺾을 때와 작(爵)을 바칠 때에는 보허자(步虛子)2381) 를 사용하고, 소선(小膳)을 바칠 때에는 만엽치요도만(萬葉熾瑤圖慢)을 사용하고, 작(爵)을 바칠 때에는 여민락을 사용하고, 음식을 바칠 때에는 여민락만을 사용하되, 인찰(引刹)을 겸용(兼用)하고, 작(爵)을 바치고 정재(呈才)하면서 음식을 바칠 때에는 여민락만을 사용하되, 인자(引子)2382) 를 겸용하고, 작(爵)을 바치고 정재(呈才)하면서 음식을 바칠 때에는 여민락만을 사용하되, 인찰(引刹)을 겸용하고, 작(爵)을 바치고 정재(呈才)하면서 음식을 바칠 때에는 여민락만을 사용하되, 인자(引子)를 겸용하고,</p>	<p>議政府據禮曹呈啓：“文昭殿祭享及大小宴享之樂，用新樂譜，今定節次。文昭殿出入升降樂，用《與民樂慢》、《與民樂》；令朝參拜禮，獻《天壽慢》。內宴及使臣宴，進樂新樂；令行菓爵，《與民樂》；令進案，《與民樂慢》；進花折花進爵，《步虛子》；令進小膳，《萬葉熾瑤圖慢》；進爵，《與民樂》；令進食，《與民樂慢》，兼用《引刹》；進爵呈才進食，《與民樂慢》，兼用《引子》；進爵呈才進食，《與民樂慢》，兼用《引刹》；進爵呈才進食，《與民樂慢》，兼用《引子》；進爵，《真勺》；進大膳，《與民樂慢》，仍奏《罷宴曲》。賜宴及</p>

	<p>작(爵)을 바칠 때에는 진작(眞勺)2383) 을 사용하고, 대선(大膳)을 바칠 때에는 여민락만을 사용하고, 이어서 파연곡(罷宴曲)을 연주합니다.</p> <p>사연(賜宴) 및 객인연(客人宴)에는 탁(卓)을 설치하고 여민락만을 사용하고, 꽃[花]을 뿌리고 꽃을 꺾으며 행주(行酒)할 때에는 여민락을 사용하고, 소육(小肉)에는 여민락만을 사용하고, 행주(行酒)할 때에는 진작(眞勺)을 사용하고, 초미(初味)2384) 할 때에는 여민락만을 사용하되, 인찰(引刹)을 겸용하고, 행주(行酒)하고 정재(呈才)하고서 이미(二味)할 때에는 여민락만을 사용하되, 인찰(引刹)을 겸용하고, 행주하고 정재하고서 삼미(三味)할 때에는 여민락만을 사용하되, 인찰을 겸용하고 행주하고 정재하고서 사미(四味)할 때에는 여민락만을 사용하되 인찰을 겸용하고, 행주할 때에는 취풍형(醉豐亨)을 사용하고, 대육(大肉)에서는 여민락만을 사용하고, 행주할 때에는 치화평(致和平)을 사용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客人宴：設卓，《與民樂慢》；散花折花行酒，《與民樂》；令小肉，《與民樂慢》；行酒，《眞勺》；初味，《與民樂慢》，兼用《引刹》；行酒呈才二味，《與民樂慢》，兼用《引刹》；行酒呈才三味，《與民樂慢》，兼用《引刹》；行酒呈才四味，《與民樂慢》，兼用《引刹》；行酒，《醉豐亨》；大肉，《與民樂慢》；行酒，《致和平》。”從之。</p>
<p>단종 11권, 2년(1454) 갑술 / 명 경태(景泰) 5년) 4월 26일(정미) 2번째기사</p> <p>헌납 조효문이 금주와 수령을 추국하는 일을 아뢰다</p>	<p>헌납(獻納) 조효문(曹孝門)이 본원(本院)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금주(禁酒)하기를 두 번 청하였는데도 윤희(允許)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세종조(世宗朝)에서는 비록 풍년이라 하더라도 하월(夏月)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금령(禁令)을 행하였는데, 지금 경외(京外)에 기근(飢饉)이 있고, 하늘도 또한 비를 내리지 아니하니, 청컨대 신 등의 청을 따르소서. 고성 군사(高城郡事) 허수(許銖)·보안 역승(保安驛丞) 김사의(金思義)·보은 현감(報恩縣監) 이수산(李壽山)·청주 판관(淸州判官) 구인문(具仁文) 등을 서로 잇달아 잡아왔는데, 저들이 비록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자도 또한 따라오고, 마부로 따라온 사람도 반드시 많을 것이므로 농사일[農務]을 방해할까 두렵습니다. 감사(監司)가 이미 지방을 맡고 있으니, 청컨대 세종조(世宗朝)의 예에 의하여 감사로 하여금 추국(推鞠)하여 보고하게 하소서.”</p>	<p>獻納曹孝文將本院議啓曰：“再請禁酒，未蒙俞允。世宗朝，雖豐年，不待夏月已行禁令。今京外飢饉，天且不雨，請從臣等之請。高城郡事許銖、保安驛丞金思義、報恩縣監李壽山、淸州判官具仁文等相繼拿來，彼雖有罪，其妻子亦隨來，騶從必多，恐妨農務。監司既任方面，請遵世宗朝事，令監司推鞠以聞。”傳曰：“禁酒事，已與大臣議之，不可從也。守令事，當議于大臣。”孝門更啓曰：“禁酒，非直爲</p>

	<p>하니, 전지(傳旨)하기를, “금주(禁酒)하는 일은 이미 대신과 더불어 의논하였으니 따를 수 없고, 수령(守令)의 일은 마땅히 대신에게 의논하겠다.” 하였다. 조효문(曹孝門)이 다시 아뢰기를, “술을 금하는 것은 다만 흉년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경계(警戒)를 삼가려는 때문입니다. 지금 가뭄의 기운이 크게 심한데 술을 금하지 않는 것은 〈하늘의〉 경계를 삼가지 아니하는 뜻입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장차 다시 대신에게 의논하겠다.” 하였다.</p>	<p>年歉也，所以謹天戒也。 今旱氣太甚而不禁酒，非戒謹之意。” 傳曰：“將更議大臣。”</p>
<p>단종 11권, 2년(1454) 갑술 / 명 경태(景泰) 5년) 5월 19일(기사) 2번째기사 얼음을 갈무리하여 들 만한 곳을 감사가 마 련하여 아뢰도록 하다</p>	<p>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삼가 상고하건대, 《빈풍(飭風)》 《7월시(七月詩)》 2394 에, ‘설달엔 탕탕 얼음을 뜬다.’ 하였고, 그 주(註)에 이르기를, ‘고기를 먹는 녹(祿)을 타는 집과 노인이나 병자나 상제(喪祭)에나 목욕하는 데에는 얼음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라고 하였으며, 《대학(大學)》에는 맹헌자(孟獻子)가 말하기를, ‘얼음을 떠서 두는 집은 소와 양을 기르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그 주(註)에 이르기를, ‘얼음을 떠서 두는 집은 경대부(卿大夫) 이상으로서 상제(喪祭)에 얼음을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대부(大夫) 이상의 집에 얼음을 저장하지 않은 집이 없었고, 녹(祿)을 먹는 집도 또한 모두 얼음을 사용하였는데, 이제 국가의 빙고(氷庫)에 갈무리되어 있는 얼음이 한계가 있어서 반사(頒賜)하는 것이 넉넉지 못하여 특별히 노병 상제(老病喪祭)가 아니고서는 얻어 쓸 수 없으며, 양기(陽氣)의 성(盛)함을 절제(節制)함이 없으면, 드디어 건복(愆伏)의 근심(2395) 을 이룰 것이니, 실로 권전(闕典)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옛 제도에 의해서 대부 이상 및 각사(各司)로서 능히 얼음을</p>	<p>議政府啓：“謹按《飭風》《七月詩》曰：‘二之日，鑿氷沖沖。’ 註云：‘食肉之祿、老、病、喪， 浴氷無不及。’ 《大學》：‘孟獻子曰：「伐氷之家，不畜牛羊。」’ 註云：‘伐氷之家，卿大夫以上喪祭用氷者也。’ 然則古者大夫以上之家，氷無不藏，而食祿之家，亦皆用氷。 今國家氷庫所藏有限，頒賜不敷，非特老病喪，祭不得用而已，無以節陽氣之盛， 遂致愆伏之患， 實爲闕典。 自今依古制， 大夫以上及各司能藏氷者勿禁， 且諸道物膳進上諸邑， 近水無弊可藏者， 監司磨鍊以啓。” 從之。</p>

	<p>갈무리할 수 있는 자는 금하지 말고, 또 여러 도(道)의 물선(物膳)을 진상하는 모든 고을로서 물에 가까운 폐단 없이 얼음을 갈무리할 만한 곳을 감사(監司)가 마련(磨鍊)하여 아뢰도록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端宗 11卷, 2年(1454 甲戌 / 명 경태(景泰) 5年) 7月 2日(辛亥) 1 번째기사 담제를 경희전에서 행하다</p>	<p>친히 담제(禫祭)2441) 를 경희전(景禧殿)에서 행하였다. 그 의식(儀式)은 이러하였다.</p> <p>“기일(期日) 전 1일에 전사(殿司)가 그 요속(僚屬)을 거느리고 전(殿)의 안팎을 깨끗이 소제하고 나면 집례(執禮)가 전하(殿下)의 옥위(褥位)를 동계(東階) 동남쪽에 서향해 설치하고, 집례의 자리는 동계 아래 서쪽으로 가깝게 서향해 설치하고는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은 그 남쪽에 있되 약간 뒤로 물러서 북쪽을 위로 삼아 설치하고, 종친(宗親) 및 문무 백관(文武百官)의 자리는 전정(殿庭) 바깥에, 문반(文班)은 동쪽에, 무반(武班)은 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등급마다 자리를 달리하고 겹줄로 북향하여 상대하여 머리를 마주하게 하며, 【종친(宗親)은 품계마다 반두(班頭)를 따로 설치하였고, 대군(大君)은 특히 정1품 앞에 그 자리를 설치하였다.】 감찰(監察)의 자리 2개소를 문무반(文武班) 뒤에 북향하게 설치하였다. 【서리(署吏)는 각기 그 뒤에 배종(陪從)케 한다.】</p> <p>예감(瘞坎)2442) 은 전(殿)의 북쪽 임방(壬方)2443) 인 곳에 파되 네모지게 깊게 파고 그 물건을 넣을 만하게 한다. 그날 축시(丑時) 5각(刻) 전에 【축시 5각 전이란 곧 삼경(三更), 삼점(三點)이며, 행사(行事)는 축시 1각(刻)에 한다.】 궁위령(宮闈令)이 신악(神幄)을 깨끗이 털고 종친 및 백관은 담복(禫服) 【진하게 물들인 옥색 단령(玉色團領)과 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백피화(白皮靴)로 한다.】 을 갖추고 모두 문 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집례(執禮)가 알자(謁者)와 찬자(贊者)와 찬인(贊引)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殿庭)으로 들어</p>	<p>辛亥/親行禫祭于景禧殿。其儀：前一日，殿司帥其屬掃除殿之內外，執禮設殿下褥位於東階東南，西向；執禮位於東階下近西，西向，謁者、贊者、贊引在南差退北上；設宗親及文武百官位於外庭，文東武西，俱每等異位重行，北向相對爲首；【宗親，每品班頭別設位；大君，特設位於正一品之前。】監察位二於文武班後，北向。【書吏各陪其後。】開瘞坎於殿之北壬地，方深取足容物。其日丑前五刻，【丑前五刻，卽三更三點，行事用丑時一刻。】宮闈令整拂神幄，宗親及百官具禫服，【深染玉色團領、烏紗帽、黑角帶、白皮靴。】皆就門外位。執禮帥謁者、贊者、贊引先入殿庭，重行北向西上，四拜訖就位。奉禮郎分引宗親及百官入就位，判通禮進當齋殿前，【其日出宮，繖扇仗衛導從如常儀。】俯伏跪啓外辦，俯伏興退。【後</p>

가 겹줄로 서쪽을 위로 삼고 북향해 네 번 절하고 나서 각기 그 자리로 간다. 봉례랑(奉禮郎)이 종친 및 백관을 나누어 인도해 각기 그 자리로 간다. 판통례(判通禮)가 그 재전(齋殿) 앞으로 나아가서 【그날 출궁(出宮)할 때 산(緘)·선(扇) 등의 장위(仗衛)와 도종(導從)은 평상시의 의절과 같다.】 부복하고 꿇어앉아 외관(外辦)을 아뢰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물러 나온다. 【뒤에도 같다.】

전사(殿下)께서 담복(禪服) 【참포(黻布)·익선관(翼善冠)·오서대(烏犀帶)·백피화(白皮靴).】 을 갖춘 뒤에 찬례(贊禮)가 임금을 인도하여 그 자리로 들어간다.

【근시(近侍)는 따라 들어가고 산선(緘扇) 및 호위관(護衛官)은 문 밖에 머무른다.】 집례가 ‘곡(哭)’을 말하여 찬례가 부복하고 꿇어앉아서 ‘부복하시고 곡하소서.’ 하고 계청(啓請)하여 전하께서 꿇어앉아 부복하고 곡(哭)하고, 종친 및 백관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贊者)도 역시 창(唱)한다. 무릇 집례의 말이 있으면 찬자는 모두 그 말을 전해 창(唱)한다.】 집례가 ‘지곡(止哭), 사배(四拜)’를 말하여 찬례가 ‘지곡하시고 일어나시어 사배하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평신하소서.’ 하고 계청하여 임금이 곡을 그치고 일어나 네 번 절하고 다시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며 종친 및 백관도 역시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역시 창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임시 재전(齋殿)으로 나아가고 봉례랑이 종친 및 백관을 인도해 나온 뒤에 상위원(尙衣院)2444) 에서 길복(吉服) 【현포(玄袍)·익선관(翼善冠)·오서대(烏犀帶)·백피화(白皮靴).】 을 바친다.

예조 관서(禮曹判書)가 그 재전(齋殿) 앞으로 나아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전하에게 옷을 바꾸어 입을 것을 계청하여 전하가 옷을 바꾸어 입으면, 종친 및 백관도 옷을 바꾸어 입는다. 【흑색 단령(黑色團領)·흑각대(黑角帶)로 한다.】 집례가 아헌관(亞獻官)과 종헌관(終獻官)의 자리를 전하의 옥위(褥位) 뒤 남쪽으로 가깝게 북쪽을 위로하여 서향해 설치하고 집사자(執事者)의 자리를 중문(中門) 안 서쪽에 동쪽을 위로하여 북향해 설치하며, 헌관(獻官)과 모든 집사

同.】 殿下具禪服, 【黻袍、翼善冠、烏犀帶、白皮靴.】 贊禮導殿下入就位. 【近侍從入, 緘扇及護衛官, 停於門外.】 執禮曰: “哭.” 贊禮俯伏跪啓請: “俯伏哭.” 殿下跪俯伏哭, 宗親及百官同. 【贊者亦唱. 凡執禮有辭, 贊者皆傳唱.】 執禮曰: “止哭四拜.” 贊禮啓請: “止哭四拜與平身. 殿下止哭與四拜與平身, 宗親及百官同. 【贊者亦唱.】 贊禮導殿下權就齋殿, 奉禮郎引宗親及百官出. 尙衣院進吉服, 【玄袍、翼善冠、烏犀帶、白皮靴.】 禮曹判書進當齋殿前, 俯伏跪啓請: “易服.” 殿下易服, 宗親及百官俱易服. 【黑色圓領、黑角帶.】 執禮設亞獻官、終獻官位於殿下褥位之後近南, 西向北上; 執事者位於中門內之西, 北向東上; 設獻官諸執事門外位於中門外道東近南, 重行北向西上. 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 奠祝版於大王神座之右, 【有坫.】 陳幣篚二於尊所, 設香爐、香合并燭於大王神座前, 次設禮饌, 又設禮饌於王后神座前. 【饌品, 與祥祭同.】 設尊彝於戶外之左, 罍彝一 【、實明水.】 黃彝一

(執事)의 문밖에서의 자리는 중문 밖 길동쪽에다가 남쪽으로 가깝게 겹줄로 서쪽을 위로하여 북향해 설치한다.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가 각기 그 소속(僚屬)을 인솔하고 들어가 축판(祝版)2445) 을 대왕 신좌(大王神座)의 오른쪽에 바치고 【점(坫)이 설치 돼 있다.】 폐비(幣篚)2446) 2개를 존소(尊所)에 진설(陳設)하며, 향로(香爐) 향합(香合)과 아울러 축(燭)을 대왕 신좌 앞에 진설한다.

그 다음에 예찬(禮饌)2447) 을 진설하고, 또 예찬을 왕후 신좌(王后神座) 앞에도 진설한다. 【찬품(饌品)은 상제(祥祭) 때와 같다.】 준·이(尊彝)를 창문 밖 왼쪽에 진설하는데 가이(罍彝)가 1개 【명수(明水)를 채운다.】 황이(黃彝)가 1개 【울창(鬱鬯)2448) 으로 채운다.】, 착준(着尊)이 2개 【하나는 명수(明水)로 채우고, 하나는 예제(醴齊)로 채운다.】, 호준(壺尊)이 2개 【하나는 명수(明水)로 채우고 하나는 양제(盎齊)2449) 로 채운다.】, 산뢰(山罍)가 2개 【하나는 현주(玄酒)로 채우고, 하나는 청주(淸酒)로 채운다.】 로 네 줄이 되게 하여, 【첫째 줄은 가이(罍彝), 황이(黃彝)이고, 둘째 줄은 착준(着尊)이고, 셋째 줄은 호준(壺尊)이고, 넷째 줄은 산뢰(山罍)로 되어 있다.】 모두 작(勺)2450) 과 먹(罍)2451) 이 없어서 서쪽을 위로하여 북향하게 설치한다. 【무릇 존(尊)에는 명수(明水)로 채워진 것이 위가 된다.】 또 찬반(瓚槃) 1개를 존소(尊所)에 설치하고 관세위(盥洗位)를 동계(東階)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爵)은 서쪽에 있으며 반(槃)과 이(匱)가 있다.】 뇌(罍)는 세(洗) 동쪽에 있게 하여 작(勺)을 얹어 놓고 비(篚)는 세(洗)의 서남쪽에 있게 하여 수건[巾]을 채워 놓는다. 【만약 작세(爵洗)의 비(篚)같으면 또 찬(瓚) 1개와 작(爵) 2개가 채워져 있고, 점(坫)이 있다.】

아헌관(亞獻官)과 종헌관(終獻官)의 세(洗)는 또 동남쪽에 북향해 있는데,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다.】 뇌(罍)는 세(洗)의 동쪽에 있어 작(勺)을 얹어 놓고 비(篚)는 세(洗)의 서남쪽에 있으며, 수건이 채워

【實鬱鬯。】、着尊二【一實明水，一實醴齊。】、壺尊二【一實明水，一實盎齊。】、山罍二【一實玄酒，一實淸酒。】爲四行，【第一行罍彝、黃彝，第二行着尊，第三行壺尊，第四行山罍。】皆加勺罍，北向西上。【凡尊，實明水爲上。】設瓚槃一於尊所，設洗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有槃匱。】罍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篚，則又實以瓚一、爵二，有坫。】亞、終獻洗，又於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罍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篚，則又實以爵四，有坫。】設諸執事盥洗於亞、終獻洗東南，北向；執尊、罍篚罍者位於尊、罍篚罍之後。前三刻，宗親及百官皆就外門外，獻官諸執事就門外位。前一刻，執禮帥謁者、贊者、贊引先入就位，贊引、典祀官、大祝、祝史、齋郎、宮闈令入就殿庭，重行北向西上。執禮曰：“四拜。”贊者唱：“鞠躬四拜與平身。”典祀官以下鞠躬四拜與平身，贊引引典祀官就位，引大祝、祝史、齋郎、宮闈令詣盥洗位盥

놓는다. 【작세(爵洗)의 비(篋) 같으면 또 작(爵) 4개를 채워놓고 또 점(坫)이 있다.】 모든 집사(執事)의 관세(盥洗)도 아헌관과 종헌관의 세(洗) 동남쪽에 북향에 설치하며, 집준자(執尊者)·집뢰자(執灋者)·집비자(執篋者)·집먹자(執罍者)의 자리는 준·뇌·비·먹뒤에 설치한다. 3각(刻) 전에 종친 및 백관이 모두 외문(外門) 밖으로 나가고, 헌관(獻官)과 모든 집사(執事)들도 문 밖에 마련된 자리로 나아간다. 1각(刻) 전에 집례(執禮)가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을 인솔하고 먼저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고, 찬인(贊引)·전사관(典祀官)·대축(大祝)·축사(祝史)·재랑(齋郎)·궁위령(宮闈令)이 전정(殿庭)으로 들어가 겹줄로 북향해 서쪽을 위로 하여 선다.

집례가 ‘사배(四拜)’를 말하며, 이어 찬자(贊者)가 ‘국궁(鞠躬),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을 창(唱)하면 전사관 이하 모두 몸을 구부려서 네번 절하고 일어나 다시 몸을 바로한다. 찬인이 전사관을 인도하여 그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 대축과 축사·재랑·궁위령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로 나아가서 손씻고 수건에 닦고 나서 각기 자기자리로 나아간다. 이에 봉례랑이 종친 및 백관을 나누어서 인도하여 각기 그 자리로 나가며, 알자가 아헌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역시 그 자리로 나아간다. 대축이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 대왕 신위(大王神位) 앞으로 나아가서, 궤(匱)를 열고 신주(神主)를 받들어 내어 그 신좌(神座)에 설치하고는 백저건(白苧巾)으로 덮고, 궤(几)는 그 오른쪽에 설치하며 궁위령이 왕후 신좌(王后神座) 앞으로 나아가 궤를 열고 신주를 받들어 내어 신좌에 설치하고는 청저건(靑苧巾)으로 덮고 궤(几)는 그 오른쪽에 설치한다. 【대왕의 신좌는 서쪽에 있고, 왕후의 신좌는 동쪽에 있다.】

그 다음 집사자가 작세위(爵洗位)로 나아가 찬(贊)을 씻어서 닦고 작(爵)을 씻고 닦아 비(篋)속에 넣고는 이를 받들고 준소(尊所)로 나아가 점(坫) 위에 놓는다. 판통례(判通禮)가 재전(齋殿) 앞으로 나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행례(行禮)하소서.’ 하고 계청하여 전하가 나오는데, 찬례(贊禮)가 전하를 인도하여

輓訖, 各就位。奉禮郎分引宗親及百官入就位, 謁者引亞獻官、終獻官入就位。大祝升自東階詣大王神位前, 開匱捧出神主, 設於座, 覆以白苧巾, 設几於右; 宮闈令詣王后神座前, 開匱捧出神主, 設於座, 覆以靑苧巾, 設几於右。 【大王神座在西, 王后神座在東。】 執事者詣爵洗位, 洗瓚拭瓚, 洗爵拭爵, 置於篋, 捧詣尊所, 置於坫上。判通禮進當齋殿前, 俯伏跪啓請: “行禮。” 殿下出, 贊禮導殿下入就位, 近侍從入。執禮曰: “哭。” 贊禮俯伏跪啓請: “跪俯伏哭。” 殿下跪俯伏哭, 亞獻官以下在位者同。 【贊者亦唱。】 執禮曰: “止哭。” 贊禮啓請: “止哭興平身。” 殿下止哭興平身, 亞獻官以下在位者同。 【贊者亦唱。】 執禮曰: “行奠幣禮。” 贊禮導殿下詣盥洗位北向立, 近侍 【承旨一人。】 跪取匱與沃水, 一人跪取槃承水, 殿下盥手, 近侍跪取巾於篋以進, 殿下輓手訖, 近侍受巾奠於篋。贊禮導殿下升自東階, 【近侍從升。】 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 近侍一人酌鬱鬯, 一人以瓚受鬱鬯。贊禮導殿下入詣神

들어가서 그자리로 나간다. 【근시(近侍)가 따라서 들어간다.】 집례(執禮)가 ‘곡(哭)’ 하고 말하면, 찬례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전하에게, ‘궤하여 부복하고 곡하소서.’ 하고 계청하면 임금이 꿇어앉아 부복하고 곡을 하며, 아헌관(亞獻官) 이하 그 위치(位次)에 있는 자는 같이 한다. 【찬자(贊者)가 역시 창(唱)한다.】 집례가 ‘지곡(止哭)’ 하고 말하면, 찬례가 다시 임금에게 ‘지곡하시고 일어나시어 평신(平身)하소서.’ 하고 계청하면, 임금이 곡을 그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아헌관 이하 그 위치에 있는 자는 모두 같이 한다. 【찬자가 역시 창한다.】 집례가 ‘행전폐례(行奠幣禮)’ 하고 말하면 찬례가 임금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로 나아가 북향해 서고, 근시(近侍) 【승지가 한다.】 1인이 꿇어앉아 이(匱)를 가지고 일어나 물을 붓고 1인은 꿇어앉아 반(槃)을 가지고 물을 받는다. 이에 전하가 손을 씻고 근시가 꿇어앉아 비(篋)에서 수건을 가져다가 바친다.

전하가 손을 닦고 나면 근시가 수건을 받아서 다시 비(篋)에 놓는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 【근시도 따라서 올라 간다.】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면 집준자(執尊者)는 먹(幕)을 들고 근시(近侍) 1인이 울창(鬱鬯)을 뜨면, 한 사람이 찬(瓚)을 가지고 울창을 받는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고 들어가 신좌(神座) 앞에 나아가 북향하고 서면, 찬례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전하에게 ‘궤(跪)하소서.’ 하고 계청하여, 임금이 꿇어앉으면 아헌관 이하 그 위치에 있는 자도 같이 한다. 【찬자(贊者)가 역시 창(唱)한다.】 근시 4인이 향합(香盃)을 받들어 꿇어앉아 바치고 또 1인은 향로(香爐)를 받들어 꿇어앉아 바친다. 찬례가 ‘삼상향(三上香)’ 하소서.’ 하고 계청하면 근시가 향로를 안(案) 위에 드린다. 근시가 찬(瓚)을 꿇어앉아 바치면 찬례가 ‘집찬(執瓚)하고 관지(灌地)하소서.’ 하고 계청하여 이를 마치면 찬을 근시에게 주어 근시는 다시 대축(大祝)에게 주어 이를 준소(尊所)에 두게한다. 근시가 폐비(幣篋)를 꿇어앉아 바치면 찬례가 ‘집폐(執幣)하여 헌폐(獻幣)하소서.’

座前， 北向立， 贊禮俯伏跪啓請：“跪。” 殿下跪， 亞獻官以下在位者同。 【贊者亦唱。】 近侍一人捧香合跪進， 一人捧香爐跪進， 贊禮啓請：“三上香。” 近侍奠爐于案。 近侍以(贊) [瓚] 跪進， 贊禮啓請：“執瓚灌地。” 訖， 以瓚授近侍， 近侍受以授大祝， 置於尊所。 近侍以幣篋跪進， 贊禮啓請：“執幣獻幣。” 以幣授近侍， 奠于大王神座前； 又近侍以幣篋跪進， 贊禮啓請執幣獻幣， 以幣授近侍， 奠于王后神座前。 【凡進香、進瓚、進幣， 皆在東西向； 奠爐、奠瓚、奠幣， 皆在西東向； 進爵、奠爵， 準此。】 贊禮啓請：“俯伏與平身。” 殿下俯伏與平身， 亞獻官以下在位者同。 【贊者亦唱。】 贊禮導殿下出戶降復位， 執禮曰：“行初獻禮。” 贊禮導殿下升自東階詣尊所， 西向立。 執尊者舉幕， 近侍一人酌醴齊， 二人以爵受酒。 贊禮導殿下入詣神座前， 北向立， 贊禮俯伏跪啓請：“跪。” 殿下跪， 亞獻官以下在位者同。 【贊者亦唱。】 近侍以爵跪進， 贊禮啓請：“執爵獻爵。” 以爵授近侍， 奠于大王神座前； 又近侍以副

하고 계청하여 <전하가> 폐를 근시에게 주어 대왕 신좌(大王神座) 앞에 드린다.

또 근시가 <다른> 폐비(幣篚)를 가지고 꿇어앉아 바치면 찬례가 ‘집폐(執幣)하여 헌폐(獻幣)하소서.’ 하고 계청하면 <전하가> 폐를 근시에게 주어 이를 왕후 신좌(王后神座) 앞에 드린다. 【무릇 진향(進香)·진찬(進瓚)·진폐(進幣)를 할 때는 모두 동쪽에서 서향하여 하고, 전로(奠爐)·전찬(奠瓚)·전폐(奠幣)할 때는 모두 서쪽에서 동향하여 하며, 진작(進爵)·전작(奠爵)도 이에 준해 한다.】 찬례가 ‘부복하였다가 흥하고 평신(平身)하소서.’ 하고 계청하면 전하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아헌관 이하 그 위치에 있는 자도 모두 같이 한다. 【찬자(贊者)가 역시 창(唱)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戶]으로 나가서 내려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면, 집례가 ‘행초헌례(行初獻禮)’를 말하여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부터 올라가서 존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면 집준자(執尊者)는 멍(鞶)을 들고 근시(近侍) 1인이 예제(醴齊)를 뜨고 다른 2인이 작(爵)으로 그 술을 받는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가 신좌(神座)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서면 찬례가 꿇어앉아 부복하고는 ‘궤(跪)하소서.’ 하고 계청하면 전하가 무릎을 꿇는다. 아헌관 이하 그 위치에 있는 자도 모두 같이 한다. 【찬자가 역시 창한다.】

근시가 작(爵)을 꿇어앉아 바치면 찬례가 ‘집작(執爵)하고 헌작(獻爵)하소서.’ 하고, 계청하여 <전하가> 작을 근시에게 주어서 대왕 신좌(大王神座) 앞에 드린다. 또 근시가 부작(副爵)을 꿇어앉아 바치면 찬례가 ‘집작(執爵)하고 헌작(獻爵)하소서.’ 하고 계청하여 <전하가> 작을 근시에게 주어 왕후 신좌(王后神座) 앞에 드린다. 찬례가 <전하에게>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궤하소서.’ 하고 계청하고 대축(大祝)이 대왕 신좌의 오른쪽으로 나아가 동향하여 무릎을 꿇고 축문(祝文)을 읽고 나면 찬례가 ‘부복하였다가 흥하여 평신하소서.’ 하고 계청하여 전하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한

爵跪進，贊禮啓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王后神座前。贊禮啓請：“俯伏與少退北向跪。”大祝進大王神座之右，東向跪讀祝文訖，贊禮啓請：“俯伏與平身。”殿下俯伏與平身，亞獻官以下在位者同。【贊者亦唱。】贊禮導殿下出戶降復位，執禮曰：“行亞獻禮。”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盥手悅手訖，謁者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幕酌盞齊，執事者二人以爵受酒，謁者引亞獻官入詣大王神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大王神座前；又執事者以副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王后神座前。謁者贊：“俯伏與平身。”引亞獻官出戶降復位。執禮曰：“行終獻禮。”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訖，引降復位，執禮曰：“哭。”贊禮俯伏跪啓請：“跪俯伏哭。”殿下跪俯伏哭盡哀，亞獻官以下在位者同。【贊者亦唱。】執禮曰：“止哭四拜。”贊禮啓

다. 아헌관 이하 그 위치에 있는 자도 같이 한다. 【찬자가 역시 찬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 밖으로 나가서 내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행아헌례(行亞獻禮)’를 말하면, 알자(謁者)가 아헌관(亞獻官)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북향해 서서 손을 씻고 수건에 손을 닦고 나면 알자가 다시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서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고 선다.

집준자(執尊者)가 먹(饌)을 들고 양제(盞齊)를 뜨면 집사자(執事者) 2인이 작(爵)을 가지고 그 술을 받는다. 이에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대왕 신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서면 ‘궤(跪)하라.’ 하고 찬(贊)한다. 집사자가 작(爵)을 아헌관에게 주어 아헌관이 집작(執爵)하여 헌작(獻爵)하는데 그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대왕 신좌 앞에 드린다. 또 집사자가 부작(副爵)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집작(執爵)하여 헌작하는데 그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대왕 신좌 앞에 드린다. 또 집사자가 부작(副爵)을 아헌관에게 주어 아헌관이 집작(執爵)하여 헌작(獻爵)하는 데 그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 신좌(王后神座) 앞에 드린다. 알자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평신하라.’ 하고 찬(贊)하고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지계문 밖으로 나와서 내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행종헌례(行終獻禮)’ 하고 말하면, 이에 알자가 종헌관(終獻官)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亞獻)의 의절같이 하고는 인도하여 내려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곡(哭)’ 하고 말하면 찬례가 부복하여 무릎을 꿇고 〈전하에게〉 ‘궤하고 부복하여 곡(哭)하소서.’ 하고 계청하면 전하가 무릎을 꿇고 부복하여 곡을 하되 슬픈 정을 다한다. 아헌관 이하 그 위치에 있는 자는 모두 같이 한다. 【찬자가 역시 찬한다.】 집례가 ‘지곡(止哭), 사배(四拜)’라고 말하면 찬례가 ‘지곡하시고 일어나시어 사배하시고 일어나시어 평신(平身)하소서.’ 하고 계청하면 전하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 네번 절하고 다시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이때 아헌관 이하 그 위치에 있는자는 모두 이와 같이

請：“止哭與四拜與平身。” 殿下止哭與四拜與平身，亞獻官以下在位者同。

【贊者亦唱。】贊禮啓禮畢，俯伏興，導殿下還齋殿。尚衣院官進袞龍袍、玉帶，【還宮繖扇、仗衛導從，如來義。】謁者引亞獻官、終獻官出，奉禮郎引宗親、文武百官出，贊引引典祀官以下俱復拜位。執禮曰：“四拜。”贊者唱：“鞠躬四拜與平身。”典祀官以下鞠躬四拜與平身，贊引以次引出。大祝納大王神主，宮闈令納王后神主，竝如儀。執禮帥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殿司各帥其屬撤禮饌，大祝捧祝幣瘞於坎，宗親及百官服吉服，詣齋殿前序立跪，班首進名奉慰。

	<p>한다. 【찬자가 역시 창하여 한다.】 찬례가 예필(禮畢)을 아뢰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전하를 재전(齋殿)으로 돌아가면, 상의원(尙衣院) 관원이 곤룡포(袞龍袍)와 옥대(玉帶)를 바친다. 【환궁(還宮)할 때 산선(緞扇)과 장위(仗衛)의 도종(導從)은 올 때의 의절과 같다.】</p> <p>알자는 아헌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봉례랑은 종친과 문무 백관을 인도해 나가며, 찬인(贊引)은 전사관(典祀官) 이하를 인도하여 모두 배위(拜位)로 돌아 간다. 집례가 ‘사배(四拜)’ 하고 말하면, 찬자(贊者)가 ‘국궁(鞠躬),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 하고 창(唱)하여 전사관 이하가 모두 몸을 구부려서 네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이리하여 찬인이 차례로 인도해 나가고 대축(大祝)은 대왕의 신주(神主)를 받들어 궤(匱)에 넣고, 궁위령(宮闈令)은 왕후의 신주를 받들어 궤에 넣기를 의절과 같이 한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인솔하고 배위(拜位)로 나아가 네번 절하고 나오고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는 각기 그 요속(僚屬)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며 대축(大祝)은 축·폐(祝幣)를 받들고 가서 감(坎)에 묻는다. 종친 및 백관이 길복(吉服)을 입고 재전(齋殿) 앞에 나아가 차례로 서서 꿇어앉아 그 반수(班首)2452)가 명단을 올려 봉위(奉慰)한다.”</p>	
<p>단종 11권, 2년(1454) 갑술 / 명 경태(景泰) 5년) 7월 15일(갑자) 2번째기사 경희전 고유제의 의례</p>	<p>기일(期日) 전 1일(前一日)에 충扈위(忠扈衛)에서 악장(幄帳)을 경희전(景禧殿) 서계(西階) 위에 동향하여 설치하면 봉상시(奉常寺)의 관원이 상(床)과 욱석(褥席) 2벌을 그 악장 안에 설치하여 놓으며, 【대왕의 위판(位版)과 상석(牀席)은 오른쪽에 있고, 왕후의 위판과 상석은 왼쪽에 있다.】 이보다 먼저 위판(位版) 2개와 아울러 궤(匱)까지 만들어서 상자(箱子)에 담고는 파(帕)2474) 로 덮어서 이를 요여(腰輦)에 봉안(奉安)하여 둔 것을 악장(幄帳) 앞에 이르러 대축(大祝)과 궁위령(宮闈令)이 각기 욱위(褥位)로 받들어 모신다.</p>	<p>前一日, 忠扈衛設幄於景禧殿西階上, 東向; 奉常寺官設床及褥席二於幄內。 【大王位版牀席在右, 王后位版牀席在左。】先造位版二并匱, 盛以箱覆以帕, 安於腰輦, 詣幄前, 大祝、宮闈令各奉安於褥位, 又奉常寺官設卓四於神位東南, 西向; 【題大王位版卓在北, 次筆硯卓, 次王后位版卓, 次盥槃</p>

또 봉상시(奉常寺)의 관원이 탁자(卓子) 4개를 신위(神位)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대왕의 위판(位版)을 쓸 탁자는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필·연(筆硯)을 놓을 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왕후의 위판을 쓸 탁자가 있으며, 그 다음에 관반(盥槃)을 놓을 탁자가 있다.】 붓·벼루·먹·광칠(光漆)·관반(盥槃) 관이(盥匱) 【향탕(香湯)을 갖추.】·수건[巾] 【흰색 세저포(細苧布)로 한다.】 등과 초[燭] 각각 2개를 갖추어 놓으며, 제위판관(題位版官)·대축(大祝)·궁위령(宮闈令)의 관세(盥洗)를 동계(東階) 동남쪽에 설치한다. 집례(執禮)는 전하의 욕위(褥位)를 경희전(景禧殿) 동계(東階)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제위판관(題位版官) 2인과 대축·궁위령의 자리는 내문(內門) 안의 서쪽에 동쪽을 위로 하여 북향해 설치하며, 집례의 자리는 동계(東階) 아래에 서쪽으로 가깝게 서향하여 설치하며, 찬자(贊者)와 찬인(贊引)은 그 남쪽에 있게 하되, 약간 뒤로 물려서 북쪽을 위로 하여 설치한다.

종친(宗親) 및 문무 백관(文武百官)의 자리는 외정(外庭)에 설치하고, 【문관(文官)은 동쪽에 있고 종친(宗親) 및 무관(武官)은 서쪽에 있도록 평상시의 의절과 같이 한다.】 감찰(監察)의 자리 2개소를 문·무반(文武班) 뒤에 모두 북향하여 설치한다. 【서리(書吏)들이 각기 그 뒤에 배종(陪從)한다.】 예감(瘞坎)2475) 은 전(殿)의 북쪽 임방(壬方)인 곳에 개설하되 넓이와 깊이는 그 물건을 족히 용납할 정도로 한다. 그 날 행사하기 전에 궁위령(宮闈令)이 신악(神幄)을 깨끗이 정돈해 털고 난 뒤에, 종친 및 백관이 조복(朝服)을 갖추고 모두 중문(中門) 밖으로 나가고 집례(執禮)·제위판관(題位版官)·대축(大祝)·궁위령(宮闈令)·찬자(贊者)·찬인(贊引)은 모두 제복(祭服)을 입고 먼저 전정(殿庭)으로 들어가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여 사배(四拜)한 뒤에, 집례·찬자·찬인이 그 자리로 나아가고, 찬인이 제위판관·대축·궁위령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盥洗)를 마치고는 각기 그 자리로 나아간다. 봉례랑(奉禮郎)이 종친(宗親) 및 백관(百官)을 나누어 인도하고 들어가 그 자리로

卓。】具筆、硯、墨、光漆、盥槃、盥匱 【具香湯。】、巾【用白細苧布。】及燭各二；設題位版官、大祝、宮闈令盥洗於東階，東南。執禮設殿下褥位於殿東階東南，西向；設題位版官二、大祝·宮闈令位於內門內之西，北向東上；設執禮位於東階下近西，西向，贊者、贊引在南差退，北上；設宗親及文武百官位於外庭；【文官在東，宗親及武官在西，如常儀。】設監察位二於文武班後，俱北向。【書吏各陪其後。】開瘞坎於殿之北壬地，方深取足容物。其日未行事前，宮闈令整拂神幄，宗親及百官具朝服，皆就中門外。執禮、題位版官、大祝、宮闈令、贊者、贊引俱祭服，先入殿庭，重行北向西上，四拜訖，執禮、贊者、贊引就位，贊引引題位版官、大祝、宮闈令詣盥洗位盥洗訖，各就位，奉禮郎分引宗親及百官入就位。判通禮詣齋殿前，俯伏跪啓請中嚴，小頃啓外辦，殿下具冕服出，贊禮導殿下入就位。【近侍從入，繖扇及護衛之官，停於門外。】執禮曰：“四拜。”贊禮俯伏跪啓請：“鞠躬四拜興平身。”殿下鞠躬四拜興平

나아가며 판통례(判通禮)가 재전(齋殿) 앞에 나아가 부복(俯伏)하고 꿇어앉아 중엄(中嚴)을 계청(啓請)하고, 조금 있다가 외판(外辦)을 아된다.

전하가 면복(冕服)을 갖추고 나오면 찬례(贊禮)가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가서 그 자리로 나아간다. 【근시(近侍)가 뒤따라 들어가고 산·선(繖扇) 및 호위하는 관원은 문밖에 머무른다.】 집례가 ‘사배(四拜)’를 말하여 찬례가 부복해 꿇어앉아 전하에게 ‘국궁(鞠躬)하였다가 사배(四拜)하고 일어나 평신(平身)하소서.’ 하고 계청하여, 전하가 몸을 구부려서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종친 및 백관도 같이 한다. 【찬자(贊者)가 역시 찬한다.】 찬례가 다시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 탁자(卓子)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대축·궁위령이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악장(幄帳)에 나아가 대축은 대왕의 위판(位版)을 받들고 들어가고 각기 탁자에 놓고는 위판(版)을 열고 위판(位版)을 받들어 내어 향탕(香湯)2476) 에 목욕시키고 수건으로 닦은 뒤에 탁자에 뉘어 놓는다.

제위판관(題位版官) 2인이 동계로부터 올라와서 각기 탁자 앞에 이르러 서향하고 서서 한 사람은 쓰기를, ‘유명증시(有明贈諡) 공순 문종 흠명 인숙 광문 성효 대왕(恭順文宗欽明仁肅光文聖孝大王)’이라 하고 한 사람은 ‘인효 순혜 현덕 왕후(仁孝順惠顯德王后)’라고 다같이 먹[墨]으로 쓴 뒤에 광칠(光漆)로 여러 번 칠한다. 【먹글씨가 마르기를 기다려서 곧 거듭 칠한다.】 그리고나서 모두 무릎을 꿇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다시 내려와서 그 자리로 돌아가고 대축과 궁위령은 각기 위판(位版)을 받들어 위판(版) 속에 넣어 신주(神主)에 봉안(奉安)한 뒤에 무릎을 꿇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다시 내려와 그 자리로 돌아간다. 찬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 밖으로 나가서 다시 내려와 그 자리로 돌아갔다가 잠시 재전(齋殿)으로 나아간다. 봉상시(奉常寺) 관원이 제주탁(題主卓)2477) 과 필연(筆硯)·관반탁(盥盤卓)2478) 을 거두고 또 관세(盥洗)도 철거한다. 봉례랑(奉禮郎)은 종친 및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고 나가고

身, 宗親及百官同. 【贊者亦贊.】贊禮導殿下升自東階詣卓前, 北向立. 大祝、宮闈令升自東階詣幄, 大祝奉大王位版匱, 宮闈令奉王后位版匱, 入置于卓, 開匱奉位版, 浴以香湯, 拭以巾, 臥置于卓. 題位版官二人升自東階, 各詣卓前西向立, 一人題云: ‘有明贈諡恭順文宗欽明仁肅光文聖孝大王’ 一人題云: ‘仁孝順惠顯德王后’, 俱墨書訖, 以光漆重模之, 【待墨書乾, 乃重模之.】 俱跪俯伏興降復位. 大祝、宮闈令各捧位版納于匱, 安於神主匱後, 跪俯伏興降復位. 贊禮導殿下出戶降復位, 權就齋殿, 奉常寺官撤題主卓及筆硯盥槃卓, 又撤盥洗, 奉禮郎分引宗親及百官出. 執禮設典祀官位於內門內之西, 北向東上, 典祀官、典司各率其屬入, 奠祝版於神位之右, 【有坫.】設香爐、香合竝燭於神位前, 次設禮饌, 【饌品與朔望祭同.】設尊於戶外之左, 置盞二於尊所. 宗親及百官皆就中門外, 諸執事就內門外位, 【盥手而入.】執禮帥贊者、贊引入就殿庭, 重行北向西上, 四拜訖, 就位. 贊引引典祀官以下入就殿庭, 重

집례(執禮)가 전사관(典祀官)의 자리를 내문(內門) 안의 서쪽에 동쪽을 위로 하여 북향해 설치하면 전사관(典祀官)과 전사(典祀)가 각기 그 요속(僚屬)을 인솔하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은 신위(神位) 오른쪽에 놓고 【점(坫)이 있다.】 향로(香爐)·향합(香合)과 아울러 초[燭]는 신위 앞에 진설해 놓고는 그 다음에 예찬(禮饌)을 진설한다. 【찬품(饌品)은 삭망제(朔望祭)와 같다.】 지계문 밖 왼쪽에 존소(尊所)를 베풀고 잔(盞) 2개를 그 존소에 놓아 둔다. 종친 및 백관은 모두 중문(中門) 밖에 정해진 자리로 나아가고, 모든 집사(執事)는 내문(內門) 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손을 씻고 들어간다.】 집례(執禮)가 찬자(贊者)와 찬인(贊引)을 거느리고 전정(殿庭)으로 나아가서 곁줄로 서쪽을 위로 하여 북향하여 사배(四拜)하고 나서 그 자리로 나아가면, 찬인(贊引)이 전사관(典祀官) 이하를 인도하여 전정으로 들어가서 곁줄로 서쪽을 위로 하여 북향해 선다. 집례(執禮)가 ‘사배(四拜)’라고 말하면, 찬자(贊者)가 ‘국궁(鞠躬),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을 찬(贊)하여 전사관 이하 모두 몸을 구부려서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인(贊引)이 전사관 이하를 인도하여 각기 그 자리로 나아가며, 봉례랑(奉禮郎)은 종친(宗親) 및 백관(百官)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가 그의 자리로 나아간다. 대축(大祝)과 궁위령(宮闈令)이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 신위(神位) 앞에 이르러서 궤(匱)를 열고 신주(神主)를 받들어 내어, 각기 그 좌(座)에 베풀어 놓고는 건(巾)으로 덮고, 【대왕의 신주(神主)는 백저건(白苧巾)으로 덮고 왕후의 신주는 청저건(靑苧巾)으로 덮는다.】 궤(几)를 그 오른쪽에 설치해 놓는다. 판통례(判通禮)가 재전(齋殿) 앞으로 나아가서 부복하여 꿇어앉아 외관(外辦)을 아뢰게 되면 임금이 나온다. 【관세(盥洗)하고 나온다.】 찬례(贊禮)가 전하를 인도하고 들어가 자리로 나아가서 집례(執禮)가 ‘사배(四拜)’라고 말하면, 찬례가 부복하여 꿇어앉아 전하에게 ‘국궁(鞠躬)하였다가 사배(四拜)하고, 일어나 평신(平身)하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몸을 구부려서 네 번 절하고 일어

行北向西上, 執禮曰: “四拜。” 贊者贊: “鞠躬四拜興平身。” 典祀官以下各就位, 奉禮郎分引宗親及百官入就位, 大祝、宮闈令升自東階, 詣神位前開匱, 各捧出神主, 設於座, 覆以巾, 【大王神主, 覆以白苧巾; 王后神主, 覆以靑苧巾。】 設几於右。 判通禮詣齋殿前, 俯伏跪啓外辦, 殿下出, 【盥洗而出。】 贊禮導殿下入就位, 執禮曰: “四拜。” 贊禮俯伏跪啓請: “鞠躬四拜興平身。” 殿下鞠躬四拜興平身, 宗親及百官同。 【贊者亦贊。 凡執禮有辭, 贊者皆傳贊, 後倣此。】 贊禮導殿下升自東階詣尊所, 西向立, 近侍 【承旨。】 一人酌酒, 二人以盞受酒, 贊禮導殿下入詣神位前, 北向立, 贊禮俯伏跪啓請: “搯圭。” 殿下跪搯圭, 【如搯不便, 近侍承奉。】 宗親及百官跪。 【贊者亦贊。】 近侍一人捧香合跪進, 一人捧香爐跪進, 贊禮啓請三上香, 近侍奠爐于案。 【進香, 在東西向; 奠爐, 在東西向。 進奠盞準此。】 近侍以盞跪進, 贊禮啓請執盞獻盞, 以盞授近侍, 奠于大王神位前, 又

나서 몸을 바로 한다. 종친 및 배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贊者)가 역시 찬한다. 무릇 집례(執禮)가 말이 있으면 찬자가 모두 그대로 전달해 찬한다. 뒤에도 이대로 모방해 한다.】 찬례(贊禮)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서 존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고 서면, 근시(近侍) 【승지(承旨)가 한다.】 1인이 술을 따르고 2인은 잔(盞)을 가지고 그 술을 받는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가서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고는 찬례가 부복하여 꿇어앉아 전하에게 ‘규(圭)2479) 를 띠에 꽂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무릎을 꿇고 규(圭)를 띠에 꽂는다. 【만약 꽂기가 불편하면 근시가 받아든다.】 종친(宗親) 및 백관(百官)도 무릎을 꿇고 앉는다. 【찬자(贊者)가 역시 찬을 한다.】 근시(近侍) 1인이 향합(香合)을 받들고 가서 무릎을 꿇고 바치고, 다른 1인은 향로(香爐)를 받들고 가서 역시 무릎을 꿇고 바친다. 찬례가 ‘삼상향(三上香)’ 하기를 계청하면 근시(近侍)가 향로를 안(案)에 놓는다. 【진향(進香)하는 사람은 동쪽에 서향하여 있고, 전로(奠爐)하는 사람은 서쪽에 동향하여 있다. 진잔(進盞)과 전잔(奠盞)도 이에 준(准)한다.】 근시가 잔(盞)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바치면, 찬례(贊禮)가 전하에게 ‘집잔(執盞)하여 헌잔(獻盞)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잔을 근시에게 주어 대왕 신위(大王神位) 앞에 드리고, 또 근시가 부잔(副盞)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바치면, 찬례가 임금에게 ‘집잔하여 헌잔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잔을 근시에게 주어 왕후 신위(王后神位) 앞에 드린다. 찬례가 전하에게 ‘규(圭)를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뒤로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기’를 계청하고, 이 대축(大祝)이 신위(神位) 오른쪽으로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祝文)을 읽고 나면, 찬례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평신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종친 및 백관도 이와 같이 한다. 【이때 찬자가 역시 찬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 밖으로 나와 다시 내려가 그 자리로 돌아가면, 집례(執禮)가 다

近侍以副盞跪進，贊禮啓請執盞獻盞，以盞授近侍，奠于王后神位前。贊禮啓請執圭俯伏與少退北向跪，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贊禮啓請：“俯伏與平身。”殿下俯伏與平身，宗親及百官同。【贊者亦贊。】贊禮導殿下出戶降復位，執禮曰：“四拜。”贊禮俯伏跪啓請：“鞠躬四拜與平身。”殿下鞠躬四拜與平身，宗親及百官同。贊禮啓禮畢，俯伏興，導殿下還齋殿，奉禮郎分引宗親及百官出，就光化門外侍立位。【其導駕六引，中部令、判漢城、禮曹判書、戶曹判書、大司憲、兵曹判書，亦依此前導。長官有故則次官。】贊引引典祀官以下俱復拜位，執禮曰：“四拜。”贊者贊：“鞠躬四拜與平身。”典祀官以下鞠躬四拜與平身。贊引出，執禮率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大祝、宮闈令納神主如儀，典祀官帥其屬撤禮饌，大祝捧祝版瘞於坎。

	<p>시 ‘사배(四拜)’라고 말하며, 찬례가 부복하여 무릎을 꿇고 ‘국궁(鞠躬)하였다가 사배(四拜)하고 일어나 평신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몸을 구부려서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며 종친 및 백관도 이와 같이 한다. 찬례가 예필(禮畢)을 아뢰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전하를 인도하여 재전(齋殿)으로 돌아가고, 봉례랑(奉禮郎)이 종친 및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광화문(光化門) 밖에 설치된 시립위(侍立位)로 나간다. 【그 어가(御駕)를 인도하는 육인(六引)은 중부령(中部令)·판한성(判漢城)·예조 판서(禮曹判書)·호조 판서(戶曹判書)·대사헌(大司憲)·병조 판서(兵曹判書)가 또한 이에 의해 전도(前導)하는데, 만일 장관(長官)이 유고하면 차관(次官)이 대행한다.】 찬인(贊引)이 전사관(典祀官) 이하를 인도하여 모두 배위(拜位)로 돌아가고, 집례(執禮)가 사배(四拜)를 말하여, 찬자(贊者)가 ‘국궁(鞠躬),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을 찬(贊)하면, 전사관 이하의 몸을 구부려서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인(贊引)이 나가고 집례(執禮)가 찬자(贊者)와 찬인(贊引)을 인솔하고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가면, 대축(大祝)과 궁위령(宮闈令)이 신주(神主)를 궤(匱)에 드려 모시기를 의절과 같게 하며, 전사관(典祀官)은 그 요속(僚屬)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대축(大祝)은 축판(祝版)을 받들고 나가 감(坎)에 묻는다.</p>	
<p>단종 11권, 2년(1454) 갑술 / 명 경태(景泰) 5년) 7월 16일(을축) 1번째기사 문종 대왕과 현덕 왕후의 신주를 종묘에 부묘하다</p>	<p>문종 대왕(文宗大王)과 현덕 왕후(顯德王后)의 신주(神主)를 종묘(宗廟)에 부묘(祔廟)하였다. “그 의절(儀節)은 신여(神輦)가 장차 악좌(輦座)에 이르러고 하면, 유사(有司)가 부알위(祔謁位) 2개소를 묘정(廟庭)에서 북쪽으로 가까운 가운데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대왕위(大王位)는 서쪽에 있고, 왕후위(王后位)는 동쪽에 있으며, 각각 상(床)과 욱석(褥席)을 설치한다.】 신관(晨禱)2488) 은 제향일(祭享日) 축시(丑時) 5각(刻) 전에 【축시 5각 전이면 즉 3경(更) 3점(點)이며, 행사</p>	<p>乙丑/祔文宗大王、顯德王后神主于宗廟。 其儀： 神輦將至輦座，有司設祔謁位二於廟庭近北當中北向。 【大王位在西，王后位在東，各設床及褥席。】 晨禱，享日丑前五刻，【丑前五刻，即三更三點，行事用丑時一刻。】 宮闈令率其屬開室，</p>

(行事)는 축시 1각(刻)에 한다.】 궁위령(宮闈令)이 그 요속(僚屬)을 인솔하고, 신실(神室)을 열고는 신악(神幄)을 정제(整齊)해 털고서 자리[座]마다 의석(屨席)2489) 과 포연 회순(蒲筵績純)2490) 을 설치하고, 완석 분순(莞席紛純)2491) 을 덧피고, 오른쪽에는 조계(彫几)를 설치한다. 종묘령(宗廟令)·전사관(典祀官)도 각기 그 요속(僚屬)을 인솔하고 들어가서 찬구(饌具)를 챙기고 나면, 찬인(贊引)이 감찰(監察)을 인도하여 조계(阼階)2492) 로부터 올라가서 【무릇 행사(行事)하는 집사관(執事官)이 오르고 내릴 때는 모두 조계(阼階)를 거친다.】 당(堂)의 아래 위를 살펴봄에 의절과 같지 않은 것이 혹시 있지 않나 규찰(糾察)하고는 도로 나온다.

3각(刻) 전에 모든 향관(享官)과 배제관(陪祭官)2493) 이 각기 그 의복을 입는다. 【향관(享官)은 제복(祭服)을 입고, 배제관(陪祭官)은 조복(朝服)을 입는다.】 집례(執禮)가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을 인솔하고 동문(東門)으로부터 들어와서 먼저 섬돌[階] 사이에 있는 악현(樂懸) 북쪽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해 서쪽을 위로삼아 사배(四拜)하고 각기 그 위차(位次)로 나아가면, 아악 령(雅樂令)이 공인(工人)과 이무(二舞)2494) 를 인솔하고 그 위차(位次)로 들어가서 문무(文舞)는 들어가 현(懸) 북쪽에 진렬하게 하고 무무(武舞)는 현(懸) 남쪽 길 서편에 서게 한다. 봉례랑(奉禮郎)이 배제(陪祭)할 종친(宗親) 및 문무 백관(文武百官)을 나누어 인도하고 들어가 그 위차로 나아간다. 알자(謁者)는 아현관(亞獻官)을 인도하고, 찬인(贊引)은 모든 향관(享官)을 인도하여 함께 문 밖의 위차로 나아가며, 찬인이 감찰(監察)·전사관(典祀官)·대축(大祝)·축사(祝史)2495) ·재랑(齋郎)·종묘령(宗廟令)·궁위령(宮闈令)·협률랑(協律郎)2496) ·봉조관(奉俎官) 그리고 준(樽)·뢰(罍)·비(篚)·떡(羶)을 잡는 자와, 칠사 공신제(七祀功臣祭)2497) 의 축사(祝史)·재랑(齋郎) 및 준(樽)·뢰(罍)·비(篚)·떡(羶)을 잡는 자 등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현(懸) 북쪽에 설치된 배위(拜位)로 나아가 겹줄로 북향해 서쪽을 위로 하여 선다.

整拂神幄，每座皆設屨席、蒲筵績純，加莞席紛純，右彫几。宗廟令、典祀官各率其屬入，實饌具畢，贊引引監察升自阼階，【凡行事執事官陞降，皆自阼階。】按視堂之上下，糾察不如儀者，還出。前三刻，諸享官及陪祭官各具其服，【享官祭服，陪祭官朝服。】執禮率謁者、贊者、贊引入自東門，先就階間懸北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訖各就位。雅樂令率工人、二舞入就位，文舞入陳於懸北，武舞立於懸南道西。奉禮郎分引陪祭宗親及文武百官入就位，謁者引亞獻官，贊引引諸享官俱就門外位，贊引引監察、典祀官、大祝、祝史、齋郎、宗廟令、宮闈令、協律郎、奉俎官、執樽罍篚罍者、七祀功臣祝史·齋郎·執樽罍篚罍者入就懸北拜位，重行北向西上。執禮曰：“四拜。”贊者贊鞠躬四拜興平身，【凡執禮有辭，贊者皆傳贊。】監察以下皆鞠躬四拜興平身。贊引引監察及典祀官就位，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帨訖，各就位。前一刻，謁者引亞獻官，贊引引終獻官、進幣瓚爵官、薦俎官、奠幣瓚爵官、七祀功臣

집례(執禮)가 ‘사배(四拜)’라고 말하여, 찬자(贊者)가 ‘국궁(鞠躬),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을 전하여 찬(贊)하면, 【무릇 집례(執禮)가 말이 있으면 찬자(贊者)가 모두 그대로 전하여 찬(贊)한다.】 감찰(監察) 이하 모두 몸을 구부려서 네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贊引)이 감찰(監察) 및 전사관(典祀官)을 인도하여 그 위치로 나가고, 찬인이 모든 집사(執事)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손씻고 수건에 닦고 나서 각기 그 위치로 나아가간다. 1각(刻) 전에 알자(謁者)는 아헌관(亞獻官)을 인도하고, 찬인(贊引)은 종헌관(終獻官)·진폐찬작관(進幣贊爵官)·천조관(薦俎官)·전폐 찬작관(奠幣贊爵官)과 칠사 공신(七祀功臣)의 헌관(獻官)을 인도하고 들어가서 각기 위치에 나아가고, 또 찬인이 대축(大祝)·종묘령(宗廟令)·궁위령(宮闈令)을 인도하여 조계(阼階)로부터 올라가서 환조실(桓祖室)에 나아가 들어가서 감실(塋室)을 열고 대축·궁위령이 신주(神主)를 받들어내어 그 좌(座)에 진설해 모신다. 【신악(神幄) 안으로 나아가서 신주궤(神主匱) 왼쪽에서 궤를 열고, 좌(座)에 모시는데, 선왕(先王)의 신주(神主)는 대축(大祝)이 받들어 내어 백저건(白苧巾)으로 덮어 놓고, 선후(先后)의 신주는 궁위령(宮闈令)이 받들어 내어 청저건(靑苧巾)으로 덮어 놓되, 서쪽을 위로 삼는다.】 이렇게 차례로 태조(太祖) 이하의 신주를 받들어 내기를 환조실(桓祖室)에서의 의절과 같이 한다.

다시 인도하여 내려와 그 위치로 돌아가면, 찬인이 재랑(齋郎)을 인도하여 작세위(爵洗位)에 이르러서 찬(贊)을 물에 씻어 닦고 작(爵)을 물에 씻어 닦고는 이를 비(篚)에 담아 받들고는 태계(泰階)로 나아가면, 모든 축사(祝史)들이 각기 계(階) 위에서 맞이하여 받아서 준소(尊所) 점(坫) 위에 놓고 나서는 그 전(殿) 위에 있던 모든 집사(執事)는 각기 편리한 쪽으로 계(階) 아래로 내려가서 서로 마주보고 차례로 서서, 문종 대왕(文宗大王)과 현덕 왕후(顯德王后)의 신여(神輦)가 전(殿)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려서 각기 다시 계(階) 위의 위치로 돌아온다. 모든 향관(享官)이 장차 들어와서 그 자리로 나아가면 판통례(判通

獻官入就位。贊引引大祝、宗廟令、宮闈令升自阼階詣桓祖室，入開塋室，大祝、宮闈令奉出神主，設於座。【詣神幄內，於匱左啓匱，設於座。先王神主，大祝奉出，覆以白苧巾；先后神主，宮闈令奉出，覆以靑苧巾，以西爲上。】以次奉出太祖以下神主，如桓祖室儀，引降復位。贊引引齋郎詣爵洗位，洗贊拭贊，洗爵拭爵，置於篚，奉詣泰階，諸祝史各迎取於階上，置於尊所坫上訖，其殿上諸執事各逐便下階，相向序立，俟文宗大王、顯德王后神輿升殿，各復階上位。諸享官將入就位，判通禮詣齋宮前，俯伏跪啓請中嚴，少頃又啓外辦，殿下具冕服以出，繖扇侍衛如常儀。禮儀使導殿下至東門外，近侍跪進圭，禮儀使俯伏跪啓請執圭，殿下執圭，繖扇仗衛停於門外。尙瑞官奉寶陳於小次之側，禮儀使導殿下入自正門，【侍衛不應入者，止於門外。】協律郎跪俯伏舉麾輿，【凡取物者，皆跪俯伏而取以輿。奠物則跪奠訖，俯伏而後輿。】工鼓祝，軒架作《隆安之樂》。殿下詣版位西向立，【每立定，禮儀使退立於左。】協律郎

禮)가 재궁(齋宮) 앞으로 나아가서 부복(俯伏)해 무릎을 꿇고 ‘중엄(中嚴)’을 계정한다. 조금 지나서 또 ‘외관(外辦)’을 아뢰면, 전하가 면복(冕服)을 갖추고 나오며 산·선(繖扇)의 시위(侍衛)를 평상시의 의절과 같이 한다. 예의사(禮儀使)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문(東門) 밖에 이르면 근시(近侍)가 꿇어앉아 규(圭)를 바친다. 예의사가 부복해 무릎을 꿇고 ‘집규(執圭)’를 계정하면 전하가 규를 잡는다. 이에 산·선(繖扇)의 장위(仗衛)는 문밖에서 머무르고 상서관(尙瑞官)이 보(寶)를 받들어 소차(小次) 곁에 진설해 놓고는 예의사(禮儀使)가 전하를 인도하여 정문(正門)으로부터 들어가면 【시위(侍衛)로서 들어가지 못할 자는 문밖에서 머무른다.】 협률랑(協律郎)이 무릎을 꿇고 부복하여 휘(麾)2498)를 들고서 일어나고 【무릇 물건을 취(取)하는 자는 모두 무릎을 꿇고 부복하여 취하고서 일어나고, 물건을 드리게 되면 무릎을 꿇고 드리고 나서 부복한 뒤에 일어난다.】 공인(工人)이 축(祝)을 두들기면 현가악(軒架樂)은 융안(隆安)의 악(樂)을 연주한다. 전하가 판위(版位)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면, 【서서 자리를 고정할 때마다 예의사(禮儀使)는 물러나 왼쪽에 선다.】 협률랑이 휘(麾)를 누이고 어(敔)를 훑으면 악(樂)이 그친다. 【무릇 악(樂)은 모두 협률랑이 무릎을 꿇고 부복하여 휘(麾)를 들고 일어나고, 공인(工人)이 축(祝)을 두들긴 뒤에 시작되며, 휘를 누이고 어(敔)를 훑은 뒤에 그친다.】 처음에 전하가 장차 문에 들어오려고 하면, 섭판통례(攝判通禮)가 악좌(幄座) 앞으로 나아가 부복해 무릎을 꿇고 ‘악좌에서 내려 여(輿)에 올라 부알(拊謁)’하기를 계정하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대축(大祝)이 대왕의 신주례(神主匱)를 받들어 신여(神輦)에 봉안(奉安)하고 다음 궁위령(宮闈令)이 왕후의 신주례를 받들어 신여에 봉안하며, 내시(內侍)는 각기 궤(几)를 받들어 신주례의 오른쪽에 놓는다. 집례(執禮) 【당하집례(堂下執禮).】가 나아가 신여(神輦)를 인도하여 문에 이르면, 집사자(執事者)가 먼저 대왕의 신여를 받들고 다음 왕후의 신여를 받들어 정문(正門)으로부터 들어와서 부알위(拊謁位) 뒤 옥석(褥

偃麾戛敔，樂止。【凡樂，皆協律郎跪俯伏舉麾輿，工鼓祝而後作，偃麾戛敔而後止。】初殿下將入門，攝判通禮進當幄座前，俯伏跪啓請降座乘輿拊謁，俯伏輿。大祝奉大王神主匱安於輿，次宮闈令奉王后神主匱安於輿，內侍各奉几置於匱右。執禮【堂下執禮。】出引神輿至門，執事者先奉大王神輿，次奉王后神輿，入自正門，置於拊謁位後褥席上。【臨時各設褥席。】大祝、宮闈令各奉几，置於拊謁位近南，開匱奉出神主，安於褥位訖，【其誥命、冊寶神輿將就拊謁位，執事者各取於輿從入，分立神輿之後，待神主升階從升。】攝判通禮進褥位之西北向，俯伏跪啓稱：“以今吉辰，文宗恭順欽明仁肅光文聖孝大王、仁孝順惠顯德王后拊謁。”俯伏輿退。少頃，攝判通禮進褥位之西東向，俯伏跪啓請乘輿拊享，俯伏輿退，降就本班，大祝、宮闈令俱進俯伏跪，各奉神主安於輿。【其匱蓋，亦置輿上近後。】神輿既升，【升自泰階。】大祝、宮闈令奉引，至第六室戶外，【臨時各設褥席，大王位在右，王后位在左。】宮闈令奉王后神

席) 위에 놓아 두고 【임시하여 각각 욕석(褥席)을 설치한다.】 대축과 궁위령이 각기 궤(几)를 받들어 부알위(祔謁位) 남쪽으로 가깝게 놓아 두고는 궤(匱)를 열고 신주(神主)를 받들어 내어 욕위(褥位)에 모시고 나서 【그 고명(誥命)·책보(冊寶)의 신여(神輦)가 장차 부알위(祔謁位)로 나가려고 하면 집사자(執事者)가 각기 여(輿)에서 취하여 가지고 따라 들어가서 신여 뒤에 나누어 섰다가 신주(神主)가 계(階)에 오르기를 기다려서 따라 오른다.】 섭판통례(攝判通禮)가 욕위(褥位) 서쪽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부복해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이제 길신(吉辰)을 택하여 문종 공순 흙명 인숙 광문 성효 대왕(文宗恭順欽明仁肅光文聖孝大王)과 인효 순혜 현덕 왕후(仁孝順惠顯德王后)를 부알(祔謁) 하나이다.’ 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물러난다.

조금 있다가 섭판통례가 욕위 서쪽으로 나아가서 동향하여 부복해 무릎을 꿇고는 ‘여(輿)에 올라 부향(祔享)’ 하기를 계청하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다시 물러나 내려와서 본반(本班)으로 돌아가면, 대축과 궁위령이 함께 나아가 부복해 무릎을 꿇고 각기 신주(神主)를 받들어 신여(神輦)에 봉안해 모신다. 【그 신주궤의 덮개도 역시 신여 위에 뒤로 가깝게 놓는다.】 신여가 이미 오르게 되면 【태계(泰階)로 부더 오른다.】 대축과 궁위령이 받들어 인도하여 제 6실(室) 지계문 밖에 이르러 【임시하여 각기 욕석(褥席)을 설치한다. 대왕의 위치(位次)는 오른쪽에 있고 왕후의 위치는 왼쪽에 있다.】 궁위령은 왕후의 신주를 받들고 들어가서 왼쪽에 모시고는 청저건(靑苧巾)으로 덮고, 대축은 대왕의 신주를 받들고 들어가서 그 좌(座)에 모시고는 백저건(白苧巾)으로 덮는다. 【서쪽을 위로 삼는다.】 내시(內侍)가 각기 궤(几)를 받들어 신좌(神座) 오른쪽에 둔다. 종묘령(宗廟令)이 각기 그 요속(僚屬)을 인솔하고 고명(誥命) 및 책·보(冊寶)를 받들고 들어가 안(案)에 두고, 선개(扇蓋)를 받들어 좌우에 나누어 설치하며, 그 요여(腰輦)는 동계(東階)로부터 내려가서 동문(東門)을 지나 나간다. 집례(執禮)가 ‘사배(四拜)’ 하고 말하여 예의사(禮儀使)가 부

主, 入安於左, 覆以靑苧巾; 大祝奉大王神主, 入安於座, 覆以白苧巾。【以西爲上。】內侍各奉几置於座右, 宗廟令率其屬各奉誥命及冊寶, 入置於案, 次奉扇蓋, 分設於左右, 其腰輿降自東階, 由東門出。執禮曰: “四拜。” 禮儀使俯伏跪啓請: “鞠躬四拜興平身。” 殿下鞠躬四拜興平身, 在位者同。【贊者亦贊, 先拜者不拜。】執禮曰: “禮儀使啓請行事。” 禮儀使進俯伏跪啓請: “有司謹具請行事。” 退復位, 軒架作《景安之樂》, 烈文之舞作, 九成止。近侍詣盥洗位盥洗訖, 還侍位, 謁者引進幣瓚爵官、奠幣瓚爵官詣盥洗位盥訖, 升自阼階詣桓祖室尊所, 北向立。執禮曰: “禮儀使導殿下行晨裸禮。” 禮儀使導殿下, 軒架作《隆安之樂》, 詣盥洗位北向立。禮儀使俯伏跪啓請: “搯圭。” 殿下搯圭。【如搯不便, 近侍承奉。】近侍跪取匱興沃水, 又近侍跪取槃承水, 殿下盥手, 近侍跪取巾於筐以進, 殿下幌手訖, 近侍受巾奠於筐。禮儀使啓請: “執圭。” 殿下執圭, 禮儀使導殿下升自阼階訖, 【禮儀使、近侍從升。】樂止。詣桓

복해 무릎을 꿇고 ‘국궁(鞠躬)하였다가 사배(四拜)하고 일어나 평신(平身)’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몸을 구부려서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위치(位次)에 있는 자도 또한 같다. 【찬자(贊者)가 또한 찬(贊)하며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않는다.】

집례가 ‘예의사(禮儀使) 계청 행사(啓請行事)’ 하고 말하면 예의사가 나아가 부복해 무릎을 꿇고는 ‘유사(有司)가 삼가 행사하시기를 청합니다.’ 하고 아뢰고는 물러나 그 자리로 돌아가면, 헌가악(軒架樂)은 경안(景安)의 악(樂)을 연주하고 열문무(烈文舞)2499)를 추는데, 아홉 번 이루고서 그친다. 근시(近侍)가 관세위(盥洗位)로 나아가 관세(盥洗)를 마치고 시위(侍位)로 돌아가면, 알자(謁者)가 진폐 찬작관(進幣贊爵官)을 인도하여 폐(幣)를 드리게 한다. 찬작관(贊爵官)이 관세위로 나아가 손씻고 수건에 닦고 나서 조계(阼階)2500)로부터 올라가 환조실(桓祖室) 준소(尊所)로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집례가 ‘예의사(禮儀使) 도(道) 전하(殿下) 행(行) 신관례(晨禋禮)’라고 말하고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면, 헌가악(軒架樂)은 융안(隆安)의 악(樂)을 연주한다. 전하가 관세위(盥洗位)로 나아가 북향하고 서면 예의사가 부복해 무릎을 꿇고 ‘진규(摺圭)’를 계청하여 전하가 규를 띠에 꽂는다. 【만약 꽂기가 불편하면 근시(近侍)가 받아서 받든다.】 근시(近侍)가 무릎을 꿇고 이(匱)를 가지고 일어나 물을 부으면 또 다른 근시가 반(槃)을 가지고 그 물을 받는다. 전하가 손을 씻으면 근시가 무릎을 꿇고 비(篋)에서 수건[巾]을 가져다가 임금에게 바쳐 손을 닦고 나면 근시가 수건을 받아서 비(篋)에 놓는다.

예의사(禮儀使)가 ‘집규(執圭)’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규를 잡으면,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조계(阼階)로부터 올라가고 나면 【예의사와 근시도 따라 올라간다.】 악(樂)이 그친다. 환조실(桓祖室) 준소(尊所)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면, 등가악(登歌樂)은 숙안(肅安)의 악(樂)을 연주하고, 열문(烈文)의 춤[舞]을 춘다. 준(尊)을 잡은 자가 먹(罍)을 들고 폐(幣)를 마치고, 찬작관(贊爵

祖室尊所西向立， 登歌作《肅安之樂》，烈文之舞作。執尊者舉罍進幣，贊爵官酌鬱鬯，近侍以贊受鬱鬯。禮儀使導殿下詣神位前北向立，禮儀使俯伏跪啓請：“跪摺圭。”殿下跪摺圭，在位者皆跪。【贊者亦贊。】近侍一人奉香合跪進，一人奉香爐跪進，禮儀使啓請三上香，殿下三上香，近侍奠爐于案，近侍以贊授進幣贊爵官，進幣贊爵官捧贊跪進。禮儀使啓請：“執贊裸地。”殿下執贊裸地訖，以贊授奠幣贊爵官，奠幣贊爵官受以授大祝，置於尊所。近侍以幣篋授進幣贊爵官，進幣贊爵官奉幣跪進。禮儀使啓請執幣獻幣，殿下執幣獻幣，以幣授奠幣贊爵官，奠于案。【凡進香、進贊、進幣，皆在東西向；奠爐、受贊、奠幣，皆在西東向。進爵、奠爵，準此。】禮儀使啓請：“執圭俯伏與平身。”殿下執圭俯伏與平身， 在位者俯伏與平身。

【贊者亦贊。】禮儀使導殿下出戶詣太祖室，次詣恭靖王室，次詣太宗室，次詣世宗室，次詣文宗室，上香裸鬯奠幣竝如上儀訖，登歌止，進幣贊爵官、奠幣贊爵官皆降復位。禮儀使導殿下

官)이 울창(鬱鬯)을 따르면 근시(近侍)가 찬(瓚)으로 울창을 받는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신위(神位)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면, 예의사가 부복해 무릎을 꿇고 ‘진규(摺圭)’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무릎을 꿇고 띠에 규를 꽂으면, 위치(位次)에 있는 자도 모두 무릎을 꿇는다. 【찬자가 또한 찬한다.】 근시 1인이 향합(香盥)을 받들어 꿇어앉아 바치면, 또 근시 1인이 향로(香爐)를 받들어 꿇어앉아 바친다. 예의사가 ‘삼상향(三上香)’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삼상향을 하게 되면 근시가 향로를 안(案)에 드린다.

근시가 찬(瓚)을 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에게 주면 진폐 찬작관이 찬을 받들어 꿇어앉아 바친다. 예의사가 전하에게 ‘집찬(執瓚)하여 관지(裸地)’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찬을 잡고 땅에 강신(降神)하고 나서 그 찬을 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에게 주고 진폐 찬작관은 이를 받아서 대축(大祝)에게 주어 준소(尊所)에 놓아 둔다. 근시가 폐비(幣篚)를 진폐 찬작관에게 주면 진폐 찬작관은 폐(幣)를 받들어 꿇어앉아 바친다. 예의사가 전하에게 ‘집폐(執幣)하여 헌폐(獻幣)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그 폐를 잡아 폐를 드리고 그 폐를 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에게 주어 안(案)에 드린다. 【무릇 진향(進香)·진찬(進瓚)·진폐(進幣)에 있어서는 모두 동쪽에서 서향하여 하고, 전로(奠爐)·수찬(受瓚)·진폐(奠幣)에 있어서는 모두 서쪽에서 동향하여 한다. 진작(進爵)·전작(奠爵)도 이에 준한다.】 예의사가 전하에게 ‘집규(執圭)’하기를 계청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전하가 규를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며, 위치(位次)에 있는 자도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자가 역시 찬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으로 나와 다시 태조(太祖)의 신실(神室)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 공정 왕실(恭靖王室)로 나아가며, 다음에는 태종실(太宗室)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 세종실(世宗室)로 나아가며, 다음에는 문종실(文宗室)로 나아가서 향(香)을 올리고 울창(鬱鬯)을 강신하며 폐(幣)를 드리기

出戶，軒架作《隆安之樂》，降自阼階復位，樂止。當登歌止時，諸祝史各取毛血粢、肝膋瓚於前楹間，俱入奠於神位前，【毛血粢在瓚之後，肝膋瓚在籩之左。】諸祝史俱取肝出戶，燔於爐炭，還尊所饋食。殿下既升裸，贊引引典祀官出，帥進饌者詣廚，以匕升牛于鑊，實于一鼎，次升羊實于一鼎，次升豕實于一鼎，【每室牛羊豕各一鼎。】皆設扃罍。祝史對舉入，設於饌幔內，謁者引薦俎者出詣饌所，奉俎官隨之。俟殿下裸訖復位，樂止。執禮曰：“進饌。”祝史抽扃委于鼎右，除罍加匕畢于鼎。典祀官以匕升牛，實于牲匣，次升羊豕，各實于牲匣，【每室牛羊豕各一匣。】次引薦俎官奉桓祖室俎，奉俎官各奉牲匣，典祀官引饌入自正門。【南門。】俎初入門，軒架作《雍安之樂》，諸祝史俱進撤毛血粢，自阼階授齋郎以出。饌至泰階，諸大祝迎引於階上，薦俎官詣桓祖室神位前，北向跪奠，先薦牛，次薦羊，次薦豕。【諸大祝助奠。】奠訖，啓牲匣蓋，詣太祖室，次詣恭靖王室，次詣太宗室，次詣世宗室，次詣文宗室，奉奠

를 아울러 위의 의절같이 하고나면, 등가악(登歌樂)이 그치고, 진폐 찬작관과 전폐 찬작관이 모두 내려와 그 자리로 돌아간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으로 나오면 헌가악(軒架樂)은 융안(隆安)의 악(樂)을 연주하고 조계(阼階)로부터 내려와 그 자리로 돌아가면 악(樂)이 그친다. 등가악(登歌樂)이 그칠 때를 당하면 모든 축사(祝史)는 각기 모혈반(毛血槃)2501) 과 간료등(肝膋甑)2502) 을 앞 기둥[前楹] 사이에서 취하여 모두 신위(神位) 앞에 드리고 【모혈반(毛血槃)은 등(甑) 뒤에 있고, 간료등(肝膋甑)은 변(籩) 왼쪽에 있다.】 모든 축사(祝史)가 다같이 간(肝)을 가지고 문으로 나와 화로(火爐)의 숯불에 구워서 준소(尊所)로 돌아와 케식(饋食)2503) 한다. 전하가 이미 올라가서 강신하고 나면, 찬인(贊引)이 전사관(典祀官)을 인도하고 나와서 진찬(進饌)하는 자를 인솔하고 주방(廚房)으로 나아가 비(匕)2504) 로 소[牛]를 확(鑊)2505) 에서 들어 올려서 정(鼎)에 채우고, 다음은 양(羊)을 올려 한 술에 채우며 그 다음에는 시(豕)2506) 를 올려 한 술에 채우고는 【실(室)마다 소[牛]·양(羊)·시(豕) 각각 한 술씩 한다.】 모두 경·떡(肩髹)2507) 을 설치한다. 축사(祝史)가 마주 들고서 찬만(饌幔) 안으로 들어가면 알자(謁者)가 천조자(薦俎者)를 인도하여 나가서 찬소(饌所)에 이르고 봉조관(奉俎官)도 따른다. 임금이 강신하고 나서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악(樂)이 그친다. 집행(執禮)이 ‘진찬(進饌)’을 말하여 축사(祝史)가 빗장[扃]을 빼어 술 오른쪽에 두고, 떡(髹)을 제거하고는 비(匕)와 필(畢)을 정(鼎)에 얹어 둔다. 전사관이 비(匕)를 가지고 소[牛]를 올려 생갑(牲匣)에 채우고 그 다음에는 양(羊)·시(豕)를 올려 각기 그 생갑에 채운다. 【실(室)마다 소[牛]·양(羊)·시(豕) 각각 1갑(匣)이다.】 다음 천조관을 인도하여 환조실(桓祖室)의 조(俎)2508) 를 받들고 봉조관이 각기 생갑(牲匣)을 받든다. 전사관이 예찬(禮饌)을 인도하여 정문(正門) 【남문(南門).】 으로부터 들어온다. 조(俎)가 처음 문에 들어가면 헌가악(軒架樂)은 융안(雍安)의 악(樂)을 연주하고 모든 축사는 함께 나아가서

竝如上儀訖，樂止。謁者引薦俎官以下降自阼階復位，諸大祝各取蕭黍稷，搗【而專切。】於脂，燔於爐炭，還尊所。謁者引進幣瓚爵官、奠幣瓚爵官升詣桓祖室尊所北向立，執禮曰：“禮儀使導殿下。”軒架作《隆安之樂》，升自阼階訖，樂止。詣桓祖室尊所西向立，登歌作《壽安之樂》，烈文之舞作。執尊者舉罍，進幣瓚爵官酌醴齊進，近侍二人以爵受酒，禮儀使導殿下詣神位前北向立，禮儀使俯伏跪啓請：“跪搯圭。”殿下跪搯圭，在位者皆跪。【贊者亦贊。】近侍以爵授進幣瓚爵官，進幣瓚爵官奉爵跪進，禮儀使啓請：“執爵獻爵。”殿下執爵獻爵，以爵授奠幣瓚爵官，奠于神位前；近侍以副爵授進幣瓚爵官，進幣瓚爵官捧爵跪進，禮儀使啓請：“執爵獻爵。”殿下執爵獻爵，以爵授奠幣瓚爵官，奠于王后神位前。禮儀使啓請：“執圭俯伏與小退北向跪，樂止。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樂作。禮儀使啓請：“俯伏與平身。”殿下俯伏與平身，在位者俯伏與平身。禮儀使導殿下出戶，

모혈반(毛血槃)을 거두어 조계(阼階)로부터 재랑(齋郎)에게 주고 나온다. 예찬이 태계(泰階)에 이르면 모든 대축이 이를 맞아 계상(階上)으로 인도한다. 천조관이 환조실 신위(桓祖室神位)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고 꿇어앉아 드리는데 먼저 소[牛]를 드리고, 다음 양(羊)을 드리며, 그 다음 시(豕)를 드린다. 【모든 대축이 도와서 드린다.】 드리기를 마치면 생갑(牲匣)의 뚜껑을 연다. 그리고는 태조실(太祖室)로 나아가간다. 다음에 공정왕실(恭靖王室)로 나아가며, 그 다음 태종실(太宗室)로 나아가며, 다음에 세종실(世宗室)로, 다음에 문종실(文宗室)로 나아가서 받들어 드리기를 모두 위의 의절과 같이 하고 나면 악(樂)이 그친다. 알자가 천조관(薦俎官) 이하를 인도하여 조계(阼階)로부터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면 모든 대축이 각기 소(蕭)·서(黍)·직(稷)을 취하여 기름[脂]에 적시어 【아주 정성스럽게 한다.】 화로 숯불에 구워 가지고 존소(尊所)로 돌아간다. 또 알자가 진폐 찬작관과 전폐 찬작관을 인도하고 올라가서 환조실(桓祖室) 존소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집례가 ‘예의사(禮儀使)가 전하를 인도하라.’고 말하여, 헌가악(軒架樂)은 융안(隆安)의 악을 연주하고 전하가 조계(阼階)로부터 올라가기를 마치면 악이 그친다. 전하가 환조실의 존소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되면, 등가악(登歌樂)은 수안(壽安)의 악(樂)을 연주하고 열문(烈文)의 춤[舞]을 춘다.

집준(執尊)한 자가 먹(罍)을 들고 진폐 찬작관이 예제(醴齊)2509)를 따라서 올리면 근시(近侍) 2인이 작(爵)을 가지고 술을 받는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신위(神位)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면, 예의사가 다시 부복해 무릎을 꿇고는 전하에게 ‘진규(摺圭)’를 계청하여 전하가 꿇어앉아 규를 띠에 꽂는다. 위치(位次)에 있는 자도 모두 무릎을 꿇는다. 【찬자가 역시 찬한다.】 근시가 작(爵)을 진폐 찬작관에게 주면, 진폐 찬작관이 작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예의사가 전하에게 ‘집작(執爵)하여 헌작(獻爵)’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작을 잡아 헌작하는데, 작을 전폐 찬작관(奠幣瓚爵官)에게 주어서 신위

樂止, 詣次室酌獻, 竝如上儀。【桓祖室, 歌《威明之曲》; 太祖室, 歌《昭明之曲》; 恭靖王室, 歌《純明之曲》; 太宗室, 歌《仁明之曲》; 世宗室, 歌《欽明之曲》; 文宗室, 歌《文明之曲》。】曲終, 樂止。進幣瓚爵官、奠幣瓚爵官皆降復位, 禮儀使導殿下出戶, 軒架作《隆安之樂》, 降自阼階復位, 禮儀使俯伏跪啓請入小次, 導殿下將至小次, 禮儀使俯伏跪啓請: “釋圭。”殿下釋圭, 近侍跪受圭。殿下入小次, 簾降樂止, 文舞退武舞進, 軒架作《舒安之樂》, 舞者立定, 樂止。

亞、終獻: 【七祀功臣酌獻附。】殿下將復位, 執禮曰: “行亞獻禮。”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 贊搯笏, 盥手悅手, 【盥手悅手, 不贊。】贊執笏, 引亞獻官升自阼階, 詣桓祖室尊所西向立, 軒架作《壽安之樂》, 昭武之舞作。執尊者舉罍酌盥齊, 執事者二人以爵受酒, 謁者引亞獻官詣神位前北向立, 贊跪搯笏。執事者以爵授亞獻官, 亞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執事者以副爵授亞獻官, 亞獻

(神位)앞에 드린다. 근시가 부작(副爵)을 진폐 찬작관에게 주면 진폐 찬작관이 작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예의사가 전하에게 ‘집작하여 헌작’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작을 잡아 헌작하는데, 작을 진폐 찬작관에게 주어서 왕후 신위(王后神位) 앞에 드린다. 예의사가 전하에게 ‘집규(執圭) 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기’를 계청하면, 규를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악(樂)이 그치고 대축이 신위 오른쪽으로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축문(祝文)을 읽고 나면, 악이 연주된다. 예의사가 전하에게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평신(平身)’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위치(位次)에 있는 자도 모두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으로 나오면 악이 그치고 다음 실(室)로 나아가서 작헌(酌獻)하기를 모두 위의 의절과 같이 한다. 【환조실(桓祖室)에는 위명지곡(威明之曲)을 노래하고 태조실(太祖室)에는 소명지곡(昭明之曲)을 노래하고, 공정 왕실(恭靖王室)에는 순명지곡(純明之曲)을 노래하고, 태종실(太宗室)에는 인명지곡(仁明之曲)을 노래하고, 세종실(世宗室)에는 흠명지곡(欽明之曲)을 노래하고, 문종실(文宗室)에는 문명지곡(文明之曲)을 노래한다.】

곡(曲)이 끝나면 악이 그친다. 진폐 찬작관과 전폐 찬작관이 모두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고,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 밖으로 나가면 헌가악은 융안(隆安)의 악을 연주하며 조계(阼階)로부터 내려가 자리로 돌아가면 예의사가 부복해 무릎을 꿇고 ‘입소차(入小次)’하기를 계청하고는 전하를 인도하여 장차 소차에 이를 무렵에 가서 예의사가 다시 부복해 무릎을 꿇고 ‘석규(釋圭)’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규를 놓으면 근시가 꿇어앉아 규를 받는다. 전하가 소차로 들어가면 발[簾]이 내려지며, 악(樂)이 그친다. 문무(文舞)는 물러나고 무무(武舞)가 나간다. 헌가악(軒架樂)은 서안(舒安)의 악을 연주하고, 무자(舞者)가 지정된 자리에 서면 악이 그친다. 아헌(亞獻)과 종헌(終獻)은

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謁者贊執笏俯伏興平身，引出以次爵獻，竝如上儀訖，樂止，謁者引降復位。亞獻官獻將畢，執禮曰：“行終獻禮。”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初、終獻官既升，贊引引七祀獻官詣盥洗位搯笏，盥手悅手訖，執笏詣尊所，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以爵受酒，獻官詣神位前西向跪搯笏，執事者授爵。獻官執爵獻爵奠爵訖，執笏俯伏興小退西向跪，祝就獻官之左，北向跪，讀祝文訖，獻官俯伏興平身，贊引引獻官復位。初七祀獻官將詣盥洗位，贊引引配享功臣，獻官詣盥洗位，搯笏盥手悅手訖，執笏詣尊所。執事者舉罍酌酒，執事者以爵受酒，獻官詣神位前東向立搯笏，執事者授爵，獻官執爵獻爵奠爵，以次奠訖執笏。祝史奉教書進文宗室配享之右立讀訖，贊引引獻官復位。

飲福：初、終獻官既復位，謁者引進幣贊爵官、薦俎官升自阼階，詣飲福位北向立，大祝詣桓祖室尊所，以爵酌上尊福酒，又大祝持俎進，減神位前胙肉。執禮曰：“禮儀使導殿下詣飲福位。”

【칠사 공신(七祀功臣)의 작헌(酌獻)도 붙여서 한다.】 전하가 장차 자리로 돌아올 무렵에 집례가 ‘행(行) 아헌례(亞獻禮)’라고 말하면, 알자(謁者)가 아헌관(亞獻官)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로 나아가 북향하고 서면, ‘홀(笏)을 꽂으라.’고 찬(贊)하고 손을 씻고 손을 수건에 닦으면 【손을 씻고 수건에 닦는 것은 찬하지 않는다.】 ‘홀을 잡으라.’고 찬하고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조계(阼階)로부터 올라 가서 환조실(桓祖室)의 존소(尊所)로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헌가악(軒架樂)은 수안(壽安)의 악을 연주하고 소무무(昭武舞)2510) 를 춘다. 집준(執尊) 한 자가 먹(罍)을 들고 양제(盎齊)를 따르며 집사자(執事者) 2인이 작(爵)을 가지고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신위(神位)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꿍어앉아 홀(笏)을 꽂으라.’고 찬(贊)한다. 집사자가 작(爵)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작을 잡아서 헌작(獻爵)하되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고 집사자가 부작(副爵)을 가지고 아헌관에게 주어 아헌관이 작을 잡아서 헌작하되,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알자가 아헌관에게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라.’고 찬(贊)하고는, 인도하고 나와서 <각실(各室)에> 차례로 작헌(爵獻)하기를 모두 위의 의절과 같이 하고 나면 악이 그친다. 알자가 인도하여 내려와 그 자리로 돌아가는데, 아헌관의 헌작이 장차 마치면 집례가 ‘종헌례(終獻禮)를 행하기’를 말하며,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헌의 의절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그 자리로 돌아간다.

처음에 종헌관(終獻官)이 이미 오르게 되면 찬인(贊引)이 칠사(七祀)의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로 나아가서 홀(笏)을 꽂고는 손씻고 수건에 닦고 나서 홀을 잡고 존소(尊所)로 나아가간다. 집준(執尊)한 자가 먹(罍)을 들고 술을 따르며 집사자가 작(爵)을 가지고 술을 받으며 헌관이 신위 앞으로 나아가 서향하여 꿍어앉아 홀(笏)을 꽂으면 집사자가 작을 준다. 헌관이 작을 잡아 헌작(獻爵)하고 나서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서

禮儀使進小次前，俯伏跪啓請詣飲福位。捲簾殿下出次，軒架作《隆安之樂》，近侍跪進圭，禮儀使俯伏跪啓請：“執圭。”殿下執圭，禮儀使導殿下詣飲福位西向立，樂止，登歌作《壽安之樂》。大祝以爵授進幣瓚爵官，進幣瓚爵官捧爵北向跪進，禮儀使俯伏啓請：“跪搯圭。”殿下跪搯圭，在位者皆跪。殿下受爵飲訖，進幣瓚爵官受虛爵以授大祝，大祝受復於坫。大祝以俎授薦俎官，薦俎官捧俎北向跪進，禮儀使啓請：“受俎。”殿下受俎以授近侍，近侍奉俎降自阼階，出門授司饗，進幣瓚爵官、薦俎官皆降復位。禮儀使啓請：“執圭俯伏興平身。”殿下執圭俯伏興平身，在位者皆俯伏興平身，樂止。禮儀使導殿下，軒架作《隆安之樂》，降復位，樂止。執禮曰：“四拜。”禮儀使俯伏跪啓請：“鞠躬四拜興平身，在位者同。【贊者亦贊。】執禮曰：“撤籩豆。”諸大祝入室撤籩豆，【撤者，籩豆各一少移於故處。】登歌作《雍安之樂》。七祀功臣、祝史、齋郎各撤籩豆，撤訖樂止，軒架作《景

향하여 꿇어앉는다. 축(祝)이 헌관 왼쪽으로 나가 북향하여 꿇어앉아 축문(祝文)을 읽고 나면 헌관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헌관을 인도하여 자리로 돌아간다.

처음 칠사(七祀)의 헌관이 장차 관세위로 나가려고 하면 찬인이 배향 공신(配享功臣)의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로 나아가서 홀(笏)을 꽂고서 손씻고 수건에 닦고 나서 홀을 잡고 준소(尊所)로 나아간다. 집사자가 먹(羶)을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爵)을 가지고 술을 받으며, 헌관(獻官)이 신위 앞으로 나아가 동향하고 서서 홀을 꽂으면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어 헌관이 작을 잡고 헌작(獻爵)하여 드린다. 이렇게 차례로 잔을 다 드리고 나서 홀을 잡는다. 축사(祝史)가 교서(敎書)를 받들고 문종실(文宗室)의 배향(配享)한 오른쪽으로 나가서 서서 읽고 나면 찬인이 헌관을 인도하여 자리로 돌아간다. 음복(飲福)은 처음 종헌관(終獻官)이 이미 자리로 돌아가고 나면, 알자가 진폐 찬작관과 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조계(阼階)로부터 올라가서 음복위(飲福位)로 나아가 북향하고 서면, 대축(大祝)이 환조실(桓祖室)의 준소(尊所)로 나아가서 작(爵)으로 상준(上尊)의 복주(福酒)를 따르고, 또 대축이 조(俎)를 가지고 나아가 신위 앞의 조육(胙肉)을 덜어 담는다.

집례가 '예의사(禮儀使)가 전하를 인도하여 음복위(飲福位)에 나가라.'고 말하면, 예의사가 소차(小次) 앞으로 나아가서 부복해 무릎을 꿇고는 '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계청한다. 발[簾]을 걷고 임금이 소차에서 나오면 헌가악(軒架樂)은 융안(隆安)의 악을 연주한다. 근시가 꿇어앉아 규(圭)를 올리면, 예의사가 부복해 무릎을 꿇고 '집규(執圭)'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규를 잡는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음복위로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악(樂)이 그치고 등가악(登歌樂)은 수안(壽安)의 악을 연주한다. 대축(大祝)이 작(爵)을 진폐 찬작관에게 주면, 진폐 찬작관이 작을 받들어 북향하여 꿇어앉아 올리며 예의사가 부복하고는 전하에게 '궤(跪)하여 진규(摺圭)'하기를 계청하여 전하

安之樂》。執禮曰：“四拜。”禮儀使俯伏跪啓請：“鞠躬四拜興平身。”殿下鞠躬四拜興平身，在位者同。【贊者亦贊。】樂一成止，禮儀使俯伏跪啓禮畢，導殿下還齋宮，軒架作《隆安之樂》，出門樂止。禮儀使俯伏興跪啓請：“釋圭。”殿下釋圭，近侍跪受圭，緞扇侍衛如常儀。殿下入齋宮釋冕服，執禮曰：“望瘞。”謁者引亞獻官詣望瘞位北向立，執禮率贊者詣望瘞位西向立，諸大祝取黍稷飯，藉用白茅束之，以筐取祝板及幣，降自西階置於坎。執禮曰：“可瘞。”置土半坎，宗廟令監視。謁者引亞獻官、贊引〔引〕諸獻官出，執禮帥贊者還本位，奉禮郎分引陪祭宗親及百官以次出，贊引、監察及諸執事俱復懸北拜位。執禮曰：“四拜。”監察及諸執事皆鞠躬四拜興平身，贊引以次引出，雅樂令帥工人二舞出，宗廟令、大祝、宮闈令納神主如常儀，執禮帥謁者、贊者、贊引就懸北拜位，四拜而出。七祀獻官詣西門外七祀瘞坎之南北向立，執事者置祝版於瘞坎，瘞訖退。其配享敎書，祝史焚於西門外淨處。典祀官、宗廟令各帥其

	<p>가 꿰어앉아 규를 쫓는다. 위차(位次)에 있는 자도 모두 꿰어앉는다.</p> <p>전하가 작을 받아 마시고 나면 진폐 찬작관이 빈작을 받아서 대축에게 주고 대축은 받아서 도로 점(坫) 위에 갖다 놓는다. 대축이 조(俎)를 천조관(薦俎官)에게 주면 천조관은 조를 받들고는 북향하여 꿰어앉아 올리고, 예의사가 ‘수조(受俎)’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조를 받아서 근시(近侍)에게 준다. 근시는 조(俎)를 받들고 조계로부터 내려가서 문으로 나가 사옹(司饗)에게 주며 진폐 찬작관과 천조관이 모두 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 예의사가 전하에게 ‘집규(執圭)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평신(平身)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규를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며 위차(位次)에 있는 자도 모두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악이 그친다.</p> <p>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면 험가악은 용안(隆安)의 악을 연주하고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면 악이 그친다. 집례가 ‘사배(四拜)’를 말하여 예의사가 부복해 무릎을 꿇고 전하에게 ‘국궁(鞠躬)하였다가 사배하고 일어나 평신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몸을 구부려서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며 위차에 있는 자도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찬한다.】 집례가 ‘철(撤)·변두(籩豆)’라고 말하면, 모든 대축이 신실(神室)로 들어가서 변과 두를 걷는다. 【걷는다는 것은 변·두(籩豆) 각각 1개를 두었던 곳에서 조금 옮겨 놓는다.】 등가악(登歌樂)은 용안(雍安)의 악을 연주하며 칠사 공신(七祀功臣)의 축사(祝史)·재량(齋郎)도 각기 그 변과 두를 걷는다. 걷기를 다하면 악이 그치고 험가악은 경안(景安)의 악을 연주한다. 집례가 ‘사배(四拜)’를 말하여 예의사가 부복해 무릎을 꿇고 ‘국궁하였다가 사배하고 일어나 평신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몸을 구부려서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며 위차에 있는 자도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찬한다.】 악(樂) 하나를 이루어 그치고는 예의사가 부복해 무릎을 꿇고 ‘예(禮)가 끝났음’을 아뢰고는 전하를 인도하여 재궁(齋宮)으로 돌아가면, 험가악은 용안(隆安)의 악을 연주하며 문을 나가면 악이 그친다.</p>	<p>屬撤禮饌， 宮闈令闔戶以降乃退。(후략)</p>
--	---	-----------------------------

	<p>예의사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무릎을 꿇고 ‘석규(釋圭)’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규를 놓으면 근시가 꿇어앉아 규를 받으며, 산·선(緘扇)의 시위(侍衛)를 평상시의 의절과 같이 한다. 전하가 재궁으로 들어가 면복(冕服)을 벗는다. 집례가 ‘망예(望瘞)’라고 말하면,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망예위(望瘞位)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고, 집례가 찬자(贊者)를 인솔하고 망예위로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모든 대축이 서·직반(黍稷飯)을 취하여 흰 띠[白茅]를 바닥에 깔아 이를 묶고, 비(篚)에 축판(祝板) 및 폐(幣)를 담아서 서계(西階)로부터 내려가 감(坎)2511)에 넣는다. 집례가 ‘가예(可瘞)’라고 말하면 흙으로 감을 반쯤 메우는데 종묘령(宗廟令)이 감시(監視)한다. 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고, 찬인은 모두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나가며, 집례는 찬자를 인솔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p> <p>봉례랑이 배제(陪祭)한 종친 및 백관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고 찬인·감찰(監察) 및 모든 집사(執事)는 함께 현(懸) 북쪽 배위(拜位)로 돌아간다. 집례가 ‘사배(四拜)’라고 말하여 감찰 및 모든 집사가 모두 몸을 구부려서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찬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며, 아악령(雅樂令)은 공인(工人)과 이무(二舞)2512)를 거느리고 나간다. 종묘령·대축·궁위령이 신주(神主)를 들여 모시기를 평상시의 의절과 같이 하고 집례는 알자·찬자·찬인을 인솔하고 현(懸) 북쪽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칠사(七祀)의 헌관(獻官)은 서문(西門) 밖으로 나아가 칠사의 예감(瘞坎) 남쪽에 북향하여 서면, 집사자가 축판(祝版)을 예감에 넣고 묻은 뒤에 물러나며, 그 배향 교서(配享教書)는 축사(祝史)가 서문 밖의 정결한 곳에서 불사른다. 전사관(典祀官)·종묘령은 각기 요속(僚屬)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며 궁위령은 창문을 닫고 내려와서 곧 물러간다. (후략)</p>	
<p>단종 12권, 2년(1454) 갑술 / 명 경태(景泰)</p>	<p>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원효연(元孝然)을 대마주 경차관(對馬州敬差官)으로 삼았는데, 그 싸 가지고 간 예물(禮物)은 백세면주(白細綿紬) 10필(匹), 백</p>	<p>以僉知中樞院事元孝然爲對馬州敬差官。其齎去禮物：白細綿紬一十四、</p>

<p>5년) 12월 7일(계미) 3번째기사 첨지중추원사 원효연을 대마주 경차관으로 삼다</p>	<p>세면포(白細綿布) 1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5필, 흑세마포(黑細麻布) 5필, 조미(糙米)2823) 1백 석(石), 황두(黃豆) 50석, 소주(燒酒) 30병(瓶), 청주(淸酒) 1백 병, 밀과(蜜果) 2궤(櫃), 다식(茶食) 2궤, 소병(燒餅) 2궤, 큰 붕어[大鮒魚] 4백 마리[尾], 건대구어(乾大口魚) 2백 마리, 잉어[鯉魚] 50마리, 천아(天鵝)2824) 5마리[隻], 잣[松子] 5석(石), 곱감[乾柿子] 50접[貼]이고, 그 싸 가지고 간 사목(事目)은 이러하였다.(후략)</p>	<p>白細綿布一十四、白細苧布五四、黑細麻布五四、糙米一百石、黃豆五十石、燒酒三十瓶、淸酒一百瓶、蜜果二櫃、茶食二櫃、燒餅二櫃、大鮒魚四百尾、乾大口魚二百尾、鯉魚五十尾、天鵝五隻、松子五石、乾柿子五十貼。(후략)</p>
<p>端宗 14卷, 3年(1455 乙亥 / 명 경태(景泰) 6年) 4月 24日(己亥) 2번째기사 환관을 보내어 매5일마다 사신에게 식물을 보내 주다</p>	<p>환관(宦官) 홍득경(洪得敬)을 보내어 녹포(鹿脯) 3백 정(脛), 건치(乾雉) 3백 수(首), 건대구어(乾大口魚) 1백 60미(尾), 해채(海菜) 1백 속(束), 사슴[鹿] 2마리[口]를 두 사신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부터 매 5일마다 식물(食物)을 보내 주었다.</p>	<p>遣宦官洪得敬，齎鹿脯三百脛、乾雉三百首、乾大口魚一百六十尾、海菜一百束、鹿二口分贈兩使臣。自是每五日贈送食物。</p>
<p>단중 14권, 3년(1455 을해 / 명 경태(景泰) 6년) 4월 24일(기해) 3번째기사 사간원에서 금주하기를 청하다</p>	<p>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전일에 여러 차례 술[酒]을 금하기를 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윤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 등이 다시 생각하니, 지난해에 농사를 실패하여 민간(民間)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지금 또 가뭄이 심하여 아직도 파종(播種)을 하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사신(使臣)의 연회와 각전(各殿)에 공상(供上)하는 것 외에는 한결같이 모두 술을 금하여, 막대한 비용을 감하도록 하소서.” 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p>	<p>司諫院啓曰：“前日屢請禁酒，未得蒙允。臣等更思，年前失農，民間乏食，今又旱甚，猶未播種，請使臣宴及各殿供上外，一皆禁酒，以省糜費。”命議大臣。</p>
<p>端宗 14卷, 3年(1455 乙亥 / 명 경태(景泰) 6年) 5月 9日(癸丑) 1 번째기사</p>	<p>예조에 전지하기를, “문소전(文昭殿)의 공상(供上)과 대소(大小) 제향(祭享), 그리고 중국 조정의 사신(使臣)과 이웃 나라 객인(客人)의 지대(支待) 이외에는 각전(各殿)·각궁(各宮)에 술을 올리지 마라.”</p>	<p>癸丑/傳旨禮曹曰：“除文昭殿供上、大小祭享及中朝使臣·隣國客人支待外，各殿各宮勿進酒。”又傳旨司憲府，禁中外用酒。</p>

<p>문소전의 공상과 대소 제향 등 이외에는 금주하도록 하다</p>	<p>하고, 또 사헌부에 전지하여 중외(中外)에서 술의 사용을 금하게 하였다.</p>	
<p>단종 14권, 3년(1455) 을해 / 명 경태(景泰) 6년) 5월 13일(정사) 1번째기사 좌참찬 강맹경이 비가 오니 향온을 올리도록 아뢰다</p>	<p>비가 내렸다. 좌참찬(左參贊) 강맹경(姜孟卿)이 본부(本府)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전일에 가뭄으로 인하여 술[酒]을 금하기를 계청(啓請)하였으나, 지금 비가 흠족히 내렸으니, 청컨대 향온(香醞)3354) 을 올리게 하시고, 또 궐내(闕內)의 제사(諸司)도 술을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丁巳/雨。 左參贊姜孟卿將本府議啓曰：“前日因旱啓請禁酒，今時雨大霑，請進香醞，且闕內諸司，亦令用酒。” 從之。</p>
<p>端宗 14卷, 3年(1455) 乙亥 / 명 경태(景泰) 6年) 5月 23日(丁卯) 1번째기사 강헌왕의 기신이므로 사신이 주봉배를 그만두다</p>	<p>통사(通事) 김신(金辛)이 사신(使臣)에게 말하기를, “오는 24일은 강헌왕(康獻王)3369) 의 기신(忌辰)입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내일은 주봉배(晝奉杯)3370) 를 그만두고 소선(素膳)을 갖추십시오.” 하였다.</p>	<p>丁卯/通事金辛語使臣曰：“來二十四日，康獻王忌辰。” 使臣曰：“明日停晝奉杯，且具素膳。”</p>

3. 세 조 실 록 기 사 자 료 집

세조실록 기사자료집

출처	내용	원문
<p>세조 1권, 1년(1455 을해 / 명 경태(景泰) 6년) 윤6월 12일(병 진) 1번째기사 노산군에게 전문을 올 려 치사하고 잡저로 돌아오다</p>	<p>임금이 법가(法駕)를 갖추고 경복궁(景福宮)에 이르러 광화문(光化門) 앞에서 하련(下輦)하여 도보로 근정전(勤政殿) 서쪽 뜰로 들어가니, 백관이 반열(班列)대로 정돈하였다. 임금이 면복(冕服)을 갖추고서 근정전 계상(階上)에 올라 전문(箋文)을 올려 치사(致謝)하였다. 그 전문에 이르기를, “지도(至道)66) 는 이름하기 어려운 것이나 명백히 그 겸양의 덕을 보이셨고, 대명(大命)은 용이한 것이 아닌데 범용(凡庸)한 자질에 그릇 미쳤나이다. 삼가 절하고 받으니 놀랍고 황공하여 거조(舉措)를 잃었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의 타고난 성품이 천박(淺薄)하고 학문 또한 공소(空疎)한데, 지난번 어렵고 위태로울 때를 당하여 약간 연애(涓埃)67) 에 불과한 미미한 보답을 드렸고, 더욱 심력을 다하여 시종 그 정성을 굳히려고 하였더니 어찌 하루아침에 이 엄명(嚴明)이 내리실 것을 기약하였겠습니까? 재삼 사양함을 얻지 못하여 더욱 전전긍긍(戰戰兢兢)하며 회포만 간절할 뿐입니다. 이는 대개 엎드려 뛰어난 관인(寬仁)의 덕과 겸양하신 마음을 지니신 성상을 만나 드디어 잔열(孱劣)한 인품으로 하여금 참람하게도 크나큰 기업을 계승하게 하시니, 신이 감히 그 수성(守成)의 어려움을 생각지 않겠나이까? 편히 있을 겨를이 없을 것이며, 부탁의 중하심을 생각하여 오직 길이 도모(圖謀)할 생각만을 가지겠습니다.”</p>	<p>丙辰/上備法駕，至景福宮光化門下輦，步入勤政殿西庭，百官班列。上具冕服，升勤政殿階上，進箋謝。箋曰： 至道難名，昭示謙德，大命不易，謬及庸資。拜受以還，驚惶失措。伏念臣性稟譎薄，學問淺疎，頃值艱危，粗效涓埃之報，益竭心力，欲堅終始之誠，何期一朝遽降嚴命？未獲再三之讓，采切戰兢之懷。茲蓋伏遇德著寬仁，心存沖挹，遂令孱品，叨襲丕基，臣敢不思守成之難？不遑寧處，念付托之重，惟懷永圖。 魯山命勿謝，遂以翼善冠、黑袞龍袍，出慶會樓下。上又以翼善冠、袞龍袍入謝，魯山南向，上西向坐，設宴奏樂。上跪進爵，魯山亦跪受，酬爵于上，上又跪飲還位，讓寧大君提以下以</p>

	<p>하니, 노산군이 치사(致謝)하지 말라고 명하여, 드디어 익선관(翼善冠)과 흑곤룡포(黑袞龍袍)의 차림으로 경회루(慶會樓) 아래로 나왔다. 임금이 또 익선관과 곤룡포의 차림으로 들어가 치사를 드리고 노산군은 남쪽을 향하고 임금은 서쪽을 향하여 앉고, 잔치를 베풀고 풍류를 연주하였다. 임금이 무릎꿇고 잔을 올리니 노산군도 또한 무릎꿇고 받아 임금에게 수작(酬酌)을 건네니, 임금이 또 무릎꿇고 받아 마시고 자기 자리로 돌아왔는데,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 이하가 차례로 잔을 올려 일곱 번 잔을 드리고 그치고, 임금이 또 노산군에게 잔을 올렸다. 예를 마치고 도보로 광화문(光化門)까지 나와서 연(輦)을 타고 잠저(潛邸)로 돌아왔다.</p>	<p>次進爵，七爵而止，上又進爵于魯山。禮訖步出光化門，乘輦還邸。</p>
<p>세조 1권, 1년(1455) 을해 / 명 경태(景泰) 6년) 7월 23일(병신) 5번째기사 예조에서 개정한 친제 사직 의주(親祭社稷儀註)를 아뢰다</p>	<p>예조(禮曹)에서 개정(改定)한 친제 사직 의주(親祭社稷儀註)를 아뢰기를, “1. 전 의주(儀註)의 출궁(出宮) 및 환궁(還宮)의 절목(節目) 안에 승로(乘輅)와 강로(降輅)가 있는데, 이제 새로 정한 의주에 의하여 이를 승연(乘輦)·강연(降輦)으로 고쳤습니다. 1. 전 의주에는 음복(飲福)한 뒤에 재배(再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신미년(256) 수교(受教)에 의하여 이를 사배(四拜)로 고쳤습니다. (후략)</p>	<p>禮曹啓，改定親祭社稷儀註： 一，前儀出宮還宮節內，有乘輅、降輅，今依新定儀，改乘輦、降輦。一，前儀飲福後再拜，今依辛未年受教，改四拜。一，前儀社稷合爲一壇，今依壬子年兩壇別設後攝事儀，兩壇升降節次改錄。(후략)</p>
<p>세조 1권, 1년(1455) 을해 / 명 경태(景泰) 6년) 7월 24일(정유) 3번째기사 의정부에서 명년 구황에 대하여 아뢰다</p>	<p>의정부(議政府)에서 호조(戶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었다. “이제 벼가 이삭이 펴 때를 당하여 비바람이 순조롭지 못하니, 명년의 구황(救荒)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각도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이를 고찰하여 저축, 대비하여야 합니다. 1. 구황(救荒)에 쓸 만한 상수리[橡]·밤[栗]·산삼(山蔘)·도라지[苦蕒] 등의 물품을 철에 맞게 채취하여 전의 갑절을 준비하게 하되, 무지한 백성이 죄책(罪責)을 면하려고 혹은 천금목(千金木)의 나뭇잎 따위로 구차하게 부과된 수량을 충당하는 등 한갓 소요(騷擾)만 이루곤 하니, 긴요하지 않은 잡물(雜物)은 준비하지 말도록 하여야 합니다.</p>	<p>議政府據戶曹呈啓：“今當禾穀發穗之時，風雨不調，明年救荒不可不慮。請令諸道觀察使考察儲備。一，救荒可用如橡、栗、山蔘、苦蕒等物，趁時採取，倍前準備，無知之民，要免罪責，或用千金木葉之類，苟充課數，徒致騷擾，其不緊雜物，勿令準備。一，蕪菁根爛蒸淹醬，以爲救荒之備。一，如黃角、青角、石脈、牛毛、海紅等，</p>

	<p>1. 무청(蕪菁)의 뿌리를 푼 찌서 장(醬) 속에 담아서 구황에 대비해야 합니다.</p> <p>1. 황각(黃角)·청각(靑角)·석맥(石脈)·우모(牛毛)·해홍(海紅) 같은 먹을 만한 해채(海菜)를 당번 선군(當番船軍)을 동원시켜 이를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저축, 대비케 해야 합니다.</p> <p>1. 8월에 칩[葛] 잎사귀가 떨어지기 전에 칩을 캐어서 별에 말려서 저장하였다가 겨울철에 푼 삶아서 우마(牛馬)를 먹이게 해야 합니다.</p> <p>1. 무지한 백성들이 절약하여 쓰지 않고 가끔 가을 농사를 겨우 거두기가 무섭게 이미 다 소비해 버리는 자가 있는데, 이도 아울러 고찰하여야 합니다.</p> <p>1. 구황에 관하여 미진(未盡)한 조건은 모든 도(道)의 관찰사로 하여금 현지의 농사를 살펴서 힘써 포치(布置)하고, 이를 미리 갖추어 열록(列錄)하여 보고하도록 하소서.”</p>	<p>可食海菜，發當番船軍，採取曬乾儲備。一，八月葛葉未落時，採葛曝乾藏貯，冬節爛烹，喂養牛馬。一，無知之民不節用，往往秋稼纔收，費之已盡者有之，竝令考察。一，救荒未盡條件，令諸道觀察使就審農事，盡情布置，預先開具以聞。”</p>
<p>세조 2권, 1년(1455) 올해 / 명 경태(景泰) 6년) 9월 6일(무인) 3번째기사 예조에서 제기의 주조를 청하다</p>	<p>예조(禮曹)에서 봉상시(奉常寺)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사직(社稷) 4위(位)의 제기(祭器)는 종묘(宗廟)의 예(例)에 의하여 1위(位)마다 은작(銀爵) 3개, 동점(銅玷) 3개에 아울러 음복작(飲福爵) 1개를, 청컨대 공조(工曹)로 하여금 이를 주조(鑄造)하여 봉상시(奉常寺)에 수장해 놓고, 친제(親祭)하실 때 쓰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據奉常寺牒呈啓：“社稷四位祭器，依宗廟例，每一位銀爵三、銅玷三，并飲福爵一，請令工曹鑄成，藏于奉常寺，親祭時用之。”從之。</p>
<p>세조 2권, 1년(1455) 올해 / 명 경태(景泰) 6년) 11월 9일(경진) 2번째기사 대마주 태수 종성직에게 빈번한 사자 파견</p>	<p>(전략)족하(足下)는 거듭 선부(先父)의 구례를 지켜서 각처 사객선에게 문인(文引)을 주되, 1년에 한두 차례를 지남이 없도록, 이에 신중을 기하여 이를 항식(恒式)으로 삼고, 겸하여서 이 뜻을 여러 곳에 효유(曉諭)하여, 피차가 서로 편리하게 하여, 길이 인국(隣國)의 정호(情好)를 보전(保全)함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곧 회시(回示)를 바라며, 이제 특별히 하사한 조미(糙米) 20석(石), 황두(黃豆) 10석, 호피(虎皮) 2장(張), 계(桂)578) 2각(角), 다식(茶食) 2각</p>	<p>(전략)足下申守先父舊例，給各處使船文引，一年慎毋過一兩次以爲恒式，兼諭此意於諸處，使彼此兩便，永保隣好，不亦可乎？仍希回示，今將特賜糙米二十石、黃豆一十石、虎皮二張、桂二角、茶食二角、松子一石、乾鯉</p>

<p>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편지</p>	<p>(角), 송자(松子) 1석(石), 건이어(乾鯉魚) 1백 미(尾), 소주(燒酒) 20병(瓶), 청주(淸酒) 40병을 가지고 이를 호군(護軍) 정대랑(井大郎)에게 붙여서 보내니 살펴서 영수하기 바란다.”</p> <p>하였고, 예조 좌랑(禮曹左郎) 강폭(康幅)이 또한 이런 뜻으로 종성직(宗盛職)에게 치서(致書)하고, 곧 특별히 하사한 조미(糙米) 5석(石), 황두(黃豆) 5석, 호피(虎皮) 1장(張), 계(桂) 1각(角), 다식(茶食) 1용, 소주(燒酒) 10병(瓶), 청주(淸酒) 30병, 건이어(乾鯉魚) 1백 미(尾)를 보냈다.</p>	<p>魚一百尾、燒酒二十瓶、淸酒四十瓶、就付護軍井大郎送去，惟照領。</p> <p>禮曹佐郎康幅，亦以此意致書于宗盛直，仍送特賜糙米五石、黃豆五石、虎皮一張、桂一角、茶食一角、燒酒十瓶、淸酒三十瓶、乾鯉魚一百尾。</p>
<p>세조 2권, 1년(1455)을해 / 명 경태(景泰) 6년) 12월 25일(병인) 1번째기사</p> <p>제주 도안무사에게 감귤 공납의 민폐를 줄 일 것을 명하다</p>	<p>제주 도안무사(濟州都安撫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p> <p>“감귤(柑橘)은 종묘(宗廟)에 천신(薦神)654) 하고, 빈객(賓客)을 대접하므로, 그 쓰임이 매우 절실하다. 헌의(獻議)하는 자가 말하기를, ‘여러 과실 중에서 금귤(金橘)과 유감(乳柑)과 동정귤(洞庭橘)이 상품이고, 감자(柑子)와 청귤(靑橘)이 다음이며, 유자(柚子)와 산귤(山橘)이 그 다음인데, 근래에는 배양(培養)을 잘못하고, 또 바람과 추위의 해를 입어 예전에 심은 것은 거의 없어지고, 새로 심은 것은 무성하지 못하며, 또 성질이 바람과 추위를 타서, 인가(人家)의 양지바른 울타리 안의 사람이 밟고 다니는 곳에는 뿌리를 튼튼하게 박아서 일찍 열매를 맺고 번성하나, 공가(公家)655)에서는 비록 과원(菓園)을 가졌다 할지라도, 많이 심어서 뿌리가 뻣뻣하고 무성하여 벌레가 쉽게 생기므로, 공은 갑절 들어도 도리어 사가(私家)에서 기른 것에 미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민호(民戶)에 부과하여 공물(貢物)을 채우는데 나무를 심는 집에 겨우 열매가 맺으면 억지로 간수(看守)하게 하고, 낱수를 헤아려서 표지를 달고, 조금이라도 축이 나면 곧 징속(徵贖)하게 하고, 또 주호(主戶)로 하여금 관부(官府)까지 운반해 오게 하며, 만일 기한에 미치지 못하면, 형벌을 엄하게 하여 용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나무를 심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심한 자는 혹 뽑아 버리기까지 하니, 이 뒤로는 잘 재배하여 기르는 자가 있</p>	<p>丙寅/諭濟州都按撫使曰：“柑橘薦宗廟、供賓客，其用甚切。獻議者以爲，‘諸菓之中，金橘、乳柑、洞庭橘爲上，柑子、靑橘次之，柚子、山橘又次之。近來培養失宜，又爲風寒所害，舊種幾絕，新株未盛，且性忌風寒，多於人家向陽藩籬之內，人跡踐踏之處，托根盤固，早實而蕃，公家則雖占菓園，務廣栽種，根柢鬱茂，蟲蠹易生，功倍而反不及私家所養。因此科斂民戶，乃足充貢，但於種樹之家，纔至結實，勒令看守，計數懸籤，稍有欠損，卽行徵贖，又使主戶，輸來官府，如不及期，嚴刑不饒，故民不樂種樹，甚者或至拔去，今後有能培養者，復役完恤，且別置看守之人，官自轉輸，不煩主戶。又橘柚，大抵三月結實，九月始熟，至冬乃</p>

으면, 부역을 면제하여 완휼(完恤)하고 또 따로 간수(看守)하는 사람을 두고, 관에서 스스로 운반하여, 주호(主戶)에게 번거롭게 하지 말 것이며, 또 귤(橘)과 유자(柚子)는 3월에 열매를 맺어 9월에 익기 시작하여 겨울에 따는데, 반쯤 익었을 때에 씨를 받아 심으면, 유감(乳柑)이 감자(柑子)가 되고, 감자가 유자[柚]가 되고, 유자가 탕자[枳]가 되며, 명년 3·4월 무르익을 때를 기다려서 씨를 받아 심으면, 반은 본 나무가 되고, 반은 다른 종자가 되니, 이제부터 법대로 씨를 받게 할 것이며, 또 금귤(金橘)은 오직 중 법련(法連)의 집에 한 그루가 있을 뿐인데, 그 집에 불이 나서 말라 죽은 뒤에, 다시 싹이 나서 예전처럼 열매를 맺는데, 만약 다시 마르면 절종(絶種)이 될까 두려우니, <제주·대정(大靜)·정의(旌義)> 세 고을로 하여금 법대로 접을 붙이고, 본 그루는 침해하지 말게 하고, 공·사처(公私處)의 양달쪽 땅에 널리 퍼서 심을 것이며, 또 감자(柑子)를 처음 따서 껍질이 두껍고 몸이 단단한 것을 골라 저장하면, 비록 4·5월에 이를지라도 빛깔과 맛이 변하지 아니하니, 마땅히 골라 담아서 단단히 봉하고 거둬 싸서, 별도로 진상(進上)하는 것을 시험하소서. 또 유감(乳柑)을 심어 감자(柑子)가 된 것은, 몸이 작고 껍질이 연하고, 잘 터지며, 그 맛이 보통 것보다 감절 좋으나, 봉하여 진상할 때에 부드럽고 연함으로 인하여 쉽게 물러 허물어지므로, 다방(茶房)에서 퇴각(退却)하고, 논핵(論劾)이 뒤따라 일어나니, 수령들이 책임을 두려워하여 드디어 맛이 좋은 물건을 공상(貢上)하지 않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별도로 그릇을 만들어 담고, 사이에 다른 물건을 끼워서 부딪쳐 깨어지지 않게 하고, 표를 싸서 특별히 올리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의논하는 자의 말이 이와 같으니, 세 고을 수령은 적당하게 포치(布置)하여, 위로는 국용(國用)을 족하게 하고 아래로는 민폐(民弊)가 없도록 힘쓰며, 또 미편한 사건(事件)이 있거든 다시 잘 생각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成, 半熟時取子種之, 則乳柑爲柑, 柑爲柚, 柚爲枳, 待明年三四月爛熟, 取子種之, 則半成本色, 半成他種, 自今依法取子。 又金橘, 唯僧法連家有一株, 其家失火枯死, 後復生萌芽, 結實如舊, 若復枯槁, 恐致絕種, 令三邑依法接換, 勿侵本株, 且於公私處向陽之地, 廣布栽植。 又柑子初摘, 便擇皮厚體堅者藏儲, 則雖至四五月, 色味不變, 宜擇取盛頓堅封重襲, 別進試之。 又種乳柑爲柑者, 體小皮軟烈, 其味品倍常, 封進之際, 因柔軟易致毀爛, 茶房却退, 論劾隨之, 守令畏責, 遂使美味終不入貢, 自今擇取別器盛頓, 間以他物, 不令觸破, 題標別進。’ 議者之言如此, 三邑守令, 便宜布置, 務要上足國用, 下無民弊, 具有未便事件, 更加商度以啓。”

<p>세조 3권, 2년(1456) 병자 / 명 경태(景泰) 7년) 3월 1일(경오) 1번째기사 광흥창의 허갈로 용관 제거와 군사의 녹봉 감축에 관하여 의논하게 하다</p>	<p>사인(舍人) 이극감(李克堪)이 당상(堂上)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광흥창(廣興倉)은 본시 녹봉(祿俸)을 위하여 설치하고 세입(歲入)이 9만여 석(石)이었는데, 근자에 흉년으로 인해 매년 세입이 3, 4만 석에 불과합니다. 1년 반록(頒祿)의 수(數)를 계산하면 거의 11만 석에 이르니, 태반이나 부족하여 본창(本倉)에서는 매양 군자(軍資)를 전청(轉請)하여 보충합니다. 이제 군자(軍資)777) 에 있는 것을 보건대, 쌀·콩 아울러 잡곡(雜穀)이 겨우 30만여 석이거늘, 하물며 지금 명나라 사신[明使]이 나오면 조도(調度)가 호번(浩繁)할 것인데, 만약 다시 1년을 빌리면 반드시 허갈(虛渴)한 데에 이를 것입니다.” 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모든 대소(大小) 용관(冗官)과 군사(軍士)의 녹봉을 상세히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박원형(朴元亨)이 아뢰기를, “정부(政府)에서 아된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마땅히 크게 경장(更張)778) 하여서 국용(國用)을 갖추어야 될 것이니, 청컨대 정부·이조·병조·호조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庚午朔/舍人李克堪將堂上議啓曰：“廣興倉本爲祿俸而設，歲入九萬餘石，近因凶歉，每歲入不過三四萬石，計一年頒祿之數，幾至十一萬石，太半不足，本倉每轉請軍資以補之。今軍資見在米豆并雜穀，僅三十萬餘石，況今明使出來，調度浩繁，若使更貸一年，則必至虛竭。”傳于承政院曰：“凡大小冗官及軍士祿俸，其詳議以啓。”都承旨朴元亨曰：“政府所啓甚當，宜大有更張，以備國用。請令政府吏、兵、戶曹同議。”從之。</p>
<p>世祖 3卷, 2年(1456) 丙子 / 명 경태(景泰) 7年) 3月 23日(壬辰) 1번째기사 황후 상과는 관계없이 왜인에게 고기를 공궤</p>	<p>예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황후 상(皇后喪)으로 왜인(倭人)에게 아직 고기를 공궤(供饋)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천자(天子)가 붕어(崩御)하면 제후(諸侯)의 대부(大夫)는 복(服)이 없으니, 왜인이 고기를 먹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그러나 정부에 의논하게 하라.”</p>	<p>壬辰/禮曹啓：“今皇后喪，倭人未應饋肉，何以處之？”傳曰：“天子之崩，諸侯之大夫無服，倭人食肉何妨？然議于政府。”政府啓曰：“可饋肉。”從之。</p>

<p>하도록 하다</p>	<p>하였다. 정부에서 아뢰기를, “고기를 공궤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세조 4권, 2년(1456 병자 / 명 경태(景泰) 7년) 5월 2일(경오) 1 번째기사 성승에게 선온과 육선 을 가지고 태평관에 가서 윤봉을 위로하게 하다</p>	<p>서현정(序賢亭)에 나아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성 승(成勝)에게 명하여 선온(宣醢)920) 과 어육(魚肉)을 가지고 태평관(太平館) 에 가서 윤봉(尹鳳) 등을 위로하게 하였다. 처음에 윤봉 등이 주봉배(晝奉 杯)921) 를 받지 아니하므로, 자주 승지(承旨)를 보내어 청했으나, 윤봉 등이 굳게 사양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혹은 5일, 혹은 10일 간격으로 재상(宰相)이나 혹은 환관(宦官)이나 혹은 승 지에게 특별히 명하여 선온(宣醢)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먹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庚午/御序賢亭觀射， 命知中樞院事成 勝齋宣醢、魚肉， 詣太平館慰尹鳳等。 初鳳等不受晝奉杯， 屢遣承旨請之， 鳳 等固辭。 承政院啓曰：“或五日、或十 日， 特命宰相或宦官、或承旨， 齋宣醢 往饋之。” 從之。</p>
<p>世祖 4卷, 2年(1456 丙子 / 명 경태(景泰) 7年) 5月 7日(乙亥) 2 번째기사 환관 이중근을 보내어 명나라 사신에게 청궐 과 사슴을 주다</p>	<p>환관(宦官) 이중근(李重斤)을 보내어 명(明)나라 사신에게 청궐(靑橋)과 사슴 을 주었다.</p>	<p>遣宦官李重斤， 贈明使靑橋及鹿。</p>
<p>세조 4권, 2년(1456 병자 / 명 경태(景泰) 7년) 7월 21일(무자) 1번째기사</p>	<p>경상 전라 충청 삼도 순찰사(慶事全羅忠淸三道巡察使) 지중추원사(知中樞院 使) 박강(朴薑)과 부사(副使) 이조 참판 구치관(具致寬) 등이 배사(拜辭)하니,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인견(引見)하고 소작(小酌)을 베풀었다. 환관(宦官) 전균(田均)에게 명하여 술과 안주를 가지고 가서 한강에서 전송하게 하고, 이</p>	<p>戊子/慶尙、全羅、忠淸三道巡察使知 中樞院事朴薑、副使吏曹參判具致寬 等拜辭， 御思政殿引見設小酌。 命宦 官田均， 齋酒餼餞于漢江， 仍賜樂， 又</p>

<p>하삼도 순찰사 박강과 부사 구치관이 배사하니 인견고 전송하게 하다</p>	<p>어서 풍악을 내려 주었다. 또 도승지 박원형(朴元亨)을 보내어 박강과 구치관에게 각각 초구(貂裘)·초관(貂冠)·이엄(耳掩)을 하사하고, 계양군(桂陽君) 이증(李增)과 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璉)도 영을 받들고 가서 전송하였다</p>	<p>遣都承旨朴元亨，賜臺、致寬各貂裘、貂冠、耳掩，桂陽君增、翼峴君璉亦承命往餞。</p>
<p>世祖 4卷, 2年(1456 丙子 / 명 경태(景泰) 7年) 7月 23日(庚寅) 2번째기사 도승지 박원형에게 명하여 진헌할 반찬 거리를 윤봉에게 보이게 하다</p>	<p>도승지 박원형(朴元亨)에게 명하여 <중국에> 진헌(進獻)할 반찬거리[物羞]를 각각 조금씩 가지고 가서 윤봉(尹鳳) 등에게 보이게 하니, 윤봉 등이 물건을 맛보고 말하기를, “좋다. 대구어(大口魚)와 해대(海帶) 같은 종류는 진헌하지 않음이 좋겠다.” 하였다.</p>	<p>命都承旨朴元亨，齎進獻物羞各少許，示尹鳳等，鳳等品嘗之曰：“好。若大口魚、海帶之類，不獻可矣。”</p>
<p>世祖 5卷, 2年(1456 丙子 / 명 경태(景泰) 7年) 9月 16日(癸未) 1번째기사 전의감·혜민국·재생원에 약을 지어서 팔도록 명하다</p>	<p>예조(禮曹)에 전지하기를, “전의감(典醫監)·혜민국(惠民局)·제생원(濟生院)에서 구급(救急)하는 약(藥)을 팔지 않아서 많이 요사(夭死)하게 되니, 내가 심히 불쌍하게 여긴다. 이제부터 구급하는 약을 지어서 팔라.” 하였다.</p>	<p>癸未/傳旨禮曹曰：“典醫監、惠民局、濟生院，不賣救急之藥，多致夭扎，予甚愍焉。自今救急之藥，劑造和賣。”</p>
<p>세조 5권, 2년(1456 병자 / 명 경태(景泰) 7년) 12월 23일(무오) 5번째기사 내사주를 청주로 대신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르다</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전조(前朝)1282) 의 하늘에 제사하는 진설도(陳設圖)에, ‘삼주(三酒)1283) 의 내사주(內事酒)는 일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제말(祭末)이라 하여 비천(卑賤)한 사람이 마실 수 있고, 석주(昔酒)는 빛은 지가 오래 되어야 익기 때문에 석주라 이름하였고, 청주(淸酒)는 지금 중산(中山)에서 겨울에 빚어 여름에 접어들어야 이루어진다.’ 하였고, 《문헌통고(文獻通考)》에, ‘내사주(內事酒)는 조정(朝廷)에서 일로 인하여 양조(釀造)하는 것이고, 석주(昔酒)는 해</p>	<p>禮曹啓：“前朝祀天陳設圖，‘三酒內事酒，酌有事之人，謂於祭末，卑賤之人得飲之，昔酒久釀乃熟，故名昔酒，淸酒，今中山冬釀，接夏而成’，《文獻通考》，‘內事酒，朝廷因事而醞造者，昔酒踰歲成熟，蒸醞造者，淸酒冬醞夏成者，古之祭祀，以五齊薦諸神，以三酒</p>

	<p>가 넘어야 익는데 썩어서 양조하는 것이고, 청주(淸酒)는 겨울에 빚어서 여름에 익는 것인데, 예전 제사에 오제(五齊)로 여러 신(神)에게 천(薦)하고 삼주(三酒)로 여러 신하에게 먹인다.’ 하였고, 《주례(周禮)》 천관(天官) 주(注)에, ‘삼주(三酒)는 사람이 마시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술이 혹 해가 넘어서 익고 혹 겨울에 빚어서 여름에 익는데, 지금 하늘에 제사할 시기가 가까와졌으나 미처 빚을 겨를이 없습니다. 또 천신(薦神)하는 술이 아니고 다만 진설(陳設)할 뿐이니, 청컨대 청주로 대신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酌諸臣’, 《周禮》《天官》注, ‘三酒人所飲者.’ 然此三酒, 或踰歲成熟, 或冬醅夏成, 今祀天期近, 不暇及釀。且非薦神之酒, 但陳設而已, 請代以淸酒。” 從之。</p>
<p>世祖 6卷, 3年(1457 丁丑 / 명 천순(天順) 1年) 1月 4日(己巳) 4 번째기사</p> <p>예조에서 교사를 지낼 때 분헌관의 유무에 대하여 아뢰다</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개원례(開元禮)》에는 오제(五帝)1305) 를 교사(郊祀)할 적에는 분헌관(分獻官)이 있어 각기 술 한 잔을 드렸으며, 전조(前朝)1306) 의 《고금상정례(古今詳定禮)》에는 오제(五帝)를 교사(郊祀)할 적에는 분헌관이 없이 대축(大祝)이 각기 술 석 잔을 드렸고, 송조(宋朝)에서는 오제(五帝)를 교사(郊祀)할 적에는 분헌관이 있어 각기 술 한 잔을 드렸으며, 《제사직장(諸司職掌)》에서는 오제(五帝)를 교사(郊祀)할 적에는 분헌관이 있어 각기 술 석 잔을 드렸습니다.”</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마땅히 분헌관(分獻官)이 있어야 한다.”</p> <p>하였다.</p>	<p>禮曹啓: “《開元禮》郊祀五帝, 有分獻官, 各奠一爵, 前朝《古今詳定禮》, 郊祀五帝, 無分獻官, 大祝各奠三爵, 宋朝五帝有分獻官, 各奠一爵, 諸司職掌五帝, 有分獻官, 各奠三爵。” 傳曰: “宜有分獻官。”</p>
<p>세조 6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1월 7일(임신) 3 번째기사</p>	<p>예조에서 아뢰기를, “《개원례(開元禮)》의 교사(郊祀)1312) 에는, 제사를 거행하기 전 2일에 태위(太尉)가 신요황제묘(神堯皇帝廟)1313) 에 고(告)하기를 상고(常告)의 의식과 같이 하고, 전조(前朝)1314) 의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에서는 제사를</p>	<p>禮曹啓: “《開元禮》郊祀, 前祀二日, 太尉告神堯皇帝廟, 如常告之儀, 前朝《詳定古今禮》, 前祀二日, 太尉奏告太祖陵祠, 如常告之儀, 告以配神作主</p>

예조에서 제사를 지내는 여러가지 일에 대해서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거행하기 전 2일에 태위가 태조 능사(太祖陵祀)에 주고(奏告)하기를 상고(常告)의 의식과 같이 해서, 신(神)을 배향(配享)하여 군주(君主)가 된다는 뜻을 고하였으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환구(圜丘)1315)에 제사를 거행하기 전 2일에 의정(議政)이 태조실(太祖室)에 신을 배향(配享)하여 군주가 된다는 뜻으로써 고하기를 상고의 의식과 같이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제사직장(諸司職掌)》 내에는, ‘유 홍무 모년(維洪武某年) 세차 모갑자 정월(歲次某甲子正月)에 사천자(嗣天子) 신(臣)은 감히 호천 상제(昊天上帝)와 후토 황지기(后土皇地祇)에게 소고(昭告)합니다. 절후가 맹춘(孟春)이어서 삼양(三陽)1316) 이 개태(開泰)하니, 삼가 신료(臣僚)들을 거느리고 옥백(玉帛)·희생(犧牲)·자량(棗梁)과 여러 가지 제품(祭品)으로써 태사전(太祀殿)에 공손히 제사하면서 이 요예(燎瘞)1317) 를 갖추어 황고(皇考) 인조 순황제(仁祖淳皇帝)를 신에게 배향(配享)하니, 흠향(歆饗)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으니, 지금 이 축문(祝文)에 의거하여 마땅히 이르기, ‘경태(景泰) 8년 세차 정축(歲次丁丑) 정월 병인삭(正月丙寅朔) 15일 경진(庚辰)에 조선국(朝鮮國) 사왕(嗣王) 신(臣) 【휘(諱).】 은 감히 호천 상제(昊天上帝)와 후토 황지기(后土皇地祇)에게 소고(昭告)합니다. 절후가 맹춘(孟春)이어서 삼양(三陽)이 교태(交泰)하니, 삼가 신료(臣僚)들을 거느리고 옥백(玉帛)·희생(犧牲)·자량(棗梁)과 여러 가지 제품(祭品)으로써 삼가 대사 환구(大祀圜丘)에 제사하면서 이 요예(燎瘞) 를 갖추어 황증조고(皇曾祖考) 태조 강헌 대왕(太祖康獻大王)을 신에 배향하니, 흠향(歆饗)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제사직장(諸司職掌)》에서는 무릇 정제(正祭)는 거행하기 전 2일에 축문(祝文)과 주과(酒果)로써 봉선전(奉先殿)에서 인조(仁祖)를 상제(上帝)와 황기(皇祇)에 배향한다고 고하고, 고묘(告廟)하는 축문(祝文)에는, ‘홍무 모년(洪武

之意, 請今前祀圜丘二日, 議政告太祖室, 以配神作主之意, 如常告儀。” 從之。 又啓: “諸司職掌內, ‘維洪武某年歲次某甲子正月, 嗣天子臣, 敢昭告于昊天上帝后土皇地祇。 時維孟春, 三陽開泰, 敬率臣僚, 以玉帛犧齊梁盛庶品, 恭祀于太祀殿, 備茲燎瘞, 皇考仁祖淳皇帝配神, 尙饗。’ 今依此祝文當曰, ‘維景泰八年歲次丁丑正月丙寅朔十五日庚辰, 朝鮮國嗣王臣, 【諱.】 敢昭告于昊天上帝、后土皇地祇。 時維孟春, 三陽交泰, 敬率臣寮, 以玉帛犧齊梁盛庶品, 恭祀于大祀圜丘, 備茲燎瘞, 皇曾祖太祖康獻大王配神, 尙饗。’ 又啓: “諸司職掌, 凡正祭前二日, 用祝文酒果, 奉先殿告仁祖配上帝皇祇, 告廟祝文, ‘維洪武某年歲次某甲子某月某日, 孝子皇帝, 敢昭告于皇考仁祖淳皇帝。 茲以正月某日, 恭祀上帝皇祇于大祀殿, 謹請皇考配神, 伏惟鑑知謹告。’ 今依此祝文, 當曰, ‘維景泰八年歲次某甲子某月某朔某日, 孝曾孫嗣王臣, 謹敢昭告于皇曾祖考太祖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 茲以正月某日, 恭祀上帝、皇祇

某年) 세차 모갑자(歲次某甲子) 모월 모일(某月某日)에 효자(孝子) 황제(皇帝)는 감히 황고(皇考) 인조 순황제(仁祖淳皇帝)에게 소고(昭告)합니다. 이에 정월 모일(某日)에 상제(上帝)와 황기(皇祇)를 대사전(大祀殿)에 공손히 제사하면서, 삼가 황고(皇考)를 신에게 배향하기를 청하니, 삼가 살펴서 알기를 바랍니다. 삼가 고합니다.’ 했으니, 지금 이 축문에 의거하여 마땅히 이르기, ‘경태(景泰) 8년 세차 모갑자(歲次某甲子) 모월 모삭 모일(某朔某日)에 효증손(孝曾孫) 사왕(嗣王) 신(臣)은 감히 황증조고(皇曾祖考) 태조 강헌 지인 계운 성문 신무 대왕(太祖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에게 소고(昭告)합니다. 이에 정월 모일(某日)에 상제(上帝)와 황기(皇祇)를 대사 환구(大祀園丘)에 공손히 제사하면서 삼가 황증조고(皇曾祖考)를 신에게 배향하기를 청하니, 삼가 살펴서 알기를 바랍니다. 삼가 고합니다.’ 하고, 또 그 제사에는 다만 주과(酒果)만 써야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신(神)을 맞이할 적에 상제(上帝)·태조(太祖)·대명(大明)·야명(夜明)·성신(星辰)·풍운뢰우(風雲雷雨)의 위(位)에는 희생(犧牲)의 머리를 요단(燎壇)에서 태우고, 황지기(皇地祇), 동·남·서·북의 해악독(海岳瀆)과 산천(山川)의 위(位)에는 희생의 모혈(毛血)을 예감(瘞坎)에 묻어 버리며, 신(神)을 보낼 적에는 상제(上帝) 이하의 위(位)에 옥폐(玉幣)1318) ·생(牲)【일체(一體).】·축문(祝文)·서직반(黍稷飯)【제반(除飯) 아래도 이와 같다.】·잔술[爵酒]을 요단(燎壇)에 두고, 황지기(皇地祇) 이하의 위(位)에는 옥폐·축문·생체(牲體)·서직반(黍稷飯)·잔술[爵酒]을 구덩이에 묻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당(唐)나라 제도에는 여러 대축(大祝)이 옥폐와 축문을 취(取)하고, 재랑(齋郎)이 적대[俎]에 생(牲)·서직반(黍稷飯) 및 잔술[爵酒]을 었습니다. 송(宋)나라 제도에는 대축(大祝)이 폐백·축문·옥을 취하고, 집사관(執事官)이 적대에

大祀園丘, 謹請皇曾祖考配神, 伏惟鑑知謹告。’ 且其祭只用酒果。” 從之。
 又啓: “迎神上帝、太祖、大明、夜明、星辰、風雲雷雨位, 牲首燔於燎壇, 皇地祇、東南西北海岳瀆山川位, 毛血埋於瘞坎, 送神, 上帝以下位玉幣、牲、【一體。】祝、黍稷飯、【除飯下同。】爵酒, 置於燎壇, 皇地祇以下位, 幣、祝、牲體、黍稷飯、爵酒瘞於坎。” 從之。 又啓: “唐制, 諸大祝取玉幣、祝, 齋郎以俎載牲、黍稷飯及爵酒。 宋制, 大祝取幣、祝、玉, 執事官以俎載黍稷飯、爵酒, 諸司職掌, 讀祝官捧祝, 進幣官捧帛, 掌祭官奉饌。” 命從唐、宋制。 又啓: “望燎, 《開元禮》, 月日位以上, 諸大祝各執篚進神座前, 取玉幣、祝版, 齋郎以俎載牲體、黍稷飯及爵酒, 各由其陞降壇, 及望燎時, 每位之牲, 不可全體置燎, 考本朝諸祀序例內, 以牲兩脾、兩肩、兩脅, 并脊爲七體, 以是觀之, 一支是一體。 請將每位牲前脚及黍稷飯、爵酒燎燔。 且福胙, 《開元禮》, 取前脚第二骨, 宋制正脊二骨、橫脊二骨, 今進福胙時, 急遽剪骨爲難, 且三

서직반(黍稷飯)과 잔술[爵酒]을 엮으며, 《제사직장(諸司職掌)》에는 독축관(讀祝官)이 축문을 받들고, 진폐관(進幣官)이 비단[帛]을 받들고, 장제관(掌祭官)이 찬(饌)을 받듭니다.”

하니, 당나라와 송나라의 제도를 따르도록 명하였다. 또 아뢰기를, “망료(望燎)1319)는 《개원례(開元禮)》에서는 월(月)·일(日) 위(位) 이상은 여러 대축(大祝)이 각기 비(篋)를 잡고 신좌(神座) 앞에 나아가서 옥폐와 축판(祝版)을 취하고, 재랑(齋郎)은 적대[俎]에 생체(牲體)와 서직반(黍稷飯)과 잔술[爵酒]을 엮어 각기 그 섬들을 경유(經由)하여 단(壇)을 내려오며, 망료(望燎)할 때 매위(每位)의 생(牲)은 전체(全體)를 요(燎)에 둘 수가 없는데, 본조(本朝)의 제사(諸祀)를 상고해 보건대, 서례(序例) 내에 생(牲)의 양쪽 넓적다리, 양쪽 어깨, 양쪽 갈비와 등골까지 합쳐서 칠체(七體)로 삼았으니, 이로써 살펴본다면 일지(一肢)가 일체(一體)인 것입니다. 청컨대 매위(每位)의 생(牲)의 앞쪽 다리와 서직반(黍稷飯)·잔술[爵酒]을 가지고 요번(燎燔)하소서. 또 복조(福胙)는 《개원례(開元禮)》에서는 생(牲)의 앞다리 제2골(骨)을 취하고, 송(宋)나라 제도에서는 정척(正脊)의 2골(骨)과 횡척(橫脊)의 2골을 취하였는데, 지금 복조(福胙)를 올릴 때에는 갑자기 골(骨)을 베기가 어렵겠고, 또 삼위(三位)의 조(胙)를 한 적대[俎]에 합쳐서 두기도 또한 어렵겠으니, 종묘(宗廟)의 이미 시행한 격례(格例)에 의거하여 제1위(位) 조(胙)의 앞다리를 취하여 올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사관(祀官) 및 집사관(執事官), 진폐(進幣)·진주관(進幣進酒官)【이조 판서가 사고가 있으면 차관(次官)이 한다.】, 진조관(進俎官)【호조 판서가 사고가 있으면 차관이 한다.】, 전폐(奠幣)·전주관(奠幣奠酒官)【공조 판서가 사고가 있으면 차관이 한다.】, 전사관(典祀官)【봉상 판사(奉常判事)가 사고가 있으면 차관이 한다. 속관(屬官)은 3명이다.】, 집례(執禮)【단상(壇上)은 3품 당상관(堂上官)이

位胙合置一俎亦難，依宗廟已行格例，取第一位胙前脚以進。”從之。又啓：“祀官及執事官、進幣進酒官、【吏曹判書有故則次官。】進俎官、【戶曹判書有故則次官。】典幣奠酒官、【工曹判書有故則次官。】典祀官、【奉常判事有故則次官，屬官三。】執禮、【壇上三品堂上官，壇下四品。】贊者二、【通禮門。】謁者二、【六品。】贊引二、【參外。】監察二、掌牲令一、協律郎一、上帝位·皇祇位·太祖位，大祝各一、【內外製。】祝史各一、【四品。】齋郎各一、【五品。】尊所各一、【六品。】奉俎官各一、【參外。】爵洗位各一、【六品。】大明位·星辰位·風雲雷雨位，獻官【王世子。】侍從官，副知通禮一、書筵官一、大祝各一、【文官六品。】祝史各一、【正六品。】齋郎各一、【從六品。】尊所各一、【參外。】捧俎官各一、【參外。】爵洗位各一。【參外。】獻官若差他官，則執事官從夜明位執事官差充，夜明位、東南西北海位、岳瀆山川位獻官，領議政，【(自)〔有〕故則次官。】

	<p>고, 단하(壇下)는 4품관이다.】 , 찬자(贊者) 2명 【통례문(通禮門).】 , 알자(誦者) 2명 【6품.】 , 찬인(贊引) 2명 【참외(參外).】 , 감찰(監察) 2명, 장생령(掌牲令) 1명, 협률랑(協律郎) 1명이고, 상제위(上帝位)·황기위(皇祇位)·태조위(太祖位)에는 대축(大祝)이 각기 1명 【내지제교(內知製敎)·외지제교(外知製敎).】 , 축사(祝史)가 각기 1명 【4품.】 , 재랑(齋郎)이 각기 1명 【5품.】 , 준소(尊所)가 각기 1명 【6품.】 , 봉조관(奉俎官)이 각기 1명 【참외(參外).】 , 작세위(爵洗位)가 각기 1명 【6품.】 이고, 대명위(大明位)·성신위(星辰位)·풍운뢰우위(風雲雷雨位)에는 헌관(獻官) 【왕세자(王世子).】 의 시종관(侍從官)으로 부지통례(副知通禮) 1명, 서연관(書筵官) 1명, 대축이 각기 1명 【문관의 6품.】 , 축사가 각기 1명, 【정6품.】 , 재랑이 각기 1명 【중6품.】 , 준소가 각기 1명 【참외.】 , 봉조관이 각기 1명 【참외.】 , 작세위가 각기 1명 【참외.】 입니다. 헌관(獻官)에 만약 다른 관원이 임명된다면 집사관(執事官)은 야명위(夜明位)의 집사관에 따라 임명 충원(充員)하는데, 야명위(夜明位)·동남서북해위(東南西北海位)·악독산천위(岳瀆山川位)의 헌관은 영의정 【사고가 있으면 차관이 한다.】 이고, 대축이 각기 1명 【문관의 참외.】 , 축사가 각기 1명 【참외.】 , 재랑이 각기 1명 【참외.】 이고, 준소가 각기 1명 【참외.】 , 봉조관이 각기 1명 【참외.】 , 작세위가 각기 1명 【참외.】 , 응봉관 예의사(應奉官禮儀使) 【예조 판서가 사고가 있으면 차관이 한다.】 , 근시(近侍) 【승지(承旨).】 , 판통례(判通禮) 2명이고, 진폐 진주관(進幣進酒官)·전폐전주관(奠幣奠酒官)·진조관(進俎官)·분헌관(分獻官)이 모두 미리 차정(差定) 되었습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大祝各一、【文官參外。】祝史各一、【參外。】齋郎各一、【參外。】尊所各一、【參外。】奉俎官各一、【參外。】爵洗位各一、【參外。】應奉官禮儀使、【禮曹判書有故則次官】近侍、【承旨】判通禮二、進幣進酒官、進俎官、奠幣奠酒官、分獻官，皆有預差。”從之。</p>
<p>세조 6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1월 8일(계유) 4</p>	<p>예조에서 아뢰기를, “상제(上帝)에게는 송아지[犢] 한 마리, 벽(壁)1320) 은 창벽(蒼壁)을 사용하고, 창백(蒼帛) 1개 【폐백을 봉한 후에는 ‘교사제백(郊祀制帛)’ 이란 4자가 없</p>	<p>禮曹啓: “上帝犢一, (壁) [璧] 用蒼, 蒼帛一、【除緘成郊祀制帛四字。】 籩十二、【實以形鹽、魚鱸、糗餌、</p>

번째기사
예조에서 상제에게 제
사지내는 일에 대해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어졌다.】 , 변(邊)1321) 12개 【형염(形鹽)·어수(魚鱸)·구이(糗餌)·분자(粉糝)·진실(榛實)·건조(乾棗)·백병(白餅)·흑병(黑餅)·능인(菱仁)·검인(芡仁)·울황(栗黃)·녹포(鹿脯)를 담는다.】 , 두(豆)1322) 12개 【돈박(豚拍)·녹혜(鹿醢)·담해(醢醢)·삼식(糝食)·구저(韭菹)·이식(醢食)·어해(魚醢)·토해(兔醢)·근저(芹菹)·순저(笋菹)·비석(脾析)·청저(靑菹)를 담는다.】 , 보(簋)·궤(簋) 각기 1개 【도(稻)·양(梁)·서(黍)·직(稷)을 담는다.】 , 두(豆) 1개 【모혈(毛血)을 담는다.】 , 등(登) 1개 【대갱(大羹)·자육즙(煮肉汁)을 담고, 염장(鹽醬)은 사용하지 않는다.】 , 비(篚) 1개 【옥백(玉帛)을 담는다.】 , 조(俎) 2개 【1개는 생육갑(牲肉匣)이고, 1개는 생수갑(牲首匣)이다.】 , 조(俎) 2개 【1개는 생고기의 장(腸)·위(胃)·폐(肺)의 소갑(小匣)이고, 1개는 익힌 고기의 장·위·폐의 소갑(小匣)이다.】 향로(香爐) 1개, 향합(香盃) 1개, 축(燭) 2개, 포작(匏爵) 3개 【각기 점(坩)이 있다.】 , 축판(祝版) 1개 【점(坩)이 있다.】 입니다.
황지기(皇地祇)에게는 송아지[犢] 한 마리, 옥(玉)은 황종(黃琮)을 사용하고 황색백(黃色帛) 1개인데, 이상의 자리는 짚자리[藁秸]로써 깔며, 태조(太祖)에게는 송아지[犢] 한 마리, 벽(璧)은 창벽(蒼璧)을 사용하고 창색백(蒼色帛) 1개인데, 진설(陳設)은 위와 같고, 자리는 왕골 자리[莞席]로써 깔니다. 상제(上帝)의 존소(尊所)는 대준(大尊) 2개 【1개는 명수(明水)를 담고, 1개는 범제(泛齊)를 담는다.】 , 착준(著樽) 2개 【1개는 명수를 담고, 1개는 예제(醴齊)를 담는다.】 , 희준(犧尊) 2개 【1개는 명수를 담고, 1개는 양제(盎齊)를 담는다.】 , 산퇴(山壘) 2개 【1개는 현주(玄酒)를 담고, 1개는 청주(淸酒)를 담는다.】 , 점(坩) 1개 【음복작(飲福爵)이다.】 , 조(俎) 1개 【조육조(胙肉俎)이다.】 , 변(邊) 1개 【반(飯)을 더는 변(邊)이다.】 , 축(燭) 1개, 작점(爵坩)과 옥백비(玉帛篚)를 먼저 이 단상(壇上)에 설치하고 【상제위(上帝位)의 동쪽에 있는데, 북향(北向)하고 서쪽을 위[上]가 되게 한다.】 , 자리는 짚자리로써 깔며, 황지기(皇地祇)의 존소(尊所)는 위와 같이 단상(壇上)에 설치하고 【황기찬(皇

粉餐、榛實、乾棗、白餅、黑餅、菱仁、芡仁、栗黃、鹿脯。】 豆十二、【實以豚拍、鹿醢、醢醢、糝食、韭菹、醢食、魚醢、兔醢、芹菹、笋菹、脾析、靑菹。】 簋·篚各一、【實以稻、梁、黍稷。】 豆一、【實以毛血。】 登一、【實以大羹、煮肉汁，不用鹽醬。】 篚一、【實以玉帛。】 俎二、【一牲肉匣、一牲首匣。】 俎二【一腥腸(胃) [胃] 肺小匣，一熟腸胃肺小匣。】 香爐一、香合一、燭二、(炮) [匏] 爵三、【各在坩。】 祝版一。【有坩。】 皇地祇犢一，玉用黃琮，黃色帛一，已上席以藁秸。 太祖犢一，璧用蒼，蒼色帛一，陳設上同，藉以莞席。 上帝尊所，大尊二、【一實明水，一實泛齊。】 著樽二、【一實明水，一實醴齊。】 犧尊二、【一實明水，一實盎齊。】 山壘二、【一實玄酒，一實淸酒。】 坩一、【飲福爵。】 俎一、【胙肉俎。】 邊一、【除飯邊。】 燭一， 爵坩玉帛篚，先設於此壇上，【在上帝位東北向西上。】 席以藁秸。 皇地祇尊所，上同壇上，【在皇祇饌西北向西上。】 席以

祗饌)의 서쪽에 있는데, 북향하고 서쪽을 위가 되게 한다.】, 자리는 짚자리로써 깔며, 태조(太祖)의 존소(尊所)는 위와 같이 단상(壇上)에 설치하고 【상제(上帝)의 존소(尊所) 동쪽에 있는데, 북향하고 서쪽을 위가 되게 한다.】 자리는 왕골 자리로써 깔며, 상준(象尊) 2개가 있습니다. 【1개는 명수(明水)를 담고, 1개는 양제(盎齊)를 담는다.】 이상은 모두 전조(前朝)1323)의 진설도(陳設圖)를 모방했는데, 다만 상제(上帝)의 단하(壇下)에는 존소(尊所)만 그냥 설치하고 제수(祭羞)는 올리지 않으므로 지금은 제하였습니니다.

대명(大明)1324)은 송아지[犢] 한 마리, 홍색백(紅色帛) 1개, 변(籩) 10개 【형염(形鹽)1325)·어수(魚鱸)·건조(乾棗)·능인(菱仁)·검인(芡仁)·울황(栗黃)·녹포(鹿脯)·백병(白餅)·흑병(黑餅)을 담는다.】, 두(豆) 10개 【어해(魚醢)·토해(兔醢)·녹해(鹿醢)·담해(醢醢)·근저(芹菹)·순저(笋菹)·청저(菁菹)·돈박(豚拍)·비석(脾析)을 담는다.】, 두(豆) 1개 【모혈(毛血)을 담는다.】, 등(登) 1개 【대羹 자육즙(大羹煮肉汁)을 담고, 염장(鹽醬)은 사용하지 않는다.】, 보(簠)·궤(簋) 각각 2개 【도(稻)·양(梁)·서(黍)·직(稷)을 담는다.】, 비(篚) 1개 【백(帛).】, 조(俎) 2개 【1개는 생육갑(牲肉匣)이고, 1개는 생수갑(牲首匣)이다.】, 조(俎) 2개 【1개는 생고기의 장(腸)·위(胃)·폐(肺)의 소갑(小匣)이고, 1개는 익힌 고기의 장·위·폐의 소갑이다.】, 향로(香爐) 1개, 향합(香合) 1개, 촉(燭) 2개, 포작(匏爵) 3개이고 【각기 점(坫)이 있다.】 자리는 짚자리로써 깔며, 야명(夜明)1326)은 송아지[犢] 한 마리, 백색백(白色帛) 1개인데, 진설(陳設)은 위와 같고, 자리는 짚자리로써 깔며, 성신(星辰)은, 《제사직장(諸司職掌)》에는 송아지[犢] 한 마리, 양(羊) 세 마리, 돼지[豕] 세 마리인데, 지금은 송아지 한 마리, 백색백(白色帛) 1개이고, 진설(陳設)은 위와 같은데, 형(鉶) 1개 【화羹(和羹)을 담는다.】를 더하고, 자리는 왕골 자리로써 깔며, 아래는 같습니다. 이상은 《제사직장(諸司職掌)》 및 전조(前朝)와 본조(本朝)의 진설도(陳設道)를 모방하여 참고해서 정한 것입니다.

藁秸。太祖尊所，上同壇上，【在上帝尊所東，北向西上。】藉以莞席，有象尊二。【一實明水，一實盎齊。】已上皆倣前朝陳設圖，但上帝壇下，尊所徒設不薦，今除。大明犢一、紅色帛一、籩十、【實以形鹽、魚鱸、榛實、乾棗、菱仁、芡仁、栗黃、鹿脯、白餅、黑餅。】豆十、【實以魚醢、兔醢、鹿醢、醢醢、芹菹、笋菹、菁菹、豚拍、脾析。】豆一、【實以毛血。】登一、【實以大羹煮肉汁，不用鹽醬。】簠·簋各二、【實以稻梁黍稷。】篚一、【帛。】俎二、【一牲肉匣、一牲首匣。】俎二、【〔一〕腥腸(胄)〔胃〕肺小匣，一熟腸胃肺小匣。】香爐一、香合一、燭二、匏爵三、【各有坫。】席以藁秸。夜明犢一、白色帛一、陳設上同，席以藁秸。星辰，諸司職掌犢一、羊三、豕三，今犢一、白色帛一，陳設上同，加鉶一，【實以和羹。】席以莞，下同。已上倣諸司職掌及前朝本朝陳設圖參定。風雲雷雨，諸司職掌羊五、豕五，今各一，白色帛四，共盛一篚，籩十、【實以形鹽、魚鱸、榛

풍운뢰우(風雲雷雨)는, 《제사직장(諸司職掌)》에는 양(羊) 다섯 마리, 돼지 [豕] 다섯 마리인데, 지금은 각기 한 마리이며, 백색백(白色帛) 4개는 1개의 비(篚)에 같이 담고 변(籩) 10개 【형염(形鹽)·어수(魚鱸)·진실(榛實)·건조(乾棗)·능인(菱仁)·검인(芡仁)·울황(栗黃)·녹포(鹿脯)를 담는다.】, 두(豆) 10개 【어해(魚醢)·토태(兔醢)·녹해(鹿醢)·담해(醢醢)·근저(芹菹)·청저(靑菹)·구저(韭菹)를 담는다.】, 보(簠)·궤(簋) 각 2개 【도(稻)·양(梁)·서(黍)·직(稷)을 담는다.】, 두(豆) 1개 【모혈(毛血)을 담는다.】, 등(登) 1개 【대羹(大羹)·자육즙(煮肉汁)을 담고, 염장(鹽醬)은 사용하지 않는다.】, 비(篚) 1개에는 백(帛)을 담고, 조(俎) 2개는 【1개는 양갑(羊匣)이고, 1개는 시갑(豕匣)이다.】 형(鉶)을 더하고 【화羹(和羹)을 담는다.】, 축(燭) 2개, 조(俎) 2개 【1개는 생고기의 장(腸)·위(胃)·폐(肺)의 소갑(小匣)이고, 1개는 익힌 고기의 장·위·폐의 소갑이다.】, 향로(香爐) 1개, 향합(香合) 1개, 포작(匏爵) 3개이며 【각기 점(坫)이 있다.】, 자리는 왕골 자리로써 깎는다. 동남서북해(東南西北海)는, 《제사직장(諸司職掌)》에는 양(羊) 다섯 마리, 돼지 [豕] 다섯 마리인데, 지금은 각기 한 마리이며, 청색백(靑色帛) 1개, 홍색백(紅色帛) 1개, 백색백(白色帛) 1개는 1개의 비(篚)에 함께 담고, 진설(陳設)은 위와 같습니다. 악독산천(岳瀆山川)은, 《제사직장(諸司職掌)》에는 양(羊) 다섯 마리, 돼지 다섯 마리인데, 지금은 각기 한 마리이며, 오색백(五色帛) 각 1개는 1개의 비(篚)에 함께 담으며, 진설(陳設)은 위와 같습니다. 이상은 《제사직장(諸司職掌)》과 본조(本朝)의 예(例)를 참고하여 정했습니다. 대명(大明) 이하의 준소(尊所)는 대준(大尊) 2개 【1개는 명수(明水)를 담고, 1개는 범제(泛齊)를 담는다.】, 작준(著尊) 2개 【1개는 명수(明水)를 담고, 1개는 예제(醴齊)를 담는다.】, 희준(犧尊) 2개 【1개는 명수를 담고, 1개는 양제(盎齊)를 담는다.】, 산뢰(山罍) 1개 【청주(淸酒)를 담는다.】, 축(燭) 1개인데, 동위(東位)는 각기 매위(每位) 신좌(神座)의 왼쪽에 설치하여 오른 쪽을 향하게 하고 서위(西位)는 각기 매위(每位) 신좌(神座)의 오른쪽에

實、乾棗、菱仁、芡仁、栗黃、鹿脯。】豆十、【實以魚醢、兔醢、鹿醢、醢醢、芹菹、筍菹、菁菹、韭菹。】簠·簋各二、【實以稻梁黍稷。】豆一、【實以毛血。】登一、【實以大羹煮肉汁，不用鹽醬。】篚一帛，俎二【一羊匣、一豕匣。】加鉶，【實以和羹。】燭二、俎二、【一腥腸胃肺小匣、一熟腸胃肺小匣。】香爐一、香合一、匏爵三、【各有坫。】藉以莞席。東南西北海，諸司職掌羊五、豕五，今各一、靑色帛一、紅色帛一，白色帛一，共盛一篚，陳設上同。岳瀆山川，諸司職掌羊五、豕五，今各一，五色帛各一，共盛一篚，陳設上同。已上諸司職掌及本朝例參定。大明以下尊所，大尊二、【一實明水，一實泛齊。】著尊二、【一實明水，一實醴齊。】犧尊二、【一實明水，一實盎齊。】山罍一、【實淸酒。】燭一，東位各設於每位神座之左右向，西位各設於每位神座之右左向，席依陳設例。”從之。又啓：“唐、宋制，皇帝親望燎瘞，諸司職掌，皇帝無親望燎瘞，本朝親祭時，亞獻官望瘞，

	<p>설치하여 왼쪽을 향하게 하고, 자리는 진설(陳設)의 예(例)에 의거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당(唐)·송(宋)의 제도는 황제(皇帝)가 친망요예(親望燎瘞)1327) 했으며, 《제사직장(諸司職掌)》에는 황제의 친망요예(親望燎瘞)가 없는데, 본조(本朝)에서는 〈임금이〉 친제(親祭)할 때에 아헌관(亞獻官)이 망예(望瘞)를 하고, 대신 행하면[攝行] 초헌관(初獻官)이 망예를 하게 됩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본조(本朝)의 예에 의거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환구(圜丘)에 제사할 때는 〈임금이〉 친히 삼작(三爵)을 드리나, 아헌관(亞獻官)과 종헌관(終獻官)이 없으니, 청컨대 소차(小次)를 임시로 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攝行則初獻官望瘞。” 傳曰：“可依本朝例。” 又啓：“祀圜丘時，親奠三爵，無亞、終獻官，請權除小次。” 從之。</p>
<p>세조 6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1월 15일(경진) 1번째기사 면복을 갖추고 환구단에 제사를 올리다</p>	<p>임금이 면복(冕服)을 갖추고 환구단(圜丘壇)에 올라 제사를 지내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호천 상제위(昊天上帝位)·황지기위(皇地祇位) 및 태조위(太祖位)에는 임금이 친히 삼헌(三獻)을 행하고, 대명위(大明位) 및 풍운뢰우위(風雲雷雨位)에는 세자(世子)가 삼헌(三獻)을 행하고, 야명위(夜明位) 및 동남북서해(東南北西海岳瀆山川位)에는 영의정(領議政) 정인지(鄭麟趾)가 삼헌을 행하였는데, 그 의식은 이러하였다. “시일(時日)은 서운관(書雲觀)에서 미리 계절을 격(隔)해서 정월 15일로써 예조(禮曹)에 보고해 계문(啓聞)하고, 유사(攸司)에게 나누어 고(告)하여 직책에 따라 준비[供辦]하게 한다. 재계(齋戒)는 제사지내기 전 8일에 예조(禮曹)에서 계문(啓聞)하여 재계하기를 청하면, 전하(殿下)에서 별전(別殿)에서 산재(散齋)하고, 3일 동안을 치재(致齋)한다. 【2일은 정전(正殿)에서 하고, 1일은 제소(祭所)에서 한다.】 무릇 산재(散齋)할 때는 조상(弔喪)하거나 문병[問疾]</p>	<p>庚辰/上具冕服登壇，行祭如儀。昊天上帝、皇地祇位及太祖位，親行三獻，大明及風雲雷雨位，世子行三獻，夜明及東南北西海岳瀆山川位，領議政鄭麟趾行三獻。其[議] [儀] 曰： “時日書雲觀預於隔季，以正月十五日報禮曹啓聞，散告攸司，隨職供辦。齋戒前祀八日，禮曹啓聞請齋戒，殿下散齋於別殿，致齋三日。【二日於正殿，一日於祀所。】凡散齋不弔喪問疾，不聽樂，有司不啓刑殺文書，致齋唯啓祀事。前祀七日，祀官、執事官</p>

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며, 유사(有司)가 형살 문서(刑殺文書)를 아뢰지 아니하고, 치재(致齋)할 때는 오직 제사에 관한 일만을 아뢴다. 제사 전 7일에 사관(祀官)·집사관(執事官) 및 배사(陪祀)하는 종친(宗親)과 문무 백관들은 의정부(議政府)에서 서계(誓戒)를 받는다. 그날 날이 밝기 전 7각(刻)에 통례문(通禮門)이 자리를 설치하는데, 분헌관(分獻官)의 자리는 북쪽에 설치하되 남향(南向)하게 하고, 진폐(進幣)·진주관(進酒官)·진폐(奠幣)·진주관(奠酒官)·진조관(進俎官)·진조관(奠俎官)의 자리는 위치(位次)를 달리하여 겹줄로 남쪽에 설치하되, 북향(北向)하게 하고 서쪽이 위가 되게 한다. 감찰(監察) 2인의 자리는 서쪽에 설치하되, 동향(同向)하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예의사(禮儀使)·대축(大祝)·전사관(典祀官)·축사(祝史)·재량(齋郎)·협률랑(協律郎)·장생령(掌牲令)·아악령(雅樂令)·봉조관(捧俎官)·집준자(執尊者)·집뢰자(執鼙者)·집비자(執篋者)·집묵자(執鞀者)·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의 자리는 동쪽에 설치하되, 서쪽이 위가 되게 하고, 매등(每等)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하되,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미리 차정(差定)한 것도 또한 참여한다.】 배사(陪祀)하는 종친(宗親) 및 문무 백관들의 자리는 행사관(行事官)의 남쪽에 설치하는데, 문관(文官)은 동쪽, 무관(武官)은 서쪽으로 하여 매등(每等)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하되, 북향하여 서로 마주보고 수위(首位)가 되게 한다. 【종친(宗親)은 무관(武官)의 매품(每品) 반두(班頭)에 별도로 자리를 설치하고, 대군(大君)은 정1품의 앞에 별도로 자리를 설치한다. 뒤의 것도 이와 같다.】 날이 밝기 전 5각(刻)에 봉례랑(奉禮郎)이 배사(陪祀)하는 여러 관원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데, 여러 사관(祀官) 및 집사관(執事官)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분헌관(分獻官)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간다. 통찬(通贊)이 분헌관(分獻官)의 왼쪽에 나아가서 서향(西向)하여 서서 서문(誓文)을 대독(代讀)하기를, ‘지금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에 전하께서 호천 상제(昊天上帝)를 환구(圜丘)에서 제사지내니, 무릇 사관

及陪祀宗親、文武百官，受誓戒於議政府。其日未明七刻，通禮門設位，分獻官在北南向，進幣進酒官、奠幣奠酒官、進俎官、奠俎官異位重行，在南北向西上。監察二在西東向北上。禮儀使、大祝、典祀官、祝史、齋郎、協律郎、掌牲令、雅樂令、捧俎官、執尊·鼙·篋·鞀者、謁者、贊者、贊引在東西上，俱每等異位重行北上。 【預差亦與焉。】陪祀宗親及文武百官，於行事官之南，文東武西，俱每等異位重行北向，相對爲首。 【宗親於武官每品班頭別設位，大君別設位於正一品之前，後同。】未明五刻，奉禮郎分引陪祀群官就位，引諸祀官及執事官就位，引分獻官就位。通贊就分獻官之左西向立，代讀誓文曰，“今某年某月某日，殿下祀昊天上帝于圜丘，凡祀官、執事官及陪祀群官不縱酒，不食葱、(非) [韭]、蒜、(菹) [薤]，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預穢惡事，各揚其職。其或有違，國有常刑。”讀訖通贊唱再拜，在位者皆再拜乃退。凡祀官、執事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並散齋四

(祀官)·집사관(執事官) 및 배사(陪祀)한 여러 관원들은 술을 함부로 마시지 말고, 파[葱]·부추[菹]·마늘[蒜]·염교[薤]를 먹지 말며, 조상(弔喪)하거나 문병[問疾]하지 말고, 음악을 듣지 말며, 형벌을 행하지 말고, 형살 문서(刑殺文書)에 판결 서명(署名)하지 말며, 더럽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고 각기 그 직무를 행하라. 혹시 어김이 있으면 국가에서 일정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 입기를 마치고 나서 통찬(通贊)이, ‘재배(再拜)하라.’고 창(唱)하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두 번 절하고 물러난다. 무릇 사관(祀官)·집사관(執事官) 및 근시(近侍)의 관원으로서 마땅히 따라 전상(殿上)에 오를 사람은 모두 산재(散齋)하기를 4일 동안 하되, 정침(正寢)에서 자고, 치재(致齋)하기를 3일 동안 한다. 【2일은 본사(本司)에서 하고, 1일은 제소(祭所)에서 한다.】 무릇 산재(散齋)할 적에는 사무를 다스리기를 전과 같이 하나, 치재(致齋)할 적에는 오직 향사(享祀)에 관한 일만을 행하며, 이미 재계하고서 꺾(闕)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대리하여 행사(行事)하게 한다. 배사(陪祀)하는 종친(宗親)·문무관(文武官) 및 여러 위(衛)의 속원(屬員)과 유문(壝門)1347) 을 수위(守衛)하는 자는 【문(門)마다 각각 호군(護軍)이 2인이고, 대(隊)마다 각각 대장(隊長)이 1인이다.】 각기 본사(本司)에서 청재(淸齋)하면서 하룻밤을 자고, 공인(工人)도 청재(淸齋)하면서 하룻밤을 자는데 봉상시(奉常寺)에서 잔다. 제사지내기 2일 전에 의정(議政)이 태조 대왕(太祖大王)의 묘(廟)에 고(告)하기를 평상시의 고하는 의식과 같이 한다. 【신(神)에 배향(配享)하여 군주(君主)가 된다는 뜻으로써 고한다.】 치재(致齋)하기 2일 전에 모두 의정부(議政府)에 모여서 의식을 연습하고, 제사지내기 하루 전에 모두 제소(祭所)에 모인다. 【사관(祀官) 이하 무릇 제사에 참여할 자는 모두 제사지내기 2일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가는 길을 청소하게 하여서 여러 가지 흉하고 더러운 것과 최질(裏經)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그 곳음(哭泣)하는 소리가 제소(祭所)에 들리는 것은 임시로 중단시킨다. 병조(兵曹)

日，宿於正寢，致齋三日。【二日於本司，一日於祀所。】凡散齋治事如故，致齋唯行祀事，已齋而闕者，通攝行事。陪祀宗親、文武官及諸衛之屬守衛壝門者，【每門各護軍二人、每門各隊長一人。】各於本司淸齋一宿，工人淸齋一宿，宿於奉常(守)〔寺〕。前祀二日，議政告太祖大王廟，如常告之儀。【告以配神作主之意。】前致齋二日，並集議政府肄儀，前祀一日並集祀所。【祀官以下凡預祀者，皆前祀二日，沐浴更衣，令漢城府淸所行之路，不得見諸凶穢衰經，其哭泣之聲，聞於祀所者權斷。令兵曹四山內，禁一應閑雜及女人，察掃除污穢之物。】陳設前祀三日，忠扈衛設大次於外壝東門之外道北南向，設王世子次於大次東南西向，設諸祀官、執事官及陪祀群官次於外壝東門之外道南，並隨地之宜。前二日，典祀官、壇司帥其屬，掃除壇之上下，積柴於燎壇。【其壇在神壇之南丙地內壝之外，方一丈，高丈二尺。】開上南出戶方六尺。又開壑坎於壇之壬地內壝之外，方深取足物，南出陞。設饌幔於內壝東門、西門之外道北南

로 하여금 사산(四山) 내에서는 일체 한잡인(閑雜人)과 여인을 금지시키고, 더러운 물건을 소제하도록 살피게 한다.】 진설(陳設)은 제사지내기 3일 전에 충호위(忠扈衛)에서 대차(大次)1348) 를 외유(外壙) 동문(東門)의 바깥 길 북쪽에 설치하되 남향하게 하고, 왕세자의 장막[次]을 대차(大次)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서향하게 하고, 여러 사관(祀官)·집사관(執事官) 및 배사(陪祀)하는 여러 관원의 장막[次]을 외유(外壙) 동문의 바깥 길 남쪽에 설치하되 모두 땅의 적당한 데 따르게 한다.

제사를 지내기 전 2일에 전사관(典祀官)과 단사(壇司)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단(壇)의 위아래를 소제하고, 썰[柴]을 요단(燎壇)에 쌓아두고, 【그 단(壇)은 신단(神壇)의 남쪽 병방(丙方) 땅 내유(內壙)의 밖에 있는데, 사방(四方)이 1장(丈)이고, 높이가 1장(丈) 2척(尺)이다.】 위를 열어 남쪽으로 문을 내는데, 문은 사방이 6척(尺)이 되게 한다. 또 예감(瘞坎)1349) 을 단(壇) 임지(壬地)의 내유(內壙)의 밖에 파는데, 넓이와 깊이는 물건을 채우기에 넉넉할 정도로 하고, 남쪽으로 섬돌[陛]이 나오게 한다. 찬만(饌幔)을 내유(內壙) 동문(東門)·서문(西門)의 바깥길 북쪽에 설치하여 남향(南向)하게 하되 【상제(上帝)·지기(地祇)·태조(太祖)의 찬(饌)과 대명(大明)·성신(星辰)·동남서북해(東南西北海)의 찬(饌)은 동문(東門) 밖에 진설(陳設)하고, 야명(夜明) 및 풍운뢰우(風雲雷雨)·악독산천(岳瀆山川)의 찬(饌)은 서문(西門) 밖에 진설(陳設)한다.】 모두 땅의 적당한 데 따르게 한다. 아악 령(雅樂令)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현현(軒懸)을 설치하는데, 단(壇)의 남쪽 가까이에 당하여 북향하게 한다.

제사지내기 전 1일에 전사관(典祀官)과 단사(壇司)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신좌(神座)를 설치하는데, 호천 상제(昊天上帝)와 황지기(皇地祇)의 신좌(神座)를 단(壇) 위의 북방(北方)에 설치하여 남향하게 하고, 자리는 짙 자리로써 깎는다. 【상제(上帝)는 동쪽에 있고,지기(地祇)는 서쪽에 있다.】 태조 대왕 배위(配位)의 신좌(神座)는 동방(東方)에 설치하여 서향하게 하고, 자리는 왕골 자리

向, 【上帝、地祇、太祖之饌及大明、星辰、東南西北海之饌, 陳於東門外, 夜明及風雲雷雨、岳瀆山川之饌, 陳於西門外。】 茲隨地之宜。 雅樂令帥其屬展軒懸, 當壇近南北向。 前一日, 典祀官壇司率其屬設神座, 昊天上帝、皇地祇座于壇上北方南向, 席以藁秸。 【上帝在東, 地祇在西。】 太祖大王配位神座於東方西向, 席以莞。 大明位于太祖位差後, 席以藁秸。 星辰位及東南西北海位, 俱在東西向, 席以莞。 夜明位于當大明位在西東向, 席以藁秸。 風雲雷雨位于夜明位差後, 次岳瀆山川位俱在西東向, 席以莞。 告潔畢權撤。 執禮設殿下版位於壇下東南西向, 飲福位於壇上午陛之西北向。 贊者設分獻官位二於版位之後, 稍南西向。 【領議政又於王世子位差後。】 進幣進酒官、奠幣奠酒官、進俎官、奠俎官位於內壙東門之外道南, 執事者位於其後, 俱每等異位重行西向北上。 監察二, 一於東南西向, 一於西南東向, 書吏陪其後。 執禮位二, 一於內壙南門內, 一於內壙南門外, 俱近東西向。 謁者、贊者、贊引, 稍南

로써 간다. 대명(大明)의 위(位)는 태조(太祖)의 위에서 조금 뒤에 설치하고, 자리는 짚 자리로써 간다. 성신(星辰)의 위와 동남서북해의 위는 모두 동쪽에 있어 서향하게 하고, 자리는 왕골 자리로써 간다. 야명(夜明)의 위는 대명(大明)의 위에 당하여 서쪽에 있어 동향하게 하고, 자리는 짚 자리로써 간다. 풍운뢰우(風雲雷雨)의 위는 야명(夜明)의 위보다 조금 뒤에 설치하고, 다음에 악독 산천(岳瀆山川)의 위는 모두 서쪽에 있어 동향하게 하고, 자리는 왕골 자리로써 간다. 정결(淨潔)하게 마쳤다고 고(告)하면 임시로 건너치운다. 집례(執禮)가 전하(殿下)의 판위(版位)를 단(壇) 아래 동남쪽에 설치하되 서향하게 하고, 음복위(飲福位)는 단(壇) 위의 오방(午方)1350 섬들의 서쪽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한다. 찬자(贊者)가 분헌관(分獻官)의 자리 둘을 판위(版位)의 뒤쪽 조금 남쪽에 설치하되 서향하게 한다. 【영의정의 자리는 또 왕세자의 자리보다 조금 뒤에 있다.】 진폐 진주관(進幣進酒官)·전폐 전주관(奠幣奠酒官)·진조관(進俎官)·전조관(奠俎官)의 자리는 내유(內壝) 동문(東門)의 바깥 길 남쪽에 설치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 설치하되 모두 매등(每等)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곁줄로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감찰(監察)의 자리는 둘을 설치하는데, 하나는 동남쪽에서 서향하고, 하나는 서남쪽에서 동향하며, 서리(書吏)가 그 뒤에 배석(陪席)하게 한다. 집례(執禮)의 자리 둘을 설치하는데, 하나는 내유(內壝) 남문(南門) 안에 설치하고, 하나는 내유(內壝) 남문(南門) 밖에 설치하되, 모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게 한다.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의 자리는 조금 남쪽에 있어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협률랑(協律郎)의 자리는 현현(軒懸)의 서북쪽에 설치하되 동향하게 하고, 아악령(雅樂令)의 자리는 현현의 북쪽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한다. 배사(陪祀)하는 여러 관원은, 1품 이하의 자리는 외유(外壝) 동문 밖에 설치하고, 종친(宗親) 및 무관 1품 이하의 자리는 외유(外壝) 서문 안에 설치하되 모두 길 남쪽에 위치(位次)를 달리하여 곁줄로 서향하게 하며, 감찰(監察) 자리 둘은 문반(文

西向北上。協律郎位於軒懸之西北東向，雅樂令位於軒懸之北北向。陪祀群官，一品以下於外壝東門外，宗親及武官一品以下於外壝西門內，俱道南異位重行北向，監察二在文武班後，書吏各陪其後。又設門外位，祀官及諸執事官於外壝東門外道南，俱每等異位重行北向西上。陪祀文官位於外壝東門外，宗親及武官位於外壝西門外俱北向，異位重行。設牲榜於外壝東門外，當門西向以北爲上。設掌牲令位於牲西南北向，設諸大祝位於牲東，各當牲後，祝史各在其後俱西向。設領議政省牲位於牲前近北，設監察位於領議政之西稍却俱南向。設望瘞位於柴壇之北南向，執禮、大祝、贊者在東西向。設望瘞位於壇西，當瘞坎北向，執禮、大祝、贊者在東西向。祀日未行事前，典祀官帥其屬入，設祭器、實饌具、實尊壘，設爵洗於午陛東南北向。壘在洗東加勺，篚在洗西實以巾。【篚三有坩。】分獻爵洗二，一於巳陛東(門)[南]，一於未陛西南俱北向。【篚各三。】出宮前祀一日，忠憲衛設王世子次於光化門外，奉禮郎設王世子及宗

班)·무반(武班)의 뒤에 있는데, 서리(書吏)가 각각 그 뒤에 배석(陪席)하게 한다. 또 문외위(門外位)를 설치하는데, 사관(祀官) 및 여러 집사관의 자리는 외유(外壘) 동문 밖의 길 남쪽에 설치하되, 모두 매등(每等)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위로 한다. 배사(陪祀)하는 문관의 자리는 외유(外壘) 동문 밖에 설치하고, 종친 및 무관의 자리는 외유 서문 밖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하게 하고,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한다. 생방(牲榜)1351)의 자리는 외유(外壘)의 동문 밖에 설치하되 문에 당하여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장생령(掌牲令)의 자리는 희생의 서남쪽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여러 대축(大祝)의 자리는 희생의 동쪽에 설치하되 각기 희생의 뒤에 두며, 축사(祝史)도 각각 그 뒤에 있게 하되 모두 서향하게 한다. 영의정이 희생을 살피는 자리는 희생의 앞에 설치하되 북쪽으로 가까이 하고, 감찰의 자리는 영의정 자리의 서쪽에 설치하되 조금 뒤로 물러서게 하여 모두 남향하게 한다. 망료위(望燎位)는 시단(柴壇)의 북쪽에 설치하되 남향하게 하고, 집례(執禮)·대축(大祝)·찬자(贊者)는 동쪽에 있어 서향하게 한다. 망예위(望瘞位)는 단(壇)의 서쪽에 설치하되 예감(瘞坎)에 당하여 북향하게 하고, 집례·대축·찬자는 동쪽에 있어 서향하게 한다.

제삿날 행사(行事)하기 전에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기(祭器)와 제찬(祭饌)을 담은 찬구(饌具)와 제주(祭酒)를 담은 준(尊)·뇌(甃)를 설치하고, 작세(爵洗)를 오방(午方) 섬돌 동남쪽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한다. 뇌(甃)는 세(洗)의 동쪽에 있게 하고 작(勺)을 얹어 두며, 비(篚)는 세(洗)의 서쪽에 있게 하되 수건[巾]을 담아 둔다. 【비(篚)가 3개이고, 점(坫)이 있다.】 분헌관(分獻官)의 작세(爵洗)는 2개인데, 1개는 사방(巳方) 섬돌의 동남쪽에 있고, 1개는 미방(未方) 섬돌의 서남쪽에 있되 모두 북향하게 한다.

【비(篚)는 각기 3개이다.】 출궁(出宮)하기 하루 전에 충호위(忠扈衛)에서 왕세자(王世子)의 막차[次]를 광화문(光化門) 밖에 설치하며, 봉례랑(奉禮郎)은

親、文武百官侍立位并如常。 鼓初嚴，兵曹勒諸衛陳大駕鹵簿及軍士，判司僕陳輿輦御馬， 竝於弘禮門外， 分立如式， 前後騎步隊， 各具甲冑， 以次屯列整肅部伍， 不得喧譁。 宗親及百官俱集朝房， 鼓二嚴， 宗親及百官具朝服就侍立位。 左中護引王世子具冕服就光化門外次。 諸衛各督其屬， 入陳於勤政殿庭， 侍臣就階下分左右立。 諸護衛之官及司禁， 各具器服， 尙瑞官捧寶俱詣思政殿閣外伺候。 判通禮詣閣外啓請中嚴， 判司僕進輦於思政殿閣外。 鼓三嚴， 鍾聲止， 闕內外門。 判通禮啓外辦， 殿下具遠遊冠、 絳紗袍以出。 判通禮跪啓請乘輦， 殿下乘輦， 判通禮啓請駕進發駕動。 判通禮挾引以出， 繖扇侍衛如常儀。 尙瑞官捧寶前導， 【至勤政門外， 以寶載馬。】 左右侍臣挾侍輦前如常。 駕至光化門外侍臣上馬所， 判通禮啓請駕小駐。 教侍臣上馬， 退稱侍臣上馬， 通贊傳唱。 侍臣皆上馬畢， 判通禮啓請駕進發。 駕動不鳴鼓吹。 王世子及宗親、 百官鞠躬， 過則平身， 以次侍衛。 駕將至壇， 距百步， 侍臣下馬， 分立鞠

왕세자 및 종친(宗親)과 문무 백관(文武百官)들의 시립(侍立)하는 자리를 설치하되 모두 평상시와 같이 한다. 고(鼓)가 초엄(初嚴)을 알리면, 병조(兵曹)에서 여러 위(衛)를 거느리고 대가 노부(大駕鹵簿)와 군사(軍士)를 진열(陳列)시키고, 판사복(判司僕)은 여연(輿輦)과 어마(御馬)를 진열시키는데 홍례문(弘禮門) 밖에서 나누어 서기를 의식대로 하며, 전후(前後)의 기병(騎兵)·보병(步兵)의 대(隊)는 각기 갑주(甲冑)를 갖추고는 차례대로 둔열(屯列)하고 부오(部伍)를 정숙하게 하여 환화(喧譁)하지 못하게 한다. 종친과 백관들이 모두 조방(朝房)에 모이고 고(鼓)가 이엄(二嚴)을 알리면, 종친과 백관들이 조복(朝服)을 갖추고 시립하는 자리로 나아간다. 좌중호(左中護)가 왕세자를 인도하는데, 왕세자는 면복(冕服)을 갖추고 광화문(光化門) 밖의 막차[次]에 나아간다. 여러 위(衛)에서는 각기 그 소속을 독려하여 근정전(勤政殿)의 뜰에 들어와서 진열하고, 시신(侍臣)은 섬돌 아래에 나아가서 좌우로 나누어 선다. 여러 호위(護衛)하는 관원과 사금(司禁)은 각기 무기와 제복을 갖추고, 상서관(尙瑞官)은 어보(御寶)를 받들어 모두 사정전(思政殿) 합문(閤門) 밖으로 나아가서 기다린다. 판통례(判通禮)가 합문 밖으로 나아가서 중엄(中嚴)을 계청(啓請)하면, 판사복(判司僕)이 사정전 합문 밖에 연(輦)을 올린다. 고(鼓)가 삼엄(三嚴)을 알리고 종(鍾) 소리가 그치면 내문(內門)·외문(外門)을 연다. 판통례(判通禮)가 외관(外辦)을 아뢰면 전하(殿下)가 원유관(遠遊冠)과 강사포(絳紗袍)를 갖추고 나온다. 판통례가 꿇어앉아 연(輦)을 타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연(輦)을 타고, 판통례가 어가(御駕)가 진발(進發)하기를 계청하면 어가가 움직인다. 판통례가 곁에서 인도하여 나가고 산선(繖扇)이 시위(侍衛)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상서관(尙瑞官)이 어보(御寶)를 받들고 앞에서 인도하고, 【근정전(勤政殿) 문 밖에 이르러서는 어보(御寶)를 말에 싣는다.】 좌우의 시신(侍臣)들이 연(輦) 앞의 양쪽에서 모시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어가가 광화문(光化門) 밖 시신(侍臣)의 상마소(上馬所)에 이르면, 판통례는 어가가 조

躬, 過則平身。 駕至, 諸祀官具朝服出立於大次前近南北向鞠躬, 過則平身。 判通禮進當輦前, 啓請降輦, 殿下降輦。 判通禮導殿下入大次, 繖扇侍衛如常儀。 其大駕鹵簿停於次外。 【若地窄停於洞口外。】 王世子就次。 校書館官以祝版奉進, 近侍傳捧以進。 殿下署訖, 近侍捧出付典祀官。 省牲器, 前祀一日未後二刻, 典祀官、壇司帥其屬, 掃除壇之上下, 執事者以祭器入設於位, 加以巾蓋如陳設儀。 未後三刻, 議政以下應省牲器者, 俱以常服就東墻門外。 執禮帥謁者、贊者、贊引, 先入壇下, 掌牲令牽牲就位。 贊引引監察由卯陞升, 行掃除於上, 降行樂懸於下, 訖復位。 謁者引議政, 贊引引監察, 升自卯陞視滌濯, 執事者皆舉羃告潔。 訖引降就省牲位南向立。 掌牲令小前曰, “請省牲”, 退復位, 議政省牲。 掌牲令又前舉手曰, “肅”, 復位, 諸大祝各巡牲一匝東向舉手曰, “充”, 俱復位。 諸大祝與掌牲令以次牽牲詣廚, 授典祀官。 謁者引議政詣廚, 省鼎鑊, 申視滌漑, 監取明水火。 【取水於陰鑑, 取火於陽

금 멈추기를 계청한다. 시신(侍臣)에게 말을 타라고 명령하면 물러가서 시신이 말을 타라고 일컫고 통찬(通贊)이 전창(傳唱)한다. 시신들이 모두 말을 타기를 마치면 판통례(判通禮)는 어가가 진발(進發)하기를 계청한다. 어가(御駕)가 움직이는 데는 고취(鼓吹)를 울리지 않는다. 왕세자 및 종친(宗親)·백관(百官)들은 국궁(鞠躬)하였다가 어가가 지나가면 몸을 바로 하고 차례대로 시위(侍衛)한다. 어가(御駕)가 단(壇)에 이르려고 할 때 시신(侍臣)들은 백보(百步)를 떨어져서 말에서 내려 나누어 서서 국궁하였다가 어가가 지나가면 몸을 바로 한다. 어가가 이르면 여러 사관(祀官)들이 조복(朝服)을 갖추고 나와서 대차(大次) 앞에 남쪽 가까이 서서 북향하여 국궁하였다가 어가가 지나가면 몸을 바로 한다. 판통례(判通禮)가 앞으로 나와 연(輦) 앞에 와서 연(輦)에서 내리기를 계청하면 전하(殿下)가 연(輦)에서 내린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대차(大次)에 들어가는데, 산선(繖扇)이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그 대가 노부(大駕鹵簿)는 대차(大次) 밖에 정지시킨다. 【만약 장소가 협착하면 동구(洞口) 밖에 정지시킨다.】 왕세자가 막차[次]에 나아간다. 교서관(校書館)의 관원이 축판(祝版)을 받들어 올리면, 근시(近侍)가 전해 받들어서 올린다. 전하가 서명(署名)하기를 마치면 근시(近侍)가 받들고 나가서 전사관(典祀官)에게 맡긴다.

희생을 담은 그릇을 살피는 것은, 제사를 지내기 하루 전 미시(未時) 뒤 2각(刻)에 전사관(典祀官)과 단사(壇司)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단(壇)의 위아래를 소제하며, 집사자(執事者)는 제기(祭器)를 가지고 들어와서 자리[位]에 진설(陳設)하고, 수건[巾]과 덮개[蓋]를 얹어 놓기를 진설하는 의식과 같이 한다. 미시(未時) 뒤 3각(刻)에 의정(議政) 이하 마땅히 희생 담은 그릇을 살펴야 할 사람은 모두 평상복(平常服) 차림으로써 동쪽 유문(壝門) 밖으로 나아간다. 집례(執禮)가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을 거느리고 먼저 단(壇) 아래에 들어오고, 장생령(掌牲令)이 희생을 끌고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監

燧, 陰鑑未能卒辦, 以井水代之。 火以供爨, 水以實尊。】贊引引監察詣廚省饌具訖, 各還齋所。 哺後一刻, 典祀官率宰人, 以鑿刀割牲, 祝史以豆取毛血, 各置於饌所, 遂烹牲。 【連皮煮熟, 其餘毛血以淨器盛貯, 祭畢埋之。】 奠幣, 祀日行事前五刻典祀官帥其屬, 服其服入, 實饌具畢, 諸位大祝設神位版於座, 贊引引監察升自卯陞, 按視壇之上下, 糾察不如儀者選出。 前三刻諸祀官及陪祀群官, 各服其服, 【祀官祭服, 陪祀官朝服。】 執禮率謁者、贊者、贊引, 入自東壝門先就壇南懸北拜位, 重行北向西上, 四拜訖各就位。 雅樂令率工人入就位, 奉禮郎分引陪祀群官, 各由外壝東西門入就位。 副知通禮引左分獻官, 【非王世子, 則謁者引。】 謁者引右分獻官, 又謁者、贊引各引諸祀官, 俱就東壝門外位。 贊引引監察、大祝、典祀官、祝史、齋郎、協律郎、捧俎官、執尊·壘·篚·罍者入就位北向西上。 執禮曰, “四拜”, 贊者傳贊, 【凡執禮有辭, 贊者皆傳贊, 下同。】 監察以下皆四拜訖, 贊引引監察就位, 引典祀官

祭)을 인도하여 묘방(卯方)의 섬돌로부터 올라가서 위에서 소제를 행하고, 내려와서 악현(樂懸)을 아래에서 행하고는 이를 마치면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의정을 인도하고,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묘방(卯方)의 섬돌로부터 올라가서 깨끗이 씻어는가[滌濯]를 살펴보면, 집사자(執事者)가 모두 상보[冪]를 들어서 깨끗함을 고(告)한다.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희생을 살피는 자리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선다. 장생령(掌牲令)이 조금 앞으로 나와서 ‘희생을 살피기를 청합니다.’ 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가면, 의정(議政)이 희생을 살핀다. 장생령(掌牲令)이 또 앞으로 나와서 손을 들고, ‘희생이 살렸습니다.’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면, 여러 대축(大祝)이 각기 희생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동향하여 손을 들고서, ‘충실합니다.’ 하고는 모두 제자리로 돌아간다. 여러 대축과 장생령이 차례로 희생을 끌고 주방(廚房)으로 나아가서 전사관(典祀官)에게 준다. 알자(謁者)가 의정(議政)을 인도하여 주방으로 나아가서 가마솥[鼎鑊]을 살피고 씻는 것을 거둬 살펴봄, 명수(明水)와 명화(明火)를 취(取)하는 것을 감시한다. 【물은 음감(陰鑑)1352) 에서 취(取)하고, 불은 양수(陽燧)에서 취하는데, 음감(陰鑑)을 줄지에 출판(出辦)할 수가 없으면 우물물[井水]로써 대신한다. 불은 때는 데에 제공하고 물은 준[尊]에 담는다.】 찬인(贊引)이 감찰(監察)을 인도하여 주방으로 나아가서 찬구(饌具)를 살피고 나서 각기 재소(齋所)로 돌아간다. 포시(晡時)1353) 뒤 1각(刻)에 전사관이 재인(宰人)을 거느리고 난도(鑿刀)1354) 로써 희생을 베면, 축사(祝史)가 두(豆)를 가지고 모혈(毛血)을 취(取)하여 각기 찬소(饌所)1355) 에 두고, 드디어 희생을 삶는다. 【가죽째 삶아 익히고, 나머지 모혈(毛血)은 정결한 그릇에 담아 두었다가 제사를 마치면 이를 묻는다.】 폐백을 드리는 것은, 제삿날 행사(行事)하기 전 5각(刻)에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그 복색(服色)을 갖추고 들어와 찬구(饌具)에 제찬(祭饌)을 담는다. 이를 마치면 제위(諸位)의 대축(大祝)이 신위판(神位版)을 신좌(神座)에 설치하고, 찬인(贊引)이 감

就廚所，贊引引諸執事各就位。前一刻謁者、贊引，各引進幣進酒官、奠幣奠酒官、進俎官、奠俎官入就位。副知通禮引左分獻官，謁者引右分獻官入就位，贊引引齋郎各詣爵洗位，洗爵拭爵訖，置於篚，捧詣尊所，置於坫上。諸祀官將入就位，判通禮詣大次前啓請中嚴，少頃又啓外辦。殿下具冕服以出，繖扇侍衛如常儀。禮儀使導殿下，至中壇南門外，近侍跪進圭，禮儀使跪啓請執圭，殿下執圭。繖扇及寶停於門外。【侍衛不應入者，亦止於門外。】禮儀使導殿下入自正門，詣位西向立。【每立定，禮儀使退於左。】執禮曰，“樂作，燔柴，瘞毛血。”諸大祝舉牲首盤、毛血豆，各由其陞授祝史，祝史各捧牲盤，詣燎壇上加柴燔之。又大祝各捧毛血豆瘞於坎。執禮曰，“樂止，四拜”，禮儀使啓請四拜，殿下四拜。【分獻官百官同。】謁者引進幣進酒官、奠幣奠酒官，詣昊天上帝尊所北向立。【謁者止於壇下。】執禮曰，“禮儀使導殿下奠幣”，禮儀使導殿下詣昊天上帝神位前北向立。執禮曰，“樂作”，啓請跪拈圭，殿下跪拈

찰(監察)을 인도하여 묘방(卯方) 섬돌로부터 올라가서 단(壇)의 위아래를 살펴 보고 의식과 같지 아니한 것을 규찰(糾察)하고 도로 나온다. 전(前) 3각(刻)에 여러 사관(祀官)과 배사(陪祀)하는 여러 관원이 각기 그 복색(服色)을 갖춘다. 【사관(祀官)은 제복(祭服)이고, 배사관(陪祀官)은 조복(朝服)이다.】 집례(執禮)가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을 거느리고 동쪽 유문(壇門)으로부터 들어와서 먼저 단(壇) 남쪽, 악현(樂懸) 북쪽의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겹줄로 서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여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아악 령(雅樂令)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봉례랑(奉禮郎)이 배사(陪祀)하는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각기 외유(外壙)의 동문(東門)·서문(西門)으로부터 들어와서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부지통례(副知通禮)가 좌분헌관(左分獻官)을 인도하고, 【왕세자(王世子)가 아니면 알자(謁者)가 인도한다.】 알자(謁者)는 우분헌관(右分獻官)을 인도하며, 또 알자(謁者)와 찬인(贊引)이 각기 여러 사관(祀官)을 인도하여 모두 동쪽 유문(壇門) 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찬인(贊引)이 감찰(監察)·대축(大祝)·전사관(典祀官)·축사(祝史)·재랑(齋郎)·협률랑(協律郎)·봉조관(奉俎官)·집준자(執尊者)·집뢰자(執壘者)·집비자(執篋者)·집먹자(執罍者)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한다. 집례(執禮)가 ‘사배(四拜)하라.’ 하고, 찬자(贊者)가 전찬(傳贊)하면, 【무릇 집례(執禮)가 말이 있으면 찬자(贊者)가 모두 전찬(傳贊)한다.】 감찰(監察) 이하가 모두 네 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찬인(贊引)이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로 나아가고, 전사관(典祀官)을 인도하여 주소(廚所)에 나아가며, 찬인(贊引)이 여러 집사(執事)를 인도하여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전(前) 1각(刻)에 알자(謁者)와 찬인(贊引)이 각기 진폐 진주관(進幣進酒官)·전폐 전주관(奠幣奠酒官)·진조관(進俎官)·전조관(奠俎官)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부지통례(副知通禮)는 좌분헌관(左分獻官)을 인도하고, 알자

圭。【百官跪。】近侍一人捧香爐跪，進禮儀使啓請三上香，近侍奠爐，進幣進酒官奉玉幣跪進，禮儀使跪請獻玉幣，殿下受玉幣以授奠幣奠酒官，奠于神位前。【進香進幣在東西向，奠爐奠幣在西東向。進爵奠爵同。】禮儀使啓請執圭、俯伏、興、平身，殿下執圭俯伏、興、平身。【百官同。】禮儀使導殿下詣皇地祇神位前上香，奠玉幣如上儀，次詣配位前東向立，上香奠玉幣如上儀訖，執禮曰，“樂止”，進幣進酒官以下降自卯陞復位。禮儀使導殿下降自午陞復位。初殿下將奠配位幣，副知通禮引左分獻官【王世子。】由巳陞升詣神位前【謁者引右分獻官，由未陞一時陞詣夜明位，次詣風雲雷雨位，次詣海濱山川位，進饌獻爵同。】跪。祝史捧香合，齋郎捧香爐跪進，左分獻官三上香。齋郎奠爐，大祝以幣跪進，左分獻官受以授大祝，奠于神位前，左分獻官俯伏、興、平身。次詣星辰位，次詣東南西北海位，上香、奠幣如上儀訖，降復位。進饌，初殿下既升奠幣，謁者引進俎官、奠俎官，帥捧俎官出詣饌所，俟殿下奠幣訖。

(謁者)는 우분헌관(右分獻官)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며, 찬인(贊引)은 재랑(齋郎)을 인도하여 각기 작세위(爵洗位)에 나아가서 술잔[爵]을 씻고 술잔을 닦는다. 이를 마치면 비(篋)에 넣어서 받들어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점(坫) 위에 놓는다. 여러 사관(祀官)들이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려 하면, 판통례(判通禮)가 대차(大次) 앞에 나아가서 중엄(中嚴)을 계청하고, 조금 있다가 또 외판(外辦)을 아뢴다. 전하가 면복(冕服)을 갖추고 나오는데, 산선(緞扇)이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예의사(禮儀使)가 전하를 인도하여 중유(中壘)의 남문(南門) 밖에 이르면 근시(近侍)가 꿇어앉아 홀[圭]을 올리고, 예의사(禮儀使)가 꿇어앉아 홀을 잡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홀을 잡는다. 산선(緞扇) 및 어보(御寶)는 문 밖에서 정지한다. 【시위(侍衛)로서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또한 문 밖에서 그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정문(正門)으로부터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선다. 【매양 설 때마다 예의사는 왼쪽에 물러선다.】 집례가, ‘음악을 시작하고, 섬[柴]을 태우고, 모혈(毛血)을 묻으라.’ 하면 여러 대축(大祝)이 희생의 머리가 담긴 반(盤)과 모혈(毛血)이 담긴 두(豆)를 들고 각기 그 섬돌로부터 축사(祝史)에게 주고, 축사는 각기 희생이 담긴 반(盤)을 받들어 요단(燎壇) 위에 나아가서 섬[柴]을 얹어 이를 태운다. 또 대축은 각기 모혈(毛血)이 담긴 두(豆)를 받들어 구덩이에 묻는다. 집례가, ‘음악을 그치고 사배하라.’ 하고, 예의사(禮儀使)가 사배하기를 계청(啓請)하면, 전하가 네 번 절한다. 【분헌관(分獻官)과 백관(百官)들도 같이 한다.】 알자(謁者)가 진폐 진주관(進幣進酒官)과 전폐 진주관(奠幣奠酒官)을 인도하여 호천 상제(昊天上帝)의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한다. 【알자는 단(壇)아래에 그친다.】 집례가,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폐백을 드리라.’ 하면,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호천 상제(昊天上帝)의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한다. 집례가, ‘음악을 시작하라.’ 하고, 꿇어앉아 홀[圭]을 대대(大帶)에 꽂기를 계청(啓請)하면, 전하가 꿇어앉아 홀을

祝史盛鼎實牲匣，進俎官、奠俎官帥捧俎官，各捧牲匣詣正門外立。執禮曰，“進饌，樂作。”饌各至其陛，【殿下將陞，進俎官、捧俎官等先升，奠俎官後升。】典祀官就本位。【正位三饌，午陞下立，東三位饌已陞，西三位饌未陞下立。】執禮曰，“禮儀使導殿下進饌”，禮儀使導殿下詣上帝位前北向立，啓請跪拵圭，殿下跪拵圭。【分獻官、百官跪。】進俎官等捧牲匣在東跪進，禮儀使啓請進饌，殿下受牲匣，以授奠俎官。奠俎官在西，奠于神位前，皆降復位。禮儀使啓請執圭、俯伏、興、平身，殿下執圭、俯伏、興、平身。【分獻官、百官同。】次詣皇地祇，次詣配位前如上儀訖，進俎官以下降復位樂止。禮儀使導殿下降復位。執禮曰，“行初獻禮”，謁者引進幣進酒官、奠幣奠酒官，詣上帝尊所北向立，禮儀使導殿下詣上帝尊所北向立。執禮曰，“樂作”，執尊者舉罍，近侍酌泛齊，進幣進酒官以爵受酒。禮儀使導殿下詣上帝神位前啓請跪拵圭，殿下跪拵圭。【百官跪。】進幣進酒官捧爵跪，禮儀使啓請獻爵，殿下執爵獻爵，

대대(大帶)에 꽂는다. 【백관(百官)도 꿇어앉는다.】 근시(近侍) 1인이 향로(香爐)를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리고, 예의사가 세 번 상향(上香)하기를 계청하고, 근시가 향로를 드리고, 진폐 진주관(進幣進酒官)이 옥폐(玉幣)를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리고, 예의사가 꿇어앉아서 옥폐(玉幣)를 드리기를 청하면 전하가 옥폐를 받아서 전폐 진주관(奠幣奠酒官)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향을 올리고 폐백을 올릴 적에도 동쪽에 서서 서향(西向)하고, 향로를 드리고 폐백을 드릴 적에는 서쪽에 서서 동향(東向)하게 한다. 술잔을 올리고 술잔을 드릴 적에도 이와 같이 한다.】 예의사가 홀[圭]을 잡고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啓請)하면, 전하가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백관(百官)들도 이와 같이 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황지기(皇地祇)의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향을 올리고, 옥폐(玉幣)를 드리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고 집례가, ‘음악을 그치라.’고 하면, 진폐 진주관(進幣進酒官) 이하가 묘방(卯方)의 섬돌로부터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오방(午方)의 섬돌로부터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처음에 전하가 배위(配位)에 폐백을 드릴 적에 부지통례(副知通禮)가 좌분헌관(左分獻官) 【왕세자(王世子).】 을 인도하여 사방(巳方)의 섬돌로부터 올라가서 신위 앞에 나아가서 【알자(謁者)가 우분헌관(右分獻官)을 인도하여 미방(未方)의 섬돌로부터 한꺼번에 올라가서 야명(夜明)의 위(位)에 나아가고, 다음에 풍운뢰우(風雲雷雨)의 위(位)에 나아가고, 다음에 해독 산천(海瀆山川)의 위(位)에 나아가서 제찬(祭饌)을 올리고 술잔을 드리기를 위와 같이 한다.】 꿇어앉게 한다. 축사(祝史)가 향합(香盃)을 받들고 재랑(齋郎)이 향로(香爐)를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리면, 좌분헌관(左分獻官)이 세 번 향을 올린다. 재랑(齋郎)이 향로를 드리고 대축(大祝)이 폐백을 꿇어앉아 올리면, 좌분헌관이 이를 받아서 대축에게 주어서 신위(神位) 앞에 드리게 하고, 좌분헌관(左分獻官)은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以爵授奠幣奠酒官，奠于神位前。禮儀使啓請執圭、俯伏、興、平身。次詣皇地祇位前，獻爵如上儀。訖禮儀使導殿下詣上帝前北向跪，執禮曰，“樂止。”大祝東向跪，讀祝文訖，執禮曰，“樂作。”禮儀使啓請俯伏、興、平身，殿下俯伏、興、平身。【百官同。】禮儀使導殿下詣配位獻爵如上儀。執禮曰，“樂止”，禮儀使導殿下降復位。行亞獻禮，【儀如初獻，但酌醴齊。】行終獻禮，【亦如上儀，但酌盞齊。】飲福。終獻畢，大祝詣正配三位尊所，各酌第一尊福酒，合置一酌，又大祝持俎進，減上帝位俎肉前脚，執禮曰，“賜福胙。”禮儀使導殿下詣飲福位北向，進酒官、進俎官由卯陞隨陞，大祝以爵授進幣進酒官，捧爵西向跪進。禮儀使啓請跪搯圭，殿下跪搯圭，【分獻官、百官皆跪。】受爵卒爵。進幣進酒官受虛爵授大祝。又大祝以俎授進俎官，進俎官捧俎西向跪進。禮儀使啓請受俎，殿下受俎以授近侍，近侍捧俎，降自午陞出門授司饗。進幣進酒官、進俎官由卯陞降復位。禮儀使啓請執圭、俯伏、興、平

다음은 성신(星辰)의 위(位)에 나아가고, 그 다음은 동남서북해(東南西北海)의 위(位)에 나아가서 향을 올리고 폐백을 드리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마치면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진찬(進饌)은 처음에 전하가 이미 올라가서 폐백을 드릴 적에 알자(謁者)가 진조관(進俎官)과 전조관(奠俎官)을 인도하고, 봉조관(奉俎官)을 거느리고 나와서 찬소(饌所)에 나아가서 전하의 폐백 드리는 것을 기다린다. 이를 마치면 축사(祝史)가 가마솔에 담은 것을 생갑(牲匣)1356)에 채우고, 진조관과 전조관이 봉조관을 거느리고 각기 생갑(牲匣)을 받들고는 정문(正門) 밖에 나아가서 서게 한다. 집례가, ‘찬(饌)을 올리고, 음악을 시작하라.’고 하면, 찬(饌)이 각기 그 섬돌에 이르게 하고 【전하가 장차 올라가려고 할 적에 진조관(進俎官)과 봉조관(奉俎官) 등은 먼저 올라가고 전조관(奠俎官)은 뒤에 올라온다.】 전사관(典祀官)은 본자리[本位]에 나아간다. 【정위(正位)의 삼찬(三饌)은 오방(午方) 섬돌 아래에 서고, 동쪽 삼위 찬(三位饌)은 사방(巳方) 섬돌 아래에 서고, 서쪽 삼위 찬(三位饌)은 미방(未方) 섬돌 아래에 선다.】 집례가,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찬(饌)을 올리라.’ 하면,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상제(上帝)의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圭]을 대대(大帶)에 꽂기를 계청(啓請)하면, 전하가 꿇어앉아 홀을 대대(大帶)에 꽂는다. 【분헌관(分獻官)과 백관(百官)들도 꿇어앉는다.】 진조관(進俎官) 등이 생갑(牲匣)을 받들고 동쪽에 있어 꿇어앉아 올리고, 예의사가 찬(饌)을 올리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생갑을 받아 전조관(奠俎官)에게 준다. 전조관이 서쪽에 있어 신위(神位) 앞에 드리고 모두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예의사가 홀[圭]을 잡고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啓請)하면, 전하가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분헌관(分獻官)과 백관(百官)들도 이와 같이 한다.】 다음은 황지기(皇地祇)에 나아가고, 그 다음은 배위(配位) 앞에 나아가서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진조관(進俎官) 이하가 내려와서 제자리로 들

身，殿下執圭、俯伏、興、平身，【百官同。】禮儀使導殿下降復位。執禮曰，“四拜”，禮儀使啓請四拜，殿下四拜。【百官同。】執禮曰，“徹籩豆，樂作。”諸大祝各徹籩豆，【籩豆各一，少移故處。】執禮曰，“樂止。”執禮曰，“樂作，四拜。”禮儀使啓請四拜，殿下四拜。【百官同。】執禮曰，“樂止。”禮儀使啓禮畢，導殿下還大次，至中壝門外，禮儀使啓請釋圭，近侍跪受圭，侍衛如常儀。副知通禮引左分獻官出，執禮曰，“望瘞。”謁者引右分獻官詣望瘞位，執禮帥贊者詣望瘞位。諸大祝各詣上帝配位、大明、夜明、星辰、東南西北海神座前，以筐取幣祝版，祝史以俎載牲體、【前一脚。】黍稷飯【除飯。】及爵酒各由其陞降，詣燎壇以幣、祝版、饌物置於燎柴，執禮曰，“可燎。”東西面各六人，以炬火燎半柴，典祀官、壇司監視。次詣望瘞位，諸大祝詣皇地祇、海岳瀆山川神座前，以筐取幣，祝史以俎取牲體、【地祇牲。】黍稷飯及爵酒，各由其陞降置於坎。執禮曰，“可瘞。”置土半坎，典祀官、

아가고 음악이 그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초헌례(初獻禮)를 행하라.’ 하면, 알자(謁者)가 진폐 진주관(進幣進酒官)과 전폐 전주관(奠幣奠酒官)을 인도하여 상제(上帝)의 존소(尊所)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예의사(禮儀使)는 전하를 인도하여 상제(上帝)의 존소(尊所)에 나아가서 북향하게 서게 한다. 집례가, ‘음악을 시작하라.’고 한다. 집준자(執尊者)가 상보[罍]을 들고 근시(近侍)가 범제(泛齊)를 따르면, 진폐 진주관(進幣進酒官)이 술잔[爵]을 가지고 술을 받는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상제(上帝)의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홀[圭]을 대대(大帶)에 꽂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꿇어앉아 홀을 대대(大帶)에 꽂는다. 【백관(百官)들도 꿇어앉는다.】 진폐 진주관(進幣進酒官)이 술잔[爵]을 받들고 꿇어앉고, 예의사가 술잔을 드리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은 전폐 전주관(奠幣奠酒官)에게 주어 신위(神位) 앞에 드리게 한다. 예의사가 홀[圭]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한다. 다음은 황지기(皇地祇)의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술잔을 드리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상제(上帝)의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게 하고, 집례가, ‘음악을 그치라.’고 한다. 대축(大祝)이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축문(祝文)을 읽고, 이를 마치면 집례가, ‘음악을 시작하라.’고 한다. 예의사(禮儀使)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백관(百官)도 같이 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배위(配位)에 나아가서 술잔을 드리기를 의식과 같이 하게 한다. 집례가, ‘음악을 그치라.’고 하면,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아헌례(亞獻禮)를 행하고 【의식을 초헌(初獻)과 같이 하는데, 다만 예제(醴齊)만 따른다.】 종헌례(終獻禮)를 행하고 【또한 위의 의식과 같이 하는데 다만 양제(盎齊)만 따른다.】

壇司監視。謁者、贊引各引諸祀官出，執禮帥謁者、贊者、贊引還本位。奉禮郎分引陪祀宗親及文武百官以次出，贊引引監察及諸執事俱復拜位。執禮曰，“四拜。”監察及諸執事皆四拜訖，贊引以次引出。雅樂令帥工人出，執禮率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藏神位版，徹禮饌以降，乃出還宮如來儀。大駕至老人歌謠所，判通禮跪啓請小駐進訖，啓請駕進發。

【至儒生、女妓歌謠所，竝如上儀，但至女妓歌謠所，每呈才，皆啓小駐進發。】

음복(飲福)을 한다. 종헌(終獻)을 마치면 대축(大祝)이 정배위(正配位) 삼위(三位)의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각기 제 1준(尊)의 복주(福酒)를 따라서 한 술잔[爵]에 합해 두고, 또 대축이 조(俎)를 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상제위(上帝位)의 조육 전각(俎俎前脚)을 떨어내면, 집례가, ‘복조(福胙)를 내린다.’고 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음복위(飲福位)에 나아가서 북향하게 하고, 진폐(進幣) 진주관(進幣進酒官)과 진조관(進俎官)이 묘방(卯方)의 섬돌로부터 따라 올라오면, 대축이 술잔[爵]을 가지고 진폐(進幣) 진주관(進幣進酒官)에게 주어서 술잔을 받들고 서향하여 꿇어앉아 올리게 한다. 예의사가 꿇어앉아서 홀[圭]을 대대(大帶)에 꽂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꿇어앉아서 홀을 대대(大帶)에 꽂고, 【분헌관(分獻官)과 백관(百官)들도 모두 꿇어앉는다.】 술잔을 받들어 술잔을 다 비운다. 진폐(進幣) 진주관(進幣進酒官)이 빈 술잔을 받아서 대축(大祝)에게 준다. 또 대축이 조(俎)를 가지고 진조관(進俎官)에게 주면, 진조관이 조(俎)를 받들고 오방(午方)의 섬돌로부터 내려와서 문을 나가 사옹(司饗)에게 준다. 진폐(進幣) 진주관(進幣進酒官)과 진조관(進俎官)은 묘방(卯方)의 섬돌로부터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예의사가 홀[圭]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백관(百官)들도 같이 한다.】 예의사(禮儀使)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집례(執禮)가, ‘사배하라.’ 하고, 예의사가 전하에게 사배하기를 계청(啓請)하면, 전하가 네 번 절한다. 【백관(百官)들도 같이 한다.】 집례가, ‘변·두(籩豆)를 거두고 음악을 시작하라.’고 하면 여러 대축(大祝)이 각기 변·두(籩豆)를 거두고, 【변(籩)과 두(豆)가 각기 1개인데 그전 자리에서 조금씩 옮겨 놓는다.】 집례가, ‘음악을 그치라.’고 한다. 집례가, ‘음악을 시작하고 사배하라.’고 하고, 예의사(禮儀使)가 사배하기를 계청(啓請)하면, 전하가 네 번 절한다. 【백관(百官)들도 같이 한다.】 집례가, ‘음악을 그치라.’고 하면, 예의사가 예(禮)를 마쳤음을 아뢰고 전하를 인도하여 대차(大次)

로 돌아가는데, 중유문(中墮門) 밖에 이르러 예의사가 홀[圭]에 대대(大帶)에서 뽑아 놓기를 계청하면, 근시(近侍)가 꿇어앉아 홀을 받고 시위(侍衛)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부지통례(副知通禮)가 좌분헌관(左分獻官)을 인도하여 나오면, 집례가, ‘망예(望瘞)하라.’고 한다. 알자(謁者)가 우분헌관(右分獻官)을 인도하여 망료위(望燎位)에 나아가고, 집례가 찬자(贊者)를 거느리고 망료위에 나아간다. 여러 대축(大祝)은 각기 상제(上帝)의 배위(配位)와 대명(大明), 야명(夜明), 성신(星辰), 동남서북해(東南西北海)의 신좌(神座) 앞에 나아가서 비(篚)를 가지고 폐백과 축판(祝版)을 담고, 축사(祝史)는 조(俎)를 가지고 생체(牲體)1357) ·서직반(黍稷飯)1358) 과 술잔의 술을 담고 각기 그 섬돌로부터 내려와서 요단(燎壇)에 나아가서 폐백·축판(祝版)·찬물(饌物)을 가지고 요시(燎柴)1359) 에 두고, 집폐가, ‘태우라.’ 하면 동면(東面)과 서면(西面)에서 각기 6인이 햇불로써 반접을 태우는데, 전사관(典祀官)과 단사(壇司)가 이를 감시한다. 다음은 망예위(望瘞位)에 나아가는데, 여러 대축이 황지기(皇地祇)·해·약·독·산천(海岳瀆山川)의 신좌 앞에 나아가서 비(篚)를 가지고 폐백을 담고, 조(俎)를 가지고 생체(牲體)1360) 와 서직반(黍稷飯)과 술잔의 술을 담아서 각기 그 섬돌로부터 내려와서 구덩이에 두고, 집례가, ‘묻으라.’ 하면 흙을 반 구덩이에 덮는데, 전사관(典祀官)과 단사(壇司)가 이를 감시한다.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이 각기 여러 사관(祀官)을 인도하여 나가고, 집례는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을 거느리고 본 자리로 돌아온다. 봉례랑(奉禮郎)이 배사(陪祀)한 종친(宗親) 및 문무 백관(文武百官)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가고, 찬인은 감찰(監察) 및 여러 집사(執事)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위(拜位)로 돌아간다. 집례가, ‘사배하라.’고 말하면 감찰 및 여러 집사들이 모두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찬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간다. 아악 령(雅樂令)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나가고,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典祀官)이 신위판(神位版)을

	<p>간수하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내려와서, 궁(宮)에 돌아오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대가(大駕)가 노인 가요소(老人歌謠所)에 이르면, 판통례(判通禮)가 꿇어앉아서 조금 멈추었다가 진발(進發)하기를 계청하고, 이를 마치면 대가(大駕)가 진발하기를 계청한다.” 【유생(儒生)·여기(女妓)가 가요소(歌謠所)에 이르러서도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하는데, 다만 여기(女妓)의 가요소(歌謠所)에 이르면 정재(呈才)할 때마다 모두 조금 멈추었다가 진발(進發)하기를 아뢴다.】</p>	
<p>세조 6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1월 15일(경진) 2번째기사 근정전에 나가 왕세자 및 백관의 하례를 받다</p>	<p>신시(申時)에 임금이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왕세자(王世子) 및 백관(百官)의 하례(賀禮)를 받았다. 그 의식은 이러하였다. “고(鼓)가 이엄(二嚴)을 알리면, 종친(宗親)과 문무 백관(文武百官)들이 조복(朝服) 차림으로써 근정전(勤政殿) 문 밖에 나아간다. 【여러 지방의 객사(客使)도 또한 문 밖에 나아간다.】 고(鼓)가 삼엄(三嚴)을 알리면, 봉례랑(奉禮郎)이 3품 이하의 종친과 문무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자리[位]에 들어오고 음악이 시작되며, 전하(殿下)가 어좌(御座)에 올라가면 음악이 그친다. 부지통례(副知通禮)가 왕세자를 인도하는데, 왕세자가 면복(冕服)을 갖추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면 음악이 시작되고, 전의(典儀)가 창(唱)하기를, ‘사배(四拜)하라.’고 하면 왕세자가 네 번 절하고 음악이 그친다. 선전관(宣箋官)이 서계(西階)로부터 올라가서 어전(御前)에 나아가 부복(俯伏)하고 꿇어앉는다. 전의가 창하기를, ‘궤(跪)하라.’ 하면 왕세자가 꿇어앉아 선전(宣箋)1361) 하고, 이를 마치면 음악이 시작된다. 전의가 창하기를, ‘사배하라.’고 하면 왕세자가 네 번 절하고 음악이 그친다. 전의(典儀)가 창하기를, ‘궤(跪)·진규(摺圭)·삼고두(三叩頭)하라.’ 하면 왕세자가 <꿇어앉아 홀을 대대(大帶)에 꽂고> 머리를 세 번 조아린다. 전의가 창하기를, ‘산호(山呼)하라.’ 하면 왕세자는 ‘천세(千歲)라.’ 하고, 전의가 창하기를, ‘재산호(再山呼)하라.’ 하면 왕세자는 ‘천천세(千千歲)라.’ 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음악이 시작되고</p>	<p>申時御勤政殿， 受王世子及百官賀。 其儀曰： 鼓二嚴， 宗親、 文武百官以朝服詣勤政門外。 【諸方客使亦詣門外。】 鼓三嚴， 奉禮郎分引三品以下宗親、 文武百官入位樂作， 殿下陞座樂止。 副知通禮引王世子， 王世子具冕服入就位樂作， 典儀唱四拜， 王世子四拜樂止。 宣箋官升自西階進御前， 俯伏跪。 典儀唱跪， 王世子跪宣箋， 訖樂作。 典儀唱四拜， 王世子四拜， 樂止。 典儀唱“跪、 摺圭、 三叩頭”， 王世子三叩頭。 唱“山呼”， 王世子曰，“千歲”， 唱“山呼”， 曰，“千歲”， 唱“再山呼”， 曰，“千千歲”， 俯伏、 興、 平身。 樂作， 唱“四拜”， 王世子四拜訖樂止。 副知通禮引王世子出次， 奉禮郎分引宗親文武二品以上入就位， 引客使入就</p>

전의가 창하기를, ‘사배하라.’고 하면 왕세자가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부지통례(副知通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막차[次]에 나가고, 봉례랑(奉禮郎)이 종친과 문무(文武) 2품 이상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객사(客使)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면 【왜인(倭人)은 동쪽에 있고 야인(野人)은 서쪽에 있다.】 음악이 시작된다. 전의가 창하기를, ‘사배하라.’고 하고 이를 마치면 백관(百官)의 전문(箋文)과 호천세(呼千歲)의 배례(拜禮) 절차를 알리는데 왕세자의 의식과 같다. 근시(近侍)가 교지(教旨)가 있다고 일컫고, 전의가 창하기를, ‘궐(跪)하라.’ 하면 백관들이 꿇어앉는다. 교지(教旨)를 반포(頒布)하고 이를 마치면 음악이 시작된다. 전의가 창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백관(百官)들과 객사(客使)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객사를 인도하여 나가고, 판통례(判通禮)가 예(禮)를 마쳤음을 아뢰고 장차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면 음악이 시작된다. 전하가 궁(宮)에 돌아가면, 봉례랑(奉禮郎)이 종친과 문무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

국초(國初)에 원단(圓壇)1362) 을 서울 남쪽에 설치하여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세종(世宗)께서 제도를 정할 때 이를 혁파(革罷)하였다가 이때에 와서 비로소 회복시켰다.

왕세자(王世子)의 전문(箋文)은 이러하였다.

“건원(乾元)을 본받아 정위(正位)에 거처하니 바야흐로 태평의 터전을 열게 되었으며, 조선(祖先)을 높여 하늘에 배향(配享)하니 비로소 명인(明禋)1363)의 예절을 거행했습니다. 일은 간책(簡策)에 빛이 나고, 기쁨은 신민(臣民)들에게 넘쳤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성경(聖敬)은 탕왕(湯王)처럼 오르고 대효(大孝)는 순제(舜帝)와 같았습니다. 상제(上帝)를 밝게 섬기어 신명(神明)이와 있는 듯한 정성을 능히 다했으며, 백신(百神)을 달래어 편안하게 하여 모두 성문(成文)이 없는 제사를 지내었습니다. 사망에서 와서 하례(賀禮)하니 만

位, 【倭東、野人西】 樂作。 典儀唱“四拜”訖, 宣百官箋及呼千歲拜禮節次, 與王世子儀同。 近侍稱有教, 典儀唱“跪。”百官跪。 頒教訖樂作, 典儀唱“四拜”, 百官客使俯伏、興、四拜訖樂止。 引客使出, 判通禮啓禮畢, 將復位樂作。 殿下還宮, 奉禮郎分引宗親文武百官出。

國初設圓壇於國南祀天, 世宗定制革之, 至是始復。 王世子箋曰: 體元居正, 方啓太平之基, 尊祖配天, 肇舉明禋之禮。 事光簡策, 喜溢臣民。 恭惟聖敬躋湯, 大孝協舜。 昭事上帝, 克盡如在之誠, 懷綏百神, 咸秩無文之祀。 四方來賀, 萬福攸同。 伏念猥以孱資, 觀茲盛典, 承祧主鬯, 雖愧元良之稱, 侍膳問安, 倍上康寧之祝。

百官箋曰: 受籙膺圖, 方開景運, 報本反始, 式舉明禋。 喜溢臣工, 慶延宗社。 恭惟溫恭濬哲, 剛健粹精。 殷禮肇稱, 享上帝而配皇祖, 天休滋至, 斂五福而錫庶民。 屬熙事之告成, 宜彤庭之展賀。 凡在動植莫不歡欣。 臣等叨參駿奔,

	<p>복(萬福)을 같이 한 바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외람되이 용렬한 자질로써 이런 성대한 의식(儀式)을 보게 되어, 종조(宗祧)를 계승하여 관창(裸鬯)1364)을 주관(主管)하니, 비록 원량(元良)1365)의 칭호는 부끄럽지마는, 모시고 먹으며 문안(問安)하게 되니, 강녕(康寧)한 축수(祝壽)를 배나 올리게 됩니다.”</p> <p>백관(百官)들의 전문(箋文)은 이러하였다.</p> <p>“비기(秘記)를 받고 도참(圖讖)을 받아서 바야흐로 경운(景運)1366)을 열었으며, 근본을 보답하여 시초로 돌아가니 이에 명인(明禋)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은 군신(群臣)·백관(百官)에 넘쳤으며, 경사(慶事)는 종묘(宗廟)·사직(社稷)에 미쳤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온공 준철(溫恭潛哲)하고 강건 수정(剛健粹精)하였습니다. 성대한 예절을 비로소 마치었으니 상제(上帝)는 향사(享祀)하면서 황조(皇祖)1367)를 배향(配享)하였으며, 하늘의 칭찬이 많이 이르니 오복(五福)1368)을 수렴(收斂)하여 서민에게 내리셨습니다. 때마침 희사(熙事)1369)가 성공을 고(告)하니 동정(彤庭)1370)에서 하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무릇 동물(動物)과 식물(植物)에 있어서도 대단히 기뻐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신(臣) 등은 외람되이 사전(祀典)에 빨리 달려 참여하게 되어,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향(享)을 가지고 제사(祭祀)하니 《주아(周雅)》 1371)의 시(詩)를 화답하고, 다수(多壽)하고 다남(多男)하시라고 화봉(華封)의 축복(祝福)1372)를 늘어놓습니다.”(후략)</p>	<p>獲觀盛美。以享以祀，載賡《周雅》之詩，多壽多男，聊伸華封之祝。(후략)</p>
<p>세조 7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3월 7일(경오) 5번째기사 대전에게 헌수하는 의</p>	<p>대전(大殿)1586)에게 헌수(獻壽)하는 의식은 이러하였다.</p> <p>“어좌(御座)를 설치하고 음악을 설치한다. 왕세자(王世子)와 시연관(侍宴官)1587)과 객사(客使)의 자리를 설치하되,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고(鼓)가 이엄(二嚴)을 알리면, 왕세자가 시연관(侍宴官) 이하의 관원은 시복(時服)1588) 차림으로써 문외위(門外位)에 선다. 전하(殿下)가 나오면 음악이 시</p>	<p>大殿上壽儀。設御座設樂。設王世子與侍宴官、客使位如常儀。鼓二嚴，王世子與侍宴官以下，時服門外位。殿下將出，樂作，殿下陞座，樂止。副知通禮引王</p>

식을 기록하다

작되고, 전하가 어좌(御座)에 올라가면 음악이 그친다. 부지통례(副知通禮)는 왕세자를 인도하고, 봉례랑(奉禮郎)은 시연관(侍宴官)을 나누어 인도하고, 통사(通事)는 객사(客使)를 인도하여 들어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 나아가면 음악이 시작된다. 전의(典儀)가 말하기를, ‘사배(四拜)하라.’ 하면, 【통찬(通贊)이 창(唱)한다. 아래도 이와 같다.】 왕세자 이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네 번 절하고 음악이 그친다. <다시> 음악이 시작되면 사옹(司饗)이 탁자(卓子)를 올리고, 승지(承旨)가 화반(花盤)을 올리고 꿇어앉는다. 내시(內侍)가 전하여 올리는데 【탁자를 올리고 화반(花盤)을 올릴 때에 왕세자와 시연관(侍宴官)·객사(客使)는 모두 꿇어앉는다.】 음악이 그친다. 대치사관(代致詞官)이 서계(西階)로부터 올라가서 부복(俯伏)하고 꿇어앉는다. 전의(典儀)가 말하기를, ‘궤(跪)하라.’ 하면, 왕세자가 꿇어앉는다. <대치사관(代致詞官)이> 치사(致詞)하기를, ‘왕세자 신(臣) 모(某)는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한 나라에 군부(君父)로서 다스려서 큰 명성(名聲)을 빛나게 받으셨습니다. 대례(大禮)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손뻐를 치며 기뻐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삼가 천천세수(千千歲壽)를 올립니다.’고 한다. 이를 마치고 부지통례(副知通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서 주정(酒亭)의 동쪽에 나아가면 음악이 시작되고 술잔을 올린다. 전의(典儀)가 말하기를, ‘궤(跪)하라.’ 하면, 왕세자가 꿇어앉아서 술잔을 들고, 이를 마치고 왕세자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음악이 그친다. 부지통례(副知通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면 음악이 시작된다. 전의(典儀)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고, 왕세자와 시연관(侍宴官)·객사(客使)가 네 번 절하면 음악이 그친다. 부지통례(副知通禮)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올라와 좌석에 나아가고, 봉례랑(奉禮郎)은 시연관(侍宴官)을 나누어 인도하여 좌석에 나아가고, 통사(通事)는 객사(客使)를 인도하여 좌석에 나아가서 찬(饌)을 올리고, 탕(湯)을 올리고, 술잔을 돌리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왕세자에게 꽃을 이바지하

世子, 奉禮郎分引侍宴官, 通事引客使入就位殿庭拜位, 樂作。典儀曰, “四拜。”【通贊唱。下同。】王世子以下在位者皆四拜, 樂止。樂作, 司饗提調進卓, 承旨進花盤跪。內侍傳進, 【進卓、進花時, 王世子與侍宴官、客使皆跪。】樂止代致詞官升自西階, 俯伏跪。典儀曰, “跪。”王世子跪。致詞云, “王世子臣某, 恭惟殿下父臨一國, 顯膺鴻名。大禮既成, 不勝慶忭。謹上千千歲壽。”訖, 副知通禮引王世子升自東階, 詣酒亭東, 樂作、進爵。典儀曰, “跪。”王世子跪, 舉盞訖, 王世子俯伏、興、平身樂止。副知通(事) [禮] 引王 [世] 子降復位, 樂作。典儀曰, “四拜”, 王世子與侍宴官、客使四拜, 樂止。副知通禮引王世子升就座, 奉禮郎分引侍宴官就座, 通事引客使就座, 進饌、進湯、酒行如常。【供王世子花, 散侍宴官、客使花如常。】宴訖, 王世子與侍宴官、客使, 俱復拜位, 樂作。典議曰, “四拜。”王世子以下四拜訖, 樂止。樂作, 殿下還內。副知通(事) [禮] 引王世子出, 奉禮郎分引侍宴官出, 通

	<p>고, 시연관(侍宴官)과 객사(客使)에게 꽃을 뿌리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연회를 마치고 왕세자와 시연관(侍宴官)·객사(客使)들이 모두 배위(拜位)로 돌아가면 음악이 시작된다. 전의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왕세자 이하의 사람들이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다시> 음악이 시작되면 전하(殿下)가 내전(內殿)으로 돌아간다. 부지통례(副知通禮)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나가고, 봉례랑(奉禮郎)은 시연관(侍宴官)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가고, 통사(通事)는 객사(客使)를 인도하여 나간다.”</p>	<p>事引客使出。</p>
<p>世祖 7卷, 3年(1457 丁丑 / 명 천순(天順) 1年) 3月 7日(庚午) 6 번째기사 중궁에게 헌수하는 의식을 기록하다</p>	<p>중궁(中宮)에게 헌수(獻壽)하는 의식은 이러하였다. “여공인(女工人)이 음악을 진설(陳設)하고 상식(尙食)이 주정(酒亭)을 설치하되, 평상시와 같이 한다. 상의(尙儀)가 중엄(中嚴)을 계청(啓請)하면 육상(六尙) 이하의 여관(女官)들이 모두 내함(內閣)1589)에 나아가서 사후(伺候)1590) 한다. 여공인(女工人)이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고, 사찬(司贊)·사빈(司賓)·전언(典言)이 먼저 자리에 나아간다. 상의(尙儀)가 외관(外辦)을 아뢰면, 왕비(王妃)가 의복을 갖추고, 상의(尙儀)가 앞에서 인도하여 나가면 음악이 시작되고, 왕비가 좌석에 올라가면 음악이 그친다. 사빈(司賓)이 내명부(內命婦) 및 왕세자빈(王世子嬪)·외명부(外命婦)를 나누어 인도하여 동문(東門)과 서문(西門)으로부터 들어와서 배위(拜位)에 나아가면, 【내명부(內命婦)는 동쪽에 있고, 왕세자빈(王世子嬪)은 서쪽에 있고, 외명부(外命婦)는 왕세자빈(王世子嬪)의 뒤에 있다.】 음악이 시작된다. 사찬(司贊)이 말하기를, ‘사배(四拜)하라.’ 하고, 【전찬(典贊)이 창(唱)한다. 아래도 이와 같다.】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가 네 번 절하면 음악이 그친다. <다시> 음악이 시작되어 상식(尙食)이 안(案)을 올리고, 상의(尙儀)가 꽃을 올리면, 음악이 그친다. 【안(案)을 올리고, 꽃을 올릴 때에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가 모두 꿇어 앉는다.】 사찬(司贊)이 말하기를, ‘부복(俯伏). 흥(興)하라.’ 하면,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전언(典言)이 서문(西門)으로</p>	<p>中宮上壽儀。 女工人陳樂，尙食設酒亭如常。尙儀啓請中嚴，六尙以下俱詣內閣伺候。女工人入就位，司贊、司賓、典言先就位。尙儀啓外辦，王妃具服，尙儀前導以出，樂作，王妃陞座，樂止。司賓分引內命婦及王世子嬪、外命婦由東西門入就拜位，【內命婦在東，王世子嬪在西，外命婦在王世子嬪後。】樂作。司贊曰，“四拜。”【典贊唱。下同。】內外命婦四拜，樂止。樂作，尙食進案，尙儀進花，樂止。【進案、進花時，內外命婦皆跪。】司贊曰，“俯伏、興。”內外命婦俯伏、興。典言由西門入，進當前俯伏、跪。司贊曰，“跪”，內外命婦皆跪。代致詞云，“嬪妾某氏等，敬惟王妃殿下誕受顯稱，慶衍椒闈。不勝欣抃，</p>

	<p>부터 들어와서 안(案) 앞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는다. 사찬(司贊)이 말하기를, ‘궤(跪)하라.’ 하면,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가 모두 꿇어앉는다. <사찬(司贊)이> 대신 치사(致詞)하기를, ‘빈첩(嬪妾) 모씨(某氏) 등은 삼가 생각하건대, 왕비 전하(王妃殿下)께서 이에 나타난 칭호[顯稱]를 받았으니, 경사(慶事)가 초궁(椒宮)에 넘쳤습니다. 기뻐서 손뼉을 침을 건딜 수 없어서 삼가 천천세(千千歲)를 올립니다.’고 한다. 헌수(獻壽)를 마치고 사찬(司贊)이 말하기를, ‘부복(俯伏), 흥(興)하라.’ 하면, 내명부(內命婦)·외명부(外命婦)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사빈(司賓)이 명부(命婦)1591)의 반수(班首)를 인도하여 동문(東門)으로부터 들어와서 주정(酒亭)의 동쪽에 나아가면 음악이 시작되고 술잔을 올린다. 사찬(司贊)이 말하기를, ‘궤(跪)하라.’ 하면,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가 모두 꿇어앉아 술잔을 들고, 이를 마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면 음악이 그친다. 명부(命婦)의 반수(班首)가 나가서 배위(拜位)로 나아가면 음악이 시작된다. 사찬(司贊)이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가 네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사빈(司賓)이 내명부(內命婦) 및 왕세자빈(王世子嬪)·외명부(外命婦)를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서 찬(饌)을 올리고, 탕(湯)을 올리고, 술잔을 돌리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세자빈(世子嬪)에게 꽃을 이바지하고 내명부(內命婦)·외명부(外命婦)에게 꽃을 뿌리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연회를 마치면 사빈(司賓)이 명부(命婦)를 나누어 인도하여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다시> 음악이 시작되고 왕비(王妃)가 좌석에서 내려와 내전(內殿)으로 돌아가면 음악이 그친다. 사빈(司賓)이 내명부(內命婦) 및 왕세자빈(王世子嬪)·외명부(外命婦)를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간다.”</p>	<p>謹上千千歲壽。” 訖，司贊曰，“俯伏、興。” 內外命婦俯伏、興。司賓引命婦班首入東門入，詣酒亭東，樂作、進盞。司贊曰，“跪”，內外命婦皆跪，舉盞訖，俯伏、興、樂止。命婦班首出就拜位，樂作。司贊曰，“四拜”，內外命婦四拜訖，樂止。司賓引內命婦及王世子嬪、外命婦就位，進饌、進湯、酒行如常。【供世子嬪花，散內外命婦花如常。】宴訖，司賓分引命婦四拜訖，樂止。樂作，王妃降座還內，樂止。司賓引內命婦及王世子嬪、外命婦以次出。</p>
<p>世祖 7卷, 3年(1457 丁丑 / 명 천순(天順) 1年) 4月 3日(丙申) 1</p>	<p>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하향제(夏享祭)의 음복연(飲福宴)을 베푸니, 종친(宗親)의 영해군(寧海君)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의 당상관(堂傷官)과 영천군(鈴川君) 윤사로(尹師路), 공조 판서 양정(楊汀) 및 승지(承旨) 등이 시연(侍</p>	<p>丙申/御思政殿，設夏享祭飲福宴，宗親寧海君以上、議政府堂上鈴川君尹師路、工曹判書楊汀及承旨等侍，日本</p>

<p>번째기사 사정전에서 하향제의 음복연을 베풀다</p>	<p>宴)하고,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사자(使者)인 중 전밀(全密) 등과 대내전(大內殿)의 사자(使者)인 덕모(德模) 등이 또한 시연(侍宴)하였다. 연회의 처음에 임금이 어좌(御座)에 오르니, 선전관(宣傳官)이 북을 치기를 상참(常參)의 예(例)와 같이 하였다. 세자(世子)가 종친(宗親)·재추(宰樞)와 모든 시연(侍宴)하는 사람과 더불어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들어가 전정(殿庭)에 나아가서 사배(四拜)를 행하고 오작(五爵)1713) 을 행하고 파하였다. 상관인(上官人)과 부관인(副官人)에게 호피(虎皮) 각각 2장(張), 표피(豹皮) 각각 2장(張), 10새[升] 백면주(白綿紬) 각각 5필, 10새 백면포(白綿布) 각각 5필, 침석(寢席) 각각 2장(張)씩을 내려 주었다. 또 연탁(宴卓)을 거두어 이를 내려 주고, 아울러 궁온(宮醞)1714) 30병(瓶)을 내려 주니, 예조 판서 홍윤성(洪允成)이 아뢰기를, “지금 연탁(宴卓)을 내려 주시었는데 이를 두 곳에 나누어 보내기가 어려우니, 청킨대 술과 안주를 더 내려 주시어 대내전(大內殿)의 사자(使者)로 하여금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사자(使者)의 하처(下處)1715) 에 나아가서 같이 마시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고는, 명하여 돼지 3구(口), 해채(海菜) 2쟁반[盤], 술 30병을 내려 주었다.</p>	<p>國王使者僧全密等、大內殿使者德模等亦侍宴。宴初上陞御座，宣傳官擊鼓，如常參例。世子與宗親、宰樞凡侍宴者，分東西入就殿庭，行四拜，行五爵而罷。賜上副官人虎皮各二張、豹皮各二張十升、白綿紬各五匹十升、白綿布各五匹、寢席各二張。又撤宴卓，賜之并宮醞三十瓶。禮曹判書洪允成啓曰：“今賜宴卓，分送兩處爲難，請加賜酒肴，使大內殿使者，詣日本國王使者下處同飲。”上曰：“可。”命賜猪三口、海菜二、盤酒三十瓶。</p>
<p>世祖 8卷, 3年(1457 丁丑 / 명 천순(天順) 1年) 6月 7日(己亥) 1 번째기사 진감 등이 한강에서 유람하다</p>	<p>진감(陳鑑) 등이 한강(漢江)에 유람(遊覽)하고 제천정(濟川亭)에 올랐다. 임금이 문관(文官) 김수온(金守溫)·서거정(徐居正)·김수녕(金壽寧) 등에게 명하여 도감(都監)과 더불어 잔치를 베풀고 여러 잔을 돌린 뒤에 파하였다. 드디어 배를 타고 흐름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고기잡이하는 사람을 시켜 고기를 잡게 하고, 진감 등은 심히 즐거워하면서 잉어[鯉魚] 두 마리를 사옹관(司饗官)에게 주어서 진상(進上)하였다. 임금이 예조 판서 홍윤성(洪允成)·동부승지 김질(金質)에게 명하여 곧바로 노량(露梁)의 여울 위로 가서 진감 등을 마중하여</p>	<p>己亥/陳鑑等遊漢江，登濟川亭。命文官金守溫、徐居正、金壽寧等，與都監設宴，數酌而罷。乘舟順流而下，使漁人打魚，鑑等樂甚，將鯉魚二尾授司饗官進上。命禮曹判書洪允成、同副承旨金質，(經)[徑]到露梁灘上，邀謁鑑等，遂同舟緩掉而下，至龍山灘</p>

	<p>알현(謁見)하게 하였다. 드디어 배를 같이 타고 천천히 노를 저어서 내려와 용산(龍山) 여울 아래에 이르렀다. 비를 만났으나 서로 더불어 부(賦)·시(詩)를 짓고 술잔을 들어 서로 권하였다. 가을두(加乙頭)에 이르러 배를 버리고 물으로 올라오니, 예빈시(禮賓寺)에서 술자리를 마련하여 김질이 궁은(宮醞)과 어육(魚肉)을 진감 등에게 대접하였고, 홍윤성 이하가 각각 차례대로 술을 돌렸다.</p>	<p>下。 遇雨相與賦詩，舉酒相屬。 至加乙頭， 捨舟而上， 禮賓設宴， 饋以宮醞魚肉餽鑑等， 允成以下各以次行酒。</p>
<p>세조 8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6월 22일(갑인) 5번째기사 경차관 조계팽에게 노산군에게 보내는 물품을 전하고, 열음을 바치게 하다</p>	<p>승정원에서 교지(教旨)를 받들어 경차관(敬差官) 조계팽(趙季砬)에게 치서(馳書)하기를, “지금 노산군(魯山君)에게 유룡(油籠) 1, 사의(蓑衣) 1, 전삼(氈衫) 2와 시비(侍婢)에게 유룡(油籠) 10벌을 보내니, 일일이 전(傳)하여 주는 것이 좋겠고, 또 여러 고을로 하여금 잇달아 계속하여 열음을 바치도록 하라.” 하였다.</p>	<p>承政院奉旨馳書于敬差官趙季砬曰：“今送魯山君油籠一、蓑衣二、氈衫二及侍婢油籠十事，可一一傳付，且令諸邑連續進水。”</p>
<p>世祖 8卷, 3年(1457) 丁丑 / 명 천순(天順) 1年) 7月 15日(丙子) 5번째기사 예조에 궐내의 공상과 경외 공처에서 술 사용을 금하게 할 것을 명하다</p>	<p>예조(禮曹)에 전지(傳旨)하기를, “궐내(闕內)의 공상(供上)과 경외(京外)의 공처(公處)에서 사용하는 술을 일체 모두 금단(禁斷)하라. 자수궁(慈壽宮)·수성궁(壽成宮)·영수궁(寧壽宮)은 전의 공진(供進)하던 것에 의하고, 민간(民間)에서 술을 사용하는 것은 금하지 말라.” 하였다.</p>	<p>傳旨禮曹曰：“闕內供上及京外公處用酒，一皆禁斷。 慈壽宮、壽成宮、寧壽宮，則依前供進，民間用酒勿禁。”</p>
<p>世祖 8卷, 3年(1457) 丁丑 / 명 천순(天順) 1年) 7月 22日(癸未) 1번째기사</p>	<p>비가 내렸다. 의정부(議政府) 좌참찬(左參贊) 박중손(朴仲孫)·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승손(李承孫)이 오랫동안 가물다가 비가 왔다고하여 향은(香醞)을 올리도록 청하니,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박중손·이승손과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신석조(辛碩祖)·당직(當直) 도진무(都鎭撫)·승지(承旨)</p>	<p>癸未/雨。 議政府左參贊朴仲孫、禮曹判書李承孫，以久旱得雨，請進香醞，上御思政殿，引見仲孫、承孫及京畿觀察使辛碩祖、當直都鎭撫、承旨</p>

<p>비가 내려 이승손·박중손·심희 등과 향운을 들다</p>	<p>등을 인견(引見)하고 시식(侍食)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 가뭄이 심하여 백성들의 식량이 어려울까 염려하였다. 내가 이 때문에 술을 물리친 지 여러 날이었다. 밤에 비가 와서 조금 흡족(洽足)하니 심히 기쁘다. 지금 경(卿)들과 더불어 한 번 마시겠다.” 하고, 이어서 박중손과 이승손에게 명하여 술을 여러 차례 올리게 하고서 파(罷)하였다.(후략)</p>	<p>等侍食。 上曰：“邇來旱甚，念民艱食，予以此却酒有日，夜來雨澤稍洽喜甚。 今與卿等一飲。” 仍命仲孫、承孫進酒數行而罷。(후략)</p>
<p>세조 9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9월 3일(갑자) 6번째기사 습전과 소렴전을 베풀다. 습전의(襲奠儀)의 내용</p>	<p>습(襲)에는 7칭(稱)2082) 을 쓰고 습전(襲奠)을 베풀었으며, 염(斂)에는 19칭(稱)을 쓰고 소렴전(小斂奠)을 베풀었다. 백관이 본궁 바깥 뜰에서 곡림(哭臨)하였다. 습전의(襲奠儀)는 이리하였다. 【소렴(小斂)·대렴(大斂)·성빈전의(成殯奠儀)도 같으며, 찬품(饌品)도 같다.】 “유사(有司)에서 예찬(禮饌)을 진설해서 올리면 내시(內侍)가 전해 받들고 들어가서 시상(屍床) 동쪽에 진설하고, 향로(香爐)·향합(香合)과 아울러 촛불을 그 앞에 진설한다. 【비록 전(奠)드릴 때가 아니더라도 밤에는 밤이 끝나도록 촛불을 베풀어 놓는다. 뒤에도 이와 같다.】 또 준(尊)2083) 을 지계문 밖 왼쪽에 설치하고, 잔(盞) 3개를 준소(尊所)에 놓아 둔다. 대전관(代奠官)이 【이때는 승지가 한다.】 손을 씻고[盥手] 【관세(盥洗)는 중문 밖에 설치한다. 뒤에도 이와 같다.】 동쪽 편계(偏階)로 따라 올라가 향안(香案) 앞으로 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삼상향(三上香)하고 술을 드리고, 【연거푸 3잔을 드린다.】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 물러난다. 【무릇 향을 받들고 향로를 드리며, 술을 따르고 잔을 드리는 일은 모두 내시가 한다.】 주상(主喪) 이하가 곡하여 슬픈 정을 다한다.”</p>	<p>襲用七稱，設襲奠，斂用十九稱，設小斂奠。 百官於本宮外庭哭臨。 襲奠儀：【小斂、大斂、成殯奠儀同，饌品同。】 有司設禮饌以進，內侍傳捧入，設於屍床東， 設香爐、香合并燭於其前，【雖非其時，夜則終夜設燭。 後倣此。】 又設尊於戶外之左， 置盞三於尊所。 代奠官【時承旨爲之。】盥手【盥洗設於中門外。 後倣此。】升自東偏階，詣香案前北向跪， 三上香奠酒，【連奠三盞。】 俯伏興退。【凡奉香奠爐酌酒奠盞，皆內侍爲之。】 主喪以下哭盡哀。</p>
<p>世祖 9卷, 3년(1457) 丁丑 / 명 천순(天順) 1년) 9월 4일(乙丑) 1번째기사</p>	<p>의정부와 육조에서 조계청(朝啓廳)에 모여 진膳(進膳)하기를 청하니, 어찰(御札)로 유시(諭示)하기를,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을 상하지 말라 하였는데, 어찌 내가 대계(大計)를 돌아보지 않겠는가? 다만 음식이 목구멍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죽</p>	<p>乙丑/議政府、六曹會于朝啓廳，請進膳，御札示之曰：“無以死傷生，予豈不顧大計哉？但食不下咽，故稍稍進粥耳。 況予氣本強，雖五六日不食，固</p>

<p>의정부와 육조에서 조계청에 모여 진선을 청하니 죽과 술을 먹었다는 어찰을 내리다</p>	<p>(粥)을 들고 있다. 더구나 나는 기운이 본래 강하여 비록 5, 6일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실로 별 탈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평지신(股肱之臣)들의 충성에 깊이 감동하여 내가 중궁과 더불어 각각 술 한 잔을 마시고, 또 죽을 먹었다.” 하였다.</p>	<p>無恙。深感股肱之忠，予與中宮各飲酒一盞，又食粥。”</p>
<p>世祖 9卷, 3年(1457 丁丑 / 명 천순(天順) 1年) 9月 5日(丙寅) 6 번째기사 세자빈·시녀·수묘관·시묘 환관·유모·속고치·별감·서연관·익위사의 성복의(成服儀)</p>	<p>세자빈 및 시녀와, 수묘관(守墓官)·시묘 환관(侍墓宦官)·유모[乳媪]·속고치(速古赤)2088)·별감(別監)·서연관(書筵官)·익위사(翊衛司)에서 상복(喪服)을 입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는데, 그 성복의(成服儀)는 이러하였다. “내시가 빈(嬪) 이하의 위차(位次)를 내정(內庭)에 설치하면, 통례문(通禮門)이 상주(喪主)·시묘 환관(侍墓宦官)·속고치(速古赤)의 자리를 빈(嬪) 앞에 설치하고, 서연(書筵)과 익위사(翊衛司)의 자리를 외정(外庭)에 설치한다. 때가 되면 내시가 전(奠)을 영좌(靈座) 앞에 진설하는데, 응당 복(服)을 입을 자는 최복(衰服)을 입는다. 여관(女官)이 세자빈 이하를 인도하여 그 자리로 나아가고, 봉례랑(奉禮郎)이 주상(主喪) 이하를 인도하여 그 자리로 나아간다. 통찬(通贊)이 창(唱)하기를, ‘재배(再拜), 곡(哭)하라.’ 하면, 【빈(嬪) 이하는 여관(女官)이 찬(贊)하기를, ‘재배(再拜), 곡(哭)하라.’ 하면, 곡하여 슬픈 정을 다한다.】 상주(喪主) 이하가 재배하고 곡하여 슬픈 정을 다한다. 통찬이 창하기를, ‘곡지(哭止)하라.’ 하면, 대전관(代奠官)이 삼상향(三上香)하여 연달아 세잔을 드리고 나서 물러나고, 통찬이 다시 창하기를, ‘재배, 곡하라.’ 하면, 【빈 이하는 여관이 찬하면 재배하고 곡한다.】 상주 이하가 재배하고 곡한다. 【모두 슬픈 정을 다한다.】 통찬이 창하기를, ‘곡지(哭止)하라.’ 하면, 【여관이 전찬(傳贊)하는 것은 역시 같다.】 빈 이하가 차소(次所)로 돌아가고, 봉례랑이 상주 이하를 인도하여 밖으로 나간다.”</p>	<p>世子嬪及侍女、守墓官、侍墓宦官、乳媪、速古赤、別監、書筵、翊衛司服喪服如儀。成服儀：內侍設嬪以下位於內庭，通禮門設喪主、侍墓宦官、速古赤位於嬪前，設書筵、翊衛司位於外庭。時至，內侍設奠於靈座前，應服者服衰服。女官引嬪以下就位，奉禮郎引主喪以下就位。通贊唱再拜哭，【嬪以下，女官贊再拜哭，哭盡哀。】喪主以下再拜哭盡哀，通贊唱哭止，代奠官三上香，連奠三爵退。通贊唱再拜哭，【嬪以下，女官贊再拜哭。】喪主以下再拜哭，【皆盡哀。】通贊唱哭止，【女官亦傳贊同。】嬪以下還次，奉禮郎引喪主以下出。</p>
<p>세조 9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p>	<p>예조에서 아뢰기를, “삭망전의(朔望奠儀)는 이러합니다. 【이름 있는 날의 별전(別奠)도 이와 같</p>	<p>禮曹啓：“朔望奠儀。【有名日別奠同。】‘其日清晨，內侍捧魂帛函，安</p>

<p>1년) 9월 6일(정묘) 3 번째기사 예조에서 올린 삭망전 의(朔望奠儀)와 조석전 의(朝夕奠儀)의 내용</p>	<p>다.】 ‘그날 이른 새벽에 내시(內侍)가 혼백함(魂帛函)을 받들어 영좌(靈座)에 모셔놓는다. 때가 되면 내시가 찬품(饌品)을 영좌 앞에 올리는데, 【조전(朝奠)도 겸하여 행한다.】 주상(主喪) 및 수묘 환관(守墓宦官)과 서연(書筵)·익위사(翼衛司)의 관원이 뜰 아래에서 부복(俯伏)하고 곡하여 슬픈 정을 다하고 일어나서 두 번 절한다. 주상(主喪)이 향안(香案)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삼상향(三上香)하고 술을 따라서 영좌 앞에 드리고는, 【연달아 석잔을 드린다.】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물러나 그 자리로 돌아간다. 다시 부복하고 곡하여 슬픈 정을 다하고 일어나 두 번 절하고 나서, 각각 자리로 돌아간다.’</p> <p>조석전의(朝夕奠儀)는 이러합니다. ‘매일 새벽에 내시가 혼백함(魂帛函)을 받들어 영좌 앞에 모셔놓는다. 【해가 뜨면 조전(朝奠)을 올리고, 해가 질 무렵에는 석전(夕奠)을 올린다.】 때가 되면 내시가 영좌 앞에 찬품(饌品)을 올리는데 주상(主喪) 및 수묘 환관(守墓宦官)이 뜰 아래에서 부복(俯伏)하고 곡하여 슬픈 정을 다하고 일어나 재배(再拜)한다. 올라가 향안(香案)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고 꿇어앉아 삼상향(三上香)하고 나서 술을 따라서 영좌 앞에 드린다. 【연달아 석잔을 드린다.】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물러나서 그 자리로 돌아가 재배하고 곡하여 슬픈 정을 다하고 차소(次所)로 돌아간다.’ 끼니때의 상식(上食)은 조석전의(朝夕奠儀)와 같이합니다. 석전(夕奠)을 마치면, 내시가 혼백함을 받들고 들어가 영침(靈寢)에 모시고, 주상 및 수묘 환관이 뜰 아래에서 부복하고 곡하여 슬픈 정을 다하고 나서 그 차소로 돌아가며, 친신(薦新)에 있어서는 새로운 물품이 있으면 드리기를 상식(上食)의 의식과 같이 합니다.” 【만약 때에 따라 드릴 식물(食物)이 아니면, 조석전(朝夕奠) 또는 상식에 겸하여 드린다.】 하였다.</p>	<p>于靈座。 時至， 內侍進饌於靈座前， 【朝奠兼行。】 主喪及守墓宦官書筵翼衛司於庭下俯伏哭盡哀興再拜。 主喪升詣香案前北向跪， 三上香酌酒奠于靈座前， 【連奠三盞。】 俯伏興退復位， 俯伏哭盡哀， 興再拜訖， 各還次。’ 朝夕奠儀。 ‘每日清晨， 內侍奉魂帛函， 安于靈座。 時至， 【日出朝奠， 逮日夕奠。】 內侍進饌於靈座前， 主喪及守墓宦官於庭下俯伏哭盡哀興再拜。 陞詣香案前北向跪， 三上香酌酒奠于靈座前， 【連奠三盞。】 俯復興退復位， 再拜哭盡哀還次。 食時上食， 如朝夕奠儀。 夕奠畢， 內侍捧魂帛函， 入安于靈寢， 主喪及守墓宦官於庭下俯伏哭盡哀還次。 薦新， 有新物則薦之， 如上食儀。’ 【若非時薦之物， 則於朝夕奠及上食兼薦。】 ”</p>
<p>世祖 9卷, 3年(1457)</p>	<p>예조에 전지하기를,</p>	<p>己丑/傳旨禮曹曰: “今後文昭殿薦新</p>

<p>丁丑 / 명 천순(天順) 1年) 9月 28日(己丑) 1번째기사 문소전 천신 외에는 계를 올리지 말게 하</p>	<p>“금후로는 문소전(文昭殿)에는 천신(薦新)을 제외하고는 계[蟹]를 올리지 말게 하라.” 하였다.</p>	<p>外, 勿進蟹。”</p>
<p>세조 10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11월 18일(무인) 9번째기사 세자 계빈전(世子啓殯奠)의 의식</p>	<p>세자 계빈전(啓殯奠)2282) 을 베풀었는데, 그 의식은 이러하였다. “기일(期日) 전3일에 사직(社稷)과 종묘(宗廟)에 고하기를 평상시 고유(告由)2283) 하는 의식과 같이 하는데, 전(奠)은 없다. 그날 주상(主喪)의位次(位次)를 빈궁(殯宮) 지계문 밖의 동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서연관(書筵官)과 익위사(翊衛司)의 위치를 그 뒤에 설치하며, 모든 집사(執事)의 위치는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2각(刻) 전에 유사(攸司)가 예찬(禮饌)을 받들고 나가 영좌(靈座) 앞에 진설하고, 향로(香爐)·향합(香盃)과 초[燭]를 그 앞에 진설하며, 축문은 영좌의 왼쪽에 드리고, 준(尊)은 지계문 밖 왼쪽에 설치하며, 잔(盞) 3개를 준소(尊所)에 놓아둔다. 1각(刻) 전에 알자(謁者)가 주상 및 서연관·익위사를 인도하고 들어가 위치로 나아간다. 찬자(贊者)가 ‘곡(哭)하라.’ 창(唱)하면, 주상 이하가 부복(俯伏)하여 곡하고, 찬자가 ‘곡지(哭止)·재배(再拜)·흥(興)·평신(平身)하라.’ 창하면, 주상 이하가 곡을 그치고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 향안(香案) 앞으로 가서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찬자가 ‘궤(跪)하라.’ 창하면, 서연관과 익위사가 모두 꿇어앉아 삼상향(三上香)하고 술을 따라 영좌 앞에 드리고 【연달아 3잔을 드린다.】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뒤로 물러나 꿇어앉는다. 대축(大祝)이 영좌의 왼쪽으로 나아가 서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읽고 나면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물러가 그 위치로 돌아가고, 찬자가 ‘곡하라.’ 창하면, 주상 이하가 부복하고 곡하여 진애(盡哀)한다. 찬자가, ‘곡</p>	<p>設世子啓殯奠, 其儀曰: 前期三日, 告社稷、宗廟如常告儀, 無奠。其日設主喪位於殯宮戶外之東西向, 設書筵官、翊衛司位於其後, 設諸執事位如常儀。前(一)〔二〕刻, 攸司進禮饌, 設於靈座前, 設香爐香合竝燭於其前, 奠祝文於靈座之左, 設尊於戶外之左, 置盞三於尊所。前一刻, 謁者引主喪及書筵官、翊衛司入就位。贊者唱哭, 主喪以下俯伏哭, 贊者唱哭止、再拜、興、平身, 主喪以下哭止再拜興平身。謁者引主喪升自東階, 詣香案前北向跪。贊者唱跪, 書筵官、翊衛司皆跪三上香, 酌酒奠于靈座前, 【連奠三盞。】俯伏興小退跪。大祝進靈座之左, 西向跪, 讀祝文訖, 謁者引主喪退復位, 贊者唱哭, 主喪以下俯伏哭盡哀。贊者唱哭止、興、再拜、興、平身, 主喪以下哭止、興、再</p>

지·흥·평신하라.’ 창하면, 주상 이하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 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내시(內侍)가 축문을 받들고 가서 향로[爐]에 불사르고, 【동향로[銅爐]를 노대(露臺)의 서쪽에 놓아둔다.】 영좌 및 전(奠)을 전내(殿內)의 서남쪽으로 옮긴다. 찬성(贊成)이 동편계(東偏階)로부터 올라가면 집사자 1인이 재실(梓室)2284) 의 수건을 받들어 【함(函)이 있다.】 털면서 따라 오른다. 찬성이 재실 남쪽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부복하고 꿇어앉아 고하기를, ‘찬성 아무개는 삼가 길신(吉辰)에 찬도(攢塗)를 열게 되었습니다.’라고 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선공감(繕工監)에서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올라와서 찬도를 걷어치운다. 찬성이 수건으로 재실을 털고 닦은 뒤에 관의(棺衣)로 덮고는 내려와 나간다. 【서연관·익위사도 같이 한다.】 내시가 예찬(禮饌)을 거두고 악(幄)과 영좌(靈座)와 영침(靈寢)을 설치하기를 모두 처음과 같이 한다. 유사(攸司)가 예찬을 올려 영좌 앞에 진설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알자가 주상 및 서연관·익위사의 관원을 인도하고 들어와 위차로 나아간 다음, 찬자가 ‘부복·곡하라.’ 창하면, 주상 이하가 부복하고 곡하며, 찬자가 ‘곡지(哭止)하라.’ 창하면, 주상 이하가 모두 곡을 그친다.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향안(香案)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는다. 찬자가 ‘괘(跪)하라.’ 창하면, 서연관·익위사의 관원도 모두 꿇어앉아 향을 올리고 술잔을 드리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다 마치면〉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고 내려와 그 위차로 돌아가고, 찬자가 ‘부복·곡하라.’ 창하면, 주상 이하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 두 번 절하고 다시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주상 이하를 인도하고 나간다. 이로부터 발인(發引)에 이르기까지 대곡(代哭)하되 곡성이 끊이지 않게 하며, 〈행사하는 집사관은〉 계찬관(啓攢官), 【찬성이 한다.】 알자(謁者) 1인, 찬자(贊者) 1인, 대축(大祝) 1인, 재랑(齋郎)2285) 1인, 축사(祝史) 1인, 집건자(執巾者) 1인이다. 【모두 참외(參外)로 한다.】 ”

拜、興、平身。 內侍捧祝文焚於爐，【置銅爐於露臺之西。】 遷座及奠於殿內西南。 贊成升自東偏階，執事者一人捧拂梓室之巾【有函。】從升，贊成詣梓室南，北向俯伏跪告曰，“贊成某謹以吉辰啓攢塗。” 告訖俯伏興。繕工監帥其屬升，撤攢塗畢。贊成以巾拂拭梓室，覆以棺衣降出。【書筵、翊衛司同。】 內侍撤饌，設幄及靈座靈寢竝如初。 攸司進禮饌，設於靈座前如常儀。 謁者引主喪及書筵官、翊衛司入就位，贊者唱俯伏哭，主喪以下俯伏哭，贊者唱哭止，主喪以下皆哭止。 謁者引主喪詣香案前跪。 贊者唱跪，書筵官、翊衛司皆跪，上香奠酒如上儀訖。 謁者引主喪降復位，贊者唱俯伏哭，主喪以下俯伏哭，贊者唱哭止興再拜興平身。 主喪以下哭止興再拜興平身，謁者引主喪以下出。 自後至發引，代哭不絕聲，啓攢官、【贊成。】 謁者一、贊者一、大祝一、齋郎一、祝史一、執巾者一。【竝參外。】

<p>세조 10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11월 18일(무인) 10번째기사 조전(祖奠)의 의식</p>	<p>조전(祖奠)2286) 을 베풀었는데, 그 의식은 이러하였다. “그날에 주상(主喪) 이하의 위치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배설하고, 2각(刻) 전에 유사(攸司)가 예찬(禮饌)을 올려 영좌(靈座) 앞에 진설하고, 향로(香爐)·향합(香合)과 초[燭]를 그 앞에 진설하고, 축문(祝文)을 영좌 왼쪽에 드리고, 준(尊)을 지계문 밖 왼쪽에 설치하고, 잔(盞) 3개를 존소(尊所)에 놓아 둔다. 1각 전에 알자(謁者)가 주상 및 서연관(書筵官)·익위사(翊衛司)를 인도하여 들어가 그 위치(位次)로 나아간 다음 찬자(贊者)가 ‘부복(俯伏)·곡(哭)하라.’ 창하면, 주상 이하가 부복하여 곡을 하고, 찬자가 ‘곡지(哭止)·흥(興)·재배(再拜)·흥(興)·평신(平身)하라.’ 창하면, 주상 이하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 두 번 절하고 다시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 향안(香案) 앞으로 가서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찬자가 ‘궤(跪)하라.’ 창하면, 서연관·익위사에서 모두 꿇어앉아 삼상향(三上香)하고, 술을 따라서 영좌 앞에 드리고, 【연달아 3잔을 드린다.】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뒤로 물러나 꿇어앉는다. 대축(大祝)이 영좌 왼쪽으로 나아가 서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읽기를 마치고>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고 내려와 그 위치로 돌아간다. 찬자가 ‘부복·곡하라.’ 창하면, 주상 이하가 모두 부복하여 곡을 한다. 찬자가 ‘곡지·흥·재배·흥·평신하라.’ 창하면, 주상 이하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 두 번 절하고 다시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알자는 주상 이하를 인도하여 나가고, 내시는 축문을 들고 가서 향로[爐]에 불사른다. <행사하는 집사관은> 알자 1인, 찬자 1인, 축하(祝史) 1인, 재랑(齋郎) 1인, 대축 1인이다.”</p>	<p>設祖奠, 其儀曰: 其日, 設主喪以下位如常儀。前二刻, 攸司進禮饌, 設於靈座前, 設香爐香合竝燭於其前, 奠祝文於靈座之左, 設尊於戶外之左, 置盞三於尊所。前一刻, 謁者引主喪書筵官、翊衛司入就位, 贊者唱俯伏哭, 主喪以下俯伏哭, 贊者唱哭止興再拜興平身, 主喪以下哭止興再拜興平身。謁者引主喪升自東階, 詣香案前北向跪。贊者唱跪, 書筵官、翊衛司皆跪, 三上香, 酌酒奠于靈座前, 【連奠三盞】俯伏興小退跪。大祝進靈座之左, 西向跪讀祝文訖。謁者引主喪降復位。贊者唱俯伏哭, 主喪以下俯伏哭。贊者唱哭止興再拜興平身, 主喪以下哭止興再拜興平身。謁者引主喪以下出, 內侍捧祝文焚於爐。謁者一、贊者一、祝史一、齋郎一、大祝一。</p>
<p>세조 10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11월 18일(무인) 11번째기사</p>	<p>견전(遣奠)2287) 을 베풀었는데, 그 의식은 이러하였다. “기일 전 1일에 국장 도감(國葬都監)에서 순(輶)2288) 과 혼백 요여(魂帛腰輿)·책인 요여(冊印腰輿)·향정(香亭) 등을 중문(中門) 밖 한복판에 올려서 남향하게 하고, 【순(輶)은 북쪽에 있고, 여(輿)는 남쪽에 있다.】 혼백 교자(魂帛</p>	<p>設遣奠, 其儀曰: 前一日, 國葬都監進輶及魂帛腰輿、冊印腰輿、香亭等於中門外當中南向, 【輶在北, 輿在南.】進魂帛輶子及</p>

견전(遣奠)의 의식과 애책(哀冊)

輜子)와 여(輿)는 외문(外門) 한복판에 올려서 남향하게 하고, 【여(輿)는 북쪽에 있고 교자는 남쪽에 있다.】 길장(吉仗)을 혼백 교자 앞에 진설해 놓고, 흉장(凶仗)과 명기(明器)를 대여(大輿)2289) 앞에 진열해 놓는다. 그날에 주상(主喪) 및 서연관(書筵官)·익위사(翊衛司)의 위치(位次)를 설치하되 평상시 의식과 같이 하고, 독애책관(讀哀冊官)·거안자(舉案者)·알자(謁者)·찬자(贊者)의 위치는 외정(外庭)에 설치하되 모두 평상시 의식과 같이 한다.

예조 정량이 애책(哀冊)을 서계(西階) 아래에 북향하여 임시로 설치하고, 【돛자리를 설치하고 안(案)이 있다.】 발인(發引)하기 5각(刻) 전에 유사(攸司)가 예찬(禮饌)을 올려 영좌(靈座) 앞에 진설하고, 향로(香爐)·향합(香合)과 초[燭]를 그 앞에 설치하고, 축문(祝文)을 영좌 왼쪽에 드리고, 준(尊)을 지계문 밖 왼쪽에 설치하고, 잔(盞) 3개를 준소에 놓아둔다. 4각(刻) 전에 알자와 찬자가 먼저 들어와 그 위치로 나아간다. 알자가 주상 이하를 인도하고 들어와 위치로 나아가고, 다음에 찬자가 ‘궤(跪)·부복(俯伏)·곡(哭)하라.’ 창하면, 주상 이하가 꿇어앉아 부복하고 곡을 한다. 찬자가 ‘곡지(哭止)·흥(興)·재배(再拜)·흥(興)·평신(平身)하라.’ 창하면, 주상 이하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 재배하고 다시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동편계(東偏階)로부터 올라가 향안(香案)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찬자가 ‘궤(跪)하라.’ 창하면, 서연관·익위사에서 모두 꿇어앉아 삼상향(三上香)하고, 술을 따라 영좌 앞에 드리고, 【연달아 3잔을 드린다.】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뒤로 물러나서 꿇어앉는다. 대축(大祝)이 영좌 왼쪽으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꿇어앉아 축문(祝文)을 읽는다. <축문을 다 읽고나서>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물러나면, 알자가 봉책관(捧冊官)을 인도하여 【알자는 문밖에서 그친다. 뒤의 것도 이와 같다.】 애책안(哀冊案) 앞으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꿇어앉아 책함(冊函)을 받들고 일어나 중계(中階)를 지나 올라가면, 거안자(舉案者)가 이를 따라 향안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먼저 안(案)을 놓고 다음에 책함을 놓고서 부복하였

輿於外門外當中南向, 【輿在北, 輜在南.】 陳吉仗於魂帛輜子前, 凶仗及明器於大輿前. 其日, 設主喪及書筵官、翊衛司位如常儀, 讀哀冊官、舉案者、謁者、贊者位於外庭竝如常儀. 禮曹正郎權置哀冊於西階下北向, 【設席, 有案.】 發引前五刻, 攸司進禮饌, 設於靈座前, 設香爐、香合并燭於其前, 奠祝文於靈座之左, 設尊於戶外之左, 置盞三於尊所. 前四刻, 謁者、贊者先入就位. 謁者引主喪以下入就位, 贊者唱跪俯伏哭, 主喪以下跪俯伏哭. 贊者唱哭止興再拜興平身, 主喪以下哭止興再拜興平身. 謁者引主喪升自東偏階, 詣香案前北向跪. 贊者唱跪, 書筵官、翊衛司皆跪, 三上香, 酌酒奠于靈座前, 【連奠三盞.】 俯伏興少退跪. 大祝進靈座之左, 西向跪讀祝文訖. 俯伏興退, 謁者引捧冊官【謁者止於門外, 後倣此.】 詣哀冊案前, 西向跪捧冊函興, 由中階升, 舉案者從之, 詣香案前跪, 先置案, 次置冊函, 俯伏興少退北向跪. 謁者引讀冊官由東偏階升, 詣冊案前北向跪. 贊者唱跪, 捧冊官進跪開函展冊,

	<p>다가 일어나 조금 뒤로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알자가 독책관(讀冊官)을 인도하여 동편계를 지나 올라가 책안(冊案)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게 한다. 찬자가 ‘궤(跪)하라.’ 창하고, 봉책관이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함(函)을 열고 책을 펴면, 독책관이 책문을 읽고 나서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봉책관이 책을 도로 함 속에 넣고 함을 받들고 일어난다. 거안자가 안을 영좌 앞에 두고 조금 동쪽으로 가서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봉책관이 꿇어앉아 책함을 안에 놓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모두 내려가 그 위치로 돌아간다. 찬자가 ‘부복·곡하라.’ 창하면, 주상 이하가 부복하고 곡을 하여 진애(盡哀)한다. 찬자가 다시 ‘곡지(哭止)·흥·재배·흥·평신하라.’ 창하면, 주상 이하 곡을 그치고 일어나 재배하고 다시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내시(內侍)가 예찬을 거두고, 내시가 축문을 받들어 향로[爐]에 불사른다. 알자가 주상 이하를 인도하여 외문(外門) 밖 동쪽으로 나가 차례로 서서 기다린다. <집사관은> 대축(大祝), 【문신 참외(文臣參外).】 독애책관(讀哀冊官), 【문신(文臣) 4품.】 봉애책관(捧哀冊官), 【문신 6품.】 거안자(學案者) 【참외(參外).】 2인, 집사(執事) 【참외.】 6인, 알자(謁者)·찬자(贊者) 각각 1인이다.”(후략)</p>	<p>讀冊官讀冊訖，俯伏興。捧冊官以冊還置於函，捧函興。學案者置案於靈座前稍東，俯伏興，捧冊官跪置冊函於案，俯伏興，具降復位。贊者唱俯伏哭，主喪以下俯伏哭盡哀。贊者唱哭止興再拜興平身，主喪以下哭止興再拜興平身。內侍撤饌，內侍捧祝文焚於爐。謁者引主喪以下出外門外東，序立以候。大祝、【文臣參外。】讀哀冊官、【文臣四品。】捧哀冊官、【文臣六品。】學案者二、【參外。】執事六、【參外。】謁者、贊者各一。(후략)</p>
<p>세조 10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11월 24일(갑신) 1번째기사 경기 고양현에 세자를 장사지내고 베푼 천전(遷奠)의 의식</p>	<p>세자를 경기 고양현(高陽縣) 치소(治所) 동쪽에 장사를 지내고 천전(遷奠)2327) 을 베푼었는데, 그 의식은 이러하였다. “기일 전 1일에 충扈위(忠扈衛)에서 길유궁(吉帷宮)을 현실(玄室) 서쪽에 남향하여 설치하는데 병장(屏帳)을 설치하고, 남쪽으로 유문(帷門)을 베푼다. 그 날 주상(主喪) 및 서연관(書筵官)·익위사(翊衛司)의 위치(位次)를 유문(帷門) 밖에 남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알자(謁者)·찬자(贊者)의 위치는 평상시와 같이 한다. 또 찬성(贊成)이 애책(哀冊)과 옥백(玉帛)을 바칠 위치를 연도(羨道) 동쪽에 북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봉애책관(捧哀冊官)과 봉옥백관(捧玉帛官)의 위치를 그 남쪽에 조금 뒤로 물러서 서향하여 설치하고, 주상·서연관·익위사의 위치를 그 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한다. 충호위에서</p>	<p>甲申/葬世子于京畿高陽縣治東，設遷奠。其儀曰： 前一日，忠扈衛設吉帷宮于玄室之西南向，設屏帷，南置帳帷門。其日，設主喪及書筵官、翊衛司位於帷門外近南西向，謁者、贊者位如常。又設贊成進哀冊玉帛位於羨道之東近北西向，捧哀冊、玉帛官位於其南小退西向，設主喪書筵官、翊衛司位於其南西向。忠扈衛安梓室幄次于玄室門外南向，國</p>

재실 악차(梓室幄次)를 현실(玄室) 문밖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국장 도감(國葬都監)에서는 욱석(褥席)을 깔고 대관(大棺)을 그 위에 올려놓고는 주위에 휘장을 설치한다. 또 영장궁(靈帳宮) 유문(帷門) 밖에 길흉 여교(吉凶輿輜)와 의장(儀仗)·명기(明器) 등을 발인의(發引儀)와 같이 진설한다. 유사(攸司)가 예찬(禮饌)을 올리면 내시가 받들고 들어가 영좌(靈座) 앞에 진설하고, 향로(香爐)·향합(香合)과 초[燭]를 그 앞에 설치하고, 축문(祝文)을 영좌 왼쪽에 올린다. 준(尊)은 영장궁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잔(盞) 6개를 준소(尊所)에 놓아둔다.

방상씨(方相氏)가 먼저 이르러 현실(玄室)로 들어가서 창[戈]으로 사방 모퉁이를 친다. 명기(明器) 모모(某某) 등이 이르면, 현실 문밖 동남쪽에 북쪽을 위로 하여 진설한다. 알자(謁者)가 주상(主喪) 및 서연관·익위사를 인도하여 위차로 들어가고, 찬자(贊者)가 ‘궤(跪)·부복(俯伏)·곡(哭)하라.’ 창하면, 주상 이하가 꿇어앉아 부복하여 곡을 한다. 찬자가 ‘곡지(哭止)·흥(興)·재배(再拜)·흥(興)·평신(平身)하라.’ 창하면, 주상 이하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 두 번 절하고 다시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향안(香案)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으면 찬자가 ‘궤(跪)하라.’ 창하는데, 서연관과 익위사는 모두 꿇어앉아 삼상향(三上香)을 마치고 술을 따라 영좌 앞에 드리고 나서 【연달아 3잔을 드린다.】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뒤로 물러나 꿇어앉으며, 대축(大祝)이 영좌 왼쪽으로 나아가 서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읽기를 마친 다음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고 내려가 그 위차로 돌아가면, 찬자가 ‘부복·곡하라.’ 창하여, 주상 이하가 모두 부복하고 곡하되 진애(盡哀)한다. 찬자가 ‘곡지(哭止)·흥·재배·흥·평신하라.’ 창하면, 주상 이하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 두 번 절하고 다시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주상 이하를 인도하여 나가면, 유사(攸司)가 예찬을 거두고 축문을 구덩이[坎]에 묻는다. 【정자각(丁字閣) 북쪽의 예감(瘞坎)에 묻는다.】 서연관이

葬都監設褥席，加大棺於其上，周廻設帷，又於靈帳宮帷門外，陳吉凶輿輜及儀仗、明器，如發引儀。攸司進禮饌，內侍捧入設於靈座前，設香爐香合并燭於其前，奠祝文於靈座之左。設尊於靈帳宮東南北向，置盞(二)〔三〕於尊所。方相氏先至入玄室，以戈擊四隅。明器某某等至，陳於玄室門外東南北上。謁者引主喪及書筵官、翊衛司入就位，贊者唱跪俯伏哭，主喪以下跪俯伏哭。贊者唱哭止興再拜興平身，主喪以下哭止興再拜興平身。謁者引主喪詣香案前跪，贊者唱跪，書筵官、翊衛司皆跪，三上香，酌酒奠于靈座前，【連奠三盞。】俯伏興小退跪。大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祝文訖。謁者引主喪降復位，贊者唱俯伏哭，主喪以下俯伏哭盡哀。贊者唱哭止興再拜興平身，主喪以下哭止興再拜興平身。謁者引主喪以下出，攸司撤禮饌，祝文瘞於坎。【丁字閣北瘞坎。】書筵官進當靈座前，俯伏跪請降座升輦，俯伏興退。內侍捧諡冊、印授執事者，各安於腰輦，捧香爐香合并授內直別監，置於香亭。大祝捧魂帛函，安於輦，

영좌 앞으로 가서 부복하여 꿇어앉아 영좌에서 내려 여(輦)에 오르기를 청하고, 다시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물러난다. 내시가 시책(諡冊)·시인(諡印)을 받들어 집사자에게 주어 각각 요여(腰輦)에 안치하게 하고, 향로와 향합을 받들어 내직 별감에게 주어 향정(香亭)에 안치하게 한다. 대축이 혼백함(魂帛函)을 받들어 요여에 안치하고, 신주궤(神主匱)를 그뒤에 놓고 이를 받들어 길유궁(吉帷宮)으로 나아간다. 서연관이 영좌에서 내려 요여에 오르기를 청하고 나서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대축이 혼백함을 받들어 영좌에 안치하고, 신주궤는 그 뒤에 놓는다. 시책·시인·향로·향합은 영좌 앞에 의식대로 놓아둔다. 길장(吉仗)은 길유궁(吉帷宮)의 문밖 좌우에 베풀어 놓는다. 서연관이 앞으로 나아가 재실(梓室) 앞에 당도하여 부복하고 순(輜)에 올라 현실(玄室)에 나아가기를 청하고 나서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면, 내시가 애책함(哀冊函)을 받들어 집사자에게 주어 요여에 안치하게 하고 순 앞에 선다. 【연도(羨道) 남쪽에 이르면, 애책(哀冊)을 받드는 관원이 전해 받는다.】 집건자(執巾者)가 수건을 올리면, 찬성(贊成)이 수건을 받들고 나아가 재실을 닦고 관의(棺衣)를 던진다. 충의위에서 명정(銘旌)을 받들고 앞에서 인도한다. 찬성이 재실을 메는 관원들을 거느리고 재실(梓室)을 받들어 순에 올리면, 서연관이 재실을 인도하고, 충의위는 삽(鬻)으로 재실을 가린다. 여사(輿士)가 순을 받들고 왼쪽으로 돌아 북쪽으로 머리[首]를 둔다.

현실(玄室)로 나아가려 할 때, 궁인(宮人)들이 모두 곡(哭)하고 【재실(梓室)이 연도(羨道)에 이르면, 궁인들은 먼저 돌아간다.】 주상 이하가 모두 곡하며 따른다. 순이 현실 문밖의 악차(輟次) 앞에 이르면, 재실을 받들어 대관(大棺)에 안치한다. 【찬성이 그 재실의 상하를 살핀다.】 덮개를 덮고, 나비은살대[衽]는 거는데, 그 합해서 기운 곳[合縫處]은 옷을 입힌 세포(細布)로써 빙두른다. 내시가 관의(棺衣)를 덮고, 명정을 가져다가 대[杠]는 떼어버리고 그 위에 놓는다. 알자가 찬성을 인도하여 옥백(玉帛)을 올리는 위치(位次)로 나아

神主置其後，捧詣吉帷宮。書筵官請降輦升座，俯伏興。大祝捧魂帛函，安於靈座，神主櫃置其後。諡冊、印、香爐、香合置於靈座前如儀。吉仗陳於吉帷門外左右。書筵官進當梓室前，俯伏請升輜，即玄室，俯伏興，內侍捧哀冊函授執事者，安於腰輦，立於輜前。【至羨道南，捧哀冊官傳捧。】執巾者以巾進，贊成捧巾進拭梓室，并拂棺衣。忠義衛捧銘旌前導。贊成帥昇梓室官等捧梓室升輜，書筵官導梓室，忠義衛以髮障梓室。輦士捧楯左廻北首。將即玄室，宮人皆哭，【梓室至羨道，宮人先還。】主喪以下皆哭從。輜至玄室門外幄前，捧梓室安於大棺，【贊成察其梓室上下。】加蓋設衽，其合縫處周廻以漆塗細布。內侍覆以棺衣，取銘旌去杠置於其上。謁者引贊成就進玉帛位，捧哀冊官捧玉帛官隨之。贊成帥昇梓室官等，以輪輦捧梓室入自羨道，安於玄室內榻上北首。贊成再整棺衣銘旌，令平正。贊成以哀冊入，跪奠於梓室之西，次以贈玉及贈帛函跪奠哀冊之南。國葬都監提調帥其屬，以黼嬰

가고, 애책을 받드는 관원과 옥백을 받드는 관원이 이를 따른다. 찬성이 재실을 메는 관원들을 거느리고 윤여(輪輦)에다 재실을 받들어 연도(羨道)로 들어가 현실(玄室) 안의 답상(榻上)에 안치하는데, 북쪽으로 머리를 두게 한다. 찬성이 관의와 명정을 다시 정제(整齊)하여 평정(平正)하게 한다. 찬성이 애책을 가지고 들어가 꿇어앉아 재실 서쪽에 올리고, 다음에 증옥(贈玉) 및 증백함(贈帛函)을 꿇어앉아서 애책의 남쪽에 올린다. 국장 도감 제조(國葬都監提調)가 그 요속(僚屬)을 거느리고 보삽(黼鬢)·불삽(黻鬢)·화삽(畫鬢)을 재실 양쪽 옆에 꽂고, 다음에 명기(明器)와 복완(服玩)을 받들어 현실에 들여다가 각각 차례로 적당하게 진설하여 행렬(行列)이 있게 하고, 다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문비석(門扉石)2328) 밖에 따로 편방(便方)을 만들어서 간수한다. 처음에 재실이 현실(玄室)에 들어갈 때, 찬자가 ‘곡(哭)하라.’ 창하면, 주상 이하가 모두 부복하여 곡을 하고, 찬자가 ‘곡지(哭止)·흥·재배·흥·평신하라.’ 창하면, 주상 이하가 일어나서 두 번 절하고 다시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자가 ‘부복·곡하라.’ 창하면, 주상 이하가 꿇어앉아 부복해서 곡을 하되 진애(盡哀)한다. 알자가 주상 이하를 인도하여 밖으로 나가면 조묘 도감 제조(造墓都監提調)가 그 요속을 거느리고 현실을 닫는데, 찬성 및 장령(掌令)이 함께 닫는 것을 감시한다. 【장령(掌令)은 이름을 쓴다.】 찬성이 흙 아홉 삽(鍤)을 덮는다. 조묘 도감이 작공(作工)들을 거느리고 계속하여 일을 마치고 지석(誌石)을 묻는다. 【묘소 남쪽 가까운 땅의 석상(石床) 북쪽에 묻는다.】 현실의 왼쪽 땅을 쓸고, 서연관이 후토(后土)에 제사하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대여(大輦)와 순(輶) 등속은 백성(栢城) 안의 경지(庚地)2329) 에서 불사르고, 그 중에 통용하는 물건은 불사르지 않는다. <행사하는 집사관> 집사관(執事官) 【찬성(贊成).】 봉향 작주 집사(奉香酌酒執事)2330) 6인, 【참외(參外).】 여재실관(昇梓室官), 【무관(武官) 5품.】 서연관(書筵官) 2인, 봉애책관(捧哀冊官), 【6품.】 봉증옥관(捧贈玉官), 【공조 좌랑(工曹佐郎).】 봉증백관(捧贈帛官),

(敬) [黻] 嬰畫嬰樹於梓室兩旁，次捧明器服玩入玄室，各以次逐便陳之，使有行列，其不盡入者，於門扉石外，別作便方藏之。初梓室入玄室，贊者唱哭，主喪以下俯伏哭，贊者唱哭止興再拜興平身，主喪以下興再拜興平身。贊者唱俯伏哭，主喪以下跪俯伏哭盡哀。謁者引主喪以下出，造墓都監提調帥其屬鎖閉玄室，贊成及掌令竝監鎖閉。【掌令著名。】贊成覆土九鍤，造墓都監帥作工續以終事，下誌石。【埋於墓南近地，卽石床之北。】除地玄室之左，書筵官觀祠后土如儀。大輦及輶之屬，於栢城內庚地焚之，其通用之物則不焚。執事官、【贊成。】奉香酌酒執事六、【參外。】昇梓室官、【武官五品】書筵官二、捧哀冊官、【六品。】捧贈玉官【工曹佐郎。】捧贈帛官、【尙衣院。】大祝二、捧諡冊印哀冊執事者各二、【文臣參外。】執巾者一、【參外。】司憲掌令、謁者、贊者。

	<p>【상의원 관원.】 대축(大祝) 2인, 봉시책집사(捧諡冊執事)·봉시인집사(捧諡印執事)·봉애책집사(捧哀冊執事) 각 2인, 【문신(文臣) 참외(參外).】 집건자(執巾者) 1인, 【참외(參外).】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알자(謁者), 찬자(贊者) 등이 있다.”</p>	
<p>世祖 10卷, 3年(1457 丁丑 / 명 천순(天順) 1年) 11月 24日(甲申) 4번째기사 입주전(立主奠)의 의식</p>	<p>입주전(立主奠)2352) 을 행하였는데, 그 의식은 이러하였다. “현실(玄室)을 닫기를 기다려 장차 마치려 할 때, 액정서(掖庭署)에서 전의(典儀)·주상(主喪) 및 서연관(書筵官)·익위사(翊衛司)의 위차(位次)를 길유궁(吉帷宮) 문안의 동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전의(典儀)는 제주관(題主官)·알자(謁者)·찬자(贊者)의 위치를 유문(帷門) 안에 남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며, 봉상시(奉常寺)의 관원이 탁자[卓] 3개를 영좌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는데, 【제주 탁(題主卓)은 북쪽에 있고, 다음에 필연탁(筆硯卓)이 있고, 다음에 반이탁(盤匣卓)이 있다.】 붓[筆]·먹[墨]·벼루[硯]·반(槃)·이(匣)와 【향탕(香湯)도 갖춘다.】 수건[巾]을 【백세저포(白細苧布)로 한다.】 갖추어 놓는다. 알자가 제주관 이하를 인도하여 먼저 들어가서 그 위치로 나아가고, 또 알자가 주상 이하를 인도하여 들어가 위치로 나아가면 대축(大祝)이 손을 씻고 【관세(盥洗)는 유문 밖에 설치한다.】 올라가 영좌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신주궤(神主匱)를 받들어 탁자 위에 놓고, 궤를 열고 신주(神主)를 받들어 내어 향탕(香湯)으로 신주를 목욕시키고 수건으로 닦아서 탁자에 눕혀 둔다. 제주관이 손을 씻고 올라와 탁자 앞으로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그 전면(前面)에 ‘의경 세자(懿敬世子)’라고 먹으로 쓰고 나서,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물러간다. 대축이 신주를 받들어 궤에 넣고 뚜껑을 덮어 영좌에 안치하고 혼백함(魂帛函)은 그 뒤에 놓는다. 유사(攸司)가 예찬(禮饌)을 영좌 앞에 진설하고 향로(香爐)·향합(香合)과 초[燭]를 그 앞에 설치하고 축문을 영좌 왼쪽에 올린다. 준(尊)을 유궁(帷宮)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잔(盞) 3개를 준소(尊所)에 놓아둔다. 대축이 궤를 열고 〈신주를〉 받들어 내고 알자가 주상을 인도</p>	<p>行立主奠，其儀曰： 俟閉玄室將畢，掖庭署設典儀、主喪及書筵官、翊衛司位於吉帷門內之東西向，典儀設題主官、謁者、贊者位於帷門內近南西向；奉常寺官設卓三於靈坐〔靈座〕東南西向。【題主卓在北，次筆硯卓，次盤匣卓。】具筆墨硯盤匣【具香湯。】巾。【用白細苧布。】謁者引題主官以下先入就位，謁者引主喪以下入就位，大祝盥手，【盥洗設於帷門外。】升詣靈座前跪，捧神主匱置於卓，開匱捧出神主，以香湯浴主，拭以巾，臥置於卓。題主官盥手，升詣卓前西向立。題前面云懿敬世子墨書訖，俯伏興退。大祝捧神主納于匱，加蓋安於靈座，魂帛函置於其後。攸司設禮饌於靈座前，設香爐香合并燭於其前，奠祝文於靈座之左。設尊於帷宮東南北向，置盞三於尊所。大祝開匱捧出，謁者引主喪詣香案前跪，贊者唱跪，書筵官、翊衛司皆跪。主喪三</p>

	<p>하여 향안(香案) 앞으로 가서 꿇어앉는다. 찬자가 ‘궤(跪)하라.’ 창하면, 서연관과 익위사가 모두 꿇어앉고, 주상이 삼상향(三上香)을 마치고 술을 따라 영좌 앞에 올리고 나서,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뒤로 물러나서 꿇어앉는다. 대축이 영좌의 왼쪽으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나면,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고 내려와 그 위치로 돌아간다. 찬자가 ‘부복(俯伏)·곡(哭)하라.’ 창하면, 주상 이하가 부복하고 곡을 하되 진애(盡哀)한다. 찬자가 다시 ‘곡지(哭止)·흥(興)·재배(再拜)·흥(興)·평신(平身)하라.’ 창하면, 주상 이하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 두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대축이 신주를 받들어 궤에 넣는다. 알자가 주상 이하를 인도하여 나가면, 유사(攸司)가 예찬을 거두고, 축문을 구덩이[坎]에 묻는다. 【정자각(丁字閣) 북쪽 예감(瘞坎)에 묻는다.】 집사관(執事官)은 제주관, 【문신(文臣) 4품.】 대축(大祝), 【문신 참외(文臣參外).】 봉향전 집사자(奉香奠執事者) 6인, 【참외(參外).】 알자(謁者), 찬자(贊者) 등이다.</p>	<p>上香，酌酒奠于靈座前，俯伏興少退跪。大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祝文訖，謁者引主喪降復位。贊者唱俯伏哭，主喪以下俯伏哭盡哀。贊者唱哭止興再拜興平身，主喪以下哭止興再拜興平身。大祝捧神主納于匱。謁者引主喪以下出。攸司撤禮饌，祝文瘞於坎。【丁字閣北瘞坎。】執事官、題主官、【文官四品。】大祝、【文臣參外。】奉香奠執事者六、【參外。】謁者、贊者。</p>
<p>세조 10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11월 24일(갑신) 5번째기사 안묘전(安墓奠)의 의식</p>	<p>안묘전(安墓奠)2353 을 행하였는데, 그 의식은 이러하였다. “기일 전 1일에 충扈위(忠扈衛)에서 장막(帳幕)을 묘소(墓所) 앞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유문(帷門)을 베풀어 놓는다. 그날 부토(覆土)2354 를 마치기를 기다려서 찬자(贊者)가 헌관(獻官) 【찬성(贊成).】의 위치(位次)를 장막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모든 집사(執事)의 위치는 헌관 뒤에 약간 남쪽으로 서향하여 설치하며, 알자·찬자의 위치는 집사의 남쪽에 서향하여 북쪽을 위로 하여 설치한다. 묘사(墓司)가 영좌를 장막 안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유사(攸司)가 교서(敎書)를 영좌 왼쪽에 올려놓고, 【점(坵)이 있다.】 향로(香爐)·향합(香盥)과 초[燭]를 영좌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예찬(禮饌)을 설치하고, 준(尊)은 유문(帷門) 안 왼쪽에 설치하고, 잔(盞) 3개를 준소(尊所)에 놓아둔다. 알자·찬자와 모든 집사가 먼저 들어가서 그 위치로 나아가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위치로 나아가간다. 집사자(執事者) 3인이 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p>	<p>行安墓奠，其儀曰： 前一日，忠扈衛設帳幕於墓前南向，設帷門。其日俟覆土畢，贊者設獻官位【贊成。】於帳幕東南南向；設諸執事位於獻官之後稍南西向，謁者贊者、位於執事之南西北上。墓司設靈座於帳幕內南向，攸司奠敎書於靈座之左，【有坵。】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次設禮饌，設尊於帷門內左，置盞三於尊所。謁者、贊者、諸執事先入就位，謁者引獻官入就位。執事者三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升詣靈座前</p>

	<p>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좌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서 ‘교지(教旨)가 있다.’고 일컫고,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잔을 잡았다가 그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연달아 3잔을 올린다.】 헌관이 꿇어앉아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고, 대축이 영좌 왼쪽으로 나아가서 서향하고 서서 교서(敎書)를 읽고 나면, 헌관이 다시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면, 유사(攸司)가 예찬을 거두고 대축이 교서를 받들고 가서 향로에 불사른다. 행사하는 집사관은 헌관(獻官), 【찬성(贊成).】 대축(大祝) 1인, 【문신 참외(文臣參外).】 축사(祝史) 2인, 재랑(齋郎) 2인, 알자 1인, 찬자 1인, 집준자(執尊者) 1인, 【참외(參外).】 봉향전로 집사자(捧香奠爐執事者) 2인 【내직 별감(內直別監).】이다.”</p>	<p>北向立，稱有旨，執事者三上香，執事者以盞授獻官，獻官執盞以盞授執事者，奠于靈座前。【連奠三盞。】獻官跪俯伏興，大祝進靈座之左，西向立讀敎書訖，獻官俯伏興。謁者引獻官出，攸司(徹)〔撤〕禮饌，大祝奉敎書焚於爐。執事官、獻官、【贊成。】大祝一、【文臣參外。】祝史二、齋郎二、謁者一、贊者一、執尊者一、【參外。】捧香(尊)〔奠〕爐執事者二。【內直別監。】</p>
<p>세조 10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11월 24일(갑신) 6번째기사 사후토제(謝后土祭)의 의식</p>	<p>사후토제(謝后土祭)를 행하였는데, 그 의식은 이러하였다. “부토(覆土)하기를 기다려 다 끝이 나면, 집사자가 현실(玄室) 왼쪽에 땅을 다스려 놓고 후토씨(后土氏)2355)의 신위(神位)를 남향하여 설치하고 완석(莞席)2356)을 깔다. 헌관(獻官)의 위치(位次)는 신위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집사자의 위치는 그 뒤에 서향하여 북쪽을 위로 하여 설치하며 알자·찬자의 위치는 헌관 서남쪽에 서향하여 북쪽을 위로 하여 설치한다. 축판(祝版)은 신위 오른쪽에 올려 놓고 향로(香爐)·향합(香合)과 초를 신위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祭器)를 설치하고, 찬구(饌具)를 채워 놓는다. 【찬품(饌品)은 영역(塋域)을 열 때 지내는 제사와 같다.】 준소(尊所)는 신위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행사(行事)하는 집사관(執事官)들이 각각 공복(公服)을 갖추어 입고, 때가 이르게 되면 알자와 찬자가 먼저 배위(拜位)로 나아가 북향하여 네 번 절하고 나서 그 위치로 나아간다. 알자가 축(祝) 및 여러 집사를 인도하고 들어가서 배위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찬자가 ‘사배(四拜)하라.’ 창하여, 축 이하가 네 번 절하고 나서 각각 위치로 나아간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p>	<p>行謝后土祭，其儀曰： 俟覆土既畢，執事者於玄室之左除地，設后土氏神位南向，席以莞。設獻官位於神位東南南向，執事者位於其後西向北上，謁者、贊者位於獻官西南西向北上。奠祝版於神位之右，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饌品，與開塋域祭同。】設尊所於神位東南北向。行事執事官各具公服，時至謁者、贊者先就拜位，北向四拜訖就位。謁者引祝及諸執事入就拜位北向立定，贊者曰四拜，祝以下四拜訖各就位。謁者引獻官入就位立定，贊者曰“四拜”，獻官四拜。謁者引獻官詣</p>

	<p>하고 들어가 위차로 가서 서면, 찬자가 ‘사배하라.’ 창하여, 헌관이 네 번 절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준소로 가서 서향해 서면, 집준자(執尊者)가 술을 떠내고 집사자가 잔[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궤(跪)·삼상향(三上香)하라.’고 찬(贊)한다.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잔을 잡았다가 그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찬자가 ‘홀(笏)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뒤로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으라.’ 찬하고, 축(祝)이 신위의 오른쪽으로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祝文)을 읽고 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해 내려가 그 위차로 돌아간다. 찬자가 ‘사배하라.’ 찬하여 헌관이 네 번 절하고 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알자가 축 이하를 인도하여 배위로 나아가면, 찬자가 ‘사배하라.’ 찬하여, 축 이하가 모두 네 번 절한다. 알자가 인도하고 나가면, 알자·찬자가 배위로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가며, 집사자가 찬품(饌品)을 거두고 축관은 구덩이에 묻는다. <집사관은> 헌관(獻官)【정4품.】 1인, 축사(祝史) 1인, 알자 1인, 찬자 1인, 재랑(齋郎) 1인【참외(參外).】 이다.”</p>	<p>尊所西向立, 執尊者酌酒, 執事者以爵受酒。 謁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 贊跪三上香。 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執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贊“執笏(俛)〔俯〕伏與少退北向跪”, 祝就神位之右東向, 跪讀祝文訖, 謁者引獻官降復位。 贊者曰“四拜”, 獻官四拜, 謁者引獻官出, 謁者引祝以下就拜位, 贊者曰“四拜”, 祝以下四拜。 謁者引出。 謁者、贊者就拜位, 四拜而出, 執事撤饌, 祝版瘞於坎。 獻官一、【正四品。】 祝史一、謁者一、贊者一、齋郎一。【參外。】</p>
<p>세조 10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11월 24일(갑신) 7번째기사 반우의(反虞儀)</p>	<p>반우의(反虞儀)2357) 는 이러하였다. “국장 도감(國葬都監)에서 의장(儀仗)을 진설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입주전(立主奠)이 끝나기를 기다려 서연관이 길유궁(吉帷宮) 앞으로 나아가 부복(俯伏)하고 꿇어앉아 ‘영좌(靈座)에서 내려 요여(腰輦)에 오르라.’ 청하고 나서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내시(內侍)가 시책(諡冊)과 시인(諡印)을 받들어 집사자에게 주어 각각 요여에 놓고, 내직 별감(內直別監)이 향로와 향합을 받들어 향정(香亭)에 놓고, 대축(大祝)이 신주궤(神主匱)를 받들어 요여에 안치하고, 혼백함(魂帛函)은 그 뒤에 둔다. 여러 내시가 요여를 받들고, 서연관이 앞에서 인도한다. 유문(帷門) 밖에 이르면, 서연관이 요여 앞으로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요여에서 내려 교자(轎子)에 오르라.’ 청하고 나서 부복하였다</p>	<p>反虞儀: 國葬都監陳儀仗如儀, 竝立主奠畢, 書筵官進當吉帷宮前, 俯伏跪請“降座升輦”, 俯伏興。 內侍捧諡冊、印授執事者, 各置於腰輦, 內直別監捧香爐香合置於香亭, 大祝捧神主匱安於輦, 魂帛函置其後。 諸內侍捧輦, 書筵官前導。 至帷門外, 書筵官進當輦前, 俯伏跪請“降輦升轎”, 俯伏興。 大祝捧神主匱安於轎, 魂帛函置其後。 書筵</p>

가 일어난다. 대축이 신주궤를 받들어 교자에 안치하고, 혼백함은 그 뒤에 둔다. 서연관이 교자 앞으로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진발(進發)하라.’ 칭하고 나서 부복하였다가 일어나면, 신주교(神主轎)가 움직인다. 서연관이 앞에서 인도하고 의장이 차례로 앞에서 인도한다. 신주교가 주정소(晝停所) 유문(帷門) 밖에 이르면, 서연관이 교자 앞으로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교자에서 내려 여(輦)에 오르라.’ 칭하고 나서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대축이 신주궤를 받들어 여에 안치하고 【여러 내시가 여를 받들고 서연관이 앞에서 인도하여 장궁(帳宮) 앞에 이르러 부복하고 꿇어앉아 ‘요여에서 내려 영좌(靈座)에 오르라.’ 칭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물러나면, 대축이 신주궤를 받들어 영좌에 안치하고, 의장은 유문(帷門) 밖 좌우에 나누어 진열하며, 서연관·익위사가 각각 위치로 나아간다.】 유사(攸司)가 예찬(禮饌)을 올리되, 모두 조석전(朝夕奠)과 같이 한다. 승강 진발(升降進發)과 도종(導從)을 청하여, 모두 처음과 같이 한다.

이에 앞서 유사(攸司)가 영좌를 혼궁(魂宮) 북벽(北壁)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신주교가 혼궁 문밖에 이르면 서연관이 교자 앞으로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교자에서 내려 요여에 오르라.’ 칭하고 나서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대축이 신주궤를 받들어 요여에 안치하면, 여러 내시들이 요여를 받든다. 서연관이 앞에서 인도하여 중계(中階)로부터 올라가 중호(中戶)2358) 밖에 이르면, 서연관이 부복하고 꿇어앉아 ‘요여에서 내려 영좌에 오르라.’ 칭하고 나서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물러난다. 대축이 신주궤를 받들어 영좌에 안치하는데, 혼백함은 그 뒤에 둔다. 집사자가 시책·시인을 받들어 혼궁 안 서쪽에 두고, 궁사(宮司)가 의장을 진열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면, 서연관·익위사가 물러난다. 집사관(執事官)은 서연관(書筵官) 1인, 봉시책 집사자(捧諡冊執事者)·봉시인 집사자(捧諡印執事者) 각 2인, 【문신 참외(文臣參外).】 봉향로 내직 별감(捧香爐內直別監)·봉향합 내직별감(捧香合內直別監) 2인, 대축(大祝) 2인 【문

官進當轎前，俯伏跪請“進發”，俯伏興，神主轎動。書筵官前導，儀仗以次前引。神主轎至晝停所帷門外，書筵官進當轎前，俯伏跪請“降轎升輦。”俯伏興，大祝捧神主匱安於輦，【諸內侍捧輦，書筵官前導。至帳宮前，俯伏跪請“降輦升座”，俯伏興退，大祝捧神主匱安於靈座，儀仗分列於帷門外，左右書筵官、翊衛司各就次。】攸司進禮饌，竝如朝夕奠畢。書筵官請輦轎升降進發及導從，皆如初。先時攸司(請) [設] 靈座于魂宮北壁南向。神主轎至魂宮門外，書筵官進當轎前，俯伏跪請“降轎升輦。”俯伏興，大祝捧神主匱安於輦，諸內侍捧輦，書筵官前導，升自中階至中戶外，書筵官俯伏跪請“降輦升座”，俯伏興退。大祝捧神主匱安於靈座，魂帛函置其後。執事者捧冊印，置於宮內之西。宮司陳儀仗如儀，書筵官、翊衛司退。執事官、書筵官一，捧諡冊、諡印執事者各二、【文臣參外。】捧香爐香合內直別監二、大祝二。【文臣參外。】

<p>世祖 10卷, 3年(1457 丁丑 / 명 천순(天順) 1年) 11月 24日(甲申) 9번째기사 우제(虞祭)의 의식</p>	<p>신 참외.】이다.”</p> <p>우제(虞祭)를 행하였는데, 그 의식은 이리하였다. 【재우(再虞) 이하 졸곡(卒哭)도 이와 같다.】</p> <p>“기일 전 1일에 궁사(宮司)가 그 요속(僚屬)을 거느리고 궁의 안팎을 소제하고, 헌관(獻官)과 모든 집사(執事)의 문외위(門外位)를 평상시와 같이 설치한다. 궁내 헌관의 배위(拜位)는 동계(東階)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알자(謁者)·찬자(贊者)의 위치는 동계 아래 서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며, 집사자의 배위는 중문 안 서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알자·찬자의 자리는 그 뒤에 설치한다. 예감(瘞坎)은 궁 북쪽 임지(壬地)에 파는데, 넓이와 깊이는 물건을 넣을 만하게 넉넉히 한다. 그날 축시(丑時) 5각(刻) 전에 【축시 5각 전은 곧 3경(更) 2점(點)이니, 행사는 축시 1각에 행한다.】 전사관(典祀官)과 궁사(宮司)가 각각 그 요속(僚屬)을 거느리고 들어가서 축판(祝版)을 영좌(靈座)의 왼쪽에 올려놓는다. 【점(坫)이 있다.】 그리고 폐비(幣篚) 2개를 준소(尊所)에 진설하고, 향로(香爐)·향합(香盥)과 초[燭]를 영좌에 설치한다. 다음에 예찬(禮饌)을 진설하고, 준소를 지계문 밖에 설치하는데 가이(罌彝) 1개, 【명수(明水)를 채운다.】 황리(黃彝) 1개, 【울창(鬱鬯)을 채운다.】 저준(著尊) 2개, 【1개는 명수(明水)를 채우고, 1개는 예제(醴齊)를 채운다.】 호준(壺尊) 2개, 【1개는 명수를 채우고, 1개는 양제(盎齊)를 채운다.】 산뢰(山罍) 2개로서 【1개는 현수(玄水)를 채우고, 1개는 청주(淸酒)를 채운다.】 네 줄로 하고, 【첫째 줄은 가이(罌彝)·황리(黃彝)이고, 둘째 줄은 저준(著尊), 셋째 줄은 호준(壺尊), 넷째 줄은 산뢰(山罍)이다.】 모두 작(勺)과 먹(鬯)을 달아서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위로 한다. 【무릇 준(尊)·뇌(罍)는 명수와 현주(玄酒)를 채운 것을 위로 한다.】 찬반(瓚盤) 1개를 준소에 설치하고, 뇌는 세(洗)의 동쪽에 있게 하되 작을 얹어 놓고, 비(篚)2359) 는 세(洗)의 서남쪽에 4개가 있게 하되 수건[巾]을 담아 둔다. 【만약 작세(爵洗)의 비라면 찬(瓚) 1</p>	<p>行虞祭， 其儀曰：【再虞以下及卒哭同。】</p> <p>前一日， 宮司帥其屬掃除宮之內外， 設獻官諸執事門外位如常。 設獻官拜位於宮內東階東南西向， 設謁者、贊者位於東階下近西西向； 設執事者拜位於中門內之西北向； 謁者、贊者位於其後。 開瘞坎於宮之北壬地， 方深取足容物。 其日丑前五刻， 【丑前五刻即三更二點， 行事用丑時一刻。】 典祀官宮司各帥其屬入， 奠祝版於靈座之左。 【有坫。】 陳幣篚二於尊所， 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 次設禮饌， 設尊所於戶外， 罌彝一、 【實明水。】 黃彝一、 【實鬱鬯。】 著尊二、 【一實明水， 一實醴齊。】 壺尊二、 【一實明水， 一實盎齊。】 山罍二 【一實玄水， 一實淸酒。】 爲四行， 【第一行， 罌彝、 黃彝， 第二行， 著尊， 第三行， 壺尊， 第四行， 山罍。】 皆加勺鬯， 北向西上。 【 凡尊罍， 實明水、 玄酒爲上。】 設瓚盤一於尊所， 罍在洗東加勺， 篚在洗西南(四) [肆]， 實以巾。 【若爵洗之篚， 則又實以瓚一爵六， 各</p>
---	---	---

개와 작(爵) 6개를 담는다. 각각 점(坫)이 있다.】 모든 집사자의 관세(盥洗)는 아헌관(亞獻官)·종헌관(終獻官)의 세(洗)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집준자(執尊者)·집뢰자(執籩者)·집비자(執篚者)·집떡자(執饗者)의 자리는 준·뇌·비·떡의 뒤에 있게 한다.

3각(刻) 전에 헌관과 여러 집사들이 백의(白衣)·오각대(烏角帶)·오사모(烏紗帽)를 갖추고 모두 문밖의 위차로 나아간다. 1각 전에 알자·찬자가 먼저 궁정(宮庭)으로 들어가서, 북향하여 재배(再拜)하고 나서 자리로 나아간다. 알자가 모든 집사들을 인도하여 궁정으로 들어가면, 찬자가 ‘재배(再拜)·흥(興)·평신(平身)하라.’ 창하여, <모든 집사자가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고> 각각 그 위차로 나간다. 대축(大祝)이 영좌 앞으로 나아가서 궤(櫃)를 열고 신주를 받들어 내어 자리[座]에 놓고 백저건(白苧巾)2360)으로 덮어 둔다. 집사자가 작세위(爵洗位)로 나아가서 찬(瓚)을 씻어 수건으로 닦고, 작(爵)을 씻어 수건으로 닦아서 비(篚)에 넣어 가지고 받들어 준소로 나아가서 점(坫) 위에 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고 들어가 그 위차로 나아간다. 찬자가 ‘궤(跪)·부복(俯伏)·곡(哭)하라.’ 창(唱)하면, 헌관이 꿇어앉아 부복하여 곡(哭)을 한다. 찬자가 ‘곡지·흥·재배·흥·평신하라.’ 창하면 헌관이 곡을 그치고 일어나 두 번 절하고 다시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자가 ‘전폐례(奠幣禮)를 행하라.’ 창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 준소로 가서 서향하여 선다. 집준자(執尊者)가 떡(饗)을 들고 울창(鬱鬯)을 떠내면 집사는 찬(瓚)으로 그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집사자 1인이 향로(香爐)를 받들고 또 한 사람이 향함을 받들어 삼상향(三上香)하게 되면, 집사자는 향로(香爐)를 안(案)에 올린다. 집사자가 찬(瓚)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그 찬을 잡아 땅에 술을 붓고, 다시 집사자에게 주면 준소에 갖다 둔다. 대축이 폐비(幣篚)를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폐비를 잡았다가 그 폐비를 다시 대축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린다. 알자가 ‘부복·

有坫。】 設諸執事盥洗於亞終獻洗東南北向； 執尊、鬯、籩、罍者位於執尊、鬯、籩、罍之後。 前三刻， 獻官諸執事具白衣烏角帶烏紗帽， 皆就門外位。 前一刻， 謁者、贊者先入宮庭， 北向再拜訖就位。 謁者引諸執事入就宮庭， 贊者唱 “再拜興平身”， 各就位。 大祝詣靈座前， 開櫃捧出神主， 設於座， 覆以白苧巾。 執事者詣爵洗位， 洗瓚拭瓚， 洗爵拭爵， 置於籩， 奉詣尊所， 置於坫上。 謁者引獻官入就位。 贊者唱 “跪俯伏哭”， 獻官跪俯伏哭。 贊者唱 “哭止興再拜興平身”， 獻官哭止興再拜興平身。 贊者唱 “行奠幣禮”， 謁者引獻官升自東階， 詣尊所西向立。 執尊者舉罍酌鬱鬯， 執事以瓚受酒。 謁者引獻官入詣靈座前， 北向立跪。 執事者一人捧香爐， 一人捧香合， 三上香， 執事者奠爐于案。 執事者以瓚授獻官， 獻官執瓚灌地訖授執事者， 置於尊所。 大祝以幣篚授獻官， 獻官執幣， 以幣授大祝， 奠於靈座前。 謁者贊 “俯伏興平身”， 引獻官出戶， 降復位。 贊者唱 “行初獻禮”， 謁者引獻官升自東階， 詣尊所西向立。 執尊

흥·평신하라.’ 계청하고, 헌관을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 내려가서 위차로 돌아간다. 찬자가 ‘초헌례(初獻禮)를 행하라.’ 창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 준소로 나아가 서향하여 서계 한다. 집준자가 먹을 들고, 예제(禮齊)2361) 를 떠내면, 집사자 1인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고 들어가 영좌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고 섰다가 꿇어앉으면,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주고, 헌관은 잔을 잡았다가 그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린다. 알자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으라.’ 계청하면, 대축이 영좌 왼쪽으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꿇어앉아 축문(祝文)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부복·흥·평신하라.’ 계청하고, 헌관을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 내려가서 그 위차로 돌아간다.

아헌례(亞獻禮)·종헌례(終獻禮)를 행하기를 모두 초헌례(初獻禮)의 의식과 같이 하고 나서, 헌관을 인도하고 내려와 그 위차로 돌아간다. 찬자가 ‘궤·부복·곡·진애(盡哀)하라.’ 계청하고, 찬자가 다시 ‘곡지(哭止)·흥(興)·재배(再拜)·흥(興)·평신(平身)하라.’ 창하여, 헌관이 곡을 그치고 일어나 두 번 절하고 다시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밖으로 나간다. 알자가 모든 집사를 인도하여 함께 배위(拜位)에 부복하면, 찬자가 ‘재배·흥·평신하라.’ 창하여, 모든 집사가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차례로 인도하여 밖으로 나가고, 대축이 신주를 궤에 넣어 안치하고, 알자·찬자가 배위로 나아가서 두 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궁사(宮司)가 그 요속을 거느리고 예찬을 거둔다. 대축이 혼백(魂帛)을 받들어 토등상(土藤箱)에 담고 홍초보(紅綃褌)2362) 로 싸서 한쪽 구석[屏處]의 깨끗한 곳에 묻고, 또 축문과 폐백을 구덩이에 묻는다. 행사 집사관(行事執事官)은 헌관(獻官), 【중친(宗親).】 전사관(典祀官), 【봉상시(奉常寺) 관원.】 대축(大祝) 1인, 【문신 참외(文臣參外).】 알자(謁者) 1인, 찬자(贊者) 2인, 축사(祝史) 1인, 재랑(齋郎) 1인, 집준자(執尊者) 1인이다.”

者舉冪酌醴齊，執事者一人以爵受酒。謁者引獻官入詣靈座前，北向立跪，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以爵授執事者，奠于靈座前。謁者贊“俯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祝文訖，謁者贊“俯伏興平身”，引獻官出戶，降復位。行亞獻終獻，竝如初獻儀訖，引降復位。贊者唱“跪俯伏哭盡哀”，贊者唱“哭止興再拜興平身”，獻官哭止興再拜興平身，謁者引獻官出。謁者引諸執事俱伏拜位，贊者唱再拜興平身，諸執事“再拜興平身”，謁者以次引出，大祝納神主，謁者、贊者就拜位，再拜而出。典祀官(室) [宮] 司帥其屬撤禮饌。大祝捧魂(魄) [帛] 盛於土藤箱，裹以紅綃褌，埋屏處潔地，又以祝幣瘞於坎。行事執事官、獻官、【宗親。】典祀官、【奉常寺。】大祝一、【文臣參外。】謁者一、贊者二、祝史一、齋郎一、執尊者一。

世祖 10卷, 3年(1457
丁丑 / 명 천순(天順)
1年) 12月 24日(甲寅)
1번째기사
왕세자가 성균관에 나
가 속수례를 행하다.

후원에 나아가 관사(觀射)하였다. 왕세자가 성균관에 나아가 선성(先聖)2417)을 알현하고, 드디어 속수례(束脩禮)2418)를 행하고, 명륜당으로 올라가 박사(博士)에게 나아가서 경서(經書)를 받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는데, 성균관 관원과 예문관 및 교서관 관원과 아래로 학생들까지 제향(饋餉)하였다. 문묘(文廟)를 알현하는 의식[謁文廟儀]은 이러하였다.
“1일 전에 충호위에서 왕세자의 막차(幕次)를 문묘 동문 밖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전의(典儀)는 왕세자의 위판(位版)을 문묘 동계(東階) 아래에 동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고, 겸사성(兼司成)의 시위(侍位)를 계하(階下)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고 북쪽을 위로 하여 겹줄로 설치한다. 교관(敎官)2419)·정록(正錄)의 시위를 계하에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하여 북쪽을 위로하여 겹줄로 설치하며, 학생의 시위는 왕세자의 판위(版位) 뒤에 남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여 겹줄로 설치한다. 익위사에서 소속 부대를 거느리고 장위(仗衛)를 진열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사복 소윤(司僕少尹)은 연(輦)을 광화문 밖에 올려 놓는다. 궁관이 상복 차림으로 【무관은 기복(器服)을 입는다.】 궁문 밖으로 나아가 좌우로 나누어 겹줄로 마주보고 북쪽을 위로 한다. 우중호(右中護)가 의식대로 인(印)을 지고, 시종(侍從)하는 관원이 【사어(司御) 2인은 검(劍)을 차고, 익찬(翊贊) 2인은 궁시(弓矢)를 찬다.】 함께 함문(閤門)으로 나아가서 <세자를> 봉영한다. 좌중호가 함문 밖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내엄(內嚴)을 찬청하고 외비(外備)를 아뢰면, 왕세자가 상복(常服)을 갖추고 나온다. 좌중호가 앞에서 인도하고, 우중호는 인(印)을 지고 전도(前導)하는데 시위(侍衛)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광화문 밖에 나와 좌중호가 꿇어앉아 교자(轎子)에 오르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교자에 오르고 잠시 머문다. 시종하는 관원이 말을 타면, 교자가 움직이고 궁관도 모두 말을 타는데, 시위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문묘 동문 밖에 이르러 좌중호가 꿇어앉아 교자에서 내리기를 찬청하

甲寅/御後苑觀射。 王世子詣成均館謁先聖，遂行束脩禮，陸明倫堂，就博士受經如儀，餉館官及藝文校書館官下逮學生。 謁文廟儀：
前一日，忠扈衛設王世子幕次於廟東門外西向。 典儀設王世子位版於廟東階下近東北向，設兼司成侍位於階下近東西向，北上重行，敎官、正錄侍位於階下近西東向，北上重行，學生侍位於王世子版位之後，近南北向，西上重行。 翊衛司勒所部陳仗衛如常。 司僕少尹進輦於光化門外。 宮官以常服【武官器服。】 就宮門外分左右，重行相向北上。 右中護負印如式，侍從之官【司禦二人佩劍，翊贊二人佩弓矢。】俱詣閣奉迎。 左中護詣閣外跪贊請內嚴，白外備，王世子具常服出。 左中護前引，右中護負印前導，侍衛如常。 出光化門外，左中護跪贊請乘轎，王世子乘轎小駐。 侍從之官乘馬，轎動，宮官皆乘馬，侍衛如常。 至廟東門外，左中護跪贊請降轎，王世子降轎入次，侍衛如常。 右中護以印陳於幕次之側，學生先入就位，奉禮郎引敎官、正錄入就位。 左中護跪白外備，王世子出

면, 왕세자가 교자에서 내려 막차로 들어가는데, 시위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우중호가 인을 막차 곁에 진열하면, 학생이 먼저 들어와 그 위치로 나아가고, 봉례랑이 교관·정록을 인도하고 들어와서 그 위치로 나아간다. 좌중호가 꿇어앉아 외비를 아뢰면, 왕세자가 막차에서 나온다. 【궁관으로서 수중해 들어가야 할 자는 모두 상복(常服)을 갖춘다.】 좌중호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문을 지나 들어와 그 위치로 나아가서, 【산(繖)은 문밖에 머무르고, 궁관으로서 수중해 들어가야 할 자는 배위(拜位) 동남쪽에서 서향하여 북쪽을 위로 하여 꿇어앉는다.】 좌중호가 꿇어앉아 ‘국궁(鞠躬)·사배(四拜)·흥(興)·평신(平身)하라.’ 찬청하면, 왕세자가 국궁하여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고 나서 인도하여 막차로 나아간다. 좌중호가 꿇어앉아 외비를 아뢰면, 왕세자가 막차에서 나오는데, 시위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좌중호가 꿇어앉아 교자에 오르기를 찬청하면 왕세자가 교자에 오르는데, 도종(導從)은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왕세자의 입학의(入學儀)는 이러하였다.

“1일 전에 유사(攸司)가 묘전(廟殿)과 학당(學堂)의 안팎을 소제하면, 충호위에서 왕세자의 편차(便次)를 동문 밖에 서향하여 설치하며, 유사(有司)가 왕세자의 위판(位版)을 문묘(文廟)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집사자의 위치(位次)는 왕세자 판위(版位) 뒤에 약간 남쪽으로 서향하여 설치하되, 【집사자는 모두 학생으로 충당한다.】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다 같이 곁줄로 서향하며 북쪽을 위로 한다. 찬자(饌者) 2인의 위치를 당하(堂下)에 다같이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고 북쪽을 위로 하여 설치하고, 학생의 위치는 정중(庭中)에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설치한다. 묘사(廟司) 및 전사관(典祀官)이 각각 그 요속(僚屬)을 거느리고 들어가서 제기(祭器)를 문선왕(文宣王)2420) ·연국공(兗國公)2421) ·성국공(郕國公)2422) ·기국공(沂國公)2423) ·추국공(鄒國公)2424) 의 신위(神位) 앞에 진설하는데, 신위마다 각

次。【宮官應從入者，皆具常服。】左中護引王世子由東門入就位，【繖停於門外，宮官應從入者跪於拜位東南，西向北上。】左中護跪贊請“鞠躬四拜興平身”，王世子鞠躬四拜興平身訖，引出就次。左中護跪白外備，王世子出次。侍衛如常。左中護跪贊乘轎，王世子乘轎，導從如來儀。

入學儀：

前一日，攸司灑掃廟殿及學堂之內外，忠扈衛設王世子便次於東門外西向；有司設王世子位版於廟東階東南西向，設執事者位於王世子版位之後，稍南西向，【執事者，皆以學生充之。】每等異位，俱重行西向北上，設饌者二人位於堂下，俱近東西向北上，設學生位於庭中，北向西上。廟司及典祀官各率其屬入，設祭器於文宣王、兗國公、郕國公、沂國公、鄒國公神位之前，每於各左一籩、【實以鹿脯。】右一豆，【實以鹿醢。】爵一在籩豆前，設犧尊一【實以清酒。】加勺罍，在殿上東南隅。【配位酒尊則於正位尊所之東。】各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又設殿內東西從享及兩廡，祭器各左一

각 왼쪽에 변(邊)2425) 1개, 【녹포(鹿脯)로 채운다.】 오른쪽에 두(豆)2426) 1개가 있으며 【녹혜(鹿醢)로 채운다.】 작(爵) 1개가 변두(邊豆) 앞에 있고, 희준(犧尊)2427) 1개에 【청주(淸酒)로 채운다.】 작(勺)과 먹(冪)이 가해져서 대성전(大成殿) 위 동남 모퉁이에 두며, 【배위(配位)의 주준(酒尊)은 정위(正位) 존소(尊所)의 동쪽에 둔다.】 각각 향로(香爐)·향함(香盥)과 초[燭]를 신위 앞에 베풀어 둔다. 또 대성전 안 동서에 종향(從享)한 신위와 양무(兩廡)의 제기도 각각 왼쪽에 변 1개, 【녹포로 채운다.】 오른쪽에 두 1개가 있고 【녹혜로 채운다.】 작 1개가 변두 앞에 진설되어 있다. 상준(象尊)2428) 4개를 설치하되, 1개는 전상(殿上) 전영(前楹)의 동쪽에 있고, 1개는 전영 서쪽에 있으며, 2개는 양무(兩廡)에 나누어 두되 다같이 작과 먹을 가하여 둔다. 세(洗)는 동계(東階)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뇌(罍)는 세 동쪽에 작을 가하여 있고, 비(篚)는 세 서남쪽에 있으며, 수건[巾]을 진열해 채운다. 【만약 작세(爵洗)의 비 같으면 또 작(爵)으로 채우고, 점(坫)이 있다.】 집준자(執尊者)·집뇌자(執罍者)·집비자(執篚者)·집먹자(執冪者)의 위치를 준·뇌·비·먹의 뒤에 설치한다. 그날 유사(攸司)가 장위(仗衛)를 진설하고, 왕세자가 시각에 의하여 편복(便服) 차림으로 요여(腰輿)를 타고 나오면, 궁료(宮僚) 및 제위(諸衛)가 시종(侍從)하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행사하기 전에 묘사(廟司)와 전사관(典祀官)이 각각 그 요속을 거느리고 들어가서 찬구(饌具)를 다 채운다. 때가 이르면 학생이 청금복(靑衿服)을 입고 찬자(贊者) 2인이 먼저 계간(階間)에 있는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네 번 절하고 나서 그 위치로 나아간다. 집사자가 들어와 배위로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정렬하여 서면, 찬자가 ‘사배하라.’ 창(唱)하고, 집사자가 네 번 절하고 나서 각각 그 위치로 나아가고, 학생이 들어와 그 위치로 나아간다. 집사자가 작(爵)을 씻고 그 작을 닦아 비에 넣어서 받들고 존소(尊所)로 가서 점(坫) 위에 둔다. 왕세자가 학생복을 입

邊、【實以鹿脯。】 右一豆、【實以鹿醢。】 爵一在邊豆前。 設象尊四，一在殿上前楹東，一在前楹西，其二分兩廡，俱加勺冪。 設洗於東階東南北向，罍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實以巾。 【若爵洗之篚，則又實以爵。 有坫。】 執尊、罍、篚、冪者位於尊、罍、篚、冪之後。 其日，攸司陳設仗衛，王世子依時刻便服乘腰輿以出，宮僚及諸衛侍從如儀。 未行事前，廟司及典祀官各帥其屬入，實饌具畢。 時至，學生服靑衿服，贊者二人先就階間拜位，北向西上，四拜訖就位。 執事者入就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贊者唱“四拜”，執事者四拜訖，各就位，學生入就位。 執事者洗爵拭爵置於篚，奉詣尊所置於坫上。 王世子服學生服出次，侍衛如常儀。 相者引王世子入自東門，【侍衛不應入者，止於門外。】 至版位西向立，【每立定，相者退立於左。】 相者前贊請四拜，王世子四拜，贊者唱四拜，在位者皆四拜。 【先拜者不拜。】 相者引王世子自東階【左右侍衛量人從升。】 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冪酌酒，執事者以爵受

고 막차에서 나오면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상자(相者)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문으로부터 들어가 【시위로서 들어가지 못할 자는 문밖에서 그친다.】 판위(版位)에 이르러 서향하여 서면, 【무릇 서서 고정하면 상자(相者)는 물러나 그 왼쪽에 선다.】 상자가 앞으로 가서 사배하기를 찬청(贊請)하고, 왕세자가 네 번 절하며, 찬자가 ‘사배하라.’ 창하면, 자리에 있는 자가 모두 네 번 절한다.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않는다.】 상자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 【좌우의 시위는 그 사람을 헤아려서 따라 오른다.】 준소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면, 집준자는 먹을 들고 술을 따르고 집사자는 잔에 술을 받는다.

상자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문선왕 신위(文宣王神位) 앞으로 가서 북향하여 서면, 꿇(跪)하기를 찬청한다. 집사자 1인은 향합(香合)을 받들고, 집사자 1인은 향로(香爐)를 받들어 꿇어앉아 바친다. 상자가 삼상향(三上香)을 찬청하면,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드린다. 집사자가 잔을 받들어 꿇어앉아 바치면, 상자가 집작 헌작(執爵獻爵)하기를 찬청하고,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상자가 또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기를 찬청하고, 상자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지계문 밖으로 나간다. 배위(配位)의 준소로 가서 서향하여 서면, 집준자가 먹을 들고 술을 따르고 집사자 4인이 잔에 술을 받는다. 상자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복성공(復聖公)2429) ·종성공(宗聖公)2430) ·술성공(述聖公)2431) ·아성공(亞聖公)2432) 의 신위 앞으로 가서 행례(行禮)하기를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해당 배위의 작헌(酌獻)이 장차 끝나려고 할 때마다 집사자가 대성전 안에 종향(從享)한 신위 및 양무(兩廡)의 여러 신위 앞으로 가서 잔 드리는 것을 돕고 나면, 【해당 배위가 작헌할 때 대성전 안에 종향한 분과 양무의 여러 집사는 각각 잔에 술을 따라 기다렸다가 작헌이 장차 끝나려고 할 때, 그 신위 앞으로 가서 잔 드리는 것을 돕는다.】 상자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내려가 판위(版位)로 나아가면, 상자가 사배하기를

酒。 相者引王世子詣文宣王神位前北向立， 贊請跪。 執事者一人奉香合， 執事者一人奉香爐跪進。 相者贊請三上香， 執事者奠爐于神位前。 執事者奉爵跪進， 相者贊請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相者贊請〔俯〕伏興， 相者引王世子出戶。 詣配位尊所西向立， 執尊者舉罇酌酒， 執事者四人以爵受酒。 相者引王世子詣復聖公、宗聖公、述聖公、亞聖公神位前， 行禮竝如上儀。 當配位酌獻將畢時， 執事者詣殿內從享及兩廡諸神位前， 助奠訖， 【當配位酌獻時， 殿內從享及兩廡諸執事各以爵酌酒以候， 爵獻將畢時， 詣諸神位前助奠。】 相者引王世子降自東階就版位， 相者贊請四拜， 王世子四拜， 贊者唱四拜， 在位者皆四拜。 相者引王世子出門還便次， 侍衛如常儀， 在位者以次出。 執事者俱復拜位， 贊者唱四拜， 執事者四拜訖以次出， 贊者二人就拜位四拜而出。 行東脩儀：

其日， 王世子服學生服至學門外， 東帛、 【三匹。】 酒一壺、 【二斗。】 脩一案。 【五甗。】 相者引王世子立

찬청하여 왕세자가 네 번 절하고, 찬자가 ‘사배하라.’ 창(唱)하여,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네 번 절한다. 상자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문밖으로 나아가 편차(便次)로 돌아가는데, 시위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며, 자리에 있던 자도 나간다. 집사자가 함께 배위로 돌아가고, 찬자가 ‘사배하라.’ 창하여, 집사자가 네 번 절하고 나서 차례로 나가며, 찬자 2인이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속수(束脩)를 행하는 의식[行束脩儀]은 이러하였다.

“그날 왕세자가 학생복을 입고 학문(學門)2433) 밖에 이른다. <예폐(禮幣)는> 속백(束帛) 【3필(匹).】 , 술 1호(壺) 【2두(斗).】 , 포[脩] 1안(案) 【5정(艇).】 이다. 상자(相者)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학문 동쪽에서 서면(西面)하여 서고, 백비(帛篚)·수안(脩案)·주호(酒壺)는 왕세자 서남쪽에 문을 마주보고 북향하여 곁줄로 서쪽을 위로하여 진설한다. 박사(博士)가 공복(公服)을 갖추면, 집사자가 이를 인도하여 학당(學堂) 동계 위에 서면하여 선다. 장명자(將命者)가 나와 문 서쪽에서 동향하고 서서 말하기를, ‘감히 일을 청합니다.’ 하면, 왕세자가 조금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아무가 바야흐로 선생님께 수업(受業)하고자 감히 알현을 청합니다.’ 한다. 장명자가 들어가 고하면, 박사는 말하기를, ‘아무는 덕이 없으니, 청컨대 왕세자께서는 옥됨이 없도록 하소서.’ 한다. 장명자가 나가 고하면, 왕세자는 굳이 청한다. 박사가 말하기를, ‘아무가 덕이 없으나, 청컨대 왕세자께서는 위차로 나오십시오. 아무가 감히 뵈겠습니다.’ 한다. 장명자가 나가 고하면, 왕세자가 말하기를, ‘아무가 감히 빈객(賓客)을 보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비울 수 있도록 해주소서.’ 한다. 장명자가 들어가 고하면, 박사가 말하기를, ‘아무가 사양하여도 허락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니,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한다. 장명자가 나가 고한다. 집비자(執篚者)가 비(篚)를 가지고 동면(東面)하여 왕세자에게 주면, 왕세자가 비를 잡는다. 박사가 동계 아래로 내려와 서면(西面)하고 사후(伺候)한다. 상

於門東西面，陳帛篚、脩案、酒壺於王世子西南當門，北向重行西上。博士具公服，執事者引立於學堂東階上西面。將命者出立門西東向曰，“敢請事。”王世子少進曰，“某方受業於先生，敢請見。”將命者入告，博士曰，“某也不德，請王世子無辱。”將命者出告，王世子固請。博士曰：“某也不德，請王世子就位，某敢見。”將命者出告，王世子曰，“某不敢以視賓客，請從賜見。”將命者入告，博士曰：“某也辭不得命，敢不從？”將命者出告。執篚者以篚東面授王世子，王世子執篚。博士降伺于東階下西面。相者引王世子，執事者奉酒壺脩案以從。王世子入門而左詣西階南東面，奉酒脩者立於王世子西南，東面北上。王世子跪奠篚再拜，博士答再拜。王世子還避，遂進跪取篚。相者引王世子進博士前，東面授幣，奉酒脩案者從奠於博士前。博士受幣，執事者取酒脩幣以束，相者引王世子立於階間近南北面，奉酒脩者出。王世子再拜訖，相者引王世子出就幕次以候，博士釋服升堂就座。【在學堂東壁下，西向。】

	<p>자는 왕세자를 인도하고, 집사자는 주호(酒壺)와 수안(脩案)을 받들고 뒤따른다. 왕세자가 문으로 들어가 왼쪽으로 〈갔다〉 서계 남쪽으로 나아가서 동면하면, 술과 포[脩]를 받든 자가 왕세자 서남쪽에서 동면하고 북쪽을 위로 하여 선다. 왕세자가 꿇어앉아 비를 드리고 두 번 절하면 박사가 답하여 두 번 절한다. 왕세자가 돌아서서 피하였다가 드디어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서 비를 취한다. 상자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박사 앞으로 가서 동면하고 폐백[幣]을 주면, 술과 수안(脩案)을 받든 자가 따라가 박사 앞에 드린다. 박사가 폐백을 받으면, 집사자가 술과 포를 취하여 폐백으로 싸서 묶는다. 상자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계간(階間)에 남쪽으로 가까이 북면하여 서면, 술과 포를 받든 자가 밖으로 나간다. 왕세자가 두 번 절하고 나면, 상자가 왕세자를 인도해 막차로 가서 기다린다. 박사가 옷을 벗고, 학당으로 올라가 자리로 나아간다. 【학당 동벽 아래에 서향하여 있다.】 상자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박사 앞으로 가서 강경(講經)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하고, 〈예를〉 마친다. 박사, 상자, 장명자(將命者)와 속수례(束脩禮)를 행하는 집사 3인, 찬자(贊者) 2인, 전내(殿內)의 봉향(奉香) 6인, 봉작(奉爵) 5인, 작준소(酌尊所) 1인과 동서 종사위(東西從祀位)에 봉향(奉香) 4인, 【동쪽에 2인이 있고, 서쪽에 2인이 있다.】 봉작(奉爵) 10인, 【동쪽에 5인이 있고, 서쪽에 5인이 있다.】 작준소(酌尊所)에 2인이 있으며, 동·서무(東西廡)에 조전(助奠) 68인, 【동쪽에 34인이 있고, 서쪽에 34인이 있다.】 시립(侍立) 44인이 있는데, 이상의 집사(執事)는 모두 학생이 한다.”</p>	<p>相者引王世子詣博士前， 講經如常儀畢。 博士、相者、將命者、束脩禮執事三人、贊者二人、殿內奉香六人、奉爵五人、酌尊所一人、東西從祀位奉香四人、【東二人，西二人。】奉爵十人、【東五人，西五人。】酌尊所二人、【東一人，西一人。】東西廡助奠六十八人、【東三十四人，西三十四人。】侍立四十四人，已上執事皆以學生爲之。</p>
<p>세조 13권, 4년(1458 무인 / 명 천순(天順) 2년) 7월 30일(을묘) 2번째기사 예조에서 환구 기제의</p>	<p>예조(禮曹)에서 환구 기제(圜丘祈祭)의 의식(儀式)을 아뢰었는데, 그 의식은 이러하였다. “기일(祈日) 전 1일에 충호위(忠扈衛)에서 헌관(獻官)·집사관(執事官)의 위치(位次)를 외유(外墀)의 바깥 길 남쪽에 설치하되, 아울러 땅의 형편에 따라서 적당하게 한다. 1일 전에 전사관(典祀官) 단사(壇司)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p>	<p>禮曹啓圜丘祈祭儀曰： 前(一) [二] 日，忠扈衛設獻官、執事官次於外墀東門之外道南， 竝隨地之宜。 前一日，典祀官、壇司帥其屬掃除壇之上下，積柴於燎壇，設饌幔於內</p>

의식을 아뢰다

단(壇)의 위 아래를 소제(掃除)하고, 요단(燎壇)2922) 에 시목(柴木)2923) 을 쌓아놓고, 내유(內壇)의 서쪽 문(門) 바깥 길에 찬만(饌幔)을 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서 적당하게 한다. 호천 상제(昊天上帝)·황지기(皇地祇)의 신좌(神座)를 단(壇) 위의 북방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자리는 벗짚으로 한다. 【상제(上帝)는 동쪽에 있고 지기(地祇)는 서쪽에 있다.】 태조 대왕(太祖大王) 배위(配位)의 신좌(神座)를 동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자리[席]는 왕골로 한다. 대명(大明)2924) 의 신위(神位)를 태조(太祖) 신위(神位)의 조금 뒤에 설치하고, 자리[席]는 벗짚으로 한다. 성신(星辰)의 신위(神位)와 풍운뢰우(風雲雷雨)의 신위(神位)는 모두 동쪽에 있어 서향하여 설치하고, 자리는 왕골로 한다. 야명(夜明)2925) 의 신위는 대명(大明)의 신위에 당하는 데에 서쪽에 있어 동향하여 설치하고, 자리[席]는 벗짚으로 한다. 동남서북해(東南西北海)의 신위(神位)는 야명(夜明)의 신위(神位)의 조금 뒷자리에 설치하고, 악독산천(嶽瀆山川)의 신위(神位)는 모두 서쪽에 있어 동향하여 설치하고, 자리[席]는 왕골로 한다. 깨끗하게 하기를 끝내고 임시로 철거(撤去)하였다고 고(告)하면 헌관(獻官)의 자리를 단(壇) 아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전사관(典祀官)·감찰(監察)의 자리는 조금 남쪽으로 물려서 뒤에 모두 서향하여 설치하고, 서리(書吏)가 그 뒤에 배종(陪從)한다. 찬자(贊者)·알자(謁者)의 자리는 조금 남쪽으로 물려서 뒤에 모두 서향하여 설치하고, 서리(書吏)가 그 뒤에 배종(陪從)한다. 찬자(贊者)·알자(謁者)의 자리는 단(壇) 아래의 북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되, 북쪽이 위[上]가 되게 한다. 감찰(監察)과 여러 집사(執事)의 자리는 단 남쪽에 모두 품등(品等)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북향하여 설치하되, 서쪽이 위[上]가 되게 한다. 망료위(望燎位)는 시단(柴壇)의 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대축(大祝)·찬자(贊者)의 자리는 동쪽에 있어 서향하여 설치하고, 망예위(望瘞位)는 단(壇)의 서쪽에 예감(瘞坎)에 당하는 데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대축(大祝)·찬자(贊者)의 자리는 동쪽에 있어 서향하

壇西門之外，道北南向，隨地之宜，設昊天上帝、皇地祇座於壇上北方南向，席以藁秸。【上帝在東，地祇在西。】太祖大王配位神座於東方西向，席以莞。大明位于太祖位差後，席以藁秸。星辰位及風雲雷雨位俱在東西向，席以莞。夜明位于當大明位在西東向，席以藁秸。東南西北海位于夜明位差後，次嶽瀆山川位俱在西東向，席以莞。告潔畢權撤，設獻官位於壇下東南西向，典祀官、監察位稍南差後俱西向，書吏陪其後。設贊者、謁者位於壇下近北西向北上，設監察及諸執事位於壇南，俱每等異位，重行北向西上，設望燎位於柴壇之北南向，大祝、贊者位在東西向，設望瘞位於壇西，當瘞坎北向，大祝、贊者位在東西向。祈日丑前五刻，典祀官率其屬入奠祝板，陳幣篚各一於尊所。設香爐、香案并燭於各神位之前，次設祭器實饌具，每位各左二邊右二豆。簋、篚各二在邊、豆間，篚在右，豆一，在簋、篚前。【盛毛血。】俎一在豆前，【實以豕腥。】爵一在俎前，【有坩。】又俎一在菹醢前。【盛牲肉】大尊二、山

여 설치한다. 기일(祈日)의 축시(丑時) 전(前) 5각(刻)에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所屬)을 거느리고 축판(祝版)을 받들고 들어와서 폐비(幣篚)를 각각 하나씩 준소(尊所)에 진설(陳設)한다. 향로(香爐)·향안(香案)과 초[燭]를 각 신위(神位)의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제기(祭器)를 설치하고, 찬구(饌具)를 담는데, 신위(神位)마다 각각 왼쪽에 변(邊)이 2개, 오른쪽에 두(豆)가 2개이다. 보(簠)·궤(簋)가 각각 2개씩인데 변(邊)·두(豆) 사이에 있으며, 궤(簋) 오른쪽에 두(豆)가 1개인데 보(簠)·궤(簋) 앞에 있다. 【희생의 털과 피를 담는다.】 조(俎)가 1개인데 두(豆) 앞에 있고 【시성(豕腥)을 담는다.】 작(爵)이 1개인데 조(俎) 앞에 있다. 【점(坫)이 있다.】 또 조(俎)가 1개인데, 저해(菹醢)2926) 앞에 있다. 【희생(犧牲)의 고기[肉]를 담는다.】 대준(大尊)이 2개, 산뢰(山罍)가 1개인데, 모두 작(勺)2927) 과 먹(鬯)2928) 을 엮어서 각각 여러 신위(神位)의 남쪽에 두고, 세작(洗爵)을 남쪽 계단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되, 뇌(罍)는 세작(洗爵)의 동쪽에 있는데, 작(勺)을 엮어 놓고, 비(篚)는 세작(洗爵)의 서쪽에 있는데 수건을 덮어 둔다. 전사관(典祀官)이 찬구(饌具)를 채우기를 끝나치면 대축(大祝)이 신위판(神位版)을 신좌(神座)에 설치한다. 알자(謁者)가 감찰(監察)을 인도하여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단(壇)의 위 아래를 살펴보고, 규찰(糾察)하여 의식(儀式)과 같지 않은 것은 도로 내보낸다. 3각(刻) 전에 여러 사관(祀官)이 각각 제복(祭服)을 입으면, 찬자(贊者)·알자(謁者)가 동쪽 유문(壝門)으로 들어와 단(壇)의 남쪽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북향하되, 서쪽을 위[上]로 하여 4번 절하고 끝나치면 자리로 나아간다. 알자(謁者)가 헌관(獻官) 이하를 인도하여 모두 동쪽 유문(壝門) 밖 자리로 나아간다. 1각(刻) 전에 알자(謁者)가 감찰(監察)·전사관(典祀官)·대축(大祝)·재랑(齋郎)·축사(祝史)를 인도하여 들어와 단(壇)의 남쪽 배위(拜位)로 나아간다. 찬자(贊者)가, ‘사배(四拜)하라.’ 하면 감찰(監察) 이하가 모두 4번 절하고, 끝나치면 알자(謁者)가 감찰(監察) 이하를 인도하여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재랑(齋郎)이 작세위(爵洗

罍一，皆加勺鬯，各在諸神位之南，設洗爵於午陛東南北向，罍在洗東，加勺，篚在洗西，實以巾。典祀官實饌具畢，大祝設神位版於座。謁者引監察升自卯陛，按視壇之上下，糾察不如儀者還出。前三刻，諸祀官各服其服，贊者、謁者入自東壝門，先就壇南拜位，北向西上，四拜訖就位，謁者引獻官以下，俱就東壝門外位。前一刻，謁者引監察、典祀官、大祝、齋郎、祝史入就壇南拜位。贊者曰“四拜”，監察以下皆四拜訖，謁者引監察以下各就位。齋郎詣爵洗位，洗爵拭爵訖置於篚，奉詣尊所置於坫，謁者引獻官入就位。贊者曰“燔柴瘞毛血”，大祝奉上帝、太祖、大明、夜明位牲盤、皇地祇、東南西北〔海〕獄瀆山川位毛血豆，各由其陛授祝史。祝史捧牲盤詣燎壇上，加柴燔之，大祝捧毛血豆瘞於坎。贊者曰“四拜”，衆官在位者皆四拜，先拜者不拜。謁者進獻官之左，白“有司謹具請行事”，退復位。贊者曰“行奠幣禮”，謁者引獻官陞自午陛，詣昊天上帝神位前北向立。謁者贊“跪”，獻官跪。執事者一人奉香合，

位)에 나아가서 작(爵)을 씻고 작(爵)을 털기를 끝마치면, 비(篚)에 담아 받들고 존소(尊所)에 나아가서 점(坫)에 둔다. 알자(謁者)가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들어가 자리에 나아간다. 찬자(贊者)가 ‘시목(柴木)을 태우고 모혈(毛血)을 묻어라.’ 하면 대축(大祝)이 상제(上帝)·태조(太祖)·대명(大明)·야명(夜明) 신위(神位)의 희생반(犧牲盤)과 황지기(皇地祇)·동남서북해(東南西北海)·악독산천(嶽瀆山川) 신위(神位)의 모혈두(毛血豆)를 받들어 각각 계단을 지나가 축사(祝史)에게 준다. 축사(祝史)가 희생반(犧牲盤)을 받들어 요단(燎壇) 위에 나아가서 시목(柴木)을 더하여 이를 태우고, 대축(大祝)이 모혈두(毛血豆)를 받들어 구덩이에 묻는다. 찬자(贊者)가 ‘사배(四拜)하라.’하면 여러 관원으로서 자리에 있는 자들이 모두 4번 절하는데,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않는다. 알자(謁者)가 헌관(獻官)의 왼쪽에 나아가서, ‘유사(有司)가 삼가 갖추었으니 행사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물러가 자리로 돌아간다. 찬자(贊者)가 ‘전폐례(奠幣禮)를 행하라.’ 하면 알자(謁者)가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남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호천 상제 신위(昊天上帝神位)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선다. 알자(謁者)가 찬(贊)하기를, ‘궤(跪)하라.’ 하면 헌관(獻官)이 꿇어앉는다. 집사자(執事者) 1인이 향합(香盥)을 받들고 1인이 향로(香爐)를 받들면, 헌관(獻官)이 삼상향(三上香)하고, 집사자(執事者)가 향로(香爐)를 신위(神位) 앞에 전(奠)드린다. 대축(大祝)이 옥폐(玉幣)를 받들어 헌관(獻官)에게 주면 헌관(獻官)이 이를 대축(大祝)에게 주어 신위(神位) 앞에 전(奠)드린다. 알자(謁者)가 찬(贊)하기를, ‘부복(俯伏)·흥(興)·평신(平身)하라.’ 하면 헌관(獻官)이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다음에 황지기(皇地祇)에 나아가고, 다음에 배위(配位)한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상향(上香)하고 옥폐(玉幣)를 전(奠)드리되, 아울러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대명(大明) 이하도 이와 같다. 이를 끝마치면 알자(謁者)가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남쪽 계단으로 내려와 자리에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찬자(贊者)가 ‘작헌례(爵獻禮)를 행(行)하라.’ 하면 알자(謁者)가 헌관(獻官)을

一人奉香爐，獻官三上香，執事者奠爐于神位前。大祝奉玉幣授獻官，獻官以授大祝，奠于神位前。謁者贊“俯伏、興、平身”，獻官俯伏、興、平身。次詣皇地祇，次詣配位神位前，上香奠玉幣竝如上儀。大明以下倣此訖。謁者引獻官降自午陛復位。少頃贊者曰“行爵獻禮”，謁者引獻官升自午陛，詣上帝尊所北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獻官詣上帝神位前北向立。謁者贊“跪”，獻官跪。執事以爵授獻官，獻官授執事，奠于神位前。謁者贊“俯伏、興、平身”，獻官俯伏、興、平身，以下竝如上儀。訖，謁者引獻官還詣上帝神位前北向跪。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訖，謁者贊“俯伏、興、平身”，獻官俯伏、興、平身，以下如上儀。訖，謁者引獻官復位。贊者曰，“四拜”，獻官四拜訖，贊者曰“撤籩豆”，大祝入撤籩、豆，贊者曰“望燎瘞”，謁者引獻官詣望燎位。大祝詣上帝及諸位前，以篚取幣，祝史以俎載牲肉，黍稷飯及爵酒，各由其陛降詣〔燎〕壇，以幣饌物置於燎柴。贊者

인도하여 남쪽 계단으로 올라와 상제(上帝)의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선다. 집준자(執尊者)가 먹(羶)을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執事者)가 작(爵)으로써 술을 받고, 알자(謁者)가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상제(上帝)의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선다. 알자(謁者)가 찬(贊)하기를, ‘궤(跪)하라.’ 하면 헌관(獻官)이 꿇어앉는다. 집사(執事)가 작(爵)을 헌관(獻官)에게 주면 헌관(獻官)이 집사(執事)에게 주어서 신위(神位) 앞에 전(奠)드리게 한다. 알자(謁者)가 찬(贊)하기를, ‘부복(俯伏)·흥(興)·평신(平身)하라.’ 하면 헌관(獻官)이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그 이하는 아울러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끝나치면, 알자(謁者)가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상제(上帝)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대축(大祝)이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祝文) 읽기를 끝나치고, 알자(謁者)가 찬(贊)하기를, ‘부복(俯伏)·흥(興)·평신(平身)하라.’ 하면 헌관이 엎드렸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그 이하는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끝나치면 알자(謁者)가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자리로 돌아간다. 찬자(贊者)가 ‘사배(四拜)하라.’ 하면 헌관(獻官)이 4번 절한다. 이를 끝나치고 찬자(贊者)가 ‘변(籩)·두(豆)를 거두라.’ 하면 대축(大祝)이 들어와 변(籩)·두(豆)를 거두어 치운다. 찬자(贊者)가 ‘망료예(望燎瘞)하라.’ 하면 알자(謁者)가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망료위(望燎位)에 나아가고, 대축(大祝)이 상제(上帝)와 여러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비(篚)를 가지고 폐백(幣帛)을 취하고, 축사(祝史)는 조(俎)를 가지고 희생의 고기를 담으며, 서직반(黍稷飯)과 작주(爵酒)는 각각 그 계단을 지나서 가지고 내려가 요단(燎壇)에 나아가고, 폐백(幣帛)·찬물(饌物)을 요단(燎壇)의 시목(柴木)에 둔다. 찬자(贊者)가 ‘태위도 가(可)하다.’ 하면 동면(東面)·서면(西面)의 2인이 햇불로써 시목(柴木)을 반(半)쯤 불태우는데 전사관(典祀官) 단사(壇司)가 감시(監視)하고, 다음에 망예위(望瘞位)에 나아간다. 대축(大祝)이 황지기(皇地祇)·해(海)·악(嶽)의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비(篚)를 가지고 폐백(幣

曰 “可(瘞) [瘞] ”, 東西面各二人以炬火燎半柴, 典祀官壇司監視, 次詣望瘞位。大祝詣皇地祇海嶽神位前, 以篚取幣, 祝史以俎載牲肉, 黍稷飯及爵酒, 降置於坎。贊者曰 “可瘞”, 置土半坎。謁者詣獻官之左, 白 “禮畢”, 遂引獻官出。贊者還本位, 謁者引監察及諸執事就壇南拜位。贊者曰 “四拜”, 監察及諸執事皆四拜訖。謁者以次引出, 謁者、贊者就壇南拜位, 四拜而出。典祀官、壇司帥其屬藏神位版, 撤禮饌以降乃退。

	<p>帛)을 취하고 축사(祝史)는 조(俎)를 가지고 희생의 고기를 담으며, 서식반(黍稷飯)과 작주(爵酒)를 가지고 내려가 구덩이에 놓는다. 찬자(贊者)가 ‘묻어도 가(可)하다.’ 하면 흙으로 구덩이의 반을 메운다. 알자(謁者)가 헌관(獻官)의 왼쪽에 나아가서 ‘예가 끝났다.’고 아뢰고 드디어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나간다. 찬자(贊者)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알자(謁者)가 감찰(監察)과 여러 집사(執事)를 거느리고 단(壇)의 남쪽 배위(拜位)에 나아간다. 찬자(贊者)가 ‘사배(四拜)하라.’ 하면 감찰과 여러 집사가 모두 4번 절한다. 이를 끝마치면 알자(謁者)가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가고, 알자(謁者)·찬자(贊者)가 단(壇) 남쪽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4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典祀官) 단사(壇司)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신위판(神位版)을 갈무리하고 예찬(禮饌)을 걷어 치우고서 내려와 물러간다.”</p>	
<p>세조 14권, 4년(1458 무인 / 명 천순(天順) 2년) 9월 19일(계묘) 6번째기사 함길도·평안도·강원도 관찰사에게 진헌할 물건을 정조사 행차에 맞춰 올리게 하다</p>	<p>승정원(承政院)에서 교지를 받들어 함길도 관찰사에게 치서(馳書)하기를, “진헌(進獻)할 문어(文魚) 2백 마리와 녹포(鹿脯) 2백 정(脛), 달구(韃狗) 10구(口)를 정조사(正朝使)의 행차가 이르기를 기다려 평안도로 보내라.” 하고, 또 평안도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녹포(鹿脯) 2백 정과 달구(韃狗) 10구를 정조사(正朝使)에게 택(擇)하여 주라.” 하고, 또 강원도 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문어 20마리와 녹포 2백 정, 달구 10구를 정조사의 행차가 이르기를 기다려 올려 보내라.” 하였다.</p>	<p>承政院奉旨馳書咸吉道觀察使曰：“進獻文魚二百尾、鹿脯二百脛、韃狗十口，須及正朝使之行，送于平安道。” 又馳書平安道觀察使曰：“鹿脯二百脛、韃狗十口，擇付正朝使。” 又馳書江原道觀察使曰：“文魚二十尾、鹿脯二百脛、韃狗十口，須及正朝使之行上送。”</p>
<p>世祖 15卷, 5年(1459 己卯 / 명 천순(天順) 3年) 1月 27日(庚戌) 2번째기사 풍양궁에 부역하는 군</p>	<p>이 날 천기(天氣)가 춥고 또 비가 오니, 임금이 풍양궁(豐壤宮)에 부역(赴役)하는 군졸(軍卒)들이 추위에 얼고 비에 젖을까 염려하여 주서(注書)를 보내어 술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먹이게 하였다.</p>	<p>是日天寒且雨，上慮豐壤宮赴役軍卒凍濕，遣注書齎酒饋之。</p>

<p>졸에게 술을 내리다</p>	<p>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전균(田詢)에게 명하여, 육포(肉脯)·건어(乾魚)·해채(海菜)·송자(松子)·청밀(靑密) 등의 물건을 가지고 가서 명(明)나라 사신(使臣)에게 나누어 주니 진가유(陳嘉猷)는 받지 아니하였으나 왕월(王軌)은 받았다. 진가유와 왕월이 한강(漢江)을 유람하니, 관반(館伴)3422) 인 박원형(朴元亨)·조효문(曹孝門)과 우찬성(右贊成) 권남(權擘)·예조 판서(禮曹判書) 홍윤성(洪允成)·행 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樞院事) 김수온(金守溫)이 따라서 갔다.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윤자운(尹子雲)과 좌부승지(左副承旨) 이극감(李克堪)에게 명하여 선은(宣醞)을 가지고 가서 명(明)나라 사신을 위로하게 하였다. 제천정(濟川亭)에 올라서 <현관의> 제영(題詠)3423) 을 두루 살펴보고는 여러 재상(宰相)들과 더불어 다례(茶禮)를 행하고 배를 타고 물 위에 띄웠다. 도감(都監)에서 잔치를 베풀고 사옹방(司饗房)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바지하니 명(明)나라 사신이 매우 즐거워하였다. 강물을 따라 내려와서 용산강(龍山江)에 이르니 윤자운(尹子雲) 등이 또 별선은(別宣醞)3424) 과 찢 양·돼지·기러기·오리를 공궤하였다. 가을두봉(加乙頭峯)에 이르러 잔치를 베풀었는데, 관중추원사(判中樞院事) 홍달손(洪達孫)이 명령을 받들어 선은(宣醞)과 별하정(別下程)3425) 을 가지고 와서 명(明)나라 사신을 위로하면서 서로 더불어 술을 마시며 즐기고는 과하였다. 진가유(陳嘉猷)가 묻기를, “누가 김수온(金守溫) 재상입니까?” 하니, 좌우(左右)에서 <김수온을> 가리켰는데, 평소부터 김수온이 시(詩)를 잘 짓는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다.</p>	<p>命判內侍府事田詢齎脯、鱸、海菜、松子、靑蜜等物，分贈明使，嘉猷不受，軌受之。嘉猷及軌遊觀漢江，館伴朴元亨·曹孝門及右贊成權擘、禮曹判書洪允成、行僉知中樞院事金守溫隨行。命都承旨尹子雲、左副承旨李克堪齎宣醞往慰明使。登濟川亭，徧觀題詠，與諸宰相行茶禮，乘舟泛流。都監設宴，司饗房網魚供之，明使歡甚。沿流而下至龍山江，子雲等又餽別宣醞及蒸羊、猪、雁、鴨。至加乙頭峯設宴，判中樞院事洪達孫又承命齎宣醞及別下程，來慰明使，相與飲權而罷。嘉猷問：“誰是金守溫宰相？”左右指之，以素聞守溫能詩也。</p>
<p>세조 16권, 5년(1459) 기묘 / 명 천순(天順) 3년) 4월 12일(계해) 1번째기사</p>	<p>임금이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전균(田詢)에게 명하여 녹비(鹿皮)·녹미(鹿尾)·육포(肉脯)·건어(乾魚)·건균(乾菌)3430) ·호도(胡桃)·복어젓[鰻魚鮓]·은구어젓[銀口魚鮓]·해의(海衣)3431) ·감태(甘苔) 등의 물품을 가지고 명(明)나라 사신에게 주게 하니 진가유(陳嘉猷)는 받지 않았으나, 왕월(王軌)은 이를 받았다.</p>	<p>癸亥/命判內侍府事田詢齎鹿(及) [皮] 鹿尾、脯、鱸、乾菌、胡桃、鰻魚鮓、銀口魚鮓、海衣、甘苔等物贈明使，嘉猷不受，軌受之。贈頭目</p>

<p>관내시부사 전군에게 명나라 사신에게 선물을 내릴 것을 명하다</p>	<p>두목(頭目)에게 육포(肉脯)·건어(乾魚)·어자(魚鮓)3432) 등의 물품을 주니 두목(頭目)이 감히 마음대로 받지 못하므로 김자안(金子安)으로 하여금 진가유(陳嘉猷)에게 알리니, 진가유가 승락하지 않다가 한참 후에 말하기를, “다만 몇 가지 물품은 받는 것이 가(可)하다.” 하였다.</p>	<p>脯、鱸、魚鮓等物，頭目不敢擅受，令金子安告于嘉猷，不諾，良久曰：“可。只受數物。”</p>
<p>세조 16권, 5년(1459 기묘 / 명 천순(天順) 3년) 5월 18일(기해) 2번째기사 성균 생원 최자빈 등이 겸사성 김구를 환직시킬 것을 청하다</p>	<p>어서(御書)로 답하기를, “봉조청(奉朝請)은 버려 폐(廢)하는 바가 아니며 번갈아 봉조청(奉朝請)이 되는 것은 마지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비록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너희들의 의사(意思)를 보건대, 바로 나의 마음에 합하므로 칭찬하여 마지않는다. 후일에 마땅히 고쳐서 제수할 것이다. 특별히 술과 안주를 내려 주니 모여서 한번 즐기라.” 하고는, 이내 술 50병, 마른 노루와 사슴 각 10구(口), 건어(乾魚) 50미(尾)를 내려 주었다.</p>	<p>(전략)御書答之曰：“〔奉〕朝請，非棄替之處，迭爲朝請，出不得已。雖然今看子等之意，實合予心，嘉賞不已，後當改授。特賜酒榖，可會一歡。”仍賜酒五十瓶、乾獐·鹿各十口、乾魚五十尾。</p>
<p>세조 17권, 5년(1459 기묘 / 명 천순(天順) 3년) 7월 11일(경인) 1번째기사 장마가 심하니 수라상의 음식을 줄이라고 승정원에 명하다</p>	<p>어서(御書)로 승정원(承政院)에 내리기를, “장맛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 내가 매우 염려하고 있다. 그 일로 수라상(水刺床)의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음악을 중지하게 하라.” 하였다.</p>	<p>庚寅/御書下承政院曰：“霖雨過多，予甚軫慮。其令減膳徹樂。”</p>
<p>세조 18권, 5년(1459 기묘 / 명 천순(天順) 3년) 10월 15일(계해) 1번째기사 풍양 이궁에 이르러</p>	<p>어가(御駕)가 풍양(豐壤)의 이궁(離宮)에 이르러, 관사(館舍)에 머물고 있는 왜인(倭人)에게 돼지 1구(口), 술 10병을, 야인(野人)에게는 돼지·사슴 각 1구(口)와 술 20병을 내려 주었다. 또 좌상 대장(左廂大將)·우상 대장(右廂大將)에게 술과 고기를 내려 주었다.</p>	<p>癸亥/駕至豐壤離宮，賜留館倭人猪一口·酒十瓶、野人猪鹿各一口·酒二十瓶。又賜左右廂大將酒肉。</p>

<p>왜인·야인·좌상 대장· 우상 대장 등에게 술 과 고기를 내리다</p>		
<p>세조 18권, 5년(1459 기묘 / 명 천순(天順) 3년) 11월 5일(계미) 4번째기사 양정에게 울적합과 화 해할 때 공이 있는 사 람에 포상하도록 유시 하다</p>	<p>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양정(楊汀)에게 유시(諭示)하기를, “노략질해 갔던 울적합(兀狄哈)이 돌려준 사람 가운데 1등은 쌀 3석(石), 소 금 2석(石), 대구어(大口魚) 50마리를 2등은 쌀 2석(石), 소금 1석(石), 대구 어(大口魚) 40마리를, 3등은 쌀 1석(石), 소금 10두(斗), 대구어(大口魚) 30마 리를, 화해(和解)할 때 내왕하면서 공로가 있는 사람 가운데 1등은 쌀 3석 (石), 소금 2석(石), 대구어(大口魚) 50마리를, 2등은 쌀 2석(石), 소금 1석 (石), 대구어(大口魚) 40마리를, 3등은 쌀 1석(石), 소금 10두(斗), 대구어(大 口魚) 30마리를, 울적합(兀狄哈)의 처소에 내왕한 김마상개(金麻尙介) 등 여 러 사람 가운데 두 번 내왕한 사람은 쌀 3석(石), 소금 2석(石), 대구어(大口 魚) 50마리를, 한 번 내왕한 사람은 쌀 2석(石), 소금 1석(石), 대구어(大口 魚) 40마리를, 김모지리(金毛知里)가 쇄환(刷還)한 사람 가운데 1등은 쌀 3석 (石), 소금 2석(石), 대구어(大口魚) 50마리를, 2등은 쌀 2석(石), 소금 1석 (石), 대구어(大口魚) 40마리를, 3등은 쌀 1석(石), 소금 10두(斗), 대구어(大 口魚) 30마리를 상지(上旨)를 유시하고 주도록 하라.” 하였다.</p>	<p>諭咸吉道都節制使楊汀曰：“擄掠兀狄 哈還給人內，一等，米三石、鹽二石、 大口魚五十尾；二等，米二石、鹽一 石、大口魚四十尾；三等，米一石、鹽 十斗、大口魚三十尾，和解時來往有勞 人內，一等，米三石、鹽二石、大口魚 五十尾，二等，米二石、鹽一石、大口 魚四十尾；三等，米一石、鹽十斗、大 口魚三十尾，兀狄哈處來往金麻尙介等 諸人內，二度來往者，米三石、鹽二 石、大口魚五十尾；一度來往者，米二 石、鹽一石、大口魚四十尾，金毛知里 刷還人內，一等，米三石、鹽二石、大 口魚五十尾；二等，米二石、鹽一石、 大口魚四十尾；三等，米一石、鹽十 斗、大口魚三十尾，諭以上旨給之。”</p>
<p>世祖 19卷, 6年(1460 庚辰 / 명 천순(天順) 4年) 1月 16日(甲午) 1번째기사 사정전에서 음복연을 베풀다</p>	<p>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음복연(飲福宴)3980) 을 베푸니, 종친(宗親)·의정 부(議政府)·육조 참의(六曹參議) 이상 승지(承旨)와 여러 헌관(獻官)·집사(執 事)·야인(野人)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야인(野人) 김벌대(金伐大)·낭누시합(浪 婁時哈) 등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여러 야인(野人)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비록 각각 술을 올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잔을 마시면 너희들 의 술을 고루 마시는 셈이다.”</p>	<p>甲午/御思政殿設飲福宴。宗親、議 政府、六曹參議以上、承旨及諸獻 官、執事、野人等入侍。命野人金伐 大、浪婁時哈等進酒，謂諸野人曰： “爾等雖不各進酒，飲此則均飲爾等酒 也。”親割所御西瓜，賜左右別雲劍韓</p>

	<p>하고, 친히 먹던 수박[西瓜]을 나누어 좌우의 별운검(別雲劍) 한명회(韓明澮)·구치관(具致寬) 등에게 내려 주고, 큰 고기를 좌우의 재추(宰樞)와 야인(野人)들에게 나누어 주었다</p>	<p>明澮、具致寬等，分賜大肉于左右宰樞及野人。</p>
<p>세조 19권, 6년(1460) 경진 / 명 천순(天順) 4년) 1월 27일(을사) 2번째기사 호조에 전지하여 군자창의 곡식으로 홀민 구휼을 명하다</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서울 군자창(軍資倉)의 묵은 쌀[陳米] 7천 석(石)을 경기(京畿)에, 5천 석(石)을 강원도(江原道)에 주고, 또 경상도(慶尙道)의 쌀·콩 2천 석(石)과 함길도(咸吉道)의 쌀·콩 5천 석(石)을 강원도에 옮겨 주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진휼(賑恤)하라.” 하였다.</p>	<p>傳旨戶曹曰：“給京軍資陳米七千石于京畿、五千石于江原道。又移慶尙道米豆二千石、咸吉道米豆五千石于江原道，以賑飢荒。”</p>
<p>세조 19권, 6년(1460) 경진 / 명 천순(天順) 4년) 3월 9일(병술) 1번째기사 태평관에서 전별연을 열고 장녕에게 후일에 도움을 줄 것을 부탁하다</p>	<p>임금이 태평관(太平館)에 거둥하여 전별연(餞別宴)을 베풀었다. 임금이 술을 돌리면서 명(明)나라 사신에게 이르기를, “두 대인(大人)이 전에 말하기를, ‘병이 나았으니, 마땅히 마시겠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이미 몸이 회복되었고, 또 내일 아침에 이별하게 되었으니, 청컨대 사양하지 마시고 실컷 마십시오.” 하니, 두 사신이 모두 말하기를, “명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장녕(張寧)에게 이르기를, “전일에 자제(子弟)를 보내어 입학(入學)한다는 한 절목(節目)은 십분 기쁘고 다행한 일인데, 뒤에 주문(奏聞)할 때를 당하거든 대인(大人)의 관직(官職)이 예과(禮科)에 있으니, 모름지기 잘 도모(圖謀)하여 주시오.” 하니, 장녕이 대답하기를,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는 것은 중국 조정(朝廷)에 달려 있으나, 그 사이에서 감히 뜻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주문(奏聞)하시거든 소인(小人)에게도 마땅히 알려 주십시오.” 하였다. 임영 대군(臨瀆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계양</p>	<p>丙戌/上幸太平館設餞宴。上行酒，謂明使曰：“兩大人前言疾愈當飲，今既平善，且明早當別，請勿辭酌。”兩使皆曰：“惟命。”上謂張寧曰：“前日遣子弟入學一節，十分喜幸，後當奏聞，大人職在禮科，須善圖之。”寧答曰：“準、不準在朝廷，不敢用意於其間。若奏聞，小人當知道。”臨瀆大君璆、永膺大君琰、桂陽君增、翼現君璉、館伴朴元亨等以次行酒。酒酣，上謂明使曰：“我之忠誠貫白日，兩大人回還，帝若有問，備悉以奏。”寧答曰：“天子若問，何敢不奏？”又以抄書太宗文皇帝、今上皇帝正統年間處置野人勅書與之。寧看訖，喜謝云：“今見勅書，益見端的，更復何疑？”宴將</p>

	<p>군(桂陽君) 이증(李增)·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璉)·관반(館伴) 박원형(朴元亨) 등이 차례로 술을 돌렸는데,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임금이 명(明)나라 사신에게 이르기를,</p> <p>“나의 충성(忠誠)은 백일(白日)을 꿰뚫을 정도이니, 두 대인(大人)이 돌아가서 황제(皇帝)가 만약 물으시거든 자세하게 주달(奏達)하여 주시오.”</p> <p>하니, 장녕이 대답하기를,</p> <p>“천자(天子)께서 만약 물으신다면 어찌 감히 주달(奏達)하지 않겠습니까?”</p> <p>하였다. 또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4104) 와 금상 황제(今上皇帝)4105) 의 정통 연간(正統年間)4106) 의 야인(野人)의 일을 처치(處置)하는 데 대한 칙서(勅書)를 초(抄)하여 주니, 장녕이 읽어보기를 끝내고 기뻐하여 사례(謝禮)하기를,</p> <p>“지금 칙서(勅書)를 보니, 더욱 단적(端的)인 사실을 알겠는데,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p> <p>하였다. 연회가 파(罷)하려 하자, 임금이 옥배(玉杯)에 술을 따라 장녕에게 권하고 말하기를,</p> <p>“오늘 이별에 임하여 반드시 모름지기 흠뻑 즐겁시다. 내일 아침 이별한 뒤에는 쓸데없이 서로 생각할 뿐이니, 청컨대 대인(大人)은 사양할 필요가 없이 마시도록 하오.”</p> <p>하니, 장녕이 대답하기를,</p> <p>“옛날에 이르기를, ‘모습도 잊어버리고 그대를 서러워하니, 실컷 술이나 마시는 것이 참으로 나의 스승이로다.’ 하였는데, 지금 이미 실컷 마시고 너무 취하였습니다.”</p> <p>하고, 마시기를 끝냈다. 임금이 또 한 잔을 주니, 장녕이 사양하면서 이르기를,</p> <p>“세 잔이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 하물며 감히 여러 잔을 하겠습니까? 또</p>	<p>罷，上酌玉杯屬寧曰：“今日臨別，必須歡洽。明早別後，徒費相思而已，請大人不要辭飲。”寧答曰：“古云，‘忘形到爾汝，痛飲真吾師。’今已痛飲盡醉矣。”飲訖，上又進一杯，寧辭云：“三爵不識，矧敢多？又不敢再飲。”辭謝，上再勸，寧飲畢，宴罷。寧等送于中門外。駕還路上，謂璆、增及兵曹判書韓明澮等曰：“京獄繫囚強盜外欲赦之。”還宮，即傳旨刑曹曰：“奸盜外徒以下罪囚，悉皆原免。”</p>
--	--	---

	<p>감히 다시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양하였다. 임금이 다시 장녕에게 권하여 마시기를 끝내고 연회를 파하였다. 장녕 등이 중문(中門) 밖까지 배웅하였다. 어가(御駕)가 돌아오다가 노상(路上)에서 이구(李璆)·이증(李增)과 병조 판서(兵曹判書) 한명회(韓明澮) 등에게 이르기를, “경옥(京獄)에 갇힌 죄수 가운데 강도(強盜) 이외에는 사면(赦免)하고자 한다.” 하고, 환궁(還宮)하여 즉시 형조(刑曹)에 전지(傳旨)하기를, “간사한 도적 이외에 도형(徒刑) 이하의 죄수는 모두 다 사면하도록 하라.” 하였다.</p>	
<p>世祖 19卷, 6年(1460 庚辰 / 명 천순(天順) 4年) 3月 12日(己丑) 1번째기사 공처에서 술을 쓰는 것을 금지하다</p>	<p>공처(公處)에서 술을 쓰는 것을 금지하였다.</p>	<p>己丑/禁公處用酒。</p>
<p>세조 19권, 6년(1460 경진 / 명 천순(天順) 4년) 3월 12일(기축) 2번째기사 예조에 전지하여 천신 제향과 삭망 진상 이외의 별진상을 금하게 하다</p>	<p>예조(禮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지금 명(明)나라 사신이 왔기 때문에 백성들이 매우 피폐(疲弊)하고, 또 농사일이 바야흐로 시작되는 때를 당하여 파종(播種)이 가장 급하니, 천신 제향(薦新祭享)과 삭망 진상(朔望進上) 이외에 별진상(別進上)4133) 하지 말라.” 하였다.</p>	<p>傳旨禮曹曰：“今因明使之來，民甚疲弊，又當農務方作，播種最急，薦新祭享及朔望進上外，毋得別進。”</p>
<p>世祖 20卷, 6年(1460 庚辰 / 명 천순(天順)</p>	<p>동뢰연(同牢宴)4219) 을 행하였는데, 그 의식은 이러하였다. “그날 내관(內官)이 먼저 궁내(宮內)에 왕세자(王世子)의 좌석(座席)을 동쪽에</p>	<p>行同牢宴。其儀： 其日，內官先于宮內設王世子座于東，</p>

<p>4年) 4月 18日(甲子) 5번째기사 동퇴연의 의식을 기록하다</p>	<p>서향하여 설치하고, 빈씨(嬪氏)의 좌석을 서쪽에 동향(東向)하여 설치하고, 각각 좌석(座席)의 남쪽에 배위(拜位)를 설치하고, 주안(酒案)을 한가운데 조금 남쪽으로 설치하고, 두 잔(盞)과 두 근(罇)4220) 을 안(案) 위에 둔다. 왕세자(王世子)가 들어와서 궁문(宮門) 밖에 이르면 궁관(宮官) 이하의 장위(仗衛)가 모두 물러난다. 빈씨(嬪氏)가 사정전(思政殿) 문밖에 이르러 교자(轎子)에서 내린다. 【장위(仗衛)는 문밖에서 머무른다. 궁인(宮人)이 앞뒤에서 촛불[火蜀]을 잡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찬인(贊引) 1인이 왕세자(王世子)를 인도하여 앞서 오르고 1인이 빈씨(嬪氏)를 인도하여 뒤따라 오른다. 배위(拜位)에 나아가기를 찬청(贊請)하고, ‘재배(再拜)하라.’고 찬하면, 왕세자가 빈씨(嬪氏)가 두 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좌석에 오르기를 찬청한다. 집사자(執事者)가 찬안(饌案)을 들어 왕세자(王世子)와 빈씨(嬪氏) 앞에 드리고, 여관(女官)이 금잔(金盞)을 잡아 술을 따라서 드리고, 다음에 찬(饌)을 드린다. 재차 금잔(金盞)으로 술을 드리고 또 찬(饌)을 드리며, 재차 근잔(罇盞)으로 술을 따르고 합(合)하여 타서 바치면 왕세자(王世子)와 빈씨(嬪氏)가 모두 마신다. 이를 마치면 또 찬(饌)을 드리는데, 모두 세 차례 술과 잔(盞)을 들기를 끝마친다. 집사(執事)가 찬안(饌案)을 거두고, 왕세자(王世子)와 빈씨(嬪氏)가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두 번 절한다. 예(禮)를 끝마치면 왕세자(王世子)의 종자(從子)가 빈씨(嬪氏)의 찬(饌)에 남은 것을 싸고 빈씨(嬪氏)의 종자(從者)가 왕세자(王世子)의 찬(饌)에 남은 것을 싣는다.】 ”</p>	<p>西向; 嬪座于西, 東向; 各設拜位于座之南。 設酒案于正中稍南, 置兩盞、兩罇于案上。 王世子入至宮門外, 宮官以下及仗衛皆退。 嬪至思政殿門外降轎。 【仗衛停於門外。】 宮人前後執燭如常。 贊引一人導王世子前陞, 一人導嬪後陞。 贊請就拜位, 贊 “再拜”, 王世子與嬪再拜。 訖, 贊請 “陞座。” 執事者舉饌案進于王世子及嬪前, 女官取金盞, 酌酒以進, 次進饌。 再以金盞進酒, 又進饌。 再以罇盞酌酒合和以進, 王世子與嬪皆飲, 訖, 又進饌, 凡三舉酒饌畢, 執事徹饌案。 王世子與嬪就拜位, 贊 “再拜”, 禮畢, 王世子從者餽嬪之饌, 嬪從者餽世子之饌。</p>
<p>세조 20권, 6년(1460) 경진 / 명 천순(天順) 4년) 4월 19일(을축) 1번째기사 왕세자빈이 조현례를 행하다</p>	<p>왕세자빈(王世子嬪)이 조현례(朝見禮)4221) 를 행하였는데, 그 의식은 이러하였다. “제2일에 궁인(宮人)이 어좌(御座)와 중궁좌(中宮座)를 내전(內殿)의 북벽(北壁)에 설치한다. 왕세자(王世子)가 면복(冕服)을 입고, 빈씨(嬪氏)는 예복(禮服)을 입는데, 찬인(贊引)이 각각 출궁(出宮)하기를 계청(啓請)하고, 궁내(宮內) 문밖에 이르러 기다린다. 전하(殿下)가 원유관(遠遊冠)과 강사포(絳紗袍)</p>	<p>乙丑/王世子嬪行朝見禮。 其儀: 第二日, 宮人設御座、中宮座於內殿北壁。 王世子具冕服, 嬪服禮服, 贊引各啓請出宮, 至宮內門外俟。 殿下具遠遊冠、絳紗袍, 中宮服禮服, 陞座, 贊引引王世子及嬪, 自東門入, 王世子</p>

	<p>를 갖추고, 중궁(中宮)에 예복(禮服)을 입고 자리에 오르면, 찬인(贊引)이 왕세자(王世子)와 빈씨(嬪氏)를 인도하여 동문(東門)에서 들어오는데, 왕세자가 먼저 들어오고 빈씨(嬪氏)가 이를 따른다. 찬인(贊引)이 ‘전하(殿下)의 앞으로 나아가라.’고 찬한다. 왕세자(王世子)는 동쪽에 있고 빈씨(嬪氏)는 서쪽에 있고 궁인(宮人)이 조율(棗栗)을 담은 쟁반을 가지고 빈씨(嬪氏)의 오른쪽에 서면, ‘왕세자(王世子)와 빈씨(嬪氏)는 모두 사배(四拜)하라.’고 찬한다. 집사자(執事者) 2인이 안(案)을 들고 전하(殿下)의 앞에 이르고 궁인(宮人)이 조율(棗栗)을 담은 쟁반을 가지고 빈씨(嬪氏)에게 주면, 빈씨(嬪氏)가 조율을 담은 쟁반을 받들어 안(案) 위에 둔다. 집사자(執事者)가 안(案)을 들고, 빈씨(嬪氏)가 뒤따라 받들어 나아가되, 전하(殿下) 앞에서 정지하고 빈씨(嬪氏)가 자리로 돌아간다. 찬례(贊禮)가 ‘왕세자(王世子)와 빈씨(嬪氏)는 모두 사배(四拜)하고 일어나라.’고 찬한다. 찬인(贊引)이 왕세자(王世子)와 빈씨(嬪氏)를 인도하여 중궁(中宮) 앞에 나아간다. 궁인(宮人)이 단수(殿脩)4222) 를 담은 쟁반을 가지고 빈씨(嬪氏)의 왼쪽에 서면 왕세자(王世子)와 빈씨(嬪氏)가 모두 네 번 절하고 일어난다. 집사자(執事者) 2인이 안(案)을 들고 중궁(中宮) 앞에 이르러 단수(殿脩)를 담은 쟁반을 빈씨(嬪氏)에게 주면, 빈씨는 단수를 담은 쟁반을 받들어 안(案) 위에 둔다. 집사자(執事者)가 안(案)을 받들고 빈씨(嬪氏)가 뒤따라 받들어 나아가되, 중궁(中宮) 앞에 이르러 빈씨(嬪氏)가 자리로 돌아간다. ‘사배(四拜)하라.’고 찬하면, 왕세자(王世子)와 빈씨(嬪氏)가 모두 네 번 절한다. 집사자(執事者)가 전하(殿下) 앞의 조율(棗栗)을 담은 쟁반을 안(案)의 동쪽에 거두고 중궁(中宮) 앞의 단수(殿脩)를 담은 쟁반을 서쪽에 거둔다. ‘예(禮)가 끝났다.’고 찬하면, 찬인(贊引)이 왕세자(王世子)와 빈씨(嬪氏)를 인도하여 나간다.”</p> <p>이날 왕세자(王世子)와 빈씨(嬪氏)에게 잔치를 내려 주었다.</p>	<p>先入，嬪從之。贊引贊“詣殿下前”，王世子在東，嬪在西，宮人以棗栗盤立于嬪之右，贊“王世子與嬪皆四拜。”執事者二人舉案至殿下前，宮人以棗栗盤授嬪，嬪捧棗栗盤置于案上。執事者舉案，嬪隨捧進，止殿下前，嬪復位。贊禮贊“王世子與嬪皆四拜興。”贊引引王世子及嬪詣中宮前。宮人以殿脩盤立于嬪左，王世子與嬪皆四拜興。執事者二人舉案至中宮前，以殿脩盤授嬪，嬪捧殿脩盤置于案上。執事者舉案，嬪隨舉進至中宮前，嬪復位。贊“四拜”，王世子與嬪皆四拜。執事者以殿下前棗栗盤案撤于東，中宮前殿脩盤撤于西。贊“禮畢”，贊引引王世子及嬪出。</p> <p>是日，賜王世子與嬪宴。</p>
<p>世祖 20卷, 6年(1460)</p>	<p>예조(禮曹)에 전지(傳旨)하기를,</p>	<p>傳旨禮曹曰：“今月二十日文昭殿及大</p>

<p>庚辰 / 명 천순(天順) 4年) 5月 19日(甲午) 2번째기사 예조에 문소전과 대소 제향에 사신을 접대하는 이외에는 술을 바치지 못하게 하다</p>	<p>“이달 20일에 문소전(文昭殿)과 대소 제향(大小祭享)에 이웃 나라의 사신(使臣)을 접대(接待)하는 이외에는 여러 궁전(宮殿)에 술을 바치지 말라.” 하였다.</p>	<p>小祭享，隣國使客接待外，諸宮殿勿進酒。”</p>
<p>世祖 21卷, 6年(1460) 庚辰 / 명 천순(天順) 4年) 7月 26日(庚子) 1번째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p>	<p>(전략)성균관(成均館)에 술 1백 50병(瓶), 산돼지[生豬] 2마리, 말린 노루[乾獐] 3마리, 대구어(大口魚) 40미(尾), 준치[眞魚] 50미(尾)를 내려 주고, 우승지(右承旨) 성임(成任)에게 명하여 어제시(御製詩)와 여러 신하들의 화답(和答)한 시(詩)를 가지고 가서 성균관 학관(成均館學官)과 유생(儒生)들에게 보여 주게 하였다. 명하여 전 겸사성(兼司成) 김말(金末)·김신민(金新民) 등을 불러 가서 잔치에 나아가게 하였다.</p>	<p>(전략) 賜成均館酒一百五十瓶、生豬二口、乾獐三口、大口魚四十尾、眞魚五十尾，命右承旨成任齎御製詩及諸臣和詩，往示成均館學官及儒生。命召前兼司成金末、金新民等往赴宴。</p>
<p>世祖 21卷, 6年(1460) 庚辰 / 명 천순(天順) 4年) 8月 12日(乙卯) 3번째기사 석전제와 독제의 음복주에 쓸 쌀을 모두 7석으로 하도록 법식으로 정하다</p>	<p>상정소(詳定所)에서 호조(戶曹)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문선왕 석전제(文宣王釋奠祭)4525) 의 음복주(飲福酒)4526) 에 쓸 쌀은 5석(石) 5두(斗)이나 독제(蠶祭)4527) 의 음복주(飲福酒)에 쓸 쌀은 7석(石)입니다. 지금부터 석전제(釋奠祭)와 독제(蠶祭)의 음복주(飲福酒)에 쓸 쌀을 모두 7석(石)으로 하도록 법식(法式)으로 정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詳定所據戶曹關啓：“文宣王釋奠祭飲福酒米五石五斗，而蠶祭飲福酒米則七石。自今釋奠祭及蠶祭飲福酒米，竝以七石定式。”從之。</p>
<p>세조 21권, 6년(1460) 경진 / 명 천순(天順) 4년) 9월 5일(무인) 3번째기사 도둑이 어주의 은기를</p>	<p>도둑이 어주(御廚)4601) 의 은기(銀器)를 훔쳤으므로, 명하여 도성문(都城門)을 닫고 수색하게 하였다.</p>	<p>盜竊御廚銀器，命閉都城門索之。</p>

훔쳐 수색하게 하다	<p>친제의(親祭儀)는 이리하였다.</p> <p>“기일(期日) 전 1일에 유사(攸司)에서 전(殿)의 안팎을 소제하고 찬만(饌幔)을 동문 밖에 설치한다. 충扈위(忠扈衛)가 대차(大次)를 전(殿) 동문 밖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왕세자(王世子)의 악차[次]를 대차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는데, 모두 땅의 형편에 따른다. 제향(祭享)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殿司)가 전하의 욕위(褥位)를 조선 시조(朝鮮始祖) 단군(檀君)과 고구려 시조(高句麗始祖) 동명왕(東明王)의 신위(神位)의 사이에 설치하고, 왕세자의 자리[位]를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며, 종친(宗親)과 문무 군관(文武群官)은 뜰 아래에 동서로 나누어 중심이 머리가 되게 하고 자리를 달리 하여 곁줄로써 모두 북향하게 한다. 전사(殿司)와 장찬(掌饌)이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가 제문(祭文)을 신위의 오른쪽에 올려 놓고, 【각각 점(坫)이 있다.】 제기(祭器)와 실찬구(實饌具)와 향로(香爐)·향합(香合)·촉(燭)을 신위 앞에 설치하고, 준(尊)을 지계문[戶] 밖의 왼편에 설치한다. 3각(三刻) 전에 배제(陪祭)할 종친·문무 군관이 시복(時服) 차림으로 모두 전문(殿門) 밖 위치에 나아간다. 1각(一刻) 전에 부지통례(副知通禮)가 왕세자를 인도하고, 봉례랑(奉禮郎)이 종친·문무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位]에 나아가게 한다. 찬례(贊禮)가 대차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서 외판(外辦)을 아뢰면, 전하가 익선관(翼善冠)·곤룡포(袞龍袍)를 갖추고 대차에서 나온다. 찬례가 앞에서 인도하여 동문으로 들어와 동계로 올라가서 신위 앞 욕위(褥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집례(執禮)가 ‘재배(再拜)하라.’ 하여, 찬례(贊禮)가 재배(再拜)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두 번 절한다. 통찬(通贊)이 ‘재배하라.’ 찬(贊)하면, 왕세자 이하 모든 위(位)에 있는 자가 모두 두 번 절한다. 근시(近侍) 1인은 향합을 받들고 1인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찬례가 꿇어앉아 삼상향(三上香)하기를 계청하고, 근시가 향로를 조선 시조 신위 앞에 드린다. 집준</p>	<p>親祭儀： 前一日攸司掃除殿之內外，設饌幔於東門外。忠扈衛設大次於殿東門外南向，設王世子次於大次東南西向，皆隨地之宜。享日未行事前，殿司設殿下褥位於朝鮮始祖檀君、高句麗始祖東明王神位之間，王世子位於東階東南北向，宗親、文武群官於庭下分東西，中心爲頭，異位重行俱北向。殿司及掌饌各率其屬入，奠祭文於神位之右，【各有坫。】設祭器、實饌具、香爐、香合竝燭於神位前，設尊於戶外之左。前三刻，陪祭宗親、文武群官以時服皆就殿門外位。前一刻，副知通禮引王世子，奉禮郎分引宗親、文武群官入就位。贊禮進大次前跪啓外辦，殿下具翼善冠、袞龍袍出次。贊禮前導入自東門，升自東階，詣神位前褥位北向立。執禮曰“再拜”，贊禮啓請再拜，殿下再拜。通贊贊“再拜”，王世子以下凡在位者皆再拜。近侍一人捧香合，一人奉香爐跪進，贊禮跪啓請三上香，近侍奠爐於朝鮮始祖神位前。執尊者酌酒，近侍一人以爵受酒跪進。贊禮</p>
------------	---	---

	<p>자(執尊者)가 술을 따르면 근시 1인이 작(爵)으로 술을 받아 꿇어앉아 올린다. 찬례가 집작 헌작(執爵獻爵)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집작 헌작하고 작을 근시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찬례가 부복(俯伏)·흥(興)·소퇴(少退)·궤(跪)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꿇어앉는다. 대축(大祝)이 신위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제문(祭文)을 읽고 나면, 찬례가 부복(俯伏)·흥(興)·평신(平身)하기를 계청한다. 찬례가 꿇어앉아 고구려 시조 신위 앞에서 상향(上香)하고 헌작하며 제문(祭文) 읽기를 계청하면, 위의 의식(儀式)과 같이 한다. 집례가 ‘재배하라.’ 하여, 찬례가 부복·흥·재배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두 번 절한다. 통찬이 ‘재배하라.’고 찬하면, 왕세자 이하 모든 자리에 있는 자가 모두 두 번 절한다. 찬례가 앞에서 인도하여 층계로 내려와서 대차로 돌아온다. 부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고 봉례랑은 종친·문무 군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온다. 장찬(掌饌)은 예찬(禮饌)을 거두고 대축은 제문을 구덩이에 묻는다.”</p> <p>기자전(箕子殿)의 제의(祭儀)도 위와 같다.</p>	<p>啓請執爵獻爵，殿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神位前。贊禮啓“俯伏、興、少退·跪”，殿下俯伏、興、少退跪。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祭文訖，贊禮啓請“俯伏、興、平身。”贊禮跪啓請高〈句〉麗始祖神位前上香獻爵讀祭文，如上儀。執禮曰“再拜”，贊禮啓請“俯伏、興、再拜”，殿下俯伏、興、再拜。通贊贊“再拜”，王世子以下凡在位者皆再拜。贊禮前導降自東階，還大次。副知通禮引王世子，奉禮郎分引宗親、文武群官以次出。掌饌撤禮饌，大祝瘞祭文於坎。祭箕子殿儀同上。</p>
<p>세조 22권, 6년(1460) 경진 / 명 천순(天順) 4년) 10월 18일(경신) 1번째기사 대동관에 나아가 양로연을 베풀다</p>	<p>임금이 중궁과 더불어 대동관(大同館)에 나아가 양로연(養老宴)을 베푸니, 왕세자가 모시었다. 종친(宗親)·재추(宰樞)·기로(耆老) 등이 뜰에서 사배하고 치사(致詞)하기를,</p> <p>“일인(一人)4703) 이 경사가 있으니, 삼로(三老)를 기르도다. 만년(萬年)토록 복록(福祿)을 길이 누리소서.”</p> <p>하고, 반수(班首) 신숙주(申叔舟)가 술을 올리고, 노인(老人) 김상안(金尙安)이 또한 술을 올리었다. 종친·재추가 각각 자리에 앉고, 김상안 등 1백여 인은 뜰 가운데에 앉고, 노부(老婦) 30여 인은 뜰 위에 앉았다. 전 교도(教導) 김지겸(金之兼)이 시(詩)를 지어 올렸는데, 이르기를,</p> <p>“용기(龍旗)의 그림자가 너울거리어 먼 변방에 비치니, 천리 관서(關西)에 상서일[瑞日]이 길도다. 도(道)가 건원(乾元)에 합하니 베푸는 것이 끝이 없고,</p>	<p>庚申/上與中宮御大同館，設養老宴，王世子侍。宗親、宰樞、耆老等四拜於庭，致詞曰：</p> <p>一人有慶，三老是養。萬有斯年，福祿永亨。</p> <p>班首申叔舟進酒，老人金尙安亦進酒。宗親、宰樞各就坐，尙安等百餘人於庭中，老婦三十餘人於階上。前教導金之兼製詩以進曰：“龍旗影拂照遐荒，千里關西瑞日長。道合乾元施罔極，德同坤厚載無疆。淵淵神化超三代，</p>

	<p>덕이 곤후(坤厚)와 같으니 싣는 것이 한이 없도다. 연연(淵淵)한 신화(神化)는 삼대(三代)를 초월하고, 호호(嶢嶢)한 인풍(仁風)은 사방에 퍼지도다. 많은 인민들이 관악(管籥)의 소리를 듣고, 다투어 서로 도무(蹈舞)하여 시장(詩章)을 드립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보기를 마치고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였다. 사자 위장(獅子衛將) 권공(權恭)·사대장(射隊將) 민발(閔發)을 불러 휘하(麾下) 군사를 거느리고 뜰에 들어오게 하고, 연탁(宴卓)을 내려 주었다. 이조(吏曹)·병조(兵曹)에 명하여 여러 늙은이에게 작(爵) 1계급을 더하게 하였다.</p>	<p>嶢嶢仁風遍四方。 多少人民聞管籥， 爭相蹈舞獻詩章。” 上覽訖，命進酒。 召獅子衛將權恭、射隊將閔發率麾下 軍士入庭，賜宴卓。 命吏、兵曹加群 老爵一階。</p>
<p>세조 22권, 6년(1460 경진 / 명 천순(天順) 4년) 10월 18일(경신) 2번째기사 양로연의의 내용</p>	<p>양로연의(養老宴儀)는 이러하였다.</p> <p>“의장(儀仗)을 진설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고 시각이 되면 기생[妓]과 공인(工人)이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의장이 움직이고 음악이 시작된다.】 양전(兩殿)이 자리에 오르면 【음악이 그친다.】 산(繖)과 선(扇)으로 시위(侍衛)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봉례랑(奉禮郎)이 반수(班首)·시연관(侍宴官)과 여러 노인을 인도하여 동편문(東偏門)으로 들어오고, 사빈(司賓)은 노부녀(老婦女)를 인도하여 서편문(西偏門)으로 들어와서 함께 배위(拜位)에 나가면서, 음악이 시작된다. 사배(四拜)하고 꿇어앉기를 마치면, 반수가 치사관(致詞官)을 대신하여 치사(致詞)하기를 마친다. 반수와 시연관이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술그릇을 바치고 탁자를 바치면 음악이 시작되는데, 반수 이하는 꿇어앉고 근시가 꽃을 올린다. 【중궁 상의(中宮尙儀)가 꽃을 올린다.】 반수 이하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면 음악이 시작되고, 봉례랑이 반수를 인도하여 주정(酒亭) 동쪽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서 작(爵)을 받는다. 음악이 시작되면 꿇어앉아서 올린다. 시연관 및 여러 노인의 찬(饌)을 베풀면 음악이 그친다. 시연관과 여러 노인이 모두 꿇어앉는다. 양전(兩殿)이 작(爵)을 들기를 마치면 음악이 그치고, 반수 이하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봉례랑이 반수를 인도하여 내려와 그전 자리로 돌아가면 반수 이하가 모두 꿇어앉는다. 여러 노인이</p>	<p>養老宴儀： 陳儀仗如常， 時至妓、工人入就位。 【仗動樂作。】 兩殿陞座，【樂止。】 繖扇侍衛如常。 奉禮郎引班首、侍宴 官、群老由東偏門，司賓引老婦女由西 偏門，俱就拜位，樂作。 四拜訖跪， 班首代致詞官致詞訖。 班首、侍宴官 俯伏、興，進酒器，進卓樂作，班首以 下跪，近侍進花。【中宮尙儀進花。】 班首以下俯伏興樂作，奉禮郎引班首詣 酒亭東北向立受爵。 樂作跪進。 侍 宴官及群老皆跪。 兩殿舉爵訖樂止， 班首以下俯伏、興。 奉禮郎引班首降 復位，班首以下皆跪。 群老代致詞官 致詞【至仁好生善養老者，於萬斯年百 錄是荷。】訖，班首以下俯伏興。 奉 禮郎引群老、班首詣酒亭，東北向立受</p>

	<p>치사관을 대신하여 치사 【‘지극한 어짐이 살리기를 좋아하여 늙은 자를 잘 기르시니, 만년이 되도록 백복(百福)을 받으소서’ 한다.】 하기를 마치면, 반수 이하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봉례랑이 여러 노인과 반수를 인도하여 주정 동쪽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서 작(爵)을 받으면 음악이 시작되는데, 꿇어앉아서 올린다. 반수 이하가 모두 꿇어앉는다. 양전(兩殿)이 잔을 들기를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여러 노인과 반수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내려와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반수 이하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면, 봉례랑이 시연관과 여러 노인을 인도하여 각각 자리에 나아가간다. 【노부녀는 사빈이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간다.】 찬안(饌安)을 올리면 음악이 시작되고, 사연관(司宴官) 및 여러 노인의 찬(饌)을 베풀면 음악이 그친다. 사연관과 여러 노인에게 꽃을 흩어 주면 음악이 시작된다. 탕(湯)을 올리면 시연관과 여러 노인에게 탕을 베풀고, 이를 마치면 음악이 시작된다. 작을 올리면 음악이 시작되는데, 시연관과 여러 노인에게 술을 들어 마시게 하고, 이를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차례로 탕(湯)을 올리고 작(爵)을 올리기를 전의 의식과 같이 하여 술이 일곱 순배 돌면 대선(大膳)을 올리고 음악이 시작된다. 시연관과 여러 노인에게 선(膳)을 베풀면 음악이 그친다. 안(案)을 걷어치우고 반수 이하의 탁자[卓]를 걷어치운다. 봉례랑이 시연관 및 여러 노인을 인도하여 모두 배위에 돌아가서 사배하면 음악이 시작되고, 이를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판통례(判通禮)가 예가 끝났다고 아뢰어 양전(兩殿)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음악이 시작되고, 안으로 돌아가면 음악이 그친다. 봉례랑이 시연관 및 여러 노인을 인도하여 나간다. 【노부녀는 사빈이 인도하여 나간다.】 ”</p>	<p>爵，樂作跪進。班首以下皆跪。兩殿舉爵訖樂止。群老班首俯伏興，降復位。班首以下俯伏興，奉禮郎引侍宴官群老各就坐。【老婦女司賓引就坐。】進饌案樂作，設司宴官及群老饌，樂止。散侍宴官群老花，樂作。進湯設侍宴官群老湯畢，樂作。進爵樂作，侍宴官群老舉酒訖，樂止。次進湯、進爵如前儀。酒行七遍，進大膳，樂作。設侍宴官群老膳，樂止。徹案徹班首以下卓。奉禮郎引侍宴官及群老俱復拜位，四拜樂作訖樂止。判通禮啓禮畢，兩殿降座樂作，還內樂止。奉禮郎引侍宴官及群老出。【老婦女司賓引出。】</p>
<p>세조 22권, 6년(1460) 경진 / 명 천순(天順) 4년) 윤11월 27일(기사) 2번째기사</p>	<p>주서(注書) 이수남(李壽男) 및 내의(內醫)에게 명하여, 술과 약을 가지고 의금부(義禁府) 전옥(典獄)에 가서 갇혀 있는 사람의 감기든 자에게 먹이었다. 두어 수인(囚人)이 옷이 심히 얇으니, 명하여 옷을 내려 주게 하였다.</p>	<p>命注書李壽男及內醫齎酒藥，往義禁府典獄，飲囚人寒疾者。有數囚衣其薄，命賜衣。</p>

<p>의금부의 전옥에 간혀 있는 수인을 돌보게 하다</p>		
<p>世祖 23卷, 7年(1461 辛巳 / 명 천순(天順) 5年) 2月 3日(甲戌) 5 번째기사 상정소에서 각각의 제사의 규율에 대해 아뢰다</p>	<p>상정소(詳定所)에서 아뢰기를, “《문헌통고(文獻通考)》에서 소식(蘇軾)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변두(籩豆)4848)의 장단(長短)과 보례(簠簋)4849)의 고하(高下)가 적당히 사람과 고르게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토목(土木)의 소상(塑像)이 이미 높다랗게 위에 있는데 기명(器皿)을 땅에 진열해 놓으니, 귀신으로 하여금 흠향(歆享)하지 않게 한다면 모르거니와 만약 흠향한다면 이는 부복(俯伏)하고 기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된다.’고 하였고,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부자(夫子)4850)의 상(像)을 의자(椅子) 위에 설치하는 것이 이미 옳지 못하였고, 또 후에 대좌(臺坐) 위에 설치하였으며 춘추 석전(春秋釋奠)4851)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보례·변두를 땅에 진설하니 이것이 무슨 의리(義理)인가? 선성(宣聖)4852)은 본래 상(像)을 설치함이 부당하며 춘추제(春秋祭) 때에는 다만 신주(神主)4853)를 설치하여 제사함이 옳다.’고 하였으니 이제 다만 상만을 설치하여 땅에 앉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처음의 이 예식은 지금 문묘(文廟)의 문선왕(文宣王)4854) 및 배위(配位)4855)의 신위(神位)를 모두 의자 위에 봉안(奉安)하고 종사(從祀)4856)한 신위는 다리가 높은 긴 상(床)에 봉안해 놓고, 삭망제(朔望祭)에는 탁자(卓子)를 사용하여 전물(奠物)을 진설하고, 석전제(釋奠祭) 때는 전물이 많고 탁자가 작기 때문에 자리[度]를 사용하여 땅에 펴고 진설하며, 동무(東廡)·서무(西廡)의 신위에도 역시 다리가 높은 상에 봉안하였습니다. 석전제 때 땅에 자리를 펴고 찬물(饌物)을 진설하고 보니 신위는 높는데 전물은 낮으므로, 바로 이것이 옛사람이 기롱(譏弄)한 바의 기어서 제소(祭所)로 나아가는 것이어서 매우 편하지 않으니, 청컨대 이제부터 각위(各位)의 전물은 모두 탁자를 써서 진설하게 하고 자리를 펴는 것은</p>	<p>詳定所啓: “《文獻通考》, 蘇軾曰, ‘古者坐於席, 故籩豆之長短、簠簋之高下, 適與人均, 今土木之像, 既以巍然於上, 而列器皿於地, 使鬼神不享則不可知, 若其享之, 則是俯伏匍匐而就也.’ 朱子曰, ‘夫子像設置於椅上, 已不是, 又後置在臺坐上, 到春秋釋奠, 却乃陳簠簋、籩豆於地, 是甚義理? 宣聖本不當設像, 春秋祭時只設主祭可也.’ 今不可只得設像坐于地。始是禮, 今文廟文宣王及配位神位, 竝於椅上奉安, 從祀神位於高足長床奉安, 朔望祭則用卓子設奠物, 釋奠祭時奠物多而卓子小, 故用席鋪地而設, 東西廡神位亦於高足床奉安。釋奠祭持席地設饌, 神位高而奠物卑, 正是古人所譏匍匐就祭, 甚爲未安, 請自今各位奠物, 竝用卓子而設, 除鋪席。”從之。</p>

	<p>없애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세조 23권, 7년(1461 신사 / 명 천순(天順) 5년) 2월 30일(신축) 3번째기사 김계손이 매와 개를 바치다</p>	<p>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김계손(金繼孫)이 도사(都事) 김이용(金利用)을 보내어 문안(問安)하고 인하여 매[鷹]와 개[狗]를 바치니, 즉시 종친과 재추(宰樞)들에게 나누어 내려 주었다. 어가로 거동하여 왕방산(王方山)에 이르러 사냥[打圍]을 하고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璿)에게 명하여 의정부(議政府)에 술과 고기를 내려 주게 하고, 환관(宦官) 연덕생(延德生)에게 명하여 승정원(承政院)에 술과 고기를 내려 주게 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봉상시(奉常寺)에 젓을 담근 사슴[鹿]이 부족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니, 성임이 대답하기를, “부족한 것이 무릇 49구(口)인데, 18구는 사복시(司僕寺)에서 이미 사냥해 얻었고, 그 나머지 11구는 평안도(平安道)에 배정하고, 10구는 황해도(黃海道)에 배정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날 얻은 짐승이 무릇 70여 구였으며, 의정부에 술과 고기를 내려 주었다. 여우[狐]가 나오는 것을 세자(世子)로 하여금 쏘게 하였는데, 세자가 이를 쏘아 죽이니, 임금이 기뻐하고 명하여 술을 올리도록 하였다. 저녁에 지현평(地峴平)에 머무르고 재추(宰樞)들에게 술과 고기를 내려 주었다.</p>	<p>江原道觀察使金繼孫遣都事金利用問安，仍進鷹、狗，卽分賜宗親、宰樞。動駕至王方山打圍，命桂陽君璿，賜議政府酒肉，宦官延德生賜承政院酒肉。上問成任曰：“奉常寺淹醢鹿不足幾何？”對曰：“所不足者凡四十九口，而十八口則司僕寺已獵獲，其餘十一口定平安道，一十口定黃海道。”是日獲獸凡七十餘，賜議政府酒肉。有狐出，使世子射之，世子射殪之，上悅命進酒。夕次地峴平，賜宰樞等酒肉。</p>
<p>世祖 23卷, 7年(1461 辛巳 / 명 천순(天順) 5年) 3月 1日(壬寅) 1 번째기사 봉상시에서 제사에 쓰 는 사슴은 강무에서 얻은 것으로 쓸 것임 을 승정원에 교지하다</p>	<p>승정원(承政院)에서 교지(教旨)를 받들어 평안도(平安道)·황해도(黃海道) 관찰사(觀察使)에게 치서(馳書)하기를, “봉상시(奉常寺)에서 제사에 쓰는 사슴[鹿]은 강무(講武)에서 얻은 것으로 지공(支供)할 것이니, 다시는 바치지 말라.” 하였다. 어가로 거동하여 울장(栗長)에 이르니, 가평 현감(加平縣監) 안숙손(安叔孫)이 와서 맞았다. 궁(宮)을 지키는 장상(將相)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지금 사슴[鹿] 3구(口)와 돼지[豬] 2구를 내려 주고, 인하여 잔치를 내려 주니, 한번 즐기도록 하라.”</p>	<p>壬寅朔/承政院奉旨馳書于平安、黃海道觀察使曰：“奉常寺祭用鹿，以講武所獲供之，其勿復進。”動駕至栗長，加平縣監安叔孫來迎。諭守宮將相曰：“今賜鹿三猪二，仍賜宴一權。”夕次連洞驛平。</p>

	하고, 저녁에 연동역(連洞驛) 벌에 머물렀다.	
세조 23권, 7년(1461 신사 / 명 천순(天順) 5년) 3월 4일(을사) 2 번째기사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 으므로 공처에서 술을 쓰는 것을 금지시키다	예조(禮曹)에 전지하기를, “백성들이 많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니, 공처(公處)에서 술을 쓰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傳于禮曹曰: “民多阻飢, 禁公處用 酒。”
世祖 23卷, 7年(1461 辛巳 / 명 천순(天順) 5年) 3月 8日(己酉) 4 번째기사 외국의 객인을 궤향하 거나 우리 나라 사신 을 전별할 때는 술을 쓸 것을 건의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이웃 나라 객인(客人)을 궤향(饋餉)하거나, 우리 나라 사신(使臣)에게 전별 (餞別)을 내릴 때는 청컨대 이전의 예에 의하여 술을 쓰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禮曹啓: “隣國客人饋餉及本朝使臣賜 餞時, 請依前例用酒。”從之。
세조 23권, 7년(1461 신사 / 명 천순(天順) 5년) 3월 20일(신유) 4번째기사 양현고의 양식이 다하 여 성균관 유생들에게 미곡 30석을 지급하게 하다	사인(舍人) 정문형(鄭文炯)이 본부(本府)4936) 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이제 듣건대, 양현고(養賢庫)4937) 에 저축한 양곡이 이미 다하였으므로 예 조(禮曹)에 보고하니 즉 말하기를, ‘미곡(米穀)의 출납(出納)은 본조(本曹)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여, 호조(戶曹)에 보고하였는데, 즉 또한 전문(轉聞)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를 헤아려 보니 1, 2일간의 양식(糧食)에 불과한데 지금 이를 잇대지 않는다면 형세(形勢)로 보아 장차 학문(學問)을 파(罷)하게 될 것 이니, 국가(國家)의 대체에 어떠하겠습니까? 또 먼 지방의 유생(儒生)들이 단 신(單身)으로 서울에 와서 오로지 공廩(公廩)만을 바라고 있는데, 하루 아침에 그 궤향을 폐지하게 되면, 먹을 곳이 없게 될 것이니, 진실로 가엾이 여겨 무	舍人鄭文炯將本府議啓: “今聞養賢庫 儲粟已罄, 報禮曹, 則曰, ‘米穀出納, 非本曹所管.’ 報戶曹, 則亦不轉聞。 計所餘不過一二日之餉, 今不繼之, 勢 將罷學, 如國家大體何? 且遠方儒生隻 身到京, 仰給公廩, 一朝罷養, 無所於 食, 誠可憐恤。 忠清道田租, 朝夕且 至, 請以倉米繼之。” 命給養賢庫米三 十石。

	<p>홀(撫恤)할 만합니다. 충청도의 전조(田租)가 곧 도착될 것이니, 청컨대 광흥창(廣興倉)4938) 의 미곡으로 잇대게 하소서.”</p> <p>하니, 명하여 양현고에 미곡 30석을 지급하게 하였다.</p>	
<p>世祖 24卷, 7年(1461 辛巳 / 명 천순(天順) 5年) 4月 14日(甲申) 1번째기사</p> <p>강맹경의 종기와 그 약에 대해서 말하다</p>	<p>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2품(品) 이상이 입시(入侍)하여 술자리를 베푸니, 우참찬(右參贊) 성봉조(成奉祖)·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심회(沈滄)·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최항(崔恒) 등이 술을 올리었다. 임금이 말하기를,</p> <p>“강정승(姜政丞)4993) 이 종기[腫]가 났는데 술을 마시고자 하므로, 내가 이를 듣고 명하여 약화십선산(略和十宣散)을 먹으라고 하였더니, 먹은 뒤에 조금 나아가는 것 같아서 기쁘다. 이 약(藥)은 효력(效力)이 많으니, 여러 재추(宰樞)4994) 들도 마땅히 알아 두어야 한다.”</p> <p>하니, 모두 말하기를,</p> <p>“그러합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처음에 종기가 생겼을 때는 매우 좋지 못한 것이다. 강정승은 이미 화농(化膿)한 뒤에 약을 먹었다. 사람이 병(病)과 더불어 서로 승부(勝負)를 삼아서 사람이 이기면 좋고 병이 이기면 좋지 않은데, 지금 강정승이 이기었으니, 매우 기뻐할 만하다.”</p> <p>하였다.</p>	<p>甲申/御思政殿, 受常參、視事。 二品以上入侍設酌, 右參贊成奉祖、判中樞院事沈滄、知中樞院事崔恒等進酒。 上曰: “姜政丞發腫, 欲飲酒, 予聞之, 命略和十宣散飲之。 飲後稍若向痊可喜。 此藥甚驗, 諸宰樞宜識之。” 僉曰: “然。” 上曰: “初發腫時則甚不可也。 政丞飲之於既濃之後耳。 人與病相爲勝負, 人勝則可, 病勝則不可也, 今政丞勝之, 甚可喜也。”</p>
<p>세조 24권, 7년(1461 신사 / 명 천순(天順) 5년) 4월 21일(신묘) 1번째기사</p> <p>우참찬 성봉조가 강맹경을 위해 7일간은 불가하고 3일간만 소신</p>	<p>우참찬(右參贊) 성봉조(成奉祖)가 본부(本府)5007) 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p> <p>“지금 들으니, 전하(殿下)께서 강맹경(姜孟卿)의 죽음을 슬퍼하여 장차 육선(肉膳)을 7일 동안이나 거두신다 하니, 신 등이 생각하기에는 인군(人君)이 신하에게는 본디 복(服)이 없는 것인데, 비록 권도(權道)에 따라 이를 행한다 하더라도 3일이면 족하니, 청컨대 육선(肉膳)을 드소서.”</p> <p>하고, 병조 판서(兵曹判書) 한명회(韓明滄)도 또한 아뢰어 청하니, 임금이 그</p>	<p>辛卯/右參贊成奉祖將本府議啓: “今聞殿下悼孟卿, 將輟肉膳七日, 臣等以爲君之於臣, 本無服, 雖從權行之, 三日足矣, 請進肉膳。” 兵曹判書韓明滄亦啓請。 從之。</p>

할 것을 건의하다	대로 따랐다.	
<p>세조 24권, 7년(1461 신사 / 명 천순(天順) 5년) 4월 22일(임진) 2번째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성직의 어머니가 죽은 데에 대한 부의와 실 화의 품목</p>	<p>일본국(日本國)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성직(宗成職)의 어머니가 죽었으므로, 상호군(上護軍) 피상의(皮尙宜)를 보내어 선위(宣慰)하게 하였다. 예조(禮曹)에서 글을 보내기를, “금번에 온 사인(使人)이 자당(慈堂)이 별세하고 또 실화(失火)한 것을 말하므로, 전하(殿下)께서 이를 듣고 가슴 아파하였다. 겹하여 여러 섬[島]의 굶주린 무리가 장사로 인연하여 도둑질하러 나오려는 것을 달래었다는 것을 듣고, 전하께서 가상히 여기시어 특별히 관원을 보내어 선위(宣慰)한다. 내려 주는 물건(物件)은 별폭(別幅)에 갖추어 있다.” 하였다. 부의(賻儀)로 보내는 것은, “백저포(白苧布) 10필(匹), 백면주(白綿紬) 10필, 백면포(白綿布) 10필, 정포(正布) 1백 필, 백지(白紙) 3백 권(卷), 조미(糙米) 1백 석(石), 황두(黃豆) 1백 석, 청밀(淸蜜) 15두(斗), 송자(松子) 13두, 참깨 30두, 들깨 30두, 싸라기 30두, 부용편향대합(芙蓉片香大槩)에 초[燭]를 갖춘 것 20매(枚)이다.” 하였고, 실화(失火)로써는, “조미 50석, 황두 50석, 과자(果子)5009) 2상자[櫃], 다식(茶食) 2상자, 소병(燒餅) 2상자, 청밀 5두, 소주(燒酒) 15병(瓶), 청주(淸酒) 1백 병, 대구어(大口魚) 1백 마리[尾], 마른 청어[乾靑魚] 2천 마리, 마른 잉어[乾鯉魚] 50마리, 마른 큰붕어[乾大鮒魚] 4백 마리를 내려 준다.” 하였고, 성식(聲息)을 보고한 데 대하여는, “《번역명의(翻譯名義)》 1부(部), 《법화경(法華經)》 1부, 《기신론(起信論)》 1부, 《영가집(永嘉集)》 1부, 《금강경(金剛經)》 1부, 《증도가(證道歌)》 1부, 《심경(心經)》 1부, 《능엄경(楞嚴經)》 1부, 《대비심경(大悲心經)》 1부, 《사교의(四教儀)》 1부, 《사교의(四教儀)》 1부, 《성도기(成道記)》 1부, 《원각경(圓覺經)》 1부. 백면주(白綿紬) 10필, 백면포(白綿布) 10</p>	<p>日本國對馬州太守宗成職母死，遣上護軍皮尙宜宣慰。禮曹致書曰： 今因來使，說稱慈闈乘化，又失火，殿下聞之傷痛。兼承通諭諸島飢輩，因商出來聲息，殿下嘉之，特遣官宣慰。給賜物件，具在別幅。致賻白苧布一十四、白綿紬一十四、白綿布一十四、正布一百匹、白紙三百卷、糙米一百石、黃豆一百石、淸蜜一十五斗、松子一十三斗、胡麻三十斗、芝麻三十斗、馨三十斗、芙蓉片香大槩具燭二十枚，以失火賜糙米五十石、黃豆五十石、果子二櫃、茶食二櫃、燒餅二櫃、淸密五斗、燒酒一十五瓶、淸酒一百瓶、大口魚一百尾、乾靑魚二千尾、乾鯉魚五十尾、乾大鮒魚四百尾。以報聲息，賜《翻譯名義》一部、《法華經》一部、《起信論》一部、《永嘉集》一部、《金剛經》一部、《證道歌》一部、《心經》一部、《楞嚴經》一部、《大悲心經》一部、《四教儀》一部、《成道記》一部、《圓覺經》一部、白綿紬一十四、白綿布一十四、彩花席一十張、</p>

	<p>필, 채화석(彩花席) 10장, 유지석(油紙席) 4장, 표피(豹皮) 3장, 호피(虎皮) 3장, 인삼(人蔘) 20근(觔), 병풍 1좌(坐), 가죽으로 된 북[皮鼓] 1면(面), 경자(磬子) 1사(事), 요발(撿鉢)5010) 1사, 소주 1백 병을 내려 준다.” 하였다.</p>	<p>油紙席四張、豹皮三張、虎皮三張、人蔘二十觔、屏風一坐、皮鼓一面、磬子一事、撿鉢一事、燒酒一百瓶。</p>
<p>世祖 26卷, 7年(1461 辛巳 / 명 천순(天順) 5年) 11月 8日(甲辰) 1번째기사 권개와 강효문에게 진공하는 음식물을 결한 것에 대해 말하다</p>	<p>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권개(權愷)·함길도 관찰사(咸吉道觀察使) 강효문(康孝文)이 은어(銀魚)·해채(海菜)·천아(天鵝)5392) ·문어(文魚) 등의 물건을 진상하는 것을 권하였으므로, 승정원에서 죄를 다스리도록 계청(啓請)하였다. 어서(御書)로 권개와 강효문에게 유시하기를, “진공(進供)하는 음식물은, 위에 있으면 마땅히 절약해야 하고 아래에 있으면 마땅히 준비하여야 하는 것인데, 근래에 진상하는 것을 많이 권하여 천신(薦新)5393) 하는 물건을 권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는 비록 경(卿)이 나의 폐단을 제거하려는 마음을 몸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대체(大體)에 심히 어긋나는 것이니, 기강(紀綱)을 떨치어 퍼서 신민(臣民)에게 보이는 도리가 아니다. 내가 음식과 같은 작은 물건을 가지고 경을 허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불문(不問)에 붙여 두는 것이니, 이 뒤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 하였다.</p>	<p>甲辰/江原道觀察使權愷、咸吉道觀察使康孝文闕進銀魚、海菜、天鵝、文魚等物，承政院啓請治罪。御書諭愷、孝文曰：“進供食物，在上則當節，在下則當備，近來多闕進上，至闕薦新之物。是雖卿體予除弊之心，而於大體則甚乖，非所以振綱紀、示臣民之道也。予以飲食微物，不欲累卿，特有不問，後勿如此。”</p>
<p>세조 26권, 7년(1461 신사 / 명 천순(天順) 5년) 12월 2일(무진) 2번째기사 유구국의 중산왕이 사자를 보내어 토물을 바치고 표류한 인구를 데리고 오다</p>	<p>(전략)이제 예물(禮物)을 열어보니, 석(錫)이 2천 근(斤), 소목(蘇木) 2천 근, 단향(檀香) 16백 근, 정향(丁香) 1백 근, 목향(木香) 1백 근, 상아(象牙) 4조(條), 서각(犀角) 6개(箇), 천축주(天竺酒) 1정(埕), 호초(胡椒) 2백 근이었다.</p>	<p>(전략)今開禮物，錫二千斤、蘇木二千斤、檀香一百斤、丁香一百斤、木香一百斤、象牙四條、犀角六箇、天竺酒一埕、胡椒二百斤。</p>
<p>世祖 26卷, 7年(1461 辛巳 / 명 천순(天順)</p>	<p>우참찬 이승손(李承孫)이 본부(本府)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청컨대, 육선(肉膳)을 올리게 하소서.”</p>	<p>右參贊李承孫將本府議啓 “請進肉膳。” 上曰：“予欲素膳七日，以引見</p>

<p>5年) 12月 11日(丁丑) 3번째기사 우참찬 이승손이 육선 들기를 청하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7일 동안 소선(素膳)을 하고자 하였으나, 유구국(琉球國)의 사신(使臣)을 인견(引見)하기 때문에 내일 잔치를 베풀면 마땅히 육선을 올린 것인데, 하필 오늘 이겠느냐?” 하였다. 구주(具州)에 사는 울적합(兀狄哈)의 토린합(土麟哈)을 본처 부만호(本處副萬戶)로 삼았다.</p>	<p>琉球國使臣，將於明日設宴，當進肉膳，何必今日?” 以具州住兀狄哈土麟哈爲本處副萬戶。</p>
<p>세조 26권, 7년(1461 신사 / 명 천순(天順) 5년) 12월 12일(무인) 1번째기사 새벽에 경복궁에 거동 하여 근정전에서 음복 연을 베풀고 유구국의 사신을 인견하다</p>	<p>새벽에 임금이 경복궁(景福宮)에 거동하여 대가 의장(大駕儀仗)을 갖추고,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서 음복연(飲福宴)을 베풀고, 유구국(琉球國) 사신(使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시연관(侍宴官)이 동서(東西)의 뜰에 나누어 서는데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하였다. 통사(通事)가 유구국의 사신을 인도하고 들어와서 동쪽 뜰의 2품(品) 〈관원의〉 끝에 서는데, 또한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하였다. 임금이 자리에 오르니, 기녀[妓] 및 영인(伶人)이 음악을 연주하고, 시연관 및 사신이 사배(四拜)를 하였다. 사준 제조(司樽提調)가 주기(酒器)를 올리니, 시연관 및 사신이 꿇어앉고, 사옹 제조(司饗提調)가 상(床)을 들고 승지(承旨)가 꽃을 올리니, 시연관 및 사신이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였다. 승지가 전지를 받들어 “교서(敎書)가 있습니다.” 고 말하니, 시연관 및 사신이 꿇어앉고, 승지가 “자리로 나아가라.” 고 하니, 시연관 및 사신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였는데, 통례문(通禮門)이 시연관을 인도하고 통사가 사신을 인도하여 자리로 나아갔다.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裨)·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좌의정(左議政) 신숙주(申叔舟)·우의정(右議政) 권남(權孳) 등은 전각(殿閣)의 동쪽 기둥의 안쪽에 앉았고, 운성 부원군(雲城府院君) 박종우(朴從愚)·좌찬성(左贊成) 황수신(黃守</p>	<p>戊寅/黎明上幸景福宮，備大駕儀仗，御勤政殿，設飲福宴，引見琉球國使臣。侍宴官分立東西庭，異位重行。通事引琉球國使臣入，立東庭二品之末，亦異位重行。上陞座，妓及伶人奏樂，侍宴官及使臣四拜。司樽提調進酒器，侍宴官及使臣跪，司饗提調舉床，承旨進花，侍宴官及使臣俯伏、興、平身。承旨承傳稱“有敎”，侍宴官及使臣俯伏、興、平身，通禮門引侍宴官，通事引使臣就坐。讓寧大君裨、孝寧大君補、河東府院君鄭麟趾、領議政鄭昌孫、左議政申叔舟、右議政權孳等坐於殿東楹內，雲城府院君朴從愚、左贊成黃守身、左參贊李承孫、刑曹判書朴元亨、吏曹判書崔恒、戶曹判書曹錫文等坐於殿西楹內，琉球國正使普須古、副使蔡環坐於殿東楹外，</p>

	<p>身)·좌참찬(左參贊) 이승손(李承孫)·형조 판서(刑曹判書) 박원형(朴元亨)·이조 판서(吏曹判書) 최항(崔恒)·호조 판서(戶曹判書) 조석문(曹錫文) 등은 전각의 서쪽 기둥 안쪽에 앉았으며, 유구국의 정사(正使) 보수고(普須古)와 부사(副使) 채경(蔡璟)은 전각의 동쪽 기둥 밖의 자리에 앉았고, 정관(正官) 3인은 월대(月臺) 동쪽에 앉았으며, 종인(從人) 20인도 또한 월대 동쪽에 앉았는데,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하였다. 여러 장수와 병조(兵曹)의 당상(堂上)·사복(司僕) 등은 모두 칼을 차고, 어좌(御座)의 동쪽과 서쪽에 썼고, 산선(傘扇) 및 형평(形名)을 월대에 세웠으며, 기녀 및 영인도 또한 월대에 동·서로 나누어 썼다. 사옹 제조가 제 1선(膳)을 올리니 시연관 및 사신이 다 전내(殿內)와 기둥 밖에 나아가서 동·서로 나누어 꿰어앉아 올리기를 마치고 부복했다가 일어나서 자리로 돌아가 앉았으며, 제2선을 올린 이후에도 각자 자리를 떠나 꿰어앉아 올리기를 마치고, 부복했다가 일어나 돌아가 앉았다. 사옹 별감(司饗別監)이 시연관 이 하에게 찬탕(饌湯)을 나누어 내려 주었다. 무릇 진선(進膳)하는 것은 밖에서 음악(音樂)을 연주하면서 올리고, 계단 위의 풍악과 더불어 합주(合奏)하였다. 임금이 사신 등에게 전지하기를,</p> <p>“두 나라가 해파(海波)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때때로 수호(修好)를 하지 못하였는데, 너희 왕이 사신을 보내어 와서 빙문(聘問)하니 내가 심히 기쁘게 생각한다. 보내 온 바의 천축주(天竺酒)는 탕진(湯進)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봉(封)한 것을 열어 보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기다리었다.”</p> <p>하니, 보수고가 아뢰기를,</p> <p>“신이 마땅히 술을 탕진하겠습니다.”</p> <p>하였다. 명하여 정(埕)을 〈가져오게 하니〉 정을 송지(松脂)로써 발랐으므로 보수고 등이 불에 녹여 열어 보니 술이 아니고, 사탕(沙糖)이었다. 보수고 등이 서로 돌아보며 실색(失色)하며 이르기를,</p> <p>“일이 이와 같음에 이르렀으니, 놀라고 두려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p>	<p>正官三人坐於月臺東，從人二十亦於月臺東異位重行。諸將、兵曹堂上、司僕等皆佩劍，立于御座東西，傘扇及形名立月臺，妓、伶人亦於月臺分東西立。司饗提調進第一膳，侍宴官及使臣皆就殿內楹外分東西跪進訖，俯伏、興、還坐，進第二膳以後各離坐跪進訖，俯伏、興、還坐。司饗別監分賜侍宴官以下饌湯。凡進膳自外奏樂而進，與階上樂合奏。傳于使臣等曰：“兩國海波遼隔，未得以時修好，汝王能遣使來聘，予甚嘉悅。所送天竺酒，不知湯進之法，不開緘以待若等。”普須古啓：“臣當湯進酒。”命埕，埕塗以松脂，普須古等薰火開視，則非酒乃沙糖也。普須古等相顧失色曰：“事至若此，驚恐無措。”傳曰：“偶爾如此，何足恨焉？”普須古啓：“當初受命時，酒埕自內而出，臣等未得親見。此有司之責，我王聞之，必加重責。然臣等奉獻土物，錯誤乃爾，死有餘辜。”傳曰：“此非汝等之過。且汝王遣我天竺酒，必想我飲之也。今汝進酒，則雖非天竺酒，是亦飲汝王之遺也。”普須古等稽首而謝，下至押物，凡五人進</p>
--	--	--

하니, 전지하여 이르기를,
 “우연히 이와 같이 되었는데 어찌 죽히 원망하겠느냐?”
 하였다. 보수고가 아뢰기를,
 “당초에 명(命)을 받을 때에 주정(酒埕)이 안으로부터 나왔는지를 신 등이 몸소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유사(有司)의 잘못이니, 우리 왕이 이를 들으면 반드시 중한 책망을 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 등이 토물(土物)을 받들어 바치면서 착오(錯誤)한 것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죽어도 죄가 남겠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이것은 너희들의 허물이 아니다. 또 너희 왕이 나에게 천축주를 보내며 반드시 내가 이를 마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니, 이제 네가 술을 올리면 비록 천축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또한 너희 왕이 보낸 것을 마신 것이 될 것이다.”
 하였다. 보수고 등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하고는 무릇 5인이 술을 올리니, 전지하기를,
 “너희 무리는 많으니 일일이 술을 올리는 것은 불가(不可)하다. 이미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의 술을 마셨으니, 또한 끝에 있는 사람의 술을 마시면 이는 일행(一行)의 술을 다 마시는 셈이 될 것이다.”
 하니, 끝에 있는 자가 또한 술을 올렸다. 무릇 술을 올리고 진선(進膳)을 하는 것은 의식이 같았다. 사준 별감이 시연관 이하에게 술을 나누어 주면, 매 잔마다 떨어져 앉아서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 꿇어앉아서 마시기를 마치고는 부복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무릇 대선(大膳)·소선(小膳)과 찬탕(饌湯)을 별사(別賜)하면 어전(御前)의 기둥 밖에 나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돌아가 모두 그릇을 바꾸었다. 사신이 사탕을 잘못 올린 것 때문에 끝내 연회는 저절로 편안치 못하였는데, 시연관 및 사신이 전정(殿庭)에 나아가서 사배(四拜)하고 나가니, 사신에게 연탁(宴卓)을 내려 주었다. 이날 아울러 제색 군사(諸色軍

酒, 傳曰: “汝徒寔多, 未可一一進酒。 既飲居首人酒, 又飲居末者酒, 則是盡飲一行人酒也。” 居末者又進酒。 凡進酒與進膳儀同。 司樽別監分賜侍宴官以下酒, 每杯離坐俯伏、興、跪, 飲訖俯伏、興、還坐。 凡有別賜大小膳及饌湯, 則就御前楹外, 叩頭還坐, 皆易器。 使臣以誤進沙糖, 終宴不自安, 侍宴官及使臣降就殿庭, 四拜而出, 賜宴卓于使臣。 是日并抄諸色軍士盛陣兵衛。 上入御思政殿, 召宗親、宰樞設小酌, 有頃動駕, 歷入永膺大君琰第, 召宗親行酒, 良久還宮。

	士)를 초출(秒出)하여 병위(兵衛)를 성진(盛陣)하였다.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입어(入御)하여 종친과 재추(宰樞)를 불러 작은 술자리를 베풀고, 조금 있다가 어가(御駕)로 거둥하여 영웅 대군(永膺大君) 이엄(李璫)의 사제에 들어가 종친을 불러 술을 돌리게 하고 한참 있다가 환궁하였다.	
세조 26권, 7년(1461) 신사 / 명 천순(天順) 5년) 12월 14일(경진) 4번째기사 경기 관찰사에게 얼음을 잘 갈무리하도록 치서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전지(傳旨)를 받들어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에게 치서(馳書)하기를, “금년에는 겨울이 따뜻하고 얼음이 얇아서 빙고(氷庫)에 갈무리한 것이 매우 적다. 이제 물가의 여러 고을로 하여금 그늘지고 비탈져 얼음이 두터운 곳에 나아가서 많이 갈무리하게 하고, 수량을 갖추어 아뢰도록 하라.”	承政院奉旨馳書于京畿都觀察使曰：“今年冬暖冰薄，氷庫所藏甚少。令水邊諸邑，就陰崖冰厚之地，多藏之，具數以啓。”
세조 27권, 8년(1462) 임오 / 명 천순(天順) 6년) 1월 7일(임인) 2번째기사 유구국 사신에게 별하정을 하사하다	유구국(琉球國) 사신에게 별하정(別下程)5488) 으로 술과 어육(魚肉), 흰 산자(饊子), 흰 엿[饊]을 내려 주었다.	賜琉球國使臣別下程酒、魚肉、白饊、白饊等物。
世祖 27卷, 8年(1462) 壬午 / 명 천순(天順) 6年) 2月 19日(甲申) 6번째기사 계빈의(啓殯儀)의 의식	계빈의(啓殯儀)를 베풀었는데, 그 의식은 이러하였다. “유사(有司)에서 먼저 상주(喪主)의 자리를 뜰 동쪽에 북쪽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고, 고계빈관(告啓殯官)의 자리를 상주의 뒤쪽에 남쪽 가까이 설치한다. 집사자(執事者) 1인이 영구(靈柩)를 털 수건을 잡고 그 뒤를 배종(陪從)하는데, 모두 북향한다. 집사자가 축판(祝版)을 영좌(靈座)의 왼쪽에 바치고, 향로(香爐)·향합(香合)과 아울러 초[燭]를 영좌 앞에 설치하고, 준(尊)을 지계문 밖 왼쪽에 설치한다. 때가 되면 집사자(執事者)가 잔(盞)을 받들어 준소(尊所)에 두고, 【주잔(酒盞)이 3개이고, 다중(茶鍾)이 1개이다.】 찬(饌)을 받들고 올라가 영좌(靈座) 앞	設啓殯奠。其儀： 有司先設喪主位於庭東近北北向，設告啓殯官位於喪主之後近南。執事者一人，執拭柩巾陪其後，俱北向。執事者奠祝版於靈座之左，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設尊於戶外之左。時至，執事者捧盞置于尊所，【酒盞三、茶鍾一。】捧饌升奠於靈座前。司儀引告啓殯官入就位，執巾者從之。司儀

에 전(奠)드린다. 사의(司儀)가 고계빈관(告啓殯官)을 인도하여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면 수건을 잡은 자가 뒤따른다. 사의(司儀)가 상주(喪主)를 인도하여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사의(司儀)가 창(唱)하기를, ‘재배(再拜)하고 곡(哭)하라.’ 하면, 상주(喪主)가 두 번 절하고 곡(哭)하여 슬픔을 다하고, 안팎의 사람들이 모두 두 번 절하고 곡(哭)하여 슬픔을 다한다. 사의(司儀)가 상주(喪主)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영좌(靈座) 앞에 이르러 북향하여 꿇어앉게 하면, 집사자(執事者) 1인이 향합(香盥)을 받들고 1인이 향로(香爐)를 받들어 꿇어앉아 바친다. 상주(喪主)가 삼상향(三上香) 하면, 집사자(執事者)가 영좌(靈座) 앞에 바친다. 집사자가 차[茶]와 술[酒]을 바치면 상주가 차를 강신(降神)하고 술을 세 번 올린다. 사의(司儀)가 찬(贊)하기를, ‘부복(俯伏)·흥(興)·소퇴(小退)·궤(跪)하라.’ 하면, 축(祝)이 영좌(靈座)의 왼쪽에 나아가 서향하여 꿇어앉아서 제문(祭文)을 읽기를 끝마친다. 상주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 사의(司儀)가 창(唱)하기를, ‘재배(再拜)·곡(哭)하라.’ 하면, 상주가 두 번 절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하며, 안팎의 사람들이 모두 두 번 절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한다. 사의가 상주를 인도하여 임시로 막차(幕次)에 돌아가고, 집사자(執事者)가 찬(饌)을 거둔다. 고계빈관(告啓殯官)이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수건을 잡은 자가 뒤따라 올라간다.】 빈(殯)의 남쪽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고(告)하기를, ‘삼가 길신(吉辰)이므로 계빈(啓殯)합니다.’ 하고, 고(告)하기를 끝마치면 일을 맡은 자가 올라가서 빈도(殯塗)를 걷어치우기를 끝마친다. 계빈관(啓殯官)이 수건으로 영구(靈柩)를 털고 닦은 다음에 관의(棺衣)를 덮는다. 집사자(執事者)가 주위 둘레에 유악(帷幄)을 설치하고 상식(常食)을 베풀어서 보통 때와 같이 바친다. 의식을 끝마치면 사의(司儀)가 상주를 인도하여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서 곡한다. 사의(司儀)가 창(唱)하기를, ‘재배(再拜)하고 곡(哭)하라.’ 하면, 상주(喪主)가 두 번 절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하고 안팎의 사람들이 모두 두 번

引喪主入就位北向立。 司儀唱 “再拜、哭”， 喪主再拜哭盡哀， 內外俱再拜哭盡哀。 司儀引喪主升自東階， 詣靈座前北向跪， 執事者一人捧香盥， 一人捧香爐跪進。 喪主(二) [三] 上香， 執事者奠于靈座前。 執事者進茶酒， 喪主酌茶三奠酒。 司儀贊 “俯伏、興、小退、跪”， 祝進靈座之左西向跪， 讀祭文， 訖。 喪主俯伏、興降， 復位。 司儀唱 “再拜·哭”， 喪主再拜哭盡哀， 內外俱再拜哭盡哀。 司儀引喪主權歸幕次， 執事者撤饌。 告啓殯官， 升自東階， 【執巾者從升。】 就殯南北向跪告曰， “謹以吉辰啓殯。” 告訖， 掌事者升撤殯塗訖。 啓殯官以巾拂拭靈柩， 覆以棺衣。 執事者周回設帷， 施常食之奠如常儀， 訖。 司儀引喪主入就位， 北向立哭。 司儀唱 “再拜·哭”， 喪主再拜哭盡哀， 內外俱再拜哭盡哀以出。”

<p>世祖 27卷, 8年(1462 壬午 / 명 천순(天順) 6年) 2月 19日(甲申) 7번째기사 조전의(祖奠儀)의 의식</p>	<p>“절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하고서 나간다.” 조전의(祖奠儀)를 베풀었는데, 그 의식은 이러하였다. “유사(有司)에서 먼저 상주의 자리를 뜰의 동쪽에 북쪽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고, 집사자(執事者)가 축판(祝版)을 영좌의 왼쪽에 바치고 향로(香爐)·향합(香合)과 아울러 초[燭]를 영좌 앞에 설치하고, 준(尊)을 지계문 밖의 왼쪽에 설치한다. 때가 이르면 집사자가 잔(盞)을 받들고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준소(尊所)에 바치고, 【주잔(酒盞)은 3개이고, 다종(茶鍾)은 1개이다.】 찬(饌)을 받들고 올라가서 영좌 앞에 전(奠)드린다. 사의(司儀)가 상주를 인도하여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사의(司儀)가 창하기를, ‘재배(再拜)하고 곡(哭)하라.’ 하면, 상주가 두 번 절하고 곡(哭)하여 슬픔을 다하며, 안팎의 사람들이 모두 두 번 절하고 곡(哭)하여 슬픔을 다하고 온 집이 슬퍼한다. 사의(司儀)가 상주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영좌 앞에 이르러 꿇어앉는다. 집사자 1인이 향합(香合)을 받들고 1인이 향로(香爐)를 받들고 꿇어앉아 바치면, 상주가 삼상향(三上香)하여 집사자가 영좌(靈座) 앞에 바친다. 집사자가 차[茶]와 술[酒]을 올리면 상주(喪主)가 차를 강신(降神)하고 술을 올린다. 사의가 찬(贊)하기를, ‘부복(俯伏)·흥(興)·소퇴(少退)·궤(跪)하라.’ 하면 축(祝)이 영좌(靈座)의 왼쪽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꿇어앉아 제문(祭文)을 읽기를 끝마친다. 상주가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 내려와서 자리로 돌아간다. 사의가 창하기를, ‘재배(再拜)하고 곡(哭)하라.’ 하면 상주가 두 번 절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하고, 안팎의 사람들이 모두 두 번 절하고 슬픔을 다하고서 나간다.”</p>	<p>設祖奠。其儀： 有司先設喪主位於庭東近北北向，執事者奠祝版於靈座之左，設香爐、香(位)〔合〕并燭於靈座前，設尊於戶外之左。時至，執事者捧盞升自東階，奠于尊所。【酒盞三茶鍾一。】捧饌升奠于靈座前。司儀引喪主入就位北向立。司儀唱“再拜、哭”，喪主再拜哭盡哀，內外俱再拜哭盡哀堂哀。司〔儀〕引喪主升自東階，詣靈座前跪。執事者一人捧香合，一人捧香爐跪進，喪主三上香，執事者奠于靈座前。執事者進茶·酒，喪主酌茶奠酒。司儀贊“俯伏、興、少退、跪”，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祭文，訖。喪主俯伏興降復位。司儀唱“再拜、哭”，喪主再拜哭盡哀，內外俱再拜哭盡哀以出。</p>
<p>세조 27권, 8년(1462 임오 / 명 천순(天順) 6년) 2월 21일(병술) 2번째기사 견전의(遣奠儀)의 의식</p>	<p>견전의(遣奠儀)를 베풀었는데, 그 의식은 이러하였다. “유사(有司)에서 먼저 상주(喪主)의 자리를 뜰 동쪽에 북쪽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고 유사(有司)에서 【국장 도감(國葬都監)이다.】 순(輶)을 【지금은 운여(輪輿) 2개를 사용한다.】 내정(內庭)에 바친다. 의장과 명기(明器)를 외문(外門) 앞에 차례로 진열한다. 집사자(執事者)가 축판(祝版)을 영좌(靈座)의 왼쪽</p>	<p>設遣奠。其儀： 有司先設喪主位於庭東近北北向，有司【國葬都監。】進輶【今用輪輿二。】於內庭。儀仗、明器序列於外門前。執事者奠祝版於靈座之左，設</p>

에 바치고, 향로(香爐)·향합(香合)과 아울러 초[燭]를 영좌 앞에 설치하고 준(尊)을 지계문 밖의 왼쪽에 설치한다.

때가 이르면 집사자(執事者)가 잔(盞)을 받들고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준소(尊所)에 바치고 【주잔(酒盞)이 3개이고 다중(茶鍾)이 1개이다.】 찬을 받들고 올라가서 영좌 앞에 전(奠)드린다. 사의(司儀)가 상주(喪主)를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선다. 사의(司儀)가 창(唱)하기를, ‘재배(再拜)하고 곡(哭)하라.’ 하면, 상주(喪主)가 두 번 절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하고, 안팎의 사람들이 모두 두 번 절하고 곡(哭)하여 슬픔을 다한다. 사의가 상주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영좌의 앞에 이르러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집사자 1인이 향로를 받들고 1인이 향합을 받들고 꿇어앉아 바치면 상주가 삼상향(三上香)하여, 집사자가 영좌(靈座)앞에 바친다. 집사자가 차와 술을 바치면, 상주가 차를 강신(降神)하고 술을 세 번 올린다. 사의가 찬(贊)하기를, ‘부복(俯伏)·흥(興)·소퇴(少退)·궤(跪)하라.’ 하면, 축(祝)이 영좌(靈座)의 왼쪽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꿇어앉아 제문을 읽기를 끝마친다. 상주가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자리에서 조금 물러난다. 직장(職掌)이 애책안(哀冊案)을 준(尊)의 동쪽에 설치하고, 애책(哀冊)을 받들고 올라가서 책안(冊案)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안(案) 위에 바친 다음에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난다. 사의가 찬(贊)하기를, ‘궤(跪)하라.’ 하면 상주가 꿇어앉는다. 봉책관(捧冊官)이 책안(冊案)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애책(哀冊)을 들면, 독책관(讀冊官)이 꿇어앉아 애책(哀冊)을 읽기를 끝마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물러간다. 봉책관(捧冊官)이 애책(哀冊)을 인순부(仁順府)의 관원에게 준다. 사의가 찬(贊)하기를, ‘부복(俯伏)·흥(興)·재배(再拜)·곡(哭)하라.’ 하면, 상주(喪主)가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두 번 절하고 곡(哭)하여 슬픔을 다하고, 안팎의 사람들이 모두 두 번 절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한다. 집사자가 찬(饌)을 거두기를 끝마친다. 사의가 상주를 인도하여 임시로 막차(幕次)에 돌아간다. 여구관(昇

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設尊於戶外之左。時至，執事者捧盞升自東階，奠於尊所。【酒盞三茶鍾一。】捧饌升奠於靈座前，司儀引喪主入就位北向立。司儀唱“再拜、哭”，喪主再拜哭盡哀，內外俱再拜哭盡哀。司儀引喪主升自東(階) [階]，詣靈座前北向跪。執事者一人捧香爐，一人捧香合跪進。喪主三上香，執事者奠於靈座前。執事進茶酒，喪主醉茶奠(二) [三] 酒。司儀贊“俯伏、興、少退、跪”，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祭文訖。喪主俯伏興少退於位。職掌設哀冊案於奠東，捧冊升詣冊案前，跪奠於案上，俯伏、興、少退。司儀贊“跪”，喪主跪。捧冊官詣冊案前跪舉冊，讀冊官跪，讀冊訖，俯伏、興、少退。捧冊官以冊授仁順府官員。司儀贊“俯伏、興、再拜、哭”，喪主俯伏、興、再拜、哭盡哀，內外俱再拜哭盡哀。執事者撤饌訖。司儀引喪主權歸幕次。昇柩官進輜於階下，內官捧魂帛函，安於腰輦，虞主櫃次其後。內官捧諡冊、諡印、哀冊及平時封冊置於輦。攝僉知通禮進靈座前跪告請

	<p>柩官)이 순(輓)을 계단 아래에 바치면 내관(內官)이 혼백함(魂帛函)을 받들어 요여(腰輦)에 안치(安置)하고, 우주궤(虞主櫃)는 그 뒤에 차례한다. 내관(內官)이 시책(諡冊)·시인(諡印)·애책(哀冊)과 평시의 봉책(封冊)을 받들어서 여(輦)에 둔다. 섭침지통례(攝僉知通禮)가 영좌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고(告)하기를, ‘순(輓)에 오르기를 청합니다.’ 하고,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물러간다. 봉구관(捧柩官)이 여구관(昇柩官)과 내관(內官)을 거느리고 영구(靈柩)를 받들어 순(輓)5600)에 올린다. 【당(堂) 안에서 쓰는 소운여(小輪輦)와 방향을 바꾸어 올리는 대운여(大輪輦)인데, 소금저(素錦楮)로써 덮는다.】 섭침지통례(攝僉知通禮)가 앞에서 인도하여 영구(靈柩)가 외문(外門) 밖에 이르면, 섭침지통례가 순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고(告)하기를, ‘대여(大輦)에 오르기를 청합니다.’ 하고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물러간다. 봉구관(捧柩官)이 여구관(昇柩官)과 내관(內官)을 거느리고 영구(靈柩)를 받들어 대여에 올린다. 섭침지통례(攝僉知通禮)가 영가(靈駕)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고(告)하기를, ‘영가가 진발(進發)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물러간다. 의장(儀仗)과 시위(侍衛)가 차례차례 앞에서 인도하고, 상주(喪主)이하가 차례대로 곡(哭)하고 따라가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p>	<p>升輓，俯伏、興、退。捧柩官帥昇柩官及內官捧柩升輓。【堂內用小輪輦，轉升大輪輦，覆以素錦(升) [楮]。】攝僉知通禮前導，靈柩至外門外，攝僉知通禮進輓前跪，告“請升大輦”，俯伏、興、退。捧柩官帥昇柩官及內官捧柩升大輦。攝僉知通禮進靈駕前跪告“請靈駕進發”，俯伏興退。儀衛次次前引，喪主以下以次哭從如儀。</p>
<p>세조 27권, 8년(1462 임오 / 명 천순(天順) 6년) 2월 21일(병술) 4번째기사 발인의(發引儀)의 의식</p>	<p>발인의(發引儀)는 이러하였다. “유사(攸司)에서 길흉 의장(吉凶儀仗)을 진열(陳列)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견전례(遣奠禮)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섭침지통례(攝僉知通禮)가 영좌(靈座)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고(告)하기를, ‘순(輓)에 【지금은 운여(輪輦) 2개를 사용한다.】 오르기를 청합니다.’ 하고, 고(告)하기를 끝마치면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난다. 내관(內官)이 시책(諡冊)·인(印)·애책(哀冊)과 평시책(平時冊)5623)을 받들어 각각 요여(腰輦)에 안치(安置)하고, 내관(內官)이 혼백함(魂帛函)을 받들어 교자(轎子)에 안치(安置)하고, 우주궤(虞主櫃)를 그 뒤에 둔</p>	<p>發引儀。 攸司陳吉凶儀仗如儀，竣遣奠禮畢，攝僉知通禮進當靈座前，跪告“請升輓”【今用輪輦二。】告訖，俯伏、興。內官捧諡冊、印、哀冊及平時冊，各安於腰輦，內官捧魂帛函，安於轎子，虞主櫃置其後。捧柩官帥昇柩官及內官，捧柩升輓，【堂中用小輪輦，轉升大輪</p>

다. 봉구관(捧柩官)이 여구관(昇柩官)과 내관(內官)을 거느리고, 영구(靈柩)를 받들어 순에 올린다. 【당(堂) 안에서 쓰는 소운여(小輪輦)와 방향을 바꾸어 올리는 대운여(大輪輦)인데, 소금저(素錦楮)로써 덮는다.】 섭침지통례(攝僉知通禮)가 앞에서 인도하여 영구(靈柩)가 외문(外門) 밖에 이르면, 섭침지통례가 순 앞에 나아가서 고(告)하기를, ‘대여(大輦)에 오르기를 청합니다.’ 하고,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난다. 봉구관(捧柩官)이 여구관(昇柩官)과 내관(內官)·만사(挽士)를 거느리고 영구를 받들어 대여에 올린다. 섭침지통례(攝僉知通禮)가 대여(大輦) 앞에 나아가서 고(告)하기를, ‘영여(靈輦)가 진발(進發)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물러간다. 탁(鐸)을 잡은 사마(司馬)가 모두 탁(鐸)을 흔든다. 【무릇 영여가 나아가서 물러갈 적에는 사마(司馬)가 모두 탁(鐸)을 흔든다.】 영여(靈輦)가 움직인다. 시위관(侍衛官)이 차례대로 시위하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성(城) 밖에서 세 곳에 노제(路祭)를 드린 뒤에는 시종(侍從)하는 군신(君臣)은 모두 말에 오르고 의장(儀仗)을 잡는 자는 모두 보행(步行)한다.】 주정소(晝停所)에 이르면, 영장(靈帳)을 길 위에 남향하여 설치하는데, 땅의 적당한 데 따르며, 또 영좌(靈座)를 영구(靈柩)의 동쪽에 설치한다. 시녀(侍女)의 막차(幕次)는 영장(靈帳)의 곁에 설치하고, 혼백 교자(魂帛轎子)와 명정(銘旌)을 영좌(靈座) 앞에 머물게 한다. 영여(靈輦)가 이르면, 섭침지통례(攝僉知通禮)가 영여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고(告)하기를, ‘영여(靈輦)가 머물기를 청합니다.’ 한다. 봉구관(捧柩官)이 영여(靈輦)를 인도하여 영장(靈帳) 안에 안치(安置)하고, 【복완(服玩)5625) 과 명기(明器)5626) ·요여(腰輦)를 차례대로 진열(陳列)한다.】 내관(內官)이 혼백(魂帛)을 받들어 영좌(靈座)에 안치(安置)하고, 우주궤(虞主匱)를 그 뒤에 둔다. 명정(銘旌)은 영좌(靈座)의 오른쪽에 세워 놓고, 시책(諡冊)·시인(諡人)·애책(哀冊)·평시책(平時冊)은 영좌(靈座)의 남쪽에 둔다. 전(奠)을 설치하고 상식(上食)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끝마치면 발인(發引)은 모두

輦, 覆以素錦楮。】 攝僉知通禮前導, 靈柩至外門外, 攝僉知通禮進輓前跪, 告“請升大輦”, 俯伏、興。 捧柩官帥昇柩官及內官、挽士、奉柩升大輦。 攝僉知通禮進大輦前告“請靈輦進發”, 俯伏、興、退。 執鐸司馬俱振鐸, 【凡靈輦進退, 司馬皆振鐸。】 靈舉動。 侍衛官以次侍衛如儀。 【於城外三處路祭後, 侍從群官皆上馬, 執儀仗者皆步行。】 至晝停所, 靈帳設路上南向, 隨地之宜。 又設帳陳靈座於柩東。 侍女幕次設於靈帳之旁, 魂帛轎子及銘旌駐於靈座前。 靈輦至, 攝僉知通禮詣靈輦跪, 告“請駐輦”, 捧柩官導輦安於帳內。 【服玩、明器、腰輦, 以次陳列。】 內官捧魂帛安於靈座, 虞主匱置其後。 銘旌植於靈座之右, 諡冊、諡印、哀冊、平時冊置於靈座之南。 設奠及上食如常儀。 訖, 發引皆如初儀。 大輦至墓所洞口, 侍衛官竝下馬從行。 至靈幄廳前回輦南向。 攝僉知通禮進當大輦前跪, 告“請降大輦”, 告訖俯伏、興。 奉柩官帥昇柩官及內官捧柩安於座。 【用輪輦二, 轉升槨無足平床西首。】 設靈座於柩東,

	<p>처음의 의식과 같이 한다. 대여(大輿)가 묘소(墓所)의 동구(洞口)에 이르면, 시위관(侍衛官)이 모두 말에서 내려서 따라간다. 영악청(靈幄廳) 앞에 이르면 대여(大輿)를 돌려서 남향하게 한다. 섭첨지통례(攝僉知通禮)가 대여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고(告)하기를, ‘대여에서 내리기를 청합니다.’ 하고, 고(告)하기를, 끝나치고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난다. 봉구관(捧柩官)이 여구관(昇柩官)과 내관(內官)을 거느리고 영구(靈柩)를 받들어 자리에 안치(安置)한다.</p> <p>【운여(輪輿) 2개를 사용하고, 방향을 바꾸어 올리는 곽(槨)에는 발이 없는 평상을 쓰는데, 서쪽이 머리가 된다.】 영좌(靈座)를 영구 동쪽에 설치하고, 【관(棺)이 앉는 평상과 혼백(魂帛)이 앉는 평상(平床)은 남향하여 연달아 배열(排列)한다.】 내관(內官)이 혼백(魂帛)을 받들어 자리에 안치(安置)하고, 우주례는 그 뒤에 둔다. 명정(銘旌)을 받들어 영좌(靈座)의 동쪽에 세워 두고, 시책(諡冊)·시인(諡印)·애책(哀冊)을 받들어 각각 안(案)위에 안치(安置)하는데, 동서로 나누어 땅에 따라서 진열(陳列)한다. 복완(服玩)과 명기(明器)·요여(腰輿)도 또한 차례로 진열(陳列)하고, 의장(儀仗)은 영좌(靈座)의 곁에 들여와 진열한다. 시녀(侍女)도 모두 말에서 내려 영악(靈幄)의 서쪽에서 곡(哭)한다.</p> <p>【과자(笮子)5627] 로써 막차(幕次)를 만들고 장막(帳幕)을 쳐서 울타리를 설치한다.】 상주(喪主) 이하가 장문(帳門)밖에서 곡(哭)하는데 동서에서 서로 마주보고 곡(哭)하여 슬픔을 다하고, 각각 그 막차(幕次)로 돌아간다. 때가 이르면 하묘전(下墓奠)을 행한다.”</p>	<p>【棺坐平床，魂帛坐平床南向連排。】 內官捧魂帛安於座，虞主置其後，捧銘旌植於靈座之東，捧諡冊、諡印、哀冊各安於案上，分東西隨地陳列。服玩、明器、腰輿亦以次陳之，儀仗入陳靈座之旁。侍女竝下馬，哭於靈幄之西。【以笮子作幕，次用帳設圍。】 喪主以下哭於帳門外，東西相向哭盡哀，各退就次。時至，行下墓奠。</p>
<p>世祖 27卷, 8年(1462 壬午 / 명 천순(天順) 6年) 2月 21日(丙戌) 6번째기사 노제(路祭)의 의식</p>	<p>노제(路祭)를 행하였는데, 그 의식은 이러하였다. “기일(期日) 전 1일에 충扈위(忠扈衛)에서 성(城) 밖에다 【모화관(慕華館) 남쪽 가장자리이다.】 영장(靈帳)을 【대여(大輿)가 머무는 곳이다.】 설치하고, 또 장막(帳幕)을 그 곁에 설치한다. 집사자(執事者)가 영좌(靈座)를 【혼백(魂帛)을 두는 평상(平床)이다.】 진설(陳設)하고 축판(祝版)을 영좌(靈座)의 왼쪽에 올리고, 향로(香爐)·향합(香合)과 아울러 초[燭]를 영좌 앞에 설치하고, 다</p>	<p>行路祭。其儀： 前期一日忠扈衛於城外【慕華館南邊。】設靈帳，【大輿駐處。】又設帳於其旁。執事陳靈座【魂帛坐平(床)[函]。】奠、祝版於靈座之左，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次設禮饌，</p>

	<p>음에 예찬(禮饌)을 설치하고 준(尊)을 설치한다.</p> <p>의장(儀仗)이 장차 이르면,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에서 땅에 따라서 반열(班列)에 서는데,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선다. 영여(靈輦)가 이르면 섭첨지통례가 영여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고(告)하기를, ‘영여(靈輦)가 조금 머물기를 청합니다.’ 하고,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물러간다. 봉구관(捧樞官)이 여구관(昇樞官)을 거느리고 여(輦)를 인도하여 영좌(靈帳) 안에 안치(安置)하고, 내관(內官)이 혼백(魂帛)을 받들어 영좌에 안치(安置)한다. 통찬(通贊)이 찬(唱)하기를, ‘재배하라.’ 하면, 여러 관원이 모두 두 번 절한다. 집사자(執事者)가 반수(班首)를 인도하여 영좌(靈座) 앞에 나아간다. 봉례랑(奉禮郎)이 찬(贊)하기를, ‘궤(跪)하라.’ 하면, 반수(班首)가 꿇어앉고 여러 관원이 모두 꿇어앉는다. 집사자(執事者) 1인이 향합(香合)을 받들고 1인이 향로(香爐)를 받들고 꿇어앉아 바치면 반수가 삼상향(三上香)하고 향로(香爐)를 안(案)에 올린다. 집사자(執事者)가 차[茶]와 술[酒]을 바치면, 반수(班首)가 차로 강신(降神)하고 술을 세 번 전(奠) 드린다. 봉례랑(奉禮郎)이 찬(贊)하기를, ‘부복(俯伏)·흥(興)·소퇴(少退)·궤(跪)하라.’ 하면, 축(祝)이 영좌(靈座)의 왼쪽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축문(祝文)을 읽기를 끝마친다. 통찬(通贊)이 찬(贊)하기를, ‘부복(俯伏)·흥(興)·평신(平身)하라.’ 하면, 반수(班首)가 물러가서 자리에 엎드리고, 여러 관원이 모두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편다. 통찬(通贊)이 찬(贊)하기를, ‘재배하라.’ 하면, 여러 관원이 모두 두 번 절하고 물러간다. 섭첨지통례(攝僉知通禮)가 영여(靈輦)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고(告)하기를, ‘영여(靈輦)가 진발(進發)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물러간다. 집사자(執事者)가 찬(饌)을 거둔다.”</p>	<p>設尊。 儀仗將至， 議政府、六曹， 隨地立班， 異位重行。 靈輦至， 攝僉知通禮詣靈輦前跪， 告 “請靈輦小駐”， 俯伏、興、退。 捧樞官帥昇樞官導輦安於靈帳內， 內官奉魂帛安於靈座， 通贊唱 “再拜”， 衆官皆再拜。 執事者引班首， 詣靈座前。 奉禮郎贊 “跪”， 班首跪， 衆官皆跪。 執事者一人奉香合， 一人奉香爐跪進， 班首三上香， 奠爐于案， 執事者進茶酒， 班首饌酌茶三奠酒， 奉禮郎贊 “俯伏、興、小退”， 祝進靈座之左跪， 讀祝文訖。 通贊贊 “俯伏、興、平身”， 班首退伏位， 衆官皆俯伏、興、平身， 通贊贊 “再拜”， 衆官皆再拜退。 攝僉知通禮， 詣靈輦前跪告 “請靈輦進業， 俯伏興退。 執事者撤。</p>
<p>세조 27권, 8년(1462 임오 / 명 천순(天順) 6년) 2월 25일(경인)</p>	<p>천전의(遷奠儀)를 베풀었는데, 그 의식은 이러하였다.</p> <p>“기일(期日) 전 1일에 충호위(忠扈衛)에서 영장(靈帳)과 길유(吉帷)를 묘(墓) 앞에 동향하여 설치하고, 【길유(吉帷)는 영장(靈帳)의 안에 있다.】 집사자</p>	<p>設遷奠。 其儀： 前期一日， 忠扈衛設靈帳及吉帷於墓前東向。 【吉帷在靈帳之內。】 執事者</p>

3번째기사
천전의(遷奠儀)의 의식
과 지문

(執事者)가 영좌(靈座)를 길유(吉帷) 안에 설치하고, 시책(諡冊)·인(印)·평시책(平時冊)의 안(案)을 영좌(靈座) 앞에 설치한다. 유사(攸司)에서 상주(喪主)의 자리를 영좌(靈座)의 동쪽에 서향하여 설치하는데, 내관(內官)이 그 뒤에 있다. 집사자(執事者)가 축관(祝版)을 영좌(靈座)의 왼쪽에 올리고 영좌(靈座) 앞에 진(奠)을 설치하고, 향로(香爐)·향합(香盥)과 아울러 초[燭]를 그 곁에 설치한다. 방상씨(方相氏)가 먼저 광(壙) 안에 이르러 창[戈]으로써 광(壙)의 네 모퉁이를 친다. 명기(明器)·복완(服玩)·애책(哀冊)·증옥(贈玉)·증백(贈帛) 등이 이르면 현실(玄室) 문밖 좌우에 진열한다.

때가 이르면 섭첨지통례(攝僉知通禮)가 영악청(靈幄廳)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고(告)하기를, ‘대여(大輦)에 오르기를 청합니다.’ 하고,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물러간다. 의장(儀仗)을 진열하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그때 시녀(侍女)는 막차(幕次)로 물러가서 먼저 서울에 들어간다.】 봉구관(捧樞官)이 여구관(昇樞官)과 내관(內官)을 거느리고 영구(靈樞)를 받들어 대여(大輦)에 올린다. 【2개의 윤여(輪輦)를 사용하여 방향을 바꾸어 올린다.】 내관(內官)이 혼백(魂帛)을 받들어 교차(轎子)에 안치(安置)하고 천전청(遷奠廳)에 이르러, 여(輦)를 인도하여 영유(靈帷) 안에 안치(安置)한다. 내관(內官)이 혼백(魂帛)을 받들어 영좌(靈座)에 안치(安置)하고 우주궤(虞主匱)를 그 뒤에 두고, 명정(銘旌)을 왼쪽에 세워 둔다. 집사자(執事者)가 존소(尊所)를 설치하고, 찬(饌)을 받들어 영좌(靈座) 앞에 진(奠)드린다. 사의(司儀)가 상주(喪主)를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면, 창(唱)하기를, ‘재배(再拜)하고 곡(哭)하라.’ 하면, 상주(喪主) 이하가 두 번 절하고 곡(哭)하여 슬픔을 다한다. 사의(司儀)가 상주(喪主)를 인도하여 영좌(靈座)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으면, 집사자(執事者) 1인이 향합(香盥)을 받들고 1인이 향로(香爐)를 받들어 꿇어앉아 바친다. 상주(喪主)가 삼상향(三上香)하는데, 집사자가 향로(香爐)를 안(案)에 올린다. 집사자가 차[茶]와 술[酒]을 바치면 상주(喪主)가 차로 강신(降神)하고 술을 세 번 진(奠)

設靈座於吉帷之內，設諡冊、印、平時冊案於靈座前。攸司設喪主位於靈座之東西向，內官在後。執事者奠祝版於靈座之左，設奠於靈座前，設香爐、香合并燭於其旁。方相氏先至壙內，以戈擊壙四隅。明器、服玩、哀冊、贈玉、贈帛等至，陳於玄室門外左右。時至，攝僉知通禮進靈幄廳，跪告“請升大輦”，俯伏、興、退。陳儀仗如儀。【時侍女退，次先入京。】捧樞官帥昇樞官及內官捧樞升大輦，【用二輪輦轉升。】內官捧魂帛安於轎子，至遷奠廳，導輦安於靈帷內。內官捧魂帛安於靈座，虞主匱置於後，銘旌植於左。執事者設尊所，奉饌奠于靈座前。司儀引喪主就位，唱“再拜、哭”，喪主以下再拜哭盡哀。司儀引喪主詣靈座前跪，執事者一人奉香盥，一人奉香爐跪進。喪主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執事者進茶酒，喪主酌茶三奠酒，俯伏、興、少退、跪。祝進靈座之左跪，讀祝文，訖，司儀引喪主復位唱“再拜、哭”，喪主以下再拜哭盡哀，以次出。先是，設喪主辭位於羨道之東，又設進哀冊官位於羨道西

드리고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가서 꿇어앉는다. 축(祝)이 영좌의 왼쪽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축문(祝文)을 읽기를 끝마친다. 사의(司儀)가 상주(喪主)를 인도하여 자리에 돌아가면, 창(唱)하기를, ‘재배(再拜)하고 곡(哭)하라.’ 하면, 상주 이하가 두 번 절하고 곡(哭)하여 슬픔을 다하고서 차례로 나간다. 이보다 앞서 상주의 사위(辭位)를 연도(羨道)의 동쪽에 설치하고, 또 애책(哀冊)을 바치는 관원의 자리를 연도(羨道)에 서향하여 설치한다. 서운관(書雲觀)에서 때를 보고하면, 섭침지통례(攝僉知通禮)가 고(告)하기를, ‘진발(進發)하기를 청합니다.’ 한다. 봉구관(捧柩官)이 여구관(昇柩官)을 거느리고 대여를 인도하여 현실(玄室)의 문밖에 이른다. 명정(銘旌)이 앞에서 인도하고, 【혼백(魂帛)과 우주(虞主)를 길유(吉帷)에 안치(安置)한다.】 상주(喪主) 이하가 곡(哭)하면서 따라간다. 섭침지통례(攝僉知通禮)가 대여(大輿) 앞에 나아가서 고(告)하기를, ‘대여에서 내려서 순(輦)에 【바로 윤여(輪輦)이다.】 오르기를 청합니다.’ 하면, 봉구관이 여구관과 만사(挽士)를 거느리고 영구(靈柩)를 받들어 순에 안치(安置)한 뒤, 윤대판(輪對板)을 얹어고 속을 풀어서 그 상하(上下)를 살피고, 끈을 매는 곳에 옮겨 안치(安置)한다. 【명주 속에 흰 정포(正布) 끈과 흰 저포(苧布) 속에 흰 정포(正布) 끈을 사용한다.】 점차 곽(槨) 안에다 내려서 안치(安置)하고 구의(柩衣)를 정제(整齊)하고 덮개 [蓋]를 덮는다. 윤전(輪轉)하여 현실(玄室)에 들어 자리에 【황장목(黃腸木)의 평상(平床)이다.】 안치(安置)하고 곽의(槨衣) 2벌을 【백주(白紬)·홍주(紅紬) 각각 1벌씩이다.】 덮고, 명정(銘旌)은 대[杠]를 떼어버리고 그 위에 놓는다. 애책(哀冊)을 바치는 관원이 애책을 받들어 재실(梓室)의 서쪽에 올리고, 차례로 증백(贈帛)·증옥(贈玉)을 애책의 남쪽에 올린다. 국장 도감 제조(國葬都監提調)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보삽(黼罽)·불삽(黻罽)을 재궁(梓宮)의 양 옆에 꿰고, 다음에 복완(服玩)과 【토등 상자(土藤箱子) 2개에 넣어서 담는다.】 명기(明器)를 받들어 각각 차례대로 편리한 데 따라서 진열한다. 상주(喪主)

向。 書雲觀報時， 攝僉知通禮告請 “進發。” 捧柩官帥昇柩官， 導大輿， 至玄室門外。 銘旌前引， 【魂帛、虞主仍安吉帷。】 喪主以下哭從。 攝僉知通禮進大輿前， 告請 “降大輿升輦。” 【卽輪輦也。】 捧柩官帥昇柩官及挽士捧柩安於輦， 去輪對板， 解裏察其上下， 移安於懸索。 【用紬裹白正布索及白苧布裹、白正布索。】 漸次下安於槨內， 整柩衣加蓋。 輸入玄室， 安於座。 【黃腸木平床】 覆以槨衣二， 【白紅紬各一】 銘旌去杠， 置其上。 進哀冊官奉冊， 奠於梓室之西， 次以贈帛、贈玉奠于哀冊之南。 國葬都監提調率其屬， 以黼罽、黻罽樹梓宮兩旁， 次奉服玩， 【入盛土籠箱子二。】 明器各以次隨便陳列。 喪主以下俯伏、哭， 贊者唱 “哭止、再拜、興、平身，” 喪主以下再拜、興、平身。 贊者唱 “俯伏、哭，” 喪主以下跪， 俯伏， 哭盡哀。 辭訖， 退詣立主廳。 【卽吉帷也。】 造墓都監提調鎖閉玄室， 掌令竝監鎖閉。 造墓都監提調覆土九鍤， 攸司帥工作覆土。 終事下誌石。 【埋於墓東近地石床之西。】 書雲觀祠后

	<p>이하가 부복(俯伏)하고 곡(哭)하는데, 찬자(贊者)가 창(唱)하기를, ‘곡(哭)을 그치고 재배(再拜)하고 흥(興)·평신(平身)하라.’ 하면, 상주 이하가 두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편다. 찬자(贊者)가 창(唱)하기를 ‘부복(俯伏)·곡(哭)하라.’ 하면, 상주(喪主) 이하가 꿇어앉아 부복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한다. 봉사(奉辭)가 끝나면 물러가서 입주청(立主廳)에 【곧 길유(吉帷)이다.】 나아간다. 조묘 도감 제조(造墓都監提調)가 자물쇠로 현실(玄室)을 잠그는데, 장령(掌令)도 아울러 자물쇠로 잠그는 일을 감독한다. 조묘 도감 제조가 흙 아홉 삽(鍤)을 덮으면, 유사(攸司)에서 작공(作工)을 거느리고 흙을 덮는다. 일을 끝내면 지석(誌石)을 내린다. 【묘(墓)의 동쪽 가까운 땅에 묻는데, 석상(石床)의 서쪽이다.】 서운관(書雲觀)에서 후토(后土)에 제사지내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상하(上下)에서 통용(通用)할 만한 물건 이외에는 모두 다 불태워버린다.”(후략)</p>	<p>土如儀。 上下通用之物外， 竝皆燒焚。(후략)</p>
<p>世祖 27卷, 8年(1462 壬午 / 명 천순(天順) 6年) 2月 25日(庚寅) 4번째기사 입주전의(立主奠儀)의 의식</p>	<p>입주전의(立主奠儀)를 베풀었는데, 그 의식은 이러하였다. “광(壙)을 덮는 일이 장차 끝나기를 기다려서, 유사(有司)에서 상주(喪主)의 자리를 길유(吉帷)의 동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집사자(執事者)가 탁자(卓子) 2개를 【묘소(墓所)의 검은 칠을 한 상(床)을 쓴다.】 영좌(靈座)의 동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하는데, 【제주 탁(題主卓)은 북쪽에 있고 다음에 필연탁(筆硯卓)이 있다.】 붓[筆]·벼루[硯]·먹[墨]·관반(盥盤)·관이(盥匱)와 【향탕(香湯)을 갖춘다.】 닦는 수건[巾]을 갖춘다. 다음에 축판(祝板)을 영좌(靈座)의 왼쪽에 올리고, 향로·향합과 아울러 초[燭]를 영좌 앞에 설치하고, 준(尊)을 그 곁에 설치한다. 때가 이르면 사의(司儀)가 상주(喪主)를 인도하여 탁자(卓子) 앞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선다. 축(祝)이 손을 씻고 궤(匱)를 열어 율주(栗主)5642) 를 받들어 내어 탁자 위에 두고 향탕(香湯)으로서 신주(神主)를 목욕시켜 수건으로 닦아서 탁자(卓子)위에 눕혀 둔다. 제주관(題主官)이 탁자 앞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서 먼저 함중(陷中)5643) 에다 쓰기를, ‘유명 조선국 왕세자빈 한씨 신주</p>	<p>設立主奠。 其儀： 俟掩壙將畢， 有司設喪主位於吉帷之東西向， 執事者設卓二【用墓所黑漆床。】於靈座東北南向。【題主卓在北， 次筆硯卓。】 具筆、硯、墨、盥盤、匱，【具香湯】 拭巾，【用白苧。】 次奠祝板於靈座之左， 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 設尊於其旁。 時至， 司儀引喪主詣卓前西向立， 祝盥手開匱， 奉出栗主， 置於卓上， 以香湯浴主， 拭以巾， 臥置卓上。 題主官詣卓前西向立。 先題陷中云 “有明朝鮮國王世子嬪韓氏。” 神主面云 “贈諡章順嬪韓氏神主”， 乃退。 祝奉安靈座</p>

	<p>(有明朝鮮國王世子嬪韓氏神主)’라고 하고, 전면(前面)에다 쓰기를, ‘증시 장순빈 한씨 신주(贈諡章順嬪韓氏神主)’라고 하고, 곧 물러간다. 축(祝)이 영좌(靈座)에 봉안(奉安)하고 혼백함(魂帛函)을 그 뒤에 둔다. 집사자(執事者)가 잔(盞)을 받들어 준소(尊所)에 두고 찬(饌)을 받들어 올려서 영좌(靈座) 앞에 전(奠)드린다. 사의(司儀)가 상주(喪主)를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는다. 집사자 1인이 향합(香合)을 받들고 1인이 향로(香爐)를 받들고서 꿇어앉아 바치면, 상주가 삼상향(三上香)하는데, 집사자가 향로(香爐)를 안(案)에 올린다. 집사자가 차와 술을 바치면 상주가 차로 강신(降神)하고 술을 세 번 전(奠)드린다. 사의(司儀)가 찬(贊)하기를, ‘부복(俯伏)·흥(興)·소퇴(少退)·궤(跪)하라.’ 하면, 축(祝)이 영좌의 왼쪽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꿇어앉아 제문(祭文)을 읽기를 끝마친다. 상주(喪主)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펴고, 내려와서 자리로 돌아간다. 사의가 창(唱)하기를, ‘재배(再拜)하고 곡(哭)하라.’ 하면, 슬픔을 다한다. 축(祝)이 울주(栗主)를 받들어 궤(匱) 속에 넣는다. 사의(司儀)가 상주(喪主)를 인도하여 임시로 막차(幕次)에 돌아간다. 집사자(執事者)가 예찬(禮饌)을 거두어 치우고 축판(祝版)을 구덩이에 묻는다.”</p>	<p>魂帛(廂) [函] 置其後。 執事奉盞置于尊所, 奉饌升奠于靈座前。 司儀引喪主詣靈座前跪。 執事者一人奉香合, 一人奉香爐跪進。 喪主三上香, 執事者奠爐于案。 執事進茶酒, 喪主酌茶三奠酒。 司儀贊“俯伏、興、小退、跪,” 祝進靈座之左, 西向跪, 讀祭文, 訖。 喪主俯伏、興、平身, 降復位。 司儀唱“再拜、哭”盡哀。 祝奉栗主納于匱中, 司儀引喪主權歸幕次。 執事者撤禮饌, 祝板瘞於坎。</p>
<p>世祖 27卷, 8年(1462 壬午 / 명 천순(天順) 6年) 2月 25日(庚寅) 5번째기사 안묘전의(安墓奠儀)의 의식</p>	<p>안묘전의(安墓奠儀)를 베풀었는데, 그 의식은 이러하였다. “흙을 덮는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알자(謁者)가 헌관(獻官)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여러 집사자의 자리를 헌관의 뒤에 설치하되,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하며, 다만 서향하여 북쪽이 위가 된다. 집사자가 축판(祝版)을 영좌(靈座) 앞에 올리고, 준(尊)을 지계문 밖 왼쪽에 설치한다. 때가 이르면 집사자가 준(尊)을 준소(尊所)에 두고, 찬(饌)을 받들어 올려서 영좌(靈座) 앞에 전(奠)드린다. 알자(謁者)가 창(唱)하기를, ‘재배(再拜)하고 곡(哭)하라.’ 하면, 헌관(獻官)이 두 번 절하고 곡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면 삼상향(三上香)한다. 집사자가 차[茶]와 술[酒]을 헌관</p>	<p>設安墓奠。 其儀： 俟覆土訖，謁者設獻官位於東階東南西向，設諸執事位於獻官之後，異位重行，但西向北上。 執事奠祝版於靈座前，設尊於戶外之左。 時至，執事置于尊所，奉饌升奠于靈座前。 謁者引獻官就拜位。 謁者唱“再拜、哭，”獻官再拜、哭。 謁者引獻官詣靈座前三上香。 執事者以茶酒授獻官，酌茶三奠酒，俯伏、興、小退、跪。 祝進靈</p>

	<p>(獻官)에게 주면, 차로 강신(降神)하고 술을 세 번 전(奠)드리고,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가서 꿇어앉는다. 축(祝)이 영좌의 왼쪽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제문(祭文)을 읽기를 끝마치면, 헌관을 인도하여 내려가서 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창하기를, ‘재배하고 곡하라.’ 하면, 헌관이 두 번 절하고 곡한다. 알자가 나가면, 집사자가 찬(饌)을 거두어 치우고, 축판(祝版)을 구덩이에 묻는다.”</p>	<p>座之左跪，讀祭文訖，引獻官降復位，謁者唱“再拜、哭”，獻官再拜哭。謁者出，執事者撤饌，祝版瘞於坎。</p>
<p>世祖 27卷, 8年(1462 壬午 / 명 천순(天順) 6年) 2月 25日(庚寅) 6번째기사 사후토제(謝后土祭)의 의식</p>	<p>사후토제(謝后土祭)를 행하였는데, 그 의식은 이러하였다. “흙을 덮는 일이 이미 끝나기를 기다려서, 집사자가 현궁(玄宮)의 왼쪽에 땅을 소제(掃除)하고, 후토씨(后土氏)의 신위(神位)를 남향하여 설치하고 왕골로써 자리를 깐다. 헌관(獻官)의 자리를 신위(神位)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집사자의 자리를 그 뒤에 서향하여 설치하되, 북쪽이 위가 되며, 알자(謁者)와 찬자(贊者)의 자리를 헌관의 서쪽에 남향하여 설치하되, 북쪽이 위가 된다. 축판을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올리고, 향로(香爐)·향합(香合)과 아울러 초[燭]를 신위(神位)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제기(祭器)를 설치하되, 찬구(饌具)를 채우기를 끝마치며, 다음에 존소(尊所)를 신위(神位)의 동남쪽에 설치한다. 집사관은 공복(公服)을 갖춘다. 때가 이르면, 알자(謁者)·찬자(贊者)가 먼저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네 번 절하기를 끝마치고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謁者)가 축(祝)과 여러 집사자를 인도하여 들어가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북향하게 한다. 찬자(贊者)가 말하기를, ‘사배(四拜)하라.’ 하면, 축(祝) 이하가 네 번 절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존소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면, 집준자(執尊者)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執事者)가 작(爵)으로써 술을 받는다. 알자(謁者)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면 삼상향(三上香)한다. 집사자(執事者)가 작(爵)을 헌관(獻官)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신위(神位) 앞에 전(奠)드린다. 헌관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가서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축</p>	<p>行謝后土祭。其儀： 俟覆土既畢，執事者玄宮之左除地，設后土氏神位南向，席以莞。設獻官位於神位東南南向，執事者位於其後西向北上，謁者、贊者位於獻官西南向北上。奠祝版於神位之右，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畢，次設尊所於神位東南。執事官具公服。時至，謁者、贊者先就拜位北向四拜訖就位。謁者引祝及諸執事入就拜位北向。贊者曰“四拜”，祝以下四拜。謁者引獻官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獻官詣神位前三上香。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以爵授執事者，奠於神位前。(俛)[俯]伏、興、小退、北向跪。祝就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俛)[俯]伏、興、退”，復位。贊者曰“四拜”，獻官四拜。謁</p>

	<p>(祝)이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祝文)을 읽기를 끝마친다. 알자가 찬(贊)하기를, ‘부복(俯伏)·흥(興)·퇴(退)하라.’ 하면 자리에 돌아간다. 찬자(贊者)가 말하기를, ‘사배(四拜)하라.’ 하면, 헌관이 네 번 절한다. 알자가 인도하여 나가고, 알자가 축(祝) 이하를 인도하여 배위(拜位)에 나아간다. 찬자(贊者)가 말하기를, ‘사배(四拜)하라.’ 하면, 축(祝) 이하가 네 번 절한다. 알자(謁者)가 인도하여 나가고, 알자가 배위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집사자가 찬(饌)을 거두어 치우고 축판을 구덩이에 묻는다.”</p>	<p>者引出，謁者引祝以下就拜位。贊者曰“四拜”，祝以下四拜。謁者引出，謁者就拜位，四拜而出。執事者撤饌，祝版瘞於坎。</p>
<p>세조 28권, 8년(1462 임오 / 명 천순(天順) 6년) 3월 27일(임술) 1번째기사 충훈부의 유사 상당에 게 공신 중에서 과음 하는 자를 모두 핵실 토록 하다</p>	<p>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고, 좌의정 신숙주·우찬성 구치관·하원군(河原君) 정수충(鄭守忠) 등을 불러 입시(入侍)하도록 하고 작은 술자리를 베풀었으며, 신숙주에게 이르기를, “공신(功臣) 등으로 과음(過飲)하여 죽은 자가 자못 많으니, 이계전(李季甸)·윤암(尹巖) 같은 이가 그러하였다. 또 화친군(花川君) 권공(權恭)·계양군(桂陽君) 이증(李增)·영중추 원사 홍달손(洪達孫) 등은 비록 죽지는 않았더라도 또한 이미 파괴해졌으니, 이것은 크게 옳지 못한 것이다. 내가 한결같이 금(禁)하여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한결같이 금지하는 것은 어려우니, 과음(過飲)하지 말게 함이 편하겠습니까.” 하였다. 명하여 충훈부(忠勳府)의 유사 당상(有司堂上)5708)에게 공신으로 과음하는 자는 모두 핵실하게 하였다.</p>	<p>壬戌/御思政殿，受常參，視事。召左議政申叔舟、右贊成具致寬、河原君鄭守忠等入侍設小酌，謂叔舟曰：“功臣等過飲而死者頗多，如李季甸、尹巖是也。且花川君權恭、桂陽君增、領中樞院事洪達孫等雖不死，亦已羸憊，是大不可。予欲一禁，使不得飲酒，何如？叔舟對曰：“一禁爲難，令勿過飲爲便。”命忠勳府有司堂上，舉劾功臣過飲者。</p>
<p>世祖 29卷, 8年(1462 壬午 / 명 천순(天順) 6年) 12月 28日(戊子) 2번째기사 진상한 과어의 수량이 부족하자 함길도 관찰</p>	<p>승정원에서 전지를 받들어 함길도 관찰사 강효문(康孝文)에게 치서(馳書)하기를, “이제 진상(進上)한 과어(瓜魚)는 봉서(封署)5976) 한 것이 분명한데 20미(尾)가 없으니, 이는 필시 수량을 헤아려서 봉해 쓴 뒤에 곧 거두어 간직하지 아니하여 인하여 잃은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오로지 잃을 뿐만 아니라 비록 불결한 물건을 섞을지라도 경이 또한 알지 못할 것이니, 경은 이 뜻을 살피서</p>	<p>承政院奉旨馳書于咸吉道觀察使康孝文曰：“今進瓜魚封署分明，而無二十尾，是必計數封裹後，不卽收藏，因而失之也。如此則不惟失之，雖雜不潔之物，卿亦不知，卿審此意，更加謹慎。”</p>

사 강효문에게 근신토록 하다	다시 근신(謹慎)을 더하라.” 하였다.	
세조 30권, 9년(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5월 24일(임자) 2번째기사 가뭇의 징조가 있어 공처에 술쓰는 것을 금하였는데 저녁 무렵에 비가 오다	예조(禮曹)에 전지하기를, “공처(公處)에 술 쓰는 것을 금(禁)하라.” 하였다. 이때에 가뭇 기운이 있는 까닭으로 이러한 명(命)이 있었는데, 저녁에 비로소 비가 내렸다.	傳旨禮曹曰: “禁公處用酒”, 時有旱氣, 故有是命。 夕始雨。
世祖 31卷, 9年(1463 癸未 / 명 천순(天順) 7年) 10月 25日(庚戌) 1번째기사 의정부와 승정원에서 육선을 드시도록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와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근래 상체(上體)께서 여러 날 근심하고 수고하시었고, 또 소선(素膳)을 드시니, 청컨대, 육선(肉膳)을 드소서.”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내 마음이 중한 것이다. 또 중궁(中宮)도 또한 소선(素膳)하고 있으니, 다시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또 내간(內間)의 일을 어떻게 알고서 말하는가?” 하였다.	庚戌/議政府、承政院啓: “近上體累日憂勞, 又御素膳, 請進肉膳。” 傳曰: “予心所重, 且中宮亦素膳, 其勿復言。 且內間事何與知而言之耶?”
세조 31권, 9년(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10월 29일(갑인) 1번째기사 정안사에 가서 원손의 장지를 상지하게 하다	처음에 원손(元孫)이 졸(卒)하였을 때 임금이 환관(宦官) 이득수(李得守)에게 명하여 외간(外間)에서는 고기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아종(兒宗)이 소식(素食)을 하니, 임금이 노(怒)하여 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에게 이르기를, “성인(聖人)이 법(法)을 만들 때 인정(人情)·천리(天理)를 참작(參酌)하여 천하(天下) 고금(古今)에 통용(通用)되는 전례(典禮)를 만들어서, 어진 자로 하여금 지나치는 일이 없게 하였고, 불초(不肖)한 자로 하여금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곧이곧대로 행하다가 산 자를 상(傷)하게 하니, 또한 3년의 상(喪)이 없는 자를 법(法)으로 어찌 고칠 수 있겠는가? 또 군신(君臣)의 사이에 압존(壓尊)할 곳에 어찌 그 사심(私心)을 쓸 수가 있겠는	甲寅/初, 元孫之卒也, 上命宦官李得守, 令外間用肉, 兒宗素焉, 上怒謂永膺大君琰曰: “聖人制法, 酌人情天理, 定爲天下古今通典, 使賢者不得過, 不肖者不得不及。 不則徑情而傷生, 亦無三年喪者, 法豈可改? 且於君臣之間壓尊之處, 何得用其私心? 雖父喪不得以凶服入闕, 此壓尊之禮也。 是故‘期之喪達乎大夫, 先飯而後已, 儀物

	<p>가? 비록 아버의 상(喪)을 당하더라도 흉복(凶服)을 입고 입궐(入闕)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압존(壓尊)의 예(禮)인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기년(期年)의 상(喪)은 대부(大夫)에게 달(達)하게 되고, 선반(先飯)만 하면 그만인 것이요, 의물(儀物)의 이장(異章)도 나라에서 1인이 받들고, 이러한 2인이 받들 것이 아니다.’고 하였다. 이것이 모두 성인(聖人)이 공도(公道)와 법기(法器)를 닦기 위한 것인데, 어찌 임금에게 사례(私禮)를 쓰겠으며, 어찌 백성에게 사례를 쓰겠는가? 만약 사례(私禮)를 쓰는 마음을 아름답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사례(私禮)를 쓸 것이니, 임금 앞에서 사례(私禮)를 쓴다면 이것은 임금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곧 금수(禽獸)와 같은 것이다.”</p> <p>하였다.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영천 부원군(鈴川府院君) 윤사로(尹師路)·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우의정(右議政) 구치관(具致寬)·행 상호군(行上護軍) 이순지(李純之)·호조 참판(戶曹參判) 임원준(任元濬) 등에게 명하여 상지관(相地官)을 거느리고 정인사(正因寺)에 가서 원손(元孫)의 장지(葬地)를 상지(相地)하게 하였다.</p>	<p>之異章，以國奉一人，非奉此二人’。斯皆聖人爲節公道法器耳，何有私於君？何有私於民哉？若以私禮之心爲可嘉，則人皆私禮，君前私禮，是慢君也。其弊無君，乃同於禽獸。”命永順君溥、鈴川府院君尹師路、河東府院君鄭麟趾、領議政申叔舟、右議政具致寬、行上護軍李純之、戶曹參判任元濬等，率相地官，往正因寺，相元孫葬地。</p>
<p>世祖 32卷, 10年 (1464 甲申 / 명 천순 (天順) 8年) 1月 1日 (甲寅) 1번째기사 근정전에서 조하를 받고 회례연을 베풀다</p>	<p>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조하(朝賀)를 받고 회례연(會禮宴)을 베풀었다. 왕세자(王世子)가 술을 올리고,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엄(李琰)·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은산 부정(銀山副正) 이철(李徹)·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우의정(右議政) 구치관(具致寬)·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 등 문무 백관(文武百官)과 왜인(倭人)·야인(野人)들이 모두 반열(班列)에 나아가고, 이보(李補)·신숙주 등이 차례로 술을 올려서 술이 일곱 순배 돌아 시위 군사(侍衛軍士)에게 술을 하사(下賜)하고, 기녀(妓女)와 공인(工人)에게 명(命)하여 전(殿)에 올라와서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또 왜인과 야인으로 하여금 모두 다 전(殿)에 올라와서 가무(歌舞)를 하게 하였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나례(儺禮)6288 를 구경하고, 세자</p>	<p>甲寅朔/御勤政殿，受朝賀，設會禮宴。王世子進酒，孝寧大君補、臨瀛大君璆、永膺大君琰、永順君溥、龜城君浚、銀山副正徹、河城尉鄭顯祖、領議政申叔舟、右議政具致寬、河東府院君鄭麟趾等文武百官、倭、野人皆就班。補、叔舟等以次進酒，酒七行，賜侍衛軍士酒，命妓工人上殿奏、樂，又令倭、野人皆升殿歌舞。御思政殿，觀儺戲，世子與三大君兒宗</p> <p>【永順君溥、龜城〔龜城君〕浚、銀</p>

	<p>는 세 대군(大君)과 아종(兒宗)6289) 과 신속주·구치관, 입직한 여러 장수·승지(承旨) 등과 더불어 입시(入侍)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p>	<p>山副正徹、河城尉鄭顯祖等每二人相遞入直者，上稱爲兒宗。】 叔舟、致寬入直，諸將、承旨等入侍，設酌。</p>
<p>세조 32권, 10년 (1464 갑신 / 명 천순(天順) 8년) 1월 14일 (정묘) 2번째기사 종묘에 제사하다</p>	<p>임금이 종묘(宗廟)에 친히 제사하였는데, 새로 만든 정대업(定大業)·보태평(保太平)의 음악을 연주하였고, 그 의식을 이리하였다.</p> <p>“그날 축시(丑時) 전 5각(刻)에 【축시 5각은 곧 3경(更) 3점(點)인데, 행사는 축시 1각에 한다.】 궁위령(宮闈令)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문을 열어 신악(神幄)을 정돈하여 깨끗이 털고, 매좌(每座)에 자리를 펴고서 포연(蒲筵)·궤순(績純)에 관석(莞席)을 더하여 바른쪽 조례(彫几)를 깨끗하게 한다. 종묘령(宗廟令)·전사관(典祀官)이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祭饌)을 담기를 마치면, 찬인(贊引)이 감찰(監察)을 인도하여 동계[阼階]로부터 올라와서, 【무릇 행사에 집사관의 승강(昇降)은 모두 동계로부터 한다.】 당(堂)의 위·아래를 살펴보고 의식과 같이 되지 않은 것을 규찰(糾察)하고 도로 나간다. 3각 전에 여러 향관(享官) 및 배제관(陪祭官)이 각각 그 제복을 입고, 【향관은 제복, 배제관은 조복(朝服)으로 한다.】 집례(執禮)가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을 거느리고 동문(東門)으로부터 들어와서 먼저 섬돌 사이의 악현(樂懸) 북쪽의 배위(拜位)로 나아가, 곁줄로 북향(北向)하고 서쪽을 위로 해서 사배(四拜)하고, 이를 마치면 각각 자리로 나아가고, 아악 령(雅樂令)이 공인(工人)과 두 사람의 무인(舞人)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로 나아가는데, 문무(文舞)는 들어와서 악현의 북쪽에 진설(陳設)하고, 무무(武舞)는 악현의 남쪽 길 서쪽에 선다. 봉례랑(奉禮郎)이 배제(陪祭)할 종친(宗親) 및 문무 백관(文武百官)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로 나아가고, 부지통례(副知通禮)가 아헌관(亞獻官)을 인도하고, 찬인(贊引)이 여러 향관(享官)을 인도하여 모두 동문(東門) 밖의 자리로 나아가고, 찬인(贊引)이 감찰(監察)·전사관(典祀官)·대축(大祝)·축사(祝史)·재랑(齋郎)·종묘령(宗廟令)·궁위령(宮闈令)·협률랑(協律郎)·봉조관(捧俎</p>	<p>上親祀宗廟，奏新制定大業、保太平之樂。 其儀：“其日丑前五刻【丑前五刻卽三更三點，行事用丑時一刻。】 宮闈令率其屬開室，整拂神幄，每座皆設席，蒲筵績純加莞席，粉純右彫几。宗廟令、典祀官各率其屬，入實饌具畢，贊引引監察升自阼階。【凡行事執事官升降，皆自阼階。】 按察堂之上下，糾察不如儀者還出。前三刻，諸享官及陪祭官各具其服，【享官祭服，陪祭官朝服。】 執禮率謁者、贊者、贊引入自東門，先就階間懸北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訖各就位。 雅樂令帥工人二舞入就，位文舞入陳於懸北，武舞立於懸南道西，奉禮郎分引陪祭宗親及文武百官入就位，副知通禮引亞獻官，贊引引諸享官，俱就東門外位，贊引引監察、典祀官、大祝、祝史、齋郎、宗廟令、宮闈令、協律郎、捧俎官、執樽壘篚冪者七祀，功臣、祝史、齋郎·執樽·壘·篚·冪者入就懸北拜位，重行北向西上，執禮曰‘四拜’，</p>

官)·집준자(執樽者)·집뢰자(執壘者)·집비자(執篋者)·집먹자(執罍者)와 칠사(七祀)·공신(功臣)의 축사·재량·집준자·집뢰자·집비자·집먹자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악현의 북쪽 배위에 나아가, 겹줄로 북향(北向)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서면 집례(執禮)가 말하기를, ‘사배(四拜)하라.’하고, 찬자(贊者)가 찬(贊)하기를, ‘국궁(鞠躬)·사배(四拜)·흥(興)·평신(平身)하라.’ 한다. 【무릇 집례의 말이 있으면 찬자가 다 전갈한다.】 감찰(監察) 이하가 모두 허리를 굽히고 네 번 절한 다음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典祀官)을 인도하여 자리로 나아가고, 찬인이 여러 집사(執事)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로 나아가서 관세를 마치고는 각각 자리로 나아간다. 1각(刻) 전에 부지통례(副知通禮)가 아헌관(亞獻官)을 인도하고, 찬인이 종헌관(終獻官)·진폐찬작관(進幣贊爵官)·천조관(薦俎官)·전폐찬작관(奠幣贊爵官)과 칠사(七祀)·공신(功臣)의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로 나아간다. 찬인이 대축(大祝)·종묘령(宗廟令)·궁위령(宮闈令)을 인도하여 동계[阼階]로부터 올라와 환조실(桓祖室)로 나아가서 들어가 감실(塋室)을 열고, 대축과 궁위령이 신위(神位)를 받들어 내어 자리에 진설한다. 【신악(神幄) 안으로 나아가 안석[几] 왼쪽에서 궤(匱)를 열고 자리에 진설한다. 선왕(先王)의 신주는 대축이 받들어 내는데, 백저건(白苧巾)으로 덮고, 선후(先后)의 신수는 궁위령이 받들어 내는데, 청저건(靑苧巾)으로 덮고, 서쪽을 위로 한다.】 태조(太祖) 이하의 신위는 환조실의 의례(儀禮)와 같이 하고, 인도해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인이 재량을 인도하여 작세위(爵洗位)로 나아가서 찬(瓚)을 씻고 찬을 닦으며, 작(爵)을 씻고 작을 닦아서 비(篋)에 놓아 받들고 태계(泰階)로 나아가는데, 여러 축사가 각각 맞이하여 섬돌 위에서 가져다가 존소(尊所)의 점(坫) 위에 놓기를 마친다. 여러 향관(享官)이 장차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면 판통례(判通禮)가 재궁(齋宮) 앞으로 나아가서 부복(俯伏)하고 꿇어앉아 중엄(中嚴)을 계청(啓請)하고, 조금 후에 또 외관(外辦)을 아뢴다.

贊者贊 ‘鞠躬、四拜、興、平身’。
 【凡執禮有辭，贊者皆傳贊。】 監察以下皆鞠躬四拜，興、平身。 贊引引監察及典祀官就位，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洗訖，各就位。 前一刻副知通禮引亞獻官，贊引引終獻官進幣贊爵官、薦俎官、奠幣贊爵官、七祀、功臣、獻官入就位。 贊引引大祝、宗廟令、宮闈令，升自阼階，詣桓祖室入開塋室，大祝、宮闈令捧出神位，設於座。 【詣神幄內於几左，啓匱設於座，先王神主大祝捧出，覆以白苧巾，先后神主宮闈令捧出，覆以靑苧巾，以西爲上。】 太祖以下神位如桓祖室儀，引降復位。 贊引引齋郎詣爵洗位，洗瓚拭瓚，洗爵拭爵，置於篋，捧詣泰階，諸祝史各迎取於階上，置於樽所坫上訖，諸享官將入就位。 判通禮詣齋宮前俯伏跪，啓請中嚴，小頃又啓外辦。 殿下具冕服以出，繖扇侍衛如常儀。 禮儀使導殿下至東門外，近侍跪進圭。 殿下執圭，繖扇仗衛停於門外，尙瑞官奉寶陳於小次之側。 禮儀使導殿下入自正門，【侍衛不應入者，止於門外。】 詣版位西向立。 【每立定禮儀

전하(殿下)가 면복(冕服)을 갖추고 나오는데, 산선(繖扇)의 시위는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예의사(禮儀使)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문 밖에 이르면, 근시(近侍)가 꿇어앉아 규(圭)를 올려 전하가 규를 잡는다. 산선과 의장(儀仗)은 문밖에 정지하고 상서관(尙瑞官)이 어보(御寶)를 받들어 소차(小次) 옆에 놓는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정문(正門)으로 들어와서 【시위로서 들어오지 못할 자는 문밖에 머무른다.】 판위(版位)로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매양 서게 되면 예의사가 물러나서 왼쪽에 선다.】 집례가 말하기를, ‘음악을 연주하라.’ 하여, 헌가(軒架)에서 보태평지악(保太平之樂)과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를 행하고서 음악을 연주하기를 그친다. 집례(執禮)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고, 예의사가 나아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국궁(鞠躬)·사배(四拜)·흥(興)·평신(平身)하기를 계청(啓請)하면, 전하가 허리를 굽히고 네 번 절한 다음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 자리에 있던 사람도 같이 한다. 【찬자도 또한 찬을 하는데 먼저 절을 한 자는 절하지 않는다.】 집례가 말하기를, ‘예의사는 행사(行事)하시기를 계청(啓請)하라.’ 하면, 예의사가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아뢰기를, ‘유사(有司)가 삼가 갖추었으니 행사하소서.’ 하고, 물러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근시가 관세위로 나아가서 관세를 마치고 돌아와 시위(侍位)한다. 알자(謁者)가 진폐찬작관과 전폐찬작관을 인도하여 관세위로 나아가서 관세를 마치고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환조실의 존소(尊所)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집례가 말하기를,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전폐례(奠幣禮)를 행하라.’ 하여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면, 관세위로 나아가서 북향하고 선다. 예의사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진규(摺圭)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규를 쫓는다. 【만일 쫓기가 불편하면 근시가 받들어 봉행한다.】 근시가 꿇어앉아 대야[匱]를 취하여 물을 붓고, 일어나 또 근시가 꿇어앉아 소반[盤]을 취하여 물을 받는데, 전하가 손을 씻으면 근시가 꿇어앉아 비(篋)에서 수건을 취하여 올리고. 전하가 손을 닦고 나면 근시가 수건을 받아서 비에 올려 놓는다. 예의사가 집규(執

使退立於左。】 執禮曰 ‘樂作’, 軒架作保太平之樂, 保太平之舞作, 樂止。 執禮曰 ‘四拜’, 禮儀使進俯伏跪, 啓請鞠躬、四拜、興、平身, 殿下鞠躬、四拜、興、平身, 在位者同。 【贊者亦贊, 先拜者不拜。】 執禮曰 ‘禮儀使啓請行事’, 禮儀使進俯伏跪啓 ‘有司謹具請行事’, 退復位。 近侍詣盥洗位, 盥洗訖, 還侍位。 謁者引進幣瓚爵官、奠幣瓚爵官, 詣盥洗位, 盥洗訖, 升自阼階, 詣桓祖室尊所北向立, 執禮曰 ‘禮儀使導殿下行奠幣禮’, 禮儀使導殿下詣盥洗位北向立。 禮(禮) [儀] 使俯伏跪, 啓請摺圭, 殿下摺圭。 【如摺不便, 近侍承奉。】 近侍跪取匱興添水, 又近侍跪取盤承水。 殿下盥手, 近侍跪取巾於篋以進, 殿下幌手訖, 近侍受巾, 奠於篋。 禮儀使啓請執圭, 殿下執圭, 禮儀使導殿下, 升自阼階 【近侍從升。】 桓祖室尊所西向立。 登歌作保太平之樂、保太平之舞作, 執尊者舉罍, 進幣瓚爵官酌鬱鬯。 近侍以瓚受鬱鬯, 禮儀使導殿下, 詣神位前北向立。 禮儀使俯伏跪, 啓請摺圭, 殿下跪摺圭, 在位皆跪。 【贊

圭)하기를 계청(啓請)하면 전하가 규를 잡는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면, 【근시가 따라 올라간다.】 환조실의 준소에 나아가 서향(西向)하여 선다. 등가(登歌)에서 보태평지악(保太平之樂)을 연주하고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를 춘다. 집준자(執尊者)가 먹(羈)을 들고 진폐찬작관이 울창(鬱鬯)을 떠내면 근시가 찬(瓚)으로 울창을 받는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예의사가 부복하여 꿇어앉아 진규(摺圭)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꿇어앉아 규를 꽂고, 자리에 있던 사람도 모두 꿇어앉는다. 【찬자도 또한 찬을 한다.】 근시 한 사람이 향합(香合)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고, 한 사람은 향로(香爐)를 받들어 올리면, 예의사가 삼상향(三上香)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세 번 향을 피우고, 근시가 향로를 안(案)에 올려 놓는다. 근시가 찬을 진폐찬작관에게 주어서 진폐찬작관이 찬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리면, 예의사가 찬을 잡고 관지(裸地)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찬을 잡아 땅에 강신(降神)하기를 마치고, 찬을 진폐찬작관에게 주는데, 진폐찬작관이 받아서 대축(大祝)에게 주어 준소(尊所)에 놓는다. 근시가 폐비(幣篚)를 진폐찬작관에게 주면 진폐찬작관이 폐백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린다. 예의사가 집폐헌폐(執幣獻幣)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폐백을 잡아 폐백을 드리우고, 폐백을 진폐찬작관에게 주어서 안(案)에 드리게 한다. 【무릇 진향(進香)·진찬(進瓚)·진폐(進幣)할 때는 모두 동쪽에 있게 하되 서향하고, 전로(奠爐)·수찬(受瓚)·진폐(奠幣)할 때는 모두 서쪽에 있게 하되 동향한다. 진작(進爵)·진작(奠爵)도 이에 준한다.】 예의사가 집규(執圭)·부복(俯伏)·흥(興)·평신(平身)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규를 잡고 부복했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는데, 자리에 있던 자도 모두 같이 한다. 【찬자도 또한 찬을 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서 태조실(太祖室)에 나아가고, 다음에 공정왕실(恭靖王室)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태종실(太宗室)에 나아가고, 다음에 세종실(世宗室)에 나아가고, 다음에 문종실(文宗室)에 나아가서 상향(上香)하고, 관창(裸

者亦贊。】 近侍一人捧香合跪進，一人捧香爐跪進，禮儀使啓請三上香，殿下三上香，近侍奠爐于案，近侍以瓚授進幣瓚爵官，進幣瓚爵官奉瓚跪進。禮儀使啓請執瓚裸地，殿下執瓚裸地。訖以瓚授奠幣瓚爵官，奠幣瓚爵官受以授大祝，置於尊所。近侍以幣篚授進幣瓚爵官，進幣瓚爵官捧幣跪進禮儀使，啓請執幣、獻幣，殿下執幣、獻幣，以幣授奠幣瓚爵官，奠于案。【凡進香、進瓚、進幣皆在東西向，奠爐、受瓚、奠幣皆在西東向，進爵、奠爵準此。】 禮訖，使啓請執圭、俯伏、興、平身，殿下執圭、俯伏、興、平身，在位者同。【贊者亦贊。】 禮儀使導殿下出戶，詣太祖室，次詣恭靖王室，次詣太宗室，次詣世宗室，次詣文宗室，上香、裸鬯、奠幣竝如上儀訖，樂止。進幣瓚爵官、奠幣瓚爵官皆降復位，禮儀使導殿下出戶，降自阼階復位。當樂止時，諸祝史各取毛血盤、肝膋甑於前楹間，俱入奠於神位前，【毛血盤在甑之後，肝膋甑在籩之左。】 諸祝史俱取肝出戶燔於爐炭，還尊所。殿下既升裸。贊引引典祀

幣)하고 전폐(奠幣)하기를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음악을 그친다. 진폐찬작관·전폐찬작관이 모두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예의사가 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 동계로부터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음악이 그칠 때를 당하여 여러 축사가 각각 모혈반(毛血盤)과 간료등(肝膋甑)을 전영(前楹) 사이에서 가져와서 모두 들여와 신위 앞에 드린다. 【모혈반은 등(甑)의 뒤에 있고 간료등은 변(籩)의 왼쪽에 있다.】 여러 축사가 모두 간(肝)을 가지고 지계문을 나와서 화로불에 구워서 준소로 돌아간다. 전하가 이미 올라가 강신(降神)을 마치면, 찬인이 전사관(典祀官)을 인도하고 나와서 진찬(進饌)하는 사람을 거느리고 주방(廚房)에 나아가 비(匕)로써 소를 가마[鑊]에 들어 올려서 한 술[鼎]에 담고, 다음에 양을 들어 올려서 한 술에 담고, 다음에는 돼지를 들어 올려서 한 술에 담는데, 【매 실(室)마다 소·양·돼지가 각각 한 술이다.】 모두 경(肩)·먹(鬯)을 설치하며, 축사가 마주 들고 들어와 찬만(饌幔) 안에 진설한다. 알자(謁者)가 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나와서 찬소(饌所)로 나아가면 봉조관(捧俎官)이 이를 따르는데, 전하가 강신(降神)을 마치기를 기다려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말하기를, ‘찬(饌)을 올리라.’ 하면, 축사가 경(肩)을 들어 술 오른쪽에 두고 먹(鬯)을 걸어치우고, 비(匕)와 필(畢)을 술에 얹어 둔다. 전사관이 비(匕)로써 소를 떠올려 생갑(牲匣)에 담고, 다음에 양과 돼지를 떠올려 각각 생갑에 담는다. 【매 실(室)마다 소·양·돼지가 각각 한 갑이다.】 다음에 천조관을 인도하여 환조실의 조(俎)를 받게 하면 봉조관이 각각 생갑을 받든다. 전사관이 제찬(祭饌)을 인도하여 정문(正門)으로 들어오는데, 【남문이다.】 조(俎)가 처음 문에 들어오면 헌가(軒架)에서 풍안지악(豐安之樂)을 연주한다. 여러 축사가 함께 나아가서 모혈반을 걸어치워 동계에서 재랑(齋郎)에게 주어 나가게 하고, 찬(饌)이 태계(泰階)에 이르면 여러 대축이 섬돌 위로 맞이하여 인도한다. 천조관이 환조실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드리는데, 먼저 소를 올리고, 다음에 양을

官出，帥進饌者詣廚，以匕升牛于鑊，實于一鼎，次升羊實于一鼎，次升豕實于一鼎。【每(實)[室]爲牛豕各一鼎。】皆設局幕，祝史對舉，入設於饌幔內，謁者引薦俎官，出詣饌所，捧俎官隨之，候殿下裸，訖復位。執禮曰‘進饌’，祝史抽局委于鼎，右除幕，加匕畢于鼎。典祀官以匕升牛，實于牲匣，次升羊豕，各實于牲匣。【每(實)[室]牛羊豕各一匣。】次引薦俎官，捧桓祖室俎，捧俎官各捧牲匣，典祀官引饌，入自正門。【南門。】俎初入門，軒架作豐安之樂。諸祝史具進撤毛血盤，自阼階授齋郎以出，饌至泰階，諸大祝迎引於階上。薦俎官詣桓祖室神位前北向跪奠，先薦牛，次薦羊，次薦豕。【諸大祝助奠。】奠訖，啓牲匣蓋，詣太祖室，次詣恭靖王室，次詣太宗室，次詣世宗室，次詣文宗室，捧奠竝如上儀。訖樂止。謁者引薦俎官以下降自阼階復位，諸大祝各取蕭黍稷孺【而專切。】於脂，燔於爐炭，還尊所。謁者引進幣瓚爵官、奠幣瓚爵官，升詣桓祖室尊所，北向立。執禮曰‘禮儀使導殿下，行初獻禮’，禮

올리고, 다음에 돼지를 올린다. 【여러 대축이 올리는 것을 도운다.】 드리기를 마치면, 생갑의 덮개를 열고 태조실로 나아가고, 다음에 공정왕실로 나아가고, 다음에 태종실로 나아가고, 다음에 세종실로 나아가고, 다음에 문종실로 나아가서 받들어 드리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음악이 그치고, 알자가 천조관 이하를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여러 대축이 각각 쭉[蕭]·서직(黍稷)을 취해 【그대로 찌른다.】 기름에 버무려 화로 숯불에 태우고 준소로 돌아간다. 알자가 진폐찬작관과 전폐찬작관을 인도하여 환조실의 준소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면, 집례가 말하기를,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초헌례(初獻禮)를 행하시게 하라.’ 하여,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 환조실의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면, 등가(登歌)에서 보태평지악(保太平之樂)을 연주하고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를 춘다. 집준자가 먹을 들고, 진폐찬작관이 예재(醴齋)를 떠내면, 근시 두 사람이 작으로써 술을 받는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예의사가 부복하고 꿇어앉아서, 궐(跪)·진규(摺圭)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꿇어앉아서 규를 꿋고, 자리에 있던 자도 모두 꿇어앉는다. 【찬자도 또한 찬을 한다.】 근시(近侍)가 작을 진폐찬작관에게 주면, 진폐찬작관이 꿇어앉아 올린다. 예의사가 집작 헌작(執爵獻爵)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잔을 잡아서 잔을 드리는데, 작을 전폐찬작관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근시가 다음 작(爵)을 진폐찬작관에게 주면, 진폐찬작관이 작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예의사가 집작 헌작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잔을 잡아 잔을 드리는데, 작을 전폐찬작관에게 주어 왕후(王后)의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예의사가 집규(執圭)·부복(俯伏)·흥(興)·소퇴(少退)·북향(北向)·궐(跪)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규를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으면 음악이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으로 나아가서 동향하고 꿇어앉아 축문 읽기를 마치면 음악을 연주한다. 예의사가 부복·흥·평신

儀使導殿下，升自阼階，詣桓祖室尊所西向立，登歌作保太平之樂，保太平之舞作。執尊者舉罍，進幣瓚爵官酌醴齋，近侍二人以爵受酒。禮儀使導殿下詣神位前北向立，禮儀使俯伏跪，啓請‘跪、摺圭’，殿下跪、摺圭，在位者皆跪。【贊者亦贊。】近侍以爵授進幣瓚爵官，進幣瓚爵官捧爵跪進。禮儀使啓請‘執爵、獻爵’，殿下執爵、獻爵，以爵授奠幣瓚爵官，奠于神位前。近侍以副爵授進幣瓚爵官，進幣瓚爵官捧爵跪進，禮儀使啓請‘執爵、獻爵’，殿下執爵、獻爵，以爵受奠幣瓚爵官，奠于王后神位前。禮儀使啓請‘執圭、俯伏、興、少退、北向、跪’，殿下執圭、俯伏、興、少退、北向跪，樂止。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樂作。禮儀使啓請‘俯伏、興、平身’，殿下俯伏、興、平身，在位者俯伏、興、平身。禮儀使導殿下出戶，樂止。詣各室獻酌，竝如上儀。樂止，進幣瓚爵官、奠幣瓚爵官皆降復位，禮儀使導殿下出戶，降自阼階復位。禮儀使俯伏、跪，啓請入小次，導殿下將至小次，禮儀使俯伏、

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는데, 자리에 있던 자도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가면 음악이 그친다. 각실(各室)로 나아가서 술잔에 술을 따라 드리는 것은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음악이 그치고 진폐찬작관과 전폐찬작관이 모두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서 동계로부터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예의사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소차(小次)로 들어갈 것을 계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장차 소차에 이르려고 하면 예의사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석규(釋圭)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규를 놓으면 근시가 꿇어앉아 규를 받는다. 전하가 소차로 들어가면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는 물러가고, 정대업지무(定大業之舞)가 나온다.

처음에 전하가 장차 제자리로 돌아갈 때 집례가 말하기를, ‘아헌례(亞獻禮)를 행하라.’ 하여 부지통례(副知通禮)가 아헌관(亞獻官)을 인도한다. 만일 왕세자(王世子)가 아니면 알자가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흘(笏)을 깨끗이 하고 찬하여, 손을 씻고 손을 닦는다.【손을 씻고 손을 닦는데는 찬하지 않는다.】 흘을 잡으라고 찬하여,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와 환조실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하고 서게 하면, 헌가에서 정대업지악(定大業之樂)을 연주하고, 정대업지무(定大業之舞)를 춘다. 집준자가 먹을 들고 양제(盎齊)를 떠내면 집사자(執事者) 두 사람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아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서 흘(笏)을 깨끗이 하고 찬하여, 집사자가 작을 아헌관에게 주면, 작을 잡아 작을 두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집사자가 다음 작을 아헌관에게 주어 아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부지통례(副知通禮)가 흘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라고 찬하여 인도해 나가고, 차례대로 작헌(酌獻)하기를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하여 마친다. 음악이 그치고 인진사(引進使)가 인도하

跪，啓請釋圭，殿下釋圭，近侍跪受圭。殿下入小次，保太平之舞退，定大業之舞進。初，殿下將復位，執禮曰‘行亞獻禮’，副知通禮引亞獻官。若非王世子，則謁者引詣盥洗位北向立，贊搯笏，盥手悅手。【盥手、悅手不贊。】贊執笏，引亞獻官升自阼階，詣桓祖室尊所西向立，軒架作定大業之樂，定大業之舞作。執尊者舉罍酌盎齊，執事者二人以爵受酒。引亞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執事者以爵授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執事者以副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副知通禮贊執笏，俯伏、興、平身。引出以次，酌獻竝如上儀。訖樂止。引進使引降復位。亞獻官獻將畢，執禮曰‘行終獻禮’，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初，終獻官既升，贊引引七祀獻官，詣盥洗位搯笏、盥手、悅手訖，執笏詣尊所，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以爵受酒。獻官詣神位前西向跪搯笏，執事者授爵，獻官執爵，獻奠訖，執笏、俯伏、興、少退西向跪。祝就獻

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아헌관이 헌작을 장차 마치려 하면, 집례가 말하기를, ‘종헌례(終獻禮)를 행하라.’ 하여, 알자가 종헌관(終獻官)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亞獻)의 의식과 같이 한다. 처음에 종헌관(從獻官)이 이미 오르면, 찬인이 칠사 헌관(七祀獻官)을 인도하여 관세위로 나아가서 홀을 꽂고, 손을 씻고 손을 닦기를 마치면, 홀을 잡고 준소로 나아가게 한다. 집준자가 먹을 들고 술을 떠내면,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헌관이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꿇어앉아 홀을 꽂으면, 집사자가 작을 주고 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올리고 드리기를 마치면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리서서 서향하여 꿇어앉는다. 축(祝)이 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기를 마치고, 헌관이 부복했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펴면, 찬인이 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처음에 칠사 헌관(七祀獻官)이 장차 관세위로 나아갈 때, 찬인이 배향 공신 헌관(配享功臣獻官)을 인도하여 관세위로 나아가서 홀을 꽂고 손을 씻고 손을 닦게 한다. 이를 마치고 홀을 잡고 준소로 나아가서 집준자가 먹을 들고 술을 떠내면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헌관이 신위 앞으로 나아가 동향하고 서서 홀을 꽂으면, 집사자가 작을 준다. 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되, 차례대로 작을 드리기를 마치면, 홀을 잡고 찬인이 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처음에 종헌관이 이미 제자리로 돌아가면, 알자가 진폐찬작관과 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와서 음복위(飲福位)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대축이 환조실 준소로 나아가서 작을 가지고 상준(上尊)의 복주(福酒)를 떠내고, 또 대축이 조(俎)를 가지고 나아가서 신위 앞에 있는 조육(胙肉)을 덜어낸다. 집례가 말하기를,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음복위(飲福位)로 나가 시게 하라.’ 하면 예의사가 소차(小次)의 앞에 나아가 부복하였다가 꿇어앉아 음복위에 나아가기를 계청한다. 전하가 소차에서 나오면 근시가 꿇어앉아 규를 올리고, 예의사가 부복하였다가 꿇어앉아 집규(執圭)하기를 계청하여 전하

官之左北向(詭) [跪]，讀祝文訖，獻官俯伏、興、平身，贊引引獻官復位。初，七祀獻官將詣盥洗位，贊引引配享功臣獻官，詣盥洗位搯笏、盥手、悅手訖，執笏詣尊所，執(事) [尊] 者舉罍酌酒，執事者以爵受酒，獻官詣神位前東向立搯笏，執事者授爵，獻官執爵奠爵，以次奠訖，執笏，贊引引獻官復位。初，終獻官既復位，謁者引進幣瓚爵官、薦俎官，升自阼階，詣飲福位北向立。大祝詣桓祖室尊所，以爵酌上尊福酒，又大祝持俎，進減神位前胙肉。執禮曰‘禮儀使導殿下，詣飲福位’，禮儀使進小次前，俯伏、跪啓請詣飲福位，殿下出次，近侍跪進圭，禮儀使導殿下詣飲福位，禮儀使進小次前，俯伏、跪，啓請詣飲福位，殿下出次，近侍跪進圭。禮儀使俯伏跪，啓請執圭，殿下執圭，禮儀使導殿下詣飲福位西向立。大祝以爵授進幣瓚爵官，進幣瓚爵官捧爵北向跪進，禮儀使俯伏，啓請跪、搯圭，殿下跪、搯圭，在位者皆跪。殿下受爵飲訖，進幣瓚爵官受虛爵，以授大祝，大祝受復於坫。大祝以俎授薦俎官，捧俎北向跪進，禮

가 규를 잡으면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음복위로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한다. 대축이 작을 진폐찬작관에게 주면 진폐찬작관이 작을 받들어 북향하여 꿇어앉아서 올리고, 예의사가 부복하여 꿄(跪)·진규(摺圭)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꿇어앉아 규를 꺾고 자리에 있던 자도 다 꿇어앉는다. 전하가 잔을 받아 마시기를 마치면 진폐찬작관이 빈 작을 받아서 대축에게 주고, 대축이 받아서 접(坫)에 도로 놓는다. 대축이 조(俎)를 천조관에게 주어서 조를 받들고 북향하여 올리면, 예의사가 수조(受俎)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조를 받아서 준다. 근시가 조를 받들어 동계로부터 내려와 문으로 나가서 사옹(司饗)에게 준다. 진폐찬작관과 천조관이 다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예의사가 집규(執圭)·부복(俯伏)·흥(興)·평신(平身)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규를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 자리에 있던 자도 모두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내려가면,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四拜)하라.’ 하고, 예의사가 부복하였다가 꿇어앉아 국궁·사배·흥·평신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국궁하여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 자리에 있던 자도 모두 같이 한다.【찬자도 또한 찬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변(籩)·두(豆)를 걷어치우라.’ 하면, 등가(登歌)에서 용안지악(雍安之樂)을 연주하고, 여러 대축들이 실(室)에 들어와 변·두를 걷어치운다.【걷는다는 것은 변·두 각각 하나씩을 전에 있던 자리에서 조금 옮겨 놓는 것이다.】 칠사·공신의 축사·재량이 각각 변·두를 걷어치우면 음악이 그친다. 집례가 말하기를, ‘송신례(送神禮)를 행하라.’ 하면, 헌가에서 흥안지악(興安之樂)을 연주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예의사가 부복하였다가 꿇어앉아 국궁·사배·흥·평신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국궁하여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 자리에 있던 자도 모두 같이 한다.【찬자도 또한 찬한다.】 음악이 그치면 예의사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예식이 끝났음을 아뢰고, 전하를 인도하여 채궁(齋宮)으로 돌아간다. 예의사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규를 놓기를 청하면

儀使啓請受俎，殿下受俎以授。近侍捧俎降自阼階出門，授司饗。進幣贊爵官、薦俎官皆降復位，禮儀使啓請執圭、俯伏、興、平身，殿下執圭、俯伏、興、平身，在位者皆俯伏、興、平身。禮儀使導殿下降復位，執禮曰‘四拜’，禮儀使俯伏跪，啓請鞠躬、四拜、興、平身，殿下鞠躬、四拜、興、平身，在位者同。【贊者亦贊。】執禮曰‘撤籩豆’，登歌作雍安之樂。諸大祝入室，撤籩豆。【撤者籩豆各一少移於古處】七祀功臣、祝史、齋郎各撤籩豆，撤訖樂止。執禮曰‘行送神禮’，軒架作興安之樂。執禮曰‘四拜’，禮儀使俯伏、跪，啓稱鞠躬、四拜、興、平身，殿下鞠躬、四拜、興、平身，在位者同。【贊者亦贊。】樂止，禮儀使俯伏跪，啓禮畢，導殿下還齋宮。禮儀使俯伏跪，請釋圭，殿下釋圭，近侍跪受圭，緞扇侍衛如常儀。殿下入齋宮，釋冕服。執禮曰‘望瘞’，引進使引亞獻官，詣望瘞位北向立，執禮帥贊者詣望瘞位西向立，諸大祝取黍稷飯，籍用白茅束之，以篚取祝版及幣，降自西階，置於坎，執禮曰‘可瘞’，

전하가 규를 놓고 근시가 규를 받으며, 산선의 시위는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하고, 전하는 재궁에 들어가 면복(冕服)을 벗는다. 집례가 말하기를, ‘망예(望瘞)하라.’ 하면 인진사(引進使)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망예위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집례가 찬자를 거느리고 망예위(望瘞位)로 나아가 서향하고 서면, 여러 대축들이 서직반(黍稷飯)을 가져다가 백모(白茅)로 깔아서 묶고, 비(篚)로 축판(祝版)과 폐백을 취하여 서계(西階)로 해서 내려와 구덩이에 두면, 집례가 말하기를, ‘묻으라.’ 하여, 흙을 구덩이에 반쯤 채우는데, 종묘령이 감시(監視)한다. 부지통례가 아헌관을 인도하고, 찬인이 여러 향관(享官)을 인도하여 나간다. 집례가 찬자를 거느리고 본디 자리로 돌아가고, 봉례랑(奉禮郎)이 배제(陪祭)한 종친(宗親)과 백관(百官)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간다. 찬인이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악현(樂懸) 북쪽의 배위(拜位)로 돌아간다.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四拜)하라.’ 하면, 감찰과 여러 집사가 다 국궁하여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 찬인이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간다. 아악 령이 공인과 두 무인(舞人)을 거느리고 나가고, 종묘령·대축·궁위령 이 신주를 들여 놓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악현 북쪽의 배위로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가고, 칠사 헌관이 서문 밖의 칠사의 예감(瘞坎) 남쪽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면, 집사자가 축판을 예감에 놓고서 묻기를 마치고 물러간다. 전사관과 종묘령이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궁위령이 지게문을 닫고 내려와서 물러나고, 거가(車駕)도 환궁(還宮)한다.”

이 제례(祭禮)는 대사성(大司成) 김필(金瑱)이 집례하였다. 임금이 제사를 마치고 재전(齋殿)에 돌아와서 예의사 예조 판서(禮曹判書) 박원형(朴元亨)과 도승지(都承旨) 노사신(盧思愼)을 불러 술을 하사하고 이르기를, “이제 연주한 새 악곡(樂曲)이 대례(大禮)를 잘 진행하여 하나도 차실(差失)이 없으니, 세종(世宗)의 유의(遺意)를 이루어 매우 기쁘다.”

置土半坎，宗廟令監視。副知通禮引亞獻官，贊引引諸享官出。執禮帥贊者還本位，奉禮郎分引陪祭宗親及百官，以次出。贊引引監察及諸執事，俱復懸北拜位。執禮曰‘四拜’，監察及諸執事皆鞠躬、四拜、興、平身，贊引以次引出。雅樂令帥工人二舞出，宗廟令、大祝、宮闈令納神主如常儀。執禮帥謁者、贊者、贊引，就懸北拜位，四拜而出，七祀獻官詣西門外七祀瘞坎之南北向立，執事者置祝版於瘞坎，瘞訖退，典祀官宗廟令各率其屬撤禮饌，宮闈令闔戶以降乃退，車駕還宮。”是祭也大司成金瑱執禮。上饗訖，還齋殿。召禮儀使禮曹判書朴元亨及都承旨盧思愼賜酒謂曰：“今奏新樂，得展大禮，一無差失，甚喜成世宗遺意。”元亨等曰：“若非上之善述，世宗之志，終墜地矣。”上又曰：“執禮者誰？”元亨對曰：“金瑱也。”又曰：“予比患病，艱於動作。昔飲福必卒爵，今不能然，可歎已。明日圜丘禮數寔繁，恐至勞倦，當改儀注，務從簡約，卿終夜勤動，宜先就圜丘齋所，休息以待令。執禮者就崔恒更節儀注

	<p>하니, 박원형 등이 이르기를, “만일 성상의 좋은 계승(繼承)이 없었더라면 세종의 뜻도 마침내 땅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이르기를, “집례자가 누구이었는데?” 하니, 박원형이 대답하기를, “김필이었습니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내가 근래에 병이 들어 동작하기 어렵다. 그전에는 음복(飮福)할 때 반드시 졸작(卒爵)6302) 하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탄식할 뿐이다. 명일(明日) 원구제(園丘祭)의 예수(禮數)6303) 가 매우 번거로와 노권(勞倦)한 데에 이를까 두려우니, 마땅히 의주(儀注)를 고쳐서 될 수 있는 대로 간약(簡約)하게 하고, 경(卿)은 밤새도록 움직여야 하니, 먼저 원구 재소(園丘齋所)에 가서 쉬면서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며, 집례자(執禮者)로 하여금 최항(崔恒)에게 나아가서 다시 의주를 간략하게 만들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김필과 최항이 전폐(奠幣)·삼헌(三獻)의 절차(節次)를 약하여, 전폐(奠幣)한 뒤 곧 삼헌의 의식을 연하여 올리도록 하여서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p>	<p>以啓。” 璿與恒約奠幣三獻節次，爲奠幣後，連奠三獻之儀以啓。 從之。</p>
<p>世祖 32卷, 10年 (1464 甲申 / 명 천순 (天順) 8年) 1月 15日 (戊辰) 1번째기사 원구단에 제사하다</p>	<p>원구(園丘)에 제사하였는데, 새로 만든 음악을 사용하였다. 그 의례는 이러하였다. “제삿날 행사하기 전 5각(刻)에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그 의복을 입고 들어와서 찬구(饌具)에 담기를 마치면, 여러 신위(神位)의 대축(大祝)들이 신위판(神位版)을 자리에 설치한다. 찬인(贊引)이 감찰(監察)을 인도하여 동계[卯階]로부터 올라와서 단(壇)의 위·아래를 살펴보고 의식과 같지 않은 것을 규찰(糾察)하고 도로 나간다. 3각(刻) 전에 여러 사관(祀官)과 배사(陪祀)할 여러 관원이 각각 그의 제복(祭服)을 입고, 【사관(祀官)은 제복(祭</p>	<p>戊辰/祀于園丘，用新制樂。 其儀曰：“祀日行事前五刻，典祀官帥其屬，服其服，入實饌具畢，諸位大祝設新位版於座。 贊引引監察升自卯階，按視壇之上下，糾察不如儀者還出。 前三刻諸祀官及陪祀群官各服其服。 【祀官祭服，陪祀官朝服。】 執禮帥謁者、贊者、贊引入自墻東門，先就壇南懸北</p>

服)으로 하고, 배서관(陪祀官)은 조복(朝服)으로 한다.】 집례(執禮)가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을 거느리고 유(壚)의 동문(東門)으로 들어와 먼저 단(壇)의 남쪽 현(懸)의 북쪽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北向)하고 서쪽을 위로 해서 네 번 절하고 나서 각각 자리로 나아간다. 아악 령(雅樂令)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봉례랑(奉禮郎)이 배사(陪祀)할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각각 바깥 유(壚)의 동문(東門)·서문(西門)을 경유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부지통례(副知通禮)가 좌분헌관(左分獻官)을 인도하고, 【왕세자(王世子)가 아니면 알자가 인도한다. 아래도 같다.】 알자(謁者)가 우분헌관(右分獻官)을 인도한다. 또 알자(謁者)·찬인(贊引)이 각각 여러 사관(祀官)을 인도하여 모두 유(壚)의 동문(東門) 밖의 자리로 나아가고, 찬인이 감찰(監察)·대축(大祝)·전사관(典祀官)·축사(祝史)·재랑(齋郎)·협률랑(協律郎)·봉조관(捧俎官)·집준자(執尊者)·집뢰자(執壘者)·집비자(執篋者)·집먹자(執爨者)를 인도하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북향(北向)하여 서쪽을 위로 한다. 집례(執禮)가 말하기를, ‘사배(四拜)하라.’ 하면, 찬자(贊者)가 전갈을 한다. 【무릇 집례의 말이 있으면 찬자가 모두 전갈한다. 아래도 같다.】 감찰(監察) 이하가 모두 네 번 절하고 나면, 찬인(贊引)이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로 나아가고, 전사관(典祀官)을 인도하여 주소(廚所)로 나아가며, 찬인이 모든 집사(執事)를 인도하여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1각(刻) 전에 알자. 찬인이 각각 진폐(進幣)·진주관(進幣進酒官)·전폐(奠幣)·진주관(奠幣奠酒官)·진조관(進俎官)·진조관(奠俎官)을 인도하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부지통례(副知通禮)가 좌분헌관(左分獻官)을 인도하고 알자가 우분헌관(右分獻官)을 인도하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찬인이 재랑(齋郎)을 인도하여 각각 작세위(爵洗位)로 나아가 작을 씻고 작을 닦고 나서 비(篋)에 넣어 준소(尊所)로 받들고 나아가서 점(坫) 위에 놓는다. 여러 사관(祀官)이 장차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면, 판통례(判通禮)가 대차(大次) 앞으로 나아가서 중엄(中嚴)을 계청(啓請)하고, 조금 후에

拜位, 重行北向西上四拜, 訖各就位。雅樂令帥工人入就位, 奉禮郎分引陪祀群官, 各由外壚東西門入就位。副知通禮引左分獻官, 【非王世子, 則謁者引之, 下同。】謁者引右分獻官。又謁者、贊引各引諸祀官, 俱就壚東門外位, 贊引引監察、大祝、典祀官、祝史、齋郎、協律郎、捧俎官、執尊·壘·篋·爨者入就位北向西上。執禮曰‘四拜’, 贊者傳贊。【凡執禮有辭, 贊者皆傳贊, 下同。】監察以下皆四拜訖, 贊引引監察就位, 引典祀官就廚所, 贊引引諸執事各就位。前一刻, 謁者、贊引各引進幣進酒官、奠幣奠酒官、進俎官、奠俎官, 入就位。副知通禮引左分獻官, 謁者引右分獻官, 入就位。贊引、齋郎各詣爵洗位, 洗爵拭爵訖, 置於篋, 捧詣尊所, 置於坫上。諸祀官將入就位, 判通禮詣大次前啓請中嚴, 少頃又啓外辦。殿下具冕服以出, 繖扇侍衛如常儀。禮儀使導殿下至中壚南門外, 近侍跪進圭, 禮儀使跪啓請執圭, 殿下執圭, 繖扇及寶停於門外。【侍衛不應入者, 亦止於門外。】禮儀使導殿下, 入止正門, 詣

또 외관(外辦)하기를 계청한다. 전하(殿下)가 면복(冕服)을 갖추고 나오는데, 산선(緘扇)의 시위는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예의사(禮儀使)가 전하를 인도하여 중유(中壘)의 남문(南門) 밖에 이르면, 근시(近侍)가 꿇어앉아 규(圭)를 올리고 예의사가 집규(執圭)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규를 잡고, 산선과 보(寶)는 문 밖에 정지한다. 【시위로서 들어오지 못할 자도 또한 문밖에서 머무른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와 정문(正門)에 서고 자리에 나아가 서향(西向)하여 선다. 【매양 서게 되면 예의사는 물러나서 왼쪽에 선다.】 집례(執禮)가 말하기를, ‘음악을 연주하라.’ 하면, 헌가(軒架)에서 보태평지악(保太平之樂)을 연주하고,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를 춘다. 나무를 태우고 털과 피[毛血]를 묻으면 여러 대축(大祝)들이 생수반(牲首盤)과 모혈두(毛血豆)를 들어서 각각 그 계단을 경유하여 축사(祝史)에게 주고, 축사는 각각 생반(牲盤)을 받들어 요단(燎壇) 위에 나아가 나무를 더하여 이를 굽는다. 또 대축은 각각 모혈두를 받들어 구덩이에 묻는다. 집례가 말하기를, ‘음악을 그치고 네 번 절하라.’ 하면, 예의사가 사배(四拜)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네 번 절한다. 【분헌관(分獻官)과 백관(百官)도 같이 한다.】 알자가 진조관(進俎官)·전조관(奠俎官)·봉조관(捧俎官)을 인도하여 나와서 찬소(饌所)로 나아가고, 알자가 진폐(進幣)·진주관(進幣進酒官)·전폐(奠幣)·전주관(奠幣奠酒官)을 인도하여 올라가 호천상제(昊天上帝)의 준소(尊所)로 나아가 북향(北向)하여 선다. 【알자는 단 아래에서 머무른다.】 집례가 말하기를,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폐백을 드리라.’ 하면,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호천상제의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집례가 말하기를, ‘음악을 연주하라.’ 하면 등가(登歌)에서 보태평지악(保太平之樂)과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를 한다. 예의사가 꿇(跪)·집규(摺圭)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꿇어앉아 규를 쫓는다. 【백관(百官)도 같이 한다.】 근시 한 사람이 향합(香盥)을 받들고 꿇어앉아 올리고, 한 사람은 향로(香爐)를 받들고 꿇어앉아 올리면, 예의사가 삼상향(三上香)하기를 계청하여

位西向立。【每立定，禮儀使退於左。】執禮曰‘樂作’，軒架作保太平之樂，保太平之舞作。燔柴瘞毛血，諸大祝舉牲首盤、毛血豆，各由其階，授祝史，祝史各捧牲盤，詣燎壇上，加柴燔之。又大祝各捧毛血豆，瘞於坎。執禮曰‘樂止、四拜’，禮儀使啓請四拜，殿下四拜。【分獻官、百官同。】謁者引進俎官、奠俎官、捧俎官，出詣饌所，謁者引進幣進酒官、奠幣奠酒官，陞詣昊天上帝尊所，北向立。【謁者止於壇下。】執禮曰‘禮儀使導殿下奠幣’，禮儀使導殿下，詣昊天上帝神位前，北向立。執禮曰‘樂作’，登歌作保太平之樂，保太平之舞作。禮儀使啓請跪、摺圭，殿下跪摺圭【百官同。】近侍一人捧香合跪進，一人捧香爐跪進，禮儀使啓請三上香，殿下三上香。近侍奠爐，進幣進酒官奉玉幣跪進，禮儀使啓請獻玉幣，殿下受玉幣，以授奠幣奠酒官，奠于神位前。【進香、進幣在東西向，奠爐、奠幣在西東向，進爵、奠爵同。】禮儀使啓請執圭、俯伏、興、平身，殿下執圭、俯伏、興、平身。【百官

전하가 세 번 향을 피운다. 근시가 향로를 드리고 진폐 진주관이 옥폐(玉幣)를 받들고 꿇어앉아 올린다. 예의사가 헌옥폐(獻玉幣)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옥폐를 받들어서 진폐진주관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진향(進香)·진폐(進幣)할 때는 동쪽에 있게 하되 서향(西向)하고, 전로(奠爐)·전폐(奠幣)할 때는 서쪽에 있게 하되 동향하며, 진작(進爵)도 이와 같다.】 예의사가 집규(執圭)·부복(俯伏)·흥(興)·평신(平身)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규를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백관도 같이 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황지기(皇地祇)의 신위 앞에 나아가 향(香)을 올리고 옥폐를 드리는 것을 위의 의식과 같이 하고, 다음에 배위(配位)의 앞에 나아가 향을 올리고 옥폐를 드리는 것을 위의 의식과 같이 하여 마친다. 집례가 말하기를, ‘음악을 그치라.’ 하면, 진폐 진주관 이하(以下)가 동계로부터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고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남계[午陞]로부터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처음에 전하가 장차 배위(配位)에 폐백을 드리려고 할 때 부지통례(副知通禮)가 좌분헌관(左分獻官)을 인도하여 남동계[已陞]를 경유하여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 꿇어앉는다. 【알자가 우분헌관(右分獻官)을 인도하여 남서계[未陞]를 경유하여 일시(一時)에 야명위(夜明位)에 나아가고, 다음에 풍운뢰우위(風雲雷兩位)에 나아가며, 다음에 해독산천위(海瀆山川位)에 나아간다. 진찬(進饌)·헌작(獻爵)도 이와 같다.】 축사(祝史)가 향함(香盥)을 받들고, 재량(齋郎)이 향로(香爐)를 받들어서 꿇어앉아 올리면 좌분헌관이 세 번 향을 피운다. 재량이 향로를 올리고, 대축이 폐백을 꿇어앉아 올리면 좌분헌관이 받아서 대축에게 주어 대명신위(大明神位) 앞에 올린다. 좌분헌관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여 다음에 성신위(星辰位)에 나아가고, 다음에 동해위(東海位)·남해위(南海位)·서해위(西海位)·북해위(北海位)에 나아가 향을 올리고 폐백을 드리는 것을 위의 의식과 같이 하고 나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처음 전하가 이미 올라가 폐백을 올리면 알자가 진조관(進俎官)·진조관(奠俎

同。】 禮儀使導殿下，詣皇地祇神位前上香，奠玉幣如上儀。次詣配位前上香，奠玉幣如上儀訖。執禮曰‘樂止’，進幣進酒官以下降自卯陞復位，禮儀使導殿下降自午陞復位。初，殿下將奠配位幣，副知通禮引左分獻官由已陞升詣神位前跪。【謁者引右分獻官，由未陞一時陞夜明位，次詣風雲雷兩位，次詣海瀆山川位，進饌、獻爵同。】祝史奉香盥，齋郎奉香爐跪進，左分獻官三上香。齋郎奠爐，大祝以幣跪進。左分獻官以受授大祝，奠于大明神位前。左分獻官俯伏、興、平身，次詣星辰位，次詣東·南·西·北海位，上香奠幣如上儀，訖降復位。初，殿下既陞奠幣，謁者引進俎官、奠俎官、奉俎官，出饌所，候殿下奠幣。訖祝史盛鼎實牲匣，進俎官、奠俎官帥捧俎官，各捧牲匣，詣正門外立。執禮曰‘進饌、樂作’，軒架作隆安之樂，饌各至其陞。【殿下將陞，進俎官、奉俎官等先陞，奠俎官後陞。】典祀官就本位。【正位三饌午陞下立，東三位饌已陞，西三位饌未陞下立。】執禮曰‘禮儀使導殿下進饌’，禮儀使導殿

官)·봉조관(奉俎官)을 인도하여 찬소(饌所)에 나가서 전하가 폐백 올리기를 기다린다. 이를 마치면 축사가 술에 가득히 생갑(牲匣)을 담고, 진조관·전조관이 봉조관을 거느리어 각각 생갑을 받들어 정문(正門) 밖에 나가서 선다. 집례가 말하기를, ‘찬(饌)을 올리고 음악을 연주하라.’ 하면, 헌가(軒架)에서는 융안지악(隆安之樂)을 연주하고 찬(饌)이 각각 그 뜰에 이르면, 【전하가 장차 오르려고 하면 진조관·봉조관이 먼저 오르고, 전조관은 뒤에 오른다.】 전사관이 본디 자리로 나아간다. 【정위(正位)의 3찬은 남계 아래에 서고, 동쪽 3위의 찬(饌)은 남동계에, 서쪽 3위의 찬은 남서계 아래에 선다.】 집례가 말하기를,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고 찬(饌)을 올리도록 하라.’ 하면,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상제위(上帝位)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예의사가 꿇(跪)·진규(摺圭)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동쪽에서 꿇어앉아 규를 쫓는다. 【분헌관과 백관도 꿇어앉는다.】 진조관 등이 생갑을 받들어 동쪽에서 꿇어앉아 올린다. 예의사가 진찬(進饌)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생갑을 받아 전조관에게 주고, 전조관은 서쪽에서 신위 앞에 올리고는 모두 본디 자리로 돌아간다. 예의사가 집규·부복·흥·평신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규를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 【분헌관과 백관도 같이 한다.】 다음에 황지기(皇地祇)에 나아가며, 다음에 배위 앞에 나아가 위의 의식과 같이 하여 마친다. 진조관 이하가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고 음악을 그치며,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말하기를, ‘초헌례(初獻禮)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진폐 진주관(進幣進酒官)·전폐 전주관(奠幣奠酒官)을 인도하여 상제(上帝)의 준소(尊所)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고,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상제의 준소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집례가 이르기를, ‘음악을 연주하라.’ 하면 등가(登歌)에서 보태평지악(保太平之樂)을 연주하고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를 춘다. 집준자(執尊者)가 떡을 들고, 근시(近侍)가 범제(泛齊)를 떠내면, 진폐 진주관이 작으로써 술을

下, 詣上帝位前北向立。 禮儀使啓請跪、摺圭, 殿下跪摺圭。【分獻官百官跪。】 進俎官等捧牲匣在東跪進。 禮儀使啓請進饌, 殿下受牲匣, 以授奠俎官, 奠俎官在西奠于神位前, 皆降復位。 禮儀使啓請執圭、俯伏、興、平身, 殿下執圭、俯伏、興、平身。【分獻官、百官同。】 次詣皇地祇, 次詣配位前, 如上儀訖。 進俎官以下降復位, 樂止。 禮儀使導殿下降復位。 執禮曰 ‘行初獻禮’, 謁者引進幣進酒官、奠幣奠酒官, 詣上帝尊所北向立, 禮儀使導殿下, 詣上帝尊所北向立。 執禮曰 ‘樂作’, 登歌作保太平之樂, 保太平之舞作。 執尊者舉罍, 近侍酌泛齊, 進幣進酒官以爵受酒。 禮儀使導殿下詣上帝神位前, 啓請跪摺圭。【百官跪。】 進幣進酒官捧爵跪進。 禮儀使啓請獻爵, 殿下以爵授奠幣奠酒官, 奠于神位前。 禮儀使啓請執圭, 俯伏、興、平身, 殿下執圭、俯伏、興、平身。 次詣皇地祇位前獻爵, 如上儀訖。 禮儀使導殿下詣上帝神位前北向跪, 執禮曰 ‘樂止’, 大祝東向跪, 讀祝文訖。 執禮曰 ‘樂作’, 禮儀使啓

받는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상제(上帝)의 신위(神位) 앞으로 나아가 궤(跪)·진규(摺圭)하기를 계청한다. 【백관도 꿇어앉는다.】 진폐 진주관이 작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예의사가 헌작(獻爵)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작을 전폐진주관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예의사가 집규·부복·홍·평신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규를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다음에 황지기위(皇地祇位) 앞에 나아가 헌작하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하여 마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상제신위(上帝神位)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으면, 집례가 말하기를, ‘음악을 그치라.’ 하고, 대축(大祝)이 동향하고 꿇어앉아 축문(祝文) 읽기를 마친다.

집례가 말하기를, ‘음악을 연주하라.’ 하고, 예의사가 부복·홍·평신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백관도 같이 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배위에 나아가 헌작하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음악을 그치라.’ 하면,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말하기를,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는 물러나고, 정대업지무(定大業之舞)를 행하라.’ 한다.

아헌례(亞獻禮)를 행하는데, 【초헌례와 같은데 다만 예제(醴齊)를 떠낸다.】 헌가(軒架)에서 정대업지악을 연주하고 정대업지무를 춘다.

종헌례(終獻禮)를 행하는데, 【아헌례와 같은데 다만 양제(盎齊)를 떠낸다.】 대축(大祝)이 정배위(正配位) 3위의 준소에 나아가 각각 제일준(第一尊)의 복주(福酒)를 떠내어 한 잔에 합해 두고, 또 대축이 조(俎)를 가지고 상제위(上帝位)의 조육(俎肉) 다리 하나를 털어내어 올린다. 집례가 말하기를, ‘복조(福胙)를 하사하라.’ 하면,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음복위(飲福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고, 진폐 진주관과 진조관이 동계[卯陞]를 지나서 오른다. 대축이 작을 진폐 진주관에게 주면, 진폐 진주관이 작을 받들고 서향하여 꿇어앉아서 올린다. 예의사가 궤·진규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꿇어앉아 규를 꽂고, 【분

請俯伏、興、平身，殿下俯伏、興、平身。【百官同。】禮儀使導殿下，詣配位獻爵如上儀。執禮曰‘樂止’，禮儀使導殿下降復位。執禮曰‘保太平之舞退，定大業之舞進’。行亞獻禮。

【如初獻，但酌醴齊。】軒架作定大業之樂，定大業之舞作。行終獻禮。

【如亞獻，但酌盎齊。】大祝詣正配位三位尊所，各酌第一尊福酒，合置一爵，又大祝持俎進減上帝位俎肉所一脚。執禮曰‘賜福胙’，禮儀使導殿下詣飲福位北向立，進幣進酒官、進俎官由卯陞隨陞。大祝以爵授進幣，進酒官進幣，進酒官捧爵西向跪進。禮儀使啓請跪摺圭，殿下跪摺圭，【分獻官、百官皆跪。】受爵卒爵，進幣進酒官受虛爵授大祝。又大祝以俎授進俎官，進俎官捧俎西向跪進。禮儀使啓請受俎，殿下受俎，以授近侍，近侍捧俎降自午陞出門授司饗。進幣進酒官、進俎官由卯陞降復位。禮儀使啓請執圭、俯伏、興、平身，殿下執圭、俯伏、興、平身。【百官同。】禮儀使導殿下降復位，執禮曰‘四拜’，禮儀使啓請四拜，殿下四拜。【百官同。】

헌관과 백관도 다같이 꿇어앉는다.】 작을 받아 졸작(卒爵)하면, 진폐 진주관이 빈 작을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또 대축이 조(俎)를 진조관(進俎官)에게 주면, 진조관이 조를 받들고 서향(西向)하여 꿇어앉아서 올린다. 예의사가 수조(受俎)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조를 받아 근시에게 주고 근시는 조를 받들어 남계로부터 내려와 문을 나가서 사옹(司饗)에게 준다. 진폐 진주관과 진조관이 동계로부터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고, 예의사가 집규(執圭)·부복(俯伏)·흥(興)·평신(平身)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규를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 【백관도 같이 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예의사가 사배(四拜)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네 번 절한다. 【백관도 같이 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변(籩)·두(豆)를 걸어 치우고 음악을 연주하라.’ 하면, 등가(登歌)에서 성안지악(成安之樂)을 연주하고, 여러 대축은 각각 변·두를 걸어 치운다. 【걸는다는 것은 변·두를 각각 하나씩 전에 있던 자리에서 조금 옮겨 놓는 것이다.】 집례가 말하기를, ‘음악을 그치라.’ 하고, 집례가 말하기를, ‘송신례(送神禮)를 행하라.’ 하면, 헌가에서 영안지악(寧安之樂)을 연주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四拜)하라.’ 하면, 예의사가 사배(四拜)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네 번 절한다. 【백관도 같이 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음악을 그치라.’ 하면, 예의사가 예식이 끝났음을 아뢰고, 전하를 인도하여 대차(大次)로 돌아간다. 전하가 중유문(中壘門) 밖에 이르러서 예의사가 석규(釋圭)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규를 놓고 근시가 규를 받으며, 시위(侍衛)하는 것은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하고, 부지통례가 좌분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집례가 말하기를, ‘망료(望燎)하고 물어라.’ 하면, 알자가 우분헌관을 인도하여 망료위(望燎位)에 나아가고, 집례가 찬자(贊者)를 거느리어 망료위(望燎位)에 나아가는다. 여러 대축이 각각 상제(上帝)·배위(配位)·대명(大明)·야명(夜明)·성신(星辰)·동남서북해(東南西北海)의 신좌(神座) 앞에

執禮曰 ‘徹邊豆、樂作’, 登歌作成安之樂, 諸大祝各撤邊豆。【撤者邊豆各一少移故處】 執禮曰 ‘樂止’, 執禮曰 ‘行送神禮’, 軒架作寧安之樂。 執禮曰 ‘四拜’, 禮儀使啓請四拜, 殿下四拜。【百官同。】 執禮曰樂止, 禮儀使啓禮畢, 導殿下還大次。 殿下至中壘門外, 禮儀使啓請釋圭, 殿下釋圭, 近侍受圭, 侍衛如常儀, 副知通禮引左分獻官出。 執禮曰 ‘望燎瘞’, 謁者引右分獻官, 詣望燎位, 執禮帥贊者詣望燎位。 諸大祝各詣上帝、配位、大明、夜明、星辰東西南北海神座前, 以筐取幣祝版, 祝史以俎載牲體, 上帝牲前一脚黍稷飯除飯及爵酒, 各由其陞, 降詣燎壇, 以幣祝版, 饌物置於燎柴。 執禮曰 ‘可燎’, 東西面各六人以炬火燎半柴, 典祀官壇司監視。 次詣望瘞位, 諸大祝詣皇地祇、岳瀆、山川神座前, 以筐取幣, 祝史以俎載牲體。【地祇牲前一脚。】 黍稷飯及爵酒各由其陞, 降置於坎。 執禮曰 ‘可瘞’, 置土半坎, 典祀官壇司監視, 謁者贊引各引諸祀官出, 執禮帥謁者贊引還本位, 奉禮郎分引陪祭宗親文武百官以次出, 贊

나아가 비(籩)에다 폐백과 축판(祝版)을 담고, 축사(祝史)는 조(俎)에다 생체(牲體)와 상제(上帝)에게 바친 희생(犧牲)의 앞다리 하나, 서직반(黍稷飯)·제반(除飯) 및 작주(爵酒)를 담아서 각각 그 계단을 경유하여 내려와 요단(燎壇)에 나아가서 폐백과 축판과 찬물(饌物)을 요시(燎柴)에 얹는다. 집례가 말하기를, ‘태위도 가하다.’ 하면, 동쪽·서쪽 각 6인이 횃불로써 나무를 반쯤 불태우는데, 전사관(典祀官)과 단사(壇司)가 감시(監視)한다. 다음에 망료위(望燎位)에 나아가고, 여러 대축이 황지기(皇地祇)·악독(岳瀆)·산천(山川)의 신좌(神座) 앞에 나아가 비에 폐백을 담고, 축사가 조(俎)에 생체, 【지기(地祈)에 바친 희생(犧牲)의 앞다리 하나.】 서직반(黍稷飯) 및 작주(爵酒)를 담아서 각각 그 계단을 지나서 내려와 구덩이에 놓는다. 집례가 말하기를, ‘묻어도 가하다.’ 하면, 흙을 구덩이에 반쯤 채우는데, 전사관·단사가 감시한다. 알자·찬인이 각각 여러 사관(祀官)을 인도하여 나가고, 집례가 알자·찬인을 거느리어 본디 자리로 돌아가며, 봉례랑(奉禮郎)이 배제(陪祭)한 종친(宗親)과 문무 백관(文武百官)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간다. 찬인이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배위(拜位)로 돌아간다.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四拜)하라.’ 하면, 감찰과 여러 집사가 네 번 절하고 나서 찬인이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간다. 아악 령(雅樂令)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나가고, 알자·찬자·찬인이 배위(拜位)에 나아가 네 번 절하고 나가며, 전사관이 신위판(神位版)을 갈무리하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내려와서 이에 물러간다.”

임금이 환궁(還宮)하여 우의정(右議政) 구치관(具致寬)·예조 판서(禮曹判書) 박원형(朴元亨)·도승지(都承旨) 노사신(盧思愼) 등을 불러 이르기, “옛 사람이 이르기, ‘문왕(文王)을 명당(明堂)에 종사(宗祀)하여 상제께 제사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실로 제왕(帝王)의 성사(盛事)이다. 또 내가 처음으로 신악(新樂)을 제정하여 교묘(郊廟)에 사용하여서 드디어 대례(大禮)를 치루어 선왕(先王)의 뜻이 이제 와서 이루어졌으니, 기쁨을 헤아리겠느냐?”

引引監察諸執事俱復拜位。執禮曰四拜，監察及諸執事四拜訖，贊引以次引出。雅樂令帥工人出，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藏神位版，徹禮饌以降乃出。還宮。”召右議政具致寬、禮曹判書朴元亨、都承旨盧思愼等曰：“古人云宗祀文王於明堂，以祀上帝，此實帝王之盛事。且予草定新樂而用之郊廟，遂成大禮。先王之志，乃今成之，喜可量耶？”其賜永順君溥、右參贊崔恒、禮儀使朴元亨鞍馬，領議政申叔舟、樂學提調梁誠之·成任、郎廳鄭沈馬一匹。又傳曰：“今日禮祀，式禮莫愆，園丘及宗廟享官各加一資，資窮者子壻弟姪中許一人代加。”平明還宮，至勤政殿，召王世子進酒，有頃入內，還御勤政殿，受賀。王世子致詞云：“新樂既成，殷禮告畢，先王大業，是繼是述，薦于郊廟，神人胥悌，於千萬年，永膺多福。”百官進箋曰：天啓昌期，握珍符而御極，時嚴愍祀，躬袞服以稱殷。喜溢臣工，慶綿宗社。恭惟聖敬日躋，聰明時憲，志之繼事之述，益恢無疆之宏規，治已定功

	<p>하고,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우참찬(右參贊) 최항(崔恒)·예의사(禮儀使) 박원형(朴元亨)에게는 안마(鞍馬)를,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 악학 제조(樂學提調) 양성지(梁誠之)·성임(成任), 낭청(郎廳) 정심(鄭沈)에게는 말 1필씩을 하사하였다. 또 전지하기를,</p> <p>“금일 인사(禮祀)6307) 에 식례(式禮)가 어긋남이 없었으니, 원구(園丘) 및 종묘(宗廟)의 향관(享官)에게 각각 한 자급(資級)씩을 더해 주고, 자궁자(資窮者)6308) 는 아들·사위·아우·조카 중에 한 사람에게 대가(代加)하도록 하라.” 하였다.</p> <p>해가 밝아올 무렵에 환궁(還宮)하여 근정전(勤政殿)에 이르러 왕세자(王世子)를 불러 술을 올리게 하고, 조금 뒤에 내전(內殿)으로 들어갔다가 근정전으로 환어(還御)하여 하례(賀禮)를 받았다. 왕세자가 치사(致詞)하여 이르기를,</p> <p>“신악(新樂)이 이미 이루어지고 융성한 예식이 끝났음을 고(告)하여 선왕(先王)의 대업(大業)이 이에 계승되고 밝게 퍼졌으며, 교묘(郊廟)에 친신(薦新)하여 신인(神人)이 모두 기뻐하니, 천만년(千萬年)에 길이 다복(多福)하소서.” 하였다. 백관(百官)이 진(箋)을 올려 이르기를,</p> <p>“하늘이 창성한 시기를 열어주시어 진귀한 부(符)를 장악하시고, 등극(登極)하여 때에 비사(毖祀)를 엄수(嚴修)하고 몸소 곤복(袞服)을 입고 융성한 예를 치르셨으니, 기쁨이 신공(臣工)에 넘치고 경사가 종사(宗社)에 연면(連綿)합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지극한 공경이 나날이 쌓이고 총명(聰明)이 때때로 밝아서, <선왕의> 뜻과 사업을 계승하여 무강(無疆)한 큰 규모를 더욱 넓히어 <태평의> 다스림은 이미 정해지고 공은 이미 이루어져 미처 하지 못했던 남은 전례(典禮)를 다 닦았습니다. 문·무(文武) 두 가지 춤에 있어서, 백왕(百王)의 것을 손익(損益)하고 아속(雅俗)을 잘 조화시켜 교묘(郊廟)에 통용(通用)하니, 행하고 그침에 변화(變化)가 있고 빠르고 느낌이 적당하여, 옛것이 아니요 유신(惟新)한 것이며, 구소(九韶)6309) 의 질주(迭奏)를 능가하고</p>	<p>已成，悉修未遑之遺典。就文武之二舞，兼損益於百王，雅俗克諧，郊廟通用。作止有變，疾舒適宜，非舊惟新，奄九韶之迭奏，盡美又善，增萬葉之永觀，豈惟群靈之居歆？抑亦列聖之胥懌。臣等叨參法從，欣覩縟儀，更仰穆穆之容，與虞獸而率舞。願介穰穰之福，倍漢嶽以爭呼。</p> <p>遂頒教曰：</p> <p>禮制樂作，蓋百年而可興，志繼事述，幸一朝而獲成，茲郊廟之用薦舉，神人胥悅。惟我太祖肇基鴻業，方草昧之經綸，蓋未遑於禮樂，逮我世廟，誕撫景運，象大業之耆定，念太平之當保，爰制樂舞，將薦郊廟，竟有志而未就。予以否德，嗣守丕基，思聿追於先志，期永觀於後嗣，更定二舞，用以禮祀，至音通於神明，和氣融於上下，屬茲大禮之成，宜布非常之恩。自今月十五日昧爽以前，除謀反、大逆、謀叛、子孫謀殺毆罵祖父母·父母、妻妾謀殺夫、奴婢謀殺主、謀故殺人、蠱毒魘魅、但犯強竊盜外，已發覺、未發覺，已結正、未結正，咸有除之，敢以有旨前事相告言者，以其罪罪之。於戲！</p>
--	---	--

아름다움과 좋은 방법을 다하여 만세(萬世)의 영원한 기쁨을 더하였으니, 어찌 오직 못 신령의 흠향(歆饗)뿐이겠습니까? 또한 열성(列聖)께서도 함께 기뻐하실 것입니다. 신 등은 외람되게 성한 예에 참여하여 즐겁게 옥의(縟儀)를 보았고, 다시 씩씩한 <전하의> 얼굴을 우러러보아, 우수(虞獸)6310) 와 더불어 같이 춤추었습니다. 원컨대 풍족한 복을 크게 받으시고 한(漢)나라의 갑절로 다투어 부르짖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드디어 교지(教旨)를 반포하여 이르기를,
 “예(禮)를 제정하고 악(樂)을 만드는 것은 대개 백년(百年)이 되어야 가히 일으킬 수 있는 것인데 <선왕의> 뜻과 사업을 계승하여 다행히 하루 아침에 완성하고, 이에 교묘의 제사에 써서 <연주하여> 신(神)과 사람이 다같이 기뻐하였다. 생각건대, 우리 태조(太祖)께서 홍업(鴻業)의 터전을 열으셨으나, 바야흐르 초매(草昧)6311) 의 경륜(經綸)을 당하여 예악(禮樂)에까지 미칠 겨를이 없었으며, 우리 세종[世廟] 때에 이르러 큰 운수를 타고 나시어 대업(大業)을 안정(安定)하는 상징(象徵)과 태평(太平)을 보존(保存)하는 생각에서 악·무(樂舞)를 제정하여 장차 교묘에 천용(薦用)하려 하였으나, 뜻만 가지고 미처 이루지 못하였던 것이다. 내가 부덕(否德)한 몸으로 비기(丕基)를 이어 지키게 되어, 선왕의 뜻에 따를 것을 생각하고 후사(後嗣)에 영원히 보일 것을 기약하여 다시 두 가지 춤을 제정해서 인사(禮祀)에 사용하니, 지극한 음(音)이 신명(神明)에 통하고 화기(和氣)가 상하(上下)에 융화(融和)하여 마침내 대례(大禮)가 이루어졌으니, 비상(非常)한 은전(恩典)을 선포(宣布)한다.

이달 15일 새벽 이전으로부터 모반 대역(謀反大逆)과 모반(謀叛)한 자의 자손, 부모(父母)·조부모(祖父母)를 모살(謀殺)했거나 구매(毆罵)한 것, 처첩(妻妾)으로서 지아비를 모살한 것, 노비(奴婢)로서 주인(主人)을 모살한 것, 고의(故意)로 살인(殺人)을 꾀한 것, 고독(蠱毒)6312) 과 염매(魘魅)6313) 및 강도나 절도를 범한 자를 제하고, 그 이외에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아니

丕承先志，用新樂而明禮，誕布寬恩，罄幅員而均慶。

	<p>하였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모두 용서하여 면제한다. 감히 유지(宥旨)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告)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로써 죄줄 것이다. 아아! 크게 선왕의 뜻을 이어 신악(新樂)을 써서 인사(禮祀)를 밝게 하고, 널리 너그러운 은전을 펴니 폭원(幅員)을 다하여 <전국적으로> 두루 경사스럽게 하라.”</p> <p>하였다.</p>	
<p>世祖 32卷, 10年 (1464 甲申 / 명 천순 (天順) 8年) 2月 23日 (丙午) 3번째기사 104세의 노인 문원에게 포와 술 및 의복을 하사하다</p>	<p>노인(老人)에게 주육(酒肉)을 하사하였다. 문원(文原)이라는 노인이 있었는데, 나이 1백 4세이나 기력(氣力)이 오히려 건장하므로 임금(上)이 그 노인을 가상(嘉尙)히 여기어 특별히 포(脯)와 술 및 의복(衣服) 한 벌을 하사하였다</p>	<p>賜老人酒肉。有文原者，年百有四歲，氣力猶壯，上嘉其老，特賜脯酒及衣一領。</p>
<p>세조 33권, 10년 (1464 갑신 / 명 천순 (天順) 8년) 4월 16일 (무술) 3번째기사 의원에게 온탕을 효력 있게 이용하는 절목을 내리다</p>	<p>어찰(御札)을 의원(醫院)에게 내리기를, “온탕(溫湯)이 효력(効力)이 있는지 효력이 없는지는 세상의 이야기가 분분(紛紛)한데, 모두 말하기를, ‘내가 옳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고 하나, 곧이곧대로 따를 수가 없고 끝내 정(亭)한 설(說)이 없으니, 이것이 세간(世間)의 큰 폐단이다. 내가 지금 이를 시험하여 보니, 그 효력이神通(神通)한 것 같아서 풍습(風濕)의 병(病)이 낫지 않는 것이 없었다. 다만 내가 출입(出入)할 즈음에 감풍(感風)이 실로 많아서 전의 병(病)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뒤의 병(病)이 바야흐로 시작되는데, 지나치면 어지럽고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효험이 없으니 마땅히 기(氣)를 가지고 스스로 조절하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저 늦봄의 초기에 해가 높이 떠오르고 날씨가 바람기가 없으며, 마침 뱃속이 오히려 부족한 듯하면서 많이 먹고 싶지 않을 때를 틈타 나가서 목욕하되, 그때 먼저 단의(單衣)를 따뜻하게 하였다가 뒤따라 내다가 등위에 덧걸치며, 즉시 마르고 따뜻한 단의(單衣)·겹의(袂衣)·유의(襦衣)를 입는</p>	<p>御札下醫院曰： 溫湯之有効無効，世談紛紛，皆曰“我是，由此。”莫適所從，訖無有定，此世間之巨弊也。予今驗之，其効如神，風濕之病，無不愈者。但出入之際，感風實多，前病未除，後疾方始，過則耗，不及則無効，當以氣自量，非人之所可令也。大抵暮春之初，乘日高，候無風，適飢飽，寧爲不足，不欲貪多，出浴時，先溫單衣，隨出襲着於背，卽著燥溫單衣、袂衣、襦衣，隨意加減，須飲湯粥，若酒以助出汗在水，則冷水無妨。以此節目，永爲良方。</p>

	데, 자기 마음대로 그 숫자를 더하고 줄이며, 모름지기 탕죽(湯粥)을 마시고 만약 술로써 땀을 내는 데 도움을 받으면서 물에 있으면 냉수(冷水)라도 무방(無妨)하다. 이 절목(節目)을 가지고 길이 양방(良方)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 34권, 10년 (1464 갑신 / 명 천순 (天順) 8년) 8월 16일 (정유) 1번째기사 계양군 이증의 졸기	계양군(桂陽君) 이증(李增)이 졸(卒)하니, 3일 동안 조회(朝會)와 저자를 정지하고 거애(擧哀)하였다. 임금이 심히 애도(哀悼)하여 육膳(肉膳)을 물리쳤다. 그때 임금이 조금 몸이 편찮아서 상참(常參)을 받지 않은 지 몇달이었는데, 도승지(都承旨) 노사신(盧思愼)이 아뢰기를, “성상(聖上)의 옥체(玉體)가 편찮으시니, 청컨대 육膳(肉膳)을 드소서.” 하였으나, 윤허(允許)하지 않았다. (후략)	丁酉/桂陽君增卒， 停朝市三日， 舉哀。 上悼甚， 徹肉膳。 時， 上稍不豫， 不受常參數月， 都承旨盧思愼啓：“上體未寧， 請御肉膳。” 不允。(후략)
世祖 34卷, 10年 (1464 甲申 / 명 천순 (天順) 8年) 11月 2日 (辛亥) 2번째기사 강무할 때 호랑이에게 상한 자를 구휼하게 하다	전지(傳旨)하기를, “강무(講武)할 때 호랑이에게 상(傷)한 자에게 사옹원(司饗院)으로 하여금 주육(酒肉)을 먹이게 하였는데, 지응사(支應使)가 술을 먹고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가 양식을 주어라.” 하였다.	傳旨曰：“講武時爲虎所傷者， 令司饗院饋酒肉， 支應使饋酒， 京畿觀察使給糧。”
世祖 35卷, 11年 (1465 乙酉 / 명 성화 (成化) 1年) 1月 1日 (己酉) 1번째기사 백관이 하례하다	백관(百官)이 하례하였다. 임금이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회례연(會禮宴)을 베푸니, 왕세자(王世子)와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瑯)·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엄(李琰)·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 등과 문무 백관(文武百官)이 전정(殿庭)에 나누어 들어와서 사배(四拜)하기를 마치고, 각각 자리에 나아가 시연(侍宴)하였다. 정대업지무(定大業之舞)·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의 음악을 연주하였으며, 왜인(倭人)·야인(野人)도 또한 참여하였다. 술이 거나하여지니, 임금이 왜인(倭人)·야인(野人)에게 명하여 전(殿)에 올라서 춤을 추게 하고, 어찬(御饌)을 나누어 주고 또 별도로 주육(酒肉)을 내려 주었다. 명하여 위사(衛	己酉朔/百官賀。 上御勤政殿， 設會禮宴， 王世子與孝寧大君補、臨瀛大君瑯、永膺大君琰、河東府院君鄭麟趾、領議政申叔舟等文武百官， 分入殿庭， 四拜訖， 各就位侍宴。 樂奏《定大業》、《保太平》之舞， 倭、野人亦與焉。 酒半， 上命倭、野人上殿舞， 分賜御饌， 又別賜酒肉， 命饋衛士酒。

<p>세조 35권, 11년 (1465 을유 / 명 성화 (成化) 1년) 1월 4일 (임자) 2번째기사 충청도 관찰사가 기근 구휼에 관해 치계하다</p>	<p>士)에게 먹이게 하였다.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가 치계(馳啓)하기를, “본도(本道)의 제읍(諸邑)은 모두가 수재(水災)를 만나서, 기근(饑饉)이 들어 먹을 것이 없는 호구(戶口)가 열에 여덟, 아홉은 되니, 청컨대 군자(軍資)의 목은 황두(黃豆) 3천 석, 소금 1천 석과 소먹이 황두 1천 석을 더 주어서 백 성의 급함을 구원하소서.” 하니, 명하여 호조(戶曹)에 내리게 하였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청(請)한대로 한결같이 따를 수는 없으나, 그러나 본도(本道)6841) 는 금년 에 흉년이 너무 심하여 민생(民生)이 가히 염려스러우니, 장 담글 황두(黃豆) 8백 석, 소먹이 콩 1천 석, 소금 3백 석을 주심이 옳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忠淸道觀察使馳啓：“本道諸邑竝罹水災，飢饉乏食之戶十居八九，請增給軍資陳黃豆三千石、鹽一千石、牛料黃豆一千石，以救民急。”命下戶曹。戶曹啓：“所請不可一從，然本道今年凶歉太甚，民生可慮，宜給淹醬黃豆八百石、牛料豆一千石、鹽三百石。”從之。</p>
<p>世祖 40卷, 12년 (1466 丙戌 / 명 성화 (成化) 2年) 10月 2日 (庚子) 5번째기사 현호색을 가미한 칠기 탕을 드시다</p>	<p>임금이 한계희(韓繼禧)·임원준(任元濬)·김상진(金尙珍)을 불러서 말하기를, “꿈속에 나는 생각하기를, 현호색(玄胡索)7665) 을 먹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 고 여겨서 이를 먹었더니 과연 가슴과 배의 아픈 증세가 조금 덜어지게 되었 으니, 이것이 무슨 약인가?” 하니, 한계희가 대답하기를, “현호색(玄胡索)이란 것은 흉복통(胸腹痛)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하였다. 이에 현호색(玄胡索)을 가미(加味)한 칠기탕(七氣湯)을 올렸더니 과연 병환이 나왔다.</p>	<p>上召韓繼禧、任元濬、金尙珍曰：“夢，予意食玄胡索則病愈，服之，果胸腹之證少減，此何藥耶？”繼禧對曰：“玄胡索者，治胸腹痛之藥也。”乃進加玄胡索七氣湯，果平愈。</p>
<p>세조 41권, 13년 (1467 정해 / 명 성화 (成化) 3년) 2월 5일 (신축) 1번째기사 임금이 영웅 대군의 죽음으로 인해 음식을</p>	<p>임금이 영웅 대군 이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폐하였으므로, 정부(政 府)와 종친(宗親)·훈척(勳戚)의 대신(大臣)들이 여러 번 음식을 들기를 청하였 으나 듣지 않았다.</p>	

<p>폐하다</p> <p>世祖 41卷, 13年 (1467 丁亥 / 명 성화 (成化) 3年) 2月 13日 (己酉) 2번째기사 왜인 신엄은 등을 선 유하고, 예조에서 대마 주 태수 등에게 서한 을 보내다</p>	<p>(전략) 하사하는 물건은 별폭(別幅)에 갖추어 기재되어 있으니, 조미(糙米) 10 석·황두(黃豆) 10석·호피(虎皮) 1장·밀과(蜜果) 1괘(櫃)·다식(茶食) 1괘·소주(燒酒) 10병·청주(淸酒) 30병·건치(乾雉) 50수(首)이다.” 하였다.</p>	<p>(전략)賜物俱載別幅。 糙米十石、黃豆十石、虎皮一張、蜜果一櫃、茶食一櫃、燒酒十瓶、淸酒三十瓶、乾雉五十首</p>
<p>세조 41권, 13년 (1467 정해 / 명 성화 (成化) 3년) 3월 5일 (경오) 2번째기사 야인을 효유하러 온 중국 사신을 대비하는 사목을 평안도 지방관 에게 유시하다</p>	<p>“이 사목(事目)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p> <p>1. 무충(武忠)이 건주(建州)에 이르렀다가 길이 막히어 돌아갈 수 없으면 반드시 강변(江邊)으로 올 것이니, 경은 될 수 있는 대로 만포(滿浦)로 속히 가서 조치(措置)할 것.</p> <p>1. 무충이 만약에 와서 변장(邊將)을 만나보기를 요구할 것 같으면, 경(卿)은 적당히 헤아려서 군사를 혹은 1백 명이나 혹은 1천 명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 가서 서로 만나보도록 하고, 후하게 음식을 먹이고 예(禮)로 대우하되, 한결 같이 사신(使臣)을 우리 나라 사람처럼 하고, 또 말하기를, ‘전하(殿下)의 뜻을 몸받은 바이다.’고 할 것.</p> <p>1. 말이 만약에 공사(公事)에 관계되면, ‘대인(大人)과 나는 관장(管掌)하는 바의 공사가 같지 않으니, 내가 감히 함부로 천단(擅斷)할 바가 아니다.’고 할 것.</p> <p>1. 만약에 강을 건너서 우리 나라 지경을 경유하여 돌아가고자 하면 대답하기를, ‘이 이전에도 사신이 이 길을 경유하여 돌아간 자가 없었고, 하물며 전하의 명령이 없으시니 감히 함부로 허락할 수 없다.’고 하여 기어이 거절하고, 만약에 억지를 부리어 형세가 부득이하게 되면 대답하기를, ‘마땅히 전하께 계문(啓聞)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곳이 왕성(王城)과의 거리가 1개월이 넘</p>	<p>諭平安道節度使金謙光曰：“審此事目施行。 一，武忠到建州，路梗不得還，則必來江邊。 卿可速往滿浦措置。 一，武忠若來，求見邊將，卿可量率軍士，或百或千，渡江相見，厚饋禮待，一如使我國者。 且語之曰：‘體殿下之意也。’ 一，言若干於公事，則大人與我所管公事不同，非吾所敢擅便。 一，若欲渡江，由我界而還。 答曰：‘前此使臣，無由此路還者。 況無殿下之命，不敢擅許。’ 固拒之。 若強之，勢不得已，答曰：‘當啓殿下。 然此地距王城，餘一月程。 路且險，往還幾經兩月，固不可留待。’ 若猶強之不可拒，則於城內館待。 一，頃者，馬鑑來毛憐衛，請糧於會寧府。 節度使楊汀贈以稻米三十斗、粟米·黃豆各五斛、</p>

	<p>는 노정(路程)이며, 길도 또한 험해서 왕복하는 데 거의 2개월이나 걸리니, 진실로 머물면서 기다릴 수 없다.’ 하고, 만약에 그래도 억지를 부리어 거절할 수 없게 되면, 성내(城內)의 관(館)에서 접대할 것.</p> <p>1. 지난번에 마감(馬鑑)이 모런위(毛隣衛)에 와서 회령부(會寧府)에 양식(糧食)을 청하여, 절도사 양정(楊汀)이 쌀 30두(斗), 좁쌀·콩 각각 5곡(斛), 소금 2곡, 소주(燒酒) 60병, 돼지 10구(口), 닭 30수(首), 건어(乾魚) 5백 미(尾), 해채(海菜) 5백 속(束), 문어(文魚) 20미(尾)와 포해(脯醢) 등의 물건을 주었으니, 지금은 관비(辦備)하기 쉬운 것에 따라서 적당히 가감(加減)하여 주고, 한결같이 지난번의 숫자에 의하는 것은 불가(不可)하다. 그리고 또한 오백창(吳伯昌)으로 하여금 관비하는 것을 돕게 하였으니, 경은 통하여 의논하여 이를 하도록 할 것.</p> <p>1. 만약에 그가 다른 진(鎭)에 온다 하더라도 경이 가서 접대하도록 할 것.” 하고, 관찰사 오백창에게 유시하기를, “김겸광에게 만포(滿浦)에 가서 무충(武忠)을 접대하도록 유시하였으니, 만약에 <무충이> 오면 후하게 음식을 대접하고, 양식과 물건을 청하면 적당히 헤아려서 관비(辦備)하여 주되, 김겸광이 관비할 수 없는 것은 경이 또한 도와서 관비하도록 하라.” 하였다.</p>	<p>鹽二斛、燒酒六十瓶、豬十口、雞三十首、乾魚五百尾、海菜五百束、文魚二十尾、脯醢等物。 今隨所易備，量宜加減，不可一依前數。 又令吳伯昌助辦，卿可通議爲之。 一，若來他鎭，卿可往待。” 又諭觀察使吳伯昌曰：“諭金謙光往滿浦待武忠，若來則厚饋，請糧物則量宜備給。 其謙光所不能備者，卿亦助辦。”</p>
<p>世祖 43卷, 13年 (1467 丁亥 / 명 성화(成化) 3年) 7月 17日 (庚辰) 1번째기사 경회루 아래에 나아가 유구국 사신을 연회하다. 유구국 사신을 접대</p>	<p>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나아가서 유구국 사신(琉球國使臣)을 연회(宴會)하였다. 세자(世子)와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함양경(咸陽卿) 이포(李翊)·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연성군(延城君) 박원형(朴元亨)·영의정(領議政) 심희(沈澮)·좌의정(左議政) 최항(崔恒)·우의정(右議政) 홍윤성(洪允成)·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김수온(金守溫)·예조 판서(禮曹判書) 강희맹(姜希孟) 등이 시연(侍宴)하였다. 정사(正使)가 천축주(天竺酒)를 올리니, 임금</p>	<p>庚辰/御慶會樓下，宴琉球國使臣。世子與孝寧大君補、咸陽卿翊、河東君鄭麟趾、蓬原君鄭昌孫、高靈君申叔舟、綾城君具致寬、延城君朴元亨、領議政沈澮、左議政崔恒、右議政洪允成、中樞府知事金守溫、禮曹判書姜希孟等侍宴。 正使以天竺酒進，上</p>

<p>하는 의주</p>	<p>이 말하기를, “그대의 임금이 그대들을 사신으로 보내어 정성을 바치게 하고 예물(禮物)도 많이 가져 왔으니,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기고 기뻐한다. 지금 내가 그대의 임금을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이 술을 마시겠다.” 하고, 인하여 묻기를, “술을 천축주(天竺酒)라고 이름붙인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이 술이 천축국(天竺國)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천축국(天竺國)은 어느 방향에 있는가? 너희 나라와 도로의 상거(相距)가 얼마나 되는가? 또 너의 나라 사람이 항상 왕래하는가?” 하니, 대답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천축국(天竺國)은 남쪽 지방에 아주 멀리 있는데, 우리 나라와는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계 상에 이를 뿐입니다.” 하였다. 잔치를 파(罷)하자, 임금이 종친(宗親)·재추(宰樞)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천축주(天竺酒)가 아니다. 천축주가 진실로 이와 같지 않다면, 저들은 우리가 그것이 천축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줄로 어찌 생각하였겠는가? 반드시 스스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많을 것이다.” 하였다. 그 의주(儀註)는 이러하였다. “새벽녘에 사설(司設)이 어좌(御坐)를 설치하고, 악(樂)을 설치하고, 왕세자(王世子)와 시연관(侍宴官)의 자리를 설치한다. 때가 이르면 왕세자(王世子)와 시연관(侍宴官)이 시복(時服) 차림으로 모두 문외위(門外位)에 나아가고 사신(使臣)도 또한 문외위(門外位)에 나아간다. 조계청(朝啓廳) 앞 뜰에서 음악(音樂)을 연주하면 임금이 여(輿)를 타고서 나오고, 자리에 오르면 음악이 그치고</p>	<p>曰：“汝君使汝等，以輸誠款，多致禮物，予甚嘉悅。今予爲汝君，起座飲此酒。”因問曰：“酒名天竺者何？”答曰：“此酒出於天竺國，故名之。”上曰：“天竺國在何方？與汝國道路相距幾何？且汝國人常往來不？”對曰：“天竺在南方極遠，與我國未得相通。但至其境上。”宴罷，上謂宗宰曰：“此非天竺酒也。天竺酒固不如是，彼豈料我之知其非天竺酒也。必自多欺我矣。”其儀曰：“平明，有司設御座設樂，設王世子侍宴官位。時至，王世子及侍宴官，以時服皆就門外位，使臣亦就門外位。朝啓廳前庭樂作，上乘輿以出，陞座樂止鼓角訖。奉禮引王世子，引儀分引侍宴官，通事引使臣就庭中分東西，異位重行。使臣就東班二品之末，【上、副官人爲爲一行，近北設席。船主押物侍奉爲一行，伴從人爲一行，近南。每行通事率入。】樂作。引儀唱：‘鞠躬四拜興平身。’王世子及侍宴官、使臣，鞠躬四拜興平身，樂止。司饗院提調進酒器，樂作，進卓樂作，引儀唱：‘跪’【初樂作唱跪。下倣此。】王世子及</p>
--------------	--	--

고각(鼓角)도 끝난다. 봉례(奉禮)가 왕세자를 인도하고, 인의(引儀)가 시연관(侍宴官)을 나누어 인도하고, 통사(通事)가 사신(使臣)을 인도하여 뜰 가운데로 나아가서 동서로 나누어, 자리를 달리하여 곁줄로 선다. 사신(使臣)이 동반(東班) 2품의 끝으로 나아가는데, 【상관인(上官人)과 부관인(副官人)은 한 줄로 하되 북쪽 가까이 자리를 설치한다. 선주(船主)와 압물(押物)과 시봉(侍奉)은 한 줄로 하고 반종인(伴從人)도 한 줄로 하여 남쪽 가까이 설치한다. 매줄마다 통사(通事)가 거느리고 들어간다.】 음악이 연주된다. 인의(引儀)가 창(唱)하기를, ‘국궁(鞠躬)·사배(四拜)·흥·평신(平身)하라.’ 하면 왕세자·시연관·사신이 몸을 구부려 네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펴고, 음악이 그친다. 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가 술그릇을 바치면 음악이 연주되고, 술을 올리기를 끝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연탁(宴卓)을 바치면 음악이 연주되고, 인의(引儀)가 창(唱)하기를, ‘궤(跪)하라.’ 하고, 【처음에 음악이 연주되면 궤(跪)하라고 창(唱)한다. 이하도 이와 같다.】 왕세자와 시연관·사신이 꿇어앉고 〈연탁〉을 바치기를 끝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승지(承旨)가 꽃을 바치면 음악이 연주되고, 꽃 바치기를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인의(引儀)가 창(唱)하기를, ‘부복(俯伏)·흥(興)·평신(平身)하라.’ 하면, 왕세자와 시연관·사신이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편다. 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가 반아(盤兒)를 바치면 음악이 연주된다. 인의(引儀)가 창(唱)하기를, ‘궤(跪)하라.’ 하면, 왕세자와 시연관·사신이 꿇어앉아 수라[膳]를 드리기를 끝마치고 음악이 그친다. 【무릇 수라[膳]를 바치면 음악이 연주되고, 바치기를 끝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인의(引儀)가 창(唱)하기를, ‘부복(俯伏)·흥(興)·평신(平身)하라.’ 하면, 왕세자와 시연관·사신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편다. 인의(引儀)가 정사(正使)를 거느리고 주정(酒亭)의 동쪽에 나아가면 【인의는 계단(階段)아래에서 중지한다.】 음악이 연주되고, 인의가 창(唱)하기를 ‘궤(跪)하라.’ 하면, 왕세자와 시연관·부사(副使) 이하가 모두 꿇어앉는다. 정사가 작(爵)을 바치는데, 천축

侍宴官、使臣跪進，訖樂止。承旨進花樂作，進訖樂止。引儀唱：‘俯伏興平身。’王世子及侍宴官、使臣，俯伏興平身。司饗院提調進盤兒，樂作。引儀唱：‘跪。’王世子及侍宴官、使臣跪，進訖樂止。【凡進膳樂作，進訖樂止。】引儀唱：‘俯伏興平身。’王世子及侍宴官、使臣，俯伏興平身。引儀引正使，詣酒亭東，【引儀止階下。】樂作，引儀唱：‘跪。’王世子及侍宴官、副使以下皆跪。正使進爵，用天竺酒，舉訖樂止。引儀唱：‘俯伏興平身。’王世子及侍宴官、副使以下，俯伏興平身。正使還酒亭東，俯伏興降復位。引儀唱：‘鞠躬四拜興平身。’樂作，王世子及侍宴官、使臣，鞠躬四拜興平身，樂止。引儀唱：‘就座。’奉禮引王世子，引儀引侍宴官，通事引使臣就座。【奉禮、引儀止階下。】輔德供王世子花，執事官【忠贊衛、別侍衛。】散侍宴官、使臣花。司饗院提調進膳，樂作，進訖樂止。【司饗院副提調，進王世子饌湯，執事官分賜侍宴官以下饌湯。】司饗院提調進爵，樂作，進訖樂止。【凡進爵，

주(天竺酒)를 사용하며, 들기를 끝나치면 음악이 그친다. 인의가 창(唱)하기를, ‘부복(俯伏)·흥(興)·평신(平身)하라.’하고, 왕세자와 시연관·부사 이하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편다. 정사(正使)가 주정(酒亭)의 동쪽으로 돌아가서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내려가 자리에 돌아간다. 인의(引儀)가 창(唱)하기를, ‘국궁(鞠躬)·사배(四拜)·흥(興)·평신(平身)하라.’ 하면, 음악이 연주되고, 왕세자와 시연관·사신 등이 몸을 굽혀서 네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펴면 음악이 그친다. 인의가 창(唱)하기를, ‘취좌(就座)하라.’ 하면, 봉례(奉禮)가 왕세자를 인도하고 인의가 시연관을 인도하고 통사가 사신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간다. 【봉례(奉禮)·인의(引儀)는 계단 아래에서 중지한다.】 보덕(輔德)이 왕세자에게 꽃을 바치고, 집사관(執事官)이 【충찬위(忠贊衛)·별시위(別侍衛)이다.】 시연관·사신에게 꽃을 뿌린다. 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가 수라[膳]를 바치면 음악이 연주되고, 들기를 끝나치면 음악이 그친다. 【사옹원 부제조(司饗院副提調)가 왕세자에게 찬탕(饌湯)을 바치고, 집사관이 시연관 이하에게 찬탕을 나누어 준다.】 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가 작(爵)을 바치면 음악이 연주되고, 들기를 끝나치면 음악이 그친다. 【무릇 작(爵)을 바칠 때 왕세자와 시연관·사신이 중계(中階) 위에 동서로 나누어 나아가서 꿇어앉아 들기를 끝나치고,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자리에 나아간다. 사옹원 부제조(司饗院副提調)가 왕세자에게 술을 바치고, 집사관(執事官)이 시연관(侍宴官) 이하에게 술을 나누어 준다. 각각 바치는 술잔[杯]을 쓰며 자리를 떠나서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꿇어앉아 마시기를 끝나치고,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 자리로 돌아간다. 무릇 별사(別賜)가 있으면, 어좌(御坐)의 전영(前楹) 밖에 나아가서 고두(叩頭)하고 도로 나간다.】 술을 14차례 돌려서 두루 돌리기를 끝나친다. 왕세자와 시연관·사신이 내려가서 전정(殿庭)의 자리에 나아가면 음악이 연주되고, 인의(引儀)가 창(唱)하기를, ‘국궁(鞠躬)·사배(四拜)·흥(興)·사배(四拜)·흥(興)·평신(平身)하라.’ 하면, 왕세자와 시연관·사신이 몸을 구부려서

王世子及侍宴官、使臣，分就中階上東西，跪舉訖，俯伏興就座。司饗院副提調進王世子酒，執事官分賜侍宴官以下酒。用各呈杯，離座俯伏興跪飲訖，俯伏興還座。凡有別賜，就御座前楹外，叩頭還出。】酒行十四遍訖。王世子及侍宴官、使臣，降就殿庭位，樂作，引儀唱：‘鞠躬四拜興(四拜興)平身。’王世子及侍宴官、使臣，鞠躬四拜興平身，樂止。奉禮引王世子，引儀分引侍宴官，通事引使臣出，上還內。”

	네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펴고, 음악이 그친다. 봉례(奉禮)가 왕세자를 인도하고, 인의가 시연관을 나누어 인도하고 통사(通事)가 사신을 인도하여 나가고 임금이 내전(內殿)으로 돌아간다.	
世祖 43卷, 13年 (1467 丁亥 / 명 성화 (成化) 3年) 9月 9日 (辛未) 1번째기사 보제원에서 기로연을 베풀다	기로연(耆老宴)을 보제원(普濟院)에서 베풀고, 동부승지(同副承旨) 윤계겸(尹繼謙)에게 명(命)하여 선운(宣醞)을 가지고 가서 주게 하였다.	辛未/設耆老宴于普濟院, 命同副承旨尹繼謙, 齋宣醞往賜之。
세조 44권, 13년 (1467 정해 / 명 성화 (成化) 3年) 10월 17 일(기유) 5번째기사 강원도 함길도 관찰사 에게 문어를 바치지 말라고 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교지(教旨)를 받들어 강원도(江原道)·함길도(咸吉道) 두도(道) 관찰사(觀察使)에게 치서(馳書)하기를, “진헌(進獻)하는 문어(文魚)를 금년에는 바치지 말라.” 하였다.	承政院奉旨馳書于江原、咸吉兩道觀察使曰: “進獻文魚, 限今年勿進。”
世祖 44卷, 13年 (1467 丁亥 / 명 성화 (成化) 3年) 10月 27 日(己未) 1번째기사 세자가 6공신을 거느 리고 북단에서 회맹하 다	세자(世子)가 6공신(功臣)8073) 을 거느리고 북단(北壇)에서 회맹(會盟)하였다. 그 의주(儀注)는 이러하였다. “왕세자는 산재(散齋)가 4일이고 치재(致齋)가 3일이며, 여러 공신(功臣)과 집사관(執事官)과 시종관(侍從官)으로서 응당 따라서 올라갈 자는 모두 산재(散齋)가 4일이고 치재(致齋)가 3일이다. 전 2일에 전설사(典設司)에서 왕세자(王世子)의 위차(位次)를 단(壇) 밖의 남쪽에 동쪽 가까이 서향(西向)하여 설치하고, 여러 공신(功臣)의 위차(位次)를 단(壇) 밖의 동남쪽에 북향(北向)하여 설치하고, 찬만(饌幔)은 단(壇)의 동쪽에 설치한다. 전(前) 1일에 전의(典儀)가 왕세자(王世子)의 판위(版位)를 단(壇) 아래 길 동쪽으로 남쪽 가까이 북향(北向)하여 설치하고, 찬자(贊者)가 여러 공신(功臣)의 【친공신(親功臣)과 6공신	己未/世子率六功臣, 會盟于北壇。 其儀: 王世子散齋四日, 致齋三日, 諸功臣執事官及侍從官, 應從升者, 竝散齋四日, 致齋三日。 前二日, 典設司設王世子次於壇外之南近東西向, 設諸功臣次於壇外東南北向, 設饌幔於壇東。 前一日, 典儀設王世子版位於壇下道東近南北向, 贊者設諸功臣 【親功臣及六功臣親子、嫡長。 下同。】位於壇

(功臣)의 친자(親子)·적장(嫡長)이다. 아래도 이와 같다.】 자리를 단(壇) 남쪽에 겹줄로 북향(北向)하여 설치하되 서쪽이 위가 된다. 【작질(爵秩)을 사용한다.】 또 전의(典儀)·찬자(贊者)·찬인(贊引)의 자리를 동쪽 계단의 서쪽에 북쪽 가까이 서향(西向)하여 설치하되, 북쪽이 위가 된다. 장생령(掌牲令)이 대뢰(大牢)·소뢰(小牢)와 회맹(會盟)의 희생(犧牲)을 【소·닭·돼지이다.】 이끌고 서소(誓所)에 나아간다. 전사관(典祀官)이 재인(宰人)을 거느리고 대뢰(大牢)·소뢰(小牢)를 할육(割肉)하기를 보통 때와 같이 하고, 회맹의 희생을 묻을 구덩이[坎]를 단(壇) 북쪽 임방(壬方)의 땅에 설치하는데, 모나게 깊이 파서 제물(祭物)을 수용할 만하게 한다. 혈반안(血盤案)을 단(壇) 아래 서쪽에 설치한다. 그날 아직 행사(行事)하기 전에 전사관(典祀官)이 신위(神位)를 단(壇) 위에 남향(南向)하여 설치하되, 왕골자리를 깔고 서문(誓文)을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전(奠)드린다. 【점(坫)이 있다.】 향로(香爐)·향합(香合)과 아울러 초[燭]를 신위(神位)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생갑(牲匣)을 설치하되, 서쪽을 위로 한다. 【먼저 소이고 다음이 양(羊)이고 다음이 돼지인데, 모두 완석(莞席)을 깔다.】 작(爵) 하나를 생갑(牲匣) 앞에 두고 【점(坫)이 있다.】 전(奠)을 단(壇) 위 동남쪽 모퉁이에 북향(北向)하여 설치하는데, 작(勺)과 먹(鬯)을 가(加)하고 세(洗)를 동쪽 계단의 동남쪽에 북향(北向)하여 설치한다.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는데, 반이(槃匱)가 있다.】 뇌(鼎)가 세(洗)의 동쪽에 있는데, 작(勺)을 가(加)하고 비(篚)가 세(洗)의 서남쪽에 있는데, 수건을 담아 둔다. 【만약 작세(爵洗)의 비(篚)면 작(爵)을 담고 점(坫)이 있다.】 또 집사(執事)의 관세(盥洗)를 동남쪽에 북향(北向)으로 설치한다. 맹세하기 전 5각(刻)에 왕세자(王世子)가 출궁(出宮)하기를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하고, 악차(握次)에 들어가면 산선(緘扇)과 시위(侍衛)를 보통 때와 같이 한다. 전 3각(刻)에 전사관(典祀官)이 재인(宰人)을 거느리고 회맹(會盟)의 희생(犧牲)을 할육(割肉)하고, 집사관(執事官)이 반(槃)으로써 【사반(沙槃)이

南重行北向，西上。【用爵秩。】又設典儀、贊者、贊引位於東階西近北西向，北上。掌牲令牽大、小牢及盟牲，【牡、雞、豕。】詣誓所。典祀案率宰人，割大、小牢如常，設盟牲坎於壇北壬地，方深取足容物。設血盤案於壇下之西。其日未行事前，典祀官設神位於壇上南向，席以莞，奠誓文於神位之右。【有坫。】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次設牲匣，以西爲上。【先牛，次羊，次豕，并藉以莞席。】爵一在牲匣前，【有坫。】設尊於壇上東南隅北向，加勺鬯，設洗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有槃匱。】壘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篚，則又實以爵，有坫。】又設執事盥洗於東南北向。誓前五刻，王世子出宮如常儀，入次，緘扇侍衛如常。前三刻，典祀官帥宰人，割盟牲，執事官以槃，【沙槃。】取血置於案前。二刻，諸功臣及侍從官、執事者，各服祭服。前一刻，典儀、贊者、贊引，先就壇南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訖就位，贊者唱，贊引引讀誓文官及執事者，入

다.】 혈(血)을 취(取)하여 안전(案前)에 둔다. 2각(刻)에 여러 공신(功臣)과 시종관(侍從官)·집사자(執事者)들이 각각 제복(祭服)을 입는다. 전 1각(刻)에 전의(典儀)·찬자(贊者)·찬인(贊引)이 먼저 단(壇)의 남쪽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北向)하되, 서쪽을 위로 한다. 사배(四拜)하기를 끝마치고 자리에 나아가면, 찬자(贊者)가 창(唱)하고, 찬인(贊引)이 서문(誓文)을 읽을 관원과 집사자(執事者)를 인도하여 들어가 배위(拜位)에 나아간다. 전의(典儀)가 말하기를, ‘사배(四拜)하라’ 하면 【무릇 찬자(贊者)가 찬창(贊唱)하는 것은 모두 전의(典儀)의 말을 받는다.】 찬자(贊者)가 창(唱)하기를, ‘국궁(鞠躬)·사배(四拜)·흥(興)·평신(平身)하라.’ 하고, 서문(誓文)을 읽을 관원(官員) 이하가 국궁(鞠躬)하여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펴기를 끝마친다. 찬인(贊引)이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관세(盥洗)하기를 끝마치면,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집사자(執事者)가 작세위(爵洗位)에 나아가서 작(爵)을 씻고 작(爵)을 털어서 비(篋)에 두고, 받들어 중계(中階)에 나아가 준소(奠所)에 둔다. 찬인(贊引)이 여러 공신(功臣)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면, 봉례(奉禮)가 왕세자(王世子)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부복(俯伏)하여 꿇어앉아 찬(贊)하여 행사(行事)하기를 청(請)한다. 왕세자(王世子)가 면복(冕服)을 갖추고 산선(緞扇)과 시위(侍衛)를 제(除)하고 나오고, 봉례(奉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판위(版位)에 이른다. 【시종관(侍從官)이 따라 들어간다.】 전의(典儀)가 말하기를, ‘사배(四拜)하라.’ 하고, 찬자(贊者)가 ‘국궁(鞠躬)·사배(四拜)·흥(興)·평신(平身)하라.’고 창(唱)하면, 왕세자(王世子)와 여러 공신(功臣)이 국궁(鞠躬)하여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편다. 봉례(奉禮)가 왕세자(王世子)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북향(北向)하여 서고, 찬(贊)하여 진홀(摺笏)하기를 청(請)한다. 【만약 쪼기가 불편하면 시종관(侍從官)이 받들어 행한다. 뒤에도 이와 같다.】 시종관(侍從官) 1인이 꿇어앉아 이(匱)를 취하여 옥수(沃水)를 부으면 1인이 꿇어앉아 반(槃)을 취(取)하여 물을 받는다. 왕세자가 손을 씻고

就拜位。典儀曰四拜。【凡贊者贊唱，皆承典儀之辭。】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讀誓文官以下，鞠躬四拜興平身訖。贊引引詣盥洗位，盥洗訖，各就位。執事者詣爵洗位，洗爵拭爵，置於篋，捧詣中階置於尊所。贊引引諸功臣入就位，奉禮詣王世子次前，俯伏跪，贊請行事。王世子具冕服，除緞扇侍衛以出，奉禮引王世子至版位。【侍從官從入。】典議曰四拜。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王世子及諸功臣，鞠躬四拜興平身。奉禮引王世子，詣盥洗位北向立，贊請摺笏。【如摺不便，侍從官承奉。後同。】侍從官一人，跪取匱興沃水，一人跪取槃承水。王世子盥手，侍從官跪取巾於篋以進。王世子脫手訖，侍從官受巾置於篋。奉禮贊請執笏，引王世子，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事者一人酌酒，一人受酒。奉禮引王世子，詣神位前北向立，贊跪。執事者一人奉香爐，一人奉香合，贊三上香。執事者奠爐，執事者以爵跪進。王世子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奉禮贊俯伏、興、平身。

시종관(侍從官)이 꿇어앉아 비(篋)에서 건(巾)을 취하여서 바친다. 왕세자가 손을 닦기를 끝나치면 시종관(侍從官)이 수건을 받아 비(篋)에 둔다. 봉례(奉禮)가 찬(贊)하여 집홀(執笏)하기를 청(請)하면 왕세자(王世子)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 준소(奠所)에 나아가서 서향(西向)하여 선다. 집사자(執事者) 1인이 술을 받든다. 봉례(奉禮)가 왕세자(王世子)를 인도하여 신위(神位)앞에 나아가서 북향(北向)하여 서면 ‘꿇어앉으라.’고 찬(贊)하고, 집사자(執事者) 1인이 향로(香爐)를 받들고 1인이 향합(香盃)을 받들면 ‘삼상(三上)하라.’고 찬(贊)한다. 집사자(執事者)가 향로(香爐)를 전(奠)드리고 집사자(執事者)가 작(爵)을 꿇어앉아 드린다. 왕세자(王世子)가 작을 잡고 작을 드리면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신위(神位) 앞에 전(奠)드린다. 봉례(奉禮)가 ‘부복(俯伏)·흥(興)·평신(平身)하라.’고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자리로 돌아간다. 찬자(贊者)가 ‘꿇어앉으라.’고 창(唱)하면, 왕세자(王世子)와 여러 공신(功臣)이 꿇어앉는다. 찬자(贊者)가 ‘진홀(摺笏)하라.’고 창(唱)하면, 왕세자와 여러 공신이 홀을 쫓는다. 집사자(執事者)가 혈반(血槃)을 왕세자(王世子)에게 바치면 왕세자가 삼혈(歃血)8074) 하고, 【피를 입 옆에 묻힌다.】 여러 공신이 차례로 삼혈(歃血)하기를 끝나친다. 찬자(贊者)가 ‘출홀(出笏)하라.’고 창(唱)하면, 왕세자와 여러 공신이 홀(笏)을 꺼내고 서문(誓文)을 읽는 관원이 신위(神位)의 오른쪽에서 서문(誓文)을 취(取)하여, 북향(北向)하여 꿇어앉아 읽기를 끝나친다. 찬자(贊者)가 ‘부복(俯伏)·흥(興)·평신(平身)하라.’고 창(唱)하면, 왕세자와 여러 공신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편다. 전의(典儀)가 말하기를, ‘사배(四拜)하라.’ 하고, 찬자(贊者)가 ‘국궁(鞠躬)·사배(四拜)·흥(興)·평신(平身)하라.’고 창(唱)하면, 왕세자와 여러 공신이 국궁(鞠躬)하여 사배(四拜)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편다. 찬자(贊者)가 ‘예(禮)가 끝났다.’고 창(唱)하면, 봉례(奉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나가서 자리에 돌아간다. 찬인(贊引)이 여러 공신을 인도하여 나가고 찬인이 서문(誓文)을 읽는 관원을 인도하

引降復位。贊者唱跪。王世子及諸功臣跪。贊者唱摺笏。王世子及諸功臣摺笏。執事者以血槃進王世子，王世子歃血，【以血塗口傍。】諸功臣以次歃訖。贊者唱出笏。王世子及諸功臣出笏，讀誓文官，進神位之右，取誓文，北向跪讀訖。贊者唱俯伏、興、平身。王世子及諸功臣，俯伏興平身。典議曰四拜。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王世子及諸功臣，鞠躬四拜興平身。贊者唱禮畢。奉禮引王世子出還次。贊引引諸功臣出，贊引引讀誓文官，取誓文加於牲上，瘞於坎實土。讀誓文官及執事者，俱復拜位，贊者唱鞠躬、四拜、興、平身。讀誓文官以下，鞠躬四拜興平身。贊引引出典儀、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撤退，王世子還宮。

	<p>여 서문을 취(取)하여 희생(犧牲) 위에 얹고 구덩이에 묻고 흙을 채운다. 서문(誓文)을 읽는 관원과 집사자(執事者)가 함께 배위(拜位)에 나아가고, 찬자(贊者)가 ‘국궁(鞠躬)·사배(四拜)·흥(興)·평신(平身)하라.’ 하면, 서문(誓文)을 읽는 관원 이하가 국궁(鞠躬)하여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편다. 찬인(贊引)이 전의(典儀)·찬자(贊者)·찬인(贊引)을 인도하여 나가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典祀官)이 거두어 치우고 왕세자(王世子)가 환궁(還宮)한다.” 하였다.</p>	
<p>세조 45권, 14년 (1468 무자 / 명 성화(成化) 4년) 2월 2일 (계사) 4번째기사 안암·면어를 문소전에 천신하게 하다</p>	<p>사람을 보내어 안암(雁鴨)·면어(綿魚)를 문소전(文昭殿)8189) 에 천신(薦新)하게 하였다.</p>	<p>遣人薦雁鴨、綿魚于文昭殿。</p>
<p>世祖 46卷, 14年 (1468 戊子 / 명 성화(成化) 4年) 4月 27日 (丙辰) 3번째기사 태평관에 머문 두목에게 5일마다 주봉배를 베풀게 하다</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관(館)8380) 에 머물고 있는 두목(頭目)에게 5일마다 한 차례씩 주봉배(晝奉杯)8381) 를 베풀게 하소서.” 하니, 어서(御書)로 이르기, “옳다. 때로 식물(食物)을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p>	<p>禮曹啓: “請留館頭目, 每五日一次, 設晝奉杯。” 御書曰: “可。 時致食物耳。”</p>
<p>세조 46권, 14년 (1468 무자 / 명 성화(成化) 4년) 6월 13일 (신축) 1번째기사 강옥 등이 낮참에 대</p>	<p>처음에 강옥 등의 말을 따라 5일에 한 번 주봉배(晝奉杯)8438) 를 베풀었는데, 이에 이르러 관반(館伴)에게 이르기, “금후로는 다시 베풀지 마십시오,” 하였다.</p>	<p>辛丑/初因姜玉等言, 五日一設晝奉杯, 至是謂館伴曰: “今後勿復設。”</p>

<p>접하는 술을 베풀지 말기를 청하다</p>		
<p>世祖 46卷, 14年 (1468 戊子 / 명 성화 (成化) 4年) 6月 13日 (辛丑) 2번째기사 두목 윤태가 중추 윤 길생의 집에 가니 청 주·대구어·포육등을 가 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다</p>	<p>두목(頭目) 윤태(尹泰)가 중추(中樞) 윤길생(尹吉生)의 집에 가니, 임금이 중추(中樞) 이흥덕(李興德)에게 명하여 청주(淸酒) 10병(瓶), 대구어(大口魚) 20미(尾), 포육(脯肉) 5속(束), 해(醢) 5항(缸), 건치(乾雉) 30수(首), 사슴[鹿] 1구(口)를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p>	<p>頭目尹泰往中樞尹吉生家, 上命中樞李興德, 齎淸酒十瓶、大口魚二十尾、脯肉五束、醢五缸、乾雉三十首、鹿一口以慰之。</p>
<p>세조 46권, 14년 (1468 무자 / 명 성화 (成化) 4년) 6월 13일 (신축) 3번째기사 입조한 궁인의 족친 중 한미한 집에는 명 사신이 가지 못하게 하도록 승정원에서 아 뢰다</p>	<p>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명(明)나라 사신이 입조(入朝)한 궁인(宮人)의 족친을 가서 보았는데, 처음 성씨(成氏)의 일가를 한계미(韓繼美)의 집에서 보았을 때는 술 5병(瓶), 대구어(大口魚) 10미(尾), 포(脯) 2속(束), 노루[獐] 1구(口)를 관급(官給)하여 다례(茶禮)를 자관(自辦)하게 하였고, 다음에 차씨(車氏)의 일가를 차효주(車孝翰)의 집에서 볼 때는 보내 주는 것을 제(除)하고 단지 다례만 행하였으며, 끝으로 한씨(韓氏)의 일가를 한치인(韓致仁)의 집에서 보았을 때는 예빈시(禮賓寺)로 하여금 마땅함을 따라 술자리를 베풀게 하고, 승지(承旨)를 보내어 선온(宣醢) 10병(瓶), 대구어(大口魚) 15미(尾), 포(脯) 10속(束), 노루 1구(口), 해(醢) 1항(缸)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씨(吳氏)의 일가 오좌청(吳左靑)·최씨(崔氏)의 일가 기유(奇裕) 같은 이의 집은 좁고 더러우며, 안씨(安氏)의 일가 안종인(安從仁)은 남의 집에 우거(寓居)하오니, 모두를 사고(事故)로서 청탁하고, 이칠보(李七寶)는 정씨(鄭氏)의 종[婢]이니, 가서 보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하였다.</p>	<p>承政院啓曰：“明使往見入朝宮人族親, 初見成氏族於韓繼美家, 官給酒五瓶、大口魚十尾、脯二束、獐一口, 令自辦茶禮。次見車氏族於車孝翰家, 除賜送, 只行茶禮。終見韓氏族於韓致仁家, 令禮賓寺, 隨宜設酌, 遣承旨齎宣醢十瓶、大口魚十五尾、脯十束、獐一口、醢一缸以慰之。若吳氏族吳左靑、崔氏族奇裕, 第舍隘陋, 安氏族安從仁, 寓居人家, 皆托以事故。李七寶則鄭氏婢也, 勿許往見。”</p>

<p>世祖 47卷, 14年 (1468 戊子 / 명 성화 (成化) 4年) 7月 5日 (壬戌) 2번째기사 강옥과 김보에게 문어, 마른 꿩, 오적어 등을 나누어 주게 하다</p>	<p>환관(宦官) 신운(申雲)에게 명(命)하여 문어(文魚) 60미(尾)·마른 꿩[乾雉] 1백 수(首)·오적어(烏賊魚) 1천2백 마리·마른 광어(廣魚) 1백 40마리·마른 전복어(全鮑魚) 1백 속(束)·곤포(昆布) 80속·노루[獐] 2구(口)·호도(胡桃) 10두(斗)·잣[松子] 10두를 가지고 가서 강옥(姜玉)과 김보(金輔)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p>	<p>申雲, 齋文魚六十尾、乾雉一百首、烏賊魚一千二百尾、乾廣魚一百四十尾、乾全鮑魚一百束、昆布八十束、獐二口、胡桃十斗、松子十斗, 分贈于姜玉、金輔。</p>
<p>世祖 47卷, 14年 (1468 戊子 / 명 성화 (成化) 4年) 7月 6日 (癸亥) 2번째기사 추향 대제를 행하다</p>	<p>추향 대제(秋享大祭)를 행(行)하였다. 번육(膳肉)8553) 을 올리니, 명하여 의정부(議政府)와 충훈부(忠勳府)의 당상관(堂上官)의 여러 공신(功臣)들과 잠저(潛邸) 때에 같이 <중국> 조정에 나아갔던 사람 등을 불러 전지(傳旨)하기를, “근일(近日)에 내가 심히 위화(違和)8554) 되었다가 지금은 점점 나아서 경(卿)들을 보고자 하여 불렀다. 그러나 내가 술을 마시지 아니하는 때이므로 인견(引見)할 수는 없으니 모름지기 마음껏 즐기라.” 하고,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영순군(永順君)·이부(李溥)·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으로 하여금 이들을 먹이게 하였다.</p>	<p>行秋享大祭。以膳肉進，命召議政府、忠勳府堂上諸功臣，及潛邸時同赴朝人等。傳曰：“近日予甚違和，今乃稍愈，欲見卿等，故召之。然予非飲酒日，故未得引見，須極歡。”令密城君琛、永順君溥、龜城君浚饋之。</p>
<p>세조 47권, 14년 (1468 무자 / 명 성화 (成化) 4년) 7월 8일 (을축) 1번째기사 강옥과 김보에게 소주, 녹미, 마른 노루 등을 나누어 주다</p>	<p>환관(宦官) 신운(申雲)에게 명(命)하여 소주(燒酒) 40병(瓶)·녹미(鹿尾) 4백 개·마른 노루[乾獐] 20구(口)·마른 꿩[乾雉] 4백 수(首)·마른 대구어[乾大口魚] 2백 미(尾)·편포(片脯) 4백 개·해채(海菜) 80속(束)·해의(海衣) 4백 첩(貼)·마른 대하[乾大蝦] 2백 속·곤포(昆布) 1백 속·마른 문어[乾文魚] 2백 미(尾), 송자(松子)8555) 20말[斗]·향심(香蕈)8556) 20말을 강옥(姜玉)과 김보(金輔)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강옥이 말하기를, “이미 경외(京外)에 집과 노비(奴婢) 및 토지(土地)를 내려 주셨는데 또 물품을 내려 주심이 주첩(稠疊)하니, 전하(殿下)의 두터운 은총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하고, 이어서 대홍직 금망룡슬란(大紅織金蟒龍膝襪) 1필(匹)·앵가록계지전지보</p>	<p>乙丑/命宦官申雲，齋燒酒四十瓶、鹿尾四百箇、乾獐二十口、乾雉四百首、乾大口魚二百尾、片脯四百箇、海菜八十束、海衣四百貼、乾大蝦二百束、昆布一百束、乾文魚二百尾、松子二十斗、香蕈二十斗，分贈于姜玉、金輔。玉曰：“既賜京外家舍，及奴婢土田，又餽遺稠疊，殿下厚恩，報答無由。”乃以大紅織金蟒龍膝襪一匹、鸚哥綠界地纏枝寶相花一匹、白</p>

	<p>상화(鶯哥綠界地纏枝寶相花) 1필·백왜초(白倭綃) 1필·백세 삼릉 면포(白細三稜綿布) 2필·흑연향(黑研香) 1관(罐)·금박(金珀) 1관(串)·자단향(紫檀香) 1관을 진상(進上)하였으므로 명하여 흑세마포(黑細麻布) 70필을 가지고 회증(回贈)하였다. 김보가 이르기를, “이미 집과 노비와 토지를 내려 주셨고, 또 분예빈시(分禮賓寺)의 관원(官員)들의 벼슬을 올려 주셨기에 곧 두목(頭目)으로 하여금 사례를 올리고자 했고, 또 표(表)를 진상(進上)하고자 했으나 진실로 번독(煩瀆)할 듯하여 감히 청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p>	<p>倭綃一匹、白細三稜綿布二匹、黑研香一罐、金珀一串、紫檀香一串進上，命以黑細麻布七十四回贈。輔曰：“既賜家舍、奴婢、土田，又陞分禮賓寺官員等職，即欲令頭目進謝，且欲進上表，誠恐煩瀆，不敢請。”</p>
<p>世祖 47卷, 14年 (1468 戊子 / 명 성화(成化) 4年) 7월 9일 (丙寅) 1번째기사 강옥과 김보에게 담청주, 대구어 등을 내리다</p>	<p>강옥(姜玉)과 김보(金輔)가 김담(金淡)을 가서 보니, 담청주(淡淸酒) 5병(瓶)·대구어(大口魚) 10구(口)·생선 10미(尾)·포(脯) 3속(束)·젓갈[醃] 2동이[缸]를 내려 주고 분예빈시(分禮賓寺)로 하여금 술자리를 베풀도록 하였다. 다음에 윤길생(尹吉生)의 집에 가니 도승지(都承旨) 권감(權臧)에게 명(命)하여 선운(宣醞) 10병·포(脯) 10속·대구어 15미(尾)·젓갈 2동이·사슴 1구(口)를 가지고 가서 이를 위로하게 하였다.</p>	<p>丙寅/姜玉、金輔往見金淡，賜淡淸酒五瓶、大口魚十口、魚十尾、脯三束、醃二缸，令分禮賓寺設酌。次往尹吉生家，命都承旨權臧，齎宣醞十瓶、脯十束、大口魚十五尾、醃二缸、鹿一口，往慰之。</p>
<p>세조 47권, 14년 (1468 무자 / 명 성화(成化) 4年) 7월 10일 (정묘) 1번째기사 강옥과 김보에게 해채, 마른 물고기, 석수어 등을 나누어주다</p>	<p>환관(宦官) 신운(申雲)에게 명(命)하여 해채(海菜) 4백 속(束)·마른 물고기[乾水魚] 1백 미(尾)·석수어(石首魚) 1백 속·마른 광어[乾廣魚] 1백 40 미(尾), 황어젓[黃魚醃]·석수어란젓[石首魚卵醃]·망어란젓[芒魚卵醃]·송어젓[松魚醃] 각각 2동이를 강옥(姜玉)과 김보(金輔)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p>	<p>丁卯/命宦官申雲，齎海菜四百束、乾水魚一百尾、石首魚一百束、乾廣魚一百四十尾、黃魚醃·石首魚卵醃·芒魚卵醃·松魚醃各二缸，分贈于姜玉、金輔。</p>
<p>世祖 47卷, 14年 (1468 戊子 / 명 성화(成化) 4年) 7월 26일</p>	<p>세자(世子)가 신선한 육미(肉味)를 임금에게 올리고자 하여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하여금 사슴을 사냥하여 잡아 올리게 하였다. 저녁에 세자가 경복궁(景福宮)으로 돌아왔다.</p>	<p>世子欲進鮮肉于上，令京畿觀察使，獵得鹿以進。夕，世子還景福宮。</p>

<p>(癸未) 5번째기사 세자가 임금에게 올리 고자 하여 경기도 관 찰사로 하여금 사슴을 사냥하여 올리게 하다</p>		
---	--	--

4. 예종실록 기사자료집

예종실록 기사자료집

출처	내용	원문
<p>예종 2권, 즉위년 (1468 무자 / 명 성화(成化) 4년) 12월 10일(병신) 2번째기사 육조 참판 이상이 육선 들기를 청하나 윤희치 않고 보경당에서 가훈을 듣다</p>	<p>영의정(領議政) 이준(李浚)·우의정(右議政) 김질(金質)과 육조 참판(六曹參判) 이상이 예궐(詣闕)하여 육선(肉膳)을 들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나이가 어리고 기운이 강하니, 청을 따를 수가 없다.” 하였다. 준(浚) 등이 다시 아뢰기를, “성상의 옥체(玉體)가 비록 건강하고 강장(強壯)하시더라도 선왕(先王)의 유교(遺敎)를 어길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나는 진실로 따르기가 어렵다. 다만 태비(太妃)께만 청하라. 태비께서 만약 허락하신다면 나도 또한 따를 것이다.” 하였다. 준(浚) 등이 태비에게 청하니, 태비가 하교(下敎)하기를, “불가(不可)하다.” 하였다. 준(浚) 등이 다시 청하기를, “졸곡(卒哭) 뒤에 육선(肉膳)을 드는 것이 고례(古例)입니다. 지금 재차 전하께 청하였으나, 유윤(兪允)을 받지 못하였고, 또 전지(傳旨)하기를, ‘만약 태비께 청을 얻는다면 나도 또한 허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큰 일이니,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태비가 오히려 고집(固執)하고 윤희(允許)하지 아니하였다. 한참 있다가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효령 대군</p>	<p>원문 領議政浚、右議政金質及六曹參判以上詣闕，請進肉膳，上曰：“予今年少氣強，不可從請。”浚等更啓曰：“上體雖康強，先王遺敎，不可違也。”傳曰：“予固難從。但請于太妃。太妃若許之，則予亦從之矣。”浚等請于太妃，太妃敎曰：“不可。”浚等再請曰：“卒哭後進肉膳，古例也。今再請于殿下，未蒙兪允，且傳曰：‘若得請于太妃，則予亦許焉。’是誠大事，不可不從。”太妃猶固執不允。俄而河東君鄭麟趾、蓬原君鄭昌孫、孝寧大君補、密城君琛、永順君溥及諸宗親、宰樞等啓：“卒哭後進肉膳，世宗、世祖皆有遺敎。今殿下以康強爲辭，然調護聖躬，不可不預。”上召麟趾等于寶慶堂，設酌謂曰：“今見卿等，欲聞嘉訓，其各</p>

(孝寧大君) 이보(李補)·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와 여러 종친(宗親)·재추(宰樞) 등이 아뢰기를,
 “졸곡(卒哭) 뒤에 육膳(肉膳)을 드는 것은 세종(世宗)·세조께서 모두 유교(遺敎)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건강하시고 강장하시다고 사양하시나, 그러나 성공(聖躬)의 조호(調護)를 미리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정인지 등을 보경당(寶慶堂)에 불러서 술자리를 마련하고 이르기를,
 “지금 경(卿) 등을 보고 가훈(嘉訓)을 듣고자 하니, 그것을 각각 모두 진술(陳述)하라.”
 하였다. 정인지·정창손과 신숙주 등이 아뢰기를,
 “세조(世祖)께서 관리(官吏)들이 남형(濫刑)하여 죄가 없는 사람이 해를 받을까 염려하시어, 특히 남형(濫刑)의 금법(禁法)을 더하였으니, 은혜가 지극히 중(重)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도적(盜賊)이 되는 자들은 아울러 다 무뢰(無賴)한 무리이므로 곤장을 잘 건디고 생각하기를, ‘차라리 곤장을 맞을지언정 실정을 자백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관리(官吏)도 또한 법(法)을 두려워하여 끝까지 추국(推鞠)하지 않으니, 도적(盜賊)이 날로 불어나는 것은 바로 이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청컨대 남형(濫刑)의 금법(禁法)을 중지하게 하소서.”
 하였다. 심희(沈澮)가 말하기를,
 “여러 관사(官司)의 이서(吏胥)가 일에 부지런하고 고생하면서 분주(奔走)하는 것은 다만 역승(驛丞)을 제수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근래 역승을 없애고찰방(察訪)을 설치하니, 별로 이익이 없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다시 역승(驛丞)을 두어서 이서(吏胥)의 거관(去官)하는 자로써 충차(充差)하소서.”
 하였다. 홍윤성(洪允成)이 말하기를,
 “여러 도(道)에 이미 절도사(節度使)를 설치하였는데, 어찌 반드시 다시 부절

悉陳。” 麟趾、昌孫及申叔舟等啓曰：“世祖慮官吏濫刑無辜受害，特加濫刑之禁，恩至重矣。然爲賊者，竝皆無賴之徒，善耐杖意謂：‘寧受杖，不可輸情。’官吏亦畏法，不得窮鞠，盜賊日滋，職此之由。請弛濫刑之禁。” 沈澮曰：“諸司吏胥，勤苦奔走，只爲除驛丞也，近者革驛丞置察訪，別無利益。請自今復置驛丞，以吏胥去官者充差。” 洪允成曰：“諸道既置節度使，何必復有副節度使？多率軍官，糜費莫甚，請革之。” 崔恒、曹錫文曰：“部民告訴，甚乖大義，請革之。且守令遷轉，復用六期，民無迎送之弊，吏有經久之計。” 韓明澮、具致寬曰：“平安一道，不必置三節度使，咸吉一路，不必置兩監司，請減其數。” 金碩曰：“本朝立號牌法，爲得良民也。然自立號牌以後，良民日減，而新得奴婢者頗多，請別立一司刷之。” 明澮復啓曰：“正兵不分貴賤，雖曾經臺諫者，竝皆充籍，唯不籍者宰相耳。請有職人員，別立一衛屬之。” 傳曰：“若有事則誰不爲兵？卿言甚當，命如所啓。自餘卿等所陳，當更議施行。” 卽令都承旨

	<p>도사(副節度使)를 두겠습니까? 많은 군관(軍官)을 거느리고 낭비함이 막심하니, 청컨대 이를 혁파(革罷)하소서.”</p> <p>하였다. 최항(崔恒)·조석문(曹錫文)이 말하기를,</p> <p>“부민(部民)의 고소(告訴)하는 것은 심히 대의(大義)에 어긋나니, 청컨대 혁파(革罷)하소서. 또 수령(守令)이 천전(遷轉)할 때에 다시 육기(六期)283) 를 쓰면 백성들이 영송(迎送)하는 데 폐단이 없으며, 관리(官吏)는 오랫동안 다스릴 계책을 가질 것입니다.”</p> <p>하였다. 한명회(韓明澮)·구치관(具致寬)이 말하기를,</p> <p>“평안도(平安道) 한 도(道)에 반드시 세 사람의 절도사(節度使)를 둘 필요가 없으며, 함길도(咸吉道) 한 길[路]에 반드시 두 사람의 감사(監司)를 둘 필요가 없으니, 청컨대 그 숫자를 감하소서.”</p> <p>하였다. 김질(金瑬)이 말하기를,</p> <p>“본조(本朝)에서 호패법(號牌法)을 세운 것은 양민(良民)을 얻기 위한 것인데, 그러나 호패법을 세운 이후로부터 양민(良民)은 날마다 줄어들고 새로 노비(奴婢)를 얻는 자가 상당히 많으니, 청컨대 따로 하나의 관사(官司)를 세워서 추쇄(推刷)하소서.”</p> <p>하였다. 한명회(韓明澮)가 다시 아뢰기를,</p> <p>“정병(正兵)은 귀천(貴賤)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비록 대간(臺諫)을 일찍이 지낸 자라도 아울러 모두 군적(軍籍)에 충당하는데, 오로지 군적에 올리지 아니하는 자는 재상(宰相)들뿐입니다. 청컨대 관직(官職)이 있는 사람은 따로 하나의 위(衛)를 세워서 소속시키게 하소서.”</p> <p>하였다. 임금이 전지(傳旨)하기를,</p> <p>“만약 일이 있으면 누가 군인이 되지 않겠는가? 경(卿)의 말이 지당하니, 명하여 아뢰 바와 같이 하겠다. 그 나머지 경들의 진달(陳達)한 바는 마땅히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겠다.”</p>	<p>權域，悉書之。自立官吏濫刑之法，盜賊雖贓物現著者，猶不輸情，官吏亦憚法禁，淹延歲月，以待赦宥而放之。或有強奪人物，罪在當死，終不下一杖而見放者多矣。不特盜賊，凡民之強惡者，稍不悅於守令者，必攘臂慢罵，無所忌憚，若下一杖，則必稱濫刑，終坐重罪。自立許部民告訴之法，小民小不如意，便生怨心，陰囑無賴之徒，訴官吏不法，雖日用常行之事，亦皆條列書示邑人曰：“予將詣京師訟之。”邑人恐污鄉風，厚遺止之，及既盡用，又復如是，邑人又多贈之，如是者歲至再三。爲守令者，亦多畏縮，陽若不知，甚者望見告訴之人，則必招而飲食之，凡所求請，一從無違。其強以制之，不啗之以利，則終被告訴，罪在不測。由是威令不行，爲惡者獨享其利，良民坐受其弊。自立號牌之法，良民則必考良籍，賤人則必考賤籍，然後方許出給。而其程督大劇，迫於星火，故良民之無籍者，賤人之在逃者，無所於歸，一趨勢家爲奴婢者，何可勝數？故時人爲之語曰：“爲勢家驅奴婢者，號牌之法也。”自立正兵之法，時行朝</p>
--	---	---

하고, 즉시 도승지(都承旨) 권감(權監)으로 하여금 모두 쓰게 하였다. 관리(官吏)의 남형(濫刑) 법을 세우면서부터 도적은 비록 장물(贓物)이 나타난 자라도 오히려 실정을 자백하지 아니하고, 관리들도 또한 법금(法禁)을 꺼려 세월을 천연(遷延)시키면서 사유(赦宥)를 기다려 석방하여 주었다. 혹은 남의 물건을 강탈(強奪)하여 죄가 죽음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마침내 곤장 한 대도 때리지 않고 석방되는 자(者)가 많았다. 특히 도적(盜賊)들뿐만 아니라, 무릇 백성들 가운데 강악(強惡)한 자와 수령(守令)을 조금 좋아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반드시 팔을 걸어 올리며 만매(慢罵)하기를 거리낌없이 하였으며, 만약 곤장 한 대라도 때리면 반드시 남형(濫刑)이라 일컫고, 마침내 중죄(重罪)에 빠뜨렸다.

부민(部民)의 고소(告訴)를 허락하는 법을 세우면서부터 소민(小民)들이 조금이라도 뜻과 같지 아니하면, 문득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켜 몰래 무뢰(無賴)한 무리에게 부탁하여, 관리의 불법(不法)을 고소하였다. 비록 날마다 쓰는 상행(常行)의 일이라도 또한 모두 조열(條列)하여 써서 고을 사람에게 보이고 이 르기를, '내가 장차 서울[京師]에 나아가 송사(訟事)하겠다.'고 하면, 고을 사람이 향풍(鄉風)을 더럽힐까 두려워하여 후하게 돈을 주어 중지하게 하였고, 이미 돈을 다 쓰게 되자 또다시 이와 같이 하면, 고을 사람이 또 돈을 많이 주었으며,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한 해에도 두세 번에 이르렀다. 수령(守令)이 된 자는 또한 많이 외축(畏縮)되어, 걸으로는 알지 못하는 체하였고, 심한 자는 고소하려는 사람을 바라보면, 반드시 불러다가 음식을 먹이고 모든 요구하고 청하는 바를 한결같이 들어주고 어김이 없었다. 그 강하게 제어하고 이(利)로써 이를 대접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고소(告訴)당하여 죄가 불측(不測)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위령(威令)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악(惡)한 짓을 하는 자만이 오로지 그 이익을 누리고, 양민(良民)은 가만히 앉아서 그 폐단을 받았다.

士及堂上官外，勿論尊卑，悉屬正兵。由是曾經清要帶大夫，而見困於軍門胥徒之手，士林痛之。至是上初即位求言，故諸宰悉陳之。賜補、麟趾、昌孫等，阿多介各一坐。宗宰皆出，傳曰：“予既進肉膳于太妃，太妃亦令予解素。卿等其亦解素。”仍命於仁政殿 月臺饋之。

	<p>호패(號牌)의 법을 세우면서부터 양민(良民)은 반드시 양적(良籍)을 상고하고, 천인(賤人)은 반드시 천적(賤籍)을 상고한 다음에 바야흐로 내어 주기를 허락하였는데, 그 사이에 감독이 너무 지독하여 성화(星火)같이 박절하였기 때문에, 양민(良民)으로서 호패(號牌)가 없는 자와 천인(賤人)으로서 도망 중에 있는 자는 돌아갈 데가 없었으므로, 한결같이 세가(勢家)에 붙좃아 노비(奴婢)로 된 자를 어찌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시인(時人)이 이를 탓하여 말하기를, ‘세가(勢家)를 위하여 노비(奴婢)를 몰아주는 것이 호패(號牌)의 법이다.’라고 하였다.</p> <p>정병(正兵)의 법을 세우면서부터 시행(時行)의 조사(朝士)와 당상관(堂上官) 이외에는 신분이 높고 낮음을 물론하고 모조리 정병(正兵)에 속하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일찍이 청요(淸要)를 지낸 자나 대부(大夫)를 지낸 자들이 군문(軍門)에서 서도(胥徒)의 손에 곤욕을 당하니, 사림(士林)에서 이를 괴롭게 여겼다.</p> <p>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처음으로 즉위하여 구언(求言)하였기 때문에 여러 재상(宰相)들이 모조리 진술(陳述)하였던 것이다. 임금이 보(補)·정인지·정창손 등에게 아다개(阿多介)284 를 각각 1좌(坐)씩 내려 주었다. 종친(宗親)·재추(宰樞)가 모두 나가니, 임금이 전지(傳旨)하기를,</p> <p>“내가 이미 태비(太妃)께 육膳(肉膳)을 올렸더니, 태비께서도 또한 나로 하여금 해소(解素)285 하게 하였다. 경들도 또한 해소(解素)하라.”</p> <p>하고, 이어서 임금이 명하여 인정전(仁政殿) 월대(月臺)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다.</p>	
<p>예종 5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4월 1일(갑인) 6 번째기사</p>	<p>궁온(宮醞)을 춘추관(春秋館) 실록청(實錄廳)에 내려 주었다. 이 앞서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최항(崔恒) 등이 왕명을 받들어 양성지(梁誠之)·이승소(李承召)·김수령(金壽寧)·정난중(鄭蘭宗)·이영근(李永根)·이극돈(李克墩)·예승석(芮承錫)·조안정(趙安貞)·조익정(趙益貞) 등과 더불어 《세조실록(世祖實</p>	<p>○賜宮醞于春秋館實錄廳。先是，申叔舟、韓明澮、崔恒等承命，與梁誠之、李承召、金壽寧、鄭蘭宗、李永根、李克墩、芮承錫、趙安貞、趙益</p>

	錄》을 찬술(撰述)하였는데, 뒤에 또 강희맹(姜希孟)을 참여하도록 명하였다	貞等，撰《世祖實祿》。後又命姜希孟與焉。
예종 5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4월 8일(신유) 1 번째기사 신운을 보내어 이화주 두 그릇과 별하정을 정동·심회 등에게 주 게 하다	환관(宦官) 신운(申雲)을 보내어 이화주(梨花酒) 두 그릇과 별하정(別下程)을 가져가서 정동(鄭同)·심회(沈繪) 등에게 주게 하였다.	辛酉/遣宦官申雲，齎梨花酒二器及別下程，贈鄭同、沈繪等。
예종 5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4월 26일(기묘) 2번째기사	최안(崔安)의 계후자(繼後子)인 최계종(崔繼宗)과 정동(鄭同)의 형인 정거(鄭擧) 등에게 각기 쌀·콩[米豆] 아울러 20석(石)씩을 내려 주고, 또 최계종에게 전지(田地) 2결(結)을 내려 주었다.	○賜崔安繼後子崔繼宗，鄭同兄鄭擧等，各米豆并二十石，又賜繼宗田二結。
예종 5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4월 30일(계미) 1번째기사	최안(崔安)은 김복진(金福眞)의 집에 갔고, 정동(鄭同)은 정지(鄭智)의 집에 갔으므로, 모두 승지(承旨)를 보내어 선은(宣醢)을 가져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癸未/崔安往金福眞家，鄭同往鄭智家。皆遣承旨，齎宣醢慰之。
예종 5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5월 1일(갑신) 1 번째기사	최안(崔安) 등이 예궐(詣闕)하여 하직하니, 임금이 경회루(慶會樓) 아래에 나아가 다례(茶禮)를 행하고, 드디어 태평관(太平館)에 거둥하여 전별연(餞別宴)을 베풀었다. 잔치 도중에 임금이 두목(頭目) 등을 불러 친히 술을 내려주고, 월산 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과 자을산군(者乙山君) 【금상(今上)의 휘(諱)이다.】에게 명하여 나와서 최안 등을 보게 하니, 최안 등이 답례(答禮)하였다.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영의정(領議政) 한명회(韓明澮) 등이 차례로 술을 돌리었다. 잔치가 과하자 연탁(宴卓)을 충훈부(忠勳府)에 내	○甲申朔/崔安等詣闕辭，上御慶會樓下，行茶禮，遂幸太平館，設餞宴。酒半，上召頭目等親賜酒，命月山大君婷、者乙山君【今上諱】出見安等，安等答禮。永順君溥、蓬原君鄭昌孫、高靈君申叔舟、綾城君具致寬、領議政韓明澮等，以次行酒。宴罷，賜宴卓于忠勳府，遣都承旨權城，齎宮醢賜

	러 주고, 도승지(都承旨) 권감(權臧)을 보내어 궁온(宮醞)을 가져가서 내려 주게 하였다. 또 권감에게 명하여 의복(衣服)·화(靴)·포(布) 등의 물건을 최안 등에게 주게 하였다.	之。又命臧，贈衣服、靴、布等物于安等。
예종 5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5월 2일(을유) 1 번째기사	임금이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최안(崔安) 등을 전송(餞送)하였는데, 잔치가 파하고 최안 등이 하직하므로, 임금이 친히 궁시(弓矢)를 집어서 주고 두목(頭目) 등을 불러 친히 술을 내려 주었다. 도승지(都承旨) 권감(權臧)을 보내어 궁온(宮醞)을 가져가서 영의정 한명회(韓明澮)·예조 판서 임원준(任元濬)과 더불어 최안 등을 벽제역(碧蹄驛)에서 전송하게 하였다. 어가(御駕)가 돌아오다가 하성군(河城君) 정현조(鄭顯祖)의 집에 거둥하였는데, 명하여 정현조에게 쌀 50석(石)을 내려 주게 하였다.	○乙酉/上幸慕華館，餞崔安等。宴罷，安等辭，上親執弓矢贈之，召頭目等親賜酒。遣都承旨權臧，齎宮醞，與領議政韓明澮、禮曹判書任元濬，餞安等于碧蹄驛。駕還，幸河城君鄭顯祖第，命賜顯祖米五十石。
예종 5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5월 5일(무자) 3 번째기사	춘추관(春秋館)에 술을 내려 주었다.	○賜酒于春秋館。
예종 5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5월 20일(계묘) 1 번째기사	임금이 경회루(慶會樓)에 나아가서 익대 공신(翊戴功臣)에게 교서(敎書)를 내리고, 이어서 술을 내려 주었다. 임금이 내전(內殿)에 돌아와 환관(宦官) 전균(田均)으로 하여금 궁온(宮醞)을 가지고 가서 이들을 공궤(供饋)하게 하였다. 또 자을산군(者乙山君) 【금상(今上)의 휘(諱)이다.】에게 명하여 이화주(梨花酒) 1담(壇)을 가지고 가서 내려 주게 하였다.	○癸卯/上御慶會樓下，頒敎于翊戴功臣，仍賜酒。上還內，令宦官田均，齎宮醞饋之。又命者乙山君【今上諱。】齎梨花酒一壇賜之。
예종 6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6월 9일(신유) 3 번째기사	평안도 관찰사 어세겸(魚世謙)에게 유지하기를, “지금 듣건대, 본도의 강변에 사는 백성들이 지난해에 농사를 실패하고, 또 뜯말[浮言]로 인하여 봄보리[春麩] 등의 곡식을 경작하지 아니하여 기근[飢荒]이 더욱 심하다고 하니, 강변 연안의 제읍(諸邑)에 군수(軍需)의 숫자가 적기는 하나, 진급(賑給)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안주(安州)와 영변(寧邊)의 곡식 2만 석을 가지고 적당히 헤아려 주어서 구휼하도록 하고, 가을에 이르러서 준비하는 바에 따라서 살고 있는 고을에 납입하게 하라.”	○諭平安道觀察使魚世謙曰：“今聞本道江邊居民，去年失農，又以浮言，不耕春牟等穀，飢荒尤甚，沿江諸邑軍數少，不可不賑給。姑以安州、寧邊穀二萬石，量給救恤，至秋隨其所備，納于所居官。”

	하였다.	
<p>예종 6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6월 11일(계해) 6번째기사</p>	<p>정의 공주(貞懿公主)에게 쌀 1백 석(石)을 내려 주었다.</p>	<p>○賜貞懿公主米百石。</p>
<p>예종 6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6월 29일(신사) 2번째기사</p>	<p>(…) 1. 의창(義倉)을 넉넉하게 하는 일입니다. 신이 그웁이 생각하건대, 인군(人君)은 하늘을 대신한 직책이니, 백성을 기르는 것[養民]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백성을 기르는 방법은 의창(義倉)을 설치하여 먹이게 함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세종 대왕은 의창의 일을 중히 여겨 세월(歲月)을 기하여서 크게 차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세조 대왕조(世祖大王朝)에 미쳐서는 소신(小臣)이 성상[耿光]을 면대(面對)하여 두 가지로 이해(利害)를 진술하였고, 실봉(實封)하여 상달(上達)한 자도 또한 두 번이나 되었습시다. 소위 의창이라는 것은 경오년에 건감(蠲減)한 이후로는 백성으로서 받는 자는 건감하여 면하기만을 바라고 제때에 납부하지 않는 것이 많으니, 이는 성상이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기르는 대절(大節)로서, 급급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빌건대, 금후로 백호(百戶)의 현(縣)에서는 의창에 5백 석(石), 군자(軍資)로 5백 석을 쌓고, 천호(千戶)의 군(郡)에서는 의창·군자 또한 각기 5천 석씩을 쌓아 인근 고을에 옮겨서 균등하게 하고, 그 부족한 것을 나라에서 다방면으로 포치(布置)하여 10년을 기하여 족한 연후에라야 그만두게 하면, 곧 민생(民生)에도 매우 다행이고, 군국(軍國)에도 매우 다행할 것입니다. 1. 군자(軍資) 모미(耗米)를 거두는 일입니다. 신이 그웁이 듣건대, 외방 수령(守令)의 공수(公須)와 아록(衙祿)은 구하는 바에 따라서 상정(詳定)하니, 둔전(屯田)에는 액수(額數)가 있고 징속(徵贖)하는 것의 금함이 있으며, 일체의 이익은 모두 관(官)에 들이는데, 감사(監司)가 공궤(供饋)하는 것이 오히려 충분하지 못하여 도내(道內)의 별상(別常)이나 경</p>	<p>(…) 一，實義倉。臣竊惟，人君代天之職，莫大於養民，而養民之術，不過設義倉以食之而已。我世宗大王，重義倉之事，期而歲月，欲使大盈，及世祖大王之朝，小臣面對耿光，兩陳利害，以實封上達者，亦至于再。所謂義倉，自庚午蠲減之後，民之受者，冀望蠲免，多不時納，是君上代天養民大節，不可不汲汲也。乞今後百戶之縣，畜義倉五百石，軍資五百石；千戶之郡，義倉、軍資，亦各畜五千石，隣近之邑，推移均之。其不足者，國家多方布置，期以十年，足之而後已焉，則民生幸甚，軍國幸甚。一，收軍資耗米。臣竊聞，外方守令公須衙祿，從簡詳定，屯田有額，徵贖有禁，一切之利，皆入於官，監司供饋，尙不能充，道內別常，京中使客支持，多有稱貸而爲之者，甚者使鄉吏，遞日而供之。如此各邑所受軍資米穀，小者數百石，多者千萬石。百石之穀，經一歲則鼠</p>

중(京中) 사객(使客)의 지대(支待)에 칭대(稱貸)하여서 한 것이 많다고 하며, 심한 자는 향리(鄉吏)로 하여금 날마다 교대로 이바지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각 고을에서 받는 군자 미곡이 적은 것은 수백 석이고 많은 것은 천 석, 만 석인데, 1백 석의 곡식이라도 1년을 지나면 쥐가 먹거나 썩어서 줄어드는 것이 거의 10석에 이릅니다. 이로써 1만 석의 곡식이라면 1천 석이 되니, 1천 석의 곡식을 한 수령이 어찌 능히 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리하여 수령들이 해유(解由)를 받지 못하는 자가 많은데, 이것이 어찌 공사(公私)의 큰 근심이 아니겠습니까?

금후로 군자미(軍資米)도 또한 백성들에게 빌려 주어 그 환납(還納)할 때에 1석에 대해서 쥐가 없앤 2두(斗)를 취하소서. 이렇게 하면 거의 관민(官民)이 둘 다 편하고 창름(倉廩)은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1. 직전(職田)에서 납초(納草)하는 것을 혁파하는 일입니다.

신이 그웁이 생각하건대, 경기(京畿)는 근본의 땅인데도 요역(徭役)은 다른 도에 비하여 가장 무겁습니다. 납초(納草)하는 한 가지 일로써 말하더라도, 여름에는 청초(靑草)를 바치고 겨울에는 곡초(穀草)를 관(官)에 바치니, 즉 《우공(禹貢)》의 3백 리(里)에서 벼짚[秸]을 바치는 뜻입니다. 이미 관에 바치고 또 직전을 받은 자에게 바치니, 한 묶음의 풀에 대해서 쌀 1두(斗)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풀값의 쌀과 원래 세(稅)의 쌀이 같습니다. 이것을 어찌 기현(畿縣)의 백성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법을 혁파하지 않는다면 수년이 가지 않아서 민전(民田)은 진황지(陳荒地)가 많아지고 기전(畿甸)의 백성은 유망(流亡)하는 자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풍습으로 이미 이루어졌으니, 갑자기 법을 중지하는 것이 불과합니다. 처음에는 비록 조금씩 거두더라도 후에는 반드시 없애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직전(職田)에서 납초(納草)하는 법을 혁파하지 않는다면 직전에 원래 정해진 수를 더하여, 종실(宗室)·대군(大君)의 2백 25결(結)은 지금 4백 50결로

耗腐損，幾至十石。以此萬石之穀，損至千石，千石之穀，豈一守令所能辦哉？以此守令，多未受解由者，此豈非公私之大患哉？今後軍資之米，亦貸於民，其還納之時，一石取鼠耗二斗。如是則庶幾官民兩便，而倉稟實矣。一，革職田納草。臣竊惟，京畿根本之地也，而徭役比他道爲最重。以納草一事言之，夏納靑草，冬納穀草於官，卽《禹貢》三百里納秸之意也。既納之於官，又納於受職田者，一束之草，徵米一斗，草價之米，與元稅之米同。是豈畿縣之民，所能堪哉？若此法不革，則不出數年，民田多陳荒，而畿甸之民，多流亡矣。然此風已成，不可遽以法止之。初雖稍戢，後必復然。莫若革職田納草之法，加職田元定之數。如宗室、大君二百二十五結，則今定爲四百五十結，流內九品一十結，則今定爲二十結。如是則士夫不至於失望，而關內之民，永被生成之澤。一，定貢賦。臣竊惟，貢物詳定，自古以爲難。山海所產各異，而未能均一分定，然不可汎然爲之。須因水陸而詳定之，如下三道貢綿布，平

	<p>정하고, 유내(流內)9품 10결은 지금 20결로 정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사대부(士大夫)가 실망(失望)하기에 이르지 않는 것을 알고, 관내(關內)의 백성은 영구히 생성(生成)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p> <p>1. 공부(貢賦)를 정하는 일입니다.</p> <p>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공물(貢物)의 상정(詳定)은 예로부터 어렵게 여겨왔습니다. 산과 바다에서 산출되는 바가 각기 달라서 균일하게 나누어 정할 수 없으나, 범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p> <p>모름지기 수륙(水陸)으로 인하여 상정(詳定)해야 할 것이니, 하삼도(下三道) 같은 데에서는 면포(綿布)를 바치고, 평안도(平安道)·황해도(黃海道)는 면주(綿紬)를 바치고, 함길도(咸吉道)·강원도(江原道)는 상포(常布)를 바치며, 또 양계(兩界)는 초피(貂皮)·서피(鼠皮)를 바치고, 강원도는 재목(材木)을 바치고, 황해도는 철물(鐵物)을 바치고, 전주(全州)·남원(南原)은 후지(厚紙)를 바치고, 임천(林川)·한산(韓山)은 생저(生苧)를 바치고, 안동(安東) 등지는 돛자리[席子]를 바치고, 강계(江界) 등지는 인삼(人蔘)을 바치고, 제주(濟州)는 양마(良馬)를 바쳐서 곳곳에 있는 물건이 이르고 또 곳곳에 나누어 정하도록 하소서. 그렇게 하여 산군(山郡)에서는 피물(皮物)을 바치고, 해군(海郡)에서는 어물(魚物)을 바쳐 그 많고 적은 것을 균등하게 하고, 그 자질구레한 것을 제한하면, 매우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p>	<p>安、黃海道貢綿紬，咸吉、江原道貢常布，又兩界貢貂皮、鼠皮，江原道貢材木，黃海道貢鐵物，全州、南原貢厚紙，林川、韓山貢生苧，安東等處貢席子，江界等處貢人蔘，濟州貢良馬，至於處處有之之物，亦處處分定。以之山郡貢皮物，海郡貢魚物，均其多寡，刪其零碎，不勝幸甚。(…)</p>
<p>예종 6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7월 6일(정해) 3번째기사</p>	<p>정현 옹주(貞顯翁主)가 온양(溫陽) 온천(溫泉)에 가서 목욕하니, 충청도 관찰사에게 쌀 15석을 주도록 유시하였다.</p>	<p>○貞顯翁主往浴溫陽溫井，諭忠清道觀察使給米十五石。</p>
<p>예종 6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7월 11일(임진) 6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명하여 평원 대군(平原大君) 이임(李琳)의 부인 홍씨(洪氏)에게 쌀·콩 각기 50석을 내려 주게 하였다.</p>	<p>○命戶曹，賜平原大君琳夫人洪氏，米豆各五十石。</p>

<p>예종 6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7월 13일(갑오) 6번째기사</p>	<p>명하여 승은전(崇恩殿)에 제사지낼 때에 술을 쓰지 말게 하였다.</p>	<p>○命崇恩殿祭奠，勿用酒。</p>
<p>예종 6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7월 22일(계묘) 5번째기사</p>	<p>호조에 명하여 쌀 3백 석을 봉선사(奉先寺)에 내려 주도록 하였다.</p>	<p>○命戶曹，賜米三百石于奉先寺。</p>
<p>예종 6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7월 29일(경술) 2번째기사</p>	<p>도승지(都承旨) 권감(權臧) 등이 전문(箋文)을 올려 사은(謝恩)하였다. 그 전문에 이르기를, “외람되게 밀지(密旨)를 입어 다만 매우 황공하였을 뿐인데, 홀연히 새로 <형상을> 그려주심을 입으니 더욱 깊이 감격하였으며, 영화로움이 이와 같으니 운월(隕越)함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엿드려 생각하건대, 용렬한 재질로서 소대(昭代)를 비로소 만나, 세조(世祖)께서 가려 뽑으신던 날 거등에 욱되게도 시종(侍從)하였고, 성상(聖上)께서 임어(臨御)하시던 초기에 미처서는 특별히 돌보아 임명하심을 입었습니다. 바야흐로 죄받기를 기다릴 여가도 없었는데, 은총이 넘치심을 입으니, 정신은 형상을 그린 것에 기울어져 있어 항상 주야로 천지신명(天地神明)에게 대하고, 술이 내온(內醞)으로부터 나누어지니 우로(雨露)의 꽃다운 향기에 젖습니다. 하물며 세 가지 특수한 영광에 접하여 하루 아침에 답지(沓至)하니, 오직 머리를 떨어뜨릴 줄만 알 뿐이고 마음이 헤아릴 것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대개 <성상께서> 도량이 커서 포용하여 주시고 인자함이 깊어서 함육(涵育)하여 주시니, 신(臣)의 쓸모 없는 재질을 기록하시고 신(臣)의 오로지하는 마음을 헤아리시어, 드디어 잔약한 자질로 하여금 달리 우악(優渥)한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이니, 신 등은 감히 소절(素節)을 더욱 굳게 하지는 못하겠으나, 성실하고 즐거움도록 다시 연마하여, 밟는 것같이 하고 임(臨)하는 것같이 하여 출입(出入)하는 데에 거의</p>	<p>○都承旨權臧等進箋謝恩。箋曰： 濫叨密地，徒切兢惶。忽被新圖，采增感激。榮華若此，隕越何堪？伏念俱以庸材，端逢昭代。當世祖簡拔之日，幸忝侍從；及聖上臨御之初，尤蒙眷任。方俟罪之不暇，而荷寵之踰涯，精神寓於描形，恒夙夜而對越。酒醴分自內醞，霑雨露之芳馨。矧三接之殊榮，在一朝而沓至，唯知隕首，不覺裁心。茲蓋度廓包荒，仁深涵育，錄臣才之碌碌，諒臣心之專專，遂令屏資，獲被異渥。臣等敢不益堅素節，更礪丹悰？如履如臨，庶觀省乎出入；時萬時億，惟頌禱乎岡陵。</p>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만년(萬年)이고 억년(億年)이고 오직 강릉(岡陵)과 같이 수(壽)하시기를 노래하여 기원하겠습니다.”	
예종 7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8월 11일(임술) 2번째기사	호조(戶曹)에 명하여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의 부인에게 쌀 50석(石)을 내리고, 녹(祿)도 평원 대군(平原大君)·영응 대군(永膺大君)의 부인의 예(例)에 따라서 주도록 하였다.	○命戶曹， 賜臨瀛大君璆夫人米五十石， 祿亦依平原大君、永膺大君夫人例給之。
예종 7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8월 16일(정묘) 3번째기사	이보다 앞서 윤대(輪對)에서 예문관 봉교(藝文館奉敎) 안처량(安處良)이 아뢰기를, “1. 경상도에서 바치는 국용 포자(國用布子)는 구법(舊法)에 매 1필(匹)을 황두(黃豆) 30두(斗)로 준(准)하여 세 내던 것을 뒤에 19두로 고쳤었는데, 또 12두로 고쳤다가 이제는 8두가 되었으나, 또 베를 바칠 때에 수포가미(輸布價米)1146) 1두를 아울러 바치므로 실지로 덜어진 것은 6두인데, 이것으로는 1필을 짜는 데에 드는 것을 바꾸기에도 오히려 부족하여, 백성이 매우 괴로와합니다.	○先是輪對， 藝文館奉敎安處良啓：“一， 慶尙道國用布子， 舊法每一匹， 準稅黃豆三十斗， 後改以十九斗， 又改以十二斗， 今則八斗。 又納布時， 并納輸布價米一斗， 是則實除六斗也。 以此易一匹所織， 猶且不足， 民甚苦之。
예종 7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8월 20일(신미) 4번째기사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기삭(忌朔)으로 형륙(刑戮)을 금하는가?” 하니, 도승지(都承旨) 권감(權臧) 등이 대답하기를, “기삭의 법은 예문(禮文) 및 우리 나라의 상제(喪制)에 모두 없고, 태종(太宗)·세종(世宗)께서도 행하지 않으셨는데, 다만 문종조(文宗朝)에 비로소 기삭을 행하였습니다. 예조(禮曹)에서는 이에 의거하여, 오는 9월이 연제(練祭)가 있는 달이라 하여 제사(諸司)에서 고기를 쓰는 것을 금하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형벌을 쓰는 것은 금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조종(祖宗)의 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어찌하여 문종 때의 전례를 쓰겠는가?” 하였다.	○傳于承政院曰：“以忌朔禁刑戮乎?” 都承旨權臧等對曰：“忌朔之法， 於禮文及我朝喪制皆無， 太宗、世宗， 亦不行之， 但文宗朝始行忌朔。 禮曹據此， 以來九月練祭之月， 請禁諸司用肉。 然用刑則當不禁。” 上曰：“當遵祖宗之法， 何用文宗時例?”

예종 7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8월 26일(정축) 4번째기사	(...) 이윽고 환자(宦者) 김결(金潔)에게 명하여 권감 등에게 사온(賜醢)하여 위로하게 하고, 영추문을 열고 도둑들을 들이도록 명하고 입직(入直)한 병조·도총부(都摠府)의 낭관(郎官) 등을 시켜 서소(西所)·남소(南所)·북소(北所)에 나누어 가두게 하고 위장(衛將)으로 하여금 단속하여 지키게 하였다. (...)	(...) 俄而命宦者金潔, 賜醢于城等以慰之, 命開迎秋門納賊人等, 令入直兵曹、都摠府郎官等, 分囚于西南北所, 使衛將押直. (...)
예종 7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9월 17일(정유) 1번째기사	임금이 영창전(永昌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고, 대비(大妃)도 따로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丁酉/上詣永昌殿, 行晝茶禮, 太妃亦別行茶禮。
예종 7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9월 18일(무술) 1번째기사	봉보 부인(奉保夫人)에게 쌀과 콩 아울러 30석(石)을 내렸다.	○戊戌/賜奉保夫人米豆并三十石。
예종 7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9월 25일(을사) 2번째기사	청천군(淸川君)한백륜(韓伯倫)에게 안장[鞍] 1부(部)를, 당양군(唐陽君)홍상(洪常)에게 쌀 20석(石)을 내렸다	○賜淸川君韓伯倫鞍一部, 唐陽君洪常米二十石。
예종 8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10월 2일(임자) 6번째기사	전지하여 봉보 부인(奉保夫人)의 종 개동(開同) 및 윤양제(尹良娣)의 집에서 위법한 함경도(咸鏡道)의 회환미(回換米)는 징수하지 말게 하였다.	○傳旨奉保夫人奴開同及尹良娣家, 違法咸鏡道回換米勿徵。
예종 8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10월 18일(무진) 2번째기사	심안의(沈安義)의 어미에게 쌀과 콩 아울러 30석과 종이 1백 권(卷)을 부의하게 하였다.	○命賻沈安義母米豆并三十石、紙百卷。
예종 8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호조(戶曹)에서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戶曹據平安道觀察使啓本啓: “本道江邊諸邑, 軍需不敷, 請昌城等邑, 移

<p>5년) 10월 23일(계유) 2번째기사</p>	<p>“본도의 강변(江邊) 제읍에 군수(軍需)가 부족하니, 청컨대 창성(昌城) 등의 고을에 의창(義倉)의 곡식을 옮겨 주고, 소재읍(所在邑)에 납부하여 회계(會計)에 기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給義倉之穀，令納所在邑，載會計。” 從之。</p>
<p>예종 8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11월 11일(신묘) 3번째기사</p>	<p>태비(太妃)께서 영창전(永昌殿)에 나아가서 다례(茶禮)를 행하였다.</p>	<p>○太妃詣永昌殿，行茶禮。</p>
<p>예종 8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11월 21일(신축) 1번째기사</p>	<p>도승지(都承旨) 권감(權臧)이 속미면(粟未麪)을 올리니, 승지 등에게 선은(宣醢)을 내려 주었다.</p>	<p>○辛丑/都承旨權臧，進粟米麪，賜宣醢于承旨等。</p>
<p>예종 8권, 1년(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11월 27일(정미) 2번째기사</p>	<p>예조 겸 판서(禮曹兼判書) 신숙주(申叔舟)·참의(參議) 김영유(金永濡)가 아뢰기를, “우리 나라에 투화(投化)한 야인(野人) 낭장가로(浪將家老)가 오늘 본조에 이르러 정랑(正郎) 신숙정(申叔楨)에게 말하기를, ‘금일에 내가 알타리(斡朶里) 마금파로(馬金波老)와 서로 만나 볼 수 있는가?’ 하므로, 신숙정이 ‘그렇다.’ 하니, 낭장가로는 묻기를, ‘술과 반찬이 얼마쯤 되는가?’ 하여, 신숙정이 ‘어육(魚肉)과 채과(菜果)는 다섯 그릇이고, 탕수(湯水)는 세 그릇이며, 술은 한 병이다.’ 하였더니, (…)</p>	<p>○禮曹兼判書申叔舟、參議金永濡啓曰：“投化野人浪家將老，今日到本曹，謂正郎申叔楨曰：‘今日吾與斡朶里馬金波老相見歟?’ 叔楨曰：‘然。’ (…)</p>

5. 성종실록 <1> 기사자료집

성종실록 <1> 기사자료집 : 성종 즉위년 ~ 성종 10년 5월

출처	내용	원문
<p>성종 1권, 즉위년 (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11월 29일(기유) 1번째기사</p>	<p>도승지(都承旨) 권감(權臧)이 여러 원상(院相)에게 의논하기를, “의도(儀度)를 정하지 못했으므로 전석(前夕)의 상식(上食)에는 주상(主上)께서 빈전(殯殿)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하니 고령군(高靈君) 신숙주가 말하기를, “성복(成服) 전에는 본디부터 예도(禮度)가 없는 것이며, 또 주상(主上)께서 나이도 어리시고 또 매우 추운 시기여서 거동하기가 실상 어렵겠으니, 다만 조석(朝夕)의 상식(上食)만은 대궐 곁에 나아가 부복(俯伏)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소?” 하였다. 권감(權臧)이 이로써 아뢰니, 전교(傳敎)하기를, “주상(主上)께서 어찌 다 성례(成禮)할 수가 있겠는가? 혹은 하루를 거르든지, 혹은 날마다 한 번씩 빈전(殯殿)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p>	<p>○己酉/都承旨權臧議于諸院相曰：“儀度未定，故前夕上食，主上不詣殯殿。今日宜何如？”高靈君申叔舟曰：“成服前，本無禮度。且主上年幼，時又寒甚，舉動實難。只於朝、夕上食，就殿側俯伏何如？”臧以啓，傳曰：“主上豈得盡成禮乎？或間日，或日一度詣殯殿，可也。”</p>
<p>성종 1권, 즉위년 (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12월 1일(경술) 2번째기사</p>	<p>(…) 대왕 대비가 전교(傳敎)하기를, “대행왕(大行王)이 일찍이 발병[足病]을 앓았는데, 병이 나으면 반드시 나에게 날마다 세 번씩 조회했으며, 병이 발생하면 사람을 시켜 문안(問安)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니, 내가 어찌 이 지경에 이르게 될 줄을 생각했겠는가? 세조(世祖)께서 일찍이 말씀하기를, ‘조그만 질병이 있으면 외인(外人)에게 이를</p>	<p>(…) 大王大妃傳曰：“大行嘗患足疾。病間，必朝我日三；若疾發，使人問安不輟。予豈意至是耶？世祖嘗曰：‘有小疾，不可使外人知之。’故時遇小疾，不使外人知者，屢矣。且大行，</p>

	<p>알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신 까닭으로, 때로 조그만 질병을 만나면 외인(外人)에게 이를 알지 못하게 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 또 대행왕(大行王)은 다만 술을 드실 뿐이고 음식을 들지 않았는데, 전일의 수순(數旬) 사이에는 내가 그 병환이 발생했다는 말을 듣고는 마음속으로 대단치 않은 병이라 여겼는데, 어찌 갑자기 대고(大故)에 이르게 될 줄을 생각했겠는가? 더구나 내외(內醫) 등도 또한 일찍이 병세(病勢)를 나에게 아뢰었으니, 어찌 처벌할 수가 있겠는가?”</p> <p>하였다. (…)</p>	<p>但進酒而已，未得進膳，前數旬間，予聞其弗豫，意謂微病也，豈意遽至大故耶？且內醫等，亦嘗啓病勢於我，何可罪也？” (…)</p>
<p>성종 1권, 즉위년 (1469 기축 / 명 성화 (成化) 5년) 12월 4일 (계축) 4번째기사</p>	<p>대왕 대비가 전교(傳敎)하기를, “대전(大殿)의 유모(乳母)에게는 해마다 하사(下賜)하는 쌀 이외에, 의전(衣纏)과 예사(例賜)하는 물건을 봉보 부인(奉保夫人)의 예에 의거하여 주도록 하라.”</p> <p>하였다.</p>	<p>○大王大妃傳曰：“大殿乳母，每年賜米外，衣纏及例賜物，依奉保夫人例給之。”</p>
<p>성종 1권, 즉위년 (1469 기축 / 명 성화 (成化) 5년) 12월 11일(경신) 1번째기사</p>	<p>대궐에 역기(疫氣)가 있으니, 금기(禁忌)로 인하여 빈전(殯殿)의 조석전(朝夕奠)에는 술과 유밀과(油蜜果)를 쓰지 않고 떡으로써 대신 쓰게 했으며, 빈소(殯所)를 모신 내관(內官) 등은 곡(哭)하지 않고 상복(喪服)을 입지 못하게 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종친(宗親)에 부자(父子)와 형제(兄弟)가 함께 군대를 관장(管掌)하는 사람이 있으니, 옳지 못한 일이 아니겠는가?”</p> <p>하니 원상(院相) 김질(金堧)과 김국광(金國光)이 대답하기를, “다만 종친(宗親)뿐 아니라 보통 사람도 친속(親屬)은 상피(相避)40) 가 있으니, 함께 군대를 관장하는 사람은 모두 개차(改差)시키는 것이 편리하겠습니까.”</p> <p>하였다. 신숙주·한명회·구치관이 또 아뢰기를, “구례(舊例)에는 도총관(都總管)을 겸무(兼務)한 사람이 의정(議政)에 임명되면 모두 체차(遞差)시켰었는데, 지금은 의정(議政) 2인이 도총관(都總管)을 겸</p>	<p>○庚申/大內有疫氣，因禁忌，殯殿朝夕奠，不用酒、油蜜果，代以餅。侍殯內官等不哭，不着衰衣。傳曰：“宗親有父子兄弟俱掌兵者，無乃不可乎？”院相金堧、金國光對曰：“非惟宗親，凡人之親屬，有相避而同掌兵者，皆改差爲便。”申叔舟、韓明澮、具致寬又啓曰：“舊例，兼都總管者，拜議政，則皆遞差。今議政二人，兼都總管，權柄太重。請皆遞之。”傳曰：“可。”</p>

	<p>무하고 있으니 권한이 너무 무겁습니다. 모두 이를 체직(遞職)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좋다.” 하였다.</p>	
<p>성종 1권, 즉위년 (1469 기축 / 명 성화 (成化) 5년) 12월 14 일(계해) 4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이 평무적(平茂績)을 특별히 보내어 제전(祭奠)을 올리고 하례(賀禮)를 올렸으니, 그 회례(回禮)는 경오년에 종성홍(宗盛弘)이 제전(祭奠)을 올리고 하례를 올렸을 때의 예에 의거하여 백세면주(白細綿紬) 5필, 잡채화석(雜綵花席) 5장(張), 송자(松子) 50근, 소주(燒酒) 30병, 계(桂) 4각(角)을 하사(下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 “對馬州太守宗貞國特送平茂績, 進香、進賀。 其回禮, 請依庚午年宗盛進香、進賀時例, 賜白細綿紬五匹、雜綵花席五張、松子五十斤、燒酒三十瓶、桂四角、茶食四角, 何如?” 從之。</p>
<p>성종 1권, 즉위년 (1469 기축 / 명 성화 (成化) 5년) 12월 14 일(계해) 5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이 정피공고라(井皮孔古羅)를 특별히 보내어 가지고 온 서계(書契)에 말하기를, ‘윤2월에 하사(下賜)하신 서신(書信)은 건건(件件)마다 삼가 받았습니다. 삼가 삼포(三浦)의 백성이 처음에 60여명이라고 약속한 것은 실제 그러합니다. 지금 서로 잇따라 거주하는 사람은 그 자손(子孫)·친족(親族)과 복종(僕從)의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다. 비록 그러하나 전례(前例)에 따라 외람되이 도둑질을 할까 염려하여, 서로 흩어져 거주하는 사람을 점차 그 잘못을 독려 책선(責善)하여 내년에는 마땅히 모두 찾아내어 돌아갈 것입니다. 마지 못해서 서로 머물게 되는 사람은 특별히 그 이름을 써서 알린자입니다. 온갖 일을 존명(尊命)을 어길 수는 없는데, 또 간사하여 음모(陰謀)까지 하는 사람은 능히 알 수가 없는 자입니다. 어찌 알면서도 그 악(惡)을 징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후부터는 백성 중에 불선(不善)한 사람은 그 성자(姓字)를 써서 우리에게 알려 주소서. 폐읍(弊邑)은 귀국(貴國)에게는 실제로 입술과 이빨의 관계입니다. 소민</p>	<p>○禮曹啓: “今來對馬州太守宗貞國, 特送井皮孔古羅, 齋來書契曰: ‘閏二月所賜之書, 件件伏膺。 伏承, 三浦之民, 初約以六十餘名者, 實爾。 今相繼處者, 其子孫、親族并僕從之人也, 無有他。 雖然, 猶恐沿襲濫竊而相散處者, 漸督責其過失, 來歲當悉刷還。 夫弗獲已而相留者, 特書其名, 以聞者也, 百事不可違尊命。 且又至姦詐、陰謀者, 所不能知也。 寧知而不懲其惡乎? 自今以往, 民之不善者, 書其姓字, 以告吾。 弊邑之於貴國, 實唇齒也。 以小民之過失, 不可致兩國之大故, 因爲執事, 布腹心。 來書</p>

	<p>(小民)의 과실로써 두 나라의 큰 사고(事故)를 초래해서는 안되니, 이에 집사(執事)50) 를 위하여 마음속에 있는 바를 바로 진술합니다. 온 서신(書信)에 하사(下賜)한 조미(糙米) 50석(碩), 황두(黃豆) 50석, 송자(松子) 2석, 소주(燒酒) 20병, 청주(淸酒) 50병, 건치(乾雉) 1백 수(首), 기러기 10수(首), 계(桂) 3각(角), 다식(茶食) 3각(角), 면주(綿紬) 10필을 삼가 은혜롭게 받았으며, 별폭(別幅)의 대도(大刀) 3과(把)와 감초(甘草) 10근을 진상합니다.’ 하였습니다. 예조(禮曹)의 답서(答書)에는, ‘서신(書信)이 와서 적길(迪吉)함을 알게 되었으니 위안(慰安)이 됩니다. 헌상(獻上)한 예물(禮物)은 삼가 아뢰어 수납(收納)했습니다. 지금 온 서신(書信) 안에, 「삼포(三浦)에 항시 거주하는 사람은 내년에는 마땅히 모두 찾아내어 돌아갈 것이며, 마지 못하여 서로 머물게 되는 사람은 그 이름을 써서 알리겠으며, 온갖 일을 명령을 어기지 않겠습니다.」고 하니, 족하(足下)가 능히 대의(大義)를 알기 때문에 이에 미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뜻을 갖추어 아뢰었더니, 우리 전하(殿下)께서 이를 가상(嘉尙)히 여겨 특별히 백세면주(白細綿紬) 5필, 흑세마포(黑細麻布) 5필, 호피(虎皮) 1장(張), 표피(豹皮) 1장, 인삼(人蔘) 5근과 토산물인 정포(正布) 8필, 면포(綿布) 4필까지 하사(下賜)하여 돌아가는 사개(使价)에게 부치니 조령(照領)하기를 바랍니다. 항시 거주하는 사람을 찾아내어 돌아가는 일은 한결같이 앞의 서신(書信)에 의거하여 명백히 시행하는 것이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고 했습니다.”</p> <p>하였다.</p>	<p>所賜, 糙米五十碩、黃豆五十碩、松子二碩、燒酒二十瓶、淸酒五十瓶、乾雉一百首、雁一十首、桂三角、茶食三角、綿紬一十匹, 謹領恩惠。進上別幅, 大刀三把、甘草十斤。” 禮曹答書曰: “書來, 從審迪吉開慰。所獻禮物, 謹啓收納。今來書內, 三浦恒居者, 來歲當悉刷還, 不獲已相留者, 書其名以聞, 百事不可違命, 可見足下能知大義, 乃及於此。并具此意以啓, 我殿下嘉之, 特賜白細綿紬五匹、黑細麻布五匹、虎皮一張、豹皮一張、人蔘五斤, 并土宜正布八匹、綿布四匹, 付回价, 惟照領。恒居人刷還事, 一依前書, 明析施行, 幸甚。”</p>
<p>성종 1권, 즉위년 (1469 기축 / 명 성화 (成化) 5년) 12월 21 일(경오) 4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산릉(山陵) 기지(基地)의 한정(限定)은 동쪽 봉고개(蜂古介)·가을고개(加乙古介)·미륵원(彌勒院)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덕연원(德淵院)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목단리(牧丹里)·신리(新里)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의묘(懿墓) 밖의 안산(案山)까지 이르렀습니다. 도국(圖局) 안의 철거(撤去)할 구분(舊墳)은 구분(主墳)이</p>	<p>○禮曹啓: “山陵基限, 東自蜂古介、加乙古介、彌勒院, 北抵德淵院, 西至牧丹里、新里, 南盡懿墓外案山。圖局內舊墳撤去者, 有主墳, 則給米二碩、豆一碩; 堂上官墳及堂上官父母·</p>

	<p>있으면 쌀 2석(碩)과 콩 1석을 주고, 당상관(堂上官)의 무덤과 당상관(堂上官) 부모(父母)의 무덤과 조부모(祖父母)의 무덤과 아내의 무덤은 쌀·콩 합계 15 석(碩)을 주고, 주분(主墳)이 없으면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하여금 인부(人糶)를 적당히 주어서 옮겨 장사(葬事)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祖父母墳、妻墳， 則給米豆并十五碩；無主墳，令京畿觀察使，量給人糶，遷葬何如？”從之。</p>
<p>성종 1권, 즉위년 (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12월 24 일(계유) 1번째기사</p>	<p>예조 겸판서(禮曹兼判書) 신숙주가 아뢰기를, “지금 온 왜인(倭人) 평무속(平茂續)은 그 아버지가 있을 때부터 국가에서 해마다 하사(下賜)하는 쌀이 있었으며, 평무속이 투화(投化)하여 온 그때에도 또한 쌀을 하사(下賜)했는데 지금은 하사(下賜)한 것이 없습니다. 신(臣)이 듣건대, 평무속은 집이 매우 궁핍(窘乏)하다고 하니, 쌀과 식물(食物)을 하사(下賜)하여 그에게 우대(優待)하는 뜻을 보이게 하소서.” 하니 이에 명하여 쌀·콩 합계 10석(碩)과 식물(食物)을 하사(下賜)하도록 하였다.</p>	<p>○癸酉/禮曹兼判書申叔舟啓曰：“今來倭人平茂續，自其父在時，國家歲有賜米。茂續投化來，其時亦賜米，今無所賜。臣聞茂續家甚窘乏，請賜米及食物，以示優待之意。”乃命賜米、豆并十碩及食物。</p>
<p>성종 1권, 즉위년 (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12월 28 일(정축) 1번째기사</p>	<p>원상(院相)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구치관(具致寬)·홍윤성(洪允成) 등이 대왕 대비(大王大妃)에게 육선(肉膳)을 드시기를 청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몸이 지금 편안하고 튼튼하여 병이 없는데, 어찌 고기를 먹을 필요가 있겠는가?” 부득이 한다면 빈전(殯殿)에 옮긴 후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신숙주 등이 아뢰기를, “한(漢)나라 이후로는 상제(喪制)는 날을 달로 바꾸어[以日易月]67) 27일이 지나면 일은 모두 길례(吉禮)에 따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는데, 하물며 대비(大妃)께서는 대행왕(大行王)에게 존비(尊卑)의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문(禮文)에 상고해 보아도 이미 이와 같으며, 인정(人情)에 참고해 보아도 또 이와 같습니다. 더구나 전하(殿下)께서 근래에 두 번이나 참척(慘戚)을 만났으니, 지금 비록 편안하고 튼튼하더라도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원컨대 종사(宗社)의 큰 계책으로 마음을 가지시어 사정(私</p>	<p>○丁丑/院相申叔舟、韓明澮、具致寬、洪允成等請進肉膳于大王大妃。傳曰：“身今康強無疾，何必食肉？不得已，則待遷殯後可也。”叔舟等曰：“自漢以後，喪制以日易月，過二十七日，事皆從吉。子之於父，猶如此，況大妃於大行王，有尊卑之分乎？考之禮文既如此，參之人情又如此。且殿下近來再罹慘戚，今雖康強，安可恃也？願以宗社大計爲念，抑情從禮，善調攝聖躬，保護嗣王。”傳曰：“心不安，故不敢從之，其勿更言。”叔舟等請之再三，傳曰：“予欲勉從，近將設</p>

	<p>情)을 억제하고 예절을 따라서 성궁(聖躬)을 잘 조섭(調攝)하여 사왕(嗣王)을 보호하소서.”</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까닭으로 감히 따를 수가 없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신숙주(申叔舟) 등이 이를 청하기를 두 번 세 번이나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내가 힘써 따르려고 하지만, 근일에 장차 수록재(水陸齋)를 베풀려고 하여 지금 바야흐로 치재(致齋)하고 있으니, 수록재(水陸齋)를 행하기를 기다려 이를 따르겠다.” 하였다. 임금이 신숙주 등에 명하여 송문당(崇文堂) 문에 나아가 이를 청하게 하므로, 신숙주 등이 이를 청하기를 두 번이나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경(卿) 등이 내 말을 믿지 않고서 이렇게 강요하는데, 강요를 그치지 않는다면 나는 짧은 머리털이 매우 적지만 이것마저 깎아버리고 정업원(淨業院)으로 물러가겠다. 그러면 누가 능히 나를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는가?” 하니 신숙주 등이 그제야 물러갔다.</p>	<p>水陸，今方致齋，待行水陸從之。”上命叔舟等，詣崇文堂門請之。叔舟等請之至再。傳曰：“卿等不信予言，強之至此。若此不已，予有短髮甚少，剃去之，退去淨業院，則誰能復我于此座乎？”叔舟等乃退。</p>
<p>성종 1권, 즉위년 (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12월 29일(무인) 1번째기사</p>	<p>임금이 원상(院相) 신숙주(申叔舟) 등에게 전교(傳敎)하기를,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에 어찌 육선(肉膳)을 드시기를 연달아 청하지 않는가?” 하니 신숙주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명령이 진실로 당연합니다.” 하고는, 즉시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에 아뢰기를, “신(臣) 등이 구례(舊例)를 상고해 보니, 의경 세자(懿敬世子)가 별세하고 7일을 지난 후에 육선(肉膳)을 드시기를 청하니, 세조(世祖)께서 윤택하지 않다가 25일에 이르러 그제야 이를 허락하셨는데, 지금 이미 27일을 지났는데도 오히려 허락하지 않으니, 신(臣) 등은 생각하기를, 마음은 비록 한이 없지마</p>	<p>○戊寅/上傳于院相申叔舟等曰：“大王大妃殿，何不連請肉膳乎？”叔舟等曰：“上敎允當。”即啓大王大妃殿曰：“臣等考舊例，懿敬世子卒過七日後，請進肉膳，世祖不允，至二十五日，乃許之。今已過二十七日，而猶不許，臣等以爲，心雖無窮，不可踰制也。伏望勉從舊例。”不許。叔舟等更請之，竟不許。</p>

	<p>는 예제(禮制)는 넘길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삼가 바라건대 구례(舊例)를 힘써 따르소서.”</p> <p>했으나, 허가하지 아니했다. 신숙주 등이 다시 이를 청했으나 마침내 허가하지 아니했다.</p>	
<p>성종 1권, 즉위년 (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12월 30일(기묘) 3번째기사</p>	<p>원상(院相)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구치관(具致寬)·조석문(曹錫文)·김국광(金國光) 등이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에 다시 육선(肉膳)을 드시기를 청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대신(大臣)들의 말을 내가 어찌 듣지 않겠는가? 49일이 지난 후에는 마땅히 따를 것이다. 내가 안심하고 과세(過歲)하려고 하니 다시는 말하지 말기를 바란다.”</p> <p>하였다.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와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 등이 또 와서 청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지금 대신(大臣)들이 모두 와서 간곡히 청하는데, 내가 억지로 이를 여기게 되니 마음에는 편안하지 못하다. 그러나 마침 지금 수륙재일(水陸齋日)이 장차 가까이 다가오고, 또 오늘 낮에는 주상(主上)께서 친히 술·밥을 권하여 내가 배부르게 먹고 아무런 탈이 없으니 그것을 다시 말하지 말라.”</p> <p>하였다. 임금이 전교(傳敎)하기를,</p> <p>“대왕 대비의 명령이 이와 같으므로, 비록 간곡히 청하더라도 윤택을 얻을 수가 없으니 번거롭게 다시 아뢰지 말라.”</p> <p>하였다.</p>	<p>○院相申叔舟、韓明澮、具致寬、曹錫文、金國光等復請進肉膳于大王大妃殿。傳曰：“大臣之言，予何不聽？過七七日後當從之。予欲安心過歲，願勿更言。”河東君鄭麟趾、蓬原君鄭昌孫等亦來請。傳曰：“今大臣悉來懇請，予強違之，於心未安。然適今水陸齋日將近，且今午主上親勸酒食，予飽食無恙，其勿更言。”上傳曰：“懿敎如是，雖懇請、必未蒙允，毋煩更啓。”</p>
<p>성종 2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1월 5일(갑신) 3번째기사</p>	<p>원상(院相)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구치관(具致寬)·홍윤성(洪允成)·김국광(金國光)과 승지(承旨) 등이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에 아뢰기를,</p> <p>“전일의 교지(敎旨)가 엄중하기 때문에 신(臣) 등이 감히 다시 말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복제(服制)가 이미 다 되었으니, 청컨대 육선(肉膳)을 올리게 하소서.”</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院相申叔舟、韓明澮、具致寬、洪允成、金國光及承旨等啓于大王大妃殿曰：“前日敎旨嚴重，故臣等未敢更言，今則服制已盡，請進肉膳。”傳曰：“今只有六七齋。過此，當從卿等之請。”叔舟等更啓曰：“心雖無窮，</p>

	<p>“지금 다만 육제(六齋)와 칠제(七齋)만 남아 있으니, 이것만 지난다면 마땅히 경(卿) 등의 청을 따를 것이다.”</p> <p>하였다. 신숙주 등이 다시 아뢰기를,</p> <p>“마음은 비록 한정(限)이 없지마는, 예제(禮制)는 제한이 있습니다. 비록 3년의 중상(重喪)일지라도 복제(服制)만 끝나면 곧 상복(喪服)을 벗고 또한 감히 지나치지 못하는데, 지금 이미 복제가 끝났으므로 감히 청합니다.”</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비록 내가 예제(禮制)에 지나쳤더라도 어찌 후일의 예(例)야 되겠는가? 경(卿)은 염려하지 말라.”</p> <p>하였다.</p>	<p>禮制有限。 雖三年重喪， 服盡卽除， 亦不敢過。 今已服盡， 敢請。” 傳曰：“雖予過制， 豈爲後例？ 卿勿慮焉。”</p>
<p>성종 2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1월 14일(계사) 4번째기사</p>	<p>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윤자(尹慈)에게 교서(敎書)를 내리기를,</p> <p>“동봉(同封)한 사목(事目)을 자세히 보고 시행하라.</p> <p>1. 이준(李浚)이 처첩(妻妾)과 비자(婢子) 5인을 거느리고 가는데, 처첩에게는 세 끼[三時]의 요미(料米)를 주고, 비자(婢子)에게는 두 끼[兩時]의 요미(料米)를 주도록 하되, 술과 찬물(饌物)을 아울러 주도록 하라.</p> <p>1. 식물(食物)은 관찰사(觀察使)가 매월마다 한 번씩 적당히 갖추어 주도록 하라.</p> <p>1. 기우(寄寓)할 집은 주위에 담을 쌓고 녹각(鹿角)까지 설치하여 출입(出入)을 방지하라.</p> <p>1. 감고(監考) 2인과 군사 10인을 정하여 날마다 윤번(輪番)으로 수호(守護)하도록 하라.</p> <p>1. 있는 곳의 고을 수령(守令)은 3일에 한번씩 면견(面見)하고 검찰(檢察)하되 그와 더불어 말은 하지 말아라.”</p> <p>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p> <p>“이준(李浚)을 독촉하여 급박하게 서울을 나가게 해서 안되니, 다만 그로</p>	<p>○下書慶尙道觀察使尹慈曰： 同封事目看審施行。 一， 浚妻妾及婢子五人率去， 其給妻妾三時， 婢子兩時料， 竝給酒及饌物。 一， 食物， 觀察使每月一度， 隨宜備給。 一， 寄寓家周圍築墻， 兼設鹿角， 以防出入。 一， 定監考二人、軍十人， 輪日守護。 一， 所在邑守令， 三日一度， 面見檢察， 毋得與語。 傳曰：“浚， 不可督迫出京。 但令徐徐治裝， 至日晚， 押去。” 又命內侍安仲敬， 齋宣醞， 饋之于其第。 又命內侍張富， 齋食物、藥材， 護行。</p>

	<p>하여금 천천히 행장을 차리도록 하고, 해가 저물면 압송(押送)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내시(內侍) 안중경(安仲敬)에게 명하여 선운(宣醞)110) 을 가지고 가서 그 집에서 접대하도록 하고, 또 내시(內侍) 장부(張富)에게 명하여 식물(食物)과 약재(藥材)를 가지고 가서 보호해 가도록 하였다.</p>	
<p>성종 2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1월 18일(정유) 2번째기사</p>	<p>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과 수빈궁(粹嬪宮)에 비로소 육선(肉膳)을 올렸다.</p>	<p>○大王大妃殿及粹嬪宮始進肉膳。</p>
<p>성종 2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1월 21일(경자) 5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의 망전(望前)·망후(望後)의 진상(進上)과 별진상(別進上)의 육선(肉膳)을, 청컨대 여러 도(道)에 유사하여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봉진(封進)하도록 하소서.” 하니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전교(傳敎)하기를, “전례(前例)에는 졸곡(卒哭) 후에 육선(肉膳)을 올리도록 허락했는데, 지금 만약 행문 이첩(行文移牒) 한다면 경기(京畿) 같은 가까운 도(道)에서는 졸곡(卒哭) 전에 사냥을 하여 생물(生物)을 죽이게 될 것이니, 마음에 미안하다.” 하였다. 원상(院相)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삼대(三代)이하로 제왕(帝王)이 상례(喪禮)를 행하면서 모두 하루를 한달로 계산[以日易月]하여 27일 만에 상복(常服)을 벗었는데, 우리 조정에서는 3년 상(三年喪)을 행하면서 졸곡(卒哭) 후에야 육선(肉膳)을 먹게 되니 상제(喪制)가 옛날에 비하여 더 가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행문 이첩(行文移牒) 하더라도 해로울 것은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曰：“大王大妃殿望前後進上及別進上肉膳，請諭諸道，依前例封進。” 大王大妃傳曰：“前例，卒哭後，許進肉膳。今若行移，則如京畿近道，乃於卒哭前行獵殺生，於心未安。” 院相韓明澮啓曰：“三代以下，帝王行喪，皆以日易月，二十七日而除。我朝行三年喪，卒哭後乃用肉，喪制比古有加。雖行移無妨。” 從之。</p>
<p>성종 2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1월 25일(갑진)</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공릉(恭陵)과 경릉(敬陵)의 의위 석물(儀衛石物)은 산릉 도감(山陵都監)으로 하여금 배설(排設)을 겸하여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禮曹啓曰：“恭陵、敬陵儀衛石物，令山陵都監，兼治排設，何如？” 又啓曰：“仁粹王妃殿正朝、端午、冬至、</p>

<p>7번째기사</p>	<p>하였다. 또 아뢰기를, “인수 왕비전(仁粹王妃殿)의 정조(正朝)·단오(端午)·동지(冬至)·탄일(誕日)에 여러 도(道)에서 진상(進上)하는 방물(方物)과 망전(望前)·망후(望後)에 진상(進上)하는 것과 월령(月令)의 물선(物膳)은 모두 왕대비전(王大妃殿)의 예(例)에 의거하여 봉진(封進)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전교(傳敎)하기를, “지금 바야흐로 일이 많은 까닭으로 운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신숙주(申叔舟)가 아뢰기를, “예조(禮曹)에서 아뢰 바를 만약 운허(允許)하지 않는다면 후세에서는 반드시 주상(主上)께서 운허하지 않는다고 여길 것입니다. 어찌 대왕 대비(大王大妃)께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임을 알겠습니까? 예조(禮曹)에서 아뢰 바를 잠정적으로 운허하시고 의지(懿旨)161) 로 제거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좋다.” 하였다.</p>	<p>誕日，諸道進上方物及望前後進上，月令物膳，竝依王大妃殿例封進，何如?” 王大妃傳曰：“今方多事，故不允。” 申叔舟啓曰：“禮曹所啓若不允，則後世必以爲主上不允也。安知大王大妃除弊而然也? 禮曹所啓，姑允下，以懿旨除之爲便。” 傳曰：“可。”</p>
<p>성종 3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2월 7일(병진) 6번째기사</p>	<p>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김양경(金良暉)이 치계(馳啓)하기를, “은진(恩津) 사람 학생(學生) 김계전(金繼田)의 처 민씨(閔氏)는 남편이 일찍 죽으니, 피눈물을 흘려 3년 동안 여묘(廬墓)살이하여 소금과 채소를 먹지 않고 애훼(哀毀)하는 것이 예에 넘쳤으며, 지금 11년이 되었는데도 소의(素衣)·소식(素食)으로 술·과실·과·마늘을 입에 넣지 않고, 인하여 묘 옆에 살고 있으면서 조석전(朝夕奠)과 곡읍(哭泣)하여 슬퍼하는 것이 한결같이 초상(初喪) 때와 같으니, 보는 사람이 슬피 여기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같은 고을 사람 강응정(姜應貞)은 검중추(檢中樞) 강의(姜毅)의 아들인데, 어머니가 오랫동안 병을 앓으니, 강응정이 두어 달 동안이나 옷에 띠를 풀지 않고 밤이 새도록 자지</p>	<p>○忠淸道觀察使金良暉馳啓：“恩津人學生金繼田妻閔氏，夫早死，泣血，廬墓三年，不食鹽菜，哀毀踰禮，至今十一年，素衣、素食，酒果、葱蒜亦不入口。仍居墓側，朝夕之奠，哭泣之哀，一如初喪，見者無不哀之。同縣人姜應貞，檢中樞姜毅之子，母久病，應貞數月衣不解帶，終夜不寐。夕，父病革，應貞焚香禱天，求以身代，取糞嘗</p>

	<p>않았습니다. 또 아버가 병이 위급해지니, 강응정은 분향하여 하늘에 빌면서 몸으로 대신하기를 구하였고, 똥을 가져다가 맛보아 병이 덜하고 더한 것을 접쳤으며, 부모가 죽자 5년 동안이나 여묘(廬墓)살이하며 술·과실·소금·채소를 먹지 않았습니다. 문의(文義)사람 학생(學生) 이귀화(李貴和)의 처 양씨(楊氏)는 남편이 일찍 죽으니, 집 북쪽에 장사하고 조석전(朝夕奠)을 반드시 친히 행하였으며, 복(服)을 마치자 아버가 개가시키려 하니, 양씨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려 하므로, 아버가 두려워하여 그쳤으며, 매양 절일(節日)을 만나면 친히 묘(墓)에 제사하였는데, 늙고 병들어서 가지 못하게 되자 목욕 재계하고 묘를 향하여 절하였습니다. 같은 고을 사람 박씨(朴氏)는 그 남편이 죽으니, 3년 동안을 여묘살이하고도 차마 떠나지 못하여 다시 1년을 살았으며, 드디어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어 매양 초하루·보름에 반드시 친히 제사하여 지금 20여년이 되었는데도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p>	<p>之，以占差劇。及父母歿，廬墓五年，不食酒果、鹽菜。文義人學生李貴和妻楊氏，夫早死，葬于家北，朝、夕奠必親行之。服闋，父將奪其志，楊氏欲自縊，父懼乃止。每遇節日，親祭于墓，及老病，不能往，則齋沐，向墓而拜。同縣人朴氏，其夫歿，廬墓三年，不忍去，復居一年，遂剃髮爲尼，每朔望，必親祭，至今二十餘年，不少懈。”(…)</p>
<p>성종 3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2월 14일(계해) 4번째기사</p>	<p>(…) 1. 옛날 우공(禹貢)188)의 제도에 1백 리(里) 안에서는 부세로 곡식을 베어 묶은 채 바치게 하였고, 2백 리(里) 안에서는 이삭을 따서 바치게 하였고, 3백 리(里) 안에서는 벧짚과 수염만을 탄 곡식을 바치게 하여 대개 도로(道路)의 멀고 가까운 것으로 납부(納賦)의 경중(輕重)·정추(精麤)를 삼았으니, 그 법이 지극하다 하겠습니까. 지금 경기(京畿)의 백성은 부역(賦役)이 다른 도에 비하여 심한데, 근자에 국휼(國恤)로 인하여 경기 백성의 괴로움이 다른 도의 10배가 되니, 빌건대 평안도(平安道)의 예와 같이 해를 한하여 공부(貢賦)의 반을 감해서 백성의 힘을 펴게 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p>	<p>(…) 一。古者，禹貢之制，百里納總，二百里納銓，三百里納秸服，蓋以道路遠近，而爲納賦之輕重、精麤，其法至矣。今京畿之民，賦役比他道爲劇，近因國恤，畿民之苦，什倍於他。乞如平安道例，限年減貢之半，以紓民力，幸甚。(…)</p>
<p>성종 3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2월 19일(무진) 3번째기사</p>	<p>종친(宗親), 문무(文武) 정2품(正二品) 이상 및 입직(入直)한 제장(諸將), 승지(承旨)를 명하여 불러서 고기를 권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경 등이 소(素)를 행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지금 권한다.” 하고, 인하여 선운(宣醞)을 내려 주었다. 의정부(議政府)·예조에서 아뢰기를, “왕대비전(王大妃殿)에 육선(肉膳)을 권진(勸進)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p>	<p>○命召宗親、文武正二品以上及入直諸將、承旨，勸肉，仍傳曰：“卿等行素已久，今勸之。”仍賜宣醞。議政府、禮曹啓曰：“請勸進肉膳于王大妃殿。”傳曰：“王大妃欲百日後除喪服，予以爲法制不可過也，王大妃不得已除</p>

	<p>“왕대비(王大妃)께서 백일 후에 상복(喪服)을 벗으려고 하므로, 내가 법제는 지나칠 수 없다 하여 왕대비께서도 부득이 상복을 벗으시었는데, 지금 비록 고기를 권하여도 반드시 듣지 않으실 것이다.”</p> <p>하니 신숙주(申叔舟) 등이 아뢰기를, “정리(情理)가 비록 무궁하나 예제(禮制)가 이미 정하여졌으니, 온 나라의 위 아래가 다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p> <p>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마땅히 권진(勸進)하겠지마는 정부(政府)와 육조(六曹)에서도 또한 권진하라.”</p> <p>하였다.</p>	<p>喪。 今雖勸肉， 必不聽。” 申叔舟等啓曰：“情雖無窮， 禮制已定。 一國上下， 不可有異也。” 傳曰：“予當勸進。 政府、六曹， 亦宜勸進。”</p>
<p>성종 3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2월 20일(기사) 4번째기사</p>	<p>의정부(議政府)·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어제 왕대비전(王大妃殿)에 육선(肉膳)을 드시기를 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으셨으니, 다시 권진하기를 청합니다.”</p> <p>하니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전교하기를, “왕대비(王大妃)가 백일의 복제를 따르고자 하는데, 백일이 멀지 않으니, 어찌 반드시 강권하겠는가?”</p> <p>하였다.</p>	<p>○議政府、禮曹啓曰：“昨日， 王大妃殿請進肉膳不許， 請更勸進。” 大王大妃傳曰：“王大妃欲從百日之制， 百日不遠， 何必強勸?”</p>
<p>성종 3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2월 22일(신미) 5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지금 바야흐로 해가 길어져서 창릉(昌陵)에서 부역(赴役)하는 군인이 반드시 주리고 피곤할 것이니, 주반미(晝飯米)를 주라.”</p> <p>하니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쌀로 2백 석을 주소서.”</p> <p>하였다.</p>	<p>○傳曰：“今方日長， 昌陵赴役軍人， 必飢困。 其給晝飯米。” 戶曹啓：“米給二百碩。”</p>
<p>성종 3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2월 22일(신미)</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극돈(李克墩)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듣건대, 예전에 소공(召公) 이 성왕(成王)에게 고하기를, ‘처음 일을 시작하는 것은 아들을 낳아 놓은 것과 같으니, 모두 처음 낳았을 때에는 스스</p>	<p>○司憲府大司憲李克墩等上疏曰： 臣等聞， 昔召公之告成王曰：“若生子， 罔不在厥初生， 自貽哲命。 今天其命</p>

7번째기사

로 어진 지혜를 갖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은 어질게도 명하실 것이고, 길하게 또는 흉하게 명하실 것이며, 여러 해 다스리도록 명하시기도 할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일하기 시작한 것을 하늘이 압니다.’ 하였습니다. 대저 소공(召公)은 주(周)나라의 훈척(勳戚) 대신이었는데, 주나라의 운조(運祚)가 비로소 정하여지자 무왕(武王)이 갑자기 예척(禮陟)212) 하였고, 성왕(成王)이 어린 나이로 왕위를 이었는데, 소공이 첫머리로 이 말을 진언(進言)하였으니, 어찌 시초라는 것은 일의 시작인데, 끝마무리를 잘하는 자로서 시작을 잘못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공손히 생각건대, 우리 태조(太祖)께서 큰 기업을 창조하시니, 열성(列聖)이 서로 이어받아서 광명(光明)을 거듭하고, 은덕(恩德)이 널리 퍼져서 태평한 정치가 60여 년 계속되었는데, 중간에 비색한 운수로 인하여 만사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조 혜장 대왕(世祖惠莊大王)께서 밝게 기선(幾先)을 살피서 한번 일어나 바로 잡아 빛나게 보력(寶曆)에 응하시니, 능히 승평(昇平)에 이르렀는데, 불행하게도 신민이 복이 없어 나라를 누리신 것이 길지 못하였고, 예종(睿宗) 대왕께서도 바야흐로 우려(憂廬)에 계시다가 또 만기(萬機)를 버리시었으니, 종천(終天)의 슬픔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상 전하(主上殿下)께서는 영명(英明)하고 인효(仁孝)하신 자품으로 위로는 대왕 대비(大王大妃)의 명을 받들고 아래로는 온 나라 신민의 바람을 좇아 들어와 대통(大統)을 이었는데, 멀고 가까운 사람들이 목을 뺏치고 눈을 부비며 태평을 바라고 있으니, 조종의 기업을 넓혀서 대왕 대비의 융성하신 위임에 저바리지 않는 것도 오늘에 있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하(殿下)의 오늘날은 천의(天意)와 인도(人道)의 거취(去就)가 관계된 것이고, 국가 안위(安危)의 분기점이니, 어찌 중차대하지 않겠습니까? 엿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조종의 창업(創業)이 어려웠던 것을 생각하고 대왕 대비의 부탁이 중한 것을 유념(留念)하여, 성학(聖學)을 어떻게 하면 날로 새롭게 할 것인가, 풍속을 어떻게 하면 날로 아름답

哲, 命吉凶, 命歷命, 知今我初服。” 夫召公, 周之勳戚大臣也。 周祚甫定, 武王遽爾禮陟, 而成王幼冲嗣服, 召公首進此言, 豈不以始者, 事之所由起, 而善其終者, 未有不善其始者也? 恭惟, 我太祖肇造丕基, 列聖相承, 重熙累洽, 太平之治, 六十餘年, 中因否運, 萬事浩穰。 我世祖惠莊大王明炳幾先, 一起而正之, 光膺寶曆, 克底隆平, 不幸臣民無祿, 享國不永。 睿宗大王, 方在憂廬, 又棄萬機, 終天之痛, 可勝言哉! 今我主上殿下, 以英明、仁孝之資, 上承大王大妃之命, 下順一國臣民之望, 入承大統, 遠近之人, 引頸拭目, 想望太平, 而其所以恢弘祖宗之業, 以無負大王大妃之隆委, 亦罔不在今日。 然則殿下今日, 乃天人去就之所在, 國家安危之所由分, 豈不重且大哉? 伏願, 殿下思祖宗創業之艱難, 念大王大妃付畀之重, 聖學何以日新, 風俗何以日美。 處九重, 則思民之不庇於風雨; 御八珍, 則念民之不足於糟糠。 崇節義, 以礪廉恥; 明賞罰, 以杜僥倖。 以至一號令之出, 一施爲之舉, 莫不揆之於古先, 擬之於方今, 兢兢業業, 日

게 할 것인가를 궁구하고, 구중(九重)에 처하여 백성은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백성은 팔진미(八珍味)를 대하여 조강(糟糠)213) 도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 절의(節義)를 높여서 엄치(廉恥)를 가다듬고, 상벌(賞罰)을 밝혀서 요행(僥倖)을 막음으로써 모든 호령이 나오고 날날이 시행(施行)되고 거행되는 데 이르기까지 옛 것을 헤아리고 지금 것을 적용하지 않음이 없이 두려워하고 공경하기를 날마다 하루같이 삼가하면, 태화(泰和)214) ·웅희(雄熙)가 번성해져 날을 기약하여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신 등은 모두 용렬하고 노둔한데도 나라의 후한 은혜를 받아 언관(言官)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매한 말로 진달하여 초정(初政)에 만분의 일이라도 돕기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바야흐로 상중에 계셔서 장례(葬禮)로 거름이 없었으므로, 감히 갑자기 진달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다행히 산릉제(山陵祭)도 이미 마쳤고, 상제(喪制)도 시의(時宜)에 좇았으니, 이것은 정녕 전하께서는 정사를 처음으로 듣는 것이고, 신 등이 진언(進言)할 수 있는 때입니다. 옛글에 이르기를,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집을 가지런히 하였고, 그 집을 가지런히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몸을 닦았고,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몸을 바르게 하였다.’ 하였는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에는 학문(學問)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경연(經筵)을 첫머리로 삼아 시의(時宜) 12조(條)를 따라서 뒤에 진달하오니, 앞드려 바라건대, 성감(聖鑑)으로 재택(裁擇)하소서. (…)

1. 경기(京畿)는 서울[京城]과 너무 가까워서 부역(賦役)이 번거롭고 무거운데다가 자질구레한 일도 다른 도의 10배나 되니, 그 백성들이 지극히 가련합니다. 지금 횡간(橫看)을 보면 여러 도에서 진상(進上)하는 것으로 망전망후 진상(望前望後進上)이 있고, 때 없이 하는 별진상(別進上)이 있는데, 경기(京畿)도 또한 그렇습니다. 일차 물선(日次物膳) 같은 것은 또 다른 도에 없는 것으로, 감사(監司)는 날마다 봉진(封進)하고 고을마다 한 달에 두 번씩 올려서 순환하여 끝이 없는데, 그것을 일차(日次)라고 합니다. 경기에는 본래

慎一日, 則泰和、雄熙之盛, 可指日而致也。 臣等俱以庸駑, 受國厚恩, 待罪言官, 每念一進狂瞽之言, 以裨初政之萬一。 第以殿下方在初喪, 不遑襄事, 故未敢遽進。 幸今山陵既畢, 喪制從權, 此正殿下聽政之初, 而臣等可以進言之時也。 《傳》曰: “欲治其國者, 先齊其家; 欲齊其家者, 先修其身; 欲修其身者, 先正其心。” 正心, 莫如學問, 故以經筵爲首, 時宜十二條, 隨進于後, 伏惟聖鑑裁擇焉。(…)

一。 京畿, 密邇京城, 賦役煩重, 細碎之事, 十倍他道, 其民至爲可矜。 今觀橫看, 諸道進上, 有望前後焉, 有無時別進焉, 而京畿亦然。 若日次物膳, 則又他道之所無也。 監司逐日封進, 而每官一月二周, 循環不窮, 謂之日次。 京畿, 本無此例, 橫看又不載焉, 自沈瑨爲本道監司, 始爲之進, 初非國家之意, 又非例行之事也。 後之監司, 乃曰: “奉上之物, 縱不得增於前, 亦不可減於舊。” 自擬私獻, 務令加豐, 此非出於監司也, 非出於守令也, 出於吾民之力也。 一度之進, 非一日之所辦; 一物之出, 非一人之所營。 獵山網川,

	<p>이런 예가 없었고, 횡간(橫看)에도 또 실리지 않았는데, 심선(沈璿)이 본도 감사가 되었을 때부터 진상하기 시작하였으니, 처음부터 국가의 뜻이 아니고, 또 전례로 행하여진 일도 아닙니다. 또 후임 감사는 말하기를, ‘봉상(奉上)하는 물건을 전보다 더하지는 못할망정 예전보다 감할 수는 없다.’ 하여 스스로 사사로이 헤아려 되도록 더 풍족하게 하는데, 이것은 감사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령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며, 우리 백성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릇 한 번 진상하는 것이 하루에 판비하는 것도 아니고, 한 물건이 나오는 것이 한 사람이 경영하는 것도 아니므로, <백성들은> 산에서 사냥하고 내에서 그물질하면서 무릇 5, 6일을 하여도 넉넉지 못하면 7, 8일에 이르도록 그치지 아니하여 농삿일도 돌보지 않고 1년 내내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한 지아비가 경작하지 아니하면 혹 굶주리게 되고, 한 지어미가 직조(織造)하지 아니하면 혹 추위를 받는다.’ 하였으니, 말이 여기에 이르면 실로 작은 폐단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온 나라를 부유(富裕)하게 하시려면 반드시 일차(日次)로 바치는 것을 기다려서 내주(內廚)의 진미(珍味)를 갖출 것이 아닙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망전 망후 진상과 수시로 하는 별진상 외에는 일체 정과(停罷)해서 백성을 쉬게 하여 나라의 근본을 굳게 하소서.</p>	<p>凡五六日而不瞻，則至七八日而不已，不顧農務，終歲馳奔。古人云：“一夫不耕，或受之飢；一女不織，或受之寒。”言至於此，實非小弊。殿下富有一國，不必待日次之獻，以備內廚之珍也。伏望，朔望常進及隨時別進外，一切停罷，與民休息，以固邦本。</p>
<p>성종 3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2월 22일(신미) 8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문선왕(文宣王)의 춘추 석전(春秋釋奠)에 대뢰(大牢)를 쓰는 것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지금 양(羊)과 돼지[豕]만 쓰니, 실로 흠전(欠典)입니다. 청컨대 구례에 의하여 소를 쓰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文宣王春秋釋奠，用大牢，其來已久。今只用羊、豕，實是欠典。請依舊用牛。”從之。</p>
<p>성종 4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3월 7일(병술) 7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평안도(平安道)·강원도(江原道) 관찰사(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두 도의 곡식 종자가 부족하니, 평안도 군자창(軍資倉)의 새 곡식 1만 5천 석(碩)과 강원도의 8천 석을 백성에게 주어 종자에 대비하게 하고, 또 강원도의 묵은 곡식 7천 석을 주어 식량에 대비하게 하소서.”</p>	<p>○戶曹據平安、江原道觀察使啓本啓：“兩道穀種不足，平安道軍資倉新穀一萬五千碩，江原道八千碩，給民備種。又給江原道陳穀七千碩，以備口食。”從之。</p>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 4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3월 14일(계사) 3번째기사	경기(京畿)의 광주(廣州) 사람 김윤동(金閔同)의 아내가 한번에 세 아이를 낳으니, 쌀·콩 아울러 10석을 내려 주었다.	○京畿廣州人金閔同妻一產三兒， 賜米、豆并十碩。
성종 4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3월 17일(병신) 5번째기사	호조(戶曹)에서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군자창(軍資倉)의 묵은 곡식 1만 5천 석과 소금 3백 석을 주린 백성에게 진휼(賑恤)하여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戶曹據慶尙道觀察使啓本啓：“軍資倉陳穀一萬五千碩、鹽三百碩，賑給飢民。”從之。
성종 4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3월 27일(병오) 2번째기사	원상(院相)과 승정원(承政院)에서 삼도감(三都監)의 논상 절목(論賞節目)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도제조(都提調)·제조(提調)는 아마(兒馬) 1필(匹)을 주고, 낭청(郎廳)은 자궁(資窮)315) 으로서 준직(准職) 인 자는 아마를 주고, 행직(行職) 인 자는 직(職)을 승진하고, 자급(資級)에 준하여 직을 주어야 할 자는 수직(守職) 으로 승진하고, 서용(敍用)하지 않은 자는 서용하며, 국장(國葬)여러 일의 감역관(監役官), 애책(哀冊)·시책(諡冊)의 서사관(書寫官), 예조 낭청(禮曹郎廳)·돈체사(頓遞使)·종사관(從事官), 도로(道路)·교량(橋梁) 차사원(差使員), 산릉(山陵) 여러 일의 응판 차사원(應辦差使員), 청시·상시제 집사(請諡上諡祭執事) 및 의원(醫員)은 낭청의 예(例)에 의하여 시행하고, 녹사(錄事)는 매 1일에 별사(別仕) 2를 주고, 화원(畫員)·서원(書員)도 또한 녹사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고, 별감역(別監役)은 서반(西班)의 잡직(雜職) 중에서 궐(闕)에 따라 서용하고, 일등(一等) 녹(祿)을 주는 장인(匠人)은 그 공로의 등수를 매기어 쌀과 베를 차등 있게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르고, 전지하기를, “산릉 도감(山陵都監)이 더욱 고생하였으니, 제조는 호피(虎皮) 1장(張)을 낳	○院相及承政院議三都監論賞節目以啓：“都提調、提調，給兒馬一匹；郎廳資窮準職者，給兒馬；行職者，陞職；準資授職者，陞守職；未敍用者，敍用。國葬諸事監役官、哀冊諡冊書寫官、禮曹郎廳、頓遞使、從事官、道路·橋梁差使員、山陵諸事應辦差使員、請諡·上諡祭執事及醫員，依郎廳例施行；錄事，每一日，給別仕二；畫員、書員，亦依錄事例施行。別監役，西班職雜職中，隨闕敍用；一等給祿匠人，第其功勞，給米·布有差，何如?”從之。傳曰：“山陵都監尤苦，其加賜提調虎皮一張、郎廳鹿皮一張。”

	청은 녹비(鹿皮) 1장을 더 주게 하라.” 하였다.	
성종 4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4월 1일(기유) 4 번째기사	호조(戶曹)에 전지하여 태감(太監) 김흥(金興)의 조카 김담(金淡)·김효문(金孝文)·김징(金澄) 등에게 쌀·콩 아울러 10석(碩)을 주고, 강옥(姜玉)의 질자(姪子) 강계숙(姜繼叔)에게 경기(京畿) 근처의 전지 1결(結)을 주고, 또 강계숙의 공주(公州) 농장(農庄)과 김보(金輔)의 장단(長湍) 본가(本家)를 복호(復戶)323) 하였다.	○傳旨戶曹，給太監金興姪金淡、金孝文、金澄等米豆并十碩，姜玉姪子姜繼叔京畿近處田一結，又復姜繼叔公州農庄，金輔長湍本家。
성종 4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4월 1일(기유) 5 번째기사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가 졸(卒)하니, 철조(輟朝)하고 조제(弔祭)와 예장(禮葬)을 예(例)와 같이 하였다. 부(溥)는 광평 대군(廣平大君) 이여(李瑱)의 아들인데, 정통(正統) 갑자년 7월에 낳았고 이 해에 여(瑱)가 죽었다. 세종(世宗)이 그의 어려서 고자(孤子)가 된 것을 불쌍히 여기어 의정부(議政府)에 전지하기를, “광평(廣平)이 불행히 일찍 죽었으니, 내가 심히 슬퍼한다. 다행히 유사(遺嗣)가 있어 포대기[襁褓]에서 고고(呱呱)히 우니 더욱 불쌍하다. 봉사(俸賜)와 작질(爵秩)을 친아들의 예(例)와 똑같이 하라.” 하고, 나이 5세가 되도록 궁중(宮中)에서 길렀다. 일찍이 문종(文宗)·세조(世祖)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들이 다른 때에 또한 마땅히 나의 뜻을 몸받아서 이 아이를 어루만지고 보살피어 종시에 변함이 없게 하라.” 하였다. 나이 8세가 되자 가덕 대부(嘉德大夫)를 주어 영순군(永順君)에 봉하고, 경태(景泰) 을해년(325) 에 소덕 대부(昭德大夫)를 더하고, 천순(天順) 기묘년 에 흥덕 대부(興德大夫)에 승진하였다. 세조(世祖)가 세종(世宗)의 남긴 뜻을 깊이 생각하여 항상 좌우에 모시게 하고 무릇 출납하는 명령과 감핵(勘覈)하는 사무를 대개 많이 위임하였다. 성화(成化) 병술년에 등준시(登俊試)에 합격하니, 세조가 시권(試券)을 가져다 보고 크게 칭찬과 상(賞)을 가하였다. 정해년에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평정함에 있어 부(溥)가 성산(聖算)을 출	○永順君溥卒，輟朝弔祭禮葬如例。溥，廣平大君瑱之子，正統甲子七月生，是年，瑱卒。世宗哀其幼孤，傳旨議政府曰：“廣平不幸夭折，予甚悲之。幸有遺嗣，呱呱襁褓，尤可憐憫。其俸賜爵秩，一視親子之例。”年五歲，育于宮中。嘗囑文宗、世祖曰：“汝等異時亦當體予意，撫視此兒，無替終始。”及年八歲，授嘉德，封永順君；景泰乙亥，加昭德；天順己卯，陞興德。（世宗）〔世祖〕深念世宗遺意，常令侍左右，凡出納之命，勘覈之務，率多委之。成化丙戌，中登俊試，世祖命取試券覽之，大加稱賞。丁亥，平李施愛，溥以出納聖算，策功，賜精忠敵愾功臣號，陞顯祿。戊子，世祖幸溫陽取士，溥擢重試第一人，及還宮，兩殿幸其第，賜米五十碩。己丑，睿宗誅南怡，溥亦與有功，賜輸忠保社

	<p>납하였으므로 공(功)을 책정하여 정충 적개 공신(精忠敵愾功臣)의 호(號)를 내려 주어 현록(顯祿)에 승진하였고, 무자년(332)에 세조가 온양(溫陽)에 거둥하여 선비를 뽑는데 부가 중시(重試)(333) 제일인(第一人)에 뽑혔다. 환궁(還宮)하자 양전(兩殿)(334)이 그 집에 거둥하여 쌀 50석(碩)을 내려 주었고, 기축년(335)에 예종(睿宗)이 남이(南怡)를 베는 데 부가 또한 참여하여 공이 있어 수충 보사 정난 익대 공신(輸忠保社定難翊戴功臣)의 호를 내려 주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죽으니, 나이 27세였다. 시호를 공소(恭昭)라 하였으니, 공경하고 순히 위를 섬기는 것이 공(恭)이요, 덕을 밝히고 공로가 있는 것이 소(昭)이다.</p>	<p>定難翊戴功臣號。 至是卒， 年二十七。 諡曰‘恭昭’： 敬順事上， 恭； 昭德有勞， 昭。</p>
<p>성종 4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4월 2일(경술) 1 번째기사</p>	<p>전지하기를, “영순군(永順君)은 다른 종친(宗親)과 비할 바가 아니다. 세종(世宗)께서 세조(世祖)에게 부탁하시고 세조가 권애(眷愛)하기를 특별히 후하게 하시었으니, 지금 마지막 보내는 일을 마땅히 등수를 더하여야 하겠다.” 하고, 이에 쌀·콩 아울러 80석(碩), 정포(正布) 40필(匹), 백저포(白苧布) 6필, 백면포(白綿布) 6필, 석회(石灰) 40석, 저주지(楮注紙) 1백 50권(卷), 납촉(蠟燭), 초둔(草苴)·유둔(油苴) 등의 물건을 내려 주었다.</p>	<p>○庚戌/傳曰：“永順君， 非他宗親之比。 世宗付托于世祖， 世祖眷愛特厚， 今送終之事， 宜加等。” 乃賜米豆并八十碩、 正布四十匹、 白苧布六匹、 白綿布六匹、 石灰四十碩、 楮注紙一百五十卷、 蠟燭、 草苴、 油苴等物。</p>
<p>성종 4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4월 3일(신해) 2 번째기사</p>	<p>원상(院相) 최항(崔恒)·김질(金礪) 및 여러 승지(承旨) 등이 아뢰기를, “지금 이부(李溥)의 졸(卒)함으로 인하여 소선(素膳)을 올리는 것은 예에 지나칩니다. 청컨대 육선(肉膳)을 올리게 하소서.” 하니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전지하기를, “주상(主上)은 이미 육선(肉膳)을 올렸다. 나는 영순군(永順君)이 항상 눈앞에 있었는데 지금 죽었으니, 차마 고기를 먹지 못하겠다.” 하였다. 임금이 전지하기를, “대왕 대비께서 육선을 허락하지 않으시므로 내가 지금 올리기를 청하였으니, 원상 등이 마땅히 다시 청하라.” 하였다. 원상·승지 등이 다시 아뢰기를,</p>	<p>○院相崔恒、 金礪及諸承旨等啓曰：“今因溥卒， 進素膳， 過禮。 請進肉膳。” 大王大妃傳曰：“主上已進肉膳。 予則永順常在眼前， 今亡矣， 不忍食肉。” 上傳曰：“大王大妃不許肉膳， 予今請進。 院相等當更請。” 院相、 承旨等更啓曰：“一日已爲過禮， 恐不可累日行素。” 大王大妃傳曰：“然則欲盡今日而止。”</p>

	<p>“하루도 이미 지나친 예(禮)가 되니, 여러 날 소선(素膳)을 행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p> <p>하니 대왕 대비가 전지하기를,</p> <p>“그렇다면 오늘이나 끝난 뒤에 그만두고자 한다.”</p> <p>하였다.</p>	
<p>성종 4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4월 6일(갑인) 5 번째기사</p>	<p>대왕 대비가 전지하기를,</p> <p>“전일에 주상이 편치 않을 때에 의원(醫員) 김상진(金尙珍)·박종서(朴從瑞)가 숙직하여 공(功)이 있었으니, 김상진은 아마(兒馬) 1필을 내려 주고, 박종서는 쌀·콩 아울러 4석(碩)을 내려 주라.”</p> <p>하였다.</p>	<p>○大王大妃傳曰：“前日主上未寧，醫員金尙珍、朴從瑞直宿有功，其賜尙珍兒馬一匹、從瑞米豆并四碩。”</p>
<p>성종 4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4월 11일(기미) 4번째기사</p>	<p>전지하기를,</p> <p>“강원도(江原道)는 땅이 높고 기후가 차서 모든 물건의 산출하는 것이 대단히 늦다. 친신(薦新)하는 미채(糲菜)를 뿌리째 캐서 바치는 것은 폐단이 있으니, 금후로는 바치지 말라.”</p> <p>하였다.</p>	<p>○傳曰：“江原道，地高氣寒，凡物產出太晚。薦新蔬菜帶根採進有弊，今後勿進。”</p>
<p>성종 4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4월 14일(임술) 2번째기사</p>	<p>전지하기를,</p> <p>“농사 때에 고사를 채취하는 것이 그 폐단이 적지 않으니, 진상(進上)하는 외에 궐내(闕內)의 여러 곳에 쓰이는 것은 아울러 면제하라.”</p> <p>하였다.</p>	<p>○傳曰：“農時採蕨，其弊不貲，進上外，闕內諸處所用，其竝除之。”</p>
<p>성종 4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4월 14일(임술) 3번째기사</p>	<p>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김수녕(金壽寧) 등이 상소하기를, (….) 1. 환과 고독(鰥寡孤獨)360) 네 가지는 왕정(王政)에서 마땅히 먼저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周)나라 문왕(文王)이 기산(岐山)을 다스릴 때에 소민(小民)은 품에서 보호하고 환과(鰥寡)는 혜선(惠鮮)하였습니다. 혜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환과의 사람이 머리를 떨구고 기운을 잃었으니, 반드시 주홀(賙恤)해 주어서 살 뜻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경(詩經)》에 말이 있기를, ‘부유한 사람은 괜찮지마는 이 경독(熒獨)361) 한 사람이 불쌍하다.’ 하였습니</p>	<p>○司諫院大司諫金壽寧等上疏曰：(….) 一。鰥、寡、孤、獨四者，王政所當先施。故周文之治岐也，小民則懷保之，鰥寡則惠鮮之。惠鮮云者，鰥寡之人，垂首喪氣，必賚與賙給之，使之有生意也。於《詩》有之：“嗇矣富人，哀此熒獨。”熒獨之人，仰給公</p>

다. 경독한 사람은 공가(公家)에서 주급(賙給)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데, 만일 진휼(賑恤)하여 대여하지 않으면 돌아갈 곳이 없으니, 어찌 더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정의 진제장(賑濟場)의 법이 곧 예전 혜선(惠鮮)의 남은 뜻인데 지난날에 폐지하고 베풀지 않았으니, 어찌 사람마다 진휼하자면 다 진휼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저 봄·여름 사이에 묵은 곡식이 이미 다하고 모맥(牟麥)이 익지 않으면 중인(中人)의 집에서도 또한 주립을 괴롭게 여기니, 경독(熒獨)한 무리는 더 심함이 있습니다. 지극히 곤란하여도 고할 데가 없어 부역은 냉하고 창자는 타서 날마다 관가의 진휼을 바라는 자가 얼마인데, 의창(義倉)에서 진대(賑貸)하는 것도 또한 정한 수량이 있기 때문에 수령(守令)이 창고를 발(發)하지 못하고 굶주려 죽는 것을 앉아서 보기만 하고, 혹 말하는 자가 있으면 말하기를, ‘병으로 죽은 것이고 주린 것이 아니다.’ 하니, 이것은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지금 봄 가뭄이 더욱 심하여 모맥이 잘되지 못하였으니, 가을 곡식이 비록 풍년이 든다 하더라도 여름 동안에 백성이 반드시 식량이 곤란할 것인데, 하물며 전년에 실농(失農)한 고을은 백성이 현재 양식이 없는데 지금 다시 가뭄에 상하니, 비록 모맥이 조금 성숙한다 하더라도 종전에 이삭을 주워서 생활하던 무리가 유리(流離)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당요씨(唐堯氏)가 한 백성이 주린 것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주리게 만든 것이다.’ 하였고, 후주(後周) 세종(世宗)이 회남(淮南)의 흉년을 만나 쌀을 꾸어 주라고 명하였는데 혹자는 백성이 가난하여 갚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니, 세종이 말하기를, ‘백성은 내 자식이다. 어찌 백성이 거꾸로 매달렸는데, 아버지가 풀어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반드시 갚기를 택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청컨대 미리 구황(救荒)의 정책을 강구하여 여러 도 여러 고을에 나가서 가장 실농하여 가뭄에 상한 자를 택하여 빈핍(貧乏)한 것을 구제하여 주고 반드시 갚는 것을 요구하지 말아서 어진 정사를 넓히시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家，若不賑貸，無所於歸，豈不重可哀矜也哉？我朝賑濟場之法，卽古惠鮮之遺意。頃來廢而不設，豈非爲人人而賑之，不勝其賑也？大抵春、夏之交，舊穀既罄，牟麥未登，中人之家，亦病阻飢，熒獨之輩，殆有甚焉。顛連無告，竈冷腸燒，日望官賑者幾何，而義倉賑貸，亦有定數，故守令既不得發倉，坐視餓殍。或有言者則曰：“病也，非飢也。”此非細故也。今春旱滋深，牟麥不遂，秋稼雖能大熟，夏月民必艱食，況前年失農之邑，民無見糧，今復傷旱，縱使牟麥稍熟，向來拾穗爲生之徒，勢不得不流離矣。昔唐堯氏見一民飢曰：“我飢之也。”後周世宗遇淮南饑，命以米貸之，或恐民貧不能償，世宗曰：“民吾子也。安有子倒懸，而父不爲之解哉？安在責其必償也？”請預講荒政，就諸道諸邑，擇其尤失農傷旱者，賑給貧乏，勿要其必償，以廣仁政，幸甚。

	하였다.	
성종 4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4월 15일(계해) 6번째기사	문례관(問禮官) 예조 정랑(禮曹正郎) 김춘경(金春卿)이 사목(事目)을 가지고 가는데, 그 사목에 이르기를, “1. 지금 중국 부사(副使)가 말하기를, ‘별칙(別勅)을 받아 가지고 왔다.’ 하니, 칙서를 반포하는 절차를 자세히 물어 바르게 하여 가지고 올 것. 1. 별사(別賜)가 있고 없는 것을 먼저 원접사(遠接使)에게 물어 반사(頒賜)하는 절차를 물어 오고, 만일 반조(頒詔)하는 날에 아울러 반사하고자 하거든 또한 의주(儀註)에 표를 붙이어 바르게 하여 가지고 올 것. 1. 중국 사신이 중궁(中宮)에게 사물(賜物)을 친히 전하고자 하거든 대답하기를, ‘우리 나라에는 이런 예(禮)가 없고 전하가 아울러 받는다.’ 하고, 중국 사신이 만일 고집하거든 대답하기를, ‘마땅히 전하에게 아뢰겠다.’고 할 것. 1. 통사(通事)로 하여금 인편(人便)에 태감(太監)에게 묻기를, ‘전차에는 중국 사신의 다례(茶禮)·주례(酒禮)가 각각 달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여, 자세히 물어 써 가지고 오라.” 하였다.	○問禮官禮曹正郎金春卿齎事目以去：“一。 今副天使言：‘受別勅而來。’ 頒勅節次，詳問取正而來。 一。 別賜有無，先問遠接使，頒賜節次問來，如欲頒詔日竝頒，則亦於儀註付標取正而來。 一。 天使欲於中宮親傳賜物，答曰：‘我國無此禮，殿下竝受。’ 天使若強之，答曰：‘當啓殿下。’ 一。 令通事，因便問太監曰：‘前此天使茶禮、酒禮皆各異，今當何如?’ 詳問書來。”
성종 4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4월 17일(을축) 6번째기사	전지하기를, “여러 고을에서 진상하는 산나물[山菜]과 고사리를 자수궁(慈壽宮)·영수궁(寧壽宮)·수성궁(壽成宮) 세 궁(宮)에는 영구히 면제하고 다섯 전(殿)에는 금년을 한하여 임시로 면제하라.” 하였다.	○傳曰：“諸邑所進山菜、蕨菜，慈壽、寧壽、壽成三宮永除；五殿，限今年權除。”
성종 4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4월 29일(정축) 2번째기사	원상(院相) 구치관(具致寬)이 아뢰기를, “근자에 가뭄을 근심하여 감膳(減膳)하신 지가 이미 오랜데, 지금 비가 흠족하게 내리었으니, 청컨대 향온(香醞)을 올리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여러 달 비가 오지 않아서 마르고 가뭄 것이 심한데, 어떻게 한나절의 비로 갑자기 술을 올리게 하겠는가?”	○院相具致寬啓曰：“近者憂旱，減膳已久，今雨澤優足，請進香醞。” 傳曰：“累月不雨，枯旱甚矣。豈可以半日雨，遽進酒也。” 致寬更啓曰：“此雨於田穀已洽，水田下濕處亦皆霑足。請依舊進膳。” 傳曰：“更候後雨，不

	<p>하였다. 구치관이 다시 아뢰기를, “이 비가 전곡(田穀)에는 이미 흡족하고 수전(水田)의 낮고 습한 곳도 또한 충분히 적시었으니, 청컨대 전과 같이 진선(進膳)하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다시 뒤에 오는 비를 기다려도 늦지 않다.” 하였다.</p>	<p>晚。”</p>
<p>성종 5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5월 1일(무인) 3 번째기사</p>	<p>임금이 태평관(太平館)에 거둥하여 면복(冕服)을 갖추고 제물(祭物)과 부의(賻儀)에 의식과 같이 배례하였다. 【제문(祭文) 1도(道), 제물(祭物) 1단(壇), 활생초(關生綯) 5백 필, 마포(麻布) 5백 필, 전향(淺香) 5근, 단향(檀香) 2주(柱)이다.】 면복을 벗고, 도로 익선관(翼善冠)·백포(白袍)·오서대(烏犀帶)를 갖추고 사신과 더불어 상회례(相會禮)를 행하였다. 임금이 통사(通事)를 시켜 두 중국 사신[天使]에게 말하기를, “황제의 은혜가 지극히 중하여 몸들 바를 알지 못하겠으며, 또 훈계함이 정녕(丁寧)하여 적(賊)의 정세를 효유하니 감격함이 더욱 깊습니다.” 하고, 인하여 자리에 나아가서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임금이 나가자 사신이 중문(中門)까지 전송하였다. 임금이 도로 방에 나아가서 조금 있다가 또 다시 태평관에 나아가서 하마연(下馬宴)391)을 베풀었다. 임금이 술을 돌리고, 다음으로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고령 부원군(高靈府院君) 신숙주(申叔舟)·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능성 부원군(綾城府院君) 구치관(具致寬)이 술을 돌렸다. 술이 반쯤 돌아 임금이 중국 사신에게 청하여 두목(頭目)에게 술을 마시게 하니, 두목들이 차례로 월랑(月廊)에 서서 머리를 조아렸다. 임금이 손으로 옥배(玉盃)를 잡아 술을 하사하니, 두 중국 사신 두목의 우두머리 되는 자가 전(殿)에 올라 꿇어앉아서 술을 받아 마시고 머리를 조아리며 나갔다. 함중군(咸從君) 어세겸(魚世謙), 동지사(同知事) 허형손(許亨孫)에게 명하여 여러 두목을 감독해</p>	<p>○上幸太平館，具冕服，拜祭物、賻物如儀。【祭文一道、祭物一壇、關生綯五百匹、麻布五百匹、淺香五斤、檀香二炷。】釋冕服，還御翼善冠、白袍、烏犀帶，與使臣，行相會禮。上令通事，語兩天使曰：“皇恩至重，罔知所措。又訓戒丁寧，諭以賊情，感激益深。”仍就座，行茶禮。上出，使臣送至中門。上還御室，小頃，上還就館，設下馬宴。上行酒，次密城君琛、蓬原府院君鄭昌孫、高靈府院君申叔舟、上黨府院君韓明澮、綾城府院君具致寬行酒。酒半，上請天使，飲頭目酒，頭目等序立月廊，叩頭。上(乎)[手]執玉盃賜酒，兩天使頭目爲首者，陞殿跪受，酒飲，叩頭而出。命咸從君魚世謙、同知事許亨孫，監饋諸頭目，宴罷，還宮。命留都承旨李克增，贈天使各鴉青緜布單圓領一、草</p>

	<p>먹이게 하고, 잔치가 끝나자 임금은 환궁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이극증(李克增)을 머물러 있게 하여, 중국 사신에게 각각 아청 면포 단원령(鴉靑綿布單圓領) 1, 초록주 겹탑호(草綠袖袂塔胡) 1, 대홍주 요선 겹철릭(大紅袖腰線袂帖裏) 1, 백초 삼아(白綃衫兒) 1, 백초단고(白綃單袴) 2, 흑초림(黑草笠) 1, 백늑비화(白鹿皮鞋)·전정투혜(氈精套鞋) 갖추어 1을 주고, 두목에게는 각각 백면포 단철릭(白綿布單帖裏) 1, 흑초림(黑草笠) 1을 주니, 상사(上使)는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하고, 부사(副使)는 받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공경함은 정성에 있는 것이고,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받지 아니할지라도 받는 것과 같으니, 전하의 후의에 감사드립니다.” 하였다.</p>	<p>綠袖袂塔胡一、大紅袖腰線袂帖裏一、白綃衫兒一、白綃單袴二、黑草笠一、白鹿皮鞋氈精套鞋具一，頭目各白綿布單帖裏一、黑草笠一。上使叩頭謝，副使不受曰：“敬在誠不在物，雖不受，如受也。多謝殿下厚意。”</p>
<p>성종 5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5월 2일(기묘) 2 번째기사</p>	<p>고령 부원군(高靈府院君) 신숙주(申叔舟)와 도승지(都承旨) 이극증(李克增)이 중국 사신에게 문안하고 신수(晨羞)399) 를 같이하였다. 이로부터 매일 이른 아침에 재상과 승지를 보내어 문안하는 것이 예(例)가 되었다.</p>	<p>○高靈府院君申叔舟、都承旨李克增問安于天使，同晨羞。自是每早朝，遣宰相及承旨問安，例也。</p>
<p>성종 5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5월 2일(기묘) 3 번째기사</p>	<p>임금이 태평관(太平館)에 거동하여 익일연(翼日宴)을 베풀었다. 임금이 술을 돌리고, 다음으로 청송 부원군(靑松府院君) 심회(沈滄), 영성 부원군(寧城府院君) 최항(崔恒), 인산 부원군(仁山府院君) 홍윤성(洪允成), 영의정(領議政) 윤자운(尹子雲)이 술을 돌렸다. 중국 사신이 통사(通事)를 시켜 아뢰기를, “오늘 술을 돌린 것이 다섯 순배에 이르렀습니다. 청컨대 전하께서는 노 재상(盧宰相) 【노사신(盧思愼)이 이때 관반(館伴)이었다.】에게 명하여 술을 돌리게 한 뒤에 우리들이 잔을 돌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대답하기를, “명령대로 하겠으니, 청컨대 대인(大人)은 조용히 예(禮)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서 파(罷)하소서.” 하니 부사(副使)가 말하기를, “천자(天子)의 술은 아홉 순배이고, 제후(諸侯)의 술은 일곱 순배이며, 보통</p>	<p>○上幸太平館，設翼日宴。上行酒，次靑松府院君沈滄、寧城府院君崔恒、仁山府院君洪允成、領議政尹子雲行酒。天使令通事啓曰：“今日行酒，將至五巡。請殿下，命盧宰相【盧思愼時爲館伴。】行酒後，吾等當回杯。”上答曰：“依命。請大人，從容待禮成而罷。”副天使曰：“天子之酒九巡，諸侯之酒七巡，至於常禮，只三巡五巡而止。今酒至五巡，禮亦盡。且我量淺，不得飲。”上卽命進大膳，天使等各進回杯而罷。命留都</p>

	<p>예(禮)는 세 순배 또는 다섯 순배에 끝나는데, 이제 술이 다섯 순배에 이르렀으니 예도 다하였고, 또 우리의 주량이 알아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p> <p>하니 임금이 곧 대膳(大膳)을 올리도록 명하고, 중국 사신들이 각각 회배(回杯)401) 을 올리고 파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이극증(李克增)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고, 명하여 중국 사신에게 각각 안구마(鞍具馬) 1필, 해달피 안롱(海獺皮鞍籠) 1, 모마장(毛馬粧) 1부(部), 모편(毛鞭) 1사(事), 선자(扇子) 50과(把), 육장 연폭 유둔(六帳連幅油菴) 1, 자석연(紫石硯) 1면(面), 황모필(黃毛筆) 25병(柄), 토모필(兔毛筆) 25병, 유연묵(油煙墨) 10정(丁), 적옥묵(赤玉墨) 2정, 입모(笠帽) 10사(事), 상품 표지(上品表紙) 2권(卷), 중품 표지(中品表紙) 2권, 삼병도자(三并刀子) 1부(部)를 주고, 두목(頭目)에게는 각각 도자(刀子) 1부, 입모(笠帽) 2사(事), 선자(扇子) 2과(把)를 주었다. 상사(上使)는 머리를 조아려 사례하고, 부사(副使)는 단지 선자(扇子) 4, 입모(笠帽) 4, 유둔(油菴) 1, 모편(毛鞭) 1, 자석연(紫石硯) 1, 황모필(黃毛筆)·토모필(兔毛筆)·유연묵(油煙墨)만 받았다.</p>	<p>承旨李克增，贈天使各鞍具馬一匹、海獺皮鞍籠一毛、馬粧一部、毛鞭一事、扇子五十把、六帳連幅油菴一、紫石硯一面、黃毛筆二十五柄、兔毛筆二十五柄、油煙墨十丁、赤玉墨二丁、笠帽十事、上品表紙二卷、中品表紙二卷、三并刀子一部、頭目各刀子一部、笠帽二事、扇子二把。上使叩頭謝，副使只受扇子四、笠帽四、油菴一、毛鞭一、紫石硯一、黃毛筆、兔毛筆、油煙墨。</p>
<p>성종 5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5월 6일(계미) 2 번째기사</p>	<p>원상(院相) 한명회(韓明澮) 등이 아뢰기를, “이제 비가 이미 넉넉히 내렸으니, 청컨대 복膳(復膳)하고 향온(香醞)도 올리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복膳은 갑자기 할 수 없고, 향온은 대전(大殿)에 예전대로 올리게 하라.” 하였다.</p>	<p>○院相韓明澮等啓曰：“今雨澤既足，請復膳、進香醞。”傳曰：“復膳不可遽也。香醞則大殿依舊以進。”</p>
<p>성종 5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5월 6일(계미) 3 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오는 24일에 전별연(餞別宴)을 행함이 마땅하나, 다만 이 날이 국기일(國忌日)인데,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니 원상(院相) 한명회(韓明澮)·도승지 이극증(李克增) 등이 아뢰기를, “만약 이것을 중국 사신에게 고하면 반드시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수고롭게 하지 마시오.’라고 할 것이니, 이렇게 되면 처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p>	<p>○傳曰：“來二十四日，當行餞宴，但是日國忌，何以處之？”院相韓明澮、都承旨李克增等啓曰：“若以此告天使，則必曰：‘殿下勿勞動。’如是則處之爲難。”上又問曰：“此日不得已設宴，則天使見予素膳，必問其故，以實告之</p>

	<p>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이날 할 수 없이 잔치를 베풀면 중국 사신이 나의 소선(素膳)하는 것을 보고 그 까닭을 반드시 물을 것이니, 사실대로 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상교(上敎)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p>	<p>何如?” 對曰：“上教允當。”</p>
<p>성종 5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5월 10일(정해) 2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하여 빈전(殯殿)·국장(國葬)·산릉(山陵)에 부역(赴役)한 제색장(諸色匠)에게 1등은 각각 쌀 1석(碩)·면포(綿布) 2필(匹), 2등은 쌀 1석·면포 1필, 3등은 면포·정포(正布) 각 1필 주게 하였다.</p>	<p>○傳旨戶曹，給殯殿、國葬、山陵赴役諸色匠，一等，各米一碩、綿布二匹；二等，米一碩、綿布一匹；三等，綿布、正布各一匹。</p>
<p>성종 5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5월 12일(기축) 4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계달하기를, “종정국(宗貞國)의 특송(特送) 평무속(平茂續) 등 60인과 정피공고라(井皮孔古羅) 등 50인과 산명전(山名殿)의 사자(使者) 선명(善明) 등 1백 35인이 여러 달 포소(浦所)에 머물면서 돌아가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앞서 본조(本曹)에서 수교(受敎)하여 경상도(慶尙道)에서 계급이 높고 일에 익숙한 수령을 골라 객인(客人)을 개유(開諭)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이 와서 소비한 양식을 계산하면 아무[某]의 행차에 몇 섬[碩]인데, 그 미곡(米穀)은 모두 백성에 게서 나왔고, 거두어 운반하는 고통은 너희들도 보고 들은 바이다. 대저 양국의 교제는 반드시 각각 그 폐단을 없애는 것이 바로 영구한 도리인데, 만약 다시 오래 머물면 정관(正官) 외의 양식은 줄 수 없다.’ 하고, 이같이 설명하여 돌아가기를 독촉하게 하였는데, 아직까지 회보(回報)가 없습니다. 만약 이제까지 돌아가지 아니하였으면 일본 국왕 사신의 선위사(宣慰使) 이형원(李亨元)으로 하여금 다시 개유(開諭)하여 돌아가기를 독촉하게 하고, 그래도 떠나가지 아니하면 정관(正官) 외에는 양식을 주지 말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宗貞國特送平茂續等六十人及井皮孔古羅等五十人、山名殿使善明等一百三十五人，累朔留浦，不肯發還。故前此本曹受敎，擇慶尙道秩高諳鍊守令，使開諭客人云：‘爾等之來，所費糧餉，計某行幾碩。其米穀，皆出於民，收斂轉輸之苦，爾等所見聞。大抵兩國交際，必須各悉其弊，是乃永久之道。若復久留，則正官外糧料，不得題給。’如此開說督還，而迄無回報。若至今不還，則令日本國王使臣宣慰使李亨元更開諭督還，然猶不發去，正官外勿給糧料，何如?” 從之。</p>

<p>성종 5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5월 13일(경인) 4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을유년(453) 에 성균관(成均館)의 양현고(養賢庫)454) 를 풍저창(豐儲倉)에 합하고, 유생(儒生)을 공궤(供饋)하는 쌀·콩을 관원(館員)이 창관(倉官)과 같이 한 달치를 지조(支調)하였는데, 〈한달치의〉 지조를 폐지하고 날마다 제급(題給)하니, 창관의 일이 많아서 때맞추어 출납하지 못하고, 또 회계(會計) 때의 해유(解由)와 사상직(仕上直)은 오로지 성균 관원에게 속하였으니, 이제 마땅히 성균관 관참상(官參上) 1원(員)과 참외(參外) 2원으로 풍저창의 직무를 겸하게 하여 출납(出納)을 전담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啓: “乙酉年以成均館養賢庫合屬豐儲倉, 其儒生供饋米、豆, 館員同倉官給一朔支調, 今革支調, 而逐日題給, 則倉官事多, 未得趁時出納。 且解由會計, 仕上直則專屬館員, 今宜以成均館官參上一員、參外二員, 兼帶豐儲倉職, 專掌出納。” 從之。</p>
<p>성종 5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5월 18일(을미) 1번째기사</p>	<p>임금이 태평관에 거동하여 위연(慰宴)을 행하였다. 연회가 끝나자 도승지 이극증(李克增)으로 하여금 중국 사신에게 환도(環刀) 1자루[柄], 삼병도자(三并刀子) 1부(部), 대녹비(大鹿皮) 2장(張), 결궁피(結弓皮) 20장, 호피(狐皮) 40장, 토표피(土豹皮) 1장, 육장 연폭 유둔(六張連幅油菴) 1사(事), 이장 연폭 유석(二張連幅油席) 1사(事), 인삼(人蔘) 30근(斤)을 주니, 상사는 모두 받았으나 부사는 받지 아니하였다. 이극증이 다시 청하기를, “도(道)로써 사귀고 예(禮)로써 대접하면 공자(孔子)도 이를 받았습시다. 전하께서 이 박한 물건을 가지고 대인의 노중(行資)로 준비하였는데, 어찌하여 굳이 사양합니까?” 하니, 부사가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두세 번 물건을 주니 성의가 깊고 무거우므로 고집불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에 유둔(油菴)·유석(油席)·인삼(人蔘)·환도(環刀)·도자(刀子)를 받고 나머지는 모두 물리치며 감사하다고 하였다. 두목에게는 선자(扇子) 2파(把), 입모(笠帽) 2사(事)를 주었다.</p>	<p>○乙未/上幸太平館行慰宴。 宴罷, 令都承旨李克增, 贈天使以環刀一柄、三并刀子一部、大鹿皮二張、結弓皮二十張、狐皮四十張、土豹皮一張、六張連幅油菴一事、二張連幅油席一事、人蔘三十斤。 上使皆受之, 副使不受。 克增更請曰: “其交也以道, 其接也以禮, 斯孔子受之。 殿下將此薄物, 聊備大人路上之資耳。 何固辭?” 副使答曰: “殿下再三贈物, 誠意深重, 不可膠柱。” 乃受油菴、油席、人蔘、環刀、刀子, 餘皆却之曰: “多謝。” 贈頭目各扇子二把、笠帽二事。</p>
<p>성종 5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p>	<p>(…) 동지사(同知事) 구종직(丘從直)이 아뢰기를, “지금 봄과 여름에 가물어서 보리와 밀이 모두 마르고 그 중에 겨우 익은 것</p>	<p>(…) 同知事丘從直啓曰: “今春、夏旱, 大、小麥皆槁, 其僅熟者, 民皆取</p>

<p>6년) 5월 22일(기해) 1번째기사</p>	<p>은 백성이 모두 먹었으니, 내년 종자가 걱정됩니다. 청컨대 관(官)으로 하여금 곡식을 주어 종자를 사서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율게 여겼다.</p>	<p>食，來歲之種可慮。請令官給穀質種，以備之。”上然之。</p>
<p>성종 5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5월 22일(기해) 5번째기사</p>	<p>의정부 좌의정(議政府左議政) 김국광(金國光)·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정난중(鄭蘭宗)을 <명나라에> 보내어 표문(表文)을 받들고 <중국> 서울에 가서 사제(賜祭)와 승습(承襲)을 사례하게 하였다. 백관(百官)이 의식과 같이 표문을 배송하였다. 승습(承襲)을 사례하는 표문(表文)에 이르기를, “황제의 덕이 널리 덮이어 돈독하게 품어서 편안하게 하였고, 높은 은혜가 자주 이르니 오직 감격할 따름입니다. 몸을 돌이켜 보면 부끄럽고 뼈에 새겨도 보답하기 어렵습니다. 엿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게 어린 몸으로 작은 땅을 대신 지키는데, 윤음(綸音)470) 이 자상하여 왕위를 이을 것을 허락하고, <내리신> 면복(冕服)이 찬란하고 겸하여 많은 물건을 내렸으며, 더욱이 특별한 은혜가 과처(寡妻)에게까지 미쳤으며, 나라를 보호하는 법을 거듭 경계하고 변경을 방비하는 계책을 다시 효유하였으니, 은혜가 이와 같음은 드물게 있는 바입니다. 이는 대개 도(道)가 천지(天地)에 합하고 인(仁)은 부모보다 깊어서, 미신(微臣)이 <선왕의> 뜻을 이음을 어여삐 여기고 선왕의 충성을 다함을 생각하심을 만나, 드디어 용렬한 자격으로 하여금 특별한 은혜를 얻게 하였습니다. 신은 삼가 방패와 울타리가 되어 항상 은혜를 생각하는 뜻을 가지고, ‘수(壽)하고 강녕(康寧)하소서.’ 하며, 갑절이나 수(壽)하기를 축원합니다.” 하고, 그 방물표(方物表)에 이르기를, “엿드려 생각하건대, 하늘에서 명(命)이 내려 특별한 은총을 입으니, 토의(土宜)를 올려 사례하는 정성을 표합니다. 삼가 황세저포(黃細紵布) 30필, 백세저포(白細紵布) 3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1백 필, 활흑세마포(闊黑細麻布) 30필, 용문염석(龍文簾席) 4장, 황화석(黃花席) 15장, 만화석(滿花席) 15장, 만</p>	<p>○遣議政府左議政金國光、中樞府同知事鄭蘭宗，奉表如京師，謝賜祭承襲。百官拜表如儀。其謝承襲表曰：帝德覆冒，克篤懷綏，睿澤便蕃，祇增感激，撫躬知愧，銘骨難酬。伏念臣，猥以冲資，權守敝履。綸音密勿，許襲茅土之封；冕服焜煌，仍兼筐篚之錫。矧伊異數，施及寡妻，申戒保邦之規，且諭備邊之策，寵賚若此，前昔所稀。茲蓋伏遇道合生成，仁深怙恃，憐微臣之繼志，念先王之效忠，遂令庸材，獲紆殊渥。臣謹當之屏之翰，恒存挾纘之情，曰壽曰康，倍伸添壽之祝。 其方物表曰： 伏以自天有命，特荷寵恩，任土所宜，聊伸謝悃。謹備，黃細紵布三十四、白細紵布三十四、黑細麻布一百匹、闊黑細麻布三十四、龍文簾席四張、黃花席一十五張、滿花席一十五張、滿花方席一十五張、雜綵花席一十五張、人蔘一百斤、石燈盞一十事、雜</p>

	<p>화방석(滿花方席) 15장, 잡채화석(雜綵花席) 15장, 인삼(人蔘) 1백 근, 석등잔(石燈盞) 10사(事), 잡색마(雜色馬) 80필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은 종류가 많지 아니하고 제조가 정밀하지 못하니, 감히 진상하는 예절에 미치지 아니하나, 다만 위에 바치는 정성을 알아 주소서.”</p> <p>하였다. 황태후(皇太后)에게 바치는 예물은 홍세저포(紅細紵布) 10필, 백세저포(白細紵布)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20필, 만화석(滿花席) 10장, 잡채화석(雜綵花席) 10장이며, 중궁(中宮)에게 진헌(進獻)하는 것도 같다. 그 사시(賜諡)와 제부(祭賻)를 사례하는 표문에 이르기를,</p> <p>“엎드려 아웁니다. 사신이 바야흐로 임하여 은혜를 널리 펴고 홀전(恤典)이 내리고 부물을 주시니, 눈물은 말을 따라 떨어지고 정(情)은 마음으로부터 감격합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선신(先臣) 휘(諱)는 어린 나이에 적은 병으로 문득 성조(盛朝)를 하직하였는데, 부음(訃音)이 올라가자 특별히 슬퍼하는 생각을 더하여 시호(諡號)를 주고 제사를 내려 크게 영혼을 위로하고, 부의(賻儀)를 내리고 은혜를 더하여 다시 후하게 잔약한 몸을 어루만지니, 구원(九原)471) 에서 감격할 것이며 일국(一國)이 영화롭게 생각합니다. 이는 대개 도량(度量)이 넓고 먼 나라를 회유(懷柔)하는 어진 황제를 만나, 선신(先臣)이 공경하게 복종하는 뜻을 헤아리고 고신(孤臣)의 근심을 만난 것을 가없이 여겨서 드디어 작은 나라로 하여금 특별한 은혜를 입게 하였으니, 신은 마땅히 청사(靑社)472) 를 정성으로 지켜서 길이 해바라기와 같은 정성을 바치겠으며, 자신(紫宸)473) 을 우러러 바라보며 만수무강의 축원을 드립니다.”</p> <p>하고, 그 방물표(方物表)에 이르기를,</p> <p>“하늘이 돌보심을 특별히 더하여 총명(寵命)474) 을 내림이 우약(優渥)하니, 토의(土宜)가 비록 박(薄)하나 공경히 사례하는 정성을 표합니다. 삼가 황세저포(黃細紵布) 30필, 백세저포(白細紵布) 3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1백 필, 활흑세마포(闊黑細麻布) 2백 필, 황화석(黃花席) 15장, 만화석(滿花席) 15장, 잡</p>	<p>色馬八十匹。 右件物等， 名般不腆， 製造非精， 敢望及物之儀， 第諒享上之懇。 皇太后， 紅細紵布一十四、 白細紵布一十四、 黑細麻布二十四、 滿花席一十張、 雜綵花席一十張； 中宮進獻數， 與皇太后同。</p> <p>其謝賜諡、 祭賻表曰：</p> <p>伏以皇華鼎臨， 睿澤覃被， 恤典渙降， 寵賚荐加， 涕隨言零， 情由中激。 伏念， 先臣諱， 早嬰微疾， 奄辭盛朝， 何圖訃音之伸， 特軫哀愍之念。 贈諡、 致祭， 慰遺魂之既隆； 賜賻、 推恩， 撫孱資之復厚。 九原知感， 一國與榮。 茲蓋伏遇度廓包荒， 仁敦懷遠， 諒先臣之祇服， 憐孤臣之罹憂， 遂令敝封， 獲霑異渥。 臣謹當恪守靑社， 永輸葵藿之誠； 顙望紫宸， 倍貢岡陵之祝。</p> <p>其方物表曰：</p> <p>天眷特加， 優錫寵命， 土宜雖薄， 祇表謝忱。 謹備， 黃細紵布三十四、 白細紵布三十四、 黑細麻布一百匹、 闊黑細麻布二百匹、 黃花席一十五張、 滿花席一十五張、 雜綵花席一十五張、 人蔘一百斤、 雜色馬三十匹。 右件物等， 製匪良工， 產從僻壤， 豈合旅庭之</p>
--	--	---

	<p>채화석(雜綵花席) 15장, 인삼(人蔘) 1백 근, 잡색마(雜色馬) 30필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은 좋은 공장(工匠)이 만든 것이 아니고 궁벽한 땅에서 생산된 것이니, 어찌 진상하는 물건에 합당하겠습니까마는, 헌근지성(獻芹之誠)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p> <p>하였다. 황태후와 중궁에게 승습(承襲)을 사례하는 물건의 수(數)도 같다.</p>	<p>實，庶諒獻芹之誠。 皇太后、中宮，與謝承襲物數同。</p>
<p>성종 5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5월 26일(계묘) 3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가뭄이 심하니 향은(香醞)을 올리지 말라.”</p> <p>하였다.</p>	<p>○傳曰：“旱甚，其勿進香醞。”</p>
<p>성종 5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5월 26일(계묘) 7번째기사</p>	<p>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고태필(高台弼)에게 글을 내리기를, “윤필상(尹弼商)의 반인(伴人) 임효생(林孝生)이 고하기를, ‘함평(咸平) 사람 김내은만(金內隱萬)의 아내가 내게 와서 말하기를, 「입이 셋 머리가 하나인 귀신이 하늘로부터 능성(綾城) 부잣집에 내려와서 한 번에 밥 한 동이[盆], 두부국[豆腐羹] 반 동이를 먹었는데, 그 귀신의 말이, 이달에는 비가 안오고 다음달 스무날에는 반드시 비가 내릴 것인데, 만약 이날 비가 안오거든 받을 때까지 말아라 하고, 또 말하기를, 진생(辰生)·신생(申生)·유생(酉生)인 사람들은 금년에 모두 죽는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어떤 역자(驛子)가 금구 영리(金溝營吏)에게서 듣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효생이 또 고하기를, ‘지난 4월 27일에 새 감사(監司)를 뵈으려고 함평(咸平) 가리역(加里驛)에 이르니, 역자(驛子) 5, 6명이 말하기를, 「나이 1백 49세의 중이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금년과 내년에는 열 명의 계집이 한 남자를 같이 하고, 열 집에서 소 한 마리, 말 한 마리를 함께 하며, 군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더라.’” 하였는데, 이 말을 함평 사람이 믿는 이도 있고 안믿는 이도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임효생의 고한 바가 이와 같으니, 과연 이 같은 말이 있으면 어리석은 백성이 요사한 말을 가볍게 믿고 망령되게 소동하여 마침내 농사를 폐하는 데 이를까 염려되니, 그 말의 근원을 깊이 캐서 사람의 의혹을</p>	<p>○下書全羅道觀察使高台弼曰：“尹弼商伴人林孝生告云：‘咸平人金內隱萬妻來謂我曰：「有三口一頭鬼，自天降于綾城富居人家，一食飯一盆、豆腐羹半盆。其鬼言曰：『今月不雨，來月二十日當雨。若此日不雨，則勿耘田。』」又言曰：『辰生、申生、酉生人等，今年皆死。』」右言：「有一驛子，聞之於金溝營吏而言之，我得聞之。」」孝生又告：‘去四月二十七日，欲謁新監司，到咸平加里驛，驛子五六人言：「年一百四十九歲僧，謂我等曰：『今年、來年，十女共一夫；十家共一牛、一馬；軍士興作。』」又『今年三、四月，暴風大作。』」右言，咸平人或信、或否。’孝生所告如此，果有如此言者，則愚民輕信妖說，妄自</p>

	<p>풀게 하라.” 하였다.</p>	<p>騷動，終至廢農可慮也。其窮覈言根，以解人惑。”</p>
<p>성종 5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5월 29일(병오) 2번째기사</p>	<p>전교하기를, “가뭄이 심하니 이제부터 각전(各殿)의 낮 수라(水刺)는 단지 수반(水飯)만 올리게 하라.” 하였다.</p>	<p>○傳曰：“旱甚。自今，各殿晝水刺，只進水飯。”</p>
<p>성종 6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6월 1일(무신) 2 번째기사</p>	<p>원상(院相) 최항(崔恒)·김질(金磧)이 아뢰기를, “근래 날씨가 가뭄으로 인하여 감선(減膳)500) 하신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지금 또 낮에 수반(水飯)501) 을 올리도록 하시니, 선왕조(先王朝)의 감선(減膳)한 것도 이러한 데 이르지 않는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세종조(世宗朝)에는 비록 풍년이 들었더라도 수반(水飯)을 올렸는데, 지금 수반을 쓴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김질이 말하기를, “대저 비위(脾胃)는 찬 것을 싫어하므로, 수반(水飯)이 비위를 상할까 염려하는데,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거늘, 하물며 지존(至尊)이겠습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경(卿)의 말과 같다면 매양 건식(乾食)을 올려야 하겠는가?” 하였다.</p>	<p>○院相崔恒、金磧啓曰：“近因天旱，減膳已久，今又令晝進水飯，先王朝減膳，不至於此。”傳曰：“世宗朝，雖豐年，進水飯。今用水飯，何害?”磧曰：“大抵脾胃惡冷，水飯恐傷脾胃，在凡人且爾，況至尊乎?”傳曰：“如卿言，每進乾食耶?”</p>
<p>성종 6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6월 2일(기유) 3 번째기사</p>	<p>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김수녕(金壽寧)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 1. 수재(水災)와 한재(旱災)는 다 천도(天道)에다 미룰 수 없으며, 또한 다 인사(人事)에다 책임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9년 홍수와 7년 가뭄[九澇七旱]을 요(堯)임금과 탕(湯)임금도 면하지 못하였으니, 인사(人事)를 다하지 아니한 것도 아니며, 이미 저축하고 또한 준비하여 백성들이 병들어 죽는 자가 없어서 능히 재앙이 되지 않는다면 천도(天道)를 다하는 것도 아닙니다. 귀하게 여길</p>	<p>○司諫院大司諫金壽寧等上疏曰：(….) 一。水旱之災，不可盡諉之天道，亦不可盡責之人事。九澇、七旱，堯、湯不免，非盡人也；既畜且備，民無捐瘠，能不爲災，非盡天也。所貴，謹天戒而盡人事爾。比者，國家多事，</p>

바는 하늘의 경계(警戒)를 삼가서 인사(人事)를 다하는 것뿐입니다. 근래 국가에서 일이 많은데, 관(官)에서는 저축한 양식이 없고, 또 민가(民家)에서는 사사로이 저축한 것이 없으니, 금년의 농사가 잘되지 못하면 유망(流亡)하는 사람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엿드려 보건대, 봄·여름 이래로 가뭄 기운이 매우 심한데, 전하(殿下)께서 애써서 노력하시고 부지런히 구휼(救恤)하시어 피전(避殿) 하시고, 감선(減膳)하시며, 사전(祀典)을 두루 거행하시고 폐단이 되는 정사(政事)를 개혁하시며 원통한 옥사(獄事)를 다스리시기에 날로 겨를이 없으시고 매양 대신(大臣)들을 방문하여 백성의 폐단을 없애시기에 힘쓰시니, 인사(人事)를 닦았다고 이를 만한테도 천청(天聽)이 아직도 막혀 있고 고택(膏澤)이 아직도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재(旱災)는 여러 도(道)가 모두 비슷한데, 그러나 하삼도(下三道)510)가 심합니다. 여름 보리를 이미 전혀 거두지 못해서 곳곳에서 모두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식량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기장과 찰벼는 날로 별에 타서 바람에 흔들려 모손(耗損)한 것이 이미 반수가 넘으므로 또한 가을에 거의 거두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비가 온다면 아직도 혹시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경상도(慶尙道) 1도에 있어서 더욱 심한데, 수전(水田)은 대개 많이 이양(移秧)을 하여 벼를 거두기 때문에 앓아서 말라 죽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현재 양식도 없으니, 조운(漕運)의 길이 다시 막힐 것입니다.

매양 한 가지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통곡할 만한데, 지금 오로지 재앙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첫째는 공물(貢物)을 적당히 감면하는 것이요, 둘째는 위병(衛兵)을 적당히 파(罷)하는 것이요, 세째는 사신(使臣)을 보내어 순시(巡視)하는 것이요, 네째는 도적(盜賊)을 날뛰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왜 공물(貢物)을 감면하자고 하는가 하면, 대개 세상의 수령(守令)들이 혹시 탐오(貪汚)하면 스스로 능히 규율을 세우지 못할 것이요, 혹시 느슨하고 연약하면 아전들을 능히 다스리지 못할 것이며, 청백(清白)하고 일

官少儲峙，民無私畜，今歲不登，流亡必多。伏覩，春夏以來，旱勢太甚，殿下焦勞、勤恤，避殿、減膳，祀典徧舉，革弊政，理冤獄，日不暇給，每訪大臣，務去民瘼，人事可謂畢修矣，天聽尙阻，膏澤不下。今之旱災，諸道皆然，而下二道爲甚，夏麥已全然不收，在在皆剝松皮爲食，而黍、稷日灸、風搖，耗已過半，亦殆無秋，然朝夕有雨，尙或可冀。至於慶尙一道，又有甚焉。水田類，多移秧取禾，故坐待乾死，且無見糧，則漕道更礙。每一念至，可爲痛哭。今獨惟救災之術有四：一曰量蠲貢物，二曰量罷衛兵，三曰遣使巡視，四曰毋縱盜賊。何謂蠲貢物？蓋世之守令，或貪饕，不能律己，或罷軟，不能束吏，清白、幹敏者，什無二三。故國家雖用正供，不許橫斂，而收納之間，吏緣爲奸，樂歲民尙見困，凶年又何以堪？往往至用賑貸米穀，輸之吏手者有之。乞除係干戎、祀不得已貢物外，其應入興作與凡餘賸之物，量宜蠲減，民得蘇息，可謂備荒矣。何謂罷衛兵？蓋番上宿衛之兵名目非一，自甲士、別侍衛外，又

하는 데 민첩(敏捷)한 자는 10명에 2, 3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비록 올바른 공상(供上)의 제도를 써서 횡렴(橫斂)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수납(收納)하는 사이에 아전들이 간사한 것을 하니, 풍년에도 백성들이 오히려 곤란을 당하는데, 흉년에 또한 어찌 견디겠습니까? 종종 진대(賑貸)에 쓸 미곡(米穀)에 이르러서도 이를 아전의 손에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건대 군사와 제사(祭祀)에 관계되는 부득이한 공물(貢物)을 제외하고는 토목 공사를 일으키는 데 응당 들어가야 할 것과 모든 그 나머지 물건들을 적당히 헤아려서 견감(蠲減)해 주어 백성들을 소생시킨다면 재앙을 대비할 만하다고 할 것입니다. 왜 위병(衛兵)을 과(罷)하자고 하는가 하면, 대개 번상(番上)하여 숙위(宿衛)하는 군사는 명목(名目)이 한 가지가 아니니,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 이외에도 또 과적위(破敵衛)·팽배(彭排)·대졸(隊卒)·정병(正兵)의 무리가 있습니다. 대저 정병이라는 것은 대개 모두 벼슬하지 아니하는 자이고, 군사의 일에 익숙하지 못한 자들인데, 그들로 하여금 모두 숙위(宿衛)하게 하면 크게 긴절(緊切)한 것도 없는데 군량을 헛되이 허비하게 하니, 그들로 하여금 도태하여 돌려보낸다면 사람들이 스스로 재앙에 대비하여 생활하는 길이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빌건대 마땅히 숙위(宿衛)와 순작(巡綽)에 대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모든 도태할 만한 군사를 적당히 헤아려 과(罷)하여 보내어 병사(兵士)들이 소생(蘇生)할 수 있다면 재앙에 대비할 만하다고 할 것입니다.

왜 사신(使臣)을 보내어 순시(巡視)하자고 하는가 하면, 지금 재앙을 구제하는 대책은 국가에서 조치(措置)하여 자세하고 빠짐이 없으므로 의논할 만한 것이 없을 것 같으나, 그러나 이문(移文)하여 책임지우는 것은 실제로 순시하여 책임지우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대저 보리를 바꾸어서 종자를 마련하거나, 소금을 구워서 식량에 대비하거나 메밀을 많이 심거나, 줄기와 잎을 아울러 거두거나, 심지어 도토리나 밤, 해채류(海菜類)에 이르기까지 절기에 따라서 거

有破敵衛、彭排、隊卒、正兵之屬。夫正兵者率皆白徒，不習爲兵者也。使皆宿衛，無大緊切，徒費糗糧，使之汰遣，則人自備荒，生路稍廣。乞除應備宿衛、巡綽外，雜汎可汰之兵，量宜罷去，兵得蘇息，可謂備荒矣。何謂遣使巡視？蓋今救荒之策，國家措置，纖悉無遺，若無可議，然以移文責成，不若巡視責實。夫換麥備種，煮鹽備食，多植蕎麥，兼收莖葉。至於橡栗、海菜之類，趁節收貯，固救荒之最切者也。不加提險，人極于慢，愚民視爲故常，守令因以陵夷。監司所至，亦不過規規移文應行例事而已，又豈能謁心民事，憂聖上宵旰之憂哉？縱能憂之，悉心賑救，民命阽危，而稽延時日，往復取旨，緩不及事者多矣。乞別委謹敏朝官，逐路體量，糾舉荒政修否，橫政有無，卽有便宜，許以驛聞。使死者以活，骨者以肉，務要着實，無有蒙蔽，是備荒之要也。何謂毋縱盜賊？蓋歲侵則民飢，民飢則盜起，不先有以制之，必至滋蔓，蔓則難圖，不得不深慮也。今逐路之民，日夕爲盜，其隣保之家，雖嘗知之，不敢

두어 저장하는 것이 진실로 재앙을 구황(救荒)하는 가장 긴급(緊切)한 것입니다. 검찰을 더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태만하여지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한갓 보통일로 보게 되고, 수령(守令)도 이로 인하여 해이(解弛)하게 되고, 감사(監司)가 이르는 곳에서도 또한 격식을 갖추어 이문(移文)하여 응당 행해야 할 보통 일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니, 또 어찌 능히 백성의 일에 마음을 다하고 성상(聖上)의 소간(宵旰)511) 의 근심을 걱정하겠습니까? 비록 능히 이를 근심하여 마음을 다하여 진휼(賑恤)해 구제(救濟)한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의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시일을 끝면서 왕복하여 취지(取旨)512) 한다면 늦어서 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빌건대 특별히 삼가고 민첩한 조관(朝官)을 임명하여 길을 따라 보내어 몸소 헤아리게 하고, 황정(荒政)을 닦는지의 여부와 횡포한 정사(政事)가 있는지 없는지를 규찰(糾察)하게 하여, 즉시 편의한 대로 역로(驛路)를 따라 계문(啓聞)하도록 허락하여서, 죽을 자로 하여금 살게 하고, 뼈만 남아 있는 자로 하여금 살을 붙게 하여서 착실하게 일을 하기에 힘쓰고 몽폐(蒙蔽) 하는 일이 없게 하면, 이것이 재앙에 대비하는 요체일 것입니다.

왜 도적(盜賊)을 날뛰지 못하게 하자고 하는가 하면, 대개 흉년이 들면 백성이 굶주리고, 백성이 굶주리면 도적이 일어나니, 이를 먼저 제어(制御)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세력이 점점 세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세력이 세어진다면 도모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깊이 염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길을 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밤에는 도적이 되는데, 인보(隣保)의 집들이 비록 일찍이 이를 안다고 하더라도 감히 신고하지 못하는데, 대개 관(官)에서 도적을 능히 잡지 못하면, 신고한 집에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적의 위세(威勢)가 더욱 관사(官司)보다 커지고, 오래 되어도 금하지 못하면, 무리를 모으고 떼를 지어서 작은 경우에는 여리(閭里)를 짓밟고, 큰 경우에는 주(州)·현(縣)을 약탈하여서 다시 거리끼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전라도의 도적

申告。蓋官不能得盜，則逞害於申告之家。是盜之威勢，更大於官司，久而不禁，結聚嘯集，小則轢閭里，大則掠州縣，無復忌憚，如全羅之賊、積城之寇，是已。饑饉之極，勢必更甚。哀我元元之民，既旣於歲，又困於賊，甚非細故。乞預賜指揮，卽有盜發，應時捕獲。若涉弛慢，所在守令，便行降黜，是備荒之大也。凡此數事，雖非達見，採而行之，不無小補。伏惟睿鑑施行，幸甚。

大王大妃傳曰：“當初加資時，盧思愼亦辭之。然天使請之，不得已從之。鄭自洋之事，汝等亦以爲言，故今當送西。許繼智事，大殿嘗移御于其第，且中宮收養，故放之耳。救荒之事，予將採用。”

	<p>이나 적성(積城)의 도적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인데, 기근이 극심하니, 형세상 반드시 더욱 심할 것입니다. 우리의 백성들이 불쌍하게도 이미 흉년에 곤란을 당하고 또 도적에게 곤욕을 당하니, 심히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빌건대 먼저 명령을 내리셔서 즉시 도적을 적발하여 제때에 응하여 체포하게 하고, 만약 태만하게 하는 소재지의 수령(守令)은 곧 강출(降黜)515) 을 행하면, 이것이 재앙에 대비하는 큰 일일 것입니다.</p> <p>무릇 이러한 몇 가지 일은 비록 달견(達見)은 아니나, 채택하여 시행하면 조그마한 도움이 없지 아니할 것이니, 앞드려 바라건대, 예감(睿鑑)으로써 시행하신다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p> <p>하였다.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전교(傳敎)하기를, “당초에 가자(加資)516) 할 때에 노사신도 또한 이를 사양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사신(使臣)이 이를 청(請)하여서 부득이 이를 따랐다. 정자양의 일은 너희들이 또한 이를 말하였기 때문에 지금 마땅히 서쪽 지방으로 보내겠다. 허계지의 일은 대저 난신(亂臣)으로 연좌(緣坐)되었으나, 또한 그 때에 방면(放免)되었었다. 허계지 같은 자는 대전(大殿)께서 일찍이 그 집에 이어(移御)하셨고, 또 중궁(中宮)을 수양(收養)하였기 때문에 이를 방면한 것이다. 구황(救荒)에 대한 일은 내가 채택하여 쓰겠다.”</p> <p>하였다.</p>	
<p>성종 6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6월 3일(경술) 5번째기사</p>	<p>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이윤인(李尹仁)에게 하서(下書)하기를, “듣건대 도내(道內)의 연해(沿海) 여러 고을에 해일(海溢)이 많이 벋곡식[禾穀]을 손상시켰다고 하니, 경(卿)이 친히 그것을 살펴서 아뢰어라.”</p> <p>하였다.</p>	<p>○下書平安道觀察使李尹仁曰：“聞道內沿海諸邑海溢，多損禾稼，卿其親審以啓。”</p>
<p>성종 6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6월 5일(임자) 10번째기사</p>	<p>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봄부터 여름까지 가물어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 스스로 재앙을 부르는 까닭이 있을까 염려하여, 교서(敎書)를 내려서 구언(求言)529) 하였더니, 대간(臺諫)에서 드디서 상소(上疏)하여, 중외(中外)의 관리(官吏)가 탐람(貪婪)하고 용</p>	<p>○諭諸道觀察使曰：“自春徂夏，亢陽不雨，慮有所召，下敎求言，臺諫遂疏列中外官吏貪婪、庸劣不堪任者以啓。議諸大臣，黜其尤甚者七人，是</p>

	<p>렬(庸劣)하여,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를 나열하여 아뢰었으므로, 여러 대신(大臣)에게 의논하여 그 가운데에 가장 심한 자 7인을 내쫓았는데, 이들은 모두 전날에 고과(考課)의 등급에서 상등[最]에 있었던 자들이니, 어찌하여 이와 같이 서로 반대되는가? 그 수령(守令) 가운데에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할 자들을 다 파면하여 보내고자 하나, 다만 농사철에 맞이하곤 보내는 데 폐단이 클 것을 생각하여, 아직 이를 정지하는 것이다. 또 관찰사(觀察使)가 할 일이나, 다만 그 파직(罷職)되지 아니한 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끝내 반드시 파면당할 것이라고 하여 뜻을 다하여서 구황(救荒)하지 아니하고, 주구(誅求)하기를 끝이 없이 하여서 우리 백성들을 거듭 곤궁하게 할까 염려된다. 또 감선(減膳)하고 수성(修省)하면서 중외(中外)에 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하늘의 경계(警戒)에 조심하고 낭비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수령(守令)으로서 혹시 나의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손님을 대하여 술을 마음대로 마시고, 일찍이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것이 없으며, 어리석은 백성에 이르러서도 조금 남는 곡식이 있으면 문득 주찬(酒饌)을 마련하여서 마음대로 취하고 배부르게 마신다. 이것이 비록 자기 집의 비용이라 하나 곡식을 허비하는 것은 마찬가지로이니, 이것이 어찌 하늘을 공경하고, 임금을 몸받는 뜻이겠는가? 그러므로 법사(法司)로 하여금 엄하게 규찰(糾察)을 더하도록 하였으니, 경들은 마땅히 스스로 술선하여 공사(公私)에 술을 쓰는 것을 금지하여 끊고, 구황(救荒)하는 여러가지 일을 전에 내린 유서(諭書)에 의하여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여서, 적자(赤子)로 하여금 구학(溝壑)531)에서 죽는 것을 면하게 하라. 장차 대관(臺官)을 나누어 보내어 검찰(檢察)하겠다.”</p> <p>하였다.</p>	<p>皆前日考第居最者，何若是反歟？其守令之不堪者，欲盡罷遣，第念農月迎送弊大，姑停之。且觀卿所爲，但慮其不罷者自謂終必見罷，不致意救荒，誅求無厭，重困吾民也。且減膳、修省，禁中外用酒，以謹天戒，以防糜費，而守令或有不體予意，對客縱飲，曾不畏忌，至於愚民，稍有贏餘，輒設酒饌，以恣醉飽。是雖自家之費，其糜穀一也。是豈敬天、體上之意？故令法司，嚴加糾察，卿當率自身先，禁絕公私有酒，救荒諸事，依前降諭書，盡心措置，俾赤子，得免溝壑。將分遣臺官檢察。”</p>
<p>성종 6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6월 5일(임자)</p>	<p>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가 치계(馳啓)하기를, “해주(海州) 사람 임수(林守)의 아내가 한꺼번에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낳았습니다.”</p>	<p>○黃海道觀察使馳啓：“海州人林守妻，一產一男、二女。” 命給米、豆各五碩。</p>

12번째기사	하니 명하여 쌀·콩 각각 5석(石)을 주게 하였다.	
성종 6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6월 6일(계축) 6번째기사	중국 상사(上使)가 청주(淸州)에서 돌아오니, 도승지(都承旨) 이극증(李克增)에게 명하여 선온(宣醞)을 가지고 가서 제천정(濟川亭)에서 맞이하여 위로하게 하였고, 또 인산 부원군(仁山府院君) 홍윤성(洪允成)에게 명하여 가서 참여하게 하였다.	○上天使回自淸州，命都承旨李克增，齎宣醞，迎慰于濟川亭。又命仁山府院君洪允成，往參。
성종 6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6월 8일(을묘) 2번째기사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니, 집의(執義) 유지(柳輕)가 아뢰기를, “지금 가뭄이 극심함으로 인하여 삭망 진상(朔望進上)을 면제하였는데, 어선(御膳)이 부족할까 두려우니 적당히 진상(進上)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만약 여러 고을의 긴요치 않은 공물(貢物)을 면제한다면 비록 진상을 면제하지 않더라도 백성들의 폐단은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또 구황(救荒)하는 여러 가지 일은 마땅히 미리 조치(措置)하여야 하므로, 인하여 사목(事目)을 올립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변(沿邊)의 여러 고을에서는 소금을 굽고, 산(山)의 고을에서는 도토리 따는데, 전보다도 배나 더하도록 조치하게 하소서. 1. 구황(救荒)하는 물건은 소금과 장(醬)만한 것이 없으나, 장은 줄지에 마련하기가 쉽지 아니할 것이니, 경외(京外)의 창고에서 묵은 콩을 찌서 만들되, 미리 마땅히 장을 담그게 하소서. 1. 해채(海菜)와 산야(山野)에서 쓸 만한 초식(草食)은 많은 숫자를 채취(採取)하게 하소서. 1.明年(明年)의 곡식 종자는 여러 고을의 숙고(稔庫)에서 묵은 곡식을 가지고 농사가 조금 잘된 곳의 햇곡식과 바꾸고, 여러 관사(官司)에 바치는 전세(田稅)와 잡물(雜物)을 여러 관사에 저축한 다소(多少)를 헤아려서, 그 나머지 곡물(穀物)은 상납(上納)하는 것을 면제하고, 피곡(皮穀)으로 대신 바치도록 하여 종자를 준비하게 하소서 1. 사복시(司僕寺)에서 부득이 항상 기르는 말 이외에는 살곳이[箭串]에 방목 	○御經筵。講訖，執義柳輕啓曰：“今因旱，盡除朔望進上，恐御膳不足，令量進何如？若除諸邑不緊貢物，則雖不除進上，民弊自祛矣。且救荒諸事，當預先措置，因進事目。一。沿邊諸邑則煮鹽；山郡則橡實摘取，令倍前措置。一。救荒之物，莫如鹽、醬，然醬則未易卒辦，以京、外倉庫，陳豆燻造，預先合醬。一。海菜及山野，可用草食，多數採取。一。明年穀種，以諸邑稔庫陳穀，換農事稍稔處新穀，諸司所納田稅及雜物，計諸司所儲多少，其有餘之物，除上納，以皮穀代納，以備種。一。司僕寺不得已常養馬外，放于箭串，量減京畿生草。一。諸道貢稅，前則以私船，給價而漕運；今則造公船，以防禦船軍，給過海糧。而運其糧，與船價，不甚相遠。況船軍專委防禦，而亦是農民，依前例，從願用私船漕運，以休船軍，以固防禦。一。賑恤之事，擇授勤謹大臣，預而

	<p>(放牧)하도록 하고, 경기(京畿)에서 바치는 생초(生草)를 적당히 감(減)하게 하소서.</p> <p>1. 여러 도(道)의 공세(貢稅)는, 전에는 사선(私船)에 값을 주고 조운(漕運)시켰는데, 지금은 공선(公船)을 건조하여 방어(防禦)하는 선군(船軍)에게 바다를 지나는데 필요한 양식을 지급하고 조운시킵니다. 그 양식이 배값과 그다지 차이가 없는데, 하물며 선군은 오로지 방어를 맡기고 있는데, 이들도 또한 농민이니, 전례(前例)에 의하여, 원하는 데 따라 사선(私船)을 써서 조운(漕運)하여 선군을 쉬도록 하여 방어(防禦)를 튼튼하게 하소서.</p> <p>1. 진휼(賑恤)하는 일은, 부지런하고 삼가는 대신(大臣)을 골라 보내어 미리 조치하게 하소서.</p> <p>1. 농사가 부실(不實)하면 백성들 가운데 굶주린 자가 반드시 서로 모여서 도적(盜賊)이 될 것이니, 엄하게 도적을 금지하는 방도를 세우게 하소서.</p> <p>1. 간경 도감(刊經都監)을 임시로 파(罷)하게 하소서.</p> <p>1. 서울에서 벼슬살이하는 사람 가운데 실농(失農)한 고을에 사는 사람은 이를 놓아 보내게 하소서.”</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에 구황하는 데 필요한 여러 관사의 묵은 곡식의 숫자를 알아서 아뢰고, 묵은 콩을 가지고 찌서 장(醬)을 만들도록 하라. 또 사복시(司僕寺)에 입양(立養)하는 말을 쇄출(刷出)하여 살곶이에 방목하게 하고, 그 경기(京畿)에 바치는 생초(生草)를 적당히 감(減)하게 하라. 또 서울에서 벼슬살이하는 사람 가운데 실농(失農)한 것이 더욱 심한 여러 고을에 사는 사람들을 놓아 보내라.” 하였다.</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유지(柳攄)는 모든 일에 동렬(同列)과 더불어 밝게 의논하지 아니하고 대개 혼자서 아뢰었고, 또 태도와 성음(聲音)을 꾸며서 진퇴(進退)하는 데 능숙하였다.” 하였다.</p>	<p>措置。 一。 農事不實， 則民之飢餓者， 必相聚爲盜， 嚴立禁盜之方。 一。 刊經都監權罷。 一。 京從仕人居失農官者， 放之。” 上曰：“今年救荒所需諸司陳否， 知數以啓， 以陳豆燻造爲醬。 又刷出司僕寺立養馬， 放于箭串， 其京畿所納生草量減。 又京從仕人內， 失農尤甚諸邑居人， 放送。”</p> <p>【史臣曰：“輕， 凡事不與同列建明， 率獨啓， 且作態度、聲音， 閑習進退。”】</p>
--	--	--

<p>성종 6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6월 8일(을묘) 3 번째기사</p>	<p>원상(院相)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왜인(倭人)들은 칩[葛]을 많이 채취하여 먹으며, 우리 나라 사 람들도 또한 흑간 채취하여 먹는 자가 있다고 하니, 다시 이것을 시험하도록 하소서. 만약 흑시 먹을 만하면 널리 사람들에게 유시(諭示)하여 이들로 하여 금 기근에 대비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가하다.” 하였다.</p>	<p>○院相韓明澮啓曰：“臣聞倭人多採葛 以食，我國之人，亦或有採食者，令更 試之。如或可食，廣諭於民，使之備 荒。”傳曰：“可。”</p>
<p>성종 6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6월 8일(을묘) 9 번째기사</p>	<p>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에 보건대, 충청도(忠淸道)에 가뭄이 심하여 농사(農事)가 부실하 였는데, 들으니, 전라도(全羅道)·경상도(慶尙道)도 또한 그렇다고 합니다. 청컨 대 호조(戶曹)로 하여금 숫자를 헤아려 조탁(調度)하게 하되, 세 도(道)의 공 세(貢稅)로서 현재 수송하지 아니한 것은 그대로 본도(本道)의 여러 고을에 두고, 백성들에게 햇곡식[新穀]과 바꾸어서 내년의 곡식 종자에 대비하게 하 소서. 신이 듣건대, 근일에 대간(臺諫)의 말에 따라서 탐오(貪汚)하거나 맡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령(守令)을 파면한다고 하니, 이것은 공론(公論)입니 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국가(國家)의 대체(大體)에 있어서는 미편(未便)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상세하게 핵문(覈問)하지 아니한다면, 흑시 그렇지 않은 자도 있을 것이요, 비록 따로 폄출(貶黜)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감사(監司)의 포폄(褒貶)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운수(運輸)하지 아니한 세곡(稅穀)을 햇곡식으로 바꾸는 일은, 호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수령(守令)을 파출(罷黜)하게 하는 것은 어찌 한갓 대 간(臺諫)의 말만 따라서 그리하겠는가? 대신(大臣)들에게 널리 물어서 더욱 심한 자를 골라서 파면하겠다.”</p>	<p>○韓明澮啓曰：“臣頃見忠淸道旱甚， 農事不實，聞全羅、慶尙道亦然。請 令戶曹，計量調度，三道貢稅時未輸 者，仍置本道諸邑，換民新穀，以備來 歲穀種。臣聞，近日從臺諫之言，罷 貪污及不堪任事者，此公論也。然臣 意以爲，於國家大體，似未便也。若 詳核其實，則或有不然者，雖不別行貶 黜，自有監司褒貶。”傳曰：“未輸稅 換新穀事，令戶曹議啓。守令罷黜， 豈徒從臺諫之言而然歟？廣詢大臣，擇 其尤甚者，罷之。”</p>

<p>성종 6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6월 9일(병진) 2 번째기사</p>	<p>하였다.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양맥(兩麥)의 종자를 미리 준비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므로, 이미 백성들의 소원에 따라서 묵은 곡식을 가지고 바꾸어서 거두어 저축하였다가 가을 농사에 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수령(守令) 가운데에 혹시 줄여서 지급하고, 지나치게 거두어 들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심히 이를 싫어하는데, 이로 인하여 얻는 성과가 반드시 적을 것이다. 구황(救荒)하는 것은 종자를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양맥(兩麥)의 종자가 만약 부족하다면 비록 종자를 많이 준비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 있겠는가? 경(卿)들은 이 뜻을 몸받아 곡진(曲盡)하게 조치하여 많은 숫자를 바꾸게 하고, 그 바꾼 숫자를 고을마다 기록하여 아뢰어라. 교맥(蕎麥)도 또한 모름지기 제때에 권하여 갈도록 하라. 이것도 또한 구황(救荒)하는 일단(一端)이다.” 하였다.</p>	<p>○諭諸道觀察使曰：“兩麥種不可不預備，已令從民願，用陳穀換易收儲，以備秋耕。然守令或有減給而濫收者，故民甚惡之，因此所得必寡。救荒，莫如多種，兩麥種若乏少，則雖欲多種得乎？卿體此意，曲盡措置，多數換易，所換之數，逐邑錄啓。蕎麥亦須趁時勸耕。是亦救荒之一端也。”</p>
<p>성종 6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6월 10일(정사) 2 번째기사</p>	<p>임금이 중국 사신에게 잔치하고자 하여, 도승지(都承旨) 이극증(李克增)에게 명하여 이를 청하게 하니, 중국 사신이 이극증에게 말하기를, “금일의 좌차(坐次)는 어찌 됩니까?” 하므로 이극증이 말하기를, “손님은 동쪽에 앉고, 주인(主人)은 서쪽에 앉습니다.” 하니 중국 사신이 말하기를, “불가합니다. 전하께서 마땅히 북쪽에 앉아야 하고, 우리는 동쪽에 앉아야 합니다.” 하였다. 이극증이 말하기를, “이러한 예(禮)는 전하께서 반드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중국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는 본국(本國) 사람입니다. 전하와 더불어 대좌(對坐)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강행인(姜行人)545) 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였을 뿐입니다.”</p>	<p>○上欲宴天使，命都承旨李克增，往請之。天使語克增曰：“今日坐次，何如？”克增曰：“客東主西。”天使曰：“不可。殿下當坐北，我坐東。”克增曰：“此禮，殿下必不敢當。”天使曰：“我，本國人也，不可與殿下對坐。向者，以有姜行人，不得已耳。”又曰：“我來時，姜玉語我曰：‘吾但有一香爐足。’【指姜繼叔而言。】須啓殿下，授銀帶職事。”又曰：“我前來，本州守令，請殿下加官；今亦願賜本州牧使、判官一級。”又曰：“副天使通事張自孝得帶銀，而吾通事金繼朴獨不得</p>

	<p>하였다. 또 말하기를, “우리가 올 때에 강옥(姜玉)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다만 향로(香爐)하나만 있으면 족할 뿐이다.’고 하였으니, 【강계숙(姜繼叔)을 가리켜서 한 말이다.】 모름지기 전하(殿下)께 아뢰어서 은대 직사(銀帶職事)를 받게 하여 주소서.”</p> <p>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전에 왔을 때 본고을의 수령(守令)을 전하께 청하여 관(官)을 더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또한 원컨대 본고을의 목사(牧使)와 판관(判官)에게 1자금(資給)을 내려 주게 하소서.”</p> <p>하고, 또 말하기를, “부사(副使)의 통사(通事) 장자효(張自孝)는 삼대(鎩帶)를 띠게 되었으나, 나의 통사(通事) 김계박(金繼朴)은 홀로 자금(資給)을 승진하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전하께 아뢰어 주소서. 염승원(廉承源)도 또한 자금(資給)을 올려 주게 하소서.”</p> <p>하였다. 이극증이 아뢰니, 임금이 명하여 좌차(坐次)를 의논하게 하였다.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세조조(世祖朝)에도 본국(本國)의 태감(太監)이 왔을 때 모든 연회(宴會)에서 북쪽 자리에 오르기를 청하였는데 그대로 따랐습니다. 지금 만약 굳이 청한다면 그대로 따르는 것도 무방(無妨)하겠습니다.”</p> <p>하였다. 중국 사신이 이르니, 임금이 인정문(仁政門) 밖에 나아가서 맞아들였다. 중국 사신이 전(殿)에 올라서, 임금에게 북쪽 자리에 오르기를 청하니, 임금이 굳이 사양하였으나, 중국 사신이 꿇어앉아 청하여 마지 아니하므로, 임금이 부득이 남향(南向)하여 서쪽 가까이로 앉았다. 중국 사신이 동쪽에 앉아서 다례(茶禮)를 행하니, 임금이 친히 인정물(人情物)로서 작설다(雀舌茶) 3두(斗), 6장 연폭 유둔(六張連幅油菴) 1벌[事], 입모(笠帽) 20벌[事], 모마장(毛</p>	<p>陞資。 請啓殿下， 廉承源亦陞資。” 克增以啓， 命議坐次。 申叔舟、韓明澮啓曰：“世祖朝本國太監來時， 凡宴會， 請上坐北則從之。 今若強請， 從之無妨。” 天使至， 上出仁政門外迎入。 天使上殿， 請上坐北， 上固辭， 天使跪請不已， 上不得已南向近西而坐， 天使坐東。 行茶禮， 上親贈人情物： 雀舌茶三斗、 六張連幅油菴一事、 笠帽二十事、 毛馬粧一部、 弓一張、 大箭一部、 韃服具弓箭帽一部、 狐皮四十張、 交床一事、 上品表紙二卷、 中品表紙二卷； 頭目， 各笠帽三事、 扇子三把。 遂設宴， 上行酒。 密城君琛、 上黨府院君韓明澮、 仁山府院君洪允成、 昌寧府院君曹錫文、 寶城君容、 樂安君寧以次而行。 天使回杯訖， 手酌玉杯， 飲申叔舟、 韓明澮、 李克增、 吳伯昌， 遂罷黜。</p>
--	---	---

	<p>馬粧) 1부(部), 활[弓] 1장(張), 대전(大箭) 1부, 건복구 궁전모(鞬服具弓箭帽) 1부(部), 호피(狐皮) 40장(張), 교상(交床) 1벌[事], 상품 표지(上品表紙) 2권(卷), 중품 표지(中品表紙) 2권(卷)을 주었고, 두목[頭目]에게는 각각 입모(笠帽) 3벌[事], 선자(扇子) 3자루[把]를 주었다. 드디어 잔치를 베풀고, 임금이 술을 돌렸다.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인산 부원군(仁山府院君) 홍윤성(洪允成)·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 조석문(曹錫文)·보성군(寶城君) 이합(李咨)·낙안군(樂安君) 이영(李寧)이 차례대로 술을 돌렸다. 중국 사신이 술잔을 되돌리기를 마치고, 손수 옥배(玉杯)에 술을 따라서, 신숙주·한명회·이극중(李克增)·오백창(吳伯昌)에게 마시게 하고, 드디어 잔치를 파하고 나섰다.</p>	
<p>성종 6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6월 10일(정사) 6번째기사</p>	<p>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김수녕(金壽寧)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 등이 근래에 가뭄의 재앙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사신에게 맡겨서 직접 일을 헤아리도록 청하였으나, 가하다는 윤허(允許)를 받지 못하여 황송하고 유감되어서 감히 다시 천청(天聽)을 거듭 번독(煩瀆)하는 것입니다. 삼가 옛 선왕(先王)의 제도(制度)를 살펴보건대, 흉년(凶年)으로 굶주리는 해에는 위로 제왕(帝王)의 조정(朝廷)에는 사도(司徒)가 있어서 황정(荒政)549) 을 열 두 가지로 베풀어 백성을 모으고, 아래로는 유사(有司)가 제때에 임금에게 고(告)하여 창름(倉廩)을 열고 부고(府庫)를 열어서, 혹은 물건을 나누어 주고 쌓인 곡식을 옮겨 주기에 힘써서 좌우(左右)로 진휼(賑恤)해 구황(救荒)하였기 때문에, 비록 홍수(洪水)나 가뭄의 재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이 굶주려 죽는 자가 없었으니, 대개 선왕(先王)들도 또한 이들로 하여금 재앙이 없도록 하지는 못하였으나, 능히 재앙에 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재앙에 대비하는 길은 미리 준비하는 데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기록에도 이것이 있으니, 무릇 모든 일에 있어서는 미리 준비하면 이루어지고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면 실패하는 것이니, 모든 일에 있어서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황정(荒政)의 큰</p>	<p>○司諫院大司諫金壽寧等上疏曰： 臣等近以旱荒太甚，請委使體量，未蒙賜可，以悚以憾，敢再(讀)〔瀆〕天聽者。謹按古先王之制，凶年饑歲，上而王朝有司徒，荒政十二以聚民，下而有司以時告其上，發倉廩，開府庫，懋遷化居。以左右賑救之故，雖有水、旱凶荒，民無捐瘠。蓋先王亦不能使之無災，而能備災，備災之道，不過乎豫而已矣。於記有之，凡事預則立，不預則廢。凡事猶然，而況於荒政之大者乎？故豫爲之備，則官不多備，而民受賜；備之不豫，至於危迫，則雖巡問設粥，無補於存亡。竊觀《王風》</p>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미리 이를 위하여 준비하면 관(官)에서 많이 준비하지 않더라도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요,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면 위급하고 급박할 때에 이르러서 비록 순문(巡問)하여 구제할 죽(粥)을 마련하더라도 백성들이 살고 죽는 데 보탬이 없는 것입니다. 그옥이 《왕풍(王風)》의 시(詩)를 보건대, 그 1장(章)에 이르기를, ‘골짜기에 익모초가 있는데 그 가뭄[乾]에 말랐네.’라고 하였고, 2장(章)에 이르기를, ‘그 가뭄[脩]에 말랐네.’라고 하였고, 3장(章)에 이르기를, ‘그 가뭄[濕]에 말랐네.’라고 하였는데, 건(乾)이라는 것은 마른다는 뜻이고, 수(脩)라는 것도 마른다는 뜻이니, 가뭄이 아직도 심하지 않은 것이요, 습(濕)이라는 것에 이르면 또한 재앙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니, 가뭄이 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득불 집을 떠나서 훌쩍이며 울지 아니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詩)에 이르기를, ‘훌쩍이며 울지만 탄식을 한들 무슨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말을 다한 것이 심한 것입니다.

지금 지난 겨울철로부터 눈이 없었고, 봄에는 또한 비가 오지 아니하였으며, 여름 6월에 이르러서도 천맥(泉脈)이 이미 고갈되고, 산천(山川)이 이미 말라 버렸으니, 보리도 없고 벼도 없고 붉은 땅이 천리(千里)에 이어져, 비록 가뭄이 지극하기가 이때보다 더 심한 적이 없습니다. 또 마땅히 백 가지 일을 폐하여 버리고, 오로지 황정(荒政)에 힘써서 사신(使臣)을 사방에 보내어 황황(惶惶)히 주휙(賑恤)하여도 오히려 늦을까 염려가 되는데, 어찌 하루라도 천천히 늦게 하여서 시기를 놓쳐버릴 것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저 사람은 이들을 먹지 아니하면 굶주리는 것이고, 이레를 먹지 아니하면 죽는 것인데, 옛날 곡식은 이미 없어지고, 여름철 보리도 거두지 못하였으니, 지금 백성들 가운데 먹지 못하는 자들이 어찌 오로지 이레만을 먹지 못하였을 뿐이겠습니까? 나물 뿌리를 씹어 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짧은 동안의 목숨을 연명(延命)하는 자가 전리(田里)에 서로 바라보이는데도 이정(里正)은 수령(守

之詩一章曰：“中谷有蕓，嘆其乾矣!” 二章曰：“嘆其脩矣!” 三章曰：“嘆其濕矣!” 乾者嘆，脩者嘆，旱猶未甚也。至於濕者，亦不得免焉，則旱之極也。故不得不至於此離而啜泣。其曰：“啜其泣矣，何嗟及矣?” 言窮之甚也。今自去冬無雪，春又不雨，以至夏六月，泉脈已渴，山川已涸，無麥無禾，赤地千里，枯旱之極，未有甚於此時也。且當廢去百事，專務荒政，遣使四方，遑遑賑恤，猶恐晚暮，豈容舒遲一日，以失誤時會耶? 大抵人一日不食則飢，七日不食則死。舊穀已沒，夏麥不收，今民之不食者，豈特七日而已哉? 咬菜根，茹木皮，以延須臾之命者，相望於田里。而里正報守令，守令報監司，監司以聞朝廷，往復處置之間，民之轉于溝壑者必多。其不至於‘啜其泣矣，何嗟及矣?’者，蓋亦幾希矣。議者曰：“歲險民飢，遣使巡視，祇爲擾之，不若不遣之爲愈。” 臣等以爲，乘驛巡路，其弊小; 遣使賑飢，其益多。豈可以二三驛騎之煩，輕百萬赤子垂盡之命乎? 議者曰：“責之守令足矣，責之監司足矣。何煩於遣使?”

令)에게 보고하고, 수령은 감사(監司)에게 보고하며, 감사는 조정(朝廷)에 아
 되는 등 왕복하면서 처치(處置)하는 사이에 백성들 가운데는 구학(溝壑)551)
 에 굴러서 죽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시경(詩經)》에서 이른
 바 ‘홀찍이며 울지만 탄식을 한들 무슨 수가 있겠는가?’ 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는 자가 대개 또한 거의 드물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해가 흥
 년이고 백성이 굶주리는데 사신(使臣)을 보내어 순시(巡視)하게 하면, 다만 그
 들을 소요스럽게 할 뿐이니,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였으나, 신 등
 은 생각건대, 역마(驛馬)를 타고 길을 순행(巡行)하는 것은 그 폐단이 적고 사
 신을 보내어서 굶주린 사람을 진휼(賑恤)하는 것은 그 이익이 많은데, 어찌
 두세 역(驛)에 말을 타는 번거로움 때문에 백만의 적자(赤子)들의 떨어지는
 목숨을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수령(守令)에게 책임
 을 지우면 족하고, 감사(監司)에게 책임을 지우면 족한데, 어찌 사신을 보내
 어 번거롭게 하겠는가?’고 하였으나, 신 등이 생각건대, 수령이 어질다면 감
 사는 할 일이 없을 것이요, 감사가 어질다면 조정(朝廷)이 할 일이 없을 것인
 데, 마땅히 여러 도(道)를 감사(監司)에게 부탁하고 여러 고을을 수령(守令)에
 게 부탁할 따름이나, 그런데도 오히려 면(免)하지 못하여 어떤 때는 과면하여
 보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유(告諭)하기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감사와 수령을 혹시 그 적당한 사람을 다 얻지 못하고, 더구나 일을 혹시 인
 순(因循)하는 정도에 그치는데도 점검(點檢)하겠다고 경고한들 오로지 맡은
 일에만 힘쓸 것이요, 나누어 맡은 일을 폐할 것이니, 황정(荒政)의 큰 일을
 다만 감사(監司)나 수령(守令)에게만 맡긴다는 것은 신 등이 그 옳은 것을 알
 지 못하겠습니다. 의논하는 자가 또 말하기를, ‘여름철에 보리가 아직도 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물도 오히려 먹을 만하므로, 백성들이 심히 병들지 아니
 하였으니, 천천히 그 형세를 보아 가면서 사신을 파견하여 진휼(賑恤)하더라
 도 또한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신 등이 생각건대, 세민(細民)553)

臣等以爲, 守令而賢, 則監司無事; 監
 司而賢, 則朝廷無事。 當以諸道付監
 司, 諸邑付守令而止耳。 然猶不免或
 罷遣焉, 或告諭焉, 何也? 監司、守
 令, 或未盡得其人也。 況事或安於因
 循, 而警於點檢, 立於任專, 而廢於務
 分, 則以荒政之大, 只委之監司、守
 令, 臣等未知其可也。 議者又曰: “夏
 月麥猶未罄, 菜猶可茹, 民未甚病, 徐
 觀其勢, 遣使賑恤, 亦未晚也。” 臣等
 以爲, 細民之於常歲, 勤動三時, 僅備
 冬春, 日望牟麥, 甚者, 麥尙青青, 熬
 以爲餅。 未銓艾而麥已盡, 麥盡而繼
 之以黍粱, 黍粱盡而繼之以早稻, 此田
 家常事也。 今麥已不收, 黍粱及稻,
 亦已無望, 而猶曰: “今時則民猶有粟,
 未甚艱食。” 其亦不思而已矣。 我國
 上腴之田少, 磽确之田多, 樂歲猶且不
 給, 況凶年乎? 臣等聞, 心痛無緩聲,
 事急無徐行。 當今之事, 宜莫急於荒
 政, 不汲汲早圖之, 其措置之策, 亦且
 徒憑文字, 遙度而爲之, 恐非所以預講
 荒政之盛意也。 伏望睿裁, 特差朝官,
 面賜指揮, 巡視諸道, 預舉荒政事件,
 加惠元元, 無使一夫失所, 不勝幸甚。

	<p>들이 보통 해에도 세 철 부지런히 움직여야 겨울과 봄철에 대비할 수 있는데, 날마다 밀·보리가 익기를 바라고, 심한 자는 아직도 보리가 푸른데 이를 볶아서 보리떡으로 만들어 먹으니 낫으로 베지도 아니하였는데 보리가 이미 다 없어지며, 보리가 다 떨어지면 기장으로써 끼니를 잇대며, 기장이 다하면 올벼로써 끼니를 잇대는데, 이것이 농가에 흔히 있는 일입니다. 지금 보리를 이미 거두지 못하였고, 기장과 벼도 또한 이미 거둘 가망이 없는데도 오히려 말하기를, ‘지금 이때는 백성들이 아직도 먹을 곡식이 있고, 먹기에 심히 어렵지 아니하다.’고 하니, 그것은 또한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아주 기름진 전지(田地)는 적고 아주 메마른 전지가 많으므로 풍년에도 오히려 또한 넉넉하지 못한데, 하물며 흉년이겠습니까?</p> <p>신 등이 듣건대, 마음이 괴로우면 느슨하게 말할 수가 없고, 일이 급하면 천천히 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당한 일이 마땅히 황정(荒政)보다 급한 것이 없으니, 급급하게 빨리 이를 도모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措置)하는 방책도 또한 한갓 문자(文字)에 의지하여 멀리서 이를 헤아려서 행한다면, 황정(荒政)을 미리 강구하는 거룩한 뜻이 아닐까 합니다. 엿드려 바라건대, 예단(睿斷)으로 재결(裁決)하여 특별히 조관(朝官)을 임명하여 직접 지휘(指揮)를 내리시고, 여러 도(道)를 순시(巡視)하게 하여, 미리 황정(荒政)의 사건을 거행하여 원원(元元)에게 은혜를 더하여, 한 사람의 지아비라도 잃지 않도록 한다면 이보다 더 다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p> <p>하였다.</p>	
<p>성종 6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6월 11일(무오) 6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금년 봄부터 여름까지 가물고 비가 오지 아니하니, 반드시 실농(失農)하기에 이를 것이나, 여러 고을에서 저축한 곡식의 숫자가 적으니, 진휼(賑恤)할 길이 없으므로, 진실로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구황(救荒)하는 데 시행할 만한 조건과 백성들을 너그럽게 하고 비용을 줄일 여러 가지 일을 상의(商議)하여,</p>	<p>○戶曹啓: “今年自春徂夏, 亢陽不雨, 必至失農, 而諸邑儲穀數少, 賑恤無由, 誠爲可慮。 救荒可行條件及寬民省費等事, 商議後錄。 一。 早穀, 愚民隨熟盡食, 明年之種可慮。 令守令,</p>

	<p>뒤에 기록합니다.</p> <p>1. 올곡식[早穀]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익는 대로 다 먹으므로, 명년의 종자가 염려스럽습니다.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숙고(稼庫)의 묵은 곡식을 가지고 바꾸어 바치게 하여, 명년의 곡식에 대비하게 하소서.</p> <p>1. 여러 고을의 공물(貢物) 가운데에 전수(轉輸)하기에 불편한 물색(物色)과 긴요치 아니하여 면제할 만한 공물을 적당히 줄이게 하소서.</p> <p>1. 여러 고을에 나누어 기르는 말과 호곶이[壺串]·홍원곶이[洪原串]에 머물러 두고 기르는 말의 요(料)는 황두(黃豆)가 1년에 4천 1백 58석(碩)인데, 사복시(司僕寺)로 하여금 적당히 줄이게 하소서.</p> <p>1. 여러 고을에 나누어 기르는 소[牛]의 요(料)는 황두(黃豆)가 1년에 1천 6백 36석(碩)인데, 관(官)에서 소를 쓰지 않는 곳에서는 우선 시장값[市直]에 따라서, 화매(和賣)하도록 하여 관(官)의 창고에 바치게 하소서.</p> <p>1. 사복시(司僕寺)의 마료(馬料)인 황두(黃豆)와 풀[草]은 오랜 시일 동안 적당히 줄이게 하소서.</p> <p>1. 사복시(司僕寺)에 산행(山行)하는 사람의 마료(馬料)는 여러 고을의 숙고(稼庫)의 쌀과 콩으로 제급(題給)하는데, 이로 인하여 쌀과 콩이 날마다 줄어들어 듭니다. 더군다나 양주(楊州)와 광주(廣州) 등의 고을에서는 황두(黃豆)로서 저장된 것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관원(官員)과 그 마료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제원(諸員)은 다른 군사의 예(例)에 의해서 스스로 양식을 준비하도록 하고, 만약 생초(生草)를 줄 때에는 마료도 또한 줄이게 하소서.</p> <p>1. 사복시(司僕寺)의 거우(車牛)의 요(料)는 황두(黃豆)가 1년에 1백 32석(碩)인데, 위의 거우는 오로지 마료와 교초(郊草)를 전수(轉輸)하려고 마련한 것이니, 지금 1년의 마료의 숫자를 계산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본시(本寺)에 바치도록 하고, 교초(郊草)는 제원(諸員)으로 하여금 전수하게 하고, 그 거우(車牛)는 화매(和賣)하게 하소서.</p>	<p>用稼庫陳穀換納，以備明年之種。</p> <p>一。諸邑貢物內，輸轉不便物色，及不緊可除貢物量減。一。諸邑分養馬及壺串、洪原串留養馬料黃豆，一年，四千一百五十八碩。令司僕寺量減。一。諸邑分養牛料黃豆，一年，一千六百三十六碩，而官無用牛處，姑令從市直和賣，納官倉。一。司僕寺馬料黃豆，草長時量減。一。司僕寺山行人馬料，以諸邑稼庫米、豆題給，因此米、豆日減。況楊州、廣州等官，則黃豆無遺儲，如官員及馬料則已矣，諸員依他軍士例，令自備糧，若生草時，則馬料亦減。一。司僕寺車牛料，一年，黃豆一百三十二碩。右車牛，專以輸轉馬料，郊草而設。今計一年馬料數，令民直納於本寺，郊草，令諸員輸轉，其車牛則和賣。一。東、西活人署幹事僧及病人、件作人料，限明年秋成，權除。一。中外公私不緊徵債，限明年秋成，停之。一。橡實，救荒緊用之物。令諸邑人戶，勿論彼我境，多數拾取。”命院相議之，申叔舟等議：“御乘馬料，草長時五升，今減一升；左、右邊大馬四</p>
--	--	---

	<p>1. 동활인서(東活人署)·서활인서(西活人署)의 간사승(幹事僧) 및 병자[病人]·오작인(件作人)의 요(料)는 명년 가을까지를 기한하여 임시로 제하게 하소서.</p> <p>1. 중외(中外)의 공사(公私)에 긴요치 아니하게 징수하는 채무는 명년 가을철까지 기한하여 이를 정지하게 하소서.</p> <p>1. 도토리는 구황(救荒)에 긴요하게 쓰이는 물건이니, 여러 고을의 인호(人戶)로 하여금 피아(彼我)의 지경(地境)을 물론하고 많은 숫자를 주워서 얻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원상(院相)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신숙주(申叔舟) 등이 의논하기를,</p> <p>“어승마(御乘馬)의 요(料)는 풀이 자랄 때는 5승(升)으로 하였는데 지금 1승(升)을 줄이고, 좌우변(左右邊)의 큰 말[大馬]은 4승(升)이었는데 지금 2승(升)을 줄이며, 마료를 수송하여 들이는 일은 계목(啓目)대로 하며, 거우(車牛)는 적당히 남겨두고, 없앨 것은 모두 화매(和賣)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升，今減二升。馬料輸入事，依啓目，車牛量留，除皆和賣。”從之。</p>
<p>성종 6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6월 12일(기미) 7번째기사</p>	<p>중국사신이 김효문(金孝文)·김담(金淡) 등의 집에 가니, 임금이 좌부승지(左副承旨) 정효상(鄭孝常)에게 명하여 선운(宣醞)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p>	<p>○天使往金孝文、金淡等家，命左副承旨鄭孝常，齎宣醞，往慰。</p>
<p>성종 6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6월 13일(경신) 3번째기사</p>	<p>중국 사신이 김순복(金純福)의 집에 갔다가 드디어 흥천사(興天寺)에 가서 향(香)을 올리니,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이극증(李克增)에게 명하여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중국 사신(使臣)이 정선(鄭善)·정거(鄭舉) 등의 집에 들리니, 임금이 우부승지(右副承旨) 이승원(李崇元)에게 명하여 선운(宣醞)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p>	<p>○天使往金純福家，遂往興天寺點香，命都承旨李克增，往慰。天使又歷入鄭善、鄭舉等家，命右副承旨李崇元，齎宣醞，往慰。</p>
<p>성종 6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6월 19일(병인)</p>	<p>중국 사신(使臣)이 원각사(圓覺寺)에 가서 향(香)을 올리니,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이극증(李克增)에게 명하여 가서 이들을 위로하게 하였다. 중국 사신이 또 차효주(車孝綸)【중국 조정에 들어간 처녀의 족친(族親)이다.】·김징(金澄)·</p>	<p>○天使往圓覺寺點香，命都承旨李克增，往慰之。天使又往車孝綸、【入朝處女族親。】金澄、尹吉生、崔繼</p>

3번째기사	윤길생(尹吉生)·최계종(崔繼宗)·강계숙(姜繼叔) 등의 집에 【김징 등은 모두 태감(太監)의 족친이다.】 가니, 임금이 좌부승지(左副承旨) 정효상(鄭孝常)에게 명하여 선은(宣醢)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宗、姜繼叔等家，【澄等竝太監族親。】命左副承旨鄭孝常，齎宣醢往慰。
성종 6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6월 22일(기사) 3번째기사	고령 부원군(高靈府院君) 신숙주(申叔舟)·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능성 부원군(綾城府院君) 구치관(具致寬)이 와서 아뢰기를, “성상께서 한재(旱災)를 진념(軫念)하여 이에 감선(減膳)하기에 이르렀으나, 여러 도의 감사(監司)로서 한 사람도 농사에 대하여 상세히 아뢰는 자가 없으니, 이것은 반드시 성상께서 가뭄을 걱정하시는 모양을 알지 못하는 때문일 것인데, 하물며 궁촌 벽항(窮村僻巷)에 사는 어리석은 소민(小民)들이겠습니까? 청컨대 조관(朝官)을 보내어 조정(朝廷)의 뜻을 밝게 유시(諭示)하고, 또 화곡(禾穀)과 우택(雨澤)과 비황(備荒)과 형옥(刑獄) 등의 일을 겸하여 살피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가하다.” 하고, 이어서 선공감 정(繕工監正) 이수생(李壽生)·종부시 첨정(宗簿寺僉正) 조원지(趙元祉)·소격서 령(昭格署令) 손순효(孫舜孝)·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 고태정(高台鼎)·상의원 정(尙衣院正) 윤귀산(尹龜山)을 경기(京畿)와 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충청도(忠淸道) 등에 나누어 보냈다.	○高靈府院君申叔舟、上黨府院君韓明澮、綾城府院君具致寬來啓曰：“上軫念旱災，乃至減膳，而諸道監司無一詳啓農事者，是必不曉聖上憂旱之(竟) [意] 也。況窮村僻巷，蚩蚩小民乎？請遣朝官，曉諭朝廷之意，且令兼審禾穀、雨澤、備荒、刑獄等事。” 傳曰：“可。” 仍分遣繕工監正李壽生、宗簿寺僉正趙元祉、昭格署令孫舜孝、成均館司成高台鼎、尙衣院正尹龜山于京畿、慶尙、全羅、忠淸等道。
성종 6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6월 22일(기사) 5번째기사	중국사신이 기유(奇裕) 【중국 조정에 들어간 처녀의 족친(族親)이다.】 의 집에 가니, 도승지(都承旨) 이극증(李克增)에게 명하여 선은(宣醢)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天使往奇裕家。【入朝處女族親。】命都承旨李克增，齎宣醢往慰。
성종 6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6월 28일(을해) 3번째기사	중국 사신(使臣)이 잠두령(蠶頭嶺) 등지에 유람(遊覽)하다가 선어(鮮魚) 10여 마리를 잡아서 진상(進上)하고, 배가 가다가 담담정(淡淡亭)에 이르러 잔치를 베풀니, 우승지(右承旨) 한계순(韓繼純)이 선은(宣醢)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고, 고령 부원군(高靈府院君) 신숙주(申叔舟)가 명령을 받들고 가서 참여하였	○天使遊觀于蠶頭嶺等處，得鮮魚十餘尾，進上，舟行至淡淡亭，設宴。右承旨韓繼純，宣醢往慰；高靈府院君申叔舟，承命亦與焉。

	다.	
성종 6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7월 3일(기묘) 3 번째기사	중국사신이 한치인(韓致仁)의 집에 가니, 좌승지(左承旨) 윤계겸(尹繼謙)을 보내어 선온(宣醞)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중국 사신이 드디어 훈련원(訓練院)에 가서 무사(武士)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니, 임금이 고령 부원군(高靈府院君) 신숙주(申叔舟)에게 명하여 선온(宣醞)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는데, 잔치가 이미 파(罷)하자, 중국 사신이 김담(金淡)의 집에 들렀다.	○天使往韓致仁家，遣左承旨尹繼謙，齎宣醞慰之。天使遂往訓練院，觀武士射，命高靈府院君申叔舟，齎宣醞往慰。既罷，天使歷入金淡家。
성종 6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7월 6일(임오) 5 번째기사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사복시(司僕寺)에서 소의 유즙(乳汁)612) 이 장차 다하면 그 소들을 경기(京畿) 고을의 백성들 젖소[乳牛]와 마음대로 바꾸니, 백성들이 자못 이를 괴롭게 여겼습니다. 금후로는, 청컨대 여러 고을에 나누어 기르는 소를 면포(綿布)와 화매(和賣)하여, 백성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암소[牝牛] 70두(頭)와 바꾸어서, 경기의 여러 고을에 나누어 기르게 하여 취용(取用)하게 하며, 만약 또 부족하면 여러 섬의 소를 젖소와 바꾸어 나누어 기르게 하여서 쓰임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戶曹啓：“前此，司僕寺牛乳汁將盡，則以其牛，勒換畿邑民乳牛，民頗苦之。今後，請以諸邑分養牛，和賣綿布，從民願換牝牛七十頭，分養京畿諸邑取用，如又不足，以諸島牛，量換乳牛，分養待用。”從之。
성종 6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7월 7일(계미) 2 번째기사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지금 우택(雨澤)이 두루 흠족하니, 각전(各殿)의 공상(供上)과 향온(香醞)은 옛날대로 봉진(封進)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공상(供上)은 부족하지 아니하다. 다만 지금 매우(霾雨)를 당하여 향온(香醞)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承政院啓曰：“今雨澤周足，各殿供上及香醞，依舊封進，何如?” 傳曰：“供上非不足也。但今當霾雨，進香醞，可也。”
성종 6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7월 7일(계미) 6 번째기사	전지(傳旨)하기를, “지금 우택(雨澤)이 이미 흠족하니, 술[酒]을 금지하는 명령을 없애도록 하라.” 하니 우부승지(右副承旨) 이승원(李崇元)이 아뢰기를,	○傳曰：“今雨澤已足，其除酒禁。” 右副承旨李崇元啓曰：“前者禁酒時，并禁餅、果，今并除禁乎?” 傳曰：“餅、果，糜費穀粟尤甚，不可不禁。”

	<p>“전자에 금주(禁酒)하였을 때에 아울러 병과(餅果)629) 도 금지하였는데, 지금 아울러 병과를 금지하는 것도 없앨 것입니까?”</p> <p>하니 전지하기를,</p> <p>“병과(餅果)는 곡속(穀粟)을 허비하는 것이 더욱 심하니, 금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p> <p>하였다.</p>	
<p>성종 6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7월 8일(갑신) 6 번째기사</p>	<p>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서장(李恕長)에게 유시(諭示)하기를,</p> <p>“도내(道內)의 연변(沿邊)에 있는 여러 고을에 저축한 곡식이 넉넉하지 아니한데, 금년에 가뭄이 심하니, 구황(救荒)할 준비를 미리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내지(內地) 여러 고을의 쌀 7천 석(碩)을 김해(金海)로 옮겨서 주고 3천 석(碩)을 동래(東萊)로 옮겨서 주되, 농한기에 조전(漕轉)하는 것이 가하다.”</p> <p>하였다.</p>	<p>○諭慶尙道觀察使李恕長曰：“道內沿邊諸邑所儲之穀不敷，而今年旱甚，救荒之備，不可不預慮。今以內地諸邑米七千碩，移給金海；三千石，移給東萊，可於農隙漕轉。”</p>
<p>성종 6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7월 9일(을유) 6 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p> <p>“금년은 가뭄으로 인하여 수전(水田)이 부실(不實)하므로,明年的 곡식 종자는 모름지기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니, 청컨대 군자창(軍資倉)의 묵은 곡식을 가지고 햇곡식과 바꾸어서明年的 종자를 준비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據忠淸道觀察使啓本啓：“今年，因旱，水田不實，明年穀種，須當預峙。請以軍資倉陳穀，換新穀，以備明年之種。”從之。</p>
<p>성종 6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7월 9일(을유) 8 번째기사</p>	<p>병조(兵曹)에서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예승석(芮承錫)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 제2조는, 원주(原州)의 각림사(覺林寺)에 소금을 전수(轉輸)하는 일입니다. 본 절에는 해마다 소금 40석(碩)을 주는데, 이보다 앞서는 절의 중[僧]들이 전수(轉輸)하였으나, 병술년 부터는 역리(驛吏)로 하여금 강릉부(江陵府)에 주어서 절에 전수(轉輸)하게 하였으니, 꼬불꼬불한 길이 60여 리(里)이므로 우마(牛馬)가 많이 죽습니다. 만약 그 양(量)이 축난 것이 있으면 징수하여 독촉하는 것이 잇따르니, 그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p>	<p>○兵曹據江原道觀察使芮承錫啓本啓：(…) 第二條，原州覺林寺鹽輸轉事。本寺，歲給鹽四十碩，前此寺僧輸轉，自丙戌年，令驛吏，受於江陵府，轉輸於寺，崎嶇六十餘里，牛馬多斃。若有虧欠，徵督隨之，不堪其苦。本寺多畜牛馬，四十碩之鹽，又非一時併</p>

	<p>본 절에는 소와 말을 많이 기르며 40석(碩)의 소금을 또한 일시에 다 쓸 수가 없으니, 유수(遊手)의 무리들로 하여금 점차로 운수(運輸)하게 하여서 역로(驛路)의 폐단을 없애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用，令游手輩，漸次輸運，以除驛路之弊，何如？”從之。</p>
<p>성종 6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7월 23일(기해) 4번째기사</p>	<p>원상(院相) 신숙주(申叔舟)·윤자운(尹子雲) 및 승지(承旨) 등이 아뢰기를, “금년 농사는 물이 있는 곳에서는 화곡(禾穀)이 무성하게 되었고, 비록 물이 없더라도 때에 따라서 풀을 베어버린 곳에서도 또한 그 다음으로 되었으니, 한가지로 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도(道)의 감사(監司)로서 답험(踏驗)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나, 위관(委官)의 작폐(作弊)가 적지 아니하니, 청컨대 조관(朝官)을 택하여 보내어서 한재(旱災)의 손상을 조사하여 살피게 하소서.”</p> <p>하니 전지하기를, “가하다.”</p> <p>하였다. 또 아뢰기를, “금년은 비록 완전히 실농(失農)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사이에 생업(生業)을 잃은 자가 많으니, 구황(救荒)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는 없습니다. 무지(無知)한 소민(小民)들이 후일에 살아갈 방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찬(酒饌)으로 <곡식을> 허비하니, 청컨대 민간에서 술을 쓰는 것을 금지하게 하소서.”</p> <p>하니 전지하기를, “가하다.”</p> <p>하였다.</p>	<p>○院相申叔舟、尹子雲及承旨等啓曰：“今年農事，有水處，禾穀茂盛；雖無水，趁時除草處，亦次之，不可以一概視之。諸道監司有欲踏驗者，然委官作弊不貲。請擇遣朝官，審檢災傷。”傳曰：“可。”又啓曰：“今年，雖非全失農，然其間失業者多，救荒不可少弛。無知小民，不計後日生理，糜費酒饌，請禁民間用酒。”傳曰：“可。”</p>
<p>성종 7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8월 6일(신해) 7 번째기사</p>	<p>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이계손(李繼孫)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지금 경의 아된 것으로 인하여 아직 남도 절도사 및 평사(評事)는 두지 아니하고, 다만 우후(虞候)와 거느리고 있는 군관(軍官) 2인만 머무르게 하니, 경(卿)이 남도의 군무(軍務)도 겸하여 관장하고, 평사 및 군관 10인을 돌려보내라. 또 아된바 구황(救荒)할 쌀과 밀가루는 함흥(咸興) 이남 여러 고을의 군자창(軍資倉) 양곡에서 5천 석을 주니, 경이 아된 대로 민간의 배로 운반하여</p>	<p>○諭永安道觀察使李繼孫曰：“今因卿啓，姑罷南道節度使及評事，只留虞候及所帶軍官二人。卿其兼管南道軍務，評事及軍官十人可遣還。且所啓救荒米、麩，以咸興以南諸邑軍資倉穀五千碩給之。依卿啓，以私船漕轉，以賑</p>

	<p>홍원(洪原)·북청(北靑)·이성(利城) 세 고을의 백성을 구휼하라. 북청은 지금 부사(府使)를 두지 않아서 구황의 모든 일이 혹 소홀해질까 염려되니, 본고을의 판관(判官)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구황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고, 경도 또한 마음을 두어서 수시로 살피고 조사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주리게 하지 말라.” 하였다.</p>	<p>洪原、北靑、利城三邑之民。北靑，則今革府使，救荒諸事，慮或虛疎。令本邑判官專委賑恤，卿亦用心，不時糾檢，勿使民飢。”</p>
<p>성종 7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8월 15일(경신) 3번째기사</p>	<p>전지하기를, “전에 다섯 전(殿)의 명일(名日)의 진상에는 가축을 잡지 말게 하였는데 금일의 정부와 육조(六曹)의 진상에 어찌하여 다시 가축을 진상하였는가? 금후로는 대전(大殿)에 올리는 병아리 10수(首) 외에는 각 전(殿)의 진상에 가축을 사용하지 말고, 여러 가지 과실도 또한 한 소반만 진상하라.” 하였다</p>	<p>○傳曰：“前者，五殿名日進上，令勿宰殺家畜；今日，議政府、六曹進上，何復進乎？今後，大殿雞兒十首外，各殿進上，勿用家畜，諸色果實，亦只進一盤。”</p>
<p>성종 7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8월 24일(기사) 2번째기사</p>	<p>일본 국왕(日本國王) 회수납정소(懷守納政所) 이세수(伊勢守) 정친(政親)이 보낸 입도(入道)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정친은 삼가 글을 조선국 의정부(議政府) 합하(閣下)에게 바칩니다. 공손히 바라건대 나라가 크게 평안해서 금상 황제(今上皇帝)의 어위(御位)가 오래도록 가소서! 폐하(陛下)께서는 공손히 덕(德)이 건곤(乾坤)과 일치하여 당(唐)·우(虞)742)의 어질고 장수하는 지역(地域)을 보전하고, 현성(賢聖)을 신하로 모아서 이(伊)·주(周)743)의 순수하고 소박한 기풍을 회복하도록 원하며, 성의를 다하여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상(扶桑) 전하의 높은 명령에 응하여 같은 날에 서계를 봉하여 조선(朝鮮)과 유구(琉球)의 두 나라에 사선(使船)을 보냅니다. 이는 나의 개인적인 의사가 아니니, 이와 같은 간절한 뜻을 폐하에게 주달(奏達)하여서 허락하여 주시면 오직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일본의 관령(管領) 세천(細川)과 산명(山名)은 사사로운 야심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세천도 호군(胡軍)을 더해서 제후(諸侯)가 있고, 또 산명도 호군을 더하여 제후가 있어서 일본의 서울은 크게 어지럽습니다. 내가 토벌하여 비록 정지시키려고 하나, 아직 그치지 아니하니, 거듭 세천과 산명 두</p>	<p>○日本國王懷守納政所伊勢守政親，遣入道等，來獻土宜。其書契曰： 政親謹奉書朝鮮國議政府閣下：冀惟太平，今上皇帝御位，萬歲、萬歲。陛下恭願德齊乾坤，保唐、吳〔虞〕仁壽之域；臣聚賢聖，復伊、周淳素之風，至祝、至祝。爰應扶桑殿下貴命，而同日封書朝鮮、琉球兩國渡使船者也。聊余非私意耳，如此懇切之意，趣達上聞，而許賜容者，惟幸。諭是日本管領細川與山名，以私意，烽起干戈，故細川加胡軍有諸侯；且又山名加胡軍有諸侯，而日本京城大亂也。余爲征伐而雖停止，未休止，則重重細</p>

	<p>사람의 태만한 죄과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천이 이겨도 좋고 저도 좋으며, 또 산명이 이겨도 좋고 저도 좋은데, 서로 부상 전하의 높은 명령에 따른다고 하여 두 진영의 모든 군사가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하면서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접전하여 수만의 호군이 함께 죽어 갑니다. 이에 내가 부상 전하의 특별 명령을 받들어 일본 나라 동남서북의 입도(入道)들에게 제후의 모든 군사를 모으게 하여 세천과 산명 두 사람의 큰 진성(陣城)을 향하여 출발시켜 포위하고 태평(太平)을 거두고자 하여, 사선(使船)과 부선(副船)을 건너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국의 남은 힘을 입고자 하는데, 바라는 물건은 면주(綿紬) 3천 필, 면포(綿布) 5천 필, 백저포(白苧布) 1천 필, 쌀 5천 석이니, 자비로 살피소서. 오직 우리 나라의 태평을 거두고 더 나아가 번신(藩臣)으로서의 충성된 공훈을 세우기를 빕니다. 보잘것 없는 토산물을 별폭(別幅)에 갖추었습니다. 바야흐로 새 눈이 온 산을 뒤덮었으니 풍년이 들길조(吉兆)입니다. 이만 그칩니다. 별폭은, 금(金) 2원(員) 21냥중[兩], 주(朱)746) 4포(包) 40냥중, 대도(大刀) 15파(把), 단자(段子) 1필, 수자(繻子) 1필, 부채[扇子] 50본(本)입니다. 받아주시면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p>	<p>川、山名兩仁之怠慢罪過不少。于今細川勝好負好，山名勝好負好，依放扶桑殿下貴命。而兩陣諸軍兵，予勝哉，日日夜夜，合戰數萬胡軍共死矣。此則予承扶桑殿下之征夷，日本國東南西北入道，集諸侯、諸軍，而發向細川與山名兩大陣城，圍而欲收太平，所以渡使船、同副船焉。欲蒙大國之餘力，所望物件，縣紬三千匹、綿布五千匹、白苧布一千匹、米五千碩。慈察惟禱。收吾國太平，而尙以可抽藩臣忠勳者也。不腆之方物，具于別幅。卽新雪覆千山，豐年嘉瑞。餘事不宣。別幅：金二員二十一兩、朱四包四十兩、大刀十五把、段子一匹、繻子一匹、扇子五十本，采納多幸。</p>
<p>성종 7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8월 29일(갑술) 6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하여 효령 대군(孝寧大君)의 부인(夫人) 정씨(鄭氏)에게 부의로 미두(米豆) 합하여 70석과 종이 1백 권, 석회 1백 석을 내려 주게 하였다.</p>	<p>○傳旨戶曹，賜孝寧大君夫人鄭氏賻米、豆并七十碩、紙一百卷、石灰一百碩。</p>
<p>성종 7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8월 30일(을해) 2번째기사</p>	<p>원상(院相) 및 호조(戶曹)·예조(禮曹)에 명하여 뇌충(賴忠)과 정친(政親)이 청구한 물화(物貨)에 대한 지급 수량을 의논하게 하였다. 신숙주(申叔舟)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뇌충에게는 면포 5백 필, 정포(正布) 1천 필, 정친에게는 면포 1천 필, 정포 1천 필, 쌀 5백 석을 내려 주는 것이 어떠합니까?”</p>	<p>○命院相及戶曹、禮曹，議賴忠、政親求請物貨應給數。申叔舟等議啓曰：“賴忠，賜縣布五百匹、正布一千匹；政親，賜綿布一千匹、正布一千匹、米五百碩，何如？”傳曰：“可。”</p>

	<p>하니 전지하기를, “가하다.” 하였다.</p>	
<p>성종 7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9월 1일(병자) 1 번째기사</p>	<p>전지하기를, “무릇 제향에 쓰는 물건과 임금에게 바치는 물건을 모든 관청의 관원이 감독 하여 진상하지 않고 노비를 시켜서 진상하게 하니, 정결하지 않을 듯하다. 문 소전(文昭殿)의 제사에 쓸 물건과 음식물은 봉상시(奉常寺)로 하여금 수납하 게 하지 말고, 예전대로 본전(本殿)에서 수납하여 내주어 쓰도록 하라.” 하였다.</p>	<p>○朔丙子/傳曰: “凡祭享及供上之物, 諸司官員不監進, 使奴婢進排, 恐不精潔。 文昭殿物膳, 勿令奉常寺收納, 依舊本殿收納支用。”</p>
<p>성종 7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9월 1일(병자) 5 번째기사</p>	<p>대마주 선위관(對馬州宣慰官) 사역원 첨정(司譯院僉正) 전양민(田養民)이 하직 하였다. 그가 가지고 가는 글에 이르기를, (….) 1. 귀도 사람이 우리 나라 여 러 섬에 와서 고기 낚는 자가 연이어 끊어지지 않으므로 만일 엄격하게 금하 고 막는 법을 세우지 않으면 간사한 무리가 반드시 그것을 인하여 사건을 일 으킬 것이므로, 선도주와 더불어 약정하기를, ‘배마다 1인을 남겨 두어 볼모 로 삼고, 우리 나라 수군 1인이 데리고 고초도(孤草島) 등지에 가서 고기를 낚게 한다.’고 하였고, 또 ‘고기를 낚는 자는 도주의 삼착 도서(三着圖書)를 가지고 지세포(知世浦)에 도착하여 문인을 본포(本浦)에 납부하면, 만호(萬戶) 가 다시 문인을 발급하여 정한 곳 외에는 횡행하지 못하게 하고, 낚시질이 끝 나면 지세포에 돌아와 만호가 발급한 문인과 어세(魚稅)를 바친 후 <만호 가> 도주의 문인에 회비(回批)를 써서 환부하고, 문인 없이 몰래 온 자 및 몰래 무기를 가지고 여러 섬에 횡행하는 자는 도적 배로 논한다.’고 약속하였 습니다. 이 약속은 매우 엄격한데, 근래에 고기를 낚는 자가 약속에 의하지 않고 여러 섬에 횡행하고, 혹은 우리 변방 백성 가운데 채포(採捕)하는 자를 만나면 서로 더불어 겁탈하여 죽입니다. 전에 귀도 사람 좌위문오랑(左衛門五 郎)이 변방 백성에게 피살되었는데, 우리가 이미 죽인 자를 국문하여 주벌(誅 罰)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우리 나라 전라도 발포(鉢浦)의 선군 26인이 바다</p>	<p>○對馬州宣慰官司譯院僉正田養民辭。 其齋去書曰: (….) 一。 貴島人至我國諸島釣魚者, 絡繹不絕, 若不嚴立禁防, 姦細之徒, 必有因而生釁者。 故與先島主定約: “每船留一人爲質, 以我國船軍一人, 押行前往孤草島等處, 釣魚。” 又約: “釣魚者, 受島主三着圖書文引, 到知世浦, 納文引, 本浦萬戶改給文引, 定處外不許橫行。 釣魚事畢, 又於知世浦, 還納萬戶所給文引及魚稅後, 回批島主文引, 還付之。 其有無文引潛來者及潛齎兵器橫行諸島者, 論以賊船。” 此約甚嚴, 近來釣魚者, 不依約橫行諸島, 或遇我邊民採捕者, 相與刼殺。 前者, 貴島人左衛門五郎, 爲我邊民所殺, 我已鞫問而誅之。 今正月, 我國全羅道鉢浦船</p>

에 나가서 채포하다가 귀도의 횡행하는 자를 만나 전효은(田孝閔) 등 4인이 살해되었고, 배 안의 짐물(什物)도 다 약탈하여 갔으니, 족하는 마땅히 추궁하여 간사한 자를 징계해야 합니다. 무릇 원한의 싹은 처음은 비록 지극히 미세하나, 끝은 반드시 하늘에까지 넘치게 되니, 미리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고기 낚는 사람들이 선군에게 인질로 잡혔다가 압령되는 일은 피차 다 기탄하고 있으므로 거행할 수 없으나, 문인에 회비하는 것은 옛 법에 의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법을 세운 지가 이미 오래되어, 혹 어리석은 백성이 모르고 법을 범할까 두려워서 하는 것이니, 족하는 거듭 밝혀서 검거하고 널리 알려져 틈이 생기지 말게 하십시오.”

하였다. 그들에게 내려 주는 물건은, 종정국(宗貞國)에게 말 안장 1부, 모든 부속 도구를 갖춘 말 1필(匹), 흑마포(黑麻布) 10필(匹), 백면포(白綿布) 10필(匹), 백면주(白綿紬) 10필(匹), 호피(虎皮)·표피(豹皮) 각각 2장(張), 중고(中鼓) 1면(面), 징[鉦] 1구(口), 인삼(人蔘) 20근(斤), 쌀·콩 각 50석(石), 청밀(淸蜜) 10두(斗), 잣[栝子] 15두(斗), 소주(燒酒) 30병(瓶), 청주(淸酒) 1백 병(瓶), 계(桂) 2각(角), 다식(茶食) 2각(角), 채화석(彩花席) 10장(張), 연 4폭 유석(連四幅油席) 2사(事), 연 6폭 주석(連六幅紬席) 2사(事)이고, 또 별도로 종정국의 처자에게 쌀·콩 각 50석을 주었다. 【이때에 종정국은 소이전(小二殿)의 군중(軍中)에 가고 처자만이 대마도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이 선물이 있었다.】 소이전(小二殿) 뇌충(賴忠)에게 말 안장 1부, 모든 부속 도구를 갖춘 말 1필, 흑마포 10필, 백면포 10필, 백면주 10필, 호피·표피 각각 2장, 중고 1면, 징 1구, 인삼 20근, 조미(糙米) 50석, 황두(黃豆) 50석, 청밀 10두, 잣 15두, 소주 30병, 청주 1백 병, 계 2각, 다식 2각, 채화석 10장, 연 4폭 유석 2사, 연 6폭 유석 2사를 내려주고, 수호 대관(守護代官) 종성준(宗盛俊)에게 흑마포 2필, 백면주 2필, 백면포 2필, 계 1각, 다식 1각, 소주 10병, 잣 10두, 채화석 3장, 쌀·콩 각 15석을 내려 주었으며, 종정수(宗貞秀)에게 흑마

軍二十六人，下海採捕，遇貴島橫行者，田孝閔等四人，爲其所殺，船中什物亦皆掠去，足下宜推究懲奸也。夫怨隙之萌，始雖至微，終必滔天，可不預防乎？但釣魚人留質船軍押行事，彼此俱有所憚，不可舉行，其文引回批事，依舊法施行，可也。今及此者，恐立法既久，或有愚民不知而冒犯耳。足下申明檢舉，廣行知會，勿使生釁。

其賜物：宗貞國，鞍子一部、諸緣具馬一匹、黑麻布十四、白綿布十四、白綿紬十四、虎皮·豹皮各二張、中鼓一面、鉦一口、人蔘二十斤、米·豆各五十石、淸蜜十斗、栝子十五斗、燒酒三十瓶、淸酒一百瓶、桂二角、茶食二角、彩花席十張、連四幅油席二事、連六幅紬席二事；又別賜宗貞國妻子，米·豆各五十碩。【時，貞國赴小二殿軍中，妻子留島，故有此賜。】小二殿賴忠，鞍子一部、緣諸具馬一匹、黑麻布十四、白綿布十四、白綿紬十四、虎皮·豹皮各二張、中鼓一面、鉦一口、人蔘二十斤、糙米五十碩、黃豆五十碩、淸蜜十斗、栝子十

	<p>포 2필, 백면주 2필, 백면포 2필, 계 1각, 다식 1각, 소주 10병, 잣 10두, 채화석 3장, 쌀·콩 각 15석을 내려 주었다. 일기 태수(一岐太守) 지좌(志佐) 원의(源義)·일기주(一岐州) 수호 대관(守護代官) 원무(源武)·신전 능등수(神田能登守) 압타(鴨打) 원영(源永)·상송포(上松浦) 호자(呼子) 일기수(一岐守) 원의(源義)·염진류(鹽津留) 조차랑(助次郎) 원경(源經)·상송포(上松浦) 좌지(佐志) 원차랑(源次郎)에게는 각각 흑마포 2필, 면주 2필을 내려 주었다.</p>	<p>五斗、燒酒三十瓶、清酒一百瓶、桂二角、茶食二角、彩花席十張、連四幅油席二事、連六幅油席二事；守護代官宗盛俊，黑麻布二匹、白綿紬二匹、白綿布二匹、桂一角、茶食一角、燒酒十瓶、栢子十斗、彩花席三張、米・豆各十五碩；宗貞秀，黑麻布二匹白、綿紬二匹、白綿布二匹、桂一角、茶食一角、燒酒十瓶、栢子十斗、彩花席三張、米・豆各十五碩；一岐太守志佐源義、一岐州守護代官源武、神田能登守鴨打源永、上松浦呼子一岐守源義、鹽津留助次郎源經、上松浦佐志源次郎，各黑麻布二匹、絁紬二匹。</p>
<p>성종 7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9월 3일(무인) 3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직전(職田)의 세(稅)로 납부하는 쌀과 콩은 경작인으로 하여금 서울에 있는 창고에 바치게 해서 녹봉을 나누어 줄 때에 쓰라고 일찍이 전지를 내렸습니 다. 그런데 경기에는 명년에 곡식 종자가 부족하니, 직전 및 공신에게 특별히 준 별사전(別賜田), 사사전(寺社田)의 세(稅)로 받는 쌀과 콩은 각각 피곡(皮穀)으로 그 고을 창고에 납부하게 하여 종자용으로 비축하고, 녹봉은 군자감(軍資監)에 있는 오래 묵은 쌀과 콩으로 보충하여 지급하고, 곡초(穀草)는 전례(前例)에 의하여 경작인으로 하여금 지주에게 실어다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啓：“職田米、豆，令佃夫納於京倉，頒祿時并給事，曾下傳旨。但京畿明年穀種不足，職田及功臣別賜田、寺社田稅米、豆，各以皮穀，納州倉，以備種用。軍資監久陳米、豆充給，穀草則依前例，令佃夫輸納田主。”從之。</p>
<p>성종 7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p>	<p>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의 특송(特送) 중 하선사(賀禪師)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p>	<p>○對馬州太守宗貞國特遣僧賀禪師等，來獻土宜。其書契曰：</p>

<p>6년) 9월 11일(병술) 3번째기사</p>	<p>“머리를 조아려 글을 조선국 예조 대신 족하(禮曹大人足下)에게 올립니다. 제가 정해년에 새로 국위(國位)를 계승하였는데, 다 음해 무자년(798) 에 선 황제(先皇帝)께서 보위(寶位)에 올라 서정을 친히 행하시니, 스스로 생각하기를, ‘존비(尊卑)는 비록 다르나, 같은 때를 만났으니, 마땅히 오래오래 장수하셔서 길이 경사를 함께 하도록 축원하여야겠다.’고 하였는데, 어찌 예측하였겠습니까? 흉보(凶報)를 금일에 들을 줄이야! 놀라고 마음이 떨려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진강차랑좌위문(津江次郎左衛門)의 아들 중 하선사를 보내어 집사(執事)에게 조상을 드리고, 향(香) 3근과 감초(甘草) 15근을 올리니, 거두어 주길 바랍니다. 비록 황공하오나 함께 써서 계달(啓達)하는 것은 내가 축전주(筑前州)에 건너가서 강한 적이 에워싼 큰 진(陣)을 물리쳤으므로, 부상전하(扶桑殿下)의 높은 명령을 받들어 종 형부 소보(宗刑部少輔)의 관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계에 ‘종 형부 소보’라고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벼슬을 한 자축(自祝)의 의미로 부선(副船)에 비록 사소하나 큰 칼 5자루를 진상하니, 받아주시면 다행하겠습니다. 비록 번거롭고 잡다하여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나, 소망하는 물건은 면주(綿紬)·면포(綿布)·백저포(白苧布)·인삼(人蔘)이며, 또 제위(帝位)의 축례(祝禮)는 내가 관작을 받은 축의(祝儀)로 사선을 보내는 것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의 주인이 나에 대해서 자주 바라는 것을 내가 족하에게 하소연합니다. 이 사선(使船)은 오래된 배이므로, 송판못[板釘]·거멸못[鉅末釘]·육지에서 나는 모든 부속품들을 내려주시면 다행하고 다행하겠습니다. 건강에 조심 하소서. 이만 그칩니다.” 하였다.</p>	<p>頓首上書朝鮮國禮曹大人足下：僕，丁亥之歲，新繼國位，翌歲戊子，先皇帝踐寶阼而臨萬機，自謂：“尊卑雖異，遇合時到，當獻眉壽于億萬歲，而永同斯慶。”何圖聞晏駕于今日？驚懼悸慄，不勝哀痛之至。謹爲專使津江次郎左衛門子僧遣賀禪師，奉致下弔于執事，準上香三斤、甘草十五斤，照亮。雖恐怖，題一紙，令啓達。余是渡筑前州，而退強敵圍大陣，所以承扶桑殿下之貴命，而賜宗刑部少輔官職，此書契書宗刑部少輔而遣之者也。先以小僕爲官祝，而載副船，雖輕微進上，大刀五振，采納多幸。雖繁多不省汗顏，所望件物，綿紬、綿布、白苧布、人蔘。且又帝位祝禮，予賜官爵爲祝儀，而可渡使船，聊以遲遲者也。次此船主就余頻望之，余上訴足下，此使船舊船也，被賜板釘、鉅末釘、陸物諸緣具等者，多幸多幸。保調。不宣。</p>
<p>성종 7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9월 13일(무자) 4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하기를, “능성 부원군 구치관의 집이 가난하여 장사 비용이 넉넉지 못하니, 특별히 조미(糙米) 20석, 중미(中米) 10석, 황두(黃豆) 20석, 백포(白布) 10필, 백면포(白綿布) 10필, 정포(正布) 50필, 종이[紙] 1백 권, 숯[炭] 20석, 소목(燒木)</p>	<p>○傳于戶曹曰：“綾城府院君具致寬家，貧不贍喪用，其特給糙米二十碩、中米十碩、黃豆二十碩、白布十四、白綿布十四、正布五十四、紙一百卷、炭</p>

	2천 근을 주어라.” 하였다.	二十碩、燒木二千斤。”
성종 7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9월 13일(무자) 5번째기사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김종숙(金宗淑)이 졸(卒)하였다. 부음을 듣고 명하여 쌀·콩 아울러 30석, 종이 1백권, 석회(石灰) 40석, 송지(松脂) 3두, 유둔(油菴) 3장을 내려 주었다. 김종숙은 상락 부원군(上洛府院君) 김질(金質)의 아버지인데, 김질 때문에 특별히 내려 주는 것이었다.	○同知中樞府事金宗淑卒。訃聞，命賜米·豆并三十碩、紙一百卷、石灰四十碩、松脂三斗、油菴三張。宗淑，上洛府院君質之父也。以質故，特賜之。
성종 7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9월 19일(갑오) 4번째기사	일본국(日本國) 인백단 3주 태수(因伯丹三州太守) 산명전(山名殿) 소필(少弼) 원교풍(源教豐)이 중 일암(一庵)을 보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조선국 예조 참판 존공 족하(尊公足下), 공손히 생각하건대 폐하(陛下)는 많은 무리를 인서(仁恕)의 우주(宇宙)에서 출생하게 하여, 구구 팔색(九丘八索)811)의 중역(重譯)의 땅에서 공물(貢物)을 바치고, 삼변(三邊)의 땅에서 조빙(朝聘)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대체로 신 교풍이 관장하는 주(州)가 셋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백주이고, 백주에 절이 있어 만복사(萬福寺)라고 합니다. 이 절에는 대자 대비한 관세음(觀世音)의 존상(尊傷)을 안치하고, 아울러 1천 명의 선려(禪侶)를 접대하여 새벽에는 향을 피우고 저녁에는 불경을 읽으면서 게으름이 없이 더욱 숭배하므로, 국왕이 녹(祿)을 주는 정사 가람(精舍伽藍)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전우(殿宇)가 황폐하여 바람과 비를 막을 수 없는데, 비록 수축(修築)의 뜻을 계획하고자 하나, 비용이 많아서 수보(修補)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임금 원의정(源義政)이 황공하게도 신 교풍에게 명령하기를, ‘저 정사 가람은 조선 국왕의 지원하는 힘이 아니면 가히 낙성할 수 없다. 그런데 조선은 중국의 부용국(附庸國)이 되어 문치(文治)의 풍화(風化)가 요(堯)·순(舜)·우(禹)·탕(湯)의 시대에 못지 않고, 이에 더해 불교 이치에 정성을 다하여 절을 세우고 부처를 경앙(景仰)하고 있으니, 속히 짧은 편지라도 보내어 큰 나라와 옛 수호(修好)를 통한다면 어찌 영광스	○日本國因伯丹三州太守山名少弼源教豐，遣僧一庵，來獻土宜。其書契曰： 朝鮮國禮曹參判尊公足下：恭惟，陛下胚胎萬彙于仁恕之宇宙，而九丘八索，重譯獻筐，三邊無日，不朝聘矣。抑臣教豐所知州三，其一曰伯，伯有寺曰萬福，就中安置大慈觀世音尊像也。并接待一千指之禪侶，晨香、夕梵，無怠增崇，國皇祿算之精藍也。頃殿宇荒涼，風雨不足庇聊，雖欲企起廢之志，用費洪繁，而不能修補而已。于茲我國皇源義政忝命臣教豐：“彼精藍，非朝鮮國皇支廈之力，不可落成。然朝鮮國爲大唐之附庸，而文治之風化，抗衡堯、舜、禹、湯也，加之推誠覺場，建立佛宇，景仰浮圖氏矣。速具短簡，而通舊好於大國，豈不榮乎？”

	<p>럽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신 교풍이 존명(尊命)을 받들어서 정사 가람을 흥복하는 이유를 진달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대반야경(大般若經)》 1부(部), 경자(磬子) 1개, 목면(木綿) 3천 필, 인삼 5백 근, 쌀 5백 석, 대밭(大鉢) 2개인데, 이 선물을 받게 되면 평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정(下情)에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며, 우러러보는 정성은 극진한 복을 누리시도록 빌겠습니다. 그리고 보잘것 없는 토산물을 바치는데, 별폭에 적혀 있습니다.”</p> <p>하였다.</p>	<p>以是臣教豐(兼) [承] 尊命, 陳精藍興復之由者也。 所望《大般若經》一部、磬子一箇、木綿三千匹、人蔘五百斤、(八木) [米] 五百石、大鉢二箇, 沐此芳惠, 成素願者乎! 下情不勝惶懼, 瞻系之忱, 至禱、至祝。 次獻非瑣方物, 在別幅。</p>
<p>성종 7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9월 27일(임인) 3번째기사</p>	<p>일본국(日本國) 이세수(伊勢守) 정친(政親)의 사신 입도(入道) 등이 하직하였다.</p> <p>“예조 판서(禮曹判書) 김겸광(金謙光)이 회답합니다. 이번에 사인(使人)이 와서 그 답서에 이르기를, 족하의 서계를 보고 귀체의 가승(佳勝)함을 알고 위로가 되며, 이어 귀국의 전란이 그치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족하는 나라를 위하여 깊이 염려하여 국왕 전하의 명령을 받들어 글을 써서 멀리 보내어 군수 물자를 구하니, 무릇 환난을 구원하고, 재앙을 나누는 것은 이웃 나라와 사귀는 큰 의리인데, 어찌 구휼(救恤)하지 않겠습니까? 사유(事由)를 갖추어 아뢰었더니, 우리 주상께서 깊이 민망히 생각하여 요청하는 바에 부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만 우리 나라 신민도 또한 넉넉지 못하고, 연달아 국상을 당하여 용도가 넓고 번다하므로, 대략 정포(正布) 1천 필, 면포 1천 필, 조미(糙米) 5백 석을 갖추어 돌아가는 사인 편에 부칩니다. 이는 아끼는 것이 아니라, 돌아볼 힘이 넉넉지 못함이니, 국왕 전하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다행하겠습니다. 족하가 진상한 바 예물은 삼가 받아서 헌납하였고, 그 답례의 물건은 별폭에 갖추어 있으니, 참조하여 받으시면 또한 다행하겠습니다.</p> <p>내가 이제 들으니 족하는 왕의 후설(喉舌)이 되어 모든 정사를 출납한다고 하니, 무릇 이웃 나라와 사귀는 일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귀국</p>	<p>○日本國伊勢(守)守政親使入道等辭。其答書曰： 禮曹判書金謙光奉復。 今者使人來，得惠書，備認動履佳勝爲慰，仍審貴國兵禍未弭。 足下爲國深慮，承稟國王殿下之命，裁書遠達，以索軍需，夫救患、分災，交隣大義，豈宜不恤？具由以啓，我殿下深加愍念，命副所請。 第因我國臣民亦無祿，連遭國恤，調度浩繁，略備正布一千匹、絁布一千匹、糙米五百石碩，就付回使，非靳惜也，願力不贍耳。 轉達國王殿下爲幸。 足下所進禮物，謹已啓納，其回賜物件，具在別幅，照領亦幸。 今聞，足下爲王喉舌，出納庶政，凡於交隣之事，在所致慮。 我國之於貴邦，自昔通好，信義極篤，安得不以情陳？今來</p>

	<p>에 대하여 예전부터 교통하여 신의가 극히 두텁습니다. 그런데 어찌 실정대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요사이 세천전(細川殿) 삼하수(三河守) 승씨(勝氏)의 편지에, ‘국왕의 인장이 병화(兵火)에 타버렸으니 다시 보내기를 요구한다.’고 하였었는데, 옛 문서를 다 상고하여 보아도 일찍이 인장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경계를 이웃한 여러 나라가 인장을 서로 보낸다는 것은 명분과 의리상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끝내 청을 따르지 않았습니 다. 또 세천지현(細川持賢)의 사인이 와서 말하기를, ‘세천지현은 원승원(源勝元)의 아들이고, 산명(山名)의 사위인데, 원승원은 이미 죽고 세천지현은 바야흐로 산명과 더불어 군사를 일으켜서 서로 공격한다.’ 하니, 길이 멀고 바다가 막혀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예전에는 국사(國使) 외에 혹은 관령(管領)의 사인이라고 일컫는 자가 있었으나, 그들도 반드시 국왕의 명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관령 세천지현·세천승씨·전산전(畠山殿) 원의승(源義勝)·전산전 원의취(源義就)·산명교풍(山名教豐)·산명종전(山名宗全) 등의 사선이 연이어서 끊어지지 않는 것은 귀국의 사인도 보고 들은 바인데, 그 근거와 이유를 다 알지 못하여 접대하는 절목에 착오가 있을 듯합니다. 하물며 개인적으로 교통하는 일에 대하여 국왕 전하가 의아하게 생각할까 두려우니, 족하는 이미 계옥(啓沃)814 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므로, 계품(啓稟)하기를 원합니다. 자세한 것은 돌아가는 사인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때를 따라 건강 보전하기를 바랍니다. 별폭은 백저포(白苧布) 10필, 흑마포(黑麻布) 10필, 백면포(白綿布) 10필, 백면주(白綿紬) 10필, 호피(虎皮) 3장, 표피(豹皮) 3장, 잣[栢子] 15두입니다.”</p> <p>하였다.</p>	<p>細川三河守勝氏書稱：“國王之印，燬于兵火，乃求再送。”悉考舊籍，曾無送印之事。況隣境列國，以印相送，於名義何如？肆未從請。又有細川持賢之使來言：“持賢，乃源勝元之子，山名女婿。勝元既死，持賢方與山名，舉兵相攻。”路遠海隔，未審情僞。乃念昔者國使之外，或有稱管領之使者，然亦必承國王之命耳。今者管領細川持賢、細川勝氏、畠山源義勝、畠山源義就、山名教豐、山名宗全之輩，使船絡繹，貴使所見聞也。其根脚端由，皆所未悉，其館待節目，恐有踈誤。況私交之事，恐爲國王殿下所訝，足下既在啓沃之任，願有所稟，詳在還使。餘冀順時，調保。</p> <p>別幅：白苧布十四、黑麻布十四、白綿布十四、白綿紬十四、虎皮三張、豹皮三張、栢子十五斗。</p>
<p>성종 8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10월 7일(신해)</p>	<p>원교풍(源教豐)의 사승(使僧) 일암(一庵)이 하직하니 그 답서(答書)에 이르기를, “글월을 받고 인하여 강길(康吉)한 줄을 알게 되니, 매우 위로가 됩니다. 바</p>	<p>○源教豐使僧一庵辭。其答書曰：承書，仍審康吉，開慰。所獻禮物，謹啓收訖，茲將土宜，白苧布一十四、</p>

<p>2번째기사</p>	<p>친 예물(禮物)은 삼가 아뢰고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토의(土宜)로 백저포(白苧布) 10필, 흑마포(黑麻布) 10필과 아울러 요구한 대로 대경(大磬) 1사(事), 소화발(小火鉞) 1사(事), 인삼(人蔘) 10근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신 편에 부치니, 잘 수령하기 바라며, 다만 《대반야경(大般若經)》은 일찍이 여러 주(州)에서 청구하여 가져가서 거의 없어지고, 이제 또 전산전(畠山殿) 원의승(源義勝)이 청해 갔으므로 쌓아 둔 것이 이미 다하였습니다. 미포(米布)는 그전에 이세수(伊勢守) 정친(政親)이 국왕(國王)의 명(命)으로써 군수(軍需)로 요청해 왔기에, 이미 일찍이 요구한 것을 채울 정도로 대략 갖추어 보냈으며, 우리나라가 연달아 국휼(國恤)을 만나 용도(用度)가 매우 넓어졌으므로 일일이 요구대로 따르지 못하여 부끄럽고 한탄할 따름이니, 잘 양해하기를 바랍니다.”</p> <p>하였다.</p>	<p>黑麻布一十匹, 并所索大磬一事、小火鉞一事、人蔘一十斤, 付回价, 惟照領。但諭《大般若經》, 曾因諸州請去, 殆盡; 今又畠山源義勝請去, 所儲已竭。米、布, 前伊勢守政親, 以國王之命, 來索軍需, 已曾略備塞命。我國連遭國恤, 用度甚廣, 未得一一從命, 愧恨而已。冀恕照。</p>
<p>성종 8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10월 18일(임술) 3번째기사</p>	<p>회양 부사(淮陽府使) 유계손(柳季孫)이 조[粟] 한 이삭이 두 갈래, 혹은 세 갈래, 네 갈래로 된 것을 올리니, 원상(院相)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p> <p>“옛날에 보리 이삭이 두 갈래로 된 것도 오히려 상서(祥瑞)라고 일렀는데, 이제 세 갈래, 네 갈래에까지 이르니, 진실로 이는 기이한 상서로서,明年에는 크게 풍년이 들 징조입니다. 예(禮)로써는 마땅히 하례(賀禮)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마는, 바야흐로 구황(救荒)을 하고 있으므로 감히 청하지는 못하겠습니다.”</p> <p>하니 전지하기를,</p> <p>“경들이 풍년의 징조라고 하니 나도 또한 기쁘다.”</p> <p>하고 이어 선운(宣醞)을 내리었다.</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때는 바야흐로 구황(救荒)의 정사에 급한데, 조 이삭의 갈라진 것을 가리켜 기이한 상서[奇瑞]라 하여 풍년[大有]의 징조로 삼</p>	<p>○淮陽府使柳季孫進粟一穗兩岐、或三岐、四岐者。院相申叔舟、韓明澮啓曰：“古者麥穗兩岐, 猶以爲祥。今至三、四岐, 固是奇瑞, 明年大有之兆。禮當陳賀, 然方救荒, 未敢請耳。”傳曰：“卿等以爲豐年之兆, 予亦喜焉。”仍下宣醞。</p> <p>【史臣曰：“時方急於救荒之政, 而以粟穗之岐, 指爲奇瑞, 以爲大有之徵, 可乎?”】</p>

	는 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성종 8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11월 7일(신사) 2번째기사	술과 고기를 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남양 부원군(南陽府院君) 홍달손(洪達孫)의 집에 내려 주었는데, 정창손은 술을 마시지 못하므로 동양주(冬陽酒)로써 내려 주었다.	○賜酒肉于河東府院君鄭麟趾、蓬原府院君鄭昌孫、南陽府院君洪達孫。第昌孫不能飲，賜以冬陽酒。
성종 8권, 1년(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11월 21일(을미) 3번째기사	실록청(實錄廳)·상정청(詳定廳)·승정원(承政院)·경연관(經筵官), 입직(入直)한 여러 장수와 선전관(宣傳官)·사옹원(司饗院), 내금위(內禁衛)의 겸사복(兼司僕)에게 술과 고기를 내려 주었다.	○賜實錄廳、詳定廳、承政院、經筵官、入直諸將、宣傳官、司饗院、內禁衛、兼司僕，酒肉。
성종 9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1월 3일(병자) 4 번째기사	호조(戶曹)에서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의주(義州)는 우리 나라의 문호(門戶)이므로 중국에 입조(入朝)하는 사신(使臣)을 호위(護衛)하여 오고, 요동(遼東)의 관인(官人)·군인(軍人)과 중국 조정의 사신을 지대(支待)하는 등 씬씀이가 다른 고을보다 몇 갑절 호번(浩繁)하기 때문에, 그 이남에 있는 여러 고을의 전세(田稅)로 내는 도미(稻米)를 매년 의주에 옮겨 바치게 하여도 오히려 쓰는 데 부족하였는데, 금년에는 남쪽에 있는 고을에서 스스로 피곡(皮穀)을 거두어서 내년도의 종자(種子)로 대비하고 있으니, 이로 인하여 본주(本州)에 저장된 곡식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청컨대 부근에 있는 용천(龍川)·선천(宣川)·곽산(郭山)·가산(嘉山)·안주(安州) 등의 고을에서 미곡(米穀) 1천 1백 석(碩)을 점차적으로 수송하여 바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戶曹據平安道觀察使啓本啓：“義州，我國門戶，入朝使臣護來，遼東官人、軍人，朝廷使臣支持，用度浩繁，倍徙他邑。故迤南諸邑田稅稻米，每年移納，猶不足用。今年則南邑自收皮穀，以備明年種子，因此本州所儲穀數甚少。請將附近龍川、宣川、郭山、嘉山、安州等邑米一千一百碩，漸次輸納。”從之。
성종 9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1월 7일(경진) 5 번째기사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경상도가 실농(失農)하였는데, 상주(尙州) 등 16고을이 더욱 심하니, 청컨대 군자창(軍資倉)의 곡식 6만 석(碩)을 가지고 진휼(賑恤)하여 주게 하고, 또 초식(草食)과 염장(鹽醬)을 준비하여 곡진하게 구휼(救恤)하게 하소서. 그러나	○戶曹啓：“慶尙道失農，尙州等十六官尤甚。請以軍資穀六萬碩，賑給。且令備草食、鹽醬，曲盡救恤。然守令或有誤施有食之戶，而不及飢民者，

	<p>수령(守令) 가운데 혹시라도 식량(食糧)이 있는 가호(家戶)에 진휼을 잘못 베풀고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국가에서 창고를 열어서 궁민(窮民)을 진휼하는 뜻이 심히 못되니, 청컨대 거듭 관찰사(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여 촌항(村巷)에 출입하면서 구휼(救恤)에 마음을 다하게 하고, 그 굶주리는 백성들의 숫자와 사용한 곡식의 숫자를 매 월말에 상세히 기록하여 아뢰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甚非國家發倉賑窮之意。 請申諭觀察使，出入村巷，盡心救恤，其飢民數及用穀數，每月季詳錄以啓。” 從之。</p>
<p>성종 9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1월 8일(신사) 9번째기사</p>	<p>호조(戶曹)·예조(禮曹)에 전지(傳旨)하기를,</p> <p>“여러 절일(節日)에 5전(五殿)963) 에 공진(供進)하는 병과(餅菓)964) 를 금년에 한하여 없애도록 하라.”</p> <p>하였다.</p>	<p>○傳于戶曹、禮曹曰：“諸節日，五殿供進餅、果，限今年除之。”</p>
<p>성종 9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1월 10일(계미) 9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p> <p>“황해도(黃海道)의 실농(失農)한 여러 고을에 구황(救荒)할 목은 황두(黃豆)는 1천 석(石)을 더 주었는데, 지금 또 목은 장(醬) 3백 90석(石)을 주어서 진휼(賑恤) 구제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戶曹啓：“黃海道失農諸邑救荒陳黃豆，曾給一千石，今又給陳醬三百九十石，賑救何如?” 從之。</p>
<p>성종 9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1월 18일(신묘) 6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p> <p>“폐단을 없애는 조건(條件)들입니다.</p> <p>1. 각 고을에서 납공(納貢)하는 돼지[豬]가 비록 살찌고 크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해당 관사(官司)의 노자(奴子)들이 파리하고 약하며 몸체가 작다고 일컬으면서 사사로이 기른 놈을 대신 바치고서, 높은 값을 억지로 징수합니다. 금후로는 여러 고을에서 공납(貢納)하는 돼지는 돼지의 목에다 인표(印標)를 달고서 인문(印文)과 크고 작은 척(尺)·촌(寸)을 진성장(陳省狀) 에다 자세히 기록하여 서울로 올려 보내게 하여, 감찰(監察)이 빙고(憑考)해서 수납(收納)하게 하소서. 그 파리하고 허약한 놈은 해당 관사에서 본조(本曹)에 보고하고 시행하되 마음대로 퇴짜를 놓을 수 없게 하며, 만약 여기는 자가 있으면 사헌</p>	<p>○戶曹啓除弊條件：“一。 各官所納貢豬，雖肥大，然該司奴子，托以瘦弱、體小，代納私畜，高價侵督。 今後諸邑貢豬，懸印標於豬頸，備錄印文及大、小尺寸於陳省，上送，監察憑考，收納。 其瘦弱者，該官告本曹施行，不得擅退，如有違者，司憲府檢察，痛懲。</p>

<p>성종 9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1월 24일(정유) 4번째기사</p>	<p>부(司憲府)에서 검찰(檢察)하여 엄하게 징계하게 하소서. (...) 고(故) 의학 교유(醫學教諭) 김극(金劬)의 처(妻) 홍씨(洪氏)가 상서(上書)하기를, “역적(逆賊) 이시애(李施愛)의 친당(親黨)인 사노(私奴) 오을미(吾乙未)·동마지(同麻知只) 등이 지금 동부(東部)의 연화방(蓮花坊)에 살고 있고, 사노(私奴) 불경(佛敬)이 지금 강화(江華)에 살고 있으니, 청컨대 이를 체포하소서.” 하니,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정효상(鄭孝常)에게 명하여 홍씨(洪氏)를 빈청(賓廳)에 불러 오게 하여 그 정상을 심문하게 하였다. 홍씨가 말하기를, “남편 김극이 영안북도(永安北道)의 교유(教諭)로서 이시애에게 죽음을 당하였는데, 지금 그 원수를 갚고자 원합니다. 또 남편이 몸에 지녔던 물건들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불쌍하게 여겨서 쌀·콩 아울러 4석(碩)을 하사하게 명하고, 또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여 김극이 죽을 때 잃어버린 물건들을 징수(徵收)하여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였다.</p>	<p>○故醫學教諭金劬妻洪氏上書曰： 逆賊李施愛親黨私奴吾乙未、同麻知只等，今居東部蓮花坊，私奴佛敬，今居江華。請捕之。 命都承旨鄭孝常，召致洪氏于賓廳，問其情。洪言：“夫金劬，以永安北道教諭，爲李施愛所害，今願報仇。且欲尋得夫隨身物件。”上憐之，命賜米、豆并四碩，又下書永安道觀察使，令徵劬死時所失物件，還主</p>
<p>성종 9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1월 26일(기해) 2번째기사</p>	<p>중궁(中宮)이 한명회(韓明澮)의 집에 거동하니, 승지(承旨)·주서(注書)·사신(史臣) 각각 1원(員)과 여러 관사(官司)에서 각각 1원(員)이 어가(御駕)를 수행하였다. 북쪽 마당의 장전(帳殿)에 나아가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중궁(中宮)은 서쪽에 앉고, 【붉은 칠을 한 어상(御床)에 앉는다.】 부인(夫人) 민씨(閔氏)는 동쪽에 앉고, 【검은 칠을 한 평교의(平交倚)에 앉는다.】 친족 부인 62인이 모시었다. 한명회가 들어가서 선온(宣醞)을 마시고 나와서 바깥으로 나가서 잔치에 나아가고, 어가(御駕)를 수행한 종친(宗親)·재추(宰樞)와 한씨(韓氏)·민씨(閔氏)의 족친(族親) 1백여 인이 이에 참여하였다. 임금이 원상(院相) 홍윤성(洪允成)을 보내어 선온(宣醞)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잔치가 파(罷)하니 중궁(中宮)이 한명회와 그 처(妻)에게 의복을 각각 1벌씩을, 한보(韓堡)와 신주(申澍)의 처(妻)에게 단견(段絹) 각각 1필(匹)씩을, 잔치에서 모신 족친 부인들에게 견(絹) 1필(匹)씩을 하사하였다. 중궁이 환궁(還宮)하니,</p>	<p>○中宮幸韓明澮第，承旨、注書、史臣各一員及諸司各一員隨駕。御北園帳殿，設宴，中宮坐西，【朱漆御床。】夫人閔氏坐東，【黑漆平交倚。】族婦六十二人侍。明澮入，飲宣醞，出就外，赴宴，隨駕宗宰及韓氏、閔氏族親百餘人與焉。上遣院相洪允成，齎宣醞，往慰之。宴罷，中宮賜明澮及妻，衣各一襲；韓堡及申澍妻，段絹各一匹；侍宴族婦，絹一匹。中宮還宮，明澮及族親隨駕，詣闕謝恩。</p>

<p>성종 9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1월 27일(경자) 3번째기사</p>	<p>한명회와 족친들이 어가(御駕)를 따라서 예궐(詣闕)하여 사은(謝恩)하였다. 사간원 행 대사간(司諫院行大司諫) 김수녕(金壽寧)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 등이 그옥이 듣건대 임금은 백성들을 으뜸으로 삼고 백성들은 먹는 것을 으뜸으로 삼으며, 하늘의 천리(天理)를 아는 자는 왕도(王道)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밝은 제왕(帝王)은 곡식(穀食)을 중하게 여기고 용도(用途)를 아끼며, 일찍이 낭비하여서 재물(財物)을 손상시키지는 않았습니 다. 생산하는 자는 많고 먹는 자는 적으며 만드는 자가 빠르고 쓰는 자가 느 린 것이, 나라를 풍족하게 하고 백성들을 넉넉하게 하여서 나라의 근본을 튼 튼하게 하는 도리가 아님이 없습니다. 공경히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즉위(卽位)하신 이래로 정치는 백성들을 무양(撫養)하는 데에 두시고 목은 폐단을 다 스려 없애시어 이익(利益)을 크게 일으키시며 지나치고 쓸데없는 비용을 헤아 려서 줄이지 아니함이 없으신 것은, 백성들에게 좋은 정치를 베푸시려는 뜻이 지극하신 까닭입니다. 그러나 쓸데없고 긴급하지 않은 일들이 아직도 제거되 지 않은 것이 있으니, 승니(僧尼)를 공양(供養)하는 일이나 불서(佛書)를 조각 하여 만드는 일과 같은 것은 모두 아직 중지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풍년이 든 해에 있어서도 또한 반드시 이와 같이 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흉년이 든 해이겠습니까? 지나간 해에는 크게 흉년이 들어서 남도(南道)의 백성들이 굶 주려서 죽거나 유리(流離)하는 등 이곳저곳에서 모두 그러하므로, 바야흐로 진휼(賑恤) 구제(救濟)하는 일이 긴급한데도 허탄(虛誕)한 가르침을 장황(張皇)하게 늘어 놓고 그치지 않으며, 해마다 들어오는 미곡(米穀)이 전에 비하 여 반드시 줄어들는데도 승도(僧徒)·인부(人夫)·공장(工匠)이 쓸데없이 먹는 것이 옛날과 같으니, 나라의 용도(用途)가 혹시 줄어들거나 백성들의 식량이 혹시 소모(消耗)되는 것이 반드시 이런 것에서 말미암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 으니 그옥이 두렵습니다. 신 등이 삼가 중앙과 외방(外方)의 사사(寺社) 가운 데 공가(公家)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계산하니 모두 8곳인데, 부처를 공</p>	<p>○司諫院行大司諫金壽寧等上疏曰： 臣等竊聞，君以民爲天，民以食爲天，知天之天者，王道可成。故古之明王，重穀而節用，未嘗枉費，以傷財。生衆食寡，爲疾用舒，無非所以足國、裕民，而固邦本之道也。恭惟殿下，卽位以來，政在養民，釐去宿弊，大益興利，浮冗之費，靡不裁省，所以嘉惠元元者，至矣。然無用不急之作，尙有未除，如供養僧尼，雕造佛書，是皆未可以止耶？在豐穰之歲，亦不必爲此，況凶年乎？去歲大侵，南道之民，餓莩離流，所在皆然，方以賑救爲急，而虛誕之教，張皇未已，歲入米穀，視前必減，而僧徒、夫匠，浮食如故，竊恐，國用之或虧，民食之或耗，未必不由乎此也。臣等謹計，中外寺社，仰給公家者凡八所，供佛、供僧并歲獻之需，大率一歲之費，幾至八百餘石。常供之外，又有別供，又有歲給鹽二百五十餘石。至於刊經都監支用之數，歲不下千數百碩，其費雖曰出於本監，皆取自吾民，豈從天降，而地出耶？況豐儲</p>
--	---	--

양(供養)하고 중[僧]들을 공양하고 아울러 해마다 바치는 수요(需要)가 대개 1년의 비용으로써 거의 8백여 석(石)에 이르며, 상공(常供) 이외에도 또 별공(別供)이 있으며, 또 해마다 소금[鹽] 2백 50여 석을 지급합니다. 심지어 간경 도감(刊經都監)에 지용(支用)하는 숫자까지 일년에 1천 수백 석(碩)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니, 그 비용이 비록 본 도감(本都監)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모두 우리 백성들에게서부터 취(取)하는 것인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솟아나는 물건들이겠습니까? 더구나 풍저창(豐儲倉)에서 달마다 쌀 35석(碩)을 보내는데도 달마다 보내는 것 이외에 또 따로 월봉(月俸)을 지급하는데, 나라의 창름(倉廩)이 아니라면 어찌하여 신 등이 또 아뢰겠습니까? 사사(寺社) 가운데 전지(田地)를 받은 것이 43곳이요, 전지가 8천 3백여 결(結)인데, 그 가운데 백성들에게 취(取)한 것도 또한 작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 저축한 것이 얼마되지 않고 중외(中外)의 경비(經費)가 얼마 남지 않은 때를 당하여 굶주리어 죽거나 유리(流離)하는 백성들이 몇 백 명인지 알지 못하는데도 아직도 헤아려서 줄이지 아니하고, 하늘의 천리(天理)를 가버어 여겨 황당(荒唐)하고 무익(無益)한 일에 비용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혹은 말하기를, ‘한 나라의 대창름(大倉廩)의 저축을 가지고 조금 비용으로 쓴들 또 어찌 없어지고 부족한 일이 있겠는가?’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재물의 용도는 수(銖)가 쌓이면 1냥(兩)이 되고 수(銖)와 냥(兩)에 그치지 아니하고서 1만 균(鈞)에 이르며, 되[升]가 쌓이면 말[斗]이 되고 되와 말에 그치지 아니하고 1만 석(碩)에 이르는데, 1천 일 동안 저축하여도 부족하나 1일 동안 허비하는 데는 남음이 있으니, 어찌 이것을 적다고 하여서 우리 백성들의 지고(脂膏)를 쓸데없이 낭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천지(天地)가 재물을 만들어 내는 데는 다만 이와 같이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데, 한 곳에서 후하게 하면 반드시 다른 곳에서 모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얏이나 매실(梅實) 가운데 많이 달린 것은 내년(來年)에는 쇠약(衰弱)해질 것

倉月輸米三十五碩，而月輸之外，又有另給月俸，非國廩，而何臣等又啓？寺社受田者，四十三所，田八千三百餘結，其取諸民者，亦不爲少矣。當今之蓄積，有幾中外之經費，有幾餓莩流離之民，不知幾百。而尚不爲裁減，輕天之天，用之於荒幻無益之事耶？或曰：“以一國之大倉廩之儲，少爾費用，又何消乏之有？”是不然也。夫財用，積銖成兩，銖、兩不已，以至於萬鈞；累升爲斗，升、斗不已，以至於萬碩。蓄之千日而不足，糜之一日而有餘，豈可謂此爲少，而枉費吾民之脂膏耶？且天地生財，只有此數，厚於此者，必耗於彼。李、梅多實者，來年爲衰，自天地不能以兩贏，而況於人事乎？故今欲崇奉緇門，則未遑於蒼生；蒼生之病，而邦本危矣。國家，何所賴焉？古人云：“風塵再擾，霜雹荐臻。”沙彌不可操干戈，寺塔不足攘饑饉。臣等以此，益知緇門之果不必供也。伏願聖明，夫斷僧尼供奉之費，一切汰減，亟罷刊經都監，移其費，以活南民垂盡之命，斯乃至德大政，君民之天，皆得矣。孔子曰：“道千乘之國，敬事

	<p>이니, 천지(天地)에서도 능히 양쪽으로 여유가 있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사람의 일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치문(緇門)을 숭상하여 받들려고 한다면 백성들에게도 미쳐 그리 할 겨를이 없을 터인데, 백성들이 병들면 나라의 근본이 위태로와질 것이니, 국가에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바람과 먼지가 다시 일어나면 서리와 우박이 거듭 이른다.’고 하였는데, 사미(沙彌)가 간과(干戈)를 잡을 수도 없으며 사탑(寺塔)이 기근(饑饉)을 물리칠 수도 없을 것이니, 신 등은 이로써 치문(緇門)을 과연 공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더욱 알겠습니다. 엇드려 원하건대 성명(聖明)께서 결단하시어 승니(僧尼)를 공양하는 비용을 일체 도태(淘汰)하여 줄이고, 빨리 간경도감(刊經都監)을 파(罷)하시고, 그 비용을 옮겨서 남도(南道)의 백성들의 다 끊어져 가는 목숨을 살리신다면 곧 지극한 덕치(德治)의 큰 정사와 임금의 백성을 으뜸으로 삼는 도리가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자(孔子)께서 이르시기를, ‘천승(千乘)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 정사(政事)를 공경히 하여 신의가 있게 하고 용도를 절약하고 사람을 아낀다.’고 하고, 또 이르시기를, ‘이단(異端)을 공격하면 해로울 뿐이다.’고 하였으니, 대체로 이단(異端)은 공격할 수가 없으며, 재물의 용도는 아끼지 아니할 수가 없으며, 백성들은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감(睿鑑)께서 이미 강(講)하여 밝힌 것을 신 등이 감히 이로써 말씀드리는 것이나, 이것은 신 등의 말이 아니고 곧 한 나라 사람들의 말입니다. 엇드려 생각건대 전하께서 재택(裁擇)하시면 다행하겠습니다.”</p> <p>하였다.</p>	<p>而信，節用而愛人。” 又曰：“攻乎異端，斯害也已。” 夫異端之不可攻，財用之不可不節，民人之不可不惠愛，睿鑑所已講明者。 臣等敢以此誦之，非臣等之言，乃一國人之言也。 伏惟殿下財幸。</p>
<p>성종 9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2월 5일(무신) 2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실농(失農)한 여러 고을에 우선 목은 쌀과 콩 각각 5천 석(碩)씩과 잡곡(雜穀) 2만 석을 지급하여 진휼(賑恤)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戶曹據京畿觀察使啓本啓：“失農諸邑，姑給陳米·豆各五千碩、雜穀二萬碩，賑恤何如?” 從之。</p>
<p>성종 9권, 2년(1471)</p>	<p>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가 아뢰기를,</p>	<p>○乙卯/江原道觀察使啓：“杆城人朴哲</p>

<p>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2월 12일(을묘) 1번째기사</p>	<p>“간성(杆城) 사람 박철(朴哲)의 아내 양녀(良女) 단향(丹香)이 나이가 지금 1백 다섯 살이니, 청컨대 예에 비추어 쌀을 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妻良女丹香，年今百有五歲。請照例給米。”從之。</p>
<p>성종 9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3월 3일(병자) 3 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영광(靈光)에 사는 이곤(李坤)은 나이가 1백 1세이고, 양녀(良女) 녹개이(祿介伊)는 1백 2세이고, 태인(泰仁)에 사는 조유온(趙裕溫)과 안인(安人) 김씨(金氏)는 각각 1백 세이고, 임실(任實)에 사는 양녀(良女) 지가씨(池加氏)는 1백 2세이니, 청컨대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쌀 10석(碩)을 지급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禮曹據全羅道觀察使啓本啓：“靈光居李坤年一百一歲・良女祿介伊一百二歲、泰仁居趙裕溫・安人金氏各一百歲、任實居良女池加氏一百二歲，請依《大典》，給米十碩。”從之。</p>
<p>성종 9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3월 14일(정해) 4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교(傳敎)를 받들건대, ‘경기(京畿)의 인민(人民)들이 근래 흉년으로 인하여 유이(流移)하는 자가 많으니 지극히 불쌍하다. 그 본향(本鄉)에 돌아가는 사람을 무휼(撫恤)할 절목(節目)을 상의(商議)하여서 아뢰어라.’고 하였으므로, 이것을 공경히 받들어 다음에 조목별로 열거합니다. 1. 본토(本土)에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원래 경작(耕作)하던 땅을 《대전(大典)》에 의하여 환급(還給)하고, 뒤에 돌아가는 자에 한하여 주인(主人)이 없고 호(戶)가 끊어져 공전(公田)에 붙인 땅을 주도록 할 것. 1. 3년 동안 기한하여 복호(復戶)하며, 호수(戶首)와 솔정(率丁)은 5년 동안 기한하여 군역(軍役)을 정하지 말며, 제사(諸司)의 노비(奴婢)는 3년 동안 기한하여 신공(身貢)을 면제할 것. 1. 농기(農器)는 영(營) 중에 간직한 것을 적당히 주도록 할 것. 1. 식염(食鹽)은 3년 동안 기한하여 해마다 1석(碩)을 주도록 할 것. 1. 우축(牛畜)이 없어서 능히 스스로 경작 개간(開墾)하지 못하는 자는 첫해에는 같은 마을 사람들을 시켜서 경작하는 일을 도와주게 하고, 수령(守令)들도 또한 적당한 형편에 따라서 넉넉지 못한 자들을 도와주게 할 것.</p>	<p>○戶曹啓：“今承傳敎：‘京畿人民，近因年荒，流移者多，至爲可矜。其還本人撫恤節目，商議以啓。’敬此，條陳于後。一。還本人，其元耕田，依《大典》還給；限後還者，以無主絕戶，屬公田給之。一。限三年復戶，戶首及率丁，限五年，勿定軍役；諸司奴婢，限三年免貢。一。農器，以營中所儲量給。一。食鹽，限三年，歲給一碩。一。無牛畜，不能自耕墾者，初年令同里人助耕，守令亦隨宜助不給。一。利稅，限三年減半，已前所食還上，減三分之〔一〕。一。守令殿最，竝考人口還本多少，以爲黜陟。”從之。</p>

	<p>1. 이세(利稅)는 3년 동안 기한하여 반(半)으로 줄이고, 이미 전에 먹은 환자[還上]는 3분의 1을 감(減)하도록 할 것.</p> <p>1. 수령(守令)의 전취(殿最)에서는 모두 인구(人口)의 본토(本土)에 돌아온 다소(多少)를 상고하여 출척(黜陟)하게 할 것.”</p> <p>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성종 10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4월 2일(갑진) 6번째기사	<p>예조(禮曹)에 전교하기를</p> <p>“경상도(慶尙道)는 기근(飢饉)이 더욱 심하여 민생(民生)이 염려되니,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과 대전 왕비전(大殿王妃殿)의 망전(望前)·망후(望後) 진상(進上)의 물선(物膳)은 아울러 추성(秋成)할 때까지 봉진(封進)하지 말라.”</p> <p>하였다.</p>	○傳于禮曹曰：“慶尙道飢饉尤甚，民生可慮。 大王大妃殿、大殿、王妃殿望前後進上物膳， 竝限秋成， 勿封進。”
성종 10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4월 6일(무신) 4번째기사	<p>호조(戶曹)에 전지하기를,</p> <p>“영안도 절도사(永安道節度使) 어유소(魚有沼)가 지금 모상(母喪)을 당하였으니, 미두(米豆) 아울러 30석(碩)과 초돈(草苧) 10번(番), 송지(松脂) 3두(斗), 종이[紙] 1백 권(卷), 유둔(油菴), 관곽(棺槨) 등의 물건을 주어라.”</p> <p>하였다.</p>	○傳旨戶曹曰：“永安道節度使魚有沼，今丁母喪，其給米·豆并三十碩、草菴十番、松脂三斗、紙一百卷、油菴、棺槨等物。”
성종 10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4월 17일(기미) 3번째기사	<p>내전(內殿)에서 소물(素物)을 내다가, 주서(注書) 윤석(尹皙)에게 명하여 어유소(魚有沼)의 집에 가지고 가서 주게 하였다. 이어서 전교하기를,</p> <p>“경(卿)의 어미의 병이 위독하여 경으로 하여금 볼 수 없게 될는지 알지 못하니, 진실로 측은(惻然)하다.”</p> <p>하니, 어유소가 명을 듣고는 감읍(減泣)하였다.</p>	○內出素物，命注書尹皙，齎往魚有沼第賜之。 仍傳曰：“不知卿母病革，令卿不得見，良用惻然。” 有沼聞命感泣。
성종 10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4월 25일(정묘) 5번째기사	<p>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p> <p>“경상도·전라도·충청도 3도(三道)의 미곡(米穀)은 그전 정해년(1204)에 영안도(永安道)에서 환용(換用)한 것으로 인하여 허비된 것이 적지 않은데다가 흉년으로 허비하여 쓴 것도 또한 많습니다. 경상도(慶尙道)는 근자에 왜인(倭人)에게 주는 양료(糧料)가 예전보다 감절로 늘어남으로 인하여 저축한 군자(軍資)가 점점 다하는 데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염려가 되므로 그 군자 미곡을</p>	○戶曹啓：“慶尙、全羅、忠清三道米穀，前因丁亥年永安道換用，所費不少，加以年饑，費用亦多。 慶尙道則近緣倭料倍舊，所儲軍資漸至罄竭，誠爲可慮。 其補軍資合行條件，開錄以啓。 一。 前此科田之稅，先充官用，

	<p>보충하는 데에 시행할 만한 조건을 개록(開錄)하여 아뢰입니다.</p> <p>1. 이 앞서 과전(科田)의 세(稅)는 먼저 관용(官用)에 충당하되, 만약에 손실이 많고 실지가 적으면 세금이 균평하지 않았다 하여 또한 형편에 따라 수량을 충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직전(職田)은 그렇지 아니하고 별도로 관수(官收)의 전지(田地)가 있지만, 만약에 수한(水旱)을 만나면 수납(收納)하는 것이 전혀 없으니, 이제는 직전(職田)의 세(稅)도 마땅히 과전(科田)과 같이 수납하게 하고, 공신전(功臣田)·별사전(別賜田)·사사전(寺社田)도 아울러 이 예(例)를 따르도록 하소서.</p> <p>1. 《대전(大典)》 안에, 염창(鹽倉)의 소금[鹽]은 곡포(穀布)와 바꾸어 군자(軍資)를 보충하게 되었으나, 수령(守令)이 때를 따라 화매(和賣)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그 값이 비싸서 백성에게 불편합니다. 이로 인하여 오랫동안 적체하여 흩어지거나 녹게 되니, 진실로 이익됨이 없습니다. 금후로는 그 값을 넉넉히 하여 곡포(穀布)를 무역하게 하고, 그 베[布]도 또한 곡식으로 무역[貿穀]하게 하며, 또 구황(救荒)하는 소금도 구황할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곡식으로 무역하게 하소서.</p> <p>1. 각 목장(牧場)의 목자(牧子)는 마필(馬匹)을 징발할 때를 당하여 으레 서울에 와서 화매(和賣)하는데, 한번 길의 초료(草料)로 허비되는 것도 또한 번거로우니, 금후로는 점마 별감(點馬別監)이 수효를 갖추어 관찰사(觀察使)에게 이문(移文)하여 화매(和賣)하고 곡식을 무역하며, 또 목장에서 나누어 기르다가 죽은 말의 가죽에 미쳐서도 상납(上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또한 곡식으로 무역하게 하소서.</p> <p>1. 제사 노비(諸司奴婢)의 신공(身貢) 가운데 여전(餘錢)의 저화(楮貨)와 원공(元貢)의 저화(楮貨)는 상납(上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곡식으로 충당하여 납부하게 하소서.</p> <p>1. 경기(京畿)·황해도(黃海道)의 각 포구에 있는 만한 선척(滿限船隻)은 경중</p>	<p>若損多實少，稅不準，亦令推移充數。今職田則不然，別有官收之田，若遇水旱，全無所收，今宜職田之稅，如科田收之。功臣田、別賜田、寺社田竝依此例。一。《大典》內，鹽倉鹽換穀、布，補軍資，然守令不趁時和賣，或高其價，不便於民，因此久積、消融，誠爲無益。今後優其價，貿穀、布，其布亦令貿穀。且救荒鹽，除救荒外，餘皆貿穀。一。各牧場牧子，當徵馬匹例，至京和賣，一路草料所費亦繁。今後點馬別監具數移文觀察使，和賣貿穀。且牧場及分養死馬皮張除上納，亦令貿穀。一。諸司奴婢身貢，餘錢楮貨與元貢楮貨除上納，皆以穀充納。一。京畿、黃海道各浦滿限船隻，則京中營繕處，自當用之；其餘諸道各浦滿限船隻，亦令貿穀。一。國庫虛竭，專由守令不謹斂散也。今宜立法，壬午、癸未年還上一半未納者，降一資；過半未納者，降二資；甲申年以後十分內一分未納者，降一資；二分未納者，降二資。一。上項貿穀之數、還上所納之數，每於歲季，開坐以啓。”從之。</p>
--	---	---

	<p>(京中)의 영선(營繕)하는 곳에서 스스로 담당하여 쓰게 하고, 그 나머지 제도(諸道)의 각 포구에 있는 만한 선척(滿限船隻)도 또한 곡식을 무역하게 하소서.</p> <p>1. 국고(國庫)가 허갈(虛竭)되는 것은 오로지 수령이 거두고 흘리는 것[斂散]을 삼가지 않는 데에서 말미암는 것이니, 이제 마땅히 입법(立法)하여 임오년(1206)·계미년(1207)의 환자[還上]에 절반을 미납한 자는 1자급을 강등하고, 반을 넘게 미납한 자는 2자급을 강등하며, 갑신년(1208) 이후로 10분의 1을 미납한 자는 한 자급을 강등하고, 10분의 2를 미납한 자는 2자급을 강등하게 하소서.</p> <p>1. 위 항목의 무곡(貿穀)하는 수량과 환자[還上]에 납부하는 수량은 매년 말에 개좌(開坐)하여 아뢰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성종 10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5월 25일(정유) 12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교정청(校正廳)에 내린 단자(單子)는 한때는 준행(遵行)하였으나 《대전(大典)》의 조건(條件)에 실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조목을 열거하여서 아뢰니, 청컨대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그전대로 봉행(奉行)하여 따르게 하소서. (…) 1. 제사 관리(諸司官吏)의 체대자(遞代者)는 번고(反庫)와 전장(傳掌)을 마친 뒤에 녹(祿)을 주되, 군자감(軍資監)·풍저창(豐儲倉)·광흥창(廣興倉)은 개폐(開閉)하여 지용(支用)한 창고의 미멸(米憵)을 번고(反庫)하고 전장(傳掌)하게 하소서.</p>	<p>○禮曹啓: “曾下校正廳單子, 一時遵行, 不載《大典》條件, 開坐以啓, 請令該曹, 仍舊奉行從之。 (…) 一。 諸司提調坐、不坐, 每季月; 文昭殿、昭格署提調坐、不坐, 每月季, 磨諫啓聞。</p>
<p>성종 10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5월 27일(기해) 5번째기사</p>	<p>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김수손(金首孫)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숭례문(崇禮門) 안의 민가(民家) 60여 구(區)를 헐어서 대창(大倉)을 조영(造營)한다 하는데, 신의 뜻으로 생각하건대 국가에서 전자에 원각사(圓覺寺)를 창건하고 군영(軍營)을 짓고 후원장(後苑墻)을 쌓으면서 민가(民家)를 철거한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제 또 이와 같이 하면 민원(民怨)이 있을까 두려우니, 청컨대 이 역사를 정지하여 민력(民力)을 펴게 하소서.”</p>	<p>○司憲府持平金首孫來啓曰: “今聞崇禮門內, 毀民家六十餘區, 以營大倉, 臣意以爲, 國家向者創圓覺寺, 造軍營, 築後苑墻, 撤民家甚多。 今又如此, 恐有民怨, 請停此役, 以紓民力。” 傳曰: “松峴倉被盜米穀, 無慮</p>

	<p>하니 전교하기를, “송현창(松峴倉)에서 미곡(米穀)을 도적 당한 것이 무려 1만 석(碩)이나 되니, 이와 같다면 국용(國用)이 반드시 꺾일 것이다. 매우 작은 연고가 아니니, 이것이 내가 그만두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p>	<p>萬碩， 如此則國用必乏， 甚非細故。 此予之所不得已也。”</p>
<p>성종 10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6월 8일(기유) 3 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한치형(韓致亨)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 1. 각사(各司)의 관리(官吏)가 녹을 받음에 반드시 중기(重記)에 올려 상고하는 것은, 신 등은 그옥이 선비를 대접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염유(冉有)가 공자(孔子)에게 묻기를, ‘선왕(先王)이 법을 제정함에 형벌은 대 부(大夫)에게까지 올리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대부는 죄(罪)를 범하 여도 형벌을 가(加)할 수가 없습니까?’ 하니 공자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무릇 다스리는 군자는 예(禮)로써 그 마음을 어거하여야 하니, 염치(廉恥)의 절도[節]로써 붙이게 하여야 한다. 그런 까닭에 예전의 대부(大夫)는 그가 청 렴하지 못하고 더러운 데에 연좌됨이 있는 자는 불렴오예(不廉汚穢)라 이르지 않고 부케 불식(簠簋不飾) 이라 말하였고, 음란(淫亂)하고 분별이 없는 데에 연좌된 자는 음란 무별(淫亂無別)이라 이르지 않고 유박 불수(帷簿不脩)라 말 하였으며, 무력하여 임무를 이겨내지 못하는 데에 연좌된 자는 과연 불승임 (罷軟不勝任)이라 이르지 않고 하관 불직(下官不職) 이라 말한 것은 부끄럽게 여기는 소이(所以)이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해유 (解由)의 법(法)이 있는 것은 흠(虧欠)을 상고하여 수수(授受)를 받게 하는 소이니, 진실로 부득이한 법입니다. 그러나 녹을 받는 날에 반드시 먼저 해 유(解由)를 상고하여야만 급록(給祿)하는 까닭으로 해유(解由)가 나오지 않는 자는 비록 해를 마치도록 근고(勤苦)하였더라도 두곡(斗斛)의 녹(祿)을 받지 못합니다. 그 입법(立法)한 것이 이미 상밀(詳密)한데도 호조(戶曹)에서 아올 려 중기(重記)를 고상(考上)하는 법을 세웠으니, 대저 녹(祿)이란 유공(有功)함</p>	<p>○司憲府大司憲韓致亨等上疏曰： (...) 一。 各司官吏受祿， 必考上重記， 臣 等竊以爲， 非待士之道也。 昔冉有問 於孔子曰：“先王制法， 刑不上於大夫， 然則大夫犯罪， 不可以加刑乎？” 子曰： “不然。 凡治君子， 以禮御其心， 所以 屬之以廉恥之節也。 故古之大夫， 其 有坐不廉汚穢者， 不謂之不廉汚穢， 曰 簠簋不飾； 坐淫亂無別者， 不謂之淫亂 無別， 曰帷簿不脩； 坐罷軟不勝任者， 不謂之罷軟不勝任， 曰下官不職， 所以 愧恥之也。” 今《經國大典》有解由 之法， 所以考虧欠， 明授受， 固不得已 之法也。 然於受祿之日， 必先考解由， 乃給祿， 故有不出解由者， 雖終歲勤 苦， 而不得受斗斛之祿。 其爲立法， 既已詳密， 而戶曹又立并考上重記之 法。 夫祿者所以報有功， 有官職者不 得不食祿固也， 而必曰：“不給食， 以 勉勵其心。”， 則固非所以待人類， 其</p>

	<p>을 갚는 것이며, 관직(官職)이 있는 자는 녹을 먹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말하되 ‘먹을 것을 주지 않겠으니, 그 마음을 면려(勉勵)하라.’고 한다면, 진실로 사람을 대접하는 유(類)가 아니니, 그것이 어찌 현사(賢士)·대부(大夫)를 대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까닭으로 사습(士習)의 염오(廉汚)와 풍속(風俗)의 미악(美惡)은 반드시 위에서 인도(人道)하는 여하(如何)에 있고, 치란(治亂)과 안위(安危)에 관계되니, 그것은 진실로 일시(一時)의 편리(便利)함을 취하여서 국가 만세(萬世)의 대계(大計)를 잊을 수 없음도 또한 명백합니다. 예전의 대신(大臣)은 그 죄가 있다고 정하여도 오히려 감히 물리치지 못하고, 정한 대로 호응하여서 그 마음을 부끄럽게 여겨 가만히 염치의 절도(節度)를 함양한 까닭으로 아랫사람도 또한 절행(節行)으로 위에 보답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성상(聖上)께서 용비(龍飛)하는 처음을 당하여 진실로 마땅히 염치로써 아래를 대우하셨는데, 유사(有司)에서 염려하고 방지하는 데에 지나쳐 항상 주는 녹을 주지 않는 것으로 여기니, 저는 반드시 용손(饗飧)의 염려가 있으나 족히 그 직사(職事)를 면강하게 하고 두곡(斗斛)의 곡식으로 사대부(士大夫)를 조종(操縱)하고 권징(勸懲)하는 방법으로 삼는 데 이른 것은 옛날의 염치로써 선비를 대접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대저 해유(解由)의 법(法)은 진실로 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유(解由)가 없으면 직위를 제수하지 않음은 옳지만, 직위를 제수하고서 녹(祿)을 주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중기(重記)하는 법(法)과 같은 것은 모름지기 기한(期限)을 미리 정하고, 기한 안에 필수(畢修)하지 못하면 죄증이 옳고 내침이 옳으나, 무슨 마음으로 먼저 이기(利器)를 삼게 하여 선비를 대접하겠습니까? 엿드려 바라건대 모든 이와 같은 일들은 일체 과하여 버리시고, 마땅히 예의(禮義)로 아랫사람을 우대하여 염치(廉恥)의 풍속(風俗)을 배양(培養)하게 하소서.</p>	<p>何以待賢士、大夫乎? 故士習之廉汚、風俗之美惡, 未必非上之人導之如何, 而治亂安危係焉。其不可苟取一時之便利, 而忘國家萬世之大計, 亦明矣。古之大臣, 定有其罪, 猶不敢斥, 然正以呼之, 以愧恥其心, 而陰有以養其廉恥之節, 故下之人亦不敢不以節行報上。今聖上, 龍飛之初, 固當以廉恥遇下, 而有司過於防慮, 以爲不給常祿, 彼必有饗飧之慮, 而足以勉其職事, 至以斗斛之粟, 操縱士大夫, 爲勸懲之術, 非古者廉恥待士之道也。夫解由之法, 固不可廢也。然無解由則不除職可也, 不可除職而不給祿也。若重記之法, 須預定期限, 限內不畢修, 罪之可也, 黜之可也。何(心) [必] 先爲之利器, 以待士哉? 伏望, 諸如此等事, 一切罷去, 要當禮義遇下, 以培養廉恥之俗。</p>
<p>성종 10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p>	<p>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이윤인(李尹仁)이 치계(馳啓)하기를, “이달 25일에 개천군(价川郡)에 우박(雨雹)이 내려, 전지 3백여 결(結)을 손</p>	<p>○平安道觀察使李尹仁馳啓: “本月二十五日, 价川郡雨雹, 損田三百餘結,</p>

<p>7년) 6월 14일(을묘) 3번째기사</p>	<p>상 시킨데다 양맥(兩麥)도 또한 미처 수확하지 못하여 거민(居民) 모두가 양식이 떨어졌으니, 청컨대 군자창(軍資倉)을 발(發)하여 진휼하게 하소서.” 하였다. 호조에서 이에 의거하여 오래 묵은 피곡(皮穀) 2천 석(石)을 주어 진구(賑救)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兩麥亦未及收，居民皆絕食。請發軍資倉以賑之。” 戶曹據此請給陳皮穀二千石(辰) [賑] 救，從之</p>
<p>성종 10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6월 22일(계해) 3번째기사</p>	<p>중정국(宗貞國)의 특송(特送) 진강이랑좌위문(津江二郎左衛門)이 하직하니 예조(禮曹)에서 답서(答書)하기를, “바친 예물(禮物)은 삼가 아뢰어 거두었습니다. 토의(土宜)로 정포(正布) 22필(匹), 면포(綿布) 11필(匹)을 아울러 사급(賜給)하고, 백세저포(白細苧布) 5필(匹), 백세면포(白細綿布) 5필(匹), 잡채화석(雜彩花席) 5장(張), 송자(松子) 50근(斤), 소주(燒酒) 30병(瓶), 계(桂) 4각(角), 다식(茶食) 4각(角)을 돌아가는 사자(使者)에게 부치니 영수하소서.” 하였다.</p>	<p>○宗貞國特送津江二郎佐衛門辭，禮曹答書曰：“所獻禮物，謹啓收訖。將土宜正布二十二匹、綿布一十一匹并給，賜白細苧布五匹、白細綿布五匹、雜綵花席五張、松子五十斤、燒酒二十瓶、桂四角、茶食四角，付回使照領。”</p>
<p>출처</p>	<p>내용</p>	<p>원문</p>
<p>성종 11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7월 24일(을미) 4번째기사</p>	<p>승정원 주서(承政院注書) 김근(金謹)이 병으로 죽으니, 임금이 명하여 종이 60권(卷)과 쌀·콩 각각 2석(碩)씩을 지급하게 하였다.</p>	<p>○承政院注書金謹病死，命給紙六十卷、米·豆各二碩。</p>
<p>성종 11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8월 9일(기유) 2 번째기사</p>	<p>김국광(金國光)이 와서 임금께서 선은(宣醜)을 하사한 것을 사은(謝恩)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성은(聖恩)을 입어 막중한 짐을 벗게 되니, 신(臣)에게는 심히 다행한 일입니다. 빌건대 원상(院相)과 경연(經筵)의 직임도 아울러 파(罷)하셔서 신의 지극한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알겠다.” 하였다.</p>	<p>○金國光來謝賜宣醜，仍啓曰：“蒙荷聖恩，得釋重負，於臣幸甚。乞并罷院相、經筵之任，遂臣至願。” 傳曰：“知道。”</p>
<p>성종 11권, 2년(1471</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p>	<p>○禮曹啓：“世宗朝戊午年詳定內，倭</p>

<p>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8월 26일(병인) 4번째기사</p>	<p>“세종조(世宗朝) 무오년에 상정(詳定)한 가운데, 왜(倭)의 객인(客人)이 포구(浦口)에 돌아온 뒤의 과해량(過海糧)1541) 은, 포소(浦所)에서부터 대마주(對馬州) 북면(北面)에 이르기까지는 순풍(順風)이면 1일정(日程)이고 도주(島主)가 거처하는 좌하(佐賀)까지는 2일정(日程)인데 모두 10일치의 양식을 주었고, 일기주(一岐州)까지는 4일정(日程)인데 20일치의 양식을 주었고, 좌지전(佐志殿)·지좌전(志佐殿)까지는 5일정(日程)인데 20일치의 양식을 주었고, 비전주(肥前州)의 원의(源義)가 있는 곳까지는 6일정(日程)인데 15일치의 양식을 주었고, 구주(九州)의 종금(宗金)이 있는 곳까지는 7일정(日程)인데 20일치의 양식을 주었고, 석견주(石見州)의 주포 겸정(周布兼貞)이 있는 곳까지는 13일정(日程)인데 30일치의 양식을 주었고, 살마주(薩摩州) 등희구(藤熙久)가 있는 곳까지는 15일정(日程)인데 30일치의 양식을 주었고, 대우전(大友殿)이 있는 곳인 풍후주(豊後州)까지는 10일정(日程)인데 30일치의 양식을 주었습니다. 이로써 차등을 둔 것이 이미 격례(格例)를 이루었으나, 다만 그 정도(程途)의 멀고 가까움과 식량을 주는 일수(日數)가 혹은 서로 맞지 않기도 하였는데, 그 후 통신사(通信使)·객인(客人) 가운데 식량을 지급할 자가 또한 많아졌으나 일수(日數)를 정하지 아니하니, 관리들이 임의로 제급(題給)하였으므로, 멀고 가까운 것이 뒤바뀌어 매우 미편(未便)합니다. 금후로는 과해량(過海糧)을, 청컨대, 3등급으로 나누어 대마도(對馬島)는 5일치, 일기도(一岐島)는 15일치, 구주(九州)는 20일치의 양식을 지급하게 하고,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사신(使臣)과 경도(京都) 근처의 여러 대신(大臣)의 사인(使人)과 유구국(琉球國) 사인(使人) 등은 모두 구주(九州)의 일수(日數)와 같게 제급(題給)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客人還浦後過海糧：自浦所至對馬州北面，順風則一日程，至島主居處佐賀二日程，竝十日糧；至一岐州四日程，二十日糧；至佐志志佐殿五日程，二十日糧；至肥前州源義在處六日程，十五日糧；至九州宗金在處七日程，二十日糧；至石見州周布兼貞在處十三日程，三十日糧；至薩摩州藤熙久在處十五日程，三十日糧；至大友殿在處豐後州十日程，三十日糧。以此爲差，已成格例，但其程途遠近，給糧日數，或不相當，其後通信、客人亦多有給糧者，而日數不定，官吏任意題給，遠近倒錯，甚未便。今後過海糧，請分三等：對馬島五日，一岐島十五日，九州二十日，給糧。日本國王使臣及京都近處諸大臣使人、琉球國使人等，竝如九州日數，題給。”從之。</p>
<p>성종 11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p>	<p>중궁(中宮)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서 양로연(養老宴)을 행하였는데, 부녀(婦女)가 모두 1백 54인이었다. 그 가운데 연고가 있어서 나오지 못한 자에</p>	<p>○癸未/中宮御宣政殿，行養老宴，婦女凡一百五十四人。其有故未赴者，</p>

7년) 9월 14일(계미) 1번째기사	게는 모두 그 집에 주찬(酒饌)을 내려 주었다.	皆賜酒饌於其第。
성종 12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윤9월 9일(무신) 1번째기사	임금이 경안전(景安殿)에 나아가서 주식(晝食)을 올렸다.	○戊申/上詣景安殿, 上晝食。
성종 12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윤9월 23일(임술) 6번째기사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지난 해에 실농(失農)하여 백성의 양식이 넉넉하지 못한데, 금년에 부득이하 여 또 대창(大倉)의 담 쌓는 일을 거행하여 경기(京畿)의 백성을 모두 징발하 여 부역하게 하였으니, 양식을 싸가지고 내왕하며 고생이 막심하였다. 금년 신묘년의 공물(貢物)로 연목(椽木)·잡목(雜木)·새끼 염소·닭·우각(牛角)·잡우 (雜羽)·어교(魚膠)·괴화(槐花)·생리(生梨)·휴지(休紙)·군기(軍器) 등 물건은 전부 면제하고, 땔나무·생돼지는 반으로 감하며, 이전에 거두지 못한 공물 안에 이 미 거두어 모아서 관에 있는 것 외에는 모두 견감(鑷減)하고, 장빙군(藏氷軍) 은 연호(煙戶)는 없애고 경군(京軍)만 쓰게 하여 백성의 노력을 쉬게 하라.” 하였다.	○傳旨戶曹曰：“去歲失農，民食不裕，今年不得已又舉大倉築墻之役，盡徵京畿之民，以赴之，贏糧往來，艱苦莫甚。今辛卯年貢物，如椽木、雜木、囊索、羔、雞、牛角、雜羽、魚膠、槐花、生梨、休紙、軍器等物全除，燒木、生豬減半，已前未收貢物內已收合在官外，皆鑷之。藏氷軍除烟戶，只用京軍，以休民力。”
성종 13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11월 3일(신축) 3번째기사	호조(戶曹)에 전지하기를, “영돈녕 부사(領敦寧府事) 윤사분(尹士盼)에게 부의(賻儀)로 쌀·콩[未豆] 아울 러 50석(碩), 종이 1백 권(卷), 정포(正布) 50필(匹), 청밀(淸蜜) 7두(斗), 기름 [油] 10두(斗)를 주게 하라.” 하였다.	○傳旨戶曹：“賜領敦寧府事尹士盼賻米·豆並五十碩、紙一百卷、正布五十(五) [匹]、淸蜜七斗、油十斗。”
성종 13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11월 8일(병오) 3번째기사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윤사분(尹士盼)의 졸(卒)한 것으로써 소선(素膳)을 들 므로, 원상(院相) 정창손(鄭昌孫)·최항(崔恒)·한명회(韓明澮)가 육선(肉膳) 올릴 것을 청하였더니, 전교하기를, “내가 7일의 제도를 다하고자 한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大王大妃，以尹士盼卒，御素膳。院相鄭昌孫、崔恒、韓明澮請進肉膳，傳曰：“予欲盡七日之制。”更啓曰：“尊之位，絕期功之服，請抑情從禮。”傳曰：“主上亦請不已，予當從之。”

	<p>“지존(至尊)의 지위에 계시면 기공(期功)의 복제[服]가 없사오니 청컨대 정의를 억제하고 예도[禮]를 따르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p> <p>“주상(主上)께서도 청하여 마지 않으니, 내 마땅히 따르겠다.”</p> <p>하였다. 또 아뢰기를,</p> <p>“이제 전교(傳敎)를 듣자오니, 왕대비전(王大妃殿)과 인수 왕비전(仁粹王妃殿)의 삭망(朔望)에 진상(進上)하는 물膳(物膳) 및 각전(各殿)의 방물(方物)을 아울러 올리지 말라고 하셨으나, 신 등의 생각으로는 재상(災傷)은 비록 크더라도 풍년도 또한 혹 있을 것이니, 이로써 갑자기 감(減)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고 여겨집니다. 만일 부득이하면 긴급하지 아니한 공부(貢賦)를 감하는 것은 마땅하오나, 물膳(物膳)과 방물(方物)을 제(除)함은 불가합니다.”</p> <p>하였으나, 듣지 않았다.</p>	<p>又啓曰：“今聞傳敎，王大妃、仁粹王妃殿朔望進上物膳及各殿方物竝勿進，臣等謂災傷雖大，有年亦或有之，不宜以此而遽減也。如不得已，宜減不緊貢賦，物膳、方物不可除也。”不聽。</p>
<p>성종 13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12월 1일(무진) 8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p> <p>“제도(諸道)의 전세(田稅)를 수납(收納)할 때에 금방(禁防)하는 절목(節目)입니다. 1. 수세(收稅)할 때에 공리(貢吏)들이 수납하는 호구[納戶]를 침해하여 두량(斗量)을 고중(高重)하게 하거나 혹은 더불어 통모(通謀)하여 먼저 몰래 본가(本家)에서 수납하고는 포소(浦所)에 이르러서 남은 쌀[剩米]로써 수량을 채워 간람(奸濫)함이 막심하니, 청컨대 사람들에게 진고(陳告)하기를 허락하여 그 범한 자는 전가(全家)를 입거(入居)1778) 하고, 고발한 자는 범인(犯人)의 재산(財産)으로써 상(賞)을 주게 하소서. (...)</p>	<p>○戶曹啓諸道田稅收納時禁防節目：“一。收稅時，貢吏侵損納戶，高重斗量，或與之通謀，先潛收於本家，到浦所，以剩米充數，奸濫莫甚。請許人陳告，其犯者全家入居；告者，以犯人財產，給賞。(…)</p>
<p>성종 13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12월 2일(기사) 2번째기사</p>	<p>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사신 광이장주(光以藏主) 등이 하직하니, 그 국왕(國王)에게 답(答)하는 글에 이르기를,</p> <p>“폐방(弊邦)은 복록이 없어, 우리 선왕(先王)이 서로 이어서 기세(棄世)1781) 하여, 과인(寡人)이 유서(遺緒)를 사수(嗣守)하고, 또 집상(執喪)의 슬픔이 있어 강호(講好)하는 데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특별히 사신이 멀리 와서 서로 하례하고, 아울러 진귀한 물건을 보내 주시며 인하여 국내(國內)에 어려</p>	<p>○日本國王使光以藏主等辭，其答國王書曰：</p> <p>敝邦無祿，我先王相繼棄世，寡人嗣守遺緒，方在喪疚，未及講好。今承專使，遠來相賀，竝致珍貺，仍諭國內多</p>

	<p>움이 많음을 고유 하시니, 신사(信使) 사이의 관계하는 뜻이 매우 정성을 다 하였습니다. 진실로 감위(感慰)하여 즉시 보답하는 사례를 하고자 하였으나, 다만 폐방(弊邦) 사람은 해로(海路)를 알지 못하여서 보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선왕(先王)께서도 사신을 보내어 통빙(通聘)하였으되 중도(中道)에서 배가 뒤집혔으니, 이것은 귀국(貴國)에서도 아는 바입니다. 또 듣건대, 귀국에서는 병과(兵戈)가 그치지 못하고 도로(道路)가 많이 막히었다 하여, 과연 뜻과 같이 못하였으니, 후의(厚意)를 저버린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제시한 신인(新印)에 대한 일은 감히 가르침을 받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자(使者)가 구하는 금조(禽鳥)는 모두 폐방에 없는 것이므로, 단지 산계(山雞) 자웅(雌雄) 2쌍(雙)을 잡아 드립니다. 변변치 못한 토의(土宜) 같은 것은 모두 별폭(別幅)에 기록하오니, 유납(留納)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p> <p>하고, 별폭에는, “백세면주(白細綿紬) 20필(匹),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匹), 흑세마포(黑細麻布) 20필, 표피심 호피변 전피리 좌자(豹皮心虎皮邊狹皮裏座子) 1사(事), 안자(鞍子) 1면(面), 제연구 호피(諸緣具虎皮) 10장(張), 표피(豹皮) 10장, 남사피(藍斜皮) 10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만화석(滿花席) 10장, 만화방석(滿花方席) 10장, 동로(銅爐) 2사(事), 동분(銅盆) 2사(事), 황모필(黃毛筆) 1백 지(枝), 우황(牛黃) 2부(部), 인삼(人參) 1백 근(斤), 청밀(淸蜜) 20두(斗), 송자(松子) 5백 근.”</p> <p>이라 하였다.</p>	<p>難, 信使間關意, 甚勲懇。 良用感慰, 卽欲報謝, 第以敝邦人, 未諳海路, 先王遣使通聘, 而中道覆沒, 此貴國所知也。 且聞貴國兵戈未戢, 道路多梗, 未果如志, 慙負厚意。 恕照示。 及新印事, 敢不承教? 使者所求禽鳥, 皆敝邦所無, 但採山雞雌雄二雙呈。 似不腆土宜, 具載別幅, 伏希留納。 白細綿紬二十四、白細苧布二十四、黑細麻布二十四、豹皮心虎皮邊狹皮裏座子一事、鞍子一面、諸緣具虎皮一十張、豹皮一十張、藍斜皮一十張、雜彩花席一十張、滿花席一十張、滿花方席一十張、銅爐二事、銅盆二事、黃毛筆一百枝、牛黃二部、人蔘一百斤、淸蜜二十斗、松子五百斤。</p>
<p>성종 13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12월 11일(무인) 2번째기사</p>	<p>조참(朝參)을 받는데, 승지(承旨) 등이 아뢰기를, “지금 성변(星變)으로 하늘의 경계를 경구(警懼)하여, 어선(御膳)을 덜고 침전(寢殿)을 피하시는데, 이제 조참(朝參)에 풍악을 연주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니, 즉시 명하여 풍악을 거두게 하소서.”</p> <p>하니, 바로 예조(禮曹)에 전교하기를,</p>	<p>○受朝參。 承旨等啓曰: “今以星變, 警懼天戒, 至於減膳、避殿。 今朝參, 不宜作樂。” 卽命輟樂, 仍傳于禮曹曰: “凡朝賀、朝參, 勿作樂。”</p>

	<p>“무릇 조하(朝賀)·조참(朝參)에는 풍악을 연주하지 말라.” 하였다.</p>	
<p>성종 13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12월 12일(기묘) 5번째기사</p>	<p>일본국(日本國) 월미원 삼주 총태수(越尾遠三州總太守) 좌무위 장군(左武衛將軍) 원의렴(源義廉), 비전주(肥前州) 상송포(上松浦) 압타(鴨打) 원영(源永)이 사람을 보내 와서 토의(土宜)를 바쳤는데, 그 원의렴(源義廉)의 글[書]에 말하기를, “대저 생각하건대, 신왕 폐하(新王陛下)께서 왕위에 오른 이래로, 밝기는 일월(日月)과 같고, 덕(德)은 건곤(乾坤)1805)에 짝하옵니다. 국가는 연경(延頸)1806) 하여 지극한 어짊[至仁]을 우러르고, 천하는 지극한 교화[至化]를 관망하고 있으니, 지극히 축복[至祝]하고 지극히 기도[至禱]하오나, 또한 선황(先皇)께서 등하(登霞)1807) 하심은 곧 귀국(貴國)의 대고(大故)이었습니다. 비록 그러나 묵묵(穆穆)히 부도(浮屠)1808)의 법(法)에 뜻을 기울였습니다. 이러므로 일찍이 미지산(彌智山)에 여가를 머무르시니, 즉시 백의 대사(白衣大士)가 구름 속에서 나타났고, 더하여 감로(甘露)·수타미(須陁味)의 상서까지 아울러 이르렀으니, 아아, 성덕(聖德)이 감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가람(大伽藍)을 세워, ‘원각상(圓覺像)’이라 이름하고, 금벽(金碧)을 베풀어 더욱 수려(殊麗)하게 하시며, 만기(萬機)의 여가에 불도(佛道)를 수행(修行)하여, 일찍이 선근(善根)1809)을 심어 미리 명복(冥福)을 자뢰하였습니다. 이제 대저 이를 생각하니, 혹 때로는 솔타천(率陁天)을 소요(逍遙)하고, 혹 때로는 극락국(極樂國)을 유희(遊戲)하여 그 공덕(功德)은 한없이 많고 가이 없는 것[無量無邊]이었으니, 불가사의(不可思議)1810)한 것입니다. 우리 본조(本朝) 관정(寬正) 3년 임오(壬午)1811)에 천룡 선사(天龍禪師)가 재조(再造)하는 일에 나아가므로 해서, 멀리 빙문(聘問)을 이루게 되어, 의렴(義廉)이 육되게 부서(副書)를 받들었는데, 드디어 돌아오는 사자[价]에게 도서(圖書)를 보내 주시니 참으로 귀중한 것이며 더할 수 없는 다행이었습디만, 조가(朝家)</p>	<p>○日本國越・尾・遠三州總太守左武衛將軍源義廉、肥前州上松浦鴨打源永遣人，來獻土宜。源義廉書曰：夫惟新王陛下，踐祚以來，明同日月，德配乾坤。國家，延頸以仰至仁；天下，傾心以觀至化。至祝、至禱，抑亦先皇登霞，乃貴國之大故也。雖然穆穆，傾想於浮屠之法，是以嘗駐蹕於彌智山，卽時白衣大士出現于雲中，加之甘露、須陁味之瑞駢臻。噫！聖德所感乎！茲建大伽藍，號圓覺，像設、金碧，尤極殊麗，萬機之暇，修行佛道，夙植善根，預資冥福也。今夫想之，或時逍遙率陁天，或時遊戲極樂國，其功德無量無邊，不可思議者也。我本朝，寬正三年壬午，就天龍禪師再造之事，而遠致聘問，義廉忝捧以副書，遂付回价，賜以圖書，珍重珍重，萬幸萬幸。朝家比年兵革未息，由是貴國所賜之圖書，亦爲灰燼矣。是故，于今不遑奉致謝忱，慙汗惟夥矣。今裝使船，差遣上官人西華西堂，獻不腆方物，陳以怠慢之罪也，采納惟祈。凡</p>

가 근년에 병혁(兵革)1812) 이 쉬지 아니하여, 이로 말미암아 귀국(貴國)에서 내려 주신 도서(圖書)도 또한 다 타버렸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치사(致謝)하는 정성도 받들 겨를이 없었으니, 참한(慙汗)1813) 이 나올 뿐입니다. 이제 사선(使船)에 짐을 싣고, 상관인(上官人) 서화서당(西華西堂)을 차견(差遣)하여, 변변치 못한 방물(方物)을 바치어 태만(怠慢)한 죄를 진달하오니, 채납(采納)하시기 비읍니다. 무릇 행리(行李)가 왕래하는 관사[館]는 의렴(義廉)이 오래 맡고 있습니다. 특히 귀국의 황화사(皇華使)1814) 가 내림(來臨)하며, 빈연(賓讌)의 예(禮)로써 호례(犒饋)하여, 그 성선(盛膳)1815) 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만갑절이 될 것이오니, 집사(執事)는 도모하소서. 이어서 고(告)하는 것은 우리 낙양(洛陽)1816) 동산(東山)에는 절[寺]이 있어 동광(東光)이라 하는데, 병선(兵燹)1817) 으로 인하여 거의 기와가 부서져 조약돌 마당[礫場]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절은 바로 귀국(貴國)의 쟁자(侏者)1818) 가 본방(本邦)에 내조(來朝)하면 오로지 휴식하는 곳이니, 급히 주초(柱礎)를 보존하게 한다면 또한 의당하지 않겠습니까? 엿드려 원하건대, 귀국의 도움으로 거만(鉅萬)을 받아서 다시 복구하는 역사(役事)를 하게 되면, 이른바 대왕(大王)의 어진 교화[仁化]가 멀리 미침이 아니겠습니까? 토의(土宜)는 건건(件件)마다 별폭(別幅)에 수록(收錄)하였으며, 황구(惶懼)하게 우러러 바라는 지극함을 이기지 못하옵니다. 맹춘(孟春)이라 아직도 추우니, 순서(順序)를保重(保重)하옵소서.”

하고, 별폭(別幅)에는,
 “병풍(屏風) 1쌍(雙), 강련위(絳練緯) 1필(匹), 백분(白粉) 1기(器), 박양전(薄樣牋) 2백 매(枚), 주(朱) 5과(裹), 응우(鷹羽) 96, 백랍 수병(白蠟水瓶) 1쌍(雙), 과자분(菓子盆) 10매(枚), 선자(扇子) 50병(柄), 염착발(染着鉢) 10매(枚), 백자발(白磁鉢) 10매, 자단(紫檀) 50근(斤), 대도(大刀) 2, 진향(振香) 20근(斤), 침자(枕子) 2쌍(雙).”

이라 하였다.

行李往來之館，義廉久司之，特貴國皇華使來臨，則犒以賓讌之禮，其盛膳倍萬于餘邦也，執事圖之。 仍告我洛陽之東山有寺，曰東光，荐罹兵燹，殆爲瓦礫場。 況此寺，乃貴國之侏者，來朝于本邦，專所憩息也。 急存柱礎，則不亦宜耶？ 伏願蒙貴國之助緣鉅萬，而執再復之役，則所謂大王仁化覃遠者乎？ 土宜件件收錄于別幅。 無勝惶懼瞻望之至。 孟春尚寒，順序保重。

別幅：屏風一雙、絳練緯一匹、白粉一器、薄樣牋二百枚、朱五裹、鷹羽九十六、白蠟水瓶一雙、菓子盆十枚、扇子五十柄、染着鉢十枚、白磁鉢十枚、紫檀五十斤、大刀二、振香二十斤、枕子二雙。

성종 13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12월 13일(경진)
4번째기사

유구 국왕(琉球國王)의 사신 중[僧] 자단서당(自端西堂) 등이 하직하였다. 그 답서(答書)에 말하기를,
“왕(王)이 멀리 사신을 보내어 귀중한 폐백을 주고, 우리 선왕(先王)의 즉위하심을 하례하였으나, 우리 나라에서 연달아 흉화(凶禍)를 만나게 되어, 귀사(貴使)가 미처 전하(展賀)하지 못하게 되어 진실로 높은 의의를 저버리게 되었으니, 과인(寡人)은 감창(感愴)하여 마지 않습니다. 겹하여 남만 국왕(南蠻國王)을 효유하여 우리와 통호(通好)시키려 하고, 이어서 우리 나라에서 수용(需用)되는 것을 물으시니, 경의를 표하는 마음이 근각(勤恪)하여 깊이 위열(慰悅)하오나, 그러나 사신을 서로 보내어 통호하는 것은 신의(信義)가 귀중하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전에 보낸 토물(土物)이 진달(盡達)하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니, 창한(悵恨)1822) 을 더할 뿐입니다. 이제 찾으시는 물건은 우리 나라에서는 대고(大故)가 거듭한데다 올해는 또 풍년이 들지를 않아, 뜻과 같이 하지 못하고, 간략하게 약간(若干)을 가지고 우러러 존명(尊命)을 채웠으니, 의심하지 말으소서. 또 해도(海島)에 사는 사람이 거짓을 행한 일을 보이고, 특별히 부신(符信)을 보내어서 후일의 증험을 삼게 하시니, 삼가 영수(領受)하였고, 감히 누설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변번치 못한 토의(土宜)는 별폭(別幅)에 갖추어 있는데, 백세면주(白細綿紬) 20필(匹),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20필, 표피심 호피변 전피리 좌자(豹皮心虎皮邊獬皮裏座子) 1사(事), 호피(虎皮)·표피(豹皮) 각각 10장(張),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만화석(滿花席) 10장, 만화방석(滿花方席) 10장, 인삼(人蔘) 1백 근(斤), 청밀(淸蜜) 20두(斗), 송자(松子) 5백 근(斤), 안자(鞍子) 1면(面), 제연구남사피(諸緣具藍斜皮) 10장(張), 면주(綿紬) 1천 필(匹), 면포(綿布) 3천 필, 후지(厚紙) 10권(卷), 연(連) 6폭(幅) 유둔(油菴), 연(連) 4폭(幅) 유둔(油菴) 각 5장(張), 백접선(白摺扇) 1백 파(把), 소주(燒酒) 30병(瓶), 계(桂) 3각(角), 납촉(蠟燭) 1백 매(枚)입니다.”

○琉球國王使僧自端西堂等辭。 其答書曰：
王遠遣使，齎重幣，賀我先王即位，我國連遭凶禍，貴使未及展賀，虛負高義，寡人感愴無已。 兼諭南蠻國王，欲通好於我，仍問我國之所需，禮意勤至，深用慰悅，然交聘之通信，義爲貴，不在於物也。 又知前送土物，不得盡達，徒增悵恨。 今所索之物，祇因我國大故相仍，年又不登，未得如意，略將若干，仰塞尊命，勿以爲訝。 且示海島之人行詐之事，特送符信，以爲後日之驗，謹已領受，不敢宣泄。 不腆土宜，具在別幅。 白細綿紬二十四、白細苧布二十四、黑細麻布二十四、豹皮心虎皮邊獬皮裏座子一事、虎皮豹皮各一十張、雜彩花席一十張、滿花席一十張、滿花方席一十張、人蔘一百斤、淸蜜二十斗、松子五百斤、鞍子一面、諸緣具藍斜皮一十張、綿紬一千匹、綿布三千匹、厚紙一十卷、連六幅油菴·連四幅油菴各五張、白摺扇一百把、燒酒三十瓶、桂三角、蠟燭一百枚。
又書曰：

	<p>하고, 또 글[書]에 이르기를, “폐국(弊國)은 하늘이 불쌍히 여기지 않음을 만나, 우리 혜장왕(惠莊王)1823)께서 흥서(薨逝)하므로, 이제 사신을 보내 와서 향폐(香幣) 올리는 것을 받게 되니, 과인(寡人)은 추도(追悼)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단지 일월(日月)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대제(大制)를 이미 끝내고 태묘(太廟)에 부제(祔祭)하여서 귀사(貴使)가 비록 직접 예(禮)를 펴지 못하였으나, 삼가 길일(吉日)을 가리어 선왕(先王)에게 고(告)하겠습니다. 겹하여 귀국(貴國) 선왕(先王)의 유훈(遺訓)이 정성되고 지극함을 받으니, 비감(悲感)이 서로 깊습니다. 왕(王)께서도 선인의 뜻[先志]을 떨어뜨리지 않고 특별히 정사(精舍)를 세우고, 이어서 우리 선왕(先王)의 회상(繪像)과 아울러 사액(寺額)을 구하시니, 왕의 후의(厚意)를 무엇에 비유하여 일러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선왕의 유상(遺像)이 멀리 큰 물결을 건너야 하니, 정(情)으로 차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성의(盛意)에 부응하지 못하고, 다만 편액(扁額)과 내전(內典)의 법기(法器)·토물(土物)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기중(忌中)의 정성을 펴오니, 삼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p> <p>하고, 별폭(別幅)에는, “백세면포 10필(匹), 백세저포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10필, 호피(虎皮)·표피(豹皮) 각 2장(張), 잡채화석(雜彩花席) 6장, 《대장경(大藏經)》 1부(部), 운판(雲板) 1사(事), 중고(中鼓) 1면(面), 대磬(大磬) 1사, 중요발(中鑊) 1사.”</p> <p>라 하였다.</p>	<p>敝國遭天不弔，我惠莊王薨逝，今承遣使，來進香幣，寡人不勝追悼。只緣日月不留，大制已終，祔于太廟，貴使雖不得親自展禮，謹涓吉日，告于先王，兼承貴國先王遺訓，切至悲感交深。王又不墜先志，特建精舍，仍求我先王繪像竝寺額，王之厚意何可云喻？但先王遺像，遠涉鯨波，情所不忍。玆故未副盛意，但將扁額，內典法器、土物，小伸哀悃，伏惟俯亮。別幅：白細絁布一十匹、白細苧布一十匹、黑細麻布一十匹、虎皮·豹皮各二張、雜彩花席六張、《大藏經》一部、雲板一事、中鼓一面、大磬一事、中鑊鈸一事。”</p>
<p>성종 13권, 2년(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12월 21일(무자) 2번째기사</p>	<p>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올량합(兀良哈) 첨지(僉知) 시시합(時時哈)·도읍도(都邑道)·박살탑목(朴撒塔木) 등 26인을 인견(引見)하니, 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 등 여러 재추(宰樞)가 입시(入侍)하였다. 술이 두어 순배 행하니, 명하여 시시합(時時哈) 등 3인에게 차례로 술을 올리게 하</p>	<p>○上御宣政殿，引見兀良哈僉知時時哈、都邑道、朴撒塔木等二十六人，河東府院君鄭麟趾、諸宰入侍。酒數行，命時時哈等三人，以次進爵，賜物有</p>

	<p>고,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 마침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 이서장(李恕長)이 하직[辭朝]하니, 임금(引見)이 아올러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개성부(開城府)는 고도(古都)라서 백성이 조밀하고 임무가 극심하니, 경(卿)이 가거든 힘쓰라.” 하였다.</p>	<p>差。適開城府留守李恕長辭，上竝引見語之曰：“開城府乃古都，民稠務劇。卿往懋哉。”</p>
<p>성종 14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1월 4일(신축) 4 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 전교하기를, “요동 진무(遼東鎮撫) 왕광(王鑛)이 요구한 인삼(人蔘) 3근(斤), 후지(厚紙) 1권(卷), 연(連) 4폭(幅) 유둔(油苴) 1, 잡채화석(雜彩花席) 2장(張), 전죽(箭竹) 1백 개(箇)를 진하사 통사(進賀使通事)가 가는 편에 부쳐서 갖다 주게 하라.” 하였다.</p>	<p>○傳于禮曹曰：“遼東鎮撫王鑛所求人蔘三斤、厚紙一卷、連四幅油苴一、雜彩花席二張、箭竹一百箇，就付進賀使通事，往與之。”</p>
<p>성종 14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1월 5일(임인) 9 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상궁(尙宮) 홍씨(洪氏)의 어미의 부의로 미두(米豆) 아올러 10석(碩), 종이[紙] 50권(卷)을 내려 주었다.</p>	<p>○傳旨戶曹，賜尙宮洪氏母賻米·豆并十碩、紙五十卷。</p>
<p>성종 14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1월 13일(경술) 2번째기사</p>	<p>공조 판서(工曹判書) 성임(成任)·호조 참판(戶曹參判) 박건(朴健)이 표문(表文)을 받들고 황태자(皇太子)의 책봉(冊封)을 하례하기 위하여 경사(京師)에 가는데, 백관(百官)이 배표(拜表)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 표문[表]에 이르기를, “성신(聖神)께서 당양(當陽)을 하시어 홍방(鴻龐)의 복[祚]을 힘써 뵈으시고, 황태자[元良]께서 정당한 위치에서 연익(燕翼)하는 계책[謀]을 크게 받으시니, 무릇 조림(照臨)하시는 영향권(影響圈) 안에는 모두가 다 뛰고 춤춥니다. 공경하여 생각하건대, 총명 예지(聰明睿智)하고 강건 수정(剛健粹精)하시어 조종(祖宗)이 시행한 것을 따라 능히 일대(一代)의 제도를 새롭게 하시며 적사(嫡嗣)를 세워서 만백성의 마음을 결속(結束)시켰습니다. 이번 옥례(縹禮)1944)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더욱 큰 복[純嘏]이 모임[集]을 받게 되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게 용렬한 자질을 가지고 다행히 태평한</p>	<p>○工曹判書成任、戶曹參判朴健奉表如京師，賀冊封皇太子，百官拜表如儀。其表曰：聖神當陽，懋延鴻龐之祚；元良正位，丕承燕翼之謀。凡囿照臨，悉均蹈舞。欽惟，聰明睿智，剛健粹精。率祖攸行，克新一代之制；立嫡以長，式繫萬姓之心。屬茲縹禮之成，益膺純嘏之集。伏念臣猥將庸質，幸際昌辰。迹滯青丘，阻參列辟之賀；情懸紫闥，載賡重潤之歌。方物表曰：</p>

때를 만나 자취가 청구(靑丘)에 머물러 있으므로 열벽(列辟)1946)의 하례함에 참여하지 못합니다마는, 정(情)은 자달(紫闈)1947)에 매달려서 중윤(重潤)의 노래[歌]를 올립니다.”

하고, 방물표(方物表)에 이르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춘궁(春宮)의 정당한 위치로서 크게 몇몇한 법[彝典]을 거행 하시니, 해우(海宇)에서 모두 즐거워하여 이렇게 하의(賀儀)를 드립니다. 삼가 황세저포(黃細苧布) 20필(匹), 백세저포(白細苧布) 3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30필, 용문염석(龍文簾席) 2장(張), 황화석(黃花席) 20장(張), 만화석(滿花席) 20장(張), 만화방석(滿花方席) 20장(張), 잡채화석(雜彩花席) 20장(張), 잡색마(雜色馬) 20필(匹)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은 제조(製造)함이 정밀(精密)하지 못하고, 가짓수도 적으니, 어찌 여정(旅庭)의 실(實)에 합하겠습니까마는, 집양(執壤)의 정성을 헤량(荷)하소서.”

하였다. 황태후(皇太后)의 예물(禮物)은 홍세저포(紅細苧布) 20필(匹),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30필, 황화석(黃花席) 10장(張), 만화석(滿花席) 10장, 만화방석(滿花方席) 10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張)이었고, 중궁(中宮)의 예물(禮物)도 황태후의 예(例)와 같았다.

그 황태자(皇太子)를 하례하는 전문(箋文)에 말하기를,
 “선원(璿源)의 기쁜 경사가 갑관(甲觀)의 상서(祥瑞)를 성하게 맞이하니, 동위(東闈)가 의례를 갖추어, 빛나게 보책(寶冊)의 명(命)을 받으셨습니다. 신린(臣隣)이 모두 기뻐하며 이하(夷夏)도 한가지로 즐거워합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위대한 도량은 깊고 깊으며, 영특한 자질은 옥처럼 너그럽습니다. 정당한 칭호로 명분을 정하였으니, 마땅히 저부(儲副)의 존귀함에 거(居)하시고, 주창(主鬯)을 하여 조묘(祧廟)를 계승하시니, 진실로 신인(神人)의 소망에 화합합니다. 성례(盛禮)를 이미 거행하여 크게 더욱 융성함을 도모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臣)은 외람되게 용렬한 자질을 가지고 다행히 밝은 세대[昭

伏以, 位正春宮, 誕舉彝典, 歡均海宇, 聊修賀儀。 謹備, 黃細苧布二十四、白細苧布三十四、黑細麻布三十四、龍文簾席二張、黃花席二十張、滿花席二十張、滿花方席二十張、雜綵花席二十張、雜色馬二十匹。 右件物等, 製造匪精, 名般不腆, 豈合旅庭之實? 庶諒執壤之忱。

皇太后禮物, 紅細苧布二十四、白細苧布二十四、黑細麻布三十四、黃花席一十張、滿花席一十張、滿花方席一十張、雜彩花席一十張; 中宮禮物, 如皇太后例。 賀皇太子箋曰: 璿源毓慶, 茂迓甲觀之祥; (銅) [東] 闈備儀, 光膺寶冊之命。 臣隣胥悅, 夷夏同歡。 恭惟, 偉量淵沖, 英姿玉裕。 正名定分, 宜居儲副之尊; 主鬯承祧, 允協神人之望。 盛禮既舉, 丕圖益隆。 伏念臣猥以庸資, 幸逢昭代, 邈處外徼, 雖阻趨蹌, 景仰前星, 倍伸頌禱。

禮物: 白細苧布二十四、黑細麻布五十四、鳳文簾席二張、黃花席十五張、滿花席十五張、雜彩花席十五張、人蔘五十斤。

	<p>代]를 만나, 아득히 외방에 처하여 비록 추창(趨蹌)하는 길은 막혔더라도 크게 전성(前星)을 우러르며, 감절이나 송도(頌禱)를 드립니다.”</p> <p>하였고, 예물(禮物)은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匹), 흑세마포(黑細麻布) 50필, 봉문염석(鳳文簾席) 2장(張), 황화석(黃花席) 15장(張), 만화석(滿花席) 15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5장, 인삼(人蔘) 50근(斤)이었다.</p>	
<p>성종 14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1월 25일(임술) 4번째기사</p>	<p>좌무위전(左武衛殿) 원의렴(源義廉)이 사송(使送)한 서화서당(西華西堂) 등이 하직하니, 그 예조(禮曹)의 답서(答書)에 말하기를,</p> <p>“보내온 글을 읽고 강유(康裕)하심을 갖추 알게 되어 위안이 됩니다. 바친 예물(禮物)은 삼가 아뢰어 수납(收納)하였습니다. 그 중에 족하(足下)의 세관 인사(世管隣使)가 우리의 행인(行人)을 후대하고, 또 우리 행인을 효유하기 위하여 동광사(東光寺)를 수즙(修葺)하게 된 연유를 갖추어 계달하였더니, 우리 전하(殿下)께서 깊이 가열(嘉悅)하시고, 특별히 명하여 면포(綿布) 1백 필(匹), 정포(正布) 2백 필(匹)을 주시어 수즙을 돕게 하였으며, 아울러 백저포(白苧布) 5필, 흑마포(黑麻布) 5필, 채화석(彩花席) 5장(張), 호피(虎皮) 3장(張), 인삼(人蔘) 5근(斤)을 주시어 회개(回价)에게 부치었습니다. 다만 우리 나라는 국휼(國恤)을 거듭 당한데다 해마다 흉년으로 인하여 뜻과 같이 다하지 못하였으니, 족하(足下)는 헤아리기 바랍니다.”</p> <p>하였다.</p>	<p>○左武衛殿源義廉使送西華西堂等辭。其禮曹答書曰：書來，備諳康裕爲慰。所獻禮物，謹啓收納。就中足下世管隣使，厚我行人，又諭爲我行人，修葺東光寺，具由以啓，我殿下深用嘉悅，特命給綿布一百匹、正布二百匹，以助修葺。竝賜白苧布五匹、黑麻布五匹、彩花席五張、虎皮三張、人蔘五斤，就付回价。第因我國國恤相仍，連歲凶荒，未盡如意。惟足下恕照。</p>
<p>성종 14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1월 30일(정묘) 5번째기사</p>	<p>제주 점마 별감(濟州點馬別監)의 사목(事目)에 이르기를,</p> <p>“1. 제주(濟州)는 사면(四面)이 해변[濱海]이고 홀로 하나의 한라산(漢拿山)만이 가운데에 우뚝하여 두 개의 연한 나무[連木]와 같은데, 안식향(安息香)·유자(柚子)·비자목(榧子木)은 국용(國用)에 가장 절요한 것으로, 모두 이 산에서 나옵니다. 근래에 전부(田夫)가 옛 것을 싫어하고 새로운 것에 힘써, 나무를 베어내고 경작을 하니, 실로 염려할 만합니다. 청컨대 목관(牧官)으로 하여금 친히 살피어 한계를 정하여 표지를 세워 경작하고, 벌목하는 것을 금(禁)하여 자식(滋息)에 힘쓰게 하소서.</p>	<p>○濟州點馬別監事目：“一。濟州四面濱海，獨一漢拏山中峙，如二連木、安息香、柚子、榧子木，國用最切，而皆出於此山。近來田夫厭舊務新，斫而耕之，實爲可慮。請令牧官親審，定限立標，禁耕伐，務令滋息。一。如橘、柚、柑子珍異之物，不宜耗絕，令三邑官吏，委定監考，廣植培養，每歲</p>

	<p>1. 귤(橘)·유자(柚子)·감자(柑子) 같은 진귀(珍貴)한 물건은 모절(耗絶)함이 마땅하지 않으니, 3읍의 관리로 하여금 감고(監考)를 위정(委定)하여 넓게 심어서 배양(培養)시키되, 세초(歲抄) 할 때마다 갖추 기록하여 계문(啓聞)하게 하고, 민간(民間)에서 모든 과목(果木)을 잘 심어 드러나게 실효(實効)가 있는 자가 있으면, 계문(啓聞)하여 복호(復戶)하거나 혹은 별례(別例)로 포상(褒賞)함으로써 그 능한 것을 정표(旌表)하게 하소서.</p> <p>1. 제주(濟州)의 자제(子弟)는 현지에서 우대(優待)하고, 그 군직 체아(軍職遞兒)는 이미 일찍이 상정(詳定)하여 양 도목(兩都目)때에 제수(除授)하고 있으나, 그러나 서반(西班)에 직사(職事)가 없이 다만 상체(相遞)2004) 하여 녹봉을 받기 때문에 비록 달리 능함이 있더라도 멀리 경사(京師)에 와서 스스로 그 재주를 팔아야 하니, 동반(東班)에 종사(從仕)하기란 어렵게 되어 실로 가궁(可矜)합니다. 그러니 만일 재행(才行)이 있고, 문필(文筆)이 있는 자는 목관(牧官)으로 하여금 초록(抄錄)하여 아뢰게 하고, 이조(吏曹)에서는 다시 시재(試才)하여 동반(東班)에 서용(敍用)하게 하며, <또> 당귤(唐橘)·왜귤(倭橘) 등의 종자(種子)는 일찍이 이미 3읍에 들여 보내어 재식(栽植)하였으니, 그 재식한 조수(條數)와 배양(培養)한 형상을 점시(點視)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였다.</p>	<p>抄，具錄啓聞。民間有能多植諸菓，顯有實效者，啓聞復戶，或別例褒賞，以旌其能。一。濟州子弟，在所優待，其軍職遞兒，曾已詳定，兩都目除授。然四班無職事，而但相遞受祿，故雖有異能，遠來京師，自售其才，得從仕於東班爲難，誠爲可矜。如有才行、能文筆者，令牧官抄啓，吏曹更試才，敍於東班。唐橘、倭橘等種，曾已入送三邑栽植，其栽植條數及培養之狀，點視啓聞。”</p>
<p>성종 15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2월 6일(계유) 7 번째기사</p>	<p>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이예(李芮)가 치계(馳啓)하기를, “신이 전번의 하유(下諭)로 인하여, 문화현(文化縣)의 옛 노인 전 사직(司直) 최지(崔池)·전 전직(殿直) 최득강(崔得江)을 방문하고 삼성당(三聖堂)의 사적(事跡)을 얻어 그것을 조목으로 기록하여 아뢰입니다. (...)</p> <p>1. 삼성당(三聖堂)을 평양으로 옮긴 뒤로부터 비록 국가에서는 치제(致祭)하지 않았으나, 기우(祈雨)·기청(祈晴)을 할 때는 현관(縣官)이 조복(朝服)을 갖추고 친히 제사지내며, 제사에는 백병(白餅)·백반(白飯)·폐백(幣帛)·실과(實果)를 쓰고 이 밖에 다른 제사는 행할 수가 없는데, 고을의 풍속에는 영험(靈驗)</p>	<p>○黃海道觀察使李芮馳啓曰：“臣因前下諭，訪問文化縣老年人前司直崔池、前殿直崔得江，得三聖堂事跡，條錄以聞。(…) 一，自三聖堂移平壤後，雖國家不致祭，若祈雨、祈晴，縣官具朝服親祭，祭用白餅、白飯、幣帛、實果，此外不得行他祭，邑俗稱爲靈驗，人不敢來祭。一，祈雨龍壇在三聖堂下百</p>

	<p>이 있다고 일컬어 사람들이 감히 와서 제사하지 못합니다.</p> <p>1. 기우 용단(祈雨龍壇)은 삼성당(三聖堂) 아래 백여 보에 있으나, 설치한 날 짜는 알지 못하고, 현(縣)에 소장된 송(宋)나라 경덕(景德) 3년 병오년(2031) 5월 의주(儀注)에는, ‘떡[餅]·밥[飯]·술[酒]과 흰 거위[白鵝]를 사용하여 제사를 행했다.’고 기재되었으나, 지금은 흰 닭[白雞]을 대신 쓰고 돼지는 쓰지 않습니다.</p> <p>1. 삼성당(三聖堂) 아래 근처에는 인가가 조밀(稠密)하였는데, 제사를 파한 뒤로부터 악병(惡病)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인가가 텅 비었습니다. 그러나 닭·돼지를 도살하여 신령이 싫어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p>	<p>餘步，未知設置日月。縣所藏宋景德三年丙午五月儀注載：‘用餅、飯、酒及白鵝，行祭。’今代用白雞，不用豚。一，三聖堂下近處人家稠密，自罷祭後，惡病始發，人家一空，其雞、豚宰殺，爲神所厭之語則未聞。”</p>
<p>성종 15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2월 22일(기축) 3번째기사</p>	<p>임금이 용복(戎服)을 입고 토원(兔院)에 거둥하여 <대왕 대비의> 어가를 맞이하였다. 길에서 한 노옹(老翁)이 옷에 메추리를 달은 것을 보고 즉시 옷 1령(領)을 주었다. 소망울점(小亡兀帖)에 이르러 타위(打圍)하여 노루 8마리와 여우·토끼를 잡고, 연로(沿路)에서 매사냥을 구경하고 토원(兔院)에 이르렀는데, 내금위(內禁衛) 최한망(崔漢望)이 사슴을 쏘아서 올리니, 전지하기를, “오늘의 타위(打圍)는 대비전(大妃殿)을 위하여 신선한 맛을 올리하고자 함이었는데, 너희들이 사슴을 잡았으니 내가 매우 기쁘게 여긴다.”</p> <p>하고, 활 1장(張)을 주었다. 세 대비(大妃)가 주정(晝停)에 이르니, 임금이 어가를 장전(帳殿)에서 맞이하고, 명하여 어가를 따른 종척(宗戚)과 재신(宰臣)에게 먹도록 하였다. 장차 환궁하려고 하자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전지하기를,</p> <p>“내가 힘들게 움직여 신기(身氣)가 편안하지 못해서 천천히 가고자 하니, 청컨대 주상은 먼저 환궁하라.”</p> <p>하니, 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p> <p>“주상(主上)께서 어가를 맞이하기 위하여 오셨으니, 먼저 갈 수 없습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上具戎服，將幸兔院迎駕。路見一老翁，衣懸鶉，卽賜衣一領。至小亡兀帖，打圍，獲獐八及狐、兔，沿路觀放鷹。至兔院，內禁衛崔漢望射鹿以進，傳曰：“今日打圍，爲大妃殿欲進鮮味耳。汝等射鹿，予甚喜焉。”賜弓一張。三大妃至晝停，上迎駕于帳殿，命饋隨駕宗宰。及將還宮，大王大妃傳曰：“予勞動，身氣不安，欲緩行，請上先還。”上黨府院君韓明澮啓曰：“主上旣爲迎駕而來，不可先行也。”從之。</p>
<p>성종 15권, 3년(1472)</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p>	<p>○禮曹啓：“慶尙道觀察使吳伯昌啓本</p>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2월 29일(병신)
5번째기사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오백창(吳伯昌)의 계본(啓本) 안에, 진주(晉州)에 사는 양녀(良女) 득비(得非)는 백성(百姓) 김계남(金戒南)의 처인데, 지아버가 문둥병을 얻어 4년이 되어도 낫지 않았습니다. 득비는 사람의 살로 치료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듣고, 자신의 왼손 네째 손가락을 베어 벌에 말려 가루로 만들어서 음식에 섞어 먹이었던지, 그 병이 마침내 나았다고 하며, 고령(高靈) 사람 백효원(白孝元)은 그 부모가 모두 늙자 봉양(奉養)을 극진하게 하였으며, 아버가 병들어 누우니 3년 동안 시약(侍藥)하면서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아버가 죽자 흙을 저다 무덤을 만들고 처자는 돌보지도 않고 묘 곁에 여막을 치고 몸소 불 때고, 혹은 빌리고 꾸어서 조식의 제사를 바치었으며, 얼마 안되어 어미가 죽자 슬퍼하기를 꼭 같이 하였습니다.

영해(寧海)에 사는 계집종 구음방(仇音方)은 나이 19세에 사노(私奴) 진언(眞言)에게 시집갔는데 나이 35세에 지아버가 죽으니, 그 아버가 과부된 것을 슬퍼하여 그 지조를 뺏으려고 하니, 구음방(仇音方)이 이를 알고서 들로 도망하여 자취를 감추고 여러 날이 되도록 나오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하기를 여러 번 하여 아버가 끝내 그 뜻을 빼앗지 못하였으며, 절개를 지키어 더럽히지 않았고, 또 고기와 마늘을 먹지 않으니 향당(鄉黨)에서 칭복(稱服)하였습니다.

또 청도(淸道) 사람 학생(學生) 이관명(李官明)은 어미가 범에게 물려갔는데, 이관명이 오른손에 철과(鐵把)를 잡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범의 뒤를 쫓아 산에 올라 7, 8리를 가서 어미의 시체를 빼앗아 와 애통(哀痛)하게 벽용(擗踊)하니, 마을 사람이 가련하게 여기어 함께 관곽(棺槨)을 갖추어서 장사지냈습니다.

또 창녕(昌寧) 사람 박운(朴云)·박운산(朴云山)은 선군(船軍) 박중생(朴衆生)의 아들로써, 박운은 나이 14세, 박운산은 나이 8세인데, 하루는 박중생이 두 아이를 데리고 산골에 가서 김을 매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박중생(朴衆生)이 범에게 물리게 되자 박운(朴云)은 작은 도끼를 갖고, 박운산(朴云山)은 그 아버

內: ‘晉州居良女得非, 百姓金戒南妻也。 夫得癩疾, 四年不愈, 得非聞人肉可療, 自斫左手第四指, 曝乾作末, 和飲食饋之, 其疾遂愈。 高靈人白孝元, 其父母俱老, 奉養極至, 父寢疾, 侍藥三年, 不離側。 及歿, 負土成墳, 不顧妻子, 廬於墓側, 躬自炊爨, 或乞貸, 以供朝夕之祭。 未幾母歿, 哀毀如一。 寧海居婢仇音方, 年十九, 嫁私奴眞言, 年三十五夫死, 其父哀其寡, 欲奪其志, 仇音方知之, 潛逃于野, 數日不出, 如是者屢, 父終不能奪, 守節不渝。 又不食肉、茹葷, 鄉黨稱服。 淸道人學生李官明, 母爲虎所搏, 官明右手執鐵把, 左手持炬, 登山尋虎, 行七八里, 奪母屍而來, 哀痛擗踊, 里人憐之, 共備棺槨以葬。 昌寧人朴云、朴云山, 船軍朴衆生之子也, 朴云年十四, 云山年八。 一日, 衆生率二兒, 往耕山谷, 至日暮, 衆生爲虎所搏, 朴云持小斧, 云山扶其父不捨, 追至三十步, 叱虎, 呼天大哭, 虎乃棄去。 朴云護其屍, 與虎相對; 云山奔告里人, 共擔其屍至家, 具棺槨以葬。 咸陽人金氏, 水軍金源之女也。 年十六,

를 붙들고 놓지 않고 30보(步)를 끌러 가다가 범을 꾸짖고 하늘을 부르며 크게 우니, 범이 곧 버리고 갔습니다. 박운(朴云)은 그 시체를 호위하여 범과 더불어 상대하고, 박운산은 마을로 달려와 사람들에게 알려 함께 그 시체를 메고 집에 이르러 관곽(棺槨)을 갖추어서 장사지냈습니다.

또 함양(咸陽) 사람 김씨(金氏)는 수군(水軍) 김원(金源)의 딸인데, 나이 16세에 같은 고을 이양(李陽)에게 시집갔으나 이양이 죽어 초상을 치른 뒤, 그 시아버지 이순의(李順義)가 그 나이 젊음을 가련하게 여겨 다시 혼인[醮]하도록 권유하였으나 김씨는 죽음으로써 스스로 맹세하고 홀로 어미와 더불어 살았는데, 같은 고을 여자근(呂自勤)이 그 아름다움을 듣고 첩으로 삼기 위하여 많은 종복을 데리고 그 집을 습격하여 반드시 얻으려고 하였으나, 김씨는 북쪽 들창으로 나와서 지아버의 무덤에 이르러 풀을 헤치고 자면서 호곡(號哭)하기를, ‘양인(良人)은 알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끌고 함께 죽지 않았습니까?’ 하니, 여자근이 강요할 수 없음을 알고 마침내 돌아갔습니다. 뒤에 박덕룡(朴德龍)이란 자가 있어 또한 아내를 삼으려고 가서 구혼하였으나, 김씨가 분연(奮然)히 꾸짖으니 그 태도가 너무도 의연(毅然)하여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씨는 박덕룡을 피하여 형(兄)의 집에 옮겨 가서 살았는데, 박덕룡이 다시 와서 구혼하자, 그 형이 말하기를, ‘너를 사모하는 사람이 많으니 너는 반드시 면하지 못할 것이다. 가난하게 과부로 사는 것보다 시집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하니, 김씨가 길게 한숨을 쉬며 슬피 울었습니다. 어미는 그가 죽을까 두려워 늘 지켰는데, 어느 날 밤에 어미가 조금 해이(懈弛)하자 김씨는 이미 지붕 마루에 목을 매었습니다.

또 학생(學生) 박유효(朴由孝)는 집이 가난하나 맛난 음식으로 부모를 봉양함에 결함이 없었고, 아버가 죽자 7일 동안 미음[飭粥]도 입에 들이지 않았으며, 묘 곁에 여막(廬幕)을 지어 스스로 밥을 짓고, 조석 상식과 삭망의 제수(祭需)를 여러 아우에게 취하여 관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우 중에 돕고

適同郡李陽，陽死，喪畢，其舅順義，憐其年少，諭以更醮，金氏以死自誓，獨與母居。同邑呂自勤聞其美，欲娶以爲妾，盛僕從襲其家，必欲得之。金從北牖出，至夫墳，披草而宿，號哭曰：‘良人有知？何不携我俱亡？’自勤知不可強，遂還。後有朴德龍者亦欲爲妻，往求焉，金奮罵毅然，不可干。金避德龍，移居兄家，德龍復往求焉，其兄曰：‘人多慕汝，汝必不免。與其貧窶而孀居，孰若從之爲愈？’金太息悲泣。母懼其死，常守之，是夜，母稍懈，金已經於屋梁矣。學生朴由孝家貧，養親甘旨無缺。父歿七日，飭粥不入口，廬于墓側，躬自炊飪，朝夕朔望之需，不取辦於諸弟。諸弟有欲助者，輒却之曰：‘幸忝長嗣，敢煩弟、妹乎？’居二年，其母疾篤，迎置齋廬，奉藥餌，疾轉劇，由孝取其糞嘗之，味恬益，憂懼不自勝。母歿，合窆父塋，居廬五年。生員表沿沫，平生篤學力行，丁母憂哀毀踰制，小祥始蔬食，居廬三年，不飲酒、不見齒，夜不解帶，塋域之外，足不一躡焉。治喪事，一依朱文公《家禮》，鄉里化

자 하는 자가 있어도 번번이 물리치며 말하기를, ‘다행히 큰 자식이 된 것을 고맙게 여기는데, 감히 아우나 누이를 번거롭게 하겠느냐?’ 하며 2년을 살다가 어미의 병이 위독하자 재려(齋廬)에 맞이하여 두고 약과 음식을 봉양하였으며, 병이 심하게 되자 박유효는 그 똥을 취하여 맛보고, 맛이 달므로 더욱 걱정하여 근심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어미가 죽자 아버지의 무덤에 합장(合葬)하여 여묘(廬墓) 5년을 살았습니다.

또 생원(生員) 표연말(表沿沫)은 평생에 학문과 행실을 행하였으며, 어미의 상을 당하자 애훼(哀毀)함이 제도를 넘고 소상(小祥)에야 비로소 소채를 먹었고, 여묘에서 3년을 살며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이를 보이고 웃지 않았으며, 밤에 띠를 풀지 않았고, 영역(塋域) 밖에는 한 번도 발을 딛지 않았습니다. 상사(喪事)를 다스리는 데는 한결같이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에 의하니, 향리(鄉里)가 감화하여 불재(佛齋)를 폐한 자가 있으며, 3년상을 마친 뒤 형제를 모아 유산을 나누는데, 노비[臧獲]의 젊고 장성한 자는 형들이 모두 스스로 점유하려고 하니, 표연말(表沿沫)이 눈물을 흘리며 호느껴 말하기를, ‘어머님은 평상시에 이 노비를 모두 소매(少妹)에게 소속시킬 뜻이었는데, 아직 신령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거늘 차마 그 뜻을 저버리겠습니까?’ 하고 마침내 노약(老弱)한 자를 취하여 먼저 자기에게 예속하니, 형들이 부끄러워 감히 논박하지 못하였습니다. 향중(鄉中)에 지식이 있는 자가 모두 말하기를, ‘표연말의 아들의 행실은 설포(薛包)에게도 부끄러울 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창녕(昌寧) 사람 정씨(鄭氏)는 나이 20에 사온 직장(司醞直長) 곽승의(郭崇儀)에게 시집을 가 서울에서 살다가 곽승의가 죽으니, 정씨는 상여[輿柩]를 따라 향리(鄉里)에 장사지내고 드디어 묘 곁에 집을 만들어 밤낮으로 애통해 하며, 아침저녁으로 몸소 전(奠)을 드려 처음과 끝이 한결같았으며, 초상을 마치고는 시부모[舅姑]를 섬기기를 조금도 게으르게 하지 않았으며, 질병과 우환(憂患)에는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고, 지아버가 죽은 지 10년이 되어도

之, 有廢佛齋者。 服闋, 會兄弟, 分遺財, 臧獲之少壯者, 諸兄皆欲自占, 沿沫嗚咽流涕曰: ‘慈氏平時, 此奴婢俱屬意於少妹, 靈爽如在, 其忍背諸?’ 遂取其老弱者, 先隸於己, 諸兄慙赧, 莫敢駁焉。 鄉人有識者皆曰: ‘表子之行, 無愧薛包。’ 昌寧人鄭氏, 年二十, 嫁司醞直長郭崇儀居京。 崇儀死, 鄭氏輿柩還葬鄉里, 遂作室墓傍, 日夜哀慟, 朝夕親奠, 終始如一。 喪畢, 事舅姑, 未嘗或怠, 疾病、憂患, 暫不離側。 夫亡十年, 不食肉, 不輟朔望之祭。 臣等參詳《大典》勸獎條云: ‘孝友、節義特異者, 賞職、或賞物; 尤異者旌門、復戶。’ 得非、仇音方、李官明、朴云、云山、郭崇儀妻鄭氏, 行義卓異, 請令所在官, 復戶、旌門; 李陽妻金氏, 貞烈特異, 請令所在官, 致奠、旌門; 白孝元、朴由孝、表沿沫, 孝行可嘉, 請令吏、兵曹, 隨才擢用, 以示勸獎。” 從之。 又特賜朴云、云山米、豆并十碩。

	<p>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삭망(朔望)의 제사를 거두지 않았다고 합니다.</p> <p>신 등이 《대전(大典)》의 권장하는 조목을 자세히 보니, 이르기를, ‘효우(孝友)와 절의(節義)가 특이한 자는 벼슬, 혹은 물건으로 상을 주고, 더욱 특이한 자는 정문(旌門)·복호(復戶)한다.’ 하였으니, 득비(得非)·구음방(仇音方)·이관명(李官明)·박운(朴云)·박운산(朴云山)·곽승의(郭崇儀)의 처 정씨(鄭氏)는 행의(行義)가 뛰어나게 특이하니, 청컨대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복호(復戶)하고 정문(旌門)하게 하며, 이양(李陽)의 처 김씨(金氏)는 정렬(貞烈)이 특이하니, 청컨대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전(奠)을 드리고 정문(旌門)하게 하며, 백효원(白孝元)·박유효(朴由孝)·표연말(表沿沫)은 효행(孝行)이 가상할 만하니, 청컨대 이조(吏曹)·병조(兵曹)로 하여금 재주에 따라 탁용(擢用)하여 권장하는 뜻을 보이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르고, 또 특별히 박운(朴云)·박운산(朴云山)에게는 쌀·콩 아울러 10석(碩)을 내려 주었다.</p>	
<p>성종 17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4월 15일(신사) 3번째기사</p>	<p>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정난종(鄭蘭宗)에게 글을 내리기를, “귀화[向化]한 행 부호군(行副護軍) 동청주(童淸周)와 낭삼파(浪三波)가 지금 본가(本家)로 가니, 그들에게 각각 쌀·콩 아울러 10석(碩)과 소금[鹽] 10석, 장(醬) 1석씩을 내려 주라.” 하였다.</p>	<p>○下書永安道觀察使鄭蘭宗曰：“向化行副護軍童淸周、浪三波，今往本家，其各賜米、豆并十碩、鹽十碩、醬一碩。”</p>
<p>성종 17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4월 17일(계미) 3번째기사</p>	<p>호조에서 평안도 관찰사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창성(昌城)에서 실화(失火)하여 창곡(倉穀) 1천 8백여 석(碩)이 불에 타고, 민가(民家) 89호가 연소(延燒)되어 남녀(男女) 7명이 소사(燒死)하고, 관사(官舍)와 공야(公衙)·창고(倉庫) 등이 남김없이 다 타버렸습니다. 지금 계본의 내용을 상고하건대, 창성의 잡곡(雜穀)이 회계(會計)한 숫자와 같지 않으니, 이는 진실로 의심스럽습니다. 민가가 불에 타고, 인물(人物)이 사상(死傷)한 숫자도 아마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청컨대 본도(本道)의 분대(分臺) 조민(趙岷)으로 하여금 추국(推鞠)하게 하고, 또 그 도(道)의 도사(都事)로 하</p>	<p>○戶曹據平安道觀察使啓本啓：“昌城失火，燒倉穀一千八百餘碩，延燒民家八十九，男女七名燒死，官舍、公衙、倉庫蕩然無餘。今考啓本內，昌城雜穀，與會計數不同，此固可疑。民家焚燒、人物死傷之數，又恐不止此。請令本道分臺趙岷推鞠，又令其道都事，以燒餘穀二千三百碩、醬四十五</p>

	<p>여금 타고 남은 곡식 2천 3백 석과 장(醬) 45석, 소금[鹽] 12석을 가지고 본 고을의 인민(人民)들에게 진급(賑給)하게 하소서. 부사(府使) 조유형(趙由亨)이 죄를 면하기를 꾀하여, ‘창주(昌洲)에서 돌아오다가 길에서 화재의 소식을 들었다.’고 핑계를 하는데, 이는 반드시 거짓말일 것이며, 관찰사 이계손(李繼孫)은 함부로 군자창(軍資倉)의 곡식을 발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청컨대 조유형의 직(職)을 과하시고, 유사(攸司)로 하여금 이계손을 국문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르고, 이계손은 국문하지 말도록 명하였다.</p>	<p>碩、鹽六十二碩，賑給本邑人民。 府使趙由亨謀欲免罪，託言：‘自昌洲而還路，聞火災。’ 此必詐說。 觀察使李繼孫擅發軍資倉穀，散給於民，請罷由亨職，令攸司鞫繼孫。” 從之，命勿鞫繼孫。</p>
<p>성종 17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4월 17일(계미) 6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금년의 한재(旱災)는 예전에 비하여 더욱 심해서, 밀·보리[兩麥]가 풍년이 들지 못하였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내세(來歲)의 계획을 생각지 못하고, 보리 이삭이 겨우 익기가 무섭게 바로 거두어 먹어서, 환자[還上]를 받은 것도 이미 상환(償還)할 수 없고, 또 그 종자(種子)도 스스로 갖출 수 없사오니, 진실로 걱정이 됩니다.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군자창(軍資倉)의 진피곡(陳皮穀)2271) 으로 햇곡[新穀]과 바꾸어서明年的 종자를 갖추게 하고, 만약에 수령(守令)이 쓰지 못할 잡곡(雜穀)을 백성에게 주어서 원망하고 고통스럽게 한 자는, <백성들로 하여금> 진소(陳訴)하도록 허락하여 치죄(治罪)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啓：“今年旱災，比舊尤甚，兩麥不登，愚民不爲來歲之計，麥穗纔熟，旋取而食，所受還上，既不能償，又不能自備其種，誠爲可慮。 令諸道觀察使，以軍資倉陳皮穀，換新穀，以備明年之種。 若守令以不用雜穀給民，使之怨苦者，許令陳訴治罪。” 從之。</p>
<p>성종 17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4월 17일(계미) 9번째기사</p>	<p>호조에 전지하기를, “듣건대, 여러 고을에 새끼 치는 어미 돼지[孳息母猪]의 수가 너무 많아서 백성들의 전곡(田穀)을 해친다 하니, 각년(各年)의 새끼친 돼지를, 경중(京中)에 상납(上納)하는 것과 관가(官家)에 소용(所用)되는 것 외에는 모두 화매(和賣)하여, 원액(元額)을 넘지 말게 하라.”</p> <p>하였다.</p>	<p>○傳于戶曹曰：“聞諸邑孳息母猪之數猥多，害民田穀。 其各年孳息之猪，京中上納及官家所用外，竝和賣，使毋過元額。”</p>
<p>출처</p>	<p>내용</p>	<p>원문</p>

성종 18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5월 6일(임인) 2
 번째기사

상정청(詳定廳)에서 아뢰기를,
 “황해도의 공물(貢物)로 정한 황두(黃豆)가 본래 8천 2백 78석(碩)이고, 조미(造米)는 본래 2만 3백 85석입니다. 지금 본도(本道)의 전안(田案)을 상고하니, 밭[田]이 7만 2천 27결(結)에 하하년(下下年)2327) 에 거두는 황두가 1만 9천 2백 7석이니, 공물로 정한 외에 남는 황두가 1만 9백 28석이고, 논[水田]이 2만 4천 2백 52결에 하하년에 거두는 조미가 6천 4백 67석이니, 공물로 정한 가운데에서 부족한 것이 1만 3천 8백 91석입니다. 또 황해도는 지경(地境)이 평안도와 연결하였으므로, 주창(州倉)에 저장(儲藏)하지 않을 수 없으니, 창곡(倉穀)으로 납입(納入)할 황두 2천 9백 28석과 조미 4백 25석을 합하여 제(除)하면, 조미의 부족한 숫자는 실제로 1만 4천 3백 16석이고, 황두의 남는 숫자는 실제로 8천 석입니다. 지금 광흥창(廣興倉)의 용도(用度)가 더해진 것은 있어도 감(減)해진 것은 없어서 공물로 정한 것으로는 숫자를 채우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남는 황두 8천 석을 전미(田米)로 하여 만들면 4천 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제도(諸道)의 관찰사(觀察使)와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 및 우후(虞候)·평사(評事)를 모두 경관(京官)으로 겸임해 차정하고, 내시부(內示府)의 가설 체아(加設遞兒)2329) 10명과 장원서(掌苑署)의 예비 체아(豫備遞兒) 10명, 부사알 체아(副司謁遞兒) 1명을 모두 혁파(革罷)하여 없애면, 그 1년의 녹봉(祿俸)으로 쌀 1천 8백 82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남해(南海)와 거제(巨濟) 두 고을의 전세(田稅)를 이 앞서는 주창(州倉)에 납입(納入)하였는데, 해도(海島)의 작은 고을에 해마다 수납(輸納)하여 많이 쌓는 것은 미편(未便)하니, 그 조미 6백 석을 웅천(熊川)으로 납입하여 왜료(倭料)로 충당하고, 그 윗 도[上道]의 여러 고을의 왜료(倭料)를 빼내면, 쌀 6백 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충청도의 조미 1천 1백 75석과 경상도의 조미 1천 7백 79석과 전라도의 조미 4천 8백 80석을 광흥창(廣興倉)으로 이정(移定)하여 납입하게 해서 그 숫자를 채우소서.”

○詳定廳啓: “黃海道定貢: 黃豆本八千二百七十八碩, 造米本二萬三百八十五碩。而今考本道田案, 田七萬二千二十七結, 下下年所收黃豆一萬九千二百七碩, 則於定貢之外, 剩黃豆一萬九百二十八碩; 水田二萬四千二百五十二結, 下下年所收造米六千四百六十七碩, 則定貢之內, 不足一萬三千八百九十一碩。且黃海道境連平安道, 州倉不可不儲, 倉穀所納黃豆二千九百二十八碩、造米四百二十五碩計除, 則造米不足之數, 實一萬四千三百十六碩, 黃豆剩數, 實八千碩也。今廣興倉用度, 有加無減, 其於定貢, 充數爲難。請以剩黃豆八千碩, 作田米, 可得四千碩。又諸道觀察使、兵馬·水軍節度使、虞候、(詳) [評] 事, 竝以京官兼差, 內侍府加設遞兒十、掌苑署預備遞兒十、副司謁遞兒一竝革除, 則其一年祿俸, 可得米一千八百八十二碩。又南海、巨濟兩官田稅, 前此納于州倉, 海島小邑, 年年輸納, 多積未便。其造米六百石, 納于熊川, 以充倭料, 其上道諸郡倭料抽出, 則可得米六百碩。又以忠淸道造米一千一百七十五碩、

	하니, 그대로 따랐다.	慶尙道造米一千七百七十九碩、全羅道造米四千八百八十碩，移定納于廣興倉，以充其數。”從之。
성종 18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5월 7일(계묘) 5 번째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전교(傳敎)를 받들기를, ‘남녀(男女)가 혼인하여 함께 사는 것이 인간(人間)의 대륜(大倫)이니, 만약에 혹 시기를 어기면 반드시 화기(和氣)를 상하는 데 이를 것이다. 지금 혹 가장(家長)이 불초(不肖)하거나 집안이 가난함으로 인하여 나이 30이나 40에 이르도록 혼인하지 못한 자가 있을 것이니, 때에 미처서 혼가(婚嫁)할 절목(節目)을 상의(商議)하여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공경히 중외(中外)에 알려져 처녀(處女)의 나이 2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그 가계(家計)를 모두 조사하게 하였는데, 집안이 가난하여 예(禮)를 갖추지 못하는 자들이니, 청컨대 횡간(橫看)에 의하여 쌀·콩 아울러 10석을 주어서 자장(資裝)을 삼게 하고, 사족(士族)이 아닌 자는 반(半)을 감(減)하여 제급(題給)하되, 자장(資裝)을 받고 이미 납채(納采)한 자는 20일로 한정(限定)하고, 납채하지 않은 자는 한 달로 한정하여 성혼(成婚)하도록 독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禮曹啓：“頃承傳敎：‘男女居室，人之大倫，苟或愆期，必至傷和。今或因家長不肖，或因家貧，至三十、四十而未嫁者有之，其趁時婚嫁節目，商議以啓。’臣等敬此知會中外，其處女年二十五歲以上者，悉令搜訪，其家計貧窮，不能備禮者，請依橫看，給米、豆并十石，以爲資裝。其非士族者，減半題給，受資裝，已納采者，限二十日，未納采者，限一朔，督令成婚。”從之。
성종 18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5월 9일(을사) 2 번째기사	춘추관 영사(春秋管領事) 신숙주(申叔舟) 등이 《睿宗大王實錄》을 올렸으므로, 선은(宣醞)을 내려 주었다.	○春秋館領事申叔舟等進《睿宗大王實錄》，賜宣醞。
성종 18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5월 9일(을사) 6 번째기사	호조에 전지하여, 서하 부부인(西河府夫人)의 부의(賻儀)로 쌀·콩 각각 1백 석과 종이 2백 권(卷), 백면포(白綿布) 10필, 백저포(白苧布) 10필, 정포(正布) 1백 필을 내려 주었다.	○傳旨戶曹，賜西河府夫人賻米·豆各一百碩、紙二百卷、白綿布十四、白苧布十四、正布一百匹。
성종 18권, 3년(1472)	한강 도승(漢江渡丞) 심지(沈智)가 와서 아뢰기를,	○漢江渡丞沈智來啓曰：“忠淸道堤川

<p>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5월 18일(갑인) 4번째기사</p>	<p>“충청도 제천(堤川)의 정병(正兵) 김중선(金仲善) 등 6인이 본현(本縣)에서 뗏목[桴]을 타고 양근군(楊根郡) 지경에 이르렀다가, 큰 물을 만나서 뗏목이 풀리어 3인은 익사(溺死)하고 김중선 등 3인은 부서진 뗏목을 같이 타고 한강(漢江)에 표류하여 이르렀으므로, 신이 이를 구원해 내었습니다.” 하니 특별히 심지에게 한 자급(資級)을 더하고, 김중선 등에게 쌀을 내려 주었다.</p>	<p>正兵金仲善等六人，自本縣乘桴，至楊根郡界，遇大水桴解，三人溺死，仲善等三人同乘敗桴漂，至漢江，臣援出之。” 特加沈智一資，賜仲善等米。</p>
<p>성종 18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5월 21일(정사) 4번째기사</p>	<p>예조에서 아뢰기를, “근래에 모든 대소 제향(大小祭享)의 치재(致齋) 하는 날에 향관(享官)과 집사(執事)가 술을 함부로 마시고 훈채(葷菜)를 먹어 신(神)을 업신여기고 법(法)을 가볍게 여기는데도, 제감(祭監)이 이를 검찰(檢察)하지 아니하여 마침내 폐습(弊習)을 이루었으니, 금후로는 감찰(監察)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만약에 범(犯)하는 자가 있으면 파출(罷黜)하게 하소서. 또 외방(外方)에서 모든 제사에 관한 일을 문구(文具)로만 보고 재계(齋戒)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혹 친히 행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제기(祭器)와 전물(奠物) 또한 정결(淨潔)하지 않으니, 금후로는 모든 제사에 관계되는 일을 제도(諸道)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검찰하게 하여, 만약에 어기는 자가 있으면 계문(啓聞)하여 중하게 논죄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近來凡大小祭享致齋之日，享官、執事縱酒茹葷，慢神蔑法，而祭監不之檢察，遂成弊習。今後令監察舉劾，如有犯者罷黜。且外方一應祀事，視爲文具，非徒不齋，或不親行，至於祭器、奠物亦不淨潔，今後凡干祀事，令諸道觀察使檢察，如有違者，啓聞重論。” 從之。</p>
<p>성종 19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6월 9일(갑술) 3 번째기사</p>	<p>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윤필상(尹弼商)·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김양경(金良暉)에게 하서(下書)하여 이르기를, “윤대(輪對)한 사람이 말하기를, ‘본도(本道)에서 오징어[烏賊魚]가 생산되나 몸이 작아서 제주도(濟州島)에서 생산되는 것과 같지 아니한데, 이제 큰 것을 얻어 공진(供進)하려고 하니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하며, 기타(其他)의 해착(海錯)도 생산되고 생산되지 아니함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일체(一切)를 여러 고을에 나누어 정하여서 들이게 하니 진실로 불가합니다.’ 하니, 금후에는 생산하는 바에 따라서 봉진(封進)하고 백성에게 폐단을 끼치지 말게 하라.”</p>	<p>○下書慶尙道觀察使尹弼商、全羅道觀察使金良暉曰： 輪對者有言：“本道產烏賊魚體小，不如濟州之產，今求得大者供進，其弊不少。其他海錯，不分產、不產，一切分定諸郡責納，固不可。” 今後隨所產封進，勿貽弊於民。</p>

<p>성종 19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6월 14일(기묘) 3번째기사</p>	<p>하였다. 제도 관찰사(諸道觀察使)에게 유시하기를, “근일의 수재(水災)가 너무 심하여 벼가 손상(損傷)되었으므로 백성들이 장차 생업(生業)을 잃게 되었으니, 내가 매우 염려한다. 만약 재상전(災傷田)에 팔· 조·메밀을 다시 심으면 마땅히 서성(西成)의 희망이 있을 것이다. 궁한 백성 이 자력(自力)으로 관출(辦出)하지 못하는 자는 관(官)에서 곡식 종자를 주고, 여러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친히 다니면서 권하고 독려하게 하며, 경(卿)도 또한 순회하고 살피어 시기를 잃지 말게 하라.” 하였다.</p>	<p>○諭諸道觀察使曰：“近日水災太甚， 禾稼損傷，民將失業，予甚慮焉。若 於災傷之田，再種豆、粟、蕎麥，則當 有西成之望。窮民力不能自辦者，官 給穀種，令諸邑守令，親自勸督，卿亦 巡審，毋令失時。”</p>
<p>성종 20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7월 12일(정미) 1번째기사</p>	<p>어유소를 불러 원상과 승지들로 하여금 고기를 권하게 하였다.</p>	<p>○丁未/命召魚有沼， 令院相、承旨， 勸肉。</p>
<p>성종 20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7월 17일(임자) 1번째기사</p>	<p>중정국(宗貞國)의 특송(特送) 가와로(可臥老)·이신도로(而信都老) 등이 하직하 였다. 예조의 답서에 이르기를, “옛적부터 두 나라의 교제가 처음에는 비록 정호(情好)가 심히 돈독하였으나 마침내는 혹 변함이 있었던 것은, 반드시 간사한 사람이 그 사이를 교란(交 亂)시켰기 때문이다. 지난 번에 간사한 사람이 속여서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 였기 때문에 귀국의 사자인 종대선(宗大膳)이 돌아갈 때 우리 임금의 뜻을 받 들어 서계를 보내어서 통유(通諭)한 것은, 대개 족하(足下)로 하여금 금령(禁 令)을 거둬 밝히어 뒷사람을 경계하고자 한 것이다. 어찌 이왕의 죄(罪)를 추 구(追咎)하여 중(重)한 법에 처할 줄이야 생각하였겠느냐? 실로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족하가 명을 듣고 곧 봉행하여 간사한 무리로 하여금 두 려워하여 스스로 나쁜 짓을 그치게 하였으니, 깊이 신의(信義)를 알고 사대 (事大)하는 정성이 있으며 강명(剛明) 과단(果斷)한 자가 아니면, 어찌 능히 이에 이르겠느냐? 정성을 미루어 서로 대접하고 길이 돈독하여 변하지 않기</p>	<p>○壬子/宗貞國特送可臥老、而信都老 等辭，禮曹答書曰： 自古，兩國之交，始雖情好甚篤，終或 有渝者，必因姦人，交亂其間也。曩 者聞有細人，欺詐圖利，故貴使者宗大 膳之還，敬奉王旨，致書通諭，蓋欲足 下申明禁令，以警復來耳。豈意追咎 已往之罪，置之重典乎？實所不忍，然 足下聞命，卽能奉行，使姦細之徒，畏 懼自戢，非深知信義，誠於事大，而剛 明果斷者，焉能及此？推誠相待，永篤 不渝，正可期也。具由以啓，我殿下 深用嘉尚，特賜物件，具如別幅。馬</p>

를 정히 기약하겠도다. 사유를 갖추어 계달하였더니, 우리 전하께서 깊이 가상(嘉尙)하게 여기시어, 특별히 별폭(別幅)과 같이 하사한다.” 하였다. 그 별폭은 이러하였다.

“말[馬] 1필, 안장[鞍子] 1면(面), 남사 피륙(藍斜皮勒), 전피 피체(狹皮皮替), 전피 한체(狹皮汗替), 녹색찻(綠色黏), 단자침(段子簪), 보로구(甫老具), 백세면주(白細綿紬) 10필, 백세면포(白細綿布) 10필, 흑세 마포(黑細麻布) 10필, 호피(虎皮) 2장, 표피(豹皮) 2장, 잡채화석(雜菜花席) 5장, 병풍(屏風) 1좌(坐), 동분(銅盆) 2사(事), 동로(銅爐) 2사, 중경(中鏡) 1사, 흑초립(黑草笠) 1부(部), 옥정자(玉頂子), 황동대(黃銅臺), 홍상모(紅象毛), 운월아(雲月兒), 후정자(後頂子) 침속주(沈束珠), 수정주(水晶珠), 격자교관(隔子交貫), 입갑(笠匣), 유모구 자적진사(油帽具紫的眞絲), 세조(細條), 십이요(十二腰), 비견석 토환구 수량(飛堅石吐環具繡囊) 1부, 수밀위(繡密韋) 1부, 백어피과(白魚皮褰) 삼병 도자(三并刀子) 1부, 흑사 피화(黑斜皮靴) 1부, 투정구(套精具), 대홍 단자(大紅段子), 수호슬(繡護膝) 1부, 각궁(角弓) 1장, 녹비 가구(鹿皮家具), 대전(大箭) 6매(枚), 통구 흑사피 궁대(筒具黑斜皮弓筒) 1부, 유모구 저피 통개(油帽具豬皮筒介) 1부, 남사 피개(藍斜皮蓋), 아표미(兒豹尾) 1쌍, 유모구 유둔(油帽具油菴) 2부, 백접선(白摺扇) 1백 과(把), 쌀 1백 석(碩), 황두(黃豆) 1백 석, 진임자(眞荏子) 2석, 청밀(淸蜜) 5두(斗), 계(桂) 3각(角), 다식(茶食) 3각, 해송자(海松子) 2석, 소주(燒酒) 30병, 토의 정포(土宜正布) 20필, 면포(綿布) 11필.”

수호 대관(守護大官) 종성준(宗盛俊)에게 보내는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우리 전하께서 도주(島主)가 더욱 돈독하게 정성을 바치는 것을 깊이 가상하게 여기어 특별히 포장(褒獎)을 더하여 특수한 은혜를 보이고, 겸하여 족하(足下)에게 백세 면포(白細綿布) 5필, 흑세 마포(黑細麻布) 5필, 호피(虎皮) 1장, 표피(豹皮) 1장, 쌀 15석, 황두(黃豆) 15석, 소주(燒酒) 10병, 계(桂) 1각,

一匹、鞍子一面、藍斜皮勒狹皮皮替狹皮汗替綠色黏段子簪甫老具、白細綿紬一十匹、白細綿布一十匹、黑細麻布一十匹、虎皮二張、豹皮二張、雜彩花席五張、屏風一坐、銅盆二事、銅爐二事、中鏡一事、黑草笠一部、玉頂子黃銅臺紅象毛雲月兒後頂子沈束珠水晶珠隔子交貫笠匣油帽具紫的眞絲細條十二腰、飛堅石吐環具繡囊一部、繡密韋一部、白魚皮褰三并刀子一部、黑斜皮靴一部、套精具大紅段子繡護膝一部、角弓一張、鹿皮家具大箭六枚、筒具黑斜皮弓筒一部、油帽具豬皮筒介一部、藍斜皮蓋兒豹尾一雙、油帽具油菴二部、白摺扇一百把、米一百碩黃豆一百碩、眞荏子二碩、淸蜜五斗、桂三角、茶食三角、海松子二碩、燒酒三十瓶、土宜正布二十四、綿布一十一匹。

守護代官宗盛俊處書契曰：我殿下深嘉島主輸誠益篤，特加褒獎，用示殊恩，兼賜足下，白細綿布五匹、黑細麻布五匹、虎皮一張、豹皮一張、米一十五碩、黃豆一十五碩、燒酒一十瓶、桂一角、茶食一角，照領。

	<p>다식(茶食) 1각을 하사하니, 참조하여 수령하라.” 하였다. 종정수(宗貞秀)에게 보낸 서계에 이르기를, “도주가 능히 성심으로 큰 나라를 섬기어 무릇 통유(通諭)하는 일을 곧 봉행하니, 우리 전하께서 깊이 즐거워하여 특별히 포상을 가하고, 겸하여 족하(足下)에게 백세 면포(白細綿布) 5필, 흑세 마포(黑細麻布) 5필, 호피(虎皮) 1장, 표피(豹皮) 1장, 쌀 15석, 황두(黃豆) 15석, 소주(燒酒) 10병, 계(桂) 1각, 다식(茶食) 1각을 하사하니, 참조하여 수령하라.” 하였다. (…)</p>	<p>宗貞秀處書契曰： 島主能誠心事大，凡於通諭旋即奉行，我殿下深用喜悅，特加褒賞，兼賜足下，白細絁布五匹、黑細麻布五匹、虎皮一張、豹皮一張、米一十五碩、黃豆一十五碩、燒酒一十瓶、桂一角、茶食一角，照領。(…)</p>
<p>성종 20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7월 19일(갑인) 5번째기사</p>	<p>원상(院相) 등이 아뢰기를, “해는 비록 풍년이 아니지만 여러 고을 가운데에는 심하게 실농(失農)하지 아니한 곳이 있으니, 청컨대 모든 도(道)의 진상(進上)하는 물선(物膳)과 대전(大殿)의 향온(香醞)은 구례에 의하여 공진(供進)하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실농한 도(道) 외에는 각전(各殿)의 진상(進上)은 한 달에 한 번 봉진(封進)하고, 술[酒]은 구례에 의하여 봉진하라.” 하였다.</p>	<p>○院相等啓曰：“年雖不稔，諸郡之中有不甚失農者，請諸道進上物膳及大殿香醞，依舊供進。”傳曰：“失農諸道外各殿進上，則一朔一度封進，酒可依舊封進。”</p>
<p>성종 20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7월 26일(신유) 4번째기사</p>	<p>호조에서 평안도 관찰사 이계손(李繼孫)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본도의 강계(江界)·위원(渭源)·이산(理山)·벽동(碧潼)·창성(昌城)·삭주(朔州)·의주(義州) 등의 관(官)에 군수(軍需)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풍년이 들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시에 곡식을 운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창성(昌城) 본 고을의 창고는 불에 소실되었고, 속현(屬縣)인 청산(靑山)의 창고 곡식은 적으므로 급한 일이 있을 때에 가져다 쓰기 어려우며, 또 두어 고을 가운데 벽동의 곡식이 더욱 적으니, 청컨대 삭주(朔州)의 군자 미두(軍資米豆)를 창성에 옮기고, 운산(雲山)의 군자미(軍資米)를 벽동에 옮기고, 안주창(安州倉)의 미두(米豆)를 운산과 삭주에 옮기어, 그 숫자를 채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據平安道觀察使李繼孫啓本啓：“本道江界、渭源、理山、碧潼、昌城、朔州、義州等官，軍需不敷，然今歲不登，一時輸穀爲難。但昌城本邑之倉失火，屬縣靑山，倉穀少，緩急取辦亦難。且數郡之中，碧潼之粟尤少。請以朔州軍資米、豆，移昌城；以雲山軍資米，移碧潼；以安州倉米、豆，移雲山、朔州，以充其數。”從之。</p>

<p>성종 20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7월 29일(갑자) 6번째기사</p>	<p>호조에서 아뢰기를, “금년 경기(京畿)의 수재(水災)는 다른 도에 비교하여 더욱 심한데, 이제 또 바람의 변괴가 이와 같기에 이르러서 교하(交河) 등의 여러 고을은 화곡(禾穀)이 손상하여 거의 없어졌습니다. 구황(救荒)할 사건(事件)을 뒤에 갖추어 기록합니다. (…) 1. 보리와 밀을 옛날보다 갑절 경종(耕種)해야 기근을 면할 것이니, 청컨대 전세(田稅)의 밀[眞麥]을 소재한 고을의 창고에 들어 백성들에게 주어서 경종하게 하고, 또 조사(朝士)의 농장(農莊)이 기내(畿內)에 많이 있으니, 그 주인으로 하여금 종자를 많이 준비하여 경종을 권하게 하고, 만약 보리와 밀을 많이 저축하여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으면 그 고을의 창고에 있는 미곡으로 무역하여 바꾸게 하고, 또 전묘(田畝)는 거름을 준 연 후에야 보리와 밀이 잘 되는 것이니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살펴 보게 하고, 모름지기 8월에 파종(播種)하게 하고 파종한 숫자를 기록하여 계달하게 하소서. (…)</p>	<p>○戶曹啓: “今年京畿水災, 比他道尤甚, 今又風變至此, 如交河等諸邑, 禾穀損傷殆盡。 救荒事件, 具錄于後。 (…) 一, 兩麥須倍舊耕種, 庶免饑饉, 請田稅眞麥納於所在州倉, 給民耕種, 且朝士農莊畿內居多, 令其主多備種勸耕, 如有多畜兩麥可以分人者, 以州倉米穀質換。 且糞治田畝, 然後兩麥可成, 令觀察使省視, 須趁八月播種, 其播種之數, 錄啓。 (…)</p>
<p>성종 21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8월 23일(정해) 3번째기사</p>	<p>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윤계겸(尹繼謙)에게 글을 내려 이르기를, “도내(道內) 광주(廣州) 사람 한덕만(韓德萬)이 강도(強盜)를 만나서 아내와 자식이 죽음을 당하고 재산(財産)이 다 불타버려서 가궁(可矜)하니, 특별히 본주(本州)의 군자창(軍資倉)에서 쌀·콩 각각 1석, 소금·장 각각 열 말을 주고, 또 서울 가운데 행랑(行廊) 한 칸과 면포(綿布)·유의(襦衣)와 단의(單衣) 각각 1벌을 주도록 하되, 경(卿)이 이를 타이르도록 하라.” 하였다.</p>	<p>○下書京畿觀察使尹繼謙曰: 道內廣州人韓德萬, 遭強盜, 妻子被殺, 財産盡燒, 可矜。 特給本州軍資倉米豆各一碩、鹽醬各十斗, 又給京中行廊一間, 綿布襦衣、單衣各一領, 卿其諭之。</p>
<p>성종 23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10월 12일(을해) 2번째기사</p>	<p>평안도 관찰사 이계손(李繼孫)에게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새로 상정(詳定)한 것 가운데 중국에 입조(入朝)하는 사신(使臣)의 건량(乾糧)은 정사(正使)·부사(副使)·단사(單使)를 막론하고 모두 80두(斗)를 주고 의정(議政)은 10두를 더 주되, 이번 정조사(正朝使)의 사행(使行)부터 시작하여 상정한 수에 의해서 지급하라.” 하였다.</p>	<p>○下書平安道觀察使李繼孫曰: 新詳定內, 入朝使臣乾糧, 勿論使、副使、單使, 竝給八十斗, 議政加十斗, 今次正朝使之行始, 依詳定數, 題給。</p>

<p>성종 23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10월 14일(정축) 1번째기사</p>	<p>경연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이맹현(李孟賢)과 정언(正言) 김제신(金悌臣)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 홍복산(洪福山)에 거둥하고자 하니, 예전에 봄 사냥[春蒐]·여름 사냥[夏苗]·가을 사냥[秋獮]·겨울 사냥[冬狩]을 한 것은 다 농한기에 무사(武事)를 강습해서 백성의 해(害)를 제거하고 건두(乾豆)를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수재(水災)·한재(旱災)·풍재(風災)가 번갈아 일어나서 경기(京畿)의 흉년이 더욱 심하므로, 바로 전하께서 근신하고 조심할 때인데, 사냥을 관람하고 경연을 폐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말이 옳다. 그것을 정지하라.” 하였다.</p>	<p>○丁丑/御經筵。講訖，掌令李孟賢、正言金悌臣啓曰：“殿下觀獵未幾，又欲幸洪福山。古者，春蒐、夏苗、秋獮、冬狩，皆於農隙，以講武事，所以除民害，而爲乾豆也。今年水、旱、風災交作，京畿凶歉尤甚，正殿下側身修行之日也。觀獵而廢經筵，可乎？” 上曰：“此言是也。其停之。”</p>
<p>성종 24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11월 4일(병신) 1번째기사</p>	<p>경연에 나아가서 강(講)하기를 마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겨울달을 당하여 기후가 따뜻하니, 나는 매우 마음이 아프다.” 하니 영사(領事) 조석문(曹錫文)은 진언(進言)하기를, “10월은 지독하게 추운 때가 아닙니다. 지독한 추위는 반드시 동지(冬至)로부터 시작하므로 지금 비록 따뜻하여도 큰 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반드시 눈이 쌓이어야 합니다. 보리 싹이 무성한데 요사이 눈이 없어서 이것이 염려됩니다.” 하고 장령(掌令) 이맹현(李孟賢)은 아뢰기를, “금년은 봄부터 여름까지 재변(災變)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신이 생각하기에는 민간(民間)의 폐단이 다 고쳐지지 않았고 국가의 정사가 다 만족하지 못하니, 청컨대 폐정(弊政)을 자세히 궁구하여 백성의 병폐를 구원하도록 하소서.” 하고 대사간(大司諫) 성준(成俊)은 아뢰기를,</p>	<p>○丙申/御經筵。講訖，上曰：“今當冬月，氣候溫暖，予甚軫念。”領事曹錫文進曰：“十月非苦寒之候。苦寒必自冬至始，今雖溫暖，未爲大害。然冬必積雪，禾麥乃茂，比來無雪，是可慮也。”掌令李孟賢曰：“今年自春徂夏，災變滋至，臣謂民間之弊未盡革，國家之政未盡得也。請令詳究弊政，以救民瘼。”大司諫成俊曰：“今年之荒，京畿尤甚，民將飢餓，請令京畿諸邑勿徵公債，以蘇民生。守令拘於解由之法，不念生民之艱難，唯務畢徵，臨門督促，迫於星火，欲除民害，莫若</p>

	<p>“금년의 흉작은 경기(京畿)가 더욱 심해서 백성이 장차 기아(飢餓)에 빠질 것이니, 청컨대 경기의 모든 고을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채무를 징수하지 말게 하여서 백성의 생활을 소생시켜야 합니다. 수령(守令)은 해유(解由)2638)의 법에만 구애되어, 백성의 어려움은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다 징수하기에만 힘써서 문(門)에 이르러 독촉하기를 성화(星火)같이 휩박하니, 백성의 해를 제거하고자 한다면 어진 수령을 선택함만 같지 못합니다.”</p> <p>하고 동지사(同知事) 정자영(鄭自英)은 아뢰기를,</p> <p>“옛부터 음양(陰陽)이 조화(調和)되지 못함은 반드시 큰 기강(紀綱)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른바 큰 기강이라는 것은 오륜(五倫)인데, 이제 자식이 혹 어버이에게 크게 불효(不孝)하는 자가 있고, 아우가 혹 형에게 크게 우애하지 않는 자가 있고, 정처(正妻)를 소박하는 자가 있고, 장유(長幼)의 차례가 없는 자가 있어도 법사(法司)에서 듣고도 핵문하지 않고, 핵문하여도 엄하게 다스리지 아니하니, 음양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습니까?”</p> <p>하고 조석문은 아뢰기를,</p> <p>“남방(南方)은 경계(境界)가 왜국(倭國)의 섬과 연(連)하여 있으므로 수어(守禦)를 견고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승평(昇平)한 날이 오래되어서 연변(沿邊)의 성보(城堡)가 점점 허물어져 무너지기에 이르렀어도 수령이 게을러서 수축(修築)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관찰사로 하여금 살피어서 적당한 때에 보수하여 쌓게 하여서 변방을 공고하게 하소서.”</p> <p>하고 성준이 아뢰기를,</p> <p>“지난 정해년에 남방으로 사명을 받들고 가서 여러 포구(浦口)를 두루 보았는데, 만호(萬戶)로서 재주가 문무(文武)를 겸한 자가 열에 한둘도 없으니, 만약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장차 어떻게 적에 대응하겠습니까? 청컨대 무재(武才)가 있는 자를 신중히 가려서 여러 포구를 지키게 하소서. 또 경중(京中) 각사(各司)의 종[奴子]을 3번으로 나누어서 두 달은 일하고 한 달은 쉬게 하</p>	<p>擇賢守令也。” 同知事鄭自英曰：“自古陰陽不調，必由大綱不正。所謂大綱者，五倫也。今子或有大不孝於親者，弟或有大不友於兄者，疎薄正妻者有之，長幼無序者有之，而法司聞而不効，効不痛繩，陰陽安得和乎？” 錫文曰：“南方境連倭島，守禦不可不固。國家昇平日久，沿邊城堡漸至頽圯，守令慢不修築。請令觀察使察舉，隨宜補築，以固邊圉。” 成俊曰：“去丁亥年，臣奉使南方，歷觀諸浦，萬戶才兼文武者十無一二，脫有不虞，將何應敵？請令慎簡有武才者，以守諸浦。且京中各司奴子，分爲三番，役二朔休一朔，奔走不暇，生理無聊。若此，則臣恐公賤日至散亡，而終不得救矣。請依舊例施行。”</p>
--	--	--

	니, 일하는 달은 분주해서 겨를이 없고, 쉬는 달은 생리적으로 무료(無聊)할 것입니다. 이와 같으면 신은 공천(公賤)이 날로 흠어져 도망하여 마침내 구제할 수 없게 될까 두려우니, 청컨대 예전 예(例)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성종 24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11월 11일(계묘) 3번째기사	임금이 대왕 대비에게 잔치를 진상하고, 명하여 월산 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덕원군(德源君) 이서(李曙)·하성 부원군(河城府院君) 정현조(鄭顯祖)와 원상(院相)·승지·입직한 모든 장수를 불러서 주악(酒樂)을 내려주고 음식도 먹이었는데, 전 흥원군(興原君) 오백창(吳伯昌)도 또한 참여하였다.	○上進宴于大王大妃，命召月山大君婷、德源君曙、河城府院君鄭顯祖及院相、承旨、入直諸將，賜酒樂饋之。前興原君吳伯昌亦與焉。
성종 24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11월 27일(기미) 4번째기사	호조에 전지하여, 남양 부원군 홍달손에게 부의(賻儀)로 중미(中米) 10석(碩), 조미(糙米) 20석, 황두(黃豆) 20석, 정포(正布) 50필, 종이 1백 권(卷)을 주었다.	○傳旨戶曹，賜南陽府院君洪達孫賻中米十碩、糙米二十(碩) [碩]、黃豆二十碩、正布五十四、紙一百卷。
성종 26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1월 13일(갑진) 4번째기사	호조(戶曹)에 의지(懿旨)하기를, “윤기견(尹起畎)·윤호(尹壕)의 집에 각각 면포(綿布) 1백 필(匹), 정포(正布) 50필, 쌀 50석(碩)을 내려 주어라.” 하였으니, 그것은 딸들이 장차 대내(大內)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懿旨戶曹曰：“尹起畎、尹壕家，各賜綿布一百匹、正布五十四、米五十碩。”以女子將入內也。
성종 27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2월 4일(을축) 3번째기사	원상(院相)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무사(武士)는 술을 마신 뒤에야 활을 잘 쏘는 것인데, 지금은 금주(禁酒) 때문에 사람들이 활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전에 모화관(慕華館)에서 관사(觀射)하실 때에 잘 쏘는 자가 적었습니다. 청컨대 사후(射侯) 때에는 술을 금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다만 아주 취하는 것을 금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풍속이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객과 주인이 잔을 주고 받을 때에는 반드시 아주 취하려 하니, 이것은 참으로 고약한 풍속이다.”	○院相韓明澮啓曰：“武士必飲酒而後能射，今因酒禁，人不喜射，故日者慕華館觀射。能射者少。請於射侯，勿禁酒。”傳曰：“可。但禁其爛醉。”又傳曰：“俗尚崇飲，賓主酬酢，期於爛醉，此實弊風。”

<p>성종 27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2월 19일(경진) 4번째기사</p>	<p>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전 보산군(寶山君) 오자경(吳子慶)은 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목공(木工) 위사문(魏士文)을 불렀다가 오지 않으며, 성이 나서 매를 때려 죽이고는, 자취를 없애려고 관(棺)을 열고 시체를 훔쳐 내어 강물에 던졌으니, 죄가 율문(律文)에 따라 교형(絞刑)에 해당하며, 또 절도사(節度使) 김봉원(金奉元)에게 청탁하여 온양(溫陽)의 정병(正兵) 2여(旅) 반과 파적위(破敵衛) 36명을 사사로이 빌어 쌀 46석과 재목(材木)을 거둬들였으니, 죄가 율문에 따라 장(杖) 1백 대에다 도(徒) 3년에 해당하는데, 중중(從重)하여 교대시(絞待時)가 됩니다. 신창군(新昌君) 맹석흙(孟碩欽)은 절도사 김봉원에게 청탁하여 신창(新昌)의 정병 1여 반과 한산(韓山)의 정병 20명을 사사로이 빌어 쌀 23석을 거둬들였으니, 그 죄는 율문에 따라 장 90대에, 도 2년 반에 처하고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追奪)하고 사적(仕籍)에서 제명(除名)하여 서용(敍用)하지 않는 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모두 사유(赦宥)가 있기 이전의 일입니다.” 하니, 오자경은 고신을 거두고 외방(外方)에 안치(安置)2849) 하며, 맹석흙은 고신을 거두고 외방에 부처(付處)하라고 명하였다.</p>	<p>○義禁府啓：“前寶山君吳子慶爲家舍修葺，招木工魏士文，不至發怒，拷打致死，謀欲滅迹，開棺偷屍投水，罪律該絞，又請囑節度使金奉元，私借溫陽正兵二旅半、破敵衛三十六名，收米四十六碩及材木，罪律該杖一百徒三年，從重絞待時。新昌君孟碩欽，請囑節度使金奉元，私借新昌正兵一旅半、韓山正兵二十名，收米二十三碩，罪律該杖九十徒二年半，告身盡行追奪，除名不敍。竝事在赦前。”命子慶收告身，外方安置，碩欽收告身，外方付處。</p>
<p>성종 27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2월 21일(임오) 2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서거정(徐居正) 등이 차자(筴子)를 올리기를, “유자문(柳子文)은 사람됨이 탐탁(貪濁)하고 가혹하며 괘흔(愎狠)하고 사흉(邪譎) 하니, 소인 중에서도 심한 자입니다. 임소(任所)에 5, 6년 있는 동안에 가혹하게 수세(收稅)하여 원망을 사고 제 마음대로 불법(不法)을 행한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중에서 드러나 추핵(推劾)한 것만도 마흔 가지가 넘으나, 날날이 두루 아될 겨를이 없으므로 우선 그 대략만을 거론합니다. 평양(平壤)·벽동(碧潼) 두 고을의 관비(官婢)를 간음하고 모두 아소(衙所)에 두어 관곡(官穀)을 앗아서 축내게 하고 관물(官物)을 훔쳐서 주었으며, 사전(私田) 수십 결(結)을 차지하고 관민(官民)과 우력(牛力)을 마음대로 징발하여 경작하고 수확해서 토지에서 나는 이익을 해마다 거둬들여 사사로이 팔았으며, 관비</p>	<p>○司憲府大司憲徐居正等，上筴子曰：柳子文爲人貪濁苛酷愎狠邪譎，小人之尤者也。其在任所五六年之間，掎克斂怨淫縱不法等事，不可勝言。其敗露推劾者，亦不下四十條，然不暇一一歷陳，姑舉其略。奸淫平壤、碧潼兩官婢，竝畜衙所，坐耗公廩，盜給官物，占私田數十結，擅發官民牛力耕穫，歲收花利販鬻自私，濫使官婢七八名，紡績織紉，以肥妻妾，暗受他人贈給綿布</p>

7, 8명을 함부로 부려 길쌈을 시켜서 처첩(妻妾)을 만족하게 하였으며, 남이 준 면포(綿布) 50필을 몰래 받아 면주(綿紬) 10필과 쌀 20석으로 바꿔서 자기 소유로 하였는데, 일이 이미 드러나게 되어 계책이 궁하고 형세가 급하니까 사돈인 이우(李堦)의 물건이라 핑계대었으나, 그 아들 유한장(柳漢長)이 그때 이우의 집에 있었으니 그 훔쳐 쓴 정적(情跡)을 숨기려 한 것이 분명하며, 또 부상(富商) 김장수(金長壽) 등 3인에게서 면포 1백 50필을 받고 한 필에 쌀 20두(斗)씩 값을 주었는데, 일이 드러나게 되어서는 관용(官用)이라 핑계대었으니, 그 거짓으로 꾸며대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관인(官人)을 마음대로 다른 도에 보내어 어물(魚物)을 팔게 하고, 또 가동(家僮)을 시켜 촌락(村落)을 횡행하며 백성에게서 피물(皮物)을 빼앗아 오게 하였으며, 또 기관(記官) 오광문(吳廣文)이 자기에 대한 원망을 호소하니 형장(刑杖)을 치거나 속(贖)을 받아 법을 어겨서 침탈하여, 오광문으로 하여금 재산을 탕진하게 한데다가 이어서 집을 부수어 몹시 참혹하게 하였으니,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는 것이 짝이 없습니다. 명백히 자기 소유로 한 것으로 말하면, 생견(生繭) 10석(碩)과 생사(生絲) 5근(斤)과 유기(鑰器) 4부(部)와 사기(沙器) 3백 20여 개와 쌀·소금·벼 각각 1석씩이며, 훔쳐 쓴 관물은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김맹규(金孟規)는 탐욕스럽고 음사(陰邪)하며 잔학하고 가혹하여, 백성의 물건을 노략질하고 의롭지 못한 짓을 많이 하였으며, 관미(官米) 3석을 훔쳐서 몰래 서울 집으로 날라왔는데 나타난 장물(贓物)이 명백합니다. 이 2인은 극형에 처하더라도 그 죄가 남을 것이고 천주(天誅)를 받지 않은 것만도 충분한데, 또 정률(正律)로 처리하지 않고, 다만 고신(告身)을 거두고 서용(敍用)만을 앗았으니, 이것은 죄는 무겁고 율(律)은 가벼운 것이어서 장오(贓汚)를 징계하고 탐묵(貪墨)을 막는 것이 못됩니다. 신 등은 유자문과 김맹규를 율문(律文)과 《대전(大典)》에 의하여 자자(刺字)2854)·녹안(錄案)할 것을 청하였더니, 상량(商量)하시겠다는 분부가 계셨으므로, 기쁨을 금치 못하며 부복(俯伏)하여 기

五十四，轉換綿紬十四、米二十碩，入己事，已發露，計窮勢迫，托稱姻家李堦布物，然其子漢長見在李堦之家，則其盜用情跡，欲蓋彌彰，又陰受富商金長壽等三人綿布一百五十四，每匹給價米二十斗，及事露則托稱官用，其飾詐類如此。擅發官人于他道，興販魚物，又縱家僮，橫行村落，奪民皮物，又怒記官吳廣文訴己，或杖或贖，枉法侵責，使廣文蕩盡財產，繼之以破家，苛刻慘酷，毒民無比。其明白入己者，則生繭十碩、生絲五斤、鑰器四部、沙器三百二十餘箇·米·鹽·稻各一碩，盜用官物，其數甚夥。金孟規貪饕陰譎，殘暴苛刻，漁牟民物，多行不義，盜官米三碩，潛輸京家，見贓明白。惟此二人，雖置之極刑，尙有餘辜，其得這天誅足矣，又不坐以正律，只收告身不敍，罪重律輕，非所以懲贓汚、杜貪墨也。臣等曾請子文、孟規依律文大典，刺字錄案施行，伏蒙聖教商量，不勝欣忭，俯伏以待，已踰旬日，未奉成命，敢再瀆以聞。”
傳曰：“如此守令，又有之矣，當同時科罪。”

	<p>다렸으나, 이미 열흘이 지났는데도 아직 성명(成命)을 받들지 못하니, 다시 번거로이 아뢰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이런 수령(守令)이 또 있을 것이니, 동시에 과죄(科罪)해야 하겠다.”</p> <p>하였다.</p>	
<p>성종 27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2월 26일(정해) 1번째기사</p>	<p>광산 부원군(光山府院君) 김국광(金國光)의 어미의 상(喪)에 부물(賻物)로, 쌀과 콩을 아울러 30석과 종이 1백 권, 석회(石灰) 40석, 관곽(棺槨)·송지(松脂)·유둔(油菴)을 내려 주었다.</p>	<p>○丁亥/賜光山府院君金國光母賻米豆竝三十碩、紙一百卷、石灰四十碩、棺槨、松脂、油菴。</p>
<p>성종 27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2월 27일(무자) 2번째기사</p>	<p>의빈(儀賓)2877) 홍상(洪常)의 어미의 상(喪)에 부물(賻物)로, 쌀과 콩을 아울러 30석과 정포(正布) 50필, 종이 70권, 석회(石灰) 60석, 관곽(棺槨)·송지(松脂)를 내려 주었다.</p>	<p>○賜儀賓洪常母, 賻米豆竝三十碩、正布五十匹、紙七十卷、石灰六十碩、棺槨、松脂。</p>
<p>성종 28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3월 6일(병신) 4 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서거정(徐居正) 등이 차자(笏子)를 올리기를,</p> <p>“전일 본부(本府)에서 흉년으로 말미암아 금주(禁酒)를 시행하기를 청하여 금령(禁令)이 처음 내렸을 때에는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알아서 금령을 범하는 자가 적었었는데, 곧 사후(射侯)하는 자에게는 금하지 말라고 명하시매, 이때부터 술 마시는 일이 시작되어, 한가히 노는 시정(市井)의 무리가 사후를 핑계 삼아 모여서 술을 마시므로, 본부에서 날마다 단속하기는 하나, 궁시(弓矢)를 지닌 자는 금할 수 없습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지난해의 흉수·가뭄·바람의 재해는 여러 도가 다 그러하나 경기(京畿)가 더욱 심하여, 지금 인천(仁川)·안산(安山)·부평(富平)·김포(金浦)·통진(通津)·양천(陽川) 등에 사는 백성은 자산(資産)을 모두 팔아도 자급(自給)하지 못하여 오로지 진대(賑貸)에 의존하므로 기아(飢餓)가 잇달으며, 경중(京中)의 시가(市價)로는 면포(綿布) 1단(端)의 값이 쌀 4두(斗)도 못되는데, 도시에 사는 백성은 어찌 다 집집이 넉넉하겠습니까마는, 습속(習俗)이 사치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 주찬(酒饌)을 낭비하</p>	<p>○司憲府大可憲徐居正等上笏子曰： 前日本府因歲凶歉， 請行酒禁令， 初下， 人皆知畏， 犯禁者少， 尋命射侯者勿禁， 自是飲酒之端一開， 閒散遊戲市井無賴之徒， 假托射侯， 聚會飲酒， 本府雖逐日糾舉， 若有操弓挾矢者， 不能禁之。 臣等以爲， 去年水旱·風災， 諸道皆然， 而京畿尤甚， 卽今仁川、安山、富平、金浦、通津、陽川等處居民， 賣盡資產， 猶不自給， 專仰賑貸， 飢餓相望， 京中市價綿布一端， 直米不滿四斗， 都市居民， 豈皆家富而戶贍哉？ 第以習俗奢靡成風， 糜費酒饌， 自</p>

	<p>여 스스로 탕진하니, 금령이 엄하지 않으면 폐해를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추수 때까지는 무부(武夫)의 사후 때에도 모두 술을 금하여 하늘의 경계를 삼가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就空竭，若禁令不嚴，弊將莫救。乞限秋成，武夫射侯，亦皆禁酒，以謹天戒。</p> <p>從之。</p>
<p>성종 29권, 4년(1473) 기사 / 명 성화(成化) 9년) 4월 4일(갑자) 1 번째기사</p>	<p>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갔다. 종묘(宗廟)의 하향 대제(夏享大祭)를 행하고 음복(飲福)하였다. 정인지(鄭麟趾)·정창손(鄭昌孫)·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최항(崔恒)·홍윤성(洪允成)·김질(金磧)·윤자운(尹子雲)·서거정(徐居正)·이승소(李承召), 헌관(獻官) 이석형(李石亨)·하우명(河友明)과 강로(姜老) 및 승지(承旨)들이 입시(入侍)하였다. 인하여 일본국(日本國) 경극전(京極殿)의 사송(使送) 광진 수좌(光珍首座)와 소이전(小二殿)의 사송 정성 수좌(正聖首座) 등 74인을 인견(引見)하고, 임금이 광진 수좌에게 말하기를,</p> <p>“너희 부상 전하(扶桑殿下)는 잘 계신가?”</p> <p>하니 대답하기를,</p> <p>“무병(無病)합니다.”</p> <p>하고 임금이 말하기를,</p> <p>“너희 나라에 병화(兵禍)가 아직까지 그치지 아니하였느냐?”</p> <p>하니 대답하기를,</p> <p>“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정성 수좌(正聖首座)에게 말하기를,</p> <p>“너희 주인 복토(復土)는 잘 계신가?”</p> <p>하니 대답하기를,</p> <p>“잘 계십니다.”</p> <p>하고 임금이 평무속(平茂續)에게 말하기를,</p> <p>“너희 도주(島主)는 잘 계신가?”</p> <p>하니 대답하기를,</p>	<p>○甲子/御宣政殿，行宗廟夏享大祭，飲福。鄭麟趾·鄭昌孫·申叔舟·韓明澮·崔恒·洪允成·金磧·尹子雲·徐居正·李承召·獻官李石亨·河友明·姜老及承旨等入侍。仍引見日本國京極殿使送光珍首座、小二殿使送正聖首座等七十四人，上謂光珍首座曰：“汝扶桑殿下好在乎？”對曰：“無恙。”上曰：“汝國兵禍，至今未息乎？”對曰：“未息。”上謂正聖首座曰：“爾主復土好在乎？”對曰：“好在。”上謂平茂續曰：“汝島主好在乎？”對曰：“無恙。”時日本國薩州伊集院寓鎮隅州太守藤熙久、對馬州守護代官宗助六盛俊、越中守宗盛弘遣人來，獻土宜。亦命入侍，各賜三爵，賜物有差。又命饋于仁政殿西庭。</p>

	<p>“무병(無病)합니다.”</p> <p>하였다. 이때에 일본국 살주(薩州) 이집원 우진(伊集院寓鎭) 우주 태수(隅州太守) 등희구(藤熙久), 대마주(對馬州) 수호 대관(守護代官) 종조육성준(宗助六盛俊), 월중수(越中守) 종성홍(宗盛弘)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쳤는데, 또한 입시하도록 명하여 각각 술 석 잔씩을 내려 주고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또 인정전(仁政殿) 서쪽 뜰에서 음식을 먹이도록 명하였다.</p>	
<p>성종 29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4월 21일(신사) 8번째기사</p>	<p>호조에서 충청도 관찰사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계달하기를,</p> <p>“청컨대 본도(本道) 군자창(軍資倉)의 누린 콩[黃豆] 2천 7백 80석을 민호(民戶)에게 나누어 주어서 때에 맞추어 경작하도록 권장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據忠淸道觀察使啓本啓：“請發本道軍資倉黃豆二千七百八十碩，分給民戶，趁時勸耕。”從之。</p>
<p>성종 31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6월 28일(정해) 3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졸(卒)한 이경(李經)에게 초록 주유금(草綠紬襦袢) 1단(單), 주금구 10승 백포(紬食具十升白布) 2필(匹), 정포(正布) 10필, 쌀·콩 각각 5석(碩), 관곽(棺槨)을, 유정(柳諫)에게 10승 백포(十升白布) 2필과 정포(正布) 10필, 쌀·콩 각각 5석(碩), 관곽(棺槨)을 내려 주었다.</p>	<p>○傳旨戶曹，賜卒李經草綠紬襦袢一單·紬袂具十升白布二匹·正布十四、米豆各五碩、棺槨，柳諫十升白布二匹·正布十四、米豆各五碩、棺槨。</p>
출처	내용	원문
<p>성종 32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7월 15일(갑진) 2번째기사</p>	<p>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김양경(金良暉)에게 하서(下書)하기를,</p> <p>“지금 듣건대, 도내(道內)의 황충(黃蟲)이 화곡(禾穀)을 먹어 치운다고 하는데, 생각건대, 반드시 경(卿)이 경계(境界)에 도입(到任)한 지가 오래 되지 아니하여서 미처 보고 듣지 못하였을 것이다. 여러 고을의 충재(蟲災)의 다소를 찾아가 물어서 계달(啓達)하고, 또 황충을 잡게 하여 곡식을 헤치는 데 이르지 말도록 하라.”</p> <p>하였다.</p>	<p>○下書京畿觀察使金良暉曰：今聞道內蟲食禾稼，想必卿到界未久，未及見聞也。諸邑蟲災多少，訪問啓達，且令拾捕，毋至害穀。</p>
<p>성종 32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7월 17일(병오) 2번째기사</p>	<p>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김자행(金自行)이 하직하니 임금(上)이 인견(引見)하고 이르기를,</p> <p>“듣건대 황해도(黃海道)의 백성들이 굶주린다고 하니 경(卿)은 마음을 다하여 구휼(救恤)하도록 하라.”</p>	<p>○黃海道觀察使金自行辭，上引見謂曰：“聞黃海道民飢，卿其盡心救恤。”自行啓曰：“近聞，禾穀茂盛，但臣未之見耳。”上曰：“此道，亦有蟲災乎？”</p>

	<p>하니 김자행이 아뢰기를, “근래 들건대 화곡(禾穀)이 무성하다고 하나, 다만 신(臣)이 보지는 못하였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도(道)에서도 또한 충재(蟲災)가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모름지기 힘써 황충(黃蟲)을 잡아내어 곡식을 해치지 말도록 하라.”</p>	<p>如有之，須務拾捕，毋令害穀。”</p>
<p>성종 32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7월 21일(경술)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가서 강(講)하기를 마치니, 검토관(檢討官) 성현(成俔)이 아뢰기를, “신(臣)이 일전에 기도(祈禱)하는 일로써 명령을 받들고 경기(京畿)의 고을에 갔다가, 화곡(禾穀)이 무성하지 아니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 황충(黃蟲)으로 곡식이 손상하여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염려스러우니, 구황(救荒)하는 일을 미리 준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말한 바와 같다면 마땅히 다 조치하여야 한다.” 하였다. 동지사(同知事) 홍응(洪應)이 아뢰기를, “신이 들건대, 황충이 화곡(禾穀)을 먹어 치우는 것이 평지가 더욱 심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양천(陽川)으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황충이 모[苗]를 먹는 것이 매우 빠르는데, 작은 전지를 먹어 치우는 것이 눈깜짝할 사이에 다 없어졌다.’고 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전지의 네 모퉁이에다가 구덩이를 파서 이것들을 묻어 버린다면 없앨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p>	<p>○庚戌/御經筵。講訖，檢討官成俔啓曰：“臣日者，以祈禱受命，行畿縣，見禾穀不茂。且爲蟲損，民生可慮，救荒事，不可不預備。”上曰：“果如所言，當盡措置。”同知事洪應啓曰：“臣聞蟲食禾穀，平地尤甚，有人自陽川來言：‘蟲食苗甚速，食小田，俄頃而盡’，人言：‘田四隅掘坑而埋之，則可弭’。”</p>
<p>성종 32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7월 21일(경술) 5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지하기를, “금년에 충재(蟲災)가 있어서 화곡(禾穀)이 무성하지 못하다. 그러나 배릉(拜陵)3174) 은 폐지할 수가 없으니, 그 나머지 양로(養老)와 강무(講武)3175) 등의 일은 정지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지금 온 원상(院相)과 영의정(領議政)에게 의논하여서 아뢰어라.”</p>	<p>○傳于承政院曰：“今年有蟲災，禾穀不茂。然拜陵不可廢也，其餘養老、講武等事，停之若何？今來院相及領議政議啓。”鄭昌孫、崔恒議啓曰：“上卽位之後，初幸古都，則養老之禮，不</p>

	<p>하므로, 정창손(鄭昌孫)·최항(崔恒)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성상께서 즉위한 후, 처음으로 고도(古都)에 거둥하신다면 양로(養老)의 예(禮)는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강무(講武)는 사냥[田獵]하는 것이 아니고 곧 무사(武事)를 강(講)하는 것이니 무엇이 방해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영의정(領議政)의 의논을 기다렸다가 이를 처리하겠다.” 하고, 곧 주서(注書)를 보내어,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를 그 집으로 찾아가서 묻게 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지금 들건대, 침수(沈水)된 곳과 충재(蟲災)가 곡식을 해친 곳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을에 풍년이 올지 흉년이 올지는 미리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가을걷이가 부실(不實)하다면, 파오달(波吾達)의 5, 6곳은 모두 경기(京畿)에서 공판(公辦)하므로, 거둥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크게 흉년이 아니라면, 개성(開城)의 고도(古都)는 부모(父老)가 있는 곳이니, 양로연(養老宴)은 행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배릉(拜陵)한 후에 서울로 돌아 올 때에 파평산(坡平山) 등지와 같은 데서 두 세 번 타위(打圍)하여서 행군(行軍)을 시험하는 것도 또한 무방하겠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다만 배릉(拜陵)만을 행하고, 강무(講武)는 정지하는 것이 가(可)하겠다.” 하였다.</p>	<p>可廢也。 且講武，非爲田獵，乃講武事，何妨之有?” 傳曰：“待領議政之議，處之。” 乃遣注書，往問領議政申叔舟于其第，叔舟啓曰：“今聞沈水處及蟲災，害穀不多。 然秋來豐歉，不可預度。 若秋收不實，則波吾達五六處，皆京畿供辦，行幸似難。 如不大歉，則開城古都，父老所在，養老宴不可不行。 且拜陵後還京時，如坡平山等處，二三度打圍，以試行軍，亦無妨。” 傳曰：“只行拜陵，停講武可也。”</p>
<p>성종 32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7월 26일(을묘) 3번째기사</p>	<p>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신승선(愼承善)에게 하서(下書)하기를, “광산 부원군(光山府院君) 김국광(金國光)이 어미의 상(喪)으로써 연산(連山)에 거주하고 있는데, 늙고 또한 병(病)이 있으니, 경(卿)이 속히 친히 육즙(肉汁)을 권하고 식물(食物)도 갖추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p>	<p>○下書忠淸道觀察使愼承善曰： 光山府院君金國光，居母喪在連山，老且有病，卿速親勸肉汁，備給食物。</p>
<p>성종 32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p>	<p>예문관 부제학(藝文館副提學) 이극기(李克基)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 등이 엿드려 보건대, 일전에 날씨가 가물어서 하늘이 경계(警戒)를 보이</p>	<p>○藝文館副提學李克基等上疏曰：</p>

<p>9년) 7월 30일(기미) 5번째기사</p>	<p>고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려 하늘이 경고(警告)를 하니 전하께서 하늘을 두려워하시고 민사(民事)를 걱정하시어 몸소 책임을 지시고, 뒤쫓아 과실(過失)이 없었는지를 생각하시며, 일이 있으면 몸을 삼가고 행동을 닦으셨습니다. 신 등이 가까이 경악(經幄)에 모시면서 직책(職責)이 고문(顧問)에 대비하고 있으니, 마음에 품은 생각이 있으면서도 숨기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성상의 은혜(恩惠)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감히 좁은 소견을 가지고 문득 어리석은 말씀을 드리니, 옳드려 생각건대 전하께서는 재택(裁擇)하여 주소서. (...) 그 둘째는, 습속(習俗)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대개 예법(禮法)이 허물어지면서부터 선비의 기풍(氣風)이 옛스럽지 못하여, 구차한 짓을 태연히 하여 명예와 절조를 돌보지 아니하고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젖어서 돈박(敦朴)한 것을 비야(鄙野)하다고 가리키니, 이러한 풍속이 자라나고 선비들이 엄치와 절개를 잃어서 풍속이 부박(浮薄)하고 다투어 이익을 좇는 데로 흘러가는데,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지만 이때보다도 심한 적이 없었으며, 그 유속(流俗)이 그치지 아니하여 또 장차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을 터인데도 나라를 가진 자가 이를 경계할 바를 알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 등이 듣건대, 맹가씨(孟軻氏)가 교훈하기를, ‘시첩(侍妾) 수백 인을 내가 얻을 수 있더라도 얻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옛날의 그러한 뜻을 이를 수 있었던 자도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이것이 풍속을 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사람들이 진실로 그 뜻을 행하여 얻을 수만 있다면 먼저 그 하고자 하는 바를 할 터인데, 또한 어찌 하지 아니하는 바가 있겠습니까? 근래 대소 조신(大小朝臣)을 보건대, 여러 고을의 창기(娼妓)를 함부로 점유하여 그 집에서 기르는 자가 계속 잇따르는데, 그 원인은 혹은 그들이 관찰사(觀察使)나 절도사(節度使)가 되어서 그 도(道)의 좌막(佐幕)에게나 그 도의 수령(守令)에게나 그 고을의 이웃에게 청탁으로 인연하여 그 아는 바 훈신(勳臣)의 집에다가 붙이고서 구사(丘史)를 핑계하는 까닭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외관(外官)의 기생[妓] 가운</p>	<p>臣等伏見，日者旱暵示戒，陰沴告警，殿下畏天憂民，引咎責躬，追惟闕失，有事側修。臣等昵侍經幄，職備顧問，有懷而隱，是孤聖恩，敢將管窺，輒貢瞽說，伏惟殿下裁擇焉。(…)其二曰，正習俗。蓋自禮法毀，而士風不古，恬於苟且，名檢有所不顧，狃於豪侈，敦朴指爲鄙野，此風長而士失廉介，俗趨浮競，其來已久，而未有甚於此時。其流不渴，而又將有不可勝言者，有國家者，可不知所以戒之哉？臣等聞，孟軻氏有訓曰：“侍妾數百人，我得之，不爲也。”古之得志者，猶有所不爲也，是以有爲也。今之人，苟得以行其志，先爲其所欲爲，亦何所不爲也？近觀大小朝臣，冒占諸邑娼妓，而畜之於其家者 纒纒，其因則或以其爲觀察・節度使，於其道佐幕，於其道守令，於其官之隣，因緣請托，以屬於所識勳臣之家，籍爲丘史。由是外官之妓之有才技者，官不得而有之，至使驅役，不給於官。彼皆大臣也，皆顯官也，將朝廷紀綱，以黜陟人者也，司民命一邑，而爲之表率者也。而其所爲若是，庸非恬於苟且，而不顧名檢者乎？此風</p>
---------------------------------	--	--

데에 재주와 기예(技藝)가 있는 자는 관(官)에서 그들을 소유할 수가 없으며, 심지어 구역(驅役)을 시키는 데도 관(官)에서 인력이 넉넉하지 못하니 저들은 모두 대신(大臣)이고 현관(顯官)이며 장차 조정의 기강(紀綱)을 출척(黜陟)하는 사람들이며, 백성들의 목숨과 한 고을의 이익을 다스리면서 그 표솔(表率)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짓이 이와 같으니, 어찌 구차한 짓을 태연하게 하고 명예와 절조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풍속을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유사(攸司)에 이를 회부하여 그러한 사람들을 핵실(覈實)하여 다스리신다면, 선비들의 기풍(氣風)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나무 위의 집에 살고 동굴에 살던 먼 옛날로부터 상동 하우(上棟下宇)의 제도가 일어났는데, 그러나 바람과 비를 막고 침식(寢食)을 편하게 하는 정도에 그쳤을 따름이니 요(堯)임금이 모자(茅茨)의 띠를 가지런히 자르지 아니하고, 우(禹)임금은 궁실(宮室)을 낮추었습니다. 그들은 귀하기가 천자(天子)였고, 부(富)하기가 사해(四海)를 차지하였는데도 오히려 또한 그러하였는데, 더군다나 신하(臣下)나 서인(庶人)의 집은 예제(禮制)의 분수와 한도가 있고 재산에도 궁진(窮盡)함이 있는데도, 사치하기를 지극하게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래 보건대, 공경 대부(公卿大夫)는 그 거처(居處)가 왕궁(王宮)과 비슷하며, 선비[士]와 서인(庶人)들 가운데 부호(富豪)는 그 거처가 공경 대부와 비슷한데, 다투어 서로 흠모하고 모방하며 다투어 크게 하고 다투어 아름답게 하여서 재산이 다한 다음에라야 그만두고, 그 뜻이 찬 다음에라야 그치니, 그 폐단은 자기에게 만족을 구하고 남에게 취환(取辦)하도록 하는 데에 이르니, 보례지초(簞簋之誚)를 사양하지 않는 바가 있습니다. 이목(耳目)은 바깥에서부터 사치하고 속마음[中心]은 안에서부터 사치하여, 윗사람을 능멸하고 참람(僭濫)하는 조짐을 금하지 못하는 바가 있습니다. 신 등은 이러한 풍속을 자라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不可長也。願殿下，付之攸司，覈其人而治之土風，幸甚。自巢居穴處之既遠，上棟下宇之制興焉，然止於蔽風雨安寢食而已，堯不剪茅茨，禹卑宮室。彼貴爲天子，富有四海，而猶且然爾，況臣庶之家，禮制有分限，財產有窮盡，而可以窮奢極侈爲乎？近觀公卿大夫，其居擬於王宮，士庶豪富，其居擬於公卿大夫，爭相效慕，鬪夸競麗，財竭而後已，滿意而後止，其弊至使求足於己，取辦於人，簞簋之誚，有所不辭也。耳目侈於外，中心(移)〔侈〕於內，陵僭之漸，有所不禁也。臣等謂，此風不可長也。自燔黍煇豚之既易，而有烹飪宴餼之禮。然取充飽，免飢渴而已。是故大夫無故不殺羊，士無故不殺犬豕，七十者，始食雞·豚·狗·彘之肉，飲食之節，自有品制，不可過也。近觀大夫大之家，飲食無節，不緣賓祭，不爲養老，尋常居處，椎牛自奉，少有宴集，誇張百品，一人而兼數人之食，一日而用十日之費，暴殄天物，般遊無度，此非士習之細故也。昏禮見於聖人之制者，納綵·幣、奠雁之外無聞焉。財賄之有無，

기장[黍]을 구워 먹고 돼지[豚]를 잡아서 먹던 생활이 이미 바뀐 때로부터 음식을 삶아서 손님들을 연향(宴餉)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게 배불리 먹고 기갈(飢渴)을 면하였을 따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大夫)는 까닭 없이 양(羊)을 잡지 아니하고 사(士)는 까닭 없이 개나 돼지를 잡지 아니하였으며, 70세가 된 자라야 비로소 닭이나 돼지나 개 따위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飲食)의 절조는 품제(品制)가 있는 다음부터 지나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래 사대부(士大夫)의 집을 보건대, 음식이 절조가 없어서 손님이나 제사 때문도 아니고 양로(養老)를 하기 위해서도 아닌데, 보통 때에 집에 거처(居處)하면서 소를 잡아서 자봉(自奉)하고, 조그마하게 모여서 잔치 하면서도 백품(百品)이 모였다고 과장하며, 한 사람이 몇 사람의 음식을 먹여 치우고 하루에 열흘치의 비용을 허비하여 천물(天物)을 함부로 없애고, 반유(般遊)가 절도(節度)가 없으니, 이것은 선비의 풍습(風習)에 있어서 작은 연고가 아닙니다.

혼례(婚禮)는 성인(聖人)의 제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납채(納采)와 납폐(納幣)와 전안(奠雁)의 제도 외에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재산이 있고 없고를 또 논할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그 나머지 것들이겠습니까? 근래 혼인하는 집을 보건대, 혼인하는 장구(裝具)는 반드시 그것을 사치스럽게 하고자 하고, 물건을 증여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후하게 하고자 하고, 음식을 먹이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풍부하게 하고자 하며, 능단(綾段)과 주취(珠翠)는 우리 나라 토산물이 아닌데도 금침과 장막(帳幕)은 이것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으며,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서 함(函) 퀘짜를 앞장 서서 인도하고, 부인이 시부모를 뵈올 때 선수(膳羞)와 사락(絲絡)을 동네에 자랑하여 보이어 두 집안간의 우위(優位)를 다투며, 그렇지 않은 자는 동네에서도 이를 천시하고 친척들도 이를 멸시합니다. 이리하여 부자는 그 재력(財力)을 다하고, 가난한 자는 그리 하고자 하여 이러한 수준에 미치고자 하는데, 그리 하고자 하

且不可論，況其餘乎？近觀昏姻之家，裝具必欲其侈，贈遺必欲其厚，饋獻必欲其豐，綾段珠翠，非吾土產，而衾裯帳幕，無此莫可，男往女家，櫃函先導，婦謁舅姑，膳羞絲絡，誇示於里閭，爭優於二姓，否者閭里賤之，親戚蔑之。於是富者竭其力，貧者企而及之，企且不及，則至有失其時，而廢婚嫁者，大是風俗之累也。伏望殿下，申明禁章，以絕弊風，以正人心。（…）

	<p>여도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혼인하는 시기를 놓쳐서 혼가(婚嫁)를 폐(廢)하게 되는 자도 있게 되니, 크게 풍속(風俗)에 누(累)가 됩니다. 오히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거듭 금지하는 법령을 밝히시어 폐단이 되는 풍속을 근절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잡으소서. (...)</p>	
<p>성종 33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8월 9일(무진) 2 번째기사</p>	<p>일본국(日本國) 방장섭천 4주 태수(防長攝泉四州太守) 대내 별가(大內別駕) 다다량정홍(多多良政弘)이 원주덕(源周德)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치었다. 그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근래에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 상국(上國)에 조공(朝貢)하고 돌아온 자는 이 구동성(異口同聲)으로 모두 축하하며 말하기를, ‘폐하의 용봉(龍鳳)과 같은 자태는 천일(天日)의 표상이라 성스러운 덕이 계속 일고, 인자한 교화(教化)가 바야흐로 풍성하여 역시 중흥(中興)을 선광(宣光)할 것 같습니다.’ 하였으니, 누군들 서쪽을 향해 기꺼워하지 않을 자 있겠습니까? 향차 다다량정홍(多多良政弘)은 남소(南巢)의 북시(北嘶)에 있는 사사로운 자로서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읍(敵邑)에 우환이 많아 선인(先人)들의 구호(舊好)를 닦지 못해 왔습니다. 《시경(詩經)》 상서편(相鼠篇)의 ‘예의가 없으면 빨리 죽는다.’라는 뜻에 감복되어 지금 오로지 원주덕(源周德)·심 통사(沈通事) 등을 파견하여 예를 폐지한 죄를 사례(謝禮)하고, 이어 고(告)합니다. 이 땅의 서울[洛] 동쪽에 절이 있어 청수사(清水寺)라고 하는데, 원통 대사(圓通大士)가 화현(化現)한 곳입니다. 불각(佛閣)과 경전(經殿)은 공중을 가로질러 날아갈 듯하며, 승방(僧房)과 빈관(賓館)은 산골 물가에 닿아 물을 퍼 마실 수 있을 듯하고, 전대(前臺)와 후대(後臺)에는 갖가지 꽃이 피어 있고 상계(上界)와 하계(下界)는 종소리가 서로 화답(和答)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는 약간의 집들이 들어서 있어 으리으리하게 날아갈 듯하고, 비늘처럼 죽 늘어서 있어 장대(壯大)하고 아름답기가 극도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수년 전 병화(兵火)가 거듭되어 모두 재가 되었으나, 유독 대사(大士)의 전존상(梅尊像)은 세</p>	<p>○日本國防、長、攝、泉四州太守大內別駕多多良政弘遣源周德，來獻土宜。其書契曰： 比年，我國人，朝于上國歸來者，異口同辭僉賀曰：“陛下龍鳳之姿，天日之表，聖德嗣興，仁化方盛，亦猶宣光中興矣”，孰肯不向西而笑焉？矧政弘有南巢北嘶之私者乎？然緣敵邑多虞，缺修先人舊好也。感《相鼠》之篇，‘無禮過死’之義，而今專遣源周德、沈通事等，謝廢禮之罪也仍告。此土洛之東有寺，日清水，圓通大士化現之境也。佛閣經殿，架空如飛，僧房賓館，臨礪如飲，前臺後臺，花交其色，上界下界，鍾聲互答，其餘爲屋若干區，翬翼魚鱗，究輪煥之美也。數年之前，荐罹兵燹，盡化灰燼，獨大士梅尊像，儼然出烈焰嘆異之餘，陰懷興復之志也。邇來雨旱失時，饗年不豐，軍資猶乏矣，欲振起而力不迨也，因循于今</p>

찬 불길 속에서도 남아 있어 경탄한 나머지 마음속으로 절을 다시 일으킬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장마와 가뭄으로 농사때를 잃어 매년 흉년이 들자 군자(軍資)도 오히려 부족한 형편이었으므로, 진작시키려 하였으나 힘이 미치지 못하여 그럭저럭 지금까지 끌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에 신인(神人)이 나타나서 고하기를, ‘너는 일찍이 법문(法門)을 위하였으니, 밖에서 보호하여 청수 정사(淸水精舍)의 터를 다시 닦도록 하라.’ 하였고, 다시 대원륜(大願輪)을 타고 나타나서, ‘장군이 몸소 옛 터에다 절을 세워보려 하니, 그대의 일찍이 세웠던 뜻에 중(重)하게 보상하겠거니와, 대사(大士)가 훗날 보고 있으니 감히 원곡(願穀)을 물릴 수가 없다.’ 하였으므로, 이에 감탄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대전(大殿) 한 채를 영조(營造)하여 대사(大士)의 유상(遺像)을 안치하려 하는데, 무릇 대전(大殿)을 안치하려 하는데, 무릇 대전(大殿)이라는 것은 사찰의 근본으로, 근본이 온전하면 지엽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므로, 곧 양장(良匠)들을 불러 계획하였더니 4만 민전(緡錢)이 필요하였습니다. 상국(上國)을 여러 번 조알(朝謁)하니, 만기(萬機)를 처리하는 여가에 임금께서 불사(佛事)에도 마음을 기울여 인자함을 널리 베푸셨으니, 간절히 바라건대 대전(大殿)의 영조(營造) 자금을 하사하시어 인자함을 흠양하게 하소서. 오로지 동전(銅錢)을 청구합니다만, 면주(綿紬)와 면포(綿布) 등도 소용됨은 한가지이며, 아울러 비로 대장(毗盧大藏)과 법보 인시(法寶印施)도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처음으로 빙례(聘禮)를 닦음에 있어 시재(施財)를 요구하는 것은 예의상 너무나 옳지 못하나, 너그러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 없는 토산물의 이름을 다음에 주기(注記)하니, 대도(大刀) 2과(把), 부채[扇子] 10과, 거울[鏡奩] 10개, 나갑(螺甲) 2, 벼루[碩] 10면(面), 술병[樽] 1쌍, 치자(梔子) 1백 근, 우피(牛皮) 50매(枚), 후다(厚茶) 1백 근입니다.” 하였다.

矣。一夕夢，有神人來告曰：“爾夙爲法門，外護而開淸水精舍之基也”，再乘大願輪來現：“將軍身欲開寺舊基，重償爾夙志，大士昭昭然鑑焉，無敢退願穀。”於是不勝感嘆。先欲營造大殿一字，安大士遺像，凡如大殿者，寺之根本也，根本全則枝葉自生，輒召良匠計之，用度四萬緡矣。上國累朝，萬機之暇，傾宸聽於佛乘，廣布仁慈，切望賜大殿營造之資，欽仰仁慈耳。專求銅錢，綿紬、綿布等，亦所用同矣，并毗盧大藏、法寶印施，是亦深願也。初修聘禮，而求財施，於禮甚不可也，當蒙寬恕也。不腆土宜，注名于後，大刀二把，扇子十把，鏡奩十箇，螺甲二，硯十面，樽一雙，梔子百斤，牛皮五十枚，厚茶百斤。

<p>성종 33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8월 24일(계미) 2번째기사</p>	<p>산명전(山名殿)의 사송(使送) 양영서당(亮瑛西堂)이 사조(辭朝)하였다.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인견(引見)하였는데, 정창손(鄭昌孫)·신숙주(申叔舟)·이승소(李承召), 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정창손에게 명하여 술잔을 올리도록 하고, 또 상부관인(上副官人)들에게도 차례로 술잔을 올리도록 명하였다. 신숙주(申叔舟)에게 명하여 묻기를 “너희 나라에 병란(兵亂)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그쳤는가?” 하니 양영서당(亮瑛西堂)이 대답하기를, “아직까지도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하였고, 이어 물건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예조(禮曹)로 하여금 답서하게하기를, “서문(書問)을 받고서 잘 있다고 하니 멀리서 위안이 된다. 보낸 예물은 삼가 잘 받았노라. 이에 백저포(白苧布) 3필, 흑마포(黑麻布) 3필, 호피(虎皮) 1장, 표피(豹皮) 1장, 채화석(彩花席) 3장, 인삼(人蔘) 3근, 해송자(海松子) 30두를 회사하여 돌아가는 사신편에 부치니, 받아주길 바란다. 그 중 청탁한 만복사(萬福寺)의 찬조금은 지난 경인년 월(月) 일(日)에 귀국의 사신 일암(一菴)이 역시 와서 요청한 바 있었는데, 그때에 마침 본국(本國)이 국휼(國恤)을 당하여서 청을 좇을 겨를이 없었고, 지금 또 해마다 흉년이 들어 또한 요청대로 들어줄 수 없으니 용서하라. 나머지는 보색(保畜)하기를 바란다.” 하였다.</p>	<p>○山名殿使送亮瑛西堂辭，御宣政殿引見，鄭昌孫、申叔舟、李承召·承旨等入侍。命鄭昌孫進爵，又命上副官人以次進爵。命叔舟問曰：“聞爾國兵亂，今已息乎？”亮瑛西堂對曰：“迄今未息。”仍賜物有差。其禮曹答書曰：承書問，就審清裕遙慰。所獻禮物，謹啓收納。茲將回賜白苧布三匹，黑麻布三匹，虎皮一張，豹皮一張，彩花席三張，人蔘三斤，海松子三十斗付回价，惟領納。就中所諭萬福寺助緣，去庚寅年月日，貴使一菴，亦來陳請，其時適值本國遭遇國恤，未暇從諭，今又連歲凶歉，又未塞諭照恕。餘冀保畜。</p>
<p>성종 34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9월 2일(경인) 3 번째기사</p>	<p>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정난종(鄭蘭宗)에게 하서(下書)하기를, “겸사복(兼司僕) 낭장가로(浪將家老)가 이제 본가(本家)로 돌아가는데, 쌀·콩·아울러 10석, 소금 10석, 장(醬) 1석과 음식물(飮食物)·술·고기를 주도록 하고, 아버를 만나볼 때의 다례(茶禮)와 어미 무덤에 성묘(省墓)할 때의 요전(澆奠)도 풍족하게 갖추어서 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p>	<p>○下書永安道觀察使鄭蘭宗曰：兼司僕浪將家老今歸本家，其給米·豆并十碩、鹽十碩·醬一石及食物酒肉，其見父時茶禮及母墳拜掃時澆奠，亦可豐備給之。</p>
	<p>호조(戶曹)에서 계달하기를,</p>	<p>○戶曹啓：“京畿今年凶荒，其救卹條</p>

<p>성종 34권, 4년(1473) 기사 / 명 성화(成化) 9년) 9월 5일(기사) 2 번째기사</p>	<p>“경기(京畿)는 금년에 흉년이 들었으니, 그 구제할 조건(條件)을 기록하여 아릅니다.</p> <p>1. 살곶이[箭串] 마장(馬場)의 목책(木柵)을 매양 경기(京畿) 백성들로 하여금 나누어 주어서 만들어 설치하게 하고, 한 번 설치한 뒤에는 3년을 지탱할 만 한데, 마장(馬場) 가까이 사는 사람이 대신 만들어 값을 받으려고 꾀하여 혹은 떠내려갔다고 일컫고 혹은 도둑맞았다고 일컬으면서 여러 고을 백성들로 하여금 해마다 고쳐 만들게 하여 폐(弊)를 받음이 끝이 없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본조(本曹)에서 책목 조수(柵木條數)를 회계(會計)에 기록하여 사복시(司僕寺) 관원으로 하여금 해유(解由)를 전해서 맡게 하고, 봄에 방목(放牧)할 때를 당하여 본시(本寺)의 여러 관원을 시켜서 배설(排設)하게 하되, 썩어서 쓸 수 없는 것은 고쳐 만들도록 하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삼게 하소서.</p> <p>1. 고양(高陽) 압도(鴨島)의 정초(正草) 갈대[藪]를 백성을 시켜서 베어 오게 하므로 백성들이 매우 괴로와합니다. 청컨대 임진년의 예(例)에 의하여 정병(正兵)을 시켜서 베어 오게 하소서.</p> <p>1. 여러 고을 수령이 공무(公務)를 핑계로 감고(監考)·색장(色掌)을 많이 차임(差任)하여 민간에 돌아다니면서 백성에게 해가 되게 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감고·색장을 없애고, 면(面)마다 부지런하고 조심성 있으며 사리를 아는 자 한 사람씩을 골라서 권농관(勸農官)으로 삼아 또한 별감(別監)을 거느리고 고찰(考察)하게 하여, 여기는 자는 엄하게 징계하게 하소서.</p> <p>1. 흉년에 준비할 물건으로는 도토리[橡實]·무우[菁菜]·산삼(山蔘)·도라지[桔]·메벼[粳]·메밀[木麥]의 꽃·줄기·잎 등의 물건이 가장 적절하니, 일체 임진년(壬辰年)의 사목(事目)에 의하여 각 마을 백성들에게 두루 타일러서 많이 준비해 놓게 하고, 긴요하지 아니한 물건은 독촉해서 준비하지 말게 하여 소요(騷擾)의 폐단을 없애게 하소서.</p> <p>1. 제사(諸司)의 서리(書吏)·나장(羅將) 제원(諸員)과 팽배(彭排)·대졸(隊卒)·정</p>	<p>件, 開錄以聞。 一, 箭串馬場木柵, 每令京畿人民, 分授造設, 一設之後, 可支三年, 而近場居民, 謀欲代造受直, 或稱漂失, 或稱被竊, 使諸邑之民, 年年改造, 受弊無窮。 請自今本曹將柵木條數, 錄會計, 令司僕寺官員, 解由傳掌, 當春放牧時, 役本寺諸員排設, 其有腐朽不堪用者改之, 以爲恒式。 一, 高陽鴨島正草藪, 役民刈取, 民甚苦之。 請依壬辰年例, 役正兵刈取。 一, 諸邑守令, 假托公務, 多差監考、色掌, 使之橫行里閭, 爲害於民。 請自今除監考、色掌, 每面擇勤謹識理者一人, 爲勸農官, 率方別監考察, 違者痛懲。 一, 備荒之物, 若橡實、菁菜、山蔘、桔、粳、木麥花、莖、葉等物最切, 一依壬辰年事目, 徧諭各村人民, 令多備儲, 不緊之物, 毋使督備, 以除騷擾之弊。 一, 如諸司書吏、羅將諸員, 彭排、隊卒、正兵等京役人, 家無餘丁, 秋耕及備荒未辦者, 令所居官, 分揀報監司, 監司覈實啓聞, 本曹憑考年分等第放送, 一, 禮葬時, 勿役烟戶人民, 以所在邑及附近邑當領水軍, 依日限赴役。 一, 觀察</p>
--	---	---

병(正兵) 등 서울에서 역사하는 사람으로 집에 남은 장정이 없어서 가을같이와 흉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자는 사는 곳의 관(官)으로 하여금 분간하여 감사(監司)에게 보고하게 하고, 감사는 사실을 조사하여 계문(啓聞)하면, 본조(本曹)에서 연분(年分)3402)의 등제(等第)를 빙고(憑考)하여 놓아 보내게 하소서.

1. 예장(禮葬)때에는 연호 인민(煙戶人民)을 부리지 말고, 있는 곳의 고을 및 부근 고을에서 번(番)을 당한 수군(水軍)을 거느리고 기일의 한정에 의하여 부역(赴役)하게 하소서.

1. 관찰사(觀察使)가 혹은 적간(摘奸)한다고 일컫고 혹은 추고(推考)한다고 일컬으면서 수령(守令)을 많이 보내어 여러 고을에 교대로 달려오니, 역로(驛路)에 폐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소요(騷擾)가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긴급하고 중대한 일 외에는 차사원(差使員)을 보내지 못하게 하소서.

1. 겸사복(兼司僕)이 제육(祭肉)으로 쓸 짐승을 사냥하는데, 비록 짐승이 없는 곳에 갈지라도 가는 여러 고을에서 지대(支待)하는 폐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사냥을 목표로 하는 곳을 기록하여 승정원(承政院)에 올리게 하고, 그 인마(人馬)의 양료(糧料)는 사복시(司僕寺)와 풍저창(豐儲倉)의 쌀과 콩으로 날수를 계산해서 가지고 가게 하소서.

1. 빙고(氷庫)는 경기(京畿)의 연화 인민(煙火人民)을 부려서 수리(修理)하게 하고, 그 얼음을 저장하는 데 소용되는 잡초(雜草)도 경기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해서 바치게 하니, 폐막(弊瘼)이 작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번(番)을 당한 정병(正兵)을 부려서 수리하게 하고, 아울러 역수(役數) 외에 선상(選上)은 광주(廣州)·양근(楊根) 등 물가에 잡초가 무성한 곳에 가서 풀을 베어 참선(站船)과 부근의 도선(渡船)으로 운반해 들여서 공용(供用)하게 하소서.

1. 본도(本道) 여러 고을의 신묘년 이전에 미수(未收)된 공물(貢物)과 금년에 바칠 긴급하지 아니한 공물은 감면하게 하소서.

使或稱摘奸，或稱推考，多差守令，交馳諸邑，非惟驛路有弊，騷擾民間，莫此爲甚。其緊關重事外，毋得發差使員。一，兼司僕於祭肉山獵，雖無獸處，任其所之，諸邑支待之弊，不可勝言。請自今錄山獵指向處，呈承政院，其人馬糧料，以司僕寺及豐儲倉米豆，計日齎去。一，冰庫，役京畿烟火人民修理，其藏水所用雜草，亦令京畿民備納，弊瘼不貲。請役當番正兵修理，并役數外選上，就廣州、楊根水邊雜草茂盛處刈草，用站船及附近諸渡船，輸入供用。一，本道諸邑，辛卯年以上未收貢物及今年應納不緊貢物蠲減。一，司僕寺留養馬甚多，草料之費不貲。請量減其數。一，去壬辰年風災，諸邑蠲免司僕寺納穀草五千二百二十六同，而令本寺諸員，刈壺串郊草，充數飼馬。請依此例，蠲京畿諸邑穀草，役諸員刈草供用。”命議于院相。申叔舟、崔恒議：“竝如所啓，但禮葬條，今方修整船隻，不宜別役水軍。禮葬，或有或無，仍舊何如”尹子雲議：“竝如所啓 施行，但箭串牧場柵木，冬節罷場散置之後，司僕寺一一看

	<p>1. 사복시(司僕寺)에 두고 기르는 말이 매우 많은데, 초료(草料)의 비용이 작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그 수(數)를 헤아려서 줄이도록 하소서.</p> <p>1. 지난 임진년의 풍재(風災)로 여러 고을에서 사복시(司僕寺)에 바치는 곡초(穀草) 5천 2백 26동(同)을 면제하고 본시(本寺)의 여러 관원으로 하여금 호곳이[壺串]의 들풀을 베어서 수량을 채워 말을 먹이게 하였습니다. 청컨대 이에(例)에 의하여 경기(京畿) 여러 고을의 곡초를 면제하여, 여러 관원을 사역하여 풀을 베어서 공용(供用)하게 하소서.”</p> <p>하니 원상(院相)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신숙주(申叔舟)·최항(崔恒)은 의논하기를,</p> <p>“모두 계달한 바와 같이 할 것이나, 다만 ‘예장조(禮葬條)’는 이제 바야흐로 선척(船隻)을 수리하고 정리하니, 별도로 수군(水軍)을 사역하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예장(禮葬)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윤자운(尹子雲)은 의논하기를,</p> <p>“모두 계달한대로 시행할 것이나, 다만 살곳이[箭串] 목장(牧場)의 책목(柵木)은 겨울철에는 목장을 파하고 흩어둔 뒤에 사복시에서 일일이 간수(看守)하기가 어려운데, 더욱이 해마다 고쳐서 준비하는 산과 들의 나무는 관원이 해유(解由)를 전장(傳掌)하기가 또한 어렵습니다. 청컨대 호조 낭청(戶曹郎廳)과 사복시 관원으로 하여금 그 나무의 수량을 헤아려서 치부(置簿)하여 목장 근처에 사는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서 간수하게 하고, 이듬해 봄철 방목(放牧)할 때에 본시(本寺)의 여러 관원을 시켜 배열해서 만들게 하며, 그 가운데 썩어서 쓸 수 없는 것은 나누어 준 고을로 하여금 다시 바치게 하되, 만일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잃어버린 자는 즉시 징납(徵納)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守爲難，況每年改備山野之木，官員解由傳掌亦難。請令戶曹郎廳及司僕官員，計其木數，置簿分授近場居民看守，翌年春節放牧時，役本寺諸員造排，其中腐朽不堪用者，令分受邑改納，如有不用心致失者，隨即徵納。”</p> <p>從之。</p>
성종 34권, 4년(1473)	훈련원(訓練院)에서 기로연(耆老宴)을 베풀고, 도승지(都承旨) 이승원(李崇元)	○設耆老宴于訓練院，命都承旨李崇

<p>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9월 9일(정유) 2 번째기사</p>	<p>에게 명하여 선은(宣醞)을 가지고 가서 하사하게 하였다. 정인지(鄭麟趾)·정창손(鄭昌孫)·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심희(沈澮)·김질(金磧)·윤자운(尹子雲)이 참여하였다. 이 먼저는 기로연에 단지 연로(年老)한 전함(前銜) 당상관(堂上官)만 참여하게 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일찍이 정승을 지낸 이와 2 품 이상의 70세가 된 자는 시임(時任)과 산관(散官)을 논하지 말고 잔치에 나오게 하였다. 한명회가 세종조(世宗朝)의 기영회(耆英會)의 일을 이끌어 계달함으로써 이 명이 있었던 것이다.</p>	<p>元，齎宣醞賜之。鄭麟趾、鄭昌孫、申叔舟、韓明澮、沈澮、金磧、尹子雲與焉。先是，耆老宴，只令年老前銜堂上參焉，至是命曾經政丞及二品以上年七十者，勿論時散赴宴。韓明澮援引世宗朝耆英會事以啓，有是命。</p>
<p>성종 34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9월 10일(무술) 2번째기사</p>	<p>일본국(日本國) 방장섭천 4주 태수(防長攝泉四州太守) 대내전(大內殿) 별가(別駕) 다다량정홍(多多良政弘)의 사자(使者) 원주덕(源周德)이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술을 마련해 놓고 인견(引見)하였으며, 상관인(上官人)·부관인(副官人)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였다. 신숙주(申叔舟)를 시켜서 원주덕(源周德)에게 말하기를, “너희 대내전(大內殿)은 족계(族係)가 우리 나라에서 나갔으므로 서로 교호(交好)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이제 듣건대 편안하다고 하니 기쁘고 위로되나, 다만 너희 나라 전쟁이 어떠하냐?” 하니 원주덕이 대답하기를, “우리 나연(那衍)은 특별히 성상의 은덕을 입어 무恙(無恙)합니다. 본국은 전란이 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상국(上國)에 오래 통신(通信)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란이 평정될 기한이 없어서 특별히 신(臣)을 보내어 성심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물건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고, 예조(禮曹)에서 답서(答書)하게 하기를, “요즈음 길이 막히고 음문(音問)이 두절되어 기미(氣味)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여서 궁급하던 중에 글을 받아 평안함을 갖추 알았으니 기쁘고 위로됩니다. 바친 예물은 삼가 이미 계달해 받았습니다. 요구하는 동전(銅錢)은 본국</p>	<p>○日本國防、長、攝、泉四州太守大內別駕多多良政弘使源周德辭，上置酒宣政殿引見，命上、副官人進爵。令申叔舟語周德曰：“汝大內殿，係出我國，相與交好已久今聞康裕喜慰，但汝國兵爭何如？”周德對曰：“我那衍特蒙上德無恙。本國爭亂未弭，故久未通信上國。然兵定無期，特遣臣納款耳。”賜物有差。其禮曹答書曰：近者路梗，音問阻絕，未審氣味何似，懸仰間承書，憇認康裕頓慰，所獻禮物，謹已啓納。見索銅錢，非本國所用，大藏經，又因諸州求去殆盡，未得從諭。特賜中畫鼓一面、中鐃鈸一事、中磬一事、白綿布五匹、人蔘一十斤、彩花席五張、豹皮一張、虎皮一張、油菴二張、海松子一十五斗，付還使，惟領納。足下係出我國，相與</p>

	<p>에서 쓰는 바가 아니고 대장경(大藏經)도 여러 고을에서 구해 감으로 인하여 다 없어졌으니, 부탁을 따르지 못합니다. 특별히 중화고(中畫鼓) 1면(面), 중요발(中鑿鉢) 1사(事), 중경(中磬) 1사, 백면포(白綿布) 5필, 인삼(人蔘) 10근, 채화석(彩花席) 5장, 표피(豹皮) 1장, 호피(虎皮) 1장, 유둔(油菴) 2장, 해송자(海松子) 15두(斗)를 하사하여 돌아가는 사신(使臣)편에 부치니, 영수해 받기를 바랍니다. 족하(足下)는 족계(族係)가 우리 나라에서 나가서 강호(講好)하여 대대로 내려오면서 정성을 돈독히 하였는데, 이제 듣건대 군사의 일이 그치지 않는다고 하니, 오직 밝고 어짐으로써 몸을保重(保重)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p> <p>하였다.</p>	<p>講好，歷世款篤，今聞兵事不息，但冀明哲保重。 不宣。</p>
<p>성종 34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9월 24일(임자) 3번째기사</p>	<p>임금이 아차산(峨嵋山)에 거둥하여 타위(打圍)를 구경하였다. 중량포(中良浦)에 주정(晝停)하는 작은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수가(隨駕)한 종친과 대신이 입시(入侍)하였다. 환궁(還宮)할 때에 명빈궁(明嬪宮)에 거둥하여 쌀·콩 아울러 30석을 하사하였다.</p>	<p>○上幸峨嵋山，觀打圍。晝停于中良浦，設小酌，隨駕宗宰入侍。還宮時，幸明嬪宮賜米·豆并三十碩。</p>
<p>성종 35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10월 12일(경오) 4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계달하기를, “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소격서(昭格署)의 청밀(淸蜜), 예빈시(禮賓寺)의 청밀·임자(荏子), 의영고(義盈庫)의 청밀·황랍(黃蠟)·법유(法油), 장원서(掌苑署)의 백자(栢子) 등의 물건은 비축한 것이 매우 많아서 두어 해의 소비를 지탱할 만한데, 만약 또 거두어서 바치게 하면 묵고 변질되어 쓸 수 없을 듯 하니, 청컨대 금년에 바칠 것은 적당하게 줄이도록 하소서. 다만 여러 고을 수령이 견감(蠲減)한 공물(貢物)을 가지고 백성을 속여서 함부로 거두는 자가 혹시 있을까 염려되니, 관찰사로 하여금 불시(不時)에 적간(摘奸)하여 엄하게 규찰(糾察)을 더하여 만일 범한 자가 있거든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로 논죄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啓：“內資寺、內贍寺、昭格署淸蜜，禮賓寺淸蜜、荏子，義盈庫淸蜜、黃蠟、法油，掌苑署栢子等物，所蓄甚多，可支數年之費，若又收納，恐陳腐不可用，請量減今年所納。但諸邑守令，將蠲減貢物，罔民濫收者，慮或有之，令觀察使，不時摘奸，嚴加糾察，如有犯者，論以制書有違律。”從之。</p>
<p>성종 35권, 4년(1473)</p>	<p>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김양경(金良暎)이 와서 아뢰기를,</p>	<p>○京畿觀察使金良暎來啓曰：“今講武，</p>

<p>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10월 16일(갑술) 3번째기사</p>	<p>“지금 강무(講武)하면서 경기(京畿)의 고을 백성들이 굶주리므로 물선(物膳)을 봉진(封進)하는 것을 정지시키도록 명하였는데, 채소·과일 따위는 관(官)에서 스스로 준비한 것이고 민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청컨대 하루 한 번씩 올리게 하소서.”</p> <p>하고, 도승지(都承旨) 이승원(李崇元)도 그렇게 청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p>	<p>以畿縣民飢，命停封進物膳，如蔬果之類，官自備之，非出於民間，請日一進。”都承旨李崇元亦請之，不聽。</p>
<p>성종 35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10월 17일(을해) 2번째기사</p>	<p>전산전(畠山殿)의 사자(使者) 조린(照隣) 등 11인이 하직하니,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서 인견(引見)하였다. 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영의정 신숙주(申叔舟)·예조 판서 이승소(李承召)가 입시(入侍)하여, 정인지·정창손이 술잔을 올렸다. 신숙주에게 명하여 조린(照隣)에게 말을 전하기를,</p> <p>“우리 나라가 너희 일본과 더불어 통호(通好)한 지 오래되었는데, 요즘 너희 나라의 병란(兵亂)으로 인하여 통신(通信)을 못하였다. 이제 듣건대 너희 임금이 무병(無病)하다고 하니, 진실로 기쁘고 위로된다. 너희들이 멀리 바다를 건너와서 참으로 수고가 많았다.”</p> <p>하니 조린이 엎드려서 사례하였다. 조린의 부관인(副官人) 양심(良心)에게 명하여 술잔을 올리게 하고, 물건을 차등이 있게 하사하였다. 예조(禮曹)의 답서(答書)에 이르기를,</p> <p>“서신이 와서 평안함을 잘 알게 되어 기쁘고 위로됩니다. 바친 예물은 삼가 계달하여 수납(收納)하였으며, 그 가운데 요구하는 대장전(大藏殿)의 조연(助緣)3541)은 우리 나라에서 요즘 해마다 흉년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특별히 백저포(白苧布) 5필, 흑마포(黑麻布) 5필, 표피(豹皮) 1장, 호피(虎皮) 1장, 채화석(彩花席) 3장, 인삼 3근, 해송자(海松子) 30두(斗)를 하사하여 돌아가는 사신편에 부치니, 영수하기를 바랍니다.”</p> <p>하였다.</p>	<p>○畠山殿使照隣等十一人辭，上御宣政殿引見。河東府院君鄭麟趾、蓬原府院君鄭昌孫、領議政申叔舟、禮曹判書李承召入侍，麟趾、昌孫進爵。命叔舟傳于照隣曰：“我國與爾日本，通好久矣，近因爾國兵亂，未得通信。今聞爾主無恙，良用喜慰。爾等遠涉滄溟，良苦。”照隣俯伏謝。命照隣副官人良心進爵，賜物有差。禮曹答書曰：</p> <p>書來，備認康裕欣慰。所獻禮物，謹啓收納，就中見索大藏殿助緣，我國比因連歲凶歉，未得如諭，特賜白苧布五匹、黑麻布五匹、豹皮一張、虎皮一張、彩花席三張、人蔘三斤、海松子三十斗，付回使，惟領納。</p>
<p>성종 36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p>	<p>임금이 의경묘(懿敬廟)3562)에 나아가서 익선관(翼善冠)·곤룡포(袞龍袍)를 갖추고 제사(祭祀)를 지냈다. 악(樂)은 고취(鼓吹)를 쓰고, 희생(犧牲)은 대뢰</p>	<p>○朔戊子/上詣懿敬廟，具翼善冠袞龍袍，行祭。樂用鼓吹，牲用大牢，百</p>

<p>9년) 11월 1일(무자) 1번째기사</p>	<p>(大牢)를 썼으며, 백관(百官)들이 배제(陪祭)하기를 의식(儀式)과 같이 하였다. 마침내 월산 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의 집에 거동하여 음복연(飲福宴)을 행하는데, 여러 향관(享官) 및 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滄)·과천 부원군(坡川府院君) 윤사흔(尹士昕)·평양군(平陽君) 박중선(朴仲善)이 입시(入侍)하였다. 정(婷)과 박중선에게 명하여 술잔을 올리게 하였는데, 박중선은 정(婷)의 장인[妻父]이었다. 명하여 정(婷)에게 쌀·콩 아울러 60석(碩), 아다개(阿多介) 1개, 활[弓] 3장(張), 호피(虎皮) 2장, 늑비(鹿皮) 2장, 표피(豹皮) 2장, 삼아 늑비(衫兒鹿皮) 3장, 소목(蘇木) 1백 근, 삼합 노구(三合爐口) 1부(部)를 내리고, 종헌관(終獻官) 덕원군(德原君) 이서(李曙) 이하 여러 향관에게도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렸다.</p>	<p>官陪祭如儀。 遂幸月山大君婷第， 行飲福宴， 諸享官及蓬原府院君鄭昌孫、 上黨府院君韓明滄、 坡川府院君尹士昕、 平陽君朴仲善入侍。 命婷及仲善進爵， 仲善， 婷妻父也。 命賜婷米、 豆并六十碩， 阿多介一， 弓三張， 虎皮二張， 鹿皮二張， 豹皮二張， 衫兒鹿皮三張， 蘇木百斤， 三合爐口一部， 終獻官(德原君) [德源君] 曙以下諸享官， 賜物有差。</p>
<p>성종 36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11월 9일(병신) 3번째기사</p>	<p>영안북도 절도사(永安北道節度使) 어유소(魚有沼)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경이 아된 바를 보고 근년(近年) 이래 올적합(兀狄哈)이 매년 원수를 갚는다고 일컫고 우리의 근경(近境)에 있는 알타리(斡朶里)를 약탈(掠奪)한다는 것은 갖추 알았다. 이는 우리의 번리(藩籬)를 흠어지게 하여 장차 우리에게 도둑질하려 함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약탈당해서 재산을 잃은 자에게 경은 특별히 존무(存撫)를 더하여 만약 양식이 떨어져서 굶주리거나 얼어죽는 자가 있으면 어염(魚鹽)·양포(糧布)를 헤아려 주고, 곡진히 구휼(救恤)하여 그들로 하여금 편안히 생업(生業)에 종사하게 하여 유이(流移)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함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p>	<p>○諭永安北道節度使魚有沼曰：“今見卿啓， 具悉近年以來， 兀狄哈每稱報仇， 搶掠我近境斡朶里。 是欲撤我藩籬， 將盜竊於我也， 不可不爲之慮。 今遭搶掠失所者， 卿別加存撫， 如有絕糧飢凍者， 量給魚鹽糧布， 曲盡救(卹) [恤]， 使得安業， 勿至流移可也。”</p>
<p>성종 36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11월 19일(병오) 4번째기사</p>	<p>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좌의정(左議政) 최항(崔恒)·지관사(知館事) 서거정(徐居正) 등이 성균관(成均館)에 모여 유생(儒生)들을 강(講)하니 명하여 우부승지(右副承旨) 유권(柳睽)을 보내어 선운(宣醞)을 내려 주었다.</p>	<p>○領議政申叔舟、 左議政崔恒、 知館事徐居正等會成均館， 講儒生書， 命遣右副承旨柳睽， 賜宣醞。</p>
<p>성종 36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p>	<p>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겸 호조 정랑(兼戶曹正郎) 고선경(高善慶)이 법성포(法聖浦)에서 전세(田稅)</p>	<p>○司憲府啓：“兼戶曹正郎高善慶在法聖浦， 監收田稅時， 私贈人米二十七碩</p>

<p>9년) 11월 20일(정미) 2번째기사</p>	<p>를 거두는 일을 감독할 때 사사로이 사람들에게 쌀 27석, 모밀[眞麥] 3석, 황두(黃豆) 14석을 준 죄는, 율(律)에 장(杖) 1백 대, 유(流) 3천 리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장은 속(贖)하고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게 하였다.</p>	<p>·眞麥三石、黃豆十四碩罪，律該杖一百、流三千里。”命杖贖，外方付處。</p>
<p>성종 37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12월 3일(기미) 2번째기사</p>	<p>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이제 의지(懿旨)를 받들어 납육(臘肉) 진상(進上)하는데, 대전(大殿) 외의 4전(殿)은 반으로 감(減)하여 봉진(封進)하라.” 하였다.</p>	<p>○下書諸道觀察使曰： 今承懿旨，臘肉進上，大殿外四殿，減半封進。</p>
<p>성종 37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12월 10일(병인) 3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임영 대군(臨瀛大君)의 부인(夫人)에게 부의(賻儀)로 쌀·콩을 합하여 50석(碩), 종이 1백 권(卷), 정포(正布) 50필, 촉랍(蠟蠟) 30근(斤), 석회(石灰) 60석(碩)을 내려 주었다.</p>	<p>○傳旨戶曹，賜臨瀛大君夫人賻米豆竝五十碩、紙一百卷、正布五十四、蠟蠟三十斤、石灰六十碩。</p>
<p>성종 37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12월 13일(기사) 3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서거정(徐居正) 등이 차자(筮子)를 올려 아뢰기를, “신 등이 듣건대, 내년 봄에 경복궁(景福宮)을 수선(修繕)하기 위하여 국(局)을 설치하고 관원(官員)을 두어 돌을 캐고 재목(材木)을 실어온다고 합니다. 이제 삼전(三殿)3622) 양궁(兩宮)께서 창덕궁(昌德宮)에 이어(移御)하여, 경복궁은 여러 해 동안 임어(臨御)하지 않아서 폐기(廢棄)되어 무너질 조짐이 있으니, 이는 매우 염려할 만합니다. 마땅히 때때로 수선(修繕)하여 삼전(三殿) 양궁(兩宮)께서 왕래(往來)하면서 거쳐하시는 것이 국가(國家)의 대계(大計)요, 온 나라 신민(臣民)이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하(殿下)께서 개수(改修)할 것을 명(命)하여 권권(倦倦)3624) 하시는 것은, 신 등도 결코 국가의 대계(大計)를 위한 것이지 토목 공사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 등은 생각하건대 공사를 일으키는 것은 마땅히 때를 보아서 일으켜야 하는 것이니, 때가 아닌데 일으키는 것은 《춘추(春秋)》에서 그르다고 하였습니다. 근년(近年) 이래로 천재(天災)와 시변(時變)이 없는</p>	<p>○司憲府大司憲徐居正等上筮子曰： 臣等竊聞，以明春修繕景福宮，開局置員，伐石輸材。今三殿兩宮，移御昌德宮，而景福宮曠年不御，有廢棄頽圯之漸，是深可慮。宜以時修繕，三殿兩宮往來臨御，是國家大計，一國臣民之望也。今殿下之倦倦於命修者，臣等斷然知爲國家大計，而非出於喜土功之心也。然臣等以爲，舉事興作，當視時而動，時拙舉贏，《春秋》非之。近年以來，天災時變，無歲無之。前年大旱、大水、大風，今年澇、旱失宜，加以四時時令亦大不順，夏月麻華，桃李秋華，亦有結子者，冬暖至于</p>

해가 없습니다. 전년(前年)에는 큰 가뭄과 큰 홍수와 큰 바람이 있었고, 금년(今年)에는 큰 물과 가뭄이 있습니다. 그 위에 사시(四時)의 절기[時令]가 또한 크게 불순(不順)하여, 여름철에 삼[麻]꽃이 피고, 복숭아 오얏[桃李]이 가을에 꽃이 피어 열매를 맺었으며, 겨울에는 12월까지 따듯하여 얼음이나 눈이 없습니다. 기후(氣候)의 고르지 못함이 이와 같으니, 내년의 농사도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 두 도(道) 외에 여러 도는 비가 꽤지 않았는데, 경기(京畿)는 더욱 심하였습니다. 지금 겨울철에 백성의 식량이 넉넉하지 않고 조세(租稅)도 충분하지 않아, 혹은 재산을 모두 전당잡히거나 혹은 부잣집에서 빌려 쓰고 있으니, 내년에 보리[麥]가 풍년들지 않으면 농민(農民)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전하(殿下)께서 위로는 천변(天變)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괴로움을 구제하는 데에 정성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신 등은 원컨대 무릇 토목 공사(土木工事)와 같은 급하지 않은 업무는 일체 정파(停罷)하고, 경복궁(景福宮)의 수선(修繕)은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도 또한 늦지 않을 것이니, 빌건대 성상께서는 살피시어 빨리 정파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원상(院相)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인지(鄭麟趾)는 의논하기를,

“주관(周官)에 구황(救荒)하는 정책으로 축성(築城)한다는 글이 있는데, 대개 백성을 먹여서 주리는 것을 구제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경복궁(景福宮)의 수리(修理)는 식량을 주고서 시키면 가하나, 그렇지 않으면 우선 정지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정창손(鄭昌孫)·성봉조(成奉祖)는 의논하기를,

“경복궁(景福宮)은 비가 오면 새는 곳이 많아서, 만약 풍년을 기다린다면 날로 점차 퇴락할 것이니, 서둘러 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일(前日)에 신 등이 경회루(慶會樓)의 위태로운 곳을 보았는데, 수년 내에는 퇴락

十二月，無冰無雪。氣候之不齊如此，明年之事，又未可知也。今年慶尙、全羅二道外，諸道禾穀不秀，而京畿尤甚。卽今冬月，民食不敷，租稅不充，或典盡財畜，或稱貸富家，明年麥未登場，農民何以堪之？此正殿下上畏天變，下恤民隱，兢兢業業之時也。臣等願凡土木不急之務，一切停罷，景福宮修繕，姑俟豐稔，亦未晚也。乞垂睿覽，亟令停罷。

命院相議之。鄭麟趾議：“周官救荒之政，有築城之文，蓋欲食民救飢也。今景福宮修理，給料使之則可也，不然姑停可也。”鄭昌孫、成奉祖議：“景福宮雨漏處多，若待豐年，則日漸頽圯，不可不急急修理。但前日臣等伏觀慶會樓傾危處，數年內不至頽落。今若改修，則其役甚巨，姑待豐年，未爲晚也。”申叔舟、崔恒、曹錫文、尹子雲議：“景福宮年久頽圯，不可不修。不修則後日用功必倍。然京畿連年不稔，時詘舉贏，不可不慮。且一時竝修，功夫必多。今審頽圯，不可經年之處，先修之，餘皆停之，慶會樓已備木石鍊正，以待後年何如？”

	<p>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만약 개수한다면 그 역사(役事)가 매우 클 것이니,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p> <p>하고, 신숙주(申叔舟)·최항(崔恒)·조석문(曹錫文)·윤자운(尹子雲)은 의논하기를, “경복궁은 해가 오래되어 퇴락하여서 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리하지 않으면 후일(後日)에 공력(功力)을 쓰는 것이 반드시 배(倍)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京畿)는 매년 풍년이 들지 않았으므로, 어려운 때에 거행하는 것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시에 다 수리하면 공부(功夫)가 반드시 많아야 합니다. 이제 퇴락한 곳을 살펴보고 해를 넘길 수 없는 곳을 먼저 개수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지하며, 경회루는 이미 나무와 돌을 다듬어 놓았으니, 후년(後年)을 기다리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p>	
<p>성종 37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12월 17일(계유) 1번째기사</p>	<p>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골간 울적합(骨看兀狄哈)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유무징합(劉無澄哈)·알타리(斡朶里)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마다롱합(馬多弄哈) 등 27인을 인견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우의정(右議政) 성봉조(成奉祖)·예조 참판(禮曹參判) 김영유(金永濡)와 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였는데, 신숙주에게 명하여 술잔을 올리게 하였다. 이어서 유무징합 등에게 전교하게 하기를,</p> <p>“내가 듣건대, 너희들은 울적합(兀狄哈)에게 침략을 당하여 처자(妻子)를 데리고 강변(江邊)에 와서 우거(寓居)하고 있다고 하니 반드시 간고(艱苦)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어떠한가?”</p> <p>하니 유무징합이 대답하기를,</p> <p>“금년에 또 내침(來侵)하여 혹은 살해(殺害)되기도 하고, 혹은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였습니다.”</p> <p>하였다. 또 마다롱합에게 전교하기를,</p> <p>“듣건대, 너희들이 울적합과 화해하였다고 하니 내가 매우 기쁘다. 그러나 저</p>	<p>○癸酉/御宣政殿，引見骨看兀狄哈知中樞府事劉無澄哈、斡朶里知中樞府事馬多弄哈等二十七人。領議政申叔舟、上黨府院君韓明澮、右議政成奉祖、禮曹參判金永濡及承旨等入侍，命申叔舟進爵。仍令傳于劉無澄哈等曰：“予聞汝等爲兀狄哈所侵，率妻子來寓江邊，想必艱苦，卽今何如？”無澄哈對曰：“今年又來侵，或殺害，或搶擄。”又教馬多弄哈曰：“聞汝等與兀狄哈和解，予甚喜焉。然彼心難信，勿恃已和，益謹隄備。”多弄哈對曰：“兀狄哈與我和者少，不和者尙多，豈可盡信？”賜客人物有差。旣出，叔舟</p>

	<p>들의 마음은 믿기가 어려우니, 이미 화해한 것을 믿지 말고 더욱 방비를 삼가 하라.”</p> <p>하니 마다롱합이 대답하기를,</p> <p>“올적합과 우리는 화해한 적이 적고 불화한 적이 많았으니, 어찌 모두 믿을 수 있겠습니까?”</p> <p>하였다. 임금이 객인(客人)에게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 그들이 나가자 신숙주가 아뢰기를,</p> <p>“전자에 야인(野人)이 궤향(饋享)을 받고서 말하기를, ‘전에는 대육(大肉)과 같은 물건은 관(館)에 물러가서 먹었는데, 지금은 연회의 물품이 전과 달라 궤향을 받고 물러나면 남은 반찬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통사(通事)들이 혹은 새로운 법식으로 이와 같이 되었다고 대답하기도 하고, 혹은 해당 관사에서 잘못하였다고 대답하기도 하였습니다. 저 야인은 비록 예의를 밝게 알지는 못하나 모두 중국에 왕래하여 본 바가 많아서, 이제 우리 나라에서 궤향을 받음에 있어서, 그 풍부함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혹은 그 대우하는 것이 점점 박하다고 생각하니 모두 잘된 일이 아닙니다. 먼 지방의 사람을 어루만지는 길은, 오는 것이 박(薄)해도 가는 것을 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돈(供頓)하는 것을 감하여 객인(客人)으로 하여금 의심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 음식(飮食)은 모름지기 넉넉해야 풍족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도 대육(大肉) 같은 것은 근냥(斤兩)으로 달아서 지용(支用)하는데, 돼지[豬]는 크고 적고 살찌고 마른 것이 같지 않으나, 새로운 법식에 구애되어서 재부(宰夫)3629)가 혹은 다리뼈로 근수를 보충하기도 하니 매우 미편(未便)합니다. 객인(客人)을 지대(支持) 하는 것은 모두 고사(故事)에 의거하는 것이 편(便)하겠습니다. 또 절검(節儉)을 위하여 쓸데 없는 것을 도태함에 있어서 먼저 임금께서 입으시는 복식(服飾)부터 시작하였으니, 매우 성(盛)한 덕(德)입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봉행하는 자가 성상의 뜻에 맞</p>	<p>進曰：“前者野人受饋享，語曰：‘前此如大肉等物，退食於館，今則宴品異於前，受享而退，靡有遺饌。’通事等或答以新式如是，或答以該司註誤。彼野人雖不解曉禮數，皆往來中朝，所見多，今其受享於我國也，或意其富不如舊，或意其待之浸薄，皆非美事。綏遠之道，當厚往薄來。今裁減供頓，使客人潛懷疑阻，似有不可。且飲食須有贏餘，及得豐潔。如大肉稱之斤兩而支用之，夫豬之大小肥瘦不同，而拘於新式，宰夫或以骨脚補其斤數，甚未便。其支持客人，竝依故事爲便。且節儉汰冗，先自供御服用，甚盛德也。然下之奉行者，承順上旨，似有峻切之弊。今定橫看，裁省太過，不厭衆心。大抵逢迎之弊，古今皆是，彼覩人主好尚，務中主意而將順之，上好省費，則逢迎而失之過汰，上好奢靡，則務爲侈翽，上鑑所明燭也。”明澮從旁啓之如左。文城君柳洙以都摠管入侍，進啓曰：“臣曾爲司畜署提調，儲養待用，豬數只五十口，是似不敷。”上曰：“滋息之策，前此何以處之？”都承旨李崇元啓曰：“該曹已啓，</p>
--	--	---

	<p>추어서 너무 엄하게 할 폐단이 있을 듯합니다. 이제 정한 횡간(橫看)에 줄인 것이 너무 많아 여러 사람의 마음에 맞지 아니합니다. 대저 아침[逢迎]하는 폐단은 고금(古今)에 모두 그러하였으니, 저들은 인주(人主)가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 힘써 인주의 뜻에 맞추어서 아침하고, 임금이 비용을 줄이는 것을 좋아하면 아부하여 지나치게 비용을 덜고, 임금이 사치를 좋아하면 힘써 사치하고 자랑하는 것은, 성상께서 밝게 아시는 것입니다.”</p> <p>하고, 한명회는 곁에서 아뢰기를 위와 같이 하였다. 문성군(文城君) 유수(柳洙)가 도총관(都總管)으로서 입시(入侍)하여 진계(進啓)하기를,</p> <p>“신이 일찍이 사축서 제조(司畜署提調)가 되어 <짐승을> 길러 쓰이는 데에 대비하였는데, 돼지의 수가 단지 50마리이니, 이는 넉넉하지 못한 듯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번식시켜 기르는 방법을 전에는 어떻게 하였느냐?”</p> <p>하니 도승지(都承旨) 이숭원(李崇元)이 아뢰기를,</p> <p>“해당 관청에서 이미 아뢰어 시행하였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금후로 객인(客人)을 접대(接待)하는 데에는 우선 구례(舊例)에 의하고, 새로운 횡간(橫看)을 사용하지 말라.”</p> <p>하였다.</p>	<p>施行矣。” 上曰：“今後客人接待，姑依舊例，勿用新橫看。”</p>
<p>성종 37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12월 17일(계유) 2번째기사</p>	<p>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가 아뢰기를,</p> <p>“전자에 성상께서 왜인(倭人) 진성행(秦盛幸)의 옷이 얇다는 것을 듣고 특별히 솜옷[襦衣]을 내려 주었으니, 이는 특별한 은혜인데, 제용감(濟用監)의 관리가 품질이 거칠고 나쁜 것으로 만들어서 비자(婢子)로 하여금 주게 하였으니, 청컨대 의금부(義禁府)에 회부하여 국문하소서. 또 새로 정한 횡간(橫看)안에 중국 사람에게 내려 주는 속옷[裏衣]에 드는 베[布]가 다만 11척(尺)이고, 2폭(幅) 반으로 재단하여 쓰니, 짧고 좁아서 쓸 수 없어 지극히 미편(未</p>	<p>○領議政申叔舟啓曰：“前者上聞倭人秦盛幸衣薄，特賜襦衣，此是特恩也，濟用監官吏麤惡縫造，令婢子給之，請下義禁府鞫之。且新定橫看內，唐人賜給裏衣所入布，只十一尺，裁用二幅半，短窄無用，至爲未便。” 傳曰：“予意初非一切減省，參酌世祖朝橫看，</p>

	<p>便)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내 생각은 처음에 일체 감하고 줄이려는 것이 아니었고, 세조조(世祖朝)의 횡간(橫看)을 참작하여 늘릴 것은 늘이고 줄일 것은 줄이되, 무릇 제향(祭享)에 관계되는 전물(奠物)은 풍후(豐厚)하게 하도록 힘썼다. 또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극중(李克增)이 의정(擬定)한 후에 원상(院相)에게 보이니, 모두 말하기를, ‘가하다.’고 한 연후에 정하였다. 이제 옛날 횡간(橫看)을 참고하니 없애 버리고 감한 것이 매우 적은데, 이제 경의 말을 들으니, 어찌하여 이와 같이 어긋나느냐?”</p> <p>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p> <p>“상교(上敎)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신도 또한 그때에 그것이 불가(不可)한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제 와서 시행(試行)한 후에야 그것이 불가한 것을 알았습니다. 세조조(世祖朝)에 비록 횡간을 정하기는 하였으나, 연향(宴享)에는 전례(前例)를 쓰고 횡간을 쓰지 않았습니다.”</p> <p>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이승원(李崇元)에게 전교하기를,</p> <p>“전자에 사축서(司畜署)에서 돼지를 번식시켜 기르는 정식(定式)과 신구 횡간(新舊橫看)에 객인(客人)을 연향(宴享)하는 조목을 일찍이 명하여 그 증감(增減)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는데, 환관[中官]이 전하지 않았느냐? 승지(承旨)가 듣고서 아뢰지 않았느냐? 또 돼지 고기[豬肉]에 근냥(斤兩)을 쓰고, 중국 사람의 속옷을 단지 11척으로 상정(詳定)한 것을 이극중에게 물어보라.”</p> <p>하니 이승원이 아뢰기를,</p> <p>“돼지는 한 마리가 1년에 열 마리씩 번식하여 80마리를 정식(定式)으로 하여 이미 사축서(司畜署)에 내렸으며, 신구 횡간에 빙고(憑考)하라는 일은 신 등이 듣지 못하였습니다.”</p> <p>하였다. 즉시 이극중을 불러서 물으니, 이극중이 아뢰기를,</p>	<p>可增則增之，可減則減之，若凡干祭享奠物，務令豐厚。且戶曹判書李克增擬定後，示院相，皆曰：‘可’，然後定之。今參考古橫看，汰減者甚少，今聞卿言，是何如此其戾也？”叔舟啓曰：“上敎允當。臣亦其時未見其不可，及今試之後，知其不可。世祖朝雖定橫看，宴享則用前例，而不用橫看也。”傳于都承旨李崇元曰：“前者司畜署豬口滋息定式及新舊橫看，客人宴享條，曾命考其增減以啓，中官不傳乎？承旨聞而不啓乎？且豬肉用斤兩，及唐人裏衣只十一尺詳定事，問諸克增。”崇元啓曰：“豬口，每一年十口滋息，八十口定式，已下司畜署矣，新舊橫看憑考事，臣等未聞。”即召克增問之，克增啓曰：“大肉雖用斤兩，因客人多少而用之耳，非必只用一口也，但奉行失誤耳。唐人裏衣，以十七尺詳定，裁作有餘，此上鑑親定也。但今考橫看，一處則載十七尺，一處則載十一尺，此偶未及改也。”傳于叔舟曰：“世祖朝雖定橫看，宴享則用前例，予未之知也。予意舊橫看，即是前例，故不知其如此過省也。其宴享條，斯速改定，</p>
--	--	---

	<p>“대육(大肉)은 비록 근냥(斤兩)을 쓰기는 하나, 객인(客人)의 다소(多少)에 따라 쓰며, 반드시 한 마리만을 쓰는 것이 아닌데, 다만 봉행(奉行)하는 자가 잘못하여 그르친 것입니다. 중국 사람의 속옷을 17척으로 상정하였는데, 재단하여 만들고 남음이 있으므로, 이는 상감(上鑑)께서 친히 정한 것입니다. 이제 횡간을 상고하니 한 곳에는 17척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 곳에는 11척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이는 고칠 때에 우연히 미처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p> <p>하였다. 신숙주에게 전교하기를, “세조조(世祖朝)에 비록 횡간을 정하였으나 연향에는 전례를 쓰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나는 구횡간(舊橫看)이 바로 전례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나치게 감한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 연향 조목을 속히 개정(改定)하고, 대육(大肉)에 드는 돼지고기는 번식하지 않은 동안에는 우선 말린 돼지고기를 쓰고, 번식하기를 기다린 후에 예(例)대로 산 돼지를 써서 풍후(豐厚)하도록 힘쓰라.”</p> <p>하였다.</p>	<p>大肉所入猪口，未滋息間，姑用乾猪，待滋息後，例用生猪，務令豐厚。”</p>
<p>성종 37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12월 28일(갑신) 4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제 구황(救荒)하는데 각호(各戶)에 사람 1명마다 하루에 장(醬) 2홉[합]을 주니, 장차 계속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루에 1홉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모두 7천 3백 석(碩)인데, 사람의 식량과 농우(農牛)의 사료를 합하여 계산하면 2만 석이 됩니다. 청컨대 군자감(軍資監)의 묵은 콩[陳豆]을 주어 절약하면서 구휼(救恤)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據京畿觀察使啓本啓：“今救荒，各戶人一口，一日給醬二合，則勢將難繼。一日一合計，得摠七千三百碩，口食及農牛料，竝計二萬石。請以軍資監陳豆題給，撙節救恤。”從之。</p>
<p>성종 38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1월 1일(정해) 4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경혜 공주(敬惠公主)에게 부의(賻儀)로 쌀·콩 아울러 70석(碩), 정포(正布) 50필, 종이 1백권, 석회(石灰) 60석, 촉랍(燭蠟) 30근을 내려 주게 하였다.</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처음에 정종(鄭棕)이 주살(誅殺)되니, 공주(公主)는 머리를 깎고 여승(女僧)이 되었는데, 매우 가난하였으므로, 세조(世祖)가 불쌍</p>	<p>○傳旨戶曹，賜敬惠公主賻米·豆并七十碩、正布五十匹、紙一百卷、石灰六十碩、燭蠟三十斤。</p> <p>【史臣曰：“初鄭棕誅死，公主祝髮爲尼貧甚，世祖憐之，還其臧獲，令內需</p>

	<p>히 여겨 노비[藏獲]를 돌려주고, 내수사(內需司)로 하여금 집을 지어서 주게 하였다. 아들 정미수(鄭眉壽)는 나이 16세로 공주가 병이 위독해지면 약이(藥餌)를 반드시 먼저 맛보았고, 옷은 띠를 풀지 않았으며, 똥을 맛보기까지 하면서 병을 보살폈다.” 하였다.</p>	<p>司，構第賜之。子眉壽，年十六，公主病革，藥餌必先嘗，衣不解帶，至嘗糞以驗病候。”】</p>
<p>성종 38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1월 15일(신축) 4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교(傳敎)를 받들건대, ‘윤대(輪對)한 자들이 말하기를, 「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충청도(忠淸道)는 풍속이 사치를 숭상하여, 장사[葬送]를 지내는 데 힘써 사치하게 합니다. 제전(祭奠)은 유밀(油蜜)의 비용이 수곡(數斛)에 이르고, 주찬(酒饌)을 많이 갖추고 인근 사람들을 널리 불러서 성악(聲樂)을 크게 베풀어 밤이 지나서야 파하며 이튿하여 오시(娛尸)라 하는데, 이 때문에 파산(破産)하는 자가 많습니다. 또 가난한 자는 비용을 대기 어려워서 여러 해 동안 장사를 지내지 못합니다.» 하였다. 풍속을 폐상(敗傷)하는 것으로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으니, 엄하게 금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신 등이 이와 같은 법규를 위반하는 자를 자세히 참고해 보건대, 일찍이 법을 세워 엄금하였으나, 관리들이 봉행(奉行)하기를 게을리하니 폐단이 옛날과 같습니다. 이후 범한 자와 소관하는 수령을 아울러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로써 논단(論斷)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今承傳敎，‘輪對者有言：「慶尙、全羅、忠淸道，俗尙浮誇，葬送之事，務爲華侈。祭奠油蜜之費，幾至數斛，多辦酒饌，廣招鄉隣，大張聲樂，終夜而罷，名爲娛尸，以此破産者多。貧者難辦，累年不葬。」傷敗風俗，莫此爲甚，其痛禁之’，臣等參詳如此違制者，曾已立法痛禁，而官吏懶於奉行，弊復如舊。今後犯者及所管守令，竝以制書有違律論斷。”從之。</p>
<p>성종 38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1월 18일(갑진) 4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청컨대 본도 여러 고을의 군자(軍資)에서 진잡미(陳雜米) 1만 2천 4백 73석을 내어서 굶주리는 백성을 진휼(賑恤)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據京畿觀察使啓本啓：“請發本道諸邑軍資陳雜米一萬二千四百七十三碩，賑飢民。”從之。</p>
<p>성종 38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1월 19일(을사) 5번째기사</p>	<p>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글을 내리기를, “진주(晉州)의 향리(鄕吏) 중륜(仲倫)·계순(繼純) 등은 본 고을에 거주하는 각사(各司) 노비(奴婢)의 신공(身貢)을 거두는 것을 맡았는데, 3년 동안 공물을 거두면서 함부로 쌀 2백 30여 석, 면포(綿布) 1백여 필, 종이 8천여 권을 사</p>	<p>○下書諸道觀察使曰： 晉州鄕吏仲倫、繼純等，掌收本官住各司奴婢之貢，收三年貢，而濫收入己者，米二百三十餘碩、絁布一百餘匹·</p>

	<p>사로이 취하였다. 해마다 제멋대로 침범하여 조금도 꺼리지 아니하므로, 사노(寺奴) 능금(能金)·계생(戒生) 등이 그 원통함을 하소연하니 중륜 등은 모해(謀害)하려고 적당(賊黨)이라고 무함하여 체포하여서 옥에 가두고, 옥리(獄吏)를 피어 도리어 침독(侵毒)을 가하여, 혹은 죽기에 이르렀다. 백성들이 해를 받는 것이 이와 같은 데도 관리(官吏)가 어리석어서 붙잡아들이지 아니하니 어찌 유독 진주(晉州)만 그러하겠는가? 도내(道內) 여러 고을의 아전들도 이와 같은 자가 많을 것이니, 경들은 더욱 엄중하게 검핵(檢覈)하여 폐해를 끼치지 않게 하라.”</p> <p>하였다.</p>	<p>紙八千餘卷。 年年侵耗， 橫恣無忌， 寺奴能金、 戒生等訴其冤， 仲倫等謀欲害之， 誣以賊黨， 逮繫之， 嗾獄吏橫加侵毒， 或致殞命。 民受其害如此， 而官吏朦不覺舉， 豈獨晉州爲然？ 道內諸邑之吏， 類多如此， 卿其嚴加檢覈， 毋使貽弊。</p>
<p>성종 38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1월 27일(계축) 6번째기사</p>	<p>예조 좌랑(禮曹佐郎) 남제(南悌)를 제포(薺浦)·부산포(釜山浦)에 보내어 실화(失火)한 왜인(倭人)들을 먹이게 하고, 쌀을 차등있게 내려 주었다. 인하여 유시(諭示)하기를,</p> <p>“전하께서 너희들이 화재를 만난 것을 듣고, 특별히 신에게 명하여 존휼(存恤)하게 하였다.”</p> <p>하고, 또 말하기를,</p> <p>“너희들이 내지(內地)에 살고자 하면 마땅히 받을 주어 편안히 살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그대로 포(浦)에서 살기를 원하거나 혹은 본도(本島)에 돌아가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맡기겠다. 또 너희들이 자주 실화(失火)하니 불을 끄는 기구를 엄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여사(廬舍)를 구획하여 연소(延燒)되지 않게 하려 하는데, 만호영청(萬戶營廳)이 너희들 집과 잇닿아 있어서 연소될 것이 염려스러우므로, 담을 쌓아서 한계를 두어 화재를 막으려고 한다.”</p> <p>하고, 인하여 남제와 그 포의 첨사(僉使), 본현의 수령(守令)에게 명하여 함께 영청의 담을 쌓을 터를 살펴서 결정하게 하고, 수군(水軍)을 내어서 축조(築造)하되, 문관(門關)을 단단히 건축하게 하였다. 또 남제에게 명하여 진궤(賑</p>	<p>○遣禮曹佐郎南悌于薺浦、釜山浦，饋失火倭人，賜米有差。 因諭之曰：“殿下聞汝等遭火災，特命臣存恤。” 又語之曰：“汝等欲居內地，當給田以安之，汝欲仍居浦所，或欲還本島，任汝爲之。 且汝等比比失火，備火器械，不可不嚴。 區畫廬舍，勿令延燒，萬戶營廳，與爾居聯接，慮有延燒，欲築牆限之，以防火也。” 仍命悌與其浦僉使、本縣守令，同審營廳牆基，簽發水軍築之，嚴設門關。 又命悌，因賑饋，以數倭戶丁口，又審倭人侵占公私田之形以啓。</p>

	<p>饋)를 인연하여 왜인들의 호구와 인구를 조사하게 하고, 또 왜인들이 침점(侵占)한 공전·사전의 형편을 살펴서 아뢰게 하였다.</p>	
<p>성종 39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2월 3일(무오) 3번째기사</p>	<p>전 행 대호군(行大護軍) 어효첨(魚孝瞻)이 상서(上書)하기를, “앞드려 생각건대, 신(臣)은 성품이 본래 어리석고 재주가 천박하고 졸렬하나, 다행히 과거에 급제하여 세종조(世宗朝)에 벼슬을 시작하여 문종조(文宗朝)에 이르도록 두 임금의 지우(知遇)를 치우치게 입어서, 신을 쓸 만한 사람이라 하여, 여러 번 차서를 넘어 승진시키는 은혜를 입어 벼슬이 정3품(正三品)에 이르렀습니다. 세조 때에 이르러서는 돌보심이 더욱 융숭하여 신을 원종 공신(原從功臣)3720)에 기록하시고, 매양 신을 ‘낙지군자(樂只君子)3721)’라 칭찬하며 문득 발탁하여 마침내 1품의 반열(班列)에 올리셨습니다. 은총이 분수에 넘치므로 성상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였는데, 빈천(賓天)3722)이 급박하였으니, 어찌 애통함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성조(聖朝)에 이르러 또 원종 공신에 참여하게 되자 세조에게 보답하려면 마음으로 전하에게 충성을 다하려 하였습니다. 신묘년(3723)에 신이 어미의 상(喪)을 당하였는데, 효성은 비록 옛사람에 미치지 못했지만 상제(喪制)는 옛 예법에 거의 따라야 하므로, 수개월 동안 죽을 먹으며 애통하여 부르짖다가 장례를 치른 후에는 물골이 과리하게 되니, 전하께서 신이 혹 상(喪)을 견디어내지 못하게 될까 염려하시어 내관(內官) 엄용선(嚴用善)을 보내어 신에게 선온(宣醢)과 육찬(肉饌)을 내리시었습니다. 무릇 친상은 본래 스스로 극진히 해야 하는 것이나, 성상의 명은 의리상 감히 사양할 수 없으므로, 신이 이미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서 날로 충실해져 성명(性命)을 보전하고 장례를 잘 마쳐 오늘에 이르렀으니,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는 모두 전하께서 내려 주신 것입니다. 또 지난해에는 궁중의 진수를 내리시고 또 달인 약을 내리시어 천황(天貺)이 자주 겹쳐 은혜가 분수에 넘치니,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특별한 은수(恩數)를 받아가 하고 스스로 생각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신은 본래 궁마의 재능[弓馬之</p>	<p>○前行大護軍魚孝瞻上書曰： 伏念，臣性本愚魯材，惟謙薄，幸登科第，始任於世宗朝，逮至文廟，偏荷兩聖之知，謂臣爲可人，屢承不次之恩，官至正三品。及我世祖，眷顧彌隆，錄臣原從之功，每稱臣曰：“樂只君子”，驟加遷擢，遂躡一品之班。寵榮踰分，欲報聖恩，賓天斯迫，可勝痛哉？逮我聖朝，又參原從，欲以報世祖之心，輸忠於殿下也。歲在辛卯，臣遭母憂，誠孝雖未及於古人，喪制庶可從乎古禮，數月之間，啜粥哀號，既葬之後，形貌羸瘦，殿下慮臣或至於不勝喪也，遣內官嚴用善，賜臣宣醢肉饌。夫親喪固所自盡，然君命，義難敢辭，臣既得飲酒食肉，日就充盈，獲全性命，克終喪事，以至今日，從今至死之年，皆殿下之賜也。且於前歲，賜內廚珍羞，又賜煎藥，天貺稠疊，恩出望外，自念何人，膺茲異數。顧臣素無弓馬之能，又乏文章之才，況今桑榆已晚，雖欲盡節於明時，其道無由，苟一息之尚存，唯知朝夕祝聖壽於無疆耳。</p>

	<p>能]3725) 이 없으며 문장의 재간도 없는 데다가, 더구나 지금은 너무 늙어 비록 명세(明世)에서 충절을 다하고자 하여도 그럴 방도가 없으니, 잠시라도 숨이 남아 있으면 조석으로 성수(聖壽)가 무궁하시기를 빌 줄만 알 따름입니다.”</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다음 도목 정사(都目政事) 때에 봉조하(奉朝賀)를 제수하라.”</p> <p>하고, 이어서 선은(宣醞)을 내렸다.</p>	<p>傳曰：“後政除奉朝賀。”仍賜宣醞。</p>
<p>성종 39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2월 4일(기미) 3번째기사</p>	<p>벼락에 맞아 죽은 엄산(嚴山)에게 쌀 1석과 종이 30권과 관(棺)을 부물(賻物)로 내리도록 명하였다.</p>	<p>○命賻震死人嚴山，米一碩紙三十卷及棺。</p>
<p>성종 39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2월 20일(을해) 3번째기사</p>	<p>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김양경(金良璫)이 와서 아뢰기를, “청진대 경창(京倉)의 묵은 조미(糙米) 5만 석을 풀어서 굶주리는 백성을 구휼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京畿觀察使金良璫來啓：“請發京倉陳糙米五萬碩，賑救飢民。”從之。</p>
<p>성종 39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2월 29일(갑신) 2번째기사</p>	<p>종정국(宗貞國)의 특송승(特送僧) 기소지(其小只)와 원교직(源教直)의 사승(使僧) 간소지(看小只)와 원정성(源貞成)의 사자(使者) 요온이로(要溫而老)가 하직하니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인견(引見)하고 공궤(供饋)하고서, 예조 겸판서(禮曹兼判書) 신숙주(申叔舟)를 시켜 종정국(宗貞國)의 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 도주(島主)는 우리 나라의 남쪽 울타리가 되어 우리 나라 표류인(漂流人)들을 모두 호위하여 송환하였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p> <p>하고, 원정성의 사자에게 말하기를, “일찍이 듣건대 우리 나라 사람이 삼도(三島)에 표류하여 닿았는데, 너희 임금이 모두 속바치어서 보내 주었다고 하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p> <p>하고, 원교직의 사자에게 말하기를,</p>	<p>○宗貞國特送僧其小只、源教直使僧看小只、源貞成使要溫而老辭，上御(宣政政) [宣政殿]，引見饋之，命禮曹兼判書申叔舟，語宗貞國使曰：“爾主爲國南藩，我國漂流人，皆護還，予甚嘉之。”語源貞成使曰：“嘗聞我國人漂泊三島，爾主悉贖而送，予甚嘉之。”語源教直使曰：“爾主爲九州之長，能撫輯其下，歲修相好，予甚嘉之。”仍賜物有差。禮曹答宗貞國書曰：</p>

“너희 군주는 구주(九州)의 장(長)으로서 아랫사람을 잘 어루만지어 해마다 사신을 보내어 서로 우호를 지키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하고, 이어서 차등있게 물건을 내려 주었다. 예조에서 종정국에게 답하는 글에 이르기를,

“우리 나라 승도(僧徒)가 오도(五島)에 표착하였는데, 등원정성(藤原貞成)이 박다(博多)로부터 사람을 보내어 돈을 지불하고 송환하였고, 귀하 역시 2명을 송환하였으며 또 듣건대 오도수(五島守) 역시 그 나머지를 장차 모두 송환할 것이라고 하니 이는 족하(足下)가 국은(國恩)을 이끌어서 먼 곳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한 소치입니다. 귀하가 더욱 더 정성을 드리는 것을 보시고 우리 전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어 특별히 선물을 내리라고 명하셨습니다.”

하고, 또 기록하기를,

“삼포(三浦)에 붙어 사는 귀도(貴島) 사람이 자주 실화(失火)하는데, 지금 또 제포(齊浦)의 3백여 가와 부산포(釜山浦)의 60여 가와 염포(鹽浦)의 몇 가옥이 불에 타 텅 비었고 사람도 많이 부상하였으므로, 우리 전하께서 가없이 여기어 즉시 관원을 파견하여 진휼(賑恤)하셨는데, 이는 땅은 좁고 사람은 조밀하여 지붕의 이엉이 서로 붙어서, 한 번 불이 나면 쉽게 번지는 까닭에 이러한 재난이 자주 있는 것입니다. 선왕(先王) 때부터 여러 번 글을 보내게 하여 쓸데 없는 사람들을 쇄환(刷還)하도록 하시고, 족하 역시 두 번 글을 올려 장차 명령대로 하겠다 하였는데 그대로 지금에 이르렀고, 들어와서 붙어사는 자가 더욱 많아지고, 간사한 자를 용납하여 마음대로 속이므로 기만 행위가 날로 심합니다. 비단 화재를 불러 일으킬 뿐 아니라 장차 반드시 말썽이 일어날 것이므로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으니, 족하가 먼 뒷날의 염려를 깊이 생각하여 옛 약속을 어기지 말아서 전의 약속을 지키면 다행하겠습니다. 또 경인년(3757)에 귀국의 이세수(伊勢守) 정친(政親)이 귀국의 왕명을 받고 사자를 보내어 와서 군수(軍需)를 구하므로, 우리 전하께서 양국의 오랜 교분을 생각

我國僧徒漂抵五島， 藤原貞成自博多， 遣人購還， 足下亦還二口， 又聞五島守亦將盡還其餘， 是乃足下能導國恩， 以及遠人之致也。 益見足下輸誠之篤， 我殿下深用嘉悅， 特命錫賚。

又記：

三浦寄居貴島之人， 頻年失火， 今又齊浦三百餘家、釜山浦六十餘家、鹽浦數家 焚蕩空廬， 亦傷人物， 我殿下爲之愍然， 卽命遣官賑恤。 此乃地窄人稠， 茅茨相接， 一或失火， 易致延及， 故亟有此災。 自我先王， 累命移書， 刷還冗雜， 足下亦再書， 許將如命， 而因仍至今， 投寓益多， 容姦騁詐， 欺僞日滋。 非徒致災， 將必生釁， 不可不圖。 足下深思遠慮， 毋違舊約， 以實前言幸甚。 又於庚寅年， 貴國伊勢守政親， 以貴國王命遣使來， 索軍需， 我殿下念兩國積世之交， 救患分災之義， 命以綿布·麻布各一千匹， 米五百碩， 就付來使， 今聞釜山浦寓居貴島人三浦郎吾羅， 伺其還而掠奪。 若果如是， 則在此在彼， 皆爲叛亂大逆之人， 豈可不懲？ 足下宜究治， 悉取信書禮物， 轉進國王， 因來人示及， 亦幸。

	<p>하고 재난을 나누어 갖는다는 의리를 생각하여 면포(綿布)·마포(麻布) 각 1천 필과 쌀 5백 석을 사자 편에 보내셨는데 지금 듣건대, 부산포에 사는 귀도의 사람 삼보랑오라(三甫郎吾羅)가 사신이 돌아가는 것을 엿보다가 약탈하였다 합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나라에서나 귀국에서나 모두 반란·대역한 사람이 되니, 어찌 징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족하는 마땅히 추궁해서 다스리고 신서(信書)와 예물을 모두 도로 찾아서 국왕에게 바치고, 앞으로 오는 사람 편에 알려 주면, 또한 다행이겠습니다.”</p> <p>하고, 별폭(別幅)에는, “백저포(白苧布) 3필, 흑마포(黑麻布) 3필, 백면포(白綿布) 3필, 채화석(彩花席) 3장, 표피(豹皮) 2장, 호피(虎皮) 2장, 안장[鞍子] 1면(面), 제연(諸緣)3758) 을 갖춘 총웅마(驄雄馬)3759) 1필.”</p> <p>이라 하였다. 원정성에게 답하는 글에 이르기를, “글이 와서 강녕함을 알고 멀리서 위안됩니다. 족하가 우리 나라의 표류한 승도(僧徒)를 돈 주고 사서 사자를 시켜 돌려보내주니, 우리 전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백저포 10필, 백면포 10필, 흑마포 10필, 표피(豹皮) 1장, 호피(虎皮) 1장, 병풍(屏風) 1좌(坐), 채화석(彩花席) 3장, 인삼(人蔘) 3근, 해송자(海松子) 10두(斗)를 특별히 내리고 요구한 원앙(鴛鴦) 1쌍을 아울러 돌아가는 사자 편에 부칩니다.”</p> <p>하였다.</p>	<p>別幅： 白苧布三匹，黑麻布三匹，白綿布三匹，彩花席三張，豹皮二張，虎皮二張，鞍子一面，諸緣具驄雄馬一匹。</p> <p>答貞成書曰： 書來，備諳康裕，遙慰。足下購求我國漂流僧人等，專使遣還，我殿下深用嘉悅，特賜白苧布一十四匹，白綿布一十四匹，黑麻布一十四匹，豹皮一張，虎皮一張，屏風一坐，彩花席三張，人蔘三斤，海松子一十斗，并所索鴛鴦一對，就付回使。</p>
<p>성종 40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3월 1일(병술) 3번째기사</p>	<p>영안도(永安道)의 갑산부(甲山府) 사람 장이(張弛) 등이 상언(上言)하여 본부(本府)3765) 의 폐단을 조목별로 진술하였는데, 그 상언에 이르기를, “첫째, 을유년(3766) 에 정한 바의 공안(貢案)은, 초피(貂皮) 1백 15장(張), 서피(鼠皮) 2백 60장(張), 화피(樺皮) 3백 75장(張)을 본부(本府)의 세공(歲貢)3767) 으로 삼았는데, 지금 정한 공안에는 초피 65장, 서피 20장, 화피 3백 50장을 더하였습니다. 초피·서피·화피는 비록 본부에서 생산되는 것이나</p>	<p>○永安道甲山府人張弛等上言，條陳本府之弊，：“其一，乙酉年所定貢案，以貂皮一百十五張、鼠皮二百六十張、樺皮三百七十五張，爲本府歲貢，今定貢案，加貂皮六十五張、鼠皮二十張、樺皮三百五十張。貂、鼠、樺皮，雖</p>

많이 얻기가 쉽지 아니하고, 또 오랑캐 땅[胡地]에 넘어 들어가서 이를 취(取)하는 것도 불가하므로, 공물(貢物)을 충당할 수가 없으며, 그 값도 비싸서 소[牛] 1두(頭)를 가지고 초피 1장과 바꾸는 형편이니 백성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초피·서피의 공물을 헤아려 감하고, 또 화피는 북청(北靑)·함흥(咸興)에 옮기게 하소서.

둘째, 본부에서 진상(進上)하는 물선(物膳)의 수가 매우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갖추기가 어려운 것은 중포(中脯)가 6백 16조(條), 편포(片脯)가 1백 95조(條)여서, 부득이 유방군(留防軍)을 역사시켜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래의 군사는 다만 4백 4명 뿐으로서 여러 진(鎭)에 나누어 방수(防戍)하기 때문에 본진(本鎭)에 머무는 자가 적은데 이들을 몰아서 다 사냥군[獵卒]으로 삼아 성(城)을 비우고 나가게 되면, 본부는 오랑캐[虜]의 거소(居所)와 거리가 멀지 않으니, 만일에 빈틈을 타서 작모(作耗)한다면, 그 화(禍)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컨대 북도(北道) 육진(六鎭)의 예(例)에 의거하여 육물(肉物)의 진상을 제외하고 오로지 방수만 하게 하소서. 또 본부는 지세(地勢)가 높고 험준하며 기후도 춥고 매서워서 본래 꿀벌[蜜蜂]이 없는데도 공밀(貢蜜)이 8두(斗)나 되어서 갖추어 납공(納貢)하기가 어려우니 원컨대 다른 고을로 옮겨 정하소서.

셋째, 본부는 땅이 궁벽하고 바다와의 거리가 매우 멀어서 공사간(公私間)의 소금이 넉넉지 못합니다. 본부는 일찍이 이성현(利城縣)의 바닷가에 염분(鹽盆)을 둔 것이 이미 수십 년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성현에서 자염(煮鹽) 3768하지 못하도록 금하니 원컨대 동현(同縣)으로 하여금 예전대로 금하지 말도록 하여 공사간(公私間)에 공급토록 하소서.”

하였다. 호조(戶曹)에서 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갑산부(甲山府)의 공물(貢物) 수량은 다른 도(道)에 비하면 가벼우니, 초피(貂皮)·서피(鼠皮)·화피(樺皮)를 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상의원(尙衣院)

産於本府，而未易多得，又不可越入胡地以取之，無以充貢，其價之重，至於以一牛，易一貂皮，民不能堪。願量減貂、鼠皮之貢，又以樺皮，移於北靑、咸興。其二，本府進上物膳之數甚夥，其中難備者，中脯六百十六條、片脯一百九十五條，不得已役留防軍以備之。然元軍只四百四名，而分戍諸鎭，留本鎭者少，而盡驅爲獵卒，空城而出，本府與虜居相距不遠，萬一乘虛作耗，則其禍不可勝言。願依北道六鎭例，除肉物進上，專爲防戍。且本府地勢高峻，氣候寒烈，本無蜜蜂，而貢蜜八斗，難以備納，願移定他官。其三，本府地僻，距海甚遠，公私之鹽俱不給。本府曾置鹽盆于利城縣海濱，已數十年，今利城縣禁不得煮鹽，願令同縣，依舊勿禁，以給公私。”戶曹據此啓：“甲山府貢物之數，視他道爲輕，貂、鼠皮、樺皮不可減矣。但尙衣院所儲貂皮甚多，請權減加定貂皮六十五張。甲山防禦之苦，無異六鎭，請減脯、蜜，移定內地諸邑，利城海濱煮鹽，亦令勿禁。”從之。

	에 저장한 초피가 매우 많으니 청컨대 가정(加定)한 초피 65장(張)을 권도(權道)로 감하게 하소서. <또> 갑산의 방어(防禦)하는 고난(苦難)은 육진(六鎭)과 다름이 없으니 청컨대 포(脯)와 꿀을 감하여 내지(內地)의 여러 고을에 이정(移定)하고, 이성 해변의 자염(煮鹽)도 또한 금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 40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3월 1일(병술) 4번째기사	호조(戶曹)에 전교(傳敎)하기를, “50세 이상의 재상이 조회(早會)할 때에는 으레히 아침 술을 대접하게 하라.” 하였다.	○傳于戶曹曰：“五十歲以上宰相早會，例饋朝酒。”
성종 40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3월 3일(무자) 2번째기사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講)을 마치자 임금이 묻기를, “오늘 비와 눈이 내려서 양맥(兩麥)이 상(傷)할까 염려된다.” 하니 지사(知事) 노사신(盧思愼)이 아뢰기를,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때아닌 눈비가 내렸으니, 이것은 무슨 응징(應懲)인가?” 하니 노사신이 아뢰기를, “금년에는 윤달이 있어서 절기(節氣)가 늦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御晝講。講訖，上問曰：“今日雨雪，恐傷兩麥。”知事盧思愼啓曰：“無傷也。”又問曰：“雨雪不時，是何應也？”思愼曰：“今年有閏，節晚故也。”
성종 40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3월 4일(기축) 2번째기사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講)을 마치자 임금이 동지사(同知事) 홍응(洪應)을 돌아보고 묻기를, “지금 큰 바람이 부는데 보리 싹에 해롭지 않겠느냐?” 하니 홍응이 대답하기를, “절기(節氣)가 한식(寒食)에 가까워서 이러한 폭풍(暴風)이 있는 것이니, 아무런 상해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御晝講。講訖，上顧問同知事洪應曰：“今此大風，無乃害麥苗乎？”應對曰：“節近寒食，有此暴風，固無傷也。”
성종 40권, 5년(1474)	기영연(耆英宴)을 훈련원(訓練院)에 베풀었다. 나이 70세 이상 된 종친(宗親)·	○賜耆英宴于訓練院。年七十以上宗

<p>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3월 3일(무자) 5번째기사</p>	<p>재신(宰臣) 및 일찍이 정승(政丞)을 지낸 자를 참여하게 하고, 도승지(都承旨) 이숭원(李崇元)에게 명하여 선온(宣醞)을 가지고 가게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국가(國家)가 조종(祖宗) 이래로부터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에 양로회(養老會)를 베풀었는데, 기로 당상(耆老堂上)이 모두 참여하고 주악(酒樂)을 내려 주어 즐거이 놀게 하였다. 한명회(韓明澮)가 송(宋)나라 낙중 기영회(洛中耆英會의 고사(故事)를 들어 계품(啓稟)하여 다만 2품(品) 이상으로서 칠순(七旬)이 된 자만 참여하게 하고, 의정(議政)을 지낸 자는 비록 칠순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 참여하게 하고, 이름하기를 기영회(耆英會)라 하였다. 그 잔치하는 날을 당하여서는 주악(酒樂)을 내려 주고, 내신(內臣)으로 하여금 선온(宣醞)을 가지고 가게 하였는데, 이를 성사(盛事)라 하였다. 당시에는 의정(議政)을 지낸 자가 많고 2품으로 칠순인 자는 적었으므로, 이름은 기영(耆英)이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의정연(議政宴)이었다. 이것은 국가의 한가한 기상(氣象)이라 하더라도, 나라를 다스리는 미법(美法)은 아니다. 또 낙중 기영회(洛中耆英會)는 특히 한때의 한가하게 물러가 쉬는 자들이 시간을 아끼고 노인(老人)을 존경하는 소위이니, 국가에 무슨 이익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는가 하고 식자(識者)들은 웃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드디어 예연(例宴)이 되었다.” 하였다.</p>	<p>宰及曾經政丞者與焉， 命都承旨李崇元， 齎宣醞以往。 【史臣曰：“國家自祖宗以來， 每年三月三日、九月九日設養老會， 耆老堂上皆與焉， 賜酒樂以娛之。 韓明澮學宋洛中耆英會故事啓稟， 只以二品以上七旬者與焉， 經議政者， 雖非七旬咸與， 名曰耆英會。 當其宴日， 賜酒樂， 內臣齎宣醞以往， 以爲盛事。 當時經議政者多， 而二品七旬者少， 名曰耆英， 而實議政宴也。 此雖國家閒暇之氣象， 非經邦之美法。 且洛中耆英會， 特一時居閒退休者， 惜景尙齒所爲， 何預於國家而爲是也？ 識者笑之。 自是遂爲例宴。”】</p>
<p>성종 40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3월 8일(계사) 3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정문형(鄭文炯)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청컨대 본도(本道)의 여러 고을 군자창(軍資倉)의 묵은 곡식 3만 4천 2백 94석을 내어 기민(飢民)을 진휼(賑恤)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據永安道觀察使鄭文炯啓本啓：“請發本道諸邑軍資倉陳穀三萬四千二百九十四碩， 以賑飢民。” 從之。</p>
<p>성종 40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3월 20일(을사) 3번째기사</p>	<p>내관(內官)을 보내어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조석문(曹錫文)의 집에 선온(宣醞)을 내려 주었는데, 신숙주의 아들 신형(申炯), 한명회의 조카 한연(韓堰), 조석문의 당질(堂姪) 조위(曹偉)가 급제하였기 때문에 하사(下賜)한 것이다.</p>	<p>○遣內官， 賜宣醞于申叔舟、韓明澮、曹錫文第， 以叔舟子炯、明澮姪子堰、錫文堂姪偉登第故， 有是賜也。</p>

<p>성종 41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4월 1일(을묘) 6번째기사</p>	<p>병조(兵曹)에서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하여 아뢰기를, “본도(本道)의 각관(各官)이 매우 궁핍(窮乏)하오니, 번상(番上)하는 군사(軍士)로서 1결(結) 이하의 전지(田地)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보리가 익을 때까지를 기한하여 돌려보내게 하소서.” 하니 충순위(忠順衛)에 명하기를, “녹(祿)을 받는 군사로서 1결 이하의 전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보리가 익을 때까지로 한정하고, 기타의 군사는 전지의 다소를 막론하고 추수가 될 때까지 기한하여 돌려보내게 하라.” 하였다.</p>	<p>○兵曹據京畿觀察使啓本啓：“本道各官饑甚，番上軍士有田一結以下者，請限麥熟放遣。”命忠順衛：“及有祿軍士，則有田一結以下者，限麥熟，其他軍士，勿論田多小，限秋成放遣。”</p>
<p>성종 41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4월 8일(임술) 3번째기사</p>	<p>충청도(忠淸道) 임천군(林川郡)의 양녀(養女) 미이(米伊)가 세 쌍둥이를 낳았는데, 쌀과 콩 아울러 10석(碩)을 내려 주었다.</p>	<p>○忠淸道林川郡良女米伊一產三子，賜米、豆并十碩。</p>
<p>성종 41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4월 8일(임술) 6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하여 아뢰기를, “도내(道內)의 거민(居民)들이 파종(播種)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식량이 떨어져서 농사에 힘을 기울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경창(京倉)의 진미(陳米) 4만 섬을 풀어서 구휼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據京畿觀察使啓本啓：“道內居民，當此播種時乏食，不能力農。請發京倉陳米四萬碩以賑。”從之。</p>
<p>성종 41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4월 8일(임술) 7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하여 아뢰기를, “제읍(諸邑)의 거민(居民)들이 식량도 떨어지고 곡식 종자도 떨어졌습니다. 바라건대 본도(本道)의 군자곡(軍資穀) 5천 섬과 영안도(永安道) 안변부(安邊府)의 군자미(軍資米) 1천 섬을 진급(賑給)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據江原道觀察使啓本啓：“本道諸邑居民乏食，穀種亦乏。請以本道軍資穀五千碩及永安道安邊府軍資米一千碩賑給。”從之。</p>
<p>성종 41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p>	<p>호조(戶曹)와 강원도(江原道)의 각 관청에 전지(傳旨)하기를, “흉년으로 굶주린 백성에게, 영안도(永安道) 안변(安邊)의 군자창미(軍資倉米)</p>	<p>○傳旨戶曹、江原道各官：“凶歉民飢，其加發永安道安邊軍資倉米三千碩及</p>

<p>10년) 4월 12일(병인) 6번째기사</p>	<p>3천 섬과 강원도(江原道)의 군자창미 5천 섬을 추가로 공급하여 구제(救濟)토 록 하라.” 하였다.</p>	<p>其道軍資倉米五千碩以賑之。”</p>
<p>성종 41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4월 18일(임신) 1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하여 아뢰기 를, “본도(本道)의 군자미(軍資米) 1만 섬을 풀어 굶주린 백성에게 진급(賑給)하 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壬申/戶曹據黃海道觀察使啓本啓： “請發本道軍資米一萬碩，以賑飢民。” 從之。</p>
<p>성종 41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4월 22일(병자) 4번째기사</p>	<p>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인산 부원군(仁山府院君) 홍윤성(洪允成)·상락 부원군(上洛府院君) 김질(金礪)·도승지(都承旨) 이승원(李崇元) 등이 아뢰기를, “현재는 슬퍼할 시기이므로 신(臣) 등이 감히 계청(啓請)을 못하였습니다. 그 러나 대왕 대비(大王大妃)의 복제(服制)는 15일에서 이미 7일이 경과하였습니 다. 또 춘추(春秋)가 높으시니, 마땅히 빨리 육선(肉膳)을 드셔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卿) 등이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미 계청하였으나, 아직 윤택(允許) 를 받지 못하였으며, 지금 또 경 등의 말로 아뢰더라도 역시 윤택을 하지 않 으신다. 그러나 마땅히 다시 청하겠다.” 하였다.</p>	<p>○領議政申叔舟、仁山府院君洪允成、上洛府院君金礪、都承旨李崇元 等啓曰：“今方哀戚之時，臣等不忍啓請。然大王大妃服制十五日，已經七 日。且春秋高，宜亟進肉膳。”傳曰：“卿等雖不言，予已啓請，未蒙允許， 今又以卿等言啓白，亦不允。然當更請之。”</p>
<p>성종 41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4월 25일(기묘) 4번째기사</p>	<p>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형전속록(刑典續錄)》에는, 마·소[馬牛]를 잡은 자는 이를 세 번 범하면 장(杖) 1백 대에, 경면(黥面)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떤 글자를 자자[黥] 하는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지금 이후로는 재우(宰牛)한 자는, ‘재우(宰牛)’라는 두 글자를 자자하고, 재마(宰馬)한 자는, ‘재마(宰馬)’라는 두 글자를 자자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刑曹啓：“《刑典續錄》只載宰殺牛馬者，三犯杖一百黥面，而不明言黥某 字。請今後宰牛者，黥宰牛二字，宰馬者黥宰馬二字。”從之。</p>
<p>성종 41권, 5년(1474)</p>	<p>원상(院相) 신숙주(申叔舟)와 조석문(曹錫文)이,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에 육</p>	<p>○甲申/院相申叔舟、曹錫文請進肉膳</p>

<p>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4월 30일(갑신) 1번째기사</p>	<p>선(肉膳)을 드릴 것을 청하기를, “대행 왕비(大行王妃)의 복제(服制)는 이미 끝이 났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대비(大妃)가 전교(傳敎)하기를, “내가 마땅히 경(卿) 등의 뜻을 따르겠으나, 다만 주상(主上)이 요즈음 편찮으 므로, 내가 고기를 권하고 싶은데, 경들의 의향은 어떠한가?” 하니 신숙주 등이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신 등의 뜻입니다.” 하였다.</p>	<p>于大王大妃殿曰：“大行王妃服制已盡， 敢啓。” 大妃傳曰：“予當從卿等意， 但主上近日違豫，予欲勸肉，何如？” 叔舟等曰：“此臣等之意也。”</p>
<p>성종 41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4월 30일(갑신) 2번째기사</p>	<p>졸(卒)한 좌의정(左議政) 최항(崔恒)에게 쌀 20석(碩), 누런 콩 20석, 종이 1 백 권(卷), 백정포(白正布) 10필, 백면포(白綿布) 10필, 정포(正布) 50필을 부 의(賻儀)로 내려 주게 하였다.</p>	<p>○命賜賻卒左議政崔恒米二十碩，黃豆 二十碩，紙一百卷，白正布十四，白綿 布十四，正布五十匹。</p>
<p>성종 41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4월 30일(갑신) 4번째기사</p>	<p>4전(殿)에 비로소 육선(肉膳)을 들게 하고, 승정원(承政院)에 어육(魚肉)을 내 려 보내고 원상(院相)들로 하여금 개소(開素)하게 하였다. 또 하동 부원군(河 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와 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과 우의 정(右議政) 성봉조(成奉祖)의 집에도 고기를 내려 주고 개소하게 하였다.</p>	<p>○四殿始進肉膳，仍下魚肉于承政院， 令院相開素。又賜肉于河東府院君鄭 麟趾、蓬原府院君鄭昌孫、右議政成 奉祖第，令開素。</p>
<p>성종 42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5월 4일(무자) 2번째기사</p>	<p>졸(卒)한 청천 부원군(淸川府院君) 한백륜(韓伯倫)에게 부물(賻物)로 쌀·콩 각 각 1백 석(碩)과 종이 2백 권(卷)과 백면포(白綿布) 10필(匹)과 백저포(白苧 布) 10필과 정포(正布) 1백 필을 내렸다.</p>	<p>○命賜賻卒淸川府院君韓伯倫米豆各 一百碩、紙二百卷、白綿布十四、白 苧布十四、正布一百匹。</p>
<p>성종 42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5월 4일(무자) 3번째기사</p>	<p>원상(院相) 신숙주(申叔舟)·조석문(曹錫文)과 도승지(都承旨) 이승원(李崇元)이 아뢰기를, “대왕 대비(大王大妃)께서 여러 날 소선(素膳)3916) 을 드셨는데, 이제 한백 륜의 죽음 때문에 다시 고기를 드시지 않는다 하니 신 등이 듣기에 매우 놀 랍니다. 이 뜻을 아뢰어 고기를 드시도록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p>	<p>○院相申叔舟·曹錫文、都承旨李崇 元啓曰：“大王大妃累日素膳，而今以 韓伯倫之死，復不進肉，臣等聞之驚 甚。願將此意，啓請進肉。” 傳曰： “予已啓請，未蒙允許。” 叔舟等啓于 大王大妃殿曰：“近來累日進素膳，主</p>

	<p>“내가 이미 계청(啓請)하였으나, 윤허(允許)를 받지 못하였다.” 하였다. 신숙주 등이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에 아뢰기를, “근래에 여러 날 동안 소膳(素膳)을 드셨으며, 주상(主上)께서도 약(藥)을 드 시니 청컨대 먼저 고기를 드시고서 <주상께도> 권하소서.” 하니 대왕 대비가 전지(傳旨)하기를, “내가 애써 따르겠다. 다만 주상은 이제 복제(服制)가 다하지 않았으니, 경 등이 청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신숙주 등이 곧 임금에게 계청하니 그대로 따랐다.</p>	<p>上亦進藥，請先進肉以勸之。” 大王大 妃傳曰：“予則勉從。 但主上時未服 盡，卿等請之，可也。” 叔舟等即啓請 于上，從之。</p>
출처	내용	원문
성종 43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6월 2일(을묘) 4번째기사	겸사복(兼司僕) 오순(吳純)을 보내어 선은(宣醞)을 가져가서 도감 제조(都監提 調)에게 내리게 하였다.	○遣兼司僕吳純， 齎宣醞， 賜都監提 調。
성종 43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6월 3일(병진) 1번째기사	행 사직(行司直) 정척(鄭陟)이 와서 앵도(櫻桃) 1합(楹)을 바치니, 명하여 공 饋(供饋)하고 모편 선자(毛鞭扇子)와 종모자(鬃帽子)를 내려 주게 하였다.	○丙辰/行司直鄭陟來， 獻櫻桃一楹， 命饋之， 賜毛鞭扇子鬃帽子。
성종 43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6월 5일(무오) 1번째기사	동부승지(同副承旨) 김영견(金永堅)을 순릉(順陵)에 보내어 세 도감(都監)의 제조(提調)와 재궁(梓宮)을 시위(侍衛)하는 종재(宗宰)들에게 선은(宣醞)을 내 렸다.	○戊午/遣同副承旨金永堅于順陵， 賜 三都監提調及梓宮侍衛宗宰等宣醞。
성종 43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6월 10일(계해) 3번째기사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서장(李恕長) 등이 차자(筭子)를 올리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 김사원(金嗣源)은 술을 많이 장만하여, 장례(葬禮)에 모 인 재상에게 주었으므로, 본부(本府)에서 바야흐로 국문(鞫問)하는데, 이제 관 찰사(觀察使) 김양경(金良璈)이 아뢰에 따라 국문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신 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양경은 한 방면의 어른인데, 금주령(禁酒令)이	○司憲府大司憲李恕長等上筭子曰： 水原府使金嗣源， 多備酒， 以遺會葬宰 相， 本府方鞫之， 今因觀察使金良璈之 啓， 命勿鞫。 臣等以爲， 良璈一方之 表， 當禁酒令嚴之時， 先自犯法， 以酒

	<p>엄한 때를 당하여 먼저 스스로 법을 범하여 재상에게 술을 주었으니, 죄가 워낙 큼니다. 더구나 재궁(梓宮)이 가까운 곳에 계시니, 신하로서는 정히 애통하여 다른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차마 술을 서로 보내 줄 수 있겠습니까? 성은(聖恩)은 너그러우시나 법에 있어서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또 김사원이 추핵(推劾)당한 지 며칠이 되었는데도 김양경은 곧 죄를 자수하지 않고 늦추면서 형세를 보다가, 수원의 서리(胥吏)가 공초(供招)한 말이 자기에게 미쳤음을 듣고 스스로 면할 수 없음을 알고서야 비로소 대죄(待罪)하였으니, 대신(大臣)으로서 스스로 허물을 지는 의리에 어그러집니다. 이런데도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뒷사람을 경계하겠습니까? 청컨대 파직시키소서.”</p> <p>하니, 전교하기를, “우리를 지어 술을 마셨다면 워낙 죄가 있겠으나, 비바람이 일던 날에 늙은 재상에게 술을 주었는데 무슨 안될 것이 있겠는가? 그것을 말하지 말라.”</p> <p>하였다.</p>	<p>遺宰相，罪固大矣。 況在梓宮密邇之地， 臣子正當哀痛不暇， 可忍以酒相饋遺乎？ 聖恩雖寬， 在法難恕。 且嗣源之被劾有日， 良礫不卽首罪， 遷延觀勢， 聞水原吏招辭逮及於己， 自知不免， 方始待罪， 非大臣引咎之義。 此而不治， 何以戒後？ 請罷其職。</p> <p>傳曰：“若群飲則固有罪矣， 風雨之日， 饋酒於老宰相， 有何不可？ 其勿言。”</p>
<p>성종 43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6월 11일(갑자)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독(講讀)이 끝나고서, 대사헌(大司憲) 이서장(李恕長)이 아뢰기를, “전번에 재변(災變) 때문에 금주(禁酒)시키고 또 경기(京畿)가 흉년이므로 능소(陵所)의 공돈(供頓)을 다 예빈시(禮賓寺)를 시켜 장만하게 하셨으니, 성상(聖上)께서 재변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돌보시는 뜻이 지극하셨는데, 김양경(金良礫)은 위의 뜻을 본받지 않고 관할하는 고을들을 시켜 술을 많이 장만하게 하여 사사로이 재상에게 주었고, 일이 발각되어 추핵(推劾)하게 되어서도 곧 자수하지 않았으니, 그 생각은 하관(下官)이 스스로 그 죄를 받을 것이고 자기에게는 연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가 수원(水原)의 서리(胥吏)가 공초한 것을 듣고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서야 비로소 대죄(待罪)하였으니, 그 생각이 매우 교활합니다. 죄를 다스리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甲子/御經筵。 講訖， 大司憲李恕長啓曰：“頃因災變， 令禁酒， 又以京畿失稔， 陵所供頓， 皆令禮賓寺辦設， 聖上懼災恤民之意至矣， 金良礫不體上意， 令所管諸邑多備酒， 私遺宰相， 及事覺推劾， 不卽自首， 其意以謂， 下官自當其罪， 必不連累於己， 及聞水原吏供招， 知不得免， 乃始待罪， 其計甚狡。 請治罪。” 上曰：“凡禁酒， 只欲省民費也。 良礫之送酒， 何費於民？ 其日大風雨， 予亦賜酒， 良礫非有罪也。 其勿言。”</p>

	<p>“무릇 금주는 민재(民財)의 소비를 덜고자 하는 것이다. 김양경이 술을 보낸 것이 어찌 민재를 소비한 것이겠는가? 그날은 크게 비바람이 일었으므로 나도 술을 내렸으니, 김양경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말하지 말라.” 하였다.</p>	
<p>성종 44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윤6월 7일(경인) 5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따라 아뢰기를, “본도의 여러 고을에 모맥(牟麥) 종자(種子)를 예비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청컨대 군자창(軍資倉)의 묵은 잡곡 5천 석을 꺼내어 민간의 새로운 모맥과 교환하여서 종자로 비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據黃海道觀察使啓本啓：“本道諸邑牟麥之種，不可不備，請發軍資倉陳雜穀五千碩，換民間新牟麥以備種。”從之。</p>
<p>성종 44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윤6월 9일(임진) 3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하기를, “고(故) 향화 증추(向化中樞) 동청주(童淸周)에게 미두(米豆) 각 7석, 유둔(油菴) 1사(事), 상지(常紙) 40권과 관곽(棺槨)을 내려 주라.” 하였다.</p>	<p>○傳旨戶曹：“賜故向化中樞童淸周米豆各七碩、油菴一事、常紙四十卷及棺槨。”</p>
<p>성종 44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윤6월 12일(을미) 1번째기사</p>	<p>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김양경(金良瓚)이 와서 아뢰기를, “도내에 가뭄이 심하여 기우제(祈雨祭)를 행하기를 청합니다. 만약 예조(禮曹)에 이문(移文)하여 향(香) 내려 주기를 계청하게 되면 계완(稽緩)을 초치할까 두렵기 때문에 이제 신이 직접 와서 아뢰오니, 청컨대 향축(香祝)을 급히 내려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인하여 전지하기를, “경기(京畿)의 농사는 어떠한가?” 하니, 김양경이 대답하기를, “초여름에는 곡우(穀雨)가 약간은 흡족하여 벼 심은 것이 무성하게 자라더니 근자에는 가뭄이 심함으로 말미암아 높고 건조한 밭은 곡식이 다 탔습니다.” 하였다.</p>	<p>○乙未/京畿觀察使金良瓚來啓曰：“道內旱甚，請行祈雨。若移禮曹，啓請降香，則祈雨恐致稽緩，故今臣直來啓之耳。請急降香祝。”從之，仍傳曰：“京畿農事何如？”良瓚對曰：“初夏穀雨稍洽，禾稼向茂，近因旱甚，高燥之田，苗葉盡焦。”</p>
<p>성종 44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p>	<p>경연(經筵)에 나아가서 강(講)을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한재(旱災)가 심하니 등문고(登聞鼓)를 설치하여 민원(民冤)을 펴고자</p>	<p>○丁酉/御經筵。講訖，上曰：“今旱甚，欲置登聞鼓以伸民冤，何如？”領</p>

<p>10년) 윤6월 14일(정유) 1번째기사</p>	<p>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영사(領事) 신숙주(申叔舟)가 대답하기를 “상언(上言)하는 자는 사헌부(司憲府)에 올려서 그 소장(訴狀)에 인퇴(印退)한 뒤에야 상언할 수 있고, 아니면 비록 포원(抱冤)하였더라도 상달할 길이 없습니다.” 하고, 집의(執義) 현석규(玄碩圭)는 아뢰기를, “의금부(義禁府)와 사헌부(司憲府)에서 잘못 판결한 사건은 곧 바로 당직청(當直廳)에 올려 호소하고, 타사(他司)의 잘못 판결한 것은 해사(該司) 헌부(憲府)를 경유하여 인퇴(印退)한 뒤에 당직청(當直廳)에 올리며, 여기는 자는 월소(越訴)하는 죄가 있는 까닭으로 원통함을 호소하는 자가 부득이 먼저 해사(該司)에 올리고 해사(該司)의 관리도 잘못 판결하는 죄를 얻을까 두려워 즉시 인퇴(印退)하지 않으니, 이것은 민망한 일입니다. 그러나 격고(擊鼓)를 허락하면 송사하는 자가 조금이라도 뜻에 맞지 않으면 곧 복을 쳐서 호소할 것이니, 소요(騷擾)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신숙주(申叔舟)가 말하기를, “현석규(玄碩圭)의 말이 옳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을 쳐서 상언하는 것을 청허하면 반드시 소요(騷擾)함을 초치할 것이니, 단연코 행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대사간(大司諫) 정괄(鄭恬)이 아뢰기를, “세종조(世宗朝)에 선상노(選上奴)의 대립(代立)을 금지함이 매우 엄격하였는데, 이제 들으니 선상노(選上奴)가 번상(番上)할 때에 그 관아의 수령(首領)이 그 값을 독촉하여 징수하고 관리를 차출하여 각사에 압송하여 대신 서게 하니 그 폐단이 적지 않고, 또 국가는 남는 수의 선상노(選上奴)를 설치하여 불시의 역(役)을 예비(豫備)하여야 합니다. 이제 형조 좌랑(刑曹佐郎) 김민(金旻)은 모두 역사(役事)하는 곳에 보내지 않고 몰래 35구(口)를 사기(私妓) 소설오(笑雪烏)에게 주어 그 값을 거두었으니, 외람되기가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p>	<p>事申叔舟對曰：“上言者，呈司憲府印退其狀後，乃得上言，否則雖抱冤，無由上達。” 執義玄碩圭啓曰：“義禁府、司憲府誤決事，直呈當直廳訴之，他司誤決則經該司及憲府印退後，呈當直廳，違者有越訴之罪，故訴冤者，不得已先呈該司，該司官吏恐得誤決之罪，不卽印退，是則可憫。然許擊鼓，則訟者小有不愜，輒擊鼓以訴，不無騷擾之弊。” 叔舟曰：“碩圭之言是。聽人擊鼓上言，必致騷擾，斷不可行。” 大司諫鄭恬啓曰：“世宗朝選上奴代立之禁甚嚴，今聞選上奴番上之時，其官守令督徵其價，差吏押送于各司，以代立之，其弊不貲。且國家設餘數選上奴者，以備不時之役也。今刑曹佐郎金旻，皆不送役處，潛以三十五口給所私妓笑雪烏，以收其價，猥濫莫甚。請以餘數選上奴分送各司，如有役事，則還收而役之何如。” 領事鄭麟趾啓曰：“今正兵舊侍衛牌也。侍衛牌番上，或點考卽放，或立番十五日乃放，其侍衛宮闕，專用甲士，未見其不足也。今正兵番上者，其數甚夥，此輩皆廢農功，且船軍役苦，日就流亡，此</p>
-------------------------------	---	---

니다. 청컨대 나머지 수의 선상노(選上奴)를 각사(各司)에 나누어 보내고, 역사가 있으면 다시 회수하여 역사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영사(領事) 정인지(鄭麟趾)는 아뢰기를,

“지금의 정병(正兵)은 옛적의 시위패(侍衛牌)입니다. 시위패의 번상(番上)은 혹 점고(點考)하여 즉시 방면하고 혹 입번(立番)한 지 15일이면 바로 방면하니, 궁궐(宮闕)을 시위(侍衛)하는 것은 갑사(甲士)를 오로지 씁니다마는, 그 부족함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정병(正兵)이 번상(番上)하는 자가 그 수효가 매우 많으며, 이 무리는 모두 농공(農功)을 폐하고, 또 선군(船軍)은 역사(役事)가 고단하여 날로 유망(流亡)하니, 이러한 노역(勞役)은 오늘날의 큰 폐단입니다. 근자에 군액(軍額)을 약간 감하였는데 여수(旅數)를 감하지 않은 까닭으로 그대로 따라서 충당시키니, 군액(軍額)을 감한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제읍의 대소를 따라 여수(旅數)를 차등 있게 감하시고, 또 이제 법에는 1읍(邑)의 선군(船軍)이 5인이 도망하면 그 수령을 과면하게 되어 있는 까닭으로, 수령이 죄를 면하려고 관노(官奴)를 빌려서 대신(代身)하게 하고, 만일 또 부족하면 만호(萬戶)에게 뇌물을 주어 없는 것을 있다고 하니, 신의 생각에는 선군(船軍)은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습니다.”

하고, 신숙주는 이르기를,

“세조(世祖)께서 군액(軍額)이 모손(耗損)되는 것을 염려하여 누락된 장정을 쇄출(刷出)하여 모두 정병(正兵)에 소속시키므로 신은 그 불가함을 진달하였으며, 세조(世祖)께서도 또한 도태(淘汰)시키려다 불행하게도 빈천(貧天)4108)하여 과감히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한가한 장정이 있어야 농사를 업으로 하는 자가 있고 학문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군액(軍額)은 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정인지는 말하기를,

“조종조(祖宗朝)에서 방패군(防牌軍)이 번상(番上)할 때에 요봉(料俸)을 주는

政當今巨弊也。近者略減軍額，不減旅數，故從而充之，非所以減軍額也。請諸邑隨大小，差減旅數，又今法一邑船軍五人逃，則罷其守令，故守令欲免其罪，假官奴以代之，如又不足，行賄萬戶，以無爲有，臣意船軍有名無實也。”叔舟曰：“世祖慮軍額之耗，刷漏丁盡屬正兵，臣陳其不可，世祖亦欲汰之，不幸賓天，未果行。大抵有閑丁然後，乃有業農者，有學文者，軍額不可不減也。”麟趾曰：“祖宗朝，有防牌軍番上時給料，以赴力役，請復設以爲赴役之卒。”叔舟曰：“世祖朝，臣請復設防牌軍，獻議者以爲不可，而遂止。臣嘗觀中朝，凡番上軍士七分之一爲廂軍，平時則爲土木之役，有事則修城寨，其他軍卒專事戰陣。請依此制，別設役軍，又依中朝制，令軍卒皆帶牌錄年貌，以防代立之弊。且我國濱海，備禦倭寇，不可疏虞，今船軍困於土木之役，加以各浦煮鹽役苦，日就貧殘，流亡四散。請令監司量減船軍納鹽數，又勿役於營繕，俾蘇其力以專防禦”上皆嘉納。

	<p>것이 있음은 힘써 역사(役事)에 임하게 함이니, 청컨대 다시 설치하여서 부역하는 군졸(軍卒)을 위하소서.”</p> <p>하고, 신숙주(申叔舟)는 말하기를, “세조(世祖) 때에 신이 방패군(防牌軍)을 다시 설치할 것을 청하였더니 의견을 올리는 자가 불가(不可)하다고 하여서 마침내 중지하였습니다. 신이 일찍이 중국을 보건대 모든 번상하는 군사의 7분의 1은 상군(廂軍)을 삼아, 평상시는 토목의 역사를 하게 하고 유사(有事)시에는 성채(城寨)를 수축하고 기타(其他) 군졸은 전진(戰陣)만을 오로지 일삼습니다. 청컨대 이 제도에 의하여 별도로 역군을 설치하고, 또 중국의 제도에 의하여 군졸로 하여금 모두 패(牌)에다 나이와 모양을 기록하여 차게 하여서 대신 세우는 폐단을 방지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우리 나라는 바다로 둘러 있어 왜구(倭寇)를 방어하는 것을 소홀하게 할 수 없는데, 지금 선군(船軍)은 토목의 역사에 고단한데다 각포(各浦)에서 소금 굽는 역고(役苦)를 더하니, 날로 빈곤하고 쇠잔하게 되어 유망(流亡)하여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청컨대 감사로 하여금 선군(船軍)의 소금 바치는 수량을 헤아려 감하고 또 영선(營繕)하는 역사를 시키지 말아서, 그들의 힘을 소생하게 하여 방어에만 전력하게 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모두 가납(嘉納)하였다.</p>	
<p>성종 44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윤6월 20일(계묘) 3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 전지하기를,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10여 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리지 않으니 참으로 진려(軫慮)스럽다. 경외(京外)의 도살(屠殺)을 금지하게 하고, 또 흥천사(興天寺)의 승도(僧徒)로 하여금 기우(祈雨)하게 하라.”</p> <p>하였다.</p>	<p>○傳旨禮曹曰：“今當農月，連旬不雨，良用軫慮。 禁京外屠殺，又令興天寺僧徒祈雨。”</p>
<p>성종 44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윤6월 23일(병오) 4번째기사</p>	<p>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 조석문(曹錫文)이 아뢰기를, “사복시(司僕寺)의 말[馬]을 홍원곶이[洪原串]에 나누어 기르게 하고 겸사복(兼司僕) 한 사람을 배치하여 기르는 것을 감독하게 하니, 제읍에서 공역(供億)하는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 제읍에 저장된 황두(黃豆)는 이로 인하</p>	<p>○昌寧府院君曹錫文啓曰：“司僕寺馬分養于洪原串，以兼司僕一員監養之，諸邑供億之弊不貲。 京畿諸邑所儲黃豆，因此虛竭。 在世祖朝，罷壺串，</p>

	<p>여 허갈(虛渴)이 되었습니다. 세조조(世祖朝)에 호곶이[壺串]에서 말[馬]을 분양(分養)하는 것을 파하였으니, 청컨대 이 예(例)에 의하여 파하소서.”</p> <p>하고,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는 아뢰기를, “홍원곶이[洪原串]에 분양한 것은 폐단을 제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비록 경기(京畿)에서 사복시(司僕寺)에 납부하는 고초(藁草)를 감(減)하였으나 기르는 데는 또한 폐단이 있으니, 아울러 본사에서 기르는 것이 편합니다.”</p> <p>하니, 전지하기를, “수원(水原) 홍원곶이에 분양하는 말은 여름이면 예전대로 방양(放養)하고 겨울이면 도로 사복시(司僕寺)에서 기르게 하라.”</p> <p>하였다.</p>	<p>分養馬，請依此例罷之。” 領議政申叔舟啓曰：“分養洪原串欲除弊也。 雖減京畿納司僕寺藁草，養之亦有弊，不如竝養於本寺之爲便也。” 傳曰：“水原洪原串分養馬，夏則仍舊放養，冬則還養于司僕寺。”</p>
<p>성종 44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윤6월 25일(무신) 4번째기사</p>	<p>풍저 창수(豐儲倉守) 김인민(金仁民)이 상소하기를, “주상 전하는 홍업(洪業)을 찬승(繼承)하여 경적(經籍)에 유심하면서 대신을 공경하여 가모(嘉謀)를 자방(咨訪)하고, 대간(臺諫)을 접하여 정당한 의논을 즐겨 들어서 다스림을 내는 근원을 맑게 하시고, 형벌(刑罰)을 덜고 부렴(賦斂)을 박하게 하여 모든 백성을 편케 하는 정사는 거행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구년(舊年)의 의창(義倉)에서 대출한 것을 견감하고 열읍(列邑)에서 수납하지 못한 공물을 감하심은, 곧 은혜를 널리 베풀어 못 백성을 구제하시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비가 내려야 할 때 내리고 별이 나와 할 때 나서 경사스러운 징조의 응험이 있어야 하는데, 한발(旱魃)이 흑독하여 여러 달을 비가 내리지 않으니, 무슨 허물이 있어서 그러하겠습니까? 이제 구언(求言)하는 교지를 내리어 재앙(災殃)을 그치게 하는 방책을 듣고자 하시니, 신이 감히 평일에 생각하던 것으로써 조목을 나누어 아뢰입니다. (…) 2. 공천(公賤)의 공물을 감하소서. 우리 조정에서는 경중(京中)의 여러 아문(衙門)에 안부(案付)된 노비로서 외방의 주·부·군·현(州府郡縣)에 흩어져 사는 자는 다 소재관으로 하여금 해마다 가을과 겨울에 신공(身貢)을 거두어 사섬시(司贍寺)에 수</p>	<p>○豐儲倉守金仁民上疏曰： 主上殿下繼承洪業，留心經籍，敬大臣而咨訪嘉謀，接臺諫而樂聞讜論，以澄出治之源，省刑罰薄賦斂，凡便民之政，無不舉行，蠲舊年義倉之貸，減列邑未收之貢，卽博施濟衆之意也。 當致雨暘時，若有休徵之應，而旱魃爲虐，累月不雨，有何咎而然歟？今下求言之教，欲聞弭災之方，臣敢以平日所懷條陳之。(…) 其二， 減公賤之貢。 我朝京中諸衙門案付奴婢，散住外方州府郡縣者，悉令所在官，每年秋冬，收其身貢，輸納司贍，以資國用，其來久矣。 世宗大王寬仁治國，一應公賤納</p>

	<p>납하여 국용의 자본으로 한 것은 그 내력이 오래되었습니다.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 너그럽고 어질게 나라를 다스려 한결같이 공천(公賤)이 공물을 납부하는 데 대하여 경편(輕便)하게 하려고 힘을 쓰시어, 노예 한 사람의 공물로 단지 포(布) 1필과 저화(楮貨) 10장(張)을 징수하였으므로, 사람마다 편리하게 여겼으나, 그러나 우리 조정은 중국을 높이 섬기어 진헌(進獻)하는 예물은 다 저마(苧麻)의 세포(細布)를 쓰되 모두 값을 주고 수매(輸買)하여 양전(壤奠)을 예비하고, 또 이웃 나라의 객인(客人)이 올리는 토산품에 답사(答賜)하는 예물도 또한 면포를 쓰고, 겸하여 또 제주(濟州)의 자제가 진상하는 말[馬]의 값도 아울러 면포로써 주니, 이 때문에 면포의 쓰임이 예전보다 갑절이나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세조 대왕(世祖大王)께서 면포의 쓰임이 긴요하여 짐을 통찰하고 각사(各司)의 노비가 신공(身貢)하는 수에다 더하여 개정하였으니, 1노(奴)의 공물로 면포 1필, 쌀 2두(斗)를 수납하게 하고, 1비(婢)의 공물로 면포 1필, 쌀 1두를 수납하게 하였는데, 그 가정(加定)한 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근년 이래로 가뭄과 큰 물이 서로 이어 곡식이 잘 여물지 못하여 공천으로서 약간 충실한 호구(戶口)는 겨우 신공(身貢)을 갖추었고 그 나머지는 빈궁하여 개걸(丐乞)하며 하호(下戶)는 힘으로 갚출 수가 없는데, 관리가 침해하고 독촉하므로 하늘을 부르짖어 원통함을 호소하니,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신은 원컨대 공천(公賤)의 공물은 풍년을 기한하여 일제히 세종조(世宗朝)의 예에 의하여 수납하게 한다면 공천의 곤궁한 자가 거의 소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貢，務從輕便，一奴之貢，只徵布一匹楮貨十張，人人便之，然我朝尊事上國，進獻禮物該用苧麻細布，皆給價收買，以備壤奠，且隣國客人所進土宜答賜禮物，亦用綿布，兼又濟州子弟進上馬價，竝賜以綿布，因此綿布之用，視舊倍多。世祖大王洞知綿布用繁，將各司奴婢身貢之數，加數改定，一奴之貢，收綿布一匹米二斗，一婢之貢，收綿布一匹米一斗，其加定之數，不爲多矣，但近年以來，旱澇相仍，禾穀不登，公賤稍實之戶，則僅備身貢，其餘貧窮丐乞下戶，則無力可辦，而吏侵督之，籲天呼冤，良可哀也。臣願公賤之貢，限年豐，一依世宗朝例收之，則公賤之困窮者，庶可得蘇矣。(…)</p>
<p>성종 44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윤6월 28일(신해) 1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진지하기를, “근자에 한재가 심하니 이 뒤로는 수라(水刺)에 단지 포해(脯醢)만을 올리고 여선(餘膳)을 갖추지 말라.” 하니, 원상(院相) 홍윤성(洪允成)·도승지(都承旨) 이숭원(李崇元)이 아뢰기를, “전일에 어선(御膳)을 감하여 단지 3기(三器)만을 올렸는데 무엇을 경비에서</p>	<p>○辛亥/傳于承政院曰：“近旱甚，今後水刺只進脯醢，勿具餘膳。”院相洪允成、都承旨李崇元啓曰：“前日減御膳，只進三器，何損於經費而又盡減之歟？臣等未安於心，請勿減。”不聽，崇元</p>

	<p>덜려고 또 다 감(減)하십니까? 신 등은 마음에 편안하지 못하니, 청컨대 감하지 마소서.”</p> <p>하니, 불청(不聽)하였는데, 이송원이 또 원상(院相) 김질(金磻)과 더불어 다시 청하자 그대로 따랐다.</p>	<p>又與院相金磻更請，從之。</p>
<p>성종 44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윤6월 28일(신해) 2번째기사</p>	<p>형조(刑曹)에 전지하기를, “여름부터 가을까지 항양(亢陽)으로 비가 오지 않아 곡식이 타고 말라, 장차 서성(西成)의 희망을 잃었으니, 어찌 형정(刑政)이 중도를 잃어 백성에게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윤6월 28일 새벽 이전으로부터 도죄(徒罪) 이하를 범한 자로 강도(強盜)·절도(竊盜)가 아닌 자는 아울러 모두 방면(放免)하여서 천견(天譴)에 대답하게 하라.”</p> <p>하였다.</p>	<p>○傳旨刑曹曰：“自夏至秋，亢陽不雨，禾穀焦枯，將失西成之望，豈非刑政失中，民有冤抑而然歟？自閏六月二十八日昧爽以前，犯徒罪以下非強竊盜者，竝皆免放，以答天譴。”</p>
<p>성종 45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7월 9일(임술) 3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창원군(昌原君) 이성(李晟)의 아내 노씨(盧氏)에게 부물(賻物)로 쌀과 콩을 아울러 40석(碩)과 종이 1백 권(券)과 석회(石灰) 50석을 내려 주라.”</p> <p>하였다.</p>	<p>○傳旨戶曹：“賜昌原君晟妻盧氏賻米·豆并四十碩、紙一百卷、石灰五十碩。”</p>
<p>성종 45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7월 15일(무진) 4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보련사(寶蓮寺)의 위전(位田) 1백 40결(結)과 장의사(藏義寺)의 위전 중에서 1백 결을 신록사(神勒寺)에 옮겨 주고, 또 매년 봄·가을에 소금 20석(碩)을 주고, 정인사(正因寺)에도 봄·가을에 소금 5석을 주라.”</p> <p>하였다.</p>	<p>○傳旨戶曹：“寶蓮寺位田一百四十結及藏義寺位田內一百結，移給神勒寺，又每春秋給鹽二十碩，正因寺春秋給鹽五碩。</p>
<p>성종 46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8월 6일(무자) 1번째기사</p>	<p>전산전(畠山殿) 원의취(源義就)의 사자(使者) 종상서기(宗祥書記) 등이 하직하니,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서 인견(引見)하고 예조 겸 판서(禮曹兼判書) 신숙주(申叔舟)에게 명하여 전지하기를, “듣건대 전산전(畠山殿)·세천전(細川殿)·산명전(山名殿)의 병화(兵禍)가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있다 하니, 돌아가서 너희 주인에게 고하여 원한과 원수를 풀고 백성들로 하여금 생업에 안정하게 함이 가하다고 하라.”</p>	<p>○戊子/畠山殿源義就使宗祥書記等辭，上御宣政殿引見，命禮曹兼判書申叔舟傳曰：“聞畠山、細川、山名殿有兵禍至今未弭，其歸告爾主，解怨釋仇，使民安業可也。”宗祥書記對曰：“但因間言構釁耳，非爲戰爭也。”命宗祥書</p>

	<p>하니, 종상서기가 대답하기를, “다만 이간하는 말 때문에 불화(不和)가 이뤄졌을 뿐이고,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종상서기 등에게 명하여 술잔을 올리게 하고 인하여 물건을 차등이 있게 내려 주었다. 예조(禮曹)의 답서(答書)에 이르기를, “글을 받아 평안하심을 알았으니 기쁩니다. 바친 예물은 삼가 아뢰어 수납하였습니다. 요구한 조연(助緣)의 일은 우리 나라에서도 근년에 흉년이 들고 또 국휼(國恤)을 만나서 지용(支用)이 넉넉지 못하여 뜻대로 하지 못하고, 이에 내려 주신 흰 모시 5필, 검은 삼베 5필, 표범 가죽[豹皮] 2장, 호피(虎皮) 2장, 채화석(彩花席) 3장, 인삼 5근, 꿀[淸蜜] 3말, 잣[海松子] 30말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신에게 부쳐 보내니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였다.</p>	<p>記等進爵，仍賜物有差。禮曹答書曰：承書問審淸裕欣慰。所獻禮物謹啓收納。所示助緣事，我國比歲凶歉，又遭國恤，支用不敷，未果如意，茲將給賜白苧布五匹、黑麻布五匹、豹皮二張、虎皮二張、彩花席三張、人蔘五斤、淸蜜三斗、海松子三十斗就付回使，惟領納。</p>
<p>성종 46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8월 23일(을사) 4번째기사</p>	<p>석강(夕講)에 나아갔다. 강(講)하다가 조조(晁錯)의 상서(上書)에 이르기를, ‘곡식을 낼 땅을 다 개간하지 못하고 노는 백성을 다 농사에 돌아가게 하지 못하였다.’ 함에 이르러, 시장관(侍講官) 이맹현(李孟賢)이 아뢰기를, “신은 지금도 역시 이와 같다고 여깁니다. 승도(僧徒)가 군역(軍役)을 규피(規避)하며, 놀고 앉아 먹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 군액(軍額)이 날로 줄고 농민이 날로 곤궁해집니다. 비록 다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청컨대 중이 되는 것을 금하는 법을 거듭 밝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규찰(糾察)하게 함이 가하겠다.” 하였다. 이맹현이 또 아뢰기를,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즉위한 2년 만에 전조(田租)의 반(半)을 면제하고 12년에 이르러 또 농민에게 조세(租稅)의 절반을 내려 주었는데, 특히 백성들의 걱정을 부지런히 구휼한 것만 아니고 농사를 중히 여기는 뜻이 실제로 들</p>	<p>○御夕講。講至晁錯上書云：‘生穀之士，未盡墾，遊手之民，未盡歸農’，侍講官李孟賢啓曰：“臣謂今亦如此也。僧徒規避軍役，遊手坐食者，不知其幾，軍額日減，農民日困。雖未盡去，請申明禁僧之法。”上曰：“令司憲府糾察，可也。”孟賢又啓曰：“漢文帝卽位二年，除田租之半，至十二年，又賜農民半租，非特勤恤民隱，重農之意實寓焉。我國自庚寅以來，水旱相仍，去年下三道稍稔，監司年分等第，政府六曹竝加一等。大抵年分，守令初審報監司，監司審覈加等而啓例也，如不</p>

어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경인년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서로 잇달았는데, 지난해에 하삼도(下三道)가 조금 풍작이 되었던 바, 감사(監司)가 정한 연분(年分)의 등제(等第)를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에서 모두 한 등을 더하였습니다. 대저 연분(年分)은 수령이 처음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가 심핵(審覈)하여 등(等)을 더하여 계달하는 것이 상례(常例)이며, 만약 적중하지 않으면 사람을 보내어 검핵(檢覈)하여 감사와 수령을 논죄(論罪)함이 가한 것인데, 어찌 풍작의 사실을 조사하지도 않고 예사(例事)로 등급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문제(文帝)와 같이 조세를 감하지는 못하더라도, 청컨대 등급을 더하지는 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

하자, 이맹현이 또 아뢰기를,
“예로부터 제왕이 친히 밭을 갈아서 자성(棗盛)을 제공하고 왕후가 친히 누에를 쳐서 의복을 제공하는 것은 제사를 중히 여기고 근본을 힘쓰게 하는 소입니다. 한(漢)나라 문제가 가의(賈誼)의 말에 감동하여 적전(籍田)을 친히 갈더니, 말년에 이르러 태창(太倉)의 곡식이 묵어서 쌓이고 해내(海內)가 부(富)하여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였으니, 이는 바로 문제가 농사에 뜻을 두어 근본을 힘쓰고 말리(末利)를 누르므로, 아래 백성들이 보고 감동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조정은 조종(祖宗) 이래로 적전(籍田)이 예문(禮文)에 갖추어져 있으나 미처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궤전(闕典)입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위에서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더 심한 자가 있게 된다.’고 하였으니, 신은 원컨대 친히 적전을 갈아서 위로 자성(棗盛)을 제공하여 성경(誠敬)의 도(道)를 다하고 아래로는 모든 백성을 인솔하여 농사에 힘쓰는 뜻을 보이소서.”

하니, 임금이 승지 김영견(金永堅)에게 명하여 몸소 적전(籍田)하는 의주(儀

得中，則遣人檢覈，罪監司守令可也，安可不覈豐稔之實，例爲加等乎？縱不如文帝減田租，請勿加等。” 上曰：“知道。” 孟賢又啓曰：“自古帝王親耕以供粢盛，后親蠶以供衣服，所以重祭祀而務本也。漢文帝感賈誼之言，親耕籍田，至末年，太倉之粟，陳陳相因，海內殷富，家給人足，此乃文帝留意農事，務本抑末，下民觀感以致之也。我朝自祖宗以來，籍田禮文具存而未暇行之，此闕典也。《傳》曰：‘上有好者，下必有甚焉者’，臣願親耕籍田，上供粢盛，以盡誠敬之道，下率齊民，以示務農之意。” 上命承旨金永堅，具躬籍儀注以啓。

<p>성종 46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8월 28일(경술) 2번째기사</p>	<p>注)를 갖추어서 아뢰게 하였다. 예조에서 정홍(政弘)에게 회답하기를, “공경히 서문(書問)을 받아 귀체가 평안[淸迪]함을 알았으니 위로됩니다. 바친 예물은 삼가 이미 위에 아뢰어 받아들였습니다. 토산물인 흰 모시 5필, 검은 삼베 5필, 호피(虎皮) 1장, 표피(豹皮) 1장, 인삼 10근, 해송자(海松子) 15말, 청밀(淸蜜) 3말, 소주 10병을 돌아가는 사신에게 부쳐보냅니다. 족하(足下)는 선대(先代)부터 내려오면서 귀가(貴家)의 계통이 폐국(弊國)4369)에서 나갔으므로 대대로 정성을 두터이 하였고, 선대부(先大夫)에 이르러 더욱 충성스럽게 부지런히 하기에 힘을 써서 우리 나라의 울타리로서 호위한 것은 진실로 보내온 편지 내용과 같습니다. 이제 족하가 업(業)을 계승하여 선대부의 뜻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비록 전쟁이 어수선[搶攘]한 사이에도 두 번 사자를 보내어 강호(講好)하고, 진기(珍奇)한 사향(麝香) 노루를 구하여 올리 고자 함에 이르러서는 더욱 족하(足下)의 충성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전하께서도 매우 아름답게 여기고 기뻐하셔서, 족하가 말한 장선비(裝船費)를 특별히 따로 내려 주도록 명하였기에, 간략하게 면포(綿布) 2백 필, 정포(正布) 2백 필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신에게 아울러 부치니, 그리 알고 영수하시오. 지난해 귀사(貴使)가 왔을 때에 관대(館待)와 증유(贈遺)를 모두 구례(舊例)대로 하여 하나도 줄인 것이 없었으나 다만 그때 청구한 동전(銅錢)은 우리 나라에 없는 것이고 《대장경(大藏經)》은 귀국의 여러 고을에서 구해 갔기 때문에 이미 다 없어졌으니, 이는 모두 사실로 왔던 사자가 보고 들은 것이니 어찌 구정(舊情)의 호의(好意)를 잊었겠으며, 만약 남은 것이 있다면 족하에게 어떻게 아까워하겠습니까? 용서하여 살피시오.” 하였다.</p>	<p>○禮曹答政弘書曰： 祇承書問，審雅履淸迪爲慰。所獻禮物，謹已啓納。將土宜白苧布五匹、黑麻布五匹、虎皮一張、豹皮一張、人蔘一十斤、海松子十五斗、淸蜜三斗、燒酒十瓶，就付回使。足下先世以來，乃以貴系，出於敝國，世篤誠款，至先大夫，益效忠勤，藩衛我國，誠如來諭。今足下繼業，不墜先志，雖在干戈搶攘之間，猶再遣使講好，以至麝香奇獸購求欲進，尤見足下忠誠。殿下深用嘉悅，示及裝船之費，特命別賜，略將綿布二百匹，正布二百匹，并付回使，照領。去歲貴使之來，館待，贈遺皆依舊例，一無所減，但其時所索銅錢，則我國所無，《大藏經》則因諸州求去已盡，此皆出於實事，來使之所見聞，豈忘舊好耶？苟有餘儲，於足下寧有所惜？恕察。</p>
<p>성종 47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9월 27일(기묘)</p>	<p>임금이 목청전(穆淸殿)에 나아가서 친히 제사하고, 문묘(文廟)에 이르러 알성(謁聖)하였다. 명륜당(明倫堂)에 나아가자 교수(教授) 백훈(白勛)이 유생을 거느리고 예를 행하였다. 생원(生員) 차윤중(車允中) 등이 상소(上疏)하기를,</p>	<p>○己卯/上詣穆淸殿親祭，至文廟謁聖。御明倫堂，教授白勛率儒生行禮。生員車允中等上疏曰：</p>

1번째기사

“신 등이 엿드려 보건대 거가(車駕)가 순행하여 오셔서 친히 문묘에 배알하시니, 모두 기뻐하여 사사로이 서로 말하기를, ‘옛날 한 고조(漢高祖)가 노(魯)나라를 지나다가 한 번 제사하였는데 선유(先儒)들이 이르기를, 「한(漢)나라 4백년 정치가 진실로 여기에서 기본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이제 성상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먼저 반궁(泮宮)에 거둥하여 소왕(素王)에게 석전(釋典)하시고, 이제 고도(故都)에 거둥하시어 또 알성례(謁聖禮)를 거행하시니, 스승을 높이고 도(道)를 소중히 하는 뜻이 옛날에 비하여 더욱 거룩합니다.’고 합니다. 억만년 무강(無疆)한 아름다움이 바로 오늘에 있습니다. 신 등은 엿드려 듣건대 우리 세조 혜장 대왕(世祖惠莊大王)은 선비의 벼슬길이 막힌 것을 열어주기를 생각하여 매양 순행해 살펴서 어가(御駕)를 멈추고 선비를 뽑았으며, 평양(平壤)·온양(溫陽)·강릉(江陵)에 거둥하여 모두 선비를 뽑았으니, 어찌 홀로 지금 이때에만 그렇게 아니하겠습니까? 엿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조종(祖宗)의 이룩한 법을 따라서 특별히 선비를 뽑는 명령을 내려서 신 등의 구구한 소망을 허락하소서.”

하니, 명하여 차윤중을 불러서 이르기를,
“그대가 세조께서 선비 뽑는 것을 가지고 말하였으나 강릉과 평양은 모두 먼 지방이므로 엄체(淹滯)한 사람이 있을 것이나 너는 기보(畿輔) 땅에 있으니 과거(科擧)에 응시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였으나, 유수(留守) 이에(李芮)가 아뢰기를,
“대가(大駕)의 거동이 이르자 여러 유생들이 모두 말하기를, ‘반드시 문묘에 배알하고 인재를 뽑을 것이다.’고 하였는데, 만약 선비를 시험해 뽑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모두 실망할 것입니다. 글제[題]를 명하고 각축(刻燭)하여 한두 사람만 뽑아도 학문을 일으키는 한 단서(端緒)가 될 것입니다.”

하니, 원상에게 내려 물었으나, 모두 불가하다고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명하여 유생(儒生)에게 쌀[米] 30석, 면포(綿布) 50필을 하사하게 하고,

臣等伏觀，車駕巡臨，親謁文廟，欣欣有喜，私自相告曰：‘昔漢高過魯一祀，先儒以謂：「四百禩之漢，實基於此。」矧今聖上卽位之初，首幸泮宮，釋奠素王，今幸故都，又舉謁聖之禮，其崇師重道之意，視古尤盛。’億萬年無疆之休，正在今日。臣等伏聞，我世祖惠莊大王思振淹滯，每於巡省，駐蹕策士，幸平壤、溫陽、江陵皆取士，何獨今時而不然？伏願殿下遵祖宗之成憲，特下取士之命，以許臣等區區之望。

命召允中謂曰：“爾以世祖取士爲言，然江陵、平壤皆地遠，容有淹滯之人，爾在畿輔之地，應舉何難？”留守李芮啓曰：“大駕臨幸，諸儒皆曰：‘必謁文廟而取人矣’，若不取士，人皆缺望。命題刻燭，取一二人，亦興學之一端也。”下問院相，皆以謂不可，上從之，命賜儒生米三十碩、綿布五十四，令左贊成盧思愼、右參贊徐居正饋儒生。

	좌찬성 노사신(盧思愼)·우참찬 서거정(徐居正)으로 하여금 유생에게 음식을 먹이게 하였다.	
성종 47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9월 27일(기묘) 2번째기사	쌀 30석, 콩 20석을 승효사(崇孝寺)에 하사하였다.	○賜米三十碩、豆二十碩于崇孝寺。
성종 47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9월 28일(경진) 3번째기사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창성 부원군(昌城府院君) 성봉조(成奉祖)의 부의(賻儀)로 쌀·콩 아울러 2백 석, 종이 2백 권, 백면포(白綿布) 10필, 백저포(白苧布) 1백 필을 하사하게 하였다.	○傳旨戶曹，賜昌城府院君成奉祖賻米·豆并二百碩、紙二百卷、白絺布十匹、白苧布十匹、正布一百匹。
성종 47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9월 28일(경진) 1번째기사	임금이 제릉(齊陵)에 나아가서 친히 제사하였다. 좌의정 한명회(韓明澮)를 보내어 후릉(厚陵)에 제사하고 쌀·콩 아울러 60석을 연경사(衍慶寺)에 하사하였다.	○庚辰/上詣齊陵親祭。遣左議政韓明澮祭厚陵，賜米豆并六十碩于衍慶寺。
성종 47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9월 29일(신사) 4번째기사	대가가 통제원 행궁(通濟院行宮)에 이르렀는데, 지응사(支應使) 이극배(李克培)·도승지(都承旨) 신정(申澮) 등이 고기반찬 올리기를 청하니, 전지하기를, “훈척 대신(勳戚大臣)이 졸(卒)하였는데 차마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 하였다. 신숙주(申叔舟) 등이 또 청하니, 전지하기를, “경 등이 굳이 청하니 내가 마지못해 따르겠다.” 하고, 곧 대왕 대비(大王大妃)에게 고기반찬을 올렸다.	○駕至通濟院行宮，支應使李克培、都承旨申澮等請進肉膳，傳曰：“勳戚大臣卒，不忍食肉。”院相申叔舟等亦請之，傳曰：“卿等固請，予當勉從。”即遣人進肉膳于大王大妃。
성종 48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10월 2일(갑신) 2번째기사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창성 부원군(昌城府院君) 성봉조(成奉祖)에게 부의(賻儀)로 쌀·콩 아울러 40석과 종이 1백 권과 백정포(白正布) 10필, 백면포(白綿布) 10필, 정포(正布) 50필을 내려 주게 하였다.	○傳旨戶曹，賜昌城府院君成奉祖賻米·豆并四十碩、紙一百卷、白正布十匹、白綿布十匹、正布五十匹。
성종 48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덕원군(德源君) 이서(李曙)의 아내에게 부의(賻儀)로 쌀·콩 아울러 40석과 종이 1백 권을 내려 주게 하였다.	○傳旨戶曹，賜德源君曙妻賻米·豆并四十碩、紙一百卷。

<p>10년) 10월 10일(임진) 5번째기사</p>	<p>중무승(宗茂勝) 등 9인을 빈청(賓廳)에서 먹이도록 명하였는데,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가 임금의 명을 받아 먹이는 것을 감찰하였다. 거기에서 중무승 및 피고 여문(皮古汝文) 등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본조(本朝)의 조관(朝官)과 더불어 삼포(三浦)에 사는 왜인(倭人)을 추쇄(推刷)하여 돌려보낼 자는 돌려보내고, 머물러 두게 할 자는 머물러 두게 하려고 하나,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어찌 아무는 돌려보낼 만하고, 아무는 머무르게 할 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또 삼포에 사는 왜인으로 우리 나라와 본도(本島)4544)와의 일로써 말을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자를 우리 나라에서는 또한 누구인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도주(島主)의 명을 받고 왔으니, 마땅히 스스로 돌려보낼 만한 자는 데리고 가고, 또 중간에 말을 만든 자를 가려 내어 죄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니, 중무승이 대답하기를, “도주가 우리를 보내어 대국(大國)의 명을 들어서 처치하게 하였고, 또 삼포 왜인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저에게 주었습니다. 청컨대 대국과 더불어 쇄환(刷還)하도록 하소서.” 하자, 신숙주가 또 사사로이 말하기를, “우리 세종조(世宗朝)에 너희 도주(島主) 종정성(宗貞盛)이 청하기를, ‘본도(本島)는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여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 삼포(三浦) 바닷가의 땅을 빌어서 도민(島民)을 살게 하도록 해 주소서.’ 하였으나, 세종께서는 우리 백성과 더불어 섞이어 살게 되면 혹 변방의 혼란을 내게 될까 염려하여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종정성이 또 해마다 60인을 보내어 고기를 잡아 팔아서 생업(生業)에 도움이 되게 해 달라고 청하므로, 세종께서 다만 팔아 가지고 곧 돌아간다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곧 돌아가지 않고 초막</p>	<p>○命饋宗茂勝等九人于賓廳，領議政申叔舟承命監饋。仍語宗茂勝及皮古汝文等曰：“汝等欲與本朝朝官推刷三浦居倭，可還者還之，可留者留之，然我國安知某也可還而某也可留也？且三浦居倭以我國及本島事造言交構者，我國亦不知其爲某也。汝等受島主之命而來，宜自刷其可還者，而又推中間造言者罪之可也。”茂勝答曰：“島主遣我，聽大國之命而處之，且錄三浦倭名以付我。請與大國共刷之。”叔舟又私語曰：“我世宗朝，汝島主宗貞盛請曰：‘本島土瘠民貧，無以聊生，借三浦濱海之地，以居島民。’世宗慮與我民雜處，或生邊釁不許，宗貞盛又請歲遣六十人，捉魚販賣以資生業，世宗只許販賣卽歸，而不卽入歸，結草幕以避風雨，因循寄寓，生齒日繁，世祖嘗諭島主刷還，今者又諭島主，而遣汝等乃來，其三浦居倭，汝可刷還之。”茂勝曰：“唯。”叔舟曰：“去七月間，倭船二隻作賊于全羅道鉢浦等處，追捕一船，射殺三人生擒七人，遣朝官鞫問其</p>
-------------------------------	--	--

(草幕)을 만들어 풍우(風雨)를 피하면서 머무적거리며 놀러 살아가는 동안 어린애가 차츰 많아지므로, 세조(世祖)께서 일찍이 도주에게 쇄환(刷還)할 것을 유시(諭示)하였고, 이번에 또 도주에게 유시했던 바 너희들을 보내어 이렇게 왔으니, 삼포에 사는 왜인을 너희가 쇄환하는 것이 가하다.”

하니, 종무승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신숙주가 이르기를,
“지난 7월 사이에 왜선(倭船) 2척이 전라도(全羅道) 발포(鉢浦) 등지에서 도둑질을 하는 것을 쫓아가 1척을 잡으면서 3인(人)은 쏘아 죽이고 7인을 사로잡았는데, 조관(朝官)을 보내어 그 연유를 국문하고 서울로 잡아다가 대신(大臣)을 시켜 신문(訊問)하였더니, 다름아닌 대마도(對馬島) 종수구랑(宗秀九郎) 관하(管下)의 왜인(倭人)이었다.”

하고, 이어서 적왜(賊倭)의 공사(供辭)를 내어 보이고 곧 이르기를,
“이 왜인들은 도주(島主)의 문인(文引)을 받아 가지고 고초도(孤草島)에서 고기를 낚고, 무음도(無音島)를 지나는 길에 본국(本國)의 어선(漁船) 4척을 만나 약탈(掠奪)해 가지고 가다가 변장(邊將)한테 잡히었는데, 그 4척의 배에서 겁탈(劫奪)한 물품이 무려 수백 가지였고, 다른 곳에서 겁탈(劫奪)한 물건도 또한 많았다. 그러나 형벌로 신문하지 않아서 아직 다 자복하지 않았다. 이제 조정 관리를 시켜서 본도로 압송(押送)하려고 하였는데, 마침 너희들이 왔으니 그들을 데리고 돌아가서 도주에게 고하여라.”

하니, 종무승이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우리 형(兄)의 관하(管下) 사람입니다. 형이 만약 이 사실을 들으면 반드시 크게 부끄럽게 여길 것이며, 저도 또한 심히 부끄럽습니다.”

하매, 신숙주가 이르기를,
“이와 같은 간사한 사람은 없는 곳이 없는데, 무엇을 부끄러워할 것이 있겠는

由，拿致于京，命大臣訊問，乃對馬島宗秀九郎管下倭也。” 仍出視賊倭供辭，乃曰：“右倭等受島主文引，釣魚孤草島，過無音島，遇本國漁船四隻，奪掠而去，爲邊將所捕，其四船劫掠之物，無慮數百，他處劫奪物件亦多。然不刑訊，未盡承服耳。今欲遣朝官押送本島，而汝等適來，其率歸以告島主。” 茂勝曰：“是真我兄管下之人。兄若聞此，必大忸怩，予亦甚慙焉。” 叔舟曰：“如此奸人無處無之，何愧之有？” 茂勝曰：“右倭等性悍，難以押去，余請在此痛懲。” 叔舟答曰：“不可遽置於法。然將汝言轉啓。” 又謂茂勝曰：“去庚寅年，日本因兵亂，軍需不足，政親以國王之命遣使，請糧于我，我國以綿布·麻布各一千匹、米數百碩與之，聞政親之使還到釜山浦，爲三甫郎古羅所盜，乃於今年三月，卽諭島主，汝等其聞之歟？” 茂勝答曰：“島主因貴國書，拿致三甫郎古羅問之，則曰：‘政親之使，還到釜山浦，寓我家，慮有火災，置所齋之物于我土宇，及其還也，盡付以送，我何盜爲？’ 然我等來時，未畢推鞫耳。但不知何人發此

	<p>가?”</p> <p>하니, 종무승이 말하기를, “이 왜인들은 성질이 사나워서 압송해 가기가 어려우니, 나로써 청하건대 여기에서 통징(痛懲)하게 하소서.”</p> <p>하매,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갑자기 법으로 처치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나 너의 말을 가지고 전계(轉啓)하겠다.”</p> <p>하고, 또 종무승에게 이르기를, “지난 경인년에 일본(日本)이 병란(兵亂)으로 인하여 군수(軍需)가 부족하여서 정친(政親)이 국왕(國王)의 명으로 우리에게 사자(使者)를 보내어 양식을 청하기에 우리 나라에서 면포(綿布)와 마포(麻布) 각각 1천 필과 쌀 수백 석을 주었는데, 들으니 정친의 사자가 돌아가면서 부산포(釜山浦)에 이르러 삼보랑고라(三浦郎古羅)에게 도둑맞았다고 하기에 바로 금년 3월에 곧 도주에게 유시(諭示)하였는데, 너희들은 그 사실을 들었느냐?”</p> <p>하니, 종무승이 대답하기를, “도주가 귀국(貴國)의 서한(書翰)을 인하여 삼보랑고라를 잡아다가 이를 물으니, 곧 말하기를, ‘정친(政親)의 사자가 부산포에 돌아와서 우리집에 기숙하였는데, 화재(火災)를 염려하여 가지고 온 물건을 우리집 토우(土宇)에다 두었다가 그가 돌아갈 때에 미쳐서 다 부치어 보냈는데, 우리가 무슨 도둑질을 했던 말이냐?’ 하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올 때에는 아직 추국(推鞠)을 끝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내었는지 알지 못해서 도주가 우리더러 물어보고 오라고 하였습니다.”</p> <p>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삼포에 사는 왜인이 이 말을 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다.”</p>	<p>言， 島主令我聞見而來矣。” 叔舟答曰：“三浦居倭有是言也。 然未知出自某人也。” 茂勝請曰：“吾兄弟三人，而兄先死， 貞秀九郎受國大恩， 常以報國爲心， 余嘗於丁亥年， 爲大國莅殺三浦作賊之倭。 今者之來， 欲蒙國恩以圖報爲心。 若受圖書許得遣人， 則凡有聞見一一馳報， 以効誠款。” 皮古汝文亦曰：“我受國恩命， 至于四品， 願加官秩， 且授子職。” 叔舟以此啓之， 上御宣政殿， 引見叔舟及左議政韓明澮、 禮曹判書李承召、 參判李克敏， 謂叔舟曰：“茂勝請受圖書， 給之何如？” 叔舟曰：“然。” 上曰：“皮古汝文可加職， 其子則不可除職也。” 叔舟對曰：“凡野人每來除職， 倭人則因請除職， 今有請不從難矣。 請于禮曹， 則不聽猶可也， 今直啓請， 不得不從。” 上曰：“父子一時除職有例乎？” 叔舟對曰：“有之。” 明澮啓曰：“待夷之道， 宜厚而不可薄也。 今汝文父子親來請職， 宜可從也。 且受職者一年一朝， 所費亦不多矣。” 上曰：“當語之曰：‘爾等所言已悉之。 汝等既受島主之命， 三浦居倭可自刷還。’” 叔舟等出</p>
--	--	--

	<p>하자, 종무승이 청하기를, “우리 형제가 세 사람으로서 형은 먼저 죽고, 종수구랑(宗秀九郎)은 귀국의 큰 은혜를 받아 항상 충성을 다하려고 마음에 작정하였으며, 저는 일찍이 정해년 에 대국(大國)을 위하여 삼포에서 반역을 일으킨 왜인을 와서 죽였습니다. 이번에 온 것은 국은(國恩)을 갚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만일 도서(圖書)를 받고 사람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무릇 듣고 보는 것을 있는 대로 날날이 치보(馳報)하여 정성을 다 바치겠습니다.”</p> <p>하고, 피고 여문(皮古汝文)도 또한 말하기를, “저는 나라의 은명(恩命)을 입어 직위가 4품에 이르렀사운데, 원컨대 관질(官秩)을 더해 주시고, 또 자식에게도 관직을 제수하여 주소서.”</p> <p>하매, 신숙주가 이로써 아뢰었더니,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신숙주 및 좌의정(左議政) 한명회(韓明澮)·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승소(李承召)·참판(參判) 이극돈(李克墩)을 인견(引見)하고, 신숙주에게 말하기를, “종무승이 도서(圖書) 받기를 청하니, 지급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p> <p>하자, 신숙주가 말하기를, “웁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피고 여문에게는 직(職)을 더해 주는 것이 가하나, 그 자식에게 벼슬을 제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p> <p>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무릇 야인(野人)은 올 때마다 관직을 주고 왜인(倭人)은 청에 따라서 직을 제수하였는데, 이제 청이 있는 것을 따르지 않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조(禮曹)에 청했다면 들어주지 않더라도 오히려 괜찮겠지마는 지금 직접 계청(啓請)을 하니, 들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p>	<p>傳上教，茂勝頓首謝。 仍賜勿有差。</p>
--	---	--------------------------

	<p>“부자(父子)를 동시(同時)에 직(職)을 제수한 예(例)가 있는가?”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있습니다.” 하자, 한명회가 아뢰기를, “오랑캐를 대접하는 도리는 마땅히 후(厚)하게 해야 하고, 박(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피고 여문의 부자(父子)가 친히 와서 직을 청하니,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또 직을 받은 자는 일 년에 한 번씩 조회하러 오니, 쓰이는 비용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마땅히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한 바를 잘 알았다. 너희들은 이미 도주(島主)의 명을 받았으니, 삼포에 사는 왜인을 가히 스스로 쇄환(刷還)해야 한다.’ 하여라.” 하였다. 신숙주가 나와서 임금의 교지(教旨)를 전하니, 종무승 등이 돈수(頓首)하여 사례하였다. 이어서 물품을 내려 주기를 차등 있게 하였다.</p>	
<p>성종 48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10월 19일(신 축) 5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교(傳敎)를 받으니, ‘본인이 죽으면 징수하지 말라고 한 절목(節目)을 자세히 의논하여 아뢰라.’ 하셨는데, 신이 선덕(宣德) 8년 2월 날짜의 형조(刑曹)에서 수교(受敎)한 것을 참상(參詳)해 보니, 절목(節目)이 《대명률(大明律)》의 명례(名例)에 해당하는데, 거기에 이르되, ‘만약 장죄(贓罪)를 범했을 때 정장(正贓)이 현존(現存)한 것은 관(官)이나 주인에게 돌려주고, 이미 허비해서 쓰고 범인(犯人)이 죽었으면 징수하지 말 것이며, 영범(另犯)으로 죽은 자도 또한 같이 한다.’ 하였고, 《당률소의(唐律疏議)》에 이르기를, ‘이미 허비해 쓰고 죽은 자 및 정배(定配)나 유배(流配)된 자는 징수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의논하기를, ‘장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자 및 장죄로써 유배(流配)된 자는 득죄한 것이 이미 중하여 가업(家業)을 파산한 자가 많으며, 장물도</p>	<p>○戶曹啓: “今承傳敎: ‘身死勿徵節目, 商議以啓.’ 臣等參詳宣德八年二月日刑曹受敎, 節該《大明律》名例云: ‘若以贓入罪, 正贓現在者, 還官主, 已費用者, 犯人身死勿徵, 另犯身死者亦同.’ 《唐律疏議》云: ‘已費用死及配流勿徵.’ 議曰: ‘因贓致死及以贓流配, 得罪既重, 多破家業, 贓已費用, 矜其流死, 其贓勿徵, 今奉法官吏等, 其官吏及公賤等所虧欠遺失物色, 一於律文有準竊盜計贓論之條, 至以身死</p>

이미 허비해 썼을 것이므로 유배되고 죽은 것을 불쌍히 여겨 장물을 징수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지금 법을 받드는 관리 및 공천(公賤)들이 휴흠(虧欠)시키고 유실(遺失)한 물품은 한결같이 율문(律文)의 절도 계장론(竊盜計贓論)에 준하여 당사자가 죽어도 아울러 다 추징(追徵)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자기가 거둬들인 장리(贓吏) 및 강도(強盜), 절도(竊盜)라도 당사자가 죽으면 허비하여 쓴 물건도 오히려 또 징수하지 말라 하였는데, 하물며 자기가 거둬 들이지 않고 휴흠시키거나 유실시킨 물품을 추징한다면, 경중(輕重)이 마땅함을 잃은 것입니다. 청컨대 금후로는 당사자가 죽은 장범인(贓犯人) 등이 이미 허비하여 쓴 물품 및 관리·공천들이 휴흠시키고 유실한 물품은 율문(律文)에 의하여 한결같이 모두 징수하지 말게 하소서.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에 이르기를, ‘율(律)에 범인이 죽으면 징수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가 이미 형륙(刑戮)을 당하였고, 이미 허비해 썼으므로 추징(追徵)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이는 수교(受教) 및 율문의 본뜻입니다. 다만 응징(應徵)할 것과 응징하지 아니할 것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분징(分徵)할 즈음에 임의(任意)로 출입(出入)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청컨대 계목(啓目) 뒤의 조건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고, 속록(續錄)에 첨가시키게 하소서.

- 1. 경외관(京外官)이 휴흠(虧欠)한 쌀과 베 및 잡물.
- 1. 사고로 유실(遺失)한 양(羊)·돼지·소·말·새끼양[羔]·기러기·오리·닭.
- 1. 상(傷)하고 깨진 기명(器皿)·잡물(雜物)·어염(魚鹽) 및 공상세(工商稅)의 미납된 것.
- 1. 관부(官府)의 잡물을 받고서 아직 되돌려 바치지 못한 것이나, 착오(錯誤)로 제급(題給)하고서 거두지 못한 것.
- 1. 선군(船軍)의 월과(月課)인 어염(魚鹽) 등의 물건을 아직 필납(畢納)하지 못한 것.
- 1. 조선(漕船)을 패몰(敗沒)시켰는데, 일이 분간하기 어려운 데 관계된 것.

人，竝皆追徵。雖入己贓吏及強竊盜，其身死則其費用之物，尙且勿徵，況不入己，虧欠遺失物色追徵，則輕重失宜。請今後身死贓犯人等，已費用物色及官吏公賤等虧欠遺失物色，依律文一皆勿徵。《大明律講解》曰：‘律云犯人身死勿徵者，謂其既被刑戮，已費用故不追徵’，此是受教及律文本意。但無應徵不應徵之條，故今於分徵之際，不無任意出入之弊。請依啓日後條件施行，添入續錄。一，京外官虧欠米、布及雜物。一，故遺失羊、豬、牛、馬、羔、雁、鴨、雞。一，傷破器皿、雜物、魚鹽及工商稅未納者。一，官府雜物受而未還納者，誤錯題給而未徵者。一，船軍月課魚鹽等物，未畢納者。一，敗沒漕船而事涉疑似者，上項諸條勿徵。一，故令敗船者。一，通事、醫員唐物貿易，未準納者。一，移轉米淸、雜物而虧欠者。一，貢稅及官庫米、淸、金、銀、鑰、鐵、器皿等物，受而未納者。一，代納貢物之價及公私宿債、役價。上項諸條當徵。”從之。

	<p>위 항(項)의 여러 조목은 응징하지 말 것입니다.</p> <p>1. 고의로 패선(敗船)한 것.</p> <p>1. 통사(通事)나 의원(醫員)이 중국 물건을 무역(貿易)한 것을 기준으로 납부하지 아니한 것.</p> <p>1. 미멸(米憵)이나 잡물(雜物)을 옮겨 가면서 휴흠(虧欠)하게 한 것.</p> <p>1. 공세(貢稅) 및 관고(官庫)의 미멸과 금(金)·은(銀)·유(鋤)·철(鐵)·기명 등의 물건을 받고서 바치지 못한 것.</p> <p>1. 대납(代納)한 공물(貢物)의 값 및 공(公)과 사(私)의 목은 빛과 품값[役價]. 위 항의 여러 조목은 마땅히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성종 48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10월 20일(임인) 9번째기사</p>	<p>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충청도(忠淸道)에서 실농(失農)을 하였으니, 충주(忠州)·청주(淸州)·천안(天安) 등 관청의 조례(皂隸)·나장(羅將)·보충대(補充隊) 등을 청컨대 보리가 익을 때까지 기한하여 놓아 보내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兵曹啓: “忠淸道失農, 忠州、淸州、天安等官皂隸、羅將、補充隊等, 請限麥熟放遣。” 從之。</p>
<p>성종 48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10월 23일(을사) 4번째기사</p>	<p>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 조석문(曹錫文)이 상장(上狀)하여 사직(辭職)하기를, “이제 헌부(憲府)에서 신(臣)을 권세를 농간하고 법을 혼든다고 탄핵하여 재삼(再三) 논계(論啓)하였으나, 성도(聖度)로 포용(包容)하시어 특별히 추문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신도 또한 여러 번 사직하려 하였으나 운허를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곧 성감(聖鑑)으로 통조(洞照)하신 것으로 은혜가 지극히 두터웠습니다. 그러나 법을 흔들리게 하고, 권세를 농간한다는 것은 인신(人臣)의 큰 죄이므로 전연(靦然)히 직분에 나아간다는 것은 실로 미안(未安)하여 몸둘 곳이 없으며, 조심스럽고 황송함이 심절(深切)하니, 청컨대 신의 직을 갈아 주소서.”</p> <p>하니, 임금이 그 서장을 되돌려 주도록 명령하고, 드디어 선운(宣醞)을 그 집[第]에 내려 주었다.</p>	<p>○昌寧府院君曹錫文上狀辭職曰: 今憲府劾臣弄權撓法, 再三論啓, 聖度包容, 特命勿推, 臣亦累辭, 未蒙允許, 是乃聖鑑洞照, 恩至渥也。 然撓法弄權, 人臣大罪, 靦然就職, 實爲未安, 措身無地, 深切兢惶, 請遞臣職。 命還其狀, 遂賜宣醞于其第。</p>

<p>성종 49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11월 10일(신유) 2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종정국(宗貞國)에게 답한 글에 이르기를,(…) 하고, 별폭 특사(別幅特賜)는 조미(造米) 1백 석, 황두(黃豆) 1백 석, 면주(綿紬) 30필, 흑마포(黑麻布) 30필, 면포(綿布) 50필, 저주지(楮注紙) 1백 권, 면자(綿子) 5근, 해송자(海松子) 2석, 호피(虎皮) 2장, 표피(豹皮) 2장, 청밀(淸蜜) 6두, 토산 정포(正布) 50필, 면포 30필이었다.</p>	<p>○禮曹答宗貞國書曰：(…) 別幅特賜造米一百碩、黃豆一百碩、綿紬三十四、黑麻布三十四、綿布五十四、楮注紙一百卷、綿子五斤、海松子二碩、虎皮二張、豹皮二張、淸蜜六斗、土宜正布五十四、綿布三十四。</p>
<p>성종 49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11월 18일(기사) 5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금지 부정(金池副正) 이광근(李廣根)이 성혼(成婚)하니, 쌀·콩 아울러 10석, 명주[紬] 4필, 면자(綿子) 2근, 면화(棉花) 6근, 면포 10필, 기름[油]·꿀[蜜] 각 3말을 하사하라.” 하였다.</p>	<p>○傳旨戶曹曰：“金池副正廣根成婚，其賜米豆并十碩、紬四匹、綿子二斤綿花六斤、綿布十匹·油·蜜各三斗。</p>
<p>성종 50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12월 15일(병신) 1번째기사</p>	<p>일본 국왕의 사자(使者) 정구(正球) 등 22인이 하직하니,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인견(引見)하고, 술을 주어 위로하였다. 이어서 전지(傳旨)하기를, “바닷 길이 험하고 먼데, 각기 잘 돌아가도록 하라.” 하고,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그 답서(答書)에 이르기를, (…) 하고, 별폭(別幅)에는, “정포(正布) 5백 필, 면포(綿布) 5백 필, 백세면주(白細綿紬) 1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10필, 인삼(人蔘) 1백 근, 표피(豹皮) 5장, 호피(虎皮) 5장, 표피 좌자(豹皮坐子) 1좌(坐),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만화석(滿花席) 10장, 만화방석(滿花方席) 10장, 봉문염석(鳳文簾席) 2장, 남사피(藍斜皮) 10장, 대요발(大鐃鉢) 1사(事), 중요발(中鐃鉢) 1사, 법고(法鼓) 1면(面), 유징(鑪錚) 1사, 중경(中磬) 1사, 운판(雲板) 1사, 후지(厚紙) 10권(卷), 납촉(蠟燭) 1백 자루, 해송자(海松子) 5백 근, 청밀(淸蜜) 20말[斗], 봉숭아씨[鳳仙花子] 1봉(封), 양귀비씨[罌粟子] 1봉, 맨드라미씨[鷄冠花子] 1</p>	<p>○丙申/日本國王使正球等二十二人辭，上御宣政殿引見，置酒以慰。仍傳曰：“海路險遠，其各好還。”賜物有差。其答書曰：(…) 別幅： 正布五百匹、綿布五百匹、白細綿紬一十四、白細苧布壹拾匹、黑細麻布一十四、人蔘一百斤、豹皮五張、虎皮五張、豹皮坐子一坐、雜彩花席一十張、滿花席一十張、滿花方席一十張、鳳文簾席二張、藍斜皮一十張、大鐃鉢一事、中鐃鉢一事、法鼓一面、鑪錚一事、中磬一事、雲板一事、厚紙一十卷、蠟燭一百柄、海松子五百斤、淸蜜二十斗、鳳仙花子一</p>

	<p>봉, 해바라기씨[黃葵子] 1봉, 집비둘기[鴿子] 암수 아울러 2쌍, 흑봉두계[黑蓬頭雞] 암수 아울러 1쌍, 백봉두계[白蓬頭雞] 암수 아울러 1쌍, 채색 오리[彩鴨] 암수 아울러 1쌍, 평[野雞] 암수 아울러 1쌍.” 이라 하였다.</p>	<p>封、(鶩) [鶩] 粟子一封、雞冠花子一封、黃葵子一封、鴿子雌雄并二雙、黑蓬頭雞雌雄并一雙、白蓬頭雞雌雄并一雙、彩鴨雌雄并一雙、野雞雌雄并一雙。</p>
<p>성종 50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12월 16일(정유) 6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진지(傳旨)하여 덕수궁(德壽宮)에 안접(安接)하게 한 박씨(朴氏)에게 부의(賻儀)로 쌀·콩 아울러 20석, 홍초(紅綃)·생초(生綃) 각 1필, 유둔(油苴) 2장, 관곽(棺槨)을 하사하였다.</p>	<p>○傳旨戶曹，賜賻德壽宮安下朴氏米豆并二十碩·紅綃·生綃各一匹、油苴二張及棺槨。</p>
<p>성종 50권, 5년(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12월 24일(을사) 2번째기사</p>	<p>일본국(日本國) 경성 관령(京城管領) 전산전(畠山殿) 좌경 대부(左京大夫) 원의승(源義勝)이 사람을 보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그 글에 이르기를, “조선국(朝鮮國) 예조 존관 대인 족하(禮曹尊官大人足下), 지난해에 천덕사(天德寺) 전법 윤장(轉法輪莊)의 화연(化緣)을 위하여 사선(使船)을 보내신 것은 이미 보명(報命)을 서울[洛下]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돌아올 적에 포구(浦口)에 이르러 해안을 출발할 때에, 선주(船主)가 조심하지 아니한 일로 배가 그 포구에 표몰(漂沒)하게 되어, 〈귀국의〉 답서[返書]가 난습(爛濕)4749) 하고 짐물(什物)이 모두 젖어서, 냄새나고 썩은 것을 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선주는 죄를 두려워하여 대마도(對馬島)로 가서 묵고 있고, 사자(使者)는 곧바로 상선(商船)을 따라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귀국에서 하사(下賜)하신 백저포(白苧布) 5필과 흑마포(黑麻布) 5필, 인삼(人蔘) 3근, 호피(虎皮) 1장, 표피(豹皮) 1장, 잣[松子] 3말[斗], 회석(繪席) 3장(杖)이 비록 전달(傳達)은 되었으나, 모두 문드러지고 썩어서 능히 그 빛깔을 판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대장경(大藏經)을 요구(要求)하여 이미 은사(恩賜)를 입었으므로, 이제 장차 윤장(輪莊)을 조성(造成)하여 천만세(千萬世)토록 귀국의 광대(廣大)한 덕(德)을 알게 하고, 인하여 화연(化緣)하였던 것인데 사자(使者)와 선주(船主)가 배가 표몰(漂沒)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사이에 간</p>	<p>○日本國京城管領畠山殿左京大夫源義勝遣人來，獻土宜。其書曰： 朝鮮國禮曹尊官大人足下，前歲爲天德寺轉法輪莊化緣遣使船，已受報命於洛下。而歸到浦及其發岸，船主不慎事，漂沒船於其浦，返書爛濕，什物悉濕，却逐致臭腐。船主恐罪而滯留于對馬，使者輒附于商船而來歸。以貴國所賜白苧布五匹黑麻布五匹、人蔘三斤、虎皮一張、豹皮一張、松子三斗、繪席三枚，雖傳達焉，而悉爛腐，不能辨其色。吾于前求大(莊) [藏] 經，已蒙恩賜，今將造輪莊，以欲令千萬世知貴國廣大之德，因以求化緣，使者并船主，矯言於船之漂沒，而容奸詐於其間者也。若實船漂沒其浦，而再登岸以及乾曬爛濕之物者，何夫請于官吏而奏</p>

	<p>사(奸詐)함을 부린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배가 그 포구에서 표몰해서 다시 언덕으로 기어 올라가 난습(爛濕)한 물건들을 말려가며 이르렀다면, 어찌하여 관리(官吏)에게 요청해서 서울에 주달(奏達)하고 개서(改書)를 반송(返送)하여 그 일을 증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는 사자(使者)가 서계(書契)의 만멸(漫滅)을 다행으로 여기고 우리와 귀국(貴國)과의 통호(通好)의 길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 만약 그 간사한 것을 바로잡아 결단하지 아니하면 영구히 귀국의 은고(恩顧)를 저버리게 될 것이므로, 문득 급히 사자(使者)를 보내니, 앞드려 바라건대 그 간사한 것을 숨김없이 자세히 보여 주시면 곧 이것이 권선 진악(勸善懲惡)의 계책입니다. 근년에 우리 부상국(扶桑國)에는 고을마다 간과(干戈)로 인하여 이른바 ‘불우(佛宇)’와 ‘신사(神祠)’라고 이르는 것은 쓰러져 무너지고, 혹은 불에 타서 재가 된 것이 열에 여덟이나 아홉인데, 우리 능등(能登) 고을만은 간과(干戈)도 일어나지 않았고 불우(佛宇)도 모두 외연(巍然)하니, 이는 곧 하사하신 대장경(大藏經)의 진호(鎮護)하시는 기이한 상서입니다. 이에 더욱 성은(聖恩)에 사례하기 어려움을 알고 공구(恐懼)함을 다하지 못하여, 너적지 못한 토산물을 별폭(別幅)에 갖춥니다.</p> <p>“대도(大刀) 1과(把), 병풍(屏風) 1쌍, 연위(練緯) 2필, 빈랑 열매[檳榔子] 2근, 청자 대완(靑磁大碗) 2구(口).”</p> <p>하였다.</p>	<p>之于洛而改書返送，以不證其事耶？是即使者幸書契之漫滅，欲塞吾貴國通好之路者也。若不糾決其奸者，永背貴國之恩顧矣，故輒遣急使者也，伏望無隱其奸，詳以示賜者，即是勸善懲惡之計也。頃年吾扶桑國每州干戈，以所以曰：“佛宇”、曰：“神祠”，或顛墜，或灰燼者，十而八九，吾能登一州，干戈不起，佛宇皆巍然，是即所賜大藏經鎮護之奇瑞也。愈知聖恩之難謝，恐懼不悉，不腆土宜具別幅。大刀一把、屏風一雙、練緯二匹、檳榔子二十斤、靑磁大碗二口。</p>
<p>성종 51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1월 18일(무진) 1번째기사</p>	<p>대마 도주(對馬島主) 종정국(宗貞國)의 특송(特送) 종사교(宗沙交), 오도 우구수(五島宇久守) 원승(源勝)의 사승(使僧) 운서기(雲書記), 오도 도주(五島島主) 원번(源繁)의 사승(使僧) 천장주(泉藏主)가 하직하니,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인견(引見)하여 술을 내려 주고, 물건을 차등 있게 주면서 하교하기를,</p> <p>“우리 나라에서 표류(漂流)한 인구(人口)를 너의 주주(州主)들이 편안하게 위무(慰撫)하여 돌려보냈으니, 내가 심히 가상하게 여긴다.”</p>	<p>○戊辰/對馬島主宗貞國特送宗沙交、五島宇久守源勝使僧雲書記、五島鳴主源繁使僧泉藏主辭，上御宣政殿，引見賜酒，賜物有差，教曰：“我國漂流人口，汝州主等撫存遣還，予甚嘉之。”宗沙交等對曰：“謹將聖教，告州主。”禮曹答宗貞國書曰：</p>

하니, 종사교(宗沙交) 등이 대답하기를,
 “삼가 성교(聖敎)를 가지고 주주(州主)에게 고하겠습니다.”
 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중정국(宗貞國)에게 대답하는 글에 이르기를,
 “글을 받고 일상 생활에 복록이 청신함을 살필 수 있어 위안이 되며, 바치신
 예물(禮物)은 삼가 거두어 아뢰었습니다. 토의(土宜)로 정포(正布) 7필(匹), 면
 포(綿布) 3필(匹)과 계사년의 예(例)로 주는 미두(米豆) 아울러 2백 석(碩)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자(使者)편에 부치어 보내며, 그 중에 우리 나라의 승인
 (僧人)이 오도(五島)에 표박(漂泊)한 것을 족하(足下)가 사자를 보내어 타일러
 서 즉시 돌려보내도록 하고 겸하여 또 사람을 보내어 인도하여 보냈으니, 족
 하(足下)가 우리 나라에게 순종하기를 다하고 사건을 만날 때마다 충성을 다
 하는 뜻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유를 갖추어서 아뢰었더니, 전하께서
 는 심히 가상하게 여기시고, 유사(有司)에 명하여 특별히 내조한 사자를 후대
 하고 아울러 넉넉히 예물(禮物)을 주게 하시니, 이에 흑마포(黑麻布) 3필(匹),
 백면포(白綿布) 3필, 채화석(彩花席) 3장(張), 호피(虎皮) 2장(張), 표피(豹皮)
 2장(張), 표피심 호피변 녹비리 좌자(豹皮心虎皮邊鹿皮裏坐子) 1사(事)를 아울
 러 부쳐 보냅니다. 또 원승(源勝)이 빙선(聘船)의 액수를 더하는 일과 원번(源
 繁)이 통신(通信)하는 일은 족하(足下)의 청(請) 때문에 특별히 품지(稟
 旨)4845 하여 모두 허락하셨으니, 아울러 조령(照領)하기 바랍니다.”
 하고, 원승(源勝)에게 회답하는 글에 이르기를,
 “우리 나라의 해변에 사는 사람이 풍랑을 만나 패선(敗船)하여, 여러 섬으로
 표류된 자가 많았습니다. 이제 중[僧]이 또 표류하여 귀도(貴島)에 이르렀는
 데, 족하(足下)는 특별히 거두어 무휼하기를 더하고, 다시 사자를 보내어 관
 송(管送) 하여 옛 땅에 돌아오게 하고 겸하여 예물(禮物)을 올리었기에 연유
 를 갖추어서 아뢰었더니, 전하께서 매우 가상히 여기시고 기뻐하시어 넉넉히
 예물을 주게 하고, 아울러 청탁한 빙선(聘船)의 수효를 더하게 함으로써 그

承書得審動履清迪爲慰，所獻禮物謹啓
 收訖。將土宜正布七匹、綿布三匹及
 癸巳年例賜米豆并二百碩，就付回使，
 箇中我國僧人漂泊五島，足下遣使開
 諭，令卽發還，兼又專人導送，足下効
 順我國，遇事盡忠之意，於此可見矣。
 具由以啓，殿下甚嘉之，命有司特厚待
 來使，并優賜禮物，茲將黑麻布三匹、
 白綿布三匹、彩花席三張、虎皮二
 張、豹皮二張、豹皮心虎皮邊鹿皮裏
 坐子一事，并付送。且源勝聘船加額
 事及源繁通信事，爲足下之請，特稟
 旨，皆許，并照。
 答源勝書曰：
 我國濱海居人，遭風敗船，漂到諸島者
 多矣。今有僧人又漂流，至于貴島，
 足下特加收恤，再遣使管送悉還舊土，
 兼進禮物，具由以啓，殿下甚嘉悅，命
 優賜禮物，並加所請聘船之數，以答其
 誠。今將黑麻布一十匹、綿布一十
 匹、白綿紬一十匹、虎皮一張、豹皮
 一張、屏風一坐、彩花席三張、人蔘
 五斤、海松子十五斗并土宜正布二
 匹、綿布一匹，付回使，且加使船一
 艘，令歲遣三船，冀照領。

	<p>정성에 답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제 흑마포(黑麻布) 10필(匹)·백면포(白綿布) 10필(匹), 면주(綿紬) 10필(匹), 호피(虎皮) 1장(張)·표피(豹皮) 1장(張), 병풍(屏風) 1좌(坐), 채화석(彩花席) 3장(張), 인삼(人蔘) 5근(斤), 해송자(海松子) 15두(斗)와 아울러 토의(土宜)로 정포(正布) 2필(匹), 면포(綿布) 1필을 돌아가는 사인편에 부치겠으며, 또 사선(使船) 1척을 더하게 하여 세견(歲遣) 3선(船)으로 하였으니, 조령(照領)하기 바랍니다.”</p> <p>하고, 원번(源繁)에게 회답하는 글에 이르기를, “보내온 글을 읽고서 족하(足下)가 우리 나라의 표류(漂流)한 사람을 구제하여 사자에게 돌려보내게 하고 겸하여 예물(禮物)을 바쳤음을 알았습니다. 연유를 갖추어서 아뢰었더니, 전하께서 심히 가상히 여기시고 유사(有司)에 명하여 후하게 상사(賞賜)를 더하게 하시어 이제 토의(土宜)로 정포(正布), 2필(匹), 면포(綿布) 1필과 아울러 백저포(白苧布) 10필(匹), 흑마포(黑麻布) 10필(匹), 호피(虎皮) 1장(張), 표피(豹皮) 1장(張), 병풍(屏風) 1좌(坐)를 돌아가는 사인편에 부치겠으며, 또 족하가 수빙(修聘)하기를 정성을 쏟아 청한 것으로써 즉시 계품(啓稟)하였더니, 세견(歲遣) 1선(船)과 아울러 원번(源繁) 2자(字)의 도서(圖書)를 제조하여 구비하여서 보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족하의 효순(效順)하는 정성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비상(非常)한 데서 나온 것이니, 조령(照領)하기 바랍니다.”</p> <p>하였다.</p>	<p>答源繁書曰： 書來知足下得我國漂流人專使發還兼獻禮物。具由以啓，殿下其嘉之，命有司厚加賞賜，今將土宜正布二匹、綿布一匹并給賜白苧布一十匹、黑麻布一十匹、虎皮一張、豹皮一張、屏風一坐付回使，且足下請修聘以輸誠款，即啓稟，令歲遣一船并造源繁二字圖書，具筒以送。此皆因足下効順之誠，恩出非常，惟照領。</p>
출처	내용	원문
성종 52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2월 1일(경진) 2번째기사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서근(徐覲)이 아뢰기를, “구례(舊例)에 본부(本府)에서 상고할 만한 일이 있으면 제사(諸司)의 문적(文籍)을 가져다가 보았는데, 요즈음 이조(吏曹)의 의망 단자(擬望單子)를 가져 오고자 하나, 본조(本曹)에서 보내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제사에서 이를 본받아 예(例)가 되면 본부에서 거핵(擧劾)할 빙거(憑據) 자료가 없습니다.”</p>	<p>○御經筵。講訖，持平徐覲啓曰：“舊例，本府事有可考，取見諸司文籍，近欲取吏曹擬望單子以來，本曹不肯送之。若諸司效此成例，則本府無憑舉劾。”上顧謂左右曰：“吏曹望單子，憲府欲一一取見，無乃不可乎？”領事</p>

	<p>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이조의 의망 단자를 사헌부에서 일일이 가져다 보고자 하는 것은 불가하지 아니한가?” 하였다. 영사(領事) 홍윤성(洪允成)이 대답하기를, “신이 일찍이 장령(掌令)이 되었는데, 그때에 김질(金質)이 병조 좌랑(兵曹佐郎)으로서 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에 초배(超拜)되었으므로, 본부에서 장차 논하려고 의망 단자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세조께서 그때 영의정(領議政)으로 있으면서 듣고 신 등을 의금부에 회부하였습니다. 신이 세조의 잠저(潛邸)에 바로 나아가서 사죄하니, 세조께서 교시하기를, ‘세종(世宗) 말년에 무릇 주의(注擬)는 신중하고 비밀히 하여 누설하지 못하도록 이미 전지(傳旨)가 있었는데, 너희들이 어찌 이처럼 하느냐?’고 하고, 인하여 신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용서하였습니다. 만약 《실록(實錄)》을 상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우승지(右承旨) 유권(柳睞)에게 명하여 《실록》을 상고하여서 아뢰게 하였다.</p>	<p>洪允成對曰：“臣嘗爲掌令，其時金質以兵曹佐郎超拜成均司藝，本府將論之，使取望單子來。世祖時爲領議政聞之，下臣等于義禁府。臣徑詣世祖邸謝之，世祖教曰：‘世宗末年，凡注擬慎密不洩，已有傳旨，爾等何乃若是耶？’仍飲臣以酒而赦之。若考實錄，則可知矣。”上命右承旨柳睞，考實錄以啓。</p>
<p>성종 52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2월 1일(경진) 8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본도(本道)의 충주(忠州) 등 14고을에 흉년이 들었으니, 청컨대 여러 고을 군자창(軍資倉)의 오래 묵은 벼[租]와 콩 2만 9천 석을 가지고 빈민(貧民)을 구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據忠淸道觀察使啓：“本道忠州等十四邑饑，請以諸邑軍資倉久陳租、豆二萬九千碩，賑救貧民。”從之。</p>
<p>성종 52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2월 2일(신사) 6번째기사</p>	<p>평안도 관찰사 정문형(鄭文炯)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요즘 본도(本道)의 군졸이 전쟁과 수비에 피곤하기 때문에 황해도 군졸 5백 명을 사은사(謝恩使)의 호송군(護送軍)으로 보충하였는데, 양식이 중간에서 떨어질까 염려스럽다. 본고을에서 출발한 지 20일 후에는 의주(義州)를 제외하고 연로(沿路)의 여러 고을 군자창(軍資倉)의 쌀로 계산해서 주었다가 가을을 기다려서 군졸이 사는 여러 고을에서 수납(收納)하도록 하라.”</p>	<p>○諭平安道觀察使鄭文炯曰：“近日本道軍卒困於戰戍，故今以黃海道軍卒五百，補謝恩使護送軍，慮恐糧糧中絕。自發本邑二十日之後，除義州以沿路諸邑軍資倉米計給，俟秋令軍卒所在諸邑收納。”</p>

<p>성종 52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2월 8일(정해) 1번째기사</p>	<p>하였다. 좌의정 한명회(韓明澮)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이극균(李克均)을 보내어 표문(表文)을 받들고 북경에 가서 사은(謝恩)하게 하였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표문(表文)에 배송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 표문에 이르기를, “공경히 성은(聖恩)을 입어 신의 선부(先父)를 추봉(追封)하여서 왕(王)으로 삼아 시호(諡號)와 고명(誥命)을 하사하시고, 또 신의 어머니를 봉하여서 왕모(王母)로 삼아 고명과 관복(冠服)을 하사하시니, 모두 이미 공경히 받았으며, 신은 온 나라 신민(臣民)과 더불어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표문(表文)을 받들어 사례를 올리는 신 휘(諱)는 진실로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거듭 머리를 조아립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지극한 덕을 널리 퍼서 소방(小邦)을 돈독히 무수(撫綏)하시고, 큰 도량은 아울러 용납하여 작은 정성을 굽어 따르시니, 정은 마음속에서 감격하고 눈물은 말을 따라 떨어집니다.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게 용렬한 자질로 멀리 폐리(敝履)를 지키면서도 하늘에서 내리는 은총을 입으니, 우러러 감사함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외람되게 아버지를 현양(顯揚)하는 회포를 아뢰어 더욱 황공하였는데, 어찌 사신이 돌아오는 편에 운허하시는 명을 받을 것을 생각하였겠습니까? 작(爵)을 추봉(追封)하고 시호(諡號)를 내려서 이미 중천(重泉)의 아름다움을 더하였고, 벼슬을 봉하고 관복(冠服)을 내려서 홀어머니도 영광에 참여하였습니다. 황제의 은덕(恩德)이 거듭 이르니, 저승과 이승에서 함께 감격합니다. 이는 대저 황제 폐하께서 사랑은 부모보다 더하고 덕화(德化)는 천지에 짝하여, 신의 윗사람을 받드는 충성을 양해하시고 신의 부모에게 은혜를 갚으려는 뜻을 어여삐 여기어, 드디어 미천한 자품(資品)으로 하여금 특별히 남다른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신은 삼가 자자손손(子子孫孫) 황실을 보호하는 울타리의 소임을 삼가 하겠으며, 아침저녁으로 송축하는 글을 갑절 바칩니다.” 하고, 방물표(方物表)에 이르기를,</p>	<p>○丁亥/遣左議政韓明澮、同知中樞府事李克均，奉表如京師謝恩。上率百官拜表如儀。其表曰： 欽蒙聖恩，追封臣先父爲王，賜諡號·誥命，又封臣母爲王母，賜誥命·冠服，俱已欽依祇受，臣與一國臣民，不勝感激。謹奉表稱謝者臣諱，誠歡誠忭，稽首稽首。伏以至德廣運，篤綏小邦，大度兼容，曲從微懇，情由中激，涕隨言零。伏念臣猥以庸資，邈守敝履，叨被自天之寵，戴荷難堪。冒陳顯親之懷，兢惶采切，何圖使介之還，獲承允俞之音？追爵易名，既重泉之增賁，疏封錫服，亦孀母之與榮。恩光疊臻，幽明共感。茲益伏遇皇帝陛下慈逾怙恃，化侔生成，諒臣奉上之忠，憐臣報本之志，遂令殘品，特蒙殊私。臣謹當子子孫孫，恪謹藩宣之寄，朝朝暮暮，倍伸頌禱之詞。 其方物表曰： 天心至仁，曲加異數，土宜雖薄，聊表謝忱。謹備黃細苧布三十四匹、白細苧布三十四匹、黑細麻布一百匹、闊黑細麻布三十四匹、龍文簾席四張、黃花席</p>
---	---	--

	<p>“천심(天心)이 지극히 어지시어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니, 토의(土宜)가 비록 박하나 겨우 사례하는 정성을 표합니다. 삼가 황세저포(黃細苧布) 3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3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1백 필, 활흑세마포(闊黑細麻布) 30필, 용문염석(龍文簾席) 4장(張), 황화석(黃花席) 15장, 만화석(滿花席) 15장, 만화방석(滿花方席) 15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5장, 인삼(人蔘) 1백 근, 석등잔(石燈盞) 10벌[事], 잡색마(雜色馬) 80필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은 제조가 정(精)하지 못하고 가짓수가 많지 못하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정성임을 헤아리시어, 예물을 바치는 의례를 용납하시기 바랍니다.”</p> <p>하였다. 황태후(皇太后)에게는 홍세저포(紅細苧布) 1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20필, 만화석(滿花席) 10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이고, 중궁(中宮)에게서는 홍세저포 10필, 백세저포 10필, 흑세저포 20필, 만화석 10장, 잡채화석 10장이었다.</p>	<p>一十五張、滿花席一十五張、滿花方席一十五張、雜彩花席一十五張、人蔘一百斤、石燈盞一十事、雜色馬八十匹。右件物製造匪精，名般不腆，冀諒由中之懇，第容享上之儀。皇太后紅細苧布一十匹、白細苧布一十匹、黑細麻布二十四匹、滿花席一十張、雜彩花席一十張、中宮紅細苧布一十四匹、白細苧布一十四匹、黑細麻布二十四匹、滿花席一十張、雜彩花席一十張。</p>
<p>성종 52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2월 8일(정해) 10번째기사</p>	<p>호조(戶曹)와 병조(兵曹)에서 평안도를 소복(蘇復)할 조목을 의논하여 아뢰기를,</p> <p>“그 첫째는, 이 먼저 본도 여러 고을의 전세(田稅)를 3분의 1을 줄여서 거두었는데, 이제는 사명(使命)이 번거롭고 많으며 방어도 긴요하니, 금년의 전세는 반(半)으로 줄이고 적변(賊變)을 입은 이산(理山)·창주(昌洲)·벽단(碧團)의 주민과 수졸(戍卒)은 전체 수량을 면제하게 하소서.</p> <p>그 둘째는, 정조사(正朝使)의 영송군(迎送軍)과 기복마(騎卜馬)를 이 먼저는 황해도에서 채워 보냈는데, 근래에 정폐(停廢)하였으니, 청컨대 소복할 동안 황해도에서 채워 보내게 하소서.</p> <p>그 셋째는, 본도 여러 고을의 항공(恒貢) 가운데 청밀(淸蜜)·황밀(黃蜜)·산저모(山猪毛)·숙늑비(熟鹿皮)·숙장피(熟獐皮)·모장피(毛獐皮)·초피(貂皮)·서피(鼠皮)·잡우(雜羽)·호피(狐皮)·이피(狸皮)·양피(羊皮)·궁삭목(弓槩木)·구피(狗皮)·황양목(黃楊木)·소포(少脯)·건록(乾鹿)·건장(乾獐)·건저(乾猪)·향우각(鄉牛角)·늑각(鹿</p>	<p>○戶曹兵曹議啓平安道蘇復之條。其一曰，前此本道諸邑田稅減三分之一收之，今則使命煩多，防禦亦繁，今年田稅減半，其被賊變理山、昌洲、碧團居民及戍卒，全數蠲免。其二曰，正朝使迎送軍及騎卜馬，前此以黃海道充遣，而近來停廢，請限蘇復以黃海道充遣。其三曰，本道諸邑恒貢內，淸[蜜]、黃蜜、山猪毛、熟鹿皮、熟獐皮、毛獐皮、貂皮、鼠皮、雜羽、狐皮、狸皮、羊皮、弓槩木、狗皮、黃楊木、少脯、乾鹿、乾獐、乾猪、鄉牛角、鹿角、全漆、雞羽、松花、</p>

	<p>角)·전칠(全漆)·치우(雉羽)·송화(松花)·숙마(熟麻)·오미자(五味子)·백자(栢子)·생리(生梨)·생마(生麻)·옹피(熊皮)는 3년 동안 전체를 감하도록 하소서.</p> <p>그 넷째는, 본도의 군졸이 사신을 맞이하고 보내며 방수(防戍)에 왕래함으로 썩 말미 많이 피곤하여 죽은 것이 길에 즐비하니, 진실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청컨대 오는 가을에 점마관(點馬官)으로 하여금 경기(京畿)·하삼도(下三道)·황해도·평안도 여러 목장의 아마(兒馬)를 운(運)을 나누어 본도 절도사에게 보내어 붙여서, 말이 없는 군사에게 주도록 하소서.</p> <p>그 다섯째는, 이 먼저 전라도·충청도·경상도에서 해마다 보낸 화살대[箭竹]를 관찰사와 절도사가 군졸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본영(本營)에 쌓아두었으므로 해가 오래되어 썩이 생겨서 마침내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도의 군졸이 자주 적과 교전하여 화살이 거의 다하였는데, 북도(北道)에는 대나무가 본래 생산되지 아니하여 사사로이 준비하기가 진실로 어려우니, 청컨대 관찰사와 절도사로 하여금 해마다 보내는 화살대를 군사에게 나누어 주어 미리 병기(戎器)를 다스리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熟麻、五味子、栢子、生梨、生麻、熊皮，限三年全減。其四曰，本道軍卒，以使臣迎送往來防戍，馬多困斃，相枕於道，固非細慮。請令來秋等點馬官，捉出京畿、下三道、黃海道、平安道諸牧場兒馬，分運送付本道節度使，以給無馬軍卒。其五曰，前此全羅、忠清、慶尙道歲輸箭竹，觀察使、節度使不給軍卒，積置本營，歲久生蠹，終至無用。今者本道軍卒數，與賊交鋒，射矢殆盡，而北道本不產竹，私備實難，請令觀察使、節度使，盡出歲輸箭竹，分授軍士，預治戎器。”從之。</p>
<p>성종 52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2월 15일(갑오) 5번째기사</p>	<p>주계 부정(朱溪副正) 심원(深源)이 상서(上書)하기를,</p> <p>“신이 듣건대 사람이 이 몸을 가지게 된 것은, 형체(形體)는 어머니에게서 받고 생명(生命)은 아버지에게서 받았으니, 생육(生育)의 은혜가 실로 천지(天地)와 같기 때문에 인륜(人倫)에서 가장 중하며, 인(仁)을 행하는 근본은 효(孝)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아들이 된 자는 누구나 스스로 그 직분을 다하려고 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마는, 기품(氣稟)에 구속되고 물욕(物欲)에 어두워져서 능히 그 도리를 다하는 자가 드뭅니다. 이제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한 나라를 효도로 다스려서 여러번 밝은 조서(詔書)를 내리고 널리 유일(遺逸)을 찾았습니다. 이에 사천(泗川)의 효자 최소하(崔小河)는 부름을 받아 전옥서 참봉(典獄署參奉)에 제수되었습니다. 신이 듣건대 최소하가</p>	<p>○朱溪副正深源上書： 臣聞人之有此身也，受形於母，資生於父，生育之恩，實同天地，故於人倫爲重，行仁之本，莫大於孝。自古爲人子者，誰不欲自盡其職，顧拘於氣稟，昏於物欲，鮮有能盡其道者也。今我主上殿下，孝理一國，屢頒明詔，旁求遺逸。於是泗川孝子崔小河，乃應徵召，拜爲典獄署參奉。臣聞小河之爲孝也，其母有宿疾，侍藥不怠，惻怛之</p>

효도를 한 일은, 그 어머니가 목은 병이 있으므로 약바라지를 부지런히 하니, 지극한 정성이 위로 천신(天神)을 감동시켜, 꿈에 한 사람이 최소하에게 고하기를, ‘산 사람의 손가락을 태워서 먹이면 어머니의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하므로, 최소하가 곧 오른손 무명지(無名指)를 끊어서 불에 태워 드렸는데, 과연 그 효력이 있어 그 어머니가 수명이 연장되어 70이 넘기에 이르렀답니다. 또한 최소하는 그 어머니가 돌림병[疫疾]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 있다는 것을 듣고 밤낮으로 근심하여 술과 고기를 먹지 아니하였다고 하니, 그 효성이 지극합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충신은 효자의 집에서 구하라.’고 하였고, 또 《대학(大學)》에서 ‘효도하는 것은 임금을 섬기는 방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무릇 사람의 정(情)은 하루라도 착한 사람을 보지 아니하면 게으르고 자만(自滿)하는 마음이 생기며, 착한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방탕하고 사치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신은 그옥이 생각하건대 최소하를 특별히 경연관(經筵官)에 임명하여 아침 저녁으로 좌우에 입시(入侍)하게 하여 그 사람됨을 보고 그 행실을 들으며, 또 《소학(小學)》·《대학(大學)》의 글을 강구(講究)하고 체득(體得)하여 마음이 밝고 광명함에 이르면, 성덕(聖德)에 어찌 조금이라도 보탬이 없겠습니까? 만약 최소하를 문신(文臣)이 아니라고 하여 경연에 두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크게 옳지 못합니다.

예전에 사악(四岳)이 순(舜)을 당(唐)나라 요(堯)임금에게 천거하였는데, ‘많이 배우고 글이 능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어리석고 어머니는 간악하며 상(象)은 거만한데, 점차로 착하게 인도하여 간악함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최소하의 부모가 어리석고 간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성이 능히 신(神)을 감동시켰는데, 하물며 부모이겠습니까? 능히 감화시켜서 간악함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상례(常例)에 구애되어 어진이를 버리겠습니까? 예전에 구슬 같은 문장으로 그 말을 크게 나타내던 자도 권세에 아부하여 좌천(左遷)된 자가 있고, 아려

誠, 上感天神, 夢有一人告小河曰: “燒生人指以進, 母病可瘳”, 卽斷其右手無名指燒進, 果有其效, 其母延齡, 至踰七旬。小河聞其母避疫, 移寓他所, 日夜憂思, 不食酒、肉, 其孝至矣。傳曰: “求忠臣於孝子之門”, 又曰: “孝者所以事君也。” 夫人之情, 一日不見善人, 則怠惰自滿之心生矣, 不聞善言, 則放僻邪侈之心入焉。臣竊謂, 以小河特任經筵官, 俾朝夕入侍左右, 見其人, 聞其行, 又以《小學》、《大學》之書, 講究體認, 以熙于光明, 則於聖德, 豈無小補? 若以小河爲非文臣, 不置經幄, 則有大不然。昔四岳薦舜於唐堯, 而不曰: ‘博學能文’, 而乃曰: ‘父頑母嚚象傲, 蒸蒸乂不格姦。’ 若使小河之父母有頑嚚之惡, 則其誠猶能感神, 而況於父母乎? 其爲能感而不格姦必矣。豈可徒拘於常例, 以蔽賢哉? 古有玉珮瓊琚大放厥辭者, 黨權而左遷, 雅麗精絕沆瀣生牙者, 執拗而誤國。經筵侍講, 乃輔養聖德之任, 苟無身修家齊之德, 則雖翰筆如流, 詞藻鏗鏘, 何足用哉? 宋程頤不舉進士, 哲宗用司馬光、呂公著、韓

	<p>정절(雅麗精絶)한 문장으로 강개(慷慨)하고 모가 난 자도 고집이 세어서 나라를 그르친 자가 있습니다. 경연에 시강(侍講)하는 것은 바로 성상의 덕을 돕고 기르는 것이 임무인데, 만약 심신(心身)을 닦고 집안을 다스리는 덕이 없으면, 비록 글씨가 물 흐르듯 하고 시문(詩文)의 문체가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어찌 족히 쓰겠습니까? 송(宋)나라 정이(程頤)는 진사(進士)에 합격하지 아니하였으나, 철종(哲宗)이 사마광(司馬光)·여공저(呂公著)·한강(韓絳)·주광정(朱光庭)의 추천으로써 하루아침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승정전 설서(崇政殿說書)에 임명하였으니, 이미 고사(故事)가 있습니다. 신은 불초(不肖)한 자로서 종적(宗籍)에 참여하여 천지(天地)의 생성(生成)하는 은혜를 입었으나 티끌만한 도움도 없었는데, 감히 구구(區區)한 작은 정성을 가지고 성충(聖聰)을 더럽힙니다. 《대학(大學)》 전(傳)에 이르기를, ‘어진이를 보고도 등용하지 아니하고, 등용하되 먼저 쓰지 아니하는 것은 태만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맹자(孟子)는, ‘상서롭지 못한 일에는, 어진이를 덮어두고 쓰지 아니하는 것도 해당된다.’고 하였으니, 엿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이 생각하여 굽어살피소서.”</p> <p>하였다. 원상(院相)들에게 의논하기를 명하니, 정인지(鄭麟趾)·정창손(鄭昌孫)·김질(金礪)·조석문(曹錫文)·윤자운(尹子雲)은 의견을 말하기를, “최소하가 비록 그 어머니에게 효도한 한 가지 절행(節行)이 있을지라도 채주와 덕이 경연에서 시종(侍從)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또 본조(本朝)에서는 문신(文臣)이 아니면 경연관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심원(深源)의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p> <p>하고, 신숙주(申叔舟)·홍윤성(洪允成)은 의견을 말하기를, “다른 관사(官司)로 옮겨서 제수하여 마땅한지를 시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명하여 다른 관사로 옮겨서 서용(敍用)하게 하였다.</p>	<p>絳、朱光庭之薦，一朝不疑，而充爲崇政殿說書，則已有故事矣。 臣以無似，忝預宗籍，蒙生成於天地，無裨補於涓埃， 敢將區區之微懇， 用塵聖聰。</p> <p>《大學》傳曰：‘見賢而不能學， 學而不能先， 慢也’， 孟子曰：‘不祥之實， 蔽賢者當之’， 伏願殿下潛心俯察焉。</p> <p>命議諸院相， 鄭麟趾、鄭昌孫、金礪、曹錫文、尹子雲議： “崔小河雖有孝母一節， 才德未必合經筵侍從。 且本朝， 非文臣不許經筵官， 深源之言， 不可從也。” 申叔舟、洪允成議： “移授他司， 試可爲便。” 命移敍他司。</p>
성종 52권, 6년(1475)	전교하기를,	○傳曰： “前年失農， 今年豐凶， 亦未

<p>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2월 23일(임인) 6번째기사</p>	<p>“지난해에 실농(失農)하였는데, 금년의 풍년·흉년을 또한 알지 못하니, 혼인(婚姻)·헌수(獻壽)와 늙고 병들어서 약으로 먹는 것을 제외하고, 공사(公私)에 술을 쓰는 것을 일체 모두 금단하라.” 하였다.</p>	<p>可知，除婚姻、獻壽、老病服藥外公私用酒，一皆禁斷。”</p>
<p>성종 52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2월 24일(계묘) 7번째기사</p>	<p>호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교를 받들어 보건대, ‘진언(陳言)하는 이가 있어 말하기를, 「양잠(養蠶)이 비록 중하기는 하나, 백성의 폐해(弊害)도 많습니다. 태인 도회(泰仁都會)의 폐해로써 말하면, 거기에 소용되는 술[鼎釜]·자리[薦席]·편모(編茅)·접박(簾箔)·질그릇단지[陶盆]·유기(柳器)·목반(木盤) 등의 물건은 연한을 정하여 거두어서 쓰고, 미두(米豆)·탄시(炭柴)·지지(紙地)·등유(燈油) 등의 물건은 해마다 거두어서 쓰므로 모두 백성의 힘에서 나오는데, 거두어 모을 때에 해당 관리가 이로 인하여 간사한 짓을 하니, 그 폐단의 첫째입니다. 누에가 나오면 추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1백 50간(間)의 잠실(蠶室)을 모두 온돌로 만들어서, 날마다 소용되는 땔나무[燒木]와 불피우는 숯[熾炭]의 수량이 매우 많이 드니, 그 폐단의 둘째입니다. 매년 농삿달에 근방 여러 고을의 백성을 부려서 잠실을 수리하게 하니, 그 폐단의 셋째입니다. 거기에 쓰는 집기(什器)를 삼가서 간수하지 아니하여 연한도 되지 않아서 문득 없어지므로 할 수 없이 또 <여러 고을에> 나누어 정해서 거두어 쓰니, 그 폐단의 넷째입니다.」라고 하였으니, 그 폐단을 구제할 방법을 의논하여서 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대전》을 자세히 살피건대 ‘여러 도(道) 가운데 뽕나무가 잘되는 곳에 잠실을 짓고, 관찰사가 본고을과 부근 여러 고을의 공천(公賤)으로써 인부를 요량하여 정한다.’라고만 기록하였고, 거기에 쓰이는 집기(什器)는 기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임시하여 준비하므로 폐단이 진실로 작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경중(京中)의 잠실의 예에 의하여 관찰사로 하여금 먼저 양잠할 잠종(蠶種)의 많고 적음을 살펴서 쓰는 집기를 요량해 정하고, 해마다 얻는</p>	<p>----- ----- ----- -- ○戶曹啓：“今承傳教：‘陳言者有言：「養蠶雖重，民弊亦多。以泰仁都會之弊言之，其所用鼎釜、薦席、編茅、簾箔、陶盆、柳器、木盤等物，則限年收用，米、豆、炭柴、紙地、燈油等物，則逐年收用，皆出於民力，其收合之際，該吏因緣爲奸，其弊一也。蠶生畏寒，故百五十間之室，皆作溫煖，逐日所用燒木·熾炭之數甚多，其弊二</p>

	<p>명주실[繭絲]의 정조(精粗)를 구분하고 다과(多寡)를 계산하여 수량을 조사해서 계달하게 하며, 여기에 의거하여 상벌(賞罰)을 논하도록 하소서. 또 잠실 1백 50칸이 있는데, 모두 짚으로 덮으므로 해마다 수리하는 데 백성들이 매우 괴로와합니다. 여러 고을에 별관(別館)이나 빈 관아(官衙)가 있으면 구들을 놓아서 옮겨 기르게 하여, 그 폐단을 덜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也。 每年農月， 旁近諸邑役民， 修葺室宇， 其弊三也。 其該用什器， 不謹藏守， 不待年限， 旋致亡失， 不得已又分定收用， 其弊四也。」 救弊之方， 其議以啓。’ 臣等參詳《大典》， 只錄， ‘諸道宜桑處， 置蠶室， 觀察使以本邑及附近諸邑公賤， 量定人糶’， 而不錄該用什器， 故臨時就辦， 弊實不貲。 請依京中蠶室例， 令觀察使， 先審所養蠶種多少， 量定該用什器， 逐年所取繭絲分精粗， 計多寡， 照數以啓， 憑論賞罰。 且蠶室百有五十間， 皆覆茅， 逐年修葺， 民甚苦之。 如諸邑有別館·空衙， 則作塊移養， 以除其弊。” 從之。</p>
<p>성종 52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2월 28일(정미) 1번째기사</p>	<p>대왕 대비(大王大妃)와 인수 왕대비전(仁粹王大妃殿)에 잔치를 올렸다. 대왕 대비가 승지들에게 전교하기를,</p> <p>“요즘 국가의 경사가 하나만이 아닌데 너희들이 마음과 힘을 다하였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인수 왕비는 나를 높이 추대하여 처음에는 당전(當殿)에서 책(冊)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였었는데, 이제서야 내 말을 마지못해 따라서 이 옥의(縟儀)를 행하였으니, 일국의 경사가 이보다 큰 것이 없다. 너희들에게 술을 하사하니, 극진히 즐기도록 하라.”</p> <p>하였다. 임금이 술과 풍악을 상시책관(上諡冊官)·진보관(進寶官)·진책관(進冊官) 및 종묘(宗廟)에 고한 집사(執事)에게 하사하고, 인하여 월산 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에게 전교하기를,</p>	<p>○丁未/進宴于大王大妃、仁粹王大妃殿。 大王大妃傳于承旨等曰：“近日國家慶事不一， 爾等盡心力， 予甚嘉之。 仁粹王妃推我爲尊， 初不欲當殿受冊， 今乃勉從我言， 行此縟儀， 一國之慶， 莫大於此。 賜爾等酒， 極歡乃已。” 上賜酒樂于上諡冊、進寶、冊、告宗廟執事， 仍傳于月山大君婷曰：“慶事已成， 不飲何爲？ 宜極醉歡， 各自起舞。”</p>

	<p>“경사로운 일을 이미 이루었으니, 마시지 아니하고 어찌 하겠소? 마땅히 극진히 취하고 즐기면서 각각 스스로 일어나서 춤을 추시오.” 하였다.</p>	
<p>성종 53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3월 17일(병인) 5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하여 아뢰기를, “실농(失農)한 여러 고을에 여러 가지 곡식의 종자 2천 1백 석(碩)을 주어 제때에 경작하도록 권장하고, 또 묵은 쌀 1천 2백 석과 해채(海菜)·염장(鹽醬)도 아울러 주어서 진휼(賑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據黃海道觀察使啓本啓: “失農諸邑給諸種穀二千一百碩, 令趁時勸耕, 又給陳米一千二百碩 並海菜、鹽醬, 賑恤何如?” 從之。</p>
<p>성종 53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3월 18일(정묘) 7번째기사</p>	<p>지난번에 윤대(輪對)한 자가 말하기를, “평안도(平安道)의 전세(田稅)는 해마다 영변(寧邊)과 안주(安州)에 수송하나, 창고(倉庫)가 없어 그대로 노적(露積)하고, 이웃 군민(郡民)들로 하여금 해마다 그것을 다시 덮게 하니, 민폐(民弊)가 적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백성을 사역(使役)시키는 것을 신중하게 여겨 창고를 지을 수 없다고 하지만, 만약 쌓아 놓은 곡식을 가지고 백성을 모집하여 고용해서 창고를 짓게 한다면, 백성들은 괴로워하지도 않을 것이니 쉽게 창고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그것을 호조(戶曹)에 회부하여 본도(本道)에 이문(移文)하여서 편부(便否)를 묻게 하였었다. 이때에 관찰사(觀察使) 정문형(鄭文炯)이 아뢰기를, “노적(露積)하는 곡식이 안주(安州)는 5만 7천 8백 40석(碩)인데, 60칸의 창고가 아니면 수용(收容)할 수가 없고, 영변(寧邊)은 3만 5천 8백 59석인데, 36칸의 창고가 아니면 역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당령 선군(當領船軍)5에게 재목(材木)을 취(取)하게 하고, 전일(前日) 노적을 덮을 때 동원되었던 여러 고을의 백성에게 기와를 굽고 창고를 짓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호조에서 여기에 의하여 아뢰기를, “안주·영변의 창고의 칸수와 역군(役軍)과 공장(工匠)을 모집하는 것과, 재목</p>	<p>○初輪對者言: “平安道田稅, 每年輸于寧邊、安州, 而因無倉庫皆露積, 令旁郡民, 逐年改覆, 民弊不貲。 國家重於役民, 未能營建倉庫, 若以所儲之粟, 募民傭力, 使赴功役, 則民不爲勞而功可易就矣。” 下戶曹, 移文本道, 問便否。 至是觀察使鄭文炯啓: “露積之穀, 安州則五萬七千八百四十碩, 倉庫非六十間, 不能容之, 寧邊則三萬五千八百五十九碩, 倉庫非三十六間, 亦不能容。 宜以當領船軍取材, 役前日露積蓋覆諸邑之民, 燔瓦營構爲便。” 戶曹據此啓: “安州、寧邊倉庫間數及抄軍募工, 鳩材、陶瓦等事, 請依觀察使所啓施行, 其匠人廩給, 依京中營繕例, 給兩時料, 燔瓦軍依瓦署例, 給一時料。” 從之。</p>

	<p>을 모으고 기와를 굽는 일 등은, 청컨대 관찰사의 계본(啓本)에 의하여 시행하고, 장인(匠人)의 급료(給料)는 서울의 영선(營繕)의 예(例)에 따라 두 끼[兩時]의 급료를 주고, 기와를 굽는 역군은 와서(瓦署)의 예에 의하여 한 끼[一時]의 급료를 주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성종 53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3월 22일(신미) 1번째기사</p>	<p>임금이 청계산(淸溪山)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겸사복(兼司僕) 조한신(曹漢臣)이 사슴을 쏘아 바치니, 즉시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에 바치라고 명하였다. 행차가 주정소(晝停所)에 이르자, 종친(宗親)·재상(宰相)을 불러 술을 하사하고, 향화(向化)한 첨지(僉知) 김과을다상(金波乙多尙)에게 겹의(袂衣) 1령(領)과 사슴[鹿] 1구(口)와 술 10병(瓶)을 하사하고, 또 사슴 2구(口)와 술 10병을 가지고 좌우상(左右廂)의 대장(大將)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또 농민에게도 술을 대접하라고 명하였다. 행차가 한강(漢江)에 이르자 큰 바람이 일어났는데, 승지(承旨) 등을 불러서 이르기를,</p> <p>“오늘 바람이 사나워서 군사들이 물을 건너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좌우상(左右廂)으로 하여금 진(陣)을 치고 유숙(留宿)하게 하였다가 만약 바람이 멎으면 건너도록 하되, 편의에 따라 호송하며 건너도록 하라.”</p> <p>하였다.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중관(中官)을 보내어 청하기를,</p> <p>“바람이 매우 사나우니, 누선(樓船)은 타지 마십시오.”</p> <p>하니, 임금이 이에 방선(方船)을 타고 건너 해가 저물어서야 환궁(還宮)하였다.</p>	<p>○辛未/上觀獵于青溪山。 兼司僕曹漢臣射鹿以進，卽命獻于大王大妃殿。 駕至晝停， 召宗宰賜酒， 賜向化僉知金波乙多尙袂衣一領、鹿一口、酒十瓶， 又以鹿二口、酒十瓶分賜左、右廂大將， 又命饋農民酒。 駕至漢江， 大風作， 召承旨等曰：“今日風亂， 軍士渡涉爲難。 令左、右廂結陣留宿， 若風定可渡， 隨宜護涉。” 大王大妃遣中官請曰：“風甚亂， 毋御樓船。” 上乃御方舟以渡， 日暮還宮。</p>
<p>성종 54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4월 3일(신사) 7번째기사</p>	<p>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p> <p>“강원도(江原道)의 울진포 만호(蔚珍浦萬戶) 하민(河泯)이 군수염(軍需鹽)을 가지고 밀[眞麥]·들깨[荏子]·명주[綿紬]와 바꾸어 사사로이 써버린 죄는, 율(律)이 장(杖) 90대에 ‘도관물(盜官物)’ 3자를 자자(刺字)하는 데에 해당되니,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하여 장안(贓案)에 기록하게 하소서.”</p> <p>하였다. 임금이 이에 따랐으나, 자자(刺字)는 면제하게 하였다.</p>	<p>○刑曹啓：“江原道蔚珍浦萬戶河泯用軍需鹽， 易眞麥、荏子、綿紬私用罪， 律該杖九十、刺盜官物三字， 依《大典》， 錄贓案。” 從之， 命除刺。</p>

<p>성종 54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4월 4일(임오) 1번째기사</p>	<p>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집의(執義) 이형원(李亨元)과 헌납(獻納) 윤현손(尹顯孫)이 아뢰기를, “민발(閔發)과 임원준(任元濬)은 대신으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너’라고 부르며 서로 헐뜯고 꾸짖고 하였으니, 소관(小官)도 오히려 하지 못할 일인데, 하물며 대신이겠습니까? 청컨대 추국(推鞠)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장기를 두고 술을 마시다가 농담한 것이지,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는가?” 하였다. 이형원(李亨元)이 말하기를, “술 마시고 장기 두면서 한 농담이 아닙니다. 어찌 다른 뜻이 없었겠습니까?” 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壬午/受常參，視事。執義李亨元、獻納尹顯孫啓曰：“閔發、任元濬以大臣，於廣坐中，稱爾汝，相詬罵，在小官猶不可，況大臣乎？請鞠之。”上曰：“因博奕飲酒而戲謔耳，有何情乎？”亨元曰：“非因酒博而戲言也。豈無其情？”不聽。</p>
<p>성종 54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4월 8일(병술) 2번째기사</p>	<p>(…) 허계(許誠)가 또 아뢰기를, “요사이 날씨가 가물 징조가 있는데, 지금 비록 비가 온다 하여도 보리와 밀 농사는 이미 기대할 것이 못됩니다. 청컨대 술을 금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금주령(禁酒令)을 내린다 하여도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를 범하여 불기를 맞을 뿐일 것이다.” 하고, 이어서 영사(領事) 신숙주(申叔舟)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므로,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비록 금주(禁酒)한다 하더라도 술 한 병 정도 가지는 것은 금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날씨를 보아서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p>	<p>(…) 許誠又啓：“近日氣候，似有旱徵，今雖雨，兩麥已無望矣。請禁酒。”上曰：“雖設酒禁，愚民觸犯，枉被箠楚而已。”仍謂領事申叔舟曰：“何如？”叔舟對曰：“雖禁酒，如持一瓶酒者，勿禁爲便。”上曰：“更觀氣候而處之。”</p>
<p>성종 54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p>	<p>임금이 호조(戶曹)에 전교하여 각전(各殿)의 향(香)과 술[醕]을 임시로 줄이게 하였다.</p>	<p>○戊子/傳于戶曹，各殿香醕，其權除之。</p>

<p>11년) 4월 10일(무자) 1번째기사</p>		
<p>성종 54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4월 22일(경자) 3번째기사</p>	<p>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농사철이 바야흐로 한참인데 한 달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으니, 마땅히 두 려워 하고 반성하여 하늘의 꾸짖음에 답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상참(常 參)·조참(朝參)·조하(朝賀)를 정지하고, 정전(正殿)을 피하고,5125) 음악을 철 폐하고, 일상의 반찬을 줄이고 저자[市肆]를 옮기도록 하라.” 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農務方殷，而彌月 不雨，宜恐懼修省，以答天譴。自今 停常參、朝參、朝賀，避正殿，撤懸 樂，減常膳，移市肆。”</p>
<p>성종 54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4월 23일(신축) 14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전교(傳敎)를 받아 보니, ‘운대자(輪對者)의 말에, 「왜사(倭使)가 삼 포(三浦)에 도착하면 그곳의 수령(守令)이 서계(書契)를 살펴 보아 감사(監司) 에게 보고 하고, 감사에게서 말[馬]을 내어주어도 좋다는 문서가 오기를 기다 렸다가, 그것이 도착한 후 요미(料米)를 주고 5일 동안 머물게 하였다가 서울 로 보냅니다. 5일로 기한을 정한 것은 식량(食糧)을 허비하지 말자는 것입니 다. 다만 경상도(慶尙道)는 사방이 험하고 멀어서 문서가 왕복하는 기한이 열 흘이나 한달 가량 걸리고 따라서 식량이 허비되므로, 그 폐단은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니, 그 일을 상의하여 아뢰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상세히 살펴보니, 왜사(倭使)가 포구(浦口)에 도착하여 머물 동안에 허 비하는 것이 진실로 운대(輪對)한 사람의 말과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특송 왜 사(特送倭使) 이외에 약조(約條)에 의하여 해마다 보내오는 왜선(倭船)은 수령 (守令)과 그곳 절제사(節制使)가 서계(書契)를 상고하고 도서(圖書)를 대조하 여, 만약 거짓이 아니면 곧 역마(驛馬)를 타고 상경하게 함과 동시에 감사(監 司)에게 보고하도록 하소서. 다만 왜사(倭使)가 삼포(三浦)에 나누어 머물러서 문서를 보내어 질문하지 않고는 정수(定數) 이외의 선박 수를 조사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그들이 서울로 출발하기 이전에 삼포(三浦)에서 서로 조회·조사 하여 약조에 정해진 수(數)만을 서울로 보내도록 하소서.”</p>	<p>○禮曹啓：“今承傳敎：‘輪對者有言： 「倭使到三浦，則所在守令考書契，報 監司，待監司發馬文字，到後給料，留 五日上送。其定五日限者，欲其不費 糧也。但慶尙道四履阻遠，文移往復 之間，動經旬月，糧料從以虛費，其弊 不可不救。」其商議以啓。’臣等參 詳，倭使到浦，稽留虛費，誠如輪對之 言。今後特送倭使外，歲約倭船，守 令同節制使，考書(啓) [契]，驗圖書， 若無詐僞，即令乘驛上京，兼報監司。 但倭使分泊于三浦，如不文移質問，則 數外之船，難以審知，其未登途之前， 三浦互相驗問，一依歲約之數上送。” 從之。</p>

<p>성종 54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4월 30일(무신) 2번째기사</p>	<p>하니, 임금(上)이 그대로 따랐다. (…) 임금(上)이 원상(院相)에게 묻기를, “장단(長湍) 등의 고을은 비가 흡족하게 왔는데, 정말 그러한가?” 하니, 신숙주(申叔舟) 등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요즈음의 가뭄은 강원도·황해도의 두 도가 더욱 심하고 남쪽 지방은 그다지 심하지 않아서, 논에는 큰 손해가 없고, 다만 보리와 밀이 거의 마르게 되었으나, 며칠 전의 비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上)이 말하기를, “무인(武人)을 천거받아 자질에 따라서 임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신숙주(申叔舟)가 말하기를, “죄없이 산직(散職)에 있는 사람은 다시 임용하여도 무방합니다.” 하였다. 활쏘기가 끝난 다음 승자와 패자를 나누어 승자에게 각각 활[弓] 1장(張)씩을 하사하고, 염목(廉穆)에게는 특별히 착전(錯箭) 1부(部)를 내려 주었다.</p>	<p>(…)上問院相曰：“長湍等邑，雨澤頗洽，然乎？”叔舟等對曰：“然。近日之旱，江原、黃海兩道尤甚，南方則旱未甚，水田無大損，且兩麥幾槁，賴日者之雨，旋已蘇矣。”上曰：“徵薦武人，隨材錄用，何如？”叔舟曰：“無罪而散者用之，何妨？”射畢，分勝負，賜勝者弓各一張，特賜廉穆錯箭一部。</p>
<p>성종 55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5월 8일(병진) 3번째기사</p>	<p>도승지(都承旨) 신정(申靜)이 아뢰기를, “이제 바야흐로 하교(下敎)하여 민폐를 없애려 하시는 때에, 신이 듣건대 전생서(典牲署)·사축서(司畜署) 등의 돼지가 먹을 지게미·쌀겨[槽糠]를 매달 성안의 호구(戶口)마다 한 말씩 거두고 성밑 10리의 호구마다 서 말씩 거둔다고 합니다. 이것이 비록 작은 일 같기는 하나 그 원망은 작지 않으니, 청컨대 호조로 하여금 기르는 수를 헤아려서 배정하여 거두어들이는 절목(節目)을 상의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都承旨申靜啓曰：“今方下教，欲祛民瘼，臣聞典牲、司畜等署猪食槽糠，每月城中戶收一斗，城底十里戶收三斗。雖若小事，其怨不細，請令戶曹計畜養之數，分定收納節目，商議以啓。”從之。</p>
<p>성종 55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5월 24일(임신) 2번째기사</p>	<p>사옹원 도제조(司饗院都提調) 김질(金磧)·도승지(都承旨) 신정(申靜)이 아뢰기를, “이제 우택(雨澤)이 이미 흡족하니, 청컨대 찬선(饌膳)을 다시 들도록 하소서.”</p>	<p>○司饗院都提調金磧、都承旨申靜啓曰：“今雨澤既洽，請復膳。”不許。</p>

	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성종 56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6월 21일(무술) 3번째기사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신속주의 〈상(喪)에〉 부의로 쌀·콩 아울러 1백 석, 종이 1백 50권, 백정포(白正布) 20필, 백면포(白綿布) 20필, 백저포(白苧布) 10필, 정포 50필, 석회 50석, 청밀(淸蜜) 1석, 황랍(黃蠟) 30근을 하사하게 하였다.	○傳旨戶曹，賜申叔舟粳米、豆并一百碩，紙一百五十卷，白正布二十四，白綿布二十四，白苧布一十四，正布五十四，石灰五十碩，淸蜜一碩，黃蠟三十斤。
성종 57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7월 12일(기미) 3번째기사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정신석(鄭臣碩)과 김용보(金用寶)를 오게 해서 면질(面質)하도록 청합니다.” 하니,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정신석(鄭臣碩)은 전교(傳敎)를 받들어 부정(不正)을 적발했는데도, 죄수(罪囚)와 빙문(憑問)하는 일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정신석(鄭臣碩)을 승정원으로 불러 와서 묻도록 하니, 정신석이 아뢰기를, “김용보(金用寶)는 거도선(居刀船) 1척(隻)마다 각기 쌀 4, 5석(碩)과 죽피 방석(竹皮方席)·피죽 상자(皮竹箱子)·대죽 초둔(大竹草苴) 등 물건을 신고서 김포(金浦)에 정박(停泊)하여 고양(高陽)에 있는 자기 첩(妾)의 집에 보내어 마당가에 쌓아 두었는데, 이 일은 첨지(僉知) 심응(沈膺)에게서 들었습니다. 김용보(金用寶)는 남포(藍浦)에 도착해서는 성문(城門)이 닫힌 것을 분개하여 현령(縣令)의 군관(軍官)을 가두니, 현령(縣令)이 노하여 김용보의 역마(驛馬) 4필로써 잡물(雜物)을 함부로 신고, 또 2명의 여노(女奴)에게 남자 옷을 입혀 그대로 말을 타고 가서 관찰사(觀察使)에게 보고하려고 하다가 중지(中止)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신(臣)의 아들 충량(忠良)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臣)이 함께 기록하여 이를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심응(沈膺)을 불러서 이를 물어보겠다.” 하였다.	○義禁府啓：“請致鄭臣碩與金用寶面質。” 戶曹啓曰：“臣碩承傳擲奸，而與罪囚憑問未便。” 命召臣碩于承政院問之，臣碩啓之：“用寶於居刀船每一艘，各載米四五碩·竹皮方席·皮竹箱子·大竹草苴等物，泊於金浦，輪於高陽妾家，積在場邊，此事則聞之於僉知沈膺處。 用寶到藍浦，憤城門閉，囚縣令軍官，縣令怒，以用寶驛馬四匹，濫載雜物，又使二女奴，着男服仍騎，欲報觀察使而中止。 此事則聞之於臣子忠良，故臣竝錄啓之。” 傳曰：“召沈膺問之。”

<p>성종 57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7월 13일(경신) 2번째기사</p>	<p>심응(沈膺)이 부름을 받고 와서 아뢰기를, “지난 5월 보름 때에 신(臣)이 김포(金浦)의 농사(農舍)에 가서 조선(漕船) 5, 60척(隻)이 포구(浦口)에 정박(停泊)한 것을 보고서 신(臣)이 조선 지로감고(漕船指路監考)에게 묻기를, ‘사방에서 운반한 조선이 한 곳에 와서 정박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감고(監考)가 대답하기를, ‘이 곳에 경차관(敬差官)의 집이 있으므로 이 곳에 모였습니다.’고 했습니다. 때마침 거도선(居刀船) 10여 척이 김용보(金用寶) 집으로부터 왔는데, 감고(監考)가 말하기를, ‘배 1척마다 모두 죽피 방석(竹皮方席)과 대죽 초둔(大竹草蓆) 등의 물건을 싣고 경차관(敬差官)의 집에 운반해 바쳤고, 쌀가루[米淸]도 실어가지 않은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臣)이 호조 참판(戶曹參判) 김양경(金良瓚)과 겸판서(兼判書) 조석문(曹錫文)에게 말했습니다만, 그 ‘거도선(居刀船) 1척마다 쌀 4, 5석(石)을 싣고 있었다는 말과 피죽 상자(皮竹箱子)·죽피 방석(竹皮方席)·대죽초둔(大竹草蓆) 등의 물건이 김용보(金用寶) 첩(妾)의 집 마당가에 쌓여 있었다는 말은 신(臣)은 사실 말하지 않았으니, 지로감고(指路監考)에게 묻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지로감고(指路監考)에게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p>	<p>○沈膺承召來啓曰：“去五月望時，臣(利) [往] 金浦農舍，見漕船五六十艘泊於浦口，臣問漕船指路監考曰：‘四運漕船，一處來泊何耶?’ 監考曰：‘此地有敬差官(宗) [家]，故會此耳。’ 適居刀船十餘艘，從用寶家來，監考言：‘每一船，皆載竹皮方席、大竹草蓆等物，輸納於敬差官家，米淸亦不無輸納。’ 故臣言於戶曹參判金良瓚及兼判書曹錫文，其云居刀船每一艘，載米四五石之言及皮竹箱子、竹皮方席、大竹草蓆等物，用寶妾家場邊積在等語，臣實不言，請問指路監考。” 傳曰：“問指路監考以啓。”</p>
<p>성종 57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7월 23일(경오) 8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예종(睿宗)의 봉보 부인(奉保夫人) 김씨(金氏)에게 부의(賻儀)로 쌀·콩 함께 50석(碩), 종이 1백 권, 정포(正布) 40필, 백저포(白苧布) 3필과 관곽(棺槨)을 하사(下賜)하게 하였다.</p>	<p>○傳旨戶曹，賜睿宗奉保夫人金氏賻米·豆并五十碩、紙一百卷、正布四十四、白苧布三匹及棺槨。</p>
<p>성종 57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7월 26일(계유) 8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좌부승지(左副承旨) 김영건(金永堅)의 어머니에게 부의(賻儀)로 쌀·콩 함께 15석(碩)과 종이 70권을 하사(下賜)하도록 하였다.</p>	<p>○傳旨戶曹，賜左副承旨金永堅母賻米·豆并十五碩、紙七十卷。</p>

성종 57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7월 28일(을해)
1번째기사

이조 참판(史曹參判) 이서장(李恕長)을 보내어 표문(表文)을 받들고 북경(北京)에 가서, 건주위(建州衛)에 칙서(勅書)를 내려 사로잡아간 사람과 가축(家畜)을 돌려주게 한 일을 사례(謝禮)하게 했는데, 백관(百官)들이 표문(表文)에 배례(拜禮)하기를 의식(儀式)대로 하였다. 그 표문(表文)에 이르기를,
“황제의 덕이 크게 베풀어져, 먼 지방을 편안히 위무(慰撫)함에 돈독하였네. 황제의 은혜가 널리 미쳐지니, 감격하여 명심(銘心)함이 더욱 증가했네, 전전긍긍(戰戰兢兢)함을 어찌 소홀히 하겠습니까? 황제의 덕을 백성에게 선포함을 삼가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폐복(敝服)은 지경이 더러운 오랑캐와 연결(連接)해 있습니다. 지난번에 침범이 서로 잇달음을 만나서, 감히 사유(事由)를 갖추어 주문(奏聞)했던 것입니다. 어찌 황제의 감식(鑑識)이 세상의 정세(情勢)를 널리 살필 줄 생각했겠습니까? 사나운 풍속을 타일러서 전쟁을 그치게 하고, 또한 부로(俘虜)를 돌려주도록 했으며, 소방(小邦)의 방비를 잊은 것을 염려하여 봉강(封疆)을 튼튼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없이 여김이 이와 같음은 전고(前古)에 드문 일입니다. 삼가 황제 폐하(皇帝陛下)께서는 인덕(仁德)이 하늘처럼 깊으시고, 교화(教化)가 땅과 같습니다. 사해(四海)를 대하기를 일가(一家)와 같이 하고, 만민(萬民)을 보호하기를 적자(赤子)와 같이 하여, 마침내 먼 변방(邊方)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私情)을 입도록 하시니, 신(臣)은 마땅히 변방(藩邦)에서 그 덕을 선양(宣揚)하며, 편안히 다스리는 직책에 더욱 근실(勤實)히 하고, 강녕(康寧)과 수고(壽考)로서 칭송하고 기도(祈禱)하는 정성을 배나 펴겠습니다.”
하고, 그 방물표(方物表)에 이르기를,
“천자(天子)의 권애(眷愛)가 자상하고 깊어서, 가없이 여겨 구휼(救恤)함을 곡진하게 베푸시니, 토산물(土產物)이 비록 약소(略少)하지마는, 애오라지 정성을 표시합니다. 삼가 황세저포(黃細苧布) 20필, 백세저포 2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50필, 황화석(黃花席) 10장(張), 만화석(滿花席) 10장, 만화방석(滿花

○乙亥/遣史曹參判李恕長, 奉表如京師, 謝降勅建州衛諭還搶擄人畜, 百官拜表如儀。 其表曰:
帝德誕敷, 庸篤綏撫。 睿恩覃被, 采增感銘。 戰兢何堪? 對揚攸謹。 念惟敝服, 境連醜戎。 頃值寇竊之相仍, 敢將事由而具奏。 豈圖宸鑑旁燭物情? 諭獷俗而戢兵, 且還俘虜, 慮小邦之忘備, 俾固封疆。 矜憐若茲, 前古所罕。 伏遇皇帝陛下, 仁深覆育, 化侔生成。 視四海猶一家, 保萬民如赤子, 遂令遐裔, 獲霑殊私, 臣謹當于藩于宣, 益勤保釐之職, 曰康曰壽, 倍伸頌禱之誠。
其方物表曰:
天眷悉深, 曲加矜恤, 土宜雖薄, 聊表忱誠。 謹備黃細苧布二十四、白細苧布二十四、黑細麻布五十四、黃花席一十張、滿花席一十張、滿花方席一十張、雜彩花席一十張、人參一百斤、松子二百斤, 右件物等, 製造匪精, 名般亦尠, 冀諒由中之懇, 儻容享上之儀。 皇太后紅細苧布一十四、白細苧布一十四、黑細麻布二十四、滿花席一十張、雜彩花席一十張, 中宮紅

	<p>方席) 10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인삼(人蔘) 1백 근(斤), 송자(松子) 2백 근을 갖추었는데, 위의 물건(物件)들은 제조(製造)가 정세(精細)하지 못하고 명목(名目)도 또한 적지마는, 중심(中心)에서 나오는 정성임을 헤아려서, 황제에게 드리는 의식(儀式)을 용납해 주소서. 황태후(皇太后)에게는 홍세저포 10필, 백세저포 10필, 흑세마포 20필, 만화석 10장(張), 잡채화석 10장을 올리고, 중궁(中宮)에게는 홍세저포 10필, 백세저포 10필, 흑세마포 20필, 만화석 10장, 잡채화석 10장을 올립니다.” 하였다.</p>	<p>細苧布一十四、白細苧布一十四、黑細麻布二十四、滿花席一十張、雜彩花席一十張。</p>
<p>성종 58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8월 3일(기묘) 2번째기사</p>	<p>사직서(社稷署)에서 복주(福酒)를 올리니, 한 병[壺]을 승정원(承政院)에 내리고 이내 전교(傳敎)하기를, “그대들이 함께 이 술을 맛보아라. 술맛이 나쁜 것이 이와 같으니, 이를 제사에 쓸 수 있다고 하겠는가?” 하니, 승지(承旨) 등이 아뢰기를, “술맛이 매우 나쁘니, 마땅히 봉상시(奉常寺)의 관리를 국문(鞫問)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도승지(都承旨) 유지(柳淸)는 아뢰기를, “청컨대 주서(注書)를 보내어 봉상시(奉常寺)에서 각 제사(祭祀)에 봉(封)하여 올린 술을 살펴보도록 하소서.” 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이를 살펴본 후에 각기 조금씩을 내어 가지고 오도록 하라.” 하였다. 주서(注書) 이창신(李昌臣)이 가서 살펴보니, 그 맛이 나쁜 것은 곧 묵은 술[陳煮酒]이었으며, 새로 빚은 술은 맛이 좋은 것이 있었다. 이창신이 이런 사유를 아뢰니, 봉상시(奉常寺)의 관리를 의금부(義禁府)에 내려서 이를 국문(鞫問)하도록 명하였다.</p>	<p>○社稷署進福酒，下一壺于承政院，仍傳曰：“爾等共嘗之。味惡如是，謂之行祭乎？”承旨等啓曰：“味甚惡，宜鞫奉常寺官吏。”都承旨柳淸啓曰：“請遣注書，審視奉常寺各祭封進酒。”傳曰：“審視後，各出少許齋來。”注書李昌臣往視之，其味惡者，乃陳煮酒也，有新釀酒味好。昌臣以啓，命下奉常官吏于義禁府鞫之。</p>
<p>성종 58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p>	<p>예문관 봉교(藝文館奉敎) 안진생(安晉生) 등이 아뢰기를, “유생(儒生)들이 처음 과거(科擧)에 오르면 사관(四館)에 나누어 속(屬)하게</p>	<p>○藝文館奉敎安晉生等啓曰：“儒生初登科第，分屬四館，有許參、免新之</p>

<p>11년) 8월 4일(경진) 3번째기사</p>	<p>하고 허참(許參)·면신(免新)의 예절이 있으며 한림별곡(翰林別曲)을 본관(本館)의 모임에 노래하는 것은 옛부터 내려오는 풍속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새로 된 검열(檢閱) 조위(曹偉)가 연회(宴會)를 베풀어 신(臣) 등을 맞이했는데, 음식 중에는 금지된 고기가 있었으며, 또 기생(妓生)과 공인(工人) 등이 장고(杖鼓)·피리[笛]·필률(臠簫)을 가지고 왔기에, 신(臣) 등이 다만 그들로 하여금 필률(臠簫)만 불고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튿날 음악 소리가 대궐 안에 까지 들리는 것이 있기에 곧 자수(自首)하도록 했으나, 필률(臠簫)과 노래는 그 소리가 반드시 먼 곳까지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시일을 지체하면서 감히 알리지 못했습니다. 신(臣) 등은 비록 품계(品階)는 낮지마는 경연(經筵)에 가까이 모시고 있으므로 외관(外官)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비록 출사(出仕)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이런 큰 죄를 범하고서 뻔뻔스럽게 입시(入侍)한다는 것은 마음에 실로 편안하지 못합니다.”</p> <p>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속을 누가 이를 그치게 하겠는가? 다만 한재(旱災)로 인하여 술을 금하게 하였는데도 그대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모여서 마시고 금하는 고기까지 먹었으니 옳지 못한 일이다. 비록 북을 치고 피리를 불지 않았더라도 필률(臠簫)을 불고 또 노래를 불렀다면, 또한 음악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사관(史官)은 군주(君主)의 과실을 기록하는데, 어찌 마땅히 이와 같이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집에 있을 필요는 없으니 나와서 근무(勤務)하라.”</p> <p>하였다.</p>	<p>禮, 翰林別曲歌於本館之會, 古風也。故新檢閱曹偉設宴邀臣等, 饌中有禁肉, 且妓、工人等齋杖鼓·笛、臠簫而來, 臣等但使吹臠簫唱歌。 (翼) [翌] 日聞有樂聲徹闕內, 卽欲自首, 以臠簫與歌, 其聲必不及遠, 遷延不敢。 臣等雖秩卑, 昵侍經筵, 非外官之比。 雖命出仕, 犯此大罪, 覩然入侍, 心實未安。” 傳曰: “古風, 誰令止之? 但因旱禁酒, 而爾輩恬然會飲, 至食禁肉, 不可。 雖不擊鼓吹笛, 而吹臠簫且歌, 則亦不可謂不作樂也。 史官記人君過失, 豈宜如是? 然不須在家, 其出仕。”</p>
<p>성종 58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8월 7일(계미) 4번째기사</p>	<p>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제용감 주부(濟用監主簿) 조구서(曹九敍)가 술을 금할 때에 김승경(金升卿)을 그 집에 청해 와서 유밀과(油蜜果)와 금하는 고기를 장만하고 준비하여 모여서 술을 마셨으며, 또 기생과 공인(工人)을 불러와서 음악을 울려 소리가 대</p>	<p>○司憲府啓: “濟用監主簿曹九敍, 禁酒時請致金升卿等于其家, 油蜜果禁肉備辦會飲, 又招妓、工人, 動樂於聲徹闕內。 奉常正金升卿、濟用監正宋哲</p>

	<p>궐 안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봉상시 정(奉常寺正) 김승경(金升卿)·제용감정(濟用監正) 송철산(宋哲山)·사옹원 정(司饗院正) 김익령(金益齡)·종부시 정(宗簿寺正) 이수치(李壽稚)·사재감 부정(司宰監副正) 정효종(鄭孝終)·훈련원 부정(訓練院副正) 심안인(沈安仁)·사도시 첨정(司導寺僉正) 이종연(李宗衍)·예조 좌랑(禮曹佐郎) 남제(南悌)·형조 좌랑(刑曹佐郎) 홍석보(洪碩輔)는 사리(事理)를 아는 조사(朝士)로써 금령(禁令)을 무릅쓰고 조구서(曹九叙)의 집에서 모여 술을 마셨는데, 남제는 해당 낭관(郎官)으로서 어전(御前)의 재기(才妓)와 공인(工人)을 함부로 보냈으며, 이수치와 정효종은 추핵(推覈)을 모피(謀避)하고는 몽롱(朦朧)하게 하직 숙배(下直肅拜)했으며, 홍석보(洪碩輔)는 항거하면서 복죄(服罪)하지 아니하였으니, 조구서·이수치·정효종은 율(律)이 장(杖) 1백대와 도형(徒刑) 3년에 처하고 고신(告身)을 다 빼앗는 데에 해당되며, 남제와 홍석보는 장(杖) 80대에 속전(贖錢)을 바치게 하고 고신(告身) 3등을 빼앗는 데 해당되며, 김승경·송철산·김익령·심안인·이종연은 장(杖) 70대에 속전(贖錢)을 바치게 하고 고신(告身) 2등을 빼앗는 데 해당됩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명하여 조구서(曹九叙)는 장형(杖刑)은 면제시켜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도록 하고, 이수치(李壽稚)와 정효종(鄭孝終)은 도형(徒刑)과 장형(杖刑)을 면제시키고, 남제(南悌)는 장형(杖刑)을 면제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서반(西班)에 보내도록 하였다.</p>	<p>山、司饗院正金益齡、宗簿寺正李壽稚、司宰監副正鄭孝終、訓練院副正沈安仁、司(導)〔嚮〕寺僉正李宗衍、禮曹佐郎南悌、刑曹佐郎洪碩輔，以識理朝士，冒禁群飲於九叙家，悌以當該郎官，擅送御前才妓工人，壽稚、孝終謀避推覈，矇矓下直肅拜，碩輔抗拒不服，九叙、壽稚、孝終律該杖一百徒三年，告身盡奪，悌、碩輔杖八十贖奪告身三等，升卿、哲山、益齡、安仁、宗衍杖七十贖奪告身二等。”從之。命九叙除杖外方付處，壽稚、孝終除徒杖，悌除杖，餘皆送西。</p>
<p>성종 58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8월 19일(을미) 6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교(傳敎)를 받으니, ‘폐해를 진술하는 사람이 청하기를, 「평안도(平安道)는 서쪽으로는 중국(中國)과 통하고 북쪽으로는 야인(野人)과 인접(隣接)하였으므로 영송(迎送)과 비어(備禦)에 공사간(公私間)에 비용을 써 없앤 것이 다단(多端)합니다. 근년(近年) 이래로 수로(水路)가 비로소 통하여 상고(商賈)의 선박(船舶)이 왕래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물화(物貨)를 많이 가지고 와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이고 호려서 전매(轉賣)하여 곡식을 무역(貿易)하니, 백</p>	<p>○戶曹啓：“今承傳敎：‘陳弊者有請：「平安道西通上國，北隣野人，迎送備禦，公私(麩)〔糜〕費多端。比年以來，水路始通，商船賈舶絡繹不絕，多齎物貨，誑惑愚民，轉販貿穀，民無遠慮，罄竭所儲而與之。江邊防戍，遼東迎送，贏糧而出者蓋寡，專仰義倉之</p>

	<p>성들은 원려(遠慮)가 없기 때문에 저축한 것을 다 털어내어 이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압록강(鴨綠江)가의 국경 방비와 요동(遼東)의 영접하고 전송하는 데에 양식을 싸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대개 적은 편이며, 오로지 의창(義倉)의 곡식만 의뢰하고 있으니, 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은 일체 금단하소서。」하였다.’고 했습니다. 신 등이 자세히 참고해 보건대, 근년(近年)에 장사하는 무리들이 물건을 팔아 이익을 늘려서 배로 서울에까지 운반하므로 민간의 곡식이 거의 다 없어지니, 진실로 큰 폐단입니다. 지금부터 후에는 상인(商人)의 배는 금절(禁絶)시켜 왕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곡식 팔기를 몰해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할 지역의 수령(守令)은 파출(罷黜)시키고, 그 장사를 하여 같이 이익을 얻은 사람과 주인(主人)은 제서유위율(諸書有違律)로써 논죄(論罪)하고, 선척(船隻)과 가진 물화(物貨)는 모두 관청에서 몰수(沒收)하도록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粟，實非細故。自今興利之人，一切禁斷。」’ 臣等參詳，近年商賈之徒，販物興利，船運于京，而民間之穀殆盡，誠爲巨弊。今後禁絶商船，勿令往來，如有潛行鬻販者，所在守令罷黜，其行商同利人及主人，論以制書有違律，船隻及所齎物貨竝沒官。” 從之。</p>
출처	내용	원문
<p>성종 59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9월 1일(정미) 2번째기사</p>	<p>호조 겸판서(戶曹兼判書) 조석문(曹錫文)·판서(判書) 이극증(李克增)이 아뢰기를,</p> <p>“강원도(江原道)는 장차 양전(量田)을 행하려 하는데, 본도(本道)의 감사(監司)가 치계(馳啓)하기를, ‘도내(道內)의 화곡(禾穀)이 동풍(東風)에 상(傷)하여 절반은 결실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 등은 듣건대, ‘경상(慶尙)·영안(永安) 두 도(道)와 강원(江原) 영동(嶺東)의 백성은 모두 동풍을 기뻐한다.’ 하니, 동풍으로 화곡을 무실(茂實)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동풍이 곡식을 상하게 한다면 경상(慶尙)·영안(永安) 두 도(道)도 또한 재상(災傷)을 입었을 것인데, 이제 두 도의 계본(啓本)을 보면 환곡이 무성(茂盛)하였다고 일컬었으니, 어찌 홀로 강원도만이 재해를 입었겠습니까? 감사(監司)가 아뢴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는 금년에 양전(量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또 감사가 이르기를, ‘영서(嶺西)는 풍채(風災)가 없으니, 그만둘 수가</p>	<p>○戶曹兼判書曹錫文、判書李克增啓曰：“江原道將行量田，本道監司馳啓云：‘道內禾穀爲東風所傷，爲半不實。’ 臣等聞：‘慶尙、永安兩道及江原嶺東之民，皆喜東風’，以東風能使禾穀茂實也。假令東風傷稼，則慶尙、永安兩道亦以爲災矣，今見兩道啓本，稱禾穀茂盛，何獨江原道爲災乎？監司所啓，未可信也。江原道今年量田，不可不爲也。且監司啓云：‘嶺西無風災，無已則先量嶺西田，何如？’” 上曰：“然則量田不可停也。” 仍下傳</p>

	<p>없으면 먼저 영서의 전답을 측량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양전(量田)은 정지할 수가 없다.” 하고, 이어서 호조(戶曹)에 전지(傳旨)를 내렸다.</p>	<p>旨于戶曹。</p>
<p>성종 59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9월 4일(경술) 5번째기사</p>	<p>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정괄(鄭恬) 등이 차자(劄子)를 올리기를, “신 등은 듣건대, 윤대(輪對)를 설치한 것은 하정(下情)을 통달하여서 중선(衆善)을 취하는 것이라 하니, 그 말하는 것이 비록 다 옳지 못하더라도 또한 반드시 다 버릴 수 없는 것이며, 날마다 접견(接見)하여도 오히려 아름다운 말이 숨겨질까 두렵습니다. 이제 15일에 한 번 윤대하게 함으로써 항식(恒式)을 삼는 것은 언로(言路)를 널리 개방하고 사람들에게서 선(善)을 취하기를 좋아하는 도리[道]에 심히 그릇되니, 원컨대 구례(舊例)를 따라 행하소서. 또 양전(量田)은 전제(田制)를 균등하게 하고 공부(貢賦)를 한결같이 하는 것이니 진실로 좋은 법이지만, 강원(江原) 1도(道)가 있는 곳은 모두 고산 대천(高山大川)이라서 전지는 적고 척박하며 백성은 드물고 가난한데다, 그 생계를 자뢰하는 것은 오로지 도토리[橡栗]만을 바라보고 있으니 진실로 가궁(可矜)합니다. 양전과 부세를 정하는 것을 이미 급무(急務)가 아니고, 근년 이래로 수재(水災)와 한재(旱災)가 서로 거듭하여 실농(失農)함이 너무 심합니다. 금년에 조금 풍년이 들었다고는 이르더라도 또한 풍상(風霜)의 재해가 있었으니, 실농하지 않았다고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순찰사(巡察使)가 경차관(敬差官) 40여 원(員)을 데리고 종횡(縱橫)으로 돌아다니면 백성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빨리 정지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윤대(輪對)는 비록 자주 하였어도 한 사람도 풍속(風俗)의 선악(善惡)과 인물(人物)의 현부(賢否)를 말한 자가 없었고, 대다수가 예사롭고 긴요하지 않은 일로써 답습(踏襲)하여 말하니, 그 응대하는 것을 드물게 하여, 바르고 좋은</p>	<p>○司諫院大司諫鄭恬等上劄子曰： 臣等聞輪對之設，所以達下情而取衆善也，其所言雖未必盡善，亦未必盡可棄也，逐日接見，猶懼嘉言之攸伏。今使十五日一對，以爲恒式，甚非所以廣開言路，樂取諸人之道也，願依舊例行之。且量田所以均田制，一貢賦，固良法也，若江原一道所在，皆高山、大川，田少而薄，民稀而貧，其所資生，專仰橡栗，誠可矜也。量田、制賦，既非急務，而近年以來，水旱相仍，失農太甚，今年雖曰稍稔，亦有風霜之災，不可謂之不失農也。巡察使帶率敬差官四十餘員，縱橫馳騫以擾之，則民其能堪乎？請亟停之。 傳曰：“輪對雖數，而無一人言風俗善惡，人物賢否者，類皆以尋常不緊事，蹈襲言之，莫若疏其對，得聞讜言之爲愈也，故以十五日爲程。且聞江原農事，無如今歲之稔，故予命量田。若今年不行，明年又如是，則江原一道永</p>

	<p>말을 얻어 듣는 것만 같지 못한 까닭으로 15일로써 한정하였다. 또 듣건대, 강원도의 농사는 올해와 같은 풍년이 없는 까닭으로 내 양전(量田)을 명하였다. 만약 금년에 행하지 않았다가 명년에 또 이와 같으면 강원(江原) 1도(道)는 영구히 양전을 할 기약이 없으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p>	<p>無量田之期，其勿復言。”</p>
<p>성종 59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9월 5일(신해) 3번째기사</p>	<p>형조 판서(刑曹判書) 정문형(鄭文炯)이 평안도 감사(平安道監司)의 벼슬을 내놓고 돌아와서 복명(復命)하여 아뢰기를, “조전장(助戰將)이 이미 내려가서 변방을 방어하니, 아직 출발하지 아니한 군관(軍官)은 굳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신이 연변(沿邊)의 구자(口子)를 지키는 사람을 보건대, 시초(柴草)를 마련하고, 익목(柾木)을 설치하며, 참호[塹]를 파는 등의 역사(役事) 같은 것은 심히 긴요한데도, 군관(軍官) 1인이 부리는 자로써 밥을 짓고 나무와 풀을 베며, 방(房)을 지키는 자가 무릇 6, 7인이 나 되니, 이로써 헤아리면 군관 10인이 부리는 자는 6, 70인에 이르도록 많은데, 모두 윗항의 진영(鎭營)을 지키는 역사(役事)에 이바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본도(本道)는 군수(軍需)가 넉넉하지 못하고, 창성(昌城)은 화재(火災)를 당하고부터는 나머지 저축된 곡식이 겨우 3천여 석(碩)이고, 의주(義州)에 저축된 곡식도 또한 단지 1만 6천 석이니, 제진(諸鎭)의 허다(許多)한 군관이 앉아서 그 양곡을 허비하는 것도 심히 불가하거든, 하물며 이제 강물이 창일(漲溢)하였으니, 적(賊)이 비록 크게 움직인다 하라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만일 틈을 타서 절발(竊發)하는 자가 있으면 비록 경군관(京軍官)이 아니더라도 변장(邊將)이 스스로 제어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군관(軍官)은 아직 보내는 것을 정지하라.” 하였다.</p>	<p>○刑曹判書鄭文炯以平安道監司遞來，復命啓曰：“助戰將已下去備邊，其軍官未行者，不必遣也。臣見沿邊守口子人，如備柴草，設柾木，掘塹等項，役事甚繁，而軍官一人驅使者，有炊爨樵蘇，守房凡六七人，以此計之，則軍官十人驅使者，多至六七十人，皆不供上項守營役事。且本道軍需不敷，昌城自經火災，餘儲穀僅三千餘碩，義州儲穀亦只一萬六千碩，諸鎭許多軍官，坐費其糧甚不可，況今江水漲溢，賊雖大舉，何畏焉？如有乘間竊發者，則雖非京軍官，邊將自可制之。”傳曰：“然則軍官姑停送。”</p>
<p>성종 59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p>	<p>원상(院相)에게 전교하기를, “대왕 대비(大王大妃)께 근일 국기(國忌)라 하여 연달아 소선(素膳)을 올리었</p>	<p>○傳于院相曰：“大王大妃，近以國忌，連進素膳，今又因洪允成卒，不御肉</p>

<p>11년) 9월 9일(을묘) 2번째기사</p>	<p>는데, 이제 또 홍윤성(洪允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선(肉膳)을 드시지 않아, 내가 두세 번 청하였으되 불윤(不允)하시니, 정승(政丞) 등이 그것을 다시 청하시오.”</p> <p>하니, 원상(院相) 조석문(曹錫文)·윤자운(尹子雲)이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에 아뢰기를,</p> <p>“이제 인수 왕대비(仁粹王大妃)의 탄신(誕辰)이라 하여 온 나라가 칭하(稱賀)하는데, 신자(臣子)의 연고로써 소선(素膳)을 올리는 것은 불가합니다.”</p> <p>하고, 도승지(都承旨) 유지(柳輕)는 아뢰기를,</p> <p>“오늘은 속칭(俗稱) 가절(佳節)이므로 육선(肉膳)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p> <p>하니, 대왕 대비가 전교하기를,</p> <p>“들으니, ‘대신(大臣)이 죽으면 차마 고기를 먹지 못한다.’ 하므로, 주상께서 청하였어도 또한 따를 수가 없었는데, 거듭 정승(政丞)의 뜻을 여기게 되었으니, 말한 대로 따라야 하겠다.”</p> <p>하였다. 조석문 등이 또 육선(肉膳)을 대전(大殿)에 올릴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膳，予再請不允，政丞等其更請焉。”</p> <p>院相曹錫文、尹子雲啓于大王大妃殿曰：“今以仁粹王大妃誕辰，舉國稱賀，不可以臣子之故，進素膳也。”都承旨柳輕啓曰：“今日俗稱佳節，不可不進肉膳。”大王大妃傳曰：“聞大臣之卒，不忍食肉，主上請之，亦不能從，重違政丞之意，當從所言。”錫文等又請進肉膳于大殿，不聽。</p>
<p>성종 59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9월 11일(정사) 4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인산 부원군(仁山府院君) 홍윤성(洪允成)에게 부의(賻儀)로 미·두(米豆) 각각 20석(碩), 종이 1백 권(卷), 백저포(白苧布) 10필(匹), 백면포(白綿布) 10필(匹), 정포(正布) 50필(匹)을 주게 하였다.</p>	<p>○傳旨戶曹，賜仁山府院君洪允成賻米·豆各二十碩、紙一百卷、白苧布十四、白綿布十四、正布五十四。</p>
<p>성종 59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9월 15일(신유) 2번째기사</p>	<p>봉선사(奉先寺)에 미·두(未豆) 아울러 40석(碩)을 내려 주었다.</p>	<p>○賜奉先寺米、豆并四十碩。</p>
<p>성종 59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p>	<p>임금이 창릉(昌陵)에 나아가 행제(行祭)하고, 또 경릉(敬陵)에 나아가 행제하고는, 정인사(正因寺)에 쌀·콩[米豆] 아울러 30석(碩)을 내려 주었다.</p>	<p>○甲子/上詣昌陵行祭，又詣敬陵行祭，賜正因寺米、豆并三十碩。</p>

11년) 9월 18일(갑자) 1번째기사		
성종 59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9월 20일(병인) 4번째기사	기영회(耆英會)를 훈련원(訓練院)에 베풀어 주악(酒樂)을 내려 주고, 또 도승지(都承旨) 유지(柳輕)에게 명하여 선은(宣醞)을 가지고 가게 하였다.	○設耆英會于訓練院，賜酒樂，又命都承旨柳輕，齎宣醞以往。
성종 59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9월 27일(계유) 3번째기사	사헌부(司憲府)에 전교하기를, “내관(內官) 이득수(李得守)가 술에 취하여 나를 보기에, ‘음주(飲酒)하였느냐?’고 물었더니, 이득수가 졸연(卒然)히 대답하기를, ‘신은 술의 힘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며, 말이 자못 불공(不恭)하였으니, 그것을 조율(照律)하여 아뢰라.” 하니, 사헌부(司憲府)에서 마땅히 기획제서율(棄毀制書律)로 논해야 한다고 하면서 형조(刑曹)로 하여금 상복(詳覆)하도록 청하므로, 이득수는 공신(功臣)이니 단지 직첩(職牒)만 거두게 명하였다.	○傳于司憲府曰：“內官李得守醉酒而見予，問：‘汝飲酒乎?’得守卒然對曰：‘臣無酒力則不得行’，言頗不恭，其照律以啓。”司憲府當以棄毀制書律，請令刑曹詳覆，命得守功臣，只收職牒。
성종 59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9월 29일(을해) 2번째기사	도승지(都承旨) 유지(柳輕)가 아뢰기를, “좌상(左廂)·우상(右廂)의 군사(軍士)가 비에 젖어 떨고 있으니, 청컨대 경기(京畿)에 예비(豫備)한 술을 먹이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옳다.” 하고, 인하여 예문관 부제학(藝文館副提學) 손순효(孫舜孝), 병조 참의(兵曹參議) 성귀달(成貴達)에게 명하여, 청주(淸酒) 70병, 탁주(濁酒) 2백 병을 가지고 좌상·우상에 나누어 먹이게 하였다.	○都承旨柳輕啓曰：“左、右廂軍士冒雨寒濕，請用京畿預備酒饋之。”傳曰：“可。”仍命藝文館副提學孫舜孝、兵曹參議成貴達，齎淸酒七十瓶·濁酒二百瓶，分左、右廂饋之。
성종 60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10월 16일(임진) 5번째기사	이중하(李仲夏)에게 면포 유의(綿布襦衣) 1령(領)을 내려 주었다. 이중하는 본시 강계(江界) 갑사(甲士)로 일찍이 건주위(建州衛)에 사로잡혔다가 도망하여 돌아왔으므로 관찰사(觀察使)에게 명하여 올려 보내도록 하여, 이런 하사(下賜)가 있었다. 이어서 관찰사에게 유시하여, 5년을 한하여 복호(復戶)하고, 양	○賜李仲夏綿布襦衣一領。仲夏本江界甲士，曾被擄建州衛逃還，命觀察使上送，有是賜。仍諭觀察使，限五年復戶，給糧穀五碩。

	곡(糧穀) 5석(碩)을 주게 하였다.	
성종 60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10월 24일(경 자) 5번째기사	호조(戶曹)에서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 앞서 본조(本曹)에 수교(受敎)한 것에 ‘경기(京畿) 여러 고을의 양항(糧餉) 은 심히 적은데 제릉(諸陵)이 있는 양주(楊州)·파주(坡州)·고양(高陽) 등의 고 을과 같은 데에 이르러서는 저장한 것이 더욱 적어, 각제(各祭)의 향관(享官) 과 내왕(來往)하는 사신(使臣)을 공궤(供饋)하는 미두(米豆)가 부족하니, 갑오 년의 구식분급미(口食分給米)는 상납(上納)을 제(除)하고는 고을 창고에 수납 (收納)하는 것을 허락한다.’ 하였는데, 금년은 농사가 흉년에 이르지 않아서 군자미(軍資米)를 전부 벼[稻]로써 수납함은 미편(未便)하니, 청컨대 그 수효 를 3분(分)하여 1분은 본색(本色)을 따라 쌀[米]로써 수납하고, 2분(分)은 벼 로써 수납함을 허락하여 명년(明年)의 종자를 예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戶曹據京畿觀察使啓本啓：“前此本 曹受敎：‘京畿諸邑糧餉甚少，至如諸 陵所在楊州、坡州、高陽等邑，所儲尤 少，各祭享官及來往使臣供饋米豆不 足，甲午年口食分給米，除上納，許於 邑倉收納。’今年則農事不至凶歉，軍 資之米，全以稻收納未便，請三分其 數，一分從本色以米納之，二分許以稻 納，以備明年之種。”從之。
성종 61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11월 16일(신 유) 4번째기사	술과 음악을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의 집에 내렸는데, 그의 아들 이 채(李棗)가 술을 가져갔다.	○賜酒樂于孝寧大君補第，令其子棗， 齋宜醞而去。
성종 61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11월 24일(기 사) 3번째기사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내시(內侍) 봉성군(峯城君) 서경생(徐敬生)이 양부(養父)의 상(喪)을 당하였으 니, 쌀·콩[米豆] 아울러 8석(碩)과 종이 60권(卷), 관[椀] 1개를 부의(賻儀)로 내리라.” 하였다.	○傳旨戶曹曰：“內侍峯城君徐敬生遭 養父喪，其賜賻米、豆并八碩、紙六十 卷·椀一。”
성종 62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12월 10일(을 유) 8번째기사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금년 겨울은 따뜻하여 얼음이 얼지 않았습니다. 삼가 《두씨통전(杜氏通 典)》을 상고해 보니, 거기 이르기를, ‘얼음을 저장하는 데에는 흑모(黑牡)와 거서(秬黍)를 사용하여 사한(司寒)에게 제사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제법 (祭法)에 가로되, 감단(坎壇)에서 양기(禳祈)하고 한서신(寒暑神)에게 제사(祭	○禮曹啓：“今冬暖無冰，謹按《杜氏 通典》云：‘其藏冰也，用黑牡、秬黍， 以享司寒。’又云：‘祭法曰：「禳祈於 坎壇，祭寒暑也。」’註云：‘寒暑不 時，則或穰之，或祈之，寒於坎，暑於

	<p>祀)한다.’ 하였으며, 주(註)에 이르기를, ‘차고 더움이 제때에 하지 아니하면 혹은 양(禳)을 하고 혹은 빌되, 한신(寒神)은 감(坎)에서, 서신(署神)은 단(壇)에서 <제사를> 한다.’ 하였습니니다. 이보다 앞서는 우리 나라에 기양(祗禳)의 제사를 거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제도를 가히 상고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사한제(司寒祭)에 의하여, 서(黍)·직(稷)·도(稻)·양(梁)·포(脯)·해(醢)·시(豕)·성(腥)을 갖추고, 또 폐백(幣帛)을 더하며, 헌관(獻官)을 사한단(司寒壇)에 보내어 이를 거행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壇也.’ 前此我國不行祈禳之祭, 故其制不可考。 請依司寒祭, 備黍、稷、稻、梁、脯、醢、豕、腥, 而又加幣帛, 差獻官於司寒壇行之。” 從之。</p>
<p>성종 62권, 6년(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12월 14일(기축) 5번째기사</p>	<p>충청도(忠淸道)·황해도(黃海道)·평안도(平安道)·강원도(江原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이번 겨울은 따뜻하여 장빙(藏氷)을 할 수가 없다. 생각건대 심산(深山) 궁곡(窮谷)에는 반드시 단단하게 언 곳이 있을 것이니, 경(卿)은 도사(都事)로 하여금 순심(巡審)하여 구해서 저장하게 하라.”</p> <p>하였다.</p>	<p>○下書忠淸、黃海、平安、江原道觀察使曰: 今冬暖, 恐不得藏氷。 想深山窮谷, 必有堅凝處, 卿令都事, 巡審取藏之。</p>
<p>성종 63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1월 8일(계축) 2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전일에는 친히 대제(大祭)를 지낼 적에는 소 1마리, 양(羊)과 돼지를 각기 7마리씩을 써서 칠실(七室)에 진설(陳設)했는데, 지금 회간 대왕(懷簡大王)이 부모(祔廟)를 한다면 일위(一位)가 증가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양(羊)과 돼지는 각기 1마리씩을 더쓰고, 소의 날고기는 각실(各室)마다 나누어 올리기로 하였는데, 그 머리와 등골은 그전부터 올리지 않았습니니다. 신(臣) 등이 《예기(禮記)》의 교특생(郊特牲) 장(章)을 자세히 참고해 보니, ‘생(牲)을 정(庭)에서 쓰고, 머리는 실(室)에 올린다.’고 했으며, 주(註)에는 ‘생(牲)을 정(庭)에서 쓴다는 것은 생(牲)을 죽이는 것을 이룸이고, 머리를 실(室)에 올린다는 것은, 생의 머리를 올리는 것이다.’ 하였고, 또 수(首)란 것은 마주 대[直]하는 것이다.’ 하였으며, 주(註)에는 ‘생(牲)의 몸뚱이는 머리가 앞에 있으니 머리를 올려 놓고 제사지내는 것은 그 신좌(神坐)와 서로 마주 대[直]하는 것을 취한</p>	<p>○禮曹啓: “在前親行大祭, 則用牛一、羊·豕各七, 陳於七室, 今懷簡大王祔廟則加一位。 故加羊、豕各一, 而牛腥則各室分薦, 其頭及脊, 自來不薦。 臣等參詳《禮記》郊特牲曰: ‘用牲於庭, 升首於室。’ 註云: ‘用牲於庭, 謂殺牲也, 升首於室, 謂升牲之首也。’ 又曰: ‘首也者直也。’ 註云: ‘牲體首在前, 升首而祭, 取其神坐相直也。’ 《宋史》《禮志》宗廟時饗儀, ‘牲首俎在牖下’, 則廟祭并薦牲首明矣。 且本朝釋奠時, 文宣王位薦牲首,</p>

	<p>때문이다'고 했습니다. 《송사(宋史)》 예지(禮志)의 종묘 시향의(宗廟時饗儀)에 '생(牲)의 머리를 담은 적대[俎]가 들창 밑[牖下]에 있다.'고 했으니, 종묘(宗廟)의 제사에 생(牲)의 머리까지 올린 것이 명백합니다. 또 본조(本朝)의 석전(釋奠) 때에도 문선왕(文宣王)5804)의 위(位)에는 생(牲)의 머리를 올렸으니, 지금 이후부터는 대제(大祭)와 삭망(朔望)의 별제(別祭)에 소와 돼지의 날고기는 태조(太祖)의 실(室)에서는 머리를 올리고, 나머지는 모두 전일에 의거하여 생(牲)의 몸뚱이로써 차례대로 나누어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今後大祭及朔望別祭，牛豕腥，則太祖室薦首，餘皆依前以牲體次次分薦何如?"從之。</p>
<p>성종 63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1월 11일(병진) 1번째기사</p>	<p>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서 음복연(飲福宴)을 베푸니, 월산 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 등이 차례대로 술잔을 올렸다. 임금이 여섯 승지(承旨)에게 나누어 명하여 술을 권하여, 취하기까지 한도를 정하여 아홉 잔까지 이르게 하였다. 종척(宗戚)과 재신(宰臣)과 여러 집사(執事)들에게 명하여 일어나서 춤을 추도록 하였다. 조금 후에 또 명하여 일어나서 춤추게 하고, 임금도 또한 일어나서 춤을 추었으며, 술은 11잔을 올린 후에 그만두었다.</p>	<p>○丙辰/御仁政殿，行飲福宴，月山大君婷等以次進爵。上分命六承旨侑酒，以醉爲度至九爵。命宗宰及諸執事起舞，俄而又命起舞，上亦起舞，十一爵而罷。</p>
<p>성종 63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1월 14일(기미) 8번째기사</p>	<p>대사헌(大司憲) 윤계겸(尹繼謙) 등이 차자(筓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좌의정 한명회(韓明澮)가 대비(大妃)께서 <전하에게> 정사를 되돌리는 날을 당하여 이에 아뢰기를, ‘만약 반드시 이와 같이 한다면 이는 우리 동방(東方)의 백성을 버리게 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대궐에 나아가도 능히 안심(安心)하고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고 했으니, 신(臣) 등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전하(殿下)께서 혼자 결단하신다면 무슨 까닭으로 동방(東方)의 백성을 버리게 되며, 무슨 까닭으로 능히 안심하고 술을 마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실정(實情)을 국문(鞫問)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정괄(鄭恬) 등도 또한 차자(筓子)를 올려 이를 논박했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했다.</p>	<p>○大司憲尹繼謙等上筓子，略曰：左議政韓明澮當大妃歸政之日，乃曰：“若必如是，是棄我東方之民。”又言：“詣闕，不能安心飲酒。”臣等未知殿下獨斷，則何故棄東方之民，何故不能安心飲酒? 請鞫其情。司諫院大司諫鄭恬等亦上筓子論之，並不聽。</p>
<p>성종 63권, 7년(1476)</p>	<p>(…) 유지는 아뢰기를,</p>	<p>(…) 柳輕啓曰：“臣聞慶尙道凡七十餘</p>

<p>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1월 24일(기사) 3번째기사</p>	<p>“신(臣)이 듣건대, 경상도(慶尙道)는 대개 70여 고을인데도 쌀은 겨우 16만여 석(碩)뿐인데, 왜료(倭料)에 소비되는 것이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지난 번 정구(正球)가 올 때에도 거의 1천 석(碩) 등을 소비하고는 비용이 거의 다 없어졌다고 논하고 있으며, 지금 포화(布貨)는 사섬시(司贍寺)와 제용감(濟用監)에서 많은 수량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신(臣)의 생각으로는, 경상도(慶尙道) 노비(奴婢)의 신공(身貢)은 햇수를 한정하여 쌀과 콩을 주창(州倉)에 수납(收納)하여 군자(軍資)에 대비(對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현석규(玄碩圭)는 아뢰기를, “지금은 태평하지마는, 혹시 사변(事變)이 있게 된다면 과연 유지(柳攄)의 아된 바와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에 3년의 저축이 없으면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한다.’고 했으니, 그것을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p> <p>하였다. 그리고 이내 현석규에게 묻기를, “사수(死囚)의 추안(推案)은 얼마나 되는가?”</p> <p>하니, 현석규가 대답하기를, “승정원(承政院)에 있는 것이 1건이고, 의정부(議政府)에 있는 것이 3건입니다.”</p> <p>하였다.</p>	<p>邑，而米穀僅十六萬餘石，倭料所費浩繁。日者正球之行，幾費一千碩等，而論之所費殆盡，今布貨於司贍、濟用監積之巨萬。臣意慶尙奴婢身貢，限年以米豆納州倉，以備軍資何如？”碩圭曰：“今卽昇平矣，脫有事變，果如攄所啓。”上曰：“古云：‘國無三年之畜，國非其國。’其令議啓。”仍問碩圭曰：“死囚推案幾何？”碩圭對曰：“在政院者一，在政府者三矣。”</p>
<p>성종 64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2월 12일(병술) 4번째기사</p>	<p>김자정(金自貞)이 가지고 가는 예조(禮曹)의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 별폭(別幅)에 이르기를, “백세면주(白細綿紬) 10필, 백세면포(白細綿布) 1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5필, 흑세마포(黑細麻布) 5필, 표피(豹皮) 2장, 표피심(豹皮心) 달피변(獺皮邊) 녹비리(鹿皮裏)로 만든 좌자(坐子) 1사(事), 유석(油席) 2사(事), 채화석(彩花席) 5장(張), 조미(糙米)5982) 1백 석(碩), 황두(黃豆) 50석(石), 소주(燒酒)</p>	<p>○金自貞齋去禮曹書契曰：(…) 別幅：白細綿紬一十四、白細綿布一十四、白細苧布五匹、黑細麻布五匹、豹皮二張、豹皮心·獺皮邊·鹿皮裏坐子一事、油席二事、彩花席五張、糙米一百碩、黃豆五十碩、燒酒三十瓶、</p>

	<p>30병(瓶), 청주(淸酒) 1백 병, 계(桂) 2각(角), 다식(茶食) 2각(角), 소병(燒餅) 2각(角), 건대구어(乾大口魚) 2백 미(尾), 해송자(海松子) 5석(碩), 꽃감[乾柿子] 50첩(貼), 청밀(淸蜜) 10두(斗)입니다.”</p> <p>하였다. 또 종정수(宗貞秀)·종성준(宗盛俊)·종출우수정수(宗出羽守貞秀)에게도 모두 서계(書契)와 사물(賜物)이 있었으니, 종정수(宗貞秀)에게는 흑세마포(黑細麻布) 2필, 백세면주(白細綿紬) 2필, 백세면포(白細綿布) 2필, 계(桂) 1각(角), 다식(茶食) 1각(角), 소주(燒酒) 10병(瓶), 해송자(海松子) 10두(斗), 채화석(彩花席) 3장(張), 조미(糙米) 50석(碩), 황두(黃豆) 50석(碩)이고, 종성준(宗盛俊)에게는 흑세마포(黑細麻布) 2필, 백세면주(白細綿紬) 2필, 백세면포(白細綿布) 2필, 계(桂) 1각(角), 다식(茶食) 1각(角), 소주(燒酒) 10병(瓶), 해송자(海松子) 10두(斗), 채화석(彩花席) 3장(張), 조미(糙米) 15석(碩)이고, 종출우수정수(宗出羽守貞秀)에게는 흑세마포(黑細麻包) 2필, 백세저포(白細苧布) 2필, 백세면포(白細綿布) 2필, 계(桂) 1각(角), 다식(茶食) 1각(角), 소주(燒酒) 10병(瓶), 해송자(海松子) 10두(斗), 침석(寢席) 3장이었다.</p>	<p>淸酒一百瓶、桂二角、茶食二角、燒餅二角、乾大口魚二百尾、海松子五碩、乾柿子五十貼、淸蜜一十斗。</p> <p>又宗貞秀、宗盛俊、宗出羽守貞秀處，皆有書契、賜物，宗貞秀處，黑細麻布二匹、白細綿紬二匹、白細綿布二匹、桂一角、茶食一角、燒酒一十瓶、海松子一十斗、彩花席三張、糙米五十碩、黃豆五十碩，宗盛俊處，黑細麻布二匹、白細綿紬二匹、白細綿布二匹、桂一角、茶食一角、燒酒一十瓶、海松子一十斗、彩花席三張、糙米一十五碩，宗出羽守貞秀處，黑細麻布二匹、白細苧布二匹、白細綿布二匹、桂一角、茶食一角、燒酒一十瓶、海松子一十斗、寢席三張。</p>
<p>성종 64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2월 14일(무자) 1번째기사</p>	<p>종정국(宗貞國)의 특송(特送) 종 병고 조국차(宗兵庫助國次) 등 9인이 하직하니,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서 주연(酒宴)을 베풀고 이들을 인견(引見)하였으며, 물건을 차등이 있게 하사(下賜)하였다. 【상관인(上官人) 종 병고 조국차(宗兵庫助國次)에게는 쌀·콩 아울러 30석(碩), 호피(虎皮)와 표피(豹皮)가 각 1장(張)씩, 유석(油席) 1장(張)이고, 부관인(副官人) 평국충(平國忠)에게는 쌀·콩 아울러 10석(碩), 호피(虎皮) 1장(張), 유석(油席) 2장(張)이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흑마포(黑麻布)를 또한 차등이 있게 하사(下賜)하였다.】 예조(禮曹)의 답서(答書)에 이르기를,</p> <p>“서신(書信)이 도착되어 청적(淸適) 한 것을 알았으니 멀리서 위안(慰安)이 됩</p>	<p>○戊子/宗貞國特送宗兵庫助國次等九人辭，上御宣政殿，置酒引見，賜物有差。【上官人助國次，米、豆竝三十碩，虎皮、豹皮各一張，油席一張，副官人平國忠，米、豆并十碩，虎皮一張，油席二張，餘人賜黑麻布，亦有差。】 禮曹答書曰：</p> <p>書至，知淸適，遙慰。 所獻禮物，謹</p>

	<p>니다. 바친 예물(禮物)은 영수(領收)했음을 삼가 아뢰입니다. 토산물인 정포(正布) 15필, 면포(綿布) 8필과 지난 을미년의 예(例)대로 조미(糙米) 1백 석(碩), 황두(黃豆) 1백 석(碩)을 하사(下賜)하여 돌아가는 사자(使者)편에 부쳤으니, 영수(領受)해 두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족하(足下)가 세대(世代)를 계승한 이래로 더욱 충성을 바쳤으며, 지금 또 선지(先旨)를 받들어 삼포(三浦)에 거주하는 사람을 쇄환(刷還)했으니, 무릇 우리 나라를 수호(守護)보좌하는 데에 마음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으므로, 그 청구하는 것에 있어서 어찌 감히 아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마침 중국 조정의 사신(使臣)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일로 인하여 비용을 쓴 것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으므로, 유사(有司)에서 지금은 청구를 따르기가 어렵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하(殿下)께서 족하(足下)의 순종(順從)하는 정성을 매우 가상히 여겨 적당히 물건을 하사(下賜)하도록 특별히 명하셨으므로, 이에 면주(綿紬) 1천 필과 면포(綿布) 3천 필로써 부족하나마 온 사명(使命)에 책임을 다합니다. 비록 능히 소망(所望)에 다 부응(副應)하지는 못하더라도 실은 이것이 전하(殿下)의 특별한 은전(恩典)이니, 족하(足下)도 마땅히 잘 본받아서 은혜를 갚기 위하여 더욱 힘을 다하기를 도모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p> <p>하였다.</p>	<p>啓收了。將土宜正布一十五匹，綿布八匹及去乙未年例，賜糙米一百碩、黃豆一百碩，付還使惟領留。就中足下自繼世以來，益輸忠款，今又奉承先旨，刷還三浦居人，凡所以藩輔我國者，靡不盡心，其於所求，何敢靳惜？適因中朝使臣到國，破費不貲，有司啓以今難從請。我殿下深嘉足下效順之誠，特命量賜，茲以綿紬一千匹，綿布三千匹，聊塞來命。雖未能盡副所望，實是殿下之特恩，足下亦宜體悉，益圖報效，幸甚。</p>
<p>성종 64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2월 20일(갑오) 3번째기사</p>	<p>임금이 태평관(太平館)에 거둥하여 어실(御室)에 잠시 머물렀다가 곧 나와서 태평관의 중문(中門) 밖에 도착하니, 명(明)나라 사신이 나와 새문(塞門) 밖에서 맞이하여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서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이어서 연회(宴會)를 베풀어 기생(妓生)과 공인(工人)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두 사신(使臣)이 서로 쳐다보고 통사(通事)를 불러 말하기를,</p> <p>“어째서 여락(女樂)을 사용합니까?”</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p> <p>“이것은 우리 나라의 토착 풍속이니, 물리치지 말기를 청합니다.”</p>	<p>○上幸太平館，小留御室，乃出至館中門外，天使出迎于塞門外，入就座，行茶禮。仍設宴，妓、工人將入，兩使相視，呼通事曰：“何用女樂？”上曰：“此我國土風，請勿却。”天使曰：“朝廷公宴，不用女樂，請勿用。”上曰：“古人云：‘無害於義者，從俗可也。’況前此捧詔大人之來，皆用之，請勿爲</p>

	<p>하였다. 명(明)나라 사신이 말하기를, “중국 조정의 공식 연회(宴會)에는 여악(女樂)을 사용하지 않으니, 사용하지 말기를 청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 사람의 말에, ‘의리에 해로움이 없는 것은 시속(時俗)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했는데, 하물며 이보다 먼저 조칙(詔勅)을 받드는 대인(大人)이 올 적에는 모두 이를 사용했으니, 궤이하게 여기지 말기를 청합니다.”</p> <p>하니, 명(明)나라 사신이 말하기를, “다만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술을 돌리니, 정사(正使)가 먼저 온 술잔을 사양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 조정을 공경하는 예절로써 내가 감히 먼저 술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p> <p>하니, 정사(正使)가 그대로 따랐으며, 부사(副使)도 그렇게 하였다. 임금이 술을 돌리기를 마치자, 종친(宗親)과 채추(宰樞)들이 차례대로 술을 돌렸다. 술이 세 순배 돌아가자, 임금이 명(明)나라 사신에게 두목(頭目)에게도 술을 마시게 하기를 청하니, 명(明)나라 사신이 대답하기를, “전하(殿下)께서 기동(起動)하심이 황송합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두 번이나 청하니, 두 사신(使臣)이 그대로 따랐다. 두 사신(使臣)이 앞으로 나아와서 사례(謝禮)하기를, “두목(頭目)이 노상(路上)에서 전하(殿下)의 후(厚)하게 내려 주신 물건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또 술을 내려 주시니, 감사(感謝)하고 감사합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푸대접한 예절에 어찌 사례(謝禮)를 합니까?”</p> <p>하고, 술을 일곱 순배 돌렸는데, 두 사신(使臣)이 각 순배(巡盃)마다 술잔을 돌려 주었으므로, 임금도 술잔을 채웠다. 예(禮)를 마치자 궤하고 나왔다. 임</p>	<p>怪。”(大) [天] 使曰：“唯命。”上行酒，正使讓先盃，上曰：“敬朝廷之禮，我不敢先飲。”正使從之，副使亦然。上行酒訖，宗宰以次行酒，酒三行，上請天使，飲頭目酒，天使答曰：“恐殿下起動。”上再請，兩使從之。兩使就前，謝曰：“頭目路上，多受殿下厚賜，今又賜酒，多謝多謝。”上曰：“薄禮何謝？”爲酒七行，兩使各行回酒，上亦行完杯。禮畢罷黜。命都承旨柳輕留贈人情于天使。輕將物目單子，呈于正使，正使曰：“既賜盛宴，又致厚贖，多謝多謝。已領殿下至意，何必此爲？”輕再請，不許。又呈頭目人情單子，正使曰：“此輩路上，既受厚賜，豈可疊受？”遂却之。輕又就副使，贈之，副使亦不受，但令頭目受之。</p>
--	---	--

	<p>금이 도승지(都承旨) 유지(柳攄)에게 명하여 머물러서 선물[人情]을 명(明)나라 사신에게 선사하도록 하였다. 유지(柳攄)가 물목 단자(物目單子)를 가지고 가서 정사(正使)에게 드리니, 정사(正使)가 말하기를,</p> <p>“이미 성대한 잔치를 내려 주셨는데, 또 후(厚)한 노자(路資)까지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미 전하(殿下)의 지극하신 뜻을 받았는데, 어찌 받드시 이런 것까지 하십니까?”</p> <p>하면서, 유지가 두 번이나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또 두목(頭目)에게 주는 선물 단자(單子)를 드리니, 정사(正使)가 말하기를,</p> <p>“이 무리들도 노상(路上)에서 이미 후하게 내려 주시는 물건을 받았는데, 어찌 중첩하여 받겠습니까?”</p> <p>하고, 마침내 이를 물리쳤다. 유지가 또 부사(副使)에게 나아가서 이를 선사했으나, 부사(副使)도 받지 않고 다만 두목(頭目)으로 하여금 이를 받도록 하였다.</p>	
<p>성종 64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2월 22일(병신) 3번째기사</p>	<p>내관(內官) 흥양군(興陽君) 신운(申雲)을 보내어 하정(下程)을 가지고 태평관(太平館)으로 나아가서 두 명(明)나라 사신에게 선사하였다. 상사(上使)가 물목 단자(物目單子)를 보고 그 끝에 쓰기를,</p> <p>“후한 은혜를 거둬 받으니 감사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를 받지 않는다면 고마운 뜻의 은근함은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모두 받고서 다 못쓰게 된다면 물건을 함부로 쓰게 되는 것이니, 또한 사신(使臣)의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써 한 두 가지만 절하고 받아서 잊지 못하는 정성을 조금 나타낼 뿐이며, 그 나머지는 받지 않고 돌려보내니, 용서하시기를 황송하게 바랍니다.”</p> <p>하고, 다만 건대구어(乾大口魚) 10미(尾), 건문어(乾文魚) 20미(尾), 분곽(粉藿) 20주(注), 은구어 식해(銀口魚食醢) 20미(尾)만 받았다. 부사(副使)는 이를 다 받아서 노사신(盧思愼)·서거정(徐居正)·유지(柳攄)·임사홍(任士洪)에게</p>	<p>○遣內官興陽君申雲，齎下程詣太平館，贈兩天使。上使覽物目單子，書其末曰：</p> <p>疊受厚恩，感荷不勝。不受則無以領盛意之慇懃，俱受之而用不盡，則暴殄天物，又非使臣所安也。以此拜受一二，少寓不忘之忱，其餘返璧，萬希情恕。</p> <p>只受乾大口魚十尾、乾文魚二十尾、粉藿二十注之、銀口魚食醢二十尾。副使皆受之，分遺盧思愼、徐居正、柳攄、任士洪。</p>

<p>성종 64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2월 25일(기해) 1번째기사</p>	<p>나누어 주었다.</p> <p>임금이 경복궁(景福宮)에 거둥하여 두 명(明)나라 사신을 청해다가 근정전(勤政殿)에서 연회(宴會)하려고 하였다. 두 사신(使臣)이 이르자 임금이 맞이하여 근정전(勤政殿)에 들어가니, 두 사신이 임금의 앞에 나아와서 말하기를, “어제는 번거롭고 소란함이 많았는데, 오늘 또 부르심을 받으니, 전하(殿下)의 후한 뜻에 매우 감사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만 왕림(枉臨)한 노고(勞苦)만 더하게 했을 뿐인데, 무슨 번거롭고 소란스러움이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마침내 자리에 나아가서 다례(茶禮)를 행하고, 이어 연회(宴會)를 베풀었다. 술이 다섯 순배 돌아가니, 두 사신(使臣)이 술잔을 돌리게 되었다. 임금이 술잔에 술을 가득 채우고, 술잔을 쥐고서 말하기를, “내가 맛 좋은 술이 있어서 반가운 손님을 맞아 잔치를 하게 되니, 청컨대 대인(大人)께서는 술을 다 마십시오.” 하니, 정사(正使)가 말하기를, “술을 마시는 것은 매우 좋으나, 다만 그 좋은 거동(舉動)이라는 것은 전하(殿下)를 이름입니다.” 하자, 임금이 대답하기를, “감히 <이 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연회(宴會)가 장차 끝나려 하자, 두 사신(使臣)이 임금의 앞에 나아와서 말하기를, “전하(殿下)께서 총명하고 예지(睿智)함과 위의(威儀)와 법도(法度)의 엄중(嚴重)함은 우리들이 충분히 충심(衷心)으로 탄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처음 귀국(貴國)의 경내(境內)에 들어와서 주관(州官)의 우리(郵吏)6042) 를 보니 모두 학문(學問)과 예경(禮敬)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두 분의 관반(館伴)은</p>	<p>○己亥/上幸景福宮，請天使，宴于勤政殿。兩使至，上迎入勤政殿，兩使就上前曰：“昨日既多煩擾，今日又見招，深感殿下厚意。”上曰：“祇增枉勞，有何煩擾？”遂就座行茶禮，仍設宴。酒五行，兩使行回杯，上行完杯，執盞語曰：“我有旨酒，嘉賓式燕以遨，請大人盡飲。”正使曰：“飲酒孔嘉，維其令儀，殿下之謂也。”上答曰：“不敢當。”宴將畢，兩使就上前曰：“殿下聰明睿智，儀度嚴重，我等十分心服，我等始入貴境，見州官郵吏，皆知學問禮敬。且兩館伴俱長於文章，通事輩亦謹慎，真禮義之邦也。”上曰：“不敢當。”遂問發程日期，兩使曰：“敬奉厚意，更留一日。”遂罷黜。</p>
--	--	---

	<p>모두 문장에 우수(優秀)하고, 통사(通事)들도 언행(言行)을 조심하였으니, 참으로 예의(禮義)의 나라입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감히 〈이 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p> <p>하였다. 마침내 길을 떠날 시기(時期)를 물으니, 두 사신(使臣)이 말하기를, “삼가 후의(厚意)를 받들어서 다시 하루만 머물겠습니다.”</p> <p>하였다. 마침내 잔치를 파하고 나갔다.</p>	
<p>성종 64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2월 25일(기해) 2번째기사</p>	<p>임금이 동부승지(同副承旨) 한한(韓僴)에게 명하여 선물[人情]을 태평관(太平館)에 가지고 가서 명(明)나라 사신에게 선사하도록 하였다. 정사(正使)가 물목 단자(物目單子)를 보더니, 말하기를, “이것은 행인(行人)을 전송(餞送)하는 물건이 아닙니까? 전하(殿下)의 후의(厚意)는 우리들이 충분히 감사하고 있는데, 또 어찌 이런 것을 하십니까? 그러나 이를 물리친다면 공손하지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p> <p>하고, 이어서 종이 끝에 쓰기를, “붓·먹·종이·벼루[筆墨紙硯]는 진실로 사양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책지(冊紙) 50권(卷)은 너무 많음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않겠습니다. 법첩(法帖)과 소도자(小刀子)는 또한 가인(家人)들에게 부치는 것이니, 이를 받도록 하고, 포필(布匹)과 인삼(人蔘)은 감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p> <p>하였다. 한한(韓僴)이 말하기를, “종이는 곧 문방(文房)에 소용(所用)되는 것이고, 인삼(人蔘)은 노상(路上)의 다구(茶具)이니, 청컨대 물리치지 마십시오. 만약 대인(大人)께서 받지 않는다면, 내가 장차 무슨 얼굴로 돌아가 성상께 아뢰겠습니까?”</p> <p>하면서, 이를 두세 번이나 청하니 정사(正使)가 웃으면서 이를 받았으나 포자(布子)만은 받지 않았으며, 부사(副使)는 이를 다 받았다.</p>	<p>○命同副承旨韓僴，齎人情，往太平館，贈天使。正使覽物目單子，言曰：“此無乃送行之物歟？殿下厚意，我等十分感荷，又何此爲？然却之則不恭。”仍書紙尾曰： 筆墨紙硯固不敢辭，冊紙五十卷未免過多，所以不受。法帖小刀子亦付家人輩，領之，布匹人蔘則非所敢受也。 僴曰：“紙乃文房所用，蔘是路上茶具，請勿却。若大人不受，我將何顏回啓乎？”請之再三，正使笑而受之，唯不受布子，副使皆受之。</p>
<p>성종 64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p>	<p>임금이 태평관(太平館)에 거동하여 전별연(餞別宴)을 베푸니, 두 사신(使臣)이 임금의 앞에 나아와서 어제 한강(漢江)을 유람(遊覽)하며 구경한 것을 사례</p>	<p>○上幸太平館，設餞宴，兩使就上前，謝昨日漢江遊觀。乃就座，酒六行，</p>

<p>12년) 2월 27일(신축) 2번째기사</p>	<p>(謝禮)하였다. 이어 자리에 나아가서 술이 여섯 순배 돌아가니, 두 사신(使臣)이 모두 돌아가는 술을 마시고 임금께서도 술잔을 채우게 하였다. 두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殿下)의 후한 대접에 감사하며, 오늘 저녁에 대궐에 나아가서 절하고 하직하려 했지만, 몹시 취하여 어려울 듯하니, 반드시 내일 아침에는 모화관(慕華館)에서 배례(拜禮)하고 하직하겠습니다.” 하고, 마침내 연회를 파하고 나갔다.</p>	<p>兩使皆行回酒，上亦行完杯。 兩使曰：“多感殿下款待，當夕欲詣宮拜辭，然醉深恐難，必明朝當於慕華館拜辭。” 遂罷黜。</p>
<p>성종 65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3월 1일(갑진) 5번째기사</p>	<p>원성군(原城君) 안중경(安仲敬)을 보내어 좌의정(左議政) 한명회(韓明澮)의 집에 선은(宣醞)을 하사하였다. (...)</p>	<p>○遣原城君安仲敬賜宣醞于左議政韓明澮第。(…)</p>
<p>성종 65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3월 2일(을사) 1번째기사</p>	<p>평양군(平陽君) 박중선(朴仲善)·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김영유(金永濡) 등을 보내어 표문(表文)을 받들고 북경[京師]에 가서 사은(謝恩)하게 하였는데, 백관(百官)들이 권정례(權停禮)로써 표문에 배례(拜禮)하였다. 그 표문에 이르기를, “사명(使命)이 마침내 이르러 온 나라에서 함께 영광으로 여깁니다. 황은(皇恩)이 거듭 이르니, 몸을 어루만지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며, 가슴에 깊이 새긴들 어찌 그치겠으며, 뼈가 가루가 된들 갚기가 어렵겠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臣)은 멀리 폐방(敝邦)에 처하여 다행히 밝은 시대를 만나 공헌(貢獻)에 뜻을 두고 오직 집양(執壤)에 부지런할 줄만 알았는데, 천지의 큰 덕(德)은 생(生)이라 하더니 여러 번 하늘의 은총(恩寵)을 입게 되었습니다. 돌아보건대 조그마한 작은 도움도 없었으니, 어찌 광비(筐篚)의 은혜를 거듭 더할 줄 기대하였겠습니까? 옷을 입고서 돌아오니, 전전공공(戰戰兢兢)함을 어찌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대개 황제께서 인(仁)으로써 천하를 하나로 보아 주시고, 넓은 도량으로써 신(臣)의 삼가 율음(綸音)을 받드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신(臣)의 각별히 제후(諸侯)의 도리를 다하는 것을 헤아려 주</p>	<p>○乙巳/遣平陽君朴仲善、同知中樞府事金永濡等奉表如京師謝恩，百官以權停禮拜表。 其表曰： 使命聿至，舉國共榮。 皇恩沓臻，撫躬失措，佩銘曷已？ 糜粉難酬。 伏念臣邈處敝邦，幸逢昭代，役志于享，惟知執壤之勤，大德曰生，屢荷自天之寵。 顧乏涓埃之小補，豈期筐篚之荐加？ 被服以還，戰兢何極？ 茲蓋伏遇仁推一視，量擴兼容，憐臣祇奉綸音，諒臣恪勤侯度，遂令驚鈍，獲蒙鴻私，臣謹當倍殫赤心，益堅素節，嘉與父老，常存挾纊之懷，誓及子孫，永祝如岡之壽。 謝皇太子箋曰：</p>

시는 때를 엿드려 만나서, 드디어 이 노둔(鴛鈍)한 자질(資質)로 하여금 큰 사은(私恩)을 입게 하였으니, 신은 삼가 마땅히 적심(赤心)을 감절이나 다하여 더욱 소절(素節)을 굳건히 하겠으며, 아름답게 부모(父老)들과 더불어 항상 협광(挾纊)의 생각을 지니겠으며, 맹세코 자손(子孫)에게 미치도록 길이 강릉(岡陵)과 같은 수(壽)를 누리도록 축원할 것입니다.”

하고, 황태자(皇太子)에게 사은(謝恩)하는 전문(箋文)에 이르기를,
 “높이 저위(儲位)에 계시면서 황제의 유모(猷謀)를 가까이에서 도우시고 황제의 은혜를 인도하여 퍼시어 이에 바닷가 변방(邊邦)에까지 미치게 하시니, 몸을 어루만지면서 감격할 줄 알고, 뼈에 깊이 새긴들 어찌 잊겠습니까? 엿드려 생각하건대, 신(臣)은 외람되게 잔열(孱劣)한 재질(材質)로서 멀리 황복(荒服)에 처하여 정(情)은 맡은 임무에 깊으나 아직 털끝만한 공효도 없는데, 덕(德)이 회유(懷柔)하시는 데 나타나 성택(聖澤)을 현연히 광비(筐篚)에 내리시니, 이와 같은 광영(光榮)은 전날에도 드물었던 바입니다. 이것은 대개 황태자의 성품이 곧고 훌륭하시며 자태가 남보다 뛰어나, 양궁(兩宮)의 권애(眷愛)를 받드시고 만국(萬國)의 환심(歡心)을 얻으시는 때를 삼가 만나, 드디어 이 용렬(庸劣)한 자질(資質)로 하여금 은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신은 삼가 마땅히 즐겁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중윤(重潤)의 노래를 읊기를 원하며, 강릉(岡陵)과 같이 천령(千齡)의 수(壽)를 누리시도록 감절이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였다. 황제의 어전(御前)에는 황세저포(黃細苧布) 20필(匹),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50필, 황화석(黃花席) 20장(張), 만화석(滿花席) 20장, 만화방석(滿花方席) 20장, 잡채화석(雜彩花席) 20장, 인삼(人蔘) 1백 근(斤), 잡색마(雜色馬) 12필을 진헌(進獻)하고, 황태후(皇太后)와 중궁(中宮)에게는 각각 홍세저포(紅細苧布) 1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30필, 만화석(滿花席) 10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씩을 진헌하고, 황태자(皇太子)에게는 백세저포(白細苧布)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30

尊居儲位，密裨皇猷，導宣睿恩，覃霑海徼。撫躬知感，銘骨何忘？伏念臣猥以譴材，邈處荒服，情深荷戴，微勞未効於絲毫，德著懷柔，聖澤忽頒於筐篚，光榮若此，前昔所稀。茲蓋伏遇性稟貞良，姿凝岐嶷，承兩宮之眷愛，得萬國之歡心，遂令庸駑獲蒙寵賚。臣謹當載欣載悅，願廣重潤之詞，如崗如陵，倍切千齡之祝。

御前進獻：黃細苧布二十四、白細苧布二十四、黑細麻布五十四、黃花席二十張、滿花席二十張、滿花方席二十張、雜彩花席二十張、人蔘一百斤、雜色馬一十二匹，皇太后中宮進獻：各紅細苧布一十四、白細苧布一十四、黑細麻布三十四、滿花席一十張、雜彩花席一十張，皇太子進獻：白細苧布一十四、黑細麻布三十四、滿花席一十張、雜彩花席一十張、人蔘五十斤、雜色馬四匹。

	<p>필, 만화석(滿花席) 10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인삼(人蔘) 50근, 잡색마(雜色馬) 4필을 진헌하였다.</p>	
<p>성종 65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3월 29일(임신) 2번째기사</p>	<p>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평산 부사(平山府使) 정충원(鄭忠源)이 면포(縣布) 54필(匹), 쌀 1석(碩) 13두(斗), 조(租) 2석(碩)을 정철(正鐵)을 취련(吹鍊)하는 군인(軍人)들에게 함부로 거두어 자신이 소유한 죄는 율(律)이 장(杖) 1백 대에, 유(流) 2천 리에 해당합니다.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장안(贓案)에 기록하였으니, 비록 이미 유사(有赦)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석방(釋放)하고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탐오(貪汚)한 무리가 마음대로 날뛰고 거리낌이 없을 터이니, 징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직첩(職牒)을 거두시고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말며, 장안(贓案)에 기록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司憲府啓: “平山府使鄭忠源濫收縣布五十四匹, 米一碩十三斗、租二碩于正鐵吹鍊軍人己罪, 律該杖一百, 流二千里。 依《大典》錄贓案, 雖已經赦, 專釋不治, 則貪汚之徒縱恣無忌, 不可不懲。 請收職牒, 永不敍用, 錄案。” 從之。</p>
출처	내용	원문
<p>성종 66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4월 4일(정축) 6번째기사</p>	<p>예문관(藝文館)에서 아뢰기를, “지금 종묘(宗廟)와 문선왕(文宣王)의 제사를 상고해 보니, 희생(犧牲)의 머리를 천(薦)하는 데 있어서 옛 제도와 《문헌통고(文獻通考)》의 친향 태묘·별묘 진설조(親享太廟別廟陳設條)에는 ‘조(俎)가 6개로써, 두(豆)의 오른쪽에 두고 석 줄로 하되, 북쪽을 위[上]로 한다.’ 하였고, 주(注)에는 ‘첫번째 줄에는 양(羊)과 돼지[豕]의 머리를 담는다.’ 하였습니다. 《송사(宋史)》의 종묘 시향의(宗廟時享儀)에는 ‘9조(俎)로써 두(豆)의 동쪽에 설치하여 삼삼(三三)으로 열(列)을 짓게 하되, 남쪽을 위[上]로 하고, 각조(脚俎) 하나는 마땅히 석조(腊俎)의 북쪽에 두며, 세로로 설치한 희생(犧牲) 머리의 조(俎)는 북쪽의 들창 아래에 둔다.’ 하였는데, 《두씨통전(杜氏通典)》의 태자 석전우 공선보 진설조(太子釋奠于孔宣父陳設條)에는 ‘제향(祭享)하는 날, 날이 채 맑기 전에 태관(太官)이 재인(宰人)을 거느리고 난도(鑿刀)로써 희생(犧牲)을 베면, 축사(祝史)가 두(豆)를 가지고 털과 피[毛血]를 받아서 찬소(饌所)에 두고 희생(犧牲)</p>	<p>○藝文館啓: “今考宗廟及文宣王祭薦牲首古制, 《文獻通考》親享太廟別廟陳設條, ‘俎六在豆右爲三重, 以北爲上’, 注, 第一重實以羊豕首。 《宋史》宗廟時享儀, ‘九俎設于豆之東, 三三爲列, 以南爲上, 脚俎一當腊俎之北, 縱設之牲首俎, 在北牖下。’ 《杜氏通典》太子釋奠于孔宣父陳設條, ‘享日未明, 太官令率宰人, 以鑿刀割牲, 祝史以豆取毛血, 置於饌所享牲。’ 註, ‘其牲用大牢二, 正座及先師首俎, 皆升右胖十一體, 左丘明以下析分餘體升之, 國學太公, 竝同。’” 命</p>

	<p>을 삶는다.’ 하였고, 그 주(注)에는 ‘그 희생(犧牲)은 태뢰(太牢) 2를 쓰되, 정좌(正座) 및 선사(先師)의 수조(首俎)는 모두 우반(右胖) 11체(體)를 올리고, 좌구명(左丘明) 이하에게는 나머지 몸을 절단해서 나누어 올리는데, 국학(國學)의 태공(太公)도 아울러 같다.’고 하였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원상(院相)에게 보이도록 하니, 정창손(鄭昌孫)·조석문(曹錫文)·윤자운(尹子雲)·윤사흔(尹士昕)·김국광(金國光)이 의논하기를, “《문헌통고(文獻通考)》·《두씨통전(杜氏通典)》·《송사(宋史)》에는 모두 <희생(犧牲)의> 머리를 천(薦)한다 하였으니, 이 예(例)에 의하여 태조실(太祖室)에 소의 머리[牛首]를 천(薦)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示院相，鄭昌孫、曹錫文、尹子雲、尹士昕、金國光議：“《文獻通考》、《杜氏通典》、《宋史》皆薦首，依此例薦牛首於太祖室。”從之。</p>
<p>성종 66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4월 17일(경인) 2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때에 맞추어 비가 쏟아지니, 경들도 어찌 즐거움이 없겠는가?” 하고, 이어서 선은(宣醞)을 내렸다.</p>	<p>○傳于承政院曰：“時雨霏然，卿等亦豈無喜也？”仍下宣醞。</p>
<p>성종 66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4월 26일(기해) 4번째기사</p>	<p>영웅 대군(永膺大君)의 아내인 송씨(宋氏)가 계청(啓請)하기를, “사위[女婿]인 구수영(具壽永)이 이미 담제(禫祭)를 행하였으므로, 종친부(宗親府)·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충훈부(忠勳府)의 당상(堂上) 및 2품(品) 이상의 재상(宰相)을 청하여 맞아들이고자 하니, 날을 나누어 간위(看慰)하게 하소서.”</p> <p>하니, 명하여 이를 허락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승지(承旨)로서 입직(入直)한 사람 외에는 가보는 것이 가하겠다.”</p> <p>하였다. 좌승지(左承旨) 이극기(李克基) 등이 아뢰기를, “구수영이 여러 재상들을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일컬음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잔치가 아니므로 종친(宗親)은 가보는 것이 가하겠지만, 온 조정(朝廷)의 재추(宰樞)가 모조리 간다면 대체(大體)에 어떻겠습니까?”</p>	<p>○永膺大君妻宋氏啓請：“女婿具壽永已行禫祭，欲邀宗親府、議政府、六曹、忠勳府堂上及二品以上宰相，分日看慰。”命許之，仍傳曰：“承旨入直外，可赴。”左承旨李克基等啓曰：“壽永欲見諸宰，未知何謂也？然非公宴，宗親則可赴，舉朝宰樞悉往，於大體何？”傳曰：“予豈不料設宴之意，命卿等赴之乎？毋多言以往。”克基及右承旨任士洪、同副承旨洪貴達齎宣醞以往。</p>

	<p>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어찌 잔치를 베푸는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서 경(卿) 등에게 가라고 명하였겠는가? 여러 말 하지 말고 가보도록 하라.”</p> <p>하고, 이극기(李克基)와 우승지(右承旨) 임사홍(任士洪)·동부승지(同副承旨) 홍귀달(洪貴達)에게 선온(宣醞)을 가지고 가게 하였다.</p>	
<p>성종 67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5월 5일(정미) 1번째기사</p>	<p>임금이 문소전(文昭殿)에 나아가서 단오제(端午祭)를 행하고, 재실(齋室)에 나아가서 전교(傳敎)하기를, “예종(睿宗)의 실(室)에는 승지(承旨) 임사홍(任士洪)이 마땅히 첫 잔[爵]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어째서 부른 뒤에야 왔는가? 제사(祭事)는 큰 일인데도 지금 이렇단 말인가? 내가 죄를 주고 싶으나 특별히 버려둔다.”</p> <p>하였다. 동부승지(同副承旨) 홍귀달(洪貴達)이 임사홍에게 말하기를, “주상(主上)의 전교가 이러하니, 그대는 마땅히 대죄(待罪)해야 한다.”</p> <p>하였으나, 임사홍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표정도 없이 말하기를, “이미 전교로서 꾸짖었으니, 또 다시 대죄할 필요가 있을까?”</p> <p>하였다. 홍귀달이 말하기를, “자네가 만약 대죄(待罪)까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마땅히 죄를 다스리도록 주청(奏請)하겠다. 어째서 그렇게 거만스럽게 말하는가? 다시 생각해 보라.”</p> <p>하였고, 도승지(都承旨) 현석규(玄碩圭)도 대죄하라고 강요하였다. 그러자 임사홍이 할 수 없이 아뢰기를, “신(臣)이 세조(世祖)의 실(室)에 있어서 한 위(位)에만 잔[爵]을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예종(睿宗)의 실(室)에 이르러서는 두 위(位)가 있음을 잊었습니다. 대죄(待罪)를 청합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대죄하지 말라.”</p> <p>하였다. 임금이 또 연은전(延恩殿)에 나아가서 제사(祭事)를 행하고, 덕응방</p>	<p>○丁未/上詣文昭殿行端午祭，御齋室，傳曰：“睿宗室，承旨任士洪當捧第一爵，何故召而後入也？祭事大事，而今如此，予欲加罪，特棄之。”同副承旨洪貴達語士洪曰：“上教如此，君當待罪。”士洪略無懼色曰：“已傳教責之，又何待罪？”貴達曰：“君若不待罪，吾等當請治罪。何發語之慢也？須更思之。”都承旨玄碩圭亦強之。士洪不得已啓曰：“臣於世祖室捧爵只一位。故次及睿宗室，忘其又有二位也。請待罪。”傳曰：“勿待罪。”上又詣延恩殿行祭，詣德應房奉審世祖影幀，時修繪世祖眞于德應房。遂幸慕華館觀武臣騎射三甲射槍等藝，賜中多者弓矢豹皮等物有差。還宮時，幸帶方府夫人宋氏第，命賜米豆并五十碩。</p>

	<p>(德應房)에 나아가서 세조(世祖)의 영정(影幀)을 봉심(奉審)하였는데, 이는 당시에 덕응방에서 세조의 어진(御眞)에 채색을 다시 올렸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 무신(武臣)들의 기사(騎射)와 삼갑사(三甲射)와 삼갑창(三甲槍) 등의 기예(技藝)를 관람하고, 많이 맞힌 자에게 활[弓]과 화살[矢], 그리고 표피(豹皮) 등을 차등 있게 하사(下賜)하였다. 환궁(還宮)할 때에는 대방 부부인(帶方府夫人) 송씨(宋氏)의 집에 행차하여 쌀과 콩을 아울러 50석(碩)을 주게 하였다.</p>	
<p>성종 67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5월 8일(경술) 3번째기사</p>	<p>사헌부(司憲府)에서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하여 아뢰기를, “청주(淸州)의 교수(敎授) 박영손(朴榮孫)이 석전(釋奠)에 진설(陳設)하는 백포(白布) 30척(尺)과 초인(草茵) 10엽(葉)과 초석(草席) 8엽을 제사지낸 뒤에 자기의 집으로 수송(輸送)한 죄(罪)와, 증미(蒸米) 20두(斗)를 김흥도(金興道)와 임중하(林衆何)에게 나누어 준 죄와, 노자(奴子)에게 급여(給與)로 주고 남은 쌀로 주식(酒食)을 만들고 민간(民間)에게 판자(板子)를 요구한 죄와, 구사(丘史)에게 삼[麻] 6속(束)을 징수(徵收)하여 어망(魚網)을 만든 죄와, 향교(鄕校)의 노비(奴婢)가 바친 소금[鹽] 30두(斗)를 자가(自家)에서 수용(收用)한 죄는, 율(律)을 종중(從重)하여 장(杖) 70대에 고신(告身) 2등(等)을 수탈(收奪)하는 한편 장안(贓案)에 기록하고, 사사로 사용한 물건은 관(官)으로 환납(還納)케 하며, 교생(校生)인 고계흥(高繼興)·오순손(吳順孫)이 사장(師長)을 고소(告訴)한 죄는, 오순손은 우두머리이므로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에 해당하며, 고계흥은 수종(隨從)한 자이니 장(杖) 90대에 도(徒) 2년 반에 해당하니, 모두 고향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일은 비록 사면(赦免) 전에 있었으나 그들이 범한 죄는 매우 중하므로 모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원하던대로 오순손과 고계흥은 영구히 과거(科擧)를 못보게 하여 먼 곳에 부처(付處)하고, 박영손은 고신(告身)을 거두고 장안(贓案)에 기록하여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못하게 하</p>	<p>○司憲府據忠淸道觀察使啓本啓：“淸州敎授朴榮孫，釋奠陳設白布三十尺、草茵十葉、草席八葉，祭後自家輸送罪，蒸米二十斗分與金興道、林衆何罪，以奴子廩餘米，辦酒食求索板子於民間罪，徵丘史麻六束，造魚網罪，鄕校奴婢所納鹽三十斗，自家收用罪，律該從重杖七十、奪告身二等、錄案，私用物色還官，校生(高季興) [高繼興] ·吳順孫告訴師長罪，順孫爲首，決杖一百、徒三年，繼興以隨從，杖九十、徒二年半，竝黜鄕。事在赦前，然各人所犯深重，不可全釋。請順孫·繼興永永停擧，遠方付處，榮孫收告身錄贓案、永不敍用。”命榮孫罷職，順孫、繼興永永停擧。</p>

	소서.” 하니, 명하여 박영손은 파직(罷職)하고 오순손과 고계홍은 영구히 과거를 못 보게 하였다.	
성종 67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5월 11일(계축) 3번째기사	이 날 비가 내렸다. 어서(御書)를 승정원(承政院)에 내려서 이르기를, “백성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장맛비이다. 경(卿) 등은 각각 시우시(時雨詩)를 지어서 올리도록 하라.” 하고, 인하여 선은(宣醜)을 하사(下賜)하였다.	○是日雨。御書下承政院曰： 澤民者霖雨。卿等各製《時雨詩》以進。 仍下宣醜。
성종 68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6월 8일(기묘) 2번째기사	승정원(承政院)에서 합사(合辭)하여 아뢰기를, “지난번에 가뭄 때문에 감선(減膳)하였는데, 이제 때맞추어 이미 비가 내렸으니, 술을 금하는 것을 과하고 복선(復膳)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백 가지 음식을 진열(陳列)한다 하더라도 음식이 입에 맞으면 그만이지, 어찌 반드시 많아야 하겠는가?” 하였다.	○承政院合辭啓曰：“向以旱減膳，今則時雨既降，酒禁亦罷，請復膳。”傳曰：“雖陳列百品，適口而已，何必多也?”
성종 68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6월 12일(계미) 4번째기사	제도 관찰사(諸道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처벌(處罰)하는 것은 형벌(刑罰)을 방지(防止)하기 위한 것이고, 형벌을 쓰는 것은 다만 형벌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인주(人主)로서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생각해 보건대 많은 사람들 중에는 선한 일을 하는 자도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도 있지만, 천민(天民)이면서 모두 나의 적자(赤子)인데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고, 끊어지면 다시 이어질 수가 없으니, 혹 한번 형륙(刑戮)에 빠지면 후에 비록 허물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또한 어떻게 미치겠는가? 옛날 제왕(帝王)들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만물(萬物)을 아끼는 도리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으며, 형벌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欽恤]을 더함에 따라 죄를 논하면서 울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실로 죽고 사는 것이 큰 일인데다가 죄는 비록 죽이는 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차마 하지 못할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종(祖宗)의 살상(殺傷)을 싫어하	○下書諸道觀察使曰： 辟以止辟，刑期無刑，非人主之得已。第念林林之衆爲善爲惡者，天民也，皆吾赤子也，死不復生，斷不復續，一或陷於刑戮，則後雖知其非辜，亦何及哉？古昔帝王仁民愛物之道，無所不至，而於刑罰尤加欽恤，至有涕泣論囚者，誠以死生大矣，罪雖當死而心有所不忍故也。祖宗好生之德不殺之仁，出於聖性，流於民物，猶恐匹婦匹夫有不獲其所。恤刑有書，枉刑制罰，儆于有位，戒爾由獄，是則明慎用刑，乃

는 마음과 죽이지 아니하려는 어진 마음은 거룩한 성품(性品)에서 나와 백성과 만물에 젖어드는데도, 필부(匹夫)·필부(匹婦)가 억울함이나 없는가 하고 늘 두려워한다. 그래서 《홀형서(恤刑書)》를 두어 함부로 형벌을 행하는 것을 제어(制御) 하고자 하여 <판결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경책(敬責)하고, 옥사(獄事)로 말미암은 것을 경계하게 하는데, 이는 형벌을 쓰는 것을 공정하고 삼가하게 하려는 것으로, 곧 조종의 가법(家法)으로서 나에게 전하여진 것이다. 나는 한 대의 태형(笞刑)과 한 대의 장형(杖刑)도 오히려 남형(濫刑)이 있을까 두려운데, 하물며 사람의 성명(性命)을 죽이는 데에 감히 가볍게 의논하겠는가? 그래서 죽이는 데에 해당되는 죄인은 법대로 그 죄를 상세하게 논하여 추핵(推覈)하는데 한 가지 단서(端緒)만으로도 안되고, 한 사람만의 손을 거쳐서도 안되며,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보아도 할 수 없게 된 후에야 형벌을 시행(施行)하지만, 어찌 내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이는 부득이한 때문이다. 지난번에 경상도(慶尙道) 울산군(蔚山郡)의 고자(庫子) 불생(佛生)·보견(甫見) 등 10명이 맡고 있는 창고의 곡식을 도둑질한 것에 연좌되었는데, 계장(計贓)하여 보니, 죽이는 데에 해당되었었다. 그 정장(正贓)을 범한 바를 추문(推問)하니, 조미(糙米) 10두(斗)였고, 그 발각된 원인을 가려 보니, 원한을 품은 사람인 영노(營奴) 쇠똥이[牛屎]가 고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조미 10두는 실은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 왜노(倭奴)들에게 나누어 줄 때의 낙정미(落庭米)였다. 애초에 보견(甫見)이 나장(羅將) 김상좌(金上佐)의 술을 빌어 쓴 지 오래 되었으므로, 이때에 이르러 김상좌가 그 술을 돌려주기를 요구하나 보견이 쌀 6두를 주고 샀으며, 김상좌의 처가 또 달비[鬣]를 파니, 보견의 처가 쌀 4두를 주고 샀는데, 이른바 모두 10두였던 것이다. 김상좌가 그 쌀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를 김상좌의 사노(私奴)가 보고 영노 쇠똥이에게 말하니, 쇠똥이가 관가(官家)에 고소하였었다. 관가에서 그 집을 수토(搜討)하여 위 항목의 쌀 10두가 나왔는데, 이를 가리켜 정장(正贓)이라 하고, 인하여 전에 범한 바

祖宗家法而傳之于我者也。予於一笞一杖，猶懼有濫，況於戕人性命，其敢輕議？故當死囚詳讞如法，推之非一端，更之非一手，求其生道而不可得，然後乃施以刑，豈所安哉？不得已也。頃者慶尙道蔚山郡庫子佛生、甫見等十名，坐盜稔庫之穀，計贓當死。問其所犯正贓，則曰陳糙米十斗也，推其所發之因，則怨家營奴牛屎之告也。其糙米十斗，非眞盜取之物，乃倭奴分給時落庭米也。當初甫見借用羅將金上佐之鼎已久，至是上佐求還其鼎，而甫見給米六斗買之，上佐妻又賣其鬣，甫見妻給米四斗買之，所謂十斗米也。金上佐持其米而歸，私奴上佐見之，語諸營奴牛屎，牛屎以訴于官。官搜討其家，得上項米十斗，指爲正贓，因推前犯，歷敍日月。分配石數，前後盜取稔庫米穀，人或百餘石，或四五十石，各人一辭皆服其辜，以此成案，贓滿當斬者十人。初推者失其情，考覈者踵而成，監司親問而不精，刑曹詳覈而不覺，至議政府，始疑其誣，具由以啓。予惟米穀家家所畜之物，假使金上佐妻持歸之米，實是盜物，同色之

를 주문하니, 차례대로 낱자를 진술하였다. 그리고 석수(石數)와 전후에 맡고 있던 창고의 미곡을 도둑질한 것이 혹은 1백여 석이라고도 하고, 혹은 50석이라고도 하여 각각 사람마다 한결같은 말로 그 허물을 자복(自服)하니, 이로써 성안(成案)되었으며, 장물죄(贓物罪)로 참살(斬殺)된 자가 10명이나 되었었다. 그러나 처음 추핵(推覈)한 자가 실상을 잃었고, 고핵(考覈)한 자도 이어서 거듭 실상을 잃었고, 감사(監司)가 친문(親問)하면서도 자세하게 밝히지 못하였으며, 형조(刑曹)에서 자세히 핵실(覈實)하였어도 드러나지 아니하였었는데, 의정부(議政府)에 이르러 비로소 그 무고(誣告)함을 의심하게 되어 까닭을 갖추어 아뢰었었다. 내가 생각하건대 미곡(米穀)은 집집마다 쌓아 놓고 있는 물건이므로, 가령 김상좌의 처가 가지고 돌아온 쌀이 실제로 도둑질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쌀이 사람이 사는 집에는 언제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관가의 쌀이라 지칭하여 정장으로 논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또 10두 외에 자복한 석수(石數)는 모두 같은 종류의 쌀이 아닌데, 어떻게 이것을 근거로 체포하고, 또한 장물죄로 논하였는가? 각각 사람들이 전후 범한 바가 실로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지만, 세월이 오래 되었는데 어떻게 이를 기억해내며, 공초(供招)한 말 가운데 낱자가 각각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명백하고 차이가 없으니, 이는 장형(杖刑)으로 얻은 것이지 어찌 실상이겠는가? 의정부(議政府)에서 발각되어 드러난 것이 있지 아니하다면 내가 무고한 10인을 잃었을 것인데, 생각건대 이에 이르렀으니, 자못 측은(惻然)하다. 아아, 한 나라 백성의 생명이 나 한 사람에게 매여 있는데, 내가 스스로 능히 다스릴 수가 없어서 관리(官吏)에게 부촉(付囑)하였으나, 관리가 다시 이와 같았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을 의지하겠는가? 소재한 관리는 일이 사유(赦宥) 전에 있었으므로, 굳이 논하지 아니함이 마땅하겠지만, 그러나 인명(人命)은 매우 중한 것이고, 10인의 생명을 사지(死地)에 이르게 하였으며, 사람들에게 잘못 남의 죄에 끼어들게 하였으니, 죄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처음에 주문하여

米，人家恒有，豈宜以此指爲官米而論以正贓乎？且十斗外所服石數，皆無本色，何以模捉而亦論以贓乎？各人前後所犯，固非一二度，久遠日月，何以記得，而招辭內日月，各人一辭明白不差乎？此必杖下所得，豈其情乎？不有政府覺舉，予其失無辜十人矣。念至于此，良用惻然。嗚呼！一國民命，繫予一人，予不能自治，付之于吏，吏復如是，民其奚依？所在官吏，事在赦前，固宜勿論，然人命至重，十人之命，幾至死地，失入人罪，罪不可道。茲將初推考覆官吏彥陽縣監金致利·慶州判官趙達生·東萊縣令李根孝·金海府使王宗信，竝罷其職，以懲不恪之罪。卿宜體予至懷，明慎乃獄，率勵守令，各盡其心，使死者無枉，生者無怨，長予育物之仁，躋民仁壽之域。

	<p>고핵(考覈)한 관리 언양 현감(彦陽縣監) 김치리(金致利)·경주 판관(慶州判官) 조달생(趙達生)·동래 현령(東萊縣令) 이근효(李根孝)·김해 부사(金海府使) 왕종신(王宗信)을 모두 파직(罷職)하여 삼가지 아니한 죄를 징계한다. 경은 마땅히 나의 깊이 품은 뜻을 본받아 옥사를 삼가하여 밝히고, 수령들을 통솔 권려(勸勵)하여 그 마음을 다함으로써 죽은 자로 하여금 원통함이 없고, 산 자로 하여금 원망이 없도록 하여, 내가 만물(萬物)을 기르는 인(仁)을 키우고, 백성들을 인수(仁壽)의 경지에 들게 하라.” 하였다.</p>	
<p>성종 68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6월 13일(갑신) 4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하기를, “지금 경혜 공주(敬惠公主)의 딸이 결혼하니, 쌀·콩 아울러 50석(碩), 기름 1석, 청밀(淸蜜) 1석, 백수주(白水紬) 6필(匹), 정주(鼎紬) 6필, 백면포(白綿布) 6필, 단목(丹木) 10근(斤), 면자(綿子) 10근, 면화(綿花) 30근, 면포(綿布) 60필을 내려 주도록 하라.” 하였다.</p>	<p>○傳旨戶曹曰：“今敬惠公主女子成婚，其賜米豆并五十碩、油一石、淸蜜一碩、白水紬六匹、鼎紬六匹、白綿布六匹、丹木十斤、綿子十斤、綿花三十斤、絺布六十四。</p>
<p>성종 69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7월 5일(병오) 7번째기사</p>	<p>윤계겸(尹繼謙) 등이 차자(筭子)를 올리기를, “심안인(沈安仁)을 경원 부사(慶源府使)로, 고택(高澤)을 서흥 부사(瑞興府使)로 삼으셨는데, 심안인은 명목은 무과(武科)에 급제하였다고 하지만 사어(射御)하는 데 모자람이 있으니, 아무리 조그마한 곳이라도 방어하게 할 수 없는데, 더구나 큰 진(鎭)이겠습니까? 그리고 고택은 관리의 임무를 익히지 않았고, 나이가 또한 많고 쇠약하여 생각이 흐린데다 술에 빠져 사니, 비록 십실지읍(十室之邑)도 다스릴 수 없는데 더구나 큰 고을이겠습니까? 엿드려 바라건대,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시고 다시 현명하고 능력이 있는 이를 선택하셔서 봉강(封疆)을 튼튼히 하여 민생을 편안하게 하소서.” 하니, 원상(院相)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인지(鄭麟趾)·한명회(韓明澮)·조석문(曹錫文)·윤자운(尹子雲)이 의논드리기를, “아뢴 바에 의하여 개차(改差)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尹繼謙等又上筭子曰： 以沈安仁爲慶源府使，高澤爲瑞興府使，安仁名雖武舉，短於射御，雖一障尙不可，況巨鎭乎？高澤不閑吏務，年又衰老，志慮荒耗，加以沈湎，雖十室之邑尙不可，況大邑乎？伏望亟收成命，更選賢能，以固封疆，以安民生。命議于院相。鄭麟趾、韓明澮、曹錫文、尹子雲議：“依所啓竝改差，何如？”從之。</p>

<p>성종 69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7월 17일(무오) 2번째기사</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정칭(鄭僞)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대전(大典)》에 ‘본처가 있으면서 장가를 들었다가 즉시 발각되지 않고 본인이 죽은 뒤에 자손들이 〈서로〉 적(嫡)을 다투는 자는 선취(先娶)를 적으로 삼는다.’ 한 것은, 대개 한 집안에 두 적이 없는 것이 예(禮)의 상법(常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 사람의 본처가 있다면 본인이 살았거나 죽었거나 관계없이 법으로 당연히 다스릴 것인데, 더구나 첩으로 적처를 삼는 것이겠습니까? 홍윤성이 김씨에게 장가들 때에 처음에는 편지로 약혼을 하였으나 끝내는 예(禮)를 이루지 아니하고 억지로 장가들었으니, 이것은 바로 첩인 것입니다. 지금 의논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는, ‘홍윤성의 아버지 홍제년(洪濟年)이 〈그의 아들이〉 후사가 없음을 민망하게 여겨서 예서(禮書)로써 김씨의 집안과 약혼을 하게 하였으니, 그의 아들이 장가들 때 비록 혹 올바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것인데 무엇이 잘못인가?’ 하고, 어떤 사람은 ‘홍윤성이 장인인 남육(南陸)의 복(服)을 입지 않았으니, 만약 남씨를 버리지 않았다면 어찌 이렇게까지 하였겠는가?’ 하고, 어떤 이는, ‘남씨가 만약 버림받지 않았다면 김씨가 명부(命婦)로서 대궐에 나가는데도 남씨는 어찌하여 말하지 않았겠으며, 홍윤성이 죽자 명(命)으로 전죽(饘粥)을 내려 주었을 때 김씨 혼자서 그것을 받고 남씨는 무엇 때문에 나오지 않았겠는가? 이것으로 논한다면 후처 된 것이 분명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혼취(婚娶)할 때 김씨의 집안에서 햇불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마침 홍윤성의 행차가 다른 길로부터 갔으므로 만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성례(成禮)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 신 등은 생각하건대 의논하는 자들의 말이 특히 김씨를 비호(庇護)하여 왜곡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납채(納采)할 때의 일을 보면 홍제년이 그의 노복(奴僕)들에게 경계하기를, ‘남씨가 집에 있다는 것을 누설하지 않게 조심하라.’ 하였으니, 이것은 부자(父子)가 함께 속인 것입니다. 이러</p>	<p>○司憲府執義鄭僞等上疏曰： 《大典》，‘有妻娶妻，不卽發覺，身沒後子孫爭嫡者，以先爲嫡。’蓋家無二嫡，禮之經也。苟有二嫡，身無存沒，法所當治，況以妾爲妻者乎？洪允成之娶金氏也，始則密爲書以約婚，終則不成禮以逼娶，卽是妾耳。今之議者，或云：“允成之父濟年閱其無嗣，以禮書約婚於金氏之家，娶之時，雖或不正，承其父命，又何咎焉？”或言：“允成不行妻父南陸之服，若不棄南氏，則豈至如是乎？”或言：“南氏若不見棄，則金氏以命婦詣闕，而南氏何爲不自言耶？及允成死，命賜饘粥，金氏獨出而受之，南氏何爲不出乎？以是論之，爲後妻明矣。”或言：“婚娶之時，金氏之家非不設炬也，適允成行自他路，故不遇耳，是未可謂不成禮也。”臣等以爲議者之說，特以庇金氏而曲爲之辭爾。觀納采之時，濟年戒其奴僕曰：“南氏在堂之事，慎勿洩露”，則是父子交相爲詐也。如此而乃曰承其父命可乎？允成鍾愛金氏，欲爲後妻，戶籍濫稱貞敬夫人，以自彌縫，何有於愛</p>
--	--	--

	<p>한데도 그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홍윤성이 김씨를 무척 사랑하여 후처로 삼고자 해서 호적에 함부로 정경 부인(貞敬夫人)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미봉(彌縫)하였는데, 애정이 해이해진 부옹(婦翁)에 대하여도 복(服)을 입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증거로 취하는 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홍윤성의 성품이 본래 사나우므로 남씨가 이리나 호랑이같이 두려워하여, 앞으로 버리지만 않았으면 하고 바라기에 겨를도 없는데 감히 김씨와 명부(命婦)를 다투겠습니까? 형세가 이미 이와 같은데 잘난 척하는 얼굴로 김씨와 하사(下賜)한 죽을 다투어 가면서 받겠습니까? 홍윤성이 햇불을 설치한 곳을 경유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서 교배(交拜)와 합근(合卺)의 예를 모두 이루지 않았으니 그가 강제로 장가든 것이 분명합니다. 설사 혼취(婚娶)를 예절대로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유처 취처율(有妻娶妻律)을 면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성례(成禮)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김씨는 명망이 있는 집안인데도 홍윤성이 이미 비례(非禮)로 장가들고 또 비례로 총애하여 강상(綱常)을 문란하게 하고 나라의 법을 범하였으니, 이보다 더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홍윤성이 이미 죽었으니, 비록 그에게 죄를 가할 수는 없지만 어찌 잘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가 한 바를 들어주고 법으로 바로잡지 않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전하께서 홍윤성의 적사(嫡嗣)가 없음을 가련하게 여기시더라도 예법(禮法)이 훼손되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弛之婦翁未可以不行其服取以爲證也? 允成性本強戾, 南氏畏之如豺虎, 將冀不絕之不暇, 敢與金氏爭爲命婦乎? 勢卽如此, 敢抗顏而與金氏爭受賜粥乎? 允成不由設炬之處, 進從他路, 行拜合卺皆不成禮, 則其爲逼娶也明矣。 設使婚娶如禮, 猶不免於有妻娶妻之律, 況不成禮乎? 金氏望族也, 而允成旣以非禮娶之, 又以非禮寵之, 亂綱常犯邦憲, 罪孰大焉? 今允成旣死, 雖不得加其罪, 豈宜承誤聽其所爲, 而不以法正之乎? 殿下縱憐允成之無嫡嗣, 其於禮法之毀何? 不聽。</p>
<p>성종 69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7월 22일(계해) 2번째기사</p>	<p>제도(諸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지금 가을비가 그치지 않아 곡식이 손상될까 두려우니, 그 범람한 상황과 손상된 수를 자세히 살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p>	<p>○下書諸道觀察使曰: 今秋雨不止, 恐傷禾稼, 其泛濫之狀, 損傷之數, 審察以聞。</p>
<p>성종 69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7월 23일(갑자)</p>	<p>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유지(柳攄)가 탄일(誕日)의 하례를 인해서 위징(魏徵)의 십점소(十漸疏)를 써서 병풍을 만들고, 견단(絹段)에다 도금[銷金]으로 꾸며서 진상(進上)하였더니, 임금(上)이 수서(手書)로 칭찬하여 유시(諭示)하기</p>	<p>○慶尙道觀察使柳攄因賀誕日, 書魏徵《十漸疏》爲屏, 粧用銷金絹段進之, 上手書褒諭曰:</p>

4번째기사	<p>를, “경(卿)이 전번에 후설(喉舌)로 있으면서 직무에 성실하여, 보고 들은 것이 있으면 모두 숨기지 않고 진달하였으므로, 내가 경의 충성을 가상하게 여겨서 중한 직임에다 발탁하여 맡긴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헤아려 보면, 남방(南方)의 백성들이 틀림없이 경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또 정무(政務)를 다스리는 여가에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아야겠다고 마음을 두고 잠규(箴規)를 병풍에다 써서 나의 마음을 옥루(屋漏)에서 경계하게 하니, 경의 한결같은 마음을 내가 감히 잊어버리겠는가? 늘 좌우에 비치하여 두고서 경이 나에게 향한 정성을 생각하겠다. 그리고 지금 어의(御衣)를 하사하여 경의 임금을 위하고 공경하는 뜻을 표창한다.” 하고, 곧 중관(中官) 엄용선(嚴用善)에게 명하여 선온(宣醞)을 하사하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p>	<p>卿曩在喉舌，慇懃乃職，有所見聞，盡達不諱，予嘉卿忠，擢寄重任。由此度之，南方之民，必受卿惠矣。又於治務之餘，留心格君之非，書箴規於屏風，警予心於屋漏，卿之一心，予敢忘之？常置左右，以想卿向我之懇。今賜御衣，以彰卿愛君之意。仍命中官嚴用善齎醞往慰之。</p>
성종 69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7월 25일(병인) 1번째기사	<p>동교(東郊)에 거둥하여 관가(觀稼)하고 농부(農夫)에게 술을 공궤(供饋)하도록 명하였다. 주정처(晝停處)에 이르러 종재(宗宰)와 제장(諸將)들에게 술과 풍악을 내려 주면서 말하기를, “농사가 조금 잘 되었으니 나의 마음도 기쁘다. 경들도 함께 마시고 일제히 즐기라.” 하고, 또 어가를 따라온 군사들에게도 두루 공궤하도록 명하였다.</p>	<p>○丙寅/幸東郊觀稼，命饋農人酒。至晝停處，賜酒樂于宗宰諸將曰：“農事稍盛，予心喜焉。卿等共飲一歡。”又命遍饋隨駕軍士。</p>
성종 69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7월 29일(경오) 5번째기사	<p>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의 특송(特送) 석야장건(蓆野將堅)이 와서 토의(土宜)를 바쳤다. 그 글에 이르기를, (...) 그리고 또 내려 주신 토의(土宜)인 정포(正布) 15필, 면포 8필 및 지난 을미년의 상례(常例)로 내려 주신 조미(造米) 1백 석(碩), 황두(黃豆) 1백 석은 은혜를 거듭 받은 것이니, 황송하고 두려움이 지극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진상(進上)하는 물품은 유자(繻子) 1필, 단자(段子) 1필, 대도(大刀) 2과(把), 전촉(箭鏃) 1백 근(根)이오니 영수하시면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p>	<p>○對馬州太守宗貞國特送蓆野將堅來獻土宜。其書曰：(…)又所賜之土宜正布一十五匹、綿布八匹及去乙未年例賜造米一百碩、黃豆一百碩，重領恩意，不任誠惶誠懼之至。進上繻子一匹、段子一匹、大刀二把、箭鏃百根，照領多幸。</p>

<p>성종 70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8월 3일(계유) 2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지난번 영천(榮川)·안동(安東)·풍기(豐基)·봉화(奉化) 등지에서 비로 인하여 산이 무너졌는데, 백성들이 죽거나 다치고, 토지가 많이 묻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깔려서 죽은 사람은 그 관할 관청으로 하여금 조제(弔祭)를 베풀게 하고, 깔려서 부상한 사람은 그 친척에게 쌀과 장(醬)을 주어 극진히 구제하게 하며, 앞으로 3년간 환상(還上)과 부역(賦役)을 감면하고, 토지가 묻힌 사람은 관청에서 한전(閑田)을 주어 생활하게 하소서. 여러 관사의 노비(奴婢)는 명년(明年)에 한하여 신공(身貢)을 감하고, 정병(正兵)·선군(船軍)·서리(書吏) 등 모든 일정한 복무가 있는 사람들은 각 관서에서 놓아 보내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據慶尙道觀察使啓本啓：“向時榮川、安東、豐基、奉化等處，因雨山頽，人民死傷，田土覆沒。其壓死人，令所在官弔祭，壓傷人授族親官給米醬，曲加撫恤，限三年鑿還上及賦役，其田地覆沒者，官給閑田以資其生。諸司奴婢，限明年減身貢，如正兵、船軍、書吏一應有役人，令各衙門放送何如？”從之。</p>
<p>성종 70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8월 18일(무자) 3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선위사(宣慰使) 김자정(金自貞)의 행차에, 제포(薺浦)에 사는 왜인(倭人) 시라여문(時羅汝文)가 부산포(富山浦)에 사는 왜인 신이라(信而羅)가 길을 안내한 공(功)이 있었으니, 소재한 고을의 첨절제사(僉節制使)로 하여금 직접 대접하게 하고, 각기 쌀·콩 아울러 5석(碩)씩을 내려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曰：“宣慰使金自貞之行，薺浦居倭時羅汝文、富山浦居倭信而羅指路有功，令所在僉節制使親饋之，各賜米豆并五碩何如？”從之。</p>
<p>성종 70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8월 19일(기축) 2번째기사</p>	<p>충훈부(忠勳府)에서 아뢰기를, “좌명 공신(佐命功臣) 김덕생(金德生)의 적장손(嫡長孫) 김구정(金九鼎)은 상(喪)중에 고기를 먹어 풍속을 해치고 문란하게 하는 등 불의(不義)한 일을 많이 행하였으므로, 지금 사헌부(司憲府)에 탄핵되어서 죄를 받아 변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청컨대 김구정의 장자(長子)인 김운원(金閏元)으로 하여금 김덕생의 제사를 받들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忠勳府啓：“佐命功臣金德生嫡長孫九鼎居喪食肉，傷風敗俗，多行不義，今爲司憲府所劾，被罪徙邊。請令九鼎長子閏元奉德生祀。”從之。</p>
<p>성종 70권, 7년(1476)</p>	<p>의정부 좌의정(議政府左議政) 심희(沈澮)와 예조 참판(禮曹參判) 이극돈(李克)</p>	<p>○遣議政府左議政沈澮、禮曹參判李</p>

<p>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8월 22일(임진) 3번째기사</p>	<p>墩)을 보내어, 주본(奏本)을 가지고 북경[京師]으로 가게 하였으며, 도승지(都承旨) 현석규(玄碩圭)에게 명하여 선온(宣醞)을 가지고 모화관(慕華館)에 가서 전별(餞別)하게 하였다. 그 주본(奏本)에 이르기를, “신이 삼가 보건대 성화(成化) 6년 2월 22일에 신(臣)과 처(妻) 한씨(韓氏)에게 고명(誥命)·관복(冠服)을 내려 주셨던 것은 그 은혜와 영광을 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씨(韓氏)가 성화 10년 4월 15일에 병(病)으로 죽었습니다. 이제 신의 조모(祖母)인 윤씨(尹氏)가 신에게 이르기를,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받들어 계승하는 데에 내조(內助)를 오랫동안 비워 둘 수 없고, 또 <대를> 이을 자식도 없으니, 윤씨(尹氏)를 맞아서 처(妻)로 삼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이미 배우자(配耦者)를 취(娶)하였으니 도리(道理)상 아뢰는 것이 마땅하므로, 감히 사유를 갖추어서 아뢰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聖上)께서 특별히 고명(誥命)·관복(冠服)을 내려 주신다면 더 원(願)할 것이 없겠습니다. 어전(御前)의 방물(方物)은, 황세저포(黃細苧布) 20필(匹),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50필, 용문염석(龍文簾席) 4장(張), 황화석(黃花席) 10장, 만화석(滿花席) 10장, 만화방석(滿花方席) 10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인삼(人蔘) 1백 근(斤), 잡색마(雜色馬) 20필이고, 황태후(皇太后)의 <예물은> 홍세저포(紅細苧布) 1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20필, 만화석(滿花席) 8장, 만화방석(滿花方席) 8장, 잡채화석(雜彩花席) 8장이며, 중궁(中宮)의 <예물은> 황태자(皇太子)와 같이,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20필, 만화석(滿花席) 10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잡색마(雜色馬) 4필입니다.” 하였다.</p>	<p>克墩齋奏本如京師，命都承旨玄碩圭齋宣醞往餞于慕華館。其奏曰：臣竊照成化六年二月二十二日欽賜臣及妻韓氏誥命冠服，恩榮無比。不幸韓氏於成化十年四月十五日病逝。今臣祖母尹氏謂臣：“奉承宗祀，內助不可久缺，且無嗣子，納尹氏爲妻。”臣竊念既娶配耦，理宜陳奏，敢具由以聞。伏望聖慈特賜誥命冠服，不勝至願。</p> <p>御前方物，黃細苧布二十四、白細苧布二十四、黑細麻布五十四、龍文簾席四張、黃花席十張、滿花席十張、滿花方席十張、雜彩花席十張、人蔘一百斤、雜色馬二十四。皇太后：紅細苧布十四、白細苧布十四、黑細麻布二十四、滿花席八張滿花方席八張、雜彩花席八張。中宮同。皇太子，白細苧布二十四、黑細麻布二十四、滿花席十張、雜彩花席十張、雜色馬四匹。</p>
<p>성종 71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9월 9일(기유)</p>	<p>기영회(耆英會)에 선온(宣醞)을 내렸다.</p>	<p>○賜宣醞于耆英會。</p>

5번째기사	<p>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가 와서 사은(謝恩)하였는데, 이는 바로 전날 중관(中官)을 보내어 선은(宣醢)을 내려 준 때문이었다. 전교(傳敎)하기를,</p> <p>“어제 압구정(狎鷗亭)에 대한 시(詩)를 읊게 하였는데, 시가 보잘것이 없었다.”</p> <p>하니, 한명회가 부복(俯伏)하여 아뢰기를,</p> <p>“어제 용선(用善)과 사사로이 서로 농담한 것이어서 감히 아뢰는 것이 못됩니다.”</p> <p>하였다.</p>	<p>○上黨府院君韓明澮來謝恩，以昨日遣中官賜宣醢也。傳曰：“昨請狎鷗亭題詠，然詩不足觀也。”明澮俯伏曰：“昨與用善私相戲語，非敢啓也。”</p>
<p>성종 72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10월 1일(신미) 3번째기사</p> <p>성종 72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10월 7일(정축) 10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하여 아뢰기를,</p> <p>“금산군(錦山郡) 사람 어모 장군(禦侮將軍) 이원곤(李元坤)은 그 어미를 봉양함에 있어서 자식의 직분을 다하여, 어미가 병들었을 때에 직접 탕약(湯藥)을 달여서 받드시 먼저 맛을 보고, 옷은 허리띠를 풀지 않았으며, 어미가 죽자 곁을 떠나지 않고 거적 베개를 베고 슬피 부르짖으면서, 죽만 먹고 물 마시며 집안 일은 돌보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장사(葬事)를 치르고서는 묘(墓) 옆에 여막(廬幕)을 짓고 조석(朝夕) 상식(上食)을 손수 올리고, 비록 하찮은 물건이라도 받드시 제(祭)를 드린 뒤에 먹으며, 술을 마시지 않고, 하루 세 번씩 분향(焚香)하고, 저물녘에는 늘 묘 곁에 앞드려 모시며, 삼년상(三年喪)을 마치도록 한 번도 귀가(歸家)하지 않고 밤낮으로 호곡(呼哭)하면서 정성과 공경을 다했습니다. 또 무안현(務安縣) 사람 양가녀(良家女) 자비(自非)는 그의 남편인 박기(朴耆)가 악질(惡疾)에 걸리자 스스로 왼쪽의 손가락을 잘라 음지에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 혹은 국에 타고 혹은 술에 타서 마시게 하여 드디어 낫게 하였으며, 정읍현(井邑縣) 사람 전극공(全克恭)은 나이 겨우 10세에 그의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가자 그의 형수(兄嫂)인 중비(仲非)와 생사(生死)를</p>	<p>○禮曹據全羅道觀察使啓本啓：“錦山郡人禦侮將軍李元坤，奉養其母，能盡子職，母有病，親自湯藥，必先嘗之，衣不解帶。及母死不離側，枕若哀號，歔粥飲水，不顧其家。及葬，廬于墓側，朝夕親自設奠，雖微物，必祭而後食，不飲酒，日三焚香，至昏暮常伏墳側，喪三年，一不歸家，日夜呼哭，克盡誠敬。務安縣人良女自非，其夫朴耆有惡疾，自斷左手指端，陰乾爲末，或和羹或調酒，以飲之遂愈。井邑縣人全克恭年纔十歲，其父爲虎所攬，與其兄妻仲非，不顧生死，以所持鎌，挺身力救得不死，孝誠可嘉。依《大典》，元坤賞職，克恭、仲非旌門復戶。”從之。</p>

	<p>돌보지 않고 갖고 있던 낫[鎌]으로 앞장서서 힘껏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였으니, 그 효성(孝誠)이 가상(嘉尙)할 만합니다. 《대전(大典)》에 의하여 이원곤은 상(賞)으로 벼슬을 내리고, 전극공과 중비는 정문 복호(旌門復戶)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성종 72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10월 11일(신사) 1번째기사</p>	<p>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대마도(對馬島)에서 특송(特送)한 성종(盛種) 등을 인견(引見)하는데,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우의정(右議政) 윤자운(尹子雲)·상락 부원군(上洛府院君) 김질(金磧)·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극배(李克培)·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승소(李承召)가 입시(入侍)하였다. 술이 한 순배 돌아, 임금이 성종(盛種)에게 하교(下教)하기를,</p> <p>“도주(島主)가 성심(誠心)으로 순종하여 선위관(宣慰官) 김자정(金自貞)이 갔을 때에 매우 후하게 예우(禮遇)했다 하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너는 돌아가거든 도주에게 말하라.”</p> <p>하고, 중추(中樞) 평무속(平茂續)과 첨지(僉知) 평국충(平國忠)에게 하교하기를,</p> <p>“선위관(宣慰官)이 갔다 올 때에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호행(護行)했다 하니, 너희의 정성을 가상하게 여긴다.”</p> <p>하고, 성종에게 명하여 잔을 올리게 하고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下賜)하였다. 성종 등이 나가자 시위(侍衛)한 여러 장수에게 술을 주게 하였다.</p> <p>임금이 정승들에게 김견수(金堅壽)의 일을 말하니, 정창손(鄭昌孫)이 대답하기를,</p> <p>“다만 기생(妓生)만 데리고 다닐 뿐 아니라, 짐바리[馱]의 수량도 많으니, 탐욕과 방증이 매우 심합니다.”</p> <p>하였고, 한명회(韓明澮)는 말하기를,</p>	<p>○辛巳/御宣政殿，引見對馬島特送盛種等，領議政鄭昌孫、上黨府院君韓明澮、右議政尹子雲、上洛府院君金磧、兵曹判書李克培、禮曹判書李承召入侍。酒一行，上教盛種曰：“島主誠心效順，宣慰官金自貞之往，禮待甚厚，予甚嘉之。爾歸語島主。”教中樞平茂續、僉知國忠曰：“宣慰官往還，汝等盡心護行，嘉汝誠款。”命盛種進爵，賜物有差。盛種等出，命賜侍衛諸將酒。上語政丞等以金堅壽之事，鄭昌孫對曰：“非止携妓，馱數亦多，貪縱滋甚。”明澮曰：“人心不可忖度。然於萬人所視，豈能盜載官物而來？”上曰：“朝廷則以爲大臣，而所行如此，委任之意安在？”</p> <p>【史臣曰：“明澮嘗詣差備門內，營救堅壽甚至，其後收議之日，亦多庇護，至是所對又如此。”】</p>

	<p>“인심(人心)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인(萬人)이 보는 곳에서 어떻게 관물(官物)을 도둑질해 신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조정(朝廷)에서는 대신(大臣)이라고 하는데, 행동이 이러하니, 믿고 맡긴 본 의가 어디에 있는가?”</p> <p>하였다.</p> <p>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한명회(韓明澮)가 일찍이 차비문(差備門) 안에 나가 김견수(金堅壽)를 두둔해 구원하기를 매우 지극히 하였고, 그 뒤에 수의(收議)하는 날에도 많이 비호(庇護)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대답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하였다.</p>	
<p>성종 72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10월 15일(을유) 3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p> <p>“예전에는 대마도(對馬島)의 특송인(特送人)에게 쌀이나 콩을 <공식으로> 준 예가 없었으나 다만 지난 갑오년에 온 무승(茂勝)과 이번 병신년에 온 조국차(助國次) 등이 삼포(三浦)의 왜인(倭人)을 추쇄(推刷)할 때에 맡은 일이 중(重)하였으므로, 상관인(上官人)에게 쌀·콩 아울러 30석(碩), 부관인(副官人)에게 쌀·콩 아울러 10석을 주었습니다. 이번에 특송한 성종은 이미 사은(謝恩)하였고, 또 선위사(宣慰使)를 호송(護送)하여 왔으며, 또 선위사가 대마도에 있을 때에 도주(島主)도 쌀 40여 석을 주었다 하니, 청컨대 조국차의 예(例)에 의하여 상관인 성종에게는 쌀·콩 아울러 30석, 부관인 국정(國正)에게는 쌀·콩 아울러 10석을 주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 “前此對馬島特送人無題給米豆之例。 但去甲午年出來茂勝、今丙申年出來助國次等, 推刷三浦倭人, 委來事重, 給上官人米豆并三十碩, 副官人米豆并十碩。 今特送盛種既爲謝恩, 又護送宣慰使而來, 且宣慰使在島時, 島主亦餽米四十餘碩, 請依助國次例, 給上官人盛種米豆并三十碩, 副官人國正米豆并十碩。” 從之。</p>
<p>성종 72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10월 21일(신묘) 3번째기사</p>	<p>종정국(宗貞國)이 특송(特送)한 성종(盛種) 등 6인과 왜중추(倭中樞) 평무속(平茂續) 등 3인이 하직하니, 승지(承旨) 임사홍(任士洪)에게 명하여 음식을 대접해서 보내게 하였다. 예조(禮曹)의 답서(答書)에 이르기를,</p> <p>“전사(專使)의 서문(書問)으로 기미(氣味)가 청승(淸勝) 하심을 알게 되어 위안이 됩니다. 보내신 예물(禮物)은 삼가 아뢰어 수령(收領)하였습니다. 토산물</p>	<p>○宗貞國特送盛種等六人、倭中樞(平茂續) [平茂續] 等三人辭, 命承旨任士洪饋送。 禮曹答書曰: 專使書問, 得諳氣味淸勝開慰。 所獻禮物, 謹啓收訖。 將土宜正布二十七</p>

	<p>로서 정포(正布) 27필과 면포(綿布) 13필, 그리고 올해 병신년의 예(例)로 조미(糙米)·황두(黃豆) 각각 1백 석(碩)을 하사(下賜)하여 돌아가는 사신(使臣)에게 부쳐 보내니, 살펴 받아 주시오.” 하였다.</p>	<p>匹、綿(西) [布] 一十三匹及今丙申年例賜糙米、黃豆各一百碩，就付回使，惟照納。</p>
<p>성종 72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10월 21일(신묘) 8번째기사</p>	<p>이보다 앞서, 현명(賢明)한 임금과, 앞서는 현명했다가 암군(暗君)이 된 이와, 현비(賢妃)의 사적(事跡)을 세 개의 병풍에 그려서 문신(文臣)으로 하여금 제목(題目)을 나누어 시(詩)를 짓게 하고, 또 장령(掌令) 박효원(朴孝元)·응교(應敎) 유순(柳洵)·진사(進士) 성담수(成聘壽)에게 명하여 사적과 시를 그 위에 쓰도록 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박효원 등이 써서 바치니, 어의(御衣) 각각 한 벌씩을 내리고 이어 선온(宣醞)을 대접했다.</p>	<p>○先是命採明君、先明後暗君、賢妃事跡，畫爲三屏，令文臣分題作詩，又命掌令朴孝元、應校柳洵、進士成聘壽書事跡與詩于其上，至是孝元等書進，賜御衣各一領，仍饋宣醞。</p>
<p>성종 73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11월 1일(신축) 3번째기사</p>	<p>주서(注書)에게 명하여 형옥(刑獄)을 가서 살펴보게 하였더니, 의금부(義禁府)에 갇힌 자가 19인이었고, 전옥서(典獄署)에 갇힌 자가 20인이었는데, 응당 죽여야 할 죄인은 6인이었다. 명(命)하여 술과 고기를 내려 주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오랫동안 지체된 자는 속히 판결하여 내보내도록 하라.” 하였다.</p>	<p>○命注書往審刑獄，義禁府囚者十九，典獄署囚者二十，而罪應死者六人。命賜酒肉，仍傳曰：“久滯者，速決放。”</p>
<p>성종 73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11월 13일(계축) 4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왜인(倭人)에게 지급한 무명[綿布]의 수량을 상고해 보니, 을미년에는 경중(京中)에서 9천 8백 27필을, 경상도(慶尙道)에서 1만 7천 3백 81필을 지급하였고, 병신년에는 경중에서 2만 1천 5백 88필을, 경상도에서 1만 5천 8백 33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해마다 갑절씩 더하니, 경중에는 포화(布貨)의 저축되는 수량이 적어져서 장차 이어대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청컨대 장차 경상도에서 경창(京倉)에서 받아들이는 전세(田稅)의 조미(糙米)와, 사재감(司宰監)에서 받아들이는 어선 전망세(魚船箭網稅)와, 내섬시(內贍寺)·내자시(內資寺)에서 받아들이는 꿀[淸蜜]·팥[小豆] 등은, 왜인에게 주는 데 소용될 만한 정도에 한하여 무명으로 환산하여 각각 그 고을에서 수납(收納)·</p>	<p>○戶曹啓：“今考倭人支給緜布之數，乙未年，京中九千八百二十七匹，慶尙道一萬七千三百八十一匹，丙申年，京中二萬一千五百八十八匹，慶尙道一萬五千八百三十三匹。如此年年倍加，京中布貨留儲數少，將至難繼。請將慶尙道京倉納田稅糙米，司宰監納魚船箭網稅，內贍、內資寺納淸蜜小豆等，限倭人支給足用間，以綿布計折，各其官收納會計施行，歲抄錄數啓聞。”從</p>

	회계(會計)하여 시행하되, 세초(歲抄)에 그 수량을 기록하여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之。
성종 73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11월 18일(무오) 6번째기사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경기(京畿)의 금천(衿川)에 사는 사노(私奴) 복만(卜萬)의 아내인 양녀(良女) 춘덕(春德)과 충청도(忠淸道)의 한산(韓山)에 사는 선군(船軍) 최중(崔衆)의 아내인 양녀(良女) 귀비(貴非) 등은 모두가 한꺼번에 아들 셋을 낳았으니, 청컨대 전례(前例)에 의하여 각각 쌀·콩 아울러 10석(石)씩을 내려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禮曹啓: “京畿衿川居私奴卜萬妻良女春德、忠淸道韓山居船軍崔衆妻良女貴非等, 皆一產三子, 請依例各賜米豆并十碩。” 從之。
성종 73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11월 20일(경신) 4번째기사	호조(戶曹)에 전지하기를, “해마다 봉보 부인(奉保夫人) 백씨(白氏)에게 조미(糙米) 20석(碩)과 황두(黃豆) 15석을 내려 주게 하라.” 하였다.	○傳旨戶曹曰: “歲賜奉保夫人白氏糙米二十碩、黃豆十五石。”
출처	내용	원문
성종 74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12월 5일(갑술) 7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전라우도(全羅右道)의 분대(分臺) 김종형(金仲衡)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고창 현감(高敞縣監) 박임정(朴林楨)은 아전(衙前) 2백 88명을 원수(元數) 이외에 더 차지하고서 쌀과 깨 따위의 여러 가지 물건을 바치라고 요구하였으며, 또 아전에게 매[鷹子]를 바치라고 요구하여 가산(家産)을 죄다 팔게 만들었습니다. 침학에 끝이 없으니, 청컨대, 파직하여 내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司憲府據全羅右道分臺金仲衡啓本啓: “高敞縣監朴林楨, 衙前二百八十八名數外加占, 責納白米、荏子、雜物, 又責納鷹子於衙前, 以致盡賣家産, 侵虐無厭, 請罷黜。” 從之。
성종 74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12월 6일(을해) 3번째기사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최한정(崔漢禎) 등이 차자(筭子)를 올려 아뢰기를, “김주(金澍)가 반복한 변변치 못한 꼴은 이루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 김달전(金達全) 때부터 오랫동안 한명회(韓明澮)의 이웃에 살면서 한명회를 부형(父兄)처럼 섬겼고, 한명회는 그를 종[奴僕]처럼 대하였습니다. 그런	○司諫院大司諫崔漢禎等上筭子曰: 金澍反覆無狀之態, 不可殫記。自其父達全, 久爲韓明澮比隣, 事明澮如父兄, 明澮待之如奴僕。因緣請托, 得拜宣傳官, 超遷監察, 未幾求爲漆原縣

인연으로 청탁하여 선전관(宣傳官)에 제수되고 차서를 뛰어넘어 감찰(監察)로 옮겼었는데, 얼마 안가서 자신이 바라서 칠원 현감(漆原縣監)이 되었으니, 아마도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한명회가 깨 두斛[斛]6886) 를 받은 것은 다만 그중 작은 일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김주는 김국광(金國光)·김질(金磧)과도 가까운 친척인데, 김주가 늘 남과 말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한명회를 일컫고, 다음에 김질·김국광을 대고는 ‘다 내 숙부(叔父)요 형제[昆弟]다’라고 자랑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김주의 뇌물을 받은 사람을 ‘현풍(玄風)의 김 정승에게 깨 두 섬’ 이라고 적은 것은 반드시 김질이고, ‘김 정승에게 들깨[水荏子] 한 섬, 종에게 노자[行糧] 쌀 두 말 닻되’라고 적은 것은 반드시 김국광일 것이요, 다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김질은 먼저 스스로 인혐(引嫌)하지 않았고, 또 경연(經筵)에서 교묘한 말을 꾸며서 속였거니와, 또한 몸소 대궐에 나아가 아뢰어 변명하려고 반인(伴人)에게 미루어, 김주가 보낸 서신도 보지 못하고 김주가 준 물건도 받지 않은 듯이 하였으니, 탐욕하여 염치가 없을 뿐 아니라 천청(天聽)을 속이려고 한 죄가 이미 큼니다.

지난번 경연에서 대간(臺諫)이 김주가 준 물건을 추징하기를 계청(啓請)하니, 전하께서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셨는데, 윤사흔(尹士昕)은 대답하기를, ‘대간의 말대로 따라야 합니다’ 하였으나, 김국광만은 끝내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김국광이 김주의 뇌물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하여 윤사흔처럼 시원하게 말하여 성상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마음에 부끄러운 것이 있어 기가 죽어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명회·김국광·김질은 다 나라의 대신(大臣)이니, 녹위(祿位)가 극진하고 부귀(富貴)도 극진합니다. 국가에서 신뢰하여 존중하고 사민(士民)이 함께 우러러보니, 본래 청렴하고 근신하여 스스로 단속해야 마땅한데, 탐욕이 한이 없어 모두가 이렇게 되었는데도 그대로 두고 문책하지 않으면, 대신을 존대하는 뜻은 지극하겠으나, 국법이

監，蓋欲恣行其所欲也。明澹之受荏子二斛，特其小事也。不獨此也，金澹於金國光、金磧亦其切族也，澹常與人言，必先稱明澹，次及金磧、國光，而誇之曰：“皆吾叔父也，昆弟也。”以今觀之，受金澹之賂者，其曰‘玄風金政丞荏子二碩’者，必金磧也，其曰‘金政丞水荏子一碩，奴子行糧米二斗五升’者，必是國光也非他也。金磧既不先自引嫌，又構巧辭於經筵，亦已詐矣，又躬自詣闕，啓欲發明，而推調於伴人，似若不見金澹通書，不受金澹贈遺，非徒貪婪無恥，抑欲欺罔天聽，罪已深矣。日者於經筵，臺諫啓請追徵金澹贈遺之物，殿下顧問左右，尹士昕對曰：“當從臺諫之言”，獨國光終無一言。使國光不受金澹之賂，則何不快言以對聖問如士昕也？是必有愧於心而氣餒致然也。明澹、國光、金磧，皆國之大臣也，祿位極矣，富貴亦極矣。國家倚重，士民具瞻，固宜清慎自檢，而貪黷無厭，一至於此，置而不問，尊禮大臣之義至矣，其如國法之不行何？且隣官守令，同惡相濟，交相賂遺者亦多。伏望追徵受贈之物，并罷

	<p>행해지지 않는 것은 어찌하겠습니까? 또 이웃 고을의 수령(守令)들 중에 악한 일을 같이하여 서로 돕고 서로 뇌물을 보내는 자도 많습니다. 옳드려 바라건대, 증여받은 물건을 추징하고 모두 파직(罷職)하여 뒷사람을 징계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p>	<p>其職，以懲後人。不聽。</p>
<p>성종 74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12월 6일(을해) 6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증(贈) 영의정(領議政) 윤기견(尹起畎)의 아내 신씨(申氏)가 일찍이 과부가 되어 집이 가난하니, 해마다 봄·가을에 쌀 20석과 황두(黃豆) 10석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p>	<p>○傳旨戶曹曰：“贈領議政尹起畎妻申氏早寡家貧，每年春秋給米二十碩、黃豆一十碩。”</p>
<p>성종 74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12월 11일(경진) 2번째기사</p>	<p>영안북도 절도사(永安北道節度使) 여의보(呂義輔)에게 하유(下諭)하기를, “벌인(伐引)에 사는 야인(野人)은 2일정(二日程)이 넘는 곳에 있기는 하나, 모두 우리 나라의 울타리이므로 너그럽게 돌봐야 할 의리인데, 이제 아두(阿豆) 등이 많이 살해당하고 가산(家産)이 죄다 탕트으므로 매우 불쌍하니, 그 추장(酋長)이 내알(來謁)하고 쌀과 소금을 청구하면 적당하게 장만해 주어, 무휼(撫恤)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 또 김파다상(金波多尙)은 향화(向化)하여 서울에 있는데, 본가(本家)가 해를 당하였으므로 더욱 불쌍하니, 역시 쌀과 소금을 주어서 무휼하라.” 하였다.</p>	<p>○諭永安北道節度使呂義輔曰：野人居伐引者，雖在二日餘程，然皆我國藩籬，義當優恤，今阿豆等多被殺害，家産燒盡，甚可憐悶。若其酋長來謁求請米鹽，則隨宜備給，以示撫恤之意。且金波多尙向化在京，而本家遇害，尤可憐悶，亦給米鹽撫恤。</p>
<p>성종 74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12월 15일(갑신) 4번째기사</p>	<p>주서(注書)를 보내어 전옥(典獄)에 가서 죄수를 돌보는 여러 가지 일을 살피게 하고, 모두 9인의 죄수에게 술과 고기를 내리라고 명하였다.</p>	<p>○遣注書往審典獄恤囚諸事。囚凡九人，命賜酒肉。</p>
<p>성종 74권, 7년(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12월 25일(갑오) 3번째기사</p>	<p>이조(吏曹)에서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제 용천군(龍川郡)의 미라산(彌羅山) 지방에서 해산물이 나므로, 의주(義州)에 나누어 주었습니다마는, 그 곳에 사는 향리(鄉吏)의 집은 그대로 용천</p>	<p>○吏曹據平安道觀察使啓本啓：“今以龍川郡彌羅山之地有海産，割給義州，但此地住鄉吏戶，仍屬龍川何如?”從之。</p>

	<p>에 소속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성종 75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1월 8일(정미) 3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일본국(日本國) 통신사 사목(通信使事目)을 아뢰기를, “1. 통사(通事) 3, 압물(押物)6975) 2, 의원(醫員)1, 임시가정수(臨時加定數)1, 영선(領船)2, 사(使) 부사(副使)의 반당(伴尙)2, 서장관(書狀官)의 반당 1, 공인(工人)3. 1. 국왕(國王)에게 안자(鞍子) 1면(面)에 제연(諸緣)을 갖추어 1, 백세면주(白細綿紬) 20필(匹), 흑세마포(黑細麻布) 2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 남사피(藍斜皮) 10령(領), 인삼(人蔘) 1백 근, 표피심아 호피변아 전피리 좌자(豹皮心兒虎皮邊兒狹皮裏坐姉) 1사(事), 표피(豹皮) 10령, 호피(虎皮) 10령,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張), 만화석(滿花席) 10장, 만화방석(滿花方席) 10장, 백자(栢子) 4백 근, 청밀(淸蜜) 15두(斗). 1. 관령(管領)에게 백세면주 10필, 백세저포 10필, 흑세마포 10필, 잡채화석 15장, 표피 2령, 호피 4령. 1. 좌무위(左武衛)에게 흑세마포 15필, 백세면주 15필, 표피 2령, 잡채화석 15장, 호피 4령. 1. 대내전(大內殿)에게 백세면주 10필, 백세저포 10필, 흑세마포 10필, 잡채화석 15장, 표피 2령, 호피 4령. 1. 전산전(畠山殿)에게 흑세마포 15필, 백세면주 15필, 표피 2령, 호피 4령. 잡채화석 15장. 1. 경극전(京極殿)에게 백세면주 10필, 흑세마포 10필, 잡채화석 10장, 호피 2령, 표피 1령. 1. 산명전(山名殿)에게 백세면주 10필, 흑세마포 10필, 잡채화석 10장, 호피 2령, 표피 1령. 1. 대우전(大友殿)에게 백세저포 5필, 백세면주 5필, 잡채화석 10장.</p>	<p>○禮曹啓日本國通信使事目： 一。 通事三，押物二，醫員一，臨時加定數一。 領船二，使、副使伴尙二，書狀官伴尙一，工人三。 一。 國王處，鞍子一面諸緣具一，白細綿紬二十四，黑細麻布二十四，白細苧布二十四，藍斜皮十領，人蔘一百斤，豹皮心兒虎皮邊兒狹皮裏坐子一事，豹皮十領，虎皮十領，雜彩花席十張，滿花席十張，滿花方席十張，栢子四百斤，淸蜜十五斗。 一。 管領，白細綿紬十四，白細苧布十四，黑細麻布十四，雜彩花席十五張，豹皮二領，虎皮四領。 一。 左武衛，黑細麻布十五匹，白細綿紬十五匹，豹皮二領，雜彩花席十五張，虎皮四領。 一。 大內殿，白細綿紬十四，白細苧布十四，黑細麻布十四，雜彩花席十五張，豹皮二領，虎皮四領。 一。 畠山殿，黑細麻布十五匹，白細綿紬十五匹，豹皮二領，虎皮四領，雜彩花席十五張。 一。 京極殿，白細綿紬十四，黑細麻布十四，雜彩花席十張，虎皮二領，豹皮一領。</p>

	<p>1. 소이전(少貳殿)에게 백세저포 5필, 백세면주 5필, 잡채화석 10장, 표피 1령, 호피 2령.</p> <p>1. 일기주(一岐州) 좌지(佐志)에게 백세저포 5필, 백세면주 5필, 잡채화석 10장.</p> <p>1. 구주(九州) 송포(松浦) 지좌(志佐)에게 백세저포 5필, 백세면주 5필, 잡채화석 10장.</p> <p>1.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에게 백세저포 5필, 흑세마포 5필, 백세면주 5필, 인삼 30근, 백자(栢子) 1백 40근, 잡채화석 10장, 표피 4령, 중미(中米) 20석(石), 소주(燒酒) 50병(瓶), 청밀 5병.</p> <p>1. 반전(盤纏)으로 10승 마포(十升麻布) 25필, 9승 마포(九升麻布) 25필, 5승 정포(五升正布) 30필, 5승 면포(五升綿布) 30필, 조미(造米) 60석, 잡채화석 30장, 마른 잉어[乾鯉魚] 2백 미(尾), 포육(脯肉) 50첩(貼), 계(桂) 10각(角), 여러 가지 젓갈[醃] 8항(缸), 건반(乾飯) 10석, 백자 8석, 호피 3령, 표피 2령, 작설차[雀舌茶] 20근, 여러 가지 저(菹) 20항, 호포(虎脯) 40첩. 호육유제다식(虎肉有祭茶食) 10각, 건상어[乾沙魚] 2백 미, 청밀 15병, 각용(各容) 1두, 등유(燈油) 15두, 소주 1백병, 여러 가지 좌반(佐飯) 20상(箱), 황률(黃栗) 40두, 청주(淸酒) 3백 병, 건저(乾猪) 60구, 유둔(油苴) 10번(番).</p> <p>이상 여러 가지 물건은 호조(戶曹)의 담당 관리를 시켜 경중(京中)과 외방(外方)의 관아(官衙)의 회계(會計)를 상고하여, 경중과 충청도·전라도·경상도에 나누어 배정한다.</p> <p>1. 별례(別例)로 주는 술쌀[酒米] 20석, 누룩[麴] 3백 원(圓), 황두(黃豆) 10석, 백미(白米) 5석, 팔[小豆] 3석, 찹쌀[粘米] 3석, 밀가루[眞末] 3석, 보리쌀[麥米] 3석, 과실(果實)·염장(鹽醬) 등 식물(食物)은 호조(戶曹)를 시켜 편의에 따라 풍족하게 장만하여 제급(題給)하고, 초[燭] 20정(丁), 백주지(白注紙) 1백 권(卷)을 제공한다.</p>	<p>一。 山名殿，白細綿紬十四匹，黑細麻布十四匹，雜彩花席十張・虎皮二領，豹皮一領。 一。 大友殿，白細苧布五匹，白細絁紬五匹，雜彩花席十張。 一。 少二殿，白細苧布五匹，白細綿紬五匹，雜彩花席十張，豹皮一領，虎皮二領。 一。 一岐州佐志，白細苧布五匹，白細綿紬五匹，雜彩花席十張。 一。 九州松浦志佐，白細苧布五匹，白細絁紬五匹，雜彩花席十張。 一。 對馬州太守，白細苧布五匹，黑細麻布五匹，白細綿紬五匹，人蔘三十斤，栢子一百四十斤，雜彩花席十張，豹皮四領，中米二十石，燒酒五十瓶，淸蜜五瓶。 一。 盤纏，十升麻布二十五匹，九升麻布二十五匹，五升正布三十四，五升綿布三十四，造米六十碩，雜彩花席三十張，乾鯉魚二百尾，脯肉五十貼，桂十角，各色醃八缸，乾飯十碩，栢子八碩，虎皮三領，豹皮二領，雀舌茶二十斤，各色菹二十缸，虎脯四十貼，虎肉有祭茶食十角，乾沙魚二百尾，淸蜜十五瓶，各容一斗，燈油十五斗，燒酒一百瓶，各色佐飯二十箱，黃栗四十斗，淸酒三百瓶，乾猪六十口、</p>
--	--	---

	<p>1. 중선(中船)·대선(大船) 각각 1척은 새로 만든 실한 배로 선택하여 규례에 따라 꾸미고, 육물 제연(陸物諸緣)은 각각 3건(件)으로 하고, 선색(船索)은 3건으로 하되 그 중에서 2건은 숙마(熟麻)로 하고, 1건은 산마(山麻)로 하며, 배 위에 익숙한 건장하고 실한 사람들을 뽑아 사철의 의복을 미리 장만하여 포소(浦所)에 모이게 한다.</p> <p>1. 태평소(太平簫) 2, 대금(大琴) 1, 해금(絺琴) 1, 당비파(唐琵琶) 1, 장구[杖鼓] 1, 피리[鬻策] 1을 전례에 따라 상의원(尙衣院)을 시켜 제급(題給)한다.</p> <p>1. 해상 지로 사지(海上指路事知) 왜인(倭人) 2, 3명을 전례에 따라 행로에서 드는 반전(盤纏)을 주고 데려간다.</p> <p>1. 배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 선군(船軍)에게서 물건을 받고 이름을 속여서 대신 가는 자가 있을지도 모르니, 각각 그 소재관(所在官)의 수령(守令)이 요동(遼東) 호송군(護送軍)의 예(例)에 따라 친히 점검하여 압송하되, 이름을 속여 대신하는 자가 있으면 수령도 함께 논죄(論罪)한다.</p> <p>1. 선장(船匠) 2명, 노야장(爐冶匠) 2명, 화통장(火桶匠) 2명, 취리치(吹螺赤) 2명을 모두 재능 있는 사람으로 써 결군[格軍]에 채워 데려간다.</p> <p>1. 결군의 군기(軍器)·옷·갑옷·창(槍)·환도(環刀)·각궁(角弓)·목궁(木弓)과 기(旗)·휘(麾)·징[錚]·북[鼓]·대각(大角)·소각(小角)은 미리 장만하고, 화약(火藥)·화통(火桶)·유화(流火)·질러포(蒺藜炮)·직상화(直上火)·대정(大釘)·중정(中釘)·소정(小釘)·박철(朴鐵)·거말정(巨末釘)·정철(正鐵)·선녀(船柁)·휴지(休紙)는 그 도(道)에 제급(題給)하게 한다.</p> <p>1. 전의감(典醫監)의 여러 가지 약재(藥材)를 전례에 따라 제급한다.</p> <p>1. 사(使)·부사(副使)와 종사관(從事官)·압물(押物)·의원(醫員)·통사(通事)·군관(軍官)이 가질 새로 만든 색(色) 있는 궁전(弓箭)에 제연(諸緣)을 갖추어 각각 10부(部)를 군기시(軍器寺)에서 제급하게 하다.</p> <p>1. 사·부사 이하 각인(各人)과 결군[格軍]·지로(指路) 왜인(倭人)에게는 열 달</p>	<p>油菴十番。已上雜物，令掌戶曹，考京外官會計，京中及忠淸、全羅、慶尙道分定。一。別例，酒米二十石，麴三百圓，黃豆十石，白米五石，小豆三石，粘米三石，眞末三石，麥米三石，果實、鹽醬等食物，令戶曹隨宜豐備題給，燭二十丁，白注紙一百卷。一。中、大船各一新造。有實船隻選擇，依例修裝，陸物諸緣各三件，船索三件內，二件熟麻，一件山麻，擇船上慣習壯實人，四節衣服預備，浦所聚會。一。大平簫二，大琴一，絺[琴]一，唐琵琶一，杖鼓，鬻策一，依前例令尙衣院題給。一。海上指路事知倭人二三名，依前例，路次盤纏賞給率行。一。船[楫]不慣人，受船軍贈物，冒名代歸者，恐或有之，各其所在官守令，依遼東護送軍例，親點押送，如有冒名代身者，並守令論罪。一。船匠二名，爐冶匠二名，火桶匠二名，吹螺赤二名，並以才能人，充格軍率行。一。格軍軍器，衣、甲、鎗、環刀、角弓、木弓及旗、麾、錚、鼓、大小角預備，火藥、火桶、流火蒺藜炮、直上火、大、中·小釘、</p>
--	--	---

	<p>의 양료(糧料)·염장(鹽醬)·찬물(饌物)을 전례를 상고하여 제공한다.</p> <p>1. 배 위에 배설(排設)·포진(鋪陳)하는 것과 차일장(遮日帳)·유둔(油菴)은 각 관아에 저장한 것을 전례에 따라 제공한다.</p> <p>1. 격인(格人)을 제외한 사·부사 이하 각인에게는 우구(雨具)를 제공한다.</p> <p>1. 〈배의 보수는〉 선척 수보 차사원(船隻修補差使員)이 체제(體制)를 정하여 통사·압물과 함께 살핀다.</p> <p>1. 나장(螺匠) 4명은 좌수영(左水營)·우수영(右水營)의 나장 중에서 의복이 깨끗하고 물에 익숙한 건장하고 실한 자를 결군에 채워서 데려간다.</p> <p>1. 집찬 관노(執饌官奴) 2명을 결군에 채워서 데려간다.</p> <p>1. 배에서 쓸 세겘바[三甲繩]·밭줄[條繩]을 전례에 따라 제공한다.</p> <p>1. 배의 온갖 그릇을 전례에 따라 제공한다.</p> <p>1. 계본지(啓本紙)와 공사 하지(公事下紙)·붓[筆]·먹[墨]을 적당히 제공한다.</p> <p>1. 결군[格軍]은 각포(各浦)의 선군(船軍)을 제외하고 각 고을에서 누선(樓船)에 익숙한 50인을 전례에 따라 가려서 데려간다.</p> <p>1. 기풍제(祈風祭)는 울산(蔚山) 두 곳, 기장(機張) 한 곳, 동래(東萊) 두 곳, 김해(金海) 한 곳, 웅천(熊川) 세 곳, 거제(巨濟) 한 곳에서 전례에 따라 거행한다.</p> <p>1. 돛대[檣竿] 2개는 경상우도(慶尙右道)에서 벌채하여 다듬어서 쓰게 한다.” 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p>	<p>朴鐵、巨末釘，正鐵、船柶、休紙，令其道題給。一。典醫監各色藥材，依前例題給。一。使、副使及從事官、押物、醫員、通事、軍官所持新造有色弓箭，諸緣具各十部，令軍器寺題給。一。使、副使以下各人及格軍·指路倭人十朔糧料、鹽醬、饌物，考前例題給。一。船上排設鋪陳及遮日帳、油菴，以各官所儲，依前例題給。一。格人外，使、副使以下各人，雨具題給。一。船隻修補差使員定體通事·押物一同考察。一。螺匠四名，以左右水營螺匠，衣服淨潔慣水壯實者，充格軍率行。一。執饌官奴二名，充格軍率行。一。船上所用三甲繩·條繩，依前例題給。一。船上諸般器皿，依前例題給。一。啓本紙及公事下紙、筆、墨，量宜題給。一。格軍除各浦船軍外，各官樓船上慣習五十人，依前例揀擇率行。一。祈風祭，蔚山二處，機張一處，東萊二處，金海一處，熊川三處，巨濟一處，依前例行之。一。檣竿二，令慶尙右道斫伐，鍊正用之。從之。</p>
--	---	--

성종 76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2월 10일(기묘)
1번째기사

우의정 윤자운(尹子雲)과 서릉군(西陵君) 한치례(韓致禮)를 <중국에> 보내어, 표문(表文)을 받들고 경사(京師)에 가서, 중궁(中宮)의 고명(誥命)을 내려 준것에 대하여 사례(謝禮)하게 하니, 백관(百官)이 표문에 배례(拜禮)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 그 방물표(方物表)에 이르기를,
“하늘의 돌보심이 우악(優渥)하게 융성(隆盛)하시어, 특별히 총명(寵名)을 반사(頒賜)하셨습니다. 양전(壤奠) 비박(非薄)하나, 애오라지 변변치 않은 정성을 포함합니다. 삼가 황세저포(黃細苧布) 30필(匹)과 백세저포(白細苧袍) 30필, 흑세마포(黑細麻浦) 1백 필, 활흑세마포(闊黑細麻布) 30필, 용문 염석(龍文簾席) 4장(張), 황화석(黃花席) 15장, 만화석(滿花席) 15장, 만화방석(滿花方席) 15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5장, 인삼(人蔘) 1백 근(斤), 석등잔(石燈盞) 10사(事), 잡색마(雜色馬) 80필을 갖추었으니, 위의 물건들이 생산(生産)된 곳이 거친 땅[荒陬]이고, 만든 자가 양장(良匠)이 아니지만, 중심(中心)에서 나온 정성임을 양지(諒知)하시고, 굽어 향상(享上)의 예의(禮儀)를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가 황태후 폐하(皇太后陛下)께 진헌(進獻)하는 예물(禮物)로, 홍세저포(紅細苧布) 10필과 백세저포(白細苧布)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20필을, 만화석(滿花席) 10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을 갖추었습니다.
삼가 중궁 전하(中宮殿下)께 진헌하는 예물로, 홍세저포 10필과 백세저포 10필, 흑세마포 20필, 만화석 10장, 잡채화석 10장을 갖추었습니다.”
하고, 그 전문(箋文)에 이르기를,
“저위(儲位)께서 높이 거(居)하시니 진실로 여망(輿望)에 함(合)합니다. 예택(睿澤)이 쾌연(霏然)히 내려서 해방(海邦)에 미치어 베풀어졌으니, 감격(感激)함이 매우 깊고, 경황(驚惶)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臣)이 외람되게 용렬(庸劣)한 몸으로써 생성(生成)의 은혜를 참람히 받았습니니다. 지난번에 과처(寡妻)의 미봉(未封)으로 인하여 신위(宸威)를 우러러 모

○己卯/遣右議政尹子雲、西陵君韓致禮奉表如京師謝賜中宮誥命，百官拜表如儀。(…)其方物表曰：
天眷優隆，特頒寵命。壤奠非薄，聊表卑忱。謹備黃細苧布三十匹，白細苧布三十匹，黑細麻布一百匹，闊黑細麻布三十匹，龍文簾席四張，黃花席一十五張，滿花席一十五張，滿花方席一十五張，雜彩花席一十五張，人蔘一百斤，石燈盞一十事、雜色馬八十匹。右件物等，產自荒陬，製匪良匠，冀諒由中之懇，俯容享上之儀。謹備皇太后陛下進獻禮物：紅細苧布一十匹，白細苧布一十匹，黑細麻布二十四匹，滿花席一十張，雜彩花席一十張。謹備中宮殿下進獻禮物：紅細苧布一十匹，白細苧布一十匹，黑細麻布二十四匹，滿花席一十張，雜彩花席一十張。
其箋曰：
儲位尊居，允協輿望。睿澤導霏，覃施海邦。感激采深，驚惶失措。伏念臣猥以庸陋，叨荷生成。頃緣寡妻之未封，乃仰宸威而冒瀆，何圖賤价之返，獲承曰兪之音？天眷丁寧，誕頒如綸之誥，命服璀璨。又加在笥之恩，

	<p>독(冒瀆)하였었는데, 어찌 천개(賤价)가 돌아올 때 허락하신 유음(俞音)을 받을 것을 도모 하였겠습니까? 천권(天眷)이 정녕(丁寧)하시고, 사륜(絲綸)의 고명(誥命)을 크게 반강(頒降)하시니, 명복(命服)이 찬란히 빛납니다. 거기다가 또 사협(筭篋)의 은혜까지 더하셨으니 이토록 광영(光榮)스러움은 이 몸이 가루가 되어도 보답하기 어렵습니다. 삼가 이는 황태자 전하께서 영자(英姿)가 옥처럼 부드럽고, 위량(偉量)이 못처럼 깊으시며, 상성(上聖) 회수(懷綬)하심을 본받으시고, 폐읍(敝邑)의 향모(嚮募)함을 어여삐 여기셔서, 잔질(孱質)로 하여금 특별한 사은(私恩)을 우약(優渥)하게 입게 하신 것입니다. 신은 삼가 마땅히 제잠(駢岑)을 정성껏 지키며 항상 첨주(添壽)의 축원(祝願)을 드릴 것이며, 멀리 학금(鶴禁)을 바라보고 중윤(重潤)의 노래를 계속하겠습니다. 삼가 황태자 전하께 진헌하는 예물(禮物)로, 백세저포 20필, 흑세마포 20필, 만화석 10장, 잡채화석 10장, 인삼 50근, 잡색마 4필을 갖추었습니다.”</p> <p>하였다.</p>	<p>光榮及茲，糜粉難報。 茲(益) [蓋] 伏遇皇太子殿下， 英姿玉裕， 偉量淵沖， 體上聖之懷綬， 憐敝邑之嚮慕， 遂令孱質優被殊私。 臣謹當恪守鯁岑， 恒申添壽之祝， 遙瞻鶴禁， 載廣重潤之歌。 謹備皇太丁殿下進獻禮物： 白細苧布二十四， 黑細麻布二十四， 滿花席一十張， 雜彩花席一十張， 人蔘五十斤， 雜色馬四匹。</p>
<p>성종 76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2월 29일(무술) 2번째기사</p>	<p>(…) 경준이 또 아뢰기를, “김질(金磧)의 반인(伴人) 고덕산(高德山)이 공술(供述)하여 말하기를, ‘지난 병신년(7204) 2월에 칠원 기관(漆原記官) 윤근(尹謹)이 들깨[荏子] 2곡(斛)과 꿀[蜂蜜] 2말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읍재(邑宰) 김주(金澍)가 부원군(府院君)에게 보내 주는 물건이니, 너는 이를 전하라.」 하므로, 내가 받아서 그 꿀은 제가 가지고, 그해 10월에 부원군의 종[奴] 길생(吉生)이란 자를 보고 그 들깨를 주었는데, 길생이 받았다가 도로 놓아두고 갔다.’고 하였으므로, 본부(本府)에서 바야흐로 길생 등을 형신(刑訊)하려는데, <전하께서> 명하여 내버려두게 하시니, 미편(未便)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증(詞證)이 같지 아니하면 형신(刑訊)하여 귀일(歸一)시키나, 사증이 이미 같았는데, 무엇 때문에 형신을 하는가?”</p>	<p>(…) 俊又啓曰：“金磧伴人高德山供稱：‘去丙申二月， 漆原記官尹謹持荏子二斛、蜂蜜二斗， 授我云：「此邑宰金澍送遺府院君物也， 汝其傳之。」 我受而私其蜜， 其年十月， 見府院君奴吉生者， 授其荏， 吉生受之， 還置而去’， 本府方刑訊吉生等， 而命棄之未便。” 上曰：“詞證不同， 則刑訊歸一， 既同矣， 何以刑爲？” 俊曰：“此輩預相約， 故同耳。 德山豈二月受之， 不即傳報， 以至十月乎？ 其不直招明矣。 請刑訊。” 不聽。</p>

	<p>하였다. 경준이 아뢰기를, “이 무리들이 미리 서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같았을 뿐입니다. 고덕산이 어찌 2월에 그것을 받고 즉시 전보(傳報)하지 아니하여 10월까지 이르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문초하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청컨대 형신하게 하소서.” 하였다, 들어주지 않았다.</p>	
<p>성종 77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윤2월 29일(정묘) 4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하기를, “경혜 공주(敬惠公主)의 딸이 성혼(成婚)하니, 그에게 안마(鞍馬)와 쌀·콩 아울러 50석(碩), 기름[油], 꿀[蜜] 각각 1석, 수주(水紬)·정주(鼎紬)·백면포(白綿布) 각각 6필(匹), 소목(蘇木) 10근(斤), 면자(綿子) 10근, 면화(綿花) 30근, 면포(綿布) 60필을 내려 주어라.” 하였다.</p>	<p>○傳旨戶曹曰：“敬惠公主女子成婚，其賜鞍馬及米豆并五十碩，油蜜各一碩，水紬、鼎紬、白綿布各六匹，蘇木十斤，綿子十斤，綿花三十斤，綿布六十匹。”</p>
<p>성종 78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3월 1일(무진) 5번째기사</p>	<p>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지난 병신년에 황해도(黃海道)·평안도(平安道)의 여러 고을의 군사(軍士)로서 번상(番上)해야 할 자를 모두 번상을 면제시키고 농사일에 힘쓰면서 휴식하게 하였습니다. 그해 10월 16일부터 금년 얼음이 풀릴 때까지는 평안도에 보내어 수위(戍衛)하게 해야 하오나, 금년의 사변을 헤아리기 어려우니, 청컨대 병신년의 예(例)에 의거하여 아직 번상(番上)은 하지 말고 대령(待令)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兵曹啓：“去丙申年，黃海道、平安道諸邑軍士應番上者，竝除番上，使之務農休息。自其年十月十六日至今年解冰時，遣戍于平安道，今年事變亦難逆料，請依丙申年例，姑勿番上，待令何如？”從之。</p>
<p>성종 78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3월 3일(경오) 2번째기사</p>	<p>기영회(耆英會)를 훈련원(訓練院)에 설치하여 풍악을 내려 주고, 도승지(都承旨) 현석규(玄碩圭)에게 명하여 선운(宣醞)을 하사하였다.</p>	<p>○設耆英會于訓練院，賜樂，命都承旨玄碩圭齎賜宣醞。</p>
<p>성종 78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3월 14일(신사)</p>	<p>양전(兩殿)에서 삼대비(三大妃)에게 진연(進宴)하였다. 종재(宗宰) 1품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육조 당상(六曹堂上)과 선공감 제조(繕工監提調)와 입직(入直)했던 모든 장수와, 선잠제(先蠶祭)의 집사(執事)와 예조 낭청(禮曹郎廳)과 축</p>	<p>○兩殿進宴於三大妃殿。命會宗宰一品以上，議政府、六曹堂上，繕工提調，入直諸將，先蠶祭執事，禮曹郎廳，</p>

4번째기사	단 낭청(築壇郎廳)에게 명하여 대궐 뜰에 모이게 해서 주악(酒樂)을 내려 주었다.	築壇郎廳于闕庭，賜酒樂。
성종 78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3월 26일(계사) 3번째기사	사헌부(司憲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비의 혜택이 시기를 어기니, 제사(祭祀)나 늙고 병들어 약을 먹는 자 외에는 민간에 술을 금하라.” 하였다.	○傳旨司憲府曰：“今當農月，雨澤愆期，祭祀及老病服藥外，中外禁酒。”
	<p>(…) 장령(掌令) 이경동(李瓊全)이 소매 가운데에서 차자(筍子)를 내어 올렸는데, 그 차자에 이르기를, “신(臣)이 외방에 있다가 은혜를 입어 본직(本職)을 받았으니, 성은(聖恩)이 지극히 중하여 천지같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보답하기를 생각하니 오직 진언(盡言)함에 있으므로, 삼가 어리석은 생각을 뒤에 조목으로 기록합니다. 무릇 이것이 혹은 전하여 들은 것이고 혹은 사견(私見)에서 나왔으므로 반드시 행할 수 있다고 감히 스스로 생각하지는 못하나, 또한 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전하(殿下)께서는 어짊을 베푸시어 채납(採納)하소서.</p> <p>(…)1. 충청도(忠淸道) 천안(天安) 이복으로부터 경기(京畿)에 이르기까지 종자를 파종하지 못하고 전답에 누런 먼지만 일어나니, 보기에 실로 상심(傷心)됩니다. 그러나 듣건대, 민간에서 전년의 풍년으로 인하여 자못 쌓아 둔 곡식이 있으므로 먼 앞날은 생각지 않고 오직 술취하고 배부른 것만 일삼아, 성상(聖上)께서 정전(正殿)을 피하고 수라[膳]를 감하시는 때를 당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은 태만 방자하여 함부로 소비하는 것을 그치지 않으니, 어찌 천심(天心)을 받들고 하늘의 경계를 삼가며 재앙에 대비하고 근심을 막는 도리어겠습니까? 또 무지한 백성들이 대부분 가뭄으로 내버려 두고 김매고 가꾸지 않으니, 비록 비가 내리더라도 후회한들 어찌하겠습니까? 앞드려 바라건대, 밝게 경계하는 유시(諭示)를 내리어 과거의 자취를 밟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 掌令李瓊全出袖中筍子以進，其筍曰：臣在外蒙恩受本職，聖恩至重，天地莫量。思所以報効萬一，惟在盡言，謹將愚抱，條錄于後。凡此或得於傳聞，或出於私見，雖不敢自謂其必行，亦不可盡謂之無補。伏惟殿下垂仁採納焉。(…) 一。自忠淸道天安迤北至于京畿，種不入土，田起黃埃，觀之實可傷心。然聞民間頃因年登，頗有積穀，不思遠圖，惟事醉飽，當聖上避殿減膳之時，愚民惰慢，暴殄不止，豈奉天心·謹天戒·備災禦患之道乎？且無知之民，多以旱乾而怠棄不耘，縱使雨降，悔其可追？伏望明降戒諭，毋蹤前跡何如？</p>

	하였다.	
성종 79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4월 21일(무오) 1번째기사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강거효(姜居孝)·지평(持平) 남계당(南季堂)이 서거정(徐居正)을 가두고 국문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領事) 김국광(金國光)이 대답하기를, “작은 죄로 문득 대신을 가두는 것은 불가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의 말이 옳다.” 하였다. 강거효 등이 또 정미수(鄭眉壽)에게 선전관(宣傳官)을 제수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논계(論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께서 이미 허통(許通)하시었는데, 어찌서 굳이 말하는가?” 하였다. 남계당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한재(旱災)를 근심하시어 정전(正殿)을 피하고 수라[膳]를 감하시면서 홀로 불공(佛供)은 과하지 않으시니, 빌건대, 파하소서.” 하니, 임금이 우승지(右承旨) 임사홍(任士洪)에게 명하여 공비(供費)의 수량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戊午/御經筵。講訖，獻納姜居孝、持平南季堂請囚鞫徐居正。上顧問左右，領事金國光對曰：“以微罪輒囚大臣，恐不可。”上曰：“卿言是。”居孝等又論啓鄭眉壽不宜授宣傳官，上曰：“先王已許通，何苦言之？”季堂曰：“殿下憂慮旱災，避殿減膳，獨佛供未罷，乞罷之。”上命右承旨任士洪考供費之數以啓。
성종 79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4월 26일(계해) 6번째기사	어제(御製) 「희우시(喜雨詩)」를 승정원(承政院)에 내려주어 화답하여 올리게 하고, 인하여 선은(宣醞)을 내려 주었다.	○御製《喜雨詩》，賜承政院，令和進，仍賜宣醞。
성종 79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4월 28일(을축) 3번째기사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이극균(李克均)이 치계(馳啓)하기를, “울랑합(兀良哈) 30여 인이 회령(會寧)에 이르러 술을 마시고 갔고, 13인이 장성(長城) 문밖에 둔주(屯住)하여 연대(煙臺)를 향하여 <활을> 쏘므로, 연대 사람이 또한 쏘니 울랑합이 곧 흩어져 갔습니다. 회령(會寧) 진장(鎭將)이 곧 사람을 보내어 돌아가는 길에서 요격하여 다섯 사람을 사로잡아 가두었습니다. 또 이전에 야인(野人)이 도망한 종을 돌려주기를 청하다가 얻지 못한 자가 보복하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永安道觀[察]使李克均馳啓曰：“兀良哈三十餘人，到會寧飲酒而去，十三人屯住長城門外，向煙臺射之，煙臺人亦射之，兀良哈即散去。會寧鎭將即遣人邀其歸路，擒五人囚之。且前此野人請還逃奴，不得者言欲報復。”命示政丞及兵曹判書，僉議啓

	<p>하였다. 명하여 정승(政丞)과 병조 판서에게 보이니, 여러 사람이 의논하고 아뢰기를,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친히 국문하여 계문(啓聞)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曰: “令節度使親鞫啓聞後, 更議何如?” 從之。</p>
<p>성종 80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5월 5일(신미) 2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이제 이미 정전에 복귀하시었으니, 양전(兩殿)의 수라 그릇 수를 복구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承政院啓曰: “今既復正殿, 請兩殿水刺器數復舊。” 從之。</p>
<p>성종 80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5월 7일(계유) 1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하여 영해군 이당에게 부의로 쌀·콩 아울러 1백 석, 종이 2백 권, 정포(正布) 60필, 백저포(白苧布) 10필, 백면포(白綿布) 10필, 석회(石灰) 60 석을 내려 주었다.</p>	<p>○癸酉/傳旨戶曹, 賜寧海君瑯賻米豆并一百碩、紙二百卷、正布六十四、白苧布十四、白綿布十四、石灰六十碩。</p>
<p>성종 81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6월 6일(신축) 1번째기사</p>	<p>유구 국왕(琉球國王) 상덕(尙德)이 내원리주(內原里主) 등을 보내어 내빙(來聘)하였는데, (...) 그 별폭에는, 단목(丹木) 1만 근(斤), 납자(臘子) 5천 근, 호초(胡椒) 1천 근, 정향(丁香) 3백 근, 향(香) 2백 근, 자단(紫檀) 1백 근, 단향(檀香) 1백 근, 목향(木香) 1백 근, 감초(甘草) 1백 근, 대복자(大腹子) 50근, 사탕[砂糖] 1백 근, 수우각(水牛角) 1백 본(本), 천축주옹(天竺酒甕) 2개(箇), 등(藤) 2천 본(本), 태피(鮐皮) 2백 매(枚), 종수기청자(種樹器靑磁) 1대(對), 청자 향로(靑磁香爐) 1개(箇), 공작우(孔雀羽) 2백이었다.</p>	<p>○辛丑/琉球國王尙德遣內原里主等來聘。(…) 采甄別幅: 丹木一萬斤, 臘子五千斤, 胡椒千斤, 丁香三百斤, 香二百斤, 紫檀百斤, 檀香百斤, 木香百斤, 甘草百斤, 大腹子五十斤, 砂糖百斤, 水牛角百本, 天竺酒甕二箇, 藤二千本, 鮐皮二百枚, 種樹器靑磁一對, 靑磁香爐一箇, 孔雀羽二百。</p>
<p>성종 81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6월 24일(기미) 1번째기사</p>	<p>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김영유(金永濡) 등이 차자(筍子)를 올리기를, “신 등이 엿드려 들건대, 경기(京畿)·강원도(江原道)·황해도(黃海道)의 제읍(諸邑)에 충재(蟲災)가 많이 있고, 또 이삭이 나올 때에 열흘을 잇달아 비가 내리지 않아 곡식[禾穀]이 말라서 손실되었다고 합니다. 청컨대 관원을 보내어 살펴보아 과연 신 등이 말한 것과 같으면, 하늘의 경계를 삼가고, 흉년에 백</p>	<p>○己未/司憲府大司憲金永濡等上筍子曰: 臣等伏聞京畿、江原、黃海道諸邑多有蟲災, 又當發穗之時, 連旬不雨, 禾穀枯損。 請遣官審視, 果如臣等所言,</p>

	<p>성을 구제하는 정사를 닦아 예비하는 책임을 늦출 수 없겠습니다. 신 등은 직분이 언관(言官)에 있으니, 들은 것을 감히 아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p> <p>“벌써 제도에 하서(下書)하였으니, 아직은 회계(回啓)를 기다리라.”</p> <p>하였다.</p>	<p>則謹天戒，修荒政，預備之責，不可緩也。臣等職在言官，所聞不敢不啓。傳曰：“已下書諸道，姑待回啓。”</p>
<p>성종 81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6월 24일(기미) 2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p> <p>“평안도(平安道) 여러 고을의 공물(貢物) 안에서 청밀(淸蜜)·황랍(黃蠟)·산저모(山豬毛)·중록비(中鹿皮)·소록비(小鹿皮)·장피(獐皮)·모장피(毛獐皮)·초피(貂皮)·서피(鼠皮)·잡우(雜羽)·호피(虎皮)·이피(狸皮)·산양피(山羊皮)·구피(狗皮)·황양목(黃楊木)·소포(小脯)·건록(乾鹿)·건저(乾豬)·녹각(鹿角)·전칠(全漆)·송화(松花)·숙마(熟麻)·오미자(五味子)·백자(栢子)·생리(生梨)·생마(生麻)·웅피(熊皮)는 오는 무술년(7567)부터 시작하여 3년, 고좌목(高佐木)은 6년, 치우(雉羽)·우각(牛角)은 10년, 궁삭목(弓槩木)은 20년, 궁궁(芎藭)·적복령(赤茯苓)·복신(茯神)·제고유(鵝鵝油)는 5년 동안에 한하여 견감(蠲減)하고, 강계(江界)·위원(渭源)·이산(理山)·벽동(碧潼)·창성(昌城)·삭주(朔州)·의주(義州) 등 고을의 공물(貢物)은 민간이 소복(蘇復)할 때까지 온전히 면제하며, 잡우(雜羽)·송화(松花)·생리(生梨)·반묘(班貓)·연자(蓮子)·호두(虎頭)·악실(惡實)·사상자(蛇床子)·오미자(五味子)는 영구히 면제하는 것이 어떠합니까?”</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啓：“平安道諸邑貢物內，淸蜜、黃蠟、山豬毛、中鹿皮、小鹿皮、獐皮、毛獐皮、貂皮、鼠皮、雜羽、狐皮、狸皮、山羊皮、狗皮、黃楊木、小脯、乾鹿、乾豬、鹿角、全漆、松花、熟麻、五味子、栢子、生梨、生麻、熊皮，來戊戌年爲始限三年，高佐木限六年，雉羽、牛角限十年，弓槩木限二十年，芎藭、赤〔茯〕苓、茯神、鵝鵝油限五年蠲減。江界、渭源、理山、碧潼、昌城、朔州、義州等邑貢物，限民間蘇復全除，雜羽、松花、生梨、班貓、蓮子、虎頭、惡實、蛇床子、五未子，永除何如？”從之。</p>
<p>성종 81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6월 30일(을축) 3번째기사</p>	<p>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이계손(李繼孫)에게 하서(下書)하기를,</p> <p>“이제 경의 글을 보고 경이 허물을 인책하는 뜻을 알았다. 그러나, 기왕의 일을 허물하지 않으니, 경은 대죄(待罪)하지 말라. 도내가 황충의 재해로 곡식이 다 상하였으므로 민생이 염려스러우니, 내가 매우 민망하게 여긴다. 경이 마음을 다할 것 같으면 백성이 그 생업을 얻을 것은 틀림없다. 혹 조치를 늦추어 백성이 끝내 해를 입게 되면, 내가 전의 허물을 아울러 문책하겠다.”</p>	<p>○下書黃海道觀察使李繼孫曰：今見卿書，知卿引愆之意。然既往不咎，卿勿待罪。道內蟲災，禾穀盡傷，民生可慮，予甚憫焉。卿若盡心，則民得其生必矣。如或緩於施爲，民終被害，予將竝責前愆。</p>

	하였다.	
출처	내용	원문
성종 82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7월 7일(임신) 1번째기사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김해(金海) 사람 학생(學生) 이사민(李思敏)의 처(妻) 소사(召史)는 나이가 만(滿) 1백 세(歲)이니, 청컨대 해마다 쌀 10석(碩)을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壬申/禮曹啓: “金海人學生李思敏妻召史年滿百歲, 請歲給米十碩。” 從之。
성종 82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7월 11일(병자) 1번째기사	(…) 헌납(獻納) 김괴(金塊)가 말하기를, “재해를 만난 고을은 비록 징병(徵兵)을 하지 않더라도 그 징병에 응하는 자는 반드시 베[布]로 곡식[粟]을 무역할 것인데, 경기(京畿)는 재해를 입은 것이 더욱 심하니, 무엇을 힘입어서 식량을 얻겠습니까? 마초(馬草)에 이르러서도 또한 어렵거던, 더구나 금년 봄에 제도(諸道)의 군사 모우는 일은 비록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백성은 이미 피로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제도(諸道)의 재상(災傷)에 대한 보고를 기다려서 이를 처리하겠다.” 하였다.	(…) 獻納金塊曰: “遇災之邑, 雖不徵兵, 其應徵者, 必以布貿粟, 京畿被災尤甚, 何賴而得食? 至於馬草亦難矣, 況今年春徵諸道兵, 事雖未行, 其民則已 勞矣。” 上曰: “當俟諸道災傷之報處之。”
성종 82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7월 16일(신사) 1번째기사	유구 국왕(琉球國王)의 사인(使人) 내원리주(內原里主) 등 18인이 하직하니, 그 답서(答書)에 말하기를, “폐방(敝邦)은 귀국(貴國)과 바다가 겹겹이 막혀서 멀고 멀으니, 신사(信使)의 왕래가 진실로 쉽지 못한데, 왕께서는 대대로 빙례(聘禮)를 닦아, 옛 우호(友好)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멀리서 고맙게도 서찰로 문안하여, 더욱 신의(信義)를 돈독히 하시니, 항상 한 번 사신을 보내어 후의(厚意)를 사례하고자 하니, 단지 경도(鯨濤)의 위험(危險)과 해로(海路)도 또 경삽(梗澁)7621) 함으로 인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니,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번에 귀사(貴使)가 오는데도 또한 보내온 신물(信物)을 많이 해적(海賊)에게 겁탈(劫奪) 당하였다고 하니, 경아(驚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전에 창건한 가람(伽藍)의 준공(竣工)의 수요[需]는 진실로 생각대로 조연(助	○辛巳/琉球國王使內原里主等十八人辭。 其答書曰: 弊邦與貴國, 重演溟復隔, 信使往來, 誠所未易, 而王世修聘禮, 不替舊好。 今又遠辱書問, 益敦信義, 常欲遣一价爲謝厚意, 只緣鯨濤危險, 路又梗澁, 未遂厥志, 愧赧無已。 今次貴使之來, 亦言所送信物多爲海賊劫奪, 不勝驚訝。 所諭前創伽藍訖功之需, 固欲隨意助緣, 以畢其功, 因歲比凶歉, 所儲不敷, 且銅錢, 本國今不行用, 未副來

	<p>緣)하여서 그 공역을 마치게 하려 하였으나, 해마다 흉년으로 인하여, 저축한 것이 많지 못하고, 또 동전(銅錢)은 본국(本國)에서 이제 행용하지 아니하여, 부탁한대로 부응하지 못하니, 괴한(愧恨)만을 더합니다. 변변치 못한 토의(土宜)를 별폭(別幅)과 같이 갖추었으니, 수령하시면 다행이겠습니다.”</p> <p>하였는데, 별폭(別幅)에는, 백세면주(白細綿紬) 10필(匹), 백세저포(白細苧布) 10필(匹), 흑세마포(黑細麻布) 10필(匹), 표피 좌자(豹皮座子) 1사(事), 호피(虎皮) 5장(張), 표피(豹皮) 5장, 만화석(滿花席) 10장(張), 만화방석(滿花方席) 10장(張), 잡채화석(雜菜花席) 10장(張), 인삼(人參) 50근(斤), 청밀(淸蜜) 15두(斗), 송자(松子) 3백 근(斤), 남사피(藍斜皮) 10장(張), 후지(厚紙) 10권(卷), 유지(油紙) 10장(張), 6폭부(六幅付) 5장(張), 4폭부(五幅付) 5장(張), 백접선(白摺扇) 1백 파(把), 소주(燒酒) 30병(瓶), 계(桂) 3각(角), 납촉(蠟燭) 50매(枚), 삼병 도자(三并刀子) 4사(事), 황모필(黃毛筆) 1백 지(枝), 유연묵(油煙墨) 50정(丁), 면주(綿紬) 2백 필(匹), 면포(綿布) 4백 필(匹)이었다.</p>	<p>諭，祇增愧恨。不腆土宜，開具別幅，照領爲幸。</p> <p>別幅：白細綿紬一十四，白細苧布一十四，黑細麻布一十四，豹皮座子一事，虎皮五張，豹皮五張，滿花席一十張，滿花方席一十張，雜彩花席一十張，人蔘五十斤，淸蜜一十五斗，松子三百斤，藍斜皮一十張，厚紙一十卷，油紙一十張，六幅付五張，四幅付五張，白摺扇一百把，燒酒三十瓶，桂三角，蠟燭五十枚，三并刀子四事，黃毛筆一百枝，油煙黑五十丁，綿紬二百匹，綿布四百匹。</p>
<p>성종 82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7월 19일(갑신) 5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하기를, “사성(司成) 장계이(張繼弛)는 경연관(經筵官)으로 집이 가난하여, 여우(旅寓)에서 죽었으니, 가궁(可矜)하다. 특별히 관곽(棺槨)·유둔(油苧) 2사(事), 종이 60권(卷), 미두(米豆) 아울러 10석(碩)을 내려 주라.”</p> <p>하였다.</p>	<p>○傳旨戶曹曰：“司成張繼弛以經筵官家貧，旅寓身死，可哀。特賜棺槨、油苧二事、紙六十卷、米豆并十碩。”</p>
<p>성종 83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8월 7일(신축) 1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하여, 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 조석문(曹錫文)에게 부의(賻儀)로 쌀·콩 아울러 40석과 종이 1백 권, 백오승포(白五升布) 10필, 백육승면포(白六升綿布) 10필, 정포(正布) 50필을 내려 주게 하였다.</p>	<p>○辛丑/傳旨戶曹，賜昌寧府院君曹錫文賻米豆并四十碩、紙一百卷、白五升布一十四、白六升綿布一十四、正布五十四。</p>
<p>성종 83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8월 17일(신해) 2번째기사</p>	<p>서릉군(西陵君) 한치례(韓致禮)를 보내어 경사(京師)에 가서 성절(聖節)을 하례(賀禮)하게 하였는데, 임금(上)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배표(拜表) 7754 하기를 의식(儀式)과 같이 하였다. 한치례가 가지고 가는 특별히 바치는 물색(物色)은, 자면주(紫綿紬) 20필, 녹색면주(綠綿紬) 20필, 황류청면주(黃柳靑綿紬)</p>	<p>○遣西陵君韓致禮如京師賀聖節。上率百官拜表如儀。韓致禮齋去別進獻物色：紫綿紬二十四，綠綿紬二十四，黃柳靑綿紬二十四，大脯二百箇，片脯</p>

	<p>20필, 대포(大脯) 2백 개, 편포(片脯) 3백 개, 문어(文魚) 3백 마리[尾], 향담(香覃) 70근, 곤포(昆布) 3백 근, 석균(石菌) 70근, 탑사마(塔士麻) 2백 근, 전복(全鰓) 3백 속(束), 대구어(大口魚) 5백 마리, 해송자(海松子) 2백 50근, 오징어[烏賊魚] 2천 마리, 광어(廣魚) 3백 마리, 추복(槌鰓) 6백 속(束), 건연어(乾年魚) 2백 마리, 석수어 난해(石首魚卵醢) 4담(壘), 송어 염해(松魚鹽醢) 4담, 단도자(單刀子) 20부(部), 3병 도자(三并刀子) 20부, 세죽선(細竹扇) 2백 과(把), 소죽선(小竹扇) 2백 과이고, 한씨(韓氏)의 처소(處所)에 회답으로 보내는 포자(布子) 1백 70필과 선물[人情]로 보내는 자주(紫紬)·녹주(綠紬) 각각 5필, 잡채화석(雜菜花席) 10장, 변아침석(邊兒寢席) 20장, 세죽선(細竹扇) 2백 과(把), 소죽선(小竹扇) 1백 과, 회합(回蛤) 2백 유(流), 우(又) 1두(斗), 세합(細蛤) 2백 유, 반합(班蛤) 1백 유, 수낭아(繡囊兒) 5개, 침가아(針家兒) 15개, 장아아(獐牙兒) 10류, 호로아(葫蘆兒) 20류, 호아아(虎牙兒) 5류, 청과아(青瓜兒) 20류, 중삼 도자(中三刀子) 1백 부(部), 소삼 도자(小三刀子) 2백 부, 저모성(猪毛省) 7755) 2백 사(事), 참빗[眞梳] 1천 개, 나무빗[木梳] 50개, 수채(首鬣) 50개, 전복(全鰓) 60속(束), 연어(年魚) 1백 마리, 중포(中脯) 2백 개, 편포(片脯) 2백 개, 문어(文魚) 60마리, 대구어(大口魚) 2백 마리, 오징어[烏賊魚] 3백 마리, 탑사마(塔士麻) 1백 근, 곤포(昆布) 1백 근, 석균(石菌) 40두(斗)이며, 최씨(崔氏)와 차씨(車氏)·안씨(安氏)에게 회답으로 보내는 포자(布子) 69필이었다.</p>	<p>三百箇, 文魚三百尾, 香覃七十斤, 昆布三百斤, 石菌七十斤, 塔士麻二百斤, 全鰓三百束, 大口魚五百尾, 海松子二百五十斤, 烏賊魚二千尾, 廣魚三百尾, 槌鰓六百束, 乾年魚二百尾, 石首魚卵醢四壘, 松魚鹽醢四壘, 單刀子二十部, 三并刀子二十部, 細竹扇二百把, 小竹扇二百把。韓氏處回奉, 布子一百七十四, 人情紫紬、綠紬各五四, 雜彩花席十張, 邊兒寢席二十張, 細竹扇二百把, 小竹扇一百把, 回蛤二百流, 又一斗, 細蛤二百流, 班蛤一百流, 繡囊兒五箇, 針家兒十五箇, 獐牙兒十流, 葫蘆兒二十流, 虎牙兒五流, 青瓜兒二十流, 中三刀子一百部, 小三刀子二百部, 猪毛省二百事, 眞梳一千箇, 木梳五十箇, 首鬣五十箇, 全鰓六十束, 年魚一百尾, 中脯二百箇, 片脯二百箇, 文魚六十尾, 大口魚二百[瓦] [尾], 烏賊魚三百箇, 塔士麻一百斤, 昆布一百斤, 石菌四十斗。崔氏, 車氏, 安氏處回奉, 布子六十九匹。</p>
<p>성종 83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8월 29일(계해)</p>	<p>호조(戶曹)에 전지하여, 고(故) 아산 현감(牙山縣監) 정문언(鄭文彦)에게 부의(賻儀)로 쌀·콩 아울러 10석과 포(布) 50필을 하사하였다. 정문언은 임금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의 사부(師傅)였었다.</p>	<p>○傳旨戶曹, 賜故牙山縣監鄭文彦賻米豆并十碩、布五十匹。文彦, 上潛邸時師傅也。</p>

6번째기사		
성종 84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9월 18일(임오) 1번째기사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양로연(養老宴)을 행하였다. 노인과 종재(宗宰)가 입시(入侍)하였는데, 친히 정인지(鄭麟趾)·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윤사흔(尹士昕)·윤자운(尹子雲)·김국광(金國光)에게 술을 내리고, 또 입시한 노인에게 일어나 춤추라고 명하였다.	○壬午/上御仁政殿行養老宴。 老人及宗宰入侍。 親賜酒鄭麟趾、鄭昌孫、韓明澮、尹士昕、尹子雲、金國光，又命侍客老人起舞。
성종 84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9월 19일(계미) 4번째기사	호조(戶曹)에 전지하여, 관돈녕부사(判敦寧府事) 한치인(韓致仁)에게 부의로 쌀과 콩을 아울러 40석, 종이 1백 권, 정포(正布) 50필, 청밀(淸蜜) 7두, 기름 10두를 주게 하였다.	○傳旨戶曹，賜判敦寧府事韓致仁賻米豆并四十碩、紙一百卷、正布五十四、淸蜜七斗、油十斗。
성종 85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10월 4일(무술) 4번째기사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구종직(丘從直)에게 부의(賻儀)로써 쌀·콩 각각 20석(碩)과 정포(正布) 50필(匹)과 종이 50권(卷)을 내려 주었다.	○傳旨戶曹賜丘從直賻米豆各二十碩、正布五十四、紙五十卷。
성종 85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10월 6일(경자) 1번째기사	임금이 문현산(門懸山)의 사장(射場)에 이르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어떤 시골 늙은이가 길 옆에서 감과 대추를 바치니, 유의(襦衣) 1벌을 하사하였다. 저녁에 행궁(行宮)으로 돌아왔다.	○庚子/上至門懸山射場觀獵。 有野叟獻柿栗于道傍，賜襦衣一領。 夕還行宮。
성종 85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10월 16일(경술) 6번째기사	호조(戶曹)에서 병조(兵曹)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지금 갑사(甲士)를 줄여서 총 1천 7백 29명인데, 거기에 응(應)하여 줄어드는 녹봉(祿俸)의 미두(米豆)도 심히 많습니다. 이보다 앞서 팽배(彭排)는 월봉(月俸)으로 쌀 10두(斗)를 받고, 대졸(隊卒)은 월봉으로 쌀 8두(斗)를 받았는데, 금후로는 청컨대 이 쌀을 가지고 각각 2두(斗)씩 더 주는 것으로 항식(恒式)을 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戶曹據兵曹關啓：“今減甲士總一千七百二十九，其應減祿俸米豆甚多。前此彭排受月俸米十斗，隊卒受月俸米八斗，今後請以此米各加二斗，以爲恒式。”從之。
성종 85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계손(李繼孫) 등이 차자(笏子)를 올리기를, “신 등이 듣건대, 관작(官爵)과 포상(褒賞)은 인군(人君)이 유공(有功)한 자를	○司憲府大司憲李繼孫等上笏子曰： 臣等聞爵賞， 人君所以待有功、馭賢

<p>13년) 10월 24일(무오) 2번째기사</p>	<p>대접하고 현능(賢能)한 자를 어거하려는 것이므로 헛된 이름으로 가볍게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임금이 중하게 여겨서 유공(有功)한 자에게만 더한다면 사람들이 이를 귀중하게 여길 것이요, 임금이 가볍게 여겨서 공(功)이 없는 자에게 더한다면 사람들이 이를 천시(賤視)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옛날의 제왕(帝王)들은 일빈 일소(一頻一笑)도 아꼈는데, 하물며 관작(官爵)이겠습니까? 지금 타위(打圍)할 때에 의금부 경력(義禁府經歷) 최윤신(崔潤身) 등이 잡은 짐승들을 잘 운수(運輸)하였다고 특별히 가자(加資)를 받았는데, 최윤신 등이 무슨 공로와 재능이 있어서 이런 관작과 포상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일 변방의 전쟁이 한 번 일어나서 사졸(士卒)들이 예리한 칼날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걸고서 적기(敵旗)를 빼앗거나 적을 참획(斬獲)하는 공(功)을 세운다면, 전하께서 장차 어떻게 상(賞)을 주시겠습니까? 적을 죽인 자의 상이 이들과 다름이 없다면 사람들의 누구를 권장(勸獎)하겠습니까? 더구나 양머리[羊頭]를 잘 굽는다고 관내후(關內侯)를 주고 참외[果瓜]를 바쳤다고 시관(試官)을 주었다가, 명기(名器)를 남발(濫發)하였다고 천년동안 비난과 조소(嘲笑)를 당하지 않습니까? 전하께서는 전세(前世)의 잘못을 생각하시어, 관작과 포상을 가볍게 한 것에 유념(留念)하시어, 내리신 명령을 빨리 거두시어 명기(名器)를 중하게 여기도록 하소서.”</p> <p>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p>	<p>能，不可以虛名而輕用也。君以爲重而加於有功，則人貴之，君以爲輕而加於無功，則人賤之矣。是以古昔帝王愛一頻一笑，況官爵乎？今者打圍之時，義禁府經歷崔潤身等，以輸運所獲之獸，特蒙加資，未知潤身等有何功能，受此爵賞乎？萬有邊塵一起，士卒冒鋒刃委軀命，有擐旗斬敵之功，則殿下將何以賞之乎？殺敵之賞與此無異，則人誰有勸？況爛羊頭關內侯，獻果瓜授試官，名器之濫，千載非笑。殿下思前世之失，念爵賞之輕，亟收成命，以重名器。</p> <p>不聽。</p>
<p>성종 85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10월 29일(계해)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영사(領事) 윤자운(尹子雲)에게 묻기를,</p> <p>“이제 10월이 이미 다 갔는데 추워야 할 때를 당하여 날씨가 따듯하니, 옥사(獄辭)에 잘못이 있어서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만약 들은 바가 있다면 모조리 이를 말하라.”</p> <p>하니, 윤자운이 대답하기를,</p> <p>“옛부터 11월도 또한 춥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중외(中外)의 옥사(獄事)에</p>	<p>○癸亥/御經筵。講訖，上問領事尹子雲曰：“今十月已盡，當寒而燠，無乃獄辭有失而冤抑未伸歟？如有所聞，悉言之。”子雲對曰：“自古十一月亦有不寒之時。中外之獄，疑無冤滯者也。臣若有聞，何待上問乎？臣聞宗貞國特送倭，以我國薄於副船出怨言，</p>

원통하거나 지체(遲滯)되는 의심은 없는 듯합니다. 신이 만약 들은 바가 있다면, 어찌 성상의 하문(下問)을 기다리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종정국(宗貞國)이 특별히 보낸 왜인(倭人)이 우리 나라에서 부선(副船)에는 야박하게 대한다고 원망하는 말을 하였다고 하니, 청컨대 부선(副船)의 20인에게 아울러 그 양식을 지급하게 하소서. 또 특별히 보낸 왜인(倭人)이 전에 그 집이 불에 탔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미 쌀 10석(碩)을 주었는데, 만약 또 밀과(蜜果)와 술을 주어서 그 부모를 공궤(供饋)하게 한다면 저들이 반드시 은혜에 감사할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왜인이 물건을 청구(請求)하는 것이 끝이 없는데, 어찌 한정이 있는 물건을 가지고 끝 없는 욕구를 능히 충족시킬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우선 경(卿)의 말을 따르겠다.”

하였다. 지평(持平) 이세광(李世匡)이 아뢰기를,
 “문소전(文昭殿) 물선(物膳)의 나머지를 예(例)대로 승인(僧人)들에게 주는데, 이것은 바로 선왕(先王)께 공상(供上)한 물건이니, 사체(事體)에 있어서 어떠하다고 하겠습니까?”

하고, 사간(司諫) 경준(慶俊)이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봉상시 첨정(奉常寺僉正)이 되었을 때 승도(僧徒)들이 항상 와서 독촉하였고 조금 늦을 것 같으면 반드시 환관(宦官)에게 달려가 고(告)하였습니다. 만약 남은 물건이 없으면 부득이 공상(供上)할 물건을 주었는데, 이것은 고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승지(承旨)에게 명하여 아뢴 것을 고찰하게 하였다. 경준이 또 아뢰기를,
 “한산수(漢山守) 이탄(李疇)이 윤인(尹璘)의 집과 약혼(約婚)하였는데, 성상께서 분디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탄(李疇)이 죽은 다음날에 종친(宗親)들이 앞을

請副船二十人并給其糧。 又特送倭前
 言其家失火，故國家已賜米十碩，如又
 給蜜果與酒，使饋其父母，則彼必感恩
 矣。” 上曰：“倭人求請不厭，安能以
 有限之物充無窮之欲乎？ 然姑從卿
 言。” 持平李世匡啓曰：“文昭殿物膳
 之餘例給僧人，是乃先王供上之物，於
 事體何如？” 司諫慶俊曰：“臣嘗爲奉常
 寺僉正，僧徒常來督，稍有遲緩，則必
 奔告於宦官。 若無其餘，則不獲已給
 可供之物，此不可不革也。” 上命承旨
 考啓。 俊又啓曰：“漢山守疇與尹璘家
 約婚，上之素所許也。 疇死翌日，宗
 親爭先納采，如恐不及。 所以如此者，
 以璘家有財貨也。 婚娶而論財，夷虜
 之道也。 宗親以有服之親，而不哀其
 喪，反欲奪婚，傷風敗俗，莫此若也。
 請令宗簿推之，以懲其餘。” 從之。

	<p>다투어 납채(納采)하는데, 마치 이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듯합니다. 이와 같이 하는 까닭은 윤인의 집에 재화(財貨)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데 재산을 논하는 것은 오랑캐[夷虜]의 도(道)인 것입니다. 종친은 유복지친(有服之親)인데, 그 죽음을 슬퍼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혼사(婚事)를 빼앗고자 하니, 풍속을 손상시켜 무너뜨리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청컨대, 종부시(宗簿寺)로 하여금 추핵(推劾)하게 하여서 그 나머지 무리를 징계하도록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성종 86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11월 2일(을축) 3번째기사</p>	<p>평안도 순찰사(平安道巡察使) 허종(許琮)이 하직하니, 임금(上)이 인견(引見)하고 술을 내려 주면서 허종에게 이르기를,</p> <p>“옛날에 이르기를, ‘장수가 군영(軍營)에 있으면 임금의 명령이라도 받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 서쪽 변방(邊方)의 일을 오로지 경의 재량[節度]에 맡겼으니, 내가 무엇을 말하겠는가? 지금 적변(賊變)이 비록 우리의 국경상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변(變)은 예측할 수 없는 데에서 생기니, 경은 삼가도록 하라. 경의 막하(幕下)에는 모두 잘 훈련된 군사들이며, 또 경으로써 장수를 삼았으니, 나는 서쪽 변방을 돌아볼 걱정은 없도다.”</p> <p>하니, 허종이 말하기를,</p> <p>“만약에 적변(賊變)이 있다면 구원(救援)할 군사가 없을 수가 없으니, 여러 도(道)로 하여금 날쌔고 용감한 향병(鄉兵)을 모집하여 공(功)을 세우도록 스스로 노력하게 하소서.”</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p> <p>“좋다.”</p> <p>하였다. 이어서 허종에게 명하여 술잔[爵]을 올리게 하고, 도승지(都承旨) 김작(金碓)으로 하여금 종사관(從事官)과 군관(軍官)들에게 두루 술을 내려 주게 하고, 허종에게 동궁시(彤弓矢)와 초구(貂裘) 1령(領)을 내려 주게 하였다.</p>	<p>○平安道巡察使許琮辭，上引見賜酒，謂琮曰：“古云：‘將在軍，君命有所不受。’西邊之事專責卿節度，予何言哉？今賊變雖不在我境，然變生不測，卿其慎之。卿之幕下皆精鍊之士，且以卿爲將，吾無西顧之憂矣。”琮曰：“若有賊變，救援之兵不可無，令諸道募驍勇鄉兵，立功自効。”上曰：“可。”仍命琮進爵，令都承旨金碓遍賜從事官、軍官酒，賜琮彤弓矢及貂裘一領。</p>
<p>성종 86권, 8년(1477</p>	<p>임금이 3전(殿)에 잔치를 올리고, 명하여 입직(入職)한 여러 장수를 불러서</p>	<p>○上進宴于三殿，命召入直諸將，賜</p>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11월 8일(신미) 3번째기사	술을 내려 주었다.	酒。
성종 86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11월 12일(을해) 5번째기사	호조(戶曹)에 전교하기를, “평안도 여러 고을의 숙고(稔庫)에 저축한 미곡(米穀)은 오래 묵어서 군량미(軍糧米)에 적합하지 않으니, 해마다 환상(還上)으로써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가 거두어 들여서 묵은 곡식을 쓰고 새 곡식을 저축할 절차(節次)와, 본도(本道)의 연변에 있는 여러 고을에 소재(所在)한 군수(軍需)의 부족(不足)은 사삼시(司贍寺)·제용감(濟用監)의 면포(綿布)를 해마다 하송(下送)하여 백성들의 정원(情願)에 따라서 미곡(米穀)과 바꾸어 군량미로 보충할 절목(節目)을 상의(商議)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	○傳于戶曹曰：“平安道諸邑稔庫所儲米穀久陳，不合軍糧，逐年以還上斂散，用舊畜新節次，及本道沿邊諸邑所在軍需不足，以司贍寺、濟用監綿布，逐年下送，從民情願買換米穀，以補軍糧節目，商議以啓。”
성종 86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11월 20일(계미) 4번째기사	(…) 임금의 또 손비장에게 이르기를, “이과(李坡)가 일찍이 경연(經筵)에서 나더러 성균관(成均館)에 임어(臨御)하여 늙은 유학자(儒學者)들을 배알(拜謁)하라고 말하였는데, 내가 이를 시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漢)나라의 명제(明帝)가 친히 할육(割肉)하던 것 같은 법(法)을 진실로 다 베풀 수는 없다. 예조(禮曹)로 하여금 미리 고례(古禮)를 상고하도록 하라. 장차 내년 봄에는 이를 시행하겠다.” 하였다.	(…) 上又謂比長曰：“李坡嘗於經筵語予，以臨雍拜老，予欲行之。然如漢明帝之親割肉，固不可盡法。令禮曹預稽古禮。將於明春行之。”
성종 87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12월 4일(정유) 3번째기사	호조에 전지(傳旨)하여 의숙 공주의 부의(賻儀)로 쌀 70석과 황두(黃豆) 30석, 청밀(淸蜜) 10두, 기름[油] 1석, 소맥(小麥) 3석, 석회(石灰) 10석을 하사하였다.	○傳旨戶曹賜懿淑公主賻米七十碩、黃豆三十碩、淸蜜十斗、油一碩、小麥三碩、石灰五十碩。
성종 87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12월 5일(무술)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대왕 대비(大王大妃)에게 공주(公主)의 상(喪)으로 인하여 진膳(進膳)하지 못한 지가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신 등이 계청(啓請)하려고 하나, 성상의 뜻을	○承政院啓曰：“大王大妃，以公主之喪，不進膳有日。臣等欲啓請，未喻上旨。”傳曰：“予欲陳請，卿等亦啓

<p>2번째기사</p>	<p>알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진청(陳請)하려고 하니, 경 등도 또한 아뢰어라.” 하였다. 곧 대왕 대비에게 아뢰기를, “모자(母子)간에 비록 지극한 정이 있으나, 귀천(貴賤)에 따라 예(禮)도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신 등이 듣건대, 첩선(輟膳)하신 지가 여러 날이 되고, 애상(哀傷)함이 너무 지나치시다고 하니, 경황함을 금치 못하여 감히 청합니다.” 하니, 대비(大妃)가 전교하기를, “경 등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 성상이 계신데, 내가 어찌 첩식(輟食)을 하겠는가? 내 오늘 세 번이나 밥상을 받았으니, 경 등은 걱정하지 말라.” 하였다.</p>	<p>之。” 卽啓大王大妃曰：“母子之間雖有至情，貴賤殊等，禮從而變。 臣等聞輟膳有日，過於哀傷，不覺驚惶敢請。” 大妃傳曰：“卿等縱不言。 主上在，予何輟食？ 予今日三進膳，卿等勿虞。”</p>
<p>성종 87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12월 20일(계축) 2번째기사</p>	<p>화약고(火藥庫)의 제약청(製藥廳)에 화재가 나서, 약장(藥匠)으로 소사(燒死)한 자가 4인이고, 화상(火傷)을 입은 자가 2인이므로, 의원(醫員)을 보내어 약을 싸가지고 가서 구료하게 하였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내가 화약고에 가 보려고 한다.” 하니, 승지가 아뢰기를, “무릇 임금의 거동은 반드시 기록되니, 가볍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신 등이 마땅히 고례(古例)를 상고하여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전지하기를, “화포(火炮)는 군무(軍務)의 중대한 것이다. 일로 인해 가 보는 것이 어찌 의리에 해됨이 있겠는가? 오는 정월(正月)에 문소전(文昭殿)에 친히 제사하고 바로 가 보겠다.” 하고, 호조에 전교하기를, “제약청의 실화로 인해 죽은 자가 많으니, 각각 쌀[米] 6석과 황두(黃豆) 8석</p>	<p>○火藥庫製藥廳災， 藥匠燒死者四人， 憔傷者二人， 遣(繫) [醫] 齋藥救之。 傳于承政院曰： “予欲往觀火藥庫。” 承旨啓曰： “凡君舉必書， 不可輕動。 臣等當考古例以啓。” 傳曰： “火炮， 軍務之大者， 因事往見， 何害於義？ 來正月親祀文昭殿， 仍往觀焉。” 傳旨戶曹： “劑藥廳失火， 致死者多。 各賜米六碩、 黃豆三碩。”</p>

	을 내려 주어라.” 하였다.	
출처	내용	원문
성종 88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1월 1일(갑자) 4번째기사	명하여 회례연을 내리고, 궐내(闕內)의 제사(諸司)와 입직(入直)하는 여러 장수와 군사에게 술과 안주를 장만해 주게 하였다.	○命賜會禮宴，辦設酒肴于闕內諸司及入直諸將軍士。
성종 88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1월 3일(병인) 1번째기사	전교하기를, “중궁(中宮)이 이미 회복되었으니, 충훈부(忠勳府)에 잔치를 내리어, 종친(宗親)·의정부(議政府)·제공신(諸功臣)·중추부(中樞府)의 2품 이상과 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대사헌(大司憲)·대사간(大司諫)으로 하여금 나오게 하고, 풍악 1등을 내리라.” 하고, 도승지(都承旨) 신준(申浚)·좌승지(左承旨) 손순효(孫舜孝)·우승지(右承旨) 박숙진(朴叔蓊)에게 명하여 선온(宣醞)을 가져가게 하였다.	○丙寅/傳曰：“中宮已平善，賜宴于忠勳府，令宗親、議政府、諸功臣、中樞府二品以上，六曹、漢城府、大司憲、大司諫赴之。”賜樂一等。命都承旨申浚、左承旨孫舜孝、右承旨朴叔蓊齎宣醞往焉。
성종 88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1월 7일(경오) 1번째기사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전 영변 판관(寧邊判官) 조형손(曹亨孫)은 관물(官物)인 생치(生雉) 44수(首), 건치(乾雉) 40수, 닭 23수, 건장(乾獐) 7구(口), 건저(乾豬) 1구, 깨 10두(斗), 청밀(淸蜜) 2두 1승(升)을 관노(官奴) 계근(界斤)에게 주어 본가로 수송하였으니, 죄가 율(律)의 결장(決杖) 1백 대에 제명 불서(除名不敘)에 해당하고, 《대전(大典)》에 의하여 고신을 빼앗고 장안(贓案)에 기록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庚午/司憲府啓：“前寧邊判官曹亨孫，以官物生雉四十四首、乾雉四十首、雞兒二十三首、乾獐七口、乾豬一口、荏子十斗、淸蜜二斗一升，授官奴界斤，輸送本家罪，律該決杖一百、除名不敘。依《大典》，奪告身錄贓案。”從之。
성종 89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2월 4일(정유) 1번째기사	성균관에 채화(彩畵)한 술통과 채화한 큰 술잔 각기 둘을 하사하고, 이어서 좌부승지(左副承旨) 손비장(孫比長)을 시키어 가서 선온(宣醞)을 내려 주게 하였다. 이날 석전(釋奠)의 음복(飮福)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명이 있었다.	○丁酉/賜成均館畵罇畵大鍾各二事，仍命左副承旨孫比長往賜宣醞。是日釋奠飮福，故有是命。
성종 89권, 9년(1478)	예조(禮曹)에서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이극기(李克基)의 계본(啓本)에	○禮曹據江原道觀察使李克基啓本啓：

<p>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2월 6일(기해) 2번째기사</p>	<p>의거하여 아뢰기를, “통천군(通川郡) 사람 선교랑(宣敎郎) 최춘기(崔春己)는 금년에 나이가 1백 살이니, 청컨대 전례에 의해서 1년에 쌀 10석을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通川郡人宣敎郎崔春己年今百歲。請依例歲給米十碩。”從之。</p>
<p>성종 89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2월 25일(무오) 1번째기사</p>	<p>임금이 소선(素膳)하자, 승지들이 합사(合辭)하여 아뢰기를, “무릇 대신이 졸(卒)하였을 때 임금이 한 끼만 소선을 들더라도 이미 후한 것인데, 오늘도 소선을 드시니, 신들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하루로는 부족하다. 내일은 그치겠다.” 하였다.</p>	<p>○戊午/上素膳，承旨等合辭啓：“凡大臣卒，人君雖一飯行素，已厚矣，今日亦進素膳，臣等以爲過矣。”傳曰：“一日不足。明當止之。”</p>
<p>성종 89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2월 25일(무오) 2번째기사</p>	<p>호조에 전지(傳旨)해서 졸(卒)한 상락 부원군 김질에게 부의(賻儀)로 쌀·콩 아울러 55석과, 종이 1백 권과, 백포(白布) 10필과, 백면포(白綿布) 10필과, 정포(正布) 50필을 내려 주게 하였다.</p>	<p>○傳旨戶曹賜卒上洛府院君金碩賻米豆并五十五碩、紙一百卷、白布十匹、白綿布十匹、正布五十匹。</p>
<p>성종 90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3월 3일(을축) 4번째기사</p>	<p>기영회(耆英會)를 훈련원(訓練院)에서 베풀고, 술과 풍악을 하사(下賜)하였다.</p>	<p>○設耆英會于訓練院，賜酒樂。</p>
<p>성종 91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4월 7일(무술)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김자정(金自貞)이 아뢰기를, “금년에 두 번 흠비의 변(變)이 있어 전하께서 바야흐로 몸을 닦고 마음을 반성하여 이를 삼가시면서 금주(禁酒)는 허락하지 않으시니, 천견(天譴)에 공경히 답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였으며, 장령(掌令) 박숙달(朴叔達)은 아뢰기를, “지금의 공경 대부(公卿大夫)는 잔치하고 노는 것을 일삼아 강 위에 정자를 짓고 왕래하면서 즐기니, 만일 중국 사신이 와서 보면 필시 이르기를, ‘나라</p>	<p>○御經筵。講訖，大司諫金自貞啓曰：“今年再有雨土之變，殿下修省謹災，而不許禁酒，非所以敬答天譴也。”掌令朴叔達曰：“今之公卿大夫以遊宴爲事，構亭於江上，往來耽樂，設有中朝使臣來見，必謂國人以遊宴爲事。不特此也，大小朝士或張侯於門外，或設宴於京邸，邀致妓伶，遊戲自恣，請毀</p>

사람들이 놓고 잔치하는 것으로써 일삼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대소 조사(大小朝士)가 혹은 문밖에서 활쏘기를 하거나 혹은 경저(京邸)에서 잔치를 베풀며, 기생과 광대를 청하여 놀이하고 희롱하면서 방자하게 구니, 청컨대 강가의 정자를 헐게 하고 기생을 데리고 잔치하는 것을 금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술을 금하는 소이(所以)는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인데, 만약 술을 금하는 영(令)을 세우면 비록 한 병의 술을 가진 자라도 또한 구속을 당할 것이니, 원망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다. 또 당(唐)나라 때에도 채상이 곡강(曲江)에 나가서 노는 일이 있었으니, 일 년 동안 근심하고 수고하였는데 하루도 즐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 비록 놀며 쉬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고, 인하여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한명회(韓明澮)가 대답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하였고, 영사 노사신(盧思愼)이 말하기를,
 “신의 전장(田庄)도 강변에 있는데, 신의 조부(祖父)가 정자를 지은 것이 신에게 전하여 이르른 것으로, 신도 때로 왕래하고 있습니다. 강변에 인가가 있는 것을 중국 사람이 본다고 해서 무슨 좋지 못함이 있겠습니까?”

하였으며, 지사(知事) 이극배(李克培)는 말하기를,
 “중국 조정에도 누대(樓臺)가 있으며, 지금의 재상들이 비록 정자를 가지고 있을 지라도 임무가 중한 자라면 어느 여가에 가서 놀겠습니까?”

하였고, 박숙달은 말하기를,
 “《역경(易經)》에 이르기를, ‘신하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자신을 위하여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고,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밤낮으로 부지런하여 한 사람을 섬긴다’고 하였으니, 경대부(卿大夫)가 된 자

江亭，禁率妓遊宴者。”上曰：“禁酒所以省費也，若立酒禁，則雖持一瓶者，亦見拘執，怨咨者必多。且唐時亦有宰相出遊曲江事，終歲憂苦而不爲一日之樂可乎？雖有遊息之所何害？”仍問左右。領事韓明澮對曰：“上教允當。”領事盧思愼曰：“臣之田莊亦在江邊，臣祖父構亭，傳至於臣，臣亦有時往來焉。江邊有人家，中朝人見之，有何不可？”知事李克培曰：“中朝亦有樓臺，今之宰相雖有亭榭，任重者何暇往遊？”叔達曰：“《易》云：‘王臣蹇蹇，匪躬之故’，《詩》曰：‘夙夜匪懈，以事一人’，爲卿大夫者，當蹇蹇匪懈，而日以宴飲爲事可乎？”自貞曰：“禁酒之令，不可不立也。禁酒似若小事，而節浮費無過於此。今之人率以奢侈相尚，亭榭極其奢麗，請撤去。”上曰：“大平之時，公卿大夫何必長憂苦哉？不爲荒淫可矣，雖或遊衍何害？”叔達曰：“臣謂大平之時，君臣惕厲，乃是永保大平之道。若自謂大平而不知戒懼，則豈能終保大平哉？”克培曰：“會飲之法既立，奢侈之禁亦立，申明可也。”上曰：“法既立矣，惟在憲府

	<p>는 마땅히 충성을 다하고 게으르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데, 날마다 잔치하며 술마시는 것을 일삼는 것이 옳겠습니까?”</p> <p>하였다, 김자정은 말하기를,</p> <p>“금주령(禁酒令)은 마땅히 세워야 합니다. 술을 금하는 것이 작은 일인 것 같으나 허비를 절약하는 데에는 이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이 대개 사치를 서로 숭상하여 정자를 지극히 사치하고 아름답게 하니, 청컨대 철거하게 하소서.”</p> <p>하자, 임금이 말하기를,</p> <p>“태평 시대에 공경 대부(公卿大夫)가 어찌 항상 근심하고 걱정만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황음(荒淫)하지 아니함이 옳으며, 비록 흑시 놀고 휴식한들 무엇이 해롭겠는가?”</p> <p>하였다. 박숙달이 말하기를,</p> <p>“신은 생각하건대, 태평 시대에 임금과 신하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태평함을 길이 보전하는 길입니다. 만약 스스로 태평 시대라고 이르며 경계하고 두려워할 줄을 모르면, 어찌 능히 태평함을 끝까지 보존하겠습니까?”</p> <p>하였다, 이극배는 말하기를,</p> <p>“모여서 술을 마시는 법을 이미 세웠으니 사치를 금하는 법도 세워서 거듭 밝히는 것이 옳습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법을 이미 세웠으니 오직 사헌부의 검찰(檢察)만이 있을 뿐이며, 술을 금하는 것은 아직 천천히 하라.”</p> <p>하였다. 박숙달이 말하기를,</p> <p>“한(漢)나라 선제(宣帝) 때에 흠비가 내렸고 평제(平帝) 때에는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열후(列侯)가 많이 분쟁하여 어지러워질 조짐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두 번의 흠비가 내리자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p>	<p>檢察耳，酒禁姑徐之。” 叔達曰：“漢宣帝時雨土，平帝時地震，其時議者以爲，列侯衆多紛爭爲亂之兆。今再雨土，議者以爲，土木繁興所致。且臣前往江原道，見本道土地磽瘠，其民不務耕農，皆賣材爲生，今則禁之使不得伐木。古者山林川澤，與民共之，國家既有禁山，其外山請勿禁。” 上曰：“不然。禁山之外，豈有禁乎？” 叔達曰：“臣竊觀殿下之治，寢不如初。近日昌原君專擅殺人，臣等請罪而不從，鄭麟趾自言貧寒，誣罔君上，臣等請罪而不從，今又啓請許琮之罪，又不從，殿下聽言寢不如初也。” 上曰：“臺諫之言，必盡從乎？” 明澮曰：“臺諫所言，在上取舍耳。” 克培曰：“臺諫之言，是則從之，非則舍之。昌原君至親；麟趾大臣，殿下不之罪，出於不得已也。許琮之事又如此，臺諫言之，而取舍在殿下。” 上曰：“琮大臣且功臣，何以加罪？” 叔達曰：“右通禮陞爲左通禮，然後去官例也。今申允底以右通禮去官，臣恐法毀也。請改正。” 上曰：“允底除是職已久，其初當(受) [授] 左通禮，吏曹誤除右通禮耳。”</p>
--	---	---

를, ‘토목(土木)의 일을 번거롭게 일으킨 소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신이 전에 강원도에 가서 보니, 본도(本道)는 토지가 메말라서 그곳 백성은 농사짓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모두 목재(木材)를 팔아서 생활하는데, 이제 금하여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니, 예전에는 산림 천택(山林川澤)을 백성들과 함께 공유(共有)하였습니다. 국가에는 이미 금산(禁山)이 있으니, 그 외의 산은, 청컨대 금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금산 이외에 어찌 금함이 있겠는가?”

하니, 박숙달이 말하기를,
“신이 삼가 보건대, 전하의 다스림이 점점 처음과 같이 못합니다. 요즘 창원군(昌原君)이 마음대로 사람을 죽여 신 등이 죄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정인지(鄭麟趾)가 스스로 가난하다고 말하여 군상(君上)을 속였으므로 신 등이 죄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셨으며, 이제 또 허종(許琮)의 죄를 청하였으나 또한 따르지 아니하시니, 전하께서 언론(言論)을 듣는 것이 점점 처음과 같지 아니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의 말은 반드시 다 따라야 하는가?”

하니, 한명회가 말하기를,
“대간이 언론(言論)하는 바를 주상께서 취하거나 버리거나 하실 뿐입니다.”

하였고, 이극배는 말하기를,
“대간의 말이 옳으면 따르고 옳지 못하면 버리는 것인데, 창원군은 지친(至親)이고 정인지는 대신이므로 전하께서 죄주지 아니하시는 것은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허종의 일도 이와 같은 것인데 대간이 말하였으니 취하고 버리는 것은 전하께 달려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叔達曰：“允底實無材德，只以門蔭，除通禮幸矣。陞爲左通禮，然後去官，未爲晚也。”上曰：“當用則用之，豈論以門蔭哉？”

	<p>“허중은 대신이고 또 공신인데 어찌 죄를 가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박숙달이 말하기를, “우통례(右通禮)는 승직(陞職)하여 좌통례(左通禮)로 삼은 연후에 거관(去官)하게 하는 것이 예(例)인데, 지금 신윤저(申允底)는 우통례로 거관하였으니, 신은 법이 허물어질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개정(改正)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윤저를 이 벼슬에 제수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처음에 좌통례에 제수하였어야 마땅한 것을 이조(吏曹)에서 우통례에 잘못 제수한 것이다.” 하자, 박숙달이 말하기를, “신윤저는 실로 재주와 덕은 없고 단지 문음(門蔭) 때문이었으니, 통례(通禮)에 제수된 것도 다행이었습니다. 승직하여 좌통례로 삼은 연후에 거관하게 하는 것은 아직 늦지 아니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써야 할 것이어서 쓴 것인데, 어찌 문음(門蔭)을 논하는가?” 하였다.</p>	
<p>성종 91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4월 21일(임자) 3번째기사</p>	<p>사헌부에서 계달하기를, “요즘 흉비와 지진이 있었고 성 안에 불이 나서 수백 집이 연소(延燒)되었으니 재변이 이상하고, 또 가뭄의 징조가 있으니 모름지기 상하(上下)에서 몸을 닦고 마음을 반성하여야 할 것이므로, 늙고 병들어 약으로 먹거나 혼인과 제사 외에는 일체 술을 금하여 천견(天譴)에 답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되, 다만 부모의 헌수(獻壽)와 백성 다섯 사람 이하가 술을 마시는 것은 금하지 말게 하였다.</p>	<p>○司憲府啓: “近日雨土地震, 城中失火, 延燒數百家, 災變異常, 又有旱徵, 須上下修省。其老病服藥、婚姻、祭享外, 一皆禁酒, 以答天譴。”從之。但父母獻壽及庶人五人以下飲酒, 勿禁。</p>
<p>성종 91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4월 21일(임자) 7번째기사</p>	<p>주강(晝講)에 나아갔다. 도승지 임사홍(任士洪)이 정승들의 의논을 가지고 친히 아뢰자, 임금이 말하기를, “전지(傳旨)한 말이 과연 번거롭고 어지러우니, 그 요지만 뽑아서 고치는 것이 가하다. 또 대간(臺諫)이 말하기를, ‘지금 수령은 모두 적당한 사람이 아니</p>	<p>○御晝講。都承旨任士洪將政丞議親啓, 上曰: “傳旨之辭果煩亂, 撮其要改之可也。且臺諫言: ‘今守令類皆非人, 內重外輕’, 予欲以見任清要職者,</p>

며 내직(內職)은 중하고 외직은 가볍다.’고 하니, 내가 현임(現任)의 청직(淸職)과 요직(要職)에 있는 자들을 골라서 외임(外任)에 제수하고자 하는데 어떨까?”

하니, 임사홍이 말하기를,

“상교(上敎)가 지당합니다. 그러나 임금(君)은 마땅히 때에 따라 적당하게 법을 제정할 것이며, 내외(內外) 벼슬을 치우치고 경중(輕重)이 있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승정원(承政院)은 백사(百司)에서 모이는 일과 왕명(王命)을 출납하는 곳입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밤낮으로 짐(朕)의 명을 출납하되 오직 믿음으로 하라.’고 하였는데, 해석하는 자가 말하기를, ‘명령과 정교(政敎)를 반드시 살펴서 마땅한 뒤에야 내며, 부주(敷奏)8430)·복역(復逆)을 반드시 살펴서 마땅한 뒤에야 들이게 한다.’고 하였으니, 어찌 외직을 중히 한다 하여 이 벼슬에는 사람이 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의정부(議政府)는 비록 서사(署事)는 아니할지라도 그 낭청(郎廳)은 또한 적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밝게 아는 것은 예전 임금도 어려워하였는데, 만약 말로 사람을 취한다면, 무릇 임금에게 말을 올리는 자는 모두 착한 말을 아뢰되 그 일을 행함에 미쳐서는 말과 행실이 어긋날 것이니, 사람을 아는 것과 사람을 쓰는 것이 또한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진실로 착한 이를 얻어 전조(銓曹)의 장(長)으로 삼아서 일을 위임하여 이루기를 책(責)하고 그의 아는 바를 들어서 쓰도록 하면, 사람을 쓰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또 신은 생각하건대, 재변이 있는 뒤에야 몸을 조심하며 마음을 닦고 반성하는 것인데, 이제 밝게 드러난 재이가 없으면서 갑자기 술을 쓰는 것을 금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가뭄의 징조가 있다고 하였으나 벼룩(虱)이 마르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흙비[土雨]를 재이라고 한다면, 경운(慶雲)8432)·분침(氛祲)8433) 이 각각 운수(運數)로써 응하는데, 이것이 어찌 나쁜 징조가 되겠습니까? 요즘 연일 활쏘기를 하는데, 활을 쏘는 것은 술의 힘을 빌리는 것이

擇授外任何如?” 士洪曰: “上敎允當。然人君當因時制宜, 不可使內外偏有輕重也。有如承政院, 百司所集, 出納王命。《書》云: ‘夙夜出納朕命, 惟允’, 釋之者曰: ‘命令政敎, 必使審之, 既允而後出; 敷奏復逆, 必使審之, 既允而後入。’ 其可重外而無人於此職乎? 議政府雖不署事, 其郎廳亦不可用非其人也。知人之明, 惟帝其難之, 若以言語取人, 則凡進言於君者, 皆陳善言, 而及其行事, 言與行違, 知人用人, 不亦難乎? 臣意以謂誠得善人爲銓曹之長而委任責成, 則舉爾所知, 用人當矣。且臣意謂有災變然後側身修省, 今無顯顯之災, 遽禁用酒未穩。若以爲有旱徵, 則禾穀不乾, 若以雨土爲災則慶雲氛祲, 各以運數應之, 此何咎徵乎? 近日連射, 射資酒力, 無酒不可。且端午日府政 [政府]、六曹禮當進宴, 上亦進別膳于三大妃殿, 於端午後禁酒便。” 上曰: “惟酒費穀, 禁之爲是。然獻壽不在禁限, 予之別進晝膳, 何拘於禁乎?” 士洪 [曰]: “近間臺諫言事甚易, 不可以臺諫之言而盡從。如其言之不當, 往往當示以譴責之意可

로 술이 없으면 할 수 없으며, 또 단오(端午)에는 의정부와 육조(六曹)에서 예(禮)로써 마땅히 진연(進宴)하여야 하고, 주상께서도 세 대비전(大妃殿)에 별선(別膳)을 올려야 할 것이니, 단오 후에 술을 금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술은 오직 곡식만 허비하니, 금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헌수(獻壽)하는 것은 금하는 한도에 있지 아니하니, 내가 별도로 주선(晝膳)을 올리는 것은 어찌 금하는 데 구애되겠는가?”

하자, 임사홍이 말하기를,

“요즘 대간(臺諫)들이 일을 말하기를 매우 가볍게 하니, 대간의 말을 다 따를 수 없습니다. 만일 그 말이 마땅치 못하면 이따금 마땅히 견책(譴責)의 뜻을 보이는 것이 옳습니다. 전자에 국학(國學)에 거동하여 양로연(養老宴)을 하던 날에 대간들이 김수온(金守溫)을 논박(論駁)하여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김수온이 삼로(三老)가 되는 것은 대간의 말이 옳지만, 그날은 오로지 양로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성산(趙誠山)·김개(金漑)·김한(金瀚)과 같은 이는 모두 무신(武臣)으로서 입참(入參)하였는데, 김수온의 입참이 무엇이 옳지 못함이 있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이 일을 말하는 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일이다. 그 취하고 버리는 것은 내 한 마음에 달려 있으며, 또 임금의 위엄은 천둥이나 벼락에 비할 것이 아닌데, 만약 말하게 하고 따라서 꾸짖으면 누가 감히 말하겠는가? 그리고 김수온은 불도(佛道)를 숭신(崇信)해 일찍이 머리를 깎고, 출가(出家)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명륜당(明倫堂)에 들어와서 앉는 것이 옳겠는가? 다행히 그 때 입참(入參)하였다고 하더라도 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같지 아니하여 족히 취할 것이 없었을 것이니 대간의 논박이 진실로 옳다.”

하였다.

也。 前者幸國學養老之日，臺諫論駁金守溫，使不得參宴目 臣意以謂守溫爲三老，則臺諫之言然矣；其日則專爲養老，故有如趙誠山、金漑、金瀚皆以武臣入參，守溫之入參，何有不可哉？”

上曰：“臺諫之言事，誠美事也。 若其取舍，在予一心。 且人君之威，非特雷霆也，若言之而隨之以譴責，則誰敢盡言？ 且守溫崇信佛道，嘗欲祝髮出家，將此心而入坐明倫堂，可乎？ 幸其時入參，而所言與所行不同，則無足取也。 臺諫之論駁誠是矣。”

<p>성종 91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4월 22일(계축) 2번째기사</p>	<p>임금이 승정원에 묻기를, “내가 보건대, 재상들이 활을 잘 쏘지 못하니, 반드시 술기운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 무릇 활쏘는 것은 모름지기 술기운이 있어야 능히 잘 쏘게 되는 것인데, 술을 금한 것은 소비가 많기 때문이다. 활을 쏘고 술을 마시되, 기운에 적당하도록 하고 그치면 무엇이 해롭겠는가? 후일 종친과 재상이 관사(觀射)할 때에는 술을 쓰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또 우리나라는 삼면(三面)으로 적(敵)의 침입을 받으므로 무비(武備)를 해이하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승평(昇平)한 날이 오래되자 무신(武臣)이 겨우 당상(堂上)이 되면 활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문신(文臣)은 스스로 유자(儒者)라고 하여 활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하다. 내가 비록 활을 잘 쏘지 못할지라도 마땅히 종친·문신·재상들과 더불어 함께 활쏘기를 하여 장차 장사(將士)들을 격려하려고 한다.”</p> <p>하니, 도승지 임사홍(任士洪)이 대답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또 대간(臺諫)들이 술을 금하자는 뜻은 전하로 하여금 더욱 몸을 닦고 마음의 반성을 더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큰 재이(災異)가 없으며 더군다나 활을 쏘면서 술을 마시는 것도 일찍이 금하지 아니하였는데, 관사(觀射)하는 데에 술을 쓰는 것이 무슨 옳지 못함이 있겠습니까?”</p> <p>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대간의 말에 따라 이미 술을 금하게 하였는데, 근래에 대간들이 말하는 일이 거개 자질구레함이 많으므로, 이제 만약 술을 쓰면 반드시 말이 있을 것이니, 술을 쓰려는 뜻을 가지고 대간들에게 말하라.”</p> <p>하였다.</p>	<p>○問于承政院曰：“予觀宰相不善射，意必無酒力而然也。凡射者，須有酒氣，乃能善射。禁酒爲糜費也，射而飲，適氣而止，何傷乎？後日宗親宰相觀射時欲用酒，何如？且我國三面受敵，武備暫不可弛。然昇平日久，武臣纔爲堂上則不善射，文臣自以爲儒者而不肯射，此甚不可。予縱未能善射，當與宗親、文臣、宰相共射，將以激夫將士。”都承旨任士洪對曰：“上教允當。且臺諫禁酒之意，欲使殿下益加修省耳。然今無大災異，況射而飲者，曾亦不之禁，觀射用酒，何有不可？”傳曰：“予從臺諫之言，已令禁酒。近來臺諫言事率多細瑣，今若用酒，亦必有言。其以用酒之意，語諸臺諫。”</p>
<p>성종 92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흠비[土雨]로 인하여 시정(時政)의 득실(得失)과 민간의 이해(利害)</p>	<p>○傳于承政院曰：“頃因雨土，欲聞時政得失民間利害，下教求言，其所以禁</p>

<p>14년) 5월 1일(임술) 4번째기사</p>	<p>를 듣고자 하여, 전교를 내려 바른 말을 구하였는데, 거기에 술을 금하라고 한 까닭은 가뭄의 징조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제 비가 두루 흠족하여 큰 가뭄과 큰 물의 재변이 없으니, 술을 금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는가?”</p> <p>하니, 승지 손순효(孫舜孝)와 박숙진(朴叔綦)·김승경(金升卿)이 대답하기를, “세종조(世宗朝) 때에는 비록 재이(災異)가 없을지라도 매양 농삿달을 당하면 술을 금하였으니, 허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단오(端午)의 관사(觀射)에 반드시 술을 써야 하는데, 궐내(闕內)에서 쓰면 외간(外間)에서도 자연히 쓸 것이니, 금하는 것을 과할 필요가 없습니다.”</p> <p>하였다. 전교하기를, “금주령(禁酒令)을 과하지 아니하고 가을까지 이르면 도리어 민폐(民弊)가 있을 것이다.”</p> <p>하니, 모두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p> <p>하였다. 전교하기를, “임원준(任元濬)이 도승지 황수신(黃守身)에게 뇌물을 바치고 벼슬을 얻은 일과 이용(李瑢)의 집에서 약을 훔친 일을 춘추관(春秋館)으로 하여금 《실록》을 상고하게 하였다. 약을 훔친 것은 이미 거짓된 일인 것을 알았고, 뇌물을 바친 일은 비록 있었을지라도 선왕(先王)께서 이미 벼슬길을 허락하고 임용(任用)하시어 묘당(廟堂)의 대신(大臣)에 이르렀으니, 추론(追論)할 수 없다. 가령 영의정이 본래 옳지 못한 일이 있었다가 지금에 이르러 탄로되었다면, 또한 추론하여 죄를 주어야 할 것인가? 나의 생각에는 《실록》을 상고하는 것이 유익함이 없다고 여긴다. 이를 의정부의 증경 정승(曾經政丞)과 육조(六曹)의 판서(判書)이상에게 의논하라.”</p> <p>하니, 정인지(鄭麟趾)는 의논하기를, “송(宋)나라 구양수(歐陽脩)는 유박불수(帷薄不修)의 비난이 있었으나, 그때에</p>	<p>酒者，爲有旱徵也。今雨澤周洽，無大旱大水之變，勿禁酒何如？”承旨孫舜孝、朴叔綦、金升卿對曰：“在世宗朝，雖無災異，每當農月禁用酒，爲糜費也。今端午觀射必用酒，闕內用之，則外間自然用之矣，不必罷禁。”傳曰：“禁酒之令未罷以至於秋，反有民弊耳。”僉曰：“上教允當。”傳曰：“任元濬於都承旨黃守身處納賂得官事與瑢家竊藥事，令春秋館考《實錄》。竊藥則已知虛事，其納賂事雖有之，先王業已許通任用，至爲廟堂大臣，不可追論。假令領議政素有不是事，到今出露，亦可追論而罪之乎？予意以爲考《實錄》無益也。其議諸政府、曾經政丞、六曹判書以上。”鄭麟趾議：“宋(歐陽脩) [歐陽修] 有帷簿不修之誚，其時以曖昧不問。元濬之事，皆已往數十年，不必更論。”韓明澮議：“瑢家竊藥事，臣嘗親啓，納賂事，先王勿論任用，爲六曹堂上，至爲政府大臣，不可追論。”鄭昌孫、沈澹、尹士昕議：“任元濬雖有是事，先朝業已許通任用，于今數十餘年，位列廟堂，不宜追論。且今已罷政府經筵之任，上</p>
---------------------------------	---	--

	<p>애매(曖昧)한 일이라 하여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임원준의 일은 이미 수십 년이 지났으니, 다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p> <p>하고, 한명회(韓明澮)는 의논하기를, “용(瑢)의 집에서 약을 훔친 일은 신이 일찍이 친히 아뢰었으며, 너물을 바친 일은 선왕(先王)께서 논하지 않고 임용(任用)하시어 육조(六曹)의 당상관(堂上官)이 되고 의정부의 대신까지 되었으니, 추론(追論)할 수 없습니다.”</p> <p>하고, 정창손(鄭昌孫)·심회(沈澮)·윤사흔(尹士昕)은 의논하기를, “임원준의 비록 이러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선왕조에서 이미 벼슬길을 허락하여 임용된 지 이제 수십 년이 넘었고, 벼슬이 의정부에 있으니, 추론할 수 없습니다. 또 지금 이미 의정부와 경연(經筵)의 임무를 과하였으니,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p>	<p>教允當。” (…)</p>
<p>성종 92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5월 6일(정묘) 4번째기사</p>	<p>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 윤호(尹壕)가 와서 아뢰기를, “지난해에 밀양(密陽) 창고(倉庫)에 불이 나서 곡미(穀米) 8천여 석을 태웠는데, 부사(府使) 박시형(朴時衡)이 수량에 따라 다시 갖추었으니, 이는 반드시 백성들에게 거두어서 그 폐단이 작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 잡아올 때에 박시형이 많은 미곡을 내어 옥중(獄中)에서 자봉(自奉)할 비용으로 하였고, 또 전 정자(正字) 박말주(朴末柱)는 박시형이 타는 가마[轎]를 부러뜨려서 우물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이는 도둑놈이 타던 것이다.’고 하였다 하니, 신이 이 일을 듣고 감히 잠자코 있을 수 없어서 감히 아뢰입니다.”</p> <p>하니, 전교하기를, “경이 계달하기를 잘하였다. 경이 아니면 내가 어찌 알았겠는가? 박말주를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오게 하라.”</p> <p>하였다.</p>	<p>○漢城府右尹尹壕來啓曰：“前年密陽倉庫失火，燒穀米八千餘石，府使朴時衡隨數改備，此必斂民，其弊不貲。今拿來時，時衡多出穀米，以資獄中自奉之費。且前正字朴末柱折時衡所乘轎，投諸井中，曰：‘此賊人所乘也’，臣聞此事，不敢含默敢啓。”傳曰：“卿啓善矣。非卿予安得知？朴末柱，令義禁府拿來。”</p>
<p>성종 92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5월 15일(병자)</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우의정 윤자운(尹子雲)에게 부의(賻儀)로 쌀·콩 아울러 40석, 종이 1백 권(卷), 백포(白布) 10필, 백면포(白綿布) 10필, 정포(正布) 15필을 하사하였다.</p>	<p>○丙子/傳旨戶曹賜右議政尹子雲賻米豆并四十碩、紙一百卷、白布十四、白綿布十四、正布十五匹。</p>

1번째기사	<p>의정부(議政府)에 전지하기를, “지금 농사일이 바야흐로 한창인데, 밀·보리를 거두지 아니하고, 장맛비가 재해가 되어 한 달을 연하여 개이지 아니하니, 깊이 생각건대, 허물의 응보(應報)가 진실로 나 한 사람의 어질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안으로는 몸을 반성하여 스스로 책(責)하고, 밖으로는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여, 무릇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근심하며 재해를 막고 환난(患難)을 구휼하는데에 이미 내 마음을 다하였으나, 모든 정사와 만기(萬機)에 어찌 지나친 일이 없겠으며, 중외(中外)에서 받들어 행하는 데에 어찌 그릇됨이 없겠으며, 민간의 억울함을 어찌 다 펴게 하였겠는가? 여기에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모두 족히 재앙을 이루는 것이니, 내가 이를 위해 두려워한다. 전에 이미 중외(中外)의 신서(臣庶)에게 바른말을 구하여 지금 바야흐로 채택해서 쓰는데, 그 말이 비록 적중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진실로 백성에게 이로우면, 내 장차 일체(一切)를 행하려고 한다. 그러니 내 마음을 본받아 백사(百司)에 효유(曉諭)하고, 정사(政事)의 득실(得失)과 민간의 원왕(冤枉)을 보고 듣는 대로 사실에 따라 계달하고, 또 모름지기 각각 마음을 다하여 나의 재앙을 근심하는 뜻에 부응(副應)하도록 하라. 또 이것을 여러 도의 관찰사(觀察使)에게 하유(下諭)하라.” 하였다.</p>	<p>○傳旨議政府曰：“屬今農務方殷，麩麥未收，霖雨爲災，彌月不開，深惟咎徵之應，實由予一人無良。內則省躬自責，外則遣官修祀，凡所以畏天憂民弭災恤患者，既竭吾心。然庶政萬機豈無過舉？中外奉承豈無差違？民間冤屈豈盡得伸？有一於此，皆足致戾，予爲此懼。前已求言於中外臣庶，今方採而用之，其言雖或不中，而苟利於民，吾將一切行之。其體予懷，曉諭百司，政事得失，民間冤枉，隨所見聞，從實以啓。且須各盡乃心，副予恤災之意。又以是下諭諸道觀察使。”</p>
<p>성종 92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5월 29일(경인) 2번째기사</p>	<p>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장맛비가 재해가 되어서 밭을 제때에 거두지 못하니, 진실로 마땅히 상하(上下)에서 수성(修省)하여 천궤(天譴)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늙고 병들어서 약으로 복용하거나 혼인(婚姻)·제사(祭祀), 부모(父母)의 헌수(獻壽) 및 서인(庶人) 다섯 사람 이하가 술을 마시는 것과, 길에서 병술을 가지고 가는 것 외에는 중외(中外)에서 술을 쓰는 것을 금하라.” 하였다.</p>	<p>○傳旨司憲府曰：“霖雨爲災，田不時收，誠宜上下修省以答天譴。其老病服藥、婚姻、祭享、父母獻壽及庶人五人以下飲酒與路間持瓶酒外，中外禁用酒。”</p>

<p>성종 93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6월 22일(임자) 3번째기사</p>	<p>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전 밀양 부사(密陽府使) 박시형(朴時衡)이 선자(扇子) 15, 입모(笠帽) 2, 유석(油席) 2, 안룽(鞍籠) 1, 황률(黃栗) 4두(斗), 소룽(小籠) 2척(隻)을 가지고 윤효손(尹孝孫)에게 뇌물로 주고, 관미(官米) 30석(碩), 도(稻) 40석을 출고(出庫)하여 양옥(養獄)하는 자재(資財)로 삼은 죄는, 율(律)이 결장(決杖) 1백대에 유(流) 3천 리에, 자자(刺字)는 면하고 고신(告身)은 모두 추탈(追奪)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義禁府啓: “前密陽府使朴時衡, 以扇子十五、笠帽二、油席二、鞍籠一、黃栗四斗、小籠二隻賂遺尹孝孫, 出官米三十碩、稻四十碩爲養獄之資, 罪律該決杖一百、流三千里、免刺、告身盡行追奪。” 從之。</p>
<p>성종 93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6월 22일(임자) 4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경연관(經筵官) 최자빈(崔自濱)이 죽었는데, 관곽(棺槨)과 유둔(油菴) 2, 지(紙) 60권, 미·두(米豆) 아울러 10석을 주라.” 하였다.</p>	<p>○傳旨戶曹曰: “經筵官崔自濱死, 其給棺槨·油菴二·紙六十卷·米豆并十碩。”</p>
<p>출처</p>	<p>내용</p>	<p>원문</p>
<p>성종 94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7월 5일(갑자) 1번째기사</p>	<p>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평안도의 유민(流民)들이 처자(妻子)를 이끌고 보제원(普濟院)에 와서 붙어 살고 있습니다.” 하므로, 명하여 곧 불러서 물으니, 송수산(宋守山) 등 45인이 공술(供述)하여 말하기를, “본래 경상도(慶尙道) 성주(星州)에서 살았는데, 을유년부터 변방으로 이사하였다가 그 뒤로는 평안도(平安道) 안주(安州)에 살고 있습니다. 본도(本道)는 여러 해 흉년이 들었고, 금년에는 우박(雨雹)으로 곡식이 모두 상해서, 비록 수령(守令)이 진휼(賑恤)을 해도 사람마다 다 배를 채우게 할 수 없어서, 서울로 가서 결식(乞食)하여 주림을 면하고자 한 것이고, 몰래 도망한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해당 관사에 진급(賑給)하도록 명하고, 집의(執義) 김춘경(金春卿)을 평안도에 보내어 유이(流移)하는 인물(人物)을 추쇄(推刷)하게 하였다. 아울러</p>	<p>○甲子/兵曹啓: “平安道流民挈妻孥來寓普濟院。” 命卽召問, 宋守山等四十五人供曰: “本居慶尙道星州, 自乙酉年徙邊時, 居平安道安州。 本道比來凶荒, 今年雨雹, 禾穀盡傷, 雖守令賑恤, 不能使人人充飽。 欲向京城, 乞食免飢耳, 非爲潛逃也。” 命該司賑給, 遣執義金春卿于平安道, 推刷流移人物。 并鞫安州官吏, 仍命京畿、黃海、江原、永安道觀察使曰: “如遇平安道徙民流亡者, 各於所在官存撫賑恤, 急速馳啓。”</p>

	<p>안주(安州)의 관리들을 국문하고, 인하여 경기(京畿)·황해도(黃海道)·강원도(江原道)·영안도(永安道)의 관찰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만일 평안도의 사민(徙民)으로 유망(流亡)한 자를 만나거든 각기 소재관(所在官)에서 존무(存撫)하고 진휼(賑恤)하고서 급속히 치계(馳啓)하도록 하라.” 하였다.</p>	
<p>성종 94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7월 21일(경진) 1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임수경(林秀卿)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개성부 경력(開城府經歷)으로 있을 때 보니, 성 안에 민가[民居]가 뻐뻐하여 비늘처럼 잇달아 즐비했었는데, 지금은 민가가 쓸쓸합니다. 개성부는 곧 옛 도읍인 만큼 진실로 마땅히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여 도산(逃散)하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제용감(濟用監)의 청태(靑苔)와 사포서(司圃署)의 채소 같은 일을 백성들이 매우 괴로와하는데, 이제 또 적전(籍田)의 농사일을 뒷바라지 하게 한다면, 본부(本府)의 백성들은 전판(轉販) 하는 것을 전문(專業)으로 삼기 때문에 농사를 일삼지 않고 항상 사람을 사서 뒷바라지도 하고 부역도 하게 되는데, 아무리 편하게 살고 싶은들 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승지(承旨)에게 이르기를, “적전(籍田)의 일은 의논해서 하라고 하였었는데,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하니, 우승지(右承旨) 홍귀달(洪貴達)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다시 상고해서 아뢰겠습니다.” 하였다.</p>	<p>○庚辰/御經筵。講訖，掌令林秀卿啓曰：“臣嘗爲開城府經歷，見城內民居稠密，鱗次櫛比，今者民居蕭條。開城府乃故都，固宜安輯人民，使不逃散也。如濟用監靑苔、司圃署菜蔬等事，民甚苦之，今又供籍田農事，本府之民以轉販爲業，而不事農事，常雇人以供以役，雖欲安居得乎？”上謂承旨曰：“籍田事已令商議，何以處之？”右承旨洪貴達對曰：“當更考以啓。”</p>
<p>성종 94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7월 23일(임오) 1번째기사</p>	<p>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대사간(大司諫) 안관후(安寬厚)가 아뢰기를, “신이 전날 낙산사(洛山寺)에 구로(舊路)를 열어 금표(禁標)를 치우도록 청하였었는데, 지금까지 하명(下命)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낙산사의 금표는 1백 보(步)에 불과하고 해수(海水)는 지극히 넓은데, 하필</p>	<p>○壬午/受常參，視事。大司諫安寬厚啓曰：“臣前日請洛山寺開舊路，除禁標，至今未得聞命。”上曰：“洛山寺禁標不過百步，海水至廣，何必於百步內捕魚乎？舊路距寺不遠，凡奉使往來襄陽者，耽妓留連，或晝炬夜行，不無</p>

	<p>1백 보 안에서 고기를 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나? 구로(舊路)는 절에서 거리가 멀지 아니한데, 대개 양양(襄陽)을 왕래하는 사자(使者)들이 기생을 탐하여 오래 머물면서 간혹 횃불을 들고 밤길을 다니다가 불을 내어 연소(延燒)될 염려도 없지 않으니, 만일 구로를 다시 연다면 내가 기생을 없애버리겠다.”</p> <p>라고 하였다. 안관후가 말하기를,</p> <p>“기생이야 있고 없고 관계가 없으나, 양양에 기생이 있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인데, 이제 만일 기생을 없애버린다면 후세에 반드시 절을 위해서 없애었다고 할 것입니다. 옛날 제왕도 택량(澤梁)은 금하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하였는데, 이제 만일 금하신다면 후세에 반드시 ‘절을 위해서 금하였다.’고 할 것입니다.”</p> <p>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p> <p>“내가 불교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신자(臣子)로서 선왕(先王) 때의 일을 다 고치고자 하는 것이 옳겠는가?”</p> <p>하니, 안관후가 말하기를,</p> <p>“만일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 고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p> <p>하고, 좌참찬(左參贊) 허중(許琮)이 아뢰기를,</p> <p>“선왕 때의 일로 헌장(憲章)에 관계되는 것은 경솔히 고칠 수 없겠지만, 이와 같은 일은 마땅히 빨리 고쳐야 합니다.”</p> <p>하였다. 안관후가 말하기를,</p> <p>“만일 농사가 흉년이 되어서 백성들이 주리게 되면 반드시 해물(海物)을 취하여 먹어야 할 것인데, 어찌 백성들로 하여금 굶이 가까운 데를 버리고 먼 데에서 구하게 하겠습니까?”</p> <p>하였다.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묻기를,</p> <p>“그 금표(禁標)의 안에 민가가 얼마나 되기에 꼭 해물(海物)에 의뢰해서 살려면 창해(蒼海)가 굉장히 넓은데 어찌 반드시 금하는 곳에서 해야 되겠습니까?”</p>	<p>失火延燒之慮。 若復開舊路，予欲革妓。” 寬厚曰：“妓則雖不關有無，然襄陽有妓，其來尚矣，今若革之，後世必曰爲寺革也。 古之帝王澤梁無禁，與民共之，今若禁焉，後世必曰爲寺禁也。” 上曰：“予不好佛，庸何傷？ 臣子欲盡革先王之事，可乎？” 寬厚曰：“如其非道，革之何害？” 左參贊許琮啓曰：“先王之事係于憲章者，不可輕改，如此等事，當速改之。” 寬厚曰：“若歲凶民飢，則必採海而食，豈宜令民舍近而求遠？” 上問左右曰：“其禁標之內，民家幾何？ 必欲資海物而生，蒼海至廣，豈必於禁地乎？” 都承旨孫舜孝啓曰：“非謂無他處也，爲寺設禁，於義不可耳。” 持平安璿啓曰：“臣等累陳佛家事，一未蒙俞，不勝缺望。” 上曰：“如欲盡革先王之事，則必毀圓覺寺，盡誅沙門，然後快於心歟？” 寬厚曰：“其大者雖難卒革，如此小事，革之甚可。” 璿曰：“臣意雖毀圓覺寺，盡誅沙門，何不可之有？” 上曰：“魏帝盡誅天下沙門，此則已甚矣。”</p>
--	--	--

	<p>하니, 도승지(道承旨) 손순효(孫舜孝)가 아뢰기를, “다른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을 위해서 금표를 설치하는 것을 의리에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p> <p>하고, 지평(持平) 안선(安璿)이 아뢰기를, “신 등이 자주 불가(佛家)의 일을 아뢰었으나, 한번도 아직 윤희를 받지 못하여 결망(缺望)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선왕 때의 일을 다 고치고자 한다면 반드시 원각사(圓覺寺)를 헐어버리고, 중[沙門]들을 모두 죽여버린 뒤에야 마음에 쾌하겠느냐?”</p> <p>하니, 안관후기 말하기를, “큰 일을 비록 갑자기 고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작은 일은 고쳐 버리는 것이 매우 옳습니다.”</p> <p>하고, 안선이 말하기를, “비록 원각사를 헐어버리고 중들을 다 죽인다 한들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p> <p>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위(魏)나라 임금이 천하의 중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이는 너무 심한 일이었다.”</p> <p>하였다.</p>	
<p>성종 94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7월 24일(계미) 2번째기사</p>	<p>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최반(崔蕃)이 아뢰기를, “신 등이 전날 낙산사(洛山寺)의 구로(舊路)를 열어주시도록 두 번이나 상충(上聰)을 괴롭게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윤희를 받지 못하여 결망(缺望)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연해(沿海)의 빈민(貧民)들 가운데 해산물[海錯]에만 의뢰하여 사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이 절을 위해서 백성들의 고기잡이를 금하여</p>	<p>○御經筵。講訖，獻納崔蕃啓曰：“臣等前日請開洛山寺舊路，再瀆上聰，迄未蒙允，不勝缺望。沿海貧民資海錯以(坐) [生] 者多，今爲此寺禁民漁採，使民失業甚不可。且江原道多山少田，聞洛山洞裏有水田膏腴者，可種三十餘</p>

	<p>백성들로 하여금 생업(生業)을 잃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또 강원도는 산이 많고 밭[田]이 적은데, 듣건대 낙산동(洛山洞) 안에는 비옥한 논으로 밭씨 30여 석(碩)을 뿌릴 만한 땅이 있어 세조(世祖)께서 다 이 절에 속하게 하여 승도(僧徒)들로 하여금 경작해 먹도록 하셨다고 하니, 신은 마음이 아픕니다. 빌건대 본 주인에게 도로 돌려 주도록 하소서.” (…)</p>	<p>碩，世祖令盡屬此寺，而使僧徒耕食，臣竊痛焉。乞令還給本主。” (…)</p>
<p>성종 94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7월 24일(계미) 3번째기사</p>	<p>전라도(全羅道)의 점마 별감(點馬別監)인 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 조충손(趙衷孫)이 하직하면서 아뢰기를, “본관(本館)에서 반수(泮水)를 수축하였는데, 오늘로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 역군[役徒]들이 겨우 10여 인밖에 안되는데, 술을 내려 주셔서 위로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좋다. 감역관(監役官)에게도 선온(宣醞)을 내려 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우승지(右承旨) 홍귀달(洪貴達)이 아뢰기를, “오늘 성균관의 관원과 역군[役卒]들에게 술을 내려주시는 것은 학궁(學宮)의 영광인데, 유생(儒生)들에게도 함께 술을 내려 주시어 은혜를 고루 입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도승지(都承旨) 손순효를 성균관에 보내어 성균관의 관원 및 유생으로부터 역군에 이르기까지 다 술을 먹이도록 명하였다.</p>	<p>○全羅道點馬別監成均館司藝趙衷孫辭。仍啓曰：“本館築泮水，今日畢役。其役徒纔十餘人，幸賜陳酒以慰何如？”傳曰：“可。監役官亦可賜宣醞。”右承旨洪貴達啓曰：“今日賜酒于館官及役卒，此學宮之榮。儒生竝賜酒，使均被恩渥何如？”命遣都承旨孫舜孝于成均館，自館官及儒生至役卒，皆饋之。</p>
<p>성종 94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7월 25일(갑신) 2번째기사</p>	<p>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 서거정(徐居正)이 생원(生員) 김사후(金士洵) 등 1백여 명을 거느리고 전(箋)을 올려 술을 내려 준 데 대하여 사례하니, 술을 먹도록 명하였다.</p>	<p>○知成均館事徐居正率生員金士洵等百餘人上箋謝賜酒，命饋之。</p>
<p>성종 94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7월 27일(병술) 1번째기사</p>	<p>경연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안관후(安寬厚)와 지평(持平) 이세광(李世匡)이 낙산사(洛山寺)의 구로(舊路)를 열어 해물(海物) 채취(採取)를 금하였던 것을 파할 것과, 원각사(圓覺寺)의 조라치(照刺赤)를 없앨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세광이 또 아뢰기를,</p>	<p>○丙戌/御經筵。講訖，大司諫安寬厚、持平李世匡請開洛山舊路，罷禁採海，除圓覺寺照刺赤，不聽。世匡又啓曰：“近以大司憲金紐命監圖畫，大</p>

	<p>“요즈음 대사헌(大司憲) 김유(金紐)로써 도화(圖畫)를 감독하도록 명하셨는데, 대사헌은 조정의 강기(綱紀)를 통섭(統攝)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몸소 자질구레한 일까지 나가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부중(府中)이 제좌(齊坐)8812) 하였을 때 도화의 일로 김유(金紐)를 부르셨는데, 김유가 혼자 먼저 나가고 없었으니, 다만 일을 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조정의 체모(體貌)가 없게 되었습니다.”</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김유는 본래 도화서 제조(圖畫署提調)가 되었었고, 또 들으니 그림에 재주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독하게 한 것이다. 도화가 비록 자질구레한 일 이기는 하나, 또한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니, 가령 선왕(先王)의 어용(御容)을 고쳐서 그럴 곳이 있을 때나 중국의 사신이 와서 그림을 찾는 자가 있을 경우에 그림이 없다고 하면 되겠는가?”</p> <p>하였다. 이세광이 말하기를,</p> <p>“신은 도화를 다 없애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화는 국가의 정체(政體)에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김유로 하여금 그 일을 보게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p> <p>하니, 임금의 말하기를,</p> <p>“예방 승지(禮房承旨)가 넉넉히 그 일을 볼 수 있을 것이니, 김유는 그 일에 관여하지 말도록 하겠다.”</p> <p>하였다.</p>	<p>司憲，朝廷綱紀無不統攝，不可親蒞細事也。昨日府中齊坐，以圖畫事命召紐，紐獨先出，非唯廢事，且無朝廷體貌。”上曰：“金紐本爲圖畫署提調，且聞工於畫，故命監其事。圖畫雖細事，亦不可無，假令先王御容，有改畫處，中國使臣有求畫者，其無畫者可乎？”世匡曰：“臣非以圖畫爲可盡廢也，圖畫非關於國家政體，不必金紐監其事。”上曰：“禮房承旨足以監其事，金紐其勿與焉。”</p>
<p>성종 94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7월 28일(정해) 1번째기사</p>	<p>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獻納) 최반(崔潘)과 지평(持平) 안선(安璿)이 낙산사(洛山寺)의 구로(舊路)를 열어 줄 것과 해물(海物) 채취(採取)를 금하였던 것을 파하여 줄 것과 금하였던 묵은 민전(民田)을 올려줄 것을 청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보고 말하기를,</p> <p>“어떻게 하겠는가?”</p>	<p>○丁亥/御經筵。講訖，獻納崔潘、持平安璿請開洛山寺舊路，罷禁採海，給還禁陳民田。上謂左右曰：“何如？”知事李克培對曰：“臣未知洛山事，盧思慎詳知之。然先王時事，何必改</p>

하니, 지사(知事) 이극배(李克培)가 대답하기를,
 “신은 아직 낙산사의 일을 모르고, 노사신(盧思愼)이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왕(先王) 때의 일을 어찌 꼭 고쳐야 하겠습니까?”
 하고, 영사(領事) 노사신이 말하기를,
 “신은 세조조(世祖朝) 때 호종(扈從) 하다가 보니, 그 도로가 절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를 막아버리고 새 길을 열었습니다마는, 그 새 길도 그리 멀리 돌지 않고 거기에 묵은 민전(民田)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동(嶺東)은 땅이 대해(大海)에 접해 있는데, 백성들이 고기잡이[漁採]를 어찌 반드시 이 절 앞에서만 해야 하겠습니까? 신은 생각건대 백성들의 폐단을 제거하는 것은 작고, 선왕(先王)의 일을 고치는 것은 크니,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하니, 안선(安璿)이 말하기를,
 “노사신의 말은 전하로 하여금 신의 말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전(傳)8814 에 ‘택량무금(澤梁無禁)’이라 하였는데, 승사(僧寺)를 위하여 금표(禁標)를 세우고 고기잡는 일을 금한다는 것은 나라의 대체(大體)에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영동은 땅이 대해(大海)에 접해 있어서 고기잡이를 못하는 곳이 없는데, 단지 절 앞에만 금한 것이 어찌 ‘택량무금’이란 뜻에 해(害)가 되겠는가?”
 하였다. 이극배가 말하기를,
 “해물(海物)을 채취하는 것이 작은 일이라도 구로(舊路)를 여는 일은 대간(臺諫)의 말을 따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불가(不可)하다.”
 하였다. (…)

之?” 領事盧思愼曰：“臣於世祖朝，扈從見之。其道路近於寺，故塞之而開新路，然其新路不甚廻遠，其陳荒之田亦少。且嶺東地濱大海，民之漁採，豈必於此寺前乎？臣以謂除去百姓之弊小，更改先王之事大，斷不可變更也。” 璿曰：“思愼之言，欲使殿下不從臣言也。傳曰：‘澤梁無禁，’爲僧寺而立標禁漁，於國體何如？” 上曰：“嶺東地濱大海，無處而不漁，只禁寺前，豈害於澤梁無禁之義乎？” 克培曰：“採海細事，開舊路，則從臺諫之言何如？” 上曰：“不可。” (…)

<p>성종 94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7월 30일(기축) 2번째기사</p>	<p>종친(宗親) 및 증경 정승(曾經政丞),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의 당상관과 입직(入直)한 여러 장수와 대간들을 부르도록 명하여 술과 음악을 내려 주고, 여섯 승지(承旨)로 하여금 음식을 먹이게 하였다.</p>	<p>○命召宗親及曾經政丞、議政府、六曹、漢城府堂上、入直諸將、臺諫賜酒樂，令六(丞)〔承〕旨饋之。</p>
<p>성종 95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8월 13일(임인) 2번째기사</p>	<p>한치형(韓致亨)이 가지고 가는 별진헌(別進獻)은 다갈 면주(茶褐綿紬) 50필, 수록 면포(水綠綿布) 50필, 저사 겸직포(苧絲兼織布) 10필, 각양 연석(各樣硯石) 20개[事], 갑구 대양 황모필(匣具大樣黃毛筆) 1백 자루[枝], 중앙 황모필(中樣黃毛筆) 1백 자루, 토호필(兕毫筆) 1백 자루, 각양 용향묵(各樣龍香墨) 2백 원(圓), 세죽선(細竹扇) 8백 자루[把], 소죽선(少竹扇) 2백 자루, 변화석(邊花席) 20장(張), 만화방석(滿花方席) 20장, 삼사도자(三事刀子) 50자루[把], 오사도자(五事刀子) 50자루, 대양 단사도자(大樣單事刀子) 50자루, 소양 단사도자(小樣單事刀子) 50자루, 각양 호로아(各樣葫蘆兒) 1백 유(流), 각양 호아아(各樣虎牙兒) 80유, 장아아(獐牙兒) 50유, 산양각(山羊角) 1백 개(箇), 세교 소문합(細巧小文蛤) 1궤(櫃), 회합(回蛤) 1궤, 반합(班蛤) 10봉(封), 각양소라[各樣海螺] 10개, 각양 수랑아(各樣繡囊兒) 30개, 침가아(針家兒) 50개, 청조아(靑瓜兒) 10유(流), 각양 채죽상(各樣彩竹箱) 5개[事], 각양 흑칠상(各樣黑漆箱) 5개, 채죽석(彩竹席) 20장, 채죽방석(彩竹方席) 20장, 채죽침(彩竹枕) 10, 각양 주칠목향합(各樣朱漆木香盒) 10개[事], 녹대포(鹿大脯) 30개, 녹편포(鹿片脯) 4백 개, 건문어(乾文魚) 5백 마리[尾], 건연어(乾鱧魚) 5백 마리, 건대구어(乾大口魚) 5백 마리, 건전복어(乾全鰓魚) 5백 묶음[束], 건오징어[乾五賊魚] 30근(斤), 건광어(乾廣魚) 5백 마리, 건수어(乾秀魚) 3백 마리, 곤포(昆布) 4백 근, 다시마[塔士麻] 3백 근, 김[海菜] 1백근, 미역[海菜耳] 1백근, 석균(石菌) 1백 근인데, 황제의 칙명(勅命)에 인한 것이다.</p>	<p>○韓致亨齋去別進獻：茶褐綿紬五十四、水綠緜布五十四、苧絲兼織布一十四、各樣硯石二十事、匣具大樣黃毛筆一百枝、中樣黃毛筆一百枝、兕毫筆一百枝、各樣龍香墨二百圓、細竹扇八百把、小竹扇二(一)百把、邊花席二十張、滿花方席二十張、三事刀子五十把、五事刀子五十把、大樣單事刀子五十把、小樣單事刀子五十把、各樣葫蘆兒一百流、各樣虎牙兒八十流、獐牙兒五十流、山羊角一百箇、細巧小文蛤一櫃、回蛤一櫃、班蛤一十封、各樣海螺一十箇、各樣繡囊兒三十箇、針家兒五十箇、靑瓜兒一十流、各樣彩竹箱五事、各樣黑漆箱五事、彩竹席二十張、彩竹方席二十張、彩竹枕一十、各樣朱漆木香盒一十事、鹿大脯三十箇、鹿片脯四百箇、乾文魚五百尾、乾鱧魚五百尾、乾大口魚五百尾、乾全鰓魚五百束、乾烏賊魚三十斤、乾廣魚五百尾、乾</p>

		<p>秀魚三百尾、昆布四百斤、塔土麻三百斤、海衣一百斤、海菜耳一百斤、石菌一百斤、因皇帝之勅也。</p>
<p>성종 95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8월 26일(을묘) 5번째기사</p>	<p>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도염 부승(都染副丞) 동정(同正) 백효원(白孝元)은 집이 매우 가난하나 아버지가 섬기기를 지극히 효성스럽게 하였는데, 일찍이 흉년을 만나자 쌀을 구걸하여 이바지하였고, 아버지가 죽자 흙을 저다가 무덤을 만들었으며, 어미가 죽자 합장(合葬)하여 6년 동안 여묘(廬墓)하였는데 애통하는 정이 초상(初喪)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학생(學生) 박유효(朴由孝)는 집이 가난하나 아버지를 봉양하는 데에 맛있는 음식을 끊이지 않게 하였고, 아버지가 죽자 여묘하면서 스스로 밥을 지었으며, 그 어미의 병이 위독하자 그 똥을 맛보기까지 하였고, 〈어미가〉 죽자 합장하여 5년 동안 여묘(廬墓)하였습니다. 학생 임귀달(林貴達)은 부모가 연달아 죽자 혼자 몸으로 흙을 저다가 무덤을 만들고 아무리비와 눈이 내려도 무덤 곁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6년을 지냈으며, 음식을 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올려서 살았을 때와 같이 섬겼습니다. 행 부사정(行副司正) 황신(黃信)의 어미는 나이가 79세로서 온역(瘟疫)으로 하루낮 하룻밤을 기절(氣絶)하였는데, 지성으로 구호하여 다시 살아나자 마음을 다해 봉양하니, 온 고을이 효성을 칭찬하였습니다. 전 녹사(錄事) 민계점(閔繼點)은 나이 겨우 열세 살에 아버지가 죽었는데 슬피하는 것이 성인(成人)과 다름이 없었고, 어미를 따라 상(喪) 중에 있으면서 3년을 마치도록 묘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처음에 녹사로 들어왔다가 어미가 홀로 사는 것을 생각하여 벼슬을 버리고 돌아와서 46년 동안 친히 맛있는 음식을 이바지하여 힘을 다해 봉양하였고, 〈어미가〉 죽자 여묘(廬墓)하면서 아침 저녁의 상식(上食)을 평일과 다름이 없게 하였으며, 염장(鹽醬)이나 채소·과일을 끊고 입에 넣지 아니하니 종족(宗族)이 억지로 권하며, 좁쌀 죽만 마시며 슬피하고 애처로와함이</p>	<p>○吏曹啓：“都染副丞同正白孝元家甚貧，事親至孝，嘗遇凶年，乞米供具。及父歿，負土營墳，母歿，合葬，廬墓六年，哀痛之情無異初喪。學生朴由孝家貧，養親甘旨無缺，父歿廬墓，躬自炊飪，其母病劇，至嘗其糞，及歿合葬，居廬五年。學生林貴達父母連歿，獨身負土成墳，雖雨雪不離墳側，至于六年，有饋餉者，必先薦，事之如生。行副司正黃信之母年七十九，患瘟疫，氣絶一晝一夜，救之至誠，乃得復蘇，盡心奉養，一邑稱孝。前錄事閔繼點年甫十三歲，父歿，哀毀無異成人，隨母居喪，終三年不離墓側。初入錄事，念母寡居棄職歸，四十六年之間，親供甘旨，竭力奉養。及歿居廬，朝夕之奠無異平日，鹽醬菜果絶不入口，宗族強勸，只啜粟粥，悲傷惻怛，出於至誠，鄉里聞見者，莫不感動，而服其誠孝。請竝劃卽隨才絀用。”從之。</p>

	<p>지성에서 나왔으므로, 향리(鄉里)에서 듣고 보는 자가 감동하여 그 효성에 감복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청컨대 모두 즉시 재주에 따라 서용(敍用)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성종 97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10월 26일(갑인) 3번째기사</p>	<p>후원(後苑)에 나아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한명회(韓明澮) 등 아홉 사람이 왼편이 되고 윤사흔(尹士昕) 등 아홉 사람이 오른편이 되어 짝지어 나누어서 활을 쏘았는데, 활쏘기가 반쯤에 이르자 한명회와 윤사흔이 노쇠하여 힘이 다하였기 때문에 사양하니, 쏘지 말고 술을 부어 돌리도록 명하였다. 한명회가 술이 취하여 여러 번 태평성대(太平聖代)를 일컬었으며, 또 어榻(御榻)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넘어지니, 중관(中官) 10여 명이 붙들고 나갔는데, 한명회는 사모(紗帽)가 떨어지는 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활쏘기가 끝나자 오른편이 이겼는데, 표피(豹皮)를 각기 한 장씩 하사하였다.</p>	<p>○御後苑，觀射。以韓明澮等九人爲左，尹士昕等九人爲右，分耦而射。射半，明澮、士昕以衰老力竭爲辭，命勿射，使之行酒。明澮被酒，數稱‘太平盛代’，又於御榻前叩頭顛蹠，中官十餘人扶携而出，明澮不覺落帽。射畢，右勝，賜豹皮各一張。</p>
<p>성종 98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11월 1일(무오) 1번째기사</p>	<p>임금이 아차산(莪嵯山)에서 사냥을 구경하였는데, 좌상(左廂)에서 노루를 먼저 잡아 바치니, 즉시 달려가서 대비전(大妃殿)에 드렸다.</p>	<p>○朔戊午/上觀獵于莪嵯山，左廂先獲獐以進，卽馳獻于大妃殿。</p>
<p>성종 98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11월 9일(병인) 4번째기사</p>	<p>후원(後苑)에 나아가서 관사(觀射) 하였다. 겸사복(兼司僕) 낭삼파(浪三波) 등 18명을 좌우(左耦)로 삼고, 태호시내(太好時乃) 등 18명을 우우(右耦)로 삼았다. 그리고 입시(入侍)한 승지(承旨)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하였는데, 겸사복장(兼司僕將)과 쏘는 자들이 활쏘기를 마치고 좌·우의 맞힌 수를 계산하니, 서로 같았다. 한 사람이 화살 하나를 가지고 승부를 겨루게 하였는데, 오른쪽이 이겼다. 명하여 별조궁(別造弓) 1장(張)을 주게 하였다. 향화(向化)한 김상미(金尙美)도 활 쏘는 대열에 있었는데, 술이 취해서 쏠 수가 없다고 하므로, 임금이 우승지(右承旨) 김승경(金升卿)으로 하여금 김상미에게 묻게 하기를, “누가 그대에게 술을 권하여 이렇게 취했는가?” 하니, 김상미가 대답하기를,</p>	<p>○御後苑，觀射。以兼司僕浪三波等十八人爲左耦，太好時乃等十八人爲右耦。仍命饋入侍承旨、兼司僕將及射者，射畢計左右耦中數相準，命人持一矢以決勝負，右勝。命賜別造弓一張。向化金尙美亦在射列，辭以醉酒不能射，上令右承旨金升卿問尙美曰：“孰勸汝酒而醉如是?”尙美對曰：“臣欲射而過飲焉。”都承旨朴叔秦進曰：“尙美醉酒失禮，請下義禁府鞠之。”</p>

	<p>“신(臣)이 활쏘기를 하려고 지나치게 마셨습니다.” 하였다. 박숙진(朴叔秦)이 나와서 말하기를, “김상미가 술이 취하여 실례(失禮)를 하였으니, 의금부(議禁府)에 회부시켜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p>	<p>上曰：“可。”</p>
<p>성종 98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11월 11일(무진) 3번째기사</p>	<p>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이계손(李繼孫)이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인 이봉(李封)에게 음식물(飮食物)을 청구(請求)하니, 이봉이 어육(魚肉) 등의 물품을 보낸 뒤에 해주(海州)·장연(長淵)·강령(康翎)·웅진(甕津)·용매(龍媒) 등지에 나누어 배정하여 약간의 물품을 준비하여서 보내게 하였으니, 청컨대 모두 잡아다가 추국(推鞫)하게 하소서.” 하니,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국문(鞫問)하게 하였다.</p>	<p>○司憲府啓：“京畿觀察使李繼孫求請食物于黃海道觀察使李封，封送魚肉等物後，分定于海州、長淵、康翎、瓮津、龍媒等處，使備送若干物，請皆拿來推鞫。”命義禁府鞫之。</p>
<p>성종 98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11월 26일(계미) 4번째기사</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졸(卒)한 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에 대하여 별도의 부의(賻儀)로 쌀·콩 아울러 1백 석(碩), 종이 1백50권, 백정포(白正布) 20필(匹), 백면포(白綿布) 20필, 정포(正布) 50필, 석회(石灰) 50석, 저포(苧布) 10필, 청밀(淸蜜) 1석, 황랍(黃蠟) 30근(斤)을 내려 주게 하였다.</p>	<p>○傳旨戶曹，別賻卒河東府院君鄭麟趾米豆竝一百碩、紙一百五十卷、白正布二十四匹、白綿布二十四匹、正布五十四匹、石灰五十碩、苧布十四匹、淸蜜一碩、黃蠟三十斤。</p>
<p>성종 98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11월 28일(을유) 2번째기사</p>	<p>이보다 앞서 의금부(義禁府)에서 전(前)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이계손(李繼孫)·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 이봉(李封)과 수령(守令)·만호(萬戶) 등의 죄를 조율(照律)하여 아뢰니, 명하여 정승(政丞) 등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윤사흔(尹士昕)은 의논하기를, “이계손이 공공연하게 음식물(飮食物)을 요구하니, 이봉이 이계손의 청에 따라 각 고을로 하여금 준비해서 주게 하였고, 각 고을의 수령(守令)도 모두 감사(監司)의 뜻에 따라 많이 보내 주었으니, 모두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p>	<p>○先是義禁府照律前京畿觀察使李繼孫、黃海道觀察使李封及守令·萬戶等罪以啓，命議于政丞等。鄭昌孫、韓明澮、尹士昕議：“李繼孫公然求索食物，李封從繼孫之請，令各官辦給，各官守令亦皆承監司風旨，多數贈送，竝不當。義禁府照律甚合罪名。然</p>

의금부의 조율이 죄명(罪名)에 매우 적합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대소(大小)의 인원(人員)으로 혼인(婚姻)이나 장례 때에 관가(官家)의 힘을 입지 않는 자가 대체로 적습니다. 지금 소를 잡는 것을 너무 심하게 금하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육미(肉味)를 빌려 주기를 청하는 실정이니, 성상(聖上)께서 재량(裁量)하소서.”

하고, 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뢴 대로 따르소서.”

하였으며, 김국광(金國光)은 의논하기를,
 “음식물(飲食物)에 대해서는 조종조(祖宗朝)에서도 헛되이 논의(論議)되었으니, 음식물 외의 물건(物件)에 대해서만 과죄(科罪)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전교(傳敎)하기를,
 “지금 의논한 것을 보건대, 혹은 말하기를, ‘혼인(婚姻)과 상장(喪葬)에 있어서 관가(官家)의 힘을 입지 않는 자가 대개 적은데, 지금 소를 잡는 것을 너무 심하게 금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육미(肉味)를 빌려 주기를 청합니다.’라고 하고, 혹은 말하기를, ‘음식물은 조종조에서 헛되이 논의된 것입니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경(卿) 등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과죄(科罪)하고 싶지 않다는 말인가?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가?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었다. 이때에 와서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윤사흔(尹士昕)이 의논하기를,
 “세종(世宗) 때에, 이흥문(李興門)이 제주 안무사(濟州安撫使)로 있으면서, 본주(本州)에서 생산되는 식물(食物)을 의정부(議政府)의 육조 당상(六曹堂上)에게 보냈는데, 일이 발각되자 그를 국문(鞫問)하여 이흥문의 직위(職位)만 파면(罷免)시키고 받은 자는 모두 거론(擧論)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계손(李繼孫)과 이봉(李封), 그리고 수령(守令) 등은 비록 음식물이라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보내라고 요청하였으니, 어찌 다 석방할 수 있겠습니까?”

近來大小人員婚姻喪葬，不賴官家者蓋寡。今宰牛之禁太甚，不得已請借肉味，上裁。” 沈澮、尹弼商議：“依義禁府所啓。” 金國光議：“食物則祖宗朝亦虛論，食物外物件，科罪何如？” 傳曰：“今觀擬議，或曰：‘婚姻喪葬不賴官家者蓋寡，今牛禁太甚，不得已請借肉味。’ 或曰：‘食物則祖宗朝虛論。’ 然則於卿等意不欲科罪此人等乎？何以發此言也？更議以啓。” 至是，鄭昌孫、韓明澮、尹士昕議：“世宗朝，李興門爲濟州安撫使，將本州所產食物贈送于議政府、六曹堂上，事發鞫之，只罷興門職，受者皆勿論。李繼孫、李封及守令等，雖曰食物，公然請贈，豈可專釋？” 御書罷繼孫職，收李封告身，餘各減一等。仍傳曰：“以此科罪何如？更示政丞。” 政丞等皆曰：“允當。” 但尹士昕議：“大抵獻壽婚禮，僚友若或知之，則私遺之。今者繼孫請於李封，李封之贈，不爲怪矣。定罪似乎乖反。” 傳于承旨等曰：“今以政丞之議觀之，婚姻喪葬請於官家例也，繼孫之罪輕矣，李封雖從繼孫之請，略禮遺之宜矣。公然令各官多

	<p>하니, 어서(御書)로 이계손은 파직(罷職)시키고, 이봉은 고신(告身)을 거두고, 나머지는 각각 한 등급씩을 감하게 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p> <p>“이렇게 과죄(果罪)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다시 정승(政丞) 등에게 보이라.” 하였다. 정승 등이 모두 말하기를,</p> <p>“진실로 당연합니다.”</p> <p>하였으나, 다만 윤사흔이 의논하기를,</p> <p>“대체로 헌수(獻壽)나 혼례(婚禮)가 있어서 요우(僚友)들이 그 사실을 알면 사적(私的)으로 보내 주는데, 이번에 이계손은 이봉에게 청하였으니, 이봉이 준 것은 괴이한 일이 아닙니다. 죄를 준 것은 아마도 지나친 듯합니다.”</p> <p>하였다. 승지(承旨) 등에게 전교(傳教)하기를,</p> <p>“이번에 정승(政丞)의 의논을 보건대, 혼인(婚姻)과 상장(喪葬)에 있어서 관가에 청하는 것은 관례가 되었으니, 이계손의 죄는 가벼우며, 이봉은 비록 이계손의 청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간략하게 보내는 것이 마땅한데, 공공연하게 각 고을로 하여금 많이 보내게 하였으니, 이봉의 죄는 무겁다. 그런데 이제 파천(坡川)의 의논을 보건대, 나의 뜻과 같지 않다. 승지 등의 의향은 어떠한가?”</p> <p>하였다. 승지 등이 대답하기를,</p> <p>“이계손의 요청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봉의 보탬이 있었겠습니까? 두 사람의 죄를 비교하면 이계손의 죄가 이봉보다 더합니다.”</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그렇다면 이계손의 고신(告身)을 거두고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라.” 하였다.</p>	<p>數贈送，封之罪重矣。今觀坡川議，與予意不同。於承旨等意何如?” 承旨等對曰：“不有繼孫之請，則安有李封之贈遺乎? 以二人之罪較之，則繼孫之罪浮於李封矣。” 上曰：“然則李繼孫收告身，外方付處。”</p>
<p>성종 99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12월 1일(무자)</p>	<p>어서(御書)를 내려 이르기를,</p> <p>“매우 절실한 곧은 말을 보니, 우리 나라에 인재가 많은 것이 즐겁다. 내가 덕이 부족한 어린 나이로 어렵고 큰 기업(基業)을 이어받아, 봄의 살얼음을</p>	<p>○下御書曰： 觀讜言之深切，樂東方之多士。以眇年之薄德，襲艱大之基業，履春水而兢</p>

<p>4번째기사</p>	<p>뵈듯이 조심하고 깊은 연못에 다가서듯이 떨며, 요(堯) 순(舜)의 정치를 우러러 생각하고 백성의 편안함을 굽어 바랐으나, 지식이 얕고 생각이 짧으므로 정치가 어지럽고 행사가 잘못된 것이 오히려 많았는데, 이제 여러 선비가 상소하여 논한 것을 보니 참으로 나라의 병폐를 고치는 약(藥)이 된다. 허물이 자기에게 있는데 간쟁(諫諍)하는 사람을 죄주었던 자는 주(紂)요, 좋은 말을 듣고 절하기를 즐기었던 이는 우(禹)인데, 내가 성현(聖賢)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어찌 감히 그르지 않은 채 꾸미고 간쟁을 물리치겠는가? 다만 일에는 경중(輕重)이 있고 말에는 가부(可否)가 있으니, 어찌 반드시 말마다 들어주며 일마다 따르겠는가? 그러나 당시의 직신(直臣)을 칭찬하지 않으면 어떻게 뒷날의 한선(寒蟬)을 떨쳐 일으키겠는가? 그러므로 맛있는 술과 좋은 안주를 내리고, 취한 몸을 가누다가 쓰러지더라도 괜찮다.”</p> <p>하고, 어서 전교(傳敎)하기를, “홍문관(弘文館)의 인원이 다 왔으니, 여섯 승지(承旨)는 겸상하여 취하도록 마시라.”</p> <p>하였다.</p>	<p>危，臨深淵而戰栗，仰惟唐、虞之治，俯欲黎庶之安，然由識淺而慮短，尙多政廵而事愆，今覽諸儒之疏論，實是醫國之藥石。 咎在己而罪諫者紂，聞昌言而樂拜者禹，予雖不及於聖賢，豈敢飾非而拒諫？ 但事有輕重，言有可否，何必言言而聽之，事事而從之？ 然不褒當時之直臣，安能起後日之寒蟬？ 故賜旨酒與嘉殽，不妨扶醉而山頽。</p> <p>仍傳曰：“弘文館員已齊到矣，六承旨對饋，以醉爲度。”</p>
<p>성종 99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12월 7일(갑오) 4번째기사</p>	<p>예조 참판(禮曹參判) 김유(金紐)가 상소(上疏)하기를, “심이 삼가 듣건대 의금부(義禁府)에서 이계손(李繼孫)·이봉(李封) 등의 죄를 조율(照律)하여 아뢰었는데, 대신(大臣)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여 가등(加等)9244) 하셨다 합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대신(大臣)은 임금의 더불어 천직(天職)을 함께하고 천사(天事)를 다스리는 자이며, 백관(百官)이 존경하여 본받고 만민(萬民)이 함께 우러러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으로서는 극진히 공경하여 대신을 존경하는 의리를 다하지 않을 수 없고, 대신으로서는 엄치를 숭상하고 절의(節義)를 힘써서 임금이 위임하는 후한 뜻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임금은 신하를 예의로써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써 섬긴다.’ 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이계손·이봉은 지위가 2품의</p>	<p>○禮曹參判金紐上疏曰： 臣伏聞義禁府照律李繼孫、李封等罪以啓，命議諸大臣加等。 臣竊謂大臣，人主所與共天職、治天事，而百官之所矜法，萬民之所具瞻者也。 故爲人主者，不可不盡恭敬，以致尊敬大臣之義，爲大臣者，亦不可不崇廉恥勵節義，以副人主委任之隆。 傳曰：“君使臣以禮，臣事君以忠”，者，此也。 今繼孫、李封位列二品，官非不崇，專制</p>

반열에 있으므로 벼슬이 높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한 방면을 전담하여 절제(節制)하므로 직임이 중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사사로이 서로 청하고 보내 주었으므로 드디어 법사(法司)에서 추핵(推覈)받아 정리(情理)가 이미 드러났으니, 유사(有司)가 힘써 죄주기를 청하고 전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 있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혼인(婚姻)과 상장(喪葬)은 인도(人道) 중에서 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국속(國俗)이 더욱 여기에 뜻을 기울이므로, 화려하고 사치하게 하려고 힘써서 비용이 적지 않으니, 아들을 장가들이거나 사위를 맞이하는 집이 있으면, 친척과 친구 중에 말[馬]을 나누어 쓰고 옷을 벗어 주어 그 부족한 것을 돕는 자도 있고, 공물(公物)을 내어 주고 남은 것을 빌려 주어 그 다급한 것을 갖추어 주는 자도 있는데, 이런 폐풍은 이루어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제 이계손이 이봉에게 청한 것은 혼인에 오는 손님들에게 먹일 많은 음식을 장만하는 데에 드는 것 때문이었고, 이봉이 이계손에게 보내어 준 것도 평·노루·생선젓 따위에 불과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이계손이 참으로 탐욕하여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한 방면을 맡았으니, 산에 의지한 고을에 어찌 고라니·사슴 따위 짐승이 없겠으며, 바다를 연한 고을에는 반드시 물고기·새우 따위 해산물이 있을 터인데, 이 곳을 괴롭히지 않고 멀리 다른 곳에서 구하였으니, 이는 국가에 법이 있다는 것을 모른 것이 아니고, 유속(流俗)의 구습(舊習)을 벗어나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이봉이 참으로 뇌물을 보낸 것이라면, 가볍고 따뜻한 옷가지나 피물(皮物)·철물(鐵物) 따위가 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어찌 반드시 이런 먹을 것을 보냈겠습니까? 한 도(道)의 사신(使臣)으로서 몇 고을 수령(守令)의 하루 공봉(供奉)을 거두어 인도(人道)의 다급한 것을 갖추어 주는 것도 상정(常情)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논한다면 이 두 신하는 법에 의거하면 죄가 없을 수 없겠으나, 그 정상을 살펴보면 오히려 용서할 만한 데가 있습니다. 신이 듣건대 예전에는 대신 중에 장오(贓汚)를 범한 자가 있으면 임금의 꾸짖기를, ‘보

一方, 任非不重, 而私相請遺, 遂爲法司所覈, 情理已白, 宜有司之力請, 殿下之震怒也。 臣伏念婚姻喪葬, 人道之所重, 國俗尤到意焉, 務爲華侈, 糜費不貲。 其有醮子迎贅之家, 則親戚朋友, 或有分廐馬脫衣服以助其不給者, 或有出公物稱用餘以周其所急者, 此風已成, 其弊久矣。 今繼孫之請於李封者, 以婚姻賓客飭餼之需, 李封之贈繼孫者, 亦不過雉麕魚醢之屬。 臣以謂使繼孫實爲貪冒不畏邦憲, 則身任方面, 依山之郡, 豈無(麋) [麋] 鹿? 沿海之州, 必有魚蝦, 不煩於此而遠求他方, 是非不知朝家之有法, 而特不免流俗之舊習耳。 使李封實爲賄賂, 則輕暖之具、皮鐵之類, 無所不產, 豈必以此食物爲贈乎? 爲一道之使, 輟數邑守令一日之奉, 以周人道之急, 亦常情所或有也。 以此論之, 茲二臣者, 據於法則不得無罪, 原其情則猶有可恕也。 臣聞古者大臣有犯贓汙者, 則人主責之曰: “簠簋不飾” 也, 有犯淫亂者, 則人主責之曰: “帷薄不修” 也。 夫道之以政, 使懼其身, 不若齊之以禮, 愧其心, 治小人之法律, 決不與待

궤불식(篋篋不飾)'이라 하고, 음란(淫亂)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임금의 꾸짖기를, '유박불수(帷薄不修)'라고 하였다 합니다. 대저 법으로 인도하여 그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것이 예(禮)로 다스려 그 마음을 부끄럽게 하는 것만 못하므로, 소인(小人)을 다스리는 법률이 결코 대신(大臣)을 대우하는 예의와 동등하지 않은 것이니, 이것이 거룩하고 밝은 임금들이 대신을 예로 대우하여 엄격하게 하지 않되 위엄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엄치가 흥기(興起)하고 절의(節義)가 행해져서 치화(治化)의 융성이 천고(千古)에 뛰어난 까닭입니다. 예전에 장무(張武)가 뇌물을 받았으나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상을 주었고, 장손순덕(長孫順德)이 뇌물을 받았으나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물건을 내려 주었으니, 저 두 임금은 뇌물을 받는 것이 죄줄 만한 일인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끝내 이것을 저것과 바꾸지 않은 것인데, 평론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한(漢)나라와 당(唐)나라가 풍속을 유지하여 마침내 장구한 치안(治安)을 이룬 까닭이 반드시 여기에서 비롯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신의 어리석음으로 생각하건대 문제(文帝)·태종(太宗)은 말세(末世)의 보통 임금인데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더구나 우리 전하께서 타고나신 거룩함은 요(堯) 순(舜)도 견줄 수 없는데도 어찌하여 오히려 덕례(德禮)를 앞세우지 않고 삼대(三代)9247)의 훌륭한 임금이 버린 것을 지키십니까? 신이 듣건대 법이라는 것은 임금이 백성과 함께 지켜서 만세(萬世)에 행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제 전하께서 한때의 논의로 선왕(先王)의 구법(舊法)을 가감(加減)하시니, 법이 한번 흔들리면 백성이 손발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고 나라도 흔들릴 것인데,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형벌을 늦추고 망령된 말을 허용하시어, 이계손을 소환하고 이봉을 벼슬시키고 본율(本律)로만 죄주소서. 그러면 아마도 구법의 대신을 대우하는 의리를 잃지 않고, 두신하도 앞으로 분발하여 힘써 스스로 허물을 고쳐서 끝없는 성덕(聖德)을 느낄 것입니다. 신이 요즈음 다리의 종기[足腫]로 휴가중인데 이 일을 듣고 마

大臣之禮義同科，此聖帝明王之所以待大臣以禮，不厲而威，廉恥所由興，節義所由行，而治化之隆，卓越千古者也。昔張武受賂，漢文加賞，順德納賂，使唐宗有賜，彼二帝者，非不知受賂之爲可罪，而終不以此易彼，論者謂：“漢、唐所以維持風俗卒成長治久安之業者，未必不權輿於此矣。”臣愚昧死以爲，文帝、太宗，叔季之中主耳，尙能如此，況我殿下天縱之聖，堯、舜不得與竝，而何獨不以德禮爲先，循三代令主之遺躅乎？臣聞法者，王者所守，與民共之而行之萬世者也。今殿下以一時之論加減先王之舊法，法一搖則民無所措手足，而邦國亦搖矣，豈細故哉？伏望殿下特寬鐵鉞之討，許容狂瞽之說，召還繼孫、拜李封，只以本律坐之。則庶不失守舊章、待大臣之義，而二臣者亦將(舊)〔奮〕勵自新，以感聖德於無疆矣。臣近以足腫在告，得聞斯事，有懷於心，不敢容默。伏望睿覽施行。傳曰：“其示政丞。”

	<p>음에 생각나는 바가 있어, 감히 말 없이 있을수 없었습니다. 바라건대 예람(睿覽)하여 시행하소서.”</p> <p>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정승에게 보이도록 하라.”</p> <p>하였다.</p>	
<p>성종 99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12월 15일(임인) 2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선운(宣醞)을 내리고 전교하기를, “대비(大妃)께서 강녕(康寧)하시니, 내가 매우 기쁘고 경하한다. 각각 취하도록 마시라. 근일 정승들에게 잔치를 내려 주겠다.”</p> <p>하였다.</p>	<p>○賜宣醞于承政院，傳曰：“大妃康寧，予甚喜慶。其各醉飲。近當賜宴于政丞等。”</p>
<p>성종 99권, 9년(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12월 21일(무신) 4번째기사</p>	<p>한치형(韓致亨)이 가져온, 황제가 요구하는 물목(物目)은, 자주색 명주[紫綿紬], 녹색명주[綠綿紬], 다홍색 명주[大紅綿紬], 황색 명주[黃綿紬], 다갈색 명주[茶褐綿紬], 유택색 명주[柳靑綿紬], 초록색 명주[草綠綿紬], 수록색 무명[水綠綿布], 갖가지 색으로 물들인 무명, 표백한 고운 모시[白細苧布], 모시실·명주실을 섞어 짠 베[苧絲兼織布], 갖가지 의복(衣服), 갖가지 저고리·치마, 돼지털 참빗[篋刷], 대빗[竹梳], 나무 빗[木梳], 다리 빗[鬕篋], 초서피(貂鼠皮), 토표피(土豹皮), 갖가지 벼루, 큰 황모필(黃毛筆), 중간 크기의 황모필, 토호필(兔毫筆), 갖가지 용향묵(龍香墨), 은서피(銀鼠皮), 활과 화살[弓箭], 갖가지 동기(銅器), 갖가지 크고 작은 가위·바늘, 갖가지 종이, 세죽선(細竹扇), 화면선(畫面扇), 원과선(圓把扇), 소죽선(小竹扇), 변화석(邊花席), 만화석(滿花席), 삼사 도자(三事刀子), 오사 도자(五事刀子), 큰 단도(單刀), 작은 단도, 갖가지 채죽상(彩竹箱), 갖가지 흑칠상(黑漆箱), 채화석(彩花席), 채죽방석(彩竹方席), 채죽침(彩竹枕), 갖가지 주칠목향함(朱漆木香盒), 대록포(大鹿脯), 녹편포(鹿片脯), 마른 문어(文魚), 마른 연어(鱒魚), 마른 대구[大口魚], 마른 전복[全鰓魚], 마른 오징어[烏賊魚], 마른 넓치[廣魚], 마른 송어[秀魚], 다시마[昆布塔土麻], 김[海衣], 미역[海菜], 석이버섯[石耳菌], 향심(香簾)-국내에서 나는 좋은 물건, 밀판다식(蜜板茶食), 날복어젓[生鰓魚鮮], 조기알젓[石首</p>	<p>○韓致亨齋來皇帝求索物目：紫綿紬、綠緜紬、大紅綿紬、黃綿紬、茶褐綿紬、柳靑綿紬、草綠緜紬、水綠綿布、各樣顏色綿布、白細苧布、苧絲兼織布、各樣衣服、各樣衫兒、裙兒、豬毛篋刷、竹梳、木梳、鬕篋、貂鼠皮、土豹皮、各樣硯石、大樣黃毛筆、中樣黃毛筆、兔毫筆、各樣龍香墨、銀鼠皮、弓箭、各樣銅器、各樣大小剪子、針、各樣紙、細竹扇、畫面扇、圓把扇、小竹扇、邊花席、滿花席、三事刀子、五事刀子、大樣單刀、小樣單刀、各樣彩竹箱、各樣黑漆箱、彩花席、彩竹方席、彩竹枕、各樣朱漆木香盒、大鹿脯、鹿片脯、乾文魚、乾鱒魚、乾大口魚、乾全鰓魚、乾烏賊魚、乾廣魚、乾秀</p>

	<p>魚卵鮓], 홍합젓[紅閣鮓], 은어젓[銀口魚鮓], 조개젓[白蛤鮓], 새우젓[白蝦鮓], 소주(燒酒)-노란 것과 붉은 것, 잣[松子], 인삼(人蔘), 갓가지 호리병[葫蘆]-호골(虎骨)로 만든 것과 녹각(鹿角)으로 만든 것과 회양목[黃楊木]으로 만든 것, 진짜 호리병 작은 것, 진짜 호리병 바가지, 진짜 호리병 박 등근 것, 갓가지 호아(虎牙)·장아(獐牙)·산양각(山羊角), 무늬가 고운 문합(文蛤) 썬 것, 회합(回蛤) 썬 것, 반합(班蛤) 썬 것, 갓가지 소라[海螺], 갓가지 가대(茄袋), 갓가지 수낭(繡囊), 갓가지 첩낭(貼囊), 호리병 바늘겨레[葫蘆針家兒], 바늘겨레-여공(女工)이 갓가지로 살아 있는 듯한 청개(靑介)·원앙(鴛鴦)·청구(靑鳩)·녹압(綠鴨)·능각(菱角)·연화(蓮花)·북[鼓] 모양을 정교하게 만든 것 등이었다.</p>	<p>魚、昆布塔士麻、海衣、海菜石耳菌、香簞、海內所出好的物件，蜜板茶食、生鰓魚鮓、石首魚卵鮓、紅蛤鮓、銀口魚鮓、白蛤鮓、白蝦鮓、燒酒、黃的、紅的松子、人蔘、各樣葫蘆虎骨的、鹿角的、黃楊木的、眞葫蘆小的、眞葫蘆瓢兒、眞葫蘆圓的、各樣虎牙、章牙、山羊角、細巧文蛤穿了來、回蛤穿了來、班蛤穿了來、各樣海螺、各樣茄袋兒、各樣繡囊兒、各樣貼囊兒、葫蘆針家兒、針家兒、各樣女工巧作生活靑介兒、鴛鴦兒、靑鳩兒、綠鴨兒、菱角兒、蓮花兒、鼓兒。</p>
<p>성종 100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1월 1일 (무오) 2번째기사</p>	<p>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오늘은 육선(肉膳)을 올리지 말라.” 하였다. 승지(承旨) 등이 아뢰기를, “이침(李琛)이 비록 지친(至親)이라 하더라도 예(禮)에, ‘천자(天子)·제후(諸侯)는 기공복(期功服)은 끊는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육선(肉膳)을 올리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비(大妃)께서도 육선(肉膳)을 드시지 않으시는데, 어찌 나만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하였다.</p>	<p>○傳于承政院曰：“今日勿進肉膳。” 承旨等啓曰：“琛雖至親，禮‘天子諸侯絕期功之服’，請進肉膳。” 傳曰：“大妃不御肉膳，予何獨不然？”</p>
<p>성종 100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p>	<p>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여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에게 부의로 쌀·콩 아울러 1백 석(碩), 정포(正布) 60필(匹), 백저포(白苧布)·면포(綿布) 각각 10필</p>	<p>○傳旨戶曹賜密城君琛粳米豆并一百碩、正布六十四、白苧布、綿布各一</p>

<p>(成化) 15년) 1월 1일 (무오) 5번째기사</p>	<p>(匹), 종이 2백 권(卷), 석회(石灰) 60석(碩)을 주게 하였다.</p>	<p>十四、紙二百卷、石灰六十碩。</p>
<p>성종 100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 (成化) 15년) 1월 12 일(기사) 1번째기사</p>	<p>일본국(日本國)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이 특송(特送)한 성장(盛長)이 하직하니, 예조(禮曹)에서 답서(答書)하기를, “간세(姦細)한 무리가 우리 변경의 포구(浦口)를 어지럽히는 것을 족하(足下)가 널리 수색하여 잡고, 또 죄인(罪人)을 찾아서 법(法)으로 다스렸으며, 전일에 통유(通諭)한 일을 일일이 봉행(奉行)하였으니, 족하가 우리 나라를 공경히 섬기고 번병(藩屏)이 되어 힘써 순종하는 정성을 볼 수 있습니다. 즉시 이 뜻을 가지고 연유를 갖추어서 우리 전하(殿下)에게 아뢰었더니, 깊이 가상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며 특별히 흑마포(黑麻布) 3필(匹), 백면포(白綿布) 3필, 채화석(彩花席) 3장(張), 호피(虎皮) 2장(張), 표피(豹皮) 2장(張), 표피 좌자(豹皮坐子) 1벌[事], 정포(正布) 17필(匹), 면포(綿布) 8필(匹)을 내려 주시고, 연례(年例)로 내려 주는 쌀·콩 아울러 2백 석(碩)을 돌아가는 사자(使者)에게 부쳤으니, 족하도 또한 우리 전하께서 권후(眷厚)하는 뜻을 마땅히 본받아 충성하는 정성을 변하지 말고, 구약(舊約)을 거듭 밝혀서 간세(奸細)한 자를 금집(禁戢)함으로써 영구히 이웃의 화친을 유지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p>	<p>○己巳/日本國對馬州太守宗貞國特送盛長辭。禮曹答書曰： 姦細之徒作耗我邊浦者，足下廣行搜捕，又得罪人置之於法，前日通諭之事一一奉行，可見足下敬事我國作藩効順之誠。即將此意，具由以啓，我殿下深用嘉悅，特賜黑麻布三匹、白綿布三匹、彩花席三張、虎皮二張、豹皮二張、豹皮坐子一事、正布一十七匹、綿布八匹、年例賜米豆并二百碩付回使，足下亦宜體我殿下眷厚之意，不替忠款，申明舊約，禁戢奸細，以永隣好，幸甚。</p>
<p>성종 100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 (成化) 15년) 1월 20 일(정축) 4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이제 통신사(通信使)의 사행(使行)에 응당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을미년의 예(例)를 상고하여 조목조목 기록하여 아뢰옵니다. 1. 통사(通事) 3인, 압물(押物) 2인, 의원(醫員) 1인, 영선(領船) 2인, 정사(正使)·부사(副使)의 반당(伴尙) 각 2인, 서장관 반당(書狀官伴尙) 1인, 악공(樂工)이 3인이고, 1. 국왕처(國王處)에는, 안자(鞍子) 1면(面), 제연구 백세면주(諸緣具白細綿紬) 20필(匹), 흑세마포(黑細麻布) 20필, 백세제포(白細苧布) 20필, 남사피(藍斜皮) 10장(張), 인삼(人蔘) 1백 근(斤), 표피 좌자(豹皮座子) 1, 표피(豹皮) 10</p>	<p>○禮曹啓：“今通信使之行應行諸事，考乙未年例，條錄以聞。一。通事三人，押物二人，醫員一人，領船二人，使、副使伴尙各二人，書狀官伴尙一人，樂工三人。一。國王處，鞍子一面，諸緣具白細綿紬二十四、黑細麻布二十四、白細苧布二十四、藍斜皮十張、人蔘一百斤、豹皮座子一、豹皮十張、虎皮十張、雜彩花席十張、</p>

	<p>장(張), 호피(虎皮) 10장(張),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張), 만화석(滿花席) 10장(張), 만화방석(滿花方席) 10장, 백자(栢子) 4백 근(斤), 청밀(淸蜜) 15두(斗)이며,</p> <p>1. 관제(管提)·대내전(大內殿)에는 각각 백세면주(白細綿紬) 10필(匹), 백세저포(白細苧布)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10필, 잡채화석(雜彩花席) 15장(張), 표피(豹皮) 2장(張), 호피(虎皮) 4장(張)이고,</p> <p>1. 좌무위전(左武衛殿)·전산전(畠山殿)에는 각각 흑마포(黑麻布) 15필(匹), 백세면주(白細綿紬) 15필, 표피(豹皮) 2장(張), 호피(虎皮) 4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5장이며,</p> <p>1. 대우전(大友殿)에는 백세저포(白細苧布) 5필(匹), 백세면주(白細綿紬) 5필(匹),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이고,</p> <p>1. 소이전(少二殿)에는 백세저포(白細苧布) 5필, 백세면주(白細綿紬) 5필(匹),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표피(豹皮) 10장, 호피(虎皮) 2장이며,</p> <p>1. 일기주(一岐州) 좌지(佐志) 원의(源義), 구주(九州) 송포(松浦) 지좌(志佐) 원무(源武)에서는 각각 백세저포(白細苧布) 5필, 백세면주(白細綿紬) 5필,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이고,</p> <p>1.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에게는 백세저포(白細苧布) 5필, 흑세마포(黑細麻布) 5필, 백세면주(白細綿紬) 5필, 인삼(人蔘) 30근(斤), 백자(栢子) 1백40 근,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표피(豹皮) 4장, 중미(中米) 20석(碩), 소주(燒酒) 50병(瓶), 계(桂) 5각(角), 다식(茶食) 5각, 청밀(淸蜜) 5항(缸), 군량가(軍糧價)로 5승주면(五升紬綿) 1백50필(匹)이며,</p> <p>1, 반전(盤纏)9377) 으로는 10승포(十升布) 25필, 9승포(九升布) 25필, 5승정포(五升正布) 30필, 5승면포(五升綿布) 30필, 조미(糙米) 60석(碩), 잡채화석(雜彩花席) 30장, 이수(理首) 2백 수(首), 포육(脯肉) 50첩(貼), 계(桂) 10각(角), 해(醢) 8항(缸), 건반(乾飯) 10석, 표피(豹皮) 2장, 호피(虎皮) 3장, 작설</p>	<p>滿花席十張、滿花方席十張、栢子四百斤、淸蜜十五斗。 一。 管提、大內殿, 各白細綿紬十四、白細苧布十四、黑細麻布十四、雜彩花席十五張、豹皮二張、虎皮四張。 一。 左武衛殿、畠山殿, 各黑麻布十五匹、白細綿紬十五匹、豹皮二張、虎皮四張、雜彩花席十五張。 一。 大友殿, 白細苧布五匹、白細綿紬五匹、雜彩花席十張。 一。 少二殿, 白細苧布五匹、白細綿紬五匹、雜彩花席十張、豹皮一張、虎皮二張。 一。 一岐州佐志源義、九州松浦志佐源武, 各白細苧布五匹、白細綿紬五匹、雜彩花席十張。 一。 對馬州太守宗貞國, 白細苧布五匹、黑細麻布五匹、白細綿紬五匹、人蔘三十斤、栢子一百四十斤、雜彩花席十張、豹皮四張、中米二十碩、燒酒五十瓶、桂五角、茶食五角、淸蜜五缸、軍糧價五升綿紬一百五十四。 一。 盤纏, 十升布二十五匹、九升布二十五匹、五升正布三十四、五升綿布三十四、糙米六十碩、雜彩花席三十張、理首二百首、脯肉五十貼、桂十角、醢八缸、乾飯十</p>
--	---	---

	<p>다(雀舌茶) 20근(斤), 저(菹) 20항(缸), 호육(虎肉) 40항, 다식(茶食) 10각, 사어(沙魚) 2백 수(首), 청밀(淸蜜) 15병(瓶), 등유(燈油) 15두(斗), 소주(燒酒) 1백 병(瓶), 황률(黃栗) 40두(斗), 소병(燒餅) 10각(角), 청주(淸酒) 3백 병, 건저(乾豬) 60구(口), 유둔(油菹) 10번(番)이고,</p> <p>1. 전례(前例)대로 주미(酒米) 20석(碩), 국(麴) 3백 원(圓), 황두(黃豆) 10석, 백미(白米) 5석, 소두(小豆) 3석, 점미(粘米) 3석, 진말(眞末) 3석, 교맥미(蕎麥米) 3석, 촉(燭) 20정(丁), 백주지(白注紙) 1백 권(卷), 과실(果實)·염장(鹽醬) 등의 식물(食物)은 마땅한 대로 풍부하게 예비토록 하였으며,</p> <p>1. 새로운 중선(中船)·대선(大船) 2척(隻)을 가려서 미리 장식(粧飾)하고, 군인(軍人)은 대체(代替)하지 말고, 각각 4시(四時)의 의복(衣服)을 갖추어서 기다리게 하였고,</p> <p>1. 태평소(太平簫) 2, 대금(大琴) 1, 해금(絃琴) 1, 당비파(唐琵琶) 1, 장고(杖鼓) 1, 피리[鶯篳] 1개는 상의원(尙衣院)의 소장(所藏)을 쓰며,</p> <p>1. 길을 안내하는 왜인(倭人) 2, 3명(名)은 전례(前例)를 따라 반전(盤纏)을 주어 술행(率行)하게 하고,</p> <p>1. 선상(船上)에 익숙하지 못한 잡인(雜人)이 부실(富實)한 선군(船軍)으로 대신 하고, 모명(冒名)하여서 행하는 자는 관할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검찰(檢察)하게 하되, 요동 호송군(遼東護送軍)의 예(例)를 따라 친히 점고(點考)하여서 보내고, 만일 모명(冒名)하고 대신 행한 자가 있으면 아울러 수령(守令)을 죄주며,</p> <p>1. 선장(船匠) 2명(名), 야장(冶匠) 2명, 화통장(火筒匠) 2명, 취라치(吹螺赤) 2명은 그 도(道)에서 재능이 있는 사람을 가려서 술행(率行)하게 하고,</p> <p>1. 격군의(格軍衣)·갑옷[甲], 궁전(弓箭)·창검(槍劍)과 기휘(旗麾)·쟁고(鍾鼓)·취라(吹螺)는 간택(揀擇)하여 미리 준비하고, 화약(火藥)·화통(火筒)·유화(流火)·질러포(疾藜砲)·직상화(直上火)·철정(鐵釘)·선너(船柵)·휴지(休紙)·취로기(取露</p>	<p>碩、豹皮二張、虎皮三張、雀舌茶二十斤、菹二十缸、虎肉四十缸、茶食十角、沙魚二百首、淸蜜十五瓶、燈油十五斗、燒酒一百瓶、黃栗四十斗、燒餅十角、淸酒三百瓶、乾豬六十口、油菹十番。一。前例，酒米二十碩、麴三百圓、黃豆十碩、白米五碩、小豆三碩、粘米三碩、眞末三碩、蕎麥米三碩、燭二十丁、白注紙一百卷、果實鹽醬等食物，令隨宜豐備。一。擇新中、大船二隻，預爲粧飾，軍人勿令代替，各備四時衣服以待。一。太平簫二、大琴一、絃琴一、唐琵琶一、杖鼓一、鶯篳一，用尙衣院所〔藏〕。一。指路倭人二三名，依前例給盤纏率行。一。不慣船上雜類人，代富實船軍冒名而行者，令所在守令檢察，依遼東護送軍例親點以送。如有冒名代行者，則並罪守令。一。船匠二名、冶匠二名、火筒匠二名、吹螺赤二名，令其道擇才能人率行。一。船軍衣、甲、弓、箭、槍、劍及旗麾、鍾、鼓、吹螺，揀擇預備。火藥、火筒、流火、疾藜砲、直上火、鐵釘、船柵、休紙、取</p>
--	---	--

	<p>旗)는 전례(前例)에 의하여 본도(本道)에서 준비하여 주며,</p> <p>1. 혜민서(惠民署)의 약재(藥材)는 전례(前例)를 상고하여 제급(題給)하고,</p> <p>1. 사(使)·부사(副使)·종사관(從事官)·압물(押物)·의원(醫員)·통사(通事)·군관(軍官)은 궁전(弓箭)을 차게 하고, 제연구(諸緣具) 각각 10부(部)는 군기시(軍器寺)에서 제급(題給)하며,</p> <p>1. 부사(副使)이하의 각인(各人)과 격군(格軍), 길을 안내하는 왜인(倭人)의 10삭(朔) 양료(糧料)와 염장(鹽醬)·찬물(饌物)은 전례(前例)를 상고하여 제급(題給)하고,</p> <p>1. 포진(鋪陳)·차일(遮日)·유둔(油苴)은 전례(前例)를 따라 제급(題給)하며,</p> <p>1. 격인(格人) 이외 정사(正使)·부사(副使) 이하는 우구(雨具)를 제급(題給)하고,</p> <p>1. 선척(船隻)의 수보 차사원(修補差使員)은 통사(通事)·압물(押物)의 안정(安定)을 일체히 고찰(考察)하며.</p> <p>1. 나장(螺匠) 4명은 좌수영(左水營)과 우수영(右水營)의 나장(螺匠) 가운데에서 장실(壯實)한 사람으로써 의복(衣服)을 정결(淨潔)히 하여 격군(格軍)에 충군시켜 솔행(率行)하고,</p> <p>1. 집찬관노(執饌官奴) 2명도 격군(格軍)에 충군시켜 솔행(率行)하며,</p> <p>1. 선상(船上)에서 소용되는 삼갑승(三甲繩)·조승(條繩)은 전례(前例)에 의하여 제급(題給)하며,</p> <p>1. 선상(船上)의 제집용기(諸執用器)와 풍로(風爐)·주기(酒器)·대소 부정(大小釜鼎)·대이(大耳)·좌이(左耳) 부착(釜錯) 등은 전례(前例)를 따라 제급(題給)하고.</p> <p>1. 격군(格軍)은 제포(諸浦)의 선군(船軍) 이외 제읍(諸邑)의 선상(船上)에 익숙한 55인을 전례(前例)에 의하여 간택(諫擇)하여 솔행(率行)하게 하였습니다.”</p>	<p>露器, 依前例, 本道備給。 一。 惠民署藥材, 考前例題給。 一。 使、副使、從事官、押物、醫員、通事、軍官着持弓箭, 諸緣具各十部, 軍器寺題給。 一。 副使以下各人及格軍、指路倭人十朔糧料鹽醬饌物, 考前例題給。 一。 鋪陳、遮日、油苴, 依前例題給。 一。 格人外, 使、副使以下雨具題給。 一。 船隻修補差使員, 定體通事押物一同考察。 一。 螺匠四名, 左右水營螺匠內, 以壯實人衣服淨潔, 充格軍率行。 一。 執饌官奴二名, 充格軍率行。 一。 船上所用三甲繩、條繩, 依前例題給。 一。 船上諸執用器、風爐、酒器、大小釜鼎、大耳、佐耳、斧、錯等, 依前例題給。 一。 格軍諸浦船軍外, 以諸邑船上慣熟五十五人, 依前例揀擇率行。”</p>
--	--	--

<p>성종 100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 (成化) 15년) 1월 21 일(무인) 2번째기사</p>	<p>하였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니, 장령(掌令) 안처량(安處良)이 아 뢰기를, “여주(驪州) 죄인 한윤옥(韓潤玉)이 한명회(韓明澮)의 사채(私債)를 거두다가 인하여서 살인(殺人)하였는데, 이것은 반드시 권세를 믿고서 그러한 것입니 다. 청컨대 아울러 한명회를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형조(刑曹)에서 지금 국문(鞫問)하고 있으니, 그 추국(推鞠)이 끝나는 것을 기다려 마땅히 국문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한윤옥은 바로 윤반(尹礪)의 반당 (伴尙)이니, 정승(政丞)에게 무슨 허물이 있겠으며, 비록 이것이 정승의 반당 이더라도 정승이 어찌 사람을 죽이라고 가르쳤겠는가?” 하였다. 정언(正言) 윤희손(尹希孫)이 말하기를, “한명회는 가장(家長)으로서 능히 검찰(檢察)하지 못했으니 또한 허물입니다. 세가(勢家)의 노자(奴子)가 가난한 백성을 침해함은 매우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左右)를 돌아보고 물으므로, 영사(領事) 김국광(金國光)이 아뢰기를, “간언(諫言)의 말은 근본을 논(論)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향음주례(鄉飲酒禮)를 폐(廢)하면, 장유(長幼)의 질서를 잃어서 싸우고 다투는 옥사(獄事)가 일어난다.’고 하였으니, 어떻게 하 면 군읍(郡邑)으로 하여금 다 행하도록 하겠는가?” 하니, 동지사(同知事) 이승원(李崇元)이 대답하기를, “외방 고을에 혹 행하지 아니하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거듭 밝히 면 모두 준행(遵行)할 것입니다.” 하였다.</p>	<p>○御經筵。 講訖， 掌令安處良啓曰： “驪州囚韓潤玉收韓明澮私債， 因而殺 人， 是必恃勢而然也。 請竝鞫明澮。” 上曰：“刑曹時方鞫問， 待其畢推， 當 鞫之。 然潤玉乃尹礪伴尙， 於政丞何 咎焉？ 雖是政丞伴尙， 政丞豈教之殺人 乎？” 正言尹希孫曰：“明澮以家長不能 檢， 亦過矣。 勢家奴子侵虐貧民， 太 不可。” 上顧問左右， 領事金國光啓 曰：“諫官之言， 端本之論也。” 上曰： “《禮記》云：‘鄉飲酒之禮廢， 則長幼 之序失， 而爭鬪之獄起矣。’ 何以使郡 邑盡行之乎？” 同知事李崇元對曰：“外 邑或有不行處， 今復申明， 則皆遵行 矣。”</p>
<p>성종 100권, 10년</p>	<p>예조(禮曹)에 전지(傳旨)하기를,</p>	<p>○傳旨禮曹曰：“安上治民， 莫善於</p>

<p>(1479 기해 / 명 성화 (成化) 15년) 1월 22 일(기묘) 2번째기사</p>	<p>“윗사람을 편안히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예(禮)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예전의 음사(飮射) 독법(讀法)은 백성에게 예(禮)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 없었다. 이제 향음주례(鄉飮酒禮)·향사례(鄉射禮)의 의식(儀式)이 예문(禮文)에 갖추 실려 있으니, 차례로 거행(舉行)하는 것은 진실로 수령(守令)에게 있을 뿐이다. 또 생각하건대 경성(京城)은 왕화(王化)의 본원(本源)이 되는 지역이나, 백성을 가르치는 법이 제도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내 마음이 허전하다. 그 향음주례(鄉飮酒禮)·향사례(鄉射禮)의 의식에 의방하여 제도를 정하여 거행토록 하라.” 하였다.</p>	<p>禮。古者飮、射、讀法，無非所以教民禮也。今鄉飮酒、鄉射之儀，具載禮文，次第舉行，在良守令耳。第念京城王化本源之地，教民之典，未有成規，予心缺然。其倣鄉飮酒、鄉射之儀，定制舉行。”</p>
<p>성종 100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 (成化) 15년) 1월 28 일(을유) 1번째기사</p>	<p>영해(寧海)에 안치(安値)된 이준(李浚)이 죽으니, 명하여 쌀·콩 각 10석(碩), 종이[紙] 40권(卷)을 내려 주게 하였다.</p>	<p>○乙酉/寧海安置浚死，命賜米豆各十碩、紙四十卷。</p>
<p>성종 101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 (成化) 15년) 2월 12 일(기해) 3번째기사</p>	<p>평양부(平壤府)의 백성이 상언(上言)하여, 관찰사(觀察使) 현석규(玄碩圭)를 유임시키도록 청원하니, 임금이 중관(中官) 이효지(李孝智)를 보내어 어의(御衣)를 내리고 선온(宣醢)을 곁들였으며, 또 어서(御書)를 내려 칭찬하였다.</p>	<p>○平壤府民上言，願留觀察使玄碩圭，上遣中官李孝智賜御衣，副以宣醢，又賜御書褒美。</p>
<p>성종 101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 (成化) 15년) 2월 12 일(기해) 5번째기사</p>	<p>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오례의주(五禮儀註)》에는 ‘해마다 맹동(孟冬)에 개성부(開城府)와 주부군현(州府郡縣)에서 길일(吉日)을 가려 향음주례(鄉飮酒禮)를 행하고,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에 개성부와 주부군현에서 향사례(鄉射禮)를 행한다.’ 하였으니, 법이 상세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수령들이 구습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미편(未便)합니다. 이제부터는 유수(留守)·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더욱 밝혀서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五禮儀註》：‘每年孟冬，開城府及州府郡縣擇吉辰行鄉飮酒禮，每年三月三日、九月九日，開城府及州府郡縣行鄉射禮，法非不詳，而守令因循不行未便。’請自今令留守、觀察使申明舉行。”從之。</p>
<p>성종 102권, 10년</p>	<p>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p>	<p>○戶曹啓：“正朝使貿來唐稻二十斗，</p>

<p>(1479 기해 / 명 성화 (成化) 15년) 3월 13 일(기사) 3번째기사</p>	<p>“정조사(正朝使)가 무역해 온 중국 벼[唐稻] 20두(斗)는, 청컨대 경기(京畿) 연해(沿海)의 여러 고을에서 때맞추어 씨뿌리게 하였다가 그것이 농사짓기에 적당한지를 살펴서 다른 도에 옮겨 심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請令京畿沿海諸邑趁時耕種，審其耕稼之宜，移種他道。”從之。</p>
<p>성종 102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 (成化) 15년) 3월 19 일(을해) 1번째기사</p>	<p>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의 집에 거둥하여 위안하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오산군(烏山君) 이주(李澍)·의성군(誼城君) 이채(李察)·보성군(寶城君) 이합(李合)·은천군(銀川君) 이찬(李欝)·영천군(永川君) 이정(李定)·안강 정(安康正) 이양(李寅)·신풍 도정(新豐都正) 이순(李循)·회의 도정(懷義都正) 이추(李鼓)·월산 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덕원군(德源君) 이서(李曙)·사산군(蛇山君) 이호(李灝)·정양군(定陽君) 이순(李淳)·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팔계군(八溪君) 이정(李淨)·강양군(江陽君) 이윤(李澣)·환성군(歡城君) 이징(李澄)·영원군(寧原君) 이예(李禮)·제천군(堤川君) 이온(李崑)·부림군(富林君) 이식(李湜)·운림 도정(雲林都正) 이폭(李幅)·평성 도정(枰城都正) 이위(李律)·가은 도정(加恩都正) 이빈(李份)이 입시(入侍)하였다. 어가(御駕)를 따른 종친(宗親)·재추(宰樞)와 시위(侍衛)한 여러 장수에게 풍악을 내려 주도록 명하였다. 이보(李補)가 술과 떡과 생선을 바치니, 호종(扈從)한 군사들에게 먹이도록 명하고, 보에게 면포(綿布) 1백 필을 내려 주었다.</p>	<p>○乙亥/幸孝寧大君補第，設慰宴，烏山君澍、誼城君察、寶城君合、銀川君欝、永川君定、安康正寅、新豐都正循、懷義都正鼓、月山大君婷、德源君曙、蛇山君灝、定陽君淳、玉山君躋、八溪君淨、江陽君澣、歡城君澄、寧原君禮、堤川君崑、富林君湜、雲林都正幅、枰城都正律、加恩都正份入侍。命饋隨駕宗宰及侍衛諸將，賜樂。補獻酒餅及魚，命饋扈從軍士，賜補綿布一百匹。</p>
<p>성종 104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 (成化) 15년) 5월 16 일(신미) 1번째기사</p>	<p>(…)김비을개·강무·이정은 말하기를, ‘우리들은 제주 사람으로 지난 정유년 2월 1일에 진상(進上)할 감자(柑子)를 받아 가지고 그 주(州)의 사람인 현세수(玄世守)·이청밀(李靑密)·김득산(金得山)·양성석이(梁成石伊)·조괴봉(曹怪奉)과 비거 도선(鼻居刀船)을 타고, 추자도(楸子島)에 이르러 바람을 만나 서쪽을 향하여 표류하다가, 제 7일에는 남쪽으로 향하여 표류하였는데, 제 11일에는 김득산이 주리고 병들어 죽었고, 제 14일 아침에는 장차 한 섬에 머무르려고 하다가 배가 부서져서 현세수·양성석이·이청밀·조괴봉 등은 익사(溺死)하고, 우리들은 언덕을 더위잡아서 죽지 않았습니다. 마침 고기잡잇배 두 척을 만났는데, 수상막(水上幕)으로 싼고 돌아가서 죽(粥)을 끓이어서 먹이고, 제 16일에</p>	<p>(…) 金非乙介、姜茂、李正言：‘我等濟州人，去丁酉年二月初一日，受進上柑子，與州人玄世守、李靑密、金得山、梁成石伊、曹恠奉，騎鼻居刀船，到楸子島，遭風西向漂流，第七〔日〕，南向漂流，第十一日，金得山飢病死，第十四日朝，將泊一島船敗，玄世守、梁成石伊、李靑密、曹恠奉等溺死，我等緣崖不死。遇漁船二隻，</p>

그 집으로 데리고 가서 윤차(輪次)로 밥먹여 주었습니다. 섬 이름은 윤이(允伊)라 일컫고, 사는 사람은 장대(長大)하고, 수염(鬚髯)이 길었으며, 여자는 서면 머리털이 땅에 이르고, 남자는 앉으면 수염이 무릎에 이르렀습니다. 언어(言語)와 의복(衣服)은 왜인(倭人)과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조선국(朝鮮國)이라는 3자를 풀잎에 써서 보이니,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섯 달을 머물게 되었는데, 섬사람 13명이 우리들을 거느리고 작은 배를 타고, 동쪽으로 향하여 이틀 낮 하룻밤을 가서 소내도(所乃島)에 정박했습니다. 다섯 달을 머문 뒤 섬사람 5명이 우리들을 이끌고 작은 배를 타고서 동쪽으로 향하여 하루 동안을 가서 꽤돌마도(悻突麻島)에 정박하였으며, 한 달을 머문 다음 섬사람 5명이 우리들을 이끌고 작은 배를 타고 동쪽으로 향해 가서 발내이도(勃乃伊島)에 머물다가, 한 달을 지나 섬사람 5명이 우리들을 인솔하고, 작은 배를 타고 동쪽으로 향하여 하루를 가서 후이시마도(后伊是麻島)에 정박했습니다. 한 달을 머물다가 섬사람 10명이 우리들을 이끌고 중선(中船)을 타고 동쪽으로 향하여 하루 낮 하룻밤을 가서 탈라마도(脫羅麻島)에 머물었습니다. 한 달을 유(留)한 뒤에 섬사람 8명이 우리들을 이끌고, 작은 배를 타고 동쪽으로 향하여 하루를 가서 이라과도(伊羅波島)에 머물었는데, 위에서 말한 각 섬에 사는 사람의 언어와 의복은 윤이와 서로 비슷했습니다. 한 달을 머문 뒤에 섬사람 6명이 우리들을 이끌고, 작은 배를 타고, 동쪽으로 향하여 하루를 가서 꽤라미고도(悻羅彌古島)에 머물었는데, 사는 사람의 의복은 먼저의 섬과 같았고, 언어는 조금 달랐습니다. 한 달을 머물고, 섬사람 10명이 우리들을 이끌고 중선(中船)을 타고 동쪽으로 향하여 사흘 낮 이틀 밤을 가서, 유구국의 해변(海邊)에 이르렀다가 제 3일에 관부(官府)로 인도되어 갔더니 관대(館待)가 매우 후 하였습니다. 어느 날에 국왕(國王)이 황금(黃金)으로 꾸민 대련(大輦)을 타고, 앞과 뒤로는 군위(軍衛)의 의장(儀仗)이 매우 성(盛)하였으며, 또 10여 세가 되는 남자(男子)가 말을 타고 수행(隨行)하는데, 병위(兵衛)가 또한

載歸水上幕，炊粥饋之，第六日，率歸其家，輪次饋餉。島名稱允伊，居人長大美鬚髯，女立則髮至地，男人坐則鬚至膝。言語、衣服不類倭人。我等，書朝鮮國三字于草葉示之，不解見。留六朔，島人十三名，率我等騎小船，向東行二日一夜，泊所乃島。留五朔，島人五名，率我等，騎小船向東行一日，泊悻突麻島。留一朔，島人五名，率我等，騎小船向東行，泊勃乃伊島。留一朔，島人五名，率我等，騎小船，向東行一日，泊后伊是麻島。留一朔，島人十名，率我等，騎中船，向東行一日一夜，泊脫羅麻島。留一朔，島人八名，率我等，騎小船，向東行一日，泊伊羅波島，上項各島居人，言語、衣服，與允伊島相似。留一朔，島人六名，率我等騎小船，向東行一日，泊悻羅彌古島，居人衣服同前島，言語小異。留一朔，島人十名，率我等騎中船，向東行三日二夜，到琉球國海邊，第三日，引至官府，館待甚厚。一日，國王乘黃金飾大輦，前後軍衛儀仗甚盛，又十餘歲男子，騎馬隨行，兵衛亦盛。來至官府，我等拜哭道傍，

	<p>성하였습니다. 관부에 이르러 왔으므로 우리들이 길 곁에서 절하고 울면서 애걸(哀乞)하는 소리를 발(發)하였더니, 국왕이 연(輦)을 멈추고 물어본 뒤에 사람에게 명령하여 술을 먹이게 하고 조금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일본(日本)통사(通事)로서 우리 나라 말을 아는 자가 그곳에 와서 있었는데, 말해 주기를, ‘국왕이 홍서(薨逝)하고 여주(女主)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연을 탄 사람이 이 여주고, 말을 탄 어린아이는 곧 국왕의 아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석 달을 머물었는데, 각각 면포(綿布) 2필과 청포(靑布) 1필을 주고, 전체로는 돈 1만 5천 문(文)과 후추[胡椒] 1백 50근(斤)과 조미(糙米)9630) 5백 60근 및 어육(魚肉)·장부(醬付)를 주었습니다.</p> <p>지금 온 박다의 왜인신시라 등이 출송(出送)을 하여 나흘 밤낮 만에 살마주(薩摩州)에 이르러, 한 달을 머물고서 배를 출발시켜 이틀 낮 이틀 밤을 가서 빙골(氷骨)에 이르렀으며, 육지로 이틀을 가서 박다에 도착하였습니다. 대내전(大內殿)이 소이전(小二殿)과 서로 싸워 소이전이 싸움에 패하여 도망해 가고, 대내전의 군사(軍士)가 흩어져서 여러 집에 머물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날에는 강상(江上)에 사람의 머리 넷을 달아놓은 것을 보았고, 또 하루에는 효수(梟首) 둘을 보고 이를 물어보았더니, 효수된 자는 곧 소이전의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섯 달을 머물고 배를 출발하여 하루를 가서 일기도(一岐島)에 이르러 3일을 머물렀으며, 대마도(對馬島)에 이르러 두 달을 머물다가 금년 4월 초 9일에 배를 출발하여 이번 5월 3일에 염포(鹽浦)에 도착하였습니다.’</p> <p>라고 하였습니다.”</p> <p>하였다.</p>	<p>發哀乞之聲，國王駐輦問之，令人饋酒，俄而還去。日本通事解我國言者，來在其處，言曰：「國王薨逝，女主治國，乘輦者，是女主也，騎馬小兒，即國王子也。」留三朔，各給綿布二匹、靑布一匹，都給錢一萬五千文、胡椒一百五十斤、糙米五百六十斤，及魚肉、醬付。今來博多倭人新時羅等，出送，四日四夜，到薩摩州，留一朔，發船行二日二夜，至氷骨，陸行二日，至博多。聞大內殿，與小二殿相戰，小二殿戰敗遁去，大內殿軍士，散住諸家，一日見江上懸人首四，又一日梟首二，問之則曰：「彼梟首者，乃小二殿人也。」留五朔，發船行一日，至一岐島留三日，至對馬島留二朔，今年四月初九日，發船，今五月初三日，到鹽浦。”</p>
<p>성종 104권,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 (成化) 15년) 5월 22</p>	<p>대내전(大內殿) 정홍(政弘)의 사송(使送)인 중 서흥(瑞興)과 종정국(宗貞國)이 특송(特送)한 평국충(平國忠) 등이 사별(辭別) 하니, 표피(豹皮) 각 1장과 유석(油席) 각 1장씩을 하사하고, 이어 도승지(都承旨) 홍귀달(洪貴達)에게 명하</p>	<p>○丁丑/大內殿政弘使送僧瑞興、宗貞國特送平國忠等，辭別，賜豹皮各一張，油席各一張，仍命都承旨洪貴達語</p>

일(정축) 1번째기사

여 말하게 하기를,
 “오래도록 여관(旅館)에 머무느라 진실로 괴로웠을 것이다. 너희들이 본국(本國)의 일을 자세히 말해 주었으므로, 내가 이를 가상히 여겨 특별히 이 물건을 하사한다.”
 하였다. 서흥 등이 돈수(頓首)하면서 사례하여 말하기를,
 “외람되게 상덕(上德)을 입어 감명(感銘)이 뼈에까지 사무치는데, 이제 또 하사품을 받으니, 감사하고 송구스러움이 한이 없습니다. 또 통신사(通信使)도 반드시 이미 대마도(對馬島)에 이르렀을 것이니, 우리들이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호송(護送)할 것이며, 병란(兵亂)도 이미 종식되었으므로 노차(路次)에는 반드시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또 나연(那衍)이 근래에 병란으로 인하여 경도(京都)에 가 있어서 오래도록 돌아가지 못하다가, 이번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근래에 나연의 사송(使送)이라 칭탁(稱托)하고서 온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조(禮曹)에 청하여, 그가 가지고 온 서계(書契)를 전사(傳寫)하여 가지고 가서 이를 국문(鞫問)하려 한 것입니다.”
 하고, 이어 돈수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정홍에게 답하는 글에 이르기를,
 “오래 바라던 사이에 이제 혜서(惠書)를 받고, 동리(動履)에 강승(康勝)함을 갖추어 알았으니, 멀리서 위로하고 또 멀리서 위안드리는 바입니다. 바친 바 예물(禮物)은 삼가 아뢰어 받아들였습니다. 보내는 토산물은 백저포(白苧布) 10필, 흑마포(黑麻布) 10필, 인삼(人蔘) 35근, 표피(豹皮) 2장, 호피(虎皮) 2장, 남사피(藍斜皮) 10장, 변아 침석(邊兒寢席) 15장, 청밀(淸蜜) 15말, 송자(松子) 1백 근, 정포(正布) 2백 필, 면포(綿布) 2백 필이고, 아울러 《대장경(大藏經)》 1부를 내려 돌아가는 사신에게 부쳐 보내니, 오직 조령(照領)하기 바랍니다.”

之曰：“久留旅館良苦。爾等詳言本國事，予用嘉之，特賜此物。” 瑞興等，頓首謝曰：“濫蒙上德，感銘于骨，今又受賜，感懼無地。且通信使，想必已到對馬島，我等猶可及見。當保護送之，兵亂已息，路次必無虞。又那衍，近因兵亂，往在京都，久不返焉，今而得還，比來托稱那衍使送，而來者，必他人也，非那衍所送之人。故請於禮曹，傳寫其所齎來書契，以往鞫之。” 仍頓首不已。其答政弘書曰：“懸企間，今承惠書，備諮動履康勝，遙慰遙慰，所獻禮物，謹啓收了。將土宜白苧布一十匹、黑麻布一十匹、人蔘三十五斤、豹皮二張、虎皮二張、藍斜皮一十張、邊兒寢席一十五張、淸蜜一十五斗、松子一百斤、正布二百匹、綿布二百匹、并給賜《大藏經》一部，就付回使，惟照領。” 其答宗貞國書曰：“今承書(扎) [札]，就審體履安穩，欣慰。所獻禮物，謹啓收了，將土宜，正布一十匹、綿布五匹、并給賜黑麻布三匹、白綿布三匹、採花席三張、虎皮二張、付回使，惟領留。”

	<p>하였고, 중정국에게 답하는 글에 이르기를, “이제 서찰(書札)을 받고, 체리(體履)가 안온(安穩)함을 알았으니, 기쁘고 위안이 됩니다. 바친 바의 예물은 삼가 거두어 받았음을 알리며, 보내는 토산물은 정포(正布) 10필, 면포(綿布) 5필이고, 아울러 흑마포(黑麻布) 3필, 백면포(白綿布) 3필, 채화석(採花席) 3장, 호피(虎皮) 2장을 돌아가는 사신에게 부치니, 영류(領留)하기 바랍니다.” 하였다.</p>	
--	---	--